

2007년도

연차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07

2007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07년도

연차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07

2007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서 문

2007년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언론분쟁해결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째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1단계 과제를 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질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혼과 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그 같은 노력을 통해 위원회는 지난 한 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위원회가 접수 처리한 사건은 총 1,043건으로 2년 연속 1,000건 이상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359건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구제율 또한 64.8%를 기록, 전년에 비해 약 4.2%p 증가한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수 년 간 이어 온 6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새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2007년 349건이 접수됐고 이 중 210건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63.1%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을 기록, 전년도에 비해 청구건수 및 피해구제율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아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측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제도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밖에도 최근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인터넷 언론과 관련해 113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47%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인터넷 언론과 관련한 분쟁해결 역시 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초상·성명·음성권이나 프라이버시 등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회에 접수된 기타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88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약 8.4%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신청 역시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조정신청과 별도로 우리 위원회의 중재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한 중재신청도 지난 한 해 14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시정권고의 경우 자체심의 200건과 신청심의 2건 등 총 202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4년 4월에 활동을 시작해 햇수로 4년째를 맞이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2,343건의 상담을 접수, 이 중 1,770여건을 조정신청절차 등으로 안내했으며 이 가운데 696건이 실제 조정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상담, 조정신청, 기타 법적구제절차 안내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고 상세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언론사, 대학, 공·사기업,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교육’을 72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교육 및 사전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 및 제작한 책자와 CD-ROM에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접수·처리한 조정·중재신청 사건 현황, 각종 통계와 사례별 요약, 시정권고 사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분쟁조정 절차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련 연구자와 개인, 단체 모두에게 이 책과 CD-ROM이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CI가 상징하는 바처럼 공정하고 엄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튼튼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언론 자유와 책임의 균형 있는 조화라는 바람직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위원회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과 언론 모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조 준 희

차 례

2007년도 조정 ·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63

조정신청사례

2007서울조정1 · ○○시수산업협동조합 대 MBC-TV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조합이 무주택 어민을 위해 지은 주상복합건물을 일반 분양했으나 실패해 큰 손해를 보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01
2007경남조정1 · 정○○ 대 마산MBC-TV (반론청구) 신청인이 동생을 폭행한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102
2007서울조정2 · 정○○ 대 연합뉴스 (반론청구) 신청인이 동생을 폭행한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103
2007서울조정3 · 성○○ 대 중앙일보 (정정 · 손해청구) 해고근로자인 신청인이 미신고 불법집회를 20여 차례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03
2007전북조정1 · 이○○ 대 전주KBS-1TV (손배청구) 의료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의 인터뷰 장면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I - PR보도	104
2007전북조정2 · 이○○ 대 전주MBC-TV (손배청구) 의료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의 인터뷰 장면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II - PR보도	105
2007전북조정3 · 이○○ 대 J-TV (손배청구) 의료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의 인터뷰 장면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III - PR보도	106
2007경기조정1 · ○○○총본부 ○○관 대 무토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도장에서 제명된 사람이 관장의 최측근 제자였으며 실질적인 수석사범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06
2007경기조정2 · 문병호 대 부평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버블세븐’ 지역에 여러 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07
2007서울조정4 · ○○○○○○서비스코리아(주) 대 매일경제 (정정청구) 시장조사기관인 신청인 회사의 김치냉장고 시장점유율 자료를 무단으로 인용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108
2007서울조정5 · 백○○ 대 뉴시스 (정정 · 손해청구) ‘수사경찰제’가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그 사례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 및 손해배상	109
2007서울조정6 · 조○○ 대 SBS-TV (추후청구)	

	시민단체 간부인 신청인이 민원인들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111
2007경남조정2	· 윤○○ 대 경남도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112
2007경남조정3	· 윤○○ 대 경남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113
2007경남조정4	· 윤○○ 대 서경방송 (정정청구)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114
2007서울조정7	· 환경부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강행해 GM대우의 서민형 경상용차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14
2007전북조정4	· 완주군 대 완주신문 (반론청구) 완주군이 군급고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116
2007제주조정1	· 고○○ 대 제주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보험가입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117
2007경기조정3	· ○○○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대 시대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시 특정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형식적으로 입찰공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18
2007서울조정8	· 조○○ 대 YTN (추후청구) 시민단체 간부인 신청인이 민원인들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119
2007서울조정9	· ○○○○금속분회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노조가 집회를 벌이다 회사 경영기획실에 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20
2007충북조정1	· 기○○ 대 청주MBC-TV (손배청구)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온 입주예정자들을 제지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120
2007충북조정2	· 김○○ 대 청주MBC-TV (손배청구)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온 입주예정자들을 제지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121
2007서울조정10	· 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피모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 정정보도	122
2007서울조정11	· 김○○ 대 신동아 (정정청구) 피모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 정정보도	122
2007서울조정12	· 김○○ 대 연합뉴스 (정정청구)	

	피모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I - 정정보도	123
2007서울조정13	· 조OO 대 KBS-1TV (추후청구) 시민단체 간부인 신청인이 민원인들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124
2007서울조정14	· 황OO 대 연합뉴스 (손배청구) 신청인이 주식투자한 회사가 전락물자와 기술을 불법수출했다고 잘못 보도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125
2007서울조정15	· OOO레저(주)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카지노 관련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거액의 금품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25
2007제주조정2	· 변OO 대 제주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보험가입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27
2007경남조정5	· 박OO 대 경남도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학교급식업체 선정 논란과 관련해 학교급식 점검단에게 사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27
2007서울조정16	· 김OO 대 채널블루 (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일부러 옷에 커피를 쏟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를 몰래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128
2007경남조정6	· 윤OO 대 경남도민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129
2007경남조정7	· 윤OO 대 경남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129
2007경남조정8	· 윤OO 대 서경방송 (손배청구)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130
2007서울조정17	· 진OO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청소년 수련관을 그만 둔 학생에 관한 인터뷰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몰래 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130
2007서울조정18	· 한국의사회 대 KBS-2TV (정정청구)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과당청구에 해당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31
2007서울조정19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대 MBC-TV (정정청구)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채원마련이 기부양여방식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32
2007경남조정9	· (사)OO회 OO지회 대 김해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중앙회가 특별감사를 통해 모 지회의 임원선출 무효를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33
2007서울조정20	· 황OO 대 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중견 영화감독인 신청인이 채무관계 때문에 이웃가게 주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34
2007서울조정21	· 박○○ 대 MBC-TV (손배청구)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신청인의 모습과 상해사진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135
2007경남조정10	· 윤○○ 대 경남신문 (손배청구) 신청인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주택과 논을 구입한 후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손해배상	136
2007서울조정22	· 배○○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연인관계였던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원요청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37
2007경기조정4	· ○○영농조합법인 대 경인매일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온실 내에 산업폐기물을 매립·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켜 폭리를 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38
2007서울조정23	· 우○○ 대 KBS-1TV (반론·손배청구) 이혼위기를 넘긴 노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내보내 과거 불륜관계 당사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139
2007서울조정24	· 소방방재청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119구급차의 도착시간이 평균 9.33분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40
2007경기조정5	· 하남시 대 경인매일 (정정청구)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유치에 대한 찬성집회를 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41
2007서울조정25	· 김○○ 대 KBS-1TV (정정청구) 피모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V - 정정보도	142
2007서울조정26	· 김○○ 대 MBC-TV (정정청구) 피모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V - 정정보도	142
2007경남조정11	· ○○상조종합이벤트 주식회사 대 경남매일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상호회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143
2007서울조정27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 동아일보 (정정·손배청구)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정부지원도 줄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44
2007서울조정28	· 문○○ 대 KBS-1TV (손배청구) 퀵서비스 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145
2007서울조정29	· (주)스피드○○○ 대 KBS-1TV (손배청구) 퀵서비스 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상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146
2007서울조정30	· 국무조정실 대 연합뉴스 (정정청구)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이 IPTV 관련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46
2007강원조정1	· 김○○ 대 삼척MBC-TV (정정청구) 사북사태를 재조명하면서 당시 신청인에게 린치를 가한 광부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147
2007광주조정1	· 담양군 대 담양주간신문 (정정청구) 담양군수가 지방선거 후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48
2007경기조정6	· 김○○ 대 광주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이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50
2007서울조정31	· 박○○ 외 4인 대 연합뉴스 (정정·손배청구) 법장스님의 유골이 동국대 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PR보도	151
2007서울조정32	· 박○○ 대 YTN (정정청구) 신청인이 중국산 가짜휴대전화기를 들여와 국산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52
2007서울조정33	· 교육인적자원부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이 고금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53
2007서울조정34	· 보건복지부 대 문화일보 (반론청구)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가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54
2007서울조정35	· 김○○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딜러가 영어를 너무 잘 하면 손님과 내통해 카지노에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55
2007서울조정36	· 환경부 대 오마이뉴스 (정정청구) 정부가 환경오염조사없이 경기 북부의 미군 훈련장 5곳을 반환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156
2007대구조정1	· 김○○ 대 TBC-TV (손배청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과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157
2007경남조정12	· ○○상조종합이벤트 주식회사 대 경남일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상조회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158
2007서울조정37	· 윤○○ 대 오마이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 정정보도	158
2007서울조정38	· 장○○외 4인 대 서울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특정업체를 선정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159
2007경기조정7	· 이○○ 대 오토데일리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개인 블로그에 있는 글을 무단전재하면서 신청인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160

2007부산조정1	· ○○생명 주식회사 대 e조은뉴스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검찰과 공모해 무고한 장애인을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구속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61
2007서울조정39	· 김○○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 사건의 가해자인 신청인이 1년 전 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 전학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164
2007경기조정8	· 장○○ 외 4인 대 경기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이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특정업체를 선정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165
2007서울조정40	· 김○○ 대 YTN (정정청구)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 사건의 가해자인 신청인이 1년 전 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 전학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166
2007경남조정13	· (사)○○여성복지회 대 김해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실버문화축제'를 위해 지원받은 예산을 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66
2007서울조정41	· 조기숙 대 문화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동학농민혁명군 유족들에게 증조부의 잘못을 사죄한 것이 비난여론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68
2007광주조정2	· 최○○ 대 순천KBS-1TV (정정청구)	
	정유회사의 기름유출사고 조사에 참여한 신청인이 정유회사와 공모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169
2007서울조정42	· 환경부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정부가 환경오염조사없이 경기북부의 미군 훈련장 5곳을 반환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171
2007서울조정43	· ○○○○프로축구단 대 플라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박종환 전 감독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보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171
2007서울조정44	· (주)○○정보개발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중국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들여와 신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불법 복제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172
2007서울조정45	· (주)스피드○○○ 대 KBS-2TV (손배청구)	
	일부 지하철 택배업체가 고의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체불시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를 무단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174
2007서울조정46	· 김○○ 외 1인 대 MBC-TV (손배청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이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175
2007전북조정5	·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대 전북일보 (정정·손배청구)	
	냉난방시스템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무면허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176
2007전북조정6	·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대 전라일보 (정정·손배청구)	
	냉난방시스템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무면허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PR보도	177
2007전북조정7	·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대 새전북신문 (정정·손배청구)	

	냉난방시스템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무면허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178
2007전북조정8	·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대 전북매일 (정정·손배청구) 냉난방시스템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무면허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178
2007전북조정9	·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대 전북연합신문 (정정·손배청구) 냉난방시스템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무면허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179
2007서울조정47	· ○○○○○집행위원회 대 코카뉴스 (정정·손배청구) '독자만화대상' 시상식이 전체 만화독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특정 작가나 출판사의 홍보성 행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179
2007서울조정48	· 해양수산부 대 세계일보 (반론청구) 부산항 노무인력 상용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희망퇴직자들이 생계 안정지원금과 위로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81
2007서울조정49	· ○○○○○○대학교 대 KBS-1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대학교가 특정 출판사에 교재파일을 유출시키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83
2007경기조정9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대 평택시민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평택항 컨테이너 운영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형식적으로 '운영사 선정 설명회'를 개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85
2007서울조정50	· 백○○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탤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186
2007서울조정51	· 백○○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탤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187
2007서울조정52	· 백○○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탤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187
2007서울조정53	· 백○○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탤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188
2007서울조정54	· 백○○ 대 매일경제 (정정청구) 탤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188
2007서울조정55	· 백○○ 대 서울경제 (정정청구) 탤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188
2007서울조정56	· 백○○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탤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189
2007서울조정57	· 백○○ 대 헤럴드경제 (정정청구) 텔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189
2007서울조정58	· 백○○ 대 연합뉴스 (정정청구) 텔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Ⅸ.....	189
2007서울조정59	· 백○○ 대 YTN STAR (정정청구) 텔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190
2007서울조정60	· (주)중앙일보사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이 포털사이트에 오른 인기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기사화한 것을,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190
2007서울조정61	· (주)○○○○여행사 대 여행미디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로부터 예약확정서를 받고도 일방적으로 단체여행을 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91
2007서울조정62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사장이 자살한 이유가 노조파업으로 인한 자금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92
2007서울조정63	· 육군 비무기체제사업단 외 1인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육군의 '다중통합 레이저 훈련체계' (마일즈)가 기능이 떨어지는데다 찾은 고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93
2007서울조정64	· 노동부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부족해 중소기업의 인력 대란이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95
2007광주조정3	· 이○○ 대 광양만권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눈썰매장 내 놀이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96
2007서울조정65	· 최○○ 대 AM7 (손배청구) 호주의 공원관리업체와 송사를 벌여 승소한 신청인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얼굴사진과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197
2007서울조정66	· 임○○ 대 MBC-TV (손배청구) 마약관련 보도를 하면서 2002년도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무단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197
2007서울조정67	· 방송위원회 대 PD저널 (정정청구) 방송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특정 국회의원 때문에 경인TV방송 허가추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98
2007서울조정68	· 표○○ 대 tN (정정·손배청구) 남녀간의 치정관계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피아노학원 전경을 무단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 및 손해배상	199
2007서울조정69	· (주)한○○○○ 대 국방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타 업체와 과열경쟁을 벌여 육군의 마일즈 장비 사업추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0

2007서울조정70	· 최○○ 대 뉴시스 (손배청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폭행한 신청인의 얼굴과 차량번호판이 찍힌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 - 손해배상	202
2007서울조정71	· 최○○ 대 연합뉴스 (손배청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폭행한 신청인의 얼굴과 차량번호판이 찍힌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I - 손해배상	202
2007경기조정10	· 장○○ 외 21인 대 개봉교회주보 (반론청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된 교회 당회에서 신청인이 1차 제명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03
2007경기조정11	· 하남시 대 경인매일 (정정청구) 하남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하남시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03
2007경기조정12	· 하남시 대 경인매일 (정정청구) 하남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하남시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04
2007서울조정72	·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외 1인 대 서울경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방송회관 소유권을 방송위원회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신청사를 건축하고도 이전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205
2007광주조정4	· 길○○ 대 전남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사비를 들여 불우이웃에게 쌀을 기부한 것을 '재개발 단체'가 기부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206
2007전북조정10	· 렉○○ 주식회사 대 전주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7
2007서울조정73	· ○○○○○○○○ 학부모모임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대형 교복업체 3사에 수십억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07
2007서울조정74	· 이○○ 대 KBS-1TV (정정·손배청구) 단순 골절 환자가 신청인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패혈증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8
2007서울조정75	· 한○○ 대 디지털조선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조선닷컴 내 카페를 디지털조선일보사가 강제로 폐쇄시켜 피해를 입었다	209
2007서울조정76	· 보건복지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10
2007서울조정77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유지보수에 지원된 국가 예산이 사찰내 다른 건물의 복원사업으로 전용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11
2007서울조정78	· 건설교통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건설교통부 장관이 핵심 보직에 호남 출신을 임명하는 등 '고향 챙기기' 식 인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12

2007서울조정79	· 농림부 대 한겨레 (반론청구) 농림부가 한·미 협상에서 베이커리 제조용 쌀 등 일부 품목의 개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213
2007경기조정13	· 하남시 대 경기신문 (정정청구) 하남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하남시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214
2007대전조정1	· ○○○농업협동조합 대 충청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조합이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15
2007서울조정80	· ○○○○○○○ 학부모모임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대형 교복업체 3사에게 수십억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16
2007서울조정81	· 보건복지부 대 국민일보 (반론청구)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이전에 발표한 내용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17
2007서울조정82	· ○○물산 주식회사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군 방독면 정화통이 국방규격 기준에 미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18
2007서울조정83	· ○○○○○○○ 학부모모임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대형 교복업체 3사에게 수십억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220
2007서울조정84	· ○○○○○○○ 학부모모임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21
2007서울조정85	· 김○○ 대 투데이코리아 (정정청구) 신청인이 시술한 비뇨기와 수술이 부작용을 일으켜 환자가 성불구자가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삭제	222
2007서울조정86	· 국방부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국방부가 기획하고 도입하기로 한 유급지원병제도를 청와대가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223
2007서울조정87	· 김○○ 대 문화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시민단체 대표 직위를 이용하여 모 교육위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	224
2007서울조정88	· 김○○ 외 1인 대 KBS-1TV (손배청구) 가출 청소년과 부모가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봉하는 장면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25
2007서울조정89	· 한국○○공업협동조합 대 KBS-1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의 일부 임원과 대의원이 유령회사를 차려 수백억 원대의 관급 조정석 납품을 독점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26
2007서울조정90	· ○○○○○○○ 학부모모임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교복 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소속 간부가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27
2007서울조정91	· ○○○○○○서비스코리아(주)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작성한 디지털카메라 시장점유율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해 피해를 입었다	228
2007서울조정92	· (주)이비뉴스 대 CNB NEWS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운영중인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홍보에 동원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28
2007서울조정93	· (사)한국경영자총협회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고임금으로 한국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29
2007경남조정14	· 임○○ 대 양산시민신문 (손배청구) 양산시가 추진중인 토요상설무대의 준비소홀을 지적하면서 신청인과의 통화내용을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230
2007경남조정15	· 임○○ 대 양산뉴스 (손배청구) 양산시가 추진중인 토요상설무대의 준비소홀을 지적하면서 신청인과의 통화내용을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231
2007서울조정94	· (주)아이템○○ 외 1인 대 전자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이 게임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31
2007서울조정95	· 김○○ 대 MBC-TV (손배청구) 아들과 동반자살한 신청인의 아내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232
2007경기조정14	· 최영근 대 경인매일 (정정·손배청구) 공장개발부지 토목공사 과정에서 타인명의로 임야를 훼손하고도 보상없이 매각한 건축주가 화성시장의 사촌동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233
2007경기조정15	· 최영근 대 수도일보 (정정·손배청구) 공장개발부지 토목공사 과정에서 타인명의로 임야를 훼손하고도 보상없이 매각한 건축주가 화성시장의 사촌동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34
2007서울조정96	· 정동채 대 문화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의 뭉치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34
2007서울조정97	· 정동채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의 뭉치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35
2007서울조정98	· 정○○ 대 e조은뉴스 (정정·손배청구) 양녕대군의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의 토지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36
2007경기조정16	· 하남시 대 경인매일 (정정청구) 하남시가 직원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부당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36
2007경기조정17	· 하남시 대 경인매일 (정정청구) 하남시가 직원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부당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37
2007부산조정2	· 강○○ 대 KNN- TV (정정·손배청구)	

	뇌졸중으로 사망한 신청인의 형이 평소 혈압이 높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38
2007서울조정99	· 김○○ 대 파이낸셜뉴스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정치권으로부터 여러 차례 퇴짜를 맞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38
2007부산조정3	· 정○○ 대 e조은뉴스 (정정·손배청구) 양녕대군의 유덕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의 토지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40
2007대구조정2	· 김○○ 대 경북일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만취자를 지구대 사무실에 무단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41
2007서울조정100	· 김○○ 대 한겨레 (손배청구) 결혼정보회사의 단체미팅행사에 참가해 산을 오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242
2007서울조정101	· 농림부 대 한겨레 (반론청구)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농산물 품목 10가지를 개방예외품목으로 정하고, 이 중 다시 3~5가지 정도를 예외로 하는 방식으로 협상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43
2007대전조정2	· ○○구공무원노동조합 외 2인 대 충청투데이 (정정·손배청구) 공무원들이 연구원 주택 시공 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주고 건축 인·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44
2007서울조정102	· 김○○ 대 연합뉴스 (손배청구) 결혼정보회사의 단체미팅행사에 참가해 산을 오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246
2007서울조정103	· 산업자원부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우리 기업이 개발한 미얀마 가스전의 가스구매권을 중국에 빼앗길 경우 우리 정부의 자원외교가 실패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46
2007광주조정5	· 이○○ 대 광주KBS-1TV (정정·손배청구) 농민들이 신청인의 농기계 대리점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 온 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48
2007경기조정18	· 제51보병사단 대 경기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시건장치와 경계인력 없이 예비군 훈련용 총기를 수송하고 있어 도난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49
2007충북조정3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학교 ○○병원지부 대 중부매일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병원 노조집행부가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50
2007전북조정11	· 익산경찰서 대 전북일보 (정정청구) 익산경찰서가 납치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51
2007전북조정12	· (주)○○○○피시 대 J-TV (정정청구) 장수 거점 산지유통센터가 도입한 과일선별기가 일일 처리용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52
2007서울조정104	· 조기숙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특정 신문에 대한 기고 및 인터뷰를 금지하는 국정홍보처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53
2007서울조정105	· ○○○○○○포럼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비서관이 신청인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254
2007서울조정106	· 김○○ 대 MBC-TV (손배청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를 무단으로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55
2007경기조정19	· 이효선 대 경기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장기외유를 떠나 광명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56
2007서울조정107	· 기획예산처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지출비중을 축소해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56
2007서울조정108	· 황○○ 대 SBS-TV (손배청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과 실랑이하는 신청인의 모습과 차량번호가 방영되어 피해를 입었다	257
2007경기조정20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 인천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공사가 관리하는 장도유수지에 쓰레기 침출수가 섞인 폐수가 유입되자 이를 바다로 방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58
2007서울조정109	· ○○물산 주식회사 대 KBS-1TV (정정·반론청구) 군용 방독면의 정화통의 품질이 불량하며 기술부족으로 신형 방독면 개발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59
2007서울조정110	· 박○ 대 KBS-1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다단계회사 수사사건의 무죄확정으로 인해 검사직을 사직하고, 다단계 회사의 고문번호사로 일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60
2007서울조정111	· ○○자동차매매단지 운영위원회 대 KBS-2TV (정정청구) 자동차 등록대행업체의 임금체불문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매매단지를 무단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262
2007서울조정112	· 교육인적자원부 대 매일경제 (반론청구) OECD검토단이 우리 정부에 3불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도록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262
2007서울조정113	· 교육인적자원부 대 문화일보 (반론청구) OECD검토단이 우리 정부에 3불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도록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263
2007서울조정114	· 교육인적자원부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OECD검토단이 우리 정부에 3불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도록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264
2007서울조정115	· 교육인적자원부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OECD검토단이 우리 정부에 3불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도록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264

2007전북조정13	· ○○건설 주식회사 대 전북중앙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무면허업자에게 상습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주고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65
2007대전조정3	· ○○발전협의회 대 TJB-TV (정정·손배청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해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 90%가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66
2007경기조정21	· 학교법인 ○○학원 대 경기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학교부지 매각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68
2007서울조정116	· 최○○ 대 CNB NEWS (정정·손배청구) 중도에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지급을 거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삭제	269
2007서울조정117	· 이○○ 대 KBS-1TV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대학진학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술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0
2007서울조정118	· 송○○ 대 일간스포츠 (손배청구) 신청인이 누드 크로키 모델로 나선 현장 사진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271
2007대구조정3	· 산업자원부 대 대구MBC-TV (정정청구)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271
2007대구조정4	· 산업자원부 대 안동MBC-TV (정정청구)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273
2007대구조정5	· 산업자원부 대 포항MBC-TV (정정청구)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274
2007대전조정4	· 유성구 대 중앙매일 (정정·손배청구) 유성구청이 협소한 주차공간에 돼지를 키우는 등 이벤트성 전시행정을 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74
2007서울조정119	· (주)○○정보개발 대 MBC-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중국에서 중고 휴대폰전화기를 들여와 신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불법 복제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PR보도	275
2007서울조정120	· 김○○ 대 SBS-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자폐아인 아들을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외딴 집에 가두고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76
2007서울조정121	· 정○○ 대 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귀가 중 실종되었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78
2007서울조정122	· 농림부 대 매일경제 (반론청구) 농림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라북도와 개발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79

2007광주조정6	· (주)○○○○○순천 대 전남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오성산 인근이 골프장 건설로 인해 수중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81
2007대전조정5	· ○○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대 대전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여부를 놓고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82
2007서울조정123	· 박○○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중국에서 중고 휴대폰전화기를 들여와 신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불법복제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84
2007경남조정16	· ○○장례식장 (주)○○ 대 고성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장례식장이 지방도로변에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해 영업해왔으며 경쟁업체를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84
2007서울조정124	· 최○○ 대 연합뉴스 (손배청구) 추위로 움크리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85
2007서울조정125	· 대전동부경찰서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경찰이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 측의 신고를 무시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2차 폭행사태를 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86
2007서울조정126	· 이○○ 대 Mnet (손배청구) 신청인이 과거 성인영화배우였다는 사실을 방송 중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287
2007서울조정127	· (주)○○○○○매니지먼트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행정자치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도로명 주소 개선안'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88
2007서울조정128	· 대통령비서실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청와대의 지나친 군 인사 개입으로 검증과정이 지연돼 군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89
2007경기조정22	· 한○○ 대 광주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이 시 교부금에 대해 정산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그 중 일부를 목적 외로 유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90
2007서울조정129	· 우○○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비만치료제 처방 실태를 보도하면서 부작용과 무관한 신청인 병원 내·외부를 무단 촬영·방송하고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92
2007서울조정130	· 강○○ 대 MBC-TV (손배청구) 사건 제보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93
2007서울조정131	· 최재천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한·미 FTA 기밀문건 유출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294
2007서울조정132	· 최재천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신청인이 한·미 FTA 기밀문건 유출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95
2007경기조정23	· 정병국 대 평화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소속 지역구 토지의 개발특혜 밀약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95
2007전북조정14	· 구OO 대 J-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마을 하천 수문 앞에 수천 그루의 묘목을 심어 인근 마을의 침수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96
2007서울조정133	· 서OO 외 39인 대 MBN (정정·손배청구)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금품 상납과 편파판정 등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98
2007서울조정134	· 이OO 외 4인 대 대자보 (손배청구) 신청인들이 소속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비리척결 대회를 취재하면서 신청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299
2007서울조정135	· 최OO 대 MBC-TV (손배청구) 유괴 사건 범인의 거주지 주변을 취재하면서 신청인의 음성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등을 동의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300
2007서울조정136	· 전국개인OO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 개인택시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 모 지부가 조합원들에게 자동차보험 계약만기일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301
2007경기조정24	· 최OO 대 경기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공금을 유용했으며, 조합장 선거 규정을 부당하게 개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02
2007서울조정137	· 정OO 대 MBC-TV (반론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 감정원이 일정한 기준없이 영터리 감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304
2007서울조정138	· (주)스피드OOO 대 이코노미21 (손배청구) 지하철택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307
2007서울조정139	· 문OO 대 동아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특정신문 때리기에 앞장서 왔다면서 신문 시장점유율을 3개사 40%로 강력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08
2007서울조정140	· 민주노총 OO지역본부 대 매일경제 (정정청구) 신청인 소속 노조원들이 모 휴게소의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사측 조치를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	309
2007서울조정141	· 이OO 대 매일경제 (정정·손배청구) 민주노총 모 지역본부 소속 간부인 신청인이 노사분규 중인 모 휴게소의 경영진을 찾아가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	310
2007서울조정142	· 한국교육개발원 외 1인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기관이 정부의 대입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구보고서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311
2007서울조정143	· 한국교육개발원 외 1인 대 한국교육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기관이 정부의 대입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구보고서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312
2007서울조정144	· 박○○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이 중국에서 중고 휴대폰전화기를 들여와 신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불법복제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313
2007서울조정145	· 정○○ 대 한겨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동료 애니메이터의 자살 원인에 대해 진술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313
2007서울조정146	· 조○○ 대 MBC-TV (반론청구) 신청인 병원에서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14
2007서울조정147	· 교육인적자원부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 개혁이 대학들의 비협조로 실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16
2007서울조정148	· 이○○ 대 디지털타임스 (손배청구) 신청인이 타 기관 원장직 공모에 응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317
2007전북조정15	· 김○○ 대 전북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부하직원과 공동작업을 통해 얻어낸 성과를 자신만의 공로로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318
2007전북조정16	· 김○○ 대 전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부하직원과 공동작업을 통해 얻어낸 성과를 자신만의 공로로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319
2007전북조정17	· 심○○ 대 전북대중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회사 임원으로 소개된 전직 이사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20
2007서울조정149	· 안명옥 대 SBS-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의원실에 의사협회 직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인턴비 등을 의사협회장이 지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PR보도	320
2007경기조정25	· (재)경기문화재단 대 경인매일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문화재단이 문예진흥기금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산하 기관이 특정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21
2007서울조정150	· 김○○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영국에 유학중인 조기유학생 학부모로부터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323
2007서울조정151	· 농림부 대 한국경제 (반론청구) 한미 FTA 협상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만과 허위로 가득 차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25
2007부산조정4	· ○○○○종합사회복지관 대 울산여성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복지관이 저소득층의 복지보다 직원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27
2007부산조정5	· ○○응급환자이송단 ○○○지부 대 KNN-TV (반론청구) 신청인 응급환자이송단이 사고수습비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해 유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28
2007서울조정152	· (주)시민신문 대 시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시민신문사가 엉터리 자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배 타이틀을 사칭해 영리사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329
2007서울조정153	· 이○○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고춧가루 속의 섯가루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330
2007경기조정26	· (주)시민신문 대 경기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시민신문사가 엉터리 자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배 타이틀을 사칭해 영리사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331
2007경기조정27	· (주)시민신문 대 일간경기 (정정·손배청구) 시민신문사가 엉터리 자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배 타이틀을 사칭해 영리사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332
2007경기조정28	· (주)시민신문 대 전국매일 (정정·손배청구) 시민신문사가 엉터리 자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배 타이틀을 사칭해 영리사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333
2007경기조정29	· (주)시민신문 대 평화일보 (정정·손배청구) 시민신문사가 엉터리 자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배 타이틀을 사칭해 영리사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334
2007경남조정17	· 함안군 대 함안아라신문 (정정청구) 함안군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공장설립 허가를 냈으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 유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34
2007대구조정6	· 이한구 대 영남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지역구 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36
2007서울조정154	· 고경화 대 데일리서프라이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도시지역 보건지소의 철폐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삭제	337
2007서울조정155	· 김○○ 외 1인 대 위드뉴스 (손배청구) 집회현장에서 관계자들의 몸싸움을 만류하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사과보도	338
2007서울조정156	· 교육인적자원부 대 MBC-TV (반론청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위험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39
2007서울조정157	· 중앙인사위원회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부처간 경쟁과 개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체도가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41

2007경기조정30	· 박○○ 외 2인 대 경인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이 인사권을 이용, 환경미화원들에게 금품상납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42
2007서울조정158	· 박○○ 대 전자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중국에서 중고 휴대폰전화기를 들여와 신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불법복제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343
2007경기조정31	· ○○중학교 대 경인일보 (정정·손배청구) 모 중학교가 감독과 코치간의 갈등을 이유로 기존 감독을 해임하고 축구와 무관한 사람을 축구부 감독으로 임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44
2007경기조정32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 부천자치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주택조합 집행부가 대책도 없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려해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45
2007경기조정33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 부천자치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주택조합의 비위로 인해 집행부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46
2007서울조정159	· 중앙인사위원회 대 국민일보 (반론청구)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인사 정책이 오히려 여성 승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47
2007서울조정160	· 한국○○○○(주) 대 아이뉴스24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자금을 유용했고, 이사회에 연임불허 결정으로 불명에 퇴진하게 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48
2007서울조정161	· 이○○ 대 문화일보 (손배청구)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학년과 동네이름 등을 보도해 신청인의 신원이 쉽게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I	350
2007서울조정162	· 이○○ 대 서울신문 (손배청구)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학년과 동네이름 등을 보도해 신청인의 신원이 쉽게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II	351
2007서울조정163	· 이○○ 대 스포츠서울 (손배청구)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학년과 동네이름 등을 보도해 신청인의 신원이 쉽게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III	351
2007경기조정34	· 이○○ 대 경기일보 (손배청구)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학년과 동네이름 등을 보도해 신청인의 신원이 쉽게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IV	352
2007경기조정35	· 이○○ 대 경인일보 (손배청구)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학년과 동네이름 등을 보도해 신청인의 신원이 쉽게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V	352
2007광주조정7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 대 광남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353
2007광주조정8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 대 광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354
2007광주조정9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 대 남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354
2007광주조정10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 대 호남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355
2007광주조정11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 대 호남매일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355
2007광주조정12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 대 순천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 반론보도	356
2007광주조정13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 대 광주전남데일리안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356
2007경남조정18	· 통영시 외 1인 대 미륵산 (정정 · 손배청구) 통영시가 케이블카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57
2007경기조정36	· 광명시 대 수도일보 (정정청구) 광명시가 불법 파행운영을 묵인하는 등 특정 운수회사와 결 탁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59
2007부산조정6	· 부산시○○협회 대 부산KBS-1TV (반론청구) 신청인 협회 내부의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내홍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60
2007대전조정6	· 태안군 대 서해안신문 (정정청구) 태안군수가 부동산 특혜 의혹 및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61
2007경기조정37	· 학교법인 ○○학원 대 경인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학교법인이 건설사에 매각됐으며 현재 학교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63
2007광주조정14	· 목포경찰서 대 목포투데이 (정정청구) 목포경찰서가 시의원 전과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65
2007경남조정19	· (주)○○디지털넷 대 함안아라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중계유선방송이 신규 케이블 방송에 상당수 가입자를 뺏겼으며 한전과 짜고 케이블 방송의 전주 사용을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66
2007전북조정18	· 정읍경찰서 대 전북연합신문 (정정 · 손배청구) 정읍경찰서가 폭행당한 임신부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뒤바뀐 조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68
2007서울조정164	· 한국전력공사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한전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사실상 반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369
2007서울조정165	· 한국전력공사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한전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사실상 반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370
2007서울조정166	· 김○○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영국에 유학중인 조기유학생 학부모로부터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371
2007서울조정167	· 선○○ 대 시사저널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2003년 모 여성잡지에 기고했던 서평을 최근호에 무단으로 전재하면서 신청인이 직접 기고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 및 손해배상	372
2007서울조정168	· 한국방송공사 외 1인 대 내일신문 (정정·손배청구) 의학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보조출연자의 사망에 신청인 방송사가 관련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373
2007서울조정169	· 한국방송공사 외 1인 대 미디어오늘 (정정·손배청구) 의학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보조출연자의 사망에 신청인 방송사가 관련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374
2007서울조정170	· 한국방송공사 외 1인 대 브레이크뉴스 (정정·손배청구) 의학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보조출연자의 사망에 신청인 방송사가 관련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정정보도	375
2007서울조정171	· 박○○ 대 메트로 (손배청구) 대학 축제기간 중 '펀치왕 이벤트'에 참가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 - 손해배상	377
2007서울조정172	· 박○○ 대 AM7 (손배청구) 대학 축제기간 중 '펀치왕 이벤트'에 참가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I - 손해배상	377
2007서울조정173	· 박○○ 대 연합뉴스 (손배청구) 대학 축제기간 중 '펀치왕 이벤트'에 참가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II - 손해배상	378
2007서울조정174	· 낙동강유역환경청 대 SBS-TV (정정청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골프장 허가과정에서 현장 답사도 하지 않은 채 줄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78
2007서울조정175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 사업단이 기존 미군기지를 포천시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80
2007서울조정176	· 중앙인사위원회 대 KBS-1TV (반론청구) 신청인 위원회가 운영하는 국외훈련제도에 총체적 부실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81
2007서울조정177	· 보건복지부 대 한겨레 (반론청구)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수정한 이유가 의료계의 로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반론보도	383
2007서울조정178	· 고○○ 대 컴퓨터타임즈 (정정·손배청구)	

	전자상가에서 외국산 홈시어터가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385
2007대전조정7	· 정○○ 대 아산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프락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 심사위원으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385
2007대전조정8	· 태안군 외 1인 대 서해안신문 (정정청구) 태안군수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풀리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387
2007부산조정7	· 박형준 대 부산KBS-1TV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과 가족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91
2007서울조정179	· (주)비○○○○ 외 1인 대 이데일리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기업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명목뿐인 회사에 투자해 거액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는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394
2007전북조정19	· 익산시 대 소통뉴스 (정정·손배청구) 익산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사업에 각종 문제 및 비리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96
2007광주조정15	· 백○○ 대 광주전남데일리안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의 바이라인이 다른 이름으로 교체돼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397
2007서울조정180	· 조○○ 대 KBS-2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공덕동 재래시장 화재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 및 손해배상	398
2007서울조정181	· 조○○ 대 YTN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공덕동 재래시장 화재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 및 손해배상	399
2007서울조정182	· (주)한국○○의료기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여전히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00
2007광주조정16	· 나주시 대 나주뉴스 (반론청구) 나주시가 불리한 조건으로 드라마 세트장 건립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01
2007충북조정4	· ○○○원예영농조합법인 대 새충청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영농조합이 하천용지 5천여 평을 불법으로 성토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반론보도	402
2007서울조정183	· 김○○ 대 KBS-2TV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사학비리 관련자로서 정상화되고 있는 학교를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404
2007부산조정8	· (주)○○감정평가법인 대 KNN-TV (정정청구) 신청인이 평가한 재개발지구의 건물감정액이 이웃한 건물과 2배 가량 차이가 있어 엉터리 감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06

2007대전조정9	· 전국○○노동조합 대 KTX매거진 (반론 · 손배청구) KTX 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철도공사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407
2007서울조정184	· 통일부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주한 미국대사가 남북열차 운행 전 날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08
2007서울조정185	· 김○ 대 SBS-TV (추후 · 손배청구) 신청인의 살인 · 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 - 추후 및 손해배상	409
2007서울조정186	· 박○○ 대 동작신문 (정정 · 손배청구) 사당5동 재건축을 추진중인 신청인이 재건축 개발권을 50억 원에 매각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10
2007서울조정187	· (주)○○코리아 대 가스사업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용 LPG용기가 품질 불량으로 파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411
2007서울조정188	· (주)엠○○ 대 MBC-TV (정정청구) 지문에 의한 적성검사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14
2007제주조정3	· 김○ 대 제민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의 살인 · 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	415
2007제주조정4	· 김○ 대 제주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의 살인 · 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I	415
2007제주조정5	· 김○ 대 한라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의 살인 · 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V	416
2007제주조정6	· 김○ 대 JIBS-TV (추후 · 손배청구) 신청인의 살인 · 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V - 추후보도	416
2007제주조정7	· 김○ 대 제주KBS-1TV (추후 · 손배청구) 신청인의 살인 · 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VI - 추후보도	416
2007제주조정8	· 김○ 대 제주MBC-TV (추후 · 손배청구) 신청인의 살인 · 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VII - 추후보도	417
2007서울조정189	· ○○농산(주) 대 CNB저널 (정정 ·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분뇨처리시설을 불법증축하고, 외국인 고용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 및 반론보도	418
2007경기조정38	· 수원시 대 중부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선거당시 참모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금강산 여행을 떠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19
2007서울조정190	· 국정홍보처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국정홍보처가 언론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왜곡보도했다 - 반론보도	420
2007서울조정191	· 정○○ 대 SBS-TV (손배청구) 신청인이 프로포즈 받으면서 우는 장면을 동의없이 방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	422
2007서울조정192	· 한○○ 대 건설교통신문 (정정청구)	

	전무이사인 신청인이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22
2007서울조정193	· ○○농산(주) 대 CNB NEWS (정정 ·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분뇨처리시설을 불법 증축하고, 외국인 고용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 및 반론보도	423
2007서울조정194	· 김○○ 대 KBS-2TV (정정 · 손해청구) 용산 전자상가의 강매 현장을 보도하면서 판매원인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424
2007광주조정17	· 순천시 대 순천시민의신문 (정정청구) 순천시가 물품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25
2007광주조정18	· 순천시 대 순천시민의신문 (반론청구) 순천시가 수의계약 특혜의혹을 보도한 신문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26
2007서울조정195	· 국방부 대 문화일보 (반론청구) 남북 경의 ·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관련 협상에서 한국 측이 저자세로 북한 측의 선처에만 매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27
2007서울조정196	· ○○○레저(주) 대 MBC-TV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28
2007서울조정197	· 영상홍보원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국영방송 KTV가 정치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29
2007서울조정198	· 김○○ 대 뉴시스 (손해청구) 영화배우 전도연의 귀국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이 동의없이 촬영 ·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	430
2007전북조정20	· 한국○○연합회 대 전북일보 (정정청구) 무주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결혼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431
2007전북조정21	· 한국○○연합회 대 전주일보 (정정청구) 무주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결혼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432
2007서울조정199	· 대한안과의사회 대 MBC-TV (정정청구) 라식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사례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433
2007광주조정19	· 진도○○법인 대 대한일보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조합의 활어판매장이 허가 목적과 달리 할인마트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사과보도	435
2007광주조정20	· 진도○○법인 대 호남일보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조합의 활어판매장이 허가 목적과 달리 할인마트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437
2007광주조정21	· 박○○ 대 대한일보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진도군 의원에게 한 이권청탁이 거절당하자 보복성 기사를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사과보도	437

2007광주조정22	· 박○○ 대 호남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진도군 의원에게 한 이권청탁이 거절당하자 보복성 기사를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439
2007전북조정22	· 학교법인 전주○○학원 외 1인 대 새전북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이 교수를 무더기로 징계한 이유가 전임 학장의 비리사실을 고발한데 대한 보복이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40
2007대전조정10	· 박○○ 대 엔에스아이뉴스 (정정·손배청구) 부읍장인 신청인이 민원처리는 뒤로한 채 지역공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웃음과 빈축을 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보도	442
2007서울조정200	· 안○○ 대 한국경제 (반론청구) 신청인이 인터뷰한 내용과 다르게 왜곡하여 회사 측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443
2007서울조정201	· 정○○ 대 한국경제 (반론청구) 신청인이 인터뷰한 내용과 다르게 왜곡하여 회사 측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444
2007서울조정202	· 유기준 대 오마이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국회 견학 온 학생에게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45
2007서울조정203	· 서○○ 대 노컷뉴스 (반론·손배청구) 환경단체 간부인 신청인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로부터 조사용역을 수주하면서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46
2007서울조정204	· 과학기술부 대 한국경제와우TV (정정청구) 과학기술부 산하단체들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48
2007경기조정39	· 황○○ 대 경기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대기발령 받은 것을 사실상의 파면이라고 과장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449
2007서울조정205	· ○○터미널전자상가 동우회 외 6인 대 KBS-TV (정정청구) 모 전자상가 상인단체들이 소비자 피해신고에 대한 처벌수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51
2007광주조정23	· 나주시 대 나주뉴스 (정정청구) 나주시가 시장의 문중 땅을 생물산업지원센터 부지로 선정하여 신 씨 문중에 특혜를 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52
2007서울조정206	· 장○○ 대 데일리안 (손배청구) 성전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잘못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453
2007서울조정207	· 영상홍보원 대 서울경제 (정정청구) 국정홍보채널인 KTV가 공공채널로 사업권을 받고도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 불법방송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54
2007서울조정208	· (주)○○코리아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투척용 소화기가 목재 화재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등 잘못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제품을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455

2007대구조정7	· 포항시 대 경북문화신보 (정정·반론청구) 포항시가 교량을 개설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설계를 변경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57
2007전북조정23	· 이○○ 대 전주MBC-TV (정정청구) 축사를 짓기 위해 농지전용을 요청한 민원을 담당공무원인 신청인이 횡방놓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58
2007서울조정209	· 홍○○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조각한 지리산 서암정사 불상을 다른 석공이 조각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 사과	459
2007서울조정210	· 손○○ 대 SBS-TV (손배청구) 노숙형제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큰아버지인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입었다 - PR보도	460
2007서울조정211	· (주)○○웨딩스쿨 대 MBC-TV (정정·반론청구) 국제결혼대행업체인 신청인이 조건을 속이거나 외국신부들을 감금하라는 교육을 시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61
2007서울조정212	· (주)○○의료기 대 메디컬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에서 만든 의료기기가 온도 등이 부정확하여 위험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63
2007서울조정213	· 국정홍보처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국정홍보처장이 “내가 부르면 장관들도 뛰어온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64
2007서울조정214	· 양○○ 대 MBC-TV (손배청구) 국제결혼대행업체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업체 직원인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465
2007서울조정215	· 오○○ 대 조선일보 (손배청구)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무릎 및 발목 부상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전신모습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465
2007서울조정216	· ○○○ 이기는 사람들 대 연합뉴스 (정정청구) 신경섬유종이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66
2007경기조정40	· 박○○ 대 중부일보 (정정·손배청구) 소방서장인 신청인이 관내 유흥주점에서 성적 비하발언을 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67
2007부산조정9	· 울산광역시 남구 대 울산e-조은뉴스 (정정청구) 울산 남구청이 불법으로 채석허가를 내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68
2007부산조정10	· 성○○ 외 3인 대 울산e-조은뉴스 (손배청구) 울산 남구청 소속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불법으로 채석허가를 내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69
2007서울조정217	· 국가청렴위원회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행적으로 출입기자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브리핑이 거짓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69
2007서울조정218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현대차 노조'라고	

	잘못 보도했다 I	470
2007서울조정219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현대차 노조'라고 잘못 보도했다 II	471
2007서울조정220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현대차 노조'라고 잘못 보도했다 III	472
2007서울조정221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현대차 노조'라고 잘못 보도했다 IV	472
2007충북조정5	· 연OO 대 충청리뷰 (정정·손배청구) 단속공무원인 신청인이 노래방협회 지회장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72
2007경남조정20	· 이OO 외 1인 대 경남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이 폐차장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각종 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474
2007경남조정21	· 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 경남매일신문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채도장공사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사전결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75
2007서울조정222	· (주)OO미술 외 1인 대 KBS-2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김모 화백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작품판매를 막고, 작품도 강탈해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77
2007경기조정41	· 이OO 대 목재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목재방부약제인 CCA의 KS등록과정에 개입하고, CCA가 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80
2007광주조정24	· 이OO 대 광주매일 (정정·손배청구) 농협 양곡창고 진출입로를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이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482
2007광주조정25	· 이OO 대 전남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농협 양곡창고 진출입로를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이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483
2007서울조정223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금속노조의 한미 FTA 무효화 총파업 결의가 중앙집행위원 구성에 강경파가 다수이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484
2007대전조정11	· OO건설(주) 대 보령시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재하도급 업체에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불하고 공사대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85
2007서울조정224	· OO대학교 병원 대 메디게이트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병원 병원장 공모에서 특정 교수의 지원서가 공모 마감시한이 지난 뒤에 접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86
2007서울조정225	· 윤OO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의 논문 중복게재가 표절 및 조작 등과 같은 수준의	

	연구부정행위인 것처럼 과장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487
2007서울조정226	· 이○○ 대 동아일보 (정정·손배청구) 서울시 의원인 신청인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를 선언한 74명의 서울시 의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I	488
2007서울조정227	· 이○○ 대 데일리안 (정정·손배청구) 서울시 의원인 신청인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를 선언한 74명의 서울시 의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II	489
2007서울조정228	· (주)문화방송 대 월간조선 (정정청구) 신청인 방송사가 제작한 고발프로그램으로 인해 한 화장품 업체가 부당한 비판을 받고 한국을 떠나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489
2007서울조정229	· 김○○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같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492
2007광주조정26	· 엄○○ 대 목포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취재원을 공갈·협박하고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93
2007경기조정42	· (주)중○ 대 목재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엉터리 방부목재를 생산·유통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94
2007경기조정43	· (주)○○건설 대 인천일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건설한 아파트 단지와 관련해 여러 잡음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96
2007광주조정27	· ○○○○자동차공업(주) 외 1인 대 전광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부당하게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경매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 및 손해배상	498
2007광주조정28	· ○○○○자동차공업(주) 외 1인 대 큰여수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부당하게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경매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500
2007서울조정230	· ○○엔터테인먼트(주) 대 MBC-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 소속 외국인 무용수들이 공연 중 부상을 당해도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01
2007서울조정231	· 송○○ 대 오마이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보도자료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02
2007서울조정232	· 대통령비서실 대 헤럴드경제 (정정청구) 청와대가 일부 정부기관에 대해 공식발표 외에 업무관련 기사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02
2007서울조정233	· 조기숙 외 3인 대 신동아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사석에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이길 것 같아서 노후보 쪽으로 왔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03
2007서울조정234	· 교육인적자원부 대 국민일보 (정정청구) 교육인적자원부가 개발중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외고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05
2007서울조정235	· 조○○ 대 데일리서프라이즈 (정정청구) 신청인이 작성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신당 관련 기사가 오보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05
2007강원조정2	· 이○○ 대 강릉MBC-TV (손배청구) 모 중학교 유도부의 과도한 훈련을 지적하면서 타 고교 유도부 코치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507
2007경기조정44	· 용인시 대 인천일보 (정정청구) 용인시장이 음주상태에서 수행직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07
2007서울조정236	· 김○○ 외 2인 대 서울신문 (정정·손배청구) 신림동 고시촌 식당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508
2007대전조정12	· (유)한○○가스 대 보령시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가스가격 담합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509
2007대구조정8	· 정○○ 대 매일신문 (정정·반론·손배청구)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인 신청인이 수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12
2007대구조정9	· 정○○ 대 경북문화신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거액의 금품 로비를 통해 140억 원짜리 토목공사 하도급을 따낸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14
2007서울조정237	· 황○○ 대 매일경제 (정정·손배청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중인 신청인이 확성기로 욕설을 하며 그 소음의 크기가 기준치 이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	515
2007서울조정238	· 최○○ 대 KBS-1TV (추후청구) 신청인이 고급 주택을 털어 호화생활을 해온 절도범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I - 추후보도	516
2007서울조정239	· 최○○ 대 일요신문 (추후청구) 신청인이 고급 주택을 털어 호화생활을 해온 절도범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II - 추후보도	517
2007전북조정24	· 익산시 대 소통뉴스 (정정·손배청구) 익산시장이 쓰레기소각장 설치업자 선정과정에서 커미션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518
2007서울조정240	· 국방부 대 주간동아 (반론청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영문화개선사업이 오히려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22
2007서울조정241	· 김○○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 소유의 도곡동 땅이 매각된 이유가 인척인 이명박 후보 형제의 매입요구 때문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23
2007광주조정29	· 전라남도 대 광주MBC-TV (정정청구) 전라남도가 '전남 F1 대회' 사전 타당성에 관한 중간용역보고서 상의 적자예상 결과를 흑자로 둔갑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24
2007서울조정242	· (주)○○프렌차이즈 대 이데일리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동일 상권내에 같은 업종의 가맹점을 입점시켜 기존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26
2007광주조정30	· (주)○○산업 대 여수MBC-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27
2007서울조정243	· 이○○ 대 서울일보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군의회 직원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528
2007서울조정244	· 이○○ 내외일보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군의회 직원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529
2007강원조정3	· 김○○ 외 2인 대 춘천MBC-TV (손배청구) 살인사건 피해자의 가족인 신청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529
2007경기조정45	· 이○○ 대 시대일보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군의회 직원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530
2007광주조정31	· 이○○ 대 진도뉴스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군의회 직원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530
2007서울조정245	· 김○○ 외 3인 대 MBC-TV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의 아버지가 뇌졸중 환자인 어머니를 돌보다가 숨진 지 사흘만에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 및 손해배상	531
2007서울조정246	· ○○○고등학교 대 오마이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학교가 동일 학군내의 타 고교에서 불법적으로 전학생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32
2007서울조정247	· (사)대한안경사협회 대 KBS-1TV (반론청구) 안경점이 명품수입안경테를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34
2007서울조정248	· (주)독립신문사 외 1인 대 오마이뉴스 (반론 · 손해청구) 신청인이 기획특집으로 보도한 '만화' 관련 기사가 엉터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535
2007서울조정249	· 이○○ 외 13인 대 목회자신문 (정정청구) 모 장로회의 총회 재판국에서 이중재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37
2007서울조정250	· 황○○ 외 1인 대 일요시사 (정정 · 손해청구) 직장상사에게 살해된 신청인들의 딸이 가해자와 내연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39
2007부산조정11	· 신○○ 대 울산매일 (정정청구) 신청인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시민을 범법자 취급하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40
2007서울조정251	· 이○○ 대 MBC-TV (정정 · 손해청구) 추락사고가 난 리프트가 신청인 회사의 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41
2007서울조정252	·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 인터넷미디어오늘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협회가 입법청원한 신문법 개정안이 포털사이트의 뉴스유통을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41
2007서울조정253	· 정○○ 대 마포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소유의 건물 재건축공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43
2007전북조정25	· 전북○○협동조합 대 새전북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544
2007전북조정26	· 전북○○협동조합 대 전북대중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545
2007전북조정27	· 전북○○협동조합 대 전북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546
2007전북조정28	· 전북○○협동조합 대 전북매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546
2007전북조정29	· 전북○○협동조합 대 전북연합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547
2007전북조정30	· 전북○○협동조합 대 전북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 반론보도	547
2007전북조정31	· 전북○○협동조합 대 전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 정정보도	548
2007서울조정254	· 송○○ 대 코리아헤럴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외국인 강사를 모집하면서 인종차별적인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48
2007서울조정255	· 서울시○○연맹 대 내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연맹이 우수선수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운영비로 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50
2007서울조정256	· 박○○ 대 주간조선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남미 출장을 주관해 파문을 일으킨 단체에 소속된 모 연구원의 감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50
2007서울조정257	· 김미화 대 동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덕분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맡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2
2007전북조정32	· (사)완주군○○연합회 외 1인 대 완주신문 (반론청구) 신청인 단체가 유사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52
2007광주조정32	· 오○○ 대 전남일보 (정정청구)	

	아파트 부녀회 간부가 수년간 현 옷과 공병 등의 수령대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54
2007서울조정258	· 김○○ 대 한국경제와우TV (손배청구) 초고속인터넷 해지 제도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지 업무와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555
2007서울조정259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자동차 4사 노동조합이 정치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5
2007서울조정260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대 헤럴드경제 (정정청구) 자동차 4사 노동조합이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6
2007서울조정261	· 장○○ 대 한국경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총의 전략에 따라 파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7
2007서울조정262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신청인 노조의 한미 FTA 저지 투쟁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8
2007서울조정263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대 문화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노조의 파업이 노조간부의 출세를 위한 정치파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59
2007서울조정264	· 오○○ 대 뉴시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아들의 죽음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60
2007서울조정265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 대 디지털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시위관련 사진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61
2007서울조정266	· 김○○ 외 3인 대 KBS-1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의 아버지가 뇌졸중 환자인 어머니를 돌보다가 숨진 지 사흘만에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손해배상	562
2007광주조정33	· 박○○ 대 대한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토지매입 대행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63
2007광주조정34	· 안○○ 대 남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주민행사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63
2007경기조정46	· 하남시 대 동부교차로저널 (정정청구) 하남시가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확장, 송파구와 성남시의 물량도 처리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64
2007경기조정47	· 부천시 대 부천자치신문 (정정청구) 부천시가 행자부의 재정평가조사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 판정을 받았다는 등 부천시정을 폄하해 피해를 입었다	565
2007충북조정6	· (주)○○○하우징 대 퍼스트데일리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시공도 하지 않고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해 임주자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66

2007서울조정267	· (주)○○○여행사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경품사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67
2007서울조정268	· 인천○○○입주예정자협의회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인천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에 2차단지 분양가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67
2007서울조정269	· 전○○ 대 오마이뉴스 (반론청구) 신청인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568
2007강원조정4	· 김○○ 대 원주MBC-TV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부동산업자들과 짜고 종종 사람들 몰래 백억 원대의 땅을 처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69
2007부산조정12	· 전○○ 대 국제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571
2007부산조정13	· 전○○ 대 울산매일 (반론청구) 신청인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571
2007부산조정14	· 전○○ 대 울산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572
2007부산조정15	· 전○○ 대 UBC-TV (반론청구) 신청인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572
2007대구조정10	· 김○○ 대 경북문화신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취재기자를 불법으로 감금한 정신병원 원장을 두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73
2007서울조정270	· ○○대학교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575
2007서울조정271	· ○○대학교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576
2007서울조정272	· ○○대학교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577
2007서울조정273	· ○○대학교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578
2007서울조정274	· ○○대학교 대 매일경제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578
2007서울조정275	· ○○대학교 대 연합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578
2007서울조정276	· 김무성 대 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명박 캠프의 4인방을 배제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79
2007서울조정277	· (주)○○○○기획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해당구청의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대형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80
2007서울조정278	· 이○○ 대 주간동아 (정정청구) 신청인이 작고한 화가의 작품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80
2007서울조정279	· 유○○ 대 MBC-TV (정정청구) 종교단체 집단변사사건을 다시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582
2007경남조정22	· (주)○○세상 대 창원KBS-1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중국산 명태를 한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83
2007서울조정280	· (사)대한의사협회 대 경향신문 (반론청구) 신청인 협회가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584
2007충북조정7	· 김○○ 대 충청매일 (정정청구) 신청인이 토지 매입 당시 불법명의신탁을 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85
2007충북조정8	· 한○ 대 충청리뷰 (정정·손배청구) 시립예술단체의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무협의 판결난 사안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586
2007충북조정9	· 변○○ 대 충청리뷰 (손배청구) 시립예술단체의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사과보도	587
2007충북조정10	· 황○○ 대 충청리뷰 (손배청구) 시립예술단체의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사과보도	588
2007충북조정11	· 김○○ 대 충청리뷰 (손배청구) 시립예술단체의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사과보도	588
2007서울조정281	· 서울○○초등학교 대 한겨레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학교가 학생들에게 '성적 줄세우기'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89
2007서울조정28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민주노총의 개입으로 이랜드 노사 간 타협이 불가능해지고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90
2007대전조정13	· 충북개발공사 대 충청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공사가 민간개발 사업을 가로채려다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백지화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91

2007서울조정283	· 시○○ 대 KBS-2TV (반론청구)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593	593
2007서울조정284	· 교육인적자원부 대 해럴드경제 (정정청구) 교육부가 로스쿨 적정 인원을 2,000명 수준으로 보고, 학교별 정원을 150명 이하로 책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94	594
2007서울조정285	· 고진화 대 한겨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2005년 다단계 회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95	595
2007서울조정286	· 이○○ 대 한겨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방문판매법 개정안 발의 당시, 다단계 회사로부터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96	596
2007경기조정48	· 임○○ 외 1인 대 인천신문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모 시행사 간부와 공모해 허위서류를 꾸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97	597
2007서울조정287	· (사)대한의사협회 대 KBS-1TV (반론청구) 신청인 협회가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598	598
2007서울조정288	· 우○○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현대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초동 땅이 이명박 후보 개인이 매입한 것이라고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 599	599
2007서울조정289	· 조기숙 대 월간조선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의 조부가 일제시대 친일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599	599
2007서울조정290	· 전국○○○○노동조합 대 화곡동교회 홈페이지 (정정청구) 신청인 노조가 교회를 뒤흔들려하고 있다는 장로의 설교는 사실이 아니다 601	601
2007서울조정291	· 한국○○○○협회 대 한국광고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옥외광고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동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02	602
2007충북조정12	· 이○○ 외 2인 대 나우리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골프접대를 받고 해당 골프장에 대한 고발성 기사를 무마하기로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603	603
2007서울조정292	· ○○프로세스 주식회사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수입하는 질소분석장비의 견적가격이 신제품에 비해 비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05	605
2007대전조정14	· 전국축협노동조합 ○○지부 대 금산저널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축협노조가 강경전면파업을 3년여 동안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06	606
2007서울조정293	· 조○○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의 천성산 보호를 위한 단식이 득이 되지 못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607	607

2007서울조정294	· 김○○ 대 MBC-TV (손배청구)	
	여성난자매매실태를 방영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를 음성변조없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608
2007서울조정295	· 이○○ 외 1인 대 SBS-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609
2007서울조정296	· 의왕소방서 대 한겨레 (정정청구)	
	의왕소방서가 화재진압을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10
2007서울조정297	· ○○대학교 대 동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611
2007서울조정298	·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외 1인 대 KBS-1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재개발 공사비를 인상해 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612
2007서울조정299	·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외 1인 대 국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재개발 공사비를 인상해 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613
2007서울조정300	·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외 1인 대 동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재개발 공사비를 인상해 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정정 및 반론보도	614
2007서울조정301	·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외 1인 대 한국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재개발 공사비를 인상해 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정정 및 반론보도	615
2007서울조정302	· (주)이○○ 외 1인 대 MBC-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7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15
2007서울조정303	· 길○○ 대 뉴시스 (손배청구)	
	물에 빠져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이틀 후에 숨진 신청인의 딸이 사건 당일 이미 익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616
2007서울조정304	· ○○○○환경운동연합 외 4인 대 인터넷환경일보 (정정·손배청구)	
	재건축아파트의 석면철거에 대한 환경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17
2007제주조정9	· 강○○ 대 한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18
2007서울조정305	· 전○○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의 아들이 학업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19
2007서울조정306	· 양○○ 대 KBS-1TV (정정·손배청구)	
	성형열풍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환자들에게 성형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기사삭제	620
2007서울조정307	· 최○○ 대 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의처증이 있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가정을 파탄시킨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620
2007서울조정308	· (주)○○디앤씨 대 SBS-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신축중인 콘도를 불법으로 사전분양했으며, 부당한 프리미엄을 취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21
2007서울조정309	· 이명박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23
2007서울조정310	· 장○○ 대 주간동아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다른 화가의 표현기법을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24
2007서울조정311	· (주)구○○ 대 인터넷환경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농경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25
2007서울조정312	· (유)○○마인드 외 1인 대 매일노동뉴스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한 외국계 금융사의 인사에 개입해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26
2007경기조정49	· 정○○ 대 Story-On (손배청구) 에인대행 아르바이트인 '에완남'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신청인의 동의없이 인터뷰한 내용과 사진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627
2007서울조정313	· 이재오 대 연합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별도의 집무실을 차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628
2007서울조정314	· 이재오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별도의 집무실을 차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628
2007서울조정315	· 이재오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별도의 집무실을 차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629
2007경기조정50	· 이○○ 대 광명지역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광명시의 추경예산안이 편법으로 편성되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29
2007서울조정316	· 김○○ 대 매일경제 (손배청구) 임신부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630
2007경기조정51	· 장○○ 대 뉴스앤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여성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진료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30
2007서울조정317	· (주)아○○○ 대 한국경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짝퉁 브랜드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수정	631
2007서울조정318	· 이○○ 대 국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동국대에서 신정아 씨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632
2007서울조정319	· 이○○ 대 쿠키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이 동국대에서 신정아 씨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633
2007서울조정320	· 박○○ 대 한국안경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품질이 낮고 A/S발생이 빈번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33
2007서울조정321	· 하남시 대 MBC-TV (정정청구)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독선적 행정을 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34
2007서울조정322	· (주)○○○스포츠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상표등록한 제품이 모조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36
2007서울조정323	· 국정홍보처 외 4인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부처의 홍보담당자들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37
2007서울조정324	· 국정홍보처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가 기자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38
2007서울조정325	· 국정홍보처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정부가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송고실을 3곳만 남기고 통폐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39
2007충북조정13	· 김○○ 대 청주기별 (손배청구) 신청인이 모 대학 미화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무단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사과보도	640
2007서울조정326	· 박○○ 대 비즈니스맨 (손배청구) 내비게이션 리콜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641
2007서울조정327	· 국정홍보처 대 SBS-TV (정정청구) 국정홍보처가 엠바고를 위반한 기자에 대한 부처별 징계 운영지침을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41
2007서울조정328	· ○○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대 관악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이 잔혹하고 충격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42
2007서울조정329	· 김○○ 대 MBC-TV (손배청구) 신정아 씨 학위 조작 파문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인터뷰를 몰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644
2007서울조정330	· 환경부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환경부가 통합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브리핑때 소속 공무원과 연구용역기관 직원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645
2007서울조정331	· 환경부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환경부가 통합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브리핑때 소속 공무원과 연구용역기관 직원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646
2007서울조정332	· (주)○○○○코퍼레이션 대 머니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잘못된 통계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47
2007경기조정52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 경인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공사가 인허가 절차없이 쓰레기매립지에 골프장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48
2007경남조정23	· 정○○ 대 마산MBC-TV (추후청구) 신청인이 동생을 폭행한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649
2007서울조정333	· 한국국방연구원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국방연구원의 안보센터장 교체가 외부의 개입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650
2007서울조정334	· (주)메디○○○ 대 KBS-1TV (정정청구) 진동운동기가 다이어트효과가 없으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651
2007서울조정335	· 정○○ 대 MBC-TV (정정 · 손배청구) 정신병원 원장인 신청인이 환자남편의 의견만 듣고 부인을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53
2007경기조정53	· ○○고등학교 대 전국매일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학교가 관광버스 업체와 불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54
2007전북조정33	· 박○○ 대 전북중앙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병원장에게 과잉충성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656
2007서울조정336	·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육군이 중대급 마일즈 사업을 중단하면서 군 내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56
2007전북조정34	· 이○○ 대 새전북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기획하여 다녀온 유럽 문화탐방이 준비소홀로 당초 취지와 크게 달라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58
2007서울조정337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 수산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조합의 내분으로 1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59
2007강원조정5	· (주)○○○○페스티벌 대 인제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기업이 추진중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59
2007서울조정338	· ○○투자증권노동조합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모 증권사가 비정규직을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60
2007서울조정339	· 경기도의사회 외 1인 대 데일리팜 (정정청구)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휴진 불참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61
2007서울조정340	· 국정홍보처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국정홍보처가 부처 홍보업무 평가시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만 해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662
2007서울조정341	· 국정홍보처 대 연합뉴스 (반론청구)	

	국정홍보처가 부처 홍보업무 평가시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만 해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663
2007서울조정342	· 한국○○연구원 외 1인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원장이 다른 사람이 번역한 책에 자신을 번역자로 올려 출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64
2007대전조정15	· 경○○ 대 대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청백봉사상 수상이 유력한 동료 직원을 음해해 수상에서 탈락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64
2007대구조정11	· 정○○ 대 대구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담배꽂초를 버려 과태료를 부과받는 모습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666
2007대구조정12	· 한국○○부품소매업협동조합 외 1인 대 대구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협동조합이 저질안전모를 수입해 불법으로 유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66
2007서울조정343	· 정○○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위압적인 행태로 고소인을 대하고 이유없이 해당 사건의 추가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67
2007서울조정344	· 전○○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68
2007대구조정13	· 김○○ 대 대구MBC-TV (손배청구) 지하사가 입구 차량 돌진 사고를 보도하면서 신청인과의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사과	669
2007서울조정345	· 대한안과의사회 대 MBC-TV (정정청구) 안과의사들이 영리목적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한 시력교정렌즈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70
2007서울조정346	· 시○○(주) 대 중앙일보 (정정·손배청구) USB메모리가 악성코드를 전파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유해사이트 차단장치 제품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672
2007서울조정347	· (주)○○산업 대 한겨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업체가 철거민들을 집단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73
2007서울조정348	· 최○○ 대 한겨레 (손배청구) 재개발지구 철거민 폭행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674
2007대전조정16	· 박○○ 외 5인 대 중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실신한 동료형사를 병원에 이송한 후 동료의 지갑을 뒤져 병원비를 결제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675
2007서울조정349	· (주)환경일보 대 환경일보 (정정·손배청구) '환경일보' 제호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승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76
2007서울조정350	·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 평화방송TV (정정청구)	

	신청인 협회가 정부가 지원한 '에이즈감염인 쉼터'의 운영비를 자체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77
2007서울조정351	· (주)행○○ 대 SBS-TV (정정청구) 재혼정보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맞선상대의 직업을 속이거나 유부남을 소개하는 등 악덕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78
2007서울조정352	· 김○○ 대 문화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개설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현장실습없이 학점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79
2007서울조정353	· 한○○ 대 KBS-2TV (손배청구) 외국어 원어민 강사의 학위 위조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근무하는 학원과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680
2007서울조정354	· 장○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호화판 잠행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80
2007서울조정355	· 유○○ 대 중앙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장기전세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81
2007서울조정356	· 박○○ 대 무브온21 (손배청구) 신청인의 이혼 경위를 묻는 인터뷰 기사에 닉네임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	682
2007서울조정357	· (주)동아일보사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언론사가 유료로 인터넷 논술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장이 직접 나서서 광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84
2007대구조정14	· (주)서○ 대 대구시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업체가 대구시의 비호를 받으며 시내버스승강장 광고를 독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84
2007서울조정358	· 대통령비서실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청와대가 11월 임기가 끝나는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후임을 정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85
2007대전조정17	· ○○장로교회 대 중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교회가 산내학살 유해 발굴지역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있으며 교회 이주비 등을無理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87
2007서울조정359	· 설○○ 대 세계일보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I - 추후보도	688
2007서울조정360	· 설○○ 대 MBC-TV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II - 추후보도	689
2007서울조정361	· 설○○ 대 연합뉴스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III - 추후보도	690
2007서울조정362	· 설○○ 대 노컷뉴스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IV - 추후보도	690
2007서울조정363	· 설○○ 대 브레이크뉴스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V - 추후보도	691
2007서울조정364	· 설○○ 대 오마이뉴스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VI - 추후보도	691
2007서울조정365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월정사의 국고지원이 신청아 씨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692
2007광주조정35	· 설○○ 대 광남일보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VII - 추후보도	693
2007광주조정36	· 설○○ 대 남도일보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VIII - 추후보도	693
2007광주조정37	· 설○○ 대 남해안신문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IX - 추후보도	694
2007광주조정38	· 설○○ 대 무등일보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 - 추후보도	694
2007광주조정39	· 설○○ 대 여수신문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I - 추후보도	695
2007광주조정40	· 설○○ 대 전남일보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II - 추후보도	695
2007광주조정41	· 설○○ 대 순천KBS-1TV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III - 추후보도	696
2007광주조정42	· 설○○ 대 여수MBC-TV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IV - 추후보도	696
2007광주조정43	· 설○○ 대 KBC-TV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V - 추후보도	697
2007서울조정366	· 한○○ 대 SBS-TV (손배청구) 소매치기범을 잡고도 폭행범으로 몰린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697
2007서울조정367	· 전국○○노동조합 대 전문건설신문 (반론청구) 신청인 노조가 불법·폭력 시위를 자행해 마치 탈레반을 연상케 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698

2007서울조정368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메인뉴스로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99
2007서울조정369	· 재정경제부 대 한국경제 (정정·반론청구) 재정경제부의 직원 대다수가 '보여주기식' 혁신사업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00
2007서울조정370	· (주)○○넷 대 디지털타임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업체가 타사가 취득한 인맥관련서비스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01
2007서울조정371	· (주)마○○ 대 내일신문 (반론청구) 신청인 아울렛이 산업단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702
2007서울조정372	· (주)마○○ 대 전자신문 (반론청구) 신청인 아울렛이 산업단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704
2007서울조정373	· (주)마○○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아울렛이 산업단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704
2007광주조정44	· 설○○ 대 광주PBC-R (추후청구)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VI	705
2007전북조정35	· 강○○ 대 새전북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소유한 건물이 부도가 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05
2007경기조정54	· 권○○ 대 경기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매립지에 지은 아파트의 기초 파일이 부설시공되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06
2007서울조정374	· 장○○ 대 Bestbaby (손배청구) 신청인의 만삭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707
2007서울조정375	· 유니온뉴스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언론사가 설립취지를 벗어난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07
2007서울조정376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교회법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08
2007서울조정377	· 남○○ 대 KBS-2TV (정정청구) 신청인이 박사과정을 수료했음에도 학술진흥재단에 학력을 박사로 등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09
2007서울조정378	· 건설교통부 대 파이낸셜뉴스 (정정청구) 양주 고읍지구내 한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10
2007서울조정379	· 기획예산처 대 내일신문 (정정청구) 참여정부가 세수대책도 없이 대형사업을 추진해 수년 내에	

	국가 재정파탄이 올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711
2007서울조정380	· 학교법인 ○○○학원 대 한겨레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재단이 학부모를 상대로 모집중인 발전기금이 문제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12
2007서울조정381	· 남○○ 대 연합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전과사실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714
2007서울조정382	· 남○○ 대 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전과사실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715
2007서울조정383	· 장○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중국의 한 골프장을 예약하고 도피성 출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716
2007서울조정384	· ○○기업 주식회사 대 매일노동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특수경비원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이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차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17
2007전북조정36	· 정○○ 대 전북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관리비 통장의 지급을 정지시켜 아파트의 단전위기를 초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718
2007전북조정37	· 정○○ 대 새전북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이 관리비 통장의 지급을 정지시켜 아파트의 단전위기를 초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719
2007서울조정385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이 모 장로로부터 교회법 상담료로 하루에 14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19
2007경남조정24	· 전○○ 대 한국시사정보신문 (손배청구) 신청인이 선거철마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사과보도	721
2007서울조정386	· 국무총리복권위원회 대 시사저널 (정정청구) 로또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721
2007서울조정387	· 나○○ 대 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소유한 목장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귀신이 출몰하는 흉가라고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I - 손해배상	724
2007서울조정388	· 나○○ 대 tvN (손배청구) 신청인이 소유한 목장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귀신이 출몰하는 흉가라고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II - 손해배상	725
2007충북조정14	· 대한불교 천태종 대 동양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종단이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노조에 전달해 전 총무원장을 퇴임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26
2007서울조정389	· 이○○ 대 오마이뉴스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석사논문없이 불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28

2007서울조정390	· 환경부 대 문화일보 (반론청구) 환경부가 99년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토록 허용한 후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29
2007서울조정391	· 김○○ 대 교통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조합 공금을 횡령하고 신병을 이유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손해배상	731
2007서울조정392	· (주)A○○&E○○ 대 매일경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말레이시아에서 분양중인 주상복합건물이 낡은 빌딩을 리모델링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732
2007서울조정393	· 교육인적자원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입시에서 내신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 대학에 정원 감축 계획을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34
2007서울조정394	· 이○○ 대 tvN (손배청구) 절도 및 절도교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735
2007서울조정395	· 홍○○ 외 대 tvN (손배청구) 절도 및 절도교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736
2007서울조정396	· 이○○ 노동조합 외 1인 대 파이낸셜뉴스 (정정·손배청구) 서울 모 백화점 농성자의 대부분이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 외부세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36
2007서울조정397	· 유○○ 외 1인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교회에 복직되면 노조를 탈퇴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37
2007서울조정398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이 소송중인 교회로부터 소취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38
2007서울조정399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이 돈을 받기로 하고 교회법에 대해 상담하고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40
2007서울조정400	· 박○○ 대 한국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모 여대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외국학교 국내분교 설립'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42
2007서울조정401	· (주)굿○ 대 이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비상장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43
2007서울조정402	· (주)참○○ 대 KBS-1TV (정정·반론청구) 황토팩에서 중금속 및 쇳가루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44
2007서울조정403	· 근로복지공단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공단의 임원이 평일에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47
2007서울조정404	· 한국○○공업협회 대 문화일보 (정정·반론청구)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산 시멘트에서 유해 중금속인 6가크롬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48
2007경기조정55	· 김○○ 대 중부일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해 사고아동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750
2007대전조정18	· 강○○ 외 1인 대 대전MBC-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사위를 산하기관에 취직시켰으며,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50
2007서울조정405	· (주)○○상조 대 시사한국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방문판매업을 위장한 다단계 회사이며, 상조회원과 사업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가맹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52
2007서울조정406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 MBC-TV (반론청구) 대부분의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강제입원과 가혹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753
2007서울조정407	· (주)○○인스티튜트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환차익 등을 미끼로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55
2007경남조정25	· 양산시 보건소 대 경남도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보건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취소한 의약품들 처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56
2007경남조정26	· 김○○ 대 양산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급식업체가 실체없는 유령회사이며 학교 측과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757
2007서울조정408	· 고양시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고양시의 과잉 단속 때문에 노점상 상인이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58
2007서울조정409	· 민병두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미국 모 대학교 언론대학원 연수 경력을 '수료' 라고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59
2007경기조정56	· 대한○○○○협회 경기도회 대 수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협회가 소명절차없이 회원들을 제명조치했으며, 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요청 동의서가 접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60
2007서울조정410	· 환경관리공단 대 KBS-1TV (정정청구) 환경관리공단의 한강수계사업 관리·감독이 엉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	762
2007서울조정411	· 교육인적자원부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목적고의 특성화고 재지정 여부 결정 방안을 당분간 유보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63
2007서울조정412	· 교육인적자원부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2008년부터 12개 광역시·도에 외국어고 신설이 금지되고,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국어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을 해지할 방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64
2007서울조정413	· 박○○ 대 한성대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사유지를 무단점유했다며 모 대학 측에 거액의 사용료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766
2007서울조정414	· 경상남도○○○○운송사업조합 대 교통신문 (반론청구) 신청인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가 조합을 사칭한 비대위의 주도하에 이뤄진 불법행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67
2007서울조정415	· 양○○ 대 YTN (손배청구) 불법대출 관련 보도를 하면서 대출신청서에 적힌 대출담당자인 신청인의 실명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768
2007서울조정416	· (주)○○지관 대 CNB저널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기라는 이유로 납품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68
2007서울조정417	· 김○○ 대 SBS-TV (정정 · 손배청구) 셀러드레싱이 칼로리가 높다고 보도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770
2007서울조정418	· 정○○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의 보직임용에 대해 잡음이 일고 있으며 조직관리 역량부족이 우려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770
2007서울조정419	· 조○○ 대 KBS-2TV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수학여행 도중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71
2007대전조정19	· ○○문화원 대 충청투데이 (정정 · 손배청구)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신청인 문화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772
2007대전조정20	· 박○○ 대 연기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패널비를 받은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73
2007서울조정420	· ○○문화원 대 연합뉴스 (정정 · 손배청구)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신청인 문화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 및 반론보도	774
2007대구조정15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 대구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구미시의 시정에 사사건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75
2007전북조정38	· 순창경찰서 대 새전북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경찰서가 타 경찰서 경찰관이 관련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제식구 봐주기식 조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76
2007서울조정421	· 임인배 외 1인 대 동아일보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들이 국정감사 후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77
2007서울조정422	· ○○○납골당반대투쟁위원회 대 MBC-TV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벌이고 있는 납골당 건립 반대투쟁이 집값 올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78
2007서울조정423	· 최○○ 대 KBS-1TV (손배청구) 탈북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 ·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779
2007광주조정45	· (주)나주뉴스 대 나주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언론사가 나주 선관위에 공동급식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제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80
2007경기조정57	· ○○디지털대학교 대 안산타임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학교가 자격미달인데도 어린이집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81
2007충북조정15	· (주)청주○○ 대 중부매일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783
2007서울조정424	· 황○○ 대 KBS-2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소유한 목장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귀신이 출몰하는 홍가라고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784
2007대구조정16	· 성○○ 대 매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측근을 통해 모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끊임없이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84
2007서울조정425	· 방위사업청 대 시사HN (정정청구) 방위사업청이 GOP경계 과학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비리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86
2007서울조정426	· 금융감독원 대 한국경제 (정정·손배청구)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의 로비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 수위가 낮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87
2007서울조정427	· 이○○ 대 조선일보 (손배청구) 이회창 후보 지지자와 반대자간의 몸싸움을 보도하면서 싸움을 말리던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789
2007서울조정428	· 동대문경찰서 대 내일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경찰서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서장이 회의를 핑계로 기자의 취재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PR보도	789
2007전북조정39	· (사)○○청소년회 대 소통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자 선정과정시 익산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91
2007대구조정17	· 흥○○ 대 영남일보 (정정·손배청구) 초등학생인 신청인이 학교 동급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92
2007강원조정6	· (주)○○빌 대 원주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93
2007대전조정21	· 오○○ 대 대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변호사 수임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794
2007대전조정22	· 오○○ 대 중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변호사 수임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795
2007대전조정 23	· 오○○ 대 충청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이 변호사 수임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정정보도	796
2007경남조정27	· (주)이○○○ 대 마산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업체가 기본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796
2007서울조정429	· 최○○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짜깁기한 복제논문을 심사자료로 제출,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97
2007서울조정430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 MBC-TV (정정청구)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99
2007서울조정431	· 박○○ 대 SBS-TV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은 긴급출동SOS24 프로그램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다.....	800
2007서울조정432	· 이○○ 대 연합뉴스 (손배청구) 신청인이 모 단체 사무총장의 정실인사로 채용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801
2007서울조정433	· 한나라당 대 한겨레 (정정청구) 이명박 후보가 LKe 설립 이전에 BBK와 단기대차 계약을 맺고 돈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01
2007서울조정434	· 조○○ 대 문화일보 (손배청구) 회사 보안직원인 신청인이 사진을 찍지 말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	803
2007서울조정435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청구) 에클레시아뉴스가 신청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03
2007서울조정436	· 해양수산부 대 동아일보 (반론청구)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805
2007대구조정18	· 김○○ 대 포항MBC-TV (정정청구) 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통학버스 승차비와 식당 임대료를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06
2007서울조정437	· ○○○여성병원 대 SBS-TV (손배청구) 전직 병원장 재직시 발생한 산모 사망사건을 다루면서 신청인 병원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807
2007서울조정438	· 서○○ 대 메디컬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08
2007경기조정58	· (주)인○○○○ 대 우리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업체가 용역 입찰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09
2007대전조정24	· ○○문화원 대 충남시사신문 (정정청구)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신청인 문화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 정정 및 반론보도	811
2007서울조정439	· 장○○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이 미군기지 기공식 현장의 반대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11
2007서울조정440	· 정○○ 대 KBS-1TV (정정 · 손해청구) 오토바이 인도주행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를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812
2007서울조정441	· 박○○ 대 헤럴드경제 (손배청구) 대학가에 '국제커플'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커플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13
2007서울조정442	· 김○○ 대 KBS-1TV (손배청구) 출연자들의 가정문제를 상담하면서 신청인이 불륜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813
2007서울조정443	· 이○○ 대 KBS-1TV (손배청구) 출연자들의 가정문제를 상담하면서 신청인이 불륜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814
2007광주조정46	· 박○○ 대 신안신문 (추후청구) 신청인이 모 재단에서 추진중인 납골당 관련 서류와 금품을 절도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815
2007서울조정444	· 교육인적자원부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신반영률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이유로 모 대학에 정원모집 중단조치를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16
2007서울조정445	· 조○○ 대 경향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땅투기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817
2007서울조정446	· 조○○ 대 서울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땅투기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818
2007서울조정447	· 조○○ 대 세계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땅투기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818
2007서울조정448	· 조○○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땅투기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818
2007서울조정449	· 육군수사단 대 군사세계 (정정청구) 2005년 발생한 전방GP 총기난사 사건 당시의 일지가 위조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819
2007부산조정16	· 안○○ 대 한국기독신문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네거티브 전술로 부노회장에 당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21
2007서울조정450	· 마○○○○ 대 한겨레 (반론청구)	

	신청인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822
2007서울조정451	· 마○○○ 대 연합뉴스 (반론청구) 신청인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823
2007대구조정19	· ○○○○시민연합 대 매일신문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단체가 모 청소년수련관을 기존 수탁기관에 계속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24
2007서울조정452	· (주)○○해운 대 내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특혜를 받아 국책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25
2007서울조정453	· 오○○ 대 전국아파트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28
2007서울조정454	· 윤○○ 대 성도교회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교회의 차량주임직을 사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29
2007전북조정40	· (사)○○○문화제제전위원회 대 전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829
2007대전조정25	· 조○○ 대 중도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땅투기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831
2007서울조정455	· 이회창 대 시사IN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2002년 대선자금 규모가 밝혀진 액수보다 많고, 두 아들의 재산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32
2007서울조정456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대 서울신문 (정정·손배청구) 통일교가 여수엑스포 유치를 이용해 여수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처럼 묘사한 만평은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34
2007서울조정457	· 이○○ 대 오마이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도용하고, 쇼핑몰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835
2007서울조정458	· 양천경찰서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 경찰서의 허술한 초동수사로 모 외국어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도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36
2007광주조정47	· 이○○ 대 광주매일 (정정청구) 시립예술단체의 단장이 단원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37
2007광주조정48	· 김○○ 대 장성군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대선후보의 거리 유세를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38
2007서울조정459	· 윤○○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신청인이 성급한 투자로 불안해 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뷰 내용을 왜곡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838
2007서울조정460	· (주)솔○ 대 머니투데이 (정정·손배청구) 현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으로 신청인 회사가 6년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40
2007서울조정461	· 김○○ 대 서울신문 (정정·손배청구) 통일교가 여수엑스포 유치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묘사한 만평으로 피해를 입었다	841
2007서울조정462	· 박○○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총기탈취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신청인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 손해배상	842
2007서울조정463	· 박○○ 대 YTN (손배청구) 총기탈취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신청인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 손해배상	843
2007강원조정7	· (주)강원일보사 대 강원도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의 사유림과 춘천시의 사유림 맞교환 추진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843
2007강원조정8	· (주)강원일보사 대 강원도민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의 사유림과 춘천시의 사유림 맞교환 추진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845
2007강원조정9	· (주)강원일보사 대 GTB-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의 사유림과 춘천시의 사유림 맞교환 추진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846
2007강원조정10	· (주)강원일보사 대 GTB-TV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의 사유림과 춘천시의 사유림 맞교환 추진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847
2007대구조정20	· 이○○ 외 4인 대 경상매일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의 반발로 구미시가 추진하는 도시화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47
2007서울조정464	· (주)○○전자 대 프레시안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자회사에 수출운임을 과다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48
2007대전조정26	· ○○대학교 병원 대 JBS (정정청구) 신청인 병원이 암 치료기의 효과를 과대광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849
2007서울조정465	· (주)가○ 대 SBS-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자료를 조작하고 관련기관과 유착하여 골프장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52
2007경기조정59	· 이○○ 대 신광교회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교회관리인에서 해고되었음에도 스스로 사임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853
2007서울조정466	· 교육인적자원부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로스쿨 입학시험인 LEET시험의 응시 횟수가 3회로 제한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54

2007부산조정17	· 김○○ 대 부산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일부 학교에 특정업체의 두부납품을 중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855
2007서울조정467	· 문○○ 대 시사IN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미국에 유명 벤처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57
2007광주조정49	· 고흥군 대 고흥타임즈 (정정청구) 고흥군 소속 공무원이 노인복지타운, 가로등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58
2007서울조정468	· 경찰청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859
2007서울조정469	· 경찰청 대 국민일보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860
2007서울조정470	· 경찰청 대 내일신문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861
2007서울조정471	· 경찰청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861
2007서울조정472	· 경찰청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862
2007서울조정473	· 경찰청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 반론보도	862
2007서울조정474	· 경찰청 대 세계일보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862
2007서울조정475	· 경찰청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I - 반론보도	863
2007서울조정476	· 경찰청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X - 반론보도	863
2007서울조정477	· 경찰청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 반론보도	864
2007서울조정478	· 경찰청 대 KBS-1TV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	865
2007서울조정479	· 경찰청 대 MBC-TV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II	865
2007서울조정480	· 경찰청 대 YTN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II	865
2007서울조정481	· 경찰청 대 연합뉴스 (정정청구)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V	866
2007서울조정482	· 최○○ 대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중간광고 확대방안 공청회에서 외부와 논의가 없었던 점을 반성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866
2007서울조정483	· 서초구 대 한겨레 (정정·반론청구) 서초구청장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68
2007충북조정16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 CJB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어린이집이 부실 급식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869
2007서울조정484	· 방송위원회 대 주간동아 (반론청구)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중간광고 허용 안건처리 하루 전에 외부인사의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70
2007서울조정485	· 전국○○○○노동조합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노조의 위원장이 담임 목사직을 사직하지 않아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71
2007서울조정486	· 한국방송공사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선거보도의 형평성을 위반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72

중재신청사례

2007서울중재1	· 우○○ 대 KBS-1TV (손배청구) 이혼위기를 넘긴 노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내보내 과거 불륜관계 당사자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77
2007서울중재2	· 김○○ 외 1인 대 KBS-2TV (손배청구) 가출 청소년과 부모가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봉하는 장면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79
2007서울중재3	· 김○○ 대 한겨레 (손배청구) 결혼정보회사의 단체미팅행사에 참가해 산을 오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 손해배상	881
2007서울중재4	· 김○○ 대 연합뉴스 (손배청구) 결혼정보회사의 단체미팅행사에 참가해 산을 오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 손해배상	882
2007서울중재5	· 이○○ 대 Mnet (손배청구)	

	신청인이 과거 성인영화배우였다는 사실을 방송중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84
2007서울중재6	· 최○○ 대 연합뉴스 (손배청구) 추위로 움크리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86
2007서울중재7	· 고○○ 대 컴퓨터타임즈 (정정·손배청구) 전자상가에서 외국산 홈시어터가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 및 손해배상	887
2007서울중재8	· 정○○ 대 SBS-TV (손배청구) 신청인이 프로포즈 받으면서 우는 장면을 동의없이 방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 - 손해배상	889
2007서울중재9	· 이○○ 외 1인 대 SBS-TV (손배청구) 신청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90
2007서울중재10	· 이○○ 대 tN (손배청구) 절도 및 절도교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92
2007서울중재11	· 홍○○ 외 대 tN (손배청구) 절도 및 절도교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94
2007서울중재12	· 김○○ 대 SBS-TV (정정·손배청구) 샐러드드레싱이 칼로리가 높다고 보도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96
시정권고사례		901
중재위원 명단		935
언론조정·중재신청사례 색인		940

2007년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2007년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조정사건 1,043건 처리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1,043건의 조정신청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청구권별 신청 비율은 정정보도청구 52.8%, 손해배상청구 33.5%, 반론보도청구 11.0%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가 전체 신청건수의 86.3%를 차지했다. 반론보도청구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 비율이 매년 상승하여 피해구제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매체 MBC-KBS-조선일보-동아일보 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신청 증가 추세

신청인은 개인 50.3%, 회사 16.9%, 일반단체 13.9%, 국가기관 9.7%, 지자체 및 공공단체 5.9%, 교육기관 2.3%, 종교단체 1.0%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신청 비율이 전년 대비 4.2%p 감소하였다.

피신청인을 매체유형별로 보면 신문이 60.8%, 방송이 24.0%로 나타났고, 신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도 10.8%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체별 신청건수는 MBC 69건, KBS 67건, 조선일보 39건, 동아일보 33건, 문화일보 32건, 한겨레 31건, SBS 25건 순으로 많았다.

침해유형별로는 명예훼손 953건, 초상권 53건, 음성권 12건, 프라이버시 침해 11건으로 명예훼손 침해가 가장 많았으나, 2005년 93.7%, 2006년 92.4%에 이어 2007년에는 91.4%를 차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손해배상 청구권 도입으로 초상·음성·성명 및 사생활침해 등의 조정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 64.8%로 전년대비 4.2%p 증가, 손해배상 조정액 평균 313만원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는 합의 34.4%, 취하 37.2%, 조정불성립결정 18.6%, 직권조정결정 5.2%, 기각 4.0%, 각하 0.6%로 집계되었다. 2006년과 비교해 볼 때 합의율은 1.7%p, 기각·각하율은 1.4%p 각 상승하였고, 조정불성립결정은 1.8%p 감소하였다. 정정·반론 등의 보도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회복된 사례는 64.8%로, 2006년의 60.6%보다 4.2%p 상승하였다.

매체별로는 잡지에 대한 피해구제율이 80.0%로 가장 높고, 방송이 55.9%로 가장 낮았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동의율은 40.7%, 이의신청율은 59.3%이며, 이의신청은 대부분 피신청인에 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조정액 평균은 313만 원으로 권리 도입 이후 매년 3백만 원대 초중반 수준에서 비슷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신청과 별도로 우리 위원회의 종국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간 합의하고 중재신청한 건수는 14건이었다.

시정권고 202건, 자살관련 상세 묘사 시정권고 건수 대폭 감소

또한 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710종의 매체를 심의하여 이 중 202건의 심의기준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 중 위원회가 자체 시정권고한 건수는 200건이며 제3자가 신청하여 시정권고한 건수는 2건이다.

시정권고 건수가 2006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은 사건사고의 피의자·피고인의 신원공개 건수가 다소 증가한데다 마약의 용량·용법 공개 건수가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자살관련 상세 묘사에 대한 시정권고는 38.8%→21.8%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언론들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 기사화하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4년 위원회 내에 설치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2,343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언론사, 대학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해 총 7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 ◇

제1장 조정신청 현황

1. 청구건수

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1,043건의 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2년 연속 1,000건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보다 44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 정정·반론 청구 등과 같은 병합 청구건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청구건수

구 분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청 구 건 수	724	759	883	1,087	1,043
전년대비 증감		35	124	204	△44

2. 중재부별 청구건수

중재부별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61.7%, 지역중재부가 38.3%로 나타나 서울중재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역중재부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1개 중재부에서 처리한 건수는 평균 107건, 지역 1개 중재부의 처리건수는 평균 40건이었다.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청구건수

중재부 \ 연 도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서 울	592	67.0	709	65.2	644	61.7
부 산	35	4.0	42	3.9	25	2.4
대 구	14	1.6	31	2.9	32	3.1
광 주	44	5.0	55	5.1	63	6.0
대 전	19	2.2	29	2.7	41	3.9
경 기	87	9.9	113	10.4	84	8.1
강 원	15	1.7	14	1.3	14	1.3
충 북	10	1.1	13	1.2	23	2.2
전 북	29	3.3	50	4.6	65	6.2
경 남	25	2.8	20	1.8	37	3.5
제 주	13	1.5	11	1.0	15	1.4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가 84건, 전북중재부가 65건, 광주중재부가 63건으로 3개 중재부가 지역중재부의 청구건수인 399건의 53.1%를 처리하였고, 강원중재부와 제주중재부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6년에 비해 경기중재부와 부산중재부의 청구건수가 각 29건, 17건 감소한 반면, 경남중재부, 전북중재부, 대전중재부의 청구건수는 각 17건, 15건, 12건 증가하였다.

3. 청구권별 청구건수

각 청구권별 청구건수를 보면, 정정보도청구 52.8%, 손해배상청구 33.5%, 반론보도청구 11.0%로 나타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가 전체 청구건수의 8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론보도청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청구건수

연도 청구명	2005		2006		2007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 정	531	60.1	546	50.2	551	52.8	1,628	54.0
반 론	194	22.0	211	19.4	115	11.0	520	17.3
추 후	17	1.9	12	1.1	28	2.7	57	1.9
손 배*	141	16.0	318	29.3	349	33.5	808	26.8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3,013	100.0

* 손해배상청구는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통계임

〈표 1-4〉 최근 3년간 병합청구사건 청구건수

연 도 청구명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정·손배	78	67.2	198	65.6	232	83.8
정정·반론	9	7.8	57	18.9	19	6.9
반론·손배	17	14.7	16	5.3	12	4.3
추후·손배	8	6.9	10	3.3	5	1.8
정정·반론·손배	4	3.4	20	6.6	9	3.2
정정·추후·손배			1	0.3		
계	116	100.0	302	100.0	277	100.0

※ 병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부터 가능하였으므로 2005년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4.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신청인 유형은 개인 50.3%, 회사 16.9%, 일반단체 13.9%, 국가기관 9.7%, 지자체 및 공공단체 5.9%, 교육기관 2.3%, 종교단체 1.0%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신청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가기관의 신청비율이 전년 대비 4.2%p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표 1-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신청인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개 인	385	43.6	529	48.7	525	50.3
국가기관	146	16.5	151	13.9	101	9.7
지자체·공공단체	53	6.0	46	4.2	62	5.9
일반단체	152	17.2	172	15.8	145	13.9
종교단체	19	2.2	9	0.8	10	1.0
회 사	116	13.1	145	13.3	176	16.9
교육기관	12	1.4	35	3.2	24	2.3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5.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별로 보면 신문이 60.8%, 방송이 24.0%를 차지했는데 신문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방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청도 증가하여 10.8%를 차지했다. 뉴스통신은 2.9%, 잡지 1.0%였다.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MBC로 69건이다. 이어 KBS(67건), 조선일보(39건), 동아일보(33건), 문화일보(32건), 한겨레(31건), SBS(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16건으로 비교적 적었다.

지역 일간지 중 청구건수가 7건 이상인 매체를 보면, 경인매일 9건, 새전북신문 8건, 충청투데이·경기신문·경인일보·전북일보 각 7건이다. 경제지는 한국경제 20건, 매일경제 13건이며, 케이블 TV는 YTN 8건, 뉴스통신은 연합뉴스 23건, 뉴시스 7건 순 이었으며, 인터넷신문은 오마이뉴스 15건, 노컷뉴스 11건, 에클레시아뉴스 9건, CNB NEWS 7건 순 이었다.

지역주간신문 중에서는 충청리뷰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간행물로 분류되는 교회의 주보(3건)와 대학신문도(2건) 있었다.

〈표 1-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매체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신 문	609	69.0	752	69.2	634	60.8
방 송	174	19.7	216	19.9	250	24.0
잡 지	33	3.7	25	2.3	10	1.0
뉴스통신	18	2.0	17	1.6	30	2.9
인터넷신문	48	5.4	77	7.1	113	10.8
기 타	1	0.1		0.0	6	0.6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표 1-7〉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 청구건수	신 문			방 송			잡 지	뉴 스 통 신	인터넷 신 문	기 타
	중 앙 일간지	지 방 일간지	주 간 신 문	TV	케이블 TV	이동멀티 미디어				
1,043	278	226	130	225	24	1	10	30	113	6
100,0(%)	26.6	21.6	12.5	21.6	2.3	0.1	1.0	2.9	10.8	0.6

6. 주된 침해유형

조정대상 보도의 침해유형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나 주 침해사항을 중심으로 분류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초상·성명·음성권이나 프라이버시 등 기타 인격권 침해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명예이외의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청구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 최근 3년간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주된 침해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명예훼손	827	93.7	1,004	92.4	953	91.4
신용훼손	23	2.6	17	1.6	2	0.2
초 상 권	15	1.7	48	4.4	53	5.1
음 성 권	2	0.2	7	0.6	12	1.1
성 명 권	14	1.6	1	0.1	3	0.3
프라이버시			4	0.4	11	1.0
기 타	2	0.2	6	0.6	9	0.9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7.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침해의 경우, 대부분 동의없이 촬영, 무단공표되는 경우가 77.3%, 동의는 받아 촬영되었으나 그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된 경우가 20.4%를 차지했다. 아예 보도내용과 관계없는 자료화면으로 이용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2.3%)도 있었다.

〈표 1-9〉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청 구 건 수	비 율(%)
동의없이 무단공표	68	77.3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18	20.4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2	2.3
계	88	100.0

8. 조정대상기사 분야

조정신청 대상이 된 기사는 사건·사고·고발 기사가 61.8%를 차지했고, 이어 정치·선거 관련 기사 8.9%, 경제·산업 관련 기사 6.5%, 교육 3.4%, 노동관련 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0〉 조정대상기사의 분야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분야	건 수	비 율(%)
정치·선거	93	8.9
국방·외교	19	1.8
경제·산업	68	6.5
사회(사건/사고/고발)	645	61.8
보건·복지	24	2.3
스포츠·연예	13	1.2
레저·생활	25	2.4
환 경	17	1.6
종 교	26	2.5
노 조	31	3.0
교 육	35	3.4
미 디 어	16	1.5
기 타	31	3.0
계	1,043	100.0

9. 조정대상 기사의 유형

방송매체 이외의 신문·잡지 등의 조정대상기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75.2%, 탐사·심층·기획 보도기사 8.8%, 논단 및 칼럼 기사 3.3% 순이었다.

논단·칼럼, 비평, 만평, 가십 등의 의견성 기사도 많지는 않지만 조정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의 경우, 뉴스가 62.4%, 시사고발 22.0%, 교양정보 9.6% 순이었다.

〈표 1-11〉 조정대상 기사(방송 외) 유형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유형별	건 수	비 율(%)
스트레이트	596	75.2
사 설	16	2.0
논단 및 칼럼	26	3.3
인 터 뷰	10	1.3
외부필자 기고	11	1.4
비 평	21	2.6
탐사·심층·기획보도	70	8.8
만화·만평	4	0.5
사 진	17	2.1
통 계·표	1	0.1
가 십	7	0.9
기 타	14	1.8
계	793	100.0

〈표 1-12〉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청구건수

방송 장르별	건 수	비 율(%)
뉴 스	156	62.4
시 사 고 발	55	22.0
토 론	3	1.2
교 양 정 보	24	9.6
연예 · 스포츠	2	0.8
다큐멘터리	7	2.8
기 타	3	1.2
계	250	100.0

10. 접수유형

조정신청사건의 접수유형을 보면, 방문 43.5%, 인터넷 29.8%, 우편 24.1%, 구술 2.6% 순이었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인터넷에 의한 신청이 전년보다 6.9%p 상승하여 3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 점이 눈에 띄고, 구술 신청도 증가하였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비율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3〉 최근 3년간 접수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접수유형	2005		2006		2007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청구건수	비 율(%)
방 문	295	62.0	580	53.4	454	43.5
우 편	74	15.5	245	22.5	251	24.1
인터넷	74	15.5	249	22.9	311	29.8
구 술	33	6.9	13	1.2	27	2.6
계	476	100.0	1,087	100.0	1,043	100.0

* 인터넷 및 구술에 의한 신청은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해짐

제2장 처리결과 현황

1. 처리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는 합의 34.4%, 직권조정결정 5.2%, 조정불성립결정 18.6%, 취하 37.2%, 기각 4.0%, 각하 0.6%로 집계되었다. 2006년에 이어 취하율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년에 비해 합의율은 1.7%p, 기각·각하율은 1.4%p 각 상승하였고 직권조정결정 비율은 비슷하며, 조정불성립결정은 2.2%p 감소하였다.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구분 연도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100.0	37.8	3.5	2.3	20.5	2.2	1.7	32.0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100.0	32.7	2.7	2.6	20.8	2.0	1.2	38.0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100.0	34.4	2.1	3.1	18.6	4.0	0.6	37.2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2. 피해구제율

피해구제의 의미는 우리 위원회에 조정신청하여 합의된 경우, 직권조정결정된 사건 중 양당사자 이의없이 동의된 경우, 취하,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조정결정 사건 중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피해구제율은 이 피해구제건수를 기각·각하 건수를 제외한 조정건수로 나눈 것이다. 지난 해 피해구제율은 64.8%이고 이는 2006년도에 비해 4.2% 증가한 수치이다.

〈표 2-2〉 피해구제율

청구건수 [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1,043	48	995	645	64.8

3. 청구권별 처리결과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추후보도청구에 대한 비율이 80.8%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반론보도청구로 71.8%로 나타났다. 범죄협회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으나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어 청구하는 추후보도청구나, 복잡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수 요건이 아닌 반론보도에 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각 63.7%, 63.1%를 기록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해구제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합의율은 반론보도청구가 가장 높고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낮았으나, 조정결정률과 조정불성립결정률은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높았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취하된 건 중 보도율(82.4%)이 가장 높았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청구명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계 속								
2005	정 정	531	225	18	10	(4)		108		9	7	154	(80)	63.5
	반 론	194	84	9	7			32	(1)	7	1	54	(30)	66.7
	추 후	17	9									8	(2)	64.7
	손 배	141	16	4	3			41		3	7	67	(48)	51.9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정 정	546	220	13	10			108	(1)	14	12	169	(90)	62.3
	반 론	211	79	6	8			37	(1)	2		79	(42)	61.2
	추 후	12	8					1				3	(3)	91.7
	손 배	318	49	10	10			80		6	1	162	(115)	55.9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정정	551	223	12	17	(1)		103	(5)	22	3	171	(94)	63.7
	100.0%		40.5	2.2	3.1			18.7		4.0	0.5	31.0		
	반론	115	52	2	1			22		4	1	33	(25)	71.8
	100.0%		45.2	1.7	0.9			19.1		3.5	0.9	28.7		
	추후	28	7					2		2		17	(14)	80.8
	100.0%		25.0					7.1		7.1		60.8		
	손배	349	77	8	14	(1)		67		14	2	167	(124)	63.1
	100.0%		22.1	2.3	4.0			19.2		4.0	0.6	47.8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피해구제율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국가기관으로 74.5%를 보였고, 이어 교육기관 69.6%, 일반단체 67.4%, 개인 63.8%, 회사 61.6%, 지자체·공공단체 53.2% 순이었다.

종교단체의 경우 2006년 피해구제율이 11.1%를 기록한 반면 2007년의 피해구제율이 매우 높게 향상된 것이 주목된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5	개 인		385	127	13	9	(3)	92	(1)	13	10	121	(61)	56.6
	단 체	국가기관	146	69	10	3		14		1	1	48	(34)	78.5
		지자체·공공단체	53	24	1	3	(1)	10				15	(10)	67.9
		일반단체	152	65	1	1		35		2	4	44	(26)	63.0
		종교단체	19	7	1			3				8	(7)	78.9
		회사	116	37	5	4		26		3		41	(21)	55.8
		교육기관	12	5				1				6	(1)	50.0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개 인		529	163	20	15		93		16	2	220	(128)	60.9
	단 체	국가기관	151	66	3	7		30		1		44	(35)	69.3
		지자체·공공단체	46	17	4	1		10		1		13	(8)	64.4
		일반단체	172	55	2	5		34		3	11	62	(36)	58.9
		종교단체	9	1				8						11.1
		회사	145	35				49	(2)	1		60	(34)	49.3
		교육기관	35	19				2				14	(9)	80.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개 인		525	165	15	19	(2)	90	(3)	27	3	206	(131)	63.8
	단 체	국가기관	101	44	1	2		15	(1)	3		36	(27)	74.5
		지자체·공공단체	62	21		1		20				20	(12)	53.2
		일반단체	145	48	3	1		31		7	3	52	(40)	67.4
		종교단체	10	6								4	(4)	100.0
		회사	176	65	3	7		38	(1)	4		59	(37)	61.6
		교육기관	24	10		2				1		11	(6)	69.6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5.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법조인·연예인·공공기관장이 100%를 보였으나 청구건수가 매우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의료인이나 정당정치인의 피해구제율은 각 30.8%, 40.0%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2-5〉 신청인 개인 직업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 분 직 업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국회의원	28	9			11	(1)			8	(4)	50.0	
법조인	5	3							2	(2)	100.0	
공무원	31	11			5		2		13	(10)	72.4	
군인/경찰	13	6			4				3	(2)	61.5	
기초광역단체장/의원	28	3		2	(1)	9	(1)		14	(9)	50.0	
정당·정치인	5				1				4	(2)	40.0	
의료인	14	2		4			1		7	(2)	30.8	
문화예술인	19	9	1		5				4	(1)	57.9	
종교인	18	11			2	(1)	3		2	(1)	86.7	
회사원	80	25	2	1	14			1	37	(15)	53.2	
언론인	13	4		1	4				4	(3)	53.8	
교육자	59	13	4	1	4				37	(29)	78.0	
개인사업가	73	26	5	7	12		3		20	(13)	62.9	
금융업종사자	2	1			1						50.0	
연예인	3								3	(3)	100.0	
학 생	14	4		1	(1)	2		4	3		50.0	
시민활동가	11	3		2		2		3	1	(1)	50.0	
공공기관장	3								3	(3)	100.0	
조합대표협회장	14	7	2						5	(4)	92.9	
기타	92	28	1			14		11	2	36	(27)	70.9
계	525	165	15	19	(2)	90	(3)	27	3	206	(131)	63.8
(%)	100.0	30.8	2.9	3.6		17.1		5.1	0.6	39.2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잡지에 대한 청구건수는 적으나 피해구제율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문 68.0%, 뉴스통신 65.5%, 인터넷신문 65.0%, 방송 55.9% 순이었다. 인쇄매체에 비해 방송의 피해구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매체유형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5	신 문	609	239	17	8	(2)	113		11	6	215	(123)	64.4
	방 송	174	58	12	8	(2)	38	(1)	7	1	50	(22)	57.2
	잡 지	33	15	2	2		11				3	(3)	60.6
	뉴스통신	18	6				6		1	2	3	(2)	53.3
	인터넷신문	48	15		2		13			6	12	(10)	59.5
	기 타	1	1										100.0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신 문	752	242	20	16		144		13	7	310	(193)	62.2
	방 송	216	57	8	9		66	(2)	2	5	69	(30)	46.4
	잡 지	25	17	1	1		2				4	(2)	80.0
	뉴스통신	17	6				1		2	1	7	(7)	92.9
	인터넷신문	77	34		2		13		5		23	(18)	72.2
	기 타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신 문	634	226	12	15	(1)	112	(3)	25		244	(172)	68.0
	방 송	250	71	7	17	(1)	52	(1)	11	1	91	(53)	55.9
	잡 지	10	4	2			2				2	(2)	80.0
	뉴스통신	30	10	1			6	(1)	1		12	(7)	65.5
	인터넷신문	113	44				22		5	5	37	(23)	65.0
	기 타	6	4								2		66.7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피해구제율은 초상권침해가 81.1%로 높게 나타났고, 명예훼손이 64.5%, 프라이버시(사생활)침해가 60.0%를 기록했다. 음성권과 성명권 침해는 각 41.7%, 33.3%로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5	명예훼손	827	322	30	20	(4)	174	(1)	15	13	253	(148)	63.2
	신용훼손	23	5				4		1	2	11	(5)	50.0
	초상권	15	3	1			1		3		7	(5)	75.0
	음성권	2	1				1						50.0
	성명권	14	2								12	(2)	28.6
	프라이버시												
	기타	2	1				1						50.0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명예훼손	1,004	318	20	25		213		20	13	395	(238)	59.3
	신용훼손	17	5	2			5	(2)			5	(4)	76.5
	초상권	48	27	6	3		5				7	(3)	75.0
	음성권	7	4	1							2	(1)	85.7
	성명권	1					1						0.0
	프라이버시	4	1				1				2	(2)	75.0
	기타	6	1				1		2		2	(2)	75.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명예훼손	953	331	18	29	(1)	185	(5)	38	4	348	(233)	64.5
	신용훼손	2					2						0.0
	초상권	53	21	3	2	(1)	2				25	(18)	81.1
	음성권	12	1	1	1		3				6	(3)	41.7
	성명권	3									3	(1)	33.3
	프라이버시	11	4				1			1	5	(2)	60.0
	기타	9	2				1		4	1	1		50.0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매체별 처리결과

〈표 2-8〉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합 의	직 조 결	권 정 정	조 불 성 결	정 립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중앙 일 간 지	경향신문	9	9							2			2				5	
	국민일보	7	7										1				6	
	내일신문	10	10							1			3				6	
	동아일보	33	32						1	9	3		6	2			13	
	문화일보	32	31		1					6	2		13	3			8	
	서울신문	17	17							7			2	3			5	
	세계일보	4	4							1							3	
	조선일보	39	36		2				1	16	1		9	3			10	
	중앙일보	16	13					2	1	4					2		10	
	한겨레	31	29		2					14	4		6				7	
	한국일보	8	8							6							2	
	소 계	206	196			5			2	3	66	10	42		13		75	
지 방 일 간 지	서울	시민일보	2	2						1							1	
		내외신문	2	2						1							1	
		서울일보	3	3						1	2							
	부산	국제신문	1	1						1								
		부산일보	3	3									1				2	
	대구· 경북	경북일보	2	2						2								
		매일신문	6	6						4				2				
		영남일보	4	4									2				2	
		경북문화신보	4	4						2							2	
		대구시민일보	2	2													2	
		경상매일신문	2	2									2					
		광주매일	3	3						2							1	
	광 주· 전 남	광주일보	1	1						1								
		대한일보	5	5						2								3
		목포일보	2	2						1								1
		무등일보	1	1														1
		전광일보	2	2						2								
		전남일보	3	3						1								2
		호남매일	1	1						1								
		호남일보	5	5						1	1		3					
		광남일보	2	2						1								1
		전남도민일보	4	4						1	2							1
		남도일보	3	3						1								2
		순천신문	1	1						1								
	대전· 충남	대전일보	3	3						2								1
		중도일보	5	5						4								1
		충청신문	1	1						1								

매체 유형	구 분		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합 의	직조 결정	조 불성 결정	정 성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방 일 간 지	대전·충남	중앙매일	2	2											2
		대전투데이	2	2						1					1
		충청투데이	7	7						3		2			2
	인	경기도민일보	4	4						2					2
		경기매일	2	2								2			
		경기신문	7	7						1			2		4
	천·경	경기일보	3	3											3
		경인매일	9	9								6			3
		경인일보	7	7						2			2		3
	기	시대일보	4	4						1		2			1
		우리일보	2	2						1					1
		인천일보	3	3						2		1			
	충북	중부일보	5	5								5			
		전국매일	4	4						2					2
		평화일보	4	4						1		1			2
	전	수도일보	4	4						1		2			1
		인천신문	2	2											2
		일간경기	2	2						1					1
	충북	강원도민일보	2	2								2			
		동양일보	2	2						2					
		중부매일	4	4						2					2
	전북	한빛일보	1	1											1
		새충청일보	2	2											2
		새전북신문	8	8						1		2			5
	전북	전라일보	4	4						1					3
		전북도민일보	4	4						1					3
		전북일보	7	7						3					4
	전북	전북중앙신문	3	3											3
		전북매일	4	4						1					3
		새전북신문	3	3						2					1
	경남	전북대중일보	4	4								2			2
		전북연합신문	6	6						2					4
		전주일보	5	5						2					3
	제주	경남도민일보	6	6						3					3
		경남매일	3	3						2					1
		경남신문	1	1						1					
	제주	경남일보	4	4						1		2			1
		울산매일	2	2						1					1
		울산신문	1	1											1
	제주	제민일보	1	1											1
		제주일보	1	1											1

매체 유형	구 분 매체명청구건수		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합 의	직 조 결	권 정 결	조 불 성 결	기 각	각 하
	제주 한라일보	3	3									2			1
	소 계	227	227							77	5	39	6		100
경 제 지	매일경제	13	12		1					8					5
	서울경제	4	4							1	1				2
	파이낸셜뉴스	6	6							2					4
	한국경제	20	19						1	10		1	1		8
	헤럴드경제	5	4		1					3					2
	머니투데이	3	3							1		2			
	소 계	51	48		2				1	25	1	3	1		21
스 포 츠 지	스포츠서울	1	1										1		
	일간스포츠	1						1		1					
	소 계	2	1					1		1			1		
특 수 일 간 지	국방일보	1	1									1			
	디지털타임스	3	2					1		2					1
	매일노동뉴스	4	4							3					1
	환경일보	2	2							2					
	전자신문	4	4										1		3
	소 계	14	13					1		7		1	1		5
외 국 어 일 간 지	Korea Herald	2	2							1					1
	소 계	2	2							1					1
무 료 일 간 지	메트로	1			1					1					
	AM7	2			2					1					1
	소 계	3			3					2					1
중 앙 방 송	KBS-TV	6	4			2						1	2		3
	KBS-1TV	42	36		5	1				9	4	10			19
	KBS-2TV	19	16		1			1	1	3	1	4	2		9
	MBC-TV	69	57		4	6		2		20	18	16	2		13
	SBS-TV	25	17		6			2		8		5	4	1	7
	소 계	161	130		16	9		5	1	40	23	36	10	1	51
지 방 방 송	부산KBS-1TV	4	4							1					3
	대구KBS-1TV	1	1												1
	창원KBS-1TV	2	2									2			
	전주KBS-1TV	1			1					1					
	광주KBS-1TV	2	2												2
	순천KBS-1TV	2	2									1			1
	제주KBS-1TV	2	2							1					1
	강릉MBC-TV	1			1										1
	삼척MBC-TV	1	1							1					
	원주MBC-TV	3	3							3					
	춘천MBC-TV	1	1												1
	청주MBC-TV	2			2										2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합 의	직 조 결	조 정 결	불 성 결	기 각	각 하 취 하
지 방 방 송	대전MBC-TV	1	1												1
	대구MBC-TV	5	3			2				2		2			1
	안동MBC-TV	1	1							1					
	포항MBC-TV	2	2							1		1			
	마산MBC-TV	4	4									3	1		
	전주MBC-TV	4	3		1					1		1			2
	광주MBC-TV	1	1							1					
	여수MBC-TV	2	2												2
	제주MBC-TV	2	2							1					1
	광주PBC-R	1	1												1
	소 계	45	38		5	2				14		10	1		20
지 역 민 방	GTB-TV	2	2							2					
	KNN-TV	4	4							3					1
	TJB-TV	2	2							1					1
	TBC-TV	1			1										1
	CJB-TV	2	2							1					1
	KBC-TV	1	1												1
	J-TV	4	3		1					1					3
	UBC-TV	1	1								1				
	JIBS-TV	2	2												2
	소 계	19	17		2					8	1				10
케 이 블 T V	YTN	8	7				1			4		2			2
	MBN	2	2									2			
	한국경제와우TV	2	1		1					2					
	YTN STAR	1	1												1
	t v N	5	3		2					1					4
	Mnet	1						1							1
	서경방송	2	2									2			
	비즈니스엔	1				1									1
	평화방송TV	1	1							1					
	Story On	1	1												1
	소 계	24	18		3	1	1	1		8		6			10
이동 멀티 미디어	TU미디어	1			1					1					
	소 계	1			1					1					
뉴 스 통 신	연합뉴스	23	18		4				1	7		4	1		11
	뉴스시스	7	5		2					3	1	2			1
	소 계	30	23		6				1	10	1	6	1		12
시 사 주 간 지	시사저널	3	1						2	3					
	주간동아	5	5								1	3			1
	주간조선	2	2								2				
	이코노미21	1	1												1

매체 유형	구 분		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합 의	직 조 결	권 정 정	조 불 성 결	정 성 결	기 각	각 하	취 하
시사 주간지	시사한국	1	1											1			
	시사IN	5	5							1			2				2
	소 계	17	15						2	4	3		5		1		4
시사 주간신문	일요시사	2	2							2							
	일요신문	1	1														1
	소 계	3	3							2							1
지 역 주 간 신 문	CNB저널	2	2							2							
	동작신문	2	2								2						
	마포신문	2	2							1							1
	울산여성신문	1	1														1
	경북문화신문	2	2							1							1
	담양주간신문	1	1										1				
	나주뉴스	2	2							1	1						
	순천시민의신문	2	2										2				
	큰여수신문	2	2														2
	남해안신문	1	1														1
	여수신문	1	1														1
	나주신문	1	1							1							
	신안신문	1	1														1
	장성군민신문	2	2														2
	고흥타임즈	1	1							1							
	서해안신문	2	2							1			1				
	아산투데이	2	2										2				
	보령시민신문	4	4							1							3
	금산저널	2	2										2				
	충남시사신문	1	1														1
	안산타임스	2	2							1							1
	부천자치신문	3	3								1	1	2				
	부평신문	1	1							1							
	평택시민신문	1	1							1							
	동부교차로저널	1	1										1				
	광명지역신문	1	1														1
	뉴스앤뉴스	2	2														2
	원주투데이	2	2							2							
	인제신문	2	2														2
	충청리뷰	7	4		3						4		1				2
	나우리신문	1	1							1							
	연기신문	2	2							1							1
	목포투데이	1	1							1							
	완주신문	2	2							1							1
	함안아라신문	3	3							2							1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합 의	직 조 결	권 정 정	조 불 성 결	기 각	각 하	취 하
지 역 주 간 신 문	양산시민신문	1					1									1
	고성신문	2	2							1						1
	김해신문	3	3							2						1
	미륵산	2	2									2				
	양산신문	2	2							1						1
	소 계	75	71			3		1			28	4	14			
특 수 주 간 신 문	수산신문	1	1										1			
	교통신문	3	3								2					1
	개인택시신문	2	2							1						1
	컴퓨터타임즈	2			2											2
	기독교신문	2	2							2						
	PD저널	1	1										1			
	e조은뉴스	4	4							2				2		
	여행미디어	2	2										2			
	한국교육신문	1	1							1						
	미디어오늘	2	2													2
	가스산업신문	2	2								2					
	건설교통신문	1	1							1						
	목재신문	3	3							1			2			
	목회자신문	1	1							1						
	한국광고신문	1	1							1						
	한국안경신문	2	2							2						
	전문건설신문	1	1							1						
	한국시사정보신문	1	1													1
	전국아파트신문	2	2										2			
	소 계	34	32			2					13	4	8		2	
월 간 지	신동아	3	3							1	2					
	월간조선	3	3							1						2
	KTX매거진	2	2									2				
	BESTBABY	1			1					1						
	군사세계	1	1							1						
	소 계	10	9			1					4	2	2			2
인 터 넷 신 문	노컷뉴스	11	11							5			2			4
	오마이뉴스	15	15							8			5			2
	프레시안	1	1										1			
	쿠키뉴스	1	1													1
	e조은뉴스	2	2										2			
	CNB NEWS	7	7							5			2			
	투데이코리아	1	1							1						
	대자보	1			1					1						
	데일리안	3	2		1											3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합 의	직 조 결	권 정 정	조 불 성 결	정 정 결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데일리팝	1	1							1								
	브레이크뉴스	3	3							1							2	
	이데일리	4	4							2			2					
	데일리서프라이즈	3	3							2							1	
	메디컬투데이	2	2							2								
	오도데일리	2	2														2	
	무토미디어	1	1														1	
	코카뉴스	2	2							1							1	
	위드뉴스	1			1					1								
	아이뉴스24	2	2														2	
	메디게이트뉴스	1	1														1	
	인터넷미디어오늘	2	2										1				1	
	인터넷환경일보	3	3							2			1					
	무브온21	1						1								1		
	에클레시아뉴스	9	9							4				5				
	이투데이	2		2									2					
	소통뉴스	6	6							2							4	
	양산뉴스	1						1									1	
	제주투데이	4	4							2							2	
	광주투데이	2	2							1							1	
	광양만권뉴스	1	1														1	
	광주전남데일리안뉴스	3	3							1			2					
	엔에스아이뉴스	2	2														2	
	울산e조은뉴스	2	2														2	
	진도뉴스	2	2										2					
	퍼스트데일리	1	1														1	
	조선닷컴	3	2							1							3	
	플라마	2	2															2
	청주기별	1			1						1							
	JBS	1	1								1							
	화국동교회홈페이지	1	1														1	
	소 계	113	104	2	4			1	1	1	44			22		5	5	37
기 타	관악	1	1							1								
	개봉교회주보	1	1														1	
	한성대신문	2	2							2								
	성도교회주보	1	1														1	
	신광교회주보	1	1							1								
	소 계	6	6							4							2	
총 계	1,043	953	2	53	12	3	11	9	359	54		194	42	6		388		

9.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충북중재부가 7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북중재부 76.9%, 부산중재부 73.9% 순이었다. 2006년과 달리 중재부별로 비교적 고른 피해구제율을 보였는데 2006년에는 중재부별로 큰 차이를 보였었다.

〈표 2-9〉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중 재 부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5	서 울	592	224	27	18	(4)	130	(1)	17	9	167	(96)	62.2
	부 산	35	8	1			7		1		18	(10)	55.9
	대 구	14	4				2				8	(4)	57.1
	광 주	44	17				8			1	18	(7)	55.8
	대 전	19	8				5				6	(4)	63.2
	경 기	87	27	1			24			1	34	(16)	51.2
	강 원	15	7								8	(7)	93.3
	충 북	10	4								6	(3)	70.0
	전 북	29	15	2	2		4				6	(2)	65.5
	경 남	25	15							4	6	(5)	95.2
	제 주	13	5				1		1		6	(6)	91.7
계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100.0%	37.8	3.5	2.3		20.5		2.2	1.7	32.0			
2006	서 울	709	236	23	26		157	(2)	16	13	238	(157)	61.5
	부 산	42	15				10				17	(6)	50.0
	대 구	31	10				10				11	(4)	45.2
	광 주	55	6				16		1		32	(10)	29.6
	대 전	29	15				2				12	(10)	86.2
	경 기	113	25	4			17		3		64	(38)	60.9
	강 원	14	4	1					2		7	(5)	83.3
	충 북	13	7								6	(3)	76.9
	전 북	50	21	1	2		8				18	(11)	66.0
	경 남	20	14								6	(5)	95.0
	제 주	11	3				6				2	(1)	36.4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100.0%	32.8	2.7	2.6		20.8		2.0	1.2	38.0			
2007	서 울	644	224	20	28	(2)	121	(3)	33	6	212	(140)	64.3
	부 산	25	10	1			1	(1)	2		11	(5)	73.9
	대 구	32	13				7	(1)	2		10	(5)	63.3
	광 주	63	21		4		11				27	(19)	63.5
	대 전	41	16				9				16	(11)	65.9
	경 기	84	20	1			24		4		35	(23)	55.0
	강 원	14	8				2				4	(1)	64.3
	충 북	23	11				1				11	(7)	78.3
	전 북	65	19				5				41	(31)	76.9
	경 남	37	13				11		1		12	(9)	61.1
	제 주	15	4				2				9	(6)	66.7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100.0%	34.4	2.1	3.1		18.6		4.0	0.6	37.2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0. 손해배상 청구액 조정액 현황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고 1천억 원에서 최저 1원까지 다양하였다. 평균액은 약 4억 원, 중간액은 2천만 원이다. 1천억 원을 청구한 신청인이 한 명 있어 평균액이 2006년에 비해 많이 올랐지만 이를 제외하면 평균 1억 1천만 원 정도로 2006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조정액 평균은 약 313만 원이다. 최고액은 1천만 원, 최저액은 49만 원, 중간액은 2백만 원이다.

〈표 2-10〉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구 분 연 도	청구 건수	청 구 액				조 정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5	141	500,000	4,150,000,000	278,180,778	50,000,000	1,000,000	10,000,000	3,452,381	3,500,000
2006	318	10,000	3,000,000,000	109,545,629	25,000,000	300,000	15,000,000	3,229,750	1,500,000
2007	349	1	100,000,000,000	400,663,571	20,000,000	490,000	10,000,000	3,133,462	2,000,000

11.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액은 대부분 1백만 원~5백만 원 사이에서 조정되고 있다. 조정액 분포는 1백만 원~2백만 원이 36.5%, 2백만 원~5백만 원이 28.8%로 전체 65.3%를 차지했으며, 5백만 원~1천만 원 17.3%, 1천만 원 이상 9.6%, 1백만 원 미만 7.7%로 집계되었다.

2006년도에 비해 5백만 원~1천만 원의 분포 비율이 많이 상승하였고 1천만 원 이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구 분 연 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만	2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2005		4	13	3	1	21
		19.0	61.9	14.3	4.8	100.0%
2006	7	15	11	1	6	40
	17.5	37.5	27.5	2.5	15.0	100.0%
2007	4	19	15	9	5	52
	7.7	36.5	28.8	17.3	9.6	100.0%
계	11	38	39	13	12	113
	9.7	33.5	34.4	11.6	10.8	100.0%

12. 손해배상 병합청구사건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병합된 청구의 처리결과를 검토해 보면, 대체적으로 손해배상과 함께 병합된 청구의 합의율이 단독 청구의 합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배상청구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금전배상이 아닌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2〉 손해배상 병합 청구사건 처리결과

구 분 병합청구명	청구명	건 수	합의건수	합의율 (%)	단독청구 합의율 (%)	취하건수	취하건수 중 보도된 건수	취하건수 중 보도율 (%)	피해 구제율 (%)
정정·손배 (231건)	정 정	231	103	44.6	37.0	59	36	61.0	65.2
	손 배	231	41	17.7	33.7	115	91	79.1	58.9
반론·손배 (12건)	반 론	12	5	41.7	40.0	2	2	100.0	58.3
	손 배	12	2	16.7	33.7	5	5	100.0	58.3
추후·손배 (5건)	추 후	5	3	60.0	17.4	2	1	50.0	80.0
	손 배	5	1	20.0	33.7	4	3	75.0	80.0
정정·반론·손배 (9건)	정 정	9	3	33.3	37.0	4	4	100.0	100.0
	반 론	9	5	55.6	40.4	3	3	100.0	100.0
	손 배	9	2	22.2	33.7	6	6	100.0	100.0

제3장 중재신청 처리결과 현황

1. 침해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조정사건과 별도로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중재신청한 건수는 14건이었다. 이를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상권 12건, 프라이버시 2건으로 명예 이외의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것이 전부였는데 이 사건들은 그 위법성을 가리기가 쉽고 피신청인 측도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재신청건 모두 처음부터 중재로 신청된 경우는 없고,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여 분쟁해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한해 중재부가 권유하여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중재로 변경 신청한 것이었다.

〈표 3-1〉 침해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구 분 연 도	청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기타
2006	7	3		3	1			
2007	14			12			2	
계	21	3		15	1		2	
100.0%		14.3		71.4	4.8		9.5	

2. 중재신청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중재 청구액 평균은 약 740만 원으로 조정 청구액 평균 3억 9천 7백만 원의 1.9% 수준이다. 중재액 평균은 175만 원으로 조정액 평균 313만 원의 50%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조정 청구액보다 중재청구액이 낮은 것은 중재건이 대부분 소액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2〉 중재신청사건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구 분 연 도	청구건수	청 구 액				중 재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6	5	10,000,000	30,000,000	22,000,000	20,000,000	700,000	7,500,000	4,240,000	5,000,000
2007	12	1,000,000	30,000,000	7,383,333	5,000,000	300,000	3,000,000	1,750,000	1,350,000

제4장 자동소제기 현황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21건(청구건수 32건)이다. 이 중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건수가 17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한 건수는 3건,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건수는 1건 이었다.

〈표 4-1〉 연도별 자동소제기 처리결과

구 분 연 도	건 수	청 구 명					이 의 신 청			1심결과			
		정 정	반 론	손 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 용	취 하	기 각 각 하	계 속
2005	9	2	4	1	2		2	7		2	5	2	
2006	24	6	6	8	2	2	4	20		14	4	5	1
2007	21	6		4	10	1	1	17	3	2	4		15
계	54	14	10	13	14	3	7	44	3	18	13	7	16

〈표 4-2〉 매체별 자동소제기 처리결과

구 분 매체명	건 수	청 구 명					이 의 신 청			1심결과			
		정 정	반 론	손 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 용	취 하	기 각 각 하	계 속
동아일보	1				1		1						1
문화일보	2	2						1	1				2
서울일보	1				1			1					1
전남도민일보	1				1			1		1			
호남일보	1			1				1					1
서울경제	1	1						1					1
주간조선	1				1				1				1
나주뉴스	1	1						1					1
가스산업신문	1				1			1			1		
KBS-TV	2	1				1		2					2
MBC-TV	9	1		3	5			8	1	1	2		6
계	21	6		4	10	1	1	17	3	2	3		16

연도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 조 정

1981. 3. 31 ~ 2007. 12. 31.

구 분 연 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5)	1	2	20	(2)	39.0%
1982	50	19				19	(5)		2	10	(4)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52.2%
1984	54	12				29	(8)	3		10	(5)	49.0%
1985	59	12				28	(5)	4		15	(7)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6.3%
1987	47	10				9	(4)	1		27	(2)	34.8%
1988	55	16				12	(5)		1	26	(13)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계	11,364	3,710	214	212	(27)	2,268	(269)	284	72	4,604	(2,405)	60.2%
	100.0%	32.6%	1.9%	1.9%		20.0%		2.5%	0.6%	40.5%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합의 + 조정결정중 동의 + 조정결정중 이의·조정불성립결정·취하 중 결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기재된 건수) / 조정건수

■ 중 재

구 분 연 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중재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06	7		7				
2007	14		14				
계	21 (100.0%)		21 (100.0%)				

◇ 시정권고현황 ◇

2007년에는 일간 104종(중앙일간지 27종, 지방일간지 77종), 종합주간 19종, 지역주간 240종, 월간 7종, 뉴스통신 2종, 인터넷신문 338 종 등 총 710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202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2006년의 190건에 비해 6.3%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위원회가 자체 시정권고한 건수는 총 200건이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제3자가 신청한 39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80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살관련 상세묘사가 44건(21.8%), 마약용량·용법공개가 30건(14.9%),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가 21건(10.4%), 사생활침해 14건(6.9%) 순이었다.

〈표 5-1〉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07. 12. 31.

연도	구분 권고 건수	침해유형									종별					
		개인적 범의 침해					사회적 범의 침해			국가적 범의 침해	일간 신문	주간 신문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계	5,188	713	133	1,778	1,025	259	977	228	75		4,812	78	15	220	62	1
	100.0%	13.7%	2.6%	34.3%	19.8%	5.0%	18.8%	4.4%	1.4%		92.8%	1.5%	0.3%	4.2%	1.2%	0.0%

2006년에 비해 자살관련 상세요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이 대폭 감소한 반면(38.8%→21.8%),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31.7%→39.6%), 마약용량·용법공개(5.3%→14.9%)는 대폭 상승했다.

특히 자살관련 상세요사의 시정권고 비율이 2006년 38.8%에서 2007년 21.8%로 감소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정권고에 대해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시정권고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시정권고 건수는 2005년 11건, 2006년 4건에 이어 2007년도에는 단 1건에 그쳤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127건(62.9%)을 차지하였으며, 인터넷신문 43건(21.3%), 뉴스통신 20건(9.9%), 주간지 및 주간신문 11건(5.4%) 등의 순이었다. 일간신문의 비율은 2005년 89.0%, 2006년 79.8%에서 2007년 62.9%로 대폭 감소한 반면,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7%, 2006년 8.6%에서 2007년에는 21.3%로 월등히 높아졌다.

〈표 5-2〉 2007년도 자체심의 의결현황

구 분 간 별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 폭 력 피 해 자 신원공개	정 신 질 환 자 신원공개	피 의 자 피 고 인 신원공개	목 격 자 신 고 자 피 해 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 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 개	자살관련 상세요사	기 타	
일간신문	중 앙	21			13	1	4	1		2	
	지 역	105		1	40	11	4	21	28		
주간신문	중 합	6			1		3	1		1	
	지 역	5					1		3	1	
잡 지											
뉴 스 통 신		20		1	9	3	1	3	3		
인 터 넷 신 문		43	1		17	6	1	4	10	4	
총 계		200	1	2	80	21	14	30	44	8	
		100.0%	0.5%	1.0%	40.0%	10.5%	7.0%	15.0%	22.0%	4.0%	

〈표 5-3〉 2007년도 신청심의 의결현황

구 분 간 별 계			신 청 유 형				처 리 결 과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기 타	시정권고	기 각	각 하	취 하	기 타
일간신문	중 앙	20	18	2				16		4	
	지 역	1		1						1	
	특 수	1		1			1				
주간신문	중 합	1	1							1	
	지 역										
방 송		10	3	7				1		2	7(이첩)
잡 지		1		1			1				
뉴 스 통 신		5	5					1		4	
인 터 넷 신 문											
총 계		39	27	12			2	18		12	7
		100.0%	69.2%	30.8%			5.1%	46.2%		30.8%	17.9%

제3자가 신청한 심의건수는 모두 39건으로 이중 2건만이 시정권고 되었으며, 기각 18건, 취하 12건, 기타 7건이었다. 2005년의 17건에 비해 신청건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시정권고로 이어진 건수는 감소했다(3건→2건).

2006년에 비해 기각률은 높아진 반면(22.8%→46.2%), 취하율은 대폭 감소하였는데(72.0%→30.8%) 이는 시정권고 신청을 통해 사과문 게재, 기사삭제 등을 요구하거나 사전방송금지를 요청하는 등 여전히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용 현황 ◇

1. 상담처리결과 현황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2,343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는 2006년도의 2,304건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이다.

상담신청유형은 전화상담이 1,916건(81.8%)로 가장 많았고, 방문상담이 190건(8.1%), 인터넷실시간상담 113건(4.8%), 인터넷게시판상담 91건(3.9%)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비해 전화상담 비율이 소폭 상승했고(79.7%→81.8%), 방문상담 비율 역시 소폭 상승했으며(7.7%→8.1%),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소폭 감소했다. (실시간상담 5.7%→4.8%, 게시판상담 6.1%→3.9%)

상담결과 1,776건(68.0%)에 대해 조정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이 가운데 696건이 실제 조정신청접수가 되었다. 조정신청접수율은 39.2%로 2006년도의 555건(32.3%)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언론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어 소송제기 등의 법적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291건(11.1%), 타기관 안내 221건(8.5%), 기타 218건(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 상담신청유형

※ ()은 %

구 분 연 도 계		상 담 유 형					
		전 화	방 문	인터넷실시간	인터넷게시판	이메일상담	기 타
2004(4. 1.~12. 31.)	1,816	1,346	176	177	77	15	25
2005	2,353	1,815	267	147	94	16	14
2006	2,304	1,836	178	132	140	7	11
2007	2,343	1,916	190	113	91	14	19
계	8,816	6,913	811	569	402	52	69
	(100.0)	(78.4)	(9.2)	(6.4)	(4.6)	(0.6)	(0.8)

〈표 6-2〉 상담처리결과

※ ()은 %

구 분 연 도 계		상 담 처 리 결 과						
		조정절차안내	법적절차안내	재상담예정	타기관안내	자체종결	기 타	총 계
2004(4. 1.~12. 31.)	1,816	1,151	533	91	183	103	11	2,072
2005	2,353	1,663	554	63	246	42	64	2,632
2006	2,304	1,719	286	59	297	36	145	2,542
2007	2,343	1,776	291	81	221	23	218	2,610
계	8,816	6,309	1,664	294	947	204	438	9,856
		(64.0)	(16.9)	(3.0)	(9.6)	(2.1)	(4.4)	(100.0)

* 상담처리 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 결과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조정신청 접수율은 조정절차 안내 건수 대비 조정신청사건 접수비율을 의미.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1,459건(61.0%)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성명권·음성권 침해가 247건(10.3%), 사생활침해 63건(2.6%), 신용훼손 43건(1.8%)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비해 명예훼손과(58.0%→61.0%) 초상권·성명권·음성권 침해(9.4%→10.3%)로 다소 증가한 반면 신용훼손은 다소 감소하였다.(4.9%→1.8%)

〈표 6-3〉 피해유형별 상담건수

※ ()은 %

구 분 연 도 계		피 해 유 형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성명권·음성권침해	사생활침해	기 타	총 계
2004(4.1~12.31.)	1,816	1,034	153	137	15	527	1,866
2005	2,353	1,710	51	172	42	435	2,410
2006	2,304	1,384	118	224	65	594	2,385
2007	2,343	1,459	43	247	63	582	2,394
계	8,816	5,587 (61.7)	365 (4.0)	780 (8.6)	185 (2.0)	2,138 (23.6)	9,055 (100.0)

〈표 6-4〉 월별 상담신청현황

※ ()은 %

구 분 월 건수		상 담 유 형					
		전 화	방 문	인터넷실시간	인터넷게시판	이메일	기 타
1월	208	169	31	2	5	0	1
2월	186	148	10	8	13	3	4
3월	218	174	18	13	9	2	2
4월	215	179	14	11	10	1	0
5월	212	168	16	14	12	2	0
6월	221	181	12	15	8	3	2
7월	202	167	16	11	7	1	0
8월	194	166	12	8	6	1	1
9월	167	135	12	9	8	0	3
10월	182	148	20	7	7	0	0
11월	180	153	12	9	3	1	2
12월	158	128	17	6	3	0	4
계	2,343 (100.0)	1,916 (81.8)	190 (8.1)	113 (4.8)	91 (3.9)	14 (0.6)	19 (0.8)

2. 매체별 현황

상담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매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문 914건(38.1%), 방송 709건(29.6%), 인터넷 325건(13.6%), 통신 63건(2.6%), 월간지 3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 신문매체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41.6%→38.1%), 방송(24.0%→29.6%)과 인터넷(11.8%→13.6%)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신문매체 내에서는 일간신문이 699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매체가 차지하는 상담비율이 2005년 8.5%, 2006년 11.8%, 2007년 13.6%로 상승하고 있다.

〈표 6-5〉매체유형별 현황

※ ()은 %

연 도	구 분 계	매 체 유 형							
		일간신문	주간신문	방 송	월간지	통 신	인터넷	기 타	불 명
2004(4.1~12.31.)	1,816	641	201	565	35	33	103	13	333
2005	2,353	780	234	595	57	76	215	10	561
2006	2,304	750	247	575	58	64	282	15	408
2007	2,343	699	215	709	31	63	325	24	330
계	8,816	2,870 (31.0)	897 (9.7)	2,444 (26.4)	181 (2.0)	236 (2.6)	925 (10.0)	62 (0.7)	1,632 (17.6)
		총 계 (100.0)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3. 신청인별 현황

상담신청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1,368건((58.4%), 회사가 260건(11.1%), 일반단체가 178건(7.6%), 공공단체 72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 개인상담이 대폭 증가하였고(47.0%→58.4%), 일반단체의 상담도 다소 증가하였다(5.9%→7.6%).

상담시 상담자 대부분이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여 익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 비율이 2006년도의 736건(31.9%)에 비해 대폭 줄어든 433건(18.5%)으로 상담시 위원회를 신뢰하며 상담에 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6〉신청인별 현황

※ ()은 %

연 도	구 분 계	신 청 인 유 형						
		개 인	일반단체	회 사	교육기관	종교단체	공공단체 등	기 타
2004(4.1~12.31.)	1,816	829	141	229	28	7	47	535
2005	2,353	1,241	120	228	19	8	39	696
2006	2,304	1,084	135	267	25	9	48	736
2007	2,343	1,368	178	260	26	4	72	433
계	8,816 (100.0)	4,522 (51.3)	574 (6.5)	984 (11.2)	98 (1.1)	28 (0.3)	206 (2.3)	4 (0.1)
		불 명 (27.2)						

4. 교육 현황

2007년 한 해 동안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언론사, 대학, 공공기업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한 총 7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별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교육이 35회(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12회, 대학 10회, 공·사기업 9회, 기타 6회였다.

교육내용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34회,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30회, 언론분쟁 롤플레이 8회였다.

언론조정신청사례

언론조정신청사례

지면 관계상 신청사례 원문의 일부가 수정 또는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신청인 조합이 무주택 어민을 위해 지은 주상복합건물을 일반 분양했으나 실패해 큰 손해를 보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1년 10월 22일 21:20)

내 용 : ▷앵커 : 무주택 어민들을 위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면 ○○수협이 오히려 어민 돈 수백 억원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어민들과의 약속까지 깨가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했지만 그나마 일반분양에도 실패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작년에 완공된 부산 다대포의 ○○○○타워.

○○수협이 무주택 어민들에게 집을 지어 나눠주겠다면서 어민 돈 83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

나 입주자 가운데 어민들은 없습니다. (중략)

▷기자 : 어민들이나 수협 조합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시나요?

▷입주자 : 없는 것 같은데... 이 집 주인도 그냥 일반 분양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기자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000년 6월 주상복합상가 건축을 허가해 달라며 ○○수협이 작성한 사업승인신청서.

조합원들 가운데 무주택 어민들께 우선 분양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공사와 계약할 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수협관계자 : 어민들이 이만한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건 도저히 무리다. 그냥 보상을 해 주고...

▷기자 : 그나마 무주택 어민들을 제쳐놓고 실시한 일반 분양도 실패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너무 높은 분양가 때문에 아파트 280세대 가운데 100여세대가 분양이 되지 않은 겁니다. 모두 200개에 이르는 상가 점포들은 단 한 곳도 입점한 데 없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수협이 건물에 투자한 금액은 838억 원. 그러나 분양수익금은 244억 원입니다. 결국 어민 돈 600억 원만 날린 셈입니다.

▷○○수협조합원 : 우리 어민들 돈을 갈취해서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다음에 출자금 같은 것도 혹시나 어떻게 될는지 그런 것도 염려스럽잖아요.

▷기자 : 어민들과 약속을 어겨가면서 시공사 배만 불러준 의문의 주상복합 건설사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해경은 수협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시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무주택 어민들을 위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다던 ○○수협이 어민들과의 약속까지 깨가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했지만 주변시세보다 너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분양이 되지 않아 일반분양에 실패했으며, 모두 200개에 이르는 점포들은 단 한 곳도 입점한 데 없이 어민 돈 600억 원만 날렸으며, 특혜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어민들과의 약속까지 깨가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했지만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아 분양에 실패했고 어민 돈 600억 원만 날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모두 200개에 이르는 점포들은 단 한 곳도 입점한 데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보도 역시 현재 상가분양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보도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3,544,36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10월 22일 뉴스데스크의 ‘부산 다대포 ○○비치타워’ 사업에 관한 보도에 대해 부산시수협은, 영세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어촌계의 요구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했으며, 아파트는 100% 분양계약이 완료되고, 상가는 아직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하지 않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어민 돈 600억 원을 날렸다거나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MBC-TV ‘TV 속의 TV’ 프로그램 말미에 2007년 1월 27일까지 보도하되, 본문을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TV속의 TV」 프로그램 (2007년 1월 20일 12:1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동생을 폭행한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마산MBC-TV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마산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1월 29일 21:30)

내 용 : ▷앵커 :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가 조사받으러 온 당사자의 식구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검찰청 청사 내 한 검사실에서 쌍방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당사자의 형이 상대방의 구속을 요구했지만 검사가 구속 사안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갑자

기 검사의 먹살을 잡고 목을 죄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검찰은 이 남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지방검찰청 검사 폭행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11월 29일 「뉴스데스크」 시간에 폭력사건 피해자의 형이 가해자를 구속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검사의 먹살을 잡고, 목을 죄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피해자의 형은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아 신청인의 동생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자 검사가 욕설을 하여 경고의 의미로 검사의 입을 1~2 초 간 가렸다가 뗀을 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민·형사상 소제기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동생을 폭행한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연합뉴스 : 『폭행 피해자 가족이 검사 폭행』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9일자)

내 용 : <2007경남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경남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김 기 서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 <별지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판단 및 결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11.

<별 지1>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해고근로자인 신청인이 미신고 불법집회를 20여 차례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성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

처리결과 : 각 취하

(후략)

보도내용

중앙일보 : 『경찰이 이 부러뜨려도 외교부 청사 난입해도 구속 안 되는 게 현실』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1일자 1면)

내 용 : 검찰이 폭력시위 사범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과 관련, 주요 영장기각 사례를 수집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A4용지 3장 분량의 검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발생한 대표적인 불법 폭력시위 사범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6건의 사례를 뽑아 법원의 기각사유를 분석했다.

문건에서 검찰은 영장기각이 많아진 이유로 ▶시위 보장을 위해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영장 판사들의 인식 ▶범행을 일단 부인하는 피의자의 태도와 이를 방어권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관행 ▶지난해 말 농민 사망 사고 이후 경찰의 소극적인 시위 대처와 이에 따른 현장 증거수집의 한계를 들었다. (중략)

검찰이 밝힌 주요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2006년)	영장 청구 혐의	법원의 기각 이유
오리온전기 노조 외교통상부 청사 침입(1월)	미신고 집회 개최 등 불법 시위 주도한 노조 간부 배모 씨 등 3명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전원 영장기각
코오롱 해고근로 자 불법 집회 (3월)	20여 차례 미신고 집회 주도한 성모 씨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21일자 1면 『경찰관 이 부러뜨려도 외교부 청사 난입해도 구속 안 되는 게 현실』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미신고 집회를 20여 회 불법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성○○ 씨는 미신고 불법 집회를 20여 차례 주도적으로 주도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 원

취하 후 보도문

중앙일보 :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5일자 2면)

내 용 : ◆2006년 12월 21일자 1면 ‘검찰이 밝힌 주요 구속영장 기각 사례’ 기사에서 언급된 코오롱 ○○○○분쇄투쟁위원회의 성모 씨는 코오롱 정리하고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20여 차례의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없고, 코오롱 정리하고 분쇄투쟁에 단순 참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불구속 재판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의료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의 인터뷰 장면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I (PR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1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전주KBS-1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2월 15일 21:40)

내 용 : ▷앵커 : 해마다 늘고 있는 의료 기관과 환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기구 마련이 1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이해관계 속에 법안이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입니다.

▷기자 : 60대 김모 씨는 지난 9월 80만 원을 들여 눈밑 주름제거 수술을 받은뒤 부작용이 나타나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이 잘못됐다고 의사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료사고피해자 : 멸절된 트집을 부리나고요. 이렇게 수술을 잘못 했으면 미안하단 사과를 해도 모자랄 세상에 어디가 어찌냐고 멸절하다고 어? 나를 고발한다니...

▷기자 : 지난 6월 살을 빼기 위해 지방 분해 주사를 맞은 40대 여성도 등에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북 소비자 정보센터에는 4백 건에 이르는 의료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의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이해 관계 속에 의료분쟁 조정기구 마련을 위한 법안이 15년째 국회에서 상정과 파기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전주KBS-1TV는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기구 입법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피해사례로 본인의 인터뷰 내용과 취재화면을 방송하였습니다.

취재당시 본인은 취재기자에게 타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여 줄 것과 음성을 변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취재기자 역시 이 부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지방분해 주사의 부작용으로 염증이 생긴 허리와 등 부분을 그대로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하고 또한 음성도 변조하지 않은 채 취재화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본인의 초상권, 음성권 침해는 물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데 대해 2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신청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향후 이 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담당기자를 상대로 한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1월 29일 21:30)

내 용 : ▷앵커 : 남은 음식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푸드뱅크’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 들어, 기탁된 음식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전주시내에서 3년째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씨.

토스트를 만들고 남은 재료들을 틈틈이 ‘푸드뱅크’에 기탁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음식을 활용하고, 선행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스트 주인 : “괜히 버리느니 굉장히 아깝고, 음식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푸드뱅크가 떠올라서 제가 일년 반 정도 쭉...”

‘푸드뱅크’에 맡겨진 음식들은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센터 등 전주시내 백 80여 곳으로 전달됩니다. (후략) □

의료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의 인터뷰 장면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II (PR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전주MBC-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주MBC-TV : (1)「MBC뉴스」 프로그램 (2006년 12월 15일 18:40)

(2)「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12월 15일 21:40)

내 용 : <2007전북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전북조정1의 합의사항 참조〉

〈2007전북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월
29일 21:30)

합의사항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의료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의 인터뷰 장면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III (PR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J-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전북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2007전북조정1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J-TV : 「뉴스&뉴스」 프로그램 (2006년 12월 15일
20:35)

내 용 : 〈2007전북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J-TV : 「뉴스&뉴스」 프로그램 (2007년 1월 29일
20: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도장에서 제명된 사람이 관장의 최측근 제자였으며 실질적인 수석사범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총본부 ○○관 (관장 김 ○ ○)

피신청인 : 무토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

처리결과 : 취 하

개최』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9일
자)

내 용 : 한국 합기도의 개조 최○○의 기술을
가장 잘 전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도장의
하나인 ○○관에서 ○○본부관장을 역임하고 실질
적으로 수석사범의 역할을 했던 박○○ 관장이 ○
○관에서 독립한 후 첫 번째 기술세미나를 갖는
다.

박○○ 관장은 ○○관이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고수를 찾아서’에서 김○○ ○○관 총재의 기술반

보도내용

무토뉴스 : 『전 ○○관 ○○본부관장, 기술 세미나

기 제자로 출연했던 인물이다.

박 관장은 1992년 ○○관에 입문하여 2004년 ○○관에서 독립할 때까지 13여 년간 김○○ 총재의 최측근 제자로서 활동을 해왔으며, 실질적인 면에서는 사실상의 ‘수석사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인터넷신문인 무토뉴스는 지난 11월 29일 『전 ○관 ○○본부 관장, 기술 세미나 개최』 제하의 기사에서 박관장이 ○○관 시절 실질적인 수석사범 역할을 했으며 13년간 김 총재의 최측근 제자로 활동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수석사범제도는 없으며, 박 관장이 김 총재의 최측근 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무토뉴스 : 『‘전 ○○관 ○○본부관장 기술세미나 개최’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6일자)

내 용 : 무토뉴스는 지난 2006년 11월 29일자에 게재한 ‘전 ○○관 ○○본부관장, 기술세미나 개최’ 제하의 기사에서 박○○ 관장이 1992년 ○○관에 입문하여 2004년 ○○관에서 독립할 때까지 13여 년간 김○○ 총재의 최측근 활동을 해왔으며, 실력면에서는 사실상의 수석사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본부 ○○관에서는 소속 모든 사범 및 관장은 동일하게 상호 존중하고 있는 바 수석사범 제도가 없으며, 박○○ 관장은 최측근 제자가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반론 기사로 보도합니다. □

신청인이 ‘버블세븐’ 지역에 여러 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 병 호

피신청인 : 부평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부평신문 : 『문병호 의원,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오피스텔 다수 소유』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8일자 1면)

내 용 : 최근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커져 정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지역 문병호(부평갑·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지역의 핵으로 꼽히는 일명 ‘버블세븐(서울 강남·송파·서초·목동과 경기도 평촌·용인·분당)’ 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의 이번 부동산 내역은 올해 2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삼았다.

신고 당시 문 의원과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토지·건물)은 전세권 포함 15채에 이른다.

이 중 전세권은 현재 문 의원이 장인 장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산곡3동 현대3주구 아파트와 부평4동 소재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등 4채이다.

특히 문 의원은 버블세븐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3채, 서초구 잠원동 오피스텔 1채, 송파구 신천동 오피스텔 2채 등 오피스텔을 무려 6채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서초구와 영등포구에 아파트를 각 1채씩 소유할 정도로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11월 27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잠원동 오피스텔 2채와 송파구 오피스텔 2채 등 도합 4채를 민아무개(44) 씨에게 매도

했다. 그러나 매수인 민 씨는 문 의원의 처남으로 확인됐으며, 4채 모두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근저당권이 문 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설정돼 있었다.

문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4억 7241만 원에 이르러, 최근 폭등한 부동산 시세로 환산할 경우 대략 40억~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중략)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투기 목적이라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매각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장인이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한지 20~30년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오피스텔을) 처남에게 매각했지만 처남이 돈이 없다고 해 근저당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며 문 의원은 “국회의원은 부동산도 못하는 거냐”고 반문하며, “고의적으로 트집 잡지 말라”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문 의원의 배우자와 딸이 살고 있는 서울 집은 ‘자가’이지만, 정작 지역구에 거주지로 신고한 집은 ‘전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문병호 의원 부동산 투기의혹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8일자 1면 『문병호 의원,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오피스텔 다수 소유』 제하의 기사에서 문병호 의원(부평갑,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투기지역의 핵으로 꼽히는 일명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15채를 소유하면서 마치 부동산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문병호 의원이 버블세븐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1채밖에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11월 28일자 1면에 『문병호 의원,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다수 소유』라는 제목 및 『지역사회 일각, “부동산 투기 아니냐” 문 의원, “오피스텔, 장인이 20~30년 소유해 온 것”』이라는 부제 하에 문병호 의원(부평갑,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투기지역의 핵으로 꼽히는 일명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문병호 의원이 버블세븐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1채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만 현직 부장판사인 문병호 의원의 배우자가 1989년 이후부터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6채를 소유했다가 그 중 4채를 2005년 12월 23일 공동 소유자인 자신의 오빠(문 의원의 처남)에게 매각하였으며, 매각한 위 오피스텔 4채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설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부평신문 2007년 2월 6일 1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지역사회 일각, “부동산 투기 아니냐”)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부평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6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시장조사기관인 신청인 회사의 김치냉장고 시장점유율 자료를 무단으로 인용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비스코리아(주)

(대표이사 A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삼성 김치냉장고, 덩채 늘렸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9일자 A13면)

내 용 : 삼성 김치냉장고가 사상 처음으로 ‘덩채’
아성을 넘었다.

최근 전문 시장조사 기관인 ○○○코리아가 집계
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삼성전자
김치냉장고는 시장 점유율 33%를 나타냈다. 위니
아 덩채와 LG전자는 각각 28%, 31%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김치냉장고가 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근소한 차이기
는 하지만 95년 출시 후 11년 동안 김치냉장고의
대명사로 군림해 온 덩채 아성을 처음으로 넘어선
셈이다.

삼성전자는 리빙프라자 등 독자 판매망을 통한 판
매가 급증한 데 힘입어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삼
성전자 관계자는 28일 “제3기관의 객관적 조사에
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자체
적으로 분석한 결과 업체 불문하고 올해 김치냉장
고는 총 118만 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 제품은 42만 7000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삼성전자 점유율은 36%
에 달하게 된다. (중략)

삼성전자 관계자는 “여전히 양판점 등에선 덩채
가 판매량 1위인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삼성
전용 매장에서 판매가 급상승하고 있고 양판점 등
에서도 삼성 제품이 덩채를 많이 따라잡고 있어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프라인 판매에 온라인을 더할 경우 삼성·
위니아·LG 등 3사간에 판매순위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업체별 조사 결과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 역시 온라인 조사는 전국적 데이터
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계절적 성수기인 10~12월 중 고가 품목
판매는 덩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종류가 워낙 다양해 연간
통계를 정확히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삼성 김치냉장고, 덩채 늘렸다』 관련 정
정보도문

• 내 용 : 매일경제는 지난 12월 29일자 A13면
『삼성 김치냉장고, 덩채 늘렸다』 제하의 기사에서
○○○○○서비스코리아의 집계를 인용해 삼성의
김치냉장고 판매가 덩채보다 많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서비
스코리아가 조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를 합
해볼 때 실제 점유율은 보도된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점유율 순위에서도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직 2006년 12월 한 달 동안
의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한 부분 역시 사
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한편 삼성 김치냉장고가 덩채를 늘렸다고 보도
하면서 삼성의 특정모델 사진을 삽입하여 해당 모
델의 판매가 많은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리며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
는데도 ○○○○○서비스코리아만이 저작권을 가
지고 있는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점 역시 깊은 사
과를 드립니다. □

‘수사경찰제’가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그 사례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뉴시스

증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5.
처리결과 : 취 하 (정정)
합 의 (손배)

보도내용

뉴스 : 『경찰, 수사경찰제 원칙을 무시하고 직원 인사 ‘멋대로’』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경남 ○○경찰서가 수사전문 형사 양성을 통한 검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수사경찰제를 원칙없이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일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월 14일부터 강력사건 전담 형사, 사기 횡령사건 전담 형사, 교통사고 전담 형사, 여성청소년계 등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수사경과(警科) 경찰을 선발, 각 부서에 배치하는 수사경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수사경과 경찰이 주축이 돼 운영해야 할 형사와 강력범죄 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계 등에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비경과 경찰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

실제 ○○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난해 형사계 조모 씨가 수사경과 교육을 받으려 간 사이 지구대로 발령이 났다.

이 과정에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었던 비경과 경찰인 백모 씨가 배치됐다.

이처럼 ○○경찰서에서는 수사과 6명을 비롯한 형사와 3명, 여성청소년계 3명, 교통사고조사계 3명 등 전체 15명의 비경과 수사관들이 피의자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여겨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경찰은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강력형사계, 여성청소년계, 조사계 등의 인사에서 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제 등 인사시스템을 무시한 채 인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인사담당자는 “경과자 4명 중 일부는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 지구대 근무를 지원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민원인과 조사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 해당 과장이 인사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사경찰 인사운영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통신은 지난 1월 2일 『경찰, 수사경찰제 원칙을 무시하고 직원인사 ‘멋대로’ 운영』 제하의 기사에서 2006년도 ○○경찰서에서 단행한 수사경찰 인사이동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조모 씨와 백모 씨의 인사이동은 약 8개월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비경과자에 대하여 수사업무에 발령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는 당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루어졌고 직원인사를 ‘멋대로’ 운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 원

신청 후 보도문

뉴스 : 『○○ ‘수사경찰 운영’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5일자 사회면)

내 용 : 뉴스는 지난 2일 『경찰, 수사경찰제 원칙을 무시하고 직원인사 멋대로 운영』 제하의 기사에서 조모 씨가 수사경과 교육을 받으려 간 사이 인사이동됐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조씨와 백모 씨의 인사이동은 약 8개월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으며 비경과자를 수사업무에 발령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당시 ○○경찰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사이동을 했고 직원인사를 ‘멋대로’ 운영한 것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1월 25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시민단체 간부인 신청인이 민원인들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5.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5년 1월 9일 20:30)

내 용 : ▷앵커 : 사법개혁 관련 시민단체 집행위원장 조모 씨가 법률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률관련 문제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에게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천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5년 1월 9일 「8시뉴스」 프로그램에서 사법개혁관련 단체 집행위원장 조모 씨가 법률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판결결과 조모 씨는 피해 해결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가로챈 사실이 없고 다만 변호사가 아니면서 사무취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은 없으며 공공권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직권판단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집회행사비로 사용된 금 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되었으나 일부유죄로 인정받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신청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주)에스비에스(SBS-TV)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대표이사 안국정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TV에 〈별지1〉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SBS-TV 2005년 1월 9일 「8시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해결 미끼로 시민단체 위원장 거액 챙겨’라는 제목으로 ‘사법개혁 관련 시민단체 집행위원장 조모 씨가 법률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조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률 관련 문제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에게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천만여 원을 받아 가

로첸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피해자들을 대신해 법률사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 법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17조 제1항에서 언론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SBS-TV의 보도는 신청인의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한 8가지 공소사실과 관련, 신청인은 1가지 공소

사실에 대하여만 무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7가지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무죄판결이 내려진 '한평수 관련 피켓시위'에 대하여는 보도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이상, 신청인에게 추후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에 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19.

〈별 지1〉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이사가 탄원인 협박”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30일 3면)

내 용 : 시민단체 대표들이 비자금 1억 7400만원을 조성해 횡령(업무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자 지역농협 이사가 탄원서 서명자들에게 항의하고 협박·폭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사는 탄원 사실을 확인한 적은 있지만, 폭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연합에 따르면 윤 이사는 지난 27일 윤○○○여성민우회 대표를 찾아가 탄원서 서명 여부에 대해 물었고, 윤 이사를 비롯한 2~3명이 다수 탄원인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탄원 여부를 확인했다.

○○연합은 “이 과정에서 윤 이사 등은 탄원인들에 대한 뒷조사와 폭언·협박을 하였다”면서 “탄원인들의 집에 전화를 걸어 가족들에게 꼬치꼬치 캐묻고 ○○연합 의장과 생협 이사장한테 전화를 걸어 ‘죽을래’, ‘뭐 이 따위가 다 있어’라는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적반하장’ 식으로 시민단체 탄원인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명백히 비난받아야 할 반이성적 행위이자 그 정도가 지나치면 사법적 처리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아무개 이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는 과거에 한 것을 복사해서 붙인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사문서 위조다. 한 사람한테 탄원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폭언·협박)을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30일자 3면 『“이사가 탄원인 협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농협 윤 이사가 탄원서 서명자들에게 항의하고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윤모 이사는 탄원인들에게 어떠한 협박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2006년 12월 30일자 3면에

『“이사가 탄원인 협박” 논란』 제하의 기사중 ○○농협 윤 이사가 탄원서 서명자들에게 항의하고 협박과 폭언 및 공갈을 했다고 ○○연합 측의 주장을 인용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윤모 이사는 탄원인들에게 협박이나 폭언 및 공갈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히 확인된 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7년 1월 20일자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가 실린 면수의 다른 기사(라이온스협...)의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신청인이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도민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0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5.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경남조정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7경남조정2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경남일보 : 『“조합장 엄벌 탄원 불만 폭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일 4면)

내 용 : 〈2007경남조정2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3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서경방송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서경방송 : 「SCS뉴스」 프로그램 (2006년 12월 29일 19:20)

내 용 : ▷앵커 :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년 넘게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농협 사태와 관련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안 ○○농협 이사가 이들 탄원인을 협박했다고 해 지역사회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 이사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 기자입니다.

▷기자 : ○○농협 사태와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일 ○○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이 탄원서는 업무상 횡령과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모 조합장과 윤 모 이사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탄원서에 사명한 사람은 26명.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윤 이사로부터 걸려오기 시작한 협박 전화 때문입니다.

▷시민단체관계자 : 당신들이 무엇을 알고 탄원서 내용에 서명을 했느냐며 나중에는 '죽을래' 라는 폭언까지 나왔다.

▷기자 : 하지만 ○○농협 윤 이사는 협박 전화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윤 이사는 어느 누군가가 서명을 복사한 뒤 탄원서를 날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모 이사 : 내가 그 분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겠느냐. 공갈 협박을 하면 고소당할텐데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느냐.

▷기자 : 다음달 10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농협 사태.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에 갈등만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SCS뉴스 이○○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경남조정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강행해 GM대우의 서민형 경사용차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치 범)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8.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엔터리 행정에 서민형 경차 ‘스톱’』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3일자 3면)

내 용 : 정부의 엔터리 자동차 행정으로 GM대우
경남 창원공장 근로자 770여 명이 새해 벽두부터
길거리에 나 았게 됐다. GM대우 창원공장에서 생
산하는 다마스과 라보 등 내수용 서민형 경상용차
생산이 연초부터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2003년 고시된 경상용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이 올해부터 적용됐지만 GM대우가 기준에 맞
는 엔진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법
시행을 강행했다. (중략)

환경부의 법안 강행으로 연간 1만 7000대 규모로
내수용 다마스과 라보를 생산해 오던 GM대우 창
원공장 경상용차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00여 명을 포함해 770여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일터로 옮겨가야 할 상황이다. 이미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도급업체 근로자
100여명은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일자리를 떠났다.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나머지 도급
업체 근로자 500여 명도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
는 한 계약이 만료되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일터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GM대우는 경상용차 새안라인이 가동중단을 앞
둔 지난 연말 “강화된 기준에 맞는 엔진을 생산하
려면 아직 1년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해 환경부에
변경기준 적용유예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아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003년 개정돼 기술개발에 필요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GM대우는 적극적
인 기술개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경상용차 단종은 이미 예견됐으나 회사가 엔진
개발을 소홀히 해 이같은 일이 빚어졌다”며 “회
사는 계약해지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GM 대우 경상용차 생산중단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1월 3일자 3면 『엔
터리 행정에 서민형 경차 ‘스톱’』 제하의 기사에
서 정부의 엔터리 행정으로 인해 GM 대우 창원
공장의 다마스, 라보 등 경상용차가 생산 중단되
었고 이로 인해 동 사업장의 근로자 770여 명의
실업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이 있
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경상용차를 포함한 제작자
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국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03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사안으로서 이후 3년간의 기술대응기간이
부여되었으며, 당초 고시된 시행시기를 맞추어 정
상적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과정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으며, GM 대우의 경상용차
생산 중단은 해당 회사의 법규대응 노력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집행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환경부
가 엔터리 행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GM대우 경상용차 중단’ 기사 관련 환
경부 반론

• 내 용 : 1월 3일자 3면 『엔터리 행정에 서민형
경차 ‘스톱’』 기사와 관련,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2003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확정된 사안으로 이후 3년간 업계에
기술대응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GM대우의 경상
용차 생산중단은 ‘엔터리 행정’ 때문이 아니라
GM대우의 준비노력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1월 19일자 이
전, 문화일보 3면에 1단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반
론보도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GM대우
~의무화 2년 유예’ 활자와 같은 크기로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완주군이 군금고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완주군 (군수 임 정 엽)

피신청인 : 완주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완주신문 : 『군금고 선정 원인무효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30일자 3면)

내 용 : 완주군금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이를 근거로 한 행자부예규를 위반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또 군금고 선정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임정엽 군수의 말과는 달리,

임 군수가 농협에 많은 액수의 협력사업기금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군민 여론이 금고선정과정을 불신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지난 5월 각 시도 및 자치단체에 통보된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금고의 약정 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군금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자치단체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완주군은 지난 5월 전라북도를 통해 행자부 예규를 전달받았음에도 군의회에 조례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군금고 선정을 2개월 앞둔 9월 자체 계획으로 군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따라서 조례 없는 군금고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어질 공산이 크다.

또 행자부 예규에는 신용 등급에 의해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도록 되어 있지만 완주군은 농협과 전북은행의 신용도를 동점 처리해 행자부 예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황룡 부군수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행자부 예규를 준용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정엽 군수가 군금고 선정과정에 일찌감치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임 군수는 국○○ 전 농협전주완주지부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군수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농협이 20억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고, 다만 과거에 낸 협력기금보다 10배 이상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이달 참석자들은 전했다.

군금고 선정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국점룡 농협전주완주지부장과 부지부장, 군내 10개 농협조합장 및 임원 등 12명이 군수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6년 11월 30일자 3면 『군금고 선정 원인무효 가능성』 기사와 관련해 완주군은 다음과 같이 반론해왔습니다.

첫째, 완주군은 2006년 8월 3일 직능기관별로 3배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전북은행을 군금고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조례 미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자부 예규)에 의거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선정했고, 약정기간 등 일부 조례,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농협의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이유없다고 기각됨에 따라 완주군 금고선정 원인무효 가능성을 높게 예측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임을 밝혀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금고고 선정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완주군은 2006년 8월 3일 직능기관별로 3배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완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11월 10일 전북은행을 금고고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조례 미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자부 예규)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해 선정했고, 약정기간 등 일부 조례,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농협의 '완주군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완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고 그 결과 심사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완주신문 2007년 1월 25일자 3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완주군 지방재정법 시행령·행정자치부 예규 위반)활자크기와 같게, 본문활자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완주신문 : 『완주군금고 선정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2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보험가입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제주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제주투데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제주투데이 : 『‘보험가입강요’ 부하직원 폭행까지』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7일자 사회면)

내 용 : ○○의료원 현직 간부 직원이 보험가입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의료원 장례식장 담당자인 M 씨(42)는 이 병원 업무과장인 K 씨(49)와 친구 B 씨(49)가

지난 18일 새벽 1시 30분께 제주시청 부근 도로 상에서 보험가입을 안 해준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발로 폭행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제주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M 씨에 따르면 원무과장 K 씨는 이전부터 자신과 동료 직원들에게 보험가입을 강요해왔으며, 이날도 보험영업을 하는 친구 B 씨를 불러내 보험가입을 해주면 저녁과 술을 사준다고 했으나 모두 자신이 계산했다.

M 씨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원무과장 K 씨가 계속해서 보험가입을 강요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거절하자 갑자기 맥주병과 유리잔을 던지고 친구 B 씨와 함께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인터넷신문 제주투데이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자 상단에 『‘보험가입강요’ 부하직원 폭행까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의료원 원무과장 K 씨는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보험가입 강요’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제주투데이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자 『보험가입강요 부하직원 폭행까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제주의료원 원무과

장 K 씨와 보험영업을 하는 B 씨는 술좌석에서 원무과 직원인 M 씨에게 보험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2007. 1. 19. 09:00부터 2007. 1. 21. 09:00까지 48시간 동안 제주투데이(www.ijejutoday.com)의 초기화면(홈페이지 접속 후 처음 나타나는 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게재기간이 지난 후에도 1개월 이상 정정보도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제주투데이 : 『보험가입강요,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8일자 행정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시 특정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형식적으로 입찰공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동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시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시대일보 : 『수원시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설계업체 선정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일자 19면)

내 용 : 수원시가 시가지균형발전 및 주거환경개

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을 입찰공고일인 당일 업체선정을 하는 등 사전업체선정을 한 후 형식적인 공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입찰공고후 14일이 경과한후 입찰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동 소재 ○○○-○구역에서는 지난 29일 선정 입찰공고를 한후 29일자 당일 업체를 선정했는가 하면 30일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11월 30일자 공고하고 당일 선정하는 등 형식적인 구비서류절차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K설계업자는 이런 입찰공고는 위법이며, 사전에 해당업체와 담합이 예상된다고 하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제반 입찰공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하고 사실을 파악하여 시정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1일자 19면 『〇〇시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 설계업체 선정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낸 후 당일 업체를 선정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당일 업체를 선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입찰공고를 낸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로서 선정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에 오보에 따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추진위원회 및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12월 1일자 사회면에 『수원시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설계업체 선정 “의혹”』의 제목으로 수원시 권선구 〇〇〇-〇구역에서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낸 후 당일 업체를 선정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당일 업체를 선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입찰공고를 낸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로서 선정하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대일보 2007년 1월 16일 사회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입찰공고 당일날 업체선정 규정위반 지적)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대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9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시민단체 간부인 신청인이 민원인들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Y T N : 「6시뉴스」 프로그램 (2005년 1월 9일

18:00)

내 용 : ▷앵커 :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간부로 활동하면서 법률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이나 법률관련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김모 씨 등 4명에게서 피해 해결 등 명목으로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모두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02년 설립된 사법개혁관

런 단체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벌여왔고 금품수수의 대가로 검찰청이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속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조 씨의 비리 사실을 알고 자체적으로 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6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보도는 사실보도이며 신청인의 주요혐의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노조가 집회를 벌이다 회사 경영기획실에 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금속분회 (분회장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쳐들어왔다. 전날에는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청장실 앞 복도를 7시간 동안 점거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금속분회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조선일보는 지난 2007년 1월 6일자 6면 『“대선때만 되면...” 벌써 대형파업 발생조짐』 제하의 기사에서 ○○○○금속분회가 회사 경영기획실을 난입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분회는 경영기획실에 난입한 사실이 없고 직장폐쇄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 『“대선때만 되면...” 벌써 대형파업 발생조짐』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6일자 A6면)

내 용 : 4일 오전 11시 40분쯤 경기도 ○○시 ○○공단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금속,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 20여 명이 본관 경영기획실로 난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회사 정문 앞에서 직장폐쇄 해제와 회사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감독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다 사무실로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온 입주예정자들을 제지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1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기 ○ ○

피신청인 : 청주MBC-TV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청주MBC-TV : 「인사이드충북」 프로그램 (2006년 11월 24일 21:55)

내 용 : (전략) ▷입주예정자 백○○ : 속았다. 제가 속았다는 그런 느낌, 카달로그 제작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모텔하우스 잘 지어서 그런 회사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기○○ : 이렇게 막무가내로... 여기가 법도 없는 나라예요?

▷입주예정자 송○○ : 법도 없게 한 것은 ○○주택이 법이 없게 행동했습니다.

▷기○○ : 무슨 법도 없게 했어요?

▷입주예정자 송○○ : ○○주택이 법대로 제대로... 법만 중요하게 아닙니다. 양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양심 없는 기업은...

▷기○○ : 양심 없으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사기쳤다는 거예요?

▷입주예정자 송○○ :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봅시다.

▷입주예정자 송○○ :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와

서 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집값의 집주인은 저희거든요. 지금 ○○ 측에서는 완공을 안 했다고 우리더러 못 들어오게 했는데. 집을 다 지어서, 영성하게 지어서, 다시 고쳐줄 것도 아니면서 지금 우리가 와서 본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막을 정도면 그만큼 비리가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입주예정자 백○○ : 모텔하우스하고 카달로그는 다 무시하고 아무 문짝이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아니죠, 아니 밑에서 일하시는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분까지 저렇게까지 세뇌가 되었는지. 저런 사람이 우리 집을 지었다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믿겠어요? 제대로 지었다고 못 믿습시다.(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지난 2006년 11월 24일자 「인사이드충북」 프로그램의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찾기’ 보도와 관련해 음성변조없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제지하는 본인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무단 방영해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바 1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온 입주예정자들을 제지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청주MBC-TV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청주MBC-TV : 「인사이드충북」 프로그램 (2006년 11

월 24일 21:55)

내 용 :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온 입주예정자들을 제지하고 있는 모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지난 2006년 11월 24일자 「인사이드충북」 프로그램의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찾기’ 보도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제지하는 본인의 전신 및 얼굴이 무단 방영되어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바 19,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피모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공군조종사 35명 전역 소청 국방부 “전투력 차질” 기각』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4일자 A14면)

내 용 : 국방부는 공군 조종사 35명이 전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인사소청과 유방암 수술로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판정을 받고 전역한 국내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인 피○○(52·예비역 중령) 씨가 제기한 인사소청에 대해 1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방부 인사소청 심사위원회는 “많은 조종사가 한꺼번에 전역할 경우 군 전투력 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소청인 대표로 참석한 조종사 2명은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났고 3년을 더 근무한 만큼 전역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군 조종사들은 변호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14일자 A14면 『공군조종사 35명 전역 소청 국방부 “전투력 차질” 기각』 제하의 기사에서 피○○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는 피○○ 예비역 중령이 아니라 김△△ 예비역 대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 예비역 중령은 두 번째 여성 헬기 조종사입니다.

신청 후 보도문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3일자 A12면)

내 용 : 2006년 12월 14일자 A14면 “공군조종사 35명 전역 소청, 국방부 ‘전투력 차질’ 기각”이라는 제하의 기사내용 중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는 예비역 중령인 피○○ 씨가 아니라 예비역 대위인 김△△ 씨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피씨는 두 번째 여성 헬기 조종사입니다. □

피모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신동아 : 『“나는 군대라는 정글에서 남군들과 싸우는 아마조네스였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호 398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신동아 2006년 12월호에 실린 피○○ 중령의 인터뷰기사(398면) 중 ‘한국 최초의 여군 헬기조종사’는 피○○ 예비역 중령이 아니라 김△△ 예비역 대위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 중령은 두 번째 여성 헬기 조종사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동아 2007년 3월호의 400면 이내에 제1항의 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중 소제목(“군에 대한 미련, 분노 버리려 전국 도보 중주”)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동아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호 36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피모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여성인권단체들 “피○○ 씨 강제퇴역은 부당”』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8일자 사회면)

내 용 : ‘대한민국 여성 헬기 조종사 1호’ 피○○ (52) 씨의 강제퇴역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씨의 공중군무 자격을 박탈한 2005년은 이미 유방암이 완치된 지 만 3년이 지난 상태였다”며 “피씨에 대한 군 당국은 강제 전역 조치는 부당하다”며 전역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중략)

피 씨는 1978년 소위로 임관해 ○○ 항공병과에 자원, 1981년 첫 여성 헬기 조종사가 됐으며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다 도려내고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퇴역명령을 받고 지난달 30일 퇴역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연합뉴스 : 『‘최초 여성 헬기조종사’는 김○○ 예비역 대위』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대한민국 여성 헬기조종사 1호’는 그동안 유방암 수술에 따른 강제 퇴역으로 화제가 됐던 피○○ 예비역 중령이 아니라 김○○(52) 예비역 대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 ○○항공학교 기록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기록에 따르면 김○○ 예비역 대위는 1978년 8월 여군 장교로 임관 후 1981년 1월 ○○항공학교 ‘회전익(回轉翼)○○기’로 입교, 같은 해 7월까지 비행교육을 받았다.

김 씨는 이후 1985년 3월 전역까지 3년 8개월 여간 70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남겼다.

그는 당시 ‘여성 최초의 헬기 조종사’로 언론의 화제가 된 것은 물론, 앞서가는 여성으로 조명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회전의 비행교육을 받기 전에는 영어교관

및 군수참모부 F○○(대외○○○○) 담당장교 등으로 근무했다.

피○○ 예비역 중령은 ○○항공학교 회전익○○기로, 김 예비역 대위보다 7개월이 늦은 1981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비행교육을 이수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는 그동안 언론에 소개돼 왔던 피 씨가 아니라 김 씨라는 얘기다.

김 씨는 “그동안 잘못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침묵으로 일관, 당사자인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못내 아쉽다”며 그동안 피 씨가 대한민국 여성헬기 조종사 1호로 잘못 소개되어 온 데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최초가 중요한 시대는 지났지만 이제 여성 우주인 후보도 나왔다”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만큼 최초에 집착하기 보다는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역 당시 누군가의 투서를 공정하지 않게 처리한 군 조직의 결정에 염증을 느껴 군을 떠났다”며 “훌륭한 조종사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

시민단체 간부인 신청인이 민원인들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내 용 : <2007서울조정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8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보도는 사실보도이며 신청인의 주요 혐의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5년 1월 9일 21:20)

신청인이 주식투자한 회사가 전략물자와 기술을 불법수출했다고 잘못 보도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 『미얀마에 포탄공장 통째로 불법수출』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6일자 사회
면)

내 용 : 미얀마에 일반 산업기계류를 수출하는 것
처럼 꾸며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수출한
대기업 등 방산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설비기술이 결합된 플랜트 방식으로 전략물자와
기술을 불법수출했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
다. (중략)

업체들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미얀마 뻘이
지역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거나 포탄제조장비 등
480여 종을 수출하고, 국내 기술자를 현지로 보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입수한 포탄 및 부품도
면을 이용해 포탄 부품 수천 개를 시험 생산하는
등 현지에 포탄제조 기술 등을 전수한 것으로 드
러났다.

이들은 일반산업용 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
기 위해 위장계약서를 사용하고 관련문건에 음어
를 사용했으며 기술 이전 대가는 법인이 아닌 개

인 직원 계좌로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불법 수출을 통해 현지 공장을 약 90%
정도 완성했으며 계약금의 약 9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인터내셔널이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
총괄, 수출대행 및 기술자문그룹 운영을 맡았으며
옛 ○○중기가 포탄탄체 관련 장비, ○○컴과 H사
가 포탄신관 관련 장비 제공 등 역할을 분담했다
고 설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연합뉴스는 지난 2006년 12월 6일자 사회면에
신청인이 주식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불법무기를
수출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
였습니다. 이에 이 회사 관련 주식을 전량 매도
했으나 추후 정정기사가 보도되어 다시 해당 주
식을 매수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주식수의 감소로 인한 기대
수익이 낮아지는 등 손실이 발생한 바 이를 보
전하기 위해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
다.

피신청인 주장

검찰청의 브리핑을 토대로 보도한 것으로 해당 업
체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해당 업체가 불법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므
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카지노 관련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거액의 금품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레저(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수십 억대 금품 로비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5자 1면)

내 용 : 검찰이 한국○○○○의 자회사인 ○○○○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된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거액의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현웅 부장검사)에 따르면 ○○○○가 서울 강남 ○○○점 등 전국 세 곳의 카지노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 납품업체로 대기업 D사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의 돈이 이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D사가 납품업체로 결정되기 위해 ○○○○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수표 사본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인기 방송 드라마 '○○'의 실제 모델이 됐던 차모(55) 씨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카지노 전문가인 차 씨는 지난해 ○○○○의 상임이사로 영입됐다가 올 초 내부 알력으로 물러났다.

차 씨는 검찰에서 “○○○○가 지난해 10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D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들을 매수했고, D사는 ○○○○ 임직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는 “D사가 지인을 통해 (나에게도) 돈을 전달해왔으나 돌려준 뒤 모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의 보안 시스템은 출입 통제장치, 객장 내 폐쇄회로 카메라(CCTV), 컴퓨터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설비로 카지노 운영의 핵심 장치다. D사는 지난해 10월 ○○○○의 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한 3개 회사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G사를 제치고 선정됐다. G사는 당초 224억 원을 제시해 D사의 238억 원(최종 낙찰가는 234억 원)보다 입찰액이 낮았으나 탈락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100억 원대 정도면 보안 시스템 설치가 가능한데도 ○○○○가 예산을 과다하게 늘

려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외국인 카지노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레저(주)는 9일 반론보도를 통해 중앙일보 2006년 12월 15일자 1면 ‘카지노 관련 납품업체 선정 과정 수십억대 금품 로비 의혹’ 기사는 미확인 보도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레저(주)는 검찰이 보도 당시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황을 포착해서 새로이 수사중인 사항이 아니라 2006년 2월 10일에 이미 모 방송국에서 비리 로비사건으로 언론보도 되었고 그 당시 ○○○○(주)가 임직원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리 여부를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항이라고 알려졌다.

차 씨가 검찰에서 “○○○○가 지난해 10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D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들을 매수했고, D사는 ○○○○ 임직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뿌렸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레저(주)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입찰 공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서류평가와 프리젠테이션 점수 등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D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 매수 및 금품 로비는 당사자에 대한 명백한 무고일 뿐만 아니라 ○○○○레저(주)를 음해하기 위한 차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확인되지 않는 참고인의 진술을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D사가 수주한 용역의 최종 낙찰가는 224억8,000만 원으로 최종 낙찰가가 234억 원이라는 보도는 분명한 오보이며, 소프트웨어 산업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은 저가입찰방식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가격 및 기술 평가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가 입찰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의 지난 12월 15일자 ‘카지노 관련

납품업체 선정과정 금품 로비 의혹' 기사에 대해 ○○○○(주)는, 위 사건은 2006년 2월의 모 방송보도 직후 스스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여 아직 조사중인 미확인 사항이고, 보안 시스템 납품업체 선정은 반드시 저가입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및 기술 평가를 병행한 투명·공정한 심사에 의한 것이며, 차모 씨의 검찰에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예산 과다편성이나 비자금 조성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중앙일보 2면 우측 하

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여 2007년 1월 3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보험가입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제주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변 ○ ○
피신청인 : 제주투데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제주투데이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자 『보험가입 강요 부하직원 폭행까지』 제하의 기사에서 보험가입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M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M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보도로 인해 보험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바 4,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제주투데이 : 『보험가입 강요 부하직원 폭행까지』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7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제주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2007제주조정1의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제주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7제주조정1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이 학교급식업체 선정 논란과 관련해 학교급식 점검단에게 사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박○○ 교육위원, 일부분 사과”』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0일자 사
회면)

내 용 : 지난해 박○○ ○○도교육위원이 제
기한 ○○교육청 학교급식 점검단(단장 한○○·이
하 점검단)의 우수 식재료업체 선정논란과 관련,
박 위원과 급식점검단이 간담회를 갖고 급식점검
단 활동을 광역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
으로 알려졌다.

점검단은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를 평가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위
생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
해 4월 발족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우수업체와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박 위원에
의해 제기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점검단 한○○ 단장이 지난 4일 마산
교육청에서 박종훈 위원과 가진 간담회 결과를 밝
히는 글을 ○○○○일보와 도교육청 등 인터넷 홈

페이지에 올렸다.

점검단은 ‘○○교육청 학교급식 점검단의 특혜의
혹과 공정성 시비에 관한 모든 과정을 밝힌다’라
는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 진행된 논란의 과정을
설명한 뒤 간담회 내용을 공개했다.

점검단은 “박 위원이 ‘처음 도교육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교육장에서 계약종용에 대한 부
분을 시정 요구하기 위해서였지 급식 점검단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문제가 확대될 때
점검단에게 내용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게 한 점과 급식혁신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
동한 급식점검단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7년 1월 10일 사회면에 <박○○ 교육
위원, 일부분 사과>라는 제목으로 박○○ 위원이
잘못이 있어 학교급식점검단에 대해 사과를 한 것
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
고 더 발전적인 일로 서로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
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일부러 옷에 커피를 쏟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를 몰래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채널블루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1.
처리결과 : 함 의

보도내용

채널블루 : 『약간 더 위험한 방송』 프로그램 (2006

년 10월 30일 12:00)

내 용 : <2명의 남자가 옷가게에 들어와 커피를
옷에 쏟은 후 옷을 사야하는지 여부를 주인에게
물어보는 장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채널블루는 지난 2007년 10월 30일자 『약간 더
위험한 방송』 제하의 프로그램에서 2명의 남성이
고객을 가장해 매장에 들어와 옷을 고르는 척 하

다가 일부러 커피를 쏟는 장면을 연출한 후 이를 몰래 찍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커피가 된 옷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다 연출된 상황임을 모르고 대답하는 모습이 방송되는 등 본인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바 2,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7년 1월 31일까지 금 일백일십오만 원을 각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손해배상액 지급〉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 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1.

처리결과 : 취 하

의 기사 (2006년 12월 30일자 3면)

내 용 : 〈2007경남조정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2006년 12월 30일자 3면 기사에서 본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위 보도로 심하게 훼손된 바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이사가 탄원인 협박” 논란』 제하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7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1.

처리결과 : 취 하

경남일보 : 『“조합장 엄벌 탄원 불만 폭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일자 4면)

내 용 : 〈2007경남조정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경남조정6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서경방송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19:20)

내 용 : <2007경남조정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경남조정6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피신청인 주장

서경방송 : 「SCS뉴스」 프로그램 (2006년 12월 29일

<2007경남조정4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청소년 수련관을 그만 둔 학생에 관한 인터뷰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몰래 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1.

처리결과 : 취 하 (정정)

조정결정 (손배, 동의)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1월 7일 <신년기획> “혼자
라도 괜찮아? -싱글맘 & 싱글대디 분투기” 제하의
프로그램에서 싱글맘의 자녀인 장○○ 군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나레이션을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청소년수련관의
상담연계 및 대화시도 등 장 군을 위한 수 차례 노
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보도내용

MBC-TV : 「MBC스페셜」 프로그램 (2007년 1월 7일
23:40)

내 용 : <청소년 수련관을 그만 둔 학생에 관한 인
터뷰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일방적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상담 선생의 모습을 몰
래카메라로 찍어 방송에 내보낸 장면>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2월 16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18.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과당청구에 해당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의사회 (대표 박 정 하)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2.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KBS-2TV : 「추적60분」 프로그램 (2006년 12월 6일 23:05)

내 용 : (전략) ▷최○○(건강보험관계자) : (보험)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를 해주고 저희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서 만약 조정이 일어났을때는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하고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인받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임의로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략)

▷환자가족 : ...부당청구 비율 51%, 64%, 42%...

▷기자 : ...많게는 4천만 원 이상이 부당청구가 됐다... 이런데요. (중략)

▷환자 가족 : 환자들이 서민 환자가 많은데 서민들한테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과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서민에게 어렵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병원비 때문에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혼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런 사람들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진료비 부당청구를 한다는 것은 돈없으면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생각 안된다 ...

▷PD : 이번에는 진료비 과다청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험담당자 : 관행적으로 허락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다 급여를 청구했구요

이 부분은 관행을 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비급여라는 항목으로, 임의비급여라고 한 거잖습니까. 임의비급여를 했기 때문에 이 환자가 민원제기를 한거라고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추적60분」 백혈병 고액 진료비 비밀 관련 정정 보도문

•내 용 : KBS-2TV 「추적60분」은 지난 12월 6일 방송중 진료비 과다청구 논란의 진실을 추적한다며 마치 병원이 부도덕하게 진료비를 과다청구 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였으며 심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 청구를 모두 부당청구라고 보도하고, 초과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의비급여가 관행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과다 부당청구라고 보도된 부분은 요양급여기준이 초과청구된것으로, 부당삭감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고, 임의비급여는 관행이 아니라 제도적 모순 때문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

청 구 명 : 정정보청구

신 청 인 : 한국의사회

대표 박 정 하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2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주 문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2TV 「추적60분」 프로그램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6. 12. 6. 「추적60분-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나?」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라는 항목으로 환자들에게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임의비급여’라는 항목으로 청구되는 치료비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비로서, 이는 현행의 보험급여 심사기준이 부적절하고 의료재정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이지 의료기관 또는 의사

들이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과다 진료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 신청인 한국의사회는 위 조정대상보도에서 직접 거명된 바도 없고 위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18.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자원마련이 기부양여방식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9

청 구 명 : 정정보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 강 수 명)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2.

처리결과 : 취 하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월 8일 21:40)

내 용 : ▷아나운서 : 평택 미군기지시설 종합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총사업비 10조 5천 억을 들여 201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인데 우리 측 부담액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김○○ 기자입니다.

▷기자 : 한미가 줄다리기 끝에 사실상 확정된 평택기지이전 사업비는 총 10조 4천 9백억 원가량입니다. 우리 측 부담액은 5조 5천 8백억 원으로 주한미군사령부, UN사, 한미군사협조본부가 들어

보도내용

갈 지휘본부 건설비 등 건설비용이 4조 5천 7백억원, 부지매입비가 1조 백억 원입니다.

다만, C4I 즉 지휘통제체계 건설비용 3,800억 원 분담액이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우리 측 부담액이 약간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마스터플랜을 확정짓고 올 상반기 안에 부지 조성 등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핵심시설인 지휘본부 건물은 2010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공사도 2013년까지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측이 맡은 평택기지 공사와 관련해서는 기부양여방식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대한주택공사가 지휘본부 건물 등 우리 측 몫을 맡아 완공해 기부하면 대신 공사비에 상응하는 땅을 주공에 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김○○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보도에 대해 정정합니다.〉
- 내 용 : MBC-TV가 지난 1월 8일자 「뉴스데스

크」에서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보도시 “기부양여방식이 확정되었으며 대한주택공사가 지휘본부 건물 등 우리 측 몫을 맡아 완공해 기부하면 공사비에 상응하는 땅을 주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방영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따르면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국방부 자체에서 검토하는 단계이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7년 2월 7일 06:18)

내 용 : 제 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 SPI회의’ 개최 소식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설비용에 대해 한·미간 막바지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대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 중앙회가 특별 감사를 통해 모 지회의 임원선출 무효를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회 ○○지회 (지회장 허 ○ ○)

피신청인 : 김해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김해신문 : 『○○회 ○○지회, 특별감사실시』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0일자 4면)

내 용 : 사단법인 ○○회 중앙회(회장 배○○)는 지난 16일 오후 1시부터 ○○회 ○○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는 ○○회 ○○지회 변○○ 전 회장과

허○○ 고문,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 회장, 유○○ 감사, 한○○ 씨가 ○○지회의 회계, 지회활동, 11월 총회, 회칙 등에 관한 감사를 벌였다. (중략)

특히 감사팀은 총회감사 후 지난달 열렸던 총회는 원천무효임을 선포했다.

이는 개정된 회칙이 ○○회 정관 거의 대부분이 ○○○○○회 회칙을 적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이 회칙에 의해 선출한 허△△ 회장과 임원들 또한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회 ○○지회는 회칙, 본회와 관계, 활동 등을 볼 때 ○○회와는 관계없는 이적 단체로 볼만큼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많다”고 평가하고 “그렇지만 동화구연활동 및 봉사활동 등 열의와 노력으로 ○○회 ○○지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감사팀은 고문인 허○○ 박사를 ○○회 ○○지회 정
립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임하고 ○○지회의 총
회 및 회칙개정, 임원선출 등을 새로이 구성하도록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 4면
『○○회 ○○○회 특별감사실시』 제하의 보도에서
○○회 중앙회가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회 ○○
지회가 2006년 11월 총회를 통해 선출한 허○○ 회
장 등 임원은 선출무효임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결과 선출무효가 확정된 사실
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감사팀의 지적사항으로 ○○지회가 동화 들
려주기 및 동화구연가 육성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내용과 회원들이 주로 동화구연가로서 봉사활동
보다는 자신의 수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지
적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감사에서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지회
가 ○○회와 관계없는 이적단체로 볼만큼 불합리하
고 불법적인 사항이 많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
지회의 지회비납부와 관련된 발언일 뿐 다른 사항
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 4면
『○○회 ○○지회, 특별감사 실시』 제하의 보도에서
○○회 중앙회가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회 ○○
지회가 2006년 11월 총회를 통해 선출한 허○○ 회
장 등 임원은 선출무효임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배○○ ○○회 회장의 발언을 토대
로 한 것이며, 정관 등 법적인 측면에서는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팀의 지적 사항으로 ○○지회가 동화
들려주기 및 동화 구연가 육성에만 치중하고 있
다는 내용과 회원들이 주로 동화 구연가로서 봉
사 활동 보다는 자신의 수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감사에
서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
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
하는 김해신문 2007년 1월 24일자 4면에 상자기사
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
의 제목(○○회 ○○지회...)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
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김해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4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중견 영화감독인 신청인이 채무관계 때문에 이웃가게 주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5.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노컷뉴스 : 『중견 영화감독 폭력 휘둘러 불구속 입
건』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0일자 사
회면)

내 용 : 중견 영화감독이자 대학교수가 폭력을 사
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채무관계로 사이가 틀어진 지

인과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영화감독 황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영화감독인 황 씨 등은 9일 저녁 7시 1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황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여성의류점 앞에서 이웃가게 주인인 홍모(47) 씨와 서로 먹살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경찰에서 “이웃가게 주인 홍 씨와 부인이 심하게 다투는 말을 듣고 처남과 달려왔다 홍씨와 시비가 붙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 부부와 이웃가게 주인인 홍 씨는 예전 동업을 하다 채무관계로 사이가 나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저예산 영화 등 독자적인 작품 세계로 잘 알려진 중견 영화감독으로 현재 경기도 소재의 모 대학교 문예예술학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10일자 사회면에 『“중견 영화감독 폭력 휘둘러 불구속 입건”』 제목으로 대학교수이자 영화감독인 황모 씨가 “채무 관계로 주먹을 휘둘러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황모 씨는 사건당일 상대방 홍모 씨가 친구들을 동원하여 황 감독의 부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순간, 폭행을 말렸던 것일 뿐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으며 사건의 배경 또한 본지가 보도한 바와 달리 채무관계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경찰수사 착수단계에서 성급한 보도로 사건수사 공정성에 악영향을 끼친 점과 황 감독에게 명예훼손을 초래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 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1월 10일 ‘중견 영화감독 폭력 휘둘러 불구속 입건’ 제목의 기사에서 중견 영화감독 황모 교수가 부인이 운영하는 여성의류점 앞에서 채무관계로 사이가 틀어진 이웃에게 주인 홍모 씨와 먹살잡이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자신의 부인이 홍 씨와 홍 씨의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말렸을 뿐, 홍 씨에 대해 폭력을 행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의 발단도 홍 씨와의 채무관계가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제목을 2007. 1. 25. 09:00시부터 2007. 1. 26. 09:00까지 노컷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www.nocutnews.co.kr)에 접속 후 모니터상에 처음 나타나는 화면)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각각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2007. 1. 24 18:00 이후 노컷뉴스에서 삭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5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신청인의 모습과 상해사진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5.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월 3일 21:20)

내 용 : ▷앵커 : 텔런트 이민영 씨가 오늘 남편 이찬 씨를 상해와 가정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민영 씨는 연애할 때도 자주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른바 데이트폭력, 결혼 전부터 폭행에 시달리는 여성이 의외로 많다는군요.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이 여성은 3년 전 온 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하자 남자친구가 이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입니다. 피해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수시로 맞으면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송모 씨 : 나를 정말 죽이려고 했어도 남자를 용서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사람이 뭔가 달라지겠구나 생각했지요.

▷기자 : 사귀던 남성에게 맞는 여성은 적지 않습니다. 한 대학의 연구 조사 결과 20대 여성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데이트 중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10대 여성도 15%가 넘었습니다. 또한 절반 가까운 남성이 애인에게 한 번 이상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모 씨 : 친구도 그렇고 사회 생활하니까 직장 동료들은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손찌검을 하는 것 같아요.

▷기자 : 특히 데이트폭력은 결혼한 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지 하고 참고 넘어가다가 화를 키우는 여성들 많습니다.

▷이모 씨 : 싸우다가 뺨이나 이런 데를 친구가 많이 맞았는데 그것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이 싸우다가 다시 미안하다고 해서 다시 만나고...

▷기자 :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폭행은 치료가 필

요한 병이라면서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송○○ 정신과 전문의 : 연인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반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랑이나 결혼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반드시 주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 여성의 전화를 찾은 가정폭력피해자 중 12%는 연애시절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정○○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2007년 1월 3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인터뷰 내용 및 상해사건을 방송으로 내보내 신청인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바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7,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2007년 2월 8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5.

□

신청인이 개발 이익을 노리고 주택과 논을 구입한 후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1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경남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남신문 : 『외지인 무단 형질변경 ‘물의’』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4일자 사회면)

내 용 : 김해시가 진례면 ○○리 일대에 대규모
스포츠 레저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
지인들이 개발이익 등을 고려, 무단으로 형질 변경
을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김해시 진례면 ○○마을 주민들과 시에 따르
면 지난 3월 부산 한 주민이 주택과 논을 구입한
뒤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서너 달에 걸쳐
집을 개보수하고, 논을 매립해 나무를 심고 연못,
석축 등을 쌓는 등 대규모 정원으로 조성했다는 것.

주택 소유주가 매립한 논은 지목이 답(畓)이어서
매립 등을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시로부터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3일 시청을 통해 허가여부를 확인한 결
과, 아직 소유주로부터 들어온 허가 신청은 현재까
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자 김해시는 현장 조사를 벌
이는 등 구체적인 법률 위반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법률 위반이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3
월 외지인이 땅을 구입한 뒤 중장비 등을 동원해
정비작업을 벌였다”며 “집주인은 이곳에서 살지 않
고 세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사 기간 동안 덤프트럭 등 대형장
비들이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고 다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경남신문은 지난 2006년 11월 24일자 사회면 기
사에서 신청인이 마치 스포츠레저단지 추진에 따
른 개발차익을 노리고 주택과 논을 매입한 후 이를
무단 형질 변경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심하게 훼손
된 바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2007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07년 2
월 1일부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더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해 피신청인 및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소
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신청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연인관계였던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원요청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남편·남친 격투로 번진 신혼싸움』 제
하의 기사 (2007년 1월 13일자 사회면)

내 용 : ○…12일 새벽 1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4
동의 한 칼국수집 앞 대로변에서 두 남자가 격투를
벌였다. 한 남자는 인근 아파트에 사는 백모(여·
23) 씨의 남편 이모(32·회사원) 씨이고, 다른 남자
는 백 씨의 남자친구 성모(27·회사원) 씨였다.

난투극으로 성 씨는 코피가 나고 코뼈가 부는 상
처를 입었고 이 씨는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백 씨가
옛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구원을 요청해 발
생했다. 이날 백 씨는 집에서 남편 이 씨와 크게
싸운 후 집을 뛰쳐나와 성 씨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이에 서울 서초동에서 회식을 하고
있던 성 씨가 택시를 타고 백 씨를 만나러 갔다가
도로변에서 이 씨와 부딪쳤다. 이어 평소 아내와
자주 통화를 해온 성 씨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
던 이 씨가 먼저 “한판 붙어 보자”고 제의 곧바로
격투가 벌어졌고, 이후 상처가 많이 난 성 씨가 이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왔다고 양천경찰
서는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조선일보는 지난 2007년 1월13일자 사회면 「색연
필란」에서 『남편·남친 격투로 번진 신혼 싸움』
제목으로 신청인 백모 씨가 성모 씨와 옛 연인관
계였다고 보도하였고, 백 씨와 성 씨가 평상시 자
주 통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여 이것이 싸움의
화근이었으며 전화로 살려달라 구원을 요청했다고
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의 기
사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온실 내에 산업폐기물을 매립·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켜 폭리를 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한 ○ ○)

피신청인 : 경인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5.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인매일 : (1) 『‘유리온실 영농조합’ 비리온실 둔
갑』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5일자 1면)

내 용 : 평택시와 아산시의 경계선, 행정사각지
역에 위치한 대형 영농조합법인이 본연의 사업인
특용작물재배는 하지않고 면세 유류를 불법유통시
켜 말썽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썩지않는 산업폐기
물을 밀반입, 유리온실내에 매립 방치시켜 토양오

염물을 가중시키고 있다.

4일 아산시 ○○농협, 제보자 등에 따르면 충청
남도 아산시 둔포면 ○○리 일대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리 일대에 걸쳐 6천여 평(대지 7천여
평)의 ‘유리온실’을 운영하고 있는 H영농조합법인
은 지난해부터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돈을 받고 온실 내에 매립하는 한편, 수십 톤의 건
축폐기물 등을 농장내에 그대로 방치, 토질은 물론
주변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H법인은 온실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를 인근 주유소에 되팔
아 이득을 챙기는 등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이 본지 취재기자에 의해 확인됐다.

영농법인대표 한모 씨 측은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아산시 ○○읍 폐기물처리업자 주모 씨를 통
해 평택 소재 한 김치공장에서 나온 염장배추 쓰
레기(소금에 절인 배추김치 자투리)를 톤당 8만
원의 폐기료를 받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온실

내에 100톤 이상 불법 매립했다. 매립 이래 은폐를 위해 포클레인과 로더를 사용 건조를 촉진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악취 및 침출수 등이 발생,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시민이 지난 10월께 아산경찰서에 이를 신고하기도 했다. 취재 결과 온실은 전체 5개 동 가운데 동쪽 1개 동으로 아직까지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채 썩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다.

특히,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바닥에 고여 근처 논은 물론 아산호 오염이 우려된다. 영농법인은 온실 내부 시멘트구조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수십 톤으로 추정되는 건축폐자재도 폐조개들과 함께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영농법인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시께 아산시 둔포면 농업협동조합○○지소에 영농을 목적으로 난방용 면세유 5천 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행성 소재 K주유소에 웃돈을 받고 되파는 등 수년째 불법유통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면세유 불법유통 5천 리터는 본지취재기자에 의해 확인된 유류운반차 1대 분량으로 수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유통된 양을 추정하면 수십만 리터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후략)

(2) 『공무원 직무태만이 부채질』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8일자 1면)

내 용 : 정부용자 35억 원이 투입된 유리온실 ○○영농조합의 총체적비리(본보 1월5일자)는 농업관련 공무원·농협·축협 직원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지점인 충남 아산시 둔포면 ○○리와 경기 평택시 팽성읍 ○○리 약 7천여 평의 대지에 6천여 평의 유리온실을 가지고 있는 ○○영농법인은 충남 아산시로부터 고등소재

허가를 취득한 후 연리 3%의 특혜금융을 축협 천안지부로부터 승인받아 시설을 건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영농법인은 특용소재로는 수지 타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 해 유리온실의 각종 특혜를 악용해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해 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7년 1월 5일자 1면 『‘유리온실 영농조합’ 비리온실 둔갑』 및 1월 8일자 1면 『공무원 직무태만이 부채질』 제하의 기사에서 H영농조합이 온실내 산업폐기물을 몰래 매립·방치하고 이 때문에 침출수 등이 발생하여 하천이 오염되었으며, 면세유를 불법유통시켜 폭리를 취하고, 시청 및 농협 등에 특혜 금융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H영농조합법인은 특수 상토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산업폐기물이 아닌 여러 종류의 퇴비를 쌓아 놓아 연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시에서 조사한 바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사실이 없으며, 특혜 금융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법당국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이 진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이혼위기를 넘긴 노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내보내 과거 불륜관계 당사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우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6.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합의)

보도내용

KBS-1TV : 「아침마당」 프로그램 (2006년 12월 26
일 08:30)

내 용 : (전략) ▷김○○ : 3년 사귀 여자가 있
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편지를 주머니에다
넣고서 빨래를 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니까 편지가
나왔어요. 이제 총각행세를 하고 다닌거예요.

▷아나운서 : 사진에 여자가 두 분이예요. 누구
예요?

▷이○○ : 사귀었던 여자죠.

▷김○○ : 저 30대, 20대

▷아나운서 : 한쪽은 부인이시고요?

▷김○○ : 네, 예라 내가 여행 가버리면 와서 자
고 일해주고 다해요 또.

▷이○○ : 자기는 뭘자. 그냥 저녁땀 보냈지.

▷아나운서 : 아니,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
기지만 참 다시 봐도 저희는 화끈한데 그 어떠셨
어요. 그때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러셨을 때.

▷아나운서 : 사진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
기도 하고

▷이○○ : 저한테 묻는거예요?

▷아나운서 : 예, 예.

▷이○○ : 아이구 저 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이거예요. 난 이게 두고 두고 날 약점을 이용해서
날 아주 날.

▷김○○ : 아 그때 처음이지 뭘.

▷이○○ : 아 그건 몰랐다고요.

▷아나운서 : 부인에게서 그것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진을요?

▷김○○ : 예, 아이 그냥 뭐 어떻게 두다보니까
있는거지. 뭘 일부로 억한 심정으로 갖고 있던 건
아니고

▷아나운서 : 그래도 이왕 방송 나오는 김에 예
이 공개를 해 버려야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챙겨
오신거였군요.

▷김○○ : 아이 그렇지.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12월 26일자 「위기 끝에
되찾은 사랑」 제하의 프로그램에서 이○○, 김○○
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한 여성의 사진을 내보내 이 여성이 이○○
씨와 과거 불륜관계에 있던 당사자인 것처럼 보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속의 여성은 이들
가족과 친분이 있었을 뿐 이○○ 씨와 불륜관계였
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중재합의

• 양 당사자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합
의함 <2007서울중재1 참조> ☐

119구급차의 도착시간이 평균 9.33분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소방방재청 (청장 문 원 경)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119구급차 도착시간 늦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5일자 13면)

내 용 : 서울 시민들은 119 구급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면서도 구급차 도착 시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해 11월 만 20세 이상 119구급대 이용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착시간을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고 4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전화 응대 친절성 97.8% ▲구급대원의 친절성 및 전화 응대 전문성 97.0% ▲구급차량 이용의 편리성 96.0% ▲신속한 응급처치 95.1% 등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개선사항으로는 구급차 도착시간이 49.7% 신속한 응급 처치가 14.1%, 구급차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부족이 11.7%로 나타났다. 또 119구급대 이용자들이 느낀 구급차 도착시간은 6~10분 이내 40.1%, 5분 이내 37.1% 등 10분 이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1분 이상이라는 응답도 3.1%를 차지했다. 실제 구급차 도착시간은 평균 9.33분으로 조사돼 2005년 10.9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5일자 『119구급차 도착시간 늦다』 제하의 기사에서 구급차 도착시간은 평균 9.33분으로 조사돼 2005년 10.9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119구급차 도착시간은 2006년 4.26분, 2005년 4.34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서울신문 1월 5일자 13면 보도관련
- 내 용 :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19구급차 도착시간이 평균 9.33분이라는 본보 보도[1월 5일자 13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설문조사결과를 담은 보도 자료에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서울본부 구급차 평균 도착시간은 시민들이 느낀 9.33분과 달리 2006년도 조사결과 4.26분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1월 31일까지 서울신문 자치뉴스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중 소재목(「소방방재본부, 서울시민 설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위 항의 이행 기일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30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유치에 대한 찬성집회를 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남시 (시장 김 황 식)

피신청인 : 경인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인매일 : 『하남 찬성집회 ‘유감’』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9일자 4면)

내 용 :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를 놓고 김황식 시장 측과 반대위 측이 2개월 동안이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시장 측이 찬성 집회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행위는 단적으로 관제 집회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5일 제보에 의하면 하남시내 일선 동장과 동사무소 간부 직원들이 당해지역 주민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화장장 찬성 집회에 참석을 종용했다는 것인데 공청회 참석 유도라면 모르겠으나 상대성이 있는 집회에서 시장측의 찬성집회에 문자메시지까지 동원했다 함은 공무원 신분으로 부당한 행위임을 분명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하남 찬성집회 '유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9일자 4면 사설에 『하남 찬성집회 '유감'』이란 제목으로 '김황식 시장이 발기했다는 찬성집회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엄중히 묻고 싶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김 시장은 직무유기를 범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황식 시장이 발기했다는 찬성집회는 하남○○위원회(회장 임○○)에서 발기한 것이고, 찬성집회 또한 하남○○위원회에서 주도로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경인매일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31일자 4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모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V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8.

처리결과 : 취 하

(2)「생방송 세상의 중심」 프로그램(2006년 12월 7일 13:00)

내 용 : <2007서울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7년 2월 10일 06:30)

내 용 : <2007서울조정10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KBS-1TV : (1)「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12월 18일 06:00)

내 용 : <2007서울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피모 예비역 중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V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종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8.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MBC-TV : (1)「생방송 화제집중」 프로그램 (2006년 11월 24일 17:35)

내 용 : 〈2007서울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2)「뉴스후」 프로그램 (2006년 12월 16일 22:50)

내 용 : 〈2007서울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 후 보도문

MBC-TV : (1)「생방송 화제집중」 프로그램 (2007년 2월 16일 17:35)

내 용 : 〈2007서울조정10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2)「뉴스 후」 프로그램 (2007년 3월 3일 22:50)

내 용 : 〈2007서울조정10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상조회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1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상조종합이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 ○)

피신청인 : 경남매일

종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남매일 : 『김해지역 상조업체 피해 ‘우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상조업체들의 난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해지역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해 업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략)

주부 김모(53·김해 ○○) 씨는 지난 2002년 9월 김해지역에 본사를 둔 G상조종합이벤트주식회사의 방문판매원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5만원씩 총 50회에 걸쳐 지난해 10월까지 250만 원의 회비를 납부했다.

이에 김 씨는 돌, 회갑, 결혼, 상 등의 경조사 발

생시 행사대행 및 비용지급 혜택이 있다는 회원증서의 약관에 따라 딸의 결혼을 앞두고 행사대행과 비용지급요청을 했으나 상조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

현재 대표이사가 취임한 것은 김 씨가 회원으로 가입한 2002년 9월 이후인 2003년 4월이기 때문에 당시의 약관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업체의 거절 이유다.

그러면서 상조업체 측은 “거절사유가 부당하면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를 하면 납부한 회비 가운데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만 원은 반환해 주겠다”고 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딸의 결혼을 앞둔 김 씨는 상조업체 측의 억측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다투기가 싫어서 지난해 11월 업체를 찾아가 해지신청을 했다. 하지만 G상조 측은 이마저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지난 5일 김해경찰서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조업체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고소에서 김 씨는 “현재 G상조종합이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씨(57)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

한 2003년 4월 당시 회원 700명을 인수받았으나 이 가운데 200명은 김 씨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지금까지 원금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업체 측의 행태로 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A 대표는 일말의 설명도 없이 반론권 자체를 거절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8일자 사회면 『김해지역 상조업체 피해 ‘우려’』 제하의 기사로 김해지역에 본사를 둔 G상조종합이벤트 주식 회사가 회원인 김모 씨에게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회원 700명 중 200명에 대해서도 김 씨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해도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인용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G상조종합이벤트 주식회사 측은 김모 씨가 해약청구할 당시 2월 28일까지 4회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서명하였으므로 해지 환급금을 반환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회원 700명 중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해지한 사실이 없으며,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매일 2007년 1월 31일자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김해 지역 상조업체 피해 ‘우려’)과 부제목(통신판매업...)의 중간활자크기로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매일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31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정부지원도 줄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 준 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9.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동아일보 : 『민주노총 길을 잃다』 제하의 기사 (2007

년 1월 5일자 1면)

내 용 : (전략) ▽조합원은 매년 줄고=민주노총을 보는 국민의 눈이 싸늘해지면서 노조들의 탈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립산업과 코오롱 노조가 잇따라 탈퇴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도 2002년 68만5147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매년 줄고 있다.

누리꾼 김○○ 씨는 4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현대차 노조는 난동에 이어 일도 하지 않겠다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당연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지원도 줄고=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노총 건물 임차료를 지원했던 관행도 점차 사라

지고 있다. 정부는 2005년까지 민주노총에 20억 원을 건물 임차료 명목으로 지원했지만 국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지원을 중단했다.

노동부는 올해에도 민주노총이 노조원 교육 등 건전하고 투명한 사업계획을 짜 오지 않는 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2일 경북도의회도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아 도민에게 피해를 준 단체에 세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노총 경북지부에 관행처럼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료 2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1월 5일 1면 『“민주노총 길을 잃다”』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02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는 등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는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억 정부지원금은 민주노총이 여러 이유를 고려하여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분명한 근거없이 민주노총이 불법, 과격단체로 낙인찍혔다고 보도한 것은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위를 실추시켰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1월 5일자 ‘민주노총 길을 잃다’라는 기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2002년 68만 5147명에서 2006년 8월 76만 684명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건물임차료 20억 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단은 민주노총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불법·과격 시위 주도 단체로 낙인 찍혔다는 것은 부당한 비난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아일보 6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여 2007년 2월 9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6일자 A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퀵서비스 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문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9.

처리결과 : 취 하

KBS-1TV :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
(2007년 1월 5일 18:55)

내 용 : <퀵서비스 업체의 임금체불에 관한 직원의 의견을 전화를 연결해 내보내는 장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1TV는 지난 2007년 1월 5일자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에서 퀵서비스 업체의

보도내용

임금체불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퀵서비스 업체 직원인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화를 녹취하였

으며 음성변조없이 보도해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바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퀵서비스 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상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스피드○○○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9.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퀵서비스 업체의 임금체불에 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상호가 모자이크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되는 장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1TV는 지난 2007년 1월 5일자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에서 퀵서비스 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보도하면서 회사상호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명예가 실추되고, 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는 바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보도내용

KBS-1TV :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
(2007년 1월 5일 18:55)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이 IPTV 관련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무조정실 (실장 임 상 규)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2.

처리결과 : 취 하

을 세웠다.

그러나 IPTV를 두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3년간 논란을 벌였으며 업계간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무리한 일정을 정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같이 처리하려는 것은 졸속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5일 정통부와 방송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은 11일 방통융합추진위 전체회의에서 IPTV 관련법안 추진일정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원단이 마련한 IPTV 관련법안 추진일정에 따르면 25일 방통융합추진위 회의에서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31일까지 법률 안을 마련하여 다음달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보도내용

연합뉴스 : 『정부, IPTV 정책방안 25일 확정 방침』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5일자 종합면)

내 용 : 정부가 인터넷프로토콜TV(IPTV) 관련 정책방안을 25일 확정하고 법률 시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 3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

열기로 했다.

또 3월 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심사를 끝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순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기로 했다.

지원단은 정책방안을 확정하면 소관부처에서 추진하며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법률안 상정을 15일로,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20일 상정할 방침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보, IPTV 정책방안 25일 확정 방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7년 1월 5일자 종합 1면에

『정부, IPTV 정책방안 25일 확정방침』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인터넷프로토콜 TV(IPTV) 관련 정책방안을 이달 25일 확정하고 3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는 관련 부처가 수년간 논란을 벌이고 업계간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무리한 일정을 정한 것으로 졸속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나 지원단 차원에서는 보도일 현재, IPTV 관련 구체적인 추진방안이나 일정에 관한 방침을 확정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사북사태를 재조명하면서 당시 신청인에게 린치를 가한 광부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강원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삼척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삼척MBC-TV : 「특집 다큐멘터리- '사북, 길을 다시 묻다'」 프로그램 (2006년 12월 28일 23:00)

내 용 : ▷진행자 : 1980년 봄 전국을 뒤흔들었던 사건 하나를 기억해 냈다. 사북사건이다. (중략)

▷진행자 : 1980년 4월 신군부의 암울한 그림자가 서서히 이 땅을 덮을 무렵 사북은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중략)

▷이○○ : 오직 탄을 많이 캐는 데만 치중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탄을 많이 캐자면 광부들을 혹

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게 광부들을 혹사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당시 독재권력과 탄광기업주들이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철저한 어용노조조합이다. (중략)

▷이○○ : 광부들이 가정생활에서는 형편없는 참 거기같은 그런 생활을 해 왔다. 바로 우선 하나만 지적을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당시 수도가 없었다. 목욕탕도 없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의 한과 응어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울분에 차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 어용노조 타파를 기점으로 해서 광부들의 울분이 폭발된 것이 바로 이것이 사북사건이다. (중략)

▷이○○ : 그 이후에 부녀자들까지 100여 명이 넘게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갔다. 당시가 계엄하여서 군법에 회부돼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 저기서 아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회고해 보면 책에서만 본 아비규환이 이게 정말 아비규환이구나. (중략)

▷이○○ : 우리로 인해서 무법천지가 됐던 사북 땅 지역의 명예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명예를 회

복함으로써 아버지의 명예회복, 자신의 명예회복, 지역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의미있는 일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삼척 MBC는 지난 2006년 12월 28일에 「'사북, 길을 다시 묻다'」편을 방송하면서 사북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김○○ 씨의 동의없이 피해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고 김○○ 씨의 입장을 방송하지 않은 등 본의 아니게 김○○ 씨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또한 사북사태 당시 이○○ 씨의 인터뷰 장면은 1980년 4월 22일 이후 임을 바로 잡으며,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 근무하던 광부들의 생활상을 방송하면서 판자촌과 천막텐트를 배경화면으로 내보내 마치 이들의 숙소인 것으로 오해케 한 점은 잘못됐기에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당시 사건의 주동자인 이○○ 씨와 자신을 폭행한 연루자들은 폭도라는 사실을 밝혔음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사과 및 반론보도

• 내 용 : 삼척 MBC는 지난해 12월 28일 <특집 다큐멘터리- '사북, 길을 다시 묻다'>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사북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김○○ 씨의 동의 없이 피해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는 등으로 본의 아니게 김○○ 씨와 그 가족 여러분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김○○ 씨는 당시 자신을 폭행한 사건 연루자들은 폭도가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2월 8일 18시 50분에 방송하는 삼척MBC-TV '고향에 살어리랏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아나운서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프로그램을 신청인의 입장을 담아 재제작하지 않는 한 자사 또는 타 방송사에서 방영되지 않도록 하고, 조정대상프로그램의 VOD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삼척MBC-TV : 「고향에 살어리랏다」 프로그램 (2007년 2월 8일 19:4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담양군수가 지방선거 후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담양군 (군수 이 정 섭)

피신청인 : 담양주간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담양주간신문 : (1) 『“보복하지 않겠다더니...”』 제

하의 기사 (2006년 10월 18일자 7면)

내 용 : (전략)...9일자로 군 인사가 대폭 시행됐다.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인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막상 인사가 터지자 “역시나”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군수가 공식석상에서 수차에 걸쳐 “보복인사는 하지 않겠다”며 정실인사에 치우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왔고 심지어는 “모 인사가 돈을 싸들고 찾아와 인사를 부탁했지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는 무용담(?)을 시도 때도 없이

늘어놓았기에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었던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그러면 그렇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여”하는 볼멘소리가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

군수 자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보복인사가 아니라고 강변할 줄 모르겠으나 한때 후임 기획실장 물망에 오르기까지 했던 모 과장을 신설 사업단장으로 좌천시킨 것이나 담양읍의 부읍장을 부면장도 아닌 면 담당 요원으로 꼼꼼히 뜯어보면 다분히 감정적인 인사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여기에다 지난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대한 보은 인사까지 곁들여졌다는 평도 나온다. 지난번 특채에 이은 보은인사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두고 볼 일이다. (후략)

(2) 『“공직을 떠나면서”』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5일자 2면)

내 용 : (전략) 평소 존경하는 민선4기 이정섭 군수님!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보복 았겠다는 군수님의 말씀. 우리 공직자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 사람의 기쁨보다는 한 사람의 뜨거운 눈물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군민과 내부공직자 모두를 포용하여 주십시오. 실질적이고 정말로 살맛나는 담양을 만드시길 공직을 떠나는 후배 공직자로서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후략)

(3)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5일자 7면)

내 용 : (전략) 지난 9일 군수는 취임 100일을 맞아 무려 249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를 앞두고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걸쳐 “보복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군수가 실상은 원칙과 순리를 무시한 채 보복과 보은으로 점철된 소위 ‘손봐주기식’ 파행인사를 실시했다. 이같은 인사의 파장으로 36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오던 한 공무원이 정년을 8개월여 남겨놓고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명색이 담양읍의 부읍장을 부면장도 아닌 면의 담양요원으로 발령 낸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만이 아니다. 부면장 중 상당수를 담양요원으로 격하시킨 것을 비롯해 통상적으로 사무관 승진 코스로 인정되던 면장 직무대리 6급 사업소장으로 발령 낸 것 등은 다분히 감정적인 보복인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군수는 사령장 전달식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내가 보복인사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자꾸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이번 인사는 정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후략)

(4) 위 기사 외 6건의 기사 및 3건의 포토만평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10월 18일자 지역사회면에 『보복하지 않겠다더니』 제목으로 담양군수가 보복인사를 했다고 보도하고, 2006년 10월 25일자 사회면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연좌제의 망령』, 『공무원 인사 우려가 현실로』 제목으로 보복인사와 연좌제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인사라고 보도하였으며,

2006년 11월 1일자 지역사회면 『귀거래사』라는 제목으로 보복인사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보도하고 2006년 11월 1일, 2006년 12월 6일, 2006년 12월 20일자 포토만평을 이용하여 담양군수 이정섭을 비하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2006년 11월 29일자에 『살맛나는 담양, 군수는 죽을 맛』, 그리고 2007년 1월 10일자에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담양군수가 유권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사기를 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예단하여 보도하였으나 담양군수는 보복인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군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음을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반론보도를 게재할 수는 있으나 사실 보도이므로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광주투데이

종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광주투데이 :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는 ○○○○○○
○○협회』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8일자 사회면)

내 용 : ○○○○○○○협회의 신임회장과 전회
장의 갈등이 회원들에게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태
를 빚어내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은 지난 15일 한 장애인이 ○○시청
시민의 소리에 ‘○○○협회 전회장의 행위에 울부
잡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일파만파로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중략)

이번 8대 회장으로 선출 됐다는 이모 회장과 일
부 회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지난 12일의 사건은 지난해 12
월 31일 임기를 마친 김 전회장이 현 이 회장의
선임에 불만을 품어 그같은 횡포를 벌였다는 것.

올해로 8대 회장으로 선임된 이 신임회장은 앞
서 8년을 ○○지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전국의 모
든 ○○○○○○협회회장은 공고를 통해 중앙회에서
회장을 최종선임한다고 한다. (중략)

때문에 지난해 12월 말로 모든 임기를 마친 전
회장은 그 날짜로 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공고를 앞서 했어야 함이 옳은 데 김 전회장은 이
같은 공고를 전혀 회원들에게 하지 않았으며, 회장
신청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5일 본인이 계속적으
로 회장직을 수행하고자 하겠노라고 신청서를 제
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임회장은 성남에서 자체사무국장

일을 보고 있어 이런 일정을 본인이 알고 신청서
를 제출했으며, 이에 이, 김 두 사람이 ○○○○○○
○협회 회장신청을 중앙회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
중앙회는 이 씨를 회장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이에 김 전회장은 불복의 뜻으로 현재까지
전혀 모든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부하고 있
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모든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전혀 공개가 없다. 2억 원 이상이 현재 ○
○○○○○○○단체에 소모되었지만 정확한 정산내역
서를 전회장에게 받지 못하고 있어 올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그 동안 ○○읍 재활작업장에 초기자금으
로 들어간 1억 4천여 만 원과 지난해 바자회기금
1천 9백만 원, 이외에 장애인 보조금으로 지원된
7천여 만 원 등에 대한 정확한 정산내역을 전회
장이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모든 예산은 전
회장 개인의 돈이 아닌 전 회원들을 위해 쓰여져
야 할 돈으로 투명해야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해서
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힐 것이다”고 피력했
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 제 목 : ○○○○○○협회 전 회장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7년 1월 18일자 사회면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는 ○○○○○○○○협회』 제하
의 기사중 ○○○○○○협회 전 회장 김모 씨는 ○○
시의 예산지원에 관하여 수시감사를 받은 바 있으
며, ○○○○○○○○협회의 예산행정과 관련해 도 협
회로부터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광주투데이 2007년 1월 18일자 『폭

력으로 열락지고 있는 ○○ ○○ ○○○협회』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임 회장인 김○○ 씨는 협회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했으며, 이를 협회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시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를 받았으며, 예산집행과 관련 도 ○○ ○○○협회에 철저한 감사를 청원한 사실도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광주투데이 2007년 2월 1일 게재하되, 제목활자크

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폭력으로 열락지고 있는 ○○ ○○ ○○○협회)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주투데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법장스님의 유골이 동국대 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외 4인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 『‘법장 스님’ 유골 1년 넘게 방치』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1일자 사회면)

내 용 : 역대 총무원장으로는 처음으로 병원에 시신을 기증, 생명 나눔을 실천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법장(法長) 스님의 유골이 동국대 일산병원에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국대 일산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해 9월 11일 법장 스님이 입적한 뒤 스님의 뜻에 따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신을 옮겨와 일부 장기를 떼어냈다.

병원 측은 한 달여가 지난 지난해 10월 16일 스님의 시신을 화장했으나 사후처리에 대한 협의가 안돼 현재까지 1년 2개월이 넘도록 유골함을 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

병원 측은 특히 유골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법장 스님의 법명을 사용하지 않고

속명으로 유골을 보관해왔다.

이에 대해 동국대병원 이○○ 원장은 “스님의 시신은 연구·교육 목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고 종단 총무원에서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계종 총무원 측은 “시신 기증이 법장 스님 개인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스님의 유골 처리 문제를 종단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병원에서 법장스님의 문도들이나 상좌(스님의 제자들)들에게 연락, 처리했을 텐데 화장한지 1년 넘게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통신사는 지난 2006년 12월 21일자 사회면에 『‘법장 스님’ 유골 1년 넘게 방치』라는 제목하에 “병원 측은 지난해 10월 16일 스님의 시신을 화장하였으나 사후처리에 대한 협의가 안돼 현재까지 1년 2개월이 넘도록 유골함을 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현재 법장 스님의 시신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후 화장하여 유골을 납골당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동국대 일산병원의 시신

기증에 관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법장스님의 상좌스님들과 사후처리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 유골을 방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중국산 가짜휴대전화기를 들여와 국산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Y T N :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2007년 1월 4일 20:46)

내 용 : ▷앵커 :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국산 휴대전화기를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유통된 휴대전화기가 확인된 것만 2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구 ○ ○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출시된 지 3~4년 정도 지난 국내 유명 휴대폰들입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38살 박모 씨 등 일당 16명은 중국제 가짜휴대폰을 국산처럼 속여 판매했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중에 유통될 뻔했던 휴대폰입니다.

중고 부품과 가짜 단말기로 만들어졌지만 정상제품과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박 씨 등은 중국에서 가짜 휴대폰 케이스를 들여온 뒤 같은 기종의 국내 중고·도난 휴대폰에서 전자 기기판과 고유번호 등을 빼낸 다음 가

짜 휴대폰에 입력시켜 국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같은 모델의 휴대폰을 이용한 일종의 자기복제입니다.

이들은 서울 방화동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이동통신회사 영업소나 수리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짜 휴대폰의 조립을 맡겼습니다.

경찰은 원가 6만 원 안팎의 가짜 전화기들이 정품 중고 휴대폰으로 바뀌어 대리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최고 17만 원에 팔려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가짜 국산 전화기는 확인된 것만 2만 대, 시가로는 12억여 원 어치나 됩니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제조된 만큼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계자 : 누르면 잘 눌러져서 떠있기 때문에 잘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A/S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방사능 물질이 있어서 이 자체가 전자파 수신율이 떨어져서 A/S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 : 경찰은 모조 휴대전화를 만든 중국 현지의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중국산 가짜휴대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 1월 4일 「뉴

스나이트」 프로그램에서 박모 씨 등이 중국산 가짜휴대폰을 들여와 국산처럼 속여 2만 여대를 유통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문제가 된 휴대폰은 재활용 중고휴대폰으로서 모두 적법하게 수거된 국산 휴대폰이었고, 유통된 휴대폰 대부분이 국산휴대폰에 케이스만 교체했을 뿐 도난휴대폰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재생, 재활용된 것으로 '불법복제' 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중국산 가짜 휴대폰'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YTN은 지난 1월 4일 '중국산 가짜휴대폰 대량 유통' 이라는 제목으로 박모 씨 등이 중국산 가짜휴대폰을 들여와 국산처럼 속여 2만 여대를 유통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모 씨 등은 문제가 된 휴대폰은 재활용 중고휴대폰으로서 모두 적법하게 수거된 국산휴대폰이었고, 유통된 휴대폰 대부분이 국산휴대폰에 케이스만 교체했을 뿐, 도난휴대폰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재생, 재활용된 것으로 '불법복제' 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 2. 2. YTN 20:00 시 뉴스시간에 통상적인 속도의 아나운서의 멘트로 방송하되, 위 보도문을 방송하는 중에는 기사의 제목(중국산 가짜 휴대폰 관련 반론보도)을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Y T N :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2007년 2월 2일 20: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이 고금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학자금 '고금리 장사'』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3일자 1면)

내 용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대학생 상대로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월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출자 금융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9월 중 학자금 대출 사업을 통해 146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집

계됐다. 반면 집을 담보로 잡고 10~30년간 꾸어주는 모기지론(장기주택대출) 부문에서는 148억 원의 손실을 입어 주택 대출의 손실을 학자금 대출로 메운 셈이 됐다.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대출 금리가 최고 연 7.04%(2006년 1학기)~최저 6.59%(2007년 1학기)에 달할 만큼 높은 수준에 설정돼 있다.

이 같은 금리는 최저 연 5.65%(10년 만기)~최고(연 6.40%(30년 만기)인 모기지론보다 0.2~1% 포인트 높은 것이다.

만약 4,000만 원을 대출 받은 학생이 첫 10년간 이자만 갚다가, 나머지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갈 경우 상환할 원리금 총액은 8,943만 원으로 원금의 2배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2학기 이후 정부가 90%까지 지급보증을 하고, 연체가 일어나도 학자금 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전하게 돼 있어, 주택금융

공사 입장에선 매일 염려가 거의 없는 대출이다.

그런데도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금리를 모기지론보다 더 높게 설정한 데 대해 대학생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모기지론보다 훨씬 낮은 연 2~5%대나 무(無)이자(일본의 1종 대출)로 책정해 학생들이 적은 부담으로 등록금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학자금 고금리 장사’ 일부 내용 사실과 다르다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1월 3일 1면 『학자금 고금리 장사』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이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9월말 현재 공사의 학자금대출처분이익은 전체적으로 6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11억 원 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07년 대출금리 결정에 반영차감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모기지론과 학자금 대출에 동일한 국채 기준금리를 적용할 경우 학자금대출 가산금리가 오히려 0.02%p 낮으며, 학자금 4,000만 원을 최장 20년간 7.05%의 최고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원리금 합계는 8,943만 원이 아닌 7,981만 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부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 학자금대출 채권 10%는 유동화기관인 주택금융공사 부담해야 하기에, 이러한 대손율을 반영하여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혀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3~4년도 학자금대출시장 점유 비율 86%의 Stafford Loan(6.8%)이 대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점유 비율이 2%에 불과한 Perkins Loan(5%)을 예시로 든 것과, 콜금리가 0.25% 불과한 일본의 경우 실질금리가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교육부는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며 보도중에 신청인의 반론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반론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가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장관 유 시 민)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사회장관회의 ‘파업’은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6일자 4면)

내 용 :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회의 주제로 상정하지도 않는 등 국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출산 문제와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관람객과 사찰의 갈등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15일 현대차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으면서도 이를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현안으로 상정하지도 않았으며, 이

상수 노동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이유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상수 노동장관은 이날 오전 7시15분 KBS라디오에 출현, “현대차노조는 단체계약을 체결할 때 아주 양보를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법에 의한 보호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현대차 노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조로서 책임성이 있다. 사태가 악화하거나 장기화하면 정부는 정부대로 엄정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 타협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불법파업일 경우 법과 원칙을 지키고 엄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1월 16일자 4면 『사

회장관회의 ‘파업’은 없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주요 국정 현안으로 등장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파업에 관하여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 안건상정도 하지 않고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는 사회 서비스, 건강, 고용, 환경, 문화 등 사회문화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회의체이며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은 1월 15일 노동부에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노사관계 및 치안 관련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1월 16일 열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반론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딜러가 영어를 너무 잘 하면 손님과 내통해 카지노에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손님과 내통?...영어 잘하는 카지노 딜러 채용 꺼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4일자 B3면)
내 용 : ‘외국인 카지노의 딜러(카드를 돌리는 사람)가 영어를 못한다?’ 하루 종일 외국인을 상대하는 딜러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까. 실제로 외국인 카지노의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개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500점 정도만 넘으면 됩니다.

오히려 외국인 카지노에서는 딜러가 외국어를 너무 잘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세븐럭 외국인 카지노의 김○○○○장은 “손님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면 딜러가 게임에 집중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손님과 ‘내통’해 게임을 계속 저주면 엄청난 손실을 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2007년 1월 24일자 B3면에 게재된 ○○○ 카지노 기사와 관련해 김○○가 말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은 김○○가 말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이 기사로 인하여 본인이 받은 이미지 실추 및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본지는 깊이 사과를 표명합니다.

취하 후 보도문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2

월 2일자 B2면)

내 용 : 1월 24일자 B3면에 게재된 ‘세븐럭 카지노’ 관련 기사에서 김○○ 홍보팀장이 말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은 김 팀장이 말한 것이 아니므로 정정합니다. 김 팀장은 또 카지노 딜러의 외국어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정부가 환경오염조사없이 경기 북부의 미군 훈련장 5곳을 반환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치 범)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미군훈련장 5곳 ‘환경오염조사’ 반환』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8일자 정치면)

내 용 : 지난해 반환받은 경기북부 미군훈련장 5곳이 환경오염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훈련장은 ▲바이오넷(포천시 창수면) ▲왓킨슨 레인저(포천시 영북면) ▲모빌(양주시 남면) ▲트레이닝 에어리어(연천군 미산면) ▲다그마노스(파주시 적성면) 등 총 5곳이다.

이 중 바이오넷과 모빌 훈련장은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에 의해서, 다른 훈련장들은 한미 SOFA과제(수시반환)을 통해 반환됐다.

그러나 반환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문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이들 5개 미군훈련장이 일부 또는 전체 반환되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기자가 조사 여부를 질문하자 환경부 담당자는

“그 훈련장들이 반환됐느냐”고 반문할 정도였다. 이후 환경부는 반환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에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29개 반환기지 이외에 SOFA 환경분과위에 올라간 것은 없다. 이후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내 훈련장들에 대해서 포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환경오염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연천군 기획실 관계자 역시 “아직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해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균형발전과 최모 씨도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해 자료가 통보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반환기지 환경조사 미 실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7년 1월 8일자 『미군 훈련장 5곳 ‘환경오염조사’ 없이 반환』 제하의 기사중 “지난해 반환받은 경기북부 미군훈련장 5곳이 환경오염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부분은 사실확인결과, 5개소중 2개소(양주 모빌, 파주 다그마노스)는 한·미간 합의된 SOFA부속 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조사절차를 거쳐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포천 왓킨슨 레인저, 포천 바이오넷, 연천 트레이닝 에어리어)의 경우,

같은 명칭의 반환기지는 없으나 그와 유사한 명칭과 소재지의 3개 훈련장(포천 Watkins Training Area, 포천 Rodriquez, 연천 Local Training Area(LTA-130)이 2004년 8월~12월간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이들 5개 훈련장이 일부 또는 전체 반환되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상기와 같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참여토록 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는 2003년 5월 30일 한·미간 체결한 「SOFA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된 후 반환절차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미군훈련장 환경오염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kr)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미군 훈련장 5곳 ‘환경오염조사’ 없이 반환」)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오마이뉴스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미군 훈련장 5곳 ‘환경오염조사’ 없이 반환」)에 위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 피신청인은 2007년 2월 6일까지 위 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미군훈련장 환경오염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일자 메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과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T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TBC-TV : 「아침에 만난 세상」 프로그램 (2006년 12월 14일 07:50)

내 용 : (전략) 자막 : 또다시 음주운전 차량 적발

▷사회자 : 맥주 한 잔 드셨다면서요, 수치가 얼

마나왔나요.

▷신청인 : 0.03 나왔습니다.

▷사회자 : 근데 제가 듣기로 저기서 요기까지 가시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단속되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인 : 조심해야죠, 집 가까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걸 반성해야겠죠.

▷사회자 : 맥주 한 잔 정도야 나오겠나 하셨죠.

▷신청인 : 예예, 이번을 계기로 조심하고 자제하고 해야겠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TBC-TV는 지난 2006년 12월 14일 「아침에 만난

세상」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허락없이 음주운전단속을 받는 상황부터 인터뷰하는 장면까지 방송에

내보내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바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신청인 회사가 상조회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12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상조종합이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 ○)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6.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남일보 : 『믿는 상조업체에 발등 찍힐라』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경남조정1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1월 9일자 사회면에

『믿는 상조업체에 발등 찍힐라』라는 제하의 기사로 ○○상조종합이벤트 주식회사가 회원인 주부 김씨에게 회비를 완납하였음에도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조종합이벤트 주식회사 측은 김모 씨는 회비를 완납한 사실이 없으며, 중도해약금도 2월 28일까지 4회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 서명하였으므로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2007경남조정4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9.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손배)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지역농협 조합장 엄벌’ 탄원인에 폭언 논란』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9일자 부산경남면)
내 용 : <2007경남조정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경남조정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2007경남조정2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농협 이사, 탄원인에 폭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1일자 부산경남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신청인 주장

정정보도는 수용가능하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
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특정업체를 선정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장 ○ ○ 외 4인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일보 : 『주민 없는 사업설명회 ‘물의’』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0일자 19면)

내 용 : 오는 2009년 2단계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마을 주택재개발’ 사
업과 관련해 ○○마을 일부 통장들이 사전에 주택
개발정비업체를 선정, 사업설명회를 벌여 주민들로
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인천시 및 남동구에 따르면 간석○동 ○○
마을구역은 지난 8월1일 ‘인천시 주거환경정비 기
본계획’에 정비예정 구역으로 확정 고시됐다.

그러나 당초 ○○마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구)○○아파트와 (신)○○아파트(리모델링)는 공

람공고때 제외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주민들과 ○○마을 주민들은 2개 아
파트를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반영해 줄 것을
인천시와 남동구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
다.

현재 ‘○○마을 주택재개발’ 사업은 기본계획만
수립된 상태로 첫 단추를 끼웠을 뿐 앞으로도 거
쳐야 할 단계가 수차례 남아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주)○○○○(주택개발정
비업체)가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 ○○경로당 2
층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간석○동 통장 5명이 사전
에 (주)○○○○를 선정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
최했다”고 밝히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
어 공개입찰 및 지명입찰을 통해 정비사업자 선정
후 가질 설명회를 미리 가져 혼란만 더 가중시키
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민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 정비업체 한
관계자가 ○ 통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업체 측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마을 재개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에 『주민 없는 사업설명회 ‘물의’』 제목으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마을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마을 일부 통장들이 사전에 주택개발정비업체를 선정, 사업설명회를 벌여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통장들은 현재 ○○마을 구역은 정비예정 구역으로 확정고시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이를 추진할 단계가 설립도 안 된 상태이므로 주택개발정비업체를 선정했다거나 사업설명회를 벌였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는 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주택개발정비업체를 초청해 (구)○○아파트와 (신)○○아파트를 ○○마을 정비구역으로 편입할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을 뿐이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한 것도 업체와 유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재개발 관련 반론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 19면 『주민 없는 사업설명회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간석○동 통장 5명이 ○○마을 주택개발정비업체

를 사전 선정하여 지난 9월 21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업체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간석○동 통장 5명은 ○○마을은 현재 주택재개발을 위한 추진위가 설립되거나 재개발정비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지난 9월 21일에 열린 모임은 ‘간담회’였을 뿐이며 해당 업체와의 유착도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2월 15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일보> 사회 1면에 상가 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본 건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인천 남동구 ‘○○마을 재개발’ 업체 선정 반발”)활자의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합의사항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일보: 『인천남동구 간석○동 재개발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9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개인 블로그에 있는 글을 무단전재하면서 신청인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오토데일리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오토데일리 :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현대차 파업철회 촉구에 대한 현대차 노조원의 답글』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5일자 뉴스센터면)

내 용 :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

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염창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철회를 촉구하며 박○○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인터넷을 통해 편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블로그 ○○(이○○)이라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이 15일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차 노조가 왜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 손전지사에게 보냈다. (중략)

존경하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아마 제 이름은 생판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뭐, 일단 블로그에 있는 “○○○”이라는 재미있고 유능한 기능을 이용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Blogger ○○(이○○,22)입니다.

미디어다음에 게재된 손학규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매우 걱정적이고, 생동감있는 글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아,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너무나 생기있는, 정직한 글이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7년 1월 15일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현대차 파업철회 촉구에 대한 현대차

노조원의 답글』 제하의 기사에서 이○○ 씨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인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씨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및 현대자동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126,840원

신청 후 보도문

오토데일리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일자 종합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 1. 15.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현대차 파업철회 촉구에 대한 현대차 노조원의 답글>이라는 제목으로 이○○ 씨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인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씨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및 현대자동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검찰과 공모해 무고한 장애인을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구속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생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 ○)

피신청인 : e조은뉴스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1.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e조은뉴스 : (1) 『생보사 1급 장애인 살해(?)』 제하

의 기사 (2006년 12월 31일자 1면~12면)

내 용 :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람들은 보험이라는 상품을 생각하게 되고 웬만한 사고나 질병은 다 보장해 준다는 보험광고, 허나 현실은 보험회사의 횡포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횡포가 극에 달해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장애인인 됐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던 김○○ 씨는 식당에 찾아온 수많은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총 9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01년 6월 김 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1급 장애)판정을 받고 모 생명보험회사 측으로부터 김 씨가 받을 보험금은 약 7억 원이었지만 보험회사 측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건넸다.

김 씨는 “하체마비판정을 받아 다리를 전혀 못쓰는 장애인한테 1억 정도 들고 와서 합의하자고 하면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거절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김 씨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내 최대 보험회사 5군데가 연합해 김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보험회사의 억지주장은 한마디로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보험사의 억지주장을 살펴보면, “김 씨는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에 의해 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며 사고 직전에 자진해서 여러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김 씨는 이전에 자신의 증세를 알고 있었고 충격에 하반신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이용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했다.

이어, “김 씨와 그 일행은 휴일 새벽에 차량의 통행과 인적이 드물고 위장 교통사고를 내기에 적합한 위치를 물색하고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장소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개울에 승합차를 고의로 추락시켜 위장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사고 후 김 씨는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위 사고 당시 승합차에서 자고 있다가 사고 발생으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체가 완전마비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의사가 MRI 검사 등 제반 검사 결과 척수손상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략)

(2) 『장애인들 분노폭발』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7일자 1면~5면)

내 용 : “보험금을 노리고 스스로 1급 장애인이 됐다” ○○생명을 필두로 한 국내 거대 생명보험사

들이 검찰과 합작해 사고로 하반신을 잃은 1급 장애인에게 보험금은 커녕, 오히려 보험사기극으로 몰아 무려 9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사건이 e조은뉴스의 단독보도로 밝혀졌다.

이 장애인은 지난 2006년 12월 19일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한 맺힌 9개월의 옥살이와 검찰의 가혹한 고문,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때마다 주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지옥 같은 옥살이를 한 생각이 떠오를 때면...” 한 맺힌 9개월의 억울한 옥살이에 설움이 북받친 김○○ 씨는 채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하반신을 잃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게 된 김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장애인이 되었다’는 ○○생명의 진정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수년간의 수사가 진행될 동안 3명의 검사로부터 무혐의 종결을 받게 되었지만, 수사를 계속하라는 검찰내 상부의 지시로 4번째 검사로부터 억지 혐의를 인정받아 구속되게 되었다.

그로부터 9개월간의 옥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일반인들조차 참기 힘든 모진 고문과 폭력이 검찰수사와 교도소에서 자행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3) 『○○생명 죽인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1일자 1면~5면) 외 2건

내 용 : 본지 제278호에서는 ‘장애인들 분노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멀쩡하던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하반신마비 1급 장애인이 되었다는 보험회사의 억지주장을 보도했다.

또한 김○○ 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9개월간의 구속수사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검찰 측의 장애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 행위와 상상을 초월하는 횡포가 자행되었고 사건과 관련하여 양 측의 검은 유착관계에 대한 사실이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체장애인협회와 척수장애인협회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처사라고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체장애인협회나 척수장애인협회가 분노한 김 씨의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사건의 피해자 김○○(44) 씨는 2001년 6월 대구 신천대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학병원에서 하반신 마비로 장애1급 판정받았다. 이 후 보험회사로부터 6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보험회사가 김 씨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내 최대 보험회사 5군데가 연합하여 김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보험사와 김 씨와의 끈질긴 싸움끝에 12월 1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하○○)는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보험회사와 검찰 측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횡포와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음을 밝혔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9개월간 복역하는 동안 검찰 측의 온갖 강압적인 수사로 아랫니와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고 온 몸에 쇠사슬이 묶인 채 14일 동안 타일바닥에 방치되어 욕창이 생기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보험회사에서는 김 씨가 거짓 장애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 동안 김 씨의 집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온갖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등 극심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하여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2월 31일자 1면~12면, 1월 7일자 1~6면, 1월 14일자 1면, 16~18면, 20~21면, 1월 21일자 1~5면, 1월 28일자 1~17면에 걸쳐 보도한 <○○생명과 관련한 일체의 보도>에서 ○○생명이 장애인을 테러하고 범인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생명이 김○○ 씨를 검찰에 고소나 고발한 바 없고, 검찰 주도 하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명과 김○○ 씨의 구속은 연관이 없으며, 또한 ○○생명이 언론사의 입막음 비용으로 광고비를 수천만 원 사용한 적도 없고, 김○○ 씨가 미끄러져 스스로 넘어진 일은 있으나 ○○생명이 장애인을 테러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e좋은뉴스가 제 277호부터 제 281호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한 『검찰과 생보사 1급 장애인 살해한 내막』, 『장애인들 분노 폭발』, 『○○생명 고객 죽이기 실체 공개』 등 보도내용이 사건의 실체와 다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1. e좋은뉴스가 보도한 김○○ 씨 사건은 자신의 건강상태, 과거병력 등을 보험회사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다수의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교통사고에 의해 1급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1년 3월 2일부터 2001년 5월 10일까지 두 달 사이에 9개의 보험회사에 휴일 교통사고 시에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상해보험 13건을 가입하였고, 2001년 6월 24일, 대구 수성구 용두골 입구에서 차량이 개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하반신 완전마비의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보험금지급 심사과정에서 보험가입 이전인 2000년 7월과 12월에 하반신 운동장애, 감각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 및 치료를 수 차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고경위 자체에 의문점이 많고 다수의 보험을 중복가입 후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점, 보험금이 총 60억 원이 넘는 점 등이 의심돼 각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보류했습니다.

- 이에 따라 김○○ 씨가 5개 생명보험사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 △△생명과의 민사소송에서도 김○○ 씨가 최종적으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의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억지주장을 하고 무고한 장애인을 보험사기범으로 몰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약정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보험가입 시 자신의 건강상태, 과거병력 등을 성실히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지와 장애 1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장애인의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일방의 주관적 주장을 앞세워 법원의 최종판결 이전에 특정기업에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3. 또한 위 사건의 보도를 막기 위해 광고를 통해 타 언론사를 압박을 했다는 요지의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당사의 광고 집행은 사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혀 둡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31일자 1면~12면, 1월 7일자 1~6면, 1월 14일자 1면, 16~18면, 20~21

면, 1월 21일자 1~5면, 1월 28일자 1~17면에 걸쳐 보도한 <○○생명과 관련한 일체의 보도>에서 ○○생명이 장애인을 테러하고 범인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생명이 주도적으로 김○○ 씨를 검찰에 고소나 고발한 바 없고, 검찰 주도 하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생명이 집행한 광고는 판촉을 위한 것으로서, 언론사의 압박을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었으며, 김○○ 씨가 미끄러져 스스로 넘어진 일은 있으나 교보생명이 장애인을 테러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e조은뉴스 2007년 2월 12일자에 5단 크기의 상자기사로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e조은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1일자 36면)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 사건의 가해자인 신청인이 1년 전 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 전학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지난 8월에도 괴롭힘 당해 학교 알렸지만 주의조치뿐』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3일자 11면)

내 용 : 22일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의 한 병원. 같은 학교 학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동영상 (본지 12월 22일자 A8면)의 주인공인 안산시 모중학교 3학년 이모(15) 양이 입원한 병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병실 문에는 '절대안정' '면회사절' 이라고 쓰인 종이가 붙었다. 찾아온 학교 선생님들도 이 양을 만나지 못하고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이 양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중략)

이 양의 가족들은 "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8월에도 학교에서 동영상 속 김모(15) 양 등이 이 양을 괴롭히는 것을 이

양의 동생(14)이 보고 선생님께 알린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 교사는 김 양을 불러 주의 조치만 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아이를 주도적으로 때린 김양은 학교 폭력 때문에 1년 전 지금의 학교로 강제전학 당했던 학생”이라며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이 지경은 안 됐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인터넷에 공개된 집단 폭행 동영상은 12월 8일 가해학생인 김모(15) 양의 방에서 찍은 것이다. (후략)

월에도 괴롭힘 당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모(15) 양이 지난 8월에도 급우를 폭행하였으며, 1년 전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모 양(15)은 지난 8월에 급우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1년전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23일자 11면 『지난 8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특정업체를 선정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장 ○ ○ 외 4인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1.

처리결과 : 취 하

경기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6일자 10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에 ‘통장이 멋대로 업체 선정 말썽’ 제목으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마을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마을 일부 통장들이 사전에 주택재개발정비업체를 선정, 사업설명회를 벌여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통장들은 현재 ○○마을 구역은 정비예정 구역으로 확정 고시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이를 추진할 단체가 설립도 안된 상태이므로 주택개발정비업체를 선정했다거나 사업설명회를 벌였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는 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주택개발정비업체를 초청해 (구)○○아파트와 (신)○○아파트를 ○○마을 정비구역으로 편입할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을 뿐이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한 것도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보도내용

경기신문 : 『통장이 멋대로 업체 선정 말썽』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38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 사건의 가해자인 신청인이 1년 전 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 전학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

11:58)

청 구 명 : 정정청구

내 용 : <2007서울조정39의 보도내용 참조>

신 청 인 : 김 ○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1.

<2007서울조정3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피신청인 주장

Y T N : 「뉴스Q」 프로그램 (2006년 12월 22일

<2007서울조정39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실버문화축제’를 위해 지원받은 예산을 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여성복지회 (회장 장 ○ ○)

피신청인 : 김해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31.

처리결과 : 각 합의

등 양 측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축제위원회 측은 예산 전용 사실을 부인하
며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는 고유권한을 폄훼한 어
불성설”이라며 ○○○축제위의 예산심의를 철저히
게 파헤치겠다고 선포했다.

시의회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
버축제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다시금 예결특위 마지막날(15일)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시 당국은
지난 8일부터 ○○○축제위 측에 대한 예·정산 실
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지난달 중순께 ○○○축제
위로부터 정산 자료를 제출받았던 시 당국의 대응
이 사뭇 다르다. 시는 오는 15일께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축제위 측의 예산
집행내역이 여러 군데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

보도내용

김해신문 : (1)『예산전용 논란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3일자 1면)

내 용 : ○○시의회와 민간단체가 ○○○실버문
화축제 예산 전용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파만
파 번지고 있다.

시의회는 감사지적에 이어 민간단체의 반박 기사
회견, 그리고 시의회 측의 예산삭감 조치 움직임

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예산규모(1억 2천만 원)보다 3천 800여만 원이 늘어난 부분을 비롯해 당초 예산계획과 달리 과잉 지출·집행된 흔적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몇몇 항목에서 ‘누락’된 곳이 있는가 하면 행사가 끝난 뒤에도 4천 600여만 원이 더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무료’로 봉사해 주겠다는 단체들에게까지 최고 100만 원 이상 지출하기도 했다.

또 시의회 안팎에서는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설’도 나돌고 있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후략)

(2)『곳곳서 ‘임의집행’ ‘회계 부적정’』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0일자 1면)

내 용 : ‘예산집행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실버문화축제 사업이 ‘임의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당초 예산계획과 달리 쓰여지는 등 회계처리 조차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실버축제를 대상으로 벌인 정산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결과 ○○○축제는 사전승인 없이 예상으로 ‘임의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당초 축제 예산계획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이보다 무려 3천여만 원 이상 정산(1억 5천 860만여 원)된 것. 이는 ○○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된다.

또 수지침 외 13개 단체의 행사참가를 허용하면서 이익금의 10%를 징수키로 했으나 수익금은 받지 않고 오히려 계약서도 없이 임의로 업체에 따라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출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도 적발됐다.

시중은행에서 협찬금 6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100만 원에 대해서는 특정단체를 지정했는데도 전액을 ○○○축제위원회 측에 입금처리하는 등 ○○축제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실버축제와 관련, 시 사무행정감사를 보도하면서 마치 ○○시와 의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인 양 “○○시와 의회에 의하면”이라고 사실확인없이 기사를 작성하였고 운영단체의 취재없이 김모 의원 쪽의 주장만으로 과도한 수량의 의혹보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의혹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를 정정(사과)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실버축제에 대한 시의회의 사무행정감사를 보도하면서 ○○시와 시의회의 공식 발표가 아니었음에도 공식견해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으며, 2006년 12월 12일 당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버축제 관련 예산편성안을 부결시킨 바 없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논란과 관련 ○○시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부분은 적출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김해신문 2007년 2월 14일자(149호) 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이진 조정대상기사(2006년 12월 13일자)의 부제목(시, 축제예산…)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본건 손해배상 청구는 신청인이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김해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4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동학농민혁명군 유족들에게 증조부의 잘못을 사죄한 것이 비난여론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기 숙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취 하 (손배)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조 전 수석은 2005년 9월 동학혁명재단의 초청을 받고 적절한 기회에 만날 것을 약속했으며 이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보도내용

문화일보 : 『돼지띠 유명인 누가 있나·』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일자 29면)

내 용 : 60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인 2007 정해(丁亥)년, 신년을 학수고대해온 우리 사회의 주요 돼지띠 인사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들 돼지띠는 지난 한해 여느 사람들처럼 각기 ‘부침(浮沈)’을 겪었지만 올해 만큼은 자신들의 해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에 차있다. (중략)

동학혁명을 부른 폭정가 ‘고부 군수’ 조병갑의 증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은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59년생. 비난 여론에 떠밀린 조 전 홍보수석은 지난해 말 조상의 잘못을 사죄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군 유족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108배’를 하겠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7년 1월 1일자에 『“돼지띠 유명인 누가 있나?”』 제하의 기사에서 “비난여론에 떠밀린 조 전 홍보수석은 지난해 말 조상의 잘못을 사죄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군 유족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108배’를 하겠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조 기 숙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 중구 충정로1가 68

대표이사 이 병 규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문화일보> 2면에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돼지띠 유명인 누가 있나?’와 같은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8.

<별 지>

•제 목 : 조기숙 씨 관련 반론보도

•내 용 : 본지 1월 1일자 29면 <돼지띠 유명인 누가 있나?>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해 12월 9일 ‘동학농민혁명 112주년 기념 유족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유족들에게 사과하게 된 것은 여론과 관계없이
2005년 9월 재단이사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참석시기를 조율하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
습니다. □

정유회사의 기름유출사고 조사에 참여한 신청인이 정유회사와 공모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순천KBS-1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순천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1월
10일 21:25)

내 용 : ▷앵커 : 지난 2005년 ○○○○○의
기름유출사고 조사보고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조사를 맡은 연구진이 보고서에서 높은 오염수치
를 삭제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 측의 개
입여부가 논란입니다.

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지난 2005년 4월 28일, 이 탱크 바닥에
서 기름이 유출돼 주변지역을 오염시킨 것이 발견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
○가 함께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고에 대
한 조사를 ○○대 최○○교수에게 의뢰했습니다.

최 교수팀이 탱크주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범
정 오염물질인 TPH가 최고 2만 2천 피피엠을 넘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양관리법에는 오염사고에 따른 TPH수치가 5
천 피피엠을 넘을 경우 관련시설의 철거까지도 고
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만 2천 448피피엠이라는 수치는 공개되
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가 기재된 보고서를 일부 관계자들에게만
배포했다가 회수하고, 수치를 감춘 새로운 보고서
를 발표했다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 :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기자 : 이 조사에 참여했던 한 연구원은 ○○
○○○ 관계자가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줄 것을 요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 측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
다.

▷○○○○○ 관계자 : 아이구 절대 그런거 없습
니다.

한편 공동대책위에 함께 참여했던 ○○환경운동
연합은 그동안 최고 오염수치가 숨겨졌다는 사실
을 몰랐다는 입장을 KBS에 전해왔습니다.

(2)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1월 11일 21:25)

내 용 : ▷앵커 :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
○○기름유출사고 오염도 수치 조작에 대해, 누구
까지 알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공동대책위에 참여했던 회사 측과 시민단체 모두
자신들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
장과 다른 얘기들도 많습니다. 정○○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기자 : 기름유출사고의 오염수치 조작에 대해
○○○○○ 측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자신들이 수치 조작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환경팀장 : 아이구 절대 그런 거 없습
니다.

▷기자 : 그러나 이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진

술도 있습니다.

▷조사참여 연구원 : 유 팀장이 와 있더라구요 최
○○ 교수 방에... 저를 사무실에 불러서 두 양반이
바뀌야 한다고...

▷기자 : 공동대책위의 다른 한 측인 ○○환경운
동연합 역시 오염도 수치 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사를 실시했던 최○○ 교수의 얘기는
다릅니다.

▷최○○ 교수 : 이젠 이미 공대위에서는 공지된
데이터예요, 공대위에서는 내부적인 데이터를 분명
히 드렸어요.

▷기자 : 조사를 의뢰한 시민단체가 오염도 수
치를 밝히지 않은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는 점,

재검검대상으로 표시된 항목에 대해 재검을 요구
하지 않은 점도 시민단체도 사전에 알지 않았겠느
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일 오염도 수치가 조작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직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것
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지난 해 10월에 실시
된 기름유출사고 복구작업모니터 결과에 대해서
도,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
습니다.

(3) 「KBS뉴스 네트워크」 프로그램 (2007년 1월
12일 19:16) 외 4개 프로그램

내 용 : ▷앵커 : 기름유출사고를 조사한 대학
교수가 의도적으로 오염치를 줄여, 해당기업이
행정기관의 개입없이 복구작업만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기자가 취재했습
니다.

▷기자 : 지난 2005년 4월, 이 곳 원유저장탱크
에서 기름이 유출돼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는 사고
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단체와 회사 측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
고 관련전문가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조사결과 2곳에서 법정오염물질은 TPH가 대
책기준인 5000PPM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
다. 조사를 담당했던 대학교수가 보고서를 일부 관계

자들에게만 배포했다가 회수하고, 수치를 감춘 새
로운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 :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기자 : 이 과정에서 관련회사의 개입설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조사참여 연구원 : 유 팀장이 와 있더라구요 최
○○ 교수 방에... 저를 사무실에 불러서 두 양반이
바뀌야 한다고...

▷기자 : 그 결과 회사는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
기로 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 뒤,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
사에서도 오염도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 7천 4백
PPM을 기록했습니다.

믿고 맡겼던 교수에 의해 오염수치가 가려져, 근
본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못한 결과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 조사 보고서 조작 관련 정정
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10일 이후 7차례에
걸쳐 ○○○○○ 기름유출사고 조사 보고서의 조작
에 대하여 보도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서 마치 ○○○○○ 측과 연구 책임자가 공모하고,
기름유출사고의 공동대책위의 시민 대표인 ○○
환경운동연합이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반복하
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단지 당시의 연구실의 실
무 책임자였던 사람의 무책임한 자료 제시에 근거
한 것으로, 어느 일방의 불충분한 주장만을 반복,
보도함으로써 해당 연구 책임자의 명예에 심대한
손상을 가져온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명정대한 보도를 사회적 책임으로 하는 공
영 방송인 순천 KBS의 편중된 태도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어떤 청구도 수용할 수
없다. □

정부가 환경오염조사없이 경기북부의 미군 훈련장 5곳을 반환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치 범)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

처리결과 : 합 의 (합의간주)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3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7서울조정36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문화일보 : 『미군훈련장 5곳 환경조사 누락』 제하
의 기사 (2007년 1월 25일자 1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6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2
월 27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박종환 전 감독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보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프로축구단 (단장 최 ○ ○)

피신청인 : 플라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플라마 : 『박종환 전 ○○○○ 감독』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5일자 기획특집면)

내 용 : 앞으로는 한국 축구계에서 ‘박종환’ 이라
는 이름을 듣기 어렵게 될 것 같다.

프로축구팀 ○○○○의 감독을 마지막으로 축구
계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래도 1983년 제4회
멕시코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청소년팀
을 4강까지 끌어올렸고, 프로축구팀 일화 천마 감

독으로서 3년 연속 우승이라는 위업을 이룩했던
‘명감독’ 이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담한 박종환.

그의 축구계 하직(下職)은 많은 축구팬을 섭섭
하게 할 것이며, 한국축구를 위해 좀 더 일해 주었
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이다.

-연령과 관계없이 한국축구를 위해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한 은퇴를 선언한 이유는 무
엇인가?

○○○○ 측에서도 고문으로 남아있어 달라는 요
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깨끗하게 물러서야지 고문이 무엇
인가? 프로축구팀에서 고문이 해야 할 일이 도대
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 수 없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지만 고문으로라도 남아있
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지 속
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정인
의 실명까지 거론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줄은

알지만 새로 ○○○○ 단장이 된 최○○ 씨가 3개월 동안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나를 내보내기 위한 공작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처지에 어떻게 남아있겠는가?

-최○○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에 입사해서 프로축구팀○○의 단장까지 역임한 사람이다. 그때 ○○팀 감독은 조○○ 씨였는데 조○○ 감독이 최○○ 단장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최○○ 씨는 ○○프로축구팀 단장이 되기 전에 야구·농구·씨름 등 여러 종목의 스포츠와도 인연을 맺었던 사람인데 내가 결정적으로 ○○○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현재 ○○상공회의소 회장이신 이○○ 씨에게까지 가서 나를 내보내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나를 무척 아껴주시던 분인데 그 분에게까지 가서 나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것이 너무도 불쾌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25일자 기획특집면에 『박종환 전 ○○○ 감독』 제하의 기사에서 마치 구단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박종환 감독을 내보낸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또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 구단 대표이사와의 과거 이력을 들어 ‘조○○ 감독이 최○○ 단장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라며 구단 대표이사가 상습적으로 소속구단 감독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는 계약이 종료된 박○○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 일체의 부당한 행위는 없었으며 ‘조○○ 전 감독이 괴로워했다.’는 내용도 사실무근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플라마 : 『박종환 감독 인터뷰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6일자 칼럼면)

내 용 : 지난 1월 25일자 “박종환 전 ○○ 감독 인터뷰”기사중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쓴 부분이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먼저 전 안양 LG축구단 감독이었던 조○○ 씨를 당시 단장이었던 최○○ 씨가 괴롭혔다는 부분에 대해, 조○○ 전 감독은 2월 5일 저녁 8시 30분부터 약 20분 동안의 전화통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LG축구단 감독으로 있을 때 최○○ 단장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2000년 시즌 K리그에서 안양 LG축구단이 10여년 만에 처음 우승을 차지했을 때는, 최 단장의 헌신적인 도움이 선수단 전체에 절대적인 힘이 되었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 박종환 전 감독께서 왜 최○○ 단장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씀하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하나, ○○ ○○측에서 박종환 씨를 내보낸 것처럼 쓴 부분에 대해 대구 FC측에 확인한 결과 “○○ ○○ 초대 감독으로 박종환 씨가 결정되었을 때 계약기간은 3년이였다. 그 뒤 3년 만기가 되기 직전에 1년 더 연장해서 모두 4년 동안 감독으로 재직했다. 4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이 2006년 11월 5일이었는데 이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 ○○에서 박종환 전 감독을 내보낸 것이 아니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중국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들여와 신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불법 복제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정보개발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1월 4일 21:25)

내 용 : ▷앵커 : 이른바 짝퉁 휴대전화기가 국내에 유통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기가 중국에서 새 제품으로 둔갑해 역수입 된것인데 제조업체도 가려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고 합니다.

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국내 유명 업체의 상표가 붙은 휴대전화들입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모두 가짜. 중국에서 수입된 것들입니다.

한국에서 수출된 중고 휴대전화에서 떼어낸 기판에, 가짜 단말기 케이스를 덧씌워 국내로 역수입됐습니다.

오늘 경찰에 적발된 조직은 국내에 백 평 규모의 공장까지 차려 놓고 가짜 휴대전화를 찍어냈습니다.

이들은 중고 단말기의 고유일련번호를 위조한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짜 단말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짜 휴대전화의 정교함도 놀라워 해당업체도 가려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위조품들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해 멀쩡하게 팔려나갔습니다.

중국에서 5만 원선에 들여와 국내에서 팔린 값은 20만 원대.

지난 1년간 이렇게 국내에 유통된 가짜 휴대전화는 2만여 대, 11억 원어치나 됩니다.

▷경찰관계자 : “중국에서 휴대전화 제조 조직을 중국 당국과 공조 수사하고 국내에 가짜 단말기가 유통되는 경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 통화감도 등 성능도 떨어져 소비자들만 이래저래 피해를 떠 안았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짝퉁’ 휴대전화〉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4일자 뉴스시간에 한국에서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기가 중국에서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와 불법복제하여 가짜 단말기 2만여 대를 유통시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문제가 된 휴대폰은 재활용 중고휴대폰으로서 적법하게 수거되었으며 유통된 휴대폰 대부분이 중고휴대폰에 케이스만 교체하여 정상적으로 재생, 재활용된 것으로 ‘불법복제’를 하거나 새제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3월 14일 21:00)

내 용 : ▷앵커 :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종의 휴대전화가 쏟아져 나오면서 수거되지 않고 집안에 쌓이거나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중고 휴대전화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중고 단말기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중고 휴대전화를 수집해 수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고 단말기 수거량이 지난해 초 월 평균 17만 대에서 만 3천 대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관계자 : “1년 전에는 이 창고 말고도 다른 창고까지 중고폰으로 가득 채웠는데 지금은 회수 물량이 줄다보니 이 창고도 70%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중고 단말기를 반납하면 지급했던 보상금 지급을 지난해 중단하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회수된 단말기도 대부분 버려지고 다시 사용되는 비율은 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새 제품과 다름없는 중고 단말기가 늘면서 중고 휴대전화를 찾는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값비싼 부품과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한 잇단 제소는 중고 휴대전화 유통에 걸림돌임

니다.

▷관계자 : “자재를 확보해야 하는데 제조사에서 나오는 자재 단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자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 : 단말기 반납을 의무화하고, 중고 휴대

전화에 재생 표시를 붙일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그래서 제기됩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만든 휴대전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중고 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

일부 지하철 택배업체가 고의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체불시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를 무단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스피드○○○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7.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KBS-2TV : 「8시 뉴스타임」 프로그램 (2007년 2월 2일 20:00)

내 용 : (전략) ▷택배업체 사장 : 제가 정말 악덕이고 이 사람들 돈 때먹고 싶었으면, 일년에 수십억 때먹고 문 닫고 안하죠... 저희는 안주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영업을 하겠다.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는거거든요.

▷피해자 :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 회사 사무실 정경〉〈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2TV는 지난 2월 2일자 「뉴스타임」 시간에 일부 지하철 택배업체의 직원임금 고의체불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무단으로 사무실을 촬

영하여 이를 방송에 내보내 마치 악덕업체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심하게 명예가 훼손된 바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스피드○○○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7년 2월 2일 〈KBS-2TV〉 저녁 8시 「뉴스타임」 프로그램 중 “택배원 올리는 ‘지하철 택배’”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지하철 택배업체인 신청인의 회사의 사무실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직원의 음성을 무단으로 녹음하여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과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

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이 이름이 언급되거나 초상이 공표되어 피해자로 특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 회사의 사무실 입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모자이크처리되어 있고 직원의 음성도 변조되어 있어, 신청인의 회사를 자칭하는 표현이나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방송을 보고 지하철 택배

업체가 신청인 회사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 회사가 피해자로 보도에 특정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15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이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2월 1일 21:00)

내 용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의 폭력적인 모습〉

(2)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2006년 12월 11일 08:50)

내 용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의 폭력적인 모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2월 1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등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지닌 것처럼

보도하였으며 본인의 승낙없이 이를 취재하고 방송에 내보내 심하게 명예가 훼손된 바 14,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김 ○ ○, 2. 김 ○ ○

신청인 1, 2의 조정대리인 김 ○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각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2007년 3월 2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15

□

냉난방시스템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무면허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전북일보 : 『냉난방시스템 수의계약 반발』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7일자 6면)

내 용 : 진안군이 3억 9300만 원 규모의 냉난방
시스템을 외지업체와 수의계약방식으로 구입해 도
내 관련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
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22일 복합노인복지시설신축공사
지열수축시스템을 서울 H시스템과 수의계약에 의
해 구입했다.

진안군이 도내 업체에 한정해 이를 발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H기
업이 지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가동하는 시스템 전
공정에 대해 특허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등은 특허를 이
유로 지역제한 공사발주가 가능한 것을 외지업체
와 수의계약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
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북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열을 이용한 냉난
방시스템은 보편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올해 순창군
이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등은 기계설비공사업으
로 공사를 발주한 바 있다”며 “진안군의 이번 발주
는 지역업체를 외면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도내 설비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도 “진안군의 납품
계약은 단순히 난방시스템을 납품하는게 아닌 토

목과 배관설치가 포함된 사실상의 기계설비 공사”
라면서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기계설비면허 조
차 보유하지 않아 무면허 시공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이번 발주 공사에 대해 업계 일각의 잡음
이 거세게 일고 있으나 진안군 관계자는 “수의계
약을 체결한 업체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납품계약
이 아닌 공정은 별도로 분리, 발주했기 때문에 특
별한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진안군청 복합노인시설공사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자 6면에
진안군청이 지열수축열시스템 납품 수의계약과 관
련하여 기계설비면허가 없는 무면허업체와 계약했
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계약업체인 ○○시스템테
크(주)는 기계설비면허를 소지한 업체이며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
로잡습니다.

또한 오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관련업체와 진
안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사과를 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진안군 냉난방시스템 예산 절감 가능

• 내 용 : 본지 지난 2006년 12월 29일자 “냉난방
시스템 수의계약 반발” 기사에 대해 H시스템은
“기계설비면허를 소지한 면허업체로서, 진안군이
발주한 복합노인시설신축공사 지열수축시스템은

한전이 부여하는 인증서가 있어야만 요금이 싼 심야전력공급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3,000㎡이상 공공 건축물에 의무설치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스템 「납품」건인 본 공사는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 업체가 전 공정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가 없으며 장기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7년 2월 15일자 6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진안군 4억규모 서울업체서 구입~)활자크기와 같게, 본문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일보 : 『진안군 냉난방시스템 예산절감 가능』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5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냉난방시스템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무면허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PR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전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전라일보 : 『업계 불법-로비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7일자 6면)

내 용 : <2007전북조정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전북조정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전라일보 : 『대체에너지 설비 '히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6일자 7면)

내 용 : 폐수열과 땅속에 있는 지열원을 이용, 환경오염 없는 청정에너지 활용방식이 개발돼 도내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시스템테크(대표 최○○)는 지열을 이용한 수축열식 히트펌프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확보하고 한국전력 인증을 획득했다.

지열시스템은 땅 속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고 히트펌프를 적용해 건물의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환경오염이 없고 효율성이 높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건축물의 경우 총 공사비의 5%이상을 대체 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데다 건축주에 축냉설비 설치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건축물에도 적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시스템테크가 개발한 시스템은 수축열식으로 구성하고 저렴한 심야 전력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지열시스템과 비교해 초기 투자비용은 별 차이가 없지만 전력 비용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일반 냉난방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투자회수기간이 4년 이내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약점을 해결했다.

이 시스템은 천안 골프클럽하우스와 서울 서대문 구립도서관 등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도내에서는 진안군 노인복지회관에 채택돼 시공이 추진되고 있다.

이 회사 최○○ 대표는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23년간 수축열식 히트펌프와 빙축열시스템 기술개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화에 성공했다.

지열원 수축열식 히트펌프 시스템 등 7건의 특허와 3건의 한전 인증을 보유하고 산자부 장관상과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했다.

최○○ 대표는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다”며 “앞으로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방지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냉난방시스템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무면허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2007전북조정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2007전북조정5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도내 설비업체 로비 의혹 제기』 제하
의 기사 (2006년 12월 27일자 9면)

내 용 : 〈2007전북조정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이행결과

새전북신문 : 『진안군 냉난방시스템 예산절감 기능』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냉난방시스템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무면허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전북매일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전북매일 : 『진안, 복합노인시설공사 로비의혹』 제
하의 기사 (2006년 12월 27일자 4면)
내 용 : <2007전북조정5의 보도내용 참조>

5,000,000원

합의사항

<2007전북조정5의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전북조정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매일 : 『진안군 냉난방시스템 예산 절감 기능』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5일자 4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냉난방시스템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무면허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전북연합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2007전북조정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2007전북조정5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전북연합신문 : 『도내 설비업체 강력 반발』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7일자 5면)
내 용 : <2007전북조정5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연합신문 : 『진안군 냉난방시스템 예산 절감
기능』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5
일자 5면)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독자만화대상’ 시상식이 전체 만화독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특정 작가나 출판사의 홍보성 행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7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집행위원회 (대표 제 ○ ○)
피신청인 : 코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9.
처리결과 : 합 의 (정존)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코카뉴스 : 『윤용 불투명한 ‘독자만화대상’』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30일자 메인면)

내 용 : 한 만화 동호회가 ‘독자만화대상’이란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 주체나 투표인단 등의 구성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 만화 독자들로부터 모은 후원금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어 만화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누리꾼들은 ‘독자만화대상’이 전체 만화독자들이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집행위원 및 투표단이 구성될 수 밖에 없어 전체 만화독자들의 의사를 대변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이 동호회는 지난 ‘2005년 독자만화대상’에서 심사위원 선정 대상을 받은 유○○의 ‘○○○에서 만나요’(○○문화사)를 또 다시 올해의 심사위원 선정 대상작으로 선정해 특정 작가나 출판사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동호회는 현재 언론이나 외부인이 의문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고 있어 즉각적인 사실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누리꾼은 “특정 동호회 차원에서 벌이는 행사에 ‘2006 독자만화대상’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면서 “동호회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작가를 선정하고 축하한다는데 할 말은 없지만 행사 명칭이 전체 만화독자들이 주는 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제에 이 상을 실제로 전체 만화 독자들이 주는 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심사위원 및 투표인단도 공정하게 구성, 전체 만화계의 축제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코카뉴스는 현재 ‘독자만화대상’ 측에 문의메일을 보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연결이 되면 보다 자

세한 내용을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31일자에 『윤용 불투명한 ‘독자만화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독자만화대상’은 동호회 차원의 행사이며, 그럼에도 일반 독자에게 후원금을 받아 혼란을 초래했고, 특정 작가나 출판사의 홍보용 행사라는 의문이 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 조사 및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사로, 사실확인결과 ‘독자만화대상’은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며, 만화계에 어떠한 혼란도 초래한 바가 없고, 또한 특정 작가나 출판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독자만화대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1월 31일자 본 인터넷신문의 〈윤용 불투명한 ‘독자만화대상’〉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독자만화대상’은 단순히 특정 동호회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만화를 좋아하는 독자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공개모집 및 자율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행사로 확인되어 관련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 집행위원회에서는 독자만화대상은 ‘독자’행사로써의 순수성과 자율성뿐 아니라 ‘상’으로서 가져야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절차 및 객관적인 투표시스템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며, 후원금 모집은 사이트 운영과 행사 진행을 위한 만화애호가들의 순수한 기부금으로 이를 통해 만화계에 어떠한 혼란도 초래한 바가 없고, 또한 독자만화대상은 특정 작가나 출판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코카뉴스에서는 본 기사로 인하여 독자만화대상에 참여하고 있는, 착박한 현실 속에서도 만화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적 아픔

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코카뉴스’ (www.cocanews.com) 초기화면에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운용 불투명한 ‘독자만화대상’』)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코카뉴스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운용 불투명한 ‘독자만화대상’』)에 위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 피신청인은 2007년 2월 20일까지 위 합의사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코카뉴스 : 『‘독자만화대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6일자 초기 화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부산항 노무인력 상용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희망퇴직자들이 생계 안정지원금과 위로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해양수산부 (장관 김 성 진)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세계일보 : (1) 『부산항 퇴직자들 강력 반발』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3일자 12면)

내 용 :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부산항 노무인력 상용화(부두운영사가 노무자를 직접 고용하는 제도)를 단행하면서 언급한 위로금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지자 희망퇴직자들이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항 퇴직자들은 또 지난해 11월 상용화 설명 과정에서 퇴직희망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산정하면서 근무연수 중 끝자리 개월수가 포함되지 않아 2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됐는데도 부산항운노조나 해수부 등 누구도 사전설명조차 없었다며 조

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부산항 4부두 등 상용화에 따른 퇴직자들에 따르면 해양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상용화 찬반투표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13일 ‘노무구조 개편설명회’ 때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얼마간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조합원의 질문에 답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부산항운노조 부두 내 현장반장들도 상용화 찬반투표 전 “3~6개월치(1000만~1500만 원) 선에서 위로금이 절충 중이고 개편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퇴직자 345명은 지난 17일 지급된 생계안정 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위로금이 제외된 사실과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산정시 끝자리 개월수를 빼 사실을 확인했다. 9년 11개월을 근무한 4부두 퇴직자 이○○(46·부산 동구 초량4동) 씨는 “생계안정 지원금에서도 11월치(1100만원)와 위로금 등 2000만~3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퇴직자들은 부산항운노조를 향의방문한 뒤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직적인 항의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대

해 해수부 관계자는 “근무년수 계산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다. 그러나 위로금 부분은 애초 확실하지 않았고, 대신 생계안정지원금을 넉넉히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후략)

(2) 『‘부산항 상용화’ 귀막은 노사정』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7일자 9면)

내 용 : “노 측, 사 측, 그리고 정부는 부산항 노무자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렸습니다.”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지난 25일 열린 부산항 상용화 퇴직자 대표와 부산해양청 토론회장에서 근로자들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부산항 상용화 찬반투표는 개인별 조건표 등 기본 사항조차 전달 안 하고 근로자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실시된 것이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퇴직자 150여 명의 대표자는 부산해양청 관계자에게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언급된 ‘위로금’과 개인별 생계안정 지원금 조건표를 찬반투표 전에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중략)

이달 토론회는 345명의 생명같은 직장을 빼앗은 노사정협의회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23일자 12면에 『‘노무 상용화’ 위로금 유야무야... 생계지원금 축소 부산항 퇴직자들 강력 반발』 제목의 기사에서,

(1) 퇴직희망자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산정하면서 근무년수 끝자리 개월수가 포함되지 않아 20억 원 이상 손실을 입게 됐는데도 부산항운노조나 해수부 등 누구도 사전설명조차 없었다며 조직적인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해양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상용화 찬반투표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31일 ‘노무구조 개편설명회’ 때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얼마간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조합원의 질문에 답했다고 주장했다.

(3) 해수부 관계자는 “근무년수 계산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다. 그러나 위로금 부분은 애초

확답하지 않았고, 대신 생계안정지원금을 넉넉히 지급했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월 27일자 9면에 『‘부산항 상용화’ 귀막은 노사정』 제목의 기사에서

(1) 부산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지난 25일 열린 부산항 상용화 퇴직자 대표와 부산해양청 토론회 의장에서 근로자들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부산항 상용화 찬반투표는 개인별 조건표 등 기본 사항조차 전달 안 하고 근로자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실시된 것이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2) 이날 토론회는 345명의 생명같은 직장을 빼앗은 노사정 협의회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1) 근무년수 계산방식 등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노조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확정된 내용이며, 입법예고와 공포절차를 통해 이미 일반인에게 공개되었고 부산노조원들이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게재되었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2) 특히 노조집행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노조원에게 알리기 위해 찬반투표 전에 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을 부두현장에 게시하였으며, 지난해 11월 13일 개최된 조합원 설명회에서 이러한 지급기준에 따라 생계안정지원금 지급개월 수를 개략적으로 산출한 계산표를 배포하면서 개개인의 수령액은 개별적으로 계산해 볼 것을 권고한 바까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3) 또한 희망퇴직자에게는 개인별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액을 공개하여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그 지급액은 희망퇴직자 개개인이 직접 확인하여 서명까지 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4) 게다가 지급액을 확인한 이후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하고 부두운영회사고용을 희망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생계안정지원금에 대해 사전설명이 없었다거나 개인별 조건표 등 기본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5) 또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서 해양수산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13일 상용화와 관련한 조합원 설명회에서 위로금 지급문제에 대한 질의를 직접 받은 바 없으며, '위로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대답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아울러 해수부 관계자가 근무연수 계산에 대하여 기사내용이 같은 '근무 연수 계산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다. 그러나 위로금 부분은 애초 확답하지 않았고, 대신 생계안정지원금을 넉넉히 지급했다' 라고 대답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7)희망퇴직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의 기간 동안 개인별로 신청을 받았으며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희망퇴직자를 확정하였으므로 345명의 희망퇴직자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8)이 과정에서 이의신청 이후 스스로의 선택을 반복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고용되도록 하였으므로 노사정 협의회가 희망퇴직자의 직장을 빼앗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부산항 상용화' 해수부 반론

• 내 용 : 본지 1월 23일자 12면 <'노무 상용화' 위로금 유야무야...생계지원금 축소 부산항 퇴직자들 강력 반발>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퇴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합원 설명회, 이의신청 등을 통해 개별 조합원에게 지급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혀왔고, 별도의 위로금을 언급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2월 22일까지 세계일보 사회면 내지 지역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세계일보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의사항의 이행기일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1일자 1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대학교가 특정 출판사에 교재파일을 유출시키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총장 장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2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KBS-1TV :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 (2007년 1월 7일 22:20)

내 용 : ▷기자 : 최근 교수들의 표절 시비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에도 지적 재산권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수들이 쓴 저작물을 일반 출판사에서 아무 동의 받지 않고, 그것도 20년 넘게 그대로 표절해 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등록돼 있는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략)

○○대 교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 서점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새로 나온 교과서와 함께 똑같은 제목의 참고서들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고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대에서 법철학과 법 사상사를 강의하는 법대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대 법대 동료 교수와 함께 오랫동안 준비해 온 책의 집필을 마쳤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을 방송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법철학 교과서.

그런데 이 교수는 놀랍게도 자신의 책이 출판되기도 전에 흡사한 내용의 책이 참고서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철학 참고서는 교수가 학교에서 출판한 교과서 보다 오히려 먼저 인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 저자의 책이 나오기도 전에 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서 안에는 집필자들이 고안해 낸 독특한 용어와 도표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수들이 미처 고치지 못했던 틀린 글자도 그대로입니다. (중략)

○○대 교과서는 ○○대의 자체 출판부와 교수 사이의 저작권 계약에 따라 출판부에서 인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서 출판사에서는, 이에 대해 저작권 협의 없이 교과서를 일부 표절 했다는 사실은 시인합니다.

참고서 업체와 ○○대 출판부 사이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도 그래서 나옵니다. (중략)

더구나 해당 출판사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요구해서 낸 것이라고 출판사는 주장합니다.

▷이○○(○○출판사 대표) : “학교에서도 그 동안 저희 보고 발전기금 낼 수 있겠느냐. 기금 안내서에 보면 세제 상이나 기타 특별한 우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던 말이에요. 그러면 업자로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책을 만들어 먹고 사는 이런 회사에서 그나마 거절할 수 없잖아요”

○○대 측은 오랜 관행인 표절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사는 지난 1월 7일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에서 “20년간 계속된 ‘교재 베끼기’” 제목으

로 ○○○○대 교재를 무단으로 베껴 판매하고 있는 Y출판사의 행태를 보도하는 가운데, Y출판사 참고서의 발행일이 ○○○○대 출판부 교재의 발행일보다 빠르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파일 유출의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출판과정상 정확한 발행일을 미리 기입할 수 없어 출판사들이 관례적으로 대략적인 날짜를 기입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일 비교는 발행시기를 비교하는데 적절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좀 더 정확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서점입고일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대 출판부 교재의 서점입고일이 Y출판사 참고서의 입고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대 출판부에서 출판한 교과서보다 Y출판사 참고서가 먼저 인쇄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사는 지난 1월 7일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에서 “20년간 계속된 ‘교재 베끼기’” 제목으로 ○○○○대 교재를 무단으로 베껴 판매하고 있는 Y출판사의 행태에 대한 보도 가운데 ○○○○대 교재의 제작과정에서의 파일유출 가능성과 Y출판사와 대학간의 유착관계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파일유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검찰조사를 통해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그 어떤 유착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저작권을 침해하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Y출판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대 교재 베끼기 관련 반론 보도

• 내 용 : 본 프로그램은 지난 1월 7일 「20년간 계속된 ‘교재 베끼기’」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출판사 ‘법철학’ 참고서가 ○○○○○○대 교재보다 먼저 시중에 나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 측은 해당 교재의 서점입고일은

그 출판사 참고서보다 빠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3월 2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취재파일 4321> 홈페이지 초기 화면 ‘공지사항&게시판’란 첫머리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KBS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조정대상 기사와 위 보도문이 함께 나오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합의사항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

이행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 및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홈페이지 : 『○○○○○○대 교재 빼끼기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3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평택항 컨테이너 운영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형식적으로 ‘운영사 선정 설명회’를 개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강 인 남)

피신청인 : 평택시민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평택시민신문 :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7일자 1면)

내 용 : 올해와 내년엔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평택항 외항동부두 컨테이너 7·8번 선석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재무상태 평가방식과 기존 5·6번 운영 선사와의 통합운영 방침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돼, 운영사 선정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고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해수청)은 지난 1월 4일 7·8번 선석운영회사 선정관련 입찰공고를 했으며, 2월 6일까지 참여업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 2월 7일 최종 선정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최된 ‘평택항 컨테이너 7·

8 번 운영사 선정 설명회’에서는 업체 재무상태 평가방식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업체 선정 이후 5·6번 선석을 운영하는 기존 운영사(PCTC)와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합 방식이나 과정이 시기적, 물리적으로 무리하다며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 표출되었다.

그러나, 평가방식과 통합운영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된 상황에서도 해수청이 일말의 변화 없이 선정 방식을 고집하자 특정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까지 표출되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17일자 1면에 『평택항 7·8번 운영사 선정 관련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평택해수청이 평택항 컨테이너부두(동부두 7·8번 선석) 운영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특정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선정계획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를 기초로 보

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보도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이 아니며 본 보도로 인하여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월 17일자 1면에 『평택항 7·8번 운영사 선정 관련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 평택해수청은 평택항 7·8번 운영사 선정관련 기준은 중앙부처와 협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

가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평택시민신문 2007년 2월 28일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재무제표 관련 입찰공고 공정성 시비...평택 해수청은 이의제기 목살)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평택시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8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탈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권상우 협박사건 ...조폭 ‘활개’ 충격』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6일자 1면)

내 용 : “나, 김태촌인데. 권상우 씨 집이 ○빌라 ○동 ○호 맞지? 내일부터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지난해 4월 영화배우 권상우(29) 씨는 자동차 안에서 폭력조직 범서방과 두목 출신인 김태촌(58) 씨의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피바다’ 운운하는 아찔한 위협. 한류스타인 권 씨가 사생활 노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낸 과정에는 극심한 공포감이 한몫 했다.

당시 권 씨는 “나, 김태촌인데”라는 말에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 김 씨가 일 본에서 권 씨 팬미팅 행사를 준비하던 자신의 친구이자 야쿠자 출신 연예기획사 관계자 N 씨를 위해 직접 나섰다고 했다.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건 김 씨는 “내가 어제도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애들이 애기를 안했나 보지?”, “만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거지” 등의 말로 권 씨를 협박했다.

권 씨는 거물급 조축이 배후에 있다고 과시한 매니저의 협박에도 시달려야 했다. 2003년 5월부터 2년간 권씨의 매니저를 맡았던 백모(28) 씨는 ‘양은이파’ 부두목의 아들로 부친의 후배이자 권 씨의 전속사인 I사를 운영하던 조폭 출신인 한모(43) 씨 덕분에 연예계 주변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백 씨는 권 씨와 매니저 계약이 끝난 뒤 지난 2005년 11월 본색을 드러내 권 씨의 사생활 관련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권 씨에게 자신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협박에 못이긴 권 씨는 결국 ‘본인은 I사에 소속기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I사 소속기간중 매니지먼트 일은 백 씨에게 위임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억 원을 백 씨에게

지급한다'는 자필 각서를 써야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7일 『권상우 협박사건
… 조폭 ‘활개’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양은이파 출

신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배후로, 권상우 씨에게 사생활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 백모 씨는 양은이파 출신도 아니며, 권상우 씨에게 사생활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탤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취 하

서울신문 : 『“나 김태춘인데 집 피바다 돼도…”』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7일자 7면)
내 용 : <2007서울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2007서울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탤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일자 1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피신청인 주장

조선일보 : 『조폭두목 김태춘 톱스타 권상우에 ‘섬뜩한 협박’』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7

법원의 선고공판을 앞둔 사건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탈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취 하

중앙일보 : 『폭력조직, 스타 연예인 노린다』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7일자 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보도내용

탈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취 하

매일경제 : 『일부 연예계 스타들 조폭과 '두려운 동
행'』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6일자
A39면)
내 용 : <2007서울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보도내용

탈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서울경제 : 『‘권상우 협박’ 김태춘 기소』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7일자 24면)

<2007서울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탈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취 하

한국경제 : 『연예계에 ‘조폭 그림자’』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7일자 A10면)
내 용 : <2007서울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보도내용

**탈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취 하

헤럴드경제 : 『“나 김태춘인데… 피바다 되고싶나
…”』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6일자 6
면)
내 용 : <2007서울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보도내용

**탈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취 하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6일자 연예면)
내 용 : <2007서울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연합뉴스 : 『조폭 등쌀에 허리 흰 ‘몸짱’ 권상우』
〈2007서울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탤런트 권상우 씨의 전 매니저인 신청인이 폭력조직 부두목의 아들이며, 권 씨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YTN STAR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취 하

YTN STAR : 「스타뉴스」 프로그램 (2007년 2월 6일
14:00)
내 용 : <2007서울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
조〉 ☐

신청인이 포털사이트에 오른 인기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기사화한 것을,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중앙일보사 (대표이사 송 필 호)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언론사 ‘뉘시질’에 빠진 검색어』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8일자 23면)
내 용 : 프리미어리그 축구팬인 회사원 김○○(27)

씨는 5일 새벽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수인 존 오셔가 문지기로 깜짝 변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네이버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위
해 검색창에 ‘존 오셔’를 입력했다. 하지만 ‘낸시
랭이 실종됐다고?’ 라는 엉뚱한 제목의 한 일간신
문 기사가 검색 결과 화면 제일 꼭대기에 노출됐
다. 김 씨는 “아침부터 뉘시질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왜 엉뚱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
겠다”고 말했다. 왜 이런 형상이 벌어진 것일까?

일부 언론사들이 사이트 페이지뷰를 늘리려고 포
털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를 단순 나열하는 기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네이버가 뉴스 검색
결과를 ‘아웃링크’로 바꾼 뒤 일어난 부작용이다.

해당 기사를 클릭할 경우 곧장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를 악용해 일부 언론사들이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해 이른바 '뉘시질 장사'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미 몇몇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갖고 만들어낸 '기사'를 통해 페이지뷰가 급등하는 등 '썰썰한' 효과를 보고 있다.

경쟁에는 인터넷 언론만이 아니라 종합일간지도 뛰어들었다. 지난 5일 네이버에선 한 가전제품업체의 광고모델인 '낸시 랭'이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언론사들은 낸시 랭에 관련된 기사들을 앞다투어 만들어냈다. 특히 홍석현 회장의 "온라인 강화" 발언 이후 규모가 확대된 <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은 이날 시간 차이를 두고 '낸시 랭이 들어간 기사 7개를 생산해냈다.

<중앙일보> 뿐만이 아니다. 5일 '낸시 랭'으로 검색했을 때 <한국일보>는 4개, <매일경제>도 4개의 기사가 검색됐다. 이날 네이버에서 검색된 '낸시 랭'이 들어간 기사는 22개인데 세 언론사에서 15개를 생산한 것이다. 포털의 실시간 인기검색어를 다룬 언론사 기사들의 특징은 기사 말미에 당일 네이버의 인기 검색어를 단순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에서 인기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자사의 기사가 최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클릭을 유도하는 '꼼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2월 8일자 한겨레 미디어면 톱기사 (제목: 언론사 '뉘시질'에 빠진 검색어)는 잘못된 사실로 중앙일보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알 권리를 위해 중앙일보가 실시간 작성 보도한 검색어 기사를 마치 네티즌들을 현혹시키는 '뉘시질'로 매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실시간 검색순위 상위에 오르는 뉴스의 내용을 압축해서 소개하고, 새로운 팩트를 업데이트해 주는 것은 언론사 본연의 보도의무 중 하나다"라는 중앙일보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또한 동기사의 내용 가운데 '홍석현 회장의 온라인 강화 발언 이후 규모가 확대된 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 대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에 확인한 결과 홍 회장이 온라인 강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의 규모는 최근 1년간 축소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정인의 이름을 동기사에 관련지어 넣은 점에 대해서도 사죄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로부터 예약확정서를 받고도 일방적으로 단체여행을 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1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여행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여행미디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여행미디어 : 『“○○항공 이건 아니잖아”』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5일자 1면)

내 용 : 여행사가 랜드사로부터 현지수배를 확정하는 문서인 확정서(Confirm Sheet)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발 하루 전에 행사를 취소한 채 현지 호텔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본지 제보에 의하면 ○○항공여행사는 지난달 27일 홍콩으로 2박 3일 여행을 계획한 고객 10명의

현지수배를 ○랜드사에 지난달 20일 의뢰했다. ○랜드사는 월요일인 22일에 견적서를 보냈으며, 고객 명단까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상태였다. 출발 4일전인 23일에는 확정서와 인보이스를 전달했으며, 현지에서 구룡 상그릴라 호텔에 보증금을 넣은 상태라고 구두 상으로 알렸다.

하지만 ○○항공여행사 관계자는 지상비가 높다고 판단, 객실 1개를 줄여달라고 재요청을 계속 시도했다고 전했다. ○○ 측은 25일 ○랜드사의 세부 내역서와 직판호텔료를 비교한 후 요금이 과다 책정됐음을 알았으며, 출발 하루전인 26일 고객에게 객실조정이 안 됐음을 알았으며, 출발 하루전인 26일 고객에게 객실조정이 안 됐음을 고지하고 추가요금을 요구하자, 고객들이 여행을 취소해 행사 자체가 취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5일자 1면 『“○○항공이건 아니잖아.”』 제하의 기사에서 ○○항공이 랜

드사로부터 현지수배 확정서를 받은 후 출발 하루 전에 이를 취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 측은 일주일 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 예약을 랜드사인 ○○○○ 측에 의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랜드사에서 ○○항공 담당자에게 사전공지 없이 현지호텔에 보증금을 선지불하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행사진행과정에서 랜드사 ○○○○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면 서로간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사장이 자살한 이유가 노조파업으로 인한 자금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박 유 기)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5.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중앙일보 : 『현대차 협력업체 사장 목매』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일자 11면)

내 용 :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채의 현실 앞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중압감에 어찌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1일 오전 8시쯤 경남 창원시 ○○면 ○○리 ○○공업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살한 이 회사 송○○(48) 사장이 남긴 유서다. 경찰은 송 씨가 경영 악화로 자금압박을 받아오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3차 협력업체다. 종업원 20여 명이 연간 2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려 왔으나 현대자동차 파업 여파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도 유서에서 “제조업체의 단가가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저 혼자 호의호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털어놓았다.

송 씨의 친구인 정모(52) 씨는 “고인은 현대차 파업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자금압박이 심하자 함께 술을 먹으며 고민했다”며 “귀족노조의 파업으로

하청업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가 증명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대차 협력업체 사장 목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7년 2월 2일자 11면 『현대차 협력업체 사장 목매』 제하의 기사에서 현대차 협력업체 사장이 현대노조의 파업여파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자살을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협력업체 사장은 현대노조 파업과 무관한 환율하락과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납품단가인하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치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정정합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당사의 기사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박 유 기

조정대리인 송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에 <별지>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하라.

이 유 : 1. 판단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서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 귀족노조 파업이 협력업체 사장의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하여 신청인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스스로도 고인의 친구인 정모 씨가 보도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말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신청인은 정모 씨가 추후에 다른 취지로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취지도 보도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는 사실이라고 인정되어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 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12.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육군의 ‘다중통합 레이저 훈련체계’ (마일스)가 기능이 떨어지는데다 찾은 고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

(단장 최 명 곤) 외 1인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1) 『기능미달 · 고장 ‘부실투성이’』 제

하의 기사 (2007년 1월 30일자 1면)

내 용 : 노무현정부 들어 대표적인 군 과학화 훈련사업으로 추진 중인 총 3000억 원 규모의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사업중 핵심인 마일스(MILES·다중통합레이저 훈련체계) 사업이 군 당국의 관리부실로 표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됐다.

육군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3000여억원을 투입하는 마일스 사업(장비비용 약 1000억원 규모)을 진행해 왔으나 장비 수준이 훈련 교범 및 교리에 못 미치고, 장비 고장 등으로 소기의 훈련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단장 최명곤 준장)은 지난해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업비 530억 원 규모의 2차 중대급 마일스 사업의 군 요구도(ROC)의 하향 조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국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감찰실은 내부 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국방위 소속 공성진(한나라당) 의원과 군 당국 및 관련업체에 따르면 2005년부터 육군에 보급된 제1차 대대·소대급 마일스장비 주요제품 중 일부가 전혀 작동이 안되는가 하면 야전교범 훈련교리에도 맞지 않고 고장이 잦는 바람에 훈련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방 17개 사단 각 소대에 90개씩 보급된 150억 원 상당의 소대급 마일스장비들은 초기부터 고장이 잦아 대부분 활용되지 못한 채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 의원은 이와 관련,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은 2005년 11월 15일 최초로 제기한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개발 군 요구도의 기술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품목을 삭제하는 시도를 한 의혹이 있다”며 “특히 관련 법규를 어겨 개발완료시한(2006년 11월말)을 넘겨가면서까지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육군의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후략)

(2) 『군 ‘마일스 부실’ 거짓 해명』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31일자 1면)

내 용 : 군 당국이 30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교전 훈련장비인 마일스(MILES)사업이 군 당국의 관리

부실로 표류하고 추가 사업인 중대급 마일스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문화일보 1월 30일 1·4면 참조)에 대해 육군이 해명과 부인을 하고 나섰지만 문화일보가 입수한 ‘관찰통제관 지침서(육군본부)’에 따르면 육군의 해명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더구나 육군은 530억 원대의 중대급 마일스사업업체 경쟁개발과 관련,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부실관리 책임을 업체가 전가하는 것”이라며 관련업체가 강력히 반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공성진(한나라당) 의원 및 군 관계자에 따르면 마일스 사업 주무부서인 육본 비무기체계사업단(단장 최명곤 준장)은 육군전력발전 업무규정에 명시된 군사요구도(ROC) 변경 절차를 무시했으며, 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개발 시제품을 검사시까지 밀봉토록 한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대급 마일스 장비의 부실 관리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중대급 마일스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파행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MILES 장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30일자 『기능미달·고장 부실투성이』, 1월 31일자 『군 ‘마일스 부실’ 거짓 해명』 제하의 기사에서 육군의 마일스 장비 부실, 사업절차의 편파성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마일스 장비는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육군의 과학화 훈련사업이 부실투성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과 육군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군사요구도(ROC)를 하향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부족해 중소기업의 인력 대란이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4
청 구 명 : 정정보구
신 청 인 : 노동부 (장관 이 상 수)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중기 ‘산업연수생제’ 연장 요구』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5일자 12면)

내 용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크게 부진해 올해 중소기업의 인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송출 비리와 제도적 허점으로 효율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용허가제의 전면 시행을 늦추고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5일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6,928명, 재중동포 등 외국 국적의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 근로자 3,223명 등 총 1만 151명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당초 지난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입국 외국인근로자 도입 목표(쿼터)를 4만 3,700명으로 설정했다. 결국 당초 쿼터 대비 입국률이 23.2%에 불과한 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이다.

반면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입국 근로자수는 총 2만 2,613명으로 쿼터(2만 5,300명) 대비 89.4%의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연수생제의 입국효율이 고용허가제보다 4배나 높은 셈이다.

외국인근로자 전문가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입국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우리나라와 송출국 정부의 전산시스템 등이 아직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 송출국에서 송출비리 문제가 심각해 근로자 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제도의 효율성이 낮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중기, 산업연수생제 연장요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5일자 12면 『중기, 산업연수생제 연장 요구』 제하의 기사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크게 부진해 중소기업의 인력대란이 우려되며, 부진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송출국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06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에 의한 제조업 분야에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총 28,742명으로, 도입률은 67.7%이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부진한 것이 아니며, 고용허가제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입국률’만을 근거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고용허가제 노동부 반론

• 내 용 : 1월 15일자 12면에 고용허가제 기사와 관련,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여부 및 고용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연도별 도입계획수가 반드시 입국시켜야 할 근로자수는 아니라면서, '06년 11월말 현재까지 '06년도 도입 목표 43,700명 중 국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총 27,188명(일반 27,188명, 특례 8,130명)으로 도입률은 62.2%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2007년 3월 7일

까지 문화일보 산업면에 박스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1월 15일자 조정대상기사의 기사 중간소제목(“4만 명 목표에 1만 명뿐...연수생 입학률은 89%”)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은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6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눈썰매장 내 놀이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광양만권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광양만권뉴스 : 『여수시, 체육시설물 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전남 여수시 눈썰매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의 부주의로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 신○○ 군이 사망한 여수시 ○○면의 눈썰매장은 여수시가 허가를 해준 체육시설 허가 사업장으로 해마다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여수시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수시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눈썰매장 내 시설물인(에어○○○)이 신고대상 시설물로, 관리대상이 아니라며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한 책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서 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고 유가족 측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여수시에서는 매월 4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의 날이 정해져 있어 사고 난 해당 눈썰매장 역시 안전

점검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직접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수시 체육관리과에서도 1월 3일 현장 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수시는 눈썰매장이 개장하고 한창營業을 할 시준인 1월 3일 정기 안전시설 점검 때 사고가 난 에어○○○가 눈썰매장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취재를 위해 지난 2월 1일 여수시청을 방문한 기자가 사망사고가 일어난 놀이시설 허가유무를 묻자 말꼬리를 흐리면서, “아마..., 올해 처음으로 썰매장 사업주가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취재결과 사망사고가 일어난 놀이시설물은 썰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려고 지난, 2005년 겨울부터 썰매장 내 편의시설로 설치해서 불법운영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여수시 관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담당자는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에 의거 신고대상이고 그래서 큰 규제 사항이 없으며 특히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신고 대상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업주가 알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눈썰매장 사망사고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11일 『여수시 체육시설물 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에서 ○○ 눈썰매장 내의 놀이시설인 에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에어○○○ 정원이 5명임에도 사고당일 14명의 어린이가 탔으며, 불법운영과 체육시설관리 부주의로 (고) 신○○ 군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에어○○○ 정원은 30명이
고 당시 이용인원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
○○○는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안전요원도 배치된 시설물로 불법
이 아니며, (고)신○○ 군은 1살 때 심장수술을 한
바 있으며, 2월 8일 국과수 부검결과 <심장질환>으
로 밝혀졌습니다. □

호주의 공원관리업체와 송사를 벌여 승소한 신청인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얼굴사진과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AM7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0.
처리결과 : 취 하

의 책임이 있는 공원 관리업체가 피의자 최○○
(28·사진) 씨에게 71만 8000 호주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12월 당시 시드니대학에 유학중이던 최
씨는 시내 하이드파크 노스의 유명한 무화과나무
들이 있는 잔디밭에 앉아 햇볕을 즐기던 중 갑작
기 떨어진 길이 1.5m의 나뭇가지에 맞아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으며 현재 머리속에 티타늄 금속판
을 낸 상태이다. (후략)

보도내용

A M 7 : 『나뭇가지에 맞은 호 유학생 5억 배상판
결』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5일자 3면)
내 용 : 호주의 한 공원에서 햇볕을 즐기던 중 갑
자기 떨어진 나뭇가지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
상을 입은 여성 한인 유학생이 71만 8000 호주달
러(약 5억여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현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뉴사우스
웨일즈(NSW)주 그레이엄 바 대법원 판사는 부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AM7은 지난 2월 15일자 3면에 호주 유학시절,
공원에서 산책 중 나뭇가지에 맞고 두개골 골절상
을 당해 공원관리 업체를 상대로 소송끝에 승소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얼굴 사진
을 게재하여 명예가 훼손된 바 200,000,000원의 손
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마약관련 보도를 하면서 2002년도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무단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2007년 2월 4일 22:40)

내 용 : (전략)▷앵커 : 중국보따리상이 양주박스에 넣어온 필로폰. 비닐포장 하나하나가 정확히 10g입니다.

▷형사 : 야~ 칼같이 맞춰왔네.

▷임○○ : (필로폰을 만지면서 저울에 다는 모습) 야~ 이건 기계로 달았네...

▷형사 : 칼같이 달아왔네~ 아이구야~~

▷앵커 : 다른 곳에서 적발된 필로폰. 무게는 딱

1kg.

▷형사 : 정확하구만.

▷앵커 : 이렇게 무게가 딱딱 떨어지는 것은 전문조직의 소행임을 뜻한다고 수사관들은 말합니다.

▷앵커 :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의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 들어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문화방송은 지난 2월 4일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마약관련 보도를 하면서 5년 전인 2002년 마약소지죄로 경찰에 조사받는 본인의 모습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보도해 명예가 훼손된 바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방송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특정 국회의원 때문에 경인TV방송 허가추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방송위원회 (위원장 조 창 현)

피신청인 : PD저널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PD저널 : 『방송위 “간첩문제 인허가와 상관없어”』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0일자 3면)

내 용 : 방송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을 두고 경인TV의 방송사 허가추천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구동 방송위 사무총장은 2일 경인방송 창사준비위원회(창준위) 집행위원들과의 만남에서 “경인민방의 간첩문제는 인허가와 전혀 상관없다”며 “현행법상(간첩혐의가) 성립도 안 되고, 미국가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등 창준위 집행위원 5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김 사무총장은 경인TV 방송사 허가추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대주주의 지분한도 초과건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박찬숙 의원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9일 “방송위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한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방송위는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정감사에서 약속한대로 국회에 보고한 후, 행정절차를 밟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9일 방송위 공보실을 통해 “대주주의 소유제한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위증의 문제와 간첩의혹 문제도 허가추천시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허가추천에서 고려돼야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훈기 희망조합 위원장은 “말을 바꾸고 있다”며 “당시 김구동 사무총장의 발언은 창준위 집행위원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방송위 “간첩문제 인허가와 상관없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7년 1월 10일 기획면 『방송위 “간첩문제 인허가와 상관없어”』 제하의 기사에서 ‘김 사무총장은 경인TV 방송사 허가추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대주주의 지분한도초과 건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박찬숙 의원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밝

혔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2007년 1월 2일, 경인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집행위원들과의 만남에서 김구동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은 ‘대주주의 지분한도 위반 여부 건에 대한 자체조사 진행상황을 내부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면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나, ‘박찬숙 의원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남녀간의 치정관계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피아노학원 전경을 무단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표 ○ ○
피신청인 : tN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t v N : 「독고영재의 현장르포 스캔들」 프로그램
(2007년 1월 29일 23:15)
내 용 : ▷나레이터 : 지난달 중순 제작진은 여자친구의 변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29살 회사원 민○○ 씨를 만났다.
▷민○○ : 화장실 갔을 때, 그 친구는.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작진 : 문자를 지웠다는 거죠?
▷민○○ : 예, 다 지워진거예요. 다. 문자가. 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화목록을 봤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통화목록도 다 지워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남자 생겼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 말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시간을 갖고 지내자고 하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거죠.

▷나레이터 : 그는 애인의 진심을 알고 싶어 했다.

▷나레이터 : 오랜 짝사랑 끝에 2년 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 씨의 동갑내기 여자친구. 우리는 그녀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해보기로 했다.

<학원사진>

▷나레이터 : 그런데 남자친구인 ○○ 씨와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그녀가 틈날 때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즐겁게 문자를 주고 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레이터 : 그녀를 지켜본 지 나흘째. 수업시간에 학원을 나선 △△ 씨가 근처에 있는 한 정형외과 병원으로 들어갔다.

▷나레이터 : 병원에서 나온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봉투 하나. △△ 씨는 학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29일자 「독고영재의 현장르포 스캔들」 프로그램에서 치정관계에 연루된 한 여성이 마포구 ○○동 소재 '○○피아노학원'의 선생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그 여성은 '○○피아노학원'의 선생이 아니며 '○○피아노학원'과는 무관한 인물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t v N : 「독고영재의 현장르포 스캔들」 프로그램
(2007년 3월 5일 23:30)

내 용 : 2007년 1월 29일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사건과 관련된 한 여성이 S피아노학원의 선생님이라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그 여성은 S피아노학원의 선생님이 아니며 학원과는 무관한 인물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타 업체와 과열경쟁을 벌여 육군의 마일즈 장비 사업추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한○○○○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국방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국방일보 : (1) 『과학화 전투훈련으로 강한 육군 양성』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4일자 6면)

내 용 : 육군은 현재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전투임무 위주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구축해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장병이 과학화 전투훈련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 상비사단급에서 운용할 중대급 마일즈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언론에서 마일즈 장비의

성과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과학화 전투훈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글을 게재한다. (중략)

▲ 현재 운용 중인 '대대·소대급 마일즈 장비' 관련

전방 17개 사단 각 소대에 90개씩 보급된 장비들이 초기부터 고장이 잦아 대부분 활용되지 못한 채 창고 신세를 지고 있다?

소대급 마일즈 장비는 1999년도에 보급돼 8년이 경과됐으나 철저한 정비를 통해 94%의 정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창고에 보관 중인 것은 고장 장비가 아니라 예비 장비다.

대대·소대급 K-201 유탄 발사기 마일즈의 최소 ROC는 최대사거리 400m, 지역 표적 유효사거리 350m에 근접하는 것이었으나, 6차례 수정을 거쳐 기준사거리를 150m로 하향 조정했다?

실제 사거리는 ROC상 350m로 돼 있고 실 장비성능도 350m로 개발돼 있다. 여기에서 150이란 의미는 거리상 숫자가 아닌 가늠자상의 눈금수치(기준점)를 뜻하는 것으로 직사 레이저 빔으로 350m 탄착점에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사다리형 가늠자상 150 눈금 수치를 조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화기 K1·K2 소총의 경우 레이저 발사시 인

접한 두 사람이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훈련 효과가 없다?

개인화기 K1·K2는 레이저 빔의 특성상 이론적으로 레이저 빔 폭에 인접 병력이 살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훈련간 그런 사례는 없어 훈련효과 달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전 상황에서는 1발 사격으로 2명이 동시 살상될 수도 있다.

K-201 유탄 발사기와 K-4 고속유탄 기관총은 수천 발을 쏘도 명중률이 0%에 가깝게 나타나 훈련 효과가 거의 없다?

소총 마일즈 장비와는 달리 K-201과 K-4 마일즈 장비는 훈련부대가 처음 접하는 화기이고 레이저의 특성으로 인해 명중률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은 있으나, K-201의 경우 화기조작에 익숙한 전문대항군이 2.4%의 비교적 높은 명중률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훈련을 통해 충분히 극복가능한 사항이며, 훈련부대의 명중률도 전사 상의 개인화기 살상률 7000~2만 5000발당 1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 ‘중대급 마일즈 장비 개발’ 관련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대대급 마일즈 장비 수준으로 ROC를 하향조정했다?

■ 잘못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진실은

▲ROC조정은 실시간 분석이 아닌 사후 분석만 실시하는 ‘준과학화 방식’의 중대급 마일즈 훈련 목적 달성과 소요예산 절감을 위해 제시했다가, 양업체 간 이견이 있어 최초 ROC를 그대로 적용기로 결정했다. 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개발 시제품을 검사 시까지 밀봉토록 한 규정을 미준수했다?

밀봉절차·범위는 개발업체의 동의 하에 개발 협약서에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중대급 마일즈 장비 사업은 오히려 관련업체들이 먼저 경쟁업체의 납품 여부 확인을 위해 시제품 납품일자에 밀봉을 요구해 밀봉 조치했으며, 개발업체들의 동의 후 밀봉해제·시험평가를 할 예정이다.

훈련분석장비 시제품을 이동형 셀타형 차량에 탑재된 상태로 납품해야 한다?

셀타형 차량은 야전에서 훈련 간 분석 장비용 셀타를 탑재해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장비이므로 운용 평가 시 납품돼 평가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상용·군표준품을 봉인하지 않은 것이 규정에 위

배된다?

시제품 봉인은 업체 개발품을 개발시험평가 전에 업체에서 추가 보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육군은 최초 봉인시 상용장비와 군표준품이 자사 개발 품목이 아니므로 봉인품목에서 제외한 것이다. 군의 명예와 장비 사기를 위해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후략)

(2) 『중대급 마일즈 사업 추진』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4일자 11면)

내 용 : 최근 중대급 마일즈 사업 추진과 관련 특정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업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마일즈 장비 사업 전반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군이 마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육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급 마일즈장비 사업이 현재 개발업체 간의 과열 경쟁에 따른 이진투구식 민원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육군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업체의 잘못된 주장과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면서 의혹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대급 마일즈사업은 2003년 업체 선정 이후 업체 선정의 타당성, 사업의 양도·양수문제에 따른 민원제기, 행정소송 등이 지속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되다가 2006년 2월 (주)○○테크놀로지가 추가 선정돼 선발업체인 (주)○○○○과 함께 2개 업체 경쟁방식에 의한 ‘업체 자체 연구개발 로업’으로 추진돼 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중대급 마일즈 장비 사업추진 문제점”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월 14일자 6면 『과학화 전투 훈련으로 강한 육군 양성』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마일즈 장비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 육본 감찰실 및 국방부 감사가 진행중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자 11면 『중대급 마일즈 사업 추진』 제하의 기고문에서 거명된 (주)○○○○○는, 육군이 기 사용 중인 소대급 대대급 마일즈 장비의 기술적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3년여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건설한 중소기업체로서 특히, K-201유탄 발사기 등 곡사성화기 및

K-1·2·3 마일즈크레모아의 레이저 방식의 기술적 제한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선진기술을 개발하는 등 육군의 전투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폭행한 신청인의 얼굴과 차량번호판이 찍힌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2.

처리결과 : 합 의

뉴시스는 지난 10월 13일 주정차위반 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단속요원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본인의 실명과 차량번호를 공개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뉴시스 : 『주차단속 불만 40대 승용차로 단속원 치어』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3일자 사회면)

내 용 :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중구 오류동 센트리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최모(40) 씨가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전시청 소속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김모(48)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3월 16일까지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 지급〉

☐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폭행한 신청인의 얼굴과 차량번호판이 찍힌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2.
처리결과 : 합 의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3월 20일까지 금 7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보도내용

연합뉴스 : 『불법주정차 단속중 단속요원 민원인에 폭행사고 발생』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3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서울조정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된 교회 당회에서 신청인이 1차 제명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1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장 ○ ○ 외 21인
피신청인 : 개봉교회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2.
처리결과 : 취 하

○ 강○○ 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주보는 2007년 2월 11일자 주간 교회소식에 22명의 제명자 명단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등 제명 당사자 22명은 제명처분은 당회 소집 절차인 당회 2주전 공고를 거쳐야 함에도 12월 24일 어린이 재롱잔치에 모인 일부 교인들끼리 당회를 개최한 것으로, 위임할 수 없는 인사안을 담임목사와 5명의 장로에게 위임한 것은, 2주전에 공고를 하고, 당회를 개최해야하고, 인사에 관한 사안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하는 교단법의 규정을 위배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불법 당회와 결의로서 무효의 행위라고 밝혀왔습니다. ☐

보도내용

개봉교회주보 : 『주간 교회소식』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1일자 6면)
내 용 : 당회 후에 발표하기로 한 1차 제명하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 정○○ 임○○ 김○○ 안○○ 서○○ 이○○

하남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하남시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남시 (시장 김 황 식)
피신청인 : 경인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인매일 : 『하남 화장장 유치 주민투표 ‘난관’』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4일자 14면)

내 용 : 김황식 하남시장이 하남광역화장장 유치를 위해 실시하려 한 주민투표제가 난관에 부딪혔다. 광역화장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지난 6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하남시 화장장설치(유치) 관련 주민투표법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결과, 이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

13일 대책위가 행자부에 제출한 질의회신 결과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대항은(주민투표법 7조 1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규정(동법 동조 2항), 경기도 광역화장장 건립은 경기도지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이므로 하남시장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 특히 하남시가 주민 투표법에 근거하지 않고 여론조사형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과 관련,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실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차원에서 실시했다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찬·반 여론을 투표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추진한 하남시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답변을 회피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하남 화장장유치 주민투표 ‘난관’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4일자 14면 『하남 화장장 유치 주민투표 ‘난관’』 제하의 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찬·반 여론을 투표를 통해 자체 실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추진한 하남시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이 경기도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이면 경기도지사가 주민투표실시권자가 되고, 광역화장장이지만 하남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이라면 하남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권자라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하남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하남시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남시 (시장 김 황 식)
피신청인 : 경인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인매일 : 『하남 부시장 자치조례 제대로 살펴야』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5일자 4면)

내 용 : <2007경기조정11의 보도내용 참조>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피신청인 주장

<2007경기조정1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경기조정11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이 방송회관 소유권을 방송위원회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신청사를 건축하고도 이전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 유 균) 외 1인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6.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서울경제 : 『“방송영상진흥원 집욕심 너무하네”』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7일자 35면)

내 용 : 한 정부산하기관의 빗나간 건물장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참여정부가 거국적으로 부동산 값잡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 유균)이 장본인. 진흥원은 서울시가 미디어 집적공간으로 개발중인 서울시 마포구 소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내에 지난 4월 65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DMS(디지털매직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신청사를 완공했다. 2004년 7월 기공돼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졌고 HD제작지원시스템에만 162억 원이 투입됐을 정도로 최첨단방송제작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진흥원은 그러나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입주해 있는 서울 목동 소재 '방송회관' 청사 처리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진흥원 소유로 돼 있는 목동 방

송회관을 떠나는 즉시 지난 98년부터 이곳에 4개 층을 임대해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방송위 측에 청사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따른 것이다.

진흥원 측 고위관계자는 “방송에 관한 국내 최고 권위를 갖는 방송위가 독자적인 청사가 없이 지내는 마당에 상암동DMC 신청사로 옮길 경우 목동 방송회관 소유권을 방송위가 욕심낼 수 있다는 판단에 이사계획을 전면 보류한 상태”라고 속내를 털어냈다. 양쪽 청사 소유권한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마당에 굳이 새청사로 옮겨 재산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참여정부 말 부처이기주의의 한 전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2006년 11월 27일자 35면에 『방송영상진흥원 집 욕심 너무하네』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방송회관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신청사로 DMS(Digital Magic Space)를 신축하고도 방송위원회에 한국방송회관의 소유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신청사인 DMS로의 입주를 미루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방송회관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DMS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신청사로 건축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그 주사무소를 DMS로 이전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DMS로의 입주를 미루고 있지도 아니하고, 한국방

송영상산업진흥원이 방송위원회에 한국방송회관의 소유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방송영상진흥원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2006년 11월 27일자 35면 “방송영상진흥원 집욕심 너무하네”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회관의 소유권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있으며 방송영상진흥원은 위탁경영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방송영상진흥원

은 “상암동의 DMS는 방송영상진흥원의 신청사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HD TV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것이며, DMS로의 청사 이전 계획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2007. 3. 16자 서울경제 30·40면 사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이사가면·차일피일 미뤄”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알림』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6일자 A3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재개발 단체’가 기부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길 ○ ○

피신청인 : 전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남일보 : 『재개발 단체 기부 쌀 동사무소서 거부』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0일자 6면)

내 용 : 재개발 사업을 놓고 주민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한 일선 동사무소가 재개발 관련단체의 불우이웃 돕기 쌀기부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간에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19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동지역 재개발 관련업체가 지난달 말 ○동사무소에 20kg들이 쌀 20포대 기부 의사를 밝혔으나 동사무소 측은 “행정기

관으로서 공정해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는 것.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웃돕기엔 국경도 없다는데 동사무소 측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공정하고 사려 깊은 행정”이라고 동사무소 측을 두둔하고 나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2월 20일자 6면 『재개발 단체 기부 쌀 동사무소서 거부』 제하의 기사와 관련, ○동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쌀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장 길○○씨가 개인 자격으로 사비를 들여 쌀을 구입하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동사무소에 순수한 의도로 기부한 것임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전남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

월 1일자 2면)

내 용 : 본보 2월 20일자 6면 『재개발 단체 기부
쌀 동사무소서 거부』제하 기사 내용 중 기부 의사
를 밝힌 것으로 보도된 ‘광주 ○동지역 재개발 관
련 단체’는 ‘○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위원회 길○○ 위원장’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길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
으로 사비를 들여 쌀을 구입해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동사무소에 순수한 의도로 기부하려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회사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렉○○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 ○)
피신청인 : 전주MBC-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전주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7년 1월
27일 07:23)

내 용 : ▷앵커 :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
한 무인카메라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해 불법주정차가 잦은 도심 지역
9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카메라의 무게가
40킬로그램에 이르고 있어 신속하게 작동하지 못
하고 고장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지역 업체로 한정해 발주를
하다보니 성능이 떨어지는 카메라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카메라 추가설치 계획에 맞춰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1월 27일자 「뉴스투데이」 시간
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이는 지역업체에
한정에 발주를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
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기기의 결함과는 무관하며
해당 관청의 관리소홀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신청인 단체가 대형 교복업체 3사에 수십억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 학부모모임
(대표 최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 수십억 요구 파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3일자 1면)

내 용 : 중·고교 교복값 거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 학부모모임(○○○)’이 대형 교복업체 3개 회사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모는 그간 교복값 현실화 운동을 주도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에서 감시 대상인 교복업체에 기부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덕성 및 신뢰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3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모의 공문 3건과 교복업체 3사에 따르면, ○○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사회 환원 기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복 메이저 3사에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모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이들 교복업체와 교복값 동결 등에 대한 협의를 벌여왔다. (중략)

이에대해 ○○모는 높은 교복값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기업들한테 ‘사회환원’ 명목의 기부금 각출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모 상임대표는 “(공정위가 담합 판단을 내리고 교복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연장선상에서) 이들 교복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등 사회환원 공동사업 방식을 협의해왔던 것”이라며 “(○○모) 발전기금은 이같은 취지의 사회환원 기부금이 와전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모 수십 억 요구 파문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7년 2월 23일자 1면 『학사모 수십억 요구 파문』 제하의 기사에서 ○○모가 도덕적인 잘못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모가 교복 3사에게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사회 환원기금을 ○○모로 보내달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모는 교복3사에 대하여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을 상대로 취득해 온 부당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며 보도 중에 신청인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단순 골절 환자가 신청인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패혈증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1TV :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 (2007년 2월 4일 22:20)

내 용 : ▷앵커 : 얼마 전 취재진에게 한 제보자

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단순 골절 수술과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 환자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 수도권에 한 다세대 주택가, 이○○씨는 대부분 시간을 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리에 끼워진 것은 마사지를 해주는 의료 보조 기구, 그리고 어깨를 감싸고 있는 건 열을 내는 팩입니다. 건디기 힘든 통증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는 잠을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5시까지 6시까지”

▷리포터 : 또 오른쪽 팔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 오른손만으로는 물을 마시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일상적인 집안일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 : “(밥상을) 못 갖고 들어가요, 방까지 그러니까 여기 서서 먹는 게 편해요. 그냥 놓고, 밥만 퍼서 반찬 이것저것 꺼내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한 가지 갖고 그냥 먹는 게예요.”

▷리포터 : 이 씨의 오른쪽 팔과 다리에는 아직도 선명하게 수술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몸에 생긴 농양, 즉, 고름을 빼낸 자국입니다.

이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입니다. 패혈증에 감염됐다고 돼 있습니다. 패혈증은 세균이 몸에 침투해 전신을 감염시키는 질환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이 패혈증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이○○ : “담당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씨 정말 큰일날 뻔 했다고, 단 한 발만 더 내디댈뻔 죽었다.’”

▷리포터 : 그런데 이 씨의 딸은 취재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의 딸 : “단순한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패혈증 염증으로 인해서 온 몸에 패혈증이 퍼져서 목숨까지 위협한 그런 상태까지 올 것이라고 전 상상도 못했어요.” (중략)

▷리포터 : 이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어깨가 부러져 입원하고 이틀 뒤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퇴원합니다. 이어 10여 차례 해당 개인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10월 9일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장염 진단을 내렸지만 다음날 상태가 더 악화됐고, 해당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결국 패혈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두 달이 넘게 개인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돼 패혈증이 생겼고, 개인병원에서 패혈증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는 게 바로 이 씨 측의 주장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KBS는 지난 2월 4일자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에서 의료분쟁의 현실을 보도하고 공정한 의료분쟁제정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의료분쟁 사안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병원을 예로 들고 환자 측의 진술을 사실확인없이 보도하여 병원 측을 의료과실의 주범으로 오인하게끔 과장 보도함으로써 해당 병원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신청인이 운영하는 조선닷컴 내 카페를 디지털조선일보사가 강제로 폐쇄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디지털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8.

처리결과 : 각 하

보도내용

디지털조선일보 : <보도내용에 대한 조정신청이 아님>

내 용 : <조선닷컴 내 카페 컬럼보의 강제 폐쇄 건>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조선닷컴 카페운영자에 의한 카페강제 폐쇄건

• 내 용 : 조선일보는 회원 312명이 가입해 있는

카페를 단지 회원자격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강제 폐쇄한다고 협박했으며 본인을 영원히 조선닷컴 회원자격에서 박탈한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정동 1-16

대표이사 김 천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디지털조선일보>에 <별지>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카페 <콜롬보의 시대유감>에서 신청인의 매니저자격을 복귀시켜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자신이 매니저직을 수행하고 있는 카페를 피신청인이 강제로 폐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매니저 자격 복귀와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반론보도 등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피해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 즉 보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신청은 보도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대상 매체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지 않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8.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장관 유 시 민)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지원, 독거노인-장애인 가장 ‘한숨’』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5일자 12면)

내 용 : (전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 최소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2005년 말 현재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80만 8931가구(142만 5000여 명)며 이들에 대한 올해 지원 예산은 2조 6696억 원이다. 이들 가운데 30.2%가 65세 이상 노인 가구지만 수급자 선정과 지급 기준이 현장밀착형이 아닌 탁상공론형이어서 이들의 목소리와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지원, 독거노인-

장애인가장 ‘한숨’』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5일자 A12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지원, 독거노인-장애인가장 ‘한숨’』 제하의 기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 기준이 현장밀착형이 아닌 탁상공론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정부에서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액 제도,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제도,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등의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생활보장에서 사업자 등록여부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아니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하여 생계급여를 차등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유지보수에 지원된 국가 예산이 사찰내 다른 건물의 복원사업으로 전용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박 동 순)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28.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2월 20일 21:20)

내 용 : ▷앵커 : 국보급 문화재를 보수하라고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지원했는데 몇 년째 불상은 갈라지고 석탑은 곳곳이 떨어져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도대체 보수비용은 어디에 쓰인 걸까요. 강○○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수비용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올 한 해에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후략)

(2) 「뉴스24」 프로그램 (2007년 2월 20일 24:00)

내 용 : ▷앵커 :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절에 문화재를 고치라고 보수비가 지원되는데 이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 다른 사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 다른 절에서도 문화재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자 : 문화재 보수비용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올 한해에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문화재 옆에 있는 절 건물을 지으라고 세금을 낸 것인지 콘크리트 건물로 된 승려들 숙소가 문화재 보호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문화재청이 다시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월정사 문화재보수비 전용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20일자 「뉴스데스크」와 「뉴스24」프로그램 및 2월 21일자 「뉴스투데이」프로그램에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 15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 비용이 엉뚱하게 서별당이라는 건물이 전용되고 석탑은 곳곳이 떨어져나간 채 방치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서별당을 절에 돈을 내고 묵는 일종의 영리목적의 시설로 단정하였으며, 스님 개인 숙소에 국가

예산이 지원된 것처럼 방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국가예산은 팔각구층석탑이 아닌 서별당 내 대강당 및 서별당의 복원사업에 지원된 것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팔각구층석탑은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등 문화재청의 지속적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서별당 내 대강당은 영리시설이 아니며, 서별당 내 스님 숙소는 국가의 예산지원과 무관하게 월정사 자체 예산으로 보수되고 있는 건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월정사 문화재보수 정정보도
- 내 용 : 지난 2월 20일 <뉴스24>에서 보도한 월정사 문화재 보수 관련 내용 중 석탑복원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건물복원사업에 전용되지 않은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팔각구층석탑은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등 문화재청의 지속적 관리를 받고 있으며, 문화재청이 지원한 예산은 스님숙소 공사가 아니라 서별당의 외부 기와보수에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3월 16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MBC-TV <뉴스24> 프로그램에서 합의사항의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송하되, 화면은 조정대사방송(‘영뚱한 예산집행’)의 화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화면 하단에 제목(월정사 문화재보수 정정보도)을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로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3월 20일까지 대표이사 명의(자필서명 포함)로 된 공문으로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하도록 하되, 공문 중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2월 20일 및 21일자 방송과 관련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및 월정사에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MBC에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수행과 참선에 열중하시는 주지스님 이하 월정사 수행 스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MBC를 대표하여 월정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5월 10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또는 월정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각종 행사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중단 또는 사찰의 계획 등을 취재·보도하되, 중단 또는 사찰의 간부급 이상 인물의 직접 인터뷰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전협조 및 협의토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24」 프로그램 (2007년 3월 16일자 24: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건설교통부 장관이 핵심 보직에 호남 출신을 임명하는 등 ‘고향 챙기기’ 식 인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건설교통부 (장관 이 용 섭)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건교부 장관 지나친 ‘고향 챙기기’ 뒷말』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5일자 B3면)
 내 용 :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
 용섭 장관의 지나친 ‘고향 챙기기’ 인사스타일로
 뒷말이 무성 전남 함평 출신인 이 장관은 취임 후
 차관은 물론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
 거북지본부장 등 건교부 3대 핵심 본부장 자리를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웠다고 또 장관비서관에는
 대학(전남대) 후배가 임명됐고 조직을 감시하는
 감사관 자리 역시 호남 출신이 차지. 이 장관의 인
 사스타일은 2003년 국세청장 재임 때도 구설수에
 올랐는데 상당수 건교부 공무원은 “과거 어떤 장
 관도 이 정도로 내놓고 편중인사는 안 했다”며
 “이 장관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을 명심했

으면 좋겠다”고 일침.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5일자 B3면 『건교부장관, 지나
 친 ‘고향 챙기기’ 뒷말』 제하의 기사 이용섭 장관
 취임 이전에 현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관, 감
 사관 등을 ‘고향 챙기기’로 보도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특정지역 출신에 대해 편중
 인사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
 인결과,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은 서울·경기 출
 신 23%, 영남 27%, 호남 16%, 충청 21%, 강원
 11%, 제주 2%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후속보도를 통해 신청인의 입장을 게재하였으
 로 더 이상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농림부가 한·미 협상에서 베이커리 제작용 쌀 등 일부 품목의 개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7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홍 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겨레 : (1) 『쌀만은 꼭 지키겠다더니...』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5일자 1면)
 내 용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
 만은 꼭 지키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흔들리고 있
 다. 한국 쪽 협상단이 농업부문에 영향을 덜 미칠
 일부 쌀 품목의 수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7
 차 협상 사흘째인 13일(현지시각) 한국 협상단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쌀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쌀 중에서도 덜 민감한 8개 품목은
 마지노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
 다. 쌀은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에서 18가지
 품목으로 나뉘는데, 10가지만 개방 대상에서 제외
 하는 안을 마련했다는 뜻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지난주 국회 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쌀시장 개방의 마지노선이
 어디냐”는 질문에 “쌀은 18가지 품목이 있는데, 8
 가지는 개방에 덜 민감하고 10가지가 초민감 품목
 이라고 답했다”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했다.

농업계에서는 18가지 쌀품목 가운데 베이커리
 제작용품(쌀성분 포함) 3가지, 조제식료품(쌀성분
 포함) 3가지, 쌀 배아, 쌀조제품(코코아 미포함) 등

8가지가 마지노선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후략)

(2) 『쌀 관세화 앞당겨 ‘제 발등 찍기’』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5일자 2면)

내 용 :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쌀시장의 일부개방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나름의 ‘실리와 명분’이 있다.

통상협상에서 다루는 여러가지 쌀 관련 품목 가운데 실제로 개방의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것을 골라 미국에게 양보하면, 다른 민감한 농수산품을 최대한 지키거나 섬유와 같은 미국 쪽이 수세적인 분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런 접근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박○○ 농촌경제 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베 이커리 제조용이나 조제 식료품용 쌀은 국내 소비량이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밥 짓는 데 쓰는 일반 백미가 개방되지 않는 이상 쌀 농가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쌀시장의 개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 국제 통상질서와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정부가 쌀의 18가지 품목 가운데 ‘덜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한 것은 6가지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관세화가 있다. 이는 미국은 물론 모든 나라한테도 개방한다는 뜻이다. 개방의

충격이 그만큼 증폭되며, 정부가 2014년까지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것을 스스로 앞당기는 꼴이 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2007년 2월 15일자 1면 『쌀만은 꼭 지키겠다더니...』, 2면 『쌀 관세화 앞당겨 ‘제 발등 찍기’』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쌀 중에서 덜 민감한 8개 품목은 마지노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그 외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한겨레 : 『반론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4일자 2면)

내 용 : 2월 15일치 1면 ‘쌀만은 꼭 지키겠다더니... 덜 민감한 품목은 개방?’, 2면 ‘쌀 관세화 앞당겨 제 발등찍기’ 기사= ‘쌀 중에 덜 민감한 8개 품목은 마지노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농림부는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외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하남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하남시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남시 (시장 김 황 식)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신문 : 『하남시장 주민소환 제1호?』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1일자 7면)

내 용 : <2007경기조정1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경기조정1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조합이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 ○)

피신청인 : 충청신문

종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충청신문 : 『○○○ 농협 복마전 물의』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1면)

내 용 : ○○○농협이 조합원들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조합설립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이 강한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구 ○○○동소재 ○○○농협(조합장 김○ ○)은 지난해 11월 28일 조합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임의로 변경해 그동안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부지점 토지매입과정과 부실채권정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던 조합원들을 타 지역에 살고 있다는 명목으로 20여 년간 몸담아 온 조합원의 대의원 출마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합의 정관변경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60명 중 출석대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타 지역 제외에 관한 안건이 정관변경에 포함돼 표결결과 출석대의원 54명 중 29:25로 2/3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는 것이다.

조합원 S 씨 등에 따르면 불법정관으로 이들을 대의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6월경부터 대의원선거에 대비, 조합 반대파 대의원들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 그동안 조합운영에 이의를 제기한 대의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갈아치우기 작업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또한 K 씨는 조합간부들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사로 있는 몇 곳은 투명하게 하면

서 일부대의원(반대파)이 있는 지역은 당일 대의원선거를 치룬다고 연락해 즉석뽑기식 선거를 치르고 어느 지역은 아예 연락도 취하지 않고 대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월 26일자 1면 『○○○ 농협 복마전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 농협이 농협운영과 관련하여 불법정관 변경, 조합원의 권리제한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2005년 7월 1일 변경된 농협법에 의거 2008년 말을 기준회계연도로 선정하고 자산이 500억을 넘을 경우 2011년 회계감사를 2012년 1월과 2월 사이에 받도록 되어 있으나 ○○○ 농협은 수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관변경의 경우 총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표결에서 부결되었으면서도 통과를 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시 정관변경안은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표결 처리된 안건은 정관 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결이 아니라 대의원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일부조항을 조정하는 의결로써 일반의결로 표결 가능하므로 정관변경은 합법적이며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의 정관변경 유효성에 대한 민원제기로 농협중앙회 법무지원부에 질의한 결과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의원 선거시 일부지역에서 통지를 하지 않고 즉석 뽑기로 선거를 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대의원 선거 10일 전 각 영농회 마을회관과 관할 지점에 공고문을 게재하였으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의원 선거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 농협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충청신문 2007년 2월 26일자 1면 “○○○ 농협 관련” 보도 중 다음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달라 반론합니다.

「조합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2005년 7월 1일 변경된 농협 법에 의거 2008년 말을 기준회계년도로 선정하고 자산이 500억을 넘을 경우 2011년 외부회계감사를 2012년 1월과 2월 사이에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규정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정관변경의 경우 총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표결에서 부결되었으면서도 통과시켰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당시 정관변경안은 참석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부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 정관변경안 중 세부조항을 조정하기 위한 의결사항이 있어 과반수 이상의 일반 표결방식으로 의결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오해가 있어

농협중앙회 법무지원부에 질의한 결과 정관변경이 유효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대의원 선거시 일부지역에 통지를 하지 않고 즉석 뽑기로 선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대의원 선거 10일전 각 영농회 마을회관과 관할 지점에 공고문을 게재하였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의원선거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선출방식도 농협정관 131조에 의거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반론보도인 ○○○농협 조합장 김 ○○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신문 2007년 3월 14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기사제목크기는 소재제목크기 (지금까지 외부회계감사...)의 고딕체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신문 : 『○○○ 농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대형 교복업체 3사에게 수십억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 학부모모임
(대표 최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교복업체들 “사실상 협박”』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8일자 8면)

내 용 : 교복값 인하운동을 주도해온 ‘○○○ ○○○○ 학부모모임(○○모)’ 으로부터 기부금을 요

구받았던 교복업체들이 “기부금 자진헌납 권고가 아닌, 사실상 협박 수준의 기부금 각출을 ○○모 측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잇따라 주장하고 나서 ○○모의 도덕성 논란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 △△△클럽, □□□ 등 3개 교복업체 관계자들은 26일 “○○모 측은 지난해 1월부터 개별 접촉,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사회환원 명목 등으로 기부금을 내라고 사실상 협박을 해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 교복업체 관계자는 이날 “교복업체들은 지난해 1월 ○○모 간부 K 씨를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기부금 얘기를 들었다”면서 “K 씨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교복업체들을 망하게 할 의도가 없다. 이왕이면(○○모가) 격하게 나가게 만들

지 말고 우리에게 기부금을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K 씨는 시위 및 교육청 항의방문 등과 같은 ○○모 활동을 예로 들면서 '기부금을 내 언론보도 등이 무마되게 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며 "명백한 협박이었다. 칼만 안 들었지 도둑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교복업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교복업체들 "사실상 협박"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2007년 2월 26일 『교복업체들 "사실상 협박"』 제하의 기사에서 ○○모가 교복업

체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고 협박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모가 교복 3사에게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사회환원기금을 ○○모로 보내달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모는 교복 3사에 대하여 수년 동안 소비자들을 상대로 취득해 온 부당이득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약속을 요구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교복 3사 관계자가 주장한 '○○모가 기부금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는 것은 교복 3사 업체관계자들의 주장일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2007서울조정73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이전에 발표한 내용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장관 유 시 민)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국민일보 : 『노인 일자리 '제당 정책'』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9일자 2면)
내 용 : 보건복지부는 요즘 노인·출산 등과 관련된 보도자료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제당 삼탕에 불과해 비난만 듣는 실정이다.

8일 오전 변○○ 차관이 노인 일자리를 복지·교육형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으로 A4용지

23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내고 브리핑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5, 6명도 브리핑에 참여했다.

브리핑 주요 내용은 '2007년, 노인 일자리 11만 개 창출·제공'이었다.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 8만 개에서 11만 개로 늘리고 노(老)-노(老)케어, 문화재 해설 등 복지·교육형 일자리 비율을 작년 25%에서 올해 4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해 10월 1일과 12월 19일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새로운 것 없이, 이전에 발표한 내용만 부풀린 속 빈 강정이었다.

복지부의 보도자료 복제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 지난 5일 정부 전 부처가 동원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발표 이후 더 많아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2월 9일자 『노인 일자리 재탕 정책』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변○○ 보건복지부 차관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비전2030...’의 후속조치임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06년 8월에 발표된 ‘비전2030...’의 후속조치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군 방독면 정화통이 국방규격 기준에 미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6.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2월 6일 21:25)

내 용 : ▷앵커 : 우리 군이 보유한 K-1 방독면 상당수가 엉터리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세균 등 생물학전에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탐사보도팀의 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적의 화학, 생물학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K-1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만 군 장병 대부분은 물론 경찰과 민방위 대원까지 K-1을 사용합니다.

이 방독면의 핵심 장치는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정화통입니다.

KBS 탐사보도팀은 2003년에 출시된 제품을 대상으로 국방규격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군 방독면의 특성상 거칠게 다룬 후 검사하도록 돼 있는 DOP 투과율 즉 입자물질 제거능력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통과 기준은 0.025 이하... 그러나 검사한 정화통

12개 가운데 8개가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연구원 : “DOP 시험기준이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입자상태의 오염물질이나 생물학 작용제와 같은 것을 제거하는 제거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화통의 시험규격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DOP투과율 시험 자체는 정화통 성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 그래서 국방규격은 합격품질수준을 ‘0’으로 정해놓고 샘플 검사에서 단 한 개라도 불량품이 발견되면 해당 생산단위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다른 정화통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한 결과, 역시 기준 미달품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군이 보유한 유효기한 이내의 정화통은 백 60만여 개로 상당수가 생물학 오염물질 제거기능이 규격미달이고, 따라서 생화학 전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생화학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지역 중 하나로 한반도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탄저와 페스트 등 유사시 생물학 무기로 쓸 수 있는 병원체를 열 종류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BS뉴스 한○○입니다.

(2)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2월 6일 21:27)의 3건

내 용 : ▷앵커 : 그렇다면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

이 있는 방독면이 어떻게 보급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25년간의 품질 검사도 엉터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독면 정화통을 검사하는 Q113이라는 충격 시험장비입니다.

회전통 안에는 걸림판이 장착돼 있습니다. 정화통을 넣고 돌리면 걸림판이 정화통을 높이 끌어올린 뒤 떨어뜨려 충격을 줍니다. 전쟁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방 규격은 정화통 검사시 'Q113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를 쓰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 당국이 방독면을 개발한 지난 82년부터 써 온 이 장비는 Q113과는 생김새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높이가 1m 20cm에 이르는 Q113 장비와는 달리, 40센티미터 높이에 불과한데다 재질도 나무입니다.

정화통에 주는 충격 강도가 Q113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99년에서야 국방 규격에 있는 Q113으로 검사장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림판'이 없는 상태로 Q113 장비를 운영해 엉터리 검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K-1 방독면 정화통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2월 6일 「뉴스9」 및 「뉴스라인」,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2003년에 출시된 우리 군의 방독면 정화통을 대상으로 국방규격에 따라 검사한 결과 DOP투과율 검사에서 검사대상 정화통 12개 가운데 8개가 국방규격 기준에 미달하였고, 그 원인은 국방규격에 규정된 장비가 아닌 잘못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지금까지 군 당국이 정화통을 검사해왔던 장비는 국방규격에 규정된 장비이고, 국방부에서 미군규격에 따라 검사하였을 때 검사대상 정화통 12개 모두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현행 미군규격은 우리 규격보다 완화된 수준이며, 이를 적용해 검사를 해왔더

니 이상이 없었다는 자료를 배포하였으나,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미군규격은 지난 95년에 이미 폐기된 규격이고, 현행 미군규격은 우리 규격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미군규격은 95년에 폐기된 사실이 없고, 현행 미군규격은 다른 모델의 정화통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 ○

조정대리인 변호사 우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1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조정대리인 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1주일 이내에 방송하는 KBS-1TV <뉴스라인>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별지>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2. 신청인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3.

<별 지>

- 제 목 : K-1 방독면 정화통 관련 반론

• 내 용 : KBS는 지난 2월 6일, 7일, 12일 <KBS뉴스9>, <뉴스라인>,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우리 군의 방독면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군에 방독면을 제조·납품해 온 업체는 군 당국이 제공한 장비에 의해 방

독면을 검사한 후 납품하여 왔고,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방독면과 유사한 모델에 적용되는 미군규격에 따라 우리 군에 납품한 방독면을 DOP연막

투과율 시험을 한 결과 우리 군의 방독면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며 치명적인 결함도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대형 교복업체 3사에게 수십억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 학부모모임

(대표 최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내 용 : 〈2007서울조정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27일자 13면 『○○모, 돌연 '등록금 인상 저지 운동'』 제하의 기사에서 ○○모가 교복업체들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기 하루 전 돌연 '등록금인상저지범국민연대'라는 모임을 조직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모는 2006년 12월에 등록금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7년 1월에 등록금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을 기안하여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과 접촉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 ○○○○ 학부모모임

대표 최 ○ ○

조정대리인 고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직무대리 김 호 순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 2면 '바로잡습니다' 난에 보도하되,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보도내용

한겨레 : (1) 『○○○, 돌연 '등록금 인상 저지 운동'』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7일자 13면)

내 용 : 중·고생 교복값 인하 운동 과정에서 교복업체들에 거액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 ○○○○ 학부모 모임' (○○모·대표 고○○)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4개 시민단체와 함께 '등록금 인상 저지 범국민연대'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과 진보 성향 단체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는데, 이날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단체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 단체들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참여단체 가운데는 전국 사립 초·중·고·대학 법인들의 모임이자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쪽인 '한국 ○○○○연합회' (회장 조○○)도 끼여 있었다. ○○모는 교복업체들에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기 하루전인 지난 22일, △△△△연합회 등이 소속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후략)

(2) 『교복업체 "○○○ 기금 첫 요구는 작년 1월"』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7일자 13면)

이 결정한다.

2007. 3. 15.

〈별 지〉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2월 27일 13면 '○○○ ○○○○ 학

부모모임'(○○모) 관련 기사 = ○○모 대표는 고
○○ 씨가 아니라 최○○ 씨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0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 단체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돈을 요구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 학부모모임
(대표 최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7.

처리결과 : 기 각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8일자 7면)

내 용 : '○○○ ○○○○ 학부모모임(○○모)'의
교복업체 기부금 강요 파문에 이어 서울시 교육위
원에 대한 현직 간부의 금품 요구 협박 사실이 드
러나면서 ○○모에 대한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의
비난 여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전○○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정책실장은 28일 “시민
단체의 존재 이유는 도덕성인데 돈과 관련된 불미
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며 “개인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의혹
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단체가 때문에 더욱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은 “기부금 요구에
이어 선거운동까지 개입한 건 시민단체로서 존립 의
미가 없다”며 “시민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인식이 부
족해 마치 신중 이권단체 같다”고 비판했다. (후략)

보도내용

문화일보 : (1) 『“다음달 얼마 도와줄 건가”』 제하
의 기사 (2007년 2월 27일자 1면)

내 용 : 최근 교복업체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학부모모
임'(○○모)의 핵심 간부가 현직 서울시 교육위원
을 상대로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과정의 불법 선거
운동 약점을 거론하며 돈을 요구하는 현장이 문화
일보 취재팀에 포착됐다.

26일 낮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 ○○모 조직위원장 겸 서울지역 공동대표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위원선거의 불법행
위 공소시효를 들먹이며 이○○ 서울시 교육위원
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처음에 김 씨의 요구를 거절하던 이 교육위원은
거듭된 협박에 결국 돈을 지급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후략)

(2) 『“돈요구에 선거개입까지… 책임자 규명”』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모 선거개입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2월 27일자 제1면
『“다음 달 얼마 도와줄 건가”』 및 2월 28일자 7면
『“돈 요구에 선거개입까지… 책임자 규명”』 제하의 기
사에서 ○○모 서울공동대표인 김○○이 이○○ 서울
시 교육위원회에 금품을 요구하였고 ○○모가 교육위
원선거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모가 교육위원선거에 영
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모
서울대표 김○○이 교육위원 이○○에게 금품을 요

구한 것은 ○○모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 ○○○○ 학부모모임

대표 최 ○ ○

조정대리인 고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68

대표이사 이 병 규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1면 우측 중단부에 <별지>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여 게재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7년 2월 27일자 문화일보 제1면 및 제8면, 2007년 2월 28일자 제7면에서 마치 ○○모가 위 교육위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의 위 지면에서 '서울시 교육위원 이○○의 선거참모였던 김○○이 교육위원 선거 당시 이○○의 선거법 위반사실을 발미로 이○○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함에 있어 일부 제목을 「시민단체-교육위원 '검은 거래' 충격」, 「○○모도李위원선거에 상당한 도움」, 「돈요구에 선거개입까지」라고 게재함으로써 마치 김○○ 개인이 아닌 신청인 단체가 불법 부정한 거래의 당사자인 것처럼 읽혀질 여지가 있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위 김○○이 이○○의 선거 참모 역할을 할 당시 그는 신청인 단체 내에서 서울지역 공동대표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 그리고 신청인 단체가 교육위원 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부모들로서 이루어진 전국 규모의 단체이지만 교육위원의 선거인단 역시 학부모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 단체의 교육위원 선거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하고 시민단체의 도덕적 순수성을 강조하고 지적하는 적절한 기사였다고 보여지며, 달리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14.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시술한 비뇨기와 수술이 부작용을 일으켜 환자가 성불구자가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투데이코리아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투데이코리아 : 『음경 키우려다 평생 성불구자 날벼락』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5일자

사회일반면)

내 용 : (전략) 최근 40대 공무원 최모 씨(가명)는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콤플렉스였던 자신의 ‘작은 남성’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강남의 ○○○ 비뇨기과(원장 김○○)를 찾았다.

최 씨는 담당의와의 상담 끝에 음경과 귀두확대 수술을 결정, 복부에서 지방을 빼어내 성기와 귀두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담당의는 최 씨에게 “수술 후 일주일 뒤면 봉대를 풀고 한달 후에는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말했고, “자기지방을 이식하는 것이라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의는 “부작용도 거의 없고 병원도 1~2회 정도만 방문하면 된다”고 최 씨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수술 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상처를 땀만 자리에서 지방이 약간씩 새나오기 시작하면서 귀두부분도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 또한 최 씨는 극심한 통증에 1~2번만 방문하면 된다던 병원도 여러번 방문해야 했다. (중략)

최 씨는 수술 후 두 달 동안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출근도 못하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모두 엉망이 된 상태이다.

최 씨는 담당의사에게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고 따졌고 병원 측에서는 “곧 좋아 질 것”이란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재수술 후에도 최 씨의 부작용은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유명한 대학병원을 둘러보았지만 어느 병원도 최 씨의 부작용에 대해 속 시원히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병원에서 어렵게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던 최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새로 찾아간 병원에서는 최 씨의 부작용에 대해 “이정도 상태라면 복원이나 이식수술은 어렵다”며 더 이상의 정상적인 성기능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비뇨기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5일자 사회일반면에 『음경 키우려다 평생 성불구자 날벼락』 제하의 기사에서 ○○○비뇨기과 김○○ 원장이 40대 공무원 최 모씨에게 시술한 성기확대수술이 병원 측의 부주의와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 원장은 최모 씨의 수술에 있어 최선을 다했으며 수술결과에 불만족해 한 최모 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투데이코리아’ (www.todaykorea.co.kr)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음경 키우려다 평생 성불구자 날벼락)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할 경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 삭제〉



국방부가 기획하고 도입하기로 한 유급지원병제도를 청와대가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김 장 수)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10년 복무 북한군, 1년만 복무 한국군』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4일자 35면)

내 용 : (전략) 국방부는 ‘무기체계 중심의 선진 국형 미래군 체제’로 가려면 병력을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자면 연간 6만 5000명씩 병역자원이 남아돌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국방부가 지난 9일 해안·항만·공항 경계를 2012년부터 경찰에 넘긴다는 국방개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람 남아돈다는 국방부가 해안 경계는 왜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나. 해안 경계에는 7000명의 경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4만 7000명의 전·의경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해놓고 있다. 이 정부는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다.

작년 말 군 통수권자 입에서 “군에서 썩지 말고…”라는 말이 나왔다. 그 후 청와대가 유급지원병제 아이디어를 냈고 각 부처가 학제개편 등등의 들러리 정책을 쏟아냈다. 대학생은 일할 직장이 없어서 억지로 휴학해 가며 대학을 5년 넘게씩 다니는데 정부는 1년 빨리 사회에 내보내겠다며 학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가 포퓰리즘의 마당이 되면서 벌어지는 정신 나간 일들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4일자 35면 『10년 복무 북한군, 1년만 복무 한국군』 제하의 사설에서 작년 말 군통수권자 발언 이후 청와대가 유급지원병제 아

이디어를 냈다고 보도하였으나, 유급지원병제 도입 방안은 '03년부터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 의해 제시되었고, '06년 9월부터 운영된 '병역자원연구기획단'에서 이미 구체화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2월 14일자 사설에서 “작년 12월 21일 군 통수권자 입에서 ‘군에서 썩지 말고…’라는 말이 나온 뒤 청와대가 유급지원병제 아이디어를 냈고 각 부처가 학제개편 등등의 들러리 정책을 쏟아냈다”는 부분에 대해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제 도입 방안은 2006년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 선후 관계를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7년 3월 19일자부터 23일자 사이의 2면에, 제목활자크기는 조선일보 2면의 “바로잡습니다”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시민단체 대표 직위를 이용하여 모 교육위원회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8.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1) 『“다음달 얼마 도와줄 건가”』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7일자 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83의 보도내용 참조〉

(2) 『“돈요구에 선거개입까지… 책임자 규명”』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8일자 7면) 외 1건
내 용 : <2007서울조정83의 보도내용 참조>

20,000,000원

합의사항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27일자 1면 『“다음달 얼마 도 와줄 건가”』, 2월 28일자 7면 『“돈요구에 선거개입 까지… 책임자 규명”』 제하의 기사에서 ○○○ ○○○ 학부모모임(○○모) 서울공동대표 김○○ 씨 와 이○○ 서울시 교육위원간의 시내 모 음식점에 서 나눈 사적인 대화내용을 실명 그대로 여과없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보 호를 침해한 것으로 기자정신의 윤리강령을 위배 하였으므로 보도당사자의 동의없이 실명 그대로 기자수첩에 받아적은 대화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함 으로써 보도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사실확인결과, 김○○ 씨는 시민단체의 지위를 이 용하여 이○○ 교육위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 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지난해 치러진 교육위원 선거에서 개인자격으로 도움을 주었고 당선후 다소의 생활비 보조를 호소하였을 뿐인 것 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3월 31일까지 사회부 사건팀 장 및 기사 작성 기자 중 1명이 신청인을 개인적 으로 만나 구두로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하도록 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2월 27일 및 28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김○○ 선생님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문화일보에서는 열 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회발전과 투명성 제고 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 여 공익성을 강조하여 실명을 공개한 점에 대해 서는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모든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사 과>

□

가출 청소년과 부모가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봉하는 장면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8

청 구 명 : 손해배상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8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보도내용

KBS-2TV :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 (2007년 1월 19일 20:55)

내 용 : ▷앵커 : 감기에 걸려버린 ○○와 별

씨 여러 번 가출했다는 △△이, □□(가명·16)는 친구들이 좋아 집을 나온 케이스다. 그때 센터의 전화를 받고 □□의 어머니가 달려오셨다. 딸을 보 자마자 딸을 때리려는 엄마

▷□□ 어머니 :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만… 니가 ○○ 친구니? 이름이 뭐야? 넌 어디 학교 다녀? 너네 다시 한 번 말해봐. 같은 중학생이니?

▷센터 직원 : 어머니 흥분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나 물어볼 말이 있어서.

▷센터 직원 : 물어볼 말도 조금 있다가. 앉아서 진정 좀 하시고요.

▷앵커 : □□뿐 아니라 어머니 역시 상담이 필

요한 상황.

▷가출한 아이 :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앵커 : 예상치 못한 엄마의 등장에 □□는 더욱 불안해 하는데.

▷□□ 어머니 : 아니 도대체 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를 두드려 패서도 안되고 내가 재를 첫 낚은 두드려 땀어. 땀는데 안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나가더라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는 지난 1월 19일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에서 가출청소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며 본인의 동의없이 가출 청소년과 부모가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봉하는 장면을 무단 촬영·방송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중재합의

양 당사자 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 <2007서울중재2 참조> □

신청인 조합의 일부 임원과 대의원이 유명회사를 차려 수백억 원대의 관급 조경석 납품을 독점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8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8.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2월 16일 21:30)

내 용 : ▷앵커 : ○○○○조합의 일부 임원과 대의원이 유명회사를 차려놓고 수백억 원대의 관급조경석 납품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해 온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장추적 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충북 음성의 산자락, ○○○○조합 회원이 운영하는 조경석 업체가 있다는 곳입니다.

하지만 물 웅덩이에 잡초만 무성할 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자 : 조경석 만드는 것 본 적 없어요?

▷주민 : 본 적 없습니다. 산 속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임야인데...

▷기자 : 충주에 있다는 또 다른 회원업체 주소

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곳 역시 ○○조합에 등록된 업체지만 이처럼 위장을 위해 쓸모없는 폐기계만 갖다 놓은 채 공장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남의 공장 한 귀퉁이를 빌려 사업자 등록만 해 놓은 것입니다.

▷땅주인 : (여기 땅 빌려주신 거예요? 돈 받으시고요?) “그렇죠, (기계도)제가 돈 받고 만들어줬죠.”

▷기자 : 하지만 공장도 없는 두 업체는 최근 2년 동안에만 조달청에서 각각 9억 6천만 원과 14억 원의 관급 조경석을 납품했습니다.

이번엔 단양에 함께 있다는 또 다른 회원업체 두 곳. 오래 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업자 : 한 3년 전부터는 아예 안 하고 세워 놓은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기자 : 이 곳 역시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서 지난 2년 동안 조경석 39억 원 어치를 납품했습니다.

▷업체대표 : 원석 공급 받아 가지고 장비만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기자 : 확인결과 원석을 공급한다는 업체는 ‘채석허가권’이 없는 상태,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납품 역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업체대표 : 채석허가 없죠. ○○만 있지. 그럼 ○○조합에서 가입을 시키지 말아야죠.

▷기자 : 실체가 없으면서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거액의 납품까지 하는 이런 업체는 확인된 것만
13개, 일부 조합 회원들이 납품을 더 많이 하기 위
해 유령업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들 유령업체가 조달청에 납품한 조경석은 최
근 2년 동안에만 220억 원어치, ○○조합이 조달청
과 맺은 조경석 전체 수의계약의 절반이 넘습니다.

유령업체의 숨겨진 대표는 조합전무와 친분이
있는 대의원이거나 대의원 가족들입니다.

극히 일부 조합대의원들이 납품 물량을 싹쓸이
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조합전무는 갑자기 사표를 냈
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달청은 물론 조합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중소기업청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월 16일자 「뉴스9」 프로그램에
서 한국○○공업협동조합의 일부 임원과 대의원이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수백억 원대의 관급 조경석
납품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해 온 사실이 있다고 보
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충북음성의 업체는 2006년
5월까지 같은 번지에 소재한 업체에게서 원석을
공급받아 가공, 납품하는 등 가동하였으나 2006년
5월, ○○○○ 주식회사에 인수되면서 총주시 ○○
면 ○○리로 생산지를 이전하였으며

단양의 두 조합원 업체는 최근까지 가동하고 있
었으나 취재기자가 방문한 당일은 인사사고로 인
하여 석재채취금지명령에 의하여 휴업 중이었으며

실체가 없이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납품하는 업체
가 13개나 된다는 사실은 제보자인 김○○가 종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였으
나 그 중 4개 업체는 조경석 생산업체가 아니고 1
개사는 조달물량 배정실적이 전혀 없고, 나머지 8
개사는 정상적으로 조경석을 생산하는 업체임이
밝혀져 무혐의로 결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보도중에 피신청인 조합원의 반론이 게재되었으
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단체가 교복 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소속 간부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9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 학부모모임
(대표 최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5일자 6면)

내 용 : <2007서울조정73 및 2007서울조정80의 보
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73 및 2007서울조정8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이전 보도에 충분히 반
영되었으므로 어떠한 청구도 수용할 수 없다. □

보도내용

문화일보 : 『‘기업에 손 벌리고 정치 기웃’ 신뢰추락』

신청인 회사가 작성한 디지털카메라 시장점유율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9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비스코리아(주)
(대표이사 A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디카 ‘삼성테크 Win’』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1일자 산업면)

내 용 : 삼성테크윈이 지난해 디지털카메라 부문에서 창사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리며 ‘국내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소니와 캐논은 점유율에서 2005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삼성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했다. 반면 중·하위권 업체들의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 것.

시장조사기업 ○○○○○○에 따르면 삼성테크윈은 지난해 국내 디카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오프라인 기준)을 기록, 2위 소니(19%)를 11%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한 해 전인 2005년만 해도 삼성(19%)과 소니(18%)의 격차는 1%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해 초부터 월간 점유율에서 30%를 오르내린 삼성은 8월에 발매한 ‘블루 NV10’ 등 신제품 호조에 힘입어 점유율을 32%까지 끌어올렸다.

삼성테크윈이 30% 이상의 점유율로 2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업체별 디지털 카메라 시장 점유율

(단위:%)

업 체	2006년	2005년
삼성테크윈	30	19
소 니	19	18
캐 논	16	16
니 콘	9	14
올 림 푸 스	9	11
후 지 필 름	8	8
코 닥	2	2
파 나 소 닉	2	2
기 타	5	10

*오프라인 판매 기준.

자료○○○코리아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디카 삼성테크Win…국내시장점유율 30%로 꺾춤”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21일자 산업면 『디카 ‘삼성 테크Win’』 제하의 기사에서 ○○○○○○서비스코리아의 집계를 인용, 삼성테크윈의 디지털카메라 시장 점유율을 보도하였으나 ○○○○○○서비스코리아는 본지에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기사의 표 상에 오프라인 기준이라 명시한 부분은 ○○○가 2005년에는 오프라인 5개 지역만을, 2007년에는 7개 지역을 조사하여 조사기준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운영중인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홍보에 동원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9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이비뉴스 (대표이사 민 병 호)
피신청인 : CNB NEWS

종 재 부 : 서울제5종재부
접 수 일 : 2007. 3. 9.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CNB NEWS : 『김문수 ‘제2노무현 꿈 돌입’...도 혈세 쏟아붓기』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9일자 정치면)

내 용 : (전략) 경기도청의 ‘김문수 도지사 띄우기’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주간지 기사를 이용해 온라인매체에 집중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경기도 소속 직원을 온라인매체의 기자로 등록, 김문수 도지사 동정을 비롯해 경기도 현안문제 등을 마치 온라인 기사가 작성한 것처럼 위장 홍보하고 있다.

경기도청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매체로는 ‘데일리안’, ‘미디어 오늘’ 등으로 이들 매체에는 월간 계약을 통해 막대한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새로 경기도 공보관으로 부임한 ㄱ씨는 끼뉴스는 용역을 주고 있다며 경기도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용역까지 주는 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김문수 도지사가 차차기 대권을 위해 ‘비선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

까지 나돌고 있다.

‘끼뉴스’라는 도청 소식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들 기사를 주로 M 씨가 대표인 ‘데일리안’ 기자로 등록,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데일리안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9일자 메인화면 『김문수 ‘제2노무현 꿈’ 돌입...도 혈세 쏟아붓기』 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이 김문수 도지사의 홍보에 동원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기사의 제목을 포함해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고임금으로 한국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9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 영 배)
피신청인 : 한국일보
종 재 부 : 서울제6종재부
접 수 일 : 2007. 3.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일보 : (1) 『경제단체들, 통계 조작 물의』 제하

의 기사 (2007년 3월 5일자 2면)

내 용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고임금으로 한국 기업이 위기 상황’이라는 자신들의 논리를 선전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의 고임금을 문제 삼으면서도 스스로는 2007년 인건비 예산을 10% 가까이 증액하는 등 이중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는 4일 최근 경총이 대졸 초임기준으로 ○○차 임금이 일본 도요타자동차를 추월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 도쿄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경총은 100엔 당 79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차 대졸 초봉은 3,100만 원으로 도요타(2,432만 원)보다 600만원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도요타가 3,160만 원으로 ○○차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차에 따르면 경총은 ○○차 임금을 계산할 때는 성과급 500%를 포함한 반면, 도요타 임금에서는 성과급을 제외했다. 도요타 대졸초임은 기본급이 300만 엔이지만 지난해 100만 엔의 성과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400만 엔(100엔당 790원 기준으로 3,160만 원)으로 ○○차보다 많다는 게 ○○차의 입장이다. ○○차 관계자는 “노조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사실이지만 경총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바람에 오히려 노사협상에서 사 측의 입지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후략)

(2) 『경제단체의 통계 왜곡 한심하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6일자 31면)

내 용 : 재계가 노동계와 정부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입맛대로 가공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익집단이 소속원들의 주장을 대변하며 우호세력 확대를 꾀하는 것은 탓할 수 없으나, 조작에 가까운 숫자놀음까지 일삼는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할 일이다. 특히 재계의 대표단체가 엄밀성과 객관성을 잃은 자료를 앞세워 불신과 갈등을 자초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얼마 전 “한국의 평균 대졸초임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나 많은 일본의 95%에 달하고, 대기업의 경우 오히

려 10배 이상 많다”는 보고서를 냈다. 당시에도 자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엇그제 ○○차의 노조도 아닌 회사 측이 이를 부인해 경총에 망신살 뻗었다. “경총이 ○○차 임금을 계산할 때는 성과급을 포함하고 도요타 임금에선 이를 제외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노사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총이 재반박했으나 피차 풀만 우습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7년 3월 5일 2면 『경제단체들, 통계조작 물의』, 3월 6일 31면 『경제단체의 통계 왜곡 한심하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임금으로 한국기업이 위기상황이라는 논리를 선전하기 위해 통계 조작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보고서 통계는 조작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와 부합한 내용이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지 보도와는 달리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에서 도요타의 대졸초임에는 성과급(변동상여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대졸초임에는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한국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는 근거로 임금인상률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을 보도한 부분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경제생산성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했을 뿐 임금인상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비교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양산시가 추진중인 토요상설무대의 준비소홀을 지적하면서 신청인과의 통화내용을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1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양산시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양산시민신문 : 『빛좋은 개살구, 토요상설무대』 제
하의 기사 (2007년 3월 6일자 5면)

내 용 : 시가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시작하는 문화예술회관 토요 야외무대가
조명·음향시설과 홍보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신청부터 받아 신청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4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공연으로 예술
단체들과 시민들의 호흡을 맞추고자 시작한 토요
상설무대. 하지만 연중 공연계획취지가 무색하게
신청단체는 겨우 13개뿐이다. 그마저도 풍물·전통
공연단체가 8개여서 다양한 공연문화를 제공한다
는 시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또한 공연신청단체들은 상설무대의 조명·음향 시
설 상태나 무대규모에 대해서 모르고 신청하는 경
우가 다반사여서 시가 계획만 세우고 홍보를 제대

로 안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지난달 28일 공연을 신청한 ○○&○○○○ 댄
스팀 임○○ 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듣고 홈페이지
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직접 무대를 본 적은
없다”며 “시에서 조명·음향 시설을 무료로 빌려
준다는 소식 밖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양산시민신문은 지난 3월 6일자 5면 보도에서
양산시가 추진하는 토요상설무대 준비소홀을 지
적하면서 설문조사한다며 음향, 조명 등의 시설
에 대해 전화인터뷰한 내용을 기사화하여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
니다. □

양산시가 추진중인 토요상설무대의 준비소홀을 지적하면서 신청인과의 통화내용을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1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양산뉴스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2

처리결과 : 취 하

기사 (2007년 3월 6일자 메인면)

내 용 : 〈2007경남조정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양산뉴스는 지난 3월 6일자 보도에서 양산시가 추
진하는 토요상설무대 준비소홀을 지적하면서 설문
조사한다며 음향, 조명 등의 시설에 대해 전화인터
뷰한 내용을 기사화하여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보도내용

양산뉴스 : 『빛좋은 개살구, 토요상설무대』 제하의

신청인들이 게임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도 세금은 한 톨도 내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9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아이템○○ (대표이사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전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전자신문 : 『불법 게임아이템 거래 뿌리 뽑아야』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2일자 30면)

내 용 : (전략) 그동안 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와 '작업장'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아이템 현금거래 규모가 8000억 원을 웃돌 정도로 커졌으며 이 가운데 6600억 원 정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개거래사이트를 통해 이뤄졌다. 이들 중개거래사이트와 작업장은 그동안 법의 허점을 악용해 기승을 부렸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확인한 중개거래사이트만 130여 개에 이른다. 전체 거래사이트 중 상위 3개 중개사이트에서 실제 현금거래의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래 건수의 80% 가량이 작업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실태조사 결과는 아이템 거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작업장은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이템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가동해 게임아이템을 생산 유통해왔다. 물론 해킹 행위도 공공연히 이뤄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작업장의 90% 이상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중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아이템들은 중개사이트를 통해 현금화된 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다시 유출되어 국부 유출의 원인이 됐다. 게다가 중개거래사이트들은 아이템 거래 중개행위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7년 2월 12일자 30면 『불법 아이템 거래 뿌리 뽑아야』 제하의 기사에서 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들은 아이템중개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및 여러 아이템 거래업체들은 본인들의 수익 및 사업에 대한 각종 세금을 관할세무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0원



아들과 동반자살한 신청인의 아내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9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생방송 오늘의 아침」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3일 09:00)

내 용 : ▷앵커 :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시간 하지만 주부 A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왜 아파트 옥상으로...

▷이웃주민 : 우울증이 있다는데,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이고, 자기마음이 우울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서.

▷앵커 : 아들과 쌍둥이 딸을 둔, 주변사람들 말에 의하면, 욕심 많고 활발한 A 씨가 변한 것은 생각지 못했던 쌍둥이 딸을 출산한 뒤부터라 합니다. A 씨가 다녔다는 교회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교회관계자 : 아무소리 안하고 잠이 안 온다고 하고 아이들을 예뻐하지도 않고 자기 몸이 그래서 그런지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지... 가정에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하고 내가 보기에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앵커 :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말하지 못한 A 씨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관리소 직원 : 사람들도 많고 웅성거려서 나와 보니까 이쪽에 아들하고 엄마하고 투신한 상태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앵커 : 이번 사건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A 씨의 어머니.

▷A 씨 어머니 : 속상에서 죽겠고만 따라 갔으면 싫어 미처 미처.

▷A 씨 남편 : 낮에 출근하면 혼자 있잖아요.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한테 해 주고 싶은 것도 많았고 했는데 몸이 뜻대로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해 하고 오래 쉬고 싶다 그랬어요 (후략)

MBC-TV는 지난 2006년 12월 13일자 「생방송 오늘의 아침」 프로그램에서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한 아내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아내의 죽음이 산후우울증이라고 단정보도하고 또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방송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백만 원을 2007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신청인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가 실린 영상매체물을 피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반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 지급〉

□

공장개발부지 토목공사 과정에서 타인명의의 임야를 훼손하고도 보상없이 매각한 건축주가 화성시장의 사촌동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영 근

피신청인 : 경인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경인매일 : 『산지전용 후 매각과정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2일자 14면)

내 용 : 화성시장의 사촌동생이 〇〇면 공장개발부지에 타인의 임야를 마구 훼손한 뒤 보상도 없이 매각하는가 하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

사업자 및 인근 임야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건축주가 최영근 화성시장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지면서 시가 규제완화 및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1일 화성시와 〇〇면 주민들에 따르면 A건설사는 화성시 〇〇면 소재 산 〇〇〇. 〇번지 1만 6천㎡에 공장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3월 환경성 검토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토목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 C모 씨는 개발부지의 법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상 경계 부지를 넘어 타인 명의의 임야를 임의로 훼손했다.

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업부지가 공사업자로부터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도 건축주 C모 씨는 제3자에게 문제의 부지를 매매하고, 그 후 공장설립 변경이 이뤄지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12일자 14면 『산지전용 후 매각과정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공장개발부지의 개발행위자가 신청인의 사촌동생이고, 화성시가 규제완화 및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본지가 보도한 개발행위자는 신청인과는 사촌관계에 있지 않으며 특혜 의혹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경인매일 : 『고침』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4일자 1면)

내 용 : 본보 3월 12일자 14면에 게재되었던(산지전용 후 매각과정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중 건축주인 C모 씨가 최영근 화성시장의 사촌동생이기
에 인허가 특혜의혹이 있다는 본문은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건축주인 ○모 씨는 최영근 화성시장과는 전혀 인척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최 시장의 명예를 실추케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사과를 하며 정정보도합니다. □

공장개발부지 토목공사 과정에서 타인명의의 임야를 훼손하고도 보상없이 매각한 건축주가 화성시장의 사촌동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영 근

피신청인 : 수도권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경기조정1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보도내용

수도일보 : 『최영근 화성시장 친인척 부동산 횡포 ‘구설수’ 올라』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2일자 1면)

내 용 : 〈2007경기조정14의 보도내용 참조〉

피신청인 주장

이 건 관련 고소 사건을 취하한다면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의 뭉치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9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동 채

피신청인 : 문화일보

종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집 수 일 : 2007. 3. 1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정동채 의원 수억 수수』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4일자 1면)

내 용 :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문화 관광부장관을 지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에게 한 사업가로부터 수억원의 뭇돈이 건너간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던 시절에 이 돈이 건너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건넨 사업가 A 씨가 2년 전 숨진 것으로 드러나 자금 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청은 조만간 정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정의원의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검찰의 사

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4일자 1면 『정동채 의원 수억 수수포착』 제하의 기사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정동채 의원에게 수억 원의 뭇돈이 건너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정동채 의원은 수억 원의 뭇돈을 건넸다는 사업가 A 씨를 전혀 알지도 못하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의 뭇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9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동 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종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집 수 일 : 2007. 3. 1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정동채씨 주변계좌에 수억 원 유입』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3일자 8면)

내 용 : <2007서울조정9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96의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2007서울조정96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양녕대군의 유덕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의 토지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9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e조은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e조은뉴스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
하의 기사 (2006년 11월 12일자 1면)

내 용 : 본사는 2006년 10월 30일 인터넷 e조은
뉴스 포토뉴스란 및 2006년 11월 8일자 조은뉴스
제 269호 1면 내지 3면에 <양녕대군 지하에서 통곡
한다!>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사의 토지 처분
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보도하고, 2006. 11. 5. 인터
넷 e조은뉴스 포토뉴스란을 통하여 <비리의혹투
성이 '○○사' ... '무혐의' 왜?>라는 제목으로 추가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재단법인 ○○사는 재적 이사·
감사 만장일치로 변모 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던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한 고소사건에
서도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세
무사와 공모하여 법인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종결되었음이 밝혀졌고, 또한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일부 이사들에 대해서도 정관 및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서울시와의 검은 거래
의혹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으며, 수습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모두 승소하고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본사는 재단법인 ○○사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확인
결과 검찰의 면밀한 조사결과 모두 무혐의처분으
로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e조은뉴스는 지난 2006년 11월 12일자 1면 『재단
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에서 양
녕대군의 유덕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사의 토지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
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
러나 사실확인결과, 재단법인 ○○사의 기본재산 매
매행위는 탈법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청구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 □

하남시가 직원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부당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남시 (시장 김 황 식)

피신청인 : 경인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인매일 : 『하남시, 업무추진비 편법 집행』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8일자 1면)

내 용 : 하남시(시장 김황식)가 업무추진비성 경비(판공비) 약 9천 800만 원을 기타보상금 비목에 부적절하게 편성·집행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기타보상금’ 비목은 법률이나 조례로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때만 편성·집행할 수 있는데도 시가 이를 수년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위법·부당 편성은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진 업무추진비를 늘려 쓰기 위한 수법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대부분 선심성 경비로 집행되고 있어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5종이며 이들 모두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진 법정경비이다.

하남시의 경우 2006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1억 9천 32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천 897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

진비 3억 3천 7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억1천여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6천 780만 원 등 총 7억 3천 760여만 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시는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비목의 별도의 선심성·업무추진비성 경비를 대거 편성해 부당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 제 목 : “하남시, 업무추진비 편법 집행”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28일자 1면 『하남시, 업무추진비 편법 집행』 제하의 기사에서 하남시가 업무추진비성 경비(판공비) 약 9천 800만 원을 기타보상금 비목에 부적절하게 편성·집행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하남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하남시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하남시가 직원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부당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남시 (시장 김 황 식)

피신청인 : 경인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인매일 : 『하남시, 혈세로 ‘시상금 잔치’』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일자 1면)

내 용 : <2007경기조정1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경기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2007경기조정16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뇌졸중으로 사망한 신청인의 형이 평소 혈압이 높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KNN-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5.
처리결과 : 각 합의

찰은 강 씨의 사인을 뇌졸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보도내용

KNN-TV : 「KNN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2006년 12월 18일 07:57)

내 용 : 술을 마신 뒤 목욕을 하던 40대 남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어제 낮 10시쯤 부산 연산동 한 목욕탕에서 49살 강모 씨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평소 혈압이 높았던데다가 술을 마신 뒤 무리하게 목욕을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 내용 : 지난 2006년 12월 18일 「뉴스와이드」 “음주 뒤 목욕하던 40대 사망” 보도 관련 속보입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경 연산동 모 찜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모 씨는 사인에 의문을 품은 유족들이 사인 규명을 요구한 결과 평소 혈압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보강수사결과 강 씨의 사인은 뇌졸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NN 라디오 2007년 3월 22일 18:00 뉴스프로그램에 방송하되, 보도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지난 2006년 12월 18일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음주 뒤 목욕하던 40대 사망”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12월 17일 오전 10시경 연산동 모 찜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모 씨는 평소 혈압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경

합의사항 이행결과

K N N-R : 「KNN 6시 뉴스」 프로그램 (2007년 3월 22일 18: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정치권으로부터 여러 차례 퇴짜를 맞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99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파이낸셜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 『산단공 이사장의 처신』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5일자 13면)

내 용 : 한국산업단지공단 김○○ 이사장이 취임 이후 보인 행보에 대해 구설이 자자하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부산시장 후보와 산업자원부장관 인사에서 잇따른 낙마를 한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전력 사장 공모에도 지원했다가 얼마 전에 슬쩍 자진사퇴하는 등 연거푸 세 번이나 ‘퇴짜’를 맞았던 것. 일개 개인으로 자기 능력에 따라 더 좋은 관직이나 기업체 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탈이 될까마는 김 이사장이 보인 일련의 시도들이 산단공 최고 리더로서의 올바른 처신이었느냐는 점에선 세인의 눈총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즉 몸은 산단공에 있지만 마음은 ‘물 좋은 콩밭’에 가 있다는 후문이다. (중략)

김 이사장은 현장 방문에 인색하다는 평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중소기업청장 등 중기관 관련 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벤처기업협회 입주식 때도 개인 일정을 핑계로 불참했다. 반면에 유력 대권주자가 시화공단을 방문했을 때는 다른 약속 있어도 열일 제쳐놓고 달려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산단공 이사장의 처신’ 제하 칼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5일자 13면 『산단공 이사장의 처신』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김○○ 이사장이 벤처기업협회 입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개인 일정 때문이 아니라 통일부장관 주재 개성공단 유관기관장 간담회에 따른 공색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것이며, 유력 대권주자의 시화공단 방문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의 감사를 받고 있

는 산단공 최고 책임자로서 소속 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산자부 보고 후 예외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산단공 이사장의 처신’ 제하 칼럼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5일자 13면 『산단공 이사장의 처신』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부산시장 입후보, 산업자원부 장관 인사, 한전사장 공모와 관련하여 ‘퇴짜’ 받고, ‘낙마’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벤처기업협회 입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개인 일정이 아니라 통일부장관 주재 개성공단 유관기관장 간담회에 따른 공식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것이며, 유력 대권주자의 시화공단 방문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산단공 최고 책임자로서 소속 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산자부 보고 후 예외적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파이낸셜뉴스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2일자 16면)

내 용 : 본지가 지난 3월 5일 13면에 게재했던 ‘산단공 이사장의 처신’ 제하의 기사와 관련, 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열린 우리당 부산시장 입후보, 산업자원부 장관 인사, 한전사장 공모와 관련, ‘퇴짜’를 맞은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으며 또 벤처기업협회 입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개인 일정이 아닌 통일부 장관 주재 개성공단 유관기관장 간담회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고 유력 대권주자의 시화공단 방문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예외적으로 참석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

양녕대군의 유덕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의 토지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e조은뉴스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6.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e조은뉴스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2일자 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9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9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은뉴스(e-조은뉴스)
울산 북구 달천동 108-2
대표 강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KBS-TV, MBC-TV, SBS-TV에 각각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e-조은뉴스 2007년 1월 17일자 A24면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에서 재단법인 ○○사 이모 이사장의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은 위 보도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를 입은 자’란 그 보도내용에서 언급되거나 개별적인 연관성 즉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본 건 조정대상기사에서 직접 거명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와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을 피해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e-조은뉴스가 아닌 3개 TV 방송을 통해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15조 제6항에는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위 법 취지에 위배되므로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또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 건 조정대상기사인 2007년 1월 17일자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를 비롯한 일련의 보도들이 금전거래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의

정정'이라는 청구 취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피신청인 및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위법한 내용이라 사료되므로 이 역시 위 법 제 1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언

론 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2.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및 손해배상액 참조〉 □

신청인이 만취자를 지구대 사무실에 무단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2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북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9.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경북일보 : (1) 『뇌출혈 여성 주취자로 오인...현 의 식불명』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6일자 5면)

내 용 :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가 동거남의 폭행으로 뇌출혈을 일으킨 30대 여성을 지구대 사무실에서 9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논란이 됐던 포항북부경찰서 △△지구대 60대 노인 사망사건에 이어 또 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 지구대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60대 노인 사망사건 당시 △△지구대장이었던 김모 경감이 최근 이 곳으로 자리를 옮겨 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내부인 사관리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후략)

(2)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6일자 5면)

내 용 : SBS 간판 개그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 이 포항 경찰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꼬며 비난공세를 퍼부어 화제(?)다.

웃찾사 시사풍자 코너인 '형님뉴스' 팀의 조폭 앵커 강성범은 지난 4일 방송분 말미에 "포항 모 지구대에서 폭행 당한 여성을 9시간 동안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이 지구대장은 2개월 전 근무지에서도 60대 노인을 방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7년 2월 16일자 『뇌출혈 여성 주취자로 오인... 현 의식불명』, 3월 6일자 5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제하의 기사에서 당시 두 곳의 지구대장이었던 김○○ 경감이 주취자를 무단방치하여 사망과 혼수상태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구대장은 ○○지구대 근무 당시 60대 노인 사망사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한 정당한 보호조치중에 사망자의 평소 지병인 심장병과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지구대 근무 당시에 발생한 30대 여성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남편과 말다툼하면서

구타당한 것으로 지구대 경찰관의 고의, 과실이 없는 직무집행 중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7. 2. 16 “뇌출혈 여성 주취자로 오인...현의식불명”이라는 제목 및 “포항남부서 ○○지구대 9시간 방치 직원 소양교육 절실”이라는 부제목을 붙여 보도하고, 같은 해 3. 6일자 “웃어야 할지...울어야 할지...”라는 제목 및 “포항모 지구대 부적절 처신 코미디 프로 웃찾사서 풍자”란 부제로 당시 두 곳의 지구대장이었던 김모 경감이 주취자를 방치하여 각기 사망과 혼수상태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 지구대장은 60대 노인사망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한 정당한 보호조치중에

사망자의 평소 지병인 심장병과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30대 여성 사망사건의 경우, 사건 당일 경찰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자신이 직접 보호조치중에 있던 주취자의 동태를 확인한 후 즉시 119를 불러 병원에 후송토록 하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북일보 사회면에 2단 상자기사로 2007년 3월 30일까지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16포인트 고딕활자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12포인트 명조활자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고소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결정문을 교부한 뒤 7일 이내에 위 합의조항의 게재형식으로 결정문의 취지를 추후보도 한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손배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북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30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결혼정보회사의 단체미팅행사에 참가해 산을 오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1.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2면)

내 용 : 25일 오전, 금강산에서 첫 만남을 가진 미혼 남녀 직장인들이 구룡연 등산길을 따라 오르고 있다. 현대아산과 결혼정보회사 (주)○○는 금강산에서 단체미팅을 하는 ‘아이 러브 금강산’이란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혼 직장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남녀가 손잡고 산에 오르는 사진>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한겨레 : 『금강산 미팅 ... 내 짝은 어디에』 제하의

한겨레는 지난 2월 26일자 2면 『금강산 미팅 ... 내 짝은 어디에』 제하의 사진 및 설명 기사에서

결혼정보회사의 결혼이벤트에 참여한 남녀가 손을 잡고 금강산에 오르는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2,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중재합의

양 당사자 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 <2007서울중재3 참조> □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농산물 품목 10가지를 개방예외품목으로 정하고, 이 중 다시 3~5가지 정도를 예외로 하는 방식으로 협상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농산물 ‘마지노선’ 마저 뚫린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2일자 1면)

내 용 : (전략)

8차 협상 나흘째인 11일 협상단의 배○○ 농업분과장은 “한국은 초민감 품목을 10가지로 추려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제시해 예외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양쪽 다 현재로서는 태도가 완강해 결국 8차 협상에서 이런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고 다음 고위급(19~21일 한국서 개최 예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배 분과장은 “그러나 양쪽이 이 때문에 협상을 깰 수는 없고 어떻게든 타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10가지 중에서 다시 3가지나 5가지 정도를 예외로 하는 방식으로 절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특위에서 “농산물 마지노선이 얼마나”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열 가지 정도”라고 답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3차 협상을 시작으로 개방 예외 품목을 3차례나 축소해가며 미국에 제시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깐 카드는 마지노선이었다. 배

분과장은 또 “미국이 10년 안 관세 철폐를 요구한 몇몇 품목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갑자기 5년간 철폐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2007년 3월 12일자 1면 『농산물 ‘마지노선’ 마저 뚫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초민감 품목을 10가지로 추려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제시해 예외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10가지 중에서 다시 3가지나 5가지 정도를 예외로 하는 방식으로 절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민감 품목을 10가지로 추려 미 측에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고위급 협상에서 몇 개 품목을 줄이는 방안으로 협상 할 것이라는 점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4월 20일까지 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의 인터뷰를 게재하되, 3월 12일자 1면 기사에 대한 해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보도지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전협조 및 협의토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용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미국 협상기술 우리보다 한수 위”』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6일자 18면)

내 용 : “미국 사람들은 숨막히는 협상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무역대표부(USTR)에만 계속 있어온 사람들은 협상의 전략과 전술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보다 한수 위였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과장인 배○
○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2일까지 10개월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겪은 미국 농업 협상단을 이렇게 평가했다. 배 국장은 “협상 막판 사나흘 전까지 미국은 계속 예외 없는 관세 철폐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는 관세가 없어지면 품목 자체가 국내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품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협상을 계속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배 국장은 미국의 태도가 약간 누그러진 게 장관급 협상 마지막날로 예상됐던 3월 31일이었다고 전했다. 한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미국한테 우리 양허(개방)안을 던지며 “받든지 그만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배 국장은 “미국 협상단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핵심 품목에서 몇 개 양보를 얻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우리가 미국한테 많이 열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 미국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농축산물 전체 품목의 10%를 ‘협정 발효 뒤 15년 이상 단계적 관세 철폐’로 양보한 사례가 없으며 쌀은 완전 예외고 현행 관세 유지도 5개 품목이나 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가 협정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 배 국장은 “실질적으로 미 의회에서 위생검역 문제가 완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협정 승인을 못하겠다고 하는 등 미국은 그것을 연계시켜 왔다”며 피해갔다.

그는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 봤으면 좋겠고 내가 보탬이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공무원들이 연구원 주택 시공 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주고 건축 인·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 ○) 외 2인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1) 『‘연구원 주택’ 12명 사법처리』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7일자 1면)

내 용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를 훼손하며 건축 중인 대전 ○○구 ○○동 소재 ○○○○의 연구원동호인주택 ○○○○빌과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공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관련자 12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북부경찰서는 16일 연구원주택을 시공한 업체의 대표 A 씨에 대해 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시공업체 관계자 B 씨와 특구본부 간부 C 씨, 전 연구원 D 씨 등에 대해선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연구원주택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구청 공무원 8명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후략)

(2) 『‘투기 누더기’ 막았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7일자 3면)

내 용 : (전략) 한 경찰 관계자는 “연구원주택은 애초부터 지어질 수 없는 건물로 온갖 불·탈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 씨 등은 녹지지역에 동호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1개 세대당 100여만 원의 금품을 주고 ‘가짜건축주’를 모집해 인·허가를 받은 뒤 자연녹지인 ○○○○을 불법으로 개발해 땅값 상승과 분양 등으로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행정소송 패소를 근거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이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7년 1월 17일자 1면 『연구원주택 12명 사법처리』, 3면 『‘투기 누더기’ 막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를 훼손하며 건축 중인 대전 ○○구 ○○○ 소재 ○○○○의 연구원동호인주택 ○○○○빌과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공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관련 12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당시에 사법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2007년 3월 3일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관련기사 3면에서 시공업체와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그동안 “편법은 인정하지만 불법은 없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강변해 왔으나 경찰은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가짜건축주를 모집하고, 불법 형질변경을 통한 주택 건축으로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공무원들은 불법형질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 씨 등은 녹지지역에 동호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1개 세대당 100여만 원의 금품을 주고 ‘가짜건축주’를 모집해 인·허가를 받은 뒤 자연녹지인 ○○○○을 불법으로 개발해 땅값 상승과 분양 등으로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행정소송 패소를 근거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이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은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서지 않았음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89,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1월 27일자 1면에 『‘연구원주택’ 12명 사법처리』, 『‘투기 누더기’ 막았다』 각각 제하의 기사 중 제1면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를 훼손하며 건축 중인 대전 ○○구 ○○동 소재 ○○○○의 연구원 동호인 주택 ○○○○빌과 관련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공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관련자 12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결과 공무원들의 경우 당시에 사법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2007년 2월 28일자로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결정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제3면에서 시공업체와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편법은 인정하지만 불법은 없다”는 등의 강변을 해왔다고 보도하는 등 ○○구 공무원들이 마치 불법형질변경에 관여한 듯한 내용과 시공업체가 금품을 주고 가짜건축주를 모집해 인허가를 받은 뒤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이 대덕특

구 불법개발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구청 공무원들이 불법 형질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서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음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 2007년 4월 2일자 2면에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1면의

부제목(시공업체 대표...)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 문항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결혼정보회사의 단체미팅행사에 참가해 산을 오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1.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년 2월 25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서울조정100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중재합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금강산에서 미팅을!』 제하의 기사 (2007

양 당사자 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 〈2007서울중재4 참조〉

□

우리 기업이 개발한 미얀마 가스전의 가스구매권을 중국에 빼앗길 경우 우리 정부의 자원외교가 실패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장관 김 영 주)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2.

처리결과 : 합 의

조선일보 : 『대우가 개발한 미얀마 가스전 중국에 가스 구매권 빼앗길 듯』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1일자 1면)

내 용 : (주)대우인터내셔널(60%)과 한국가스공사(10%)가 총지분 70%를 가지고 탐사·개발에 성공한 미얀마 해상가스전(田)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국내 직(直)도입이 좌절되고, 중국이 전량 구매해 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중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입원(源)을 다변화하려는 정부의

보도내용

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얀마 가스전의 추정 매장량은 작년 국내 가스 도입물량(2,300만t)의 4~8년치에 해당하는 4.5조~8.5조 입방피트(금액으로는 472억~944억 달러·최대 90조 원). 국내기업이 발견한 해외 가스전 가운데 최대 규모다.

21일 산업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북서부 지역 해상 A1(2개 광구), A3 등 3개 가스광구에서 생산될 가스 구매권을 중국에 넘기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정권을 가진 미얀마와 중국 정부간에 가격 조정만 남았다”며 “미얀마~중국간 연결 송유·가스관을 중국이 무료로 지어주기로 이미 합의하는 등 최종 공식발표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우리 정부 기업의 기술·돈으로 개발한 자원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에너지·자원 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우가 개발한 미얀마 가스전 중국에 가스구매권 빼앗길 듯>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7년 3월 21일 1면 『대우가 개발한 미얀마 가스전 중국에 가스구매권 빼앗길 듯』 제하의 기사에서 “참여정부 및 기업의 기술과 자금으로 개발한 자원을 중국에 빼앗긴다”거나 “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으며 이는 에너지·자원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동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매처가 중국으로 되어도 우리 기업은 개발권자로서 판매수익을 얻게 돼, 우리가 개발한 자원을 빼앗긴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7년 3월 21일자 A1면 「대우가 개발한 미얀마 가스전, 중국에

가스 구매권 빼앗길 듯」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별지> 기사를 <조선일보> B3면에 게재하기로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별지> 기사를 2007년 4월 25일자 B3면에 게재된 사실을 확인한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별 지>

• 제 목 : 『기업들 해외자원 개발 뜨겁다』

• 내 용 : 한국석유공사는 작년 11월 베트남 11-2 광구 룡도이가스전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탐사·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단독 개발한 첫 사례다. 앞으로 23년간 매일 가스 2,900t과 원유 4,200배럴을 뽑아낼 예정이다. 한국 컨소시엄의 예상 순이익이 최소 5,000억 원에 달한다. 투자수익률은 최소 1,000%가 넘는다. 2002년 이후 국제유가와 광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부와 공기업, 기업들 간 3박자 노력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팔 걷어붙인 정부

신(新) 고유가 시대에 돈이 있어도 자원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정부도 해외자원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이 직접 해외자원 개발을 챙기기 시작했다. 지난 4년간 에너지·자원 협력을 목적으로 방문한 나라만도 20개국에 달한다. 산자부에 에너지 담당 차관제가 신설됐고 해외자원개발 예산도 2002년 대비 약 350% 증가한 1조 원에 근접하고 있다.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해외자원 개발은 고가의 자원판매 수익이 보장되는 등 기업의 캐쉬카우(cash-cow) 역할뿐 아니라 시추선 건조, LNG 플랜트 건설수요 창출 등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국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내 우선반입 제도를 통해 에너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안보적 이익과 고유가 위험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자원 개발이 돌파구”

1970~1980년대 수출 주역인 5대 종합상사들은 해외자원개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대우인터내셔널(옛 (주)대우), 삼성물산(상사부문), 현대종합상사, LG상사 등은 최근 석유·가스 등 자원개발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SK네트웍스는 매출의 60%가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일어나고, 대우인터내셔널은 외국 대기업이 포기했던 미얀마 A1 광구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 회생의 극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삼성물산은 2012년까지 해외유전 20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포스코도 호주, 캐나다에서 철광석·유연탄 광산, 뉴칼레도니아에선 니켈 광산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GS칼텍스, (주)SK, 서울도시가스, 대성 등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하다. 현재 해외자원 개발에 나선 기업은 140개, 진출한 나라는 48개국에 달한다. 산자부 김○○ 에너지개발본부장은 “2002년 5억 달러였던 해외자원 개발 투자는 2006년 21억 달러로 4배 늘었다”며 “기업의 의지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자원개발 테마주·펀드 붐물

최근 천연모피 업체인 진도에프앤, 엔터테인먼트

트 기업인 예당엔터테인먼트 등이 자원개발 참여를 선언했다. 세림제지도 사명을 ‘세하(世夏)’로 바꾸고 카자흐스탄 유전을 개발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현재 10여 개 종목이 ‘자원개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 출시도 붐물을 이루고 있다. 작년 말 베트남 유전에 투자하는 ‘유전 펀드 1호’가 산자부 주도로 증권 시장에 상장됐고, ‘유전 펀드 2호’도 준비 중이다. 광업진흥공사가 지난 10일 개최한 ‘니켈 펀드’ 설명회는 기관투자가 100명이 참가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해외자원 개발은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석유공사 유○○ 사업총괄 팀장은 “통상 유전개발 탐사비를 100으로 볼 때 85가 실패한 탐사비”라며 “자원개발 사업은 과거처럼 도박 사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박 사업도 아니다”고 말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기업들 해외자원 개발 뜨겁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5일자 B3면)

내 용 : 합의사항의 <별지> 참조



농민들이 신청인의 농기계 대리점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 온 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광주KBS-1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광주KBS-1TV : (1)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2007년 3월 21일 19:00)

내 용 : ▷앵커 : 농기계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이 나주의 모 농기계 대리점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증거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농민 9명과 공모해 실제 기종보다 비싼 기종을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주고 보조금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등 수차례 보조금을 가로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3월 21일 21:30)

내 용 : <보도내용(1)과 동일>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3월 21일자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뉴스9」 프로그램 시간에 나주 모 농기계 대리점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모 농기계 대리점은 농기계보조금 횡령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인이 시건장치와 경계인력 없이 예비군 훈련용 총기를 수송하고 있어 도난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제51보병사단 (사단장 명 총 식)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3.

처리결과 : 합 의

있음을 보여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3월 16일자 6면 『예비군 총기수송 ‘허술’』 제하의 기사에서 예비군들에게 지급할 M16총기가 군 수송용 차량이 아닌 수출화물 회사의 화물트럭에 의해 옮겨졌으며 차량 경계병이나 경계차량이 보이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규정에 의해 잠금장치가 된 민간 유개차량을 이용, 경계가 지원된 가운데 안전하게 총기를 수송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경기신문 : 『예비군 총기수송 ‘허술’』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6일자 6면)

내 용 : 예비군 훈련의 총기 관리가 너무 허술해 자칫 이를 노린 대형 총기 사고가 우려된다.

근래 수원 도심에서 한 동네를 잿더미로 만들만한 군용 폭약과 TNT가 다량 발견된 가운데 이같이 살상용 총기마저 도난의 위협에 노출돼 군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12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택가 공원에서는 예비군들에게 지급할 M16 총기 약 90여정이 군 수송용 차량이 아닌 수출화물 운송회사인 D사의 화물 트럭에서 현역 사병들에 의해서 내려졌다.

이 총기는 잠시 후 동대 예비군들이 번호표를 받고 훈련용으로 쓰여졌지만 시건장치가 돼 있지 않았으며 훈련을 마친 오후 5시 45분쯤 다시 반납돼 이 운송 차량에 실렸다.

이 차량을 지키는 경계병이나 경계 차량은 보이지 않았으며 운전기사과 인근 동대장만 탑승하고 있어 총기 수송 관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3월 16일자 5면에 「예비군 총기수송 ‘허술’」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당 부대는 규정에 의해 잠금장치가 된 민간 유개차량을 이용, 경계가 지원된 가운데 안전하게 총기를 수송했다고 밝혀와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경기신문 2007년 3월 30일 2면 좌측하단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3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병원 노조집행부가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학교
○○병원지부 (지부장 전 ○ ○)

피신청인 : 중부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3.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부매일 : 『○○○○○○ 노조 CCTV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4일자 4면)

내 용 : 보건의료원노동조합 ○○대학교 ○○병원지부가 지부 사무실과 인접한 휴게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병원 측과 노조원들에 따르면 13일 이 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노조집행부 측에 조합비가 입금된 통장 공개를 요구하던 중 휴게실에 설치된 CCTV용 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선은 노조사무실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부사무실 내부를 찍은 동영상 일부가 발견됐다.

비상대책위 소속 조합원들은 “노조집행부가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분명하다”며 노조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 역시 “해당 휴게실은 휴게실 겸 회의실로 마련된 것으로 경영회의 등 주요 회의가 열리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일부 여직원이 탈의실로도 사용해 온 장소”라며 “법적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집행부 관계자는 “노조지부 사무실의 사건장치가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 훼손된 적이 있어 이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검토했으나 카메라는 연결하지 않았다”고 말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보는 2007년 3월 14일자 사회2면 『○대○○병원 노조 CCTV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조사 결과, 이 선은 노조사무실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부사무실 내부에서 찍은 동영상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경찰 및 병원관리자, 노조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확인한 결과, 선만 발견되었을 뿐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고, 컴퓨터나 기타 동영상기록장치와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대위 측의 요구로 별도의 노조 컴퓨터에서 조합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휴게실은 휴게실 겸 회의실로 마련된 것으로 주요 회의가 열리는 것은 물론 일부 여직원이 탈의실로 사용해 온 장소라며 법적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으나,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는 설치된 바 없으며 휴게실이 탈의실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임 노조집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진정해 일부 관계자가 기소되기도 했다고 한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부제목 : ○○대 ○○병원 노조 CCTV ‘논란’ 관련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14일자 4면 : ○대 ○○병원 노조 CCTV ‘논란’ 제하의 기사 중

- '경찰 조사 결과, 이 선은 노조사무실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노조지부사무실 내부를 찍은 동영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선만 발견되었을 뿐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고 컴퓨터나 기타 동영상기록장치와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대위 측의 요구로 별도의 노조 컴퓨터에서 조합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노조휴게실은...경영회의 등 주요회의가 열리는 것은 물론...그동안 일부 여직원이 탈의실로 사용해 온 장소'라고 보도한 내용은 휴게실이 탈의실로 사용된 바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현 노조관계자는 휴게실이 병원 회의실로 사용된 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임 노조집행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진정해 일부 관계

자가 기소되기도 했다는 내용은 아무도 기소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7년 4월 5일자 2면에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부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같은면(10장 1묶음에 15만 7천 200원...)갈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갈게 한다.

또한 위 정정보도문을 중부매일 인터넷판(www.jbnews.com)에 2007년 4월 4일 오후 10시부터 3주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매일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익산경찰서가 납치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익산경찰서 (서장 박 재 기)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북일보 : 『경찰 조사않고 돌려보내 '물의'』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2일자 6면)

내 용 : 새벽시간에 미성년자인 딸을 납치하려는 피의자를 아버지가 몸싸움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이 추가수사를 하지 않고 1주일 넘게 관련서류를 서랍 속에 방치, 피해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3일 새벽 5시 30분께 익산시 ○○동 A아파트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귀가 중이던 임모 양(19)이 갑자기

나타난 피한에 의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졌다.

때마침 출근 중이던 아버지 임모 씨(47)가 이 과정을 목격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제지하고 나섰고, 피의자 A 씨(29)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임 씨는 후진하는 A 씨의 차에 매달려 2m 정도를 끌려가 무릎과 허리 등을 다쳤고, 딸 임 양도 팔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임 양의 친구 김모 양(19)이 A 씨의 차에 치어 광대뼈가 주저앉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중략)

사건의 지휘를 맡고 있는 익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간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건을 담당하는 팀이 이 기간 동안 출장도 있었고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제3의 목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검찰의 신병 지휘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익산경찰, 납치미수사건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7년 3월 22일자 사회1면 『경찰 조사않고 돌려보내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3월 13일 익산시 ○○동에서 납치피해자인 임모양의 아버지가 몸을 다쳐가며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으나 익산서가 조사를 않고 돌려보냈다. 또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사건 당일 경찰이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피의자를 조사하였으나, 피해자 측과 진술내용이 상반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혐의로 구속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일단 귀가 조치하였으며, 추후 목격자 확보 등이 필요하여 계속적으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익산 납치의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 3월 22일자 6면 『경찰 조사않고 돌려보내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3월 13일 익산시 ○○동에서 납치피해자의 아버지가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으나 익산서가 추가조사를 않고 돌려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않고 피의자를 돌려보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합니다.

익산경찰서는 “사건 당일 경찰이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피해자 측과 진술내용이 상반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혐의로 구속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귀가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속적으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7년 4월 11일자 사회1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몸 다쳐가며 납치피의자 잡아넘겼더니)활자크기와 같게, 본문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일보 : 『익산 납치의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1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장수 거점 산지유통센터가 도입한 과일선별기가 일일 처리용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피시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J-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3

처리결과 : 취 하

J - T V : 「뉴스&뉴스」 프로그램 (2007년 2월 22일 20:00)

내 용 : (전략)

▷기자 : 18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장수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밀양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34억 원이나 주고 왜 이탈리아산 선별기를 구입했을까?

하루 처리용량이 백 톤을 넘을 것이라던 이 선

보도내용

별기는 고작 30톤을 처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एं터리 선별기는 국고 등 예산낭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관계자 : (사과)이만하죠. (선별기가) 읽질 못해요. 못 읽어요. 크기에서도 어느 한계까지만 가려고요.

선과기가 타고 가다가 사과가 크니까 라인별로 걸리는 거예요. 저것이 30억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기자 : 1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사과수집 상자 9천 6백 개는 여전히 농가들이 고개를 갇는 애했단지입니다.

▷농협 관계자 : 200kg 사과 수집상자를 쓸 수 있는데는 우리 나라에는 애했요.

저게 품종이 이탈리아 사과 품종은 과일 껍질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애했는데.

▷기자 : 그러면 200kg 사과수집상자를 쓸 수 애했다는 애했기입니다?

▷농협 관계자 : 저는 애했로도 못 쓴다고 봅니다.

▷기자 : 애했 상자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무려 18억 원을 들여 개발한 경영지원 시스템 역시 무용

지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첨단 저온창고는 아직도 성능을 검증받지 못해 불안하기만 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피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22일자 「뉴스&뉴스」 프로그램에서 (주)○○○○피시의 선별기가 하루 30톤 처리에 급급하고, 선과기가 과일의 크기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여, 18억 원을 들여 개발한 경영지원시스템이 무용지물로 방치된 상태이며, 저온저장고도 성능을 검증받지 못해 불안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주)○○○○피시에선 지난해 일일 최고 82톤의 물량을 처리한 바 있으며, 저온저장고는 사과 저장에 애했 아무런 문제 애했이 정상가동되고 애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신청인이 특정 신문에 대한 기고 및 인터뷰를 금지하는 국정홍보처의 지침을 따르지 애했 정무직 공무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기 숙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6.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조선일보 ‘일사일언’ 필자의 붓 꺾은 정권』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5일자 A35면)

내 용 : 조선일보 문화면을 펼치면 ‘일사일언’이 애했다. 200자 원고지 녀 장짜리 짤막한 글이어도

1933년 생겨 74년을 독자와 함께 호흡해 온 고정란이다. 매달 네 명씩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일상 속 살아가는 애했기와 삶의 지혜를 번갈아 잔잔하게 펼쳐낸다. ‘일사일언’ 74년 역사에 일찍이 애했던 일이 벌어졌다. 3월 필자 중 한 사람이 지난 6일과 13일자에 글을 실은 뒤 “하도 ‘위쪽’에서 뭐라고 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애했다”며 기고를 포기했다. 이 필자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원장이다. 그는 “내가 ‘관 쪽’에서 일하는 이상 어쩔 수가 애했다”고 했다.

이 기관장이 말한 ‘위쪽’이 누군지는 새삼 밝힐 필요도 애했다. 국정홍보처는 2005년 특정 신문에 대한 공직자 기고와 인터뷰를 금지하는 지침을 모든 부처에 보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에 글을 실거나 인터뷰를 한 중앙인사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문화

재청장 등에게 경위를 따지고 내부 감사보고서와 경위보고서를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 씨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항상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5일자 오피니언란에 『조선일보 ‘일사일언’ 필자의 붓 꺾은 정권』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수석 조기숙 씨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항상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조기숙 씨는 누구에게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다만 정책홍보기준이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있으므로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3월 15일 A35면에 실린 『조선일보 ‘일사일언’ 필자의 붓 꺾은 정권』 제하의 사실 중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 씨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항상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조기숙 씨는 “정책홍보기준에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사퇴 종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4월 25일까지 (토,일요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는 피신청인이 통상적으로 게재하는 ‘반론보도문’의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9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비서관이 신청인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포럼 (공동대표 전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박근혜 “부패한 정치에서 경제 안살아 나”』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7일자 A5면)

내 용 : (전략)

한편 이날 창립한 ○○○○○○포럼은 박 전대표의 지지성향 모임으로, 송○○ 서울법대 교수,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비서관, 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인사들이 주축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포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7일자 2일자 A5면 『박근혜 “부패한 정치에선 경제 안 살아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비서관은 ○○○○○○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지 않고, 또한 공동대표를 역임한 사실이 없으며, ○○○○○○포럼은 지역과는 상관없이 학술 및 정책을 토론하는 포럼일 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6일자 2면)

내 용 : 7일자 A5면 “박근혜 ‘부패한 정치에선 경제 안 살아나’” 기사에서 소개한 ○○○○○○포럼 공동대표 중 김정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대표가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이 단체는 모임 성격에 대해 “학술 및 정책을 토론하는 포럼”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를 무단으로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6
 청구명 : 손해청구
 신청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증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수일 : 2007. 3. 2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2월 1일 21:30)

내 용 : (전략)

▷앵커 : 부동산투기 바람이 일면 각 기관 합동 단속이 있곤 하는데 이럴 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일제히 문을 닫죠. 어째서 그런가? 두말할 나위 없이 단속정보가 새나갔기 때문인데 전○○ 기자가 그런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 지난 29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덕소의 아파트 단지, 수백 곳에 이르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예외 없이 모두 문을 닫은 게 이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부동산만 문 닫았지, 다른 데는 다 영업하죠.

▷기자 : 모두가 문을 닫은 건 단속이 나온다는

정보가 새나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시청에서, 아는 사람 있으니까 ‘단속 뚫다’라고 다 알려줘요.

▷기자 : 따온 계약서나 미등기전매와 같은 불법행위 단속에 걸리지 않게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어차피 따온 계약서 아니에요. 누가 세금 다 내고 매매를 해요. 꼬투리 안 잡히려면 문 닫고 가는 게 상책이죠.

▷기자 : 단속정보를 전파하는 주체는 이 지역 부동산협회.

▷부동산 중개업자 :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에서 다 연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 알고 문을 닫는 거죠.

▷기자 : 집을 계약하기 위해 미리 약속을 하고 중개업소를 찾은 손님은 황당한 표정으로 헛걸음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2007년 2월 1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를 무단으로 촬영·방송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신청인이 장기외유를 떠나 광명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효 선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신문 : 『광명시장 한달째 외유중』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5일자 1면)

내 용 : 지난해 7월 ‘호남비하 발언’으로 못매를
맞았던 이효선 광명시장이 이번엔 ‘해외나들이’로
입도마에 올랐다.

이 시장은 납골당 등 지역현안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3월 한달중 20여 일을 해외에서 외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시장은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동안 미국방문
길에 올라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중략)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평생학습 관련 호주를 방문했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납골당 문제로 시 전체가
떠들썩한데 때 아닌 외유”라며 “의회 일정을 알고
도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15일자 1면 『광명시장 한달째 외유중』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각각 ‘한달째 외유중’과 ‘20일 이상 자리 비워’라는 표현은 각각 ‘12일째’와 ‘19일’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효선 광명시장의 해외방문 일정은 제1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전에 결정된 사항이며,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광명시의회의 권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경기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8일자 행정면)

내 용 : 본지 3월 15일자 1면에 실린 ‘광명시장 한달째 외유중’이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제목과 부제내용 중 ‘한달째’와 ‘20일 이상 자리비워...’를 각각 ‘12일째’와 ‘19일’로 바로잡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이효선 광명시장의 해외방문 일정은 제1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전에 결정된 사항이며, 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광명시의회의 권한 사항임을 밝혀왔습니다. □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지출비중을 축소해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장 병 완)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노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일자 1면)

내 용 : 참여정부가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5.7%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2일자 1면에 『노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현 정부가 2003년 공공사회지출비율을 2001년보다 축소하여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2003년 공공사회지출을 좌우하는 정부의 예산·기금편성은 2002년에 이전 정부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참여정부가 결정하지 않았으며 2006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2003년 5.7%로 2001년 5.4%보다 0.3%포인트 증가하였으므로 참여정부가 2003년 공공사회지출을 축소함으로써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혀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경향신문 3월 2일자 1면 『노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결과, 2003년 공공사회지출 관련 예산·기금편성은 이전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고, 새롭게 변경된 GDP산정방식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5.4%이고 2003년에는 0.3%포인트 증가한 5.7%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4월 1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2007. 3. 13.자 2면 '알려왔습니다'와 같은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과 실랑이하는 신청인의 모습과 차량번호가 방영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SBS-TV : 「생방송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2007년 3월 2일 23:05)

내 용 : <한 여성이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SBS-TV는 지난 2007년 3월 2일자 「세븐데이즈」

보도내용

프로그램에서 지방세 체납 실태를 보도하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도하고 차량번호를 공개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제3자가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신원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공사가 관리하는 장도유수지에 쓰레기 침출수가 섞인 폐수가 유입되자 이를 바다로 방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장 준 영)

피신청인 : 인천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천신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출처불명’ 폐수방류』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8일자 1면)

내 용 :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가 도랑을 타고 장도유수지에 고인 쓰레기 침출원수 수준의 폐수를 수문을 통해 방류했다가 어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오염도가 높은 출처불명의 폐수 조사과정에서 사후관리 중인 인근 경서동매립장에서 유출된 침출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성 발언들이 나오자 이 매립장의 침출수를 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하는 인천시가 발끈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관리공사는 1.2m였던 장도유수지의 수위를 안정 수준인 0.5m로 떨어뜨리기 위해 7일 오전 10시부터 수문을 열어 물을 뺐다.

김포와 강화 어민들로 구성된 ‘바다사랑어민대책위원회’ (위원장·주○○·57)는 이날 침출 원수가 섞인 장도유수지의 물을 검증절차 없이 서해 앞바다로 흘러 내보낼 수 없다며 방류중단을 촉구했다.

관리공사는 지난 해 10월 대책위원들 및 한국해

양연구원 연구원들과 함께 경서동매립지 인근에서 쓰레기 침출원수가 섞인 폐수가 도랑을 타고 장도유수지로 흘러드는 사실을 확인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3월 8일자 1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출처불명’ 폐수 방류』 제하의 기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장도유수지에 유입된 쓰레기 침출원수 수준의 폐수를 수문을 통해 바다에 방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침출원수 수준의 폐수를 수문을 통해 방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공사가 집중호우시 주변지역의 홍수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 7월부터 장도유수지의 적정수위를 관리 해오는 과정에서 최근 강우에 따른 관리수위 유지를 위하여 장도배수갑문을 개방하여 시천천 물을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인천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4일자 2면)

내 용 : 본보는 3월 8일자 1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처불명’ 폐수방류’ 제하의 기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출처불명의 배출구를 통해 폐수가 유입된 장도유수지에 고인 쓰레기 침출원수 수준의 폐수를 수문을 통해 방류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출처불명의 배출구는 주변 지역의 생활 및 공장폐수 등이 시천천으로 유입되는 일반적인 지류이며, 침출원수 수준의 폐수를 수문을 통해 방류했다는 내용은 공사에서 집중호우 시 주변지역(인천 서구 백석, 왕길, 경서, 우기시 굴포천수 유입)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2000년 7월부터 장도유수지의 적정수위를 관리해오는 과정에서 최근 강우에 따른 관리수위 유지를 위해 장

도배수갑문을 개방해 사천천물을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대책위원 및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원들과 함께 경서동 매립지 인근에서 쓰레기 침출원수가 섞인 폐수가 장도유수지에 흘러드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3월 8일자 1면 보도내용 중 위 사항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

군용 방독면의 정화통의 품질이 불량하며 기술부족으로 신형 방독면 개발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7.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 (2007년 3월 11일 22:30)

내 용 : ▷앵커 : 최근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전차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인데다 수출까지 한다니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정작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기본장비인 방독면이 문제 투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년 독점 군납'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이뤄져온 군방독면의 부실 관리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기자 : 우리 군이 보유한 K-1 방독면 상당수가 엉터리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정화통은 백 60만여 개로 상당수가 생물학 오염 물질 제거 기능이 규격 미달이고, 따라서 생화학 전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심각한 애기입니다.

지난달 KBS 탐사보도팀은 군용 방독면 정화통의 품질 불량과 부실한 관리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엿새 만에 내놓은 감사 결과에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방독면의 핵심인 정화통은 3개 가운데 2개꼴로 국방규격에 미달했고, 검사 기준을 25년 동안 위반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관 :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의혹들을 포함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한반도는 세계에서 화생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몇 안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 전력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방독면 정화통의 품질 불량이 25년 만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군사평론가 : “이것은 군의 전투력과 군의 생존성을 저하시키는 국가를 향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 정화통 문제만 해결되면 방독면의 품질 관리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걸까? K-1 방독면은 방독면 면체 위에 보호두건을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머리카락 부위를 화생방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보호두건의 봉제부위, 즉 바느질 틈새로 오염물질이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이 군 내부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관계자 : “보호두건에 수포작용제가 스며들게 되면 목 같은데 물질이 생기죠. 그러면 공포심이 생기고 따라서 병사들의 전투능력이 떨어질 수 있죠.

▷기자 : 국방부는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두건의 봉제부위에 누수현상이 발견돼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군 당국은 2002

년 이후 신제품에 대해서만 봉제부위를 밀봉했을 뿐, 당시까지 보급된 두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급된 두건은 140만 개... 이 가운데 50만 개가 수명이 다돼 교체됐을 뿐, 가스가 새는 두건 90만 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는 가스가 새는 두건을 6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면서, 국회에 이상한 답변까지 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K-1 방독면 정화통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3월 11일자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 보급되어 온 군용 방독면의 정화통에 치명적일 수 있는 품질 불량에 존재하고, 신형 방독면으로 개발이 진행중이었던 K-2방독면의 경우 개발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미군방독면을 착용하였을 때보다 K-1방독면을 착용하였을 때에 압박감이나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는 낙후된 방독면이고, 이 같은 방독면의 제반 문제들의 원인은 25년 동안 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국방규격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군의 방독면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고, 신형 방독면 개발이 취소되었던 것은 개발업체의 기술력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군 당국의 시험조건이 모호하였기 때문이었으며, K-1방독면은 미군 방독면 보다 가스수명(방호수명)에서는 우수하므로 결코 낙후된 방독면이 아니고 25년 동안 한 업체에서 납품해 온 사실로 인해 군 방독면의 품질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K-1 방독면 정화통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3월 11일자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 보급되어 온 군용 방독면의 정화통에 치명적일 수 있는 품질 불량에 존재하고, 신형 방독면으로 개발이 진행중이었던 K-2방독면의 경우 개발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미군 방독면을 착용하였을 때보다 K-1방독면을 착용하였을 때에 압박감이나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는 낙후된 방독면이고, 이 같은 방독면의 제반 문제들의 원인은 25년 동안 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위 방독면 정화통을 군에 납품해왔던 납품업체는 국방규격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군의 방독면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고, 신형 방독면 개발이 취소되었던 것은 개발업체의 기술력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군 당국의 시험조건이 모호하였기 때문이었으며, K-1방독면은 미군 방독면 보다 가스수명(방호수명)에서는 우수하므로 결코 낙후된 방독면이 아니고, 25년 동안 한 업체에서 납품해 온 사실로 인해 군 방독면 품질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다단계회사 수사사건의 무죄확정으로 인해 검사직을 사직하고, 다단계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일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피신청인 : KBS-1TV
종 재 부 : 서울제1종재부

접 수 일 : 2007. 3. 2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1TV :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 (2007년 3월 11일 22:20)

내 용 : ▷앵커 :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 그룹의 사기 영업에 대해서는 1심에서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신중 다단계 영업의 사기성을 입증한 검찰의 쾌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 그룹의 로비 의혹은 거의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가 피의사실을 짜 맞추기 위해 허위 진술과 거짓자백, 유죄협상 등 해서는 안될 수사기법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신문 당시의 녹취록을 중심으로 ○○○ 로비 의혹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재구성해 봤습니다. (중략)

▷기자 : 주○○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초호와 변호인단을 구성합니다. 이른바 30억 프로젝트, 송○○ 전 검찰총장, 김○○ 전 대구지검장, 박△△ 전 동부지검 차장, 그리고 박 ○ 전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 등을 영입했습니다. 송○○ 전 총장은 여론의 압력 때문인지 결국 변호인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박 ○ 전 검사는 지난 2002년 당시 주○○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인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사기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자, 박 검사는 옷을 벗고 ○○○ 고문 변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자신이 구속시킨 사람에 대해 퇴임 후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사시절 함께 주○○ 회장을 기소했던 검사의 전담 변호인이 됩니다.

▷시사저널 정○ 기자 : “2002년 주○○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시켰던 바 있던 박 아무개 변호사는 당시 데리고 있던 동부지검 정관계 로비의 수사의 핵심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쪽 방을 드나들면서 수사 초기부터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하는 장면들이 피해자들에게 많이 목격된 바도 있습니다.”

▷기자 : 이후 로비 수사는 조금씩 주○○ 회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 수사진실은?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3월 11일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에서 박○ 변호사가 2002년 ○○○ 수사사건의 무죄확정으로 인해 검사직을 사직하고, 그후 ○○○ 다단계 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다가 최근 주○○ 회장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를 받게되자, 부당하게 비밀정보를 입수하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주하여 주○○ 회장이 원하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박 ○ 변호사는 2002년 ○○○ 수사사건의 무죄판결로 인해 사직한 것이 아니고, ○○○ 다단계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사실도 없으며, 본 내사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에 혐의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부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거나 수사에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 수사진실은? 관련 반론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3월 11일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에서 박○ 변호사가 2002년 ○○○ 수사사건의 무죄확정으로 인해 검사직을 사직하고, 그후 ○○○ 다단계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다가 최근 주○○ 회장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를 받게되자, 부당하게 비밀정보를 입수하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주하여 주○○ 회장이 원하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 변호사는 2002년 ○○○ 수사사건의 무죄판결로 인해 검사직을 사직한 것이 아니고, ○○○ 다단계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사실도 없으며, 본 내사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에 혐의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부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거나, 수사에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위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KBS-1TV : 「TV비평 시청자데스크」 프로그램 (2007

년 4월 7일 11:00)

내 용 : 지난 11일 '취재파일4321'에서는 ○○○
수사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주○○○ 회장

의 무죄판결로 인해 검사직을 사직한 것이 아니며,
주 회장 변호인을 맡은 것은 사실이나 ○○○의 고
문번호사로 일한 사실이 없고, 수사에 일체의 영향
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반론해왔습니다. □

자동차 등록대행업체의 임금체불문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매매단지를 무단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자동차매매단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8.
처리결과 : 취 하

▷앵커 : 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는 주택이 아닌 상
가건물 5층. 과연 이 곳에서 사업주를 만날 수 있
을까? 결국 사업주와의 만남은 실패. 다시 한 번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음성메시지 :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으
로 인해 휴대폰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미 전화번호를 바꾼 사업주.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KBS-2TV : 「좋은나라운동본부」 프로그램 (2007년 1
월 12일 21:10)

내 용 : (전략)

▷앵커 : 말이 통하지 않는 사업주. 결국 양심 추
적팀이 체불 임금해결을 위해 나섰다. 현재 사업체
를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 사업주는 보이지 않았다.

▷지방노동청관계자1 : 사장님 자주 오십니까?

▷직원 : 가끔씩 오세요.

▷앵커 : 이번에는 사업주의 주소지를 찾았다.

▷지방노동청관계자1 :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방노동청관계자2 : 6○○번지.

KBS는 2007년 1월 12일 방영된 「좋은나라운동
본부」 프로그램에서 ○○자동차매매단지 내 ○○○
닷컴의 사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의
내용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자동차매매단지를
방송 상에 나타내고 자막 상에도 자동차매매단지
라고 표시하여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
동차매매단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
치 ○○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위 보도의 내
용은 ○○자동차매매단지와는 무관한 내용임을 시
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OECD 검토단이 우리 정부에 3불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도록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한국대학 규제 풀어야”』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38면)

내 용 : “정부는 대학규제를 풀고 대학별 등록금, 취업률, 학과별 순위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책 제언이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OECD가 작성한 ‘한국 고등교육 분석 보고서’를 최근 OECD 웹사이트(www.oecd.org)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OECD의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진행됐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출한 ‘한국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진행됐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출한 ‘한국 고등교육 체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와 OECD 검토단의 국내 현장 실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OECD는 한국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대학 자율성 확대 등 규제 완화 △고등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중략)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3불 정책(본고사 제도,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은 각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개별 대학이 스스로 뛰어난 재능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3불 정책으로 왜곡된 교육시장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재능있는 인재들이 사회의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는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OECD 검토단, 현 체제 하에서 3불제 폐지는 곤란하다”고 제언

•내 용 : 본보 2월 26일자 38면 『“한국대학 규제 풀어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교육부는 3불제와 관련하여 OECD 검토단이 우리 정부에 제언한 것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교육 관리시스템이 향상되지 않은 현 체제 하에서 3불제의 폐지는 어렵다”는 점이지, “3불 정책을 폐지하라”라고 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정원 관련하여 OECD 검토단은 기존의 정원제도보다는 과잉 교육을 제한하고, 대학에 대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원제도를 제언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제도가 부정적인 면만 양산하고 있다고 바로 기술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매일경제 : 『교육부 “OECD 3불제 폐지 제언없어”』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2일자 38면)

내 용 : 교육부는 본지 2월 26일 A38면 OECD 보고서 기사와 관련해 “지난 2월 발표된 OECD 고등교육보고서는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고 고등교육 관리시스템이 향상되지 않은 현 체제에서 3불정책을 급격히 폐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과잉 교육을 방지하며 대학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새 정원 제도를 제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

OECD 검토단이 우리 정부에 3불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도록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한국, 대학에 입시 맡겨야”』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1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11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
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1일자
9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12의 신청 후 보도문 참
조〉 □

OECD 검토단이 우리 정부에 3불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도록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대학자율 막는 3불정책 없애야”』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A1면)

내 용 : 〈2007 서울조정 11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 서울조정 11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
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지난 2월 26일자 1면 및 27일자 35면의
OECD 보고서 내용 기사와 사설과 관련해 교육부

는 동 보고서가 3불정책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
고 있지만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는 주의해야
하고, 또한 고등교육위가 교육부 역할을 모두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예시
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4월 10일까지 토요일을 제
외하고 조선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
목은 2월 26일자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OECD,
한국정부에 조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
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피
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
형사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
월 9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OECD 검토단이 우리 정부에 3불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도록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OECD “한국 3불정책 고쳐야”』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3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1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11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와 관련하여 박○○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명의로 된, 800자 이상 1000자 이하(띄어쓰기 포함)의 기고문을 토요일을 제외하고 2007년 4월 18일까지 중앙일보 오피니언면의 〈중앙일보를 읽고〉란에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 크기는 해당 면의 통상적인 형식에 따르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OECD는 3불정책 폐지 제언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1일자 33면)

내 용 : 2월 26일자 3면에 실린 ‘OECD 한국 3불정책 고쳐야’ 기사와 27일자 사설 ‘교육부 대폭 축소를 권고한 OECD’를 읽고, 보도 내용이 ‘OECD 고등교육 보고서’ 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첫째, OECD 보고서는 3불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 교육의 질 및 연구개발에 비해 부족하게 다루어져 왔던 고등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OECD보고서는 3불정책이 대학들의 자체적인 학생 선발 과정을 제한하긴 하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른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교육 관리시스템이 향상되지 않은 현 체제하에서는 3불정책을 급격하게 폐지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둘째, 대학 정원에 대해 OECD 보고서는 수도권 지역의 입학 정원 제한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면서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대학에 대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원제도를 제언했다. 등록금과 관련해 ‘교육부가 등록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셋째, OECD 보고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비판한 바 없으며 사립대학 규제에 대한 일반 원칙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3월에 발표된 ‘OECD 규제 개혁 보고서’는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넷째, OECD 보고서는 품질 향상, 유연성과 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발전적 규제를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적 규제의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예시한 고등교육위원회는 정부의 자문 및 협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교육부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지 교육부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OECD 보고서’는 3불정책 폐지나 완화 등을 제언한 바 없으며, 오히려 3불정책을 현 체제하에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신청인 회사가 무면허업자에게 상습적으로 불법하도금을 주고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전북중앙신문

증 재 부 : 전북증재부
접 수 일 : 2007. 3.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북중앙신문 : 『도 내 ○○건설 상습 불법하도급 ‘말썽’』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2일자 13면)

내 용 : 도내 한 중견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불법 하도급과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 부서인 관공서도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05년 초 고창군에서 발주한 고인돌 공원 조성 사업의 도급사인 H건설이 무면허업자인 A 씨(46)에게 2006년 4월경 토목공사 중 일부공사를 계약서 없이(구두계약) 시공토록 하면서 발생했다.

A 씨에게 구두계약에 상관없이 외적인 부분까지 임의적으로 시공을 맡겨온 H건설 측은 막상 정산 단계가 되자 그 동안 A 씨가 시공한 공정에 대해 일정 부분밖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발주관서인 고창군청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사실을 그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뺌하며 차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미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H건설은 2005년 12월, 전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지방도 705호선 부안군 동진면 봉황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도급한 후에도 A 씨에게 20%에 가까운 선부금을 받고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져 상습적인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도내 H건설 상습 불법하도급 ‘말썽’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22일자 13면 『도내 H건설 상습 불법하도급 ‘말썽’』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주식회사는 무면허업자와 불법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공사금액의 20%에 가까운 선부금을 받고 무허가 업자에게 불법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해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 90%가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발전협의회 (회장 최 ○ ○)
피신청인 : TJB-TV
증 재 부 : 대전증재부
접 수 일 : 2007. 3. 2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TJB-TV : 「뉴스스테이션」 프로그램 (2007년 3월 6일 18:00)

내 용 : >유PD : ○○산업폐기물 매립장 재허가 공방 상태를 짚어봤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산업폐기물이란 무엇인가. 산업폐기물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같은 쓰레기이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어서 정부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분리수거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립해야 되는 산업폐기물만 해도 하루에 대전 300톤, 충남 2,800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립장은 현재 충남 당진 단 한 곳에 불과해 지역폐기물 상당량이 외지로 반출되는 실정입니다. 먼 거리만큼 처리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에서도 지난 96년부터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운영되어 왔으나 2001년 이후 허가갱신이 안 되자 매립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매

립장은 현재 폐허로 방치된 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침출수 처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당초 사업자는 허가갱신노력 끝에 사업이 부도난 뒤 사망했고 새로운 업체가 사업을 이어받아 인·허가를 내려 했으나 그것 역시 벽에 막히자 관리책임주체가 없는 셈입니다. 당초 1, 2차 사업자는 15,000평 3차 사업지로 3만 평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시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현장을 용도변경까지 해 준 상황에서 사업은 7년째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 1, 2차 사업허가를 내주고도 3차에 와서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관광○○의 이미지에 먹칠한다, ○○시의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 지형이 불균형된다, 이는 법규정에 명시된 문구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중략)

▷유PD : 그렇다면 과연 관광○○ 이미지라는 주장은 합당할까, ○○시에서는 바닷가 갯벌 체험장 바로 옆에 생활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작년에 개설했습니다. 강력한 주민반대여론을 뚫고 그것도 대표적인 관광지 바로 옆에 쓰레기처리장을 추진한 보령시의 정책을 보면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최○○ : 저희들이 비행기 폭격장이 있습니다.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화력이 대한민국 최대 규모 ○○화력이었어요. 거기서 생산되는, 배출되는 온·폐수나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공기를 마시고 있죠. 그런데 더군다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매립장 이것조차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그거는 너무 가혹한 얘기 아니냐 저희는 그런 주장입니다.

▷유PD : 달갑지 않은 환경시설을 반대한다는 정서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매립장과 가장 인접해 있는 마을주민의 약 90%는 인·허가 찬성입장입니다.

▷황○○ : 저런 걸 생태공원화 해서 사업종료되면 그것도 관광자원으로 쓰려고 하고 그렇게 회사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온갖 노력을 해 봐도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되지도 않고 시에

서 저걸 좀 어떻게 잘 좀 해서 저희 마을도 좀 소득창출도 되고,

▷유PD : 상당수의 주민들은 매립장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는데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침출수 처리장인데 사업을 인수한 업체가 2년간 가동하다가 지난 연말부터 연간 2억 원의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침출수는 지금도 하루평균 8톤이 흘러나옵니다. 장마철에는 하루 60톤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침출수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폐기물을 훑고 나온 물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각한데 시설은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3월 6일 18시 「뉴스스테이션」 프로그램에서 ○○ 폐기물 매립장 허가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이 찬반 여러 갈래로 민심이 흩어져 있고, ○○시가 폐기물 매립이 중단된 매립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용도변경까지 해 준 상황에서 3차 허가를 불허하여 사업은 7년째 공전하고 있으며, 매립장을 방치하여 지금도 하루 평균 8톤의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장마철에는 하루 60톤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건과 관련해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용도변경한 것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현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폐기물 매립장은 차수막을 바닥에 설치하여 폐기물 매립 후 다시 차수막을 덮은 다음 그 위에 복토를 하고 잔디와 나무를 심도록 설계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침출수의 양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의 부도 이후 ○○시에서 침출수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대전방송이 지난 3월 6일자 오후 6시 「뉴스스테이션」 프로그램에서 ○○폐기물 매립장 허가 건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이 찬반 여러 갈래로 민심이 흩어져 있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침출수는 하루 평균 8톤이 흘러나오고, 장마철에는 하루 60톤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협의회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건과 관련해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침출수는 하루 8톤 미만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사업자의

부도이후 ○○시에서 침출수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TJB 대전방송 2007년 4월 13일 오후 6시 「뉴스스테이션」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은 청색 바탕화면에 흰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TJB-TV : 「뉴스스테이션」 프로그램 (2007년 4월 13일 18: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학교부지 매각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신문 : 『○○대 이사장 수익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9일자 1면)

내 용 : ○○소재 학교법인 ○○보건대학이 수익용 학교부지를 매각 대금에서 발생한 연간 수천여만 원대의 이자를 이사장의 월급 등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학교관계자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 대학 법인은 지난 2001년 수원시 장안구 ○○동 학교법인 ○○보건대학의 법인 수익용 토지 2천여 평을 14억 8천여만 원에 매각했다.

이 대학법인은 매각대금 전액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천여만 원대의 이자수익으로 법인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수천만 원의 이자수익 가운데 매달 500여만 원 상당이 이사장에게 월급성으로 지급됐고, 이사장의 각종 경조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학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연간 600여만 원을 개인 사재를 털어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호언했으나 실제 법인 재산 매각대금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이하·교육부)도 이 학교법인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2007년 3월 29일자 『○○대 이사장 수익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대학의 학교법인 토지매각대금 이자소득은 전액 적정히 지불되었고, 이사장 개인이 월급 등 명목으로 부당횡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중도에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지급을 거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CNB NEWS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30.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CNB NEWS : 『아르바이트 임금 50원짜리 1,679개 주며 “가져가라”』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9일자 경제면)

내 용 : 일주일 임금 8만 3,960원을 50원짜리 1,679개와 10원짜리 1개로 받은 황당한 일이 벌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대전시 은행동 소재의 ○○○○○○와 아르바이트 생 송○○ 씨에게서 벌어진 일.

지난달 송 씨는 ○○○○○○에서 하루 5시간 씩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일주일간 해 왔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날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것.

이에 ○○○ 매니저는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다”며 임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이에 따라 송 씨는 대전의 지방노동청에 임금 지급을 호소했고 ○○○○○○에서는 송 씨에게 임금을 지급할테니 와서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다.

이에 따라 28일 ○○○○○○를 방문한 송 씨를 반긴 것은 1만 원 권 8장이 아닌 테이블에 널려진 50원 짜리 1,679개, 부피도 만만치 않은 데다 무게도 1kg을 가뿐히 넘는 무게다.

이에 송 씨는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하자 매니저는 “봉지를 구입해서 담아가세요”라며 ○○○○○○의 봉지를 던져 준 후 2개를 봉지값으로 집어간 것.

이에 대해 송 씨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정당한 임금을 이런 식의 모욕을 받으며 받아야 하나”며

“이는 가난하고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깔보고 인격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분개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29일자 경제면에 『아르바이트 임금 50원짜리 1,679개 주며 “가져가라”』 제하의 기사에서 ○○○○○○의 매니저를 아르바이트생을 모욕하는 등 파렴치범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문제의 아르바이트생은 이력서도 사실과 다르게 썼고, 입문사실도 숨긴 채 일을 시작하였으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자 수취심에 그만두고자 한 것으로 사람 구할 시간도 없이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수시로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7년 4월 7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CNB NEWS>홈페이지 및 <엠펜스>, <야후>, <드림위즈>, <코리아닷컴>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 피신청인이 위 사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삭제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대학진학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술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7
청 구 명 : 추후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30.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1월 10일 21:30)

내 용 : ▷앵커 : 뇌물수수에 사기, 협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교장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달째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뇌물수수와 사기, 그리고 협박, 이 학교 이모 교장이 경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들입니다.

인근 학교 교감이던 지난 2002년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산점이 있는 표창장을 주겠다고 학부모로부터 3년여 동안 2천만 원대의 술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학부모 : “2차 술을 요구할 때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상장 수여가 될 거고 상품도 나갈거야. 이런 식으로 년지시 말씀을 했습니다.”

▷기자 : 학부모와 교장이 자주 찾았다는 고급 룸살롱.

▷종업원 : “돈은 모시고 온 분(학부모)이 항상 외상하고 내가(학부모의) 사무실 가서 받을 때도 있고 통장 입금시킬 때도 있고 (교장이) 항상 접대받으러 온 거죠.”

▷교장 : “한두 번 대가성 없이 담임 때문에 간 것이지 담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돈 줘요. 교감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기자 : 다음은 사기 혐의.

경찰이 이모 교장이 지난 2005년 학부모의 51평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싼 2억 3천만 원에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감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조건을 뒀거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전과 5범의 불량배를 시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

경찰의 요구와는 달리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두 달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고 있어 갖가지 뒷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이 모 교장 뇌물수수 등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10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 모 교장이 인근 학교 교감이던 2002년,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학부모로부터 3년 여 동안 2천만 원대의 술접대와 금품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2005년도에는 매점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로부터 51평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넘겨받아 사기행위를 했으며, 이를 문제 삼은 학부모에게 전과 5범의 불량배를 시켜 협박까지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넘어간 상태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모 교장은 지난 2월 22일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아 그 혐의를 완전히 벗었으므로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신청인이 누드 크로키 모델로 나선 현장 사진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일간스포츠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일간스포츠 : 『누드모델 남과 여 꽃샘추위 속 옷 벗는 이유』 제하의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누드사진 및 사생활 내용을 게재하여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내 용 : (전략)

돈 때문에 누드모델이 된 K씨. 그렇지만 큰 돈을 벌려는 것은 아니었다. 뮤지컬 배우로서 발레를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뛰어든 것이 누드모델이다. 시간에 비해 고소득이다. 다른 누드모델이 가지고 있지 못한 표정 연기가 일품이다. 누드모델 5년 차인 그는 '몸태'로 꽤 유명하다. 옷을 벗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기력을 가미한다. 뮤지컬 작품에 출현하면서 다진 그의 연기력이 빛을 바라는 순간이다. 자연스럽게 '자기 연기 모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겨울에 옷을 벗는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래도 즐겁다. 몰입의 기쁨을 누린다. 서있던 그가 갑자기 엎드리자 크로키하는 연필 소리가 커지고 학생들의 손 동작은 빨라진다.(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일간스포츠는 지난 2007년 3월 12일자 22면 『누드모델 남과 여 꽃샘추위속 옷 벗는 이유』 제하의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누드사진 및 사생활 내용을 게재하여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4월 13일까지 금일 백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장관 김 영 주)
피신청인 : 대구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대구MBC-TV : 「포커스 M」 프로그램 (2007년 3월 16일 23: 30)

내 용 : ▷김○○ 기자 : 무려 19년이나 끌려온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05년 말 주민투표에 앞서 유치지역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정부의 태도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듯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민들은 차라리 방폐장을 반납하겠다고 최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지역의 대응책을 취재했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2달여 앞 둔 지난 2005년 8월 10일 당시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경주시를 찾아와 시청회의실에서 시장과 시의원 유치단체회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은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 보다도 더 잘 사는 곳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가속기, 특별지원금 3,000억 원 보다도 유치지역지원사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크라며 6조 원 이상의 가용자금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회범 전 산자부 장관 : 산자부가 운영하는 게 2조 정도 됩니다. 2조 원 정도.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자금이, 에너지 특별회계가 한 2조 4천억 정도 되고, 전력기반기금이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사실은 가용재원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기자 : 간담회 바로 다음날 백상승 경주시장은 방폐장 유치 신청을 선언했고 산자부장관의 발언은 주민설득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략)

▷김○○ 기자 :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무려 90%에 가까운 찬성율로 유치한 방폐장, 그러나 환상은 불과 1년 반 만에 여지없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월 2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사업 간담회 이 자리에 참석한 산자부 고위 관료를 상대로 경주시는 이회범 전 산자부장관의 약속을 지키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 산자부 이회범 장관님 그 부분은 그게 참...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이.. 그게 연고지가... 이곳이고 해서 상당히 애향심의 발로로서 상당히 의욕 있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을 백업해주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정부 예산의 틀과 법의 실정법의 틀을 그렇게 확실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 기자 : 이같은 사태의 발단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규모를 두고 경주시와 정부가 보인 엄청난 시각 차이입니다.

지난해 6월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118건의 88,526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지난 1월에야 알려졌습니다.

경주시가 요청한 대로 수용한 것은 겨우 6건, 금액으로는 요구액의 3.9%에 그치는 3,512억 원뿐입니다. 조건부 수용이 36건에 15,553억 원, 일부수용은 8건에 12,813억 원, 그러나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 수용사업 가운데 양북면 봉길리와 이일리 간 지방도 929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양북 대중교에서 감포천종 간 국도 31호선 확포장 공사는 방폐장 때문에 어차피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약속을 지켜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대구MBC 방송은 지난 3월 16일 방송한 「포커스M」 프로그램에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2005년 말 주민투표에 앞서 유치지역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정부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한 사항은 완료되었거나 이행 중입니다.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은 2006년 5월 9일 경주시 명의를 통장으로 이미 지급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은 2006년 12월 29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로 이전부지가 선정되었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은 2006년 3월 30일 경주시-한국원자력연구소 간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유치지역지원계획은 경주시 요청사업을 접수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조만간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방폐장 유치 당시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회범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가속기, 특별지원금 3,000억 원 보다 유치지역지원사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며 6조 원 이상의 가용자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이 전 장관이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가속기, 특별지원금 3,000억 원 보다 유치지역지원사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으며, “6.2조 원 이상의 가용 자금”이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지원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아직 지원내용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지원가능 사업은 경주시 요청 원안 수용 6건 외에도, 조건부 수용 36건, 일부 수용 8건 등 총 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유치지역지원 사업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방폐장’ 지원 관련 산자부 반론보도문
- 내 용 : 다음은 반론보도문입니다. 본 방송은 지난 3월 16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약속 지켜라’ 제하의 보도에서 정부가 2005년 말 주민투표에 앞서 유치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경주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한 사항 중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지원’ 부분과 ‘한수원 본사이전’ 부분,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사업’ 부분은 이미 지원을 완료하거나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2005년 8월 있었던 유치관련 장관 간담회에서 언급된 6조 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이 액수는 가용예산 규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지원규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회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치지역지원계획’이 다른 지원사업 예산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덧붙여,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유치지역지원사업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유치지역에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구문화방송 「포커스M」 프로그램 말미에 2007년 4월 20일까지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하단에 푸른색 바탕의 흰색 정지자막으로 게재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구MBC-TV : 「포커스M」 프로그램 (2007년 4월 20일 23:5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장관 김 영 주)

피신청인 : 안동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30.

처리결과 : 합 의

안동MBC-TV : 「시사르포1600」 프로그램 (2007년 3월 16일 23:16)

내 용 : <2007대구조정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대구조정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합의사항

〈2007대구조정3의 합의사항 참조〉

안동MBC-TV : 「시사르포1600」 프로그램 (2007년 3월 13일 23:50)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피신청인 : 포항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30.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대구조정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7대구조정3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포항MBC-TV : 「시사일레븐」 프로그램 (2007년 3월 16일 23:00)

내 용 : 〈2007대구조정3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포항MBC-TV : 「시사일레븐」 프로그램 (2007년 3월 13일 23:5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유성구청이 협소한 주차공간에 돼지를 키우는 등 이벤트성 전시행정을 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성구(구청장 진 동 규)

피신청인 : 중앙매일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30.

처리결과 : 각 취하

는 돼지육막을 짓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돼지 8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3월 21일자 1면 『유성구청, 전시행정은 ‘이제그만’』 제하의 기사에서 구청마당의 주차공간은 약 246대가 주차할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며, 구청직원들 차량 250대 가량이 우선주차하고 보면 민원인들은 항상 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돼지육막으로 인해 약 20대가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유성구청의 주차공간은 총 246면으로서 이중 25면은 관용차용, 8면은 외빈 및 의원차량용이며 지하주차장을 포함해 직원용은 83면으로, 풋말을 세워 민원인전용주차장과 구분을 해놓고 직원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

보도내용

중앙매일 : 『유성구, 전시행정은 ‘이제그만’』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1일자 1면)

내 용 : 대전 유성구청(구청장, 진동규)이 주차공간도 비좁은 구청마당에 돼지를 키우는 전시행정을 펴고 있다는 주민들이 불만을 사고 있다.

유성구청은 황금돼지해를 맞아 구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린다는 뜻으로 구청마당에 약 80평이나 되

기에 구청직원차량 250대 가량이 우선 주차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전혀 없으며 또한
돼지웁막이 있는 곳은 지하시설과 인접해서 주차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주차공간
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어서 이를 바
로잡습니다.

또한 유성천변 가로등에 자전거를 매달아 놓고 자
전거도로의 상징물이라고 홍보하는 등, 단발성이며
이벤트형 행정을 펴고 있다면서 또 어떤 이벤트로
주민을 현혹할지 걱정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

과 유성천변 가로등에 태양열 축전을 이용한 자전
거는 유성구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중
의 하나로 금년에 착공해 유성·감천변둔치를 따
라 조성될 자전거전용도로의 상징조형물로 담당직
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제출로 제작해서 설치한
것으로 주민을 현혹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8,100,000원



신청인 회사가 중국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들여와 신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불법 복제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PR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OO정보개발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월 4일
21:30)

내 용 : ▷앵커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됐
던 중고 휴대전화가 새 제품처럼 둔갑해 다시 우
리나라에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겉모습만 바꾼 것입니다.

이OO 기자입니다.

▷기자 : 이 휴대전화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50만
대나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들
이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
니다.

화면 왼쪽은 가짜이고 오른쪽은 진품입니다.

언뜻 봐서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진품에는 안테나가 있고 가
짜에는 안테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는 모델 이름과 일련번호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가짜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의 기판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휴대전화 핵심부품은 그대로 중고인데 케이스와
배터리 같은 겉의 부품만 정품처럼 꾸몄습니다.

감쪽같이 둔갑한 이 휴대전화는 국내에서 한 개
에 1만 원부터 17만 원까지를 받고 팔렸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이 중고 휴대전화를 들고 제
가 직접 개통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체관계자 : 사용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기자 : 이 휴대전화로 통화는 되지만 고장이 잦
고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짜통' 휴대전화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4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한국에서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를
중국에서 새 제품처럼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
짜단말기 2만여 대를 유통시킨 조직이 경찰에 적
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휴대폰은 재활용 중고휴대폰으로서 적법하게 수거되었으며 유통된 휴대폰 대부분이 중고휴대폰에 케이스만 교체하여 정상적으로 재생, 재활용된 것으로 '불법 복제'를 하거나 새 제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텔레콤에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팔린 값은 20만 원 대가 아니라 평균 4~5만 원 대의 저렴한 제품으로, 판매된 중고 재생휴대전화의 성능이 떨어지는 지의 여부는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수용은 불가능하고 다만 반론은 수용할 수 있다.

불성립결정 후 보도문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5월 8일 21:20)

내 용 : ▷앵커 : 혹시 집안에 안 쓰는 휴대전화 몇 개나 있으신지요.

멀쩡한 데도 새 것만 찾다보니까 한 해에 1,300만 대의 휴대전화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안○○ 기자 : 초대형 자루 하나에 1만 대 씩, 이 창고에만 20만 대가 넘습니다.

이처럼 새 모델에 밀려 버려지는 휴대 전화 단말기는 연간 1천 3백만 대에 달합니다.

반면 재활용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엔 34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수거되는 중고품 중 백만 대는 휴지통에 버려져 매립장에 묻혀있던 것들입니다. 비싼 로열티까지 주고 만든 휴대전화가 출시 2년 만에 쓰레기가 될 뻔했습니다.

조사결과 열 집 중 여섯 집엔 방치된 중고 단말기가 한 대에서 네 대 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마다 5천억 원씩 외국에 지불하는 로열티도 아깝지만 납과 카드뮴 등 몸에 해로운 중금속 오염도 걱정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동통신사들은 새 단말기를 팔기 위해 2~3만 원 하던 중고품 보상금을 만 원으로 깎아버렸습니다.

▷YMCA관계자 : 쓰지 않는 휴대폰 반납을 의무화하는 체계적인 수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이미 수거된 폰은 합리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기자 : 수거된 중고 단말기는 수리과정을 거쳐 재생 휴대전화로 거듭납니다.

수출은 물론 저소득층의 통신수단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 : 하나의 산업적 측면으로 이해해서 영화의 스크린 쿼터제처럼 중고휴대폰 개통을 쿼터제로 하는 법제화가...

▷기자 : 현재 유럽은 재활용율이 85%,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00% 재활용을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자폐아인 아들을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외딴 집에 가두고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

처리결과 : 각 하

보도내용

SBS-TV : (1) 「긴급출동 SOS」프로그램 (2007년 1월 2일 23:05)

내 용 : ▷앵커 : 폐가 같은 곳에 갇혀 가축처럼 지내는 아이가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

제보 속 주소는, 지방의 한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외딴 집. 그러나 막상 찾아가보니 건물엔 온전한 창문 하나 없고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 때, 나무판자로 영성하게 막아놓은 창문 사이

로 흘러나오는 괴음....!

소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들여다 본 방안에 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완전한 알몸으로 머리를 풀어헤친 한 소년이 있었던 것.

온 벽과 천장은 아이가 배설한 오물들로 도배된 상태에,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쓰레기로 가득한 집!

방에서 뿔어져 나오는 악취에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는데.

아무데나 배변을 하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설 새 없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아이.

도대체 그는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걸까?

잠시 후, 누군가 대문을 열고 아이에게 음식물을 가져다주는 현상이 목격됐다.

그는, 다름 아닌 아이의 친아버지!

제보와는 달리, 자신이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고 있고,

아이가 공격적이어서 가둬서 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아버지의 주장. (후략)

(2) 「긴급출동 SOS」 프로그램 (2007년 2월 27일 23:05)

내 용 : ▷앵커 : 지난 1월 2일, 일명 ‘야생소년’이라 불리며 전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이! 그로부터 2개월, ○○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시 찾은 ○○이는 더 이상 옷을 벗거나 끊임없이 이상한 소리를 내던 예전의 ○○이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로 SOS팀을 맞이한 아이는, 현재 2개월간의 지속적인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눈앞에 둔 상태!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시설 입소가 여의치 않았던 것.

24시간 보호자가 필요한 ○○이의 경우, 무료시설은 1대 1로 돌봐줄 만한 인력이 없고,

유료시설에 입소하려면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 해당 관청에서는 전국 240개 지자체를 통해 ○○이가 갈 만한 시설들을 알아봤지만 하나같이 난색을 표하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계속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인데...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야생소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1차 방송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방송된 것이므로 다만 본인이 다른 부모에 비교하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PD 선생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로서 자식에게, 마땅히 해야할 일이지만, 상당히 희생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방송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방송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정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서(SBS-TV)

서울 양천구 목동 820

대표이사 김 수 응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TV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방송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 1. 2. 및 2007. 2. 27. 『긴급출동 SOS 24』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공격적이고 환경을 바꾸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외딴 집에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방송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이 부모로서 아들을 위해 희생한 사실은 방송되지 않았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 및 언론조정중재규칙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와 같은 흠결에 대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신청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보정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편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가 허위라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조정신청은 부적법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9.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귀가 중 실종되었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노컷뉴스 : 『경찰 늑장대응 때문에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9일자 사회면)

내 용 : 한밤중에 갑자기 사라진 딸이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아버지가 애타게 경찰서 문을 두드렸지만 경찰의 늑장대응 때문에 결국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새벽 1시쯤 한 40대 남성과 20대 초반의 여성 2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울 모 경찰서로 달려왔다.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는 이들의 말에 경찰관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가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보라는 부서를 겨우 찾은 40대 남성은 굳게 문이 잠긴 채 불이 꺼진 사무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른 지 10여 분 만에야 경찰관을 만났다.

막 잠에서 깬 경찰관은 “대체 누가 밤중에 전화

를 걸었느냐”라며 호통을 쳤다.

이 40대 남성은 자신의 20살 난 딸 최모 양(가명)이 귀가하다 실종됐는데 딸의 뒤를 쫓아오던 대여섯 명의 남성들이 납치한 것 같다며 어서 찾아달라고 사정했다.

최 양의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최양의 친구는 최 양의 휴대전화를 낚신 남자가 받았다고 어서 신고를 받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종합상황실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고 경찰의 늑장대처에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최 양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뭐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눈치였다. ‘24시간 안 들어와야 신고가 되는데 왜 왔느냐’ 그런 거였다. 납치당하게 확실한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이 실종자를 찾아 나서기까지는 무려 1시간 가까이 걸렸고 그 사이 실종된 최 양은 두 세명의 20대 남성들에게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5시간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또,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늑장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성폭행 용의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사는 곳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검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3월 19일자 메인화면 『경찰 늑장대응

때문에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서울 모 경찰서는 사건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지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능장대응을 한 사실도 없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농림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라북도와 개발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1) 『새만금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7일자 A1면)
내 용 : 지난해 4월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마친 새만금 간척지 2공구에서는 지금도 방조제 보강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26일 2공구 현장에서는 대형 덤프트럭이 연방 바위를 쏟아내고 있고 준설선이 쉴 새 없이 모래를 뿌리고 있었다. 새만금 간척지 사업 중 지금 공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2공구에만 하루 500~600여 명이 투입된다. 바다를 막아 2만8300ha(1억2000만평, 여의도의 140배, 서울의 3분의 2, 싱가포르의 절반)에 달하는 새로운 땅을 만드는 대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년간 새만금 개발사업 발목을 잡아 왔던 '개발 대 보존'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고, 농림부와 전북도는 개발 밑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개발 주

도권 싸움에 먼저 목을 매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두바이 '팜아일랜드 프로젝트'는 모두 세계적인 규모의 바다 매립 공사다. 공사 규모나 투입된 노동력 등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강○○ ○○경제연구소 상무는 "새만금과 두바이의 차이를 만든 것은 오직 상상력의 빈곤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만금 개발계획은 농지 70%, 기타 용지 30%라는 '농지 70% 족쇄'에 묶여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당했다.

지난해 3월 16일 대법원이 기존안대로 사업을 재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족쇄에 자물쇠를 채운 꼴이었다.

기존 안이라는 것이 농지 중심 개발인데 이대로 하지 않으면 환경단체의 줄소송이 불 보듯 뻔하다. (후략)

(2) 『쌀 남아도는데 농업용지 70%라니...』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7일자 A5면)

내 용 : 새만금은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였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태우 후보가 호남표 공약이라는 '정치적 논리'로 제안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정치논리'는 지금도 새만금 개발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농업용지 중심 개발이라는)새만금 개발 계획' 시행을 승인한 대법원 판결

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당시 상황 속에서 탄생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대내외적 환경이 변했다”며 “특히 중국 경제 부상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는 만큼 과거 족쇄에 얽매이지 말고 이에 걸맞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정치의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새만금의 재발견’이다. (후략)

(3) 『새만금 활용 발상전환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 (2007년 3월 27일자 A6면)

내 용 : 정부가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 이용계획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용도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의 140배나 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지도를 바꿔놓을 만한 대규모 땅인 새만금 간척지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로서는 큰 자산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를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만금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간척지 면적 중 71.6%나 되는 땅을 논과 원예단지 등 농업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을 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쌀은 공급과잉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쌀 농사에 그토록 넓은 땅을 할애하는 것은 토지를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쌀시장 개방 확대로 앞으로 수입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더욱 그렇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27자 A01면 『새만금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제하의 기사에서 바다를 매립하는 네덜란드 두바이사업과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였고, 정부가 쌀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70%라는 족쇄에 묶여 아직 청사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

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새만금은 당초 농지목적으로 개발하였고 두바이는 도시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당초 목적상의 차이 외에, 새만금의 경우 상류지역에 만경강과 동진강을 끼고 매립이 아닌 방조제 축조를 통해서 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다를 직접 매립하여 토지를 확보하는 두바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담수호의 환경과 수질문제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두바이식의 전체 개발은 매우 위험합니다.

새만금사업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분야별 국내 최고의 5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20~30년 후의 새만금 미래에 대한 토지수요를 분석하고, 환경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 공급 가능성 등을 평가하였으며, 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농림부는 이들 연구기관에게 미리 용도별 비율을 제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에도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

니다. 특히,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제시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놓고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설에서는 “10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세부적인 용도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논조로 국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이 마치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잘못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부와 전북도는 소송과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과정 등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왔으며, 개발방식과 관련한 견해차에 대해서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소모적인 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취하 후 보도문

매일경제 : 『농림부 “새만금 두바이식 개발은 위

협”』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31일자 31면)

내 용 : 새만금을 동아시아의 두바이처럼 개발하는 주장에 대해 농림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은 당초 농지 목적으로 계획된 데 비해 두바이는 도시 상업용지로 개발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특히 새만금은 상류지역에 만경강과

동진강을 끼고 있는 데다 매립이 아닌 방조제 축조를 통해 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다를 직접 매립해 토지를 확보하는 두바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분야별 국내 최고 5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20~30년 후 토지수요를 분석해 만들어졌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

오성산 인근이 골프장 건설로 인해 수중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순천 (대표이사 정 ○ ○)

피신청인 : 전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3.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전남도민일보 : 『오성산 훼손 심각』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6일자 1면)

내 용 : 전남도내 대형 골프장 건설현장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파행 공사를 일삼아 주민 거주환경을 위협하는 한편 자연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주암면 오성산 자락 ○○리 산○○번지 일대 162만㎡(약 50만 평)에 조성되고 있는 ‘○○○○ 컨트리클럽’은 ○○건설이 지난 2004년 11월부터 총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36홀 규모로 오는 11월 께 오픈 예정으로 공사중이다.

○○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항 중 단계적 공사시행 약속이나 민원 우선처리 등 협의 사항을 무시한 채 무리한 시공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재해대책을 소홀히 해 소하천 생태는 물론이고 주변경관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

실제 골프장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2.77km의

행정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의 수중생물이 사라지고 없는 실정이다.

침사지와 침전조를 거치지 않은 흙탕물의 미립자가 물고기의 아가미 등 호흡기를 막아 질식사시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순천CC 건설관련 보도문

• 내 용 : 본신문은 지난 3월 26일자 1면 『오성산 훼손심각』 제하의 기사에서 ○○○○○컨트리클럽 공사현장에 침사지와 저류지가 설치되지 않아 수생식물이 사라지고 없는 실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현재 ○○○○○골프장 공사장에는 사업부지내 15개소, 사업부지외 2개소의 침사지 및 저류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하천의 수생식물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순천

대표이사 정 ○ ○

피신청인 : (주)전남도민일보

광주 북구 유동 33-33

대표이사 김 한 태

조정대리인 임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 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전남도민일보 1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순천 ○○리 골프장 건설...)활자 크기로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4월 30일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7. 4. 11.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6일자 1면『오성산 훼손 심각』 제하의 기사에서 ‘○○○ ○○컨트리클럽’ 건설 현장에 흙탕물 정화용 침사지와 저류지를 설치하지 않아 수중생물이 사라지고 없는 실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현재 ○○○○○○ 골프장 공사장에는 사업부지내 15개소, 사업부지외 2개소의 침사지 및 저류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여부를 놓고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안 ○ ○)

피신청인 : 대전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4.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대전투데이 : 『대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수정 요구』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일자 2면)

내 용 : 대전시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 및 획일화 된 아파트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도시재정비예정구역으로 202곳을 지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와중에 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설문조사가 ○○동 ○구역 주민들을 갈등관계로 몰아넣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동 ○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발송한 안내문.

“날조된 사실을 유포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몇몇 분들이 우리 ○○동 ○구역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비난 내용을 담은 이 안내문으로 주택재개발에 정구역으로 지정된 ○○동 ○구역의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를 넘어 갈등과 반목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구역은 지난해 8월 16일에 열린 주민선거에서 52.34%(234인/447인)의 찬성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 운영 중에 있다.(중략)

이에 추진위는 “정비업체 및 협력업체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매월 1,000만 원의 경비를 지출해 가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에 반대자 모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자신들의 심정을 밝히면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물론 추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반 협박성(?)방문에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동○구역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2일자 종합면에 『대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수정요구』 제하의 기사에서 “○○동 ○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동 ○구역 주민들을 갈등관계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 사업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만이 보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8월 16일 주민선거에서 52.34%(234인/447인)의 찬성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 운영 중에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확인결과 8월 16일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증을 발급받은 날이며, 52.34%는 추진위원회 설립신청 시 동의율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체 및 협력업체들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매월 1,0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해가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음을 강조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확인결과 현재 ○○동 ○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업체 및 협력업체가 아닌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어받고 있으며, 정비업체 및 협력업체로는 오히려 대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한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자신들의 심정을 밝히면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물론 추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반 협박성(?)방문에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확인결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려 한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반대하는 측만의 입장을 보도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7,615,200원

합의사항 (1)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4월 2일자 2면에 “대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수정요구”라는 제목으로 “○○동 ○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동 ○구역 주민들을 갈등관계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8월 16일 주민선거에서 52.34%(234인/447인)의 찬성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 운영 중에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8월 16일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증을 발급 받은 날이며, 52.34%는 추진위원회 설립신청 시 동의율이었습니다. 또한 “정비업체 및 협력업체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매월 1,000만 원의 경비를 지출해가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은 현재 ○○동 ○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가 아닌 우선 협상대상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어받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2)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4월 2일자 2면에 “대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수정요구”라는 제목의 기사 중 반대자 모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자신들의 심정을 밝히면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물론 추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반 협박성(?) 방문에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 측은 방문 시 주민들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설문조사차 방문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투데이 2007년 4월 13일자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3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중국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들여와 신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불법 복제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대량 유통』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4
일자 1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1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11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보도내용

문화일보 : 『중서 만든 ‘애니콜 짝퉁’ 국내 밀반입

피신청인 주장

〈2007서울조정119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 장례식장이 지방도로변에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해 영업해왔으며 경쟁업체를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장례식장 (주)○○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고성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5.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고성신문 : 『“○○○○병원 장례식장 영업폐쇄조치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30
일자 1면)

내 용 : 본지 391호(3월 21일자)11면 ‘○○ ○○
병원 장례식장’ 보도와 관련, ○○○○병원이 지난
3월 12일 창원지방법원에 항고해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여서 영업폐쇄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일반주거지 내의 영업행위가 제한돼 있
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도
록 시정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장례식장(회장 최○○)의 수차례 민원 제기
및 고발에 따라 이번 취재결과, 이같은 일반주거지
역내 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놓고 전국 병원이 법
령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략)

○○○○병원 측은 □□병원 장례식장은 지난 89
년 9월 설치되어 18년간 병원 부속시설 사용승인
을 받아 장례절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장례식
장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시군에 비해 고성군은 유독 현행 규
정만 놓고 단속만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국도는 물론 지방도로변에 △△장례식장
불법간판을 설치해 두고 영업하는 데도 아무런 단
속이나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
는 입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30일자 1면 『○○○○병원장례식장 영업폐쇄조치 아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장례식장(회장 최○○)이 국도는 물론 지방도로변에 불법간판을 설치해 두고 영업하는데도 행정관청이 아무런 단속이나 제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간판은 모두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최○○가 ○○○○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고성군에 수차례 민원 및 고발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외에 고발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30일자 1면 “○○○○병원장례식장 영업폐쇄조치 아니다” 제하의 기사

에서 △△장례식장(회장 최○○)이 국도는 물론 지방도로변에 불법간판을 설치해 두고 영업하는데도 행정관청이 아무런 단속이나 제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간판은 모두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최○○가 ○○○○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고성군에 수차례 민원 및 고발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외에 고발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고성신문 2007년 4월 20일자(395호) 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이견조정대상기사(2007년 3월 30일자)의 제목(“○○○○병원장례식장 영업폐쇄조치 아니다”)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고성신문 : 『△△장례식장 간판 적법 허가받아 설치』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0일자 1면)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추위로 웅크리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연합뉴스 : 『강풍에 체감기온 뚝 떨어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오후 서울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거세진 가운데 남영역 인근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잔뜩 웅크린 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연합뉴스는 지난 2007년 1월 30일자 사회면 『강

풍에 제감기는 뚝 떨어져』 제하의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추위에 웅크리고 있는 본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중재합의

양 당사자 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 <2007서울중재6 참고> □

신청인 경찰이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 측의 신고를 무시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2차 폭행사태를 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전 동부경찰서 (서장 오 은 수)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4월 7일 21:25)

내 용 : ▷앵커 : 대전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른 남녀학생 5명에게 끌려가 여관에 갇힌 채 사흘간이나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경찰이 신고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 기자입니다.

▷기자 : 남녀 고교생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고등학생입니다.

팔다리며 온 몸이 멍투성이고 안면은 통통 부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돕니다.

친구소개로 알게 3된 10대 5명에 의해 여관에 갇힌 채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집단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이모 군은 지난 주에 이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저지를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피해자 : “제가 한번 맞았었거든요. 개네들한테. 그런데 제가 그걸 신고했어요. 그런데 신고했다고 보복하려고...”

▷기자 : 이 군이 갇혔던 여관입니다. 방안과 욕실에 술병이 나 뒹굴고 있고 수건과 이불에 유혈이 남자합니다.

이 군의 부모는 경찰에 20차례 넘게 납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부모 : “애가 감금돼서 맞고 있는게 확실하니까. 가자. 납치된 거라고 해도 그걸 안믿더라고요.”

경찰은 뒤늦게나마 가해학생들을 붙잡았지만 이 군은 악몽 같은 사흘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4월 10일 21:25)

내 용 : ▷앵커 : 어제 대전의 한 고등학생이 여관에 갇혀 사흘동안 집단폭행당한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학생은 지난달 28일에도 집단폭행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기자 : 김 군은 지난달 30일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직접 찾아가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군이 가해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 “피해자가 때린 용의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이야기했더라면 바로 검거해 2차 피해가 없었을 텐데.”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7일 「뉴스9」 시간에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에 20차례 넘게 납치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이 무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대전동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피해 학생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면서 그 아버지와 20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사사항을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경찰이 20차례의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묵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지난 4월 8일 「뉴스9」 시간에 경찰이 피해자가 가해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폭행을 불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피해 학생이 1차 폭행을 가했던 피의자들의 인적사항과 장소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허위로 진술하여 피의자 검거가 어려웠고, 수사에 지연을 초래하였던 것이지 대전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7년 4월 24일 07:08)

내 용 : ▷앵커 :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지난 5일부터 사흘동안 여관에 갇혀 같은 고등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이모 군.

불과 일주일 전에도 폭행을 당한 이 군은 부모 손에 이끌려 경찰서를 찾았지만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들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부모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수색, 주변 인물 및 통신수사 등 최대한 성실히 수사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겨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학교 폭력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혼선을 빚었고, 이 군에겐 2차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폭력이 잇따르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피해 학생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군처럼 신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최근 학교 폭력 피해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45.2%가 폭행을 당해도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도움이 안되서'와 '믿어주지 않아서' 그리고 '보복당할까봐'가 80%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피해자 : "(피해를 당했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요?) 무서우니까. 어차피 소문타고 도는데...크게 보호 안해주니까."

▷경찰 : "아이들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학교 선생님에게 보호를 요청해야..."

거듭되는 학교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다 진지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이 과거 성인영화배우였다는 사실을 방송 중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Mnet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1.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보도내용

Mnet :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2」 프로그램 (2007년 3월 22일 18:00)

내 용 : ▷신청인 : 감독님 어땠어요? 감독님? 감독님과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갑자기 나한테 한 말이 있어.

(이후 10분여 동안 신청인이 과거 배우 생활에 대한 것이 화제가 되어 방송에 나감)

▷스텝 : 형이 어떻게 알어?

▷카메라 감독 : 개 내가 갖다 썼자너

▷스텝 : 형이 찍었어?

▷카메라 감독 : 그래

▷스텝 : 긴가민가 한거 아니야?

▷카메라 감독 : 아니야 맞아

▷스텝(남자 출연자에게) : 이○○ 씨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다고 하는데.

▷스텝(남자 출연자에게) : 거기 출연자들 중에 예로배우 였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카메라 감독 : 인터넷되나? 인터넷? 인터넷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이후 인터넷으로 신청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나감)

▷남자출연자(홍○○) : 근데 이름을 바꾸셨다고 하셨죠?

▷신청인 : 네

▷홍○○ : 네...이□□이요

▷홍○○ : 아, 혹시 타투이스트 준비하기전에는 뭐 했어요?

▷신청인 :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홍○○ : 혹시 배우 같은 일은 안했어요?

▷신청인 : 뭐요? 사진촬영 같은 거는 했죠.

▷홍○○ : 저에게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거짓은 없죠?

▷신청인 : 그냥 여러 가지 한 적은 많았죠. 독립영화도 찍었었고

▷홍○○ : 그럼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름 바꾸

기 전에 이름이 이△△ 아니었어요?

▷신청인 : 그런 건 지금 여기서 좀...

▷홍○○ : 그럼 이△△ 이름이 맞았어요?

▷신청인 : 네

▷홍○○ : 그럼 저에게 왜 이□□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여기 나와서 꽤많은 분 만나서 잘해보고 싶은데 저는...

▷신청인 :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홍○○ :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이후 탈락버튼 누름)

▷홍○○(속마음) :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편견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다른 일은 할 수 있었을텐데 굳이 그런 일을 했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net은 지난 3월 22일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2」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과거 성인배우로 활동했던 사실을 신청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 및 신청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사생활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므로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중재합의

• 양 당사자 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 <2007서울중재5 참조> ☐

신청인 회사가 행정자치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도로명 주소 개선안’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위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향신문 : 『대안묵살...번지수 못 찾은 '1,650억 사업'』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5일자 11면)

내 용 : (전략)

2001년 행자부가 도로명 주소 방식의 편의성을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소에 동 이름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이 26%, ‘길 이름이 너무 많아 찾기 어렵다’ 23.7%, ‘건물번호가 연속적이지 않아 혼란스럽다’ 12.4%였다.

행자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 ‘도로명 주소 체계 및 시설물 개선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했다. 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은 묵살됐다.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행자부는 새로운 안에 대해 검증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10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중략)

추진중인 도로명 주소 체계와 ○○○○연구소(소장 위○○)가 4일 공개한 ‘도로명 주소 개선안’을 비교해보면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연구소는 지난해 행자부 용역을 받아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정책화되지 못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5일자 11면 『대안 묵살… 번지수 못찾은 ‘1650억 사업’』 제하의 기사에서 “추진 중인 도로명 주소 체계와 ○○○○연구소(소장 위○○)가 4일 공개한 ‘도로명 주소 개선안’을 비교해 보면…”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 연구소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최종개선안을 공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7일자 2면)

내 용 :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향신문 4월5일자 11면 ‘대안묵살…번지수 못찾은 650억 사업’ 기사에서 ‘도로명 주소 개선안’은 ○○○○연구소가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한 것임을 밝힙니다. □

청와대의 지나친 군 인사 개입으로 검증과정이 지연돼 군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문 재 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4월의 군 인사를 주시하는 이유』 제하의 시론 (2007년 3월 15일자 A35면)

내 용 : (전략)

일단 심사 대상자가 되면 그간의 군 복무 기록만 이 아니라 개인적 성향이나 사생활의 미세한 부분 까지도 정밀 검토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아무

리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탈락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이라는 형식으로 청와대가 지나치게 군 인사에 개입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바 있다. (중략)

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견제 및 여과 장치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 사생활뿐만 아니라 성향까지 검토하게 되고 이것이 인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더구나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검증과정에 늘어지면서 군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군 전체가 인사문제로 심한 혼돈 속에 빠져드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군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효과보다는 위험성이 크다. 중첩

된 검증절차는 행정을 무겁게 할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15일자 A35면 『4월의 군 인사를 주시하는 이유』 제하의 시론에서 4월에 있을 군단장급을 포함한 군 고위 장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이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이라는 형식으로 청와대가 지나치게 군 인사에 개입하고 있어 우려스러우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 자질, 사생활, 성향까지 검토되어 인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검증과정이 늘어지면서 군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군 전체가 인사문제로 심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 행

사의 일환으로서 엄격한 내부기준에 의하여 임대 소득세 탈루,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 취득 등 부도덕한 사유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하였을 뿐, 개인의 정치 성향을 이유로 각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배제하거나 부적절한 인사개입을 한 사실은 없으며, 군 인사절차는 청와대의 검증기간까지 포함하여 각 군에서 미리 계획한 진급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후임자가 발령받기 전까지는 현재 지휘관이 부대를 장악하는 것이므로, 군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거나 혼돈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조선일보를 읽고-개입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이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9일자 A33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시 교부금에 대해 정산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그 중 일부를 목적 외로 유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 ○○

피신청인 : 광주투데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광주투데이 : 『장애인 재활작업장 초기자금 일부 유용 흔적 포착』 제하의 시론 (2007년 4월 2일자)

내 용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읍 □□리 ○○번지 일원에 건립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지난해 7월 운영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다.

더욱이 그동안 ○○시가 이 작업장에 초기자금으로 지원한 교부금 1억 4천만 원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교부금 중 일부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일부가 유용되고 있음에도 시는 현재까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중략)

그러나, 본지가 앞서 취재 보도한 (2005년 6월8일자 “수억 들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6개월째 방치”) 기사대로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꼭꼭 닫힌 상태였다. 시는 보도가 나간 이후 작업장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으며, 2005년 7월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시지회(지회장 김○○)를 수탁자로 선정해 3년간 이 작업장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시로부터 수탁을 받은 지체장애인협회○○지회는 수탁받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작업장 문을 열지 못했다. (중략)

당초 ○○시는 1억 4천만 원을 교부해주면서 교부조건을 붙였다. 본지가 입수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초기운영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서 교부조건 5번 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시장에인재활자립작업장 위. 수탁운영협약서 제9조에 의거, 사업보조금 및 운영 보조금을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범위 이외에 사용한 항목은 보조금 정산시 시장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식비, 대표자직책수당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략)

현재 본지가 입수한 재활작업장운영비 회계장부에 의하면, 그동안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징원된 1억 4천만 원은 한모 사장(당시 김 전지체장애인협회장은 본인이 이끌어가고 있는 지체협회로 수탁을 받은 본 작업장을 한모 씨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시장에인자립사업장이란 법인을 설립했다. 2005년 12월 15일 설립)을 비롯한 종업원 인건비와 김 전지체장애인회장에게 업무추진비란 명목으로 1백만 원이 지출되는 등 매월 업무추진비가 1백만 원씩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모 사장의 출장유류비, 화물1톤차량(한모 사장이 본인자금으로 구입한 차로 일부 장애인들은 알고 있다고 함) 할부금 및 보험료, 키우고 있는 개에 대한 사료비 및 병원비, 각종 부식비, 김모 씨 생일케익, 이사회 명목 회식비, 누구에게 했는지 모를 추석 접대비 등등 많은 부분들이 교부금 본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1억 4천만 원이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일부 개인들에게 유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사정이 이러한 데 ○○시는 1차로 교부한 7천여만 원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초 ○○시는 1차 교부금에 대한 정산차원으로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에 김 ○○ 전 지회장은 장애인들 일부와 함께 시위를 벌여 점검이 중도하차했다고 함...공무원알) 2차분까지 지급하였으며, 4월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 문은 닫혀 있는데 그동안 들어간 교부금에 대한 정산을 현재 ○○시지체장애인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 회장등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독려하고 있을 뿐 앞서 1억 4천만 원을 사용한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할 뿐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2일자 『장애인재활작업장 초기자금 일부 유용 흔적 포착』 제하의 기사에서 “○○시로부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수탁 받은 지체장애인협회 ○○지회가 수탁받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작업장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가 ○○시로부터 초기자금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을 시작했지만 8개월 만인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보도하고 “○○시가 이 작업장에 초기자금으로 지원한 교부금 1억 4천만 원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지 못했고 교부금 중 일부가 업무추진비와 기타 경비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목적 외 사용되는 등 일부가 유용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시가 1차로 교부한 7천여만 원에 대한 정산 차원에서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던 중 김모 전 지회장이 장애인들과 시위를 벌여 점검을 중도하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탁받은 후 1년 동안 작업장이 운영되지 못한 것은 기계설비 납품업자와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으며 운영 8개월 만에 다시 가동이 중지됐다는 보도는 수탁단체의 지회장 교체 과정 중에 잠시 작업장이 운영되지 않은 것일 뿐 현재는 정상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교부금 중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것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이며 보도에서 언급한 출장유류비, 각종 부식비, 개 사료비 및 병원비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집행됐거나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교부금 일부가 목적 외로 유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교부금 정산보고서는 이미 ○○시에 제출되었으나 제출자가 지체장애인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1차 교부금에 대한 정산을 위해 작업장 점검 도중 김모 전 지회장이 시위를 벌여 점검이 중단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비만치료제 처방 실태를 보도하면서 부작용과 무관한 신청인 병원 내·외부를 무단 촬영·방송하고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우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2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4월 7일 21:00)

내 용 : ▷앵커 : 일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살빼는 약에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들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식욕억제 효과가 있다는 약은 모두 모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략)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비만클리닉. 의사는 비만약을 처방해 주면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합니다.

▷○○○ 의원 원장 : 비만한 게 병이지 약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기자 : 그런데 처방전을 분석해 보니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는 간질환자의 발작을 막는 간질약, 항전간제까지, 식욕억제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알려진 약은 모두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간질약을 쓰다가 부작용으로 급성 녹내장에 걸린 사례를 아느냐고 묻자, 의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의원 원장 :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

▷○○○ 의원 원장 : 환자한테 끌려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얼마동안 몇 킬로를 줄여달라고 하시는데 (후략)

내 용 : (전략) ▷기자 : 취재진은 다른 병원에서도 간질약을 비만 치료제로 처방을 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뚱뚱한 체형의 연기자와 함께 서울시내에 있는 10군데의 비만클리닉을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봤습니다.

이 중 두 곳의 처방전에 항전간제인 토피라메이트 성분, 즉 간질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질약을 처방한 강남의 한 비만클리닉, 임 씨의 사례를 들려주자 녹내장 같은 부작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 의원 원장 : “모든 약은 그런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 (중략)

▷기자 : (중략)

서울 강남의 한 비만 클리닉입니다.

원래는 가정의학과 병원인데 비만클리닉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젠 아예 비만환자만 받고 있습니다. 비만 내부는 비만학회 수료증, 방송출연 자료, 비만 요법 사진 등 온통 비만 관련 광고로 가득 합니다.

항우울제와 감기약, 간질치료제 등 5가지 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한 의사에게 부작용은 없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 의원 원장 : “오히려 비만한 게 병이지, 약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은 전혀 염려가 없고요.” (중략)

▷○○○ 의원 원장 : 왜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하느냐 그러는데 아무래도 효과 면인 것 같아요. 효과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든 환자를 또 계속 오시게 하고 해야지 효과를 많이 줘야 하지만... 그렇잖아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7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 「뉴스후」 프로그램 (2007년 4월 7일 20:50)

『알고 보니 간질약』 제하의 보도 및 동일 「뉴스 후」 프로그램 『병주고 약주고』 제하의 보도에서 ‘일부 비만클리닉이 처방하는 살 빼는 약에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들어있으며 조금이라도 식욕억제 효과가 있다는 약은 모두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며 특정 비만클리닉의 내·외부전경을 동의없이 반복해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처방된 약들은 모두 비만 치료 약효가 입증되어 사용되는 약물이며 간질약으로 소개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토파맥스 역시 비만치료제로도 처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급성녹내장은 토파맥스의 부작용 중 흔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방송에서 언급된 부작용 등은 특정 비만클리닉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우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임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직권조정결정문을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MBC-TV 〈뉴스후〉 프로그램에 〈별지〉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 및 본문은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2. 피신청인은 직권조정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www.imbc.com〉 사이트 중 〈뉴스데스크〉, 〈뉴스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의 동영상에서 신청인 및 그 병원의 영상을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조정대상 기사의 동영상의 삭제를 각 포털사이트에 요청한다.

3.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방송하고 동영상의 해당 부분을 삭제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4월 7일 「약주고 병주고」 제하의 방송과 관련하여 강남 소재 비만클리닉 의사는 간질약 토파맥스가 비만치료 효과가 있고, 방송의 토파맥스 관련 녹내장 부작용은 해당 의원과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

사건 제보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3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3월 29일 21:00)

내 용 : ▷앵커 :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 그 돈은 한 해에 2조 원이 넘습니다. 정말 힘이 드는 귀중한 돈인데 서류를 조작해서 이 아까운 국민세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지원센터 앞.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한 남성이 차로 다가가더니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서류를 넘겨 받습니다. 이 남성은 고용지원센터를 들어갔다 나온 뒤, 차에 탄 사람에게 다시 서류를 건넵니다.

이 남성은 가짜 실업자입니다. 조작된 서류로 실업급여를 받고 나온 겁니다. 경찰과 함께 승용차를 따라 갔습니다. 경찰이 덮쳤습니다. (중략)

▷김모 씨(가짜 실업자) : 서류가 간단하기 때문에 신분증 복사하는 거고 우체국 가서 통장 개설하는 거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해 줬어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3월 29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세금이 새고 있다”...국고 축내는 ‘나이롱’ 실업자』 제하의 보도에서 회사와 브로커가 짜고 350여 명의 가짜 실업자를 끌어들이 10억 원이 넘는 국고를 빼돌리는 현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MBC-TV는 이 사건의 제보자인 신청인이 브로커와 만나는 모습 일부와 인터뷰 음성을 모자이크처리나 음성변조처리 없이 그대로 방영해 초상권 및 음성권을 심각히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를 소홀히 해 신청인이 누군가로부터 위협까지 받는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인격권 및 비밀보장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므로 4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한·미 FTA 기밀문건 유출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3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재 천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FTA 문건 유출자’ 반드시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19일자 A34면)

내 용 : 국가정보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밀문건 유출경위를 조사한 결과 일부 언론에 새나간 문건이 국회 FTA 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재천 의원에게 배포했던 자료 복사본과 같은 것이었다. 문제의 복사본에 최 의원 자료임을 확인시키는 글

씨가 있었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한·미 FTA 문건 유출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9일자 사설면에 『FTA 문건 유출자 반드시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정보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밀문건 유출경위를 조사한 결과 일부 언론에 새나간 문건이 국회 FTA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재천 의원에게 배포됐던 자료 복사본과 같은 것이었다. 문제의 복사본에 최 의원 자료임을 확인시키는 글씨가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미 FTA 유출문건에 최 의원 자료임을 확인시키는 글씨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한·미 FTA 문건 유출과 최재

천 의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월 19일자 A34면에 『FTA 문건 유출자 반드시 책임 물어야』 제하의 사실과 관련하여 ‘최재천 의원은 한·미 FTA 유출문건에 최 의원 자료임을 확인시키는 글씨가 있었다’는 것은 국회 대외비문서 조사결과와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아일보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여 2007년 4월 27일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한·미 FTA 기밀문건 유출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재 천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FTA 유출문건 필적 최재천 의원 비서관과 일부 일치”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8일자 A4면)

내 용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외 비문서 유출사건’과 관련, 유출문건의 사본에 남은 글씨가 최재천 의원의 정모 비서관의 필적과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문건에 남은 스테이플러(철심) 자국 등이 최 의원에게 배포된 문건과 같다는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필적마저 보좌진

의 것과 일부 일치함에 따라 문건은 최 의원으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미 FTA 문건 유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8일자 경제/금융면에 『한·미 FTA 유출문건 필적 최재천 의원 비서관과 일부일치』라는 제목으로 “유출문건에 남은 스테이플러(철심) 자국 등이 최 의원에게 배포된 문건과 같다는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필적마저 보좌진의 것과 일부 일치함에 따라 문건은 최 의원으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미 FTA 유출문건의 필적은 최재천 의원의 보좌진의 것이 아니었고 최 의원은 한·미 FTA 문건 유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소속 지역구 토지의 개발특혜 밀약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2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병 국

피신청인 : 평화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6.

처리결과 : 취 하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손배)

보도내용

평화일보 : 『친분 얽힌 ‘특혜’ 가능할까?』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3일자 1면)

내 용 : ○○군 ○○읍내의 노른자의 땅으로 지목되고 있는 ○○리 일대 2만여 평의 토지가 중과세 시행 직전인 2006년 12월 28일 C개발주식회사가 전격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있다. 이 토지는 그동안 대기업들과 시행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군 당국에 수차례 타당성여부를 타진했던 토지이며 개발허가를 신청했으나 번번히 불가처분을 받은 토지였다.

2만여 평에 달하는 이 토지는 ○○군의 유일한 준공업지역으로 한나라당 소속 A 군수후보와 지역구국회의원 B모 씨와 막연한 사이로 알려진 C호텔회장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군수 당선 후 개발 특혜 밀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씨의 경우 정 의원과 K대학 정책 대학원 동기이자 친구이며 한나라당 군수후보와 절친하다고 알려진 C(주)개발회사에 사전 특혜를 주기 위한 고리가 아니냐며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군 유일의 준공업지역 국회의원과 군수후보와 친분 내세워 아파트 건립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3일자 1면 『친분 얽힌 ‘특혜’ 가능할까?』제하의 기사에서 ○○군 □□리 일대 토지 매입과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 군수후보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막연한 사이로 알려진 C 씨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군수 당선 후 개발 특혜 밀약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본지는 C 씨가 정병국 의원과 K대학 정책 대학원 동기이자 친구이며 한나라당 군수 후보와 절친하다고 알려진 C(주)개발회사에 사전 특혜를 주기 위한 고리라는 식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군 □□리 일대 토지매입은 정병국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군수후보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관련법규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평화일보 : 『“○○군 유일의 준공업지역 국회의원과 군수후보 친분 내세워 아파트 건립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9일자 1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이미 게재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

신청인이 마을 하천 수문 앞에 수천 그루의 묘목을 심어 인근 마을의 침수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J-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J-T V : 「모닝와이드 전복」 프로그램 (2007년 4월 11일 07:19)

내 용 : ▷앵커 : 해마다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가올 장마철이 벌써부터 걱정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이어지는 수문 앞에 심어 놓은 나무 때문이라는데요, 김○○ 기자가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 ○○천과 □□천으로 둘러싸인 ○○동 ○○마을, 지난 2천 5년 여름,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는 등, 해마다 침수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 여름이 더 걱정입니다.

마을 부근 하천으로 이어지는 수문 앞 넓은 땅에 땅주인이 수천 그루가 넘는 묘목을 심어놔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심어 놓은 나무가 수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길을 막으면서, 마을이 쉽게 침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 느티나무를 심어 왔으니 입이 무성해지면, 물길이 막혀 비가 조금 내려도 마을은 물에 잠기죠. (중략)

▷기자 : ○○시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우려하면서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뽕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철 건조기인 요즘, 때아닌 침수피해 걱정에 마을주민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11일 「모닝와이드 전복」 프로그램 『침수피해 우려』 제하의 보도에서 “○○동 ○○마을 부근 하천 수문 앞 넓은 땅에 땅주인이 수천 그루가 넘는 묘목을 심어 마을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본래 이 마을은 침수피해 발생이 많았으며 이 마을에 침수가 잦은 것은 비가 많이 올 경우 ○○천 수위가 높아져 물이 역류한 상태에서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인근 주민들이 수 차에 걸쳐 ○○시에 배수펌프 설치를 요청

했으나 아직까지 ○○시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문 앞에 심어 놓은 묘목과 침수피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J-T V : 「모닝와이드 전복」 프로그램 (2007년 4월 30일 07:19)

내 용 : ▷앵커 : 30여 년째, 침수피해를 입어왔던 마을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기잡니다.

▷기자 : □□천과 ○○천이 합류되는 ○○시 ○○동 일대, 장마철만 되면,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침수되는 크고 작은 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주민 : 백밀리만 와도 마을이 온통 물바다가 되니 불안하지...

▷기자 : 실제로 지난 2005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논과 주택이 완전히 물에 잠겨,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을이 하천보다 지대가 낮은 탓에 비가 내리면 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침수 대책을 ○○시에 요구했지만, 30여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원 : 담당부서가 없이 서로가 미루면서 배수펌프시설이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기자 : 이에 대해 ○○시는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건교부에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무원 : 재난안전관리과 사업비 96억 원을 건교부 중앙하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요청해놓고...

▷기자 : 하지만, ○○지방국토관리청은 처리해야 할 사업이 많이 밀려 있어, 당장은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주민들은 이번 장마철에도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금품상납과 편파판정 등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 ○ 외 39인

피신청인 : MB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6.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N : 「송지현의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7년 4월 13일 10:00)

내 용 : ▷송지현 앵커 : 편파판정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품상납 관행처럼 뿌리박힌 비리의혹까지 겹치면서 이 파문이 더욱 확산 되고 있는데요. 취재한 이○○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략)

▷이○○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한체조협회는 지난 리듬체조 국가대표선발전의 판정 의혹과 오랜 내부 비리가 밖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중략)

▷이○○ 기자 : 네, 지난 3월 24일 ○○고등학교에서 열린 국가대표선발전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중학생 시절 전국 6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촉망받는 유망주인데요, 첫 종목인 줄에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중략)

▷송지현 앵커 :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후프연기...

▷이○○ 기자 : 예, 지금 후프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프연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연기가 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심판들도 이○○ 선수와 후프와 곤봉, 리본에서는 제 기량을 발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기자 : 이에 이 선수의 코치와 학부모들은 5위로 탈락한 성적이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mbn이 취재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략)

▷이○○ 기자 : 문제는 양 측 외에 선발전에 참

여한 일부심판들 사이에서도 석연치 않은 판정이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MBN이 접촉한 몇몇 심판들은 자신이 심판 당시 내렸던 점수와 최종점수가 너무 틀리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중략)

▷심판 :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을 봤어요. 다른 종목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선수가 잘했어요. 나중에 보고 그 점수가 나왔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너무나도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송지현 앵커 : 여러 명의 심판이 봤다 해도 공정성에 지금 의문이 있다라고 심판이 직접 제기를 하시네요. 문제를...(중략)

▷송지현 앵커 : 그런데 지금 공방이 양 쪽에서 치열한데, 금품관행이라는 것이 대표선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이○○ 선수의 코치와 △△고의 다른 한 코치가 진정서를 투서했는데, 두 코치가 보낸 진정서에는 당시 체조협회의 부회장과 기술위원장 등 간부 4명의 비리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략)

▷송지현 앵커 : 이제 보도가 나간 뒤에 지금 전화가 많이 왔다면서요?

▷이○○ 기자 : 예, 이게 바로 그 진정서입니다. 어제 보도가 나간 뒤 ○○대 출신 선수들에게서 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체육계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엄격하기 때문인지 제자를 잘못 두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체육계에선 돈을 받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송지현 앵커 : 말 그대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크게 상처를 받는 꼴인데요, 금품 상납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 기자 : 예, 진정서에 따르면 S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S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리듬체조 선수들의 학부모들은 매년 6차 레이싱 S대 이모 교수의 연구실로 찾아갔는데요,

학부모들에게 확인한 결과 진정서 내용과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송지현 앵커 : 어...학부모 말씀 들어보지요

▷김○○ : S대 출신 코치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 학부형들은요 전부 다들 명절때나 또 뭐 그 외의 기타 등등의 날에 뭐 이상한 약간 특이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엄마들이 인자 팀별로 어... 한 명당 10만원 씩 해 갖고 한 팀별로 들어가서 봉투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지현 앵커 : 예...

▷이○○ 기자 : 예, 이 외에도 대학에서 리듬체조 발표회가 있을 때면 의상비와 기부금 티켓 판매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했다고 진정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금품상납이 관행처럼 뿌리 박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니다. (중략)

▷이○○ 기자 : 이런 금품 비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이 리듬체조계를 독식하고 있는 특정 대학과 그 산하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독주형태가 빚은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중략)

▷이○○ 기자 : 네, MBN의 취재가 시작된 뒤에 어찌된 일인지 한 선수가 개인대표를 이제 포기를 해서 이○○ 선수는 이제 대표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송지현 앵커 : 아... 한 선수가 포기함으로써 그 자리가 남았던 말이지요?

▷이○○ 기자 : 예, 그 선수의 포기과정도 지금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송지현 앵커 : 그러게요. 왜 또 포기를 해...

▷이○○ 기자 : 이 선수 측의 연락이 온 바에 따르면, 협회 측에서 개인과 단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먼저 이 사태 파문을 진정시키기 위

하여 제의를 했다고 했고(중략)

▷김○○ : 비디오 재판독을 해서 저는 그 점수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송지현 앵커 : 예...

▷이○○ 기자 : 예, 지금 mbn 취재진에서는 그 이미 추가 자료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협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후속 취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13일 「송지현의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지난 3월 열렸던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을 둘러싸고 편파판정 및 금품상납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고 리듬체조계에 금품상납이 관행처럼 존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대한체조협회의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공정하게 치러졌으며 금품상납 관행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국가대표선발전에 참여했던 심판 등 관련자의 증언을 녹취, 사실보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들이 소속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비리척결 대회를 취재하면서 신청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3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4인

피신청인 : 대자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대자보 : 『○○회관, 이번에는 수영장 건축 논란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6일자 사

회면)

내 용 : (사진설명)▲취재 중이던 기자의 카메라를 향해 한창 결의대회 참가자들을 채증하던 ○○회관 직원인 사회복지사들이 포즈(?)를 취해주고 있다.

(전략)

동원되어 나온 ○○회관 측의 사회복지사들은 기껏해야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는 20대 초중반의 얼굴들이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치상황 속에서 웃으며 잠담하는 그들을 지켜보며 한국사회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쓸쓸한 취재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대자보는 지난 4월 16일자 『○○회관, 이번에는 수영장 건축 논란 불거져』 제하의 기사에서 집회 자료 채증을 하고 있던 신청인들의 모습을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을 촬영해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초상권 및 명예를 심각하

게 훼손당했으므로 이에 각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7년 5월 31일까지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들의 사진 및 기사 말미(“동원되어 나온 ○○회관 측의 사회복지사들은...”이하)부분을 삭제한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취재기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본인 또는 기자가 신청인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유괴 사건 범인의 거주지 주변을 취재하면서 신청인의 음성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등을 동의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3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7.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그 중 1억 1천만 원은 집을 살 때 얻은 용자였다.

이 아파트는 시세가 어떻게 돼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여기 33평 아파트 호가는 지금 2억 8천에서 3억 선 나오고 있어요. 빛이 만약 1억 3천이라고 그러면 집을 팔아서 값이면 되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월세 사는 사람들도 그런 것 안 하는데 (후략)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7년 4월 10일 23:10)

내 용 : (전략)

▷PD : 경찰은 이 씨가 빛 때문에 ○○이를 유괴했다고 발표했다. 등기부상이 빛은 1억 4천만 원,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 는 지난 4월 10일 「PD수첩」 프로그램 『긴급보고 비열한 범죄 유괴 근절의 조건2』 제하의 보도에서 최근 발생한 유괴 살해사건의 범인이 살던 아파트 주변을 취재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와 인터뷰한 내용과 사무실

전경, 음성 등을 무단으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초상권 및 명예를 크게 침해당했으므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3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송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2007년 5월 9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의 지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

신청인 조합 모 지부가 조합원들에게 자동차보험 계약만기일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3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개인○○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개인택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개인택시신문 : 『○○조합공제지부 어째 이런 일이?』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5일자 1면)

내 용 : ○○ 개인○○ 공제지부에서 자동차보험 갱신통지문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 31일 보험 만기일이었지만 ○○시 조합원(경남 13바 28×호)은 만기일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만기일이 지나고 ○○공제지부에서는 조합원 집으로 전화 연락을 하였지만 낮엔 연결이 되지 않던 차에 2월 2일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중략)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고객확보를 위해 미리 만기일을 알려주고 있으며 고객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리 공제지부에서는 만기일을 따로 알려주지 않고 그것도 등기우편물이 아닌 일반우편물로 재가입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는 걸로 대신하는 너무나 성의 없는 조합원을 무시하는 업무처리로 결국 이런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

조합원을 위해 설립한 공제지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신을 키우는 공제지부는 업무태만이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25일자 1면 『○○조합 공제지부 어째 이런 일이?』 제하의 기사에서 “공제조합이 계약 만료되는 조합원에게 만기일을 따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만기일이 지나고 ○○공제지부에서 조합원 집으로 연락하였지만 낮에 연결이 되지 않던 차에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우리 공제지부

에서는 만기일을 따로 알려 주지 않고 그것도 등기우편물이 아닌 일반우편물로 재가입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는 결로 대신하는 너무나 성의 없는 조합원을 무시하는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게하였다며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신을 키우는 공제지부는 업무태만이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다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공제조합 ○○지부에서는 조합원을 무시하는 업무처리를 하였다거나 불신을 키우는 등의 업무를 태만히 사실이 없으며, 조합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조합원에게 보험계약 만기일 30일 전 만료예고, 만기일 10일 전 갱신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고, 만기일 전날 조합원의 핸드폰으로 통화 시도, 만기일 당일 조합원의 핸드폰 통화 시도 및 자택에 전화 통화, 위 조합원이 속한 ○○시 개인택시 지부에 유선연락을 취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조합 공제지부’ 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
- 내 용 : 지난 2월 25일자(제63호) 『○○조합 공제지부 어째 이런 일이?』 제목의 기사에서 ‘○○

시 모 조합원이 ○○ 개인○○ 공제지부의 업무태만으로 자동차보험 갱신 통지문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남 공제지부는 문제된 조합원의 보험계약과 관련, 계약 만기일 30일 전에 보험만료를 예고했고 10일 전에 갱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만기 전 날과 만기 당일에도 조합원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해당 조합원이 속한 ○○시 ○○○○지부에도 전화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보험만기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경남 공제지부는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계약만료와 갱신안내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반송우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까지 마련해 처리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 5. 10. 이전 개인택시신문 67호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조합 공제지부 어째 이런 일이?’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개인택시신문 : 『‘○○조합 공제여부’ 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5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공금을 유용했으며, 조합장 선거 규정을 부당하게 개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경기도민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기도민일보 : 『○○운수노동조합 ‘공금유용’ 의

혹』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2일자 1면)

내 용 : □□ ○○운수노동조합장이 수년간 직원 퇴직금 등 수백만 원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익명을 요구한 ○○운수노동조합원 L 씨는 “지난 8년간 적립된 사무장(여직원)의 퇴직금 800여만 원중 260여만 원의 공금을 최모 조합장이 개인차량 유지비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중순에는 일부 조합원이 회계장부를 열람하면서 회계장부에 기재된 지출부분도 영수증 처리가 맞지 않는 부분을 여러 곳 발견했다며 공금처리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아울러 밝혔다.

L 씨는 “지난해 최 조합장의 차량유지비 700만 원 중 어느 한달의 지출부분이 86만 원이었는데 영수증 첨부는 16만 원밖에 없었다”며, 이는 최 조합장이 노동조합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 N 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조합장은 이를 차일피일 미뤘으며, 결국 조합사무실에서 2시간 기다린 끝에 사무장의 허락으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 (중략)

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직선제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했지만 그 동안 회계처리 과정이 불분명하다며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직선제로 할 경우 당선될 확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최 조합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2일 직선제를 간선제로 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전격 개정, 공포했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12일자 1면 『○○운수노동조합 ‘공금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운수노동조합장이 여직원 퇴직금을 개인차량유지비로 유용” 했으며 “공금처리과정에 의혹이 있고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 제기를 우려해

최모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격 개정·공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여직원 퇴직금은 해당 직원의 중간 정산 요구가 있어 일부는 정산해주고 잔여금액은 조합공금 통장에 예치해 운영비로 사용한 것임이 확인됐으며 회계장부 부실처리 및 차량유지비 유용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합장 선거 간선제 전환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7년 4월 12일자에 1면 『○○운수노동조합 ‘공금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 ○○운수노동조합은 퇴직적립금 잔액 8,056,272원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여직원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2,485,840원을 조합비 공금 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였고, 10월 6일 제6차 상집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퇴직금 잔액 중 28만 원은 의무금에, 200만 원은 차량유지비에 전용할 것을 승인받아 집행하고 나머지는 공금 통장 잔액으로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 항목 지출과 관련, 86만 원이 지출된 달은 없으며 조합장 차량유지비는 지정된 주유소의 외상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16일자 본사 홈페이지 상에 “영수증 없이 하계휴양비 처리”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동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도민일보 2007년 4월 27일 1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퇴직금 등 수백만 원...“조합장이 개인차량유지비로 사용”)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함께 한다.

경기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7일자 1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 감정원이 일정한 기준없이 엉터리 감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3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7년 2월 20일
23:05)

내 용 : (전략)

▷김○○(피디수첩 PD) : 과연 박 씨가 결혼한 후 다이아몬드 가격은 3분의 1가격으로 떨어진 것일까. 조사한 결과 지난 7년간 국내 다이아몬드 시세는 약 10퍼센트 떨어졌고 국제시세는 오히려 완만하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당초 □□감정원은 G칼라, 클래리티 VVS1, 그리고 GOOD컷팅이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에서는 최고급 다이아몬드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이 다이아몬드가 이 등급인지 비교적 지명도가 큰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먼저 칼라 등급입니다. △△ 감정원은 두 단계 떨어진 I칼라로, ○○감정원은 무려 여섯 단계나 떨어진 M칼라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즉 하자의 정도를 보면 △△감정원은 네 단계 떨어진 SI1으로, ○○감정원은 다섯 단계 떨어진 SI2로 판정했습니다. (중략)

▷김○○(피디수첩 PD) : 그런데 한국의 감정원들은 조금 특별한 감정을 해왔습니다. 특정등급 즉, G칼라 VVS1 클래리티의 다이아몬드가 최고인 것처럼 시장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이를 주도한 것

이 ○○감정원이었습니다. ○○은 80년대 이후 G칼라 VVS1을 선별적으로 감정해 왔습니다. (중략)

▷김○○(피디수첩 PD) : ○○이 캐럿 이하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감정원 중 선두로 부상하면서 ○○의 감정서가 붙은 G칼라 VVS1은 최고의 다이아몬드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에서 G칼라 VVS1을 받지 못하면 △△, ▲▲, ○○ 등의 순으로 내려오며 G칼라 VVS1으로 감정받아 왔습니다. 물론 그 때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중략)

▷김○○(피디수첩 PD) : 그야말로 팔아먹기 쉽게 발행된 엉터리 감정서가 붙은 다이아몬드지만 버젓이 시세표까지 형성돼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이 엉터리로 감정된 다이아몬드가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품질등급을 밖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없도록 비닐로 봉인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정○○ : 저희가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때는 (다이아몬드 알을) 빼서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하는데, 붙여왔다는 얘기는 맹목적으로 그냥 믿고, 돈만 내고 가져가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다이아몬드의 밀봉은) 이해를 못하죠. (중략)

▷김○○(피디수첩 PD) : 이 우스꽝스러운 방식을 유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유지하는 한 소매상과 소비자들은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때마다 재감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업계 관계자 :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감정을 하면 그 다이아몬드를 다시 재감정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했을 때 또 감정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많게는 수십 번, 적게는 몇 번 정도는 감정비를 받을 거래

요. 그런데 밀봉을 하지 않고 개봉을 해버리면 다시 감정서를 분실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감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감정원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줄겠죠. (중략)

▷김○○(피디수첩 PD) : 다이아몬드를 파는 소매상인들이 소비자들에게 누차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서를 잘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석감정원이 감정한 다이아몬드의 경우 감정서를 분실하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충고합니다. 보석 소매점을 하는 최 씨. 이혼한 고객으로부터 ○○감정원이 감정한 다이아몬드를 재매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가게의 신용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손님에게 사들이기는 했지만 고객이 감정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볼 뻔 했습니다. 원래 ○○이 감정한 내용은 G칼라. 그런데 감정서 없이 재감정을 요구하자 두 단계 떨어진 I칼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객이 감정서를 다시 찾아 감정서와 함께 제출하자 이번엔 다시 G칼라 등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략)

▷김○○(피디수첩 PD) : 같은 다이아몬드인데 감정서가 있으면 G칼라를 주고 감정서가 없으면 I칼라로 판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보석감정원감정실장 : 우리가 봐서 틀림없이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도 사람이니까 잘못된 것 같으면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는 기름을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기름을) 좋아하잖아요. 때도 많이 묻히고, 세팅 후에 사용되고 나서 감정원으로 돌아오면 그걸러 나오니까? 잘 안 나와요. 닦고, 닦고, 닦아야 나오거든요. (중략)

▷김○○(피디수첩 PD) : 서울의 소매상인 김 씨도 감정서를 분실한 고객으로부터 재매입을 요구 받았습니다. 감정서가 없는 상태에서 재감정을 의뢰해 받은 등급은 원래보다 네 단계가 떨어진 K칼라였습니다.

▷김진오(가명, 소매상) : 유착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서 감정을 10번 받으면 10번 다 컬러가 똑같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감정서를 안 가지고 가셔도, 조금 뭐 한 등급 차이가 난다고 하면 나도 조금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다섯 등급(네 등급의 오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착관계가 아니면.

▷김○○(피디수첩 PD) : 다행히 김 씨에게는 감정서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감정서를 잃을 경우를 대비해 팔기 전에 복사본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목록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두 감정서상의 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하지만 ○○ 측은 사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본 감정서를 인정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김○○(피디수첩 PD) : G.VVS1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했는데, 재감정을 했더니 K컬러가 나온 거거든요?

▷○○보석감정원 감정실장 :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감정서가 변조된 건데요.

▷김○○(피디수첩 PD) : 변조됐다고 보는 부분을 보여주세요.

▷○○보석감정원 감정실장 : 여기요.

▷김○○(피디수첩 PD) : 캐럿, 즉, 중량을 적은 숫자가 변조됐다는 겁니다.

▷조○○(보석감정사) : 그러면 좋다. 수치를 변조했다고 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감정원에서 예전에 감정했던 원본이 오래된 것도 아니니까, “원본에 중량이 몇으로 돼 있냐. 감정한 기록은 있을 것 아니냐?” ○○감정원에서 원래 감정한 기록만 보여준다고 하면 그걸로 해결되는 건데. “왜 그것을 못 보여 주냐?” 그랬더니 그 기록이 없다는 거야. 이런 말이 안되는 게 세상에 어느 감정원에서 기록을 하나도 안 남기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나 이거죠.

▷김○○(피디수첩 PD) : ○○ 측은 2003년 다이아몬드협회 현 회장인 정 씨를 감정서 위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 씨가 사들인 G컬러 다이아몬드 20개가 재감에서 모두 등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정 씨가 항의하자 거꾸로 정 씨를 고소했던 것입니다.

▷정○○ : 내가 그걸 감정서를 위조했다면 그걸 갖다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몰래 팔아먹지.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감정서를 위조했다고 하면 그걸 몰래 팔아먹지. 그걸 ○○감정원에 가져가서 “너희들 이런 물건을 감정하면 ○○감정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업계에 얼마나 피해가 오냐. 이러면 안된다.” 그랬더니 그런 결론(검찰고소)을 내리

더라고요. (중략)

▷김○○(피디수첩 PD) : ○○의 창업주인 오○○ 원장 시절에 선수로 활동했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 맞서다 자살까지 시도했던 임○○ 씨입니다. 그의 인생은 친구에게 사주었던 다이아몬드의 재감정 때문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임○○ : 감정서의 등급과 다이아몬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거죠.

▷김○○(피디수첩 PD) : 알이 바뀌었다.

▷임○○ : 네. 친구가 나를 통해서 구입한 다이아몬드를 되팔아 달라고 하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알을 바꾸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은 받을까봐 이것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감정원에 대한 항의를) 진행했던 거예요.

▷김○○(피디수첩 PD) : 당시 조○○ 씨 등 몇몇 전문가들이 임 씨의 다이아몬드가 정말 바뀌치기 된 것인지 직접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보석감정사) : 그 때 저 혼자 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감정서와 다이아몬드를) 봤어요. 봤을 때 대개 소견들이 이견 도저히 바뀐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컬러만 차이 나지. 나머지 같은데.

▷김○○(피디수첩 PD) : 임 씨는 ○○의 오○○ 원장을 허위감정 행위로 문제 삼았지만 정작 구속된 사람은 임 씨였습니다. 오○○ 씨가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수개월간 구치소 신세를 지고 나온 임 씨는 명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자살소동을 벌이며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중략)

▷김○○(피디수첩 PD) : 이 때 오○○ 원장은 임씨에게 선수 일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임○○ : “감정서를 위조하는 일로 먹고 살게 해 주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안 좋은 다이아몬드를 좋은 등급의 감정서로 발급받아서, I컬러, H컬러의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라. 내가 감정을 해 주겠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월 20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국제 기준에 따라 다이아몬드를 감정함에도 감정원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며 “G컬러 VVS1이 최

고급인 것으로 취급되는 현상을 ○○이 주도해왔다. 선별적으로 감정해왔다”고 보도하고 봉인된 감정서로 인해 감정원에서는 재감정 시, 많게는 수십 차례에 걸쳐 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봉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정원이 감정서를 분실한 다이아몬드의 재감정 결과를 당초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항의한 정모 씨를 오히려 고소하고 ○○감정원의 허위 감정을 문제삼아 서명 운동을 했던 종로 귀금속 상인들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감정원에 재감을 의뢰한 다이아몬드 감정결과 30%만이 원래의 감정과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감정원 오○○ 원장에게 허위 감정을 문제 삼았던 임○○ 씨가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았고 나중에 오○○ 원장이 이○○ 씨에게 일명 ‘선수’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다이아몬드 감정에 있어서 실제 감정내용과 견해는 국가별, 지역별, 감정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G컬러 VVS1 등급에 대한 선호와 수요가 매우 높아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등급 표시 기준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다이아몬드 감정 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그 척도로서의 기준과 당해 용어상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하는 다이아몬드의 질적 차이에 근거한 감정 등급상의 차이는 아니며 ○○감정원은 다이아몬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감정원 측은 감정서에 다이아몬드를 봉인하는 방식은 소매상의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 ○○감정원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감정원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감정서에 다이아몬드를 밀봉해 유통하는 것이 감정원에 수입과 직결되지 않고 밀봉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다이아몬드를 다시 거래하는 경우에 가급적 근래에 발급받은 감정서를 보고 등급을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밀봉과는 무관하게 재감정의 수요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감정원은 감정기구와 감정기준, 감정사의 숙련 정도에 따라 다이아몬드의 재감정 결과가 당초의 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며 ○○감정원이 특정인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허위감정을 한

바 없으며 정모 씨 사건과 ○○감정원 감정결과와는 관련이 없고 ○○감정원 원장 오○○ 씨가 임○○ 씨에게 일명 ‘선수’를 제안했던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공익목적의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지하철택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3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스피드○○○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이코노미21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이코노미21 : 『‘벼룩의 간’ 빼먹는 스피드○○○』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4일자 50~51면)

내 용 : 한 퀵서비스 업체가 특수고용직 관련법을 악용, 힘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의 기업은 ‘스피드○○○’. 피해자들은 ‘악덕업체’라는 표현까지 쓰가며 해당 업체를 조심하라며 신신당부하고 있다. 스피드○○○ 퀵 서비스 배달원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특수형태 고용자임을 악용, 급여지급을 미루거나 채용공고에는 없던 가입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약 20일간 ‘스피드○○○’에서 지하철 퀵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한 김○○ 씨는 밀린 급여를 받지 못했다. 현금 건을 제외한 계약 건 30만 원을 업체 측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미뤄왔기 때문이다. (중략)

지난 1월 8일부터 2주가량 일했다는 박○○ 씨는 현금 건 4~5만 원을 제외한 계약 건 9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가입비 12만 원을 내고 교통비, 식비를 빼면 오히려 손해를 본 케이스다.

스피드○○○은 가입비 명목으로 한 사람 당 12

만 원씩을 받는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입비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구인공고에는 없는 내용이었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은 또 “업체에서는 하루에 7~8건 정도 배달하여 하루에 7만 원 이상 벌여가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많이 하면 3~4건이며 건당 벌 수 있는 금액은 평균 5천~7천 원 정도”라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권 씨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재수생이다. 업체 측이 이를 악용, 상습적으로 급여지급을 미루는 것 같다”고 밝혔다. (중략)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 ○○○의 ○○○ 대리는 “스피드○○○은 불량기업으로 등록돼 업체에서 등록하는 모든 공고가 사전 차단된다”며 “구인등록을 올리는 관련업체 중 유일하게 불량기업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이코노미 21은 지난 4월 20일자 50~51면 『‘벼룩의 간’ 빼먹는 스피드○○○』 제하의 기사에서 지하철택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특수고용직 관련법을 악용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힘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울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적은 고려하지 않고 실적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만 기사화하고 회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신청인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 및 신청인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당했으므로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신청인이 특정신문 때리기에 앞장서 왔다면 신문 시장점유율을 3개사 40%로 강력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39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문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9.
처리결과 : 각 취하

점유율' 개념은 신문법상의 시장점유율과는 달리 신문 시장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신문시장에서 3개 사가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 신문법보다 낮은 기준을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신문기구 통폐합의 함정”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4월 18일자 A34면 『신문기구 통폐합의 함정』 제하의 칼럼에서 동의대학교 문○○교수가 “신문 시장 점유율 3개 사 40%(공정거래법 75%)로 강력 제한하는 방안을 내기도 하는 등 특정 신문 때리기에 앞장서 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3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40%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2004년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신문법상의 ‘시장 점유율’ 개념을 비판하면서 ‘여론 점유율’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여론 점유율(한국 전체 가구중에서 3개 신문사가 배달되는 비율)이 40%가 될 경우 여론 독과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문 교수는 2006년 현재 한국의 신문 가구 구독률이 40%인 점을 감안할 때, 여론 점유율이 40%가 되려면 조중동 3사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100%에 가깝게 되어야 여론독과점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 교수가 제안한 기준은 신문법에 규정되었던 3개 사 시장 점유율은 60%는 물론 공정거래법상 시장독과점 기준인 75%보다도 더 느슨한 기준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 『신문기구 통폐합의 함정』 제하의 칼럼
(2007년 4월 18일자 A34면)

내 용 : (전략)

연구팀은 권○○(전북대) 김○○(인제대) 문○○(동의대) 최○○(한림대) 교수와 김○○ 전 신문위사무총장이다. 이중 중도적 태도를 견지해 온 최교수를 빼면 나머지는 특정 신문 때리기에 앞장서 왔다. (중략)

문 교수는 신문 시장점유율을 3개 사 40%(공정거래법 75%)로 강력 제한하는 방안을 내기도 했다.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신문기구 통폐합의 함정”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4월 18일자 A34면 『신문기구 통폐합의 함정』 제하의 칼럼에서 ○○대학교 문○○교수가 “신문 시장 점유율을 3개 사 40%(공정거래법 75%)로 강력 제한하는 방안을 내기도 하는 등 특정 신문 때리기에 앞장서 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문 교수가 주장했던 ‘여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동아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8일자 A2면)

내 용 : 4월 18일자 A34면 ‘신문기구 통제합의 함정’ 칼럼에서 동의대 문○○ 교수가 신문 시장점유율을 3개 사 40%(공정거래법 75%)로 강력 제한하는 방안을 냈다고 했으나, 문 교수는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여론점유율로, 이는 여론시장을 대상으로 전체가구 대 각 신문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문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보다 느슨한 기준이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소속 노조원들이 모 휴게소의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사측 조치를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민주노총 ○○지역본부
(본부장 최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3.
처리결과 : 합 의

출입문을 폐쇄하는가 하면 내부 전산시스템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50여 명은 이날 오후 휴게소 사무실을 찾아와 사 측 조치를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며 이 사태에 개입했다. (후략)

보도내용

매일경제 : 『아무데나 나서는 민주노총』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9일자 A39면)

내 용 : 노조가 경영진의 임원해고를 노조해체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휴게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노조원 30여 명은 최근 사 측의 인사조치에 항의하며 사무실 점거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사 측 한모 소장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노조원들은 10년 이상 휴게소장으로 일해 오던 최모 상무가 지난주 해임되자 반발해 왔다. 노조 측은 사측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임 소장 등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 측은 노조원들이 인사조치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휴게소 주변에 써 붙이고 경리사무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휴게소 관련 민주노총 집회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9일자 인터넷 전자기사 및 사회면에 『아무데나 나서는 민주노총』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50여 명은 이날 오후 휴게소 사무실을 찾아와 사 측 조치를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며 이 사태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민주노총 ○○지역본부 조합원들은 ‘한미FTA무효! 고 허세욱 동지 민족민주노동열사장’에 참석한 후 ○○휴게소에서 노조위원장으로 부터 신분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장 및 관리사무소에 대기중인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을 들었을 뿐이며, 불법집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최모 상무가 지난 주 해임되자 반발해 왔다”고 보도하였으나 해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

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사회부장 및 기사 작성 기자 중 1명이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두로 유감을 표시하도록 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4월 19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본부 및 이민구 조직부장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매일경제에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권익향상을

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 내용대로 유감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모든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사과〉



민주노총 모 지역본부 소속 간부인 신청인이 노사분규 중인 모 휴게소의 경영진을 찾아가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3.
처리결과 : 각 합의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민주노총 ○○지역본부 조직부장인 이 모 씨는 ○○휴게소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후, (주)○○물산 대표이사가 현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갖고자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주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경영진을 협박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 『아무데나 나서는 민주노총』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9일자 A39면)
내 용 : 〈2007 서울조정14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합의사항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휴게소와 관련 민주노총 집회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지는 지난 4월 19일자 A39면 『아무데나 나서는 민주노총』 제하의 기사에서 “사 측은 17일에도 ○○지역본부 소속 간부 이모 씨가 찾아와 경영진을 협박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사회부장 및 기사 작성 기자 중 1명이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두로 유감을 표시하도록 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4월 19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본부 및 이○○ 조직부장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매일경제에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내용대로 유감을 표시

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모든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사과〉



신청인 기관이 정부의 대입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구보고서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고 형 일) 외 1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교육개발원 ‘2008 대입 정면 비판’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0일자 A1면)

내 용 : 정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교육개발원 (KEDI)이 내신평가 강화와 수능 등급제를 골자로 한 현행 교육부의 ‘2008 입시제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중략)

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2008 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적용되는 수능 등급제로 인해 수능 성적의 변별력이 줄어든 만큼 대학이 대학별 고사(본고사)에 더 집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부 산하 연구소 교육개발원, ‘2008 대입’ 정면 비판”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0일자 A1면 『교육개발원, ‘2008 대입’ 정면 비판』 제하의 기사에서 국책연구소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수능등급제를 골자로 한 2008 입시제도를 정면 비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보고서는 현행 입시제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적격자 선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개발 등 대학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산하연구소’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4월 10일 A1면 『교육개발원, ‘2008 대입’ 정면 비판』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당 연구보고서가 내신성적 강화와 수능등급제를 제안한 정부의 대입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 ‘2008 대입제도’의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학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임을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5월 10일까지 (금, 토, 일요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보다 한 급수 큰 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

임을 묻지 아니한다.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3일자 A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기관이 정부의 대입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구보고서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고 형 일) 외 1인

피신청인 : 한국교육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교육신문 : 『KEDI, 대학입시 정책 정면 비판』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9자 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4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KEDI, 대학입시 정책 정면 비판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9일자 1면 『KEDI, 대학입시 정책 정면 비판』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정부의 대입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는 기관의 공식 입장을 담기보다 연구자의 전문적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 내용 역시 정부의 삼불정책과 같은 기초에서 고교 내신성적 위주로 입학사정을 하고 대학별 고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 강화 대신 대학들이 대학별 특성에 맞는 전형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어 주도록 권유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4월 9일 1면에 실린 『KEDI, 대학입시 정책 정면 비판』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입시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보고서는 정부의 3불 정책과 같은 기초에서 고교의 내신성적 위주로 입학사정을 하고 대학별 고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 강화 대신 대학별 특성에 맞는 전형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어 주도록 권유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5월 1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 2면 우측 가운데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보다 한 급수 큰 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교육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중국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들여와 신제품으로 둔갑 시킨 후, 불법복제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짜퉁 휴대폰’ 조심』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5자 8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1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11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1월 5일치 8면 『짜퉁 휴대폰 조심!』 제
목의 사진설명=국내에서 폐기돼 중국으로 수출된
휴대전화를 역수입해 유통시킨 박 아무개(38) 씨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반론을 신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이 휴
대전화들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수거됐으며, 유통된
휴대전화 대부분이 중고휴대전화에 껍데기만 교체
해, 합법적으로 재생·재활용 된 것이라고 밝혀왔
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한겨레 2면 우측 하단
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
기로 하여 2007년 5월 1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5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동료 애니메이터의 자살 원인에 대해 진술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무명 애니메이터의 쓸쓸한 죽음』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1자 18면)
내 용 : 그림은 손으로만 그리는 것으로 알려진 남
자가 있었다. 20대 중반부터 32년간 손으로 애니메
이션 배경그림을 그렸다. 배경감독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19일 오후 봄햇살을 따라 등산가방을 메고
산으로 간 남자는 서울의 한 약수터 체육공원에서
스스로 목을 댔다.
애니메이션 배경감독 궁 아무개(58) 씨. 컴퓨터

마우스와 전자펜이 그림을 그리는 시대와의 ‘불화’가 그를 다른 세상으로 떠민듯하다. 콧 씨와 함께 일했던 정○○(60) 씨는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로 치고 올라오지만 우리는 컴퓨터가 익숙치 않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일감을 뺏기는 게 콧 씨를 힘들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05년 6월 일하던 곳에서 나온 콧 씨는 프리랜서로 배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츰 일이 줄자 후배들에게 일감을 받아 그리기도 했다고 정 씨는 전했다. 벌이는 절반인 150만 원으로 떨어졌다. 여섯 달 전부터 그릴 배경이 더는 들어오지 않았다. 일이 끊긴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1일자 사회면 『무명 애니메이션의 쓸쓸한 죽음』 제하의 기사에서 애니메이션

배경감독 콧 아무개 씨의 자살과 관련해 동료 정 ○○씨와 인터뷰하면서 콧 씨의 자살 원인을 디지털 기술에 밀려 일감이 줄어든 것에 있는 것처럼 정 씨가 진술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정 씨는 콧 씨의 자살 원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젊은 사람들에게 일감을 뺏기는 게 콧 씨를 힘들게 했던 것 같다”고 대답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정정보도 요구는 수용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신청인의 병원에서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7년 3월 29일 18:50)

내 용 : (전략)

▷나레이터 : 날씬한 종아리를 만들기 위해 알통을 빼주는 수술까지 등장했다.

▷○○방송VJ : 올봄엔 특히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면서 여성들의 다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레이터 : 모 방송에 등장한 한 종아리 성형 클리닉. 간단한 시술로 종아리의 알통을 제거할 수 있다고 소개되었다.

▷병원광고 : 감취도 감취도 비집고 나오는 종아리 근육살을 없애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탱글탱글한 종아리 근육을 가진 올챙이 다리의 소유자들. 점심시간만 할애하면 오랜 숙적인 종아리 알통을 제거할 수 있어 직장여성들에게 인기다.

▷여자 1 : 지금은 많이 후회되죠. 그런 생각을 했던 걸. ‘왜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여자 2 : 잘 못 걷고 집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너무 아파 가지고. 기어다니고, 씻지도 못했어, 그때는.

▷여자 3 : 지금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평생 걷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레이터 : 불만제로에 접수된 사연은 심각했다. 방송에서 소개된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

자들이었다. 날씬한 다리를 원했을 뿐인데,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녀들의 종아리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여자 3 : 우리가 인간마루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여자 4 : 환자들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실험대상이라는 게, 대상이 됐다고밖에 생각을 못하겠어요. (중략)

▷나레이터 : 불만제로는 그 병원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병원 입구에는 '종아리 성형전문의'라는 안내판이 있었다. 평일 오후 시간이었지만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상담을 하러 들어가서 아예 종아리 수술을 받고 나오는 환자도 있었다. 나이대도 사연도 다양했다. (중략)

▷나레이터 : 이 병원, 종아리 성형수술로 꽤 유명했다. 곳곳에는 언론에 소개된 기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모 방송에 나간 화면이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었다.

▷박○○ : 일단 시술 시간이 20에서 25분으로 짧고, 3시간 정도만 휴식을 취하시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중략)

▷나레이터 : 박○○ 씨도 그 병원에서 종아리 수술을 받았다.

▷박○○ : 예. 중심을 못 잡아요. 안 잡혀요.

▷나레이터 : 수술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걷지 못한다. 이상하게도 까치발로만 설 수 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질 않는다. 운동화를 신고는 밖에 나갈 수도 없다.

▷박○○ : 못 걸어다니는 거면 절대 못한다. 한 달 안에 못 걷는 거면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도 3주면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들어다닌데요.

▷나레이터 : 수술 후 의사는 2~3주 압박밴드만 잘 착용하면 알통도 빠지고 잘 걸을 수 있다고 했다.

▷박○○ : 이 시술이 무조건 영구적이다. 영구적이고, 재발요인이 전혀 없고 부작용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시술이라고 들었거든요.

▷나레이터 :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친절하게 상담메일에 답변도 해 주셨다. 단 한 명도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라고 말이다.

▷김○○ :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혈을 신으면...

▷나레이터 : 지난 1월 같은 수술을 받은 김○○ 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녀는 아예 집안에서 하이힐을 신고 다닌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하이힐을 벗으면 제대로 설 수조차 없다. 무릎과 허리가 펴지지 않아 엉거주춤한 자세로 겨우 걸음을 뚝 수 있다. (중략)

▷나레이터 : 많은 제보자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다. 까치발 때문에 집에서도 하이힐을 신고 걸을 때 찌릿찌릿하고 뒹꾸치에 감각이 없었다. 불만제로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등 각 분야 전문의들에게 제보자 6명의 검진을 의뢰했다. 그 가운데 세 명은 수술과 상관없는 신경에 이상이 발견됐고, 종아리 근육이 쭈어진 사람도 3명이나 됐다.

▷윤○○ : 결국에는 근육의 양, 양은 원래 줄일려고 했던 거고, 그 목적이 달성하면서 길이도 약간 짧아졌죠. 일단 원치 않는 걸 얻게 됐으니까, 이런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레이터 : 도대체 제보자들은 어떤 수술을 받았길래 이런 상태가 됐을까? 권○○은 미치도록 알고 싶었다. 그녀들의 종아리에 어떤 처치를 했는지 찬찬히 살펴보자. 신경자극기를 이용해 종아리 알통으로 가는 신경을 찾아 차단하면 알통 근육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서서히 근육양이 줄어들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신경을 건드리거나 부작용이 따르는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국○○ : 정상인이 가지고 있는 근육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보행장애라든가 감각이상 등의 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3월 29일 「불만제로」 프로그램 『날씬한 각선미의 유혹, 종아리 성형』 제하의 방송에서 모의원에서 종아리근육퇴축술을 시술 받은 환자들이 심한 통증을 느끼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집안에서조차 하이힐을 신지 않거나 까치발로 서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등 큰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 의원 측 관계자는 종아리근육퇴축술을 시술 받은 환자들의 일부에서 종아리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수반될 수 있으나 이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치료과정이지 의료사고가 아니며 까치발로만 설 수 있거나 집안에서도 하이힐을 신어야 걸을 수 있다는 방송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수술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종아리근육퇴축술’에 대한 반론
- 내 용 : 지난 3월 29일 ‘불만제로-날씬한 각선미의 유혹, 종아리성형’ 방송에 대해 한국○○의원은 종아리근육퇴축술은 임상경험으로 입증된 수술 방법으로, 수술 후 일정기간 통증을 느끼거나 까치발로 걷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회복

기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일 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5월 10일 18시 50분에 방송하는 MBC-TV ‘불만제로’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진행자 중 1인이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조정대상 프로그램의 로고를 화면배경으로 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7년 5월 10일 18:5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 개혁이 대학들의 비협조로 실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입시개혁 대학 비협조로 실패』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5일자 8면)

내 용 : 대학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실무 책임자가 정부의 2008학년도 대학입시 개혁이 실패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중략)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여러 차례 서울대와 연·고대 등에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일 것을 부탁해 왔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며 “참여정부가 2004년 야심차게 사교육 문제 해결을 천명했고, 국민기대도 컸지만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2005년 상반기에 통합형 논술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주요 사립대들이 논술과 수능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였다”며 “그러다 2006년 8월 주요 7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이 2008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40%, 수능 40%, 논술 20%를 기준으로 한다고 공동발표하고 지난해 연대 등이 논술 예시문항을 내놓으면서 도저히 공교육에서는 해결 안된다는 인식이 퍼져 논술 광풍이 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에 고려대가 내신은 변별력이 없으니 정시 모집인원의 절반을 수능으로 우선 선발하겠다고 수능 중심으로 돌아섰고, 다른 대학들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5일자 8면 『입시개혁 대학 비협조로 실패』 제하의 기사에서 “교육인적 자원부 실무 책임자가 정부의 2008학년도 대학입시 개혁이 실패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교육부 실무 책임자는 2008 대입제도가 실패했다고 밝힌 바 없으며,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부탁해 왔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2008 대입제도가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야할 것’, ‘이번에 고려대가 내신은 변별력이 없으니 정시 모집인원의 절반을 수능으로 우선 선발 하겠다며 수능 중심으로 돌아섰고, 다른 대학들도 다같이 움직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도리가 없다’

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1일자 2면)

내 용 : 경향신문 2007년 3월 15일자 8면 ‘입시 개혁 대학 비협조로 실패’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008대학입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대학들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을 지적한 바 있으나, ‘실패’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타 기관 원장직 공모에 응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디지털타임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5

처리결과 : 취 하

(중략)

실제 이 일로 인해 공모 진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게임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흥원을 가볍게 보지 않고서야 낚남도 안 되는 직원이 원장직에 응모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 진흥원 관계자는 특히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게임위 위원장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후략)

보도내용

디지털타임스 : 『계등위 좌충우돌 행보 ‘눈살’』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9일자 인터넷판)

내 용 :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계등위)가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에서 ‘갈지자 행보’를 거듭,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메이저 게임 업체 N사에 친인척 인사청탁을 하고,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구 게임산업개발원) 신임 원장 공모에 응모하는 등 내부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4월 19일자 인터넷판 『계등위 좌충우돌 행보 ‘눈살’』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원장 공모에 나선 사실을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진흥원을 가볍게 보지 않고서야 낚남도 안 되는 직원이 원장직에 응모할 수 있었겠느냐”는 진흥원 측 인사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현재 재직 중인 사내에 다른 기관의 채용에 응모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사의 인용 부분으로 인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당하였으므로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신청인이 부하직원과 공동작업을 통해 얻어낸 성과를 자신만의 공로로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전북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6.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전북도민일보 : 『부하 공적 가로채는 암채 상사』 제
하의 기사 (2007년 4월 24일자 14면)
내 용 : ○○시 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7급 직원의 보고를 받고 공동작업을 펼
쳐 성과를 거두고도 마치 자신이 혼자 한 일인 양
공치사에 여념이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25년간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던 5억 원대
의 토지를 찾아내 끈질긴 노력 끝에 ○○시 재산으
로 귀속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부터 비롯
됐다. (중략)

이에 대해 실무담당자 정○○(행정 7급) 씨는 건
물소유권이 있는데 대지권이 없다는 점에 의구심
을 갖고 관련 사항에 대해 정밀조사를 펼쳤다.

정 씨는 이 사실을 상사인 김모 계장에게 보고
를 마친 뒤 김 계장과 같이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대전지원 등을 찾아 다니며 ○○시 보관문서 자료
를 열람하는 등 바쁜 걸음을 옮겼다.

결국 정 씨와 김 계장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곳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 확인돼 지난 3일자로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발표 당시부터 김 계장은 일부 언론사를
통해 이같은 결실이 마치 자신만의 공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략)

업무담당자인 정 씨를 제쳐 놓고 자신만을 내세
우려하는 듯한 행동은 잘못된 처신이라는 지적이

다. 확인 결과 문제를 처음 발견한 것은 정 씨이고,
보고를 받은 김 계장 역시 정 씨와 다른 지적직
직원들과 같이 환수조치를 위해 적극 동참한 점은
사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김 계장은 은닉재산을 발
굴했을 때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게 된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4일자 14면 『부하 공적 가로채는
암채 상사』 제하의 기사에서 “○○시 한 공무원이
부하직원과 공동 작업을 펼쳐 25년간 미등록 토지
로 남아있던 5억 원대의 토지를 찾아내 ○○시 재
산으로 귀속하였으나 마치 자신이 혼자 한 일인
양 공치사에 여념이 없어 빈축을 사고 있으며 포
상금까지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
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모 계장은 실무담당자인
정모 씨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건물소유권은 있
는데 대지권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의문을 가진
후 이를 부하직원과 정밀 조사해 5억 원을 ○○시
재산으로 귀속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김모 계장
이 혼자 한 일인 양 공치사를 한 적이 없고 인터
뷰시 동료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밝혀
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모 계장은 은닉재산
을 발굴하고도 공을 별로 내세우지 않았고 함께
고생한 부하직원이 충분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
록 보고서에 명시하는 등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부하 공적 가로채 적 없어
- 내 용 : 본보는 4월 24일자에 “○○시 한 공무원이 부하직원과 함께 미등록 되어있던 5억 상당의 대지권을 찾아내 시 재산으로 귀속하였으나, 자신이 혼자 한 일인 양 공치사하고 부하의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담당계장인 김○○ 씨는 “실무담당자 정모 씨가 ○○동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시의 건물 소유권은 있는데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후 ‘건물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지권은 자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이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하직원들과 함께 정밀조사를 통해 시 재산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산발굴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했던 김 계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료직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부하직원이 은닉재산을 찾는데 기여를 한 만큼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김 계장이 부하의 공을 가로채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도민일보 2007. 5. 16.자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부하 공적 가로채는 암채상사)활자크기와 같게, 본문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도민일보 : 『부하 공적 가로채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6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부하직원과 공동작업을 통해 얻어낸 성과를 자신만의 공로로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전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6.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2007전북조정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미등록재산 환수(속보)
- 내 용 : <2007전북조정15의 합의사항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라일보 2007년 5월 16일자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공직자 과장된 공치사 “빈축”)활자크기와 같게, 본문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보도내용

전라일보 : 『공직자 과장된 공치사 “빈축”』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4일자 15면)

내 용 : <2007전북조정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전라일보 : 『○○미등록 재산 환수』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6일자 4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회사 임원으로 소개된 전직 이사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심 ○ ○
피신청인 : 전북대중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6.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9일자 1면 『도내 S신문 기자 ‘임원 폭행’ 파장』 제하의 기사에서 S신문 심모 기자가 회사 임원 이모 이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회사임원이라 소개된 이 모 씨는 이미 이사직에서 제명된 상태로 보도 당시 회사 임원이 아니었으며 심모 기자가 이모 씨를 폭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전북대중일보 : 『도내 S신문 기자 ‘임원 폭행’ 파장』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9일자 1면)
내 용 : 2007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도내 S신문 간부급 기자가
회사 임원을 폭행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회사 심모 기자는 현재 이사로 등재돼 있는 이 모 씨를 회사일에 간섭한다며 휴대폰과 물컵을 마구 던져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해 빈축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의원실에 의사협회 직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인턴비 등을 의사협회장이 지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안 명 옥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6.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반론)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4월 25일 20:00)

내 용 : ▷ 앵커 : 네, 돈 문제 말고도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의사협회 직원이 보건복지위 소속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했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 기자입니다.

▷기자 : 의사협회 직원인 A 씨는 2005년 말부터 1년여 동안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파견됐습니다.

보도내용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월급은 의사협회에서 받고 일은 의원실에서 했습니다. (중략)

▷기자 : 장동의 의사협회 회장은 해당 의원이 인건비 어려움을 토로했었다고 말합니다.

▷의사협회장 : ○○의원이 인턴사원 사원 하나 쓰는데 한 달 월급만 250~300만 원 든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언더테이블로 100만 원, 200만 원 고정적으로 줘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를...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25일 「8시뉴스」 프로그램 『의협직원, 의원 사무실에서 파견근무』 제하의 보도에서 안명옥 의원 사무실에서 2005년 말부터 1년간 의협직원이 파견근무를 했으며 의협회장으로부터 인턴 비용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안명옥 의원실에 의협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한 적이 없으며 의협회장으로부터 인턴비용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SBS-TV 07:00시 뉴스 또는 20:00시 뉴스 시간에 리포트형식으로 신청인의 의정활동에 관련한 기사를 호의적으로 보도하되, 지난 4월 25일 SBS-TV 20:00시 뉴스의 '의협직원 의원 사무실 파견 근무'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진실에 근거한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도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아침뉴스」 프로그램 (2007년 6월 20일 07:00)

내 용 : ▷앵커 : 한국전쟁과 월남전 당시 전사자 가운데 13만 명의 유해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6. 25 전쟁과 월남전 당시 전사자와 실종자는 모두 16만여 명.

이 가운데 시신이 수습돼 국립현충원에 안치된 경우는 채 3만 명도 되지 못합니다.

그나마 2000년부터 실종자 확인 사업이 시작됐지만 7년 동안 발굴된 유해는 1182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몰자 유족 : 그동안 지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사체가 훼손돼 발굴된 유해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자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전사자 유해발굴 지원' 법률은 실종자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안명옥 의원 :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명예를 되찾고,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습니다

▷기자 : 이법이 통과되면 국가적 예산 지원과 관계 부처의 협조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이 법률안에는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의무화 하고 있어 체계적인 발굴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신청인 문화재단이 문예진흥기금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산하 기관이 특정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재)경기문화재단

(이사장 김 문 수)
피신청인 : 경인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6.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인매일 : (1) 『기준대로 집행대로』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1일자 1면)

내 용 : (전략) 10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05년 문예진흥사업의 지원분야를 당초 11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통합·운영하는 변경안을 마련하고, 변경된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안내(기준)'를 그해 9월 21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지역간 문화예술격차해소활동' 분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실시하는 '찾아다니는 예술활동', '모세혈관운동' 등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 폐지됐으며, 이에 따른 배정예산(1억 5천만원)은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분야로 흡수됐다.

또 '전통문화예술 보급과 창조적 계승활동' 분야는 통일성 있는 지원정책을 위해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분야로의 통합·운영이 결정됐다.

그러나 본보 확인결과, 2005년 부분통합으로 사실상 폐지됐던 지원분야는 2006년 들어 그대로 지원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1개 분야가 늘어난 12개 분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2) 『문진기금 '명분없는 퍼주기'』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2일자 1면)

내 용 : (전략) 그러나 본보 확인결과 재단은 굳이 지원하지 않았어도 될 사업에도 꾸준히 예산집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난해 5억 원이 지원된 '세계생명문화포럼'이 그 대표적 예. (후략)

(3) 『문화 불균형 부추긴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7일자 1면)

내 용 : (전략) 그러나 본보 확인결과 지난해 문진기금 예산 중 무려 1/2이 넘는 예산이 특정 1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단이 전형적인 '몰아주기식'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열악한 문화예술계를 더 열악하게 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예산 편성은 당초 재단이 문진기금을 지원하게 된 취지에도 위배되는 점이다.

지난해 총 23억 2천만 원의 문진기금 가운데 무려 13억 4천 9백만 원이 집중 편성됐던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이 바로 그 대표적 예. (후략)

(4) 『문화재 발굴조사 '불가침 영역'』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0일자 1면)

내 용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 문화재연구원이 택지개발,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지표, 발굴 조사를 거의 독식하면서 수십 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지표조사 전문기관 12개는 전국적으로 문화재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12개가 전국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내 재개발,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기문화재단 부설기전문화재연구원의 권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49건의 문화재 조사를 의뢰 받아 지표조사 17건, 발굴조사 14건을 맡았다. 연구원은 조사 의뢰 대가로 수십여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여 건을 외부 기관에 용역까지 준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집행 등과 관련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1일자 1면 『기준대로 집행대로』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이 2005년 문예진흥사업의 지원분야를 당초 11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통합·운영하는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지역간 문화예술격차해소활동’ 분야 등을 사실상 폐지하였으면서도 2006년에도 그대로 지원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1개 분야가 늘어난 12개 분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4월 12일자 1면 『문진기금 명분 없는 퍼주기』

제하의 기사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도 꾸준히 예산집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난해 5억 원이 지원된 ‘세계생명문화포럼’이 그 대표적 예”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7일자 1면 『문화불균형 부추긴다』 제하의 기사에서 “본보 확인결과 지난해 문진기금 예산 중 무려 1/2이 넘는 예산이 특정 1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단이 전형적인 ‘몰아주기식’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열악한 문화예술계를 더 열악하게 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총 23억 3천만 원의 문진기금 가운데 무려 13억 4천 9백만 원이 집중 편성됐던 전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도하였으며, 4월 20일자 1면 『문화재 발굴조사 불가침영역』 제하의 기사에서는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 연구원이 택지개발,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지표, 발굴 조사를 거의 독식하면서 수십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표조사 전문기관 12개가 전국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내재개발, 택지개발 사업과정에서 문화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의 권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49건의 문화재조사를 의뢰받아 지표조사 17건, 발굴조사 14건을 맡았다. 연구원은 조사의뢰 대가로 수십여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

히 10여 건을 외부 기관에 용역까지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경기문화재단은 2006년도에 ‘지역간문화예술격차해소활동’ 분야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예술인 문화활동 지원분야로 통합·운영하는 이외에 폐지된 분야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었고, 지원분야도 9개 분야로 통합·운영되었으며, ‘세계생명문화포럼’에 지원한 사업비는 경기도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받아 집행하였을 뿐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며,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은 문학, 시각예술(평면, 조형, 미디어), 공연(음악, 무용, 연극), 전통문화(음악, 무용, 시각), 생활문화예술,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상·하한선을 정하여 지원되었고,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이외에 고려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백문화재연구원이 경기도 내 지표조사 및 문화재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사실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측에서 손해를 유지한다면 정정보도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영국에 유학중인 조기유학생 학부모로부터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7.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1)「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4월 4일 21:00)

내 용 : ▷앵커 : 영국 교민사회에서 자녀를 유학시키며 함께 머무는 기러기 엄마들이 집단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주겠

다는 말에 어머니들은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런던에서 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 특파원 : 런던교외 교민밀집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조기유학생 학부모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유학원을 운영했던 경력을 내세우며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유혹하며 수천만 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이○○ 총경 :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또 단기 학원에 보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자녀가 조금 아직 어학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학문 전반에 대한 재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방출을 하는 거죠.

▷김○○ 특파원 : 명문대학 진학 보장이라는 말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걸려든 학부모는 50여명, 피해액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 대사관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 유학원이나 취업알선 업체로부터 비슷한 사기를 당하고도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밝히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략)

(2) 『뉴스24』 프로그램 (2007년 4월 5일 24:00)

내 용 : <보도내용(1)과 동일>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4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과 4월 5일 「뉴스24」 프로그램 『기러기 엄마 50여명 사기 피해』 제하의 보도에서 런던 교외 밀집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50여 명의 기러기 엄마들로부터 10억여 원의 금품을 갈취한 사기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모 씨는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문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뉴스투데이>, <뉴스24> 프로그램에 뉴스 시작 후 20분 이내에 별지의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별지의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할 때, 별지의 보도문도 함께 보이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00,000원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위 항이 이행될 경우, 피신청인 및 소속 기자,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17.

<별 지>

•제 목 : “영국 기러기 엄마 사기피해” 관련 반론 보도

•내 용 : 지난 4월 4일 뉴스데스크 및 뉴스24와 4월 27일 뉴스투데이 시간에 자녀 조기 유학으로 영국에 체류 중인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고액과 외화 위장취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는 기러기 엄마들

에게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줄 수 있다며
수천만 원의 고액 사기과외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장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한미 FTA 협상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만과 허위로 가득 차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경제 : 『이 밥에 쇠고기국』 제하의 기사 (2007
년 4월 10일자 39면)

내 용 : 협상은 끝나고 공치사만 남았는지...,
모처럼 찬성표가 많아졌으니 대통령에서부터 실무
진까지 박수를 받고도 싶을테다. 이쯤해서 협상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만과 허위로 가득차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쌀 시장을
지켜냈다”는 자화자찬이나 쇠고기 뼈조각으로 국
제망신을 당하고도 개방일자를 놓고 여전히 더듬
수를 놓고 있는 것도 그렇다.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를 수입하
는 나라가 70여개국에 이르는데 현미경을 들이대
면서 뼈조각을 문제 삼아 전량 반송한 나라가 또
있었는지부터가 궁금하다. 소뼈라면 갈비나 등뼈
꼬리뼈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살
코기를 발라내면서 튀어 들어간 밀리미터 단위의
뼈조각을 문제 삼은 것부터가 실은 억지였다. 그것
도 800상자를 이잡듯 뒤져 겨우 몇 건을 발견해냈
다는 실로 악의적인 조사였다. X-레이로도 나오지
않자 상자를 열어헤쳐 육안 검사까지 동원했으니
미리부터 ‘살코기’라는 단어에 함정을 깔던 것이
다. 결국 한국은 믿지 못할 상대가 되고 말았고 서
면 약속 따위의 모욕을 받아 썩 나라가 됐다. 나중
에 똑같은 보복을 당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항변할 것인지... (전략)

입만 열면 미국 소를 저주하는 광우병 문제는
더욱 그렇다. 일본이 전국을 뒤져 수백만 마리의
소를 전수검사했던 것은 국제적 화제였지만 한국
에는 광우병이 과연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도 불명이다.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 때문에 발병한
다고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부 주장부터가 우
선 믿을 수 없다. 유럽 측 통계에는 분명 한국에
동물성 사료를 수출했다고 돼 있는 것이 왜 한국
통계에는 없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조차 나온 적
이 없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역시 어물쩍 덮고
지나갔다. 더구나 한국은 사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
하는 나라가 아닌가 말이다. 만일 축산 농가로부터
광우병 발생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청정지역이라
는 주장의 유일한 근거였다면 이런 우스개가 다시
없다.

쌀 수입 문제도 다를 것이 없다. 한국은 소비량
의 4%를 중국을 위시한 외국으로부터 매년 ‘의무
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이미 관세화를 통해 개방
했고 대만 역시 시장을 열었다. 국제 가격을 무력
화시키는 높은 관세로 개방하는 것과 낮은 특혜
관세로 의무수입하는 것 중 무엇이 실제 수입량을
줄이게 되는지 정밀한 계산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수입을 거의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소비량의 8%
까지(2014년) 의무수입하는 얼빠진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장래 개방 시점에
적용하게 될 관세율은 지금도 매년 착실히 내려가
고 있는 중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니 “이번에도 쌀
은 막았다”는 주장은 쌀 문제를 2014년의 문제로
미루어 놓는 책임 회피일 뿐이요, 쌀을 성역화하는
또 다른 선언에 불과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2007년 4월 10일자 A39면 『이밥에 쇠고기
국』 제하의 칼럼에서 ‘한미FTA 협상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만과 허위로 가득차 있으며 쇠고기 뼈조각으로 국제망신을 당하고도 개방일자를 놓고 여전히 더듬수를 놓고 있는 것도 그렇다. 한국에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데 미국 소의 광우병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쌀의 경우 높은 관세로 개방하는 것과 낮은 특혜 관세로 의무 수입하는 것의 실익 계산 없이, 수입을 거의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소비량의 8%(2014년) 의무수입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뼈조각이 검출된 미국산 쇠고기를 방송한 것은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우리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다. 미국이 금년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Controlled BSE risk country)’ 등급으로 평가 받더라도 WTO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험평가’ 등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방일자를 정할 것이다”라고 밝혀왔으며, 또 우리나라의 광우병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철저한 BSE 예찰검사('06년까지 18,855마리)를 실시하였으나 의심사례가 나온 적은 없다. 칼럼에서 제기한 광우병 원인인 동물성 사료 수입문제는 우리나라 관세청 사료 수입실적과 단미사료협회의 사료수입추천실적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는 영국 등 유럽으로부터 동물성사료(육골분)를 수입한 실적이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쌀 수입에 대해서는 “2004년 쌀 협상 당시 2005년 말 DDA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나 DDA협상 조기타결·지연여부가 불확실했다. 이에 WTO 보조금 및 관세의 감축수준 예측이 어려워 DDA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언제든지 수입물량의 증량 없이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서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또 2005년부터 DDA 타결시 까지는 2005년도 관세율을 DDA협상의 결과가 발효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농림부의 입장을 담은 담당 국장 명의의 기고문(200자 원고

지 4~5매 내외 분량)을 작성하여 2007년 5월 10일까지 피신청인에게 전달하고, 피신청인은 이 기고문을 2007년 5월 20일까지 한국경제에 게재한다. 게재방식은 통상의 기고문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우리나라는 광우병 청정국』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2일자 30면)

내 용 :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상이 이뤄졌지만 가장 뜨겁게 이슈화됐던 품목 중 하나가 쇠고기다.

특히 FTA 협상과 별개의 사안으로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협의로 진행됐던 쇠고기의 검역·위생 문제가 더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다.

지난번 세 차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뼈 조각 문제로 인한 불합격 조치 등 지금까지의 검역조치는 과도한 것이 아니며, 미국 봐주기는 더욱 아니다.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조치와 관련, 국내에서 광우병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국가며, 철저한 방역관리가 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소 1만9000여 두를 검사했으나 광우병으로 확인된 소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도부터 광우병이 다발하는 유럽국가의 동물성 사료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유럽 측 통계에서 동물성 사료가 우리나라로 수출됐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국내 관세청 통계 등을 통해서 수입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

금년 5월 말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다른 10개 국가와 함께 광우병 위험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WTO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입위험평가를 거쳐 대응할 것이다. □

신청인 복지관이 저소득층의 복지보다 직원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 ○ ○)

피신청인 : 울산여성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울산여성신문 : (1) 『○○복지관 저소득층 보다 직원 복지 앞장』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7일자 1면)

내 용 : ○○지역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이 그동안 주민복지와 무관한 주일예배 장소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또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되어 있는 예산을 직원 해외여행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략)

그런데 ○○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사무실을 지난 2년 동안 특정 종교의 예배 장소로 빌려주어 (중략)

○○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지난 4-5년 동안 매년 5-6명의 직원들을 필리핀 등 해외여행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비용을 저소득층 복지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일인당 80~90만 원이 소요되는 여행비 일체를 저소득층 복지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그동안 감사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감사 자체가 형식적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관은 매년 ○○시와 구청관계자들로 부터 감사를 받을 뿐 아니라 자체 감사도 매년 벌이고 있지만 해외여행비에 대한 지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관에 대한 전면 감사

가 필요한 실정이다. (후략)

(2) 『투명해야 할 복지예산』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7일자 2면)

내 용 : (전략) 더욱이 여행을 했다면 여행자체가 투명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여행자체가 투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우선 여행 횟수와 여행자들의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 더욱이 여행 목적도 불투명하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여행 경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후략)

(3) 『복지관이 아니라 복마전』 제하의 만평 (2007년 4월 17일자 3면)

내 용 :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17일자 1면 『○○복지관 저소득층 보다 직원 복지 앞장』 및 2면 『투명해야 할 복지예산』 제하의 기사와 3면 『복지관이 아니라 복마전』 제하의 만평에서 ○○복지관이 특정 종교단체에 사무실을 장기간 임대하고 직원들의 해외연수비용 예산을 저소득층 복지예산에서 충당했으며 이에 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지역사회 내에서 시설대관을 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교단체에 대관을 하였으나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 곤란하다는 관할 구청의 지적을 받고 대관을 이미 종료했으며 직원들의 해외연수비용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인 정부보조금이 아닌 복지관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한 자부담으로 충당했고 정기적인 관할 시·구청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정 사항을 수정·보완해 왔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 응급환자이송단이 사고수습비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해 유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응급환자이송단 ○○○지부
(지부장 노 ○ ○)

피신청인 : KNN-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NN-TV :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2007년 4월 26일 07:30)

내 용 : ▷앵커 : 네. 교통사고나 자살같은 변사 사고가 일어나면 일단 시신을 수습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죠. 그래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데요. 이때 시신을 수습하고 이송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지 그 규정이 없어서 유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장례식장을 정해 시신을 이송하는가 하면요, 또 사고수습비라는 명목하에 터무니없는 장례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PD인사이드에서 취재했습니다. (중략)

▷PD : 사고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장을 정해 장례를 주도한 사람들... 그들은 응급환자이송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략)

▷PD : 응급환자이송단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구조구급수단을 갖추고 응급환자만을 이송하는 사설단체입니다. 따라서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중략)

▷PD : 더욱이 이들은 버젓이 장의업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PD : 앰블런스하고 장의업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관계자 : 네. 지부장님이 장의사고 우리는 이송하고 그렇습니다.

▷PD : 실제로 이들은 응급환자이송단과 장례 전문 지도사라는 두 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교통사고나 변사사고는 경향이 없는 유족들을 상대로 손쉽게 장의업을 할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중략)

▷김모 씨(유족) : 응급구조라면 사람을 구조하고 사람의 목숨을 구조하는 직업이지 사람의 목숨을 죽여서 장례치르는 집단은 아니란 말입니다. (중략)

▷PD :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이나 변사사건... 그 현장에 어김없이 응급환자 이송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충격에 휩싸인 유족들을 겨냥해 사고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사의 처리절차와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26일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PD인사이드-“어이없는 사고수습비”』 제하의 보도에서 ○○응급환자이송단이 변사사고 처리를 하면서 장의사와 짜고 일방적으로 장례식장을 정해 시신을 이송하고 사고수습비 명목하에 유족들에게 터무니 없는 장례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응급환자이송단 ○○○ 지부는 “시신 이송 후 유족에게 사고수습비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방송에 보도된 응급환자이송단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시민신문사가 엉터리 자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배 타이틀을 사칭해 영리사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시민신문 (대표이사 목 덕 균)
피신청인 : 시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30.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시민일보 : (1) 『행사주최 바뀌치기 보조금 지원』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6일자 18면)
내 용 : 고양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회단체 범위에 속하지 않은 영리법인인 주식회
사(본보 4월16일자 4면 보도)에 수년간 지원
(2004~2006년 각 1000만 원, 2007년 1500만 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단체 범위와 설립목적 등 지원·대상
자격문제가 불법으로 밝혀지자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모집하고 5월 26일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계획한 S신문(주)은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활동
이 주목적인 (사)BBS 고양지부로 행사주최를 바
꿔치기하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최인
S신문사는 후원사로 바꿔 재신청했다. (중략)

지금까지 6회에 걸쳐 행사를 주최해왔던 S신문사
는 지난해 5월 27일 일산호수공원에서 '전국 청소
년예술제' 행사를 하면서 고양·파주·김포시의 유
치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글짓기
등 경연대회를 가진 후 7월 8일 킨텍스에서 수상자
를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수상작
품을 전시해 주기로 하고, 전시비용으로 한 건당 5
만 원씩을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특히 미술대회, 글짓기 등 이 대회에서 총 1,444
명에게 무더기로 각종 수상자를 입상시켜 상장을
만들어줬다.

즉, 수천 명에 대한 참가비를 제외하더라도 입
상자 중 1/3(480여 명)이 전시했을 경우 전시비로
24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누
가 봐도 비영리 청소년 행사로 보기 어려운 상황
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행사라는 이유로 신청한 보
조금을 심의한 심의위원회(부시장 및 간부 공무원 4
시의원 3, 민간인 8명) 총 15명의 위원들이 지원 대
상 단체와 금액을 심의하면서 전년도 보조금에 대한
엉터리 심의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후략)

(2) 『대상자 선정 엉터리 심의』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7일자 18면)

내 용 : <보도내용 (1) 참조>

(3) 『‘문광부 장관배’ 타이틀 사칭 상장 남발에
영리사업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0일자
18면)

내 용 : (전략) 특히 '전국청소년호수예술제' 라는
명칭으로 매년 5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글짓기 등
의 행사를 진행해 왔던 S지역신문사가 지난해 행
사에서 상장을 1,400여 장이나 남발하고 전시를
핑계 삼아 5만 원의 금전을 입금 받아 영리사업의
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5월에 열릴 행사
에 더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장관배' 라는 명칭까지 사칭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
을 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16일자 18면 『행사주최 바뀌치
기 보조금 지원』 및 4월 17일자 18면 『대상자 선정
엉터리 심의』 제하의 기사와 4월 20일자 18면 『‘문
광부 장관배’ 타이틀 사칭 상장 남발에 영리사업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S지역신문사가 '전국청소
년호수예술제' 를 불법적으로 주최하다 행사주최를

비영리법인으로 바뀌치기 했으며 부당하게 보조금 지급을 받았고 무더기로 상장을 남발했으며 전시 비용 명목으로 2,4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고 문광 부장관배를 사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전국청소년호수예술제'는 사단법인 SBS와 BBS와 시민신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비영리 순수 문화행사이며 지역 시청으로부터 불법으로 교부금을 받거나 참가 학생을 상대로 영리 사업을 벌인 바가 없고 적법하게 문광부장관상 후원 및 상장증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전국 호수예술제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6일 18면 등에서 '전국 청소년 호수 예술제'와 관련해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시민신문에서는 고양시의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받아왔고 전시예산이 없어서 개인별 5만 원을 받아서 전시한 후 작품을 돌려줬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상장을 수여했다면서, 호수예술제는 순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2007년 5월 14일까지 시민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시민일보 4월 20일자 원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고양서 보조금 받은 S신문사 '전국 청소년호수예술제')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이행기일까지 합의사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민일보 : 『전국 호수 예술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고춧가루 속의 쇧가루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3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내 용 : (전략) >진행자 : 이물질 자체가 해를 준다기보다는 그 식품원료를 깨끗하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취급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 교수(한국식품과학회) : 이물질 자체가 다 깨끗하게 관리 안 한 증거

(쇧가루에)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후략)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7년 4월 19일자 18:45)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19일 「불만제로」 프로그램 『고추장 속 이물질의 정체는?』 제하의 방송에서

‘식품을 불결하게 다루어서 혼입되는 이물질(씻가루)로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취지의 한국식품과학회장 이○○ 교수의 인터뷰 및 자막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교수는 방영된 내용과 같이 발언한 것이 아니라 “식품 속의 머리카락이나 돌과 같은 이물질은 식품을 불결하게 다루어서 혼입되는 이물질로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춧가루 속의 씻가루는 정상적인 제조 공정에서 피할 수 없이 잔존하는 극미량의 이물질로 인체에 축적되지 않고 모두 배설되므로 유해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발언했으며 이것이 잘못 편집되어 방영된 것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고 이 교수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내 용 : 저희 불만제로에서는 지난 4월 19일 방송에서 고추장 속 씻가루 검출에 대한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 중 인터뷰에 나온 이○○ 교수님께서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씻가루는 제조공정 중에 피할 수 없이 들어간 것으로 머리카락같은 이물질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멘트 및 자막처리가 잘못 나갔습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친절히 응해주신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5월 17일까지 MBC-TV <불

만제로> 프로그램 말미에 위의 내용을 진행자 중 1인으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송하되, 화면은 진행자를 비춰주는 동시에 조정대상방송(‘고추장속 이물질’) 중 신청인이 인터뷰하고 있는 화면이 우측 상단 박스 안에 계속 표시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5월 31일까지 MBC 시사교양국장 명의(자필서명 포함)로 된 공문을 신청인 및 한국식품과학회에 각각 보내서 유감을 표시하도록 하되, 공문 중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4월 19일자 방송과 관련하여 이○○ 교수님과 한국식품과학회에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MBC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연구자 및 학회 등 관련 기관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MBC 시사교양국을 대표하여 이○○ 교수님과 한국식품과학회에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PD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7년 5월 17일 19:4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시민신문사가 영터리 자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배 타이틀을 사칭해 영리사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시민신문 (대표이사 목 덕 군)

피신청인 : 경기도민일보

종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3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기도민일보 : (1) 『고양 사회단체보조금 ‘눈먼 돈’』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6일자 4
면)
(2) 『행사주최 바뀌치기 보조금 지
원』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7일
자 1면)
(3) 『एं터리 청소년 행사에 ‘들러
리’』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0일
자 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5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15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전국청소년호수예술제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6일 4면, 17일 1면, 20일 1면 등에서 ‘전국청소년호수예술제’와 관련 해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 “상장을 1,400개 남발했다”, “एं터리 심의였다”, “전시료 명목으로 2,400여 만원의 영리행사를 벌였다”, “문화관광부장관배를 사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시민신문사에서는 전국청소년호수예술제는 세계적 비영리 단체인 BBS경기총연맹 고양지회와 1회부터 6회까지 공동주최를 해왔으며 보조금은 전국적 규모의 공익청소년 문화행사에 대

한 고양시의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쳐 2004년부터 받아 왔고 전시는 예술제 행사와는 별도의 행사로서 수상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액자, 이젤, 스크린 인쇄, 전시장 대관료, 관리인 선임비 등으로 전시료는 5만 원을 받아서 전시한 후 수상자에게 작품을 반환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상은 1년 전부터 승인을 받아서 수상하고 있고, 또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상장을 수여해 왔으며, 학부형들과 교사들로부터 청소년 정서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순수 비영리 청소년 문화예술행사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2007년 5월 14일까지 경기도민일보 1면에 위 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경기도민일보 4월 20일자 원 조正大상기사의 부제목(“고양시 보조금 받은 S신문사 ‘전국 청소년호수예술제’”)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正大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이행기일까지 합의사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5월 11일까지 피신청인 신문사와 기타 웹사이트에 게시한 동일 및 관련 내용의 일체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도민일보 : 『전국청소년호수예술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1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시민신문사가 앁터리 자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배 타이틀을 사칭해 영리사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시민신문 (대표이사 목 덕 균)
피신청인 : 일간경기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30.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일간경기 : 『고양시 보조금지원 영리목적 ‘둔갑’』 제
하의 기사 (2007년 4월 20일자 7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5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15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7경기조정2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간경기 : 『한국청소년호수예술제 반론보도』 제하
의 기사 (2007년 5월 11일자 7면)
내 용 : <2007경기조정26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시민신문사가 영터리 자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배 타이틀을 사칭해 영리사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시민신문 (대표이사 목 덕 균)
피신청인 : 전국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30.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전국매일 : (1) 『‘영터리 보조금 지급’ 과문확산』 제
하의 기사 (2007년 4월 17일자 12면)
(2) 『지역신문 행사 고양교육청 ‘들러
리’』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0일자 6
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5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15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7경기조정2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국매일 : 『전국청소년호수예술제 관련 반론보도
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8일자 6
면)
내 용 : <합의사항 이행결과> ☐

시민신문사가 영터리 자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배 타이틀을 사칭해 영리사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시민신문 (대표이사 목 덕 균)
피신청인 : 평화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3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2007서울조정15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7경기조정26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평화일보 : (1) 『학생상대 예술제? 상장납탈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9일자 11면)
(2) 『문화관광부장관배 임의 사용 혼쫓』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0일자 1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52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평화일보 : 『전국청소년호수예술제 반론보도문』 제
하의 기사 (2007년 5월 18일자 11면)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내 용 : 〈합의사항참조〉



함안군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공장설립 허가를 냈으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 유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함안군 (군수 직무대행
부군수 배 종 대)
피신청인 : 함안아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30.
처리결과 : 합 의

함안아라신문 : 『국토효율 관리 않아...군수 직무 유
기...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31일
자 1면)

내 용 : 군 기본계획(관리지역 세분화)의 수
립 중에 각종 개발행위의 인·허가 제한이 가능하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

그러나 함안군은 이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 제63조 제1항 제3호는 '용도지역·용도지
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

보도내용

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하여진 용도 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당해 용도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며 자치단체의 관리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위 법 조항들에 따르면 함안군수는 법 제63조와 7조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사실상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중략)

그렇다면 함안군은 어떤 이유로 국토이용에 관한 최상위 법이라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개별 공장 허가를 내주고 있을까. (중략)

"적어도 그런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장 허가를 내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 실제로 군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무원이 법을 어거가면서 공장허가를 내줄 때는 그 이유가 뭘겠느냐"고 되물었다.

공무원과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31일자 1면 『국토효율 관리 않아... 군수 직무유기』 제하의 보도에서 "함안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개별 공장 허가를 내주고 있어 공무원이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서 '군수의 판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의 방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도 혹은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범위에 속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며 현재 관리계획의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경우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개발행위 허가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유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고 공무원과 일부 부동산 세력과의 유착의혹 역시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 3월 31일자 1면 "함안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7조를 위반한 것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함안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서 "군수의 판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함안군이 현재 관리계획의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경우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개발행위 허가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위반이나 직무유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또 본 신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개별 공장 허가를 내주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장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함안아라신문 2007년 5월 287호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함안군, 관리지역 세분화...)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함안아라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2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지역구 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한 구

피신청인 : 영남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3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영남일보 : (1) 『한나라 “이대로 가면 대선 3연패”
강도 높은 자성론』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6일자 3면)

내 용 : 한나라당이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에
서도 참패하면서 자성론과 책임론이 동시에 일고
있다.

선거 초반 봉화군수와 대구 수성구의원 공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한데다, 막판에 이르러 강제섭 대표의 지역구의 대구 서구에서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사건이 터지면서 한나라당이 4·25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중략)

반면 한나라당이 참패한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거나, 책임론을 앞세우며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수성구에 지역구를 둔 모 의원은 개표 결과를 들은 뒤 “수성구민이 바보라서 그렇다.”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의원은 4·25 재·보선 기간 중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사무소만 방문했을 뿐 선거 운동 현장도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당원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한나라당 텃밭을 꽃으면 당선되는 줄 아느냐”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후략)

(2) 『참패하고도 정신 못차린 한나라당』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7일자 27면)

내 용 : (전략)

한나라당의 자세는 여전히 미심쩍다.

대구의 한 국회의원은 25일 밤 한나라당 기초의원 후보의 낙선 보고를 받고는 “(지역구의) 주민들이 바보 아니냐”고 했다는 전언이다. 민심은 알 필요도 없고, ‘한나라 후보=당선’이란 오만의 극치다. 이렇다면 한나라당은 희망이 없다. 여태껏 밀어준 지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4·25 재·보선을 통해 보낸 경보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다면, 한나라당은 집권할 꿈도 꺾선 안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성구에 지역구를 둔 모의원의 선거결과에 대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6일자 3면 『한나라 “이대로 가면 대선 3연패” 자성론』 제하의 기사에서 “수성구에 지역구를 둔 모 의원은 개표결과를 들은 뒤 ‘수성구민이 바보라서 그렇다’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고, 또 4월 27일자 27면 『참패하고도 정신 못차린 한나라당』 제하의 사설에서는 “대구의 한 국회의원은 25일 밤 한나라당 기초의원 후보의 낙선을 보고 받고는 ‘(지역구의) 주민들이 바보 아니냐’고 했다는 전언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의원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영남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일자 2면)

내 용 : 영남일보 4월 26일자 3면 ‘한나라 “이대로 가면 대선 3연패” 강도 높은 자성론’ 기사 중 ‘수성구에 지역구를 둔 모 의원은 개표결과를 들은 뒤 “수성구민이 바보라서 그렇다”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부분과, 27일자 27면 ‘참패하고도 정신 못차린 한나라당’ 사설 중 ‘대구의 한 국회의원은 25일 밤 한나라당 기초의원 후보의 낙선 보고를 받고는 “(지역구의) 주민들이 바보 아니냐”고 했다는 전언이다’에 대해 모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확인결과, 모 의

원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의원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취재기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면 이미 정정보도를 게재했음에도 인터뷰형식의 새로운 기사를 보도해 줄 수 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므로 조정합의에 응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도시지역 보건지소의 철폐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경 화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데일리서프라이즈 : 『“고경화의 보건지소 철폐 검토 주장은 파쇼적 발상”』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일자)

내 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주요정책중 하나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정책과 관련,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보건지소의) 철폐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시 지역에는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철폐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고 의원은 지난 3월 25일 건강복지사회를 위한 모임과 의료사회포럼 등이 주최한 ‘공

공의료확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중략)

고 의원은 또 “이들 보건지소는 진료기능뿐 아니라 공중보건사업기능이 가능하므로 철폐보다는 유형별로 기능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략)

고 의원은 이날 정 교수의 발언에 대해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다른 예방의학과 교수님과 다른 의견이라 흥미롭다”고 전제한 뒤 “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민간의료가 많이 설치돼 환자들의 접근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과감하게 철폐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경화 의원은 보건지소 철폐를 주장한 바 없어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일자 『고경화의 보건지소 철폐 검토 주장은 파쇼적 발상』 제하의 기사에서 고경화 의원이 보건지소 철폐를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고경화 의원은 3월 25일 토론회의 토론문에서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기능뿐 아니라 공중보건사업기능도 가능한 조직이므로 이를 철폐하는 방식보다는 전면적인 유형별

기능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건지소의 철폐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의 철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7년 5월 21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테일

리 서프라이즈>에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반론·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집회현장에서 관계자들의 몸싸움을 만류하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위드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위드뉴스 : 『○○회관에서의 불법집회(?), 시끄러운 침묵시위』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3일자)

내 용 : (전략) 불법 집회(?)로 규정된 결의대회는 ○○회관 측 카메라 녹취로 더 소란스러웠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녹취를 하는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중 참가자와 직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진 것. (중략)

(사진설명) 카메라는 녹취 문제로 ○○회관 측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대회 참가자와 중간에서 이를 만류하는 ○○회관 측 직원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위드뉴스는 지난 4월 13일자 『○○회관에서의 불법집회(?), 시끄러운 침묵시위』 제하의 기사에서 “카메라 녹취문제로 ○○회관 측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대회참가자와 중간에서 이를 만류하는 ○○회관 측 직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모자이크처리없이 신청인들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인격권 침해 및 명예를 크게 훼손당하였으므로 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7년 5월 9일부터 기사 말미에 본 건과 관련하여 사과의 글을 게시한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위드뉴스 : 『○○회관에서의 불법집회(?), 시끄러운

침묵시위』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9일자)

내 용 : 본 기사에 게재된 내용중 일부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의 아니게 게재된 것

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받아들여 사진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당사자에게 심적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표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4월 26일 21:00)

내 용 : ▷앵커 : 2년 전까지만 해도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가구당 2, 300만 원씩 학교지를 돈을 분담해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못들은 체 하고 있다가 이제는 돈 돌려주라는 특별법 제정을 막자고 국회에 로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 신규아파트 입주 때 강제로 내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재작년 3월.

교육부는 그때까지 건은 5천 6백억 원의 부담금 가운데 석 달 안에 이의를 제기한 천백억 원만 돌려줬을 뿐, 나머지 4천 5백억 원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략)

▷기자 : 문제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부담금을 돌려주도록 아예 특별법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교육위는 통과했고, 본회의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종인 의원(3월 2일 국회법사위) :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돈은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자 : 법이 통과되면 꿈쩍없이 수천억 원을 돌려줘야 할 교육부는 돌려줄 돈도 없고, 학교도 더 지어야 한다며 법안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3월 2일 국회법사위) :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의 초·중등학교 재정지원의 길을 막는 결과가 됩니다.”

▷기자 : 회의장 밖 복도. 교육부는 물론, 전국의 교육청 공무원들이 올라와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청별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기자 : 부탁으로 안 되면, 다음엔 의원들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당신 지역에 초등학교가 설립 지연된 원인이 당신 때문이라며, 법안에 반대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의 IP를 추적해 봤습니다. 제주시 연동. 도교육청.

내용이 비슷한 다른 글들도 출처가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라북도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 : 우리라고 조직적으로 못하게 뭐 있냐? 그런 식으로 대항하자고...

▷기자 : 의원들은 협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의원(3월 2일 국회 법사위) : 교육계가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당국이 전국의 교육감과 교육장들을 다 동원해서 지역구의원들 막 하고 있

는 것 아닙니까?

▷기자 :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주자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는 모든 국민이 간접세 형식으로 내는 교육세와 자치단체 별로 걷는 학교 용지 매입비, 그리고 위헌결정이 내려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지어집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주면 학교 지을 돈이 없다는 게 교육부 주장이지만, 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도 아직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1조 4천억 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의 3배에 이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26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학교용지부담금 “못 돌려준다”』 제하의 보도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을 편집해 방영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임종인 위원의 발언을 인용 후,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의 초중등학교 재정지원의 길을 막는 결과가 된다”는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인용보도했고 “신규 아파트 입주 때 강제로 내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이제는 돈을 돌려주라는 특별법 제정을 막자고 국회에 로비까지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그동안 걷은 5천 6백억 원의 부담금 가운데 4천 5백억 원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 직원들이 국회의원 홈페이지와 국회의원 면담등을 통해 특별법안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의 초중등학교 재정지원의 길을 막는 결과가 된다”는 교육부총리의 발언은 임종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안상수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고 발언 내용중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이라는 내용이 빠진 채 보도되어 교육부총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을 한 날부터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걷은 부담금을 모두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 4천 5백억 원의 대부분은 위헌결정되지 않은 유효한 법률에 의해 부과·징수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 공무원들이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활동을 벌이는 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로비 행위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법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교육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특별법안에 대해 당사자로서의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은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특별법 제정에 법적·현실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론이 방송에 보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뉴스데스크’ 『학교용지부담금 “못 돌려준다”』 보도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유효하게 행사한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게 되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들에게만 특혜를 주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헌법학회로부터 소급입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MBC-TV ‘저녁뉴스(630)’ 프로그램 말미에 2007년 5월 25일까지 보도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반론보도문)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저녁뉴스」 프로그램 (2007년 5월 18일 18: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부처간 경쟁과 개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권 오 룡)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힘있는 부처’ 후보들만 임용 잔치』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6일자 1면)

내 용 : (전략)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이날 공개한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고위공무원단 임용자 88명 중 2월 말까지 다른 부처에 임용된 공무원은 13명에 그쳤다. (중략)

고위공무원단 임용도 소속 기관이 권력기관이나, 아니냐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였다.

9명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을 이수한 대통령비서실은 무려 8명이 고위공무원단에 임용됐다. 특히 이 중 7명은 모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수직 이동했다. (후략)

(2) 『인력풀 만든다더니 임용 88명 중 75명 친정복귀』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6일자 12면)

내 용 : (전략)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고위공무원단에 신규 임용된 88명(28개 기관) 중 출신기관이 아닌 타 부처에 임용된 사람은 13명에 불과했다. (중략)

후보자 교육 이수자 9명 중 8명이 임용된 대통령비서실 1명(대통령비서실에서 교육을 받은 후 건설교통부에서 임용)을 제외한 7명이 해당부서 행정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됐다 (중략)

상대적으로 권력기관 출신 교육이수자가 높은 임용률을 보인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고위공무원단 임용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6일자 1면 『‘힘 있는 부처’ 후보들만 임용잔치』 및 12면 『인력풀 만든다더니 임용 88명중 75명 친정복귀』 제하의 기사에서 고위공무원단 임용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직위의 30%는 부처간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찾는 공모직위로, 20%는 민관(民官)이 함께 경쟁하는 개방형직위로 문호를 열어놓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부처 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는 자율인사 직위이다. 그러나 위 기사는 마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오로지 공모직위만으로 운영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지난해 7월 제도출범 이후 후보자 교육 과정을 거쳐 고위공무원단에 임용된 88명 중 75명이 ‘친정복귀’ 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다른 부처 공무원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를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후보자교육을 이수했다라도 부처별 결원 상황 등 인사수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승진 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마치 ‘힘 있는 부처’들만이 고위공무원단 임용을 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4월 26일자 1면 『힘있는 부처 후보들만 임용잔치』, 12면 『인력풀...75명 친정복귀』 기사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부처별 결원상황 등에 따라 승진 비율이 다른데도 ‘힘있는 부처’만 임용시켰다는 내용은 오해 소지가 있고, 고위공무원단은 부처교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친정복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아일보 6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여 2007년 5월 23(토요일, 공휴일 제외)일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1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인사권을 이용, 환경미화원들에게 금품상납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외 2인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인일보 : 『벼룩의 간을 빼먹지』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7일자 16면)

내 용 :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는 감독(기능직 공무원) 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지역 환경미화원 등에 따르면 감독들이 인사권을 사용해 상납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업무량이 많은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실제로 지난해 인사과정에서 한 미화원이 돈을 거둬 감독에게 주었다며 상납 사실을 밝혀 경찰 조사가 진행됐으나 해당 감독은 무혐의 처리되고 돈을 건넸다는 미화원들만 출근정지 5일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에서 미화원 일을 했었다는 B 씨는 “돈 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받은 사람이 무혐의 처리되는 것이 말이 되냐”며 “근무할 당시 감독 눈에 잘 든 사람은 수년간 한 곳에서 불박이 생활을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업무량 등이 많은 곳으로 배치되는 등 인사상에 문제가 있던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 환경미화원 감독, 노골적 금품 요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7일자 사회면 『벼룩의 간을 빼먹지』 제하의 기사에서 ○○시 소속 환경미화원 감독들이 인사권을 이용해 금품상납 등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업무량이 많은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감독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금품상납을 요구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7일자 16면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라는 제목으로 ○○소속 환경미화원 감독들이 인사권을 이용해 금품 상납 등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업무량이 많은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등의 환경미화원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감독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금품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사권 남용한 사실 또한 밝혀진 바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인일보 2007년 5월 11일 16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환경미화원 감독, 노골적 금품요구)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 부분은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인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1일자 2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중국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들여와 신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불법복제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전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전자신문 : 『중국산 ‘짜퉁 애니콜’ 대량 밀반입』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5일자 23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4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14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전자신문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52

대표이사 최 영 상

주 문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자신문> 23면 우측 하단에 조정대상 기사와 같은 크기의 박스기사 형태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에 게재된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 1. 5.자 23면 『중국산 ‘짜퉁 애니콜’ 대량 밀반입』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산 가짜 휴대폰을 밀반입한 후, 국내 중고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불법 복제해 대량 유통시킨 업체의 대표와 관련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통된 휴대폰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적법하게 수거된 중고휴대폰의 케이스만을 교체해 재활용한 것으로, 중국산 휴대폰을 밀반입하거나 국내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해당 업체의 대표'로만 언급되었을 뿐 신청인의 성명이나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 등이 거명된 바 없고 '해당업체의 대표'가 신청인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일반 독자가 이 사건 언론 기사에서 언급한 '해당 업체의 대표'가 신청인임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언론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에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11.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모 중학교가 감독과 코치 간의 갈등을 이유로 기존 감독을 해임하고 축구와 무관한 사람을 축구부 감독으로 임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중학교 (교장 석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인일보 : 『○○중 축구부 감독선임 마찰』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5일자 19면)
내 용 : ○○중학교가 축구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마찰로 전국대회에 2차례나 불참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가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권을 불모로 감독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중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중학교와 △△, □□중학교는 지난해 6월 선수난과 재정난에 허덕이던 두 학교 축구부를 ‘○○중학교 축구부’로 통합하고 당시 □□중학교 감독이던 A 씨를 감독으로 ○○중학교 감독이던 B 씨를 코치로 임명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출신인 A 씨는 이후 전국 각지에서 축구 유망주 22명을 모집하는 한편 기존 ○○중·□□중 축구부원 등 모두 57명의 선수

를 구성했다.

○○중학교 측은 그러나 A 씨와 B 씨가 혼련 방식 및 생활 습관 등으로 서로 갈등을 빚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초 학교 체육부장인 C 교사를 축구부 감독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57명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한 건 A 씨의 지도력을 믿었기 때문인데 이제와서 축구와는 무관한 교사를 감독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학교 직원이 참가하지 않는 대회 출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일까지 마감이었던 ‘경기도축구협회장기’ 대회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개최되는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또 내달 3일부터 열리는 강진 춘계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도 출전 신청 마감일(12일)이 이틀이나 지난 14일에야 신청서를 접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사태가 이쯤되자 학부모 50여 명은 이날 ○○중학교를 방문, “당초 약속대로 A 씨의 감독직 및 학생들의 대회 출전권을 보장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중 축구부 감독선임 마찰』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5일자 19면 『○○중 축구부 감독선임 마찰』 제하의 기사에서 ○○중학교가 학교 측 코치 또는 감독과의 갈등을 내세워 국가대표출신 A 씨를 감독으로 재임용하지 않아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축구와는 무관한 C 교사를 3월 초에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중학교는 전년도 감독이었던 B 교사 후임으로 축구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C 교사를 임용하였고, A 씨는 ○○중과 계약관계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6,4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5일자 19면에 『○○중 축구부 감독 선임 마찰』 제목으로, ○○중학교가

학교 측 코치 또는 감독과의 갈등을 내세워 국가대표출신 A 씨를 감독으로 재임용하지 않았기에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측은 축구와는 무관한 C 교사를 3월 초에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과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중학교 축구부감독은 학교 교사만 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어 전년도 코치로 활동한 A 씨는 감독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인일보 2007년 5월 18일자 19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전국대회 두 차례 불참... 고교진학 어려움)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요구 부분은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인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8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주택조합 집행부가 대책도 없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려해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고 ○ ○)

피신청인 : 부천자치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부천자치신문 : 『○○ 2지구 재개발 '집행부-조합원 갈등』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7일자 사회·경제면)

내 용 : ○○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조합장 고○○)이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임대주택 의무분에 대한 인수자가 없자 분양전환시까지 조합해산 및 청산절차를 연장, 임대주택을 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승인을 득하려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략)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득할 수 없게 되자 ○○ 제2지구 재개발조합 측은 서둘러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시에 임대주택건설계획의 사업시행계획서를 보완·제출하면서, 분양전환시(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5년 또는 2년 6개월)까지 조합해산 및 청산절차를 연기하여 조합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 임대주택 관련 정보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7일자 사회·경제면에 『○○2지구재개발 ‘집행부-조합원’ 갈등』 제하의 기사에서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이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임대주택 의무분에 대한 인수자가 없자 분양전환시까지 조합해산 및 청산절차를 연장, 임대주택을 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승인을 득하려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득할 수 없게 되자 ○○ 제2지구재개발조합 측은 서둘러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시에 임

대주택건설계획의 사업시행계획서를 보완·제출하면서, 분양전환시(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5년 또는 2년 6개월)까지 조합해산 및 청산절차를 연기하여 조합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보도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 전에는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주택재개발조합의 비위로 인해 집행부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고 ○ ○)

피신청인 : 부천자치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부천자치신문 : 『주택 재개발 ‘투명한 조합운영’ 방안 없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4일자 11면)

내 용 : (전략) 한창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으로 사업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 제2구역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 측에 대해 각종 비위사실을 폭로, 집행부 측과 일부 조합원들 간에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집행부의 투명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조합의 구성 및 임원의 선정과정에서의 탈법행위, 운영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문제삼아 집행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 위한 사실확인

동의서를 받고 있다. (중략)

또한 임원과 대의원 선출에 있어 2주일 이상 게시 공고하고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공고를 개별통지도 하지 않고 현 집행부들끼리 짜고 임원과 대의원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를 하겠다고 공헌해 놓고 조합장과 총무가 활동비 명목으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서면동의라는 편법으로 총무가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원에 선임된 점, 각종 용역비를 과다 지출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점, 예산결산 총회를 조합설립 당해연도말에 열어야 하는데 열지 않은 점, 집행부의 전문지식 결여로 타당성으로 해야 하는데 편상형으로 한 점, 합리적 절차나 동의없이 시공 예정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비용을 임의로 차입하고 마구잡이로 지출한 점, 시공사인 모 건설사의 토지사용료를 타인으로부터 수년간 수천만 원을 받아 집행부 임의로 사용하면서 조합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 등 수십 가지에 이르는 사항을 문제삼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제2구역재개발조합집행부 비위사실

폭로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4일자 11면 『주택재개발 ‘투명한 조합운영’ 방안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조합의 구성 및 임원의 선정과정에서의 탈법행위, 운영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문제삼아 집행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 위한 사실확인동의서를 받고 있다”, “임원과 대의원 선출에 있어 2주일 이상 게시 공고하고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공고를 개별통지도 하지 않고 현 집행부들끼리 짜고 임원과 대의원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하겠다고 공헌해 놓고 조합장과 총무가 활동비 명목으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서면동의라는 편법으로 총무가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원에 선임된 점, 각종 용역비를 과다 지출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점, 집행부의 전문지식 결여로 답상형으로 해야 하는데 편상형으로 한 점, 합리적 절차나 동의없이 시공 예정사로부터 수십 억원의 비용을 임의로 차입하고 마구잡이로 지출한 점, 시공사인 모 건설사의 토지사용료를 타인으로부터 수년간 수천만 원을 받아 집행부 임의로 사용하면서 조합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 등 수십 가지에 이르는 사항을 문제삼았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3

신청인 : ○○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고 ○ ○)

피신청인 : 부천시자치신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10번지
한빛프라자 701호

발행인 허 선 엽

조정대리인 ○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천자치신문 11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부천자치신문 3월 24일자 11면 - ○○2단지·□□3지구·△△주공 재개발사업장 등 갈등 심화)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17.

<별 지>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4일자 11면에 『○○2지구재개발 ‘집행부-조합원’ 갈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제2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각종 비리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부천자치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일자 11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내용 참조> □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인사정책이 오히려 여성 승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청인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권 오 룡)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여성할당제 되레 승진차별』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일자 9면)

내 용 :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여성승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여성공무원들은 업무 강도가 센 보직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관행을 배려가 아닌 차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1부처 1여성 과장 제도 등 여성할당제는 여성끼리의 경쟁만 부추길 뿐이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직 6급인 이모(41·여) 씨는 “여성 과장 자리 하나를 놓고 여성끼리 경쟁한다”며 “양성평등이라는 할당제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중략)

여성공무원의 하위직 편중도 지적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사통계에 따르면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21.5%였다. 직급별로는 1급과 2급이 전무했고 3급과 4급도 각각 3.5%, 4.3%에 그쳤다. 8급과 9급은 각각 32.9%, 39.7%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여성에 대한 승진차별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2일자 9면에 『여성할당제 되레 승진차별』 제하의 기사에서 여성공무원

들이 승진에 차별받고 있고, 1급과 2급에 여성이 전무하다는 통계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면서 1~3급의 계급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3급 이상의 실·국장들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공무원 계급체계상 3급 이상의 실·국장을 말할 때는 고위공무원단의 현황을 살펴야한다. 기사에서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한 개 기관)의 여성공무원 비율만을 계산해 1급과 2급 중 여성공무원이 전무하다고 비판하였으나 이는 고위공무원단중 여성공무원이 36명임에도 고위직에 여성공무원이 없는 것처럼 전달되도록 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각 부처에 1명 이상의 여성과장을 두도록 한 것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각 부처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과장을 배출하도록 권장하는 것임에도 할당제라는 표현으로 여성과장 수를 부처당 1개로 한정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0일자 2면)

내 용 : 본보 2일자 9면 ‘여성할당제 되레 승진차별’ 제목의 기사 중 2006년 9월 통계에서 ‘1급과 2급 공무원중 여성이 전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현재 고위공무원단(1~3급)에 편입된 여성이 36명(전체의 3%)이며 ‘1부처 1여성과장’ 할당이 아닌 각 부처에 1명 이상의 여성과장을 두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자금을 유용했고, 이사회 의결결정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주) (대표이사 강 ○ ○)

피신청인 : 아이뉴스24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아이뉴스24 : 『내우외환에 휘청이는 한국○○○○』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일자)

내 용 : (전략) 한국○○○○은 K 대표의 자금유용과 이에 대한 은폐의혹이 회계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데다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0여 명에 대한 부적절한 선물공세 건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안팎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도리어 내부고발자인 Y 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리면서 조직 내부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진통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중략)

1일 한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8월이면 3년 임기가 끝나는 K 대표의 유임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략)

실제로 이사회는 이날 외부 회계감사 기관인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K 대표가 회사자금 5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담당팀에서 허위전표를 꾸미고, 허위영수증처리까지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일부 주주사들은 이번 이사회에서 내부 고발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해 문제가 확전될 조짐이다.

특히 한국○○○○ 경영진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불과 나흘만에 인사위를 소집, 내부고발자인 Y 씨에 대해 해고 징계를 내리면서 내부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대표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이에 대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담당책임자들이 오히려 인사조치를 당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한 내부고발자를 인사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경영진 역시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서둘러 문제를 봉합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중략)

지난 3월 일부 언론에서, 정통부 공무원 수십명을 상대로 10만~20만 원 상당의 부적절한 선물세트를 명절마다 보낸 IT 업체가 다름아닌 한국○○○○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통부 내부감사와 경찰수사 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패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을 수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국○○○○ 대표 자금 유용 등 관련 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1일자 IT면 『내우외환에 휘청이는 한국○○○○』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대표가 자금을 유용했으며 허위전표와 허위영수증을 꾸미고 이로 인해 이사회에서 대표 연임을 불허했으며 이 사건을 내부고발한 내부고발자를 부당해고하고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로 한국○○○○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국○○○○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전표와 허위영수증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시 전표와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감사인의 지적이 왜곡돼 보도되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을 불허케 한 것이 아니라 대표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경찰로부터 공무원 선물세트 접대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받은 바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아이뉴스24 : 『반론문 한국○○○○』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6일자)

내 용 : 한국○○○○은 지난 5월 1일 아이뉴스24에 게재된 ‘내우외환에 휘청이는 한국○○○○’이라는 기사에 대해 16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론문’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대표이사는 투서 문제로 회사 주주들에게 일련의 물의를 빚게 된 것에 대해 투서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고 이사회에서 사임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의 유임을 불허하는 등의 별도 의사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대표이사의 관공비 사용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것이며, 이에 대한 영수증과 전표는 허위로 처리되지 않고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당사자 징계하고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행위가 내부고발로 보기에 부적절하고 내용의 진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처리 하였음을 밝힙니다. 한국○○○○” □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학년과 동네이름 등을 보도해 신청인의 신원이 쉽게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문화일보 : 『중1 여학생이 동급생 성폭행 청부』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6일자 22면)
내 용 :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며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남학생들을 동원해 성폭행까지 하도록 한 여중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경찰서는 15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A(13)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뒤 남학생에게 집단 성폭행하도록 한 K(13) 양 등 여중생 4명과 성폭행에 가담한 K(16) 군 등 남학생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양은 A 양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헐담을 한다는 이유로 14일 오후 4시쯤 ○○시 ○○구 ○○동 자신의 집으로 A 양을 불러내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집단 폭행했다.

K 양 등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동 K 군의 집으로 A 양을 끌고가 K 군 등 3명에게 집단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 양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 가 메신저를 통해 내 이름을 들먹이며 욕을 하고 다녀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문화일보는 지난 4월 16일자 22면 『중1 여학생이 동급생 성폭행 청부』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남학생들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학년과 신청인이 폭행당한 동네 이름 등을 보도해 주위 사람들이 기사에 등장하는 피해 여학생이 신청인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 및 명예에 큰 훼손을 입었으므로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68

대표이사 이 병 규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 4. 16.자 문화일보 22면 『중1 여학생이 동급생 성폭행 청부』 제목의 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인 K(13) 양이 친구들과 함께 동급생 A(13) 양을 ○○시 ○○구 ○○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집단폭행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 K 군(16)의 집으로 끌고가 K 군 등 3명에게 A 양을 집단 성폭행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 양으로 보도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기사에서 사건의 피해자를 ‘중학교 1학년인

K 양의 동급생인 A 양, 사건의 발생 장소를 '○시 ○구 ○동' 이라고 적시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이 ○동에 사는 중1 여학생임을 드러나게 했고, 신청인은 사건 이후 폭행에 따른 치료 때문에 약 16일간 학교에 결석했는데 이 시점에 위 기사가 보도되어 ○시 ○동에 사는 여중생들과 다수의 사람들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인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18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언론에 성명이나 초상이 공표되거나 그 내용에서 자신과의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로 인해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살펴보면, 신청인에 대하여는 '중학교에 다니는 A(13) 양'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신청인에 대한 성명이나 주소, 기

타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바 없고,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가해자들이 살고 있는 위치로(○시 ○동) 신청인 또한 ○시 ○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추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 ○동은 ○○1동, ○○2동, ○○3동에 모두 수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고, 관내에 수 개의 중학교가 있어 기사에 언급된 '○시 ○구 ○동'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기사에 신청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9.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학년과 동네이름 등을 보도해 신청인의 신원이 쉽게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기 각

하의 기사 (2007년 4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서울조정1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서울신문 : 『여중생 동급생 폭행, 성폭행 사주』 제

결 정 문

〈2007서울조정161의 결정문 참조〉

□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학년과 동네이름 등을 보도해 신청인의 신원이 쉽게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I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스포츠서울

증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기 각

내 용 : <2007서울조정161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스포츠서울 : 『여중생이 남학생시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6일
자 23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서울조정1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액 참조>

결 정 문

<2007서울조정161의 결정문 참조>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학년과 동네이름 등을 보도해 신청인의 신원이 쉽게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IV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증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취 하

경기일보 : 『무서운 여중생들』 제하의 기사 (2007
년 4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서울조정1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액 참조>



보도내용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학년과 동네이름 등을 보도해 신청인의 신원이 쉽게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V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증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기 각

의 기사 (2007년 4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서울조정1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액 참조>

보도내용

경인일보 : 『“육했으니 육파라” 무서운 10대』 제하

결 정 문

<2007서울조정161의 결정문 참조>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
추진협의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광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광남일보 : 『교복 공동구매 ‘담합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3일자 14면)

내 용 : ○○ 시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가 업체간 담합으로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 교복제작업체들은 수년 동안 교복값을 현금으로만 결제를 하고 있어 세금포탈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략)

하지만 추진협은 ○○시 관내 10개 교복점이 있는데도 메이커 회사들을 배제한 채 4개 특정 교복업체만을 참여시키고 이들 4개 업체들은 서로 3개 학교씩을 골고루 배정받는 등 업체들간 담합 의혹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학생 옷만을 제작하는 교복업체는 남학교를 배정받고, 여학생 교복만을 제작하는 업체는 여학교를 배정받는 등 업체들간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학부모들은 “위화감을 없애고 저가의 교복을 공동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특정업체만을 입찰에 참여시키고 질 떨어진 교복을 반강제로 공동구매하게 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또 “추진협은 메이커 회사들이 똑 같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들 회사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격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질 좋은 메이커 회사 제품을 입겠다는 입장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외에도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은 이번에 선정된 4개 교복업체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동복까지도 선정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으로 결정해 놓는 등 서로간 커넥션 의혹까지 사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이에 대해 추진협의회 김○○ 회장은 “인터넷에 입찰을 올렸지만 예러가 많이 생겨 등록 공고가 되지 않아 관내 4개 회사만 연락을 했다”며, “교복업체들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협의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교복 공동구매 ‘담합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자 14면 『교복 공동구매 ‘담합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 시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는 학교별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부모 중심으로 추진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절차에 의해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됨에 강매 및 담합 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교북공동구매추진협의회는 본보 4월 23일자 14면(전남권) 머릿기사 『교북공동구매 ‘담합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협의회가 주관한 공동구매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고, 모든 학교추진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공개입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강매나 담합 등의 문제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역에서 7년째 교북공동구매를 추진한 시민단체로서, 대기업이 공급하는 교북의 거품가격에 대응하여 적절한 가격의 교북공동구매를 추진함으로써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실현하는 시

민사회 교육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광남일보 2007년 5월 22일자 또는 23일자 14면에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2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북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북공동구매
추진협의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광주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광주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7광주조정7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광주일보 : 『○○ 교북 공동구매 ‘나눠먹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3일자 14면)

내 용 : <2007광주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2일자 1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북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북공동구매

추진협의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광주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남도일보 : 『〇〇지역 교복 가격 담합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3일자 8면)

<2007광주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〇〇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
추진협의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호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광주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7광주조정7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합의사항 이행결과

호남일보 : 『〇〇지역 교복 공동구매 가격 담합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3일자 15면)
내 용 : <2007광주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호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2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〇〇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
추진협의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호남매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합 의

호남매일 : 『교복 공동구매 가격 담합 의혹』 제하
의 기사 (2007년 4월 23일자 12면)
내 용 : <2007광주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광주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합의사항

〈2007광주조정7의 합의사항 참조〉

호남매일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3일자 1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
추진협의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순천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광주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7광주조정7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순천신문 : 『교복 공동구매 특정업체 담합 의혹, 학
생 피해 주장』 제하의 기사 (2007년 4
월 30일자 1면)

내 용 : 〈2007광주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순천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8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사업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
추진협의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광주전남 데일리안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2007년 4월 23일자)

내 용 : ○○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가 지역의 특정업체들만의 입찰에 참여하고 입찰가 또한 4만 1000원~4만3000원으로 결정되어 업체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교복제작업체들은 수년 동안 교복값을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교복 공동구매가 업체의 배만 불러주고 오히려 학부모들은 그 피해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중략)

하지만 이날 공개입찰에 ○○시 관내 10개의 교복 제작업체 중 유명브랜드 업체들을 배제한 채 특정

보도내용

광주전남 데일리안뉴스 : 『교복 공동구매 업체 선정
‘논란’ 의혹』 제하의 기사

교복업체 4개의 회사만 참여했고 이들 참여 업체들은 서로 3개 학교씩을 골고루 배정받는 등 업체들 간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남학생 교복만을 제작하는 업체는 남학교를 배정받고, 여학생 교복만을 제작하는 업체는 여학교를 배정받는 등 업체들 간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져 비도덕적인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중략)

게다가 학부모들은 “추진협의회가 이번에 선정된 4개 교복업체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겨울철 교복까지도 선정하게끔 내부규정으로 결정해 놓았다”고 주장해 추진협의회와 업체간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협의회 김○○ 회장은 “유명브랜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가 공장을 갖추는 일 등 입찰참여 기준에 자격이 미달되어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입찰참여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처음에 인터넷에 입찰공고를 올렸지만 여러가 많이 발생해 등록공고가 되지 않아 지역 4개 업체만 연락을 했다”고 말해 유명브랜드 업체의 참여가 안 된 이유에 대해 석연치 않

은 해명을 했다.

업체간 가격 담합과 추진협의회와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 김 회장은 “비슷한 품질의 교복은 어느 곳에서나 가격도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업체와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다”며 일부 의혹 주장을 일축했다.

김 회장은 “이번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가격을 낮춤으로써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을 덜었을 뿐 아니라 유명브랜드 업체 대신 지역 업체가 교복을 납품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했다”고 덧붙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광주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반론이 모두 원보도에 이미 게재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반론은 수용할 수 없다. □

통영시가 케이블카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통영시 (시장 진 의 장) 외 1인

피신청인 : 미륵산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미륵산 : (1) 『늦으마한 나이에 서툰 글을 쓰게 된 까닭?』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25일자)

내 용 : (전략) 전승지 당포(唐浦)에 지역민이 정성모아 준비중인 당포승첩비는 세우지 못하게 중

지시켜 놓고 당포대첩이 있는지 12년 후 어느날 풍랑에 밀려와 나포된 서양인 포로가 한명 있었다 하여 자세한 검증도 아니고 (1593년 서양인 선교사가 다녀간 사실있음)거액의 예산을 들여 외국인 대사까지 모셔다 놓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서양인 이라는 비석의 제막식을 거행했으니 (중략)

통영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사연과 추억을 간직한 봉래극장 일찍히 시문화재로서 지정되어야 할 이 건물을 구체적 계획도 없이 시가의 갑질을 주고 매입해서는 하루 사이에 헐어버렸으니 낭비의 극이요 문화에 대한 테러라 아니 할 수 없다. (중략)

점입가경(漸入佳境)인 것은 문화원정 선거의 개입이다. 종속기구도 아닌 특수법인인 문화원의 원

장선거에 행정력이 개입한 이유는 분명 사회의 모든 기구를 자기 사람들로써 획일화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제는 자치 단체장의 야심과 독단적 상상력에 끌려 다니며 손실과 낭비만 초래하는 통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시장과 시민이 함께 실패하는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후략)

(2) 『케이블카』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5일자 3면)

내 용 : (전략) 아무리 염치나 체면,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라지만 공사의 완공이 가까워지니 멀리서 구경이나 하고 현장 한번 둘러보지도 아니한 사람. 공사 진행에 걸림돌 역할만 하던 사람, 늦게 참여하고선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한 양 떠들고 다니는 사람, 출장중 공무수행은 아니하고 밤새 술만 마시고 돌아온 사람, 이런 자들이 감투배정하는 잔치상 주위에 우글거리기 시작하니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다. (중략)

미륵산 정상에 상부역사를 세우기로 된 것을 정상언덕 아래로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진시장의 가벼운 언행으로 해서 공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릴때 주무과장에게 지시하여 통영발전협의회를 만들게 하여 시민의 서명날인을 받아 어렵던 국민을 벗어나게 만든 것도 추진위원회의 발상이다. (중략)

마지막 합의서명의 절차만을 남겨둔 채 시장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중략)

마산MBC 방송국과 인터뷰 중 미륵보살을 홍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두 개 불교신문에 대서 특필됨으로써 중앙 중단은 물론 전국의 불교신도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이다.

시민투표까지 단행하여 어렵게 이루어 놓은 합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며 이로 인해 시민에게 엄청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중략)

우리 시의 잘못에 의해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여러 차례 연기를 하는 동안 3차례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보상을 해주었다. (중략)

우리시에서 2001년 6월 15일 만든 조례는 당시 적자운영을 예상하여 임대에 응할 업체가 없을 것

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후략)

(3) 『신이 내린 직장』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일자 1면)

내 용 : (전략) 우리시에서는 계약위반으로 16억 4천만 원을 보상해 주면서 ○○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공사기관을 지키지 못하면 공사비의 천분의 일을 보상하게 되어 있음)은 요구하지 아니하고 끌려 다니는 이유는 뭔가? ○○의 임원인가 통영시장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4) 『허풍(虛風)』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일자 3면)

내 용 : (전략) 허풍은 사회에 불신을 양산한다. 전임시장들이 세워놓은 도시 계획도 다음 시장때는 휴지가 되버리는 현실에서 자기 임기에 하지도 못할 먼 훗날의 꿈같은 계획을 가능성 여부도 깊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발표를 일삼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25일자 3면 『늦으마한 나이에 서투른 글을 쓰게 된 까닭?』 제하의 기사에서 통영시가 지역민이 준비하고 있는 당포 승첩비는 세우지 못하게 하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다는 서양인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으며 봉래극장 건물을 구체적 계획없이 매입해 헐어버리는 일을 벌였고 통영시장이 통영문화원 문화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5일자 3면 『케이블카』 제하의 기사에서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중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미륵산 정상에 상부 역사를 세우기로 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통영시장의 가벼운 언행으로 공사가 진전을 보지 못할 때 추진위원회의 제안으로 통영발전협의회가 만들어져 어려운 국면을 벗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장이 미륵불이 홍물이라는 방송사 인터뷰를 해 케이블카 사업에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끼쳤으며 통영시의 잘못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 세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에 보상을 해주었는데 그 금액에 의문이 있으며 통영시가 2001년 6월 15일에 만든 조례는 적자 운영을 예상해 임대엔 응할 업체가 없을 것을 전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자 1면 『신이 내린 직장』 제하의 기사에서는 케이블카 공사 연기로 인해 건설업체에 돈을 보상해주면서 정작 건설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은 요구하지 않고 있어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보도했으며 동일자 3면 『허풍』 제하의 기사에서는 통영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처리하지 못할 일들을 무리하게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당포승첩비는 진행중인 당포성복원과 발맞춰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통영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이 왔음이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어 기념비 제작을 하게 된 것이고 봉래극장 터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봉래극장을 매입, 철거한 것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통영시장이 통영문화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사업 추진 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애초 계

획부터 미륵산 정상에 상부 역사를 세우기로 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추진위원회의 발상만으로 통영시민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케이블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통영시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미륵보살을 흥물이라고 했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끼친 적도 없고 공사가 연기돼 건설업체에 지급된 돈은 정당한 계산과정을 거쳐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통영시장이 자기 임기에 하지도 못할 일을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보도는 통영시장이 초도순시를 하면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이 통과될 시 통영시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전혀 없음으로
정정·손배청구에 응할 수 없다. □

광명시가 불법 파행운행을 묵인하는 등 특정 운수회사와 결탁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명시 (시장 이 호 선)
피신청인 : 수도권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수도일보 : 『“시민 불모로 불법 파행운영”』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30일자 1면)
내 용 : 시민을 불모로 잡고 불법 파행운영 하는 것은 물론 노선을 벗어나 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데도 경기 광명시가 이를 묵인, 운송회사와 결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광명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운수 소속 ○○번 버스가 광명 하안단지를 경유 운행하지 않고 이를 무시, 바로 안양천을 경유해 운행하는 등 노선을 탈법 운행하고 있으며, (중략)

앞서 지난 1~2월 이호선 시장이 농촌마을 순시를 돌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온신초등학교~철산역까지 마을버스노선을 지정해 주민불편을 해소한다고 발표해 놓고도 이를 번복, 온신초등학교~독산역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승차장을 조정한 것에 대해 운송회사의 압력을 받고 노선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어 감사원의 광명시 감사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효선 광명시장이 초도순시 때 노
은사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온신초등학교부터
철산역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W운수가 운행허가를 제출
했으나 기존 운송회사인 ○○운수에 공문을 보내
운행토록 했고, ○○운수가 이를 거부, 당시 마을버
스 회사인 W운수가 운행허가를 제출해 일반버스
와 노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온신초등학교~독산동
까지 허가를 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당시 허가를 내준 담당공
무원은 마을버스노선을 담당해 추진했던 공무원들
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당시 이를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운수에
공문을 보낸 후 제대로 된 답변도 듣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보 인사발령조치를 받았으며, 후임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이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
○운수와 광명시 고위관계자간 결탁의혹도 불거지
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한편 마을버스 노선을 신청한 W운수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해 적자운영이지만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마을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이효선
시장이 주민들에게 말한 온신초등학교~철산역까지
운행신청을 했으나 이를 처음 담당할 공무원들이
추진하던중 갑자기 인사조치당했으며,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30일자 『시민불모로 불법 파행
운영』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 광명시가 특정 운수
회사와 결탁해 해당 운수회사의 불법 파행운행을
묵인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특정 운
수회사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
다. 또한 “당시 마을버스 회사인 W운수가 운행허
가를 제출해 일반버스와 노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온신초등학교~독산동까지 허가를 내줬다”는 시 관
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고 “W 운수가 이효선
시장이 주민들에게 말한 온신초등학교~철산역까
노선에 대한 운행신청을 냈으나 이를 처음 담당할
공무원들이 추진하던중 갑자기 인사조치를당해” 특
정 운수회사와 광명시 고위 관계자 간에 결탁 의혹
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버스 노선의 결정은 관련
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
로 운수회사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결정될 수 없
으며 특정 운수회사의 불법 파행운행을 묵인하거
나 결탁한 바도 없고 온신초등학교~독산동까지의
노선에 대한 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
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인사조
치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에 의해 이
루어진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수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5
월 14일자 14면)

내 용 : 본보 <2007년 4월 30일 1면 보도> 광명
시 ○○운수의 ‘시민불모로 불법 파행운영’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이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버스노선의 결정은 여객운수사업법에 근거, 노선
신설이 결정되며 ○○번 버스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마을버스 온신초교~독산역 노선신
설은 확인결과 광명시에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
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광명시
조직개편(2007년 3월 28일 조례공포 확정)으로 단
행한 사항으로 금번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정정합니다. □

신청인 협회 내부의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내홍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부산시○○○협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부산KBS-1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부산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4월 27일 21:30)

내 용 : ▷앵커 : ○○시 태권도협회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비리로 얼룩졌던 협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시체육회가 직접 나서 새 집행부를 선임했지만 정상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양○○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 지난 2001년 ○○시체육회는 산하 단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시 태권도협회를 사고 단체로 지정하고 집행부를 전원 사퇴시켰습니다.

고질적인 승단, 승품 심사비리로 회장과 감사가 구속되는 등 정상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체육회는 1년 가까이 태권도협회를 직접 관리하다 비리근절을 기대하며 기업인인 김○○ 회장에 게 협회운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최근에도 승단, 승품 비리에 연루된 협회 집행부 11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권도협회 관계자 : “안 온 친구들을 온양 해가지고 채점하는 그런 것이고 또 내 잘하는 사람한테는 합격시켜주고 내가 좀 불필요하고 협회에 방해되는 사람은 잘해도 불합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자 : 협회 운영방식을 둘러싼 내부 잡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이 협회를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징계권을 휘두르자 징계를 당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고 이들은 최근 회장이 선거법을 어겨 당선됐다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맞서 회장은 전략적으로 사퇴해 재판을 피한 뒤 다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촌극까지 벌여졌습니다. (중략)

▷기자 : 새 집행부가 내홍에 시달리면서 ○○에서의 전국태권도대회는 자취를 감췄고 전국체전 성적도 만년 꼴찌로 전락했습니다. (중략)

▷기자 : 지역 태권도인들은 태권도협회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만큼 사고단체 재지정 등 시체육회 차원의 해결책 제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뉴스 양○○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거꾸로 가는 태권도협회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7일자 「뉴스9」 『심층-거꾸로 가는 태권도협회』 제하의 기사에서 “협회에 방해되는 사람은 잘해도 불합격되는 사항이며 신임 회장이 협회를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징계권을 휘둘렀고 회장이 전략적으로 사퇴해 재판을 피한 뒤 다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촌극을 벌였으며 새 집행부가 내홍에 시달리면서 ○○에서의 전국태권도대회는 자취를 감추고 전국체전 성적도 만년 꼴찌다”라는 인터뷰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태권도협회는 “승품단 심사의 합격과 불합격은 협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검찰에서 8개월간의 정밀조사로 협회장 및 전무이사는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고, 징계 또한 회장이 지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별위원회 규정에 입각하여 회의로서 결정된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태권도협회장을 선출하는 지역대의원인 구군 지회장들은 “현 회장은 절차에 따라 하자없이 선출됐다”고 밝혀왔습니다. □

태안군수가 부동산 특혜 의혹 및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태안군 (군수 진 태 구)

피신청인 : 서해안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서해안신문 : 『진태구 태안군수 집권 5년, 진지한 평가와 대안』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일자 1~2면)

내 용 : 태안군이 2005년 12월 1일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태안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이 진태구 태안군수가 소유한 안면도 땅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략)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캐슬 좌측방향으로 염전과 커다란 목장이 연안계획관리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소유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점이었다. 그 후 제기된 특혜의혹의 땅은 진태구 태안군수 소유로 밝혀져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게 된 것이다.

태안군에서 작성한 ‘연안관리지역 계획(안)’에 의하면 과업의 공간적 범위를 ‘연안육역 연안관리법’에서 정하는 연안범위 내 500m 또는 1,000m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혜의혹이 제기된 진 군수 땅이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밝혀져 규정을 무시한 특혜를 주었다는 주민들의 의혹제기에 힘이 실렸던 것이다. (중략)

한편, 일부 주민들은 연안관리계획이 태안군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태안군이 공청회에 대해 주민들에게 고의적으로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면읍을 제외한 타 지역은 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연안,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하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중략)

당시 진 군수는 새롭게 제기된 ‘안면도관광지개발계획’에서도 본인 소유의 땅을 뺐다’ (중략)

그러나 그에 대한 군민의 신뢰가 개인적인 ‘부동산 부풀리기 의혹’에 큰 타격을 입는 장면이었다. (중략)

최근에는 환경영향조사용역비 수의계약 논란이 이어졌다. 올해 3월 29일 해사채취 환경영향조사 중간보고회가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수산진흥

기금이 법적근거도없이 연구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조사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도 환경부 규칙시행령을 내세워 어류서식처를 망가뜨리면서 해사채취료(수산진흥기금)를 수입원으로 잡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특별기금이 연구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의혹을 제기한 군민들은 환경영향조사는 환경부의 규칙에 불과한 일인데 6억 원의 예산을 세워준 태안군의회와 계획을 수립한 태안군의 무능함이 어우러진 작품이라며 군과 군의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내비쳤다. (중략)

반면 태안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상급기관인 해수부와 관계기관에 질의서를 보냈으니 기다려 달라”며 “답변서가 내려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하며 확실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 (중략)

유○○ 소장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태안 지역의 공무원에 의해 자행된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사건은 지역을 막론하고 무자비한 성범죄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며 “지역 사회는 성폭력의 피해를 침묵하고 은폐하며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를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김모 공무원 사건은 개인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성폭행 및 협박 등을 일삼았다. (중략)

또한 유 소장은 진태구 군수에 대해 “잘못된 인사행정과 관리감독의 소홀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군민 앞에 사과하라”며 “태안군은 개인정보 보호와 신상에 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 청소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문화공간, 보호쉼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로가 좁아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진태구 태안군수가 거주하는 관사의 전용도로가 있어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의 반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중략)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태안군청과 아파트

사이에는 차량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주민보호를 위한 인도조차 없었다. 반면 군청 정문 옆 관사로 향하는 전용도로에는 벽돌과 철조망 문으로 막혀 있어 일반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2일 자 1~2면 『진태구 태안군수 집권 5년, 진지한 평가와 대안』 제하의 기사에서 태안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과 관련해 진태구 군수가 소유한 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태안군이 고의적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홍보하지 않았으며 안면읍을 제외한 타 지역은 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연안,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해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고 안면도 개발계획에서도 진태구 군수 소유의 땅을 제외해 부동산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산진흥기금을 법적근거없이 환경영향조사비로 사용했으며 관계공무원이 이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청소년 성폭행 사건 당사자인 김모 씨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데 썼으며 이 사건 후에 태안군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선군수의 특혜로 의심되는 군수 관사 전용도로로 인해 주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사에서 실수로 안면도 일부 지역을 누락, 구역설정 후 용도지역 미설정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태안군수 소유 땅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태안군이 공청회에 대한 홍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을 절대보전연안과 준보전연안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소극적인 개발을 전개하는 지역을 준보전연안 지역으로 연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것이며 진태구 군수 취임 전에 진 군수의 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부동산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수산진흥기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한 것이며 공무원 신분으로 청소년을 성폭행한 김모 씨는 법행 당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 사건 이후 적절한 방지대책을 태안군이 수립, 시행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민선군수 특혜로 지목된 관사 진입로는 진태구 군수 취임 전인 1990년 군청 신축 당시 신설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기사에 하자가 없으며 민사상 소 제기를 할 예정이므로 신청인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학교법인이 건설사에 매각됐으며 현재 학교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안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경인일보 : (1) 『학교 부수고 아파트 장사?』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일자 1면)

내 용 : 국내 한 중견 건설업체가 의정부 최대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학교를 매입,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동문 등 학교관계자들이 “건설사의 돈벌이 행각에 교육현장이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의정부 Y고등학교 관계자들과 동문 등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의정부시 ○○동 산 ○○ 일원

에 위치한 Y고를 인수, 학교를 이전하고 현 부지에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과 재단인 학교법인 Y학원의 이사장이 현 정원 7명의 이사중 4~5명의 이사를 건설사 측 관계인들로 교체, 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학교부지에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그러나 재단과 ○○건설 측은 학교매각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Y학원 이사장은 “학교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같은 소문이 왜 생겨났는지 모르겠다”고 매각설에 대해 부인했다.

○○건설 측도 “기업으로서 사회환원을 위해 사학을 지원하는 입장일 뿐 아파트건설 등의 계획은 전혀 없다”며 “이사진 교체설 또한 사학 측에 자금지원의 정도와 범위 측면에서 고려하다보니 일부 이사가 교체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후략)

(2) 『‘고교매입 아파트건설 의혹’ ○○건설』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3일자 1면)

내 용 : ○○건설이 아파트건설 목적으로 의정부의 한 사립고등학교 편법매입을 추진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경인일보 5월 2일자 1면 보도) ○○건설의 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최근 이 학교 법인의 이사로 대거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학교법인의 개방형이사로 최근 취임한 이사 2명의 선임과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민원을 접수, 뒤늦게 조사를 벌인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현재 이사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은 “법인이사장 외에 4명의 이사가 ○○건설 사람들로 채워져 이사회 의 결정족수를 넘어섰다”며 “이는 노른자위 땅에 있는 학교의 이전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 부지를 ○○건설에 매각해 아파트를 지으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의정부 Y고 ○○건설에 팔렸다는 보도

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일자 1면 『학교 부수고 아파트장사?』 제하의 기사와 5월 3일자 1면 『고교매입 아파트건설 의혹 ○○건설 학교법인 이사 편법 등재 들통』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가 ○○건설에 팔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의정부의 Y고가 ○○건설에 팔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안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인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번지

대표이사 송 광 석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경인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 5. 2일자 1면에 『학교 부수고 아파트장사?』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설립, 운영하는 ○○고등학교 부지를 ○○건설 측에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매각하려고 계획한 것처럼 보도하고, 다시 같은 달 3일 1면에 그 후속기사로 『고교매입 아파트건설 의혹 ○○건설 학교법인 이사 편법등재 들통』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개방형이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건설 사람들을 선임함으로써 신청인 이사회 이사 정원 7명 중 의결정족수를 넘는 4명의 이사를 ○○건설 사람들로 구성함으로써 위 학교부지 매각결의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혀 학교부지를 ○○건설 측에 매각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 전혀 없고, 따라서 위 보도내용은 전혀 진실과 다른 허위이므로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2. 판단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보도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보도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위 학교의 전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동문 등의 주장사실을 인용하여 위 학교부지에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으로 신청인 이사회 이사정원 중 일부가 ○○건설 측 관련자로 새로 선임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결국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나 새로운 이사들의 선임이 이루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진실에 부합하고 위 보도내용이 진실과 다른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이나 ○○건설 측의 ‘학교부지 매각이나 아파트 건설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론을 함께 보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

인의 보도가 신청인 측의 학교운영에 무슨 위해를 가할 의도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3.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17.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목포경찰서가 시의원 전과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목포경찰서 (서장 김 재 병)

피신청인 : 목포투데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목포투데이 : (1) 『목포시의회 모 의원 전과기록 조작 당선』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5일자 1면)

내 용 : ○○시의회 모 현역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전과기록을 조작하여 출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후보자의 전과조회서를 발부한 목포경찰서는 추후 내부 감사에 따라 모 의원의 전과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명을 징계했으나 관련자의 모의 과정 등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중략)

이에 따라 목포경찰서 내부의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방의회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을 조작하고, 이를 묵인했는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중략)

목포경찰서는 최근 3년 사이 4명의 서장 중 윤○○ 전 서장을 제외한 최○○, 최△△, 정○○ 서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임기도중 하차했다.

(2) 『○○시의회 모 의원 전과조작은 사실』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일자 1면)

내 용 : ○○시의회 모 현역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전과기록을 허위로 조작하여 소명하는 방법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와 관련이 있는 목포경찰서 직원이 내부 징계를 받았다는 본사 보도(2007년 4월 25일자 1면)에 대해 목포경찰서는 사건 전모를 공개하지 않고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중략)

30일 목포경찰서 송○○ 청문감사관은 “그 때 당시 고의적으로 발급했는지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해 직원들을 문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

다”고 답변했다.

목포경찰서 최○○ 수사과장은 “이미 사건이 종결되어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며 “올해 2월 7일자로 부임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사건 당사자와 연루된 경찰서 내 인사들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포경찰서 주변 증언을 종합할 때 본사가 보도한 ○○시 의회 현역 모 의원의 전과조작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중략)

지역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게재하고 이를 수만 장 배포한 사람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당선된다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 등이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중략)

전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의원은 선거 출마 당시 경력에 목포경찰서 외곽 시민자율기구의 고문을 역임했다고 밝혔던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5일자 1면 『○○시의회 모 의원 전과기록 조작 당선』 제하의 기사 및 5월 2일자 1면 『○○시의회 모 의원 전과조작은 사실』 제하의 기사에서 ○○시의원이 전과기록을 조작해 당선되고 목포경찰서가 전과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당시 전과기록 회부 교부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단순 실수로 전과기록 회부 교부서에 일부 전과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철저

한 수사결과 확인됐으며 목포경찰서가 전과조작이나 전과조작 모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25일자 1면 『○○시의회 모 의원 전과기록 조작 당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목포경찰서가 ○○시의회 모 의원후보자 전과조작서 발부과정에서 전과기록 조작 및 모의 과정에 연루되어 있다는 등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경찰서는 검찰지휘를 받아 한 내사결과 소속 경찰관의 조작 및 모의 연루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지 범죄경력 회보서 교부업무과정에서 전과를 누락, 교부하였던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함께 보도한 목포경찰서장들의 교체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반론보도신청인 목포경찰서 서장 김 재 병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목포투데이 2007년 5월 23일자 1면에 1단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작년 지방선거 낙선대상자...) 활자크기로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목포투데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3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중계유선방송이 신규 케이블 방송에 상당수
가입자를 뺏겼으며 한전과 짜고 케이블 방송의 전주 사용을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1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디지털넷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함안아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9.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함안아라신문 : 『가야읍에 케이블TV 바람분다』 제
하의 기사 (2007년 4월 12일자 7면)

내 용 : “케이블 티비로 바꾸세요~”

설을 앞둔 요즘 ○○읍에 기존의 ‘유선방송’을 ‘케이블 TV’로 바꾸는 열풍이 거세게 불고있다. 하루에 약 100여 가입자가 케이블 TV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기존 중계유선사의 ○○읍 지역 가입자 수는 대략 4500여 가입자. 이런 추세라면 1달새 대략 1000가입자 이상이 케이블 TV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략)

기존 유선방송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용도의 ‘중계유선방송’에 불과하다. (후략)

(2) 『“골라서 방송 볼 기회는 줘야죠” ○○읍민들 불만』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31일자 3면)

내 용 : 최근 ○○읍에 다채널의 케이블 방송인 ○○경남방송이 서비스 개시되면서 기존 중계유선방송사가 반발하고 나섰고 한전 ○○지점도 한전주의 무단 사용을 문제 삼아 케이블 방송의 설치를 막고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략)

한전 측과 중계유선사가 케이블 방송설치를 막고 있는 가운데 영문도 모르는 ○○읍민들만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것. (중략)

또 일부 주민들은 “현재의 유선방송과 새로운 케이블 방송을 골라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 주민들에게 있다”며 “설치를 못하게 막고 나선 한전 ○○지점과 중계유선방송사는 한 식구인 모양”이라며 꼬집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2일자 7면 『○○읍에 케이블 TV 바람 분다』 제하의 기사에서 “설을 앞둔 요즘 ○○읍에 ‘유선방송’을 케이블 TV로 바꾸는 열

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하루 100여 가입자가 케이블 TV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 새 대략 1,000여 가입자 이상이 케이블 TV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으며 “기존 유선방송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용도의 중계유선방송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자 3면 『“골라서 방송 볼 기회는 줘야죠” ○○읍민들 불만』 제하의 기사에서는 “한전 측과 중계유선방송 측이 짜고 케이블 방송의 전주 사용을 막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중계유선방송에서 케이블 TV로 넘어 간 가입자는 3개월 동안 약 9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케이블 방송이 무단으로 한전의 전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전 ○○지점이 전주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이와 중계유선방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월 12일자 7면 『○○읍에 케이블TV 바람분다』라는 제목과 3월 31일자 3면 『골라서 방송 볼 기회는 줘야죠』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유선방송업자인 (주)경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와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함안아라신문이 보도한 내용 중 “하루에 100여 가입자가 케이블TV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부분과 “이런 추세라면 한 달 새 1000 가입자 이상이 케이블TV로 빠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3개월에 걸쳐 96명의 가입자가 중계유선방송에서 케이블TV로 전환해 갔습니다.

또한 “한전 측과 중계유선방송 측이 설치를 막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케이블방송 설치를 막은 것은 케이블방송이 한전의 전주를 무단 사용하여 설치하고 있으므로 한전 함안지점이 이를

막은 것이지 중계유선방송은 이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선방송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용도의 중계유선방송에 불과하다”라는 보도에 대하여는 중계유선방송의 채널구성과 가격체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주)경남○○○○ 대표이사 ○○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함안아라신문 2007년 6월 288호 7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3

월 31일자)의 부제목(긴급진단…)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함안아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5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정읍경찰서가 폭행당한 임산부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뒤바뀌 조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읍경찰서 (서장 강 현 신)

피신청인 : 전북연합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전북연합신문 : 『약자에 강한 한심한 공권력』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8일자 14면)

내 용 : 어린이날 맞아 분주하게 움직이던 어린이 완구점에서 벌어진 사건의 한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략)

사건 당사자인 황모 씨 부부는 7일, “지난 5일 ○○시 ○○동 소재 T완구점에 교환 및 수리를 요청하는 4명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고 밝혔다.

부부지간인 이들 4명은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임신중이니 아내를 건들지 말라”는 황 씨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내 유모 씨의 얼굴을 가격해 안경을 깨뜨리고 가슴과 명치 부분을 수 차례 폭행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매장에는 10~20명의 손님들이 이 모든 행위를 지켜봤고, 매장 입구 쪽에 있던 의경들에게 부탁,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

다.

얼마 후 경찰관들이 도착,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난 뒤 해당 지구대에 와보니 상황이 돌변해 있었다는 것.

황 씨에 따르면 아내에게 폭행을 행한 사람은 2가족 4명이었는데, 1가족 2명으로 줄어있었고, 말리면서 먹살잡이를 당했던 자신이 오히려 그쪽을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많은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의경들을 앞세워 목격자라고 하고, 오후 11시가 다 된 시간에 찾아와 힘들어 하는 아내에게 조서 작성까지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8일자 14면 『약자에 강한 한심한 공권력』 제하의 기사에서 정읍경찰서가 폭행당한 임산부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 가족들이 억울함과 공정수사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상호 폭행을 당했고 일부 폭행했다는 내용을 시인하는 양 당사자 진술만 확보하고 아직 수사과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인 임산부를 가해자로 뒤바뀌 수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읍경찰 수사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5. 8자 15면에 『약자에 강한 한심한 공권력』 제하의 기사에서 “정읍경찰이 폭행당한 임산부를 가해자로 뒤바꿔 조사해 피해자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사건은 고장난 장난감 환볼을 요구하는 부부와 임산부인 가게주인 부부간에 언쟁 중 일어난 쌍방폭행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읍경찰은 이미 양 당사자가 ‘상호 폭행을 당했고 일부 폭행했다’는 내용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아직 수사과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폭행가담자의 수는 현장에 출동한 전 의경 진술과

상호 폭행한 당사자에 대한 조사, 주변 정황증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예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정읍경찰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꿔 조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연합신문 2007년 5월 16일자 15면 중단에 게재 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약자에 강한 한심한 공권력)활자크기와 같게, 본문활자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연합신문 : 『정읍경찰 수사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6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한전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사실상 반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 원 결)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한전 “서울 본사 건물·부지 매각 거부”』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8일자 3면)
내 용 : 한국전력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사실상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오는 2012년 전남 나주로 본사를 옮기는 한국전력이 본사의 지방이전에 앞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라는 정부방침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전 서울 본사 건물·부지 매각 거부 파문』 보도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8일자 3면 『한전 서울 본사 건물·부지 매각 거부 파문』 제하의 기사에서 “한전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사실상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한전이 한전 본사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라는 정부방침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반발한 적이 없으며, 본사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라는 정부방침을 거부한 일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한국전력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5월 8일 3면 한전 서울본사 매각 관련기사에 대해 한국전력에서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본사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라는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바 없으며,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과 지방이전특별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6월 5일까지 문화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원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자산매각엔 주주이익 극대화 우선” 최종결정)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7월 31일까지 신청인의 지방 이전계획 및 이전예정지역의 준비상황 등을 후속 보도하되 원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신청인의 입

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보도형식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협의토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합의사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한전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사실상 반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 원 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한전 “서울 본사 매각 거부”』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8일자 A2면)

내 용 : 전남 나주로 본사를 옮기는 한국전력은 건설교통부가 지방 이전에 앞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부지를 매각하라고 한 지시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략)

한전은 서울 본사 건물 중 일부를 서울지사로 활용하고, 남은 사무실을 일반에 임대할 예정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전, 서울 본사 매각 거부』 보도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8일자 A2면 『한전, 서울 본사 매각 거부』 제하의 기사에서 “한전은 건교부의 본사부지 매각지시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본사 건물중 일부를 서울지사로 활용하고 남은 사무실을 일반에 임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전은 건교부의 본사부지 매각지시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고, 본사 건물중 일부를 서울지사로 활용하고 남은 사무실을 일반에 임대할 계획도 없으며,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반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지난 5월 8일 A2면 한국전력 지방이전 관련기사에 대해 한전에서는 서울 본사부지의 처리 방안은 정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 이후 확정되

는 것으로서 본사매각 거부 방침은 사실과 다르며, 한전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할 뿐 아니라 정부의 관련 정책에 따라 충실히 이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6월 5일까지 조선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원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사실상 반발”)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7월 31일까지 신청인의 지방이전계획 및 이전에정지역의 준비상황 등을 후속보도하되 원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보도형식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협의토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1)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4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2) 『남동발전 증시 상장 어려울 것』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B2면)

내 용 : (전략) 이 사장은 한전 본사의 전남 나주 이전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이미 수립해 정부와 협의중이며, 내부적으로도 80% 가량은 찬성하고 있다”며 “본사를 완전 이전하고 별도의 서울사무소 건물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7만 9342㎡(약 2만 4000평) 규모에 이르는 서울 삼성동 본사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아직 정부가 매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략) □

신청인이 영국에 유학중인 조기유학생 학부모로부터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4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7년 4월 27일 06:00)

내 용 : ▷앵커 : 영국에서는 아이들의 조기유학에 따라 간 한국엄마들을 노린 사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유명대학을 보내주겠다는 고액과외와 위장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말에 거액의 피해자가 많습

니다. 김○○ 특파원입니다.

▷기자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대학 입학 보장한다는 한국인 족집게 과외교사의 말은 유학생 부모들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과외비로 많게는 한 달에 1,4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유학생 부모 : 자기가 일시불로 주면 2만 파운드(4천만 원)에 대학교까지 가게 해 주겠다. 인터뷰까지 모든 걸...(보장하겠?) 그렇죠.

▷기자 : 또 잠깐 급전이 필요하다며 몇 백만 원에서부터 수억 원씩을 빌린 뒤 갚지 않습니다.

▷유학생 부모 :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선생님인 까. 잘 부탁하는 마음에서, 힘들다니까, 비즈니스한다니까,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기자 : 영국법상 자녀가 12살이 넘으면 자녀유학을 이유로 부모가 함께 체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해 준다는 거액을 채

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가족 : (취업비자 때문에 일을 하면서 돈을 썼다고 하던데요?) 예, (10만 파운드(2억 원)입니까?)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기자 : 피해자들의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 돈을 빼돌린 뒤 파산신청을 하고 영국의 느슨한 법망을 이용해 1년쯤 뒤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비교적 부유하다는 점과 법적인 대응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기러기 엄마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뉴스 김○○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27일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기러기 엄마 50여 명 사기 피해』 제하의 보도에

서 영국으로 조기유학을 온 자녀들을 따라와 생활하고 있는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유명대학을 보내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이 많다는 내용을 방영하는 중간에 특정 가게의 전경을 무단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보도에 나온 가게는 보도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결정문

〈2007서울조정150의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2003년 모 여성잡지에 기고했던 서평을 최근호에 무단으로 전재하면서 신청인이 직접 기고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선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4.

처리결과 : 각 합의

본지는 지난 5월 15일자 45면 『이 주일의 책』 제하의 코너에 동화작가 신○○ 씨의 이름으로 서평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동화작가 신○○ 씨가 본지에 서평을 기고한 적이 없으며 해당 서평은 신 씨가 지난 2003년 모 잡지에 기고했던 내용을 무단 발췌, 편집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시사저널 : 『이 주일의 책』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5일자 45면)

내 용 : 내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은 일생 쓸 영혼의 보물창고를 마련하는 일과 같다. 여기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한다. 글/선○○ (동화작가)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이 주일의 책’ 관련 알림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15일자(제916호) 45쪽 「이 주일의 책」이라는 광고에서 〈사금파리 한 조각(서울문화사)〉 제하의 도서를 소개하는 선○

○ 작가의 서평을 게재하였으나, 해당 서평은 <○○○○> 2003년 1월호에 게재된 글로서, 선 작가는 본지에 서평을 기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6월 1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독자한마당’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글의 부제목(“아이와 엄마가 함께 읽기 좋은 가슴 따뜻한 동화책”)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 글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조정참가인 주식회사 서울문화사(대리인 양○○)와 양○○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07년 6월 18일까지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조정참가인 주식회사 서울문화사와 양○○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및 양○○이 위 항을 각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각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이 주일의 책’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2일자 독자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의학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보조출연자의 사망에 신청인 방송사가 관련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 연 주) 외 1인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5.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내일신문 : 『방송 보조출연자 ‘인체실험’ 후 사망』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20면)

내 용 : 한 방송사의 의학프로그램 촬영에 참여했던 50대 보조출연자(엑스트라)가 심한 스트레스 노출 실험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사인을 두고 책임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략)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 했던 이 사건은 유족들과 실험참가자들이 “방송사의 실험에 사망원인이 있

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 송 모(52) 씨와 3명의 실험참가자는 “모 병원 4층 강당에서 이뤄진 실험은 50대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6시부터 14일 오전 11시 10분까지 17시간 동안 철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쇠를 긁거나 두드리는 소리, 싸우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등을 들려주었으며 카메라가 이를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대 보조출연자 5명이 감시조 역할을 맡아 밤 새 잠을 재우지 않고 물도 먹지 못하게 했으며, 화장실까지 따라와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실험을 하면서 진행자 측은 실험내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족과 실험참가자들은 사망원인에 대한 법의학적 책임과는 별개로 윤리적 책임도 제기하고 있다.

실험참가자 이 모(58) 씨는 “건강 검진을 해준다고 했을 뿐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실험 내내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며 이런 일인 줄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

라고 말했다.

유족 송 씨도 12일 흥용역업체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니 아침식사를 굶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중략)

한 실험참가자는 “실험 후 최소한 몇 시간이라도 휴식을 시켰어야 했다”며 “보조출연자는 인간취급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17시간의 노동대가로 일당 3만 7000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생로병사의 비밀 보조출연자 관련 본지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6일자 1면 『방송 보조출연자 ‘인체실험’ 후 사망』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방송공사 제작진(담당 신○○ 피디)이 남성호 르몬과 관련한 실험을 함에 있어 실험참가자에게 실험내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물도 먹지 못하게 했으며,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실험참가자를 기망하였고, 실험 후 휴식도 시켜주지 않으며 비인간적 취급을 하고는 참가에 대한 대가로 일당 3만 7,000원만을 주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국방송공사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은 실험참가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실험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실험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양의 생수를 제공하였으며,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실험참가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었고, 실험참가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인간적인 분위기에서 실험에 임하였으며, 실제 일당도 첫날 8만 7,000원, 둘째 날 오전실험에 43,500원을 제공하여

충분한 노임을 제공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월 26일자 20면 『방송 보조출연자 ‘인체실험’ 후 사망』 제하의 기사에서 한 방송사의 의학프로그램 촬영에 참여한 실험참가자들에게 실험내용과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한 바 있으나 한국방송공사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은 실험참가자들에게 실험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고지하였고, 충분한 노임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위 제작진은 실험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양의 생수와 휴식시간을 제공하였고,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내일신문 20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여 2007년 6월 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일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8일자 2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의학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보조출연자의 사망에 신청인 방송사가 관련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6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 연 주) 외 1인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보조출연자 사망 ‘법적공방’ 예고』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7일자 3면)

내 용 : KBS 의학정보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에 피실험자로 참여했던 한 50대 보조출연자가 다음 날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변질 전망이다.

지난해 4월부터 방송사 보조출연자로 일해 온 김모(55)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KBS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대기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김 씨가 사망하기 전날(2월 14일) 출연했던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실험이었고 이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의 부인 송 씨는 “남편이 속해있는 회사(보조출연자 공급업체) 직원이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켜주니 밥을 굶고 오라’고 했다. 남편은 스트레스 실험인 줄 모르고 촬영을 갔다가 다음날 사색이 되어 돌아왔고, 그 다음날 변을 당했다”며 “3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10

월 심전도 검사도 정상이었다. KBS실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생로병사의 비밀 보조출연자 사망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7일자 미디어/방송난에 『보조출연자 사망 ‘법적 공방’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방송공사 제작진(담당 신○○ 피디)이 남성호르몬과 관련한 실험을 함에 있어 실험참가자에게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실험에 참가시켰으며 위 실험이 실험참가자의 사망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국방송공사 ‘생로병사 비밀’ 제작진은 실험참가자를 모집함에 있어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켜주겠다고 실험참가자를 유도한 적이 없고 수차례 정확한 실험내용에 대해 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위 실험내용이 실험참가자를 사망케 할 정도가 아니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원



의학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보조출연자의 사망에 신청인 방송사가 관련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 연 주) 외 1인

피신청인 : 브레이크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5.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브레이크뉴스 : (1) 『KBS ‘생로병사의 비밀’ 보조

출연자, 촬영직후 ‘사망’』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대기업 정년퇴직 후, 지상파 방송 보조출연자로 4년 넘게 일을 해온 50대 남성이 촬영대기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전날 고인(古人)이 의학전문 프로그램 촬영에 동원돼 참여했던 실험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촬영도 하고 공짜로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했다”며, 밥도 굶고 나갔던 고인은 다음날 점심때가 지나서야 ‘사색’이 된 얼굴로 돌아왔으며, “실험실의 쥐가 된 것 같았다”며 투덜댔다는 것이 유가족의 주장. (중략)

김 씨가 방송 출연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다음날 오후 3시경. 송 씨는 “집안으로 들어온 남편(김 씨)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었다. 가족들이 얼굴 빛깔이 왜 그러냐며 걱정스럽게 묻자, 남편은 ‘이 놈들이 건강진단시켜 준다고 하더니 건강진단은 안 시켜주고 가둬두고 실험만 하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씨는 “당시 남편이 ‘나를 완전 몰몬트(실험용 쥐) 취급했다고 말했다’며, “스트레스 지수 측정한다면서 사람을 열 몇 시간 가둬 두고 기계음을 내서 고의로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촬영대기중 보조출연자들과 차를 마시던 김 씨는 갑자기 쓰러졌고, 그 길로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 (중략)

(2) 『“20대 남자 5명 감시 속 실험 진행됐다”』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유족과 제작진·한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당시 ‘생로병사의 비밀’ 실험에 함께 참여했던 보조출연자가 용감히 나섰다. 과연 ‘실험실의 쥐’라는 표현과 ‘가둬었다’는 주장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다음은 2월 24일 진행한 <사건의 내막>과 보조출연자 A 씨와의 일문일답. (중략)

- ‘거기’ 라 하면.

병원내 강당이였다. 좁았다. 3평쯤 될까. 50대 보조 출연자들이 무대 안에 앉아 있었다. 제작진 측에서 솔직하게 말 다 해주더라. 일 많이 하는 50대를 열 명 뽑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데 참으라고. 우리는 이왕 돈 벌 욕심으로 왔는데 앓아는 있지만 기분은 좋지 않긴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영락없는 실험실의 쥐 같다고. 사람들도 맞다고 하면서 씩씩하게 웃고 그랬다. 그래도 한 사람 있는 것 보다 여러 사람 있으니 낯낯이 낫더라.

-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음반을 돌리며 잡소리 나게 하고, 툇질소리, 집을 허무는 소리, 깡패들 두드려 부시는 소리... 다음날 아침까지 꿈쩍없이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야 했다. 장시간을 넣고 나오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있었다. 강당에서는 의사가 없었다. 우리 열 다섯 명과 취재팀, 카메라 세 개가 사망에 있었다. (중략)

- 20대 출연자들은 다른 실험을 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감시원으로 들어 온 거다. 20대가 5명 들어왔는데, 우리들이 잠들까 싶으면 깨우는 역할이었고, 화장실도 따라다녔다. 우리는 무대에 앉아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무대 밑 걸상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봤다. 그것도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었던 것 같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본 신문이 보도한 ‘생로병사 비밀실험 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6일자 사회면 『20대 남자 5명 감시속 실험 진행됐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보조출연자, ‘사망’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방송공사 제작진(담당 신○○ 피디)이 망 김○○을 열 몇 시간 가둬두고 밤새워 굶겨 가면서 굉음 소리를 들려주어 고의로 스트레스를 받게 했고 이로 인하여 망 김○○이 사망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국방송공사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은 실험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들을 강당에 머물게 하였으며, 실험참가자들에게 식사도 정상적으로 제공하였고, 소음을 들려준 시간도 2시간에 걸쳐 2~3분씩 2회 정도에 불과하였고 실험내용도 실험참가자를 사망케 할 정도가 아니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2월 26일자 사회면 『KBS ‘생로병사의 비밀’ 보조출연자...』, 『20대 남자 5명 감시속 실험 진행됐다...』 제하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도한 것이고, 사실확인결과 한국방송공사 ‘생로병사 비밀’ 제작진은 실험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들을 강당에 머물게 하였

으며, 실험참가자들에게 식사도 정상적으로 제공하였고, 소음을 들려준 시간도 2시간에 걸쳐 2~3분씩 2회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브레이크뉴스(www.breaknews.com) 초기화면에 위 제목(정정보도문)을 5월 28일(24시간 동안)에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의 내용을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브레이크 뉴스 : 『KBS ‘생로병사의 비밀’ 관련...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7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대학 축제기간 중 ‘펀치왕 이벤트’에 참가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메트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5.

처리결과 : 합 의

“주먹맛 여(女)바라”』 제하의 사진에서 펀치왕 이벤트에 참가한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없이 촬영·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으므로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5월 31일까지 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보도내용

메트로 : 『캠퍼스 봄축제 “주먹맛 여(女)바라”』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0일자 6면)

내 용 : (사진설명) 9일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펀치왕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다(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메트로는 지난 5월 10일자 6면 『캠퍼스 봄 축제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대학 축제기간 중 ‘펀치왕 이벤트’에 참가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AM7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A M 7 : 『대학축제 ‘주먹맛’』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0일자 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서울조정171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액 참조>

합의사항

<2007서울조정171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대학 축제기간 중 ‘펀치왕 이벤트’에 참가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Ⅲ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대학축제 ‘여성파워’』 제하의 기사 (2007
년 5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연합뉴스는 지난 5월 9일자 『대학축제 ‘여성파
워’』 제하의 사진에서 ‘펀치왕 이벤트’에 참가한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없이 촬영·게재하고 포털

및 메트로와 AM7에 전송해 해당 사이트 및 지면
에 신청인의 얼굴이 공개된 사진이 게재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초상권 및 명예가 크게 훼손
됐으므로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
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6월 30일까지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제체될 경우 지급기
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골프장 허가과정에서 현장 답사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장 손 희 만)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2007년 5월 7일 20:00)

내 용 : ▷앵커 :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 소식, 어제(6일) 이 시간에 전해 드렸는데요, 초스피드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등 골프장 허가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먼저 27홀 짜리 이 골프장의 사업인가는 초고속으로 진행됐습니다.

40만 평의 숲을 잘라 내는 공사에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개월.

지난해 3월 초안이 접수되고 6월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을 포함한 계절별 환경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략)

상급 협의기관인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산림청도 서류심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현장답사 한번 없었습니다. (중략)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주민설명회는 단 한 차례뿐, 그나마 대부분 다른 마을주민들을 동원한 편법이었습니니다.

▷마을주민 : 그쪽 사람들은 피해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했지.

▷기자 : 이 곳 골프장 공사현장은 전체 지형의 60%가 경사도 20도를 넘는 중점 관리지역입니다.

더구나 나무의 밀도를 나타내는 입목 축적도가 허가 한계치인 150%에 육박하는 울창한 숲지역이어서 애당초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해 무방비 골프장, 허가과정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7일 「8시 뉴스」 프

로그램 『수해 무방비 골프장, 허가과정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 밀양의 골프장 허가과정에 있어 계절별 환경영향조사와 현장답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주민설명회가 편법으로 개최됐으며 애당초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지역에 골프장 허가가 났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계절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식물상 조사를 동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총 6회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2명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직원 1명, 민간단체 자문위원 1명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밀양시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내용 및 일정을 지역 주요일간지를 통해 사전에 공고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적정하게 실시하였으며, 동 사업대상 지역은 관련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에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서 허가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골프장 허가 관련 반론
- 내 용 : 지난 5월 7일 「8시 뉴스」 『수해 무방비 골프장, 허가과정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 밀양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대로 된 현장답사 한번 없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민간단체 자문위원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6월 15일까지 SBS-TV 「뉴스 퍼레이드」 프로그램에서 보도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기사의 화면으로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방송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신청인 사업단이 기존 미군기지를 포천시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 권 행 근)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한겨레 : 『포천주민, 미군부대 ‘홀링워터’ 이전 반발』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일자 12면)

내 용 : (전략) 경기 의정부시 미군부대가 포천시 영평사격장으로 옮기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포천시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특히 경기 북부 미군부대 대부분이 2012년까지 평택으로 옮기는 것과 달리 포천시에는 미군기지가 새로 생기는 것이어서 적잖은 갈등도 예상된다. (중략)

국방부는 지난해 개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LLP)에 따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1만 7천여 평의 터에 주둔하던 캠프 홀링워터를 영평 사격장으로 옮길 계획이다. (중략)

박윤국 포천시장은 “미군기지가 떠나거나 주둔할 지역은 막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포천시에는 미군사격장 피해보상은커녕 아무런 지원 없이 미군부대를 주둔시켜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떨어붙이기식 부대 이전은 강력한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포천주민, 미군부대 ‘홀링워터’ 이전 반발』 기사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지는 지난 5월 1일자 12면 『포천주민, 미군부대 ‘홀링워터’ 이전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의 미군기지 관련 보도 중 “떨어붙이기식 부대이전 저항 부닥칠 것”, “포천시에는 미군기지가 새로 생기는 것이어서 적잖은 갈등도 예상된다”, “1만 7천여 평의 터에 주둔하던 캠프 홀링워터가 영평사격장으로 옮긴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캠프 홀링워터는 한·미간의 협정을 거쳐 사실상 해체되고 일부 훈련지원시설만 영평사격장 내로 편입되는 것으로 현 규모의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닌 기존 공여지내에 소규모 시설이 건축되는 것에 불과함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단장 권 행 근

조정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서 형 수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 ‘바로잡습니다’ 난에 보도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고딕으로 표시한 후, 정정보도문의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5.

〈별 지〉

- 제 목 : 5월 1일자 12면 『포천주민, 미군부대 ‘홀링워터’ 이전 반발』 기사
- 내 용 :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

도된 미군부대 ‘홀링워터’는 한미간의 협정을 통해 사실상 해체되며, 병력 이동 없이 일부 훈련지원시설만 포천의 영평사격장 내로 편입되고, 시설 규모는 차량정비시설과 창고 등 4개동(500여 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의 별지 내용 참조〉



신청인 위원회가 운영하는 국외훈련제도에 총체적 부실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권 오 룡)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시사기획 ‘썸’」 프로그램 (2007년 5월 4일 23:30)

내 용 : ▷기자 : 봄 학기를 맞은 미국의 대학캠퍼스.

아침부터 학생들은 강의실로 도서관으로 바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미국 중부지역의 명문 미주리대학. 한국공무원들이 1~2년 동안 장기 해외연수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 있는 한국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중략)

이들의 하루 일과는 골프채를 승용차에 싣는 일로 시작됩니다.

이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가까운 골프장.

주차장은 아침부터 한국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중략)

이 지역엔 한국교민이 거의 없습니다. 유학생이 평일에 골프를 치는 일도 드뭅니다.

골프를 치는 한국인들. 그들은 대부분 장기연수 중인 공무원들입니다. (중략)

취재진에게 현지교민이라고 둘러댑니다.

미주리대학에서 연수중인 중앙부처 서기관입니다.

▷공무원 : “저도 공무원이에요”

▷기자 : 평일날 매일 나오시는 게 몇몇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 수업 없는 날 가끔 나와서 운동하는 거예요.

물론 엄격히 따지자면 집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보라는 얘기 맞는 말인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그것도 매일 치는 것도 아니고...

▷기자 : 가끔 나온다는 중앙부처 서기관.

과연 그럴까?

취재진이 이 서기관이 5일 연속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략)

지난 2000년부터 6, 7급 공무원까지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훈련자들의 대부분은 고시출신의 과장과 국장급, 고급공무원들입니다.(중략)

출입기록 확인결과 많은 공무원들이 평일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여 명의 공무원은 1달에 15번 이상 골프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골프장에 저렴한 가격. 거기다 감시의 눈도 없

는 미국에서 상당수 공무원은 직무훈련 중이라는 본래 의무를 잊고 있습니다. (중략)

미 서부의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이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와 한국학 연구소는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10여 명의 한국공무원들이 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이렇게 한국공무원들이 적을 두고 있는 미국의 대학부설연구소는 20여 곳.

대부분의 기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름에 모두 한국이나 ASIA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미국의 선진행정과 기법을 배우겠다는 한국공무원들에게 이곳 연구소가 직무훈련기관으로 적당한지는 논란거리입니다. (중략)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소엔 교육훈련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사무실공간과 집기 등 연구환경을 제공할 뿐입니다. (중략)

공무원 해외연수의 선발부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원 600여 명씩 나가있는 해외연수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직원은 고작 3명입니다.

연수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략)

결국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사실상 개개인이 원하는 대로 무작정 해외로 내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중략)

사전계획도 없고 사후관리도 뒷전이다 보니 연수지역이 영어권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략)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해외연수를 끝낸 공무원들은 어떤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까, 이들이 제출한 훈련결과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2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가 전부인 보고서, 2년 동안 해외연수 끝에 쓴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현지어가 아닌 국문으로 작성됐습니다. 그마저도 현지에서 새롭게 습득한 내용보다 국내 학술자료들을 짜깁기한 논문이 많습니다. (중략)

해외연수에서 돌아온 뒤 연수기간 만큼의 의무

복무기간이 주어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략)

이처럼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민간으로 진출하는 공무원이 해마다 6~7명에 이릅니다. 그 이후의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경제부처의 간부들이 많습니다. 이직자의 대부분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MBA 경영학 석사, JD 법대 박사 등 학비가 비싼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들에게 학자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의무복무기간을 어긴 개월 수 만큼의 학비만 반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개인의 학벌을 높이는 데 국민세금이 투입된 것입니다. (중략)

30년 동안 지속된 공무원 국비해외연수, 그러나 원래 목적은 흐려지고, 덩치 큰 제도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하고 대규모로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고급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나름대로 기여한 점이 많지만, 시대변화에 맞춰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5월 14일 「시사기획 '짬」」 프로그램에서 공무원 해외연수제에 관한 방송 내용 중 '객원연구 파견' (Visiting Scholar) 제도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등 현행 국외훈련제도의 가장 큰 문제이며 국외 장기훈련자의 대부분이 '고시출신'의 '국·과장급 고위직' 이고 연수훈련 보고서가 5페이지 내외의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심지어는 훈련보고서를 내지 않은 공무원도 있고 의무복무 위반자들에게 "학비만 반납 받고" 있는 등 공무원 국외 훈련이 '사전계획도 없고 사후관리도 뒷전'인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관리위원회는 '객원연구 파견' (Visiting Scholar) 제도는 이미 올해부터 전면 금지되어 사라진 제도이며 방송에 나간 훈련보고서들은 전체 보고서의 목차나 요약본이고 별도의 본문이 존재하며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의무

복무 위반자에게는 학비뿐만 아니라 훈련기간중 지급받은 체제비, 가족항공료, 생활준비금 등 소요경비 일체를 반납하게 되어 있으며 국외 훈련이 고시출신의 고위직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외훈련자 선발 단계에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과제심사평가위원회'의 훈련 과제 적절성 심사, 훈련중의 학기별·분기별 훈련진행 상황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및 직무훈련 감독자의 평

가, 훈련 종료 후의 훈련 관련 보직 재직 여부 점검, 소속 부처의 훈련보고서 평가 등 훈련 성과 업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확인을 거쳐 보도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수정한 이유가 의료계의 로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장관 유 시 민)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겨레 : 『‘로비의혹’ 의료법 개정안 어떻게 수정됐나』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7일자 10면)

내 용 :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정·관계 금품 로비 발언과 관련해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내용이 수정된 데 의혹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보면 의료계의 요구는 상당 부분 반영된 반면, 의료의 상업화 조향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무시됐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의료계가 문제를 삼았던 임상진료지침 제정이나 비급여 진료의 할인 및 면제 등 조항은 수정되거나 아예 삭제됐다.

(중략)

이런 사례와 같이 감기의 처방까지 정하는 수준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환자들이 병·의원마다 치료 행태가 다른 것에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최소한의 ‘임상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의료계에서도 있어 왔다.

하지만 의협 등은 “이런 진료지침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향후 진료비 심사기준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조항을 “법에 규정에 신설하는 데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며 삭제한다고 밝혔다.

‘허위 진료기록 금지’도 변경=환자 진료에서 기본이며,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인 진료기록 관련 조항도 수정됐다. 변경 전 해당 조항 내용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금지였으나, 수정안에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허위’라는 말대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바꿨다.

복지부는 “허위와 착오를 구별하기 어려워, 잘못 기록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피해자쪽이 의료진의 고의성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올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계 편을 복지부가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의 할인·면제’ 삭제=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성형수술 등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미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뤄지는 시술과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상 미처 적용대상

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으로 나뉜다. 애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런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안에선 사라졌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낮추려 과도한 경쟁을 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해왔다. 이○○ 제주대 교수는 “그나마 환자들이 가격 하락의 이익이라도 누릴 수 있었던 조항마저 의료계 요구로 삭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7일 10면 『‘로비의혹’ 의료법 개정안 어떻게 수정됐나』 제하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의료계의 로비에 의해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조항을 변경한 것은 법률용어를 풀어쓴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입증책임이 전환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의 할인·면제 조항을 삭제한 것은 무분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임상진료지침은 지난 2006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하 후 보도문

한겨레 : 『‘의료법 개정’ 로비 의혹 제기 유감』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5일자 33면)

내 용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의료인단체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보다 의료인단체의 로비 의혹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정부가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욱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의료기관을 찾을 때 환자는 약자의 위치에 설수 밖에 없다. 질병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없고 진료비용이 얼마가 들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감염돼 또 다른 병을 얻기도 한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 및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기준을 강화하였고 의원급 의료기관인 당직의료인 기준을 개선하였다. 환자의 동의없는 배우자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도 더욱 엄격하게 강화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며, 선진국들은 의료서비스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해 범정부 차원의 의료서비스선진화위원회는 오랜 논의를 거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결정하였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의료법인 합병 절차 신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양·한방 협진, 병원내 의원 개설 등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런 의료법 개정 내용을 두고 의료인단체는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의료의 영리화를 경계하며 반대하고 있다. 각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일면 타당한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은 특정 단체의 입장이나 관점이 아닌 국민의 입장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인단체, 보건의료시민단체와 많은 토론을 거쳤다.

입법예고를 통해 합리적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일부 조항을 조정하였다. 이에 대해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결코 의료인단체로부터 로비를 받아 의료법의 내용을 의료인단체에 유리하게 바꾸거나 애초의 개정 목적을 약화시키

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 의료법은 1973년 전면 개정을 거친 이후 그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전자상가에서 외국산 홈시어터가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컴퓨터타임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8.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합의)

보도내용

컴퓨터타임즈 : 『외산 홈시어터가격 부풀리기 ‘난무’』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30일자 1면)
내 용 : 관련 매장들에 따르면 TV와 함께 홈시어터를 판매하는 일부 오프라인 가전 매장들이 높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생산지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홈시어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30일자 1면 『외산 홈시어터 가격 부풀리기 ‘난무’』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오프라인 매장들이 높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생산지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홈시어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매장의 전경과 매장주의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관련 사진은 동의없이 촬영됐으며 공개된 매장 및 매장주는 본 기사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원

중재합의

양 당사자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 <2007서울중재7 참조> □

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프락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 심사위원으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아산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8.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아산투데이 : (1) 『〇〇시의회에는 시장 브락치가 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6일자 1면)

내 용 : “〇〇시의회이는 강〇〇 시장의 브락치 (첩자)가 있다. 의회 내부에서 의원 간 한 얘기가 순식간에 강 시장과 집행부에 전달돼 로비가 들어온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최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의회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 및 의원간 대화의 내용이 집행부로 흘러 들어가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첩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강〇〇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A 의원.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A 의원은 시장 못지 않은 실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줄대기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의 경우 몇 백만 원의 예산을 요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A의원의 경우에는 수천 만원의 예산도 척척 배정·집행하고 있다고 제보하고 있다.

B 의원은 “A 의원이 의회 물을 흐리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원이 오히려 집행부편을 들고 있는가 하면, 상당한 편의제공과 함께 도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느 때보면 아산시에는 시장이 2명이나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C 의원은 “상당수 각 실·과·국장들을 쥐고 흔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집행부가 A의원의 예산 요구에 알아서 척척 받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의원들간에 한 얘기가 순식간에 집행부에 전달돼 로비, 또는 견제가 들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D 의원은 “어느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는 심한 생각도 든다”며 “A 의원이 강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웬만한 의원들은 다 알고 있다. 게

다가 A 의원의 경우 이를 너무 표나게 하고 있다.”고 비토했다.

덧붙여 “브락치 역할이 너무 심하다. A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예산도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번 〇〇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건만 하더라도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의 지원을 받는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느냐”고 개탄하기도.

이 같은 목소리는 공무원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그런 사실은 공무원들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우면파위를 실감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2) 『“수혜자 안중에도 없는 시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6일자 2면)

내 용 : 최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시를 비난하는 이민자 및 이들 가족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은 〇〇대학교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것이며, 이를 위해 심사위원들도 시에 유리하게 구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략)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현재 〇〇가족상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〇〇센터가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인정될 만큼 잘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굳이 해야할 필요가 없는데 공모를 한 것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시공무원이 3명이며 강〇〇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심사위원이 3명이나 배정된 것을 이민자 및 이들 가족, 〇〇센터가 문제 삼은 것.

이들이 〇〇대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략)

또 다른 시의원도 “심사위원 면면을 보면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다”며 “덧붙여 심사위원 중 한 명이 〇〇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강 시장의 측근이다. 이 사람으로 인해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행정 불신에 대해 비토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6일자 1면 『〇〇시의회에는 시장 브락치가 있다』 제하의 기사 및 동일자 2면 『“수혜자 안중에도 없는 시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제하의 기사에서 “다른 의원들의 경우 몇 백만 원의 예산을 요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A 의원의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예산도 척척 배정 집행하고 있다고 제보하고 있다”는 내용과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〇〇대학교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심사위원 중 1명이 〇〇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이 사람으로 인해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A 의원이 2005년, 2006년에 맡았던 단체의 예산으로 수천만 원이 배정되거나 타 단체에 비하여 결코 많은 예산이 배정·집

행된 바 없으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도 8명의 심의위원 합의로 선정된 것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기사에 문제가 없으며 민사상 소 제기를 할 예정이므로 신청인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

태안군수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풀리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태안군 (군수 진 태 구) 외 1인

피신청인 : 서해안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해안신문 : 『‘재산 부풀리기 의혹’ 충분한 해명 필요』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9일자 1~3면)

내 용 : 작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진태구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공시가 221억 원으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후보 중 최고 재산가였다. 5년간 세금납부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연평균 3,2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재산신고액이 23억 원이었는데 4년 만에 10배나 급증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상대 후보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진 군수는 단순히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재산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 ‘직위를 이용한 재산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여왔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트에서는 진 군수의 토지를 다 합할 경우 현시세로 계산하여 1조~3조 원의 천문학적 가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손가락에 꼽히는 어마어마한 재벌가라는 말들이 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략)

당시 김〇〇 후보는 태안군 연안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결과중간보고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태구 후보 및 일가 소유의 토지 수십만 평 및 태안군 유력인사들의 토지가 빠진 채, 진 후보의 결재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함으로써 군민들의 비난을 산 결과 계획수립을 백지화한 바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진태구 후보는 답변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이하 ‘지역계획’)에서 본인 토지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용역사의 실수로 연안육역에 적용 범위에 포함은 되었으나, 기능부여(채색)를 하지 않아 주민의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듣는 행정 절차로,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은 군수 결재를 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두며, 그렇기 때문에 용역중간결과보고서를 사전에 본 사실도 없고 결재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그 후 취재팀이 지속적으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진 군수가 “용역중간결과보고서를 사전에 본 사실도 없고 결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한 말은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다. (중략)

진태구 군수가 안면읍 중장리 병술만 국유지 4만 평을 20여 년간 불법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최근 취재팀에 입수된 제보를 사실 확인한 결과 밝혀졌는데 현직 군수가 오랜 세월 동안 국유지를 자신의 땅처럼 사용하여 이득을 남긴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략)

진 군수가 불법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유지는 농림부 소관으로 현재 태안군청 건설도시과 국유지농지담당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작년 11월 제보자가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동안 묵인해오던 공무원은 바로 다음날 진태구 군수 밑에서 농지를 관리해오던 이모 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중략)

이런 속사정인지는 몰라도 담당공무원은 정작 군수에게는 직접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관리인에게만 잘못을 물은 것이다. (중략)

진태구 태안군수 일가가 소유한 목장 바로 앞까지만 뚫린 2차선 도로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이 도로는 진 군수가 취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설되었다는 도로는 공사가 이루어진 시기, 특정인이 소유한 목장과 연결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모양새다. 토지거래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인접지역에 도로가 뚫리면 땅값이 높게 오르는 것은 상식이다. 이 때문에 지켜보는 주민들은 진태구 군수 일가의 소유지에 대한 재산부풀리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나서는 것이다.

또한, 진 군수 일가가 소유가 중장리 일대 40여만 평이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도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이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한 결과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중략)

“유독 이 지역만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안면도관광개발계획상 개발가능성으로 인해 머지않아 평당 최고 200만 원대까지도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진 군수 일가가 소유한 토지는 약 40만 평으로 총 8천 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도 바라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략)

무엇보다 재산가치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진 군수 일가는 천문학적인 재산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전문가에 의하면 용도변경으로 인해 현재의 가치만 최소 평당 100만 원이 넘고 앞으로 개발계획으로 인해 평당 200만 원은 족히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9일자 1~3면 『‘재산부풀리기 의혹’ 충분한 해명 필요』 제하의 기사에서 진태구 군수의 재산 신고액이 5년 전에는 23억 원이었으나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액은 221억 원으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로는 최고 재산가였고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진 군수 소유의 토지가 현 시세로 평가하여 1~3조에 이르고 안면도 개발 가능성으로 인해 진 군수 일가가 소유한 토지는 총 8,0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 군수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과 관련한 공문에 자필 서명을 하면서 주민공청회 이전에 자신 소유의 땅이 연안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해당 보고서를 본 적도, 결재한 적도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국유지 4만 평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남기고 관리인을 시켜 농지관리를 했고 이와 관련 담당공무원은 진 군수에게 변상금을 물리지 못하고 관리인에게만 잘못을 물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진 군수 일가가 소유한 목장 바로 앞까지만 개설된 2차선 도로가 진 군수 취임 후 개설됐으며 진 군수 일가가 소유한 40여만 평이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도 재산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진 군수의 재산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진 군수 소유의 땅이 현 시세로 1~3조 또는

장래 8,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본 지가 인용한 2003년 7월, 2003년 9월 15일, 2003년 12월자 공문서는 태안군이 태안군의 연안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2005년 9월 1일 이전에 작성한 문서로 구체적인 연안관리지역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2005. 3. 21자 공문은 용역사에 위임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를 군민에게 보고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용역중간보고서는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국유지 무단 사용 의혹은 진 군수가 아닌 이모 씨가 무단으로 점유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진 군수 목장 앞까지 개설된 도로는 진 군수 취임 전에 이미 계획된 내용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특정 지위를 이용한 재산부풀리기와는 상관이 없는 사실이며 진 군수 일가가 소유한 40여만 평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용도지정이 된 땅으로 진 군수의 재산부풀리기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1) 『특별기획 ‘진태구 태안군수 집권5년, 진지한 평가와 대안’ 중 제1편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7년 5월 2일자 『특별기획 진태구 태안군수 집권 5년, 진지한 평가와 대안』(1편) 1면 “희망과 불신이 교차했던 5년 문제의식 필요”, 2면 “진 군수 도덕성 논란 후 행정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란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태안군의 반론을 제기하며 일부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본지가 ‘태안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태안군 진태구 군수 소유의 땅이 연안관리지역에 빠진 것은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군이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공청회를 고의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태안군은 연안관리지역 계획안(용역보고서상의 도면)에 태안군수 소유의 땅도 연안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용역사인 ○

○기술공사에서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군수 소유의 땅에 대한 용도표시를 하지 않아, 위 땅이 연안관리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뿐, 태안군수 소유 땅에 대한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태안군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 공청회의 개최 공고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본지가 ‘태안군이 안면읍을 제외한 타 지역은 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안,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진태구 군수가 안면도 개발계획에서 자신 소유의 땅을 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안면읍을 제외한 타 지역을 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연안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1년 충남도가 제정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연안의 특성에 따라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소극적인 개발 등 친환경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은 준보전연안으로 설정되었으며 안면도관광지개발계획은 충청남도가 진태구 태안군수 취임 이전인 1991년 2월 22일 지정·고시한 것으로써, 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본지는 ‘태안군이 수산진흥기금을 법적 근거도 없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환경부 규칙에 근거하여 환경영향조사에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태안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였고, 답변서가 내려오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 중 100분의 50이상을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태안군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9조 및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의 2, 제3항 제4호에 의거한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알려왔으며, 태안군이 상급기관에 질의하였

다는 내용도 고남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된 사항으로써 환경영향조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㉔ 본지는 태안군이 소속 공무원이었던 김모 씨의 청소년성폭력 등 사건 이후에도, 인사행정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및 신상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폭력상담소 유재연 소장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2006년 8월 25일 유○○ 소장의 주장이 있기 전에, 2006년 7월 26일 위 공무원을 직위해제하였고(2006년 9월 29일 파면됨), 2006년 7월 개인정보유출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8월 1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주민등록 전산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었다고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㉕ 본지는 '태안군청 입구에서 태안군수 관사에 이르는 지역은 도로가 좁아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진태구 태안군수가 거주하는 관사로 연결된 전용도로가 있어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군과 같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관사를 내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관사 진입도로는 현 군수의 취임 전인 1990년 군청 신축 당시부터 신설됐으며, 철조망도 군청사 건립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태안군수는 군청 출퇴근을 위하여 위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군수전용도로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으며 태안군수의 자택은 안면도로써 자택에서 군청까지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먼 거리여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관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제 목 : (2) 『특별기획 진태구 태안군수 집권 5년, 진지한 평가와 대안』 중 2편에 대한 반론 및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 2007년 5월 9일자 『특별기획 진태구 태안군수 집권 5년, 진지한 평가와 대안』 <제2편> 1면 “‘개인 재산 불리기 의혹’ 충분한 해명

필요”, 2면 “‘본 사실도 없고 결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한 말,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 3면 “진 군수 일가 특혜의혹 땅, 최대 8천억 재산가치 될 수도”라는 제하의 기사내용중 다음의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및 태안군의 반론을 게재합니다.

㉖ 본지는 ‘진태구 군수의 재산 신고액이 5년 전에는 23억 이었으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액은 221억 원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후보 중 최고 재산가였다. 군수의 직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 군수 소유의 토지가 현시세로 평가하여 1조~3조에 이른다. 안면도 개발 가능성으로 인해 평당 최고 200만원에 거래될 수 있어 진 군수 일가가 소유한 토지는 총 8,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 군수 측은 재산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정부목표 현실화율은 실시세의 91%임)에 따른 것이고,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서 특정 직위를 이용해 상향조정할 수 없으며,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시세에 가깝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 군수 소유의 땅이 현 시세로 1조~3조 또는 장래 8,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㉗ 본지는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과 관련해 진태구 군수가 당시 해양수산과가 작성한 2003년 12월, 2003년 7월, 2003년 9월 15일, 2005년 3월 21일자 공문에 자필서명함으로써,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위한 공청회 이전에 자신소유의 땅이 연안관리지역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진 군수는 용역중간결과 보고서에 대해 결재한 사실도 없고 이를 사전에 본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2003년 7, 2003년 9월 15일, 2003년 12월자 공문서에는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2005년 3월 21자 공문도 ○○기술공사에 위임한 연안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결과를 태안군민에게 보고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로써 공청회 개최 일시, 개략적인 내용 등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연안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장소가 표시된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㉔ 본지는 진태구 군수가 오랜 세월 동안 안면읍 병술만 국유지 4만 평을 자신의 땅처럼 사용해 이득을 남기고 관리인을 시켜 농지를 관리했으며 이와 관련 담당공무원은 군수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관리인에게만 잘못을 물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위 지역이 농림부 소관 국유지로서, 변상금 부과대상자가 수년 전부터 개답하여 초지를 조성 불법점유하여 국유재산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부과 대상자 본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㉕ 본지는 '진태구 군수 일가가 소유한 목장 바로 앞까지만 개설된 2차선 도로가 진 군수 취임 후 개설됐다'며 재산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도로는 1992년 12월 26일 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현재까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계획에 의한 남측 진입도로로 당초부터 안면도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필수 기반시설로 밝혀졌습니다.

㉖ 본지가 진태구 군수일가가 소유한 안면읍 중장리 일대 40여만 평이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도 진 군수의 재산부풀리기라는 의혹을 제기

한 내용에 대해 태안군은 이 지역은 1981년 5월 6일 공유수면매립준공으로 조성된 농지로서, 1989년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비농업진흥지역이었으며, 이후 1994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됐고 2003년 위 법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관리지역으로 개편돼 적법하게 용도지정이 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해안신문 2007년 6월 31일자에 보도하되, 가의 ㉔ ㉕는 1면 우측 하단에 ㉔ ㉕ 이하 기사는 2, 3면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상자기사로 게재하고, 제목활자 크기는 5월 9일자 2면 중간제목(안면읍 중장리 병술만 국유지...)과 같게 하며,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해안신문 : 『특별기획 '진태구 태안군수 집권 5년, 진지한 평가와 대안' 중 제1편 및 제2편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3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과 가족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7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형 준

피신청인 : 부산KBS-1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1.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각 취하 (정정·손배)

보도내용

부산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4월 12

일 21:33)

내 용 : ▷앵커 : 국제공모 작품들로 완공했다는 광안이 야간경관조명사업이 사실상 국제공모가 아닌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업비도 당초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배나 불풀러지고 사업과정에서 주관 부서가 바뀌는 등 정치권의 외압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략)

▷기자 : 심○○ 작가는 또 상당수 출판작가가 이러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해 물의를 빚자 광안리 조명경관사업 예술 총감독을 맡은 프랑스인 ○○○ ○ 씨가 조정에 나섰다고 털어냈습니다.

▷심○○ 작가 :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현상공모가 걸렸단다라며 ○○○○
씨가 설득시켰습니다...

▷기자 : 당초 20억 원짜리 경관조명 사업이 지
난 2005년 4월 갑자기 사업 추진부서가 건설방재
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배나 늘어난 점도 의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지역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간에 바뀌었고 그 과정에 예산도 전례가 드물게
20억 원 에서 40억 원으로 부풀려지면서 “정치권
외압 의혹” 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략)

(2)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4월 13일 21:40)
내 용 : ▷앵커 : 설치미술작품 6점이 가동되고
있는 부산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이 선정되는가 하
면 작품을 소개한 업체 대표가 자문까지 받은 것
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기자 : 지난해 1월 13일 부산시청.

부산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프랑스 작가 작품을
직접 소개한 전시기획사 대표가 통역을 하는 가운
데 그 옆에 유력 정치인이 동석합니다.

그 옆으로 프랑스 작가와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 정치인이 왜 이 자리에 함께 했는지 의문입니다.

▷김○○ 전시기획사 대표 : ...당선 작가가 와서
시청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했죠.

모 의원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오시
지 않았죠. 안 오셨어요...(후략)

(3)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4월 16일자 21:38)
내 용 : ▷앵커 : 부산 광안리 조명경관사업에 정
치인의 가족인 미술품 판매상의 개입 의혹까지 불
거지고 있습니다.

또 총 40억 원의 사업비 중 작품설치에만 32억 원
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조명사업의 본말이 전도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부산의 한 미술품 전시장. 미술품 거
래가 활발한 곳으로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이 한창
이던 올 초 서울지역 화랑과 백억 원대의 아트펀

드를 조성해 미술품 판매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했
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상 주인은 정치인 가족으로 이번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프랑스 작품을 소개한 기획
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중략)

▷기자 : ...정치인 가족은 미술품 판매시장의 큰
손이고 기획사 대표는 프랑스 광고기획 업무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계적 거장들의 미술품이 광
고기획사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지가 이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커넥션에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
니다. 또 사업비 지출에도 의혹이 많습니다.

얀 카슬레 작품 8억 4천만 원, 샤를드모 6억 3천
만 원, 장피에르 레노 5억 5천 만원, 백남준 4억 3
천 등 전체 예산 40억의 80%인 32억 원이 미술품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후략)

(4)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5월 16일 21:36)
내 용 : ▷앵커 :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40억 원대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이 부산시의회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조명사업이 미술품 설치로 변질된 의혹과 졸속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진상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KBS 부산 뉴스가 박형준 국회의원 관
련 의혹을 집중 보도한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이 부
산시의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부산시
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당초 빛과 조명사업이 왜 미술품 사업'으로 갑자
기 바뀌었으며 '미술작품의 제작과 내용도 졸속으
로 추진됐다'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12일 「뉴스9」 프로그램 『바
다·빛·미술관 엉터리 국제공모』, 13일 동 프로그
램 『유력 정치인 개입의혹 곳곳에 드러나』, 16일
동 프로그램 『유력 정치인 가족 개입 의혹 미술품
만 32억』 및 5월 16일 동 프로그램 『40억 혈세 날
린 사업』 제하의 보도에서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
업 국제 공모전이 엉터리로 진행됐고 부산시청에

서 있었던 부산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프랑스 작가와 함께 부산 지역 유력 정치인이 동석한 것에 관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의 본질이 왜 바뀐 것인지에 관한 의혹들이 공식사회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정치인의 가족인 미술품 판매상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부산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40억 원대 부산 광안리 경관조명 사업이 부산시 의회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 지역 국회의원인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공모전은 정상적인 절차와 홍보를 거쳐 진행됐으며 부산시청을 방문한 프랑스 작가와 유력 정치인이 동석한 것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공모작 결정 후 작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자 부산시를 방문한 세계적 거장에 대한 환영 및 광안리 프로젝트 홍보 차원에서 부산 수영지역 국회의원 박형준 의원이 함께 동석을 한 것이었으며 그 자리는 기자들을 위해 공개된 자리였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박형준 의원은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화랑은 작품 선정과 구매를 위해 미술펀드에 참여한 것일 뿐 아트펀드를 조성해 미술품 판매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했다는 보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광안리 조명사업과 해당 펀드의 관계 역시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준 의원은 ‘바다·빛·미술관 프로젝트’ 작품 구입, 제작, 설치 과정과 화랑을 운영하는 본인의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미술품만 32억이라는 보도는 미술품 설치와 전기공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 위원회 회의에서 박형준 의원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박형준 의원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정치적 개입을 하고 40억 원의 혈세를 날렸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부산 KBS-1TV 「뉴스 9」 프로그램에 2007년 6월 18일(단,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함)까지 아래의 내용을 담은 보도를 방영한다.
- 피신청인은 총 1분 20초의 분량으로 별도 기사를 제작 방영하되, 이 건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보도의 내용은 먼저 이 건 조정대상기사 관련 내용을 간단히 언급한 후, 쟁점이 되는 항목에 대해 기자가 멘트를 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형식으로 한다.
- 기자의 멘트는 간략하게 하며, 신청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사보도 이전에 기사내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부산KBS-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6월 19일 21:30)

내 용 : ▷앵커 : KBS 부산 뉴스는 광안리 경관조명 사업의 총체적 부실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권 외압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박형준 국회의원은 일체의 정치적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정치인 개입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1월 13일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관련자 모임 자리였습니다. 공무원과 업체 대표, 작가들이 만나는 자리에 박형준 의원이 참석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박형준 국회의원 :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도 바램도 있어서 떳떳하고 공개적으로 만난 것이지 어떤 다른 의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자 : 당시 박의원의 지역구 부산시의원이 이 사업추진에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당초 2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형준 국회의원 : 사업비 증액에 일체 관련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국제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경관조명을 만들 수 있겠다 판단한 것...

▷기자 : 박의원은 또 부산시의 사업추진 부서가 바뀌면서 박○○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그 뒤 공천을 받아 수 영구청장에 당선된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의 개

입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형준 국회의원 : 광안리 바다빛 미술관사업에 정치적으로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 :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부산시의 일개 지역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은 정치권 외압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인이 기업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명목뿐인 회사에 투자해 거액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는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7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비○○○○

(대표이사 최 ○ ○) 외 1인

피신청인 : 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1.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이데일리 : 『경영진간 분쟁기업 ‘투자주의보’』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9일자 경제면)

내 용 : (전략)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은 경영진간 서로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주중에서 이사 해임 대상에 오른 신○○ 이사는 ○○디지털 현 회장 김○○ 씨와 전 회장 지○○ 씨 등을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중략)

신 이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인들이 ○○디지털 자금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업가치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주)○○○에프엔비와 (주)○○○○○○ 등에 투자해 약 24억 원 가량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는 손실을 미쳤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8월 지 전 회장은 ○○디지털이 모친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주)○○○○의 유

상증자에 참여해 8억 원을 투자하고, 모친이 소유하던 (주)○○○○ 주식을 8000만 원에 인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는 또 지난해 9월 ○○디지털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지 전 회장과 김 회장 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지 전 회장과 30억 원에 ○○디지털 경영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28억 원을 지급했지만 경영권은 김 회장에 넘기고 인수대금도 편취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지 전 회장과 공모해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9일자 『경영진간 분쟁기업 ‘투자주의보’』 제하의 기사에서 ○○디지털의 전 회장 지모 씨가 ○○디지털 자금으로 지난 해 10월과 11월 기업가치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주식회사 ○○○에프엔비와 주식회사 ○○○○○ 등에 투자해 거액의 재산상 편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실을 입혔으며 지모 씨가 지난해 8월 ○○디지털의 자금으로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8억 원을 투자하고 모친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 주식을 8,000만 원에 인수토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9월 ○○디지털의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지모 씨가 ○○디지털 이사 신모씨에게 ○○디지털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는 신모 씨가 28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경영권을

현 ○○디지털에 회장인 김모 씨에게 넘기고 인수대금도 편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지모 씨가 당시 투자한 주식회사 ○○○에프앤비와 주식회사 ○○○○○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존하는 건실한 우량기업으로서 투자 당시 기업가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에프앤비의 경우 투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 지모 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투자가 이루어진 후 인수된 주식을 인수가액 그대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지모 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모 씨가 ○○디지털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불법적으로 인수대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해명과 반론] ○○디지털 고소장 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9일자 증권면에 “경영진간 분쟁기업 ‘투자주의보’”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신○○ 이사의 고소장 내용을 상대방의 반박을 충분히 실지 아니하고 인용해 전 회장인 지○○ 씨와 (주)○○○○○을 포함한 회사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존하는 우량기업으로서 투자 당시 기업가치 평가가 적절히 선행되었고 ○○○에프앤비의 경우 투자금을 즉시 회수한 바 있다면서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주)○○○○ 역시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존하는 건실한 기업으로서 당시의 투자는 액면가 이상증가여서 기업가치 평가가 잘못된 사실이 없고, 이후 인수한 주식을 인수한 가액 그대로 제3자에게 처분한 바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 전 회장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법적으로 인수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김○○ 회장 등에게 적법하게 경영권이 양도된 것이며, 고소를 진행한 신○○ 전 이사에 대하여는 즉시 무고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접수하였으므로, 추후 법원절차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데일리’ (www.edaily.co.kr)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아울러 이데일리가 기사를 제공하는 증권사 HTS 및 인터넷포털에도 같은 기사를 표출한다.

• 피신청인은 이데일리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경영진간 분쟁기업 ‘투자주의보’” 제하의 기사) 본문 하단에 위항의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 피신청인 소속 증권부장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 내 용 : 이데일리에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 국익증진을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지회장님같은 사업가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모 전 이사의 고소장 내용을 주로 언급하여 보도한 점에 대해 ○○디지털 지○○ 전 회장님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피신청인은 지○○ 전 회장과 신○○ 전 이사간의 쌍방 고소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처리가 종결되는 대로 그 처리결과를 취재·보도하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신청인과 협의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을 2007년 6월 1일까지 이행한다. 합의사항의 이행을 각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 및 법원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피신청인 및 담당 기자 등 소속 임직원에게 본 보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이데일리 : 『해명과 반론-○○디지털 고소장 내용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30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익산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사업에 각종 문제 및 비리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익산시 (시장 이 한 수)
피신청인 : 소통뉴스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10.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소통뉴스 : (1) 『지금이라도 공론에 붙여라』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0일자)

내 용 : (전략) 압축·포장쓰레기는 현 상태에서 소각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철사를 감아 사각으로 압축·포장해 놓은 익산시의 쓰레기 덩어리 그대로는 불에 타지 않을 뿐더러, 인력을 투입해서 풀어헤친다 하더라도 이미 물성 구별이 불가능하게 부식된 쓰레기를 분리할 수 없어, 소각을 할 경우 맹독성 물질이 배출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중략)

부송동 소각장의 경우, 주민소환론의 진원지로서 당장 큰 폭의 집값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부송동 영등동 주민들의 반발정서가 갈수록 확산되어 가고 있다. (후략)

(2) 『검은 거래 의혹 갈수록 태산』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3일자)

내 용 : (전략) 익산시민들의 관심은 이한수 시장의 이같은 부담을 안고 소각장을 강행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에 쏠렸다. “소각장을 설치하면 자치단체장이 사업비의 10%(70억 원)를 공식적인 커미션으로 챙기는게 관행화되어 있다”는 검은 거래설이 급속도로 확산됐던 것은 그 때문이다. (후략)

(3) 『춘포, 여산 주민들 들러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4일자)

내 용 : (전략) 입지여건상 춘포가 매립장으로서 최적지인데도 배척하고, 유치신청서류가 흠결투성이인데다 환경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여산면을 적지로 판정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재빠르게 백지화를 선언한 일련의 사실에서 비롯됐다.

특히, 여산면 매립장입지선정을 백지화한 익산시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겠다”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의혹을 더 부풀리는 계기가 됐다. 이는, 적정한 시기에 “낭산 폐석산을 압축·포장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강변하기 위해 사전장치로 춘포와 여산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초래한 것이다.

이한수 시장의 친동생이 낭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은 이같은 사전 ‘준비론’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여산이나 춘포보다는, 채석과 복구비 절감 그리고 쓰레기 반입에 따른 부가수익 등 1석 3조의 이익을 취하게 될 폐석산업자가 정치자금 모금에 훨씬 더 큰 실익을 안겨 줄 게 분명하다는 점이, 이한수 시장과 업자 간의 결탁의혹의 진원지이며, 아무런 환경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는 이사장의 동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따라붙는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20일자 『지금이라도 공론에 붙여라』 제하의 기사에서 “압축 포장쓰레기는 현 상태에서 소각이 불가능하며 소각을 할 경우 맹독성 물질이 배출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도 높다. 부송동 소각장의 경우 주민소환론의 진원지로서 당장 큰 폭의 집값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5월 3일자 『검은 거래 의혹 갈수록 태산』 제하의 기사에서는 “익산시민들의 관심은 이한수 시장이 이 같은 부담을 안고 소각장을 강행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에 쏠렸다. ‘소각장을 설치하면 자치단체장이 사업비의 10%(7억 원)

을 공식적인 커미션으로 챙기는 게 관행화되어 있다'는 검은 거래설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그 때문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4일자 『춘포, 여산 주민들 들러리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는 "여산면 매립장 입지 선정을 백지화 한 익산시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겠다'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의혹을 더 부풀리는 계기가 됐다. 이는 적당한 시기에 '낭산 폐석산을 압축, 포장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강변하기 위해 사전장치로 춘포와 여산을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초래한 것이다. 이한수 시장의 친동생이 낭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은 이 같은 사전 '준비론'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여산이나 춘포보다는 채석과 복구비 절감 그리고 쓰레기 반입에 따른 부가수익 등 1석 3조의 이익을 취하게 될 폐석산 업자가 정치자금 모금에 훨씬 더 큰 실익을 안겨 줄 게 분명하다는 점이, 이한수 시장과 업자간의 결탁의혹의 진원지이며, 아무런 환경성 검토도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는 이 시장의 동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따라붙는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압축포장 폐기물은 기계적 해체로 소각이 가능하며 소각대상 물질에서 맹독성 물질이 배출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부송동 소각장 주변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사실 및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커미션 수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여산면 매립장 입지선정 백지화는 주민들 간의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시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 일단 중단한 것이며 익산시 이한수 시장 및 친동생, 폐석산 업자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의 바이라인이 다른 이름으로 교체돼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광주전남데일리안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2.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손배)

• 제 목 : 옥룡사지와 관련한 8개 기사의 작성자 이름을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4일 『옥룡사의 재조사를 촉구한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기사 8개의 기사작성자를 '데일리안', '박○○ 기자' 등의 이름으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각 기사의 작성자 이름이 백○○ 기자 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광주전남 데일리안뉴스 : 『옥룡사의 재조사를 촉구한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4일자)
내 용 : <기사 작성자의 이름이 실제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게재돼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6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4일자 『옥룡사의 재조사를 촉구한다』 라는 제하의 칼럼 기사를 게재하

면서 『광양 옥룡사 발굴터 가짜 의혹 눈덩이』 등의 관련 기사를 함께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백○○ 씨가 퇴직하면서 회원탈퇴를 함에 따라 자신의 전산기록 일부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백○○ 씨의 이름이 누락되거나 다른 이름으로 교체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광주전남데일리안뉴스(www.dailian.co.kr/gi/)의 초기화면에 제목(제목의 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크기와 같게 한다) 및 위 보도문을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주전남데일리안뉴스 : 『반론 보도문』 제 하의 기사
(2007년 6월 1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퇴사하면서 자신의 회원기록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기사의 바이라인이 누락되게 됐으므로 보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공덕동 재래시장 화재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3.

처리결과 : 각 취하

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시장 건물 안에서 평하고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중략)

▷기자 : 경찰은 시장내 당구장에 있던 LPG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략)

보도내용

KBS-2TV : 「아침타임뉴스」 프로그램 (2007년 5월 2일 08:00)

내 용 : ▷앵커 : 화재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공덕동의 재래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에 상인과 주민 백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시장 건물 한켠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뿅뿅하게 불어 있는 점포에 순식간에 불이 번져 주변 일대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공덕시장 건물에서 불이나 시장 건물 세 개 동 100여개 점포를 태우고 두 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갑자기 난 불에 상인과 고시원 주민 등 100여 명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덕동 재래시장 화재원인 당구장과 무관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일 「아침타임뉴스」 프로그램에서 공덕동 재래시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시장내 당구장에 있던 LPG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번 화재의 원인과 시장내 당구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KBS-2TV : 「930뉴스」 프로그램 (2007년 5월 2일 09:30)

내 용 : ▷기자 : 시장 건물 한켠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뿡뿡하게 불어있는 점포에 순식간에 불이 번져 주변 일대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공덕시장 건물에서 난 불로 시장 건물 3개 동 백여 개 점포를 태우고 2시간 반만에 꺼졌습니다.

갑자기 난 불에 상인과 고시원 주민 등 백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시장 건물 안쪽에서 ‘펑’ 하고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상인 : 잠자다 폭발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건물이 시커먼 연기에 휩싸여 있어 119에 신고하고 대피했다.

▷기자 : 경찰은 목격자들이 여러 곳에서 폭발음을 들은 뒤 불길에 치솟았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방화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화재 여파로 시장 주변 8차선 도로가 차단돼 새벽 한때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공덕동 재래시장 화재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3.

처리결과 : 각 합의

Y T N : 「굿모닝코리아」 프로그램 (2007년 6월 4일)

내 용 : 지난달 2일 서울 공덕시장에서 난 큰 불은 방화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감식결과 드러났습니다. (중략)

소방서 측은 당초 목격자들이 불이 난 장소로 지목했던 A동 2층의 당구장에서는 발화 흔적을 찾지 못했고, C동의 경우 불이 난 것을 일찍 발견해 다행히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보도내용

Y T N : 「굿모닝코리아」 프로그램 (2007년 5월 2일 05:00)

내 용 : <2007서울조정18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18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6월 18일까지 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신청인 회사가 여전히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한국○○의료기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5.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7년 5월 17일
18:50)

내 용 : ▷진행자 :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 어르신들 불러 모으는 한 의료기 회사가 있다.

〈○○의료기 홍보관〉

어르신들이 매일 이곳을 찾는 비결을 알아보자.
(중략)

▷진행자 : 어르신들을 혹하게 만든 것은 바로 욕각이라는 이 신비의 돌이었다.

불이기만 하면 갑상선의 종양까지 없애 준다는데.

무릎 보호대, 조끼, 허리찜질기, 1280만 원짜리 매트까지 구입한 어르신들도 있다.

▷O모 씨 : 이불도 치료기라 열 내면서 덮으면 암세포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O모 씨 : 이거 1280만 원짜리 귀족을 쓰면서 이불로 덮어 주면 암세포가 다 죽는다고 그렇지 위에서 덮어 주고 밑에서 열을 올려주니까 (중략)

▷진행자 : 수법1 효과를 본 구체적인 인물 강조!

케적인 체험담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또 다른 현장. (중략)

▷K모 씨 : 수술했던 부분 거기에 고여있던 어혈이 조금 나왔어. 두 번째로 더 많이 나오고 체지방도 분해되서 나와요.

▷A모 씨 : 안산에 항암환자가 머리카락 다 빠져서 스카프 쓰는 여자가 6개월 해서 머리카락 피부가 좋아져서 왔어.

▷B모 씨 : 48시간 내에 심장마비가 없이 흑이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손을 못 쓴다는 흑이 들어갔어요. (중략)
수법2. 정부기관 인증 강조.

▷진행자 : 불이기만 하면 온갖 병이 낫는다는 욕각 돌 역시 식약청 허가가 난 제품이라 했다.

▷C모씨 : 식약청 허가 안 나면 못 파는 거야. 우린 대상 탄거야. 식약청에서 허가 나가지고 병도 낫고 그런다고? 그럼~ 그렇지 않으면 못해 이거.

▷진행자 : 그래서 식약청에 확인해봤다.

▷식약청 관계자 : 허가 내 준 것을 초과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는 족욕기, 알고 보니 전해질인 소금의 양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것이었다. 식약청은 뒤늦게 허가를 취소.

〈2007년 2월 뉴스데스크 방송 : 몸속에 노폐물까지 배출 한다고 선전한 수백만 원대 족욕기.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중략)

▷진행자 : 아픈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 마음을 이용하다니 너무 껄껄하고 화가 난다. 사기치는 분들도 미운데 왜 이렇게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나도 모르게 말려든다. (홀린다.) 사람심리를 교묘히 이용한다.-제로맨도 속이는 교묘한 수법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5월 17일 「불만제로」 프로그램 『사기꾼들의 사기수법』 제하의 보도에서 한국○○의료기에 대한 지난 1월 4일 방송분을 방영하면서 한국○○의료기가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지난 1월 4일에 방송분에서 지적됐던 특정 지점의 의료기 관련 과대광고 등의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됐으며 현재는 모든 지점이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피신청인 주장

20,000,000원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나주시가 불리한 조건으로 드라마 세트장 건립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1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나주시 (시장 신 정 훈)

피신청인 : 나주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나주뉴스 : 『주몽세트건립 나주시장 굴종협약(?)』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1일자 1면)

내 용 : 최근 나주뉴스가 단독 입수한 황진이세트장 건립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나주시가 시민 혈세 80억 원을 투자하고도 방송사에 대해 저자세 굴종협약을 맺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주몽세트장 건립 협약은 나주시와 MBC가 2005년 5월 25일 기본협약을 맺었다가 11월 14일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반면 황진이 세트장은 (주)한국미래와 올리브나인이 2006년 8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과 협약에 따르면 주몽세트장의 나주시 계약 상대방은 MBC(주계약자), 올리브나인 초록뱀엔터테인먼트(보조계약자)인데 반해 황진이세트장의 (주)한국미래의 계약 상대방은 (주)올리브나인으로 확인됐다. (중략)

나주시의 주몽세트장 제작지원금 80억 원은 방송사인 MBC에게 지원한데 반해 (주)한국미래의 황진이 세트장 제작지원금 30억 원은 (주)올리브나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중략)

이에 따라 황진이세트장 계약서에는 공사 감리 및 감독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반해 주몽세트

장의 경우 협약서에 공사감리 및 감독규정이 없어 반영구적 설계, 시공책임을 MBC와 제작사에게 일임했다.

오픈세트 건축과 관련해 황진이세트장의 경우 각종 인허가 사항 등 일련의 행정절차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데 반해 주몽세트장의 경우 이러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는 나주시의 책임으로 약정했다.

황진이세트장의 경우 드라마 종영 후 제작사의 무상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주몽세트장은 종영 후 10년간 세트장부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해 MBC와 제작사에게 무상 우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중략)

특히 주몽세트 건립협약의 경우 제작사에게 오픈세트의 관광자원화 및 테마파크로의 확대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나주시와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파격적인 우선협상권까지 제공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21일자 1면 『주몽세트 건립 나주시장 굴종협약(?)』 제하의 기사에서 드라마 ‘주몽’ 세트와 ‘황진이’ 세트를 비교하면서 나주시가 제작사와 시공·운영자끼리 세트건립 계약을 맺은 ‘황진이’와는 달리 방송사를 주계약자, 제작사를 보조계약자로 해 ‘주몽’ 세트 건립 계약을 맺었으며 30억 원의 제작지원비를 제작사가 시공·운영자에게 제공한 ‘황진이’와 다르게 ‘주몽’ 세트제작지원금 80억 원을 방송사에 지급하고 ‘주몽’ 세트장 건립계약서에 공사감리 및 감독규정을 두지 않고 시공책임을 방송사와 제작사에 일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황진이’의 경우와 달리

나주시가 추진한 ‘주몽’ 오픈세트 건축과 관련해서는 각종 인·허가 사항 등 일련의 행정절차에 대한 책임을 나주시가 지는 것으로 약정했으며 나주시가 ‘주몽’ 종영 후 10년 간 세트장 부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해 방송사와 제작사에게 무상사용권을 인정했고 제작사에게 오픈세트의 관광자원화 및 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나주시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파격적인 우선협상권을 제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방송사를 주계약자로 삼은 것은 계약의 신뢰 및 안정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으며 방송사가 제작사에 비해 재정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방송사에 80억 원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나주시는 방송 스케줄에 따른 공사 진행 및 방송 오픈세트로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사와 합의, 제작사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공사관리와 책임을 일임했으며 세트장부지와 건물은 나주시 소유이므로 관련 행정절차 및 인·허가 부분 책임 및 처리는 나주시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나주시는 ‘주몽’ 종영 후 10년 간 무상사용권을 인정했다라도 그 기간 중 부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권은 나주시에 있으며 오픈 세트의 개발에 있어 최악의 경우 아무 협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에 대비해 공동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제작사에 우선협상권을 준 것으로 특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나주뉴스는 지난 5월 21일자 1면 『주몽 세트 건립 나주시장 굴종협약(?)』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나주시가 방송사인 MBC와 협약서 체결 시 세트장 유치에 80억 투자, 세트장 10년 무상사용권, 세트장 관리 운영권 등 유치에 따른 파격적인 특혜를 방송사와 제작사에 제공하면서 스스로 봉(?)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사기업체간에 체결된 황진이 드라마세트장 건립계약과는 달리 방송사(MBC) 및 제작사(올리브나인, 초록뚰 미디어)를 지속적인 사업의 공동파트너로서 활용키 위해 이들을 계약 당사자에 포함시켜 오픈세트의 관광자원화 및 테마파크로의 확대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계약내용이 나주시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나주뉴스 2007년 6월 11일자 1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5월 21일자, 주몽 VS 황진이 세트장 협약...)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나주뉴스 : 『주몽세트 건립 나주시장 굴종 협약(?)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1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영농조합이 하천용지 5천여 평을 불법으로 성토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원에영농조합법인

(조합장 문 ○ ○)

피신청인 : 새충청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새충청일보 : 『금암지구 하천용지 불법행위 은폐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5일자 4면)

내 용 : 부여군 규암면 금암지구 하천용지가 수
년에 걸쳐 불법점용 및 농작물재배를 위한 성토
등으로 지형이 변화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절실하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2월 중순까
지 1년 넘게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 수 대의 중
장비를 동원, 산마 재배를 위한 수단으로 수천 평
에 해당하는 하천용지의 사토를 불법으로 채취 성
토해 인근에 너비 10~20m, 길이 50~100m, 깊이
5~6m의 호수모양 웅덩이 5곳이 형성되는 등 하천
의 물질적인 지형변화와 생태계파괴로 인한 여름
철 집중호우시 각종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 K 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산마,
산두버, 고추 등의 재배를 목적으로 주민 박 씨 등
30여 명과 함께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 문제의 하
천용지 5000여 평을 불법으로 성토한 가운데 지난
해 11월쯤 7000여만 원의 첫 수확을 거뒀으며, 올
해도 인근 하천용지 2000여 평을 불법성토한 가운
데, 지난해 지역출신 모 도의원을 영농법인의 고문
으로 추대, 수억 원의 영농시설자금을 지원받으려
하고 있다는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5월 15일자 1면 『금암지구 하천용
지 불법행위 은폐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부여군
규암면 금암지구 하천용지가 수 년에 걸쳐 불법
점용 및 농작물 재배를 위한 성토 등으로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민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산마, 산두버,
고추 등의 재배를 목적으로 주민 30여 명과 함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 하천용지 5,000여 평을 불
법으로 성토한 가운데 지난해 11월쯤 7000여만
원의 첫 수확을 거뒀으며 올해도 인근 하천용지
2,000여 평을 불법성토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원에영농조합법인은
2007년 2월 12일자로 설립되었으므로 지난해 초에
영농조합이 구성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
르며, 하천 용지를 지난해와 올해 불법으로 성토하

거나 지난해 7000여만 원의 첫 수확을 거뒀다는
내용도 영농조합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
이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5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새충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
월 5일자 14면)

내 용 : 부여 『금암지구 하천용지 불법행위 은폐
의혹』에 대한 새충청일보의 지난 5월 15일자 4면
보도 기사에 대해 ○○○ 영농조합법인은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1. 본 조합은 행위자 윤 씨와 임모 씨가 지난해
행한 ‘금암지구 하천용지 불법행위’에 대한 일체
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전년 11월
경 7000여만 원의 수확과 관련해서도 본 조합과는
무관하다.

2. 본 조합은 문제를 야기한 2명의 조합원과 관
련, 지난 5월 15일 저녁 긴급이사회를 소집한 가운
데 참석한 이사진 8명으로부터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 이틀 후 (17일) 자진
사퇴 처리하였다.

3. 하지만 새충청일보의 보도기사내용이 본 조합
전체 구성원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확대 보도 돼
본 조합은 관계기관을 통해 이미 신청한 영농시설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또한 지난달 25일경
부터 가락동 농수산물공판장에 마와 고추 등의 농
수산물을 출하하기로 하였으나 이같은 문제로 인
하여 본조합의 이미지가 실추됨으로써 납품이 거
부됐다.

4.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본 조합은 다수의 조
합원이 재배한 각종 농산물의 원활한 출하를 위해
공동선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재원이 부족해 농
산물집하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조합원과 가족들은
적기에 납품하지 못한 농산물을 한숨만 쉬며 바라
보는 실정하기에 이같은 사실을 반론보도합니다.

2007년 6월 4일

○○○ 영농조합 법인 조합장 ○ ○ ○ □

신청인이 사학비리 관련자로서 정상화되고 있는 학교를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3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5.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각 취하 (정정·손배)

보도내용

KBS-2TV : 「생방송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2007년
4월 18일 00:30)

내 용 : ▷아나운서 : ○○대학교가 다시 법원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현행 이사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옛 재단 쪽
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학교 측에 손을
들어줬던 1심을 뒤엎고 2심에선 옛 재단이 승소하
였습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 측의 긴장은 더
욱 팽팽해 지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 어제 오후 서울 대법원 앞에 2,000
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생회장 : “비리사학자 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프로듀서 : 오늘 4월말에 예정된 대법원 판결
을 앞두고 ○○대학교의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모
였습니다. 이들은 김○○ 전 이사장이 제기한 상지
대 현 이사회가 무효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생 : 예전부터 비리같은 게 되게 많았고 저
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대 직원 노조 대표 :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
라서 다시 ○○대학교가 과거와 같은 학원 비리
의 대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발전하는
대학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
다.

▷프로듀서 : 재단비리로 몸살을 앓던 ○○대는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성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
면서 10년 이상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대 임시이
사회는 정식이사체를 출범시켰고 이에 김○○ 전
이사장은 설립자의 동의없이 임시의사들의 정
식이사 선정이 부당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
니다. 하지만 지방법원이 무효 소송을 기각한 것
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엎고 임시의사
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헌법상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현 이사회는 무효라고 판결
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에게 학교운영권을 되돌
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립자학교찾아주기운동
본부. 이 단체에는 임시의사가 정식이사를 임명
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학재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판결에서도 당연히 고등법
원의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문 없음〉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18일 「생방송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민주시민대학 VS 좌파사학탈취 기로
에선 ○○대학교』 제하의 보도에서 임시의사체
제로 운영되어 오던 ○○대학교가 지난 2003년
임시의사회를 통해 정식이사체제를 출범시켰으
나 ○○대학교 김○○ 전 이사장이 이에 반발,
‘설립자의 동의 없이는 임시의사들의 정식이사
선정이 부당하다’는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에서는 학교 측이, 2심에서는 김○○ 전 이사장
측이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

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방송은 약 2,000여 명의 학교 측 인사들이 대법원 앞에서 김○○ 전 이사장을 규탄하는 시위 장면을 방영하고 학생 및 교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예전부터 비리 같은 게 되게 많았고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돌아오지 말아야죠”, “학교를 어지럽히고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라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으며 김○○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고 “대법원 재판결과에 따라서 다시 ○○대학교가 과거와 같은 학원 비리의 대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발전하는 대학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내 곳곳에 김○○ 전 이사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장면을 방영하고 김○○ 전 이사장 시절 학내 투자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도 많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 건물이 수업 도중 건물벽이 무너졌다는 인터뷰를 함께 방송했으며 “○ ○대학교가 그간에 부패사학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민주 시민대학의 모범 사례로 꼽혔으나 다시 한 번 공방에 휩싸이게 되어 아쉽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 측은 대법원 앞에서 김○○ 전 이사장 규탄시위에 참석했던 사람은 2,000여 명이 아닌 500명이며 김○○ 전 이사장에 대한 ○○대학교 측 대다수의 인터뷰가 편파적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전 이사장 측은 공금횡령혐의는 무죄판결이 났으며 방송중에 등장한, 김○○ 전 이사장이 연행되던 장면은 ○○대학교의 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면이며 김○○ 전 이사장은 상지대학교 설립자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김○○ 전 이사장 측은 건물벽이 무너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면 이미 재산은 개인의 손을 떠나서”라는 방송 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설립자가 설립이념과 건학이념으로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 경영해 나가는 것이지 기부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 측은 본 방송이 ○○대학교 측의 일방적 이야기만을 담았고 김○○ 전 이사장을 비리 사학의 대표적 인물로 호도했다고 주장하고 불법적으로 사학 재산을 강탈한 학교 측은 김○○ 전 이사장에게 학교운영권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 측은 “임시이사임의로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4월 18일 「생방송 시사투나잇」 『민주시민대학 VS 좌파사학탈취기』로 선 ○○대학교』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김○○ 전 ○○대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으나, 김○○ 전 ○○대 이사장은 “과거 처벌될 당시 공금횡령의 혐의 부분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업무방해 등에 관하여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아울러 인터뷰 내용중 벽이 무너졌다고 언급된 건물은 실제 벽에 균열이 간 정도이고, 김○○ 전 이사장은 ○○대를 위해 일부 토지매입과 다수의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KBS-2TV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말미에 2007년 6월 21일까지 보도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반론보도문)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2TV : 「생방송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2007년 6월 21일 00: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평가한 재개발지구의 건물감정액이 이웃한 건물과 2배 가량 차이가 있어 엉터리 감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OO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KNN-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NN-TV :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2007년 4월 21일 20:30)

내 용 : ▷앵커 : 부산의 한 재개발지구의 감정 평가가 제 몇대로입니다. 이웃한 건물의 평가액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가 하면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김○○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산의 한 재개발지구입니다.

4평 남짓한 이 건물구조의 평당 감정평가액은 천이백만 원을 웃돕니다.

반면 바로 옆 건물은 오백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70여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합니다.

또다른 2층 단독주택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7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지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속칭 지분쪼개기가 행해진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주민 : 아파트 분양권이 1명이 나올 것이 7명이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특혜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기자 : 이 지구의 감정평가는 조합과 해당구청이 각각 선정한 두명의 감정평가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조합 측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만 책임을 감정평가사에게 돌렸습니다.

▷조합관계자 : 조합원이 지적한 걸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감정평가사가 한 것이지 조합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재개발지구, 엉터리 감정평가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1일자 KNN 뉴스아이에서 “재개발지구, 엉터리 감정평가”라는 제목으로 부산 한 재개발지구에서 이웃간 건물의 평가액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감정평가가 제멋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평당 1,200만 원이 웃돈다고 보도된 건물감정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합산한 감정평가액을 토지평가액으로만 오인하여 보도된 오보였으며 보도된 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이번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관련 감정평가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바입니다.

합의사항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지난 4월 21일자 뉴스아이 「재개발 지구 엉터리 감정평가」 제하의 보도에서 부산 장전동 재개발지구에서 이웃한 건물의 평가액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감정평가가 제멋대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평당 1,200만 원을 웃돈다고 보도된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건물과 토지 평가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로는 이웃한 건물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NN-TV 2007년 6월 6일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에 방송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하고, 보도문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NN-TV :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2007년 6월 6일 20: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KTX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철도공사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9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노동조합 (위원장 엄 ○ ○)

피신청인 : KTX 매거진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8.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TX매거진 : 「전 KTX 승무원 문제 오해와 진실」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호)

내 용 : 전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정규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을 ‘탄압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오해하시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공사는 전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심을 다해 노력해왔으나, 오해와 불신이 쌓여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진실을 철도의 주인이자 고객이신 국민여러분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글 김○○(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전 승무원들의 주장, 대부분 사실무근입니다.

고속철도 개통을 눈앞에 둔 2004년 2월, 철도청(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은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하 재단법인인 홍익회(2005년 1월 (주)한국철도유통으로 전환됨)에 KTX 승무사업업을 위탁했습니다. 홍익회는 즉시 계약직 승무원을 모집하고 교육시켜 2004년 4월 1일 개통된 고속철도의 성공적 운영에 기

여하였습니다.

약 1년 후인 2005년 2월 4일, ○○노동조합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사업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했고 조사결과 2005년 9월 9일 파견법 위반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인 9월 말부터 KTX 승무원 노조는 (주)철도유통의 부당노동행위 시정과 한국철도공사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역사내에서 집회를 갖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 문제를 접하고 우선 (주)철도유통에서 KTX 승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계약서상 1인당 인건비는 약 248만 원인데 승무원에게는 120만 원에서 1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철도유통이 가로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한 달 평균 170여 시간(주당 40시간)을 정상 근무한 승무원이 받는 급여는 1인당 평균 183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철도공사 신입사원의 월급과 비교해 보아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일반관리비로 책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승무원을 선발, 교육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따져볼 때 (주)철도유통은 적정이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극히 일부 승무원이 140만 원 정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유는 개인 사정상 한 달에 90시간, 즉 11일밖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KTX 매거진 12월호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장 김○○(이하 ‘김○○’이라 함)의 ‘전KTX 승무원 문제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기고글에서 김○○은 현재도 진행 중인 KTX 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철도공사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가. 김○○은 KTX 승무업무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KTX 승무사업을 홍익회(2005. 1 철도유통으로 전환됨, 이하 철도유통이라 함.)에 위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최초 철도공사가 KTX 승무사업 위탁이유를 정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외주위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던 바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철도유통은 이전 승무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승무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음.

나. 승무원들이 한달에 받는 급여가 183여만 원이라는 주장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130~140여만 원에 불과하고 김○○이 주장하는 183여만 원은 상여금이 포함된 달에 대체근로, 휴일근로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매월 평균적으로 183여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다. 보건휴가에 관하여 ○○환은 토, 일요일에 20여명의 보건휴가를 보장하였고 실제 그렇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턱없는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보건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통하여 추첨된 승무원만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토, 일요일에는 승무가 집중되어 실제로는 2~3명 정도만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

라. 김○○은 KTX 승무원들이 KTX 관광레저(주)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고

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외주위탁하였다는 점이고 이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KTX 승무원들이 투쟁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인데, 위탁업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그러한 고용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규직’이라는 단어만을 강조하여 KTX 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일방적인 폐쓰기로 매도하고 있음.

마. KTX 승무원들은 단지 계약종료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은 2006년 4월부터 각종 보도자료를 통하여 KTX 관광레저(주)로의 전직을 거부할 경우 ‘정리해고’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가 분명히 있었음.

바. KTX 승무원 직접고용 시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김○○은 KTX 승무원들의 임금이 철도공사 정규직 신입사원의 월급과 비교하여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4대보험, 관리비용 등을 운운하며 총비용은 훨씬 많아 간접고용이 훨씬 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김○○이 주장하는 간접비용-4대 보험료, 일반 관리비-등은 직접고용시에도 발생하는 비용일 뿐 아니라 위탁업체의 이윤까지 보장하여야 하는 총도급비용을 고려한다면 생산성이나 기업충성도가 훨씬 높은 직접고용이 오히려 철도공사에도 이익일 것임.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기사에 하자가 없으며 소제기를 할 예정이므로 신청인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

주한 미국대사가 남북열차 운행 전 날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통일부 (장관 이 재 정)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남북관계 과속’ 미우려 공식전달』 제
하의 기사 (2007년 5월 16일자 1면)

내 용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6
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남북화해협력과 6자회
담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면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을 전격 예방한 자리에서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구체적 소식들을 듣고 싶고 한·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논의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북 측이 ‘2·13 합
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북 측에
쌀 차관 및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의결하고 열차
시험운행(17일) 등이 이뤄지는 등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
다. 이 장관과 버시바우 대사의 면담은 전날까지만
해도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날 오전 긴급히 결정
됐으며 10시 15분부터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버시바우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정부가 북 측에 제공기로 한 8000만 달러어

치의 경공업분야 물자는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이해한다”면서도 “6자회담과 남북화해 협력 속도
에 대해선 한·미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16일자 『버시바우, 남
북열차 운행 하루 앞두고 이통일 긴급면담 - “남
북관계 과속 미우려 공식전달”』 제하의 기사를 보
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통일부장관 예방은 남북열차 운행과 관계없이 5. 6
일 미국대사관 측에서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순회
한미관계 설명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면담을 요
청해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면담 과정에
서도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식
전달한 바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에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정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기자의 의견표명에 불과
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도 힘들다. □

신청인의 살인·방화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 (추후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5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9.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6년 4월 17일자
20:00)

내 용 : ▷앵커 : 살인을 저지른 후 수사를 피하
려고 일부러 도둑질을 해 잡혀 들어간 대학생 강
도가 잡혔습니다. 살인현장에 떨어뜨린 담배꽂초가
단서가 됐습니다.

제주방송 하○○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 2월 18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 화재 현장에서 37살 이모 여인이 숨진 채 발
견됐습니다.

부검결과 이 씨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고 이 후
불이 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선 용
의자가 피우고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꽂초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 담배꽂초를 수거해 유전

자 검사를 하고 지목한 용의자는 대학생 25살 김모 씨. 김 씨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대학 여자기숙사 강도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강도 현장에 신분을 노출시키는 단서를 남겼고, 강도사건 다음날엔 경찰에 자수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제주시 노형동 원룸 살인·방화 용의자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4월 17일 「8시뉴스」에 살인·방화 후 수사를 피하려 일부러 도둑질을 해 잡혀 들어간 대학생 강도가 잡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결과 김모 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원룸 살인용의자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 제주시 노형동 원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25살 김모 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이같이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6월 18~22일 중 20시에 방송하는 SBS-TV 「SBS 뉴스8」 프로그램 말미(스텝 스크롤 자막 전)에 보도하되 진행자가 위 보도문을 통상적인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며, 배경화면은 제주지방검찰청 청사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6월 22일까지 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6월 19일 20:48)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사당5동 재건축을 추진중인 신청인이 재건축 개발권을 50억 원에 매각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동작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동작신문 : 『새 집 꿈꾸던 주민 울리는 연이은 재건축 분쟁』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6일

자 1면)

내 용 : (전략)

강○○ 씨는 초대 구의원이었던 박모 씨가 운영하는 대행업체 R사와 사당○동 ○○번지 일대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사당동 주민들에게 신망받고 있는 지역유지인 강○○ 씨의 인맥과 존재감 덕분에 쉽게 동의서가 모아졌다. 구의원 출신인 박모 씨를 신뢰했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R사가 자행하는 편법과 불법을 목도할 때마다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끝에 관계를 정리하고 조합원장을 사임했다. 박모 씨가 개발권을 제3의 업체에 50억 원을 받고 매각하

려 했다는 의혹이 포착된 것은 그 직후의 일이다.

R사는 주민의 80% 동의라는 높은 지지율속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도 기대에 부응할 만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년을 기다려 온 조합설립은 서류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지난 4월 9일 구청 측으로부터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사당동 ○○번지 지역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R사의 50억 원 개발권 매각설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6일자 1면에 『새 집 꿈꾸던 주민 울리는 연이은 재건축 분쟁』이라는 제목과 “부당한 수익 노리고 활개치는 자질 미달 업체들, 시행대행사 잇따른 의혹과 분쟁으로 주민들 고통”이라는 부제목으로 시행대행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초대 구의원을 지낸 박모 씨가 운영하는 R사가 추진하는 ○○번지 일대에 대해 박모 씨가 제3의 업체에게 50억 원을 받고 개발권을 매각하려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으나 이것은 사업부지의 기초자금 50억 원을 선투자하고 추후 이익을 6:4로 나누는 동업형식의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지만 그 후 그 업체를 만난 적도 없으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추후의 매각의도조차 없었음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 길 전(주간 동작신문 발행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131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 동작신문 1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사당동 재건축 관련 반론보도)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부당한 수익 노리고~분쟁으로 주민들 고통)활자와 같은 크기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반론보도문의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보도한다.

2.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13.

<별 지>

•제 목 : 사당동 재건축 관련 반론보도
 •내 용 : 본지는 5월 16일자 1면 ‘새 집 꿈꾸던 주민 울리는 연이은 재건축 분쟁’ 제목의 기사에서, R대행업체가 추진하는 사당동 ○○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과 관련, R대행업체 대표인 박모 씨(전 구의원)가 제3의 업체에 50억 원을 받고 개발권을 매각하려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모씨는, 개발권을 매각하려 한 적은 없으며, 다만 기초자금 50억 원을 자신이 미리 투자하고 추후 이익을 6:4로 나누는 동업형식을 다른 업체와 협의한 적은 있었지만 그 후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된 바 없고, 앞으로도 개발권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동작신문 : 『사당동 재건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일자 1면)
 내 용 : <결정문의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용 LPG용기가 품질 불량으로 파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코리아 (대표이사 정 ○ ○)
피신청인 : 가스사업신문
종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양당사자 이의신청)

보도내용

가스사업신문 : (1) 『수출용 LPG용기 품질 건성(?)』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3일자 1
면)

내 용 :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LPG자동차
용기의 성능시험중 파열된 사고로 관련업체가 들
썩이고 있다. 바로 해당 제조사가 국내 차량용
LPG용기의 주요 생산업체라는 점 때문이다.

현재 국내법상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어떠한 검
사기준도 없다. 그러나 용기의 내압시험중 용기가
파열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용기제조나 품질확인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출용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 같
은 품질의 용기가 해외로 수출됐다가 현지에서 문
제가 발생한다면 해당업체는 물론 동종업체나 국
가 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용기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협력
업체로 알려진 (주)○○코리아(대표 정○○)의 수출
용으로 제작된 LPG자동차 용기, 이번 사건의 발단
은 올해 1월경 해외 수출업체인 (주)○○○(대표 조
○○) 측이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코리아의 LPG
차량용기중 2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성능시험을
의뢰, 내압시험중 용기가 파열되면서 시작됐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파열된 용기는
약 1.5MPa 압력에서 용기가 파열됐던 것으로 전해
졌으며, 파열원인은 궁극적으로 제품의 제조불량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2) 『수출용기 파열문제 -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30일자 4면)

내 용 : 본보(412호 1면 보도)를 통해 수출용
LPG자동차 용기의 품질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 용
기검사시스템을 다시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제조사 측이 관련 내용의 보도를 이유로 문
제가 발생한 제품들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한국가스안전
공사와 수출업체, 해당 제조사와의 갈등이 증폭되
고 있다.

더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업체와 검사기관
등은 이번 문제는 제도적면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가스용기의 안전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합적인 검사시스
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납품업체로 현재 국내 LPG자동
차 용기 최대 공급업체로 부각한 (주)○○코리아가
최근 해외수출용으로 제작한 용기의 품질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업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수출
업체인 (주)○○○가 지난 2005년 11월 제작된 제
품을 필리핀 지역에 수출한 후 가스누출 등의 문
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해당 용기와 밸브에
대해 성능시험을 지난 1월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했
고 성능시험 도중 용기가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에
도 못 미친 1.5MPa에서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후략)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는
한편 본보를 통해 보도가 이뤄지자 최근 제조사측
은 오히려 이 문제는 “국내법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다”며 가스안전공사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스안전공사
의 성능시험 수행에 대한 자격 여부를 묻는 질의
와 함께 당초 약속했던 1,000개 용기의 회수를 포
기하겠다고 선언, 수출업체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출용 LPG용기 파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자 신문 1, 2면
에 게재된 『수출용 LPG용기 품질 건성(?)』 라는
제목의 기사와 4월 30일자 신문 4면에 게재된
『[해설]수출용기 파열문제 ‘일파만파’』라는 제목
의 기사를 통하여 (주)○○코리아가 생산하는 자동
차용 LPG용기가 품질불량으로 파열될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위 기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본 신문은 위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성능시험 직후 주식회사 ○○○가 파열된 용기를 회수해 갔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파열의 원인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반적인 원인인 ‘용접불량’을 파열의 원인으로 추정하였을 뿐입니다.

파열된 용기는 필리핀으로 수출되어 1년 이상 사용되던 것으로, 제조 당시부터 파열을 일으키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 용기는 제조단계가 아니라 사용중 또는 수거과정에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가 필리핀 현지에서 위 용기를 수거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성능시험을 의뢰할 때까지 주식회사 ○○코리아는 아무런 통보도 받은 바 없습니다. 해당 용기의 수거나 운송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는 성능시험 직후 파열된 용기를 수거하여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코리아가 성능시험 이후 주식회사 ○○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용기를 검사한 결과, 용접상태는 정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파열의 원인이 용접불량으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식회사 ○○코리아는 수출용 용기에 대하여도 국내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가압검사의 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낮은 1.8MPa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식회사 ○○○가 지정하여 부착한 안전밸브 때문이었습니다. 주식회사 ○○○가 용기에 부착하도록 지정한 안전밸브의 가압능력이 떨어져 주식회사 ○○코리아는 안전밸브의 교체를 제안하였으나, 주식회사 ○○는 가압검사 기준을 1.8MPa로 낮추고 위 안전밸브를 장착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8MPa는 주식회사 ○○○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의뢰한 가압검사의 기준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는 가압검사 외에도 용접부위의 하자여부를 검사하는 방사능 검사, 용접부위의 인장강도를 검사하는 인장시험 등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모든 시험을 국내 용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식회사 ○○코리아는 법적인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수출용 용기에 대한 검사공

정을 누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는 LPG 용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지금까지 ○○코리아가 생산한 용기가 파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기 수거 요청을 하기 전 이미 주식회사 ○○○에게 제품에 제조상의 하자가 있다면 수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하자 확인을 위한 조사와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 협력거부로 용기수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코리아를 퇴직한 임직원은 없으며, 정○○ 대표이사 또한 여전히 재직하면서 위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수거 요청에 반발하거나, 본 신문의 기사를 이유로 용기회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자확인 절차를 거부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 ○○○였습니다. 주식회사 ○○○는 성능시험 전에 주식회사 ○○코리아에게 용기의 가스누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본건 용기에는 주식회사 ○○○의 요구로 가압능력이 떨어지는 안전밸브가 장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식회사 ○○코리아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능시험결과 시험대상 용기 모두의 안전밸브 부분에서 가스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식회사 ○○는 갑자기 용기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용기 전체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하자의 내용과 원인 규명을 위한 확인절차를 거부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결정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코리아

대표이사 정 ○ ○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 ○

(변호사 조 ○ ○, 송 ○ ○)

피신청인 : (주)투데이에너지(주간 가스산업신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5-26

한림빌딩 3층

대표이사 김 완 진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

(변호사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 가스산업신문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2007. 4. 23.자 1면)의 부제목(LPG차용기~도덕적 문제 지적) 활자와 같은 크기로 2단에 걸쳐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게재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0원을 이 결정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신청인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이 유 :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13.

<별 지>

- 제 목 : '수출용 LPG용기'에 관한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지는 4월 23일자 1면과 2면, 4월 30일자 4면의 『수출용 LPG용기 파열』 관련 기사에서 '(주)○○코리아가 제조한 수출용 LPG용기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성능시험을 한 결과, LPG용기

한 개가 1.5MPa의 압력에서 파열되어 용접불량으로 판명됐고, 이는 (주)○○코리아가 용기제조 과정에서 가압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제품 수출로 인해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주)○○코리아는 수출된 1천여 개의 용기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시험 직후, 시험을 의뢰한 수출업체 (주)○○○가 파열된 용기를 회수해 갔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파열의 원인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결국 일반적인 파열의 원인인 '용접불량'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파열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코리아는 "문제의 용기는 제조과정에서 아니라 사용중 또는 수거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국내용뿐만 아니라 수출용 LPG용기에 대해서도 제품을 출시하기 전 가압검사는 물론, 용접부위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사능 검사, 인장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수출용 LPG용기의 가압검사 기준은 국내용보다 낮은 1.8MPa로 설정했는데, 이는 수출업체인 (주)○○○가 가압검사기준을 1.8MPa로 낮추고 가압성능이 떨어지는 안전밸브를 부착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며, 수출된 LPG용기의 수거문제도 수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조사 협조요청에 대해 (주)○○○가 협력을 거부하여 LPG용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주)○○코리아가 제품 수거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

지문에 의한 적성검사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엠○○ (대표이사 조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7년 4월 5일 18:50)

내 용 : ▷사회자 :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 하루도 몇 번씩 꿈이 바뀐다.

알다가도 모를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

편견 가르쳐야 할지 고민 많은 부모에게 그야말로 솔깃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름하여 지문적성검사 지문 하나로 내 아이의 인격형성과 재능 학습방법까지 알 수 있단다. 아이의 미래직업까지 꼭 잡아 준다니 어디 한번 들어나 보자.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문 하나로 아이의 미래를 점친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5일자 불만제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문에 의한 적성검사는 정확한 과학적인 논문 및 근거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지문과 성격과는 관계가 있음을 많은 피문 과학자들이 논문을 통하여 발표를 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의 살인·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Ⅱ

사건번호 : 2007제주조정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피신청인 : 제민일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9.
처리결과 : 취 하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제주시 노형동 모 원룸에 침입, 이모 씨(37·여)를 성폭행 하려다 이 씨가 완강히 반항하자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후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제민일보 : 『원룸 방화살인 용의자 탈미』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8일자 사회면)
내 용 :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뺐 했던 30대 여인 원룸 방화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7일 30대 여인 원룸 방화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대학기숙사 강도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모 씨(25)를 지목해 강도·강간 살인과 방화 혐의 등을 추가해 조만간 제주지검에 관련 서류를 송치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지난 2006년 2월 18일 발생한 제주시 연동의 원룸 살인·방화사건의 용의자가 신청인이라고 지목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의 뇌파검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그리고 10개월간의 검찰 조사 결과 지난 3월 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범도 아니고 검찰에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았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신청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도하여 흉악범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받은 그간의 정신적 고통과 심각히 훼손된 명예, 사회 복귀가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신청인의 살인·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Ⅲ

사건번호 : 2007제주조정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피신청인 : 제주일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9.
처리결과 : 취 하

사 (2006년 4월 18일자 5면)
내 용 : <2007제주조정3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제주일보 : 『유력 용의자 교도소 수감중』 제하의 기

10,000,000원



**신청인의 살인·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V**

사건번호 : 2007제주조정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피신청인 : 한라일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9.
처리결과 : 취 하

한라일보 : 『살인 증거인멸 강도행각』 제하의 기사
(2006년 4월 18일자 5면)
내 용 : <2007제주조정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10,000,000원



**신청인의 살인·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V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제주조정6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피신청인 : JIBS-TV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9.
처리결과 : 각 취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185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
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보도내용

취하 후 보도문

JIBS-TV : 「JIBS뉴스」 프로그램 (2006년 4월 17일
20:00)
내 용 : <2007서울조정185의 보도내용 참조>

JIBS-TV : 「JIBS뉴스」 프로그램 (2007년 3월 22일
06:12)
내 용 : <2007서울조정185의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살인·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V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제주조정7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제주KBS-1TV
 중재부 : 제주중재부
 접수일 : 2007. 5. 29.
 처리결과 : 합의 (추후)
 취하 (손배)

보도내용

제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6년 4월 17일 21:00)
 내용 : <2007서울조정18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185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동 원룸살인 용의자 무혐의 처분”

• 내용 : 지난해 2월 제주시 ○○동 원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방화·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 제주시 ○○동 원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던 25살 김모 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이같이 결정함으로써 그동안의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제주KBS-TV> 2007년 6월 12일 저녁 9시 <뉴스9> 제주지역방송 시간대에 방영하되, 제목은 화면 중앙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내용은 뉴스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단, 화면처리는 ○○동 원룸화재현장, 경찰서 브리핑 장면을 사용하되, 필체 사진첩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제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6월 12일 21:00)

내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의 살인·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Ⅷ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제주조정8
 청구명 : 추후·손배청구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제주MBC-TV
 중재부 : 제주중재부
 접수일 : 2007. 5. 29.
 처리결과 : 합의 (추후)
 취하 (손배)

보도내용

제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6년 4월

17일 21:00)

내용 : <2007서울조정18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185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신청인 회사가 분뇨처리시설을 불법증축하고, 외국인 고용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8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농산(주)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CNB저널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9.
처리결과 : 각 합의

납부하고 불법증축된 시설은 철거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증축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 시설 위
에는 김포시의 유일한 여가시설인 유스호스텔과
수영장 승마장 등이 들어섰지만 불법증축된 분뇨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때문에 김포시민들
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보도내용

CNB저널 : 『김포시, 환경오염도시 ... 환경오염 검은
그림자 정치인?』 제하의 기사 (2007년 5
월 15일자 56~57면)

내 용 : ‘친환경’ ‘쌀맛’ 나는 도시로 알려진 경기
도 김포시(시장 강경구)가 지금 분뇨처리업체인
○○농산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단속해야 할 김포시는 일정한 벌금만
추징하고 불법증축건물에 대해 철거의 손도 못대
고 계속 영업을 하도록 해 김포시가 환경오염의
배후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정치인의 관련설이 나돌고 있
다. 이같은 관련설은 이 업체가 김포시의 주민혈세
로 지어졌고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불법증축에 벌
금만 물리고 환경문제는 뒤로 하고 있는데다가 중소
기업청으로부터 외국인 특혜고용까지 받고 있다.

김포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K도 국회의원이 김
포시장으로 있을 때 이 분뇨처리시설을 허가해 주
었다. 그 후 김포시 주민의 혈세까지 지원받고 들
어선 이 시설은 계속 불법증축을 해 3,000여 평으
로 늘어났는데 이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없으면 힘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년 단속해도 벌금만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농산(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주간지는 지난 5월 15일자 사회면에
『김포시, 환경오염도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
사 ○○농산이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 김포시
주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들어섰고, 분뇨를 이용,
비료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김포시의 예산을 해마
다 지원받아 불법적으로 시설을 증축했다’고 보도
하는 한편, ‘○○농산에 외국인 고용특혜까지 부여
하는 등 정부의 불법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도 의
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농산 주식회사는 분뇨처리시설
의 설치 및 증축과 관련하여 김포시의 예산을 지
원받은 사실이 없고 ○○농산의 외국인 고용이 적
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농산(주)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주간지는 지난 5월 15일자 사회면에
『김포시, 환경오염도시...』라는 제목으로 ‘단속해
야 할 김포시는 일정한 벌금만 추징하고 불법증

축건물에 대해 철거의 손도 못대고 계속 영업을 하도록 해 김포시가 환경오염의 배후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정치인의 관련설이 나돌고 있다', '이 시설은 계속 불법증축을 해 3,000여 평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없으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은 2005년 8월 김포시로부터 고발당했지만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산 주식회사는 '김포시내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분뇨량에 비해 김포시내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위탁을 거절하는 경우 축산농가들이 불법적으로 축산분뇨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므로, ○○○농산은 축산농가들의 간곡한 요청에 부득이 허가받은 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축산분뇨를 위탁받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분뇨의 야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분뇨보관 창고 등을 증축하게 되었을 뿐이며, 증축된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김포시의 단속 이후 허가받은 시설만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김포시 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시까지 위탁처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므로, 증축시설을 이용한 영업은 정치인이나 정치권의 영향력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위탁 이외에 달리 적법하게 분뇨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농산(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사는 CNB저널의 5월 15일자 사

회면과 CNB NEWS의 5월 4일자 및 5월 7일자 뉴스에 『김포시, 환경오염도시...』, 『○○농산, 불법행위 뒤편 누가 있길래?』라는 등의 제목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농산이 김포시 주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분뇨처리시설을 불법적으로 증축' 했고, '불법 증축건물과 관련하여 정치인의 배후설이 나돌고 있으며', '○○농산에 외국인 고용특혜까지 부여되는 등 정부의 불법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농산 주식회사는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축과 관련하여 김포시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편, ○○○농산은 시설증축이 정치인이나 정치권의 영향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고, ○○○농산의 외국인 고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CNB저널> 2007년 6월 19일자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김포시청, ○○○농산...)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CNB NEWS>에 2007년 6월 14일부터 저장하고, 제목은 인터넷 <CNB NEWS>의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24시간 동안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보이게 한다. 인터넷에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링크시킨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CNB저널 : 『○○농산(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9일자 6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선거당시 참모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금강산 여행을 떠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원시 (시장 김 용 서)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2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중부일보 : 『평일에 금강산 구경 떠났다』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3일자 1면)

내 용 : 국영기업체 감사들이 이구아수 폭포 세미나, 서울 지역 구청장들의 남미 세미나 등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용서 수원시장이 수십 명의 일행을 대동하고 평일에 금강산 여행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김 시장은 이번 여행에도 선거 당시 선대위 본부장 등 참모들을 상당수 대동, 비난을 더하고 있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김용서 시장을 비롯한 일행 20여 명은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 시청에서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 여행길에 올랐다.

김 시장 일행의 금강산 방문은 시청 내부에서조차 방문단 명단 및 일정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등 비공개로 진행. 현재까지 방문 목적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시장 비서실 정도에서만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용서 시장, 선거당시 참모 등 20여명 대동 평일에 금강산 구경 떠났다』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보 5월 23일자 1면에 보도된 『김용서 시장, 선거당시 참모 등 20여명 대동 평일에 금강산 구경 떠났다』라는 기사는 사실확인결과 행정자치부 산하 봉사교육재단인 (재)SEP에서 수원 소재 북녘동포돕기운동추진본부에 제안하였고 위 단체에서 수원시장에게 초청 제안하여 참석하게 되었으며 북고성에 도착하여 2박 3일간 짧은 기간 동안 황폐된 민둥산에 소나무 400그루를 식재하였고 온정리 마을에 연탄 보일러 100대 전달 및 지붕교체 재료 4채분 판넬 등 주거환경정비 재료를 마을에 전달하여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돕는 민간협력 행사였으며 저녁 시간에는 남북통일 일일워크숍개최 등 분주한 방문일정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봉사 참여자는 총 25명의 추진본부 회원이었으며 봉사 행사주관은 김용서 수원시장이지 아니라 북녘동포돕기운동추진본부로서 선거 참모 격려차 대동한 사실은 더욱 아님으로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이 기사와 관련 신청인 측에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국정홍보처가 언론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왜곡보도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9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홍보처 매주 부처회의...사실상 홍보지침 내려”』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8일자 4면)

내 용 : “홍보 관계자들을 ‘커뮤니케이터가 아닌 싸움꾼’으로 전락시켰다.” “국정홍보처가 앞장서서 국정 홍보를 퇴행시켰다.”

최근 국정홍보처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 발표에 대해 ‘신(新)언론통제’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현 정부의 홍보 관련 요직을 지낸 관계자들은 “비판적 보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 지시로 각

부처의 홍보관계자들이 말 못할 고충을 겪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국정홍보처의 권력기관화=매주 국정홍보처는 차장 주재로 각 부처홍보관리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한주의 언론보도 및 대응에 대한 토론 및 평가회의를 갖는다. 전직 홍보 관계자들은 이 자리가 사실상 ‘홍보 지킴’을 받는 자리라고 털어 놓았다.

일부 부처는 “왜 그 기사가 동아, 조선(일보)에만 보도됐느냐”, “왜 동아, 조선이 후원하는 행사를 지원하느냐”는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 부처의 홍보 요직을 지낸 A 씨는 “한번은 청와대 관계자가 그 회의 자리에서 연배가 훨씬 높은 홍보관리들을 노골적으로 망신주는 발언을 해 입술을 깨물고 참은 적이 있었다”며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코드’와 다른 발언을 하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하겠다’고 나오니 할 말이 있어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는 “기자들이 뭐라고 해도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한 부처의 홍보관리관을 지낸 B 씨는 “홍보처의 평가업무 담당자들에게 각 부처 홍보부서가 조언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식사 대접을 한 적도 있었다”며 “일부 부처에선 장관을 한국정책방송(KTV)에 출연 시켜달라고 매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보처 관계자는 “장차관의 KTV 출연이 평가 요소이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해당 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으며 일부러 부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홍보처 차장 주재 회의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며 “일방적인 지킴을 내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제보도’ 대응은 반드시 보고=일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홍보 관계자들이 실제 업무보다 국정홍보처의 ‘코드’에 맞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부처의 홍보관리관을 지낸 C 씨는 “부처의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내용이 보도되면 이른 새벽부터 청와대 관련 비서실로부터 ‘대응하라’는 전화가 걸려오기 일쑤”라고 순회했다. 여기서 ‘대응’이란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와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에 따라 각 부처의 홍보 관계자들은 매일

오전 문제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국정홍보처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보처의 ‘줄 세우기’=홍보 관계자들은 국정홍보처의 정부 부처 ‘줄 세우기’도 대표적인 폐해로 꼽았다. 국정홍보처는 매년 각 부처의 ‘홍보 성적’을 평가해 점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공개하는데 주된 평가요소가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건수라는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홍보처 매주 부처회의…사실상 홍보지킴 내려’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8일자 A4면에 “홍보처 매주 부처회의…사실상 홍보지킴 내려”라는 제목으로 ①홍보처가 매주 각 부처 홍보관리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언론보도 및 대응에 관한 토론 및 평가회의를 가지며, ②각 부처의 홍보관계자들은 매일 오전 문제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국정홍보처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③홍보처가 시행하는 홍보 평가의 주된 요소는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건수이며, ④홍보처 주관으로 청와대 고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홍보관계세미나에서 각 부처의 홍보관계자들이 언론대응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발표하며 우수 부처를 시상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①홍보처가 매주 각 부처 홍보관리실 관리 참석하에 여는 회의는 언론 대응에 관한 회의가 아니라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이고, ②각 부처의 홍보관계자들은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홍보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③전체 홍보평가 중 언론대응 평가 비중은 10%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평가기준도 대응의 적정성으로 대응 건수가 아니며, ④홍보관계자 세미나에서 각 부처의 홍보 관계자들이 발표한 것은 정책홍보의 성공·실패사례이지 언론 대응의 성공·실패사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6일자 A2면)

내 용 : 본보 5월 28일자 A4면 기사의 '매주 국
정홍보처는 차장 주재로 언론보도 및 대응 평가 회
의를 갖는다'는데 대해 홍보처는 매주 열리는 홍보

처장 주재의 전략회의는 정책홍보 협조사항을 논의
하는 자리며, 홍보평가 중 언론대응 비중도 전체의
10%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프로포즈 받으면서 우는 장면을 동의없이 방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91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습 방영>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피신청인이 SBS-TV 방송을 통해 신청인이 프로
포즈 받으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신청인의 동의도
없이 여과없이 방영하여 신청인은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에 5,000,000원의 손
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SBS-TV : 「김미화의 U」 프로그램 (2007년 5월 15
일 13:20)
내 용 : <프로포즈 받으면서 울고 있는 여인의 모

중재합의

양 당사자 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진행하
기로 합의함 <2007서울조정8 참조> □

전무이사인 신청인이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9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건설교통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건설교통신문 : 『○○전세버스 이사장 직무대행 이○
○씨』 제하의 보도 (2007년 5월 14일
자 8면)
내 용 : ○○전세버스 제 16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집행부의 미숙하고 확고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이사장을 선출했으나 당·낙선자의 이의
주장으로 결국 법정투쟁까지 이르게 한 ○○전세
버스조합의 무능한 행태는 ○○관광버스업계에 먹
칠은 물론 전국전세버스업계에 이르기까지 치명상
을 주게 하는 등 충북지역 전세버스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케하여 이의 책임소재를 두고 비난의 소
리가 높아가고 있다. (중략)

이어 지역별 안배로 이사진과 감사도 선출하고 그
후 집행부의 비협조 속에서도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장과 충북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에
서 조출한 취임식을 가졌다.

이때부터 이상기류가 나타났다. 진작 취임식을 주
도해야 할 전무이사는 문을 굳게 잠그고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부 직원들은 취임행사에 나몰라라며
비협조와 무관심으로 초라하게 취임식을 마친 것

이다.

실무를 맡은 전무이사는 신임 이사장이 당선 확정되면 즉각 당선자에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합을 잘 이끌어가야 되겠느냐고 인사와 함께 보고를 해야되는 것이 도리인데도 입맛에 맞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듯 등한시하고 보고는 커녕, 인수인계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세버스 이사장 직무대행 이○○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4일자 지방면에 『○○전세버스 이사장 직무대행 이○○씨』라는 제목으로 신임 이사장 취임식과 관련 조합 전무이사가 문을 굳게 잠그고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이 취임식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이 같은 모든 어수선한 사건의 제공은 전무이사가 자리를 연명시키고자 하는 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전무이사는 취임식 당일 출장명령에 의해 출장중이었으며, 이사장 임기가 2007년 4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2007년 3월 2일 취임식을 행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자체가 의아스럽고 또한 ○○전세버스조합 이사회(2007. 05. 09.) 및 정관 규정에 의거 전무이사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전세버스 이사장 직무대행 이○○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4일자 지방면에

“○○전세버스 이사장 직무대행 이○○씨”라는 제목으로 신임 이사장 취임식과 관련 조합 전무이사가 문을 굳게 잠그고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이 취임식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이 같은 모든 어수선한 사건의 제공은 전무이사가 자리를 연명시키고자 하는 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전무이사는 취임식 당일 출장명령에 의해 출장중이었으며, 이사장 임기가 2007년 4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2007년 3월 2일 취임식을 행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자체가 의아스럽고 또한 ○○전세버스조합 이사회(2007. 05. 09.) 및 정관 규정에 의거 전무이사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6월 1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건설교통신문> 8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건설교통신문 : 『“○○전세버스 이사장 직무대행 이○○씨”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8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분노처리시설을 불법 증축하고, 외국인 고용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농산(주)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CNB NEWS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0.
처리결과 : 각 합의

〈2007서울조정18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및 반론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CNB NEWS : 『김포시, 환경오염도시 ... 환경오염 검은
그림자 정치인?』 제하의 보도 (2007년
5월 4일자)

내 용 : 〈2007서울조정18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합의사항

〈2007서울조정189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CNB NEWS : 『○○농산(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용산 전자상가의 강매 현장을 보도하면서 판매원인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9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2TV : 「8시뉴스타임」 프로그램 (2007년 5월 8
일 20:00)

내 용 : ▷앵커 멘트 : 용산 전자 상가의 일부
점포들이 바가지 상술에다 폭언과 협박까지 서슴
지 않아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강매 현장을 오○○ 기자가 현장추
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 용산에 있는 한 전자상가입니다.

한 점포에 들어가 디지털 카메라를 보여달라고 했
습니다.

▷직원1 : (이거 얼마라고요?) “22만 원. 보여드릴
까요? 싸게 드리는 거예요. 아이...그럼요.”

▷기자 : 구입을 망설이자 다른 물건을 내보입니
다. 그런데 값은 고무줄처럼 내려갑니다.

▷직원1 : “이건 다 해서 28만 원에 드릴 수 있
어요.” “손님 이거 다 해서 24만 원에 드린다니까”
“20만 원에 드릴게요. 그럼 됐죠?”

▷기자 :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하던 직원, 하지
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
변합니다.

▷직원1 :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아니 그럼 왜
물건 산다고 저한테 물건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손님이 물어보면 내가 궁금증 풀어주는 사람이에
요? 예? 그거는 학원가서 돈 내고 배워요.”

▷기자 : 가격을 물어보면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
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내세웁니다.

▷직원1 : (물건 가격은 알아볼 수 있는 거잖
아요?) “여기가 백화점이에요? 저희 쪽에서 물건
을 사가야 소비자지. 지금 손님 같은 경우엔 저한
테 피해 준 사람이라고요. 예?”

▷기자 : 급기야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직원1 : “손님. 맞을래요?” (예?) “맞을래요?
맞을래요?”

▷기자 : 전자제품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속이거나 겁을 쥐 물건을 강매하는 주인과
직원들, 이른바 용팔입니다.

▷직원2 : “간을 본다 그러죠. 사람들을 상대로 아
이 사람이 조금 호구다 싶으면...”

▷기자 : 싸게 판다지만 사실은 부품값으로 이윤을 남기거나 모르는 제품을 권하는 수법을 씁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용산 전자상가 폭언과 협박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8일 “용산 전자상가 강매에 협박까지”라는 제목으로 용산 전자상가내 직원이 폭언과 협박까지 해가며 강매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용산 전자상가내 직원과의 세차례 대면 과정에서 첫째 날 대화부분은 음성처리로 보도되고 상황재연 모습은 세 번째 방문할 때의 모습이 보도되었으나 마치 같은 날 모습과 음성으로 촬영한 것처럼 보도되어 이는 취재일자

가 다름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전체 대화내용에서 일부분만을 강조하여 보도돼 해당직원이 취재하는 기자를 마치 폭행할 것만 같은 언행과 강매를 하는 것처럼 과장되게 편집돼 보도된 점과 세 차례 해당 점포 직원에게 방문하여 물건의 설명을 들은 내용은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순천시가 물품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순천시 (시장 노 관 규)

피신청인 : 순천시민의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순천시민의신문 : 『10억대 물품구매, 수의계약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8일자 14면)

내 용 : 순천시가 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양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순천시는 주암과 낙안 등 면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데 이어 각 마을의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하수관로 설치공사

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순천시가 주암면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수관으로 사용할 PE관을 순천의 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말성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6일자로 체결한 계약을 통해 순천의 한 PE관 생산업체에서 10억 7700만 원에 달하는 PE관을 공급토록 한 것이다. 순천시는 비슷한 시기에 발주한 낙안의 하수관로 설치공사 때는 하수관으로 내충격 PVC관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여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구매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체결한 바 있다.

5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은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순천시가 이처럼 10억 원이 넘는 물품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따라 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순천시가 이번에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표는 지난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중국 출장을 다녀올 때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 으로서는 유일하게 노관규 시장과 함께 동행 했던 사람이다. 때문에 당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는 “특정 기업체 대표의 경비 전액을 (순천시)가 지원하여 중국출장을 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의 공식 국외출장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간 것은 관광성 외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10억대 물품구매, 수의계약 논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2007년 4월 18일자 사회면에 『10억대 물품구매, 수의계약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순천시 주암면 하수관로 설치공사 자재인 폴리에틸렌(PE)관을 구매하면서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을 마치 그 업체 대표가 중국출장 때 시장과 동행한 것을 빌미로 순천시장이 업체에 특혜를 주어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낙안면 하수관로 설치공사 자재인 내충격 경질염화 비닐(PVC)관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조달 구매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폴리에틸렌(PE)관 구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서 생산 및 제조하는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5억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 3월 29일 순천시계약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위원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도록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은 물론 순천시장과 의 중국동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낙안면 하수관로 설치공사 자재인 내충격 경질염화 비닐(PVC)관은 순천시 소재 농공단지에서는 생산되고 있지 않아 농공단지 소재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경쟁입찰 또는 조달 구매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어 조달청으로 구매 요청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문제된 보도는 신문사의 논조에 의한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순천시가 수의계약 특혜의혹을 보도한 신문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1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순천시 (시장 노 관 규)
피신청인 : 순천시민의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순천시민의신문 : 『10억대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9일자 2면)
내 용 : 얼마 전 본지 보도로 논란이 되어

10억대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서도 억울하다고 항변하는가 하면 해당 부서 공무원은 한 술 더 떠 왜곡보도라며 해명자료를 올리기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민선4기와 관련한 지적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해명이 없더니 이 건에 대해서만 유례없이 이 같은 해명 자료를 낸 것은 앞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책회의가 열렸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느니 없느니 변호사 자문까지 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 이처럼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급기야 친일청산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활

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본지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라 지시했다는 이야기마저 들려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민단체에 대한 견제는 사실상의 언론탄압이요 시정을 책임지는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면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잘 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몫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10억대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보 2007년 5월 9일자 『10억대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제하의 사설에서 4월 18일자 사회면의 10억원 대 수의계약 특혜의혹 기사와 관련해 유독 이 기사에 대해서만 순천시가 유례없이 해명자료를 내고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위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시민단체 대표가 본지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상의 언론탄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10억 원대 수의계약은 계약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특혜의혹 자체가 사실 무근임을 밝힌 바 있으며, 해명자료게시는 결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론직필 해야 할 언론이 추측성 기사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시정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지시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축소 지시 역시 순천시에서는 "어떤 시민단체 대표가 순천시민의신문과 연계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지원축소를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순천시민의신문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지원을 마치 지시에 의해 축소된 것처럼 왜곡보도하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견제는 사실상의 '언론탄압'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로 인해 우리 시의 명예와 행정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덧붙였다.

피신청인 주장

〈2007광주조정17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남북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관련 협상에서 한국 측이 저자세로 북한 측의 선처에만 매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9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김 장 수)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문화일보 : 『북 군부 '선처'에 매달려온 경의·동해선 시험운행』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1일자 35면)

내 용 : 한국과 북한의 군사 당국이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합의하기까지 8일 이래 사흘로 예정된 제5차 통일각 남북장성급회담은 일정을 하루 더 늦춰야 했다. 그나마 '17일에 한한 군사보장' 합의로 1951년 6월 12일 이후 56년 만에 남북 철길이 다시 이어지게 된다.

보도내용

반세기 남짓 만의 철길 연결이 역사적이고 상징적임은 물론이다. 그 역사성·상징성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한 시험운행에 그쳐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이번 회담도 남북의 협상자세는 전례와 다를 바 없었다. 북한 측은 예의 억지행태를 답습했고, 한국 측 역시 저자세를 탈피하지 못한 채 북한 측의 ‘선처’에만 매달리다시피 했다. 북한 측은 8일 대면하면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개혁과 개방이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한·미 군사훈련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지 및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포기 요구같은 정치 공세를 폈었다. 또 항구적 군사 보장을 요구하는 한국 측에 대해 강릉~제진구간의 미완성을 핑계로 내세우는 등 시험운행 난항의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사과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5월 11일자 제5차 남북 장성급 회담과 관련한 사실에서 『북 군부 ‘선처’에 매달려 온 경의·동해선 시험운행』 제목과 “북한 측은 예의 억지 행태를 답습했고, 한국 측 역시 저자세를

탈피하지 못한 채 북 측의 ‘선처’에만 매달리다시피 했다”고 한 보도는 회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독자들에게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회담 관계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본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 진행동안 양 측은 시종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였고, 때로는 북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및 설득을 통해 우리 측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남북 열차시험 운영을 위한 군사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이로써 56년 만의 남북 철길이 열리게 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회담일정을 하루 연기할 정도로 진통을 겪어가며 공동보도문을 이끌어냄으로써 서해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과 교류협력 사업 군사적 보장의 계기 마련, 군사회담의 모델 등 유익한 성과를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일체의 반론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9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레저(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5월 29

일 21:00)

내 용 : ▷앵커 :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모두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입장할 수 있는 무슨 방법들이 있는지 한국 사람들로 복적거리고 있습니다.

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 외국인과 해외영주권을 가진 한국인만 입장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캐나다 영주권자를 시켜 서울 시내 카지노 두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는 동양인들로 가득합니다.

외국인의 웃음소리와 외국말이 오가지만, 여기서

기서 한국말도 들려옵니다.

“나이스. (와! 진짜 재수 더럽게 좋네.)”

카지노 식당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손님1 : (누룽지탕만요?) “예.” (알밥에 김치찌개라고 하셨죠?) “예. 여기 깎두기 주세요.” (깎두기요? 예)

▷기자 : 물론 이들이 영주권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손님2 : “보통 7명 정도 앉아서 하면 한 5명 정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시민권자이고 영주권자라면 할 말은 없는 데...”

▷기자 :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내국인들입니다.

▷관계자 : “별 사람 다 있어요. 게임하다 잃잖아요. 이러면 ‘나 한국 사람인데 왜 여기 출입을 시켰냐. 돈 내봐라’ 왜냐하면 카지노가 정지당하거나 크게 문제가 되거든...”

▷기자 : 이들은 어떻게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을까. 먼저, 영주권자에게 발행되는 거주 여권, 이른바 PR 여권을 구해서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자 : “필리핀이라든가 남미쪽이라든가 가서 돈 주고 여권을 사와요. 만들어와요. 아니면 국내에서 여권 브로커를 통해서 가짜 여권을 만들어요.”

▷기자 : 위조된 거주여권은 주로 중국을 통해 들어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경에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여권 앞 장을 통째로 바꾸는 위조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여권 브로커 : “서울의 워커힐(카지노)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마다하겠어요? 게임하고 싶어서 비행기타고 마카오까지 가는 애들인데 300만원이 아깝겠냐 이거야.”

▷기자 : 간단히 조작한 거주여권 사본으로도 카

지노 출입이 가능합니다.

▷관계자 : “만 사람 여권에다 내 사진을 붙여가지고 그걸 카피 떼서 그냥 들어가는 수도 많아요.”

▷기자 : 실제로 이렇게 만든 거주여권 사본을 들고 서울 시내 카지노 3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두 군데선 거절당했지만, 강남의 ○○○ 카지노는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2층입니다”

카지노 출입에 반드시 여권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카지노 측이 고객을 유치해 달라며 계약한 이른바 에이전트사를 통하는 겁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내국인 카지노?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9일자 9시 뉴스데스크 ‘집중취재’에서 “내국인 카지노?”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조작된 거주여권 사본으로도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 “카지노 출입에 반드시 여권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카지노 측이 고객을 유치해 달라며 계약한 이른바 에이전트사를 통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 카지노는 고객들이 내국인인 것처럼 방영된 부분에 대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소지자 등 합법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이 입장하여 게임을 하고 있으며, 현직 카지노 임원의 인터뷰는 ○○○ 카지노의 임원이 아님을 알고서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였으며 거주여권 사본으로 입장하였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

국영방송 KTV가 정치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9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영상홍보원 (원장 윤 형 식)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국영방송 정치선전 도구화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1일자 A35면)

내 용 : 국영채널 한국정책방송(KTV)이 참여정부평가포럼 이병완 대표의 특강을 방송하는 것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국영채널이 특정 정치세력 띄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의 핵심은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이용해야 할 국영방송채널을 특정 세력을 위한 정치선전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V의 운영 주체인 국정홍보처는 현 정권의 올바른 평가와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국 조직체로 정치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포럼의 대표 특강을 연속 방영하는 것은 국정홍보처와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5월 21일자 A35면에 『국영방송 정치선전 도구화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① 이병완 참여정부평가포럼 대표의 특강을 KTV가 방송한 것은 국영채널인 KTV를 정치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 ② KTV 임원수를 과다하게 책정해 정치적 보은 내지는 낙하산 인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박○○ 숙명여대교수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KTV특강 출연은 참여정부 정책성과와 한계에 대해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KTV가 정치선전 도구로 활용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국정책방송 KTV는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책임 있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설립된 국영 방송사로서, 임원이 단 1명도 없어 보은인사나 낙하산인사가 불가능함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KTV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5월 21일자 A35면 ‘국영방송 정치선전 도구화 안된다’ 제목의 숙명여대 박○○ 교수의 시론 중 ‘KTV에 8명의 임원이 있다’는 내용은, ‘KTV는 국가기관으로 임원이 없으며, 따라서 임원에 대한 낙하산인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아일보 2007년 6월 14일까지 ‘오피니언’ 난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KTV 참평포럼 대표 특강 논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KTV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2일자 A3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영화배우 전도연의 귀국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이 동의없이 촬영·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9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뉴시스 : 『취재진에 둘러싸인 칸의 여왕』 제하의 보도사진 (2007년 5월 29일자)

내 용 : <배우 전도연의 귀국현장 공항사진에 신청인의 취재모습이 담겨 있음>

상권 무단 사용 및 침해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금액 2,000,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초상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를 당하였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초

신청인은 취재진이므로 초상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

무주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결혼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연합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북일보 : 『국제결혼 대행사 선정 ‘잡음’』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1일자 13면)

내 용 : 속보 = 사업신청만 받고 추진을 안 해 농촌총각들을 애태웠던 무주군이 이번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행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신청자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제결혼을 대행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열린 설명회에서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자부담이 적은 A업체를 선택했으나 실제 이와 달리 자부담이 많은 B업체가 선정됐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무주군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총각들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자 국제결혼제도를 도입하고 1인당 500만 원을 지원, 농촌에 아이울음소리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국제결혼 업체선정 의혹 사실무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1일자 지역면(제 13면)에 『국제결혼 대행사 선정 ‘잡음’』이라는 제목으로 “무주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업체 선정과정에서 신청자의견을 무시하고 자부담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였고, 즉석에서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다음날 전화로 통보해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사업을 주관한 ○○○연합회는 국제결혼대행사 선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였고, 2차 투표결과 결혼신청 농민 6명 중 5명이 선택한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하고, 즉석에서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자 의견을 무시하고 자부담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즉석에서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전북일보 : 『국제결혼 대행사 선정 ‘투명’』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8일자 7면)

내 용 : 속보 = 국제결혼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무주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선정 과정에서 신청자 의견이 무시됐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신청 농민 6명 중 5명이 선호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국제결혼 대행업체 초청, 설명회를 갖고 국제결혼신청 농업인

들의 뜻에 따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략) □

무주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결혼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연합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전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주일보 : 『무주군, 국제결혼사업 ‘허술’』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1일자 1면)

내 용 : <2007전북조정2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사실무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1일자 제1면에 『무주군, 국제결혼사업 ‘허술’』라는 제목으로 “무주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주관 사업자가 비공개로 선정되었으며, 주관 대행단체가 2차 투표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공개하지 않고 다음날 전화로 결혼 당사자들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이날 설명회는 사전에 특정업체를 낙점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국제결혼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사업을 주관한 ○○○연합회는 국제결혼대행사 선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였고, 2차 투표결과 결혼신청 농민 6명 중 5명이 선택한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하고, 즉석에서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즉석에서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는 등 사전에 특정업체를 낙점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전주일보 : (1) 『“투명하게 선정됐다”』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3일자 11면)

내 용 : 국제결혼대행사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사전선정 의혹이 제기됐던 ‘무주군 농촌장가보내기 사업’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국제결혼대행사 초청, 설명회를 갖고 국제결혼신청 농업인들의 뜻에 따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당시 대행업체 선정은 1차 투표 결과 A사와 B사가 동점이 나와 재투표를 실시, 2차 투표에서 6명 중 5명의 지지를 얻은 B사를 선정하고, 당일 현장에서 투표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후략)

(2) 『전국농업인대회 유치준비 박차』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2일자 4면)

내 용 : (사) ○○○연합회(회장 이○○)는 ‘제11회 전국농업인대회’ 평가 심사를 앞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 중앙연합회 평가위원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무주와 함평이 같이 다음달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약 3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무주군 농업경영인들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무주지회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난 국제결혼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특정업체 사전선정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

며 아울러 무주군에서 지원되는 5천만 원의 사업비 또한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밝혔다. □

라식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사례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9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한 태 원)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7년 2월 27일 23:00)

내 용 : ▷프로듀서 : 지난해 1월 한 대학병원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에 근무하던 여의사가 당직실에서 체조제를 마신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놀랍게도 라식수술. 여의사가 라식수술 결과를 비판해 자살했다는 뉴스에 세간의 관심은 집중됐지만 정작 유가족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건 관할서 형사 : 그 내용을 안 밝히는 걸 좋아할 거예요, 유족들이. 그 당기도 취재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프로듀서 : 딸이 떠난 지 1년, 지난 1월 취재진을 만난 부모는 조심스럽게 취재를 허락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생존 그대로 정리된 딸의 방.

고 지○○ 씨는 부모에겐 아들처럼 의지했던 막내 딸이었습니다.

레지던트 2년 차로 자신의 꿈이었던 소아과 의사 자격증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맞춰 라식수술 예약을 하고 오던 날, 부모는 걱정부터 앞섰다고 합니다. 평소 건조증이 심하고 눈이 예민해, 염증도 잦았던 딸이 걱정돼 부모는 수술 당일 함께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고 지○○ 씨 어머니 : 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따님이 이렇게 라식을 하면 며칠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활동 편하게 할 수 있고, 한 달 뒤면 완전히 좋아 지니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한테 말을 안 했거든요.

▷프로듀서 : 수술이 끝난 뒤 병원이 교정시력 1.0,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지○○ 씨는 수술 직후부터 힘들어했고 죽기 열흘 전엔 새로 안경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수가 거의 없는 난시용 보안경이었습니다.

▷고 ○○ 씨 어머니 : 그럼 뭐라고 그러나 하면 병원에서 그러니까 잘됐다고만 하고 기다리라고만 한다 그거예요. 킬로수가 5킬로가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킬로수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안경점 주인 : 지○○ 씨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시력검사했을 때 보통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나안시력이 나왔거든요. 차트 볼 때 흔들린다고 하던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간호사냐니까?”, “아니, 의사.”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수술 병원 관계자 : 사람에 따라 조금 덜 보이기도 하고, 차트를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본인의 느낌을 적은 것 같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못 하니까 기계에 의해서 눈 굴절상태랑 다 찍어가고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0.9/1.0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게 시력인데 그게 자살할 이유가 되겠느냐.

▷프로듀서 : 수술 한 달 만에 그녀는 결국 인생을 마쳤습니다. 수술병원이 건넨 자료에는 한 달간 6번 병원을 찾아가, 안구건조증을 호소하고 눈물샘을 막는 수술을 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고 ○○ 씨 친언니 : 말하는 거랑 그런 걸 다 이렇게 녹취를 해 놓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요. 그래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자필을 해서 쓰게 했거든요.

▷프로듀서 : 당시 죽음을 앞에 두고 지○○ 씨가 쓴 메모입니다.

물체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고 의사로서 꼭 필요한 기관삽입과 혈액채취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상을 적은 뒤 불과 8시간 만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지○○ 씨 친구 : 같이 있을 때 본인이 썼어요. “네가 그렇게 한 게 눈 때문이나?”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 해서 적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 지○○ 씨 아버지 : 이제 한 달만 참아보자 그랬겠죠. 그런데 한 달이 있어도 안 보이고, 또 병원 여기는 한 달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나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 버리잖아요, 지금 전공의 따는 기간인데. 의사가 시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수술 병원 관계자 : 부작용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증상이죠. 수술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치료 과정에 있는데 한 달 만에 죽어버린 거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어떻게 느꼈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그런데 열이면 열 사람 물어봤을 때 이게 죽을 거리가 되냐고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에요. 맹장수술보다 안전한 수술이 라식수술입니다. 더 안전한 수술이고 단지 이것은 성형수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방 확대 수술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프로듀서 :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단 10여 분의 수술로 고통없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술 라식. 한동안 라식에 대한 체험담 여러 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수술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눈에 표면인 각막의 앞부분을 뚜껍으로 잘라낸 뒤에 이 레이저로 각막 내부를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이 업계가 추정하는 이 라식수술 환자는 한 해에 무려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앞서 보신 지○○ 씨는 수술 후에 의사로서 기본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서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력교정술입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의 하나가 된 바로 이 라식열풍 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PD수첩 「1.0을 위한 도박-라식열풍 그 후」 제하의 방영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저희 방송국이 2007년 2월 27일 PD수첩을 통하여 라식수술 부작용에 대한 방송을 함에 있어 라식수술로 인한 장점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않고, 부작용사례 및 라식수술의 위험성만을 방송하였습니다.

당시 라식수술은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수술이 성공되는 도박성이 있는 것처럼 방송하였으나, 대한안과의학회에 확인한 결과 위 굴절이상 환자가 라식수술로 인한 시력회복률이 95%이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살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라식수술의 실패가 주원인이 되었다고 방송하였으나, 정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균감염은 수술로 인하여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술로 인한 각막돌출과 야간의 빛번짐 현상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고 방송하였으나, 이는 확인결과 치유방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안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는 공업용이 아니라 안전하고 정밀한 안과용레이저로 시술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라식수술의 부작용사례와 문제점을 다룬 지난 2월 27일 MBC PD수첩 프로그램 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 단체에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 내 용 : 본 방송은 과거 수년 동안 한해 15만 명 가까이 시술된 대표적인 시력교정수술인 라식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사연을 소개하여 눈이 가장 소중한 신체장기인 만큼 극소수의 부작용 가능성이라도 시청자들이 가볍게 보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 선택하라는 취지로 기획·취재되었습니다. 방송내용으로 인해 신청인 단체에게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일부 불편함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우며, 다만 이는 인터뷰·취재요청에 대한 무응답 등 실제 취재의 어려움 및 방송의 공익성에서 기인된 점을 널리 이

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라식수술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저희 방송사에서 추가로 취재 방송하는 경우 부작용 피해자의 사연뿐 아니라 시술병원측 및 신청인의 반박과 해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위원회 및 법원에 제기한 일체의 청구를 취하하며, 피신청인 및 담당기자 등 소속 임직원에게 본 방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 조합의 활어판매장이 허가 목적과 달리 할인마트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진도○○법인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대한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대한일보 : (1) 『탈·불법 온상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일자 15면)

내 용 : 진도 서망항(국가항)의 활성화를 위해 활어판매장 건립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항만부지를 임대·허가받은 영어조합법인이 이 부지에 활어판매장 대신 일반 공산품판매장(마트)으로 둔갑시켜 영업 중이어서 말썽이다.

그러나 관할 관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국가항만 관리 소홀은 물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받고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05년 국가어항인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서망항 배후 부지내의 3,610㎡를 활어판매장 및 활어 임시저장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진도○○조합 (대표 P모 씨 45세)에게 임대 허가했다. 하지만 문제의 ○○법인은 해수

청으로부터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건축목적은 달리 건축물의 허가청인 진도군에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면적을 축소, 활어판매장 등은 설치하지 않은 채 가설건축물로 승인받은 후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 일반 공산품 등을 판매 운영하고 있다. 해수청의 어항시설사업 허가 조건에 따르면 “규모 및 위치변경이나 목적의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변칙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후략)

(2) 『진도 불법 활어매장 ‘철퇴’』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8일자 14면)

내 용 : 진도○○법인(대표 박○○)의 편법 시설물 사용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최근 “불법 행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해수부는 본보 보도 후 조사를 통해 진도○○법인이 활어판매장 건립을 목적으로 항만 배후 부지를 임대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일반 공산품 소매점으로 불법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시설 규모 역시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청에 아무런 신고 및 허가 절차 없이 임의변경한 것과, 해수청에 준공신고조차 하지 않은 건물에서 1년여 동안 불법 영업을 해 온 사실도 적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활어판매장 탈·불법 온상 나 몰라라’
및 불법시설 철퇴 사실과 달라

• 내 용 : 대한일보는 지난 3월 2일자 기사에서 진도○○법인의 활어판매장이 활어판매는 하지 않고 할인마트만 운영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진도○○법인은 기완공된 건축물 499.2㎡를 5칸으로 분리해 4칸은 활어판매장이 가능한 수조관을 시설했으며, 그 중 1칸을 마트로 운영했기에 활어판매장 전체를 마트로 운영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진도활어판매장이 탈·불법의 온상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바 탈법이나 불법의 온상이라고 보도한 것은 마치 활어판매장이 온갖 교묘하고 불법적인 일을 일삼는다고 보도하고 있는바 활어판매장에서 불법이나 탈법을 일삼은 사실이 없기에 바로 잡습니다.

또한, ‘이 부지에 활어판매장 대신 일반공산품 판매장(마트)으로 둔갑시켜 영업 중이어서 말썽이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기건축된 활어판매장 499.2㎡를 5칸으로 나누어 그 중 1칸만을 마트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4칸은 활어판매장 시설인 수조관이 설치되어 있어 활어판매장이 일반공산품 판매장으로 둔갑되었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또한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건축면적을 달리 건축물의 허가청인 진도군에 두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면적을 축소, 활어판매장 등은 설치하지 않은채 가설 건축물로 승인받은 후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 일반공산품등을 판매해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소매점으로 인가를 받아 활어판매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오보이며, 건축법에 따라 소매점으로 변경한 것을 마치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소매점으로 변경해 공산품 판매를 하고 있는 듯이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보도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한편, 해수청의 어항시설사업 허가조건에 따르면 ‘규모 및 위치변경이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 변칙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어촌어항법에 따라 제시된 허가조건은 규모 및 위치변경도 경미할 경우 협의에 의해 가능

하며 목적외 사용 또한 해수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아래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불법 변칙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며 마트는 해남세무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사업으로 불법·변칙영업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한편,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규사업허가를 얻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무시된 채 당초 허가면적 1,158㎡의 절반도 안되는 499.2㎡에 가설건물을 준공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당초 1,368㎡의 건축허가를 목포지방 해수청으로부터 받아 1차로 499.2㎡의 건축물을 완공 후, 5월22일 진도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으며 마트영업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합법적인 영업이었기에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한일보는 4월 18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진도○○법인(3차례)과 대표자 실명(1차례)을 거론해 지역사회에서 그 명예가 크게 실추된 사실을 인정하여 바로잡습니다.

또한 ‘항만배후부지를 임대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일반공산품 소매점으로 불법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공산품 소매점으로 불법사용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시설규모 역시 소관부서의 해양수산청에 아무런 신고 및 허가절차없이 임의대로 변경한 것’ 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진도○○법인은 정상적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의대로 변경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8일자 『진도 불법 활

어매장 ‘첼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진도〇〇법인의 실명을 게재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한일보 사회면에 2007년 6월 18일까지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 부제목(4월 18일자 과태로 부과...)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한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8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조합의 활어판매장이 허가 목적과 달리 할인마트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진도〇〇법인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호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내 용 : <2007광주조정1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광주조정1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보도내용

호남일보 : (1) 『진도 활어판매장 불법사용 묵인』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일자 12면)

(2) 『진도 〇〇법인 불법시설 첼퇴』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8일자 15면)

피신청인 주장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신청인이 진도군 의원에게 한 이권청탁이 거절당하자 보복성 기사를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대한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대한일보 : 『진도군의원 인터넷신문기자 고소』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4일자 14면)

내 용 : 진도군의회 L모 의원은 지난 11일 “지역의 모 인터넷 신문 B모 기자가 ‘사실관계 확인 없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진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B모 기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확인없이 수차례 보도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사실과 다른 왜곡된 허위사실을 남발하여 주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B모 기자는 지난달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 인터넷신문에 ‘군의원, 공무원에게 쇠고기제공 선거법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진도군의회 A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내에 거주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억지기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월 2일자에서도 ‘모 군의원의료기 기증선거법위반’ 등의 제목으로 L모 의원이 의신면 10개 경로당에 80만 원, 상당의 물리치료를 기증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각으로 일관하고 있어 고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진도군의회 A모 의원 고소내용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대한일보는 지난 5월 14일자 기사에서 아직 정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하지 않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잘잘못이 밝혀지기도 전에 진도뉴스 박○○ 기자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L모 의원의 고소내용을 보도해 진도뉴스와 박○○ 기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부제목에 ‘L 의원, 이권청탁 거부 보복성 기사, 사실 확인 무시 허위보도 명예훼손’으로 보도한 박모 기자는 L모 의원에게 이권청탁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거부해 보복성 기사를 보도한 사실도 더더욱 없을 뿐 아니라 사실확인을 거쳐 보도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B모 기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확인없이 수차례

보도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사실과 다른 왜곡된 허위사실을 남발하여 주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현지를 취재 보도했으며 L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으며 왜곡된 허위사실을 남발하여 주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B모 기자는 지난달 5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모 인터넷 신문에 ‘군의원, 공무원에게 쇠고기 제공 선거법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진도군의회 A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내에 거주한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억지기사”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의원은 진도군의회 제1선거구 진도읍, 의신면, 고군면, 군내면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진도군청이 진도읍에 소재하기 때문에 A 의원의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의 직원에게 쇠고기를 제공한 것이 틀림없기에 바로잡으며, A모 의원이 쇠고기를 일방적으로 제공 후 대금을 요청한 사실이 의회 사무과 윤모 과장과 박○○ 기자와의 통화녹취록에 잘 나타나 있어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기사’라는 보도는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또 지난 2월 2일자에서도 ‘L모 군의원 의료기기증 선거법 위반’ 등의 제목으로 L모 의원이 의신면 10개 경로당에 80만 원 상당의 물리치료를 기증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각으로 일관하고 있어 고소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기 경로당 기증 의혹 사건 보도는 진도뉴스 및 목포MBC, 일간지 등이 보도했으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진도군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A모 의원을 검찰에 수사·이첩해 조사토록 했습니다. 또 진도뉴스의 물리치료기 경로당 기증 의혹 기사는 2007년 2월 1일 물리치료기를 납품한

납품업체 임도 대표 및 의신면 현지 주민들과 신청인간에 대화하는 등 충분히 증거 확보 후 보도하여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기사화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로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께도 2007년 예산안 편성시 예결특위 위원장인 자신에게 수차례 찾아와 B 기자 본인이 대표인 D수산 측에 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자 이후 의도적으로 보복성 기사와 함께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들을 기사화 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L모 의원을 찾아가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예산의 ‘목’ 전환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예산 편성권은 군의회가 아닌 진도군의 권한이며, 신청인은 5명의 의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했으나 대부분 목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에 있었으며 L 의원이 진도군의회를 대표처럼 행동하는 것은 진도뉴스가 보도한 A모 의원의 선거법위반 관련 2건의 보도를 폄하하려는 의도로 보복성기사와 허위사실을 기사화했다는 보도는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진도군이나 진도군의회에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은 어촌어항법에서도 허용하는 테두리로 신청인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권청탁이 아닌 진도군의회 어항개발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요청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14일자 『진도군의원 인터넷신문기자 고소』 제하의 기사에서 진도인터넷신문기자가 진도군의회 L 의원에 대한 이권청탁이 거부되자 보복성기사를 게재했으며, 사실확인을 무시하고 허위보도를 게재했다는 내용의 L 의원 고소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내용은 아직 수사 진행 중인 고소사건에 대해 아직 당사자의 잘잘못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고소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상대방 기자의 명예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한일보 2007년 6월 18일까지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L의원 이권청탁 거부...)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한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8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진도군 의원에게 한 이권청탁이 거절당하자 보복성 기사를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호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

처리결과 : 조정결정 (손배, 피신청인 이의신청)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보도내용

호남일보 : 『인터넷 ‘진도뉴스’ 기자 명예훼손 피소』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4일자 15면)
내 용 : <2007광주조정21의 보도내용 참조>

수용할 수 없다.

결 정 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광주조정2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정정보도를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호남일보

광주 북구 우산동 518-90

대표이사 김 덕 천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6월 30일
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11.

□

신청인 대학이 교수를 무더기로 징계한 이유가 전임 학장의 비리사실을 고발한데 대한 보복이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전주○○학원
(이사장 유 ○ ○) 외 1인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종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1) 『○○대, 교수 무더기 징계 파문』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7일자 1면)

내 용 : 전주 ○○대학이 교수 20여 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절차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징계위원회
(위원장 김○○)를 열어 2년 전 교수협의회에 참여

했던 교수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불법으로 교수협의회를 구성해 단체행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대학 측은 지난 달 해당 교수들에게 소명서를 요
구한 데 이어, 이날 징계위에 출석시켜 최종 소명
을 들었다.

징계위는 교수들의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의
결서를 만들어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유○○)에
보낼 예정이며, 이사장은 수일 내로 징계수위를 결
정·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직원들은 “이번 징계는 2년 전 업무
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
고받은 전임 조모 학장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며
감사를 요청했던 교수들에 대해 보복성징계를 하
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대학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수주업체
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억 원을 추징당했던 조 전 학장이 최근 학교로 돌아오면서 교수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의 말대로 조 전 학장이 최근 대학평의회 의장으로 복귀한 직후 대규모 징계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조 전 학장이 이번 징계사태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대학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후략)

(2) 『“반민주적 교수징계 중단을”』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8일자 6면)

내 용 : 전주 ○○대학이 교수 20여 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도내 대표적인 인권단체가 학교 측에 반인권적인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는 27일 ‘전주○○대학의 비민주적인 행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구성해 행동하는 것을 문제삼아 징계를 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후략)

(3) 『○○대학 교수 무더기 징계』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7일자 제1면)

내 용 : 전주 ○○대학이 16일 교수 21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단행했다.

이번 징계사태는 대학 전체 교수(전임 강사 이상) 45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사상 초유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학 측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위원장 김○○)에 회부됐던 교수 전원에 대해 해임(1명), 감봉(2명), 견책(10명), 경고(8명) 등 징계처분서를 발송했다.

최○○ 교수(전 교수협의회 부회장)가 해임통보를 받아 이날 자로 해임됐으며, 오○○ 교수(전 교수협의회 회장)와 고○○ 교수가 각 감봉 3개월·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주○○대학 학교법인인 전주○○학원 이사장(유○○) 명의로 전달된 징계처분서에는 징계사유로 ‘불확실한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고 교수협의회 집단의 힘을 빌어 대학을 비리사학으로 매도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는 교직원복무

규정과 교직원징계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해임통보를 받은 최 교수에게는 지난해 모 교수의 책임용 탈락과 관련해 인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보는 2007년 3월 27일자 제1면 오른쪽 상단에서 「○○대, 교수 무더기징계 파문」, 제3면 하단 만평에서 「○○대 교수 3불징책」, 2007년 3월 28일 제6면 오른쪽 중간에서 「“반민주적 교수징계 중단을” 평화인권연대, ○○대 규탄」, 2007년 4월 17일자 제1면에서 「해임1-감봉2-견책10-경고8 ○○대학 교수 무더기 징계」 등의 기사에서 전주 ○○대학이 학원 민주화를 위해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였던 교수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하였는데 이는 과거 전주 ○○대학의 전 학장인 조모 씨가 대학 평의회의장으로 복귀하면서 단행된 보복성 징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주 ○○대학의 징계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행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보의 확인결과, 위와 같은 사실과는 달리 전주 ○○대학의 대규모 징계는 과거 교원들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 서로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고, 과거의 과오에 대한 경고를 받은 교수들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 자신들의 행위를 변호하게 하는 한편, 학교 당국의 허심탄회하고 빠른 결정을 통해서 교수들로 하여금 불안한 학교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수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그리 높지 않은 이번 전주 ○○대학의 징계로 신속한 학원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본보는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새전북신문 : 『○○대 교수징계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내 용 : 전주 ○○대학은 『○○대, 교수 무더기 징계 파문』 제하의 본지 기사(2007년 3월 27일자 1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전북 중재부에 중재를 요구했다. 이에 본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해당기사에 대한 반론을 보도한다.

〈○○대 반론문〉

“전주 ○○대학의 대규모 징계는 과거 교원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학칙에 의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를 한 것이지 조모 전 학장의 복귀 후 이루어진 보복성징계가 아니다. 또한 징계를 받은 교수들로 하여금 소명과 변호의 기회를 주었으며, 조속한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취한 조치였다. 교수들에 의한 징계도 전체 징계교수 21명 중 18명은 견책, 경고에 해당하고 해임 1명, 감봉 2명으로 그 수위도 그리 높지 않다.” □

부읍장인 신청인이 민원처리는 뒤로한 채 지역공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웃음과 빈축을 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엔에스아이뉴스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엔에스아이뉴스 : 『○○방적(주) 논산공장 착공식-○○읍장, 부읍장 산적해 있는 민원처리 뒤로한 채』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9일자)

내 용 : 5월 29일(화) 오전 11시 충남 논산시 양지리 617번지의 양지농공단지에서 입주업체인 ○○방적(주) 논산공장은 논산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의원, 시관계자 및 업체관계자, 주민 등 150여 명을 초청하여 착공식을 개최했다.

○○방적(주) 논산공장은 308억 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5만 7108㎡(17,275평), 건축연면적 2만 4929㎡(7,541평)의 규모의 공장을 건립하는데 2007년 5월 1일 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 10월 31일 공사의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중략)

아울러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읍장과 부읍장이 병영축제로 산적해 있는 민원처리를 뒤로한채 참석하여 “속 빈 강정의 병영축제 내용”을 알고 있

는 참석자들로부터 웃음과 빈축을 자아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방적(주) 논산공장 착공식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엔에스아이뉴스는 지난 5월 29일자 초기화면에 『○○방적(주) 논산공장 착공식-○○읍장, 부읍장 산적해 있는 민원처리 뒤로한 채』라는 제목으로 ○○읍장과 부읍장이 병영축제로 산적해 있는 민원처리는 뒤로한 채 참석하여 “속 빈 강정의 병영축제 내용”을 알고 있는 참석자들로부터 웃음과 빈축을 자아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읍장과 부읍장은 ○○읍 관내 행사에 참석하였을 뿐이고, 민원인들에게는 고자세인데 높은 분들에게는 해바라기 근성이 있는가라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확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기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엔에스아이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

년 6월 12일자)

내 용 : 엔에스아이뉴스(<http://www.nsinews.co.kr>)가 지난 5월 29일자 초기화면에 『○○방직(주) 논산공장 착공식~○○읍장, 부읍장 산적해 있는 민원처리 뒤로한 채』 제목으로 “병영 축제로 산적해 있는 민원처리는 뒤로한 채 기공식장에 나타난 ○○읍장과 부읍장~민원인들에게는 고자세인데 높은 분들에게는 해바라기 근성이 있

는가?” 라는 사진설명과 함께 ○○읍장과 부읍장이 병영축제로 산적해 있는 민원처리는 뒤로한 채 참석하여 “‘속 빈 강정’의 병영축제 내용을 알고 있는 참석자들로부터 웃음과 빈축을 자아냈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엔에스아이뉴스는 ○○읍장과 부읍장에 관해 무리한 표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

신청인이 인터뷰한 내용과 다르게 왜곡하여 회사 측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경제 : 『○○중공업 직원들 스톡옵션 대박에 ‘함박웃음’』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일자 2면)

내 용 : ○○중공업 창원공장에서 자동차 동력 제어 전달장치 제조 작업을 하는 정○○ 씨. 2년 전만 해도 하루 4개꼴이던 제품 생산량이 최근 7개로 급증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졌지만 피곤한 줄 모른다. 일감이 늘어나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스톡옵션 행사로 만지게 되는 돈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힘이 솟는다.

정 씨만이 아니다. 강성 노조로 유명했던 경남 창원의 ○○중공업(옛 ○○중공업) 직원들이 스톡 옵션으로 1인당 1000만~4000만 원의 주식 대박을 터트리며 회사 분위기가 몰라보게 좋아지고 있다.

한 직원은 “파업으로 임금을 200만 원 올리는 것보다 회사 실적이 좋아져 스톡 옵션으로 2000만 원을 얻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직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며 “하나를 양보해 열 개를 얻는다는

생각에 과격 투쟁에 대한 생각이 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톡옵션이 대박을 터뜨리자 현장직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주인 의식이 강해지고 회사 실적에 부쩍 관심을 갖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 노조 간부인 정○○ 씨는 “직원들끼리 만나면 주식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경제신문도 정독하고 있다”며 “18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분위기가 좋았던 적은 드물다”고 전했다.

또 “스톡옵션으로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아졌고 일종의 감동까지 느끼고 있다”며 “돈뿐만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중공업지회 안○○ 사무장은 “스톡옵션 행사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주식을 매각하는 직원들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사무장은 “회사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선 집회나 파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중공업 직원들 스톡옵션 대박에 “함박웃음”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일자 2면에 『○○

중공업 직원들 스톡옵션 대박에 함박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임금인상 200만 원 양보하니 실적좋아 2,000만 원 더 벌어”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사내용 중 안○○ 사무장은 “회사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선 집회나 파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없는 사실을 제목으로 달게된 점, 집회나 파업에 참여를 꺼리는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이라는 인터뷰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정정보도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6월 1일자 2면 『○○중공업 직원들 스톡옵션 대박에 ‘함박웃음’』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정○○ 씨는 생산량 급증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졌지만 피곤한 줄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밝힙니다.
- 또 “회사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선 집회나 파

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질문에 대해 안○○ 씨는 “스톡옵션은 스톡옵션이고 이와 상관없는 입단협은 일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경제>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통상 <한국경제>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제목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3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인터뷰한 내용과 다르게 왜곡하여 회사 측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경제 : 『○○중공업 직원들 스톡옵션 대박에 ‘함박웃음’』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일자 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중공업직원들 스톡옵션 대박에 “함박웃음” 사실과 달라
- 내 용 : 한국경제신문 6월 1일자 2면에 보도된 정○○씨의 인터뷰내용이 사실과 달리 보도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먼저 “2년 전만해도 하루 4개꼴이던 제품물량이 최근 7개로 급증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졌지만 피곤한 줄 모른다.”는 기사는 기자의 질문이 스톡옵션으로 돈을 벌게 되면 생산성도 많이 오르겠조? 라는 질문에 정○○씨는 예전 4개꼴이던 물량이 7개로 늘어나면서 지금도 힘든데 더 이상 생산성향상은 힘들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신문을 정독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스톡옵션 때문에 경제신문을 많이 보겠네요?”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제신문을 정독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18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분위기가 좋았던 적은 드물고 스톡옵션으로 경영진에 대하여 신뢰가 매우 높아졌고 일종의 감동까지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일회성 스톡옵션보다는 한국전기조차, 노키아, 신무림제지처럼 사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영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

하였습니다.

합의사항

〈2007서울조정20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3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국회 견학 온 학생에게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기 준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7.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유기준 의원님 차에 아이가 다쳤어요”』 제하의 기사(2007년 6월 4일자)
내 용 : 울산 G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0여명은 지난달 22일 5명의 인솔교사와 함께 서울에 수학여행을 왔다. 그런데 둘째 날 국회 방문을 마친 뒤 다음 일정을 위해 의원회관 건물 오른쪽에 주차된 관광버스에 오르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검정색 세단과 정면으로 부딪친 아이는 다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듯 일어나지 못했다. 놀란 교사와 학생들이 아이를 살피는 사이, 문제의 세단에서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내렸다. 그는 자신이 타고 온 차로 인해 벌어진 사고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표정이었다.

선생님과 운전기사가 다리를 붙잡고 구르는 아이

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사이, 세단 뒷자석에 앉아 있던 유 의원은 반대 쪽 문을 열고 나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다친 아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의원회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고를 목격한 기자는 다리를 끌어안고 끄끄 거리는 아이를 담임선생님과 함께 사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친 학생을 태워 보낸 교사들은 놀란 아이들을 달래며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다.

그때 의원 수행비서로 보이는 20대 후반의 남자가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던 교사들에게 샷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

“도대체 애들을 몰고 왔으면 관리를 잘해야지. 왜 사고를 내게 하고 난리야. 선생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어? 어디에서 와서는 이 난리를 만드는 거야.” 그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당황해 하는 교사들을 반말로 다그쳤고, 보다 못한 기자가 “누구시냐? 아이들을 달래는 게 먼저 아니냐”고 했지만 남자의 반말과 샷대질은 여전했다.

“조금 전에 다친 애 쳐다보지도 않고 올라간 분이 국회의원이지요? 당신, 그 분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세요?”

기자가 이렇게 묻자 그는 그때서야 “나는 그냥 지나가는 제 3자인데 선생님들이 애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 화가 나 끼어든 것”이라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그는 “조금 전 의원회관으로 올라간 유 의원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유기준 의원님 차에 아이가 다쳤어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4일자 종합면 중간에 『유기준 의원님 차에 아이가 다쳤어요』라는 제목으로, 5월 22일 국회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를 목격한 본보 기자가 피해학생을 담임선생님과 함께 사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고 하면서, 유기준 의원과 비서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인솔교사들에게 화를 내는 등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인상을 준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본보 기자가 피해학생을

담임선생님과 함께 사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고, 유기준 의원이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로부터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의원실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피해학생과 선생님께 충분한 사과와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솔교사 역시 권위적이거나 군림하는 인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타협할 수 없다. ☐

환경단체 간부인 신청인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로부터 조사용역을 수주하면서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3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7.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노컷뉴스 : 『환경단체 간부 업체용역비 개인착복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4일자)

내 용 : 순천의 한 환경단체 간부가 용역비를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단체 운영위원장 서모 씨는 지난해 5월 순천만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는 S업체로부터 용역을 수주했다.

용역은 ‘순천 태양광발전소 시설물과 운영이 서식조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으로, 기간은 지난해 5월 9일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일년간이었다.

서 씨는 총 천만 원의 용역비 가운데 5백만 원을 착수금으로 받고, 용역이 끝나고서 5백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문제는 단체 이름으로 용역을 발주해 놓고도 용역비를 서 씨 개인계좌로 입금해 받은 데다, 위원장 직인이 아닌 서 씨 개인의 도장을 사용했다.

단체 관계자는 “단체 내부에서도 지난 4월 말에 서야 용역에 대해서 알았고 그 이전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 씨는 단체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용역비 천만 원 가운데 백만 원을 단체에 내놓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환경단체 간부 용역비 개인 착복 논란 기사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7년 6월 4일 뉴스면 상단에 『환경단체 간부 용역비 개인착복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환경단체 간부가 거액의 금품을 받아 착복한 것 같은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체 이름으로 용역을 발주해 놓고도 용역비를 서 씨 개인계좌로 입금해 받은 데다 위원장 직인이 아닌 서 씨 개인의 도장을 사용했고 이 단체에 용역수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라는 내용의 왜곡보도를 하였습니다.

기사의 내용대로 계약은 ○○환경운동연합 위원장 단위이며 순천만 조류 전문가인 서 씨의 책임단위에서 용역을 수주하였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용역비는 발주시 ○○환경운동연합 통장으로, 완료 시는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용역발주시에는 신청인이 ○○환경운동연합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연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처리를 하였고 용역 완료 시에는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의상 계약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입니다.

위원장 직인이 아닌 서 씨 개인도장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원장이 ○○환경운동연합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인을 사용한 계약을 할 수 없었고, 발주자의 이해 하에 개인 도장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단체에 용역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수주시 받은 500만 원은 ○○환경운동연합 계좌로 이체되어 2006년 5월 ○○환경운동연합 월례 이사회의에서 재정보고되었고 이후 사업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 씨는 단체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용역비 천

만원 가운데 백만 원을 단체에 내놓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로서 이를 제안한 적도 없고 제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후원을 하는 문제는 내부 관행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체와 관련해 상임위원장과 공동의장 사무국장 등 3명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허위사실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는 상임위원장이란 직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인에게 비리가 있다면 오히려 책임을 추궁하여 잘잘못을 가려야 될 임원들이 사퇴라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환경운동연합의 정관에서 규명한 임원이 아니며 실무단위의 책임자였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계약 완료 사실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리지 못한 것은 2007년 4월~5월까지 월례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공식적으로 보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환경단체 간부 용역비 개인착복 논란』 반론

- 내 용 : 노컷뉴스는 2007년 6월 4일 전남뉴스면에 『환경단체 간부 용역비 개인착복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순천의 한 환경단체 간부가 거액의 금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인 서모 씨는 순천 태양광발전소 시설물과 관련한 용역을 자신이 수행하여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2일간(48시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남노컷뉴스> 사이트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함께 나타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환경단체 간부 용역비 개인착복 논란’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8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과학기술부 산하단체들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과학기술부 (장관 김 우 식)

피신청인 : 한국경제와우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경제와우TV : 「기업뉴스」 프로그램 (2007년 5월 10일 16:00)

내 용 : >앵커 :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과학기술부 산하단체들의 예산이 그야말로 고무줄 편성입니다.

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투자돼야 할 과학기술부 산하단체들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부 산하단체들의 올해 전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조 2천 127억 원으로 동결, 책정됐습니다.

연구원에 배정된 예산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과학재단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243억 원으로 이 가운데 43%인 104억 원이 전문경력 인사활용지원 명목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과학재단은 지난 2006년 기초과

학분야에 2천 96억 원, 특정분야에 5천 164억 원, 원자력분야에 1천 867억 원의 연구지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부에게 타 낸 출연금 지원항목 예산과 실제 재단이 집행했던 사업분야의 예산 회계명목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핵융합연구센터의 연구개발 예산 문제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됐습니다.

핵융합연구센터의 올해 예산 배정규모는 203억 원으로 지난해 114억 원 보다 83.3%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일 많은 예산을 책정한 핵융합핵심기술개발은 지난해 25억 원 에서 올해는 21억 원 으로 17%를 삭감했습니다.

연구센터 전체 예산은 2배 가까이 늘리면서 10개의 과제가 선정된 핵융합 관련 연구관련비는 오히려 깎는 모순을 범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 예산도 지난해 113억 원보다 97.5% 증가한 263억 원으로 늘었지만, 국제공인선진화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9% 줄었습니다.

85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과학기술연구원의 미래원천연구사업이나 396억 원 책정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첨단연구분석지원사업은 말만 다를 뿐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하겠다는 과학기술부와 산하연구단체의 고무줄 예산 편성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 NEWS 양○○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과기부, 산하단체 예산 ‘고무줄’』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2007년 5월 10일에 한국경제TV에서 “과기부, 산하단체 예산 ‘고무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과학재단, 핵융합연구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의 사례를 들며 과학기술부 산하단체들의 연구개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연구개발지원분야가 중복되는 곳이 많으며,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지적했던 한국과학재단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사례가 모두 문제 없으며, 과학기술부의 산하단체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과기부 산하단체 예산」 관련 반론
• 내 용 : 지난 5월 10일 한국경제TV는 「과기부, 산하단체 예산 ‘고무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과학재단, 핵융합연구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과

학기술부 산하단체들의 연구개발 예산이 무분별하게 책정, 집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재단 등 과학기술부 산하단체들의 예산은 정부의 2007년도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미래원천연구사업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첨단연구분석지원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6월 18~22일 중 16시 50분에 방송하는 한국경제TV ‘기업뉴스’ 프로그램 말미(스텝 스크롤 자막 전)에 보도하되 진행자가 위 보도문을 통상적인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와우TV : 「기업뉴스」 프로그램 (2007년 6월 21일 16:49)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대기발령 받은 것을 사실상의 파면이라고 과장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7.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경기신문 : (1) 『양주 공직자 “탈도 말도 많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8일자 8면)

내 용 : 공직자들의 각종 부정비리로 양주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 고위공직자가 임신한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양주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B 읍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B 씨가 지난해 11월 경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상사 H 씨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3월 12일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것.

B 씨는 당시 관내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한 H 씨와 회식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차로 H 씨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당시 B 씨는 임신 9개월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진상조사를 마친 후 지난 11일 양주시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관련 사실여부를 상당 부분 인정한 후 조만간 관련자 H 씨를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2) 『“성추행 공무원 떠나라”』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6일자 1면)

내 용 :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주시 H 사무관이 25일 전격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는 바로 전날인 24일, 부적격 공무원의 퇴출 제도 도입 발표 즉시 이뤄진 첫 인사조치란 점에서 주목된다.

양주시 성희롱심사위원회는 이날 ○○읍 H 사무관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조치는 성희롱심사위원회가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징계 결과 및 수위에 상관없이 이뤄진 사실상의 파면에 가까운 조치여서 시의 강력한 처벌 의지로 풀이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양주시 H 사무관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4월 18일에 신문보도를 통하여 “양주시 공직자 탈도 많다 - 임신 사회복지사 차안 성추행 진정서 접수-”, 같은달 26일에 신문보도를 통하여 “성추행 공무원 떠나라 - 양주시 부적격 직원 첫 대기발령-”이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읍 H 사무관 관련 성희롱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진정서를 제출한 B 씨는 이미 2006년 11월 24일 H 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하였고 양주시가 H 씨에 대해 내린 2007년 4월 25일자 총무과 대기발령은 도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 전의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본 신문이 2007년 4월 26일자 기사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상의 파면에 가까운 조치”라는 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더구나 H 씨에 대한 위 대기발령은 양주시장이 “부적격 공무원의 퇴출제도 도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3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기신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번지

대표이사 박 세 호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경기신문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년 4월 18일 그리고 같은달 26일 각 8면, 1면에 『양주 공직자 “탈도 많도 많다”』, 『성추행 공무원 떠나라』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① 신청인(H 씨로 표기)이 관내 B읍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B 씨로부터 성추행과 관련한 진정을 받은 사실, ② 그 내용인 즉 관내 체육행사에 이은 회식을 마친 후 B 씨가 차로 상관인 H 씨를 모시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는 사실, ③ 이와 관련 양주시는 성희롱심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후 H 씨를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실, ④ 그리고 양주시는 위 도 인사위원회 회부와 별도로 H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였는데 이는 양주시장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며 청렴실천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부적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출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직사회 관행타파를 위한 결연한 의지표명과 관련이 있다는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직후인 2006년 11월 24일 진정인 B 씨와 원만히 합의를 함으로써 종결된 사안이고, 더군다나 위 대기발령 조치는 양주시장이 밝힌 ‘부적격 공무원의 퇴출제도 도입’과는 전혀 무관한 바, 따라서 위 보도내용은 전혀 진실과 다른 허위이므로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 내지 허위보도로 인한 손

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보도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보도한 내용은 진실에 바탕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결국 피신청인이 한 위 보도는 어디까지나 진실에 부합하고 위 보도내용이 진실과 다른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그 주장과 같이 진정한 B 씨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신청인은 사무관급 공직자로서 관내 시청의 과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정내용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러한 사안에 관하여 피신청인으로서의 관내 주민 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충분히 인정되고, 설혹 그러한 보도가 완전히 사실로 확인되기 전이어서

경우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명예훼손 등 상당한 피해가 예측된다 하더라도 이를 보도한 것을 들어 피신청인의 보도가 신청인에게 무슨 위해를 가할 의도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정정보도청구권행사 또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3.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1.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모 전자상가 상인단체들이 소비자 피해신고에 대한 처벌수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OO터미널전자상가 동우회
(회장 김 O O)외 6인

피신청인 : K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TV : 「8시뉴스타임」 프로그램 (2007년 5월 28일 20:00) 외 3개 뉴스 프로그램

내 용 : 〈2007서울조정19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OO전자상가 강매에 협박까지”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8(29)일자 뉴스에

서 “OO전자상가 강매에 협박까지”라는 제목으로 OO전자상가에서 강매에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면서 구매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접수돼도 처벌은 가벼운 편으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상인친목단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피해자는 소비자보호원 등 공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고 이를 신청받은 공공기관에서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처벌수위 결정과 상인단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상인단체의 활동은 상가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마치 상가발전을 해치는 강매 등 불법상행위까지 옹호하고 감싸는 단체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도한 점, 이를 바로잡고 사과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나주시가 시장의 문중 땅을 생물산업지원센터 부지로 선정하여 신 씨 문중에 특혜를 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나주시 (시장 신 정 훈)

피신청인 : 나주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나주뉴스 : 『생물센터 부지비 신 씨 문중 독식』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4일자 1면)

내 용 : 생물산업지원센터와 국민임대산단을 조성하면서 신정훈 나주시장이 소속된 신 씨 문중 구성원 16명이 1억여 원씩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풍문이 뒤늦게 사실로 드러났다.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 보상비 13억여 원 가운데 토지와 지장물,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주정착비 등으로 12억 4천만 원, 그리고 국민임대산단에서도 또 4억여 원이 같은 보상비 명목으로 신 씨 문중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시는 보상비 지급내역의 공개를 현재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임야 1㎡당 3만여 원(평당 10여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지역경제과와 도시과로 바뀌가며 시차를 두고 보상비를 분산 지급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해 왔다.

신 씨 문중은 또 영산 신 씨 습득공과 나주 문중 외에 다른 성씨의 인물까지 동원해가며 보상비 일부도 지급했는데 시와 신 씨 문중이 상호 교감을 가졌던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는 처음부터 가로등과 함께 자연석으로 노변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1백여 미터의 호화판 도로까지 개설하여 바로 인근의 신 씨 문중묘지와 납골묘 진입도로 비쳐지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일부 시민은 “배 밭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는 말까지 있는데 시장이 그럴 수 있느냐”며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흥분했다.

금남동의 한 시민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가 신 씨 문중의 땅을 생물산단부지로 편입되도록 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 아니냐”며 “혹시 보상비가 선거자금으로 유입된 것은 아닌지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4일자 1면 『생물센터 부지비 신 씨 문중 독식』 제하의 기사에서 보상비가 신씨 문중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지급됐고, 보상비가 도시과와 지역경제과를 바뀌가며 분산지급돼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해왔으며, 다른 성씨의 인물까지 동원해가며 보상비 일부를 지급해 시와 신 씨 문중 사이에 상호교감해서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절토 없이는 불가능한 신 씨 문중 산을 생물산업지원센터 부지로 선택해 장소 선정의 타당성 여부 의혹과 토지 조성공사비를 과다 산출했고,” “시장의 우월적 지위가 신 씨 문중 땅을 생물산단부지로 편입토록 한 직접적인 동기” “혹시 보상비가 선거자금으로 유입된 것은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민선 2기인 2001년부터 추진해왔고, 2002년 1월 22일 산자부의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 용역 결과 나주산단으로 위치가 지정돼 사업이 확정됐으며, 같은해 3월 25일 센터 건립대상지 후보지를 확정하였기 때문에 현 신정훈 시장이 같은해 6월 13일 선거에서 당선돼 7월 1일 취

임했던 시기로 봤을때 근본적으로 현 시장이 후보지를 선정한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이에따라 이 보도는 시장이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영향을 끼쳤다는 근거가 없어, 여타의 의혹이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밝힙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나주시

시장 신 정 훈

조정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주)나주뉴스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79

대표이사 김 경 식

조정대리인 허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나주뉴스 1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많고 많은 나주땅...)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한

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0.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4일자 1면 “생물센터 부지비 신씨 문중 독식” 제하의 기사에서 현 나주시장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신 씨 문중 소유의 땅이 생물산업지원센터 부지로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부지보상비를 신 씨 문중이 독식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민선 2기 시장 때인 2001년부터 추진해 왔고, 2002년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 용역결과 나주산단으로 위치가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3월 25일 센터 건립후보지로 최종 확정되게 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2002년 6월 13일 선거에서 당선되어 7월 1일 취임하게 된 현 신정훈 시장이 생물센터 건립후보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성전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잘못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데일리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1.

처리결과 : 취 하

29일자)

내 용 : <성전환 수술자인 장○○ 씨의 성형 전·후 사진이라는 설명과 함께 성형 전의 모습에 신청인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음>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데일리안은 성전환자 장○○ 씨의 성전환 수술 전 사진을 게재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있던 신청인의 사진을 잘못 게재한 채 수시간 동안 방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학업 애로 및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보도내용

데일리안 : 『성전환 수술 ‘장○○’, <진실게임> 출연 화제』 제하의 기사 및 사진 (2007년 5월

국정홍보채널인 KTV가 공공채널로 사업권을 받고도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 불법방송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영상홍보원 (원장 윤 형 식)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2.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서울경제 : 『KTV 12년간 ‘불법방송’』 제하의 기사
및 사진 (2007년 6월 5일자 2면)

내 용 :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알차다”며 각
별한 관심을 표시해 온 ‘KTV(한국정책방송TV)’
가 지난 95년 개국 이래 12년간 ‘불법방송’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KTV
운영주체가 노 대통령의 지시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정홍보처라는 점에서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국정홍보처 산하 영상홍보원 소속 케이블·위성
TV용 국정홍보 채널인 KTV는 ‘출발! 국정 투데이’
‘KTV 국정 와이드’ ‘생방송 국정 네트워크’
등을 통해 매주 월~금요일 하루 2시간 가량씩 뉴
스 프로그램을 편성해 내보내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은 제목에 ‘뉴스’라는 이름을 달지는 않았지만
앵커와 17명의 취재기자를 동원해 프로그램당 적
게는 4개, 많게는 15개 가량의 뉴스 꼭지를 방송하
고 있다. 최근 KTV는 남북장관급회담 등 정부 소
식부터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 제철공장 가동, 전
도연의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내용을 보도하
는 등 허가받은 지상파TV나 케이블·위성TV의
뉴스 채널과 똑같은 포맷의 뉴스를 방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KTV의 뉴스 편성이 현행 방송법
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 현행 방송법 9조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 홈쇼핑 사업자는 영화·오락

채널 등 일반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보도채널이 아닌 사업자
는 영화채널의 경우 영화계 소식, 바둑채널은 바둑
계 소식 등 자사의 장르에 국한된 뉴스만 선택방
송할 수 있다고 방송위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할당
된 장르인 ‘정부정책 홍보’를 넘어 경제 전반과
사회·문화 영역에 이르는 전방위 ‘뉴스 프로그램’
을 다루는 KTV는 불법방송을 하고 있는 셈이
다.

KTV는 95년 당시 공공채널 장르로 사업권을 받
았을 뿐이다. 현재 방송위로부터 보도 채널로 공식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YTN과 mbn을 비롯해 지상
파 3사(KBS·MBC·SBS)와 종교 라디오 채널
(CBS·평화방송·불교방송 등) 정도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5일자 A2면에 『KTV
12년간 불법방송』이라는 제목으로 KTV가 ‘95년
당시 공공채널 장르로 사업권을 받았음에도 할당
된 장르인 ‘정부정책 홍보’를 넘어 경제전반과 사
회·문화영역에 이르는 전방위 ‘뉴스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KTV가 12년간 불법방송을 해 왔다’는 기사를 게
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방송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밝
혀졌습니다. KTV 뉴스 프로그램은 정부정책과 국
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
하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면에서 보도프로
그램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공공채널의 편성목적
을 벗어나는 보도는 일체 취급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정뉴스 편성비율도 전문편
성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범위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어 방송법을 위반하여 KTV가 불법방송

을 하고 있다고 한 본지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정정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영상홍보원

원장 윤 형 식

조정대리인 허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43

대표이사 임 종 건

조정대리인 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2007년 7월 9일자부터 7월 13일자 사이 A2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내용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economy.hankooki.com>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위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별 지>

- 제 목 : 'KTV'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의 지난 6월 5일자 A2면 "KTV 12년간 '불법방송'"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KTV를 운영하는 영상홍보원은 95년 공공채널 방송사업자로 허가받은 이래 공공채널의 편성목적과 편성비를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뉴스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KTV 국정뉴스는 정부정책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보도라고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이르는 시사뉴스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투척용 소화기가 목재 화재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등 잘못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제품을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코리아 (대표이사 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2.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6월 6일 21:00)

내 용 : ▷앵 커 :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기를 던지기만 해도 불이 꺼지는 이른바 던지는 소화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유치원과 경로당에서는 오늘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 자 :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붙자 던지는 소화기 이른바 투척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끕니다.

이 투척용 소화기는 2만원짜리 일반 소화기 보다 열 배 이상 비쌉니다. 하지만 개정된 소방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만 8천 군데의 유치원과 경로당에서는 내일부터 투척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노인회관 관계자 : “법적으로 6월 7일까지 기관의 반 이상을 투척용 소화기로 교체하라고 하니 까... 법의 요건을 따라야 하니까...”

▷기 자 : 투척용 소화기는 어린이와 노인용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제품승인을 받았습니. 성능 검증에도 의문점이 많아 취재진이 성능 실험을 요청했지만 해당 기관은 이를 회

피했습니다.

▷소방검정공사 관계자 : “애들이 써도 (일정한 소화) 능력까지 나와야 하고, 노인들이 써도 (일정한 소화) 능력까지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죠. 사실... (실험을 하면) 칼날이 돼서 날아올 게 뻔한데 저희가 협조가 되겠습니까?”

▷기 자 :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목재나 전기, 유류 화재 등 어떠한 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척용 소화기는 목재 화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재가 났을 경우 투척용 소화기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투척용 소화기 비치만을 강조할 뿐 이런 소화기가 왜 필요한지 실효성은 있는지에 대한 취재는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도 내일부터 관련 시설에서는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 5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투척용 소화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문화방송은 지난 6월 6일 저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황당한 소방법, 못 믿을 소화기”라는 제목으로 투척용 소화기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제목을 뒷받침할 소방법 규정을 소개하지 못했고 소화실험을 아니하였으며 설명도 제목과 맞지 아니하는 등 크게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거 없이 입법자와 소방공무원 및 소화기판매업자들을 마치 황당하고 못 믿을 사람들인 양 국민들에게 오인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근거로 들며 보도한 세부 내용도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첫째, 본 방송은 “투척용 소화기는 어린이와 노인용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제품승인을 받았습니.”라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오보였습니다. 소화기의 제품승인은 “국가검정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이 있을 뿐으로 일반 성인은 물론 남녀노소를 나누어 승인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투척용 소화기가 어린이와 노인이 사용하기 어렵고 잘못 승인된 것처럼 왜곡하는 보도를

하였기에, 이로 바로잡습니다.

둘째, 본 방송은 “일반 소화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목재나 전기, 유류 화재 등 어떠한 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척용 소화기는 목재 화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재가 났을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이 또한 오보였습니다. 투척용 소화기도 일반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화재에 사용되는 것이어서 목재 화재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검정기술수준도 ‘목재 화재’와 ‘전기 화재’ 또는 ‘유류 화재’ 등으로 구분해서 승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투척용 소화기가 목재 화재에만 효과가 있어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잘못 보도를 하였고, 소화기에 대한 국가검정기술기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 보도를 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셋째, 본 방송은 “투척용 소화기의 가격이 일반 소화기에 비해 10배 이상 비쌌습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이 또한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오보였습니다. 보도 당시 투척용 소화기는 시중에서 156,900원(4개 1단위)에 판매되고 있어 당시 기자가 밝힌대로 일반 소화기의 시중가가 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8배를 넘지 않으며, 나아가 일반 소화기는 1년 단위로 충전해야 돼 유지보수비가 매년 1~2만 원 소요됨에 비해 투척용 소화기는 반영구적이어서 충전의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론 가격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투척용 소화기가 매우 비싼 것처럼 잘못 보도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넷째,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 5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 않은 보도였습니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1차 적발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2차 적발 시부터 비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마치 당장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 5백만 원의 벌금을 받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게 보도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은 (주)○○○와 (주)○○코리아가 제작하여 소개한 소화실험 동영상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

해하였습니다.

이에 문화방송은 진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방법과 투척용 소화기에 관한 사실을 왜곡되게 전달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시설과 해당 소화기업체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영업에 피해를 주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도 (주)○○코리아 측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실험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포항시가 교량을 개설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설계를 변경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7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포항시 (시장 박 승 호)

피신청인 : 경북문화신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2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정정)

보도내용

경북문화신보 : 『7.7m 충분 16m로 높여 공사비 232억 낭비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3일자 1면)

내 용 : 포항시 남구 이동~동대병원 앞 구간 4차선 도로 교량 개설을 뚜렷한 이유 없이 설계를 변경해 수백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22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도로 착공 당시 교량 높이가 7.7m 정도면 충분했으나 설계를 변경, 무려 16m 높이로 건설하는 바람에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낭비돼 건설업자만 배를 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01년 4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구 이동~동대병원 앞 구간 길이의 1.3km의 4차선도로 교량을 착공해 최근 완공했다.

그런데 시가 교량 밑으로 개설된 철도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당초 7.7m높이만 충분했으나 설계를 변경해 무려 16m로 교량을 높

이는 바람에 당초 예산 490억 원 보다 무려 232억 원이 더 늘어난 722억 원(현재 미지급 97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7년 5월 23일자 1면에 “7.7m 충분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16m로 높여 공사비 232억 낭비 의혹으로 추가 예산이 낭비돼 건설업자만 배를 불렀다는 의혹 제기”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개설 중인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교량 높이 결정에 대하여, 포항시에서 200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 공사 구간내 위치한 동해남부선 철도의 횡단 방법을 철도청에서 회시한 공문 및 첨부물(포항시 2회, 철도청 2회)에 의하여 철도계획고 이상(19.8m)을 확보 요구함에 따라 도로계획고를 23.9m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본 도로 현장의 시점(동대병원 : 3.42m)과 종점(이동 : 58.08m)의 높이차이가 54.66m로 설계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교통부)상의 교량 종단구배를 최대치인 8% 및 6%를 계획하여 철도통과 높이가 결정되었으므로 당초 계획(2002년)된 철도횡단 교량 높이는 신문 보도와 같이 설계변경 등으로 교량 높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5월 23일자 1면에 “포항시가 남구 이동-동대 병원 앞 구처 4차선 도로 교량을 개설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설계(7.7m→16m)를 변경, 수백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기관의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포항시는 개설 중인 ‘동대병원-이동간 도로’의 교량높이는 철도청의 ‘동해선 철도 건설 기본계획’에 근거, 공사구간 내 위치한 동해남부선 철도의 횡단 방법에 관해 수차례에 걸쳐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당시 철도청이 철도 계획고 이상(19.8m)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도로계획고가 23.9m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시는 이 도로 현장의 시점(동대병원 : 3.42m)과 종점(이동 : 58.08m)의 높이차이가

54.66m이어서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교량중단구배를 최대치인 8% 및 6%를 적용, 철도통과 높이가 결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처럼 철도청과 협의하여 교량 높이를 결정한 이후, 설계를 변경한 바 없고, 당초 계획대로 시공에 들어갔으므로 뚜렷한 이유 없이 설계를 변경, 232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북문화신보 2면에 2단 상자기사로 2007년 6월 22일까지 게재하되 제목(동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 관련 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홍해 이인역, “단선으로 노선변경...교량 높이 필요 없어”)와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북문화신보 :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축사를 짓기 위해 농지전용을 요청한 민원을 담당공무원인 신청인이 훼방놓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전주MBC-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전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5월 24일 21:35)

내 용 : ▷앵 커 : 지난주에 저희 전주문화방

송은 왕궁축산단지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상급기관뿐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업무내용조차 제대로 모른 채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을 훼방놓고 있는 말단 행정기관을 고발합니다. 집중취재 정○○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해 12월 정읍시 ○○면에 김○○씨 가족은 축사를 짓기 위해 면사무소에 농지전용을 요청했습니다. 부지로 쓰일 산등성이 밭은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축사부지로의 전용은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신고필증이 교부 되었고 곧바로 공사가 시작 되었지만 며칠 뒤 면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공사를 중단하고 신고를 철회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김○○ : 허가 과정에 농지위원들 도장을 자기네들 사무실 있는 것으로 찍어서 허가 신청을 해줬네. 취하를 해 주고 바로 신청하면 허가는 나온다...

▷기자 : 면사무소 직원의 말을 들은 김 씨 가족은 곧바로 서류를 다시 꾸며 재신고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면사무소는 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화면 : 신고서류 처리일지)

이렇게 신고를 반려하기 세 차례 지난 4월에는 아예 신고 서류를 접수조차 해 주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5개월 동안 자재들은 이미 녹이 슬었고 현장사무실로 쓰일 컨테이너도 홍물로 변해갔습니다.

▷김○○ : 지금은 이것을 제작해 놓은 지가 5개월이상 되었습니다. 방치해 놓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농을 자리가 없어요.

▷기자 : 면사무소는 왜 김씨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첫신고 때 서류를 잘못 꾸렸던 당시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잘못은 숨긴 채 김 씨 등이 자진 철회 했으니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면사무소 공무원 :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취하해 갔으니까.

▷기자 : 저쪽 주장은 ?

▷면사무소 공무원 : 들을 것이 없다니깐요. 취하를 해 버렸으니까 들을 것이 없어요.

▷기자 : 이후에 들어온 신고는 왜 처리하지 않았냐고 묻자 면사무소 측은 농지 전용은 농지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고 위원회가 반대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면사무소 공무원 :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처리 하는 것이다.

▷기자 : “의결의 대상이 그것까지 입니까?”

▷면사무소 공무원 : “예 모든 것이 다 이 건에 대하여 신고 처리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결해 줍니다.”

▷기자 :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농지관리 위원회 확인서를 살펴 봤습니다.

농업경영 피해와 생활환경 피해 방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대체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략)

▷기자 : 자신의 업무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들 탓에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말단행정기관은 민원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자신들의 업무내용조차 제대로 모른 채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을 훼방놓고 있는 말단 행정기관 고발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4일자 9시 뉴스데스크 집중취재 뉴스에서 「자신들의 업무내용조차 제대로 모른 채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을 훼방 놓고 있는 말단행정기관을 고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주민들의 인터뷰와 ○○면사무소의 인터뷰내용은 생략된 채 편집되어 마치 민원을 훼방놓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처럼 보도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등을 볼 때 전체적인 기사 내용에 잘못이 없어 정정이나 반론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조각한 지리산 서암정사 불상을 다른 석공이 조각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과)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0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부처님오신날 특집 '○○스님의 화엄으로 가는 길」 프로그램 (2007년 5월 24일 17:30)

내 용 : >나레이터 : 그때 ○○은 하나의 바위 지대를 만났다. 바로 지금의 서암정사가 들어선 서암동이었다.

>○○ 스님 : 이 지리산에서 무수한 희생자가 여가서 많이 생겼는데, 그런 모든 무주고혼들이 얼마나 방향을 할까? 얼마나 여기서 많은 비탄에 빠져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가 부처님 서상을 조상하고, 부처님 도장을 만들어서 이 많은 무주고혼들이 이고등락하게 되도록 내가 발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레이터 : 그때부터 바위를 새겨 만든 서암정사의 불사가 시작됐다. ○○이 그러면 석공이 바위를 깎았다. 자연석 상태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부조로 조각하는 방식이었다. 터를 발견한 때부터 시작하면 총 공사 기간만 35년, 거쳐간 석공도 수십명이다. 이○○은 서암정사의 대표적인 불상을 조각한 석공장으로 공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긴 세월이었다.

>나레이터 : ○○은 새긴 조각들의 내용을 하나 하나 배치했고, 서암정사의 전체 구도를 잡았다. 자연석 위치를 그대로 놔둔 채 조각해야 했기 때문에 밑 부분을 조각할 때는 땅을 파고, 윗 부분을 조각할 때는 사다리를 세워야 했다. 사천왕을 파내는데 만도 꼬박 1년이 걸렸다. 전기드릴마저 배제한 채 수공으로 파내려간 조각들은 세월의 덮개가 입혀지면서 애초에 그것에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풍경의 일부가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처님오신날 ○○스님의 화엄으로 가는 길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 특집프로그램 “부처님오신날 ○○스님의 화엄으로 가는 길”에서 서암정사를 조각한 자가 이○○ 씨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서암 정사를 조각한 자는 홍○○ 씨 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 소속 담당 프로그램 책임프로듀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 내 용 :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고행을 하면서 마애불상 등을 제작하시는 홍○○님과 같은 불교조각가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홍○○님께 마음의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불교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홍○○님이 조각한 불상에 대한 내용이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PD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사과>

□

노숙형제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큰아버지인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입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긴급출동 SOS24」 프로그램 (2007년 6월 12일 23:00)

내 용 :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14살, 12살의 형제 이야기 방영. 혼이 나는 바람에 집을 나온 것 뿐이라는 형제들이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시커멓게 변한 옷을 입고 있는 장면들을 방송〉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은 이 방송에 보도된 노숙형제들의 큰 아버지로 언급된 사람으로서 신청인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아동방임과 학대의 문제를 취재·방송하는 과정에서 기획의도와 달리 신청인 및 그 가족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방송된 점에 대해서 유

감으로 생각하며, 신청인 및 그 가족이 조카 2인의 부적응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수년간 함께 노력해왔다는 점과 향후 가족이 단합하여 동생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모습을 약 1개월 후 예정된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한다.

위 방송을 위하여 신청인은 신청인 가족 중 1명과 인터뷰 및 촬영 방향을 협의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2007년 8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07년 9월 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긴급출동 SOS24」 프로그램 (2007년 7월 17일 23:00)

내 용 : 〈방송 후 형제가 쉼터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친척들도 형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보겠다는 약속내용 등을 방송〉 □

국제결혼대행업체인 신청인이 조건을 속이거나 외국신부들을 감금하라는 교육을 시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OO웨딩스쿨 (대표이사 나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3.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4월

16일 21:00)

내 용 : ▷앵커 : 요즘 농촌에서는 결혼하는 10쌍 가운데 4쌍이 국제결혼입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것은 농촌총각들이 절실히 원해서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동남아 신부를 데려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선후가 바뀐 결혼. 그러다 보니 결혼파탄도 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임OO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 전라남도 해남, 작년 7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조모 씨 집입니다. 부인은 결혼한 지 한

달여 만에 베트남으로 돌아가 조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A모씨 : 태워 버리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여자분 옷이군요?) 예

▷기자 :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A모씨 : 돈이라도 생기면 효도라도 하려고 몇 만 원이라도 드리려고 하죠. 그럴 겨를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가 공공요금도 쓰지도 않은 전화요금도 어떻게 5만 원 넘게 떨어지나고요.

▷기자 : 알고 보니 조 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기에 구타까지 당하자 도망치듯 베트남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우진민 : 정신이 조금 부족해 많이는 안 부족한데 조금 부족해. 날이 곱으려면 조금...(그래서 결혼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결혼했지

▷기자 : 이 필리핀 여성은 임신한 채 도망 나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지 이틀 만에 결혼했지만 차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필리핀 여성 : 남편이 정신이 이상했고, 화를 자주 내고 약을 많이 먹었다.

▷기자 :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정신지체를 겪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우진민 : (필리핀 여성은) 어치피 집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사는거지, 한국여자 같으면 올바른 정신 가지면 생활이 힘들다 봐야죠.

▷기자 : 정상이 아닌 아들을 잘 보살펴주기를 바랐던 부모는 실망과 미안함이 겹쳐 암담한 심정입니다.

▷어머니 :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안 들어오면 그냥 살아야지 뭐, 성한 사람들도 각시 나가는데... (또 결혼 시키실 생각은?) 아휴 뭘 또...

▷기자 : 이런 총각들의 결혼을 주선한 곳은 다름 아닌 시청과 군청입니다. (후략)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4월 17일 21:00)

내 용 : ▷앵커 : 지방자치단체가 중개업소를 끼고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

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 동남아 여성들, 우리 사회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개업소를 끼고 결혼을 주선하는 것 자체가 일부 동남아 국가에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 이 집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두 아들을 군청 지원으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시켰습니다. 임신한 큰 며느리는 한국에 온 지 8개월, 작은 며느리는 석 달 됐습니다.

▷베트남 여성 : (언제 왔어요?) 세 개월...하하...삼 개월

▷기자 : 말은 아직 어눌하지만, 고향얘기엔 또렷하게 심정을 표현합니다.

▷베트남 여성 : 언니 오빠 동생 보고 싶어요.

▷기자 : 그러나 두 며느리는 앞으로 3년 동안은 베트남 집에 가지 못합니다.

▷시어머니 : (아이 낳고 그러면 한번 베트남 가야겠네요?) 3년 안에는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처음에...누구나 다 3년 안에는 안 간다고 하대요.

▷기자 : 일주일에 한 번 한국어 공부할 때 말고는 외출도 못하게 하고, 여권도 숨겨 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도망간다고 중개업소가 시킨 겁니다.

▷베트남 여성 : (중개업소)사장이란 양반이 데리고 오면서 여권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맡기지 말라고...여권을 주지 말라고, (여권은 어떻게?) 여권을 아버지가 간수하시죠.

▷기자 : 이처럼 일부 중개업소는 신부들을 일정 기간 사실상 가둬 둘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비용을 지원한 지자체는 이런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족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고만 설명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필리핀신부 인터뷰내용과 두 며느리 어머니 인터뷰내용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16일 필리핀 신부가 속아서 결혼을 하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 중인

인터뷰와 함께 보도되었고, 지난 4월 17일 ‘중개업소는 신부들을 일정기간 사실상 가둬 둘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화면은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신부들에게 한국문화, 언어, 예절 등을 수업받는 보도함으로써 사실과는 전혀 다른 화면을 내보내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멘트상의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유도하여 신청인의 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상대를 속이고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내용과 업체 측의 추가비용요구와 이를 응하지 않았을 시 신부입국이 지연된다는 보도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 지난 4월 16일에 보도되었던 조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조건을 일부터 속여서 결혼을 성사시켜 왔고 신부는 이를 알고 도망치듯 베트남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도되었고, 같은 날짜에 군청보조금 이외도 업체에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였고, 요구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았을시 신부입국을 지연시키는 악덕업체로 보도케 하여 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MBC는 지난 4월 16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집중취재-국제결혼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중개업체 측의 추가비용요구 때문에 신부입국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결혼중개업체는 처음 약정한 비용 외의 추가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인터뷰에 응했던 신랑의 신부는 추가비용과 무관하게 작년 4월 베트남 동태성 현지 사정으로 입국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 현재는 입국한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7월 7일 12:00에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TV <TV속의TV> 프로그램(스텝스크롤 자막 전)에 위 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가 위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TV속의 TV」 프로그램 (2007년 7월 7일 12: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에서 만든 의료기기가 온도 등이 부정확하여 위험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OO의료기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일부 전기매트형 의료기 ‘온도 부정

확’ 위험』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부모용 선물로 많이 찾게 되는 일부 전기매트형 개인용 의료기기가 온도 부정확 등의 위험요소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16개 전기매트형 개인용 의료기기 제품을 수거해 품질검사 및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한 결과,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8개 제품과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해당 제품을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아울러,

전기, 기계적 안전성 시험에 부적합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품질검사는 전기매트형 개인용 의료기기 중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매트형 온열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13), 개인용온열기(2) 및 의료용자기발생기(1) 제품 등이 대상이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들에 대해 허가사항의 시험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8개 제품 중 온도분포 등 일부 시험규격에 부적합된 6개 제품은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만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2개 제품은 내전압시험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처분은 물론 당해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의료기의 의료용조합자극기 ‘HM-206D’는 성능시험 중 전위출력 및 온도시험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일부 전기매트형 의료기 ‘온도 부정확’ 위험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30일자 의료 뉴스 정책, 행정면에 『일부 전기매트형 의료기기 온도

부정확 등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료기의 의료용조합자극기 HM-206D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주)○○의료기의 의료용조합자극기 HM-206D는 위험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4월 30일자 『일부 전기매트형 의료기 ‘온도 부정확’ 위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료기는 의료용조합자극기 HM-260D 제품은 위험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초기화면에 제목(반론보도문)을 6월 21일(24시간 동안)에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의 내용을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메디컬투데이 : 『일부 전기매트형 의료기 ‘온도 부정확’ 위험』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1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정홍보처장이 “내가 부르면 장관들도 뛰어온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김창호 처장 “내가 부르니...”』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7일자 A3면)
내 용 : “내가 부르면 장관들도 즉각 뛰어온다. 어느 부처 장관은 식사 자리에 간부들까지 대거 대동하고 나왔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사석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홍보처의 ‘2006년 정책홍보관리 평가를 위한 평가원칙 및 분류기준’을 보면 이 간부가 이렇게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7일자 A3면에 『김창호 처장 “내가 부르니 장관도 뛰어 오더라”』라는 제목으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사석에서 “내가 부르면 장관들도 즉각 뛰어온다. 어느 부처 장관은 식사 자리에 간부들까지 대거 대동하고 나왔더라”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어떤 자리에서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국제결혼대행업체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업체 직원인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피신청인은 이 사건 관련 결혼정보업체를 취재하면서 부장으로 근무 중인 신청인을 인터뷰를 하였으나, 인터뷰 내용을 기자의 의도대로 각색하여 방송함으로써 신청인은 회사에 출근은 고사하고 맡은 업무도 향후 진행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도로 인해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음은 물론 사회복귀가 어렵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4월 16일 21:00)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4월 17일 21:00)
내 용 : <2007서울조정211의 보도내용 (1), (2) 각 참조>

피신청인 주장

사전동의를 받고 취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무릎 및 발목 부상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전신모습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8.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한해 무릎·발목 부상 97만 명』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3일자 D1면)
내 용 : <기사와 함께 달리는 모습의 신청인 전신사진 게재>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피신청인은 마라톤·조깅 등 무리한 운동으로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나 부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마치 신청인이 기사내용과 연관된 것처럼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명백히 초상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주)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임 ○ ○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0원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피신청인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신청인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이 유 :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조정결정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지급〉

□

신경섬유종이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 이기는 사람들 (회장 김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미스 아메리카에 속아 검거된 성범죄자 무죄 주장』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5일)

내 용 : 미스 아메리카가 10대 소녀로 위장한 '함정수사'에 걸려 체포된 성범죄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스 아메리카 로런 넬슨(20)은 뉴욕 주(州)서픽 카운티 컴퓨터범죄 수사부서와 협력, 자신의 14살 때 사진으로 온라인 프로필을 제작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성범죄자들을 유인했다.

넬슨은 이들을 경찰과 폭스TV의 공개수배 프로그램 제작진이 기다리고 있던 롱아일랜드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모두 11명의 성범죄자들을 체포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달 28일 방영됐다.

11명의 피의자 가운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로버트 애코맨더(20)는 이전에도 군소 웹사이트에 음란물을 보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다.

애코맨더의 변호인인 존 파워스는 애코맨더가 정신질환의 일종인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연령이 10세 이하라고 항변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미스 아메리카에 속아 검거된 성범죄자 무죄 주장

• 내 용 : 연합뉴스로 지난 2007년 5월 15일 보도된 미스 아메리카에 속아, 검거된 성범죄자 무죄 주장의 기사에서, 애코맨더의 변호인인 존 파워스

는 애코맨더가 정신질환의 일종인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연령이 10세 이하라고 항변했다는 기사는, 번역상의 오류로서,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애코맨더의 변호인인 존 파워스는, 애코맨더가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합병증으로 정신지체가 있으며, 정신연령이 10~12세 이하라고 항변했다고 수정바라며, 아울러, 기사원문 번역 과정에서, 실수로 인하여 신경섬유종 환우들이 이 기사로 인하여 받았을 상처를 생각할 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경섬유종은 정신병의 일종이 아니며 신경계질환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신경섬유종은 정신질환 아닌 신경계질환

• 내 용 : 지난 5월 15일 ‘미스 아메리카에 속아 검거된 성범죄자 무죄 주장’ 제목의 기사 중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도된 ‘신경섬유종증’은 정신병과는 무관한 ‘신경계통의 질환’임을 알려 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연합뉴스 홈페이지(www.yonhapnews.co.kr)의 조정대상 기사를 클릭할 경우 위 보도문이 함께 나타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기사 계약관계에 있는 언론사에 위 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하는 업무협조전을 2007년 6월 30일 24:00까지 발송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고침』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0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소방서장인 신청인이 관내 유흥주점에서 성적 비하발언을 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8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언을 하고 “내가 누군줄 아느냐. 소방서장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

또 P 서장과 일행은 술값 120여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며칠후 값은 것으로 소문이 퍼져 비난 정도가 커져.

한 주민은 “소방서 민원업소에서 행패성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은 공직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격노. (후략)

보도내용

중부일보 : 『○○소방서장 유흥주점서 추태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1일자 5면)

내 용 : ○○소방서 P모 서장이 일행과 지역 모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추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반추.

P 서장은 지난 5일 오후 일행 3명과 함께 수정구 관내 K주점에서 양주를 마시며 업소 여사장을 불러 “가슴은 만지라고 있는거다”등 성적 비하 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명예훼손의 글 게재에 따른 사과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9일자 사회면에 『○○소방서장 유흥주점서 추태 구설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 인해 널리 사회 일반에 거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인지, 왜곡되게 하였으며, 또한 당

사자를 익명 처리함에 있어 직위를 밝히는 등 신분을 알 수 있게끔 작성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의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매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보도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반론과 사건 종결내용 등은 보도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

울산 남구청이 불법으로 채석허가를 내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울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김 두 겐)

피신청인 : 울산e-조은뉴스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울산e-조은뉴스 : 『울산 남구청 채석허가 ‘의혹 투성 이’』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4 일자)

내 용 : 한때 ‘공무원 철밥통 깨기’로 울산 발 공무원 인사실험의 진앙지로 불렸던 울산광역시 남구청 일부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공직기강 해이가 이만저만 아니다.

시민들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가 하면, 법마저 자의로 해석해 불법행위를 합법화해주고 상급자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남구청장의 인사혁신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울산 남구청 ○○과 ‘ㄱ’ 주사는 남구 황성동 ○○번지 ‘ㄷ’ 정밀화학이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절개작업이 한창인 야산에 산지관리법 조항을 근거로 공사장 암석을 골재로 채취할 수 있도록 ‘ㄷ’ 정밀

화학에 특별히 허가해 주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재 울산시 5개 구·군을 통틀어 십여 개의 공장 부지조성 공사현장이 있지만 이러한 특혜에 가까운 허가가 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ㄷ’ 정밀화학의 공장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나온 암석을 항만공사용으로 채취허가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남구청장 명의의 안내 간판이 공사현장에 버젓이 걸려 있어 남구청이 항만공사용 사석채취를 특별히 허가해 준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울산남구청 채석허가 의혹투성이’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뉴스는 지난 2007년 6월 14일자 사회면 『울산남구청 채석허가 의혹투성이』이라는 제목으로 채석허가에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해 주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동 지역은 공장부지 조성 허가지 내 부산물 반출허가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구청과 관련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울산 남구청 소속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불법으로 채석허가를 내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1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성 ○ ○ 외 3인
피신청인 : 울산e-조은뉴스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8.
처리결과 : 취 하

이'』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4
일자)

내 용 : <2007부산조정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울산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황성동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부수적 채석허가를 하는 과
정에 불법을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는 보도를 하였
는 바, 신청인들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명예
훼손을 당해, 신청인 각 250만 원씩 합계 1천만 원
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보도내용

울산e-조은뉴스 : 『울산 남구청 채석허가 '의혹 투성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행적으로 출입기자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브리핑이 거짓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정 성 진)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일보 : 『청렴위 '거짓 브리핑'』 제하의 기사 (2007
년 6월 5일자 6면)

내 용 : 국가청렴위는 4일 경기도교육청 등 수도
권 3개 교육청에 대한 관행적 예산사용 실태를 고발
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경기도교육청 관
내 교육장과 국장 등이 언론사 기자에게 17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 발
표 이후 청와대 등이 현행 기자실 제도의 대표적
인 문제점으로 지적하던 '구태적 관행'이 드러난

셈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관행적으로
출입 기자들에게 격려금을 쥐었던 것을 일부 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일부 기자가 관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기자단 차원으로
건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취재결과 청렴위의 브리핑은 거짓말
로 드러났다. 교육장과 국장 등은 출입 기자단에게
관행상 격려금을 준 게 아니라, 특정 지방언론사
기자 4, 5명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40만~50만 원씩 격려
금을 주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청렴위 조사에
서 이미 밝혀졌다. 청렴위 관계자는 “기자실 문제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행상 준 것'이라고 대
답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실토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7년 6월 5일자 A6면 『청렴위 '거짓 브
리핑'』 제하의 기사 중 “기자단 차원으로 건넌 것
같다”와 청렴위 관계자는 “기자실 문제로 민감한 상

황이기 때문에 ‘관행상 준 것’이라고 대답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실토했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청렴위 거짓 브리핑’ 관련 정정
- 내 용 : 본지의 지난 6월 5일자 A6면 『청렴위 ‘거짓 브리핑’』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는 수도권 3개 교육청의 관행적 예산사용 실태를 고발하는 브리핑에서 청렴위 관계자가 ‘교육청에서 기자 개인에게 격려금을 준’ 것을 ‘관행상 기자단에게 격려금을 줬다’고 왜곡한 일이 없고, 또한 ‘거짓 브리핑’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2007년 7월 2일자 A6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교육청이 기사…)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내용은 조정대상 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news.hankooki.com〉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위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청렴위 거짓 브리핑’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현대차 노조’라고 잘못 보도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지부장 이 상 욱)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9.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동아일보 : 『“찬반투표 없는 반FTA파업 반대”』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2일자 2면)

내 용 :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부터 5일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를 위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을 놓고 이 노조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반대 여론에 거세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10일과 11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정치파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40여 건 올랐다. 파업을 찬성하는 의견은 드물었다.

금속노조는 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초 19~21일 실시기로 했던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한 채 파업을 강행기로 결정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찬반투표 없는 반FTA파업반대’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2일자 A2면에서 ‘현대차 노조’라는 표현을 총 5번 사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산별전환 투표를 거쳐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전환하고, 2007년 4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므로, ‘현대차 노조’는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아일보> 2007년 6월 12일자 A2면 “찬반투표 없는 반FTA파업 반대”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현대차 노조’라고 잘못 표기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의하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4항 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는 정정보도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이란 피해자가 원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로 대응할 만한 실질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정청구내용이 원 보도내용 중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신청인은 ‘현대차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였으므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라고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를 ‘현대차 노조’라고 보도되었다고 하여 일반 독자들이 신청인을 다른 조합으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의 오보라고 보기 어렵고,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만한 중대한 침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원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로 대응할 만한 실질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 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현대차 노조’라고 잘못 보도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지부장 이 상 옥)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9.

처리결과 : 기 각

업’』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2일자 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1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결 정 문

<2007서울조정218의 결정문 참조>



보도내용

조선일보 : 『현대·기아차 노조 ‘이상한 반FTA 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현대차 노조’라고 잘못 보도했다 I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지부장 이 상 옥)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9.
처리결과 : 기 각

하의 기사 (2007년 6월 12일자 1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1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보도내용

결 정 문

중앙일보 : 『현대차 노조 ‘불법 정치파업’ 논란』 제

<2007서울조정218의 결정문 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현대차 노조’라고 잘못 보도했다 IV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지부장 이 상 옥)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9.
처리결과 : 기 각

의 기사 (2007년 6월 13일자 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1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보도내용

결 정 문

한국경제 : 『“FTA 파업은 현실 외면한 결정”』 제하

<2007서울조정218의 결정문 참조>

□

단속공무원인 신청인이 노래방협회 지회장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연 ○ ○
피신청인 : 충청리뷰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9.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충청리뷰 : 『노래방 지회장 ‘정보비’ 상납고리...』 제
하의 기사 (2007년 6월 15일자 26, 27면)

내 용 : 경찰이 협회원들의 동의없이 단속 공무원
원에게 정기적인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
이는 청주 노래방업협회 한 지회장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회장은 지난해 6월부터 임기 2
년의 청주 노래문화업협회 한 지역 지회장을 맡아
오면서 회원들의 동의없이 명절날 50만 원 상품권
과 16만 5000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청주시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회원들로부터 연간 3차례 특별회비를 받아 마
련한 정보비(돈)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인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 노
래방업 협회원은 63명. 매월 3만 원의 회비와 15만
원 상당의 신규회원 가입비,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
는 특별회비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립된 회비만
612만 원이다. 그런데 연말 결산에서 95만 5000원
상당의 잔고만이 남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주장이
다.

실제 회원들이 경찰에 제공한 장부를 확인한 결
과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된 200여만 원의 돈
을 제한다 하더라도 300여만 원의 회비가 비어 있
다. 특히 ‘정보비’ 명목의 지출이 적게는 3만 5000
원에서 90만 원까지 책정돼 있어 그 출처가 의심
이 갔다.

협회원들은 “바로 이 ‘정보비’가 회원들의 동의 없
이 시 공무원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거나 향응
을 제공할 때 사용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해 기록된 장부에는 해당 공무원의 실명으로 영수
증 처리를 했지만 최근 문제의 지회장과 감사가 장
부를 가져갔다는 것이 회원들의 설명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노래연습장지회장이 담당공무원에게 정

기적인 향응제공 및 금품상납 사실무근

• 내 용 : 본 신문에서 2007년 06월 13일 기고된
노래연습장 지회장이 담당공무원에게 정보비용 사용
하여 정기적인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였고, 지회장은
담당공무원과 호형호제하며 단속정보를 얻고 있어
회원들을 조롱하며 편파단속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상가번영회의 일을 본다는 이유로 협회장의 비호하
래 편파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에 대하여

지회장과 담당공무원 사이에서 호형호제는 물론
단속정보를 받아 회원들을 우롱한 바가 없으며 상
가번영회의 일을 보고 있는 회원의 집만을 편파적
으로 단속하였다는 이야기 역시 사실과 다르고 회
원들의 정보비를 상용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정기적
인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 또한 실제사실
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정정 기사를
내는 바이며 아울러 ○○동 상가번영회를 결성하
여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1종업소들과 사전
조율을 하여 노래연습장에서는 양주를 제외한 맥
주와 도우미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지
회장의 눈 밖에 났다는 주장의 기사에 대하여 정
정하며,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보관 및 제공하
여서는 안됨은 물론 도우미 알선·제공하는 것 역
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및 경
찰기관의 당연한 단속대상임을 알려드리며 기사를
정정합니다.

끝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담당공무원, 행정기
관 및 시민 여러분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노래방 지회장 ‘정보비’ 상납 고리” 관
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6월 15일자 26~27면 『노래방
지회장 ‘정보비’ 상납 고리?』 제하의 기사 중 청
주 노래방협회 지회장에 대한 경찰의 내사보도와
관련, 위 지회장이 청주시 단속공무원에게 명절날

상품권과 갈비세트를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고, 정기적인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담당공무원과 호형호제하며 담당공무원이 제공하는 단속정보를 빌미로 회원들을 조롱하고 편파 단속을 부채질하였다고 한 협회회원의 말을 인용보도하고, 또 다른 회원의 말을 인용하여 상가번영회의 일을 본다는 이유로 단속공무원을 자극해 편파적으로 단속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내사결과, 위 지회장에게 명절날 또는 정기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위 지회장과 호형호제하며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지회장에 동조하여 편파적인 단속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위 보도내용에 대

해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리뷰 2007년 6월 28일자 26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면(26면) 하단(소방본부위치정보...)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면(26면)리뷰토론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리뷰 : 『‘노래방 지회장 상납고리’ 기사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9일자 2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폐차장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각종 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1인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9.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함안군 도로 없는 폐차장 허가 ‘물의’』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8일자 7면)

내 용 : 함안군이 개인 사유지를 승낙도 없이 현황도로(자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 폐차장으로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219번지 일대 약 1000여 평의 부지에 폐차장 허가가 나자, 개인 사유지에 대한 지주 동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말썽이

일었다.

이에 땅주인은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 진입로 사유지 일부를 절토한 상태여서, 허가받은 폐차장 사업자가 군을 상대로 도로도 없는 부지에 허가를 내줬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공방이 벌어진 상태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폐차장으로 허가된 지역은 칠원천과 인접한 마을 뒷산으로, 야산 정상부에 폐차장이 들어설 경우 차량해체 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폐유 등으로 각종 오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허가부지 인근은 마을공동묘지가 있어 대형 차량의 통행은 불편을 겪게 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보 2007년 5월 18일자 『함안군 도로 없는 폐차장 허가 물의』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보도중 폐차장 허가에 따른 물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 각종 오염이 우려된다는 점, 허가 남발 및 사유 토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협의절차

없이 허가를 한 점이 잘못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적법·타당한 폐차장 허가였음으로 정정보도하고, 이는 50년 이상의 그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었고 197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확장 포장된 사실상 도로를 함안군에서 수십 차에 걸쳐 본 폐차장 및 인접 소규모 공장과 대중 음식점을 허가하고서도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또 지적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지적관리청으로서 현실과 공부가 일치되도록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이 지역주민이 불편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반론으로 보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18일자 『함안군 도로 없는 폐차장 허가 물의』라는 제하에 함안군으로부터 허가받은 폐차장 사업자가 군을 상대로 도로도 없는 부지에 허가를 내줬다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폐차장 사업자는 함안군이 지적과 공부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도로도 없는 부지에 허가

를 내줬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분쟁이 되고 있는 도로는 50년 이상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었고 197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확장 포장된 사실상 도로를 함안군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소규모 공장과 대중음식점 등을 허가하고서도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또 지적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지적관리청으로서 현실과 공부가 일치되도록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폐차장 사업자는 주장했습니다.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의 조정결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게재하는 것임을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7년 7월 2일자 7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칠원 용산리...)의 중간활자크기로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도민일보 :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재도장공사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사전결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21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 ○ ○)

피신청인 : 경남매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9.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남매일신문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2일자 15면)

내 용 : 김해시 외동 ○○아파트 재도장공사 담합의혹 사건이 관리 감독기관인 경남도전문건설협회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기관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장공사사업 운영분과위원회(이하 도장분과위)에 따르면 ○○아파트 재도장공사와 관련 주민들로부터 10여 차례의 민원을 접수받고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2차례나 발송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말께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도장분과위는 지난달 31일 창원지검에 대표회장 이모 씨를 입찰 방해죄로 고발했다는 것.

고발장에는 '사전 접촉한 특정 업체와 상의, 입찰 방법을 의논하고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 관리규약과 공고내용을 어기고 부적격업체를 낙찰케 했다고 지적했다.

도장분과위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사전에 공고문 및 시방내용에 관해 상의하는 등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구현키 위해 검찰에 이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김해○○아파트 도장공사 담합 의혹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2일자 사회면에 『김해○○아파트 도장공사 담합의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검찰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비양심적인 입주자대표들과 일부 업체와의 결탁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새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아파트 재도장공사 등에 주민찬반결과 95세대 찬성, 26세대 반대하여 참가세대수 동의결과는 97%, 전체세대수 결과는 55%의 찬성결과를 얻어 재도장공사 등을 시행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입찰공고문이 확정되었고 2007년 4월 9일 우리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 아파트홈페이지, 입찰신문 등을 통해 입찰공고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4일 14:00 현장설명회 결과 14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4월 20일 서류마감 결과 12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4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참가업체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서류를 장시간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주)○○산업건설과 (주)○○ 2군데

업체가 해당되어 관리규약 제68조 4항 및 입찰유 의서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할 것인가 유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찰을 하자는 결론에 이르러 투표결과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득한 (주)○○산업건설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일이며, 부정이나 담합은 일체 없었음을 알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2일자 사회면에 『김해○○아파트 도장공사 담합의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검찰 고발』이라는 제목하에 "비양심적인 입주자대표들과 일부업체와의 결탁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새고 있는 실정"이라는 도장분과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해○○아파트 대표 측은 아파트 도장공사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모든 절차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정이나 담합은 일체 없었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2007년 4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참가업체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서류를 장시간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주)○○산업건설과 (주)○○ 2군데 업체가 해당되어 관리규약 제68조 4항 및 입찰유 의서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할 것인가 유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입찰을 하자는 결론에 이르러 투표결과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득한 (주)○○산업건설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반론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의 조정결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게재하는 것임을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매일신문 2007년 7월 2일자 1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검찰고발)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경남매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일자 15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김모 화백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작품판매를 막고, 작품도 강탈해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O미술 (대표이사 전 OO) 외 1인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19.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KBS-2TV : 「추적 60분」 프로그램 (2007년 6월 13일
자 24:00)

내 용 : ▷진행자 : (진략) 그런데 미술시장 한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역망 있는 한 유명 작가가 궁핍한 삶을 건디다
못해 세상과 연을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보자 : 선생님 작품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한번 만나 보고 싶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자기네들은 이미 이 세상 안 살기로 마음을 접
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더 답답하고 그래서
급해 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자꾸 여쭙 봤더니, 지
금 우리 집은 가스도 끊어지고 냉골이고 사람 살
곳이 아니니까 오지 마라

▷진행자 : (김O 작품을 보여주며) 그 원로 화
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을 개척
해온 김O 화백, 박수근 화백은 그를 형이라고 불
렀습니다.

▷성우 : (박수근 선생이 보낸 편지를 성우가 읽
음) 김O 형 내외 분께... 박수근

보내 주신 편지는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 편지
를 읽으면서 형이 고국을 그리워하시는 마음 안타

까웠습니다.

형의 개인전을 축하하며 특히 호평을 받으셔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우리 미술계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크게 성공하
시기를 축원합니다

▷진행자 : 김O 화백이 고통에 빠진 것은 이상
한 계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화랑 대표 : 작품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굶
어 죽냐. 저렇게 작품이 많은데, 갖고 나가면 화랑
에서 살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어디랑 계
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작품을 못 판다는 거예요.

▷진행자 : 그림 한점에 45억 2천만 원, 서민들
에겐 판세상 애기겠지만 타워팰리스 100평짜리 한
채 값과 맞먹는 이 그림을 누군가가 사 갔습니다.
가히 열풍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요즘 미술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미술시장 한쪽에선 화가들을 울리는 불평
등 계약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평
생을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 온 원로화가들이
표적이 되고 있고 그 상대가 미술계의 큰 손이란
것입니다.

이OO PD가 취재했습니다. 자 이 PD 그림 한 점
에 억억이란 소리가 나는데 이 서민들에겐 판 세
상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즘 그 시장에 중산층
까지 끼들고 있다면서요?

▷PD :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시들해지
면서 시중에 떠돌고 있는 유동자금이 새로운 투자
처를 찾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미술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진행자 : 자 앞서 박수근 화백이 형이라고 부
르며 편지를 보냈던 원로화가 있잖습니까?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즘 같은 호황에 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분입니까?

▷PD : 올해 84세의 원로화가 김○ 화백은 해외에서 줄곧 활동을 해 온 덕분에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분입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협박을 받아왔으며 외부의 접촉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PD : 수소문 끝에 원로 화가를 찾아가는 길. 그러나 김○ 화백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하세요

▷김○ 부인 : 우리가 많이 협박도 당했고,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람 보는데 공포증이 생겼어요

▷PD : 한참을 설득한 끝에야 원로화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실 곳곳에 대형 작품들이 즐비했습니다. 멋진 추상화들입니다.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작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방 2개를 채우고도 모자라 화장실까지 작품으로 빼곡합니다.

인기척에도 불구하고 김○ 화백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 화백의 나이 올해 여든네 살

▷김○ 부인 : 주무시는 건 아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누구오는 것도 원치도 않고 화랑가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경계하고

▷PD : 화랑

▷김○ 부인 : 네, 화랑가의 그림 계통 사람이라면 더 경계하시고, 다 나쁜놈이고 도둑놈이라고

▷PD : 한참만에 거실로 나온 노 화백 석달전 허리수술을 받은 그는 거동이 많이 불편합니다.

선생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그런데 취재진과 첫인사를 나누는 원로화가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김○ 부인 : 아빠는 병 이야기 하는거 켈 싫어하시는데 알츠하이머예요. 몇 년됐어요. (중략)

▷미술 평론가 : 한국의 현대미술이라는 모더니즘 미술운동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날 때 중심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추상미술을 이끌어 왔던 1세대 작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우 : 이후 프랑스로 활동무대를 옮긴 그는 6년전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귀국당시 콘테이너 한 박스에 미술품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팔 수도 없고 전

시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작품을 쌓아 놓고도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것일까?

김 씨 부부가 귀국직후 작업실을 겸해 살던 셋집입니다. 김 화백 부부는 이 집에서 악몽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2003년 8월 17일 밤 추상화를 사겠다는 한 남자가 아들을 포함한 일행들과 집으로 옵니다.

김 화백 부인은 방 하나를 지정해주고 그 방에서 작품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청년들은 작품을 꺼내고 포장지를 거칠게 뜯었습니다.

김 화백이 이를 꾸짖자 침대에 눕혀놓고 이불까지 씌웠습니다.

▷성우 : 부인은 당시의 공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김○ 부인 : 오 하나님 저사람이 강도가 안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침대에 옆에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성우 : 청년들에 의해 많은 작품들이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화백 부인은 가져가는 작품의 상세 내역을 적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날밤 그들은 그냥 그렇게 떠났습니다.

▷김○ 부인 : 그걸 적어서 주는줄 알고 멍하니나도 그때 난닝구바람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봉 떠난거예요. 내일 일찍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성우 : 그들은 약속대로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김○ 부인 : 난 여기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찍어달라 저기 찍어달라해서

▷성우 : 그러나 무엇을 얼마나 가져갔는지에 대한 작품 목록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이 두 장짜리 계약서가 전부였습니다. 계약자는 미술계의 유명인물. 그의 아들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입니다.

1항 작품 98점에 대한 대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8항 개인전이나 회고전을 하지 않는다.

9항 절대 작품을 판매할 수 없다.

10항 월 500만 원씩 판화 싸인 비용을 지불한다.

매달 일정액 지급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 부인 : 지금도 내가 분한거는 그 돈이 뭐

길래 굶으면 되는거를 그때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우리 아빠 그리고 집이 그게 막 세고 지령이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길가 집이라 그래가지고 월세를 우리가 내야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를 탈출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하에서 그 인간이 전화 왔을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인게 잘못된 거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속였죠

▷성우 : 그런데 계약서 눈길을 끄는 점이 있습니다. 가져간 작품은 모두 4860호 총판매 가격으로 나눠보면 호당가격이 채 5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화랑계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했습니다. (중략)

▷MC : 자 도대체 그림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니까

▷PD : 예 미술계에서도 잘 알려진 저명인사입니다. 그 역시 판화작가 출신으로 고급인쇄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견업체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4일 취재진은 김 화백과 계약을 맺은 A 업체 대표에게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했습니다. 인터뷰내용은 김 화백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쟁점에 대한 사실확인이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경기도 외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A사말고도 미술관과 디자인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 대표는 손해를 본 것은 오히려 자신이라며 취재진과의 만남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A업체 대표 : 저희가 가져온 숫자가 저희가 덜 가져왔습니다.

▷취재진 : 덜 가져왔다고요

▷A업체 대표 : 네 더 가져온 게 아니고 덜 가져왔고, 그 서류는 다 있구요. 촬영은 불허합니다.

▷성우 : 이 업체를 소개하는 홍보 동영상입니다. 회사의 주력분야는 그림화집과 고급 캘린더 제작입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되던 판화기법을 세계 최초로 자동화시키는데 성공 인쇄기를 이용해 선명도 뛰어난 판화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김○ 화백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입니다. 김 화백 집으로 작품사진을 보내지 않은 시점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업계에선 단가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은 화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작품 인도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 내 용 : KBS는 본 프로그램에서 지난 2007년 6월 13일 “어느 노화백의 눈물 - 내 그림을 돌려달라”라는 제목으로 ○○이 김○ 화백의 허락 없이 작품을 강제로 강탈해 가고 불공정한 노예계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김○ 화백이 작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 화백의 그림을 무단으로 ○○은행 캘린더로 사용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 오○○ 화백의 그림 33점을 돌려주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은 김○ 화백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화백 본인의 확인을 거친 후 작품을 인도받았고, 작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은 김○ 화백의 작품을 ○○은행 캘린더로 사용하게 하면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였으며, 현재 김○ 화백은 ○○과 체결한 계약의 기간 만료되어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팔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아가, 오○○ 화백의 경우에도 1심 법원이 1점 작품에 대해서만 ○○의 횡령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제보에 근거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하였는바, 보도내용을 이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전 ○○

2. 전 ○○

신청인 1, 2의 조정대리인

변호사 박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2TV)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조정대리인 구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2007년 7월 25일까지 피신청인의 「추적60분」 프로그램 중 방송하되,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에는 반론 보도(글자의 크기는 통상의 보도시 사용되는 오른

쪽 상단 자막과 같은 크기)라고 표시하고, 화면하단에는 아래 제목을 계속 표시(글자의 크기는 통상의 보도시 사용되는 자막과 같은 크기)하면서 위 방송의 진행자로 하여금 다른 보도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PD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9.

〈별 지〉

• 제 목 : ‘노 화백의 눈물’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프로그램에서 지난 6월 13일 “어느 노화백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부분에 대해 미술회사 측의 반론을 알려 드립니다.

회사 측은 방송된 2003년 계약에 앞서 김○ 화백과 2002년에도 작품을 구입하여 알고 있는 사이였으며, 2003년 98점을 구입하는 계약은 당시 사정이 어려웠던 김 화백을 도와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체는 당시 포장된 작품들을 일일이 개봉하여 화백과 부인의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하였으며, 회사는 판화 작품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 ○ 화백은 이미 2006년부터 작품 판매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알려왔습니다. 끝으로 오○○ 화백의 경우에도 1심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33점이 아니라 1점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KBS-2TV : 「추적60분」 프로그램 (2007년 7월 25일 24:00)

내 용 : 〈결정문의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이 목재 방부약제인 CCA의 KS등록과정에 개입하고, CCA가 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4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목재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목재신문 : (1) 『이○○ 박사의 악행 너무 깊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6일자 1면)

내 용 : 목재 방부약제와 관련 국립산림과학원 이○○ 박사의 지난날 악행의 흔적이 너무 깊어 후

임자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임청은 청장 상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박사의 악행은 CCA 무리한 수문장 역할, CCA 품질인증, KS등록 전문성 결여, KS등록 편파적 등록, 영터리 품질인증 규정안, 이로 인한 민원 무시 등 지금의 방부약제와 관련 혼선의 핵심역할로 귀결된다.

산림과학원은 품질인증까지 내준 CCA가 문제가 되자 서둘러 규정안을 개정(지난해 7월 고시) 제외시켰다. 이 박사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CCA약제가 사용금지 될 예정이나 그동안의 환경오염과 인체피해는 심각하다.

더구나 방부폐목제의 사후관리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서 안전하게 수거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특히 KS등록 약제와 환경부 사용금지 약제가 전문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로는 유독성 함유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어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KS 등록 약제를 기준으로 만든 산림과학원의 개정 규정안도 성의가 없고 악의적인 곳이 발견됐다고 업계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AAC, ACQ1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특정 기업에 독점권한을 주기위한 추잡한 행동' 등 무수한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7월 고시 목표로 재개정 규정안을 마련하는데도 편파성과 불합리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것은 품질인증대상으로 특정 약제를 명시하고 과거 규정을 답습하는 것이다. 특정약제를 명시하면 그 약제를 독점 유통하는 기업에게 독점특권을 주게 되어 다른 약제가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장기적으로 약제발전을 저해 한다. 이와 관련 벌써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서에 특정약제를 명시하고 있고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공개입찰을 거부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의계약 제도가 비리의 온실인 것은 증명됐다.

그래서 지금의 산림과학원의 행위는 방부약제와 관련 국산화 등 발전을 저해하고 비리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신 규정안 마련에도 대부분 회의적이다. 이유는 기존인 KS등록 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KS 등록 약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거기에 맞춰 새로운 규정안도 마련해야 한다. (후략)

(2) 『방부목재, 사후관리 대책 마련해야』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6일자 10면)

내 용 : (전략)

◆CCA방부목제의 위해성

그동안 정부는 CCA방부목제의 사후관리는 전혀 무관심이었다. 방부목재가 수명을 다한 후에도 반드시 수거해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법규가 없다. 그래서 땅에서 썩거나 쓰레기로 분리돼 소각되고 있다. 땅에서 썩으면 독극물이 땅속에 남고 소각하면 증발된 다음 빗물에 섞여 역시 토양과 만나게 된다.

그 후 식물-사람, 식물-동물-사람 순으로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 비소는 인체에 들어오면 배출이

안 되고 체내에 남아 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는 지난 1980년부터 2006년까지 26년 동안 5천여 톤의 목재방부용 CCA약제를 수입 유통했다. 그 약제를 사용한 방부목제가 우리의 주변에서 수명을 다해 현재 부패하고 있거나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방부목재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사후관리 대책 마련해야

환경부는 최근 CCA방부목제의 사용과 유통 등을 중단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사후관리와 관련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사후관리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폐목재는 재활용과정을 거치는 작업이 미숙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반 가구 등 폐목재와 방부목재가 함께 쓰레기로 분류돼 소각되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스웨덴에서는 사후관리로 도크(저장시설물)를 만들어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중략)

1990년과 1995년 기간으로 방부목재 생산회사인 H사가 산림과학원 이○○ 박사에게 CCA 위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이 박사는 'CCA는 목재와 만나면 응고력이 뛰어나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정부에도 보고되고 정부는 전문가인 이 박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CCA방부목재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가 이 박사의 활약으로 인해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이때 CCA약제가 사라졌어야 되는데 이 박사가 부활시켜 놓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환경오염은 물론 CCA방부목제의 사후관리에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당시 CCA와 ZKF 사용과 관련 관계자들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 여의도 공원 공사를 한 H사가 CCA와 ZKF를 사용한 결과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비소는 연구용으로 실험실에서만 사용된 무서운 독극물인지라 CCA를 사용한 업자 등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때 이○○ 박사가 역시 응고력을 빙자한 무 용탈과 안전 이유를 들어 CCA는 오히려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회상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 박사 관련 음해성 기사에 대한 사죄 및 정정보도

• 내 용 : 본보는 3월 26일자 1면에 『목재방부약재 관련 이○○ 박사의 악행 너무 깊다』 제하의 기사에서 “KS등록 전문성 결여, 재검토 해야, 신 규정안 이 박사 흔적에 ‘허위적’”이라는 내용 및 10면에 “CCA수문장 이○○ 박사에 책임 물어야, 산과원 목재보존과 관련 악행 중단하라”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이○○ 박사는 품질인증업무 담당자가 아니며, 산업표준(KS) 관련규격의 제·개정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고유업무로서 실제로 참가하지 않았고 특정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무근의 허위보도로 이○○ 박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였으며, 합법적인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국립 산림과학원의 품질인증업무 및 산업자원부의 산업표준(KS) 제·개정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보도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공신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개인회사로부터 CCA의 위해성과 관련 일체의 연구용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사실무근의 내용을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하여 이○○ 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리며, 추후 이와 같은 물의를 다시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농협 양곡창고 진출입로를 토지 소유주인 신청인이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광주매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광주매일 : 『장성 삼서농협 양곡창고 훼손』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1일자 10면)

내 용 : 20여 년 넘게 사용돼 오던 양곡 수매장소를 최근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임의대로 파헤쳐 농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장성군 삼서면 주민들에 따르면 삼서농협 양곡창고의 수매장소이자 진출입로로 사용돼 오던 창고 앞 부지를 토지 소유자 이모(40) 씨가 훼손시켰다는 것.

삼서농협은 지난 1983년 당시 소유주에게서 현 양곡창고 부지를 매입, 이듬해인 1984년 양곡창고(100평)를 준공해 현재까지 이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 씨가 창고 앞 부지를 사들인 후 토지개발 행위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임의대로 땅을 파헤쳤다.

주민들은 “이 부지가 파손돼 농협이 입을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새로 사들인 자신의 땅이라지만 20년 넘게 삼서면 주민들과 농민들이 사용해 왔던 땅을 임의대로 파헤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장성 삼서농협 양곡창고 입구훼손 사실

과 달라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1일자 10면에 장성 삼서농협 양곡창고를 훼손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농협 수매곡은 다른 이면 도로가 있어 피해가 없고 그리고 농협 직원들에게 수 차례 도로를 조금만 위로 이설하고자 이야기 하였으나 농협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토지소유자 본인이 도로를 위로 이설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1일자 10면 『장성 삼서농협 양곡창고 훼손』 제하의 기사에서 창고 앞 부지 소유자가 삼서농협 양곡창고를 훼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토지 소유주가 양곡창고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기존 진출입로를 훼손한 바 있으나 이는 본인 소유의 땅이었으며, 직후 위치를 바꾸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광주매일 10면에 2007년 7월 6일까지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토지소유자...)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한다.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광주매일을 장성군 지사에 100부를 추가로 배포해 이를 신청인이 수령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주매일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8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농협 양곡창고 진출입로를 토지 소유주인 신청인이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전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0.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전남도민일보 : 『농협 양곡창고 차량출입로 훼손』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2일자 10면)

내 용 : 〈2007광주조정2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광주조정2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2일자 1면 『농협 양곡창고 차량출입로 훼손』 제하의 기사에서 장성 삼서농협의 대도리 양곡창고 진·출입로를 토지소유주가 파손해 양곡창고에 저장된 벼가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는 사유지 개발을 위하여 기존 진출입로를 훼손한 바는 있으나 직후

위치를 바꾸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였고, 이를 통하여 실제로 버 1천여 가마가 반출되었기에 저장된 버가 변질될 우려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남도민일보 지역1면에 2007년 7월 6일까지 상가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장성 삼서농협...)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전남도민일보를 장성군 지사에 100부를 추가로 배포해 이를 신청인이 수령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남도민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5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금속노조의 한미 FTA 무효화 총파업 결의가 중앙집행위원 구성에 강경파가 다수이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경제 : 『정치투쟁 안 하겠다던 민주노총... FTA저지' 나선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6일자 5면)

내 용 : 정치투쟁은 하지 않겠다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를 내세우며 정치투쟁을 선언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미FTA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노동자를 재앙에서 구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민주노총의 이러한 명분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략)

그렇다면 민주노총 내 최대 권력자는 이 위원장

이 아니라 금속노조를 이끄는 인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금속노조 내 실세는 누구일까.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으로 보기는 힘들다. 금속노조핵심간부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 28명의 성향을 파악해 보면 어디로 권력이 쏠려 있는지 알 수 있다.

중집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7명, 사무처장 1명, 전국 19개 지부장 등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온건파인 국민파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이고, 강경파 16명(중앙파 10명, 현장파 6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강경파가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 결국 조직 내 세력이 약한 국민파 계열의 정 위원장은 강경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중략)

민주노총은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현장 분위기로 볼 때 파업결의를 이끌어 내기는 만만치 않다.

한·미 FTA 문제가 현장 노조원의 실익과는 무관한 사안인 만큼 참여 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또 매년 정치파업으로 큰 손실을 봐 온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투표결과는 찬성쪽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합원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투표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재계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금속노조 FTA투쟁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6일자 5면 우측상단에 『정치투쟁 안 하겠다던 민노총... ‘FTA저지’ 나선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속노조 중집위의 계파구도를 도표로 설명하고 금속노조의 파업결정이 중집위 내 계파 간의 입장차이에 따라 결정된 것처럼 보도했으며 금속노조가 파업찬반투표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속노조의 파업결정은 중집위가 아니라 대의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중집위의 계파구도는 사실과 다르며 금속노조가 찬반투표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금속노조 정정 및 반론
- 내 용 : 지난 6월 6일자 5면 민노총 FTA저지

파업 시사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찬반투표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은 기자의 주관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금속노조에서는 중앙집행위의 자세한 계파구도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7월 3일까지 한국경제신문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도표제목(“금속노조 중집위 계파구도”)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금속노조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9일자 A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재하도급 업체에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불하고 공사대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건설(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보령시민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0.

처리결과 : 각 취하

복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4일자 1면)

내 용 : 지난 11일 보령화력 7, 8호기 현장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 권○○ 씨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 본 기자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전하며 압력(?)을 가해왔다.

대기업인 ○○발전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건설이 하도급 받았고 ○○건설은 □□건설 대리인 박○○ 씨에게 재 하도급 했다. 그런데 ○○건설이 공사를 한 박○○씨에게 공사대금을 지불치 않고 착복하고 있

보도내용

보령시민신문 : 『○○발전 발주공사에서 공사대금 착

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중략)

박씨는 “현재 공사 작업량은 2~3일 정도만 작업하면 끝날 수 있는 양”이라며 “공사가 거의 완료됐는데 아직 인건비 외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재하도급업체에게는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뻔하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 씨에 의하면 ○○산업이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시행중인 ‘보령화력 7, 8호기 공업용수 공급 설비 공사 중에 가시설 및 가물막이 공사’를 박 씨가 최초 2007년 2월 5일 일억오천이백육십만원의 공사 약정서를 ○○건설에 제출하고 장비, 자재, 인력을 투입해 공사를 시작했다.

이어 2007년 3월 15일 ○○건설 조○○ 씨로부터 추가 공사(설계 변경)분도 시공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해 왔다고 한다. 이에 투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2007년 5월 14일자로 ○○건설에 공사대금 지불을 요청했다.

○○건설은 인건비 일부만 박 씨에게 수령했을 뿐 대금 지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는 ○○산업 중재 하에 긴급자금조로 지난 5월 7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박 씨는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여금 이억육천칠백만 원을 8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각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요구했으나 ○○건설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박 씨는 “시행사 ○○산업 문○○ 씨에게 지불각서에 서명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발전 발주공사에서 공사대금 착복의혹 제기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3일자 1면 『○○발전 발주공사에서 공사대금 착복 의혹제기』제하의 기사에서 ○○건설(주)인 □□건설 대리인 박○○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비 347,248,490원을 착복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건설 대표 이○○는 2007. 04. 20에 사망하여 박○○에게 □□건설 대리인 자격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건설(주)도 □□건설 대표 박○○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공사비 347,248,490원을 착복한 의혹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50,000,000원

□

신청인 병원 병원장 공모에서 특정 교수의 지원서가 공모 마감시한이 지난 뒤에 접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병원 (원장 성 ○ ○)

피신청인 : 메디게이트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메디게이트뉴스 : 『○○대병원장 공모, 교수 추가 의

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6일자)

내 용 : 마감된 ○○대병원 원장직 공모에 추가된 1명의 교수에 대해 제출시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감된 원장 공모 접수자인 김○○ 교수와 성○○ 교수 외에 임○○ 교수가 뒤늦게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모마감시점인 20일 오후 6시까지 김○○·성○○ 교수 2명만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인준시 임OO 교수가 포함된 3명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는 것.

이를 두고 임OO 교수의 제출서류가 마감시한을 넘는 주말이나 23일 긴급히 삼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원내 행정직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중략)

이와 관련 모 행정간부는 “임OO 부원장의 이번 임의 진위여부는 청와대 재가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OO대병원장의 위상에 비취 볼 때 청와대와 검찰에서 내사를 벌여 판가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만약, 사실로 드러났다면 부원장뿐 아니라 공모에 임한 성OO 원장까지 불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장 인사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OO대병원장 공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6일자 『OO대병원장 공모, 교수 추가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에서 “임모 교수의 제출서류가 OO대병원장 공모마감

시한(4월 20일 오후 6시)이 지난 뒤에 접수되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와대나 검찰에서 내사를 벌여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임모 교수는 OO대병원장 공모마감시한 내인 4월 20일 오후 4시경에 병원장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메디게이트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9일자)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6일자 『OO대병원장 공모, 교수 추가 의혹 제기』 기사에서 임OO 교수가 공모 마감시한(20일 오후 6시)을 지난 주말이나 23일 응모서류를 긴급히 삼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임OO 교수는 공모 마감시한 내인 20일 오후 4시에 응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의 논문 중복게재가 표절 및 조작 등과 같은 수준의 연구부정행위인 것처럼 과장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7년 6월 12일 07:00)

내 용 : ▷앵커 :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교육 부총리가 중도 사퇴하고 유명 사립대 총장이 물러난 일.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남극과 북극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OO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자신들이 예전에 썼던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OO 기자입니다.

▷기자 : 남극과 북극의 기후와 환경을 연구하고 있는 해양연구원 부설 OO연구소.

이 연구소의 연구원 4명이 지난 2004년 국내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과, 2년 뒤 인 2006년, 미국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모두 남극의 기후와 빙하를 연구한 내용입니다.

논문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개요 부분을 보면, 두 논문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두 논문에 인용된 데이터를 비교해도, 대부분 똑 같습니다.

한번 실었던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다시 기고한 사실상 '중복 논문'입니다.

▷이모 박사 : 사기다...영터리다... 양심이 없다. 같은 과학자로서 창피하다...

▷기자 : 논문이 실린 미국 학술지도 '중복된 논문'이라고 밝히고 문제의 논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출판사 측에선 논문 저자 4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 : 앞으로 이들이 논문을 제출할 때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기자 : 논문을 쓴 저자들도 중복게재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윤모 박사 : 실수였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자 : 하지만 학계에선 이런 일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내려다가, 과학자의 양심을 저버린 거라고 비판합니다.

▷김모 박사 : 업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업적을 흠치는 거잖아요. 과장하고 포장하고...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기자 : ○○연구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논문 저자로 참여한 유○○, 윤○○, 박○○, 김○○ 박사를 상대로 중복 논문을 게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6월 12일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연구소 연구원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썼던 논문을 중복게재하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하고 이들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르면 논문 중복게재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논문 중복게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연구자들의 실명을 공개, 명예를 훼손했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

서울시 의원인 신청인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를 선언한 74명의 서울시 의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서울시 의원 74명 “이 지지”』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1일자 A8면)

내 용 : 〈사진설명〉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20일 ‘이명박 온라인 국민캠프(www.mbcamp.net)’ 발족식에서 포즈를 취했다. 서울시 의회 의원 74명이 이날 이 전 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울시 의원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 선언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1일 A8면 『서울시의원 74명 “이(李) 지지”』 제하의 사진설명에서 서울시의원 74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를 선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날 지지를 선언한 서울시의원의 숫자는 74명에 달하지 않고, 지지를 선언한 의원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

서울시 의원인 신청인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를 선언한 74명의 서울시 의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데일리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데일리안 : 『서울시 의원 74명, 이명박 지지 공개
선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1일

자)
내 용 : (전략)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
특별시의회 의원 명단>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2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신청인 방송사가 제작한 고발프로그램으로 인해 한 화장품 업체가 부당한 비판을 받고 한국을 떠나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최 문 순)
피신청인 :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월간조선 : 『[확인취재] 방송 횡포에 한국 떠난 화
장품 업체 ○○○』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호 232~241면)

내 용 : (전략) 지난 3월 중앙 언론사의 한 기자
로부터 『방송보도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사
회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하는 업
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2006년 8월 재미교
포가 운영하는 한 화장품 업체가 모 방송사에 의

해 「사기 화장품」으로 몰려 100억 원대의 재산피
해와 4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
다. (중략)

<미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화장품이 국내에
서는 명품 화장품으로 둔갑해 고가에 팔리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유명백화점에 입점하지 않았으면
서 입점한 것으로 국내 고객을 속였고, 제품에도
하자가 많다. 이 회사의 주인은 재미교포로 드러났
다>

50분짜리 프로그램은 업체의 불법 혐의에 초점
을 맞췄다.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회사는 당
연히 없어져야 할 업체였다. 방송에 등장하는 익명
의 제보자 세 명은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얼
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한 제보자 A·B·C씨
가 동일한 복장을 하고, 같은 배경에 등장한 것이
다. (중략)

지난해 8월 방송된 ○○○ 관련 고발 프로그램의
한 장면. (중략)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속이지 않았어요. 속였다면 법적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방송을 앞두고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나와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어요. 방송사가 식약청에 단속을 의뢰해 특별조사를 나온 겁니다. (중략)

-방송이 잘못됐다면 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사가 너무 무서워요. 방송이 행정기관까지 동원하는데 어떻게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화장품업계에서 과대광고는 흔한 일」이라는 ○○○코리아 관계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에 문의했다. 2006년 식약청 행정처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유명 화장품 업체를 비롯한 251개사가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화장품 업체의 대부분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중략)

방송사는 ○○○이 뉴욕과 런던의 백화점에 입점한 사실이 없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프로그램 제목도 업체의 광고문구에 빗대 「세계 상위 1%에게만 드리는 특권」으로 정했다. (중략)

『문제의 광고를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잡지에 게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본사가 니먼마커스와 헤르즈백화점의 심사를 거쳐 입점이 거의 결정된 상태였어요. (중략)

그런데 세부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입점이 연기되면서 작년 4월부터 문제의 광고를 보류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작년 8월에는 그 광고문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방송사는 마치 그 광고를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보도했어요. (중략)

-방송사는 ○○○이 수입원가에 비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판매가에는 수입원가 외에 통관비용(관세), 백화점 판매수수료, 홍보비용 등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수입원가와 판매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중략)

공공재 성격이 강한 「방송」과 「보도의 상당성 원칙」에서 볼 때, 모 방송사가 이 회사를 한 시간 동안 다뤄야 할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중략)

방송사는 언론사의 기본윤리를 어기면서 취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제작진은 ○○○코리아 책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공한 40대 기업가라

는 주제로 CEO 3~4명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출연해 줄 수 있느냐』, 『섹션TV인데 성공한 스타마케팅케이스로 ○○○이 선정되었는데 회사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한 것이다.

조 사장의 휴대폰에는 「섹션TV」, 「성공한 기업가」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저장돼 있었다.

방송사 관계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며칠 후(2006년 8월 23일) 제작진들은 미국 본사에 나타났다. 그들은 본사 관계자에게 『우리가 제보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사와 공장 존재 유무이다』며 『공장 존재 여부만 확인되면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 본사 측은 회사 내부를 완전히 공개했다. 그러나 보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왔다고 한다. (중략)

기자는 화장품 업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식약청의 한 공무원에게서 중요한 증언을 들었다. 식약청은 ○○○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중략)

-「명품이 아니면서 명품이라고 속여 팔았다」는 사기성이 발견됐습니까.

『그런 점은 없었어요. 사기성이 있었다면 사법기관이 나섰겠지요. ○○○은 국내 화장품법을 잘 몰라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중략)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방송사가 문제의 프로그램을 보도할 당시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방송사 관계자의 말이다.

『제작진들 사이에 「취재윤리에 문제가 있으니 방송 앞부분에 사과를 먼저 하고 내보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에 「명품지상주의를 지적한다면서 거대 다국적 기업도 아닌 신생 업체를 그렇게 다룰 필요가 있었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확인취재] 방송 횡포에 한국 떠난 화장품 업체 ○○○』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지는 지난 6월호 232~241면 『[확인취재] 방송 횡포에 한국 떠난 화장품 업체 ○○○』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MBC-TV <PD수첩>에

서 방송한 바 있는 화장품 업체 ○○○ 관련 내용으로 동 회사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방송에 등장하는 익명의 제보자 세 명은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제작진은 ○○○코리아 책임자에게 프로그램과 취재 목적을 속이고 취재를 요청했다’, ‘방영 전 취재 윤리와 관련하여 내부논란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코리아는 <PD수첩> 방송 당시까지 미국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사실이나 관련 수상실적이 없었으며 위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미국 내 각 백화점에 입점하였습니다. 아울러 <PD수첩> 제작진이 관계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을 단속하게 하였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달라, 위 <PD수첩>방송과 방송 이후 ○○○ 주장에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당초 <월간조선>이 보도한 것과 달리, <PD수첩> 방송의 취지는 특정 업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소위 ‘명품’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와 허위의 사실을 홍보하면서까지 이를 조장하는 그릇된 상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었음에도, <월간조선>은 방송의 일부 내용을 확대하는 한편, 방송 제작진이 밝혀 낸 ○○○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는 사실을 은폐하여 독자들이 방송의 목적을 특정 회사에 대한 의도적 고발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왜곡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월간조선>은 위 기사를 취재함에 있어 사건 당사자 모두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에 이른 바, 보도와 관련하여 MBC 및 <PD수첩>제작진에 제기된 불필요한 의혹에 대해 위와 같이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는 정확한 취재에 따라 기사를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 관련 MBC <PD수첩> 반론보도문
- 내 용 : <월간조선>은 지난 6월호에서 『[확인취재] 방송 황포에 한국 떠난 화장품 업체 3LAB』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월간조선>은 해당 기사 중에서, ‘방송에 등장하는 익명의 제보자 세 명은 동일인인 것으로 드

러났다’, ‘방송사가 식약청에 단속을 의뢰해 특별 조사를 나왔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MBC <PD수첩>제작진은 제보자 수를 조작한 일이 없고, ○○○을 단속하도록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월간조선> 측도 이를 사실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쟁업체의 주장을 <PD수첩>이 그대로 보도하였다’는 취지의 <월간조선>의 보도와 달리 <PD수첩>은 취재과정에서 ○○○의 경쟁업체의 사람은 취재한 사실이 없으며 제보자들 역시 이들 업체와는 무관한 인물이며 ‘방영 전 취재윤리와 관련하여 내부 논란이 있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작진들 사이에서 취재윤리가 문제된 사실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 ‘해의 코스메틱 어워드 수상, 해외 유명 인사 사용, 해외 유명 백화점 입점’ 등의 명품 마케팅으로 성장한 업체였지만 <PD수첩>의 취재 결과 이러한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는 과장 및 과대 광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PD수첩>은 이를 고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소위 명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맹목적인 선호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기사내용 중 ○○○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PD수첩>이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 기능성 제품은 반드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 기능성 제품 중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것은 한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방송이 나간 8월에는 <PD수첩>이 지적한 허위 광고 문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코리아 사장의 주장과는 달리, <PD수첩>이 방송을 위해 취재하였던 시점에도 허위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홍보물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고 <PD수첩>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방송된 것입니다.

<월간조선>의 기사는, ○○○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퇴출된 근본 원인이 그릇된 상술에서 기인하였다기보다는 <PD수첩>의 부당한 취재로 인한 것인 양, ○○○ 측의 <PD수첩>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과 원망을 여과 없이 기사에 반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PD수첩>에 대한 취재는 없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및 취재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 입장에 서서 <PD수첩> 프로그램 및 제작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

였으므로 <PD수첩>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07년 8월호 200면 이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크기 (“가짜 명품 화장품”이라고 보도”)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목차에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2007년 8월 1일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행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청인이

운영하는 www.imbc.com 사이트 중 <PD수첩>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과 관련된 공지사항 게시물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 관련 MBC 「PD수첩」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호 18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같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6.

처리결과 : 기 각

본지는 지난 6월 25일자 사회면에 『병원 홈페이지 무단사용, 위자료 줘야』 제하의 기사에서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가 다른 성형외과 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최모 씨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산부인과 의사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 『“병원 홈페이지 무단사용, 위자료 줘야”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5일자 사회면)

내 용 : (전략)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이○○)는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환자의 모발 이식수술 전·후 사진을 가지고 TV에 출연하고, 상담 글을 도용한 또 다른 성형외과 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주 문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13면에 하단 상자기사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년 6월 25일자 13면 『병원 홈페이지

사진 무단사용, 위자료 줘야』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 둔 환자의 사진과 상담 글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모 씨를 성형외과 의사라고 적시해 자신이 같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모 씨를 ‘성형외과 의사’라고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최모 씨가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최모 씨를 ‘성형외과 의사’라고 지칭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에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7.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취재원을 공갈·협박하고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엄 ○ ○

피신청인 : 목포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6.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목포일보 : 『취재 중 공갈 협박·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2일자 1면)

내 용 : 지방 한 일간지 ○○주재 A 기자가 ○○군청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B 씨를 상대로 취재 중 항응접대까지 받으면서 기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갈·협박과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

을 주고 있다.

A 기자는 최근 ○○군청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B 씨가 ○○군수에게 2천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 협박과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등을 행사했다는 것. (중략)

S소주방 방안에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취재하던 A 기자는 갑자기 다짜고짜 “○○군수에게 2,000만 원 주었지?” “사실대로 말하라”며 동행한 기자들과 부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B 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기자는 또 B 씨의 먹살을 잡고 끌고나와 맥주가 들어있는 병을 깨고 목에 대면서 “불어, 너 군수에게 2천만 원 주었지? 사실대로 불어”하면서 신체상의 위협을 가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22일자 1면 『취재 중 공갈 협박·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지방 모 일간지 주재기자가 취재원에게 향응접대를 받고 공갈·협박을 했으며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주재기자가 향응접대를 받거나 폭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

수사결과와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하되,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목포일보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며, 제목(정정보도문)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너물지급 사실...)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한다.

- 정정보도문 내용은 피신청인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중재부가 조정·결정하기로 한다.

- 정정보도문은 중재부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게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한다.

- 경찰 수사결과 신청인이 보도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엉터리 방부목재를 생산·유통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4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중○ (대표이사 차 ○ ○)

피신청인 : 목재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목재신문 : (1) 『방부목재의 어제와 오늘』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6일자 10면)

내 용 : (전략) 이러한 약제가 국내에서 목재방부와 관련 수십년 동안 법의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사용된 것이다. (중략)

생산의 경우 국내 방부목재 생산 기업은 시설이 열악하고 규모가 협소해 안전시설을 갖춘 기업은 거의 없다. 그래서 약제가 함부로 다루어지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중략)

“1970년대 ○○사와 ○○등 2개 기업에서 CCA를 수입 유통했는데 CCA에 대한 위해성 여부가 끊임

없이 논란이 된 가운데 양 회사가 수입을 중단했다”며 “그 후 CCA약제의 수입이 한동안 중단되다가 1980년대 들어 (주)○○이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략)

방부목재 시장을 놓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봉이였다. 생산과 유통 시공 등에서 정부나 시민단체의 간섭 없이 마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제는 물론 방부목재가 아무 통제 없이 생산되고 수입 유통됐다. CCA 약제는 동남아시아에서 (주)○○이 거의 수입독점을 했다. (후략)

(2) 『엉터리 방부목재, 목재산업 이미지 먹칠』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7일자 1면)

내 용 : 엉터리 방부목재가 생산 유통되고 있어 목재산업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대체약제 도입시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인천의 J사에서 생산한 방부목재가 국립산림과학원의 임업시험결과 기준 약제혼합비율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고 침윤도도 10분의 2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J사는 국내 대표적인 방부목재 생산 및 약제수입, 조정

시설 사업자로 알려져 더욱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중략)

이 같은 엉터리 방부목재 생산 배경은 동종업체간 치열한 가격경쟁과 임가공 형식의 방부, 약제로 인한 부당이득을 노리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26일자 10면 『방부목재의 어제와 오늘』 제하의 기사에서 “CCA 방부제가 국내에서 목재방부와 관련 수십 년 동안 법의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사용”되었고 생산의 경우 국내 방부목재 생산 기업은 시설이 열악하고 규모가 협소해 안전시설을 갖춘 기업은 거의 없다. 그래서 약제가 함부로 다루어지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1980년대 들어 (주)○○이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생산과 유통, 시공 등에서 정부나 시민단체의 간섭 없이 마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제는 물론 방부목재가 아무 통제 없이 생산되고 수입, 유통됐다. CCA 약제는 동남아시아에서 (주)○○이 거의 독점수입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7일자 1면 『엉터리 방부목재, 목재산업 이미지 먹칠』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 J사에서 불량방부목재를 생산, 유통했고 약제로 인한 부당이득을 노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주)○○에서는 환경처장관, 인천광역시서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수입, 사용, 판매를 하였으며 생산시설 또한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장등록허가를 얻었고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체제인증(KS A9001: 2001/ISO9001: 2000)에 의하여 방부처리 목재를 생산하였으며, 방부처리목제품질인증기관인 산림청 방부처리목제품질인증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방부처리목제품질인증업체로 승인받아서 방부처리목재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에서 방부제를 수입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 이후이며, 독점수입한 것이 아니라 3개 회사에서 적법하게 수입, 판매하였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

이 불량방부목재를 생산, 유통했다며 제시된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시험성적서는 ○○에서 생산, 유통한 방부목재에 대한 성적서가 아니며 ○○은 불량방부목재를 생산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없고 약제로 인한 부당이득을 노린 적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6일자 및 4월 27일자 (주)○○ 기사와 관련, 사실확인결과 (주)○○에서는 환경처장관, 인천광역시서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수입·사용·판매를 하였으며, 생산시설 또한 관련법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장등록허가와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체제인증(KS A9001: 2001/ISO9001:2000)에 의하여 방부처리목재를 생산하였으며, 방부처리목제품질인증기관인 산림청 방부처리목제품질인증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업체로 승인받아서 방부처리목재를 생산하였습니다. (주)○○에서 방부제를 수입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 이후이며, 독점 수입한 것이 아니라 3개 회사에서 적법하게 수입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주)○○에서는 산림청고시 방부방충처리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CUAZ-2 약제를 이용 방부처리해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목재신문 2007년 7월 25일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CCA약제 4천여톤 유출 국토오염 안전수거 위해 사후관리 대책 마련해야)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목재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7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건설한 아파트 단지와 관련해 여러 잡음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43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건설 (대표이사 류 ○ ○)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7.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인천일보 : (1) 『용인 ○○지구 불법 판처』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7일자 1면)

내 용 :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인 용인 ○○도시개발사업지구 건설시행사들이 토지사용 동의나 협의매수 절차를 무시한 채 다른 건설사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 도로·상수도·가스 등의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강행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그러나 ○○건설이 2단계 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면서 개발위와 관계없는 □□건설 소유의 ○○동 267의 1, 2, 3 농지 70여 평을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통신·지역난방시설을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은 또 □□건설 소유의 ○○동 461 일대 농지 1천 100여 평은 공원 등 완충녹지 조성공사를 위해 대규모 성토작업을 벌였다가 □□건설이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로부터 지난달 원상복구 명령을 받기도 했다.

□□건설 관계자는 “○○개발위가 자체 규정인 기반시설협약과 달리 사전 동의도 없이 남의 땅을 도로나 공원부지로 편입시킨 것도 모자라 각종 기반시설 공사까지 벌이는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올해초 사업토지 측량과정에서 확인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개발위 측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략)

(2) 『원상복구 명령 3개월째 무시』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9일자 1면)

내 용 : 용인 ○○도시개발사업지구 건설시행사가 도로와 공원부지 조성과정에서 농지 1천여 평을 무단으로 성토해 토지 소유주의 반발을 사는 가운데 수십 차례에 걸친 시의 원상복구 명령까지 3개월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는 배짱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주인 (주)□□건설은 ○○건설이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작업을 벌였다며 지난 2월 초 용인시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용인시는 성토된 토지 가운데 ○○번지와 ○○번지 일부가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계획도로 부지임을 확인하고 ○○건설과 시공사인 △△기업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건설 측이 지난 3월 자신들이 시행하는 공원부지 600여 평은 남겨둔 채 도로 부지 500여 평만 원상복구하면서 해당 부지는 흙몰스런 큰 웅덩이 형상으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후략)

(3) 『아파트 시행사 초법 형태』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4일자 19면)

내 용 : (전략) 입주예정자 A 씨는 “○○건설이 입주예정일인 전달인 지난달 30일 입주민 대표들에게 ‘입주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예정대로 입주할 것을 누차 설득했다”며 “당장 거처가 마땅치 않거나 해당 건설사 직원들이 분양받은 일부 가구가 입주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후략)

(4) 『용인시 두 얼굴의 행정』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5일자 19면)

내 용 : (전략) ○○지구 ○○○○○○ 시행사인 ○○건설은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개설된 기부채납 예정인 중1-28호선(왕복4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정에서(후략)

(5) 『공사금지 가처분 토지 대규모 무단 성토작업』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2일자 19면)

내 용 : 용인 ○○지구 ○○○○○○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일체의 공사행위가 금지된 건설사 토지를 중장비를 동원해 기습적인 성토작업을 벌이는 심각한 공권력 무시풍조를 드러내고 있다. (중략)

□□건설은 자사 소유의 토지를 인근 ○○○○○○ 건설사가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고 벌인 대규모 성토행위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용인시와 해당 건설사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해당 토지에서 절·성토공사를 비롯한 각종 형질변경행위를 금지하고 지난 1일 토지 경계에 이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시 팻말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토지에 포크레인 3대와 15톤 덤프트럭 4대가 투입돼 성토작업을 벌인 데 이어 다음날인 10일에도 계속되 오다 토지소유자인 건설사 관계자들의 저지로 전체 1천 100여 평 가운데 절반 정도가 4~5m 높이로 성토된 채 중단됐다. (후략)

(6) 『○○ ○○○○○○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8일자 1면)

내 용 : (전략) ○○○○○○은 당초 지난달 31일 입주예정일이었으나 입주자들이 지난 4월 아파트 사전검사 당시 건설사 간 토지분쟁으로 생긴 아파트 앞 웅덩이와 통화로 안전대책 등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입주를 거부해 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4일자 19면 『아파트 시행사 초범행태』, 6월 5일자 19면 『용인시 두 얼굴의 행정』 및 6월 18일자 1면 『○○ ○○○○○○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건설사 직원들이 분양받은 일부 가구가 입주에 들어갔으며 “○○지구 ○○○○○○ 시행사인 ○○건설은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개설 뒤 기부채납 예정인 중1-28호선(왕복4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정에서...”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 입주 예정자들이 최근까지 입주를

거부해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건설사 직원의 경우 준공 일인 지난 6월 14일 이후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고 ‘개설 뒤 기부채납 예정인 중1-28호선(왕복4차로) 도시계획도로’는 ○○건설의 사업 승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일부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단지 앞 웅덩이의 위험성을 들어 웅덩이의 위험성이 제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입주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입주예정자 대부분은 입주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7일자 1면 『용인 ○○지구 불법판재』, 5월 9일자 1면 『원상복구 명령 3개월째 무시』 및 6월 12일자 19면 『공사금지 가처분 토지 대규모 무단 성토작업』 제하의 기사에서 ○○지구 ○○○○○○ 단지 앞 웅덩이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해당 토지가 사유지임을 들어 ○○건설이 악의적인 의도로 (주)□□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불법공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 측은 해당 웅덩이 토지의 경우 (주)□□이 2002년 10월에 매수한 것으로 이때에는 (주)□□은 이미 해당 토지가 2002년 3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해 도시계획도로 및 근린공원으로 예정되어 수용이 예상되고 인접한 ○○○○○○ 사업승인이 신청단계에 있어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와 관련된 부지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웅덩이 토지의 도로는 용인시가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웅덩이는 도로개설을 위한 정지작업을 해놓은 땅을 (주)□□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원상복구를 주장, 웅덩이 상태로 원상복구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인천일보 지난 6월 18일자 『○○ ○○○○○○ 특혜 의혹』 및 6월 4일자 『아파트 시행사 초범행태』 각각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 ○ 시행사인 ○○건설 측은 일부 입주자들이 한시적으로 단지 앞 웅덩이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입주

를 거부했으나, 전체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를 희망,
(주)□□건설 측에서는 용인시에 지속적으로 민원
을 제기했으며, 또한 건설사 직원들이 준공일 이전
에 입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7년 7월 17일 2면에 상자기사로 게
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2007년 6월 18일자 1면에 보도된 “용인시, 사용

잠정 불허 10여일 만에 돌연 허가)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천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부당하게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경매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7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자동차공업(주)

(대표이사 박 ○ ○) 외 1인

피신청인 : 전광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8.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전광일보 : 『여수 B자동차공업사, 부정경매 · 공금횡
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3
일자 6면)

내 용 : 여수시 한 자동차공업사 대표와 전대표가
공모해 부정경매를 진행하고 직원들의 퇴직금 등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여수시 국동 B자동차공업사 K모 대표와 K모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자신들이 경영하던 S자동차공
업사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당시 회사를 운영하던
이들이 공모해 고의 부도를 내서 부동산경매가 진
행될 때 타인의 명의로 낙찰받는 방법을 택해 그
동안 누적된 부채를 탕감하고, 상호를 바꿔 바지사
장을 대표이사로 영입해 실질적인 회사 운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에 옮겼다고 K
모 대표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경매가 진행될 당시 본인들 소유
자동차공업사가 경매일보에 게재되게 되면 이를

탐내고 경매참가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해 질 것
을 염려해 이들은 법원직원을 매수, 단독으로 낙찰
받는 방법을 모색하다 K모 씨(건설팅직원)를 통해
자신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를 관철시켜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사실도 밝혔다.

또한 K모 대표와 K모 전 대표는 당시 종업원들
의 급여 및 퇴직금을 부풀려 법원에 신청해 이를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도 K모 대표가 밝혔다.

당시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및 퇴직금
은 1억 800만 원 정도였으나, 약 4천 200만 원을
허위로 부풀려 1억 5천만 원을 청구해 법원에서
이를 지급받아 K모 대표가 종업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K모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K모 전 대표가 남은
금액을 보관하는 방법은 자신들이 고용한 J 상무
의 자제 이름으로 비밀계좌를 개설,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중략)

현재 K모 전 대표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
는 보증인(K모 대표, 정모 · 김모 씨)들은 K모 전
대표를 상대로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억
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지만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는 K모 대표는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에 대
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K모 전 대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
하고, 혹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
며, K모 대표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하
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그동안 K모 전 대표는 사실상 B자동차공업사의

경영권의 실세를 자처하고 있었으며, 모든 운영에 관한 관리와 지시 등 불법을 자행하기 위한 교사를 일삼아 왔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운영을 해 오던 피해자들은 막상 불법으로 얻은 이익금에 대한 분배를 한 톨도 받지 못해 그야말로 도둑을 피하다 강도를 만난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K모 전 대표는 여수시장, 목포시장 등 고루 공직생활을 거쳐 여수시 지역사회발전협의회회장직을 역임해 지난 2005년에는 여수시민의상(지역개발부분)을 수상한 경력도 있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인물로써 만약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회적인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3일자 6면 『여수 B자동차공업사, 부정경매·공금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B자동차공업사 K모 대표와 김○○ 전 대표가 1999년 고의로 공업사를 부도 내 누락된 부채를 탕감하였고 경매가 진행될 때 경매 참가자 경쟁을 염려, 법원직원을 매수해 단독 낙찰을 받았으며 종업원들 급료 및 퇴직금을 법원에 신청할 때 1억 800만 원보다 4천 200만 원이 더 많은 1억 5천만 원을 청구·수령해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김○○ 전 대표에게 전달했고 현재 김○○ 전 대표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보증인(K모 대표, 정모·김모 씨)들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법원 경매 시 3명이 응찰해 B자동차공업사가 최고 가격으로 낙찰받았음이 확인됐고 종업원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 및 수령은 김○○ 전 대표가 아닌 K모 대표가 신청, 지급받아 와 급료 등을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회사 부채정리 등을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돼 K모 대표가 사기죄로 입건됐음이 밝혀졌으며 김○○ 전 대표와 ○○○○자동차공업사업 대표 B모 씨를 상대로 K모 대표 등이 고소한 내용은 무혐의 처분되었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23일자 사회면 『여수 B자동차공업사, 부정경매·공금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여수시 국동 B자동차공업사 K모 대표와 K모 전 대표가 1999년 고의로 부도 내 누락된 부채를 탕감하였고, 법원직원을 매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으며, 법원에 종업원들 급료 및 퇴직금을 4천 200만 원 부풀려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그 밖에 현재 K모 전 대표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보증인들은 K모 전 대표를 상대로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등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본사로 진정서를 보내온 K모 대표를 취재한 결과로서, K모 대표는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약식기소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K모 대표 등이 K모 전 대표를 상대로 진정한 내용을 경찰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조사한 결과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자동차공업사는 법원직원을 매수, 단독낙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입찰과정을 통해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종업원 급료 및 퇴직금 횡령부분은 K모 전대표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광일보 사회면에 2007년 7월 13일까지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 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대표·전대표 공모…)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에게 일금 일백만 원을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광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부당하게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경매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자동차공업(주)
(대표이사 박 ○ ○) 외 1인
피신청인 : 큰여수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큰여수신문 : 『여수 B자동차공업사, 부정경매·공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8일자 8면)
내 용 : <2007광주조정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광주조정2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큰여수신문 : 『정정보도문-여수 B자동차공업사 무
혐의 고소자 소행으로 입건돼』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5일자 3면)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8일자 사회면에
“여수B자동차공업사, 부정경매·공금횡령의혹”
이란 제목과 “대표·전 대표 공모…피해자들

구체적 사실입증 논란”이란 부제목을 붙여 여
수시 국동 B자동차공업사 K모 대표와 K모 전
대표가 1999년 고의적으로 부도내 누적된 부채
를 탕감하였고 경매가 진행될 때 경매참가자
경쟁을 염려, 법원 직원을 매수, 단독 낙찰받았
다.

또한 종업원들 급여 및 퇴직금을 법원에 신청할
때 1억 800만 원보다 4천 200만 원이 더 많은 1억
5천만 원을 청구 수령해 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K모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현재 K모 전 대표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보증인(K모 대표, 정모, 김모 씨)들은 K모
전대표를 상대로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
다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여수경찰서와 광주지
방검찰청 순천지원에서 수사한 결과 전 B자동차
공업사 대표이사이고 B자동차공업사의 이사였던
김 모씨가 법원에 다니면서 저지른 일로서 법원
경매시 3명이 응찰하여 B자동차공업사가 최고 가
격으로 낙찰받았음이 확인됐으며, 종업원 체불급
료와 퇴직금 청구는 물론 수령도 김모 씨가 해와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회사 부채를 정리한 것
이 수사결과 확인되어 오히려 고소한 김모 씨가
사기죄로 입건되어 현재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계
류 중이라고 한다.

억울하게 보증인으로 피해를 봤다는 김모 씨의 제
수 정 씨와 동생인 김 씨, 상무였던 김 씨 등도 김
모 씨가 선진공업사 또는 김모 씨 명의 대출에 김
모 씨가 보증서게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며 S자동차공업사 주식 지분이 K모 전대표가 많
았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김모 씨가 K모 전 대
표에게 보증서게 한 자기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이다.

K모 전 대표와 B자동차공업사 대표 B모 씨는
검찰에서 지난 4월 11일 김모 씨, 김 씨, 정 씨,
김 씨 등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
다고 한다. □

신청인 회사 소속 외국인 무용수들이 공연 중 부상을 당해도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엔터테인먼트(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6월 19일 21:20)

내 용 : (전략) ▷기자 : 공연 내내 천사 같은 무용수들의 입가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관람객들에게는 짧게만 느껴지는 신나는 퍼레이드. 하지만 무용수들은 파김치가 됐습니다. 더위에 지쳐 말을 잃었고 금방 전 무대 위의 웃음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덮어쓰고 옷옷을 벗어 던져도 땀이 식을 줄 모릅니다. 화려한 깃털 옷과 붕은 걸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30분 내내 춤을 추는 퍼레이드 공연은 하루에 여섯 번,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공연을 합니다. 공연 사이사이엔 1시간 정도 쉽니다. (중략)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온 29살의 ○○○ 씨. 작년 말 무대에서 미끄러지면서 다리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5킬로그램이 넘는 나비 의상을 입고 공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무용수) : 길에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급하게 안아 올려야 할 때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됐어요

▷기자 : 7살 때부터 춤을 춰 왔던 발레리나는 이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의사 : 치료받아야 하는데 계속 무거운 장신을 몸에 걸치고 공연을 하면서, 디스크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기자 : 이런데도 ○○○는 어디에다 하소연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다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보상은커녕 쫓겨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용수들은 인력파견업체인 ○○엔터테인먼트의 소개로 ○○랜드에서 일합니다.

무용수들이 ○○ 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공연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회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병이 생기면 회사는 무용수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랜드 무용수 : 병원에 가 달라고 했는데 아픈 건 여자 무용수 문제라고 하면서 급하게 출국시켜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무용수들이 맺은 계약서에는 '노예 계약서'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무용수와 계약을 맺은 인력 파견업체도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엔터테인먼트 이사) : 지금 외부에서 알면 당장이라도 수정을 하고 바꿔야죠, 이제 할 수 없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외국인 무용수의 눈물’ ..가려진 그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9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무용수들이 공연 중 사고가 나도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랜드 무용수들은 ○○랜드와 ○○엔터테인먼트의 관리 아래 공연 중 사고나 공연외 사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 조치를 받고 있었으며 인터뷰 당사자인 ○○○ 씨도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고 공연강요는 없었으며 치료 후에도 얼마동안 퍼레이드 공연을 제외시켜

주는 등 배려를 받았었고 지금 현재도 ○○랜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정도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보도자료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8.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이건 기사도 아니고 보도자료도 아니여~』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8일자 사회면)

내 용 : (전략) 일부 언론사는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기도 한다. 같은 기사를 보도한 <EBN산업뉴스>는 보도자료와 거의 똑같다. 기자가 한 일은? 리드문을 추가하고, 기사의 종결어미를 고치고, 기사 중간에 ‘이외에도’를 ‘이밖에도’로 고친 것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긁어다 붙였다. 끝에 기자 바이라인을 다는 일은 잊지 않았다. 이처럼 기업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너무도 잘 ‘활용한’ 기사를 보고, 독자들은 대학축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EBN산업뉴스 및 실명 기자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3일자 『이건 기사도 아니고 보도자료도 아니여~』 제하의 기사에서 “EBN산업뉴스는 기사 내용이 보도자료와 똑같다. 기자가 한 일은? 중간에 ‘이외에도’를 ‘이밖에도’로 고친 것 정도다. 나머지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긁어다 붙였다. 끝에 바이라인을 다는 일도 잊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기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자료 전체를 그대로 베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밝혔으며 보도자료를 나름대로 기자가 가공해서 생산해 낸 기사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지난 26일부터, 27일 사이 피해기자에게 어떤 통보나 연락조차 없이 기사 내용을 멋대로 고치고 재단해 EBN산업뉴스와 담당기자를 기만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청와대가 일부 정부기관에 대해 공식발표 외에 업무관련 기사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문 재 인)

피신청인 : 해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청 ‘언론통제 지침’ 파문』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31일자 1면)

내 용 : 청와대 등이 일부 정부기관에 ‘공식발표 이외의 업무관련 기사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것이 31일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기사실 통폐합 추진 또는 폐쇄 검토, 언론의 공무원 접촉 금지 등 취재행태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에 대한 간접 통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돼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를 항의방문했다. 정치권에서는 ‘반헌법, 독재광풍’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중략)

정부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등이 기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일부 기관의 향후 대응을 모델 케이스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 기관 관계자가 사적으로 기자들과 만난 후 ‘○○기관에 따르면’이라는 형태의 공식발표 이외의 업무관련 기사가 나온다면 관련자를 엄정하게 문책하겠다는 점을 통보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등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출입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원천 봉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7년 5월 31일자 1면 『청, ‘언론통제’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등이 일부 정치기관에 공식발표 이외에 업무관련 기사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으며, 이는 보도내용에 대한 간접통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돼 언론계와 시민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청와대는 공식발표 이외의 업무관련 기사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 혹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어떠한 지침도 정부기관에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청, 언론지침’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31일자 1면 “청, ‘언론통제 지침’ 파문”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일부 기관에게 ‘공식발표 이외에 업무관련 기사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청와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헤럴드경제> 2007년 7월 5일자 또는 6일자 2면에 상가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공식발표이외...)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내용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eraldbiz.com>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위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헤럴드경제 : 『‘청, 언론지침’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사석에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이길 것 같아서 노후보 쪽으로 왔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조 기 숙 외 3인
피신청인 : 신동아
종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신동아 : 『출입기자가 본 ‘노무현호 청와대 비서실’』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호 151~158면)

내 용 : (전략) 홍보수석과 대변인의 면면을 비교
하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홍보수석은 노 대
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 또는 청와대에 입성한
후 발탁한 인사들이었다. 반면 대변인은 노 대통
령이 과거부터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386운동
권’ 출신이 대부분이다. 직위는 홍보수석이 높지만,
대통령과의 ‘거리’는 대변인이 더 가까웠던 셈이
다. 자연히 홍보실 내에서 미묘한 꺾끄러움이 있었
다고 한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사석에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나를 영
입하려고 애썼다. 내가 움직이면 100만 표는 되는
데, 내가 예상한 역대 대선 결과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 노무현 후보 쪽이 이길 것 같아서 왔
다”고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월간지는 지난 5월호 『출입기자가
본 ‘노무현호 청와대 홍보실’』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사석에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나를 영
입하려고 애썼다. 내가 움직이면 100만 표는 되는
데, 내가 예상한 역대 대선결과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 노무현 후보 쪽이 이길 것 같아서 왔
다’고 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전직 수석 누구도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조 기 숙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신동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
이 발행하는 <신동아> 2007년 8월호 151~158면
사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똑바로 써달라...)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내용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shindonga.donga.com>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
건 조정대상기사와 위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
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과 2항을 이행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7. 7. 4.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호 151~158면 <출입기
자가 본 ‘노무현호 청와대 홍보실’> 제하의 기사
에서 ‘노무현 청와대’의 홍보수석을 지낸 한 인사
가 사석에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나를
영입하려고 애썼고, 내가 움직이면 100만 표는 되
는데, 내가 예상한 역대 대선결과가 한 번도 빗나
간 적이 없었으며, 노무현 후보 쪽이 이길 것 같아
서 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조기숙 씨 등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당사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

습니다.

신동아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호 152면)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내 용 : <결정문의 별지 내용 참조>

□

교육인적자원부가 개발중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외고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9.

처리결과 : 취 하

고 시·도 교육감이 승인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국가가 개발한 영어능력시험은 무리 없이 전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2007년 6월 5일자 1면에 보도된 『외고 입시, 국가영어시험 성적 반영』 제하의 기사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개발 중인 국가영어능력시험(가칭)을 이르면 내년 외고 입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과 교육부는 학생용 영어시험을 우선 개발해 외고입시 전형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 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 『국가영어시험 성적 반영』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5일자 1면)

내 용 : (전략)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개발 중인 국가영어능력시험을 이르면 내년 외고입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 출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1년 정도 도입이 늦춰질 수 있다”면서 “영어 교육 혁신방안에 기초한 국가영어능력시험이 외고입시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험을 활용하면 외고 입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외고교장단이 지난 4월 2009학년도 입시부터 토를 제외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용 영어시험을 우선 개발해 토를 대체함으로써 외고입시 전형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고입시 전형은 학교장이 결정하

취하 후 보도문

국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2일자 2면)

내 용 : 본보 6월 5일자 1면에 보도한 ‘외고 입시, 국가영어시험 성적 반영’ 제하 기사와 관련, 교육부는 국가영어능력시험을 2009년 이후 본격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한 적이 없고 이 시험을 외고 입시전형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학교장이나 시·도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작성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신당 관련 기사가 오보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데일리서프라이즈 : 『‘동아일보’에 화난 손학규 “내가 언제 그랬냐”』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9일자 정치면)

내 용 :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박상천 중도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 공동대표 측 안규백 조직위원장을 지난 27일 만나 “김근태·문희상·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들과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동아일보>에 의해 29일 보도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손 전 지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손 전 지사와 관련한 이와 같은 소문에 대해 정계 일각에서는 매우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범여권 예비 대선주자들 간 치열한 ‘세미파이널’을 앞두고 지역적 기반이 약한 손 전 지사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통합민주당에 대해 ‘구애’를 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 (중략)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이번 보도는 자칫 개혁적·지역적 구도 탈피라는 손 전 지사의 이미지를 불식, 과거회귀적인 ‘똑같은’ 정치인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 손 전 지사 측의 반응에 정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를 의식한 듯 손 전 지사 측은 29일 이와 관련된 긴급 해명자료를 발표 “손 전 지사가 안규백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만난 것은 사실이나 신당을 안 만들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손 전 지사는 국민대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역설했을 뿐 신당관련 발언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손 전 지사는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모두 대동단결해야 하고 서로 자기를 버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만을 나눴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손 전 지사 측 한 핵심 측근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동아일보>의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면서 “민주당 측 특정인이 손 전 지사가 민주당 측의 인사와 만났다는 사실만을 두고

잘못된 정보를(동아일보에) 제공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확한 사실을 모든 언론에 알리라는 손 전 지사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동아일보’에 화난 손학규 “내가 언제 그랬냐”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매체는 6월 29일자 종합면에 『‘동아일보’에 화난 손학규 “내가 언제 그랬냐”』는 제목으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김근태, 문희상,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통합민주당과 단절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박상천 통합민주당 대표와 언제든지 만날 것”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6월 29일자 동아일보 A10면의 기사에 대해 “동아일보에 화난 손학규-내가 언제 그랬냐”란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사 전체가 잘못된 듯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또 손 전 지사 측 한 핵심 측근의 말을 빌어 “동아일보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취재 미흡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데일리서프라이즈 : 『[반론]손학규 전 지사의 신당 관련 발언 기사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2일자 정치면)

내 용 : 본 매체는 지난 6월 29일자 종합면에 『‘동아일보’에 화난 손학규 “내가 언제 그랬냐”』 제하의 기사에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김근태, 문희상,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통합민주당과 단절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6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손 전 지사 측의 말을 빌려 완전한 오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기사를 작성한 해당 기자는

손 전 지사를 만난 중도통합민주당 안규백 조직위원장 박상천 대표와 소속 의원들 앞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며, 손 전 지사 측에

서 동아일보에 항의나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손 전 지사의 신당 관련 발언 기사는 정당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모 중학교 유도부의 과도한 훈련을 지적하면서 타 고교 유도부 코치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강원조정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강릉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강릉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6월 27일 21:35)

내 용 : ▷앵커 : 엘리트 체육 교육의 어두운 단면에 대한 보도, 여러 번 접하셨을 텐데요.

여전히 일부 학교의 어린이 선수들이 심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 기자입니다.

▷기자 : 강릉시 모 중학교 유도부에 다니는 김모 군은 최근 훈련 도중 5차례나 실신을 했습니다.

유도 기술 가운데 하나인 목조르기 훈련을 받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기자 : 학생은 실신을 했었던거야?

▷학생 : 네

▷기자 : 몇 번이나?

▷학생 : 5번 정도

▷기자 : 그러면 실신했다가 깨우고 다시 실신했다가 깨우고 그러는 거야?

▷학생 : 예...

▷기자 : 같은 학년 김모 양도 얼굴에 열꽃이 일 정도로 조르기 훈련을 심하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학부모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예전 처럼만 아이들이 밝게...

밝게 운동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기자 : 학교 측도 훈련이 과도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유도 선생 : 코치는 훈련과정에서 그랬다 훈련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 하더라도 조금 무리한거 같아요

▷기자 : 그러나 격한 운동인 유도지도 과정상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강릉MBC-TV는 지난 2007년 6월 27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강릉시 소재 모 중학교 유도부의 과도한 훈련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다른 고교 유도부 코치인 본인의 초상과 음성을 내보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용인시장이 음주상태에서 수행직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용인시 (시장 서 정 석)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인천일보 : 『용인시장 이번엔 직원 폭행』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5일자 19면)

내 용 : 지난 1월 고 백남준 씨 추모행사에서 만취 추태 과문을 일으켰던 서정석 용인시장이 최근 술에 취해 외부행사를 참석하려다 이를 말리던 부하직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11일 저녁 용인시 처인구 양지 파인리조트에서 열린 용인지역 새마을지도자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 시장과 2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 외에도 이정문 전 시장을 비롯한 전 시장들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내로라하는 지역인사들이 대거 모였다.

서 시장은 이날 행사장에 다른 참석자들보다 늦은 오후 9시쯤 도착했으며 수행비서와 시정담당 직원 등이 서 시장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시장은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행사 참석을 만류하던 수행직원 A 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 B 직원은 “시장이 A 씨가 행사장에 들어가는 걸 막자 발로 A 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뺨을 한 차례 때리면서 화를 냈다”며 “A 씨가 시장이 술을 드신데다 걸끄러운 사이인 전 시장이 참석한 상황에서 혹시 모를 불상사를 우려해 행사참석을 만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용인시장 직원 폭행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5일자 사회면에 『용인시장 이번엔 직원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용인시장이 용인지역 새마을지도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수행직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마치 용인시장이 음주상태에서 수행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보도와는 달리 용인시장은 당일 음주를 하지 않았고 수행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보도의 공익성이 크며,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정보도 수용은 힘들다. □

신림동 고시촌 식당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2인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서울신문 : 『고시촌식당 왜 썩아 했더니...』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7일자 8면)

내 용 : 고시생들의 하루 세끼 영양을 책임지는 고시식당. 그러나 수험생들은 고시식당의 위생 상태에 불만이 많다. 음식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값이 저렴하고 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는다.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특별 위생지도를 벌이고 있는 관악구청 직원들과 함께 신림동 고시촌의 고시식당 6곳을 직접 찾아가 봤다. 신림9동 일대에 고시식당으로 구청에 신고된 곳은 23곳이다. 하지만 고시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림잡아 50곳 가까이 된다.

대부분의 고시식당은 지하에 자리잡고 있다. 많은 학생들을 들이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 지하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1식에 반찬 8~9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온다. 뷔페식으로 원하는 만큼 덜어 먹는 시스템이다.

하루 500여 명이 이용한다는 A고시식당은 환풍이 잘 안되는지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기름냄새로 진동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인 오후 4시쯤 부엌 내부로 들어가 봤다.

10평 남짓한 부엌 바닥은 타일이 여기저기 깨져 있고 배수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있었다. 음식 찌꺼기가 널려져 있는 건 물론이다.

관악구청 이○○ 보건위생지도팀장은 “음식물 쓰레기는 항상 뚜껑을 덮어 두어야 하고 직원들은 반드시 머릿수건과 위생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두 시정 대상이다.

또 다른 고시식당 B 역시 설거지도 제대로 안된 식기옆에서 생선을 다듬고 있다. 창고에는 젖은 종이포대 속에서 냉동 생선들이 눅고 있었다. 식당측은 이날 저녁에 쓸 생선이라고 했지만 메뉴에 생선요리는 없었다. 냉동실에서 살을 발라낸 사과 조각이 나왔다. 주인 C 씨는 “샐러드에 쓰고 남은 사과는 끓여서 고기 양념할 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C 씨는 또 “식빵은 모아 뒀다가 기름에 튀겨서 내놓는다”고 말했다. <식당사진>

지하 2층에 자리하고 있는 또 다른 고시식당. 큼직한 PDP TV가 놓인 깔끔한 분위기의 식당과 달리 부엌 내부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자 조리된 돈가스, 닭튀김 봉지가 나왔다. 엇그제 먹고 남은 것들이다. 주인 D 씨는 “몇명이 올지 몰라 매일 반찬이 조금씩 남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남겨둔 것”이라면서 “돈가스는 다음에 샐러드를 만들 때 곁들여 낸다.”고 설명했다. 고시식당 주인들은 수지 타산을 맞추다 보면 위생에 제대로 신경 쓸 수 없다고 말한다. 식당끼리 경쟁이 붙어 사

실상 1600~1700원에 식사 한 끼가 제공되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고시식당의 주인 E 씨는 “비용을 맞추다 보니 시설이 취약한 점이 많다. 사실 2000원 짜리 밥이 어딴냐.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털어 놨다.(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신림동고시촌 ○○○고시식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5월 17일자 8면 『현장습격, 고시촌식당 왜 썩어 했더니...』라는 제목으로 신림동 고시촌에서 순전히 싸구려 저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또 위생이 엉망인 채 영업을 하고 있어 고시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고시식당은 위생불량 식당과는 전혀 무관하며, 식당의 주방내부시설과 직원의 얼굴을 내보내 마치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신청인들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으며, 신청인이 불결한 주방상태에서 태연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1,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가스가격 담합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한○○가스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보령시민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수 일 : 2007. 7. 3.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보령시민신문 : 『보령지역 가스업체 단합...사실무근』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7일자 사
 회면)

내 용 : (전략) 한○○ 추○○ 회장은 “대전
 MBC 보도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민다”며
 “지역 방송사도 아닌 중앙방송사가 전후 사정을
 살피지도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할 수가 있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대전MBC 보도기자는 보령시 가스 가격이
 다른 곳보다 높은 곳으로 나타난 근거와 타 지역
 보다 많게는 5,000원가량 비싸다는 것, 보령시가 가
 스판매업 기준을 높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았
 다는 보도에 대해 근거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대전MBC의 ‘기존 업체들은 가격담합을 부인하
 고 일부 업체들이 불법 영업에다 험값 판매로 유
 통질서를 흐려 놓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보도 내
 용에 대해 추 회장은 “일부 업체가 혹시 서산의
 H가스 아니냐?”며 “보도 내용의 제보자 목소리
 가 H가스 L모 씨가 분명히 맞는 것 같다”고 말
 했다.

또한 “가격담합은 절대로 한 적이 없으며, 제보
 자에 대해 심증만 있어서 확실하다고 말을 못하겠
 다”며 “단약 제보자가 H가스가 맞다면 한○○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보령가스업자들의 신뢰를 손
 상 시킨 모든 책임을 대전MBC와 제보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한○○ 회원들에 의하면 서산 H가스는 2006년 6
 월경부터 보령을 비롯 서산, 태안, 홍성 등 지역
 에서 영업직원들을 모집해 불법소매행위를 했다고
 한다.

또한 보령 및 각지역의 LPG가스 판매업자들의 심
 적·물적 피해는 물론 공급자 의무의 이행과 건전
 한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악덕업자라고 주장했다.

<표2 참조>

서산(유)한○○가스 보령에서 불법 판매 행위 사항

1	보령 관내에서 2.5톤 차량으로 LPG 충전 용기를 싣고 LPG 저장소로 이용하면서, 소형 배달 차량으로 보령 소비자에게 판매 행위
2	가스 판매 시 가스 용기에 공급자 표시를 해야 하나, 보령의 타 판매업소 용기를 회수하여 그대로 충전해 보령 소비자에게 공급
3	LP 판매업자는 판매영업이 종료 시 차량에 적재된 가 스용기를 허가 저장창고에 보관토록 되어 있으나 보령 지역에 LPG가스용기가 적재 상태로 방치
4	충전업소가 부담해야 하는 미 검사 용기에 대한 검사 비용을 보령 관내 판매소에 전가시키기 위해 충전 기 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용기를 보령 지역에 공급(20kg, 1개당 10,000원)
5	타 판매소 명의의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가스 사고 발 생시 용기에 기재된 판매소가 모든 사고책임을 떠 안 을 수 있음.
6	충전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용기로 LPG가스를 싣 가격으 로 공급하면서 마치 보령지역 주민을 위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현혹시킴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유)한○○가스 관련 보도에 대한 정
 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25일자 1면에 『보령지
 역 가스업체 단합...사실무근』이라는 제목으로
 (유)한○○가스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LPG
 가스 적재차량의 사진을 싣고, H가스가 2006년 6
 월경부터 보령 등지에서 불법소매행위를 했으며,
 공급자 의무의 이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파괴하
 는 악덕업자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회의 한
 회원의 말을 인용하여 “H가스의 불법 원정판매 행
 위를 보령시 가스업자들이 막아왔다. 영업을 못하
 게 되자 보복을 위해 H가스가 대전MBC를 매수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2000년 1월 1일부터 LPG
 가스 기준가격 고시제도가 폐지되고 자율화가 되어
 충전소도 도소매를 할 수 있어 불법 소매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보령 관내에서 2.5톤
 차량으로 LPG충전용기를 싣고 LPG 저장소로 이

용하면서, 소형배달차량으로 보령소비자에게 판매 행위는 차량소통을 방해하거나 상업지역 등 위험 지역에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 대형차량에서 소형차량으로 옮겨 적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스 판매시 가스용기에 공급자표시를 해야 한, 보령의 타 판매업소 용기를 회수하여 그대로 충전해 보령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에 대해서도 법절차에 따라 상호표기를 한 후 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고, LP판매업자는 판매영업이 종료시 차량에 적재된 가스용기를 허가 저장창고에 보관토록 되어 있으나 보령지역에 LP가스용기가 적재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행위로서 (유)한○○○가스에만 해당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충전업소가 부담해야하는 미 검사용기에 대한 검사비용을 보령 관내 판매업소에 전가시키기 위해 충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용기를 보령지역에 공급(20kg, 1개당 10,000원)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타 판매소 명의의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가스사고 발생시 용기에 기재된 판매소가 모든 사고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 (유)한○○○가스가 타 판매소 명의의 용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나 혹여 있다 하더라도 LP가스 안전계약서를 체결하고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공급자를 추적하여 사고책임을 묻게 되어 있으므로 가스용기에 상호가 기재된 판매업소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충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용기로 LP가스를 싣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마치 보령지역 주민을 위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현혹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위 내용을 정정합니다.

또한, (유)한○○○가스 차량 사진을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기재된 채 허가없이 게재하고, 영업을 못하게 된 보복으로 대전MBC를 매수한 것 아니냐며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유)한○○○가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고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유)한○○○가스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25일자 1면에 “보령지역 가스업체 단합…사실무근”이라는 제목으로 (유)한○○○가스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LPG 가스 적재차량의 사진을 싣고, ○○회 회원들이 “H가스가 2006년 6월경부터 보령 등지에서 불법 소매 행위를 했으며, 공급자 의무의 이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악덕업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서산(유)한○○○가스 보령에서 불법 판매 행위사항>이라는 6개 항목의 표<참조표2>를 동원하여 보도한 바 있으며, ○○회의 한 회원의 말을 인용하여 “가스가 불법 원정판매 행위를 보령시 가스업자들이 막아왔다. 영업을 못하게 되자 보복을 위해 H가스가 대전MBC를 매수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2000년 1월 1일부터 LP가스 기준가격 고시제도가 폐지되고 자율화가 되어 충전소도 도소매를 할 수 있어 불법 소매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참조표<2>의 1항 <보령 관내에서 2.5톤 차량으로 LPG충전용기를 싣고 LPG저장소로 이용하면서, 소형배달차량으로 보령소비자에게 판매행위>에 대해 H가스 측은 차량소통을 방해하거나 상업지역 등 위험지역에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 대형차량에서 소형차량으로 옮겨 적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왔고, 2항 <가스 판매시 가스용기에 공급자표시를 해야 하나, 보령의 타 판매업소 용기를 회수하여 그대로 충전해 보령소비자에게 공급>에 대해서도 법절차에 따라 상호표기를 한 후 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밝혀왔으며, 3항 <LP판매업자는 판매영업이 종료시 차량에 적재된 가스용기를 허가 저장창고에 보관토록 되어 있으나 보령지역에 LP가스용기가 적재상태로 방치>도 전국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행위로서 (유)한○○○가스에만 해당된 내용이 아니라고 반론해왔습니다. 4항 <충전업소가 부담해야하는 미검사용기에 대한 검사비용을 보령 관내 판매업소에 전가시키기 위해 충전기한이 얼마 남

지 않은 용기를 보령지역에 공급(20kg, 1개당 10,000원)의 내용을 사실 확인결과, H가스 측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5항 <타판매소 명의의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가스 사고 발생시 용기에 기재된 판매소가 모든 사고 책임을 떠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유)한○○○가스가 타 판매소 명의의 용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나 혹여 있다 하더라도 LP가스 안전계약서를 체결하고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공급자를 추적하여 사고책임을 묻게 되어있으므로, 가스용기에 상호가 기재된 판매업소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6항 <충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용기로 LP가스를 쓴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마치 보령지역 주민을 위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현혹시킴>에 대한 사실확인결과, 일반 판매업소는 정유사, 충전소, 판매점 마진의 3단계 유통구조이나 충전소는 정유사, 충전소의 2단계 공급구조이고 유통구조상 도매판매가 가능하므로 저렴하게 판매한 것이지 용기와 관련되거나 불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위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합니다.

또한, (유)한○○○가스 차량 사진을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기재된 채 허가없이 게재하고,

“영업을 못하게 된 보복으로 대전MBC를 매수한 것 아니냐?”며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유)한○○○가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고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보령시민신문 2007년 7월 16일자 1면 우측면 및 7월 23일자 1면 하단 광고란(편집여건이 허락하면 1면 우측란에 게재)에 각각 1회씩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재목(대전MBC 뉴스 보도에…)과 같게,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보령시민신문 인터넷판(www.brnews.co.kr)에 2007년 7월 16일 09시부터 7월 25일 21시까지 10일 동안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연결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보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소재기 등 일체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보령시민신문 : 『(유)한○○○가스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6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인 신청인이 수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8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매일신문 : 『병원서 임의 폐기처분 말썽』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1일자 10면)

내 용 : “어떻게 대학병원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병원 측의 어이없는 일 처리에 가족이 모두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정○○(44) 씨는 고인이 된 어머니(67)를 온전히 하늘나라로 보내드리지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병원 측의 실수로 어머니의 장례를 온전히 치르지 못했다는 것.

정 씨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A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것은 지난해 5월 16일. 신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 병원으로 실려온 정 씨의 어머니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갑작스런 사고로 경황이 없었던 정 씨는 “접합 수술을 하기엔 지금 당장은 위

협하니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병원 측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병원으로부터 “접합수술이 어렵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 이에 정 씨는 입원한 지 10개월 만인 3월 13일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간호하다 결국 14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이후 정 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A병원에 “입관할 때 함께 넣으려고 하니 보관 중인 어머니 신체의 일부분을 돌려 달라.”고 했다가 청천병력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다. 보관 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했다는 것. 정 씨는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대형병원밖에 없어 이곳에 맡겨 둔 것인데 보관 기한이 지났다고 가족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접합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악화됐고, 수술이 가능해졌을 때는 정 씨가 수술비용 부담 등으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를 위해 신체의 일부를 보관했으나 반드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6월 21일자 10면에 『병원서 임의 폐기처분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A병원이 접합수술을 위해 보관했던 환자의 신체일부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처분했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수술이 가능해졌을 때 가족 측이 수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A병원 측의 주장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고인이 된 환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였고, 따라서 가족 측이 수술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수술비용문제로 가족 측이 수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가 지난 6월 21일자 10면『병원서 임의 폐기처분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A병원이 접합수술을

위해 보관했던 환자의 신체일부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처분했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수술이 가능해졌을 때 가족 측이 수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A병원 측의 주장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고인이 된 환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였으므로 가족 측이 수술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에 비용문제로 수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며 병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8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21일자 10면 『접합수술 위해 보관했던 환자 신체 일부 병원서 임의 폐기처분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수술이 가능해졌을 때 가족 측이 수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A병원 측의 주장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고인이 된 환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였으므로 가족 측이 수술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에 비용문제로 수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며 병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 10면에 상자기사로 2007년 7월 13일까지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의 활자과 크기는 16포인트 고딕활자로 하고 본문의 활자과 크기는 12포인트 명조활자로 한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2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거액의 금품 로비를 통해 140억 원짜리 토목공사 하도급을 따낸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9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경북문화신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정정)

보도내용

경북문화신보 : 『“하도급 미끼 역대 금품수수”』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8일자 15면)
내 용 : 포항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일월~문덕 간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원청업체 S토건이 하도급 업체의 공사 발주와 관련, 금품수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D건설사에 회장으로 있는 정모 씨가 S토건의 회장 아들 J모 씨와의 친분을 이용, 입찰에 부정을 저질러 140억 원짜리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명의 건설업자들로부터 공사를 미끼로 역대의 돈을 받아 챙기는 등 S토건 본사 간부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략)

D건설사 회장 정모 씨는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최모 씨 등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현금을 받았으나 실제 하청 계약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D건설사에 계약을 맺도록 주선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공사 원청업체 S토건이 당초에 입찰로 하도급에 낙찰된 J모 건설회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배제시키고 정모 회장이 있는 D건설사에 하도급을

준 것은 거액의 로비자금이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피해자 이 씨가 주장했다.

피해자 이 씨는 정 회장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D건설사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받고 하도급 업체를 전격 교체해 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포항 일월~문덕 도로공사시공 S토건~하청 D건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8일자 『“하도급 미끼 역대 금품수수”』 제하의 기사에서 하도급 관련 D건설사의 정모 회장이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S토건에 하도급과 로비를 했다고 보도한 바 이는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포항 일월~문덕 도로공사시공 S토건~하청 D건설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8일 사회면에 『“하도급 미끼 역대 금품수수”』 기사에서 정○○ 씨가 1억 5천만 원의 금품을 몇 사람의 개인들로부터 하청계약을 미끼로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바, 본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일월~문덕 도로공사 하도급 부정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6월 28일자 15면 『“하도급 미끼 역대 금품수수”』 제하의 기사에서 D건설사 회장 정모 씨가 포항시 관내 국도 대체우

회도로 일월~문덕 간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S토건에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여 이미 입찰경쟁에서 하도급 공사 낙찰을 받았던 J건설을 따돌리고 140억 원짜리 토목공사 하도급을 따낸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건설 정모 회장은 당초 J건설이 약 140억원 에 이르는 하도급 계약을 S건설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J건설의 회사사정으로 인해 공사를 포기해 D건설이 이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따라서 마치 D건설이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여 S토건으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를 번칙적으로 변경하게 한 것처럼 보도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은 D건설이 S토건으로부터 따낸 하도급 부분은 총 140억 원의 공사중 약 17%에 해당하는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24억 원에 그치므로 S토건이 정 회장에게 140억 원짜리 토목공사 전부를 하도급 준 것처럼 보도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 회장은 토목공사 하청계약을 미끼로 공사업자 몇몇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덧붙여, 정 회장은 자신의 지시로 ‘S토건 서울 본사 간부들에게 비싼 선물들을 전달했다’는 피해자 측

의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북문화신보 15면 우측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2007년 7월 13일까지 보도하되 제목(일월~문덕 도로공사 하도급 부정관련 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재목(피해 주장 이모 씨 ‘140억 공사 입찰비리’ 폭로)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북문화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4일자 2면)

내 용 : 경북문화신보는 지난 6월 28일자 사회면에 위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주장이 이모 씨 140억 공사입찰 비리 폭로』 제목의 기사에서 D건설 정모 회장은 입찰은 경쟁입찰하였고 다른 어떠한 입찰부정도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북문화신보는 정모 회장이 공사를 미끼로 공사업체관계자 최초 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또한 당초 하도급 낙찰된 J건설은 공사수행중 문화재 및 보상지연으로 공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어 원청사인 S토건과 협의 하에 공사를 자진 포기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중인 신청인이 확성기로 욕설을 하며 그 소음의 크기가 기준치 이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시위에 대처하는 금감원의 자세』 제하

의 기사 (2007년 7월 2일자 A6면)

내 용 : 금융 전반의 현안을 관할하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은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A 씨처럼 60일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사례는 흔치 않다.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A 씨의 요구는 해당 보험사 사장 처벌과 금감위원장의 면담이다.

그의 시위 방식도 금감원 1층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찾은 민원인이나 금감원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이따금 스스로 격앙된 나머지 금감원을 드나드

는 모든 사람에게 확성기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기 때문이다.

생업을 뒤로한 채 무더위 속에서 장기간 과도한 소음을 동반한 시위를 벌이는 A 씨의 고생도 여간 아닐 듯하다.

A 씨가 과연 고생의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또 그의 시위방법은 정당한 것일까.

2004년 개정된 집시법은 시위 때 80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일으킬 경우 경찰이 단속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실상 확성기 사용 금지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또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무고한 사람에 대한 욕설까지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금감원 앞 시위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일자 A6면에 『시위에 대처하는 금감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금감원 앞에서 60일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A 씨가 확성기에 대고 욕설을 하며, 그 소음의 크기가 법이 허용하고 있는 기준치 이상에 달하고, 단순한 개인 신분의 시위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A 씨의 시위는 단순한 개인 신분의 시위가 아니라 ○○소비자협회 차원의 시위였으며, 욕설을 하거나 허용치 이상의 소음을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 내용으로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7월 2일자 A6면 중 본 기자가 쓴 칼럼과 관련하여 황○○ 선생님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매일경제에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회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개인 시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는 향후 금융감독기관 등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원회에 제기한 모든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사과〉

□

신청인이 고급 주택을 털어 호화생활을 해온 절도범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5년 7월 7일 21:00)

내 용 : ▷앵커 : 고급 주택들을 털어 고가의 사치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훔친 금품이 10억 원어치나 됩니다.

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8억 원 넘게 호가하는 60평짜리 대형 아파트입니다.

화려한 진열장마다 고급 양주가 가득하고 방 하나는 아예 비싼 옷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형 TV에 수석, 명품 가방들까지, 집 주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짐작케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 최근에는 노는 걸로 알고 있으니, 부인이 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이 많으니까 여기서 살지.

▷기자 : 하지만 집 안의 물건 대부분은 집주인 최모 씨가 수도권 일대 고급 주택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훔친 것입니다.

최 씨의 집에서는 유명사찰의 주지스님이 직접 쓴 금강경 필사본 등 고가의 서화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훔친 금품은 10억여 원어치나 됩니다.

▷최모 씨 :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기자 :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훔친 물건 일부는 처분해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7년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2년의 실형을 살았던 최 씨는 6년 만에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심○○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최모 씨 절도죄 무죄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5년 7월 7일 「뉴스 9」 프로그램에서 ○○경찰서가 상습절도 혐의로 최모 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결과, 최모 씨는 2005년 5월 31일에 무죄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고급주택 상습절도 관련 추후보도문

• 내 용 : 지난 2005년 7월 7일 수도권 일대 고급 주택가에서 3년 동안 10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도된 최모 씨는 절도죄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7월 20일까지 KBS-1TV 「뉴스9」의 본뉴스중에 보도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7월 15일 21:3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고급 주택을 털어 호화생활을 해온 절도범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9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일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일요신문 : 『초호화 절도·마약범 스토리』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2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3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238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일요신문 : 『“검·경·언론 탓에 내 인생 망가졌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8일자 21면)

내 용 :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의 확보 없이 피해자의 자백만으로 혐의를 인정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대법원은 상습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 씨(51)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마약(대마초흡연)에 대한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미 만기출소한 상태다. (중략)

법원은 ‘피고인(최 씨)이 검찰에서 공소 사실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에서 여러 건의 절도사건중 하나의 범행만 자백하면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을 면하여 준다고 회유하여 허위로 자백하고, 이러한 상태가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결과 검찰에서도 허위로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라며 증거 불충분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법원은 최 씨 집에서 발견된 일부 물품이 몇몇 피해자들의 도난당한 물품과 단지 동일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최 씨가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최 씨는 마약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이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최 씨의 상습절도 혐의는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나에 대한 사실이 잘못 알려져 결국 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내 인생도 완전히 망가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익산시장이 쓰레기소각장 설치업자 선정과정에서 커미션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익산시 (시장 이 한 수)

피신청인 : 소통뉴스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4.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소통뉴스 : (1) 『지금이라도 공론에 붙여라』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0일자 기획면)

내 용 : (전략)

앞으로 닥칠 쓰레기 대란의 책임은 소각장이나 매립장 설치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익산시에 있다.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하기에 최적지로 검증된 춘포가 눈 앞에 있고 두 혐오 시설을 쌍수를 들

어 갈망하는 그 피해영향권내 주민들이 엄존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압축·포장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30만 톤이 넘는 압축·포장쓰레기를 소각해야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압축·포장쓰레기는 현 상태에선 소각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철사를 감아 사각으로 압축·포장해 놓은 익산시의 쓰레기 덩어리 그대로는 불에 타지 않을뿐더러, 인력을 투입해서 풀어헤친다 하더라도 이미 물성 구별이 불가능하게 부식된 쓰레기를 분리할 수 없어, 소각을 할 경우 맹독성 물질이 배출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만약 익산시가 소각장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5만여 시민의 건강권이나 안위를 고려치 않고 소각을 강행할 경우라도, 압축·포장쓰레기를 해체하는데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야

하는 등, 30만 원을 처리하는데 또다시 100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망이다.

부송동 소각장의 경우, 주민소환론의 진원지로서 당장 큰 폭의 집값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부송동 영등동 주민들의 반발정서가 갈수록 확산되어가고 있다. 또, 부송동 소각장유치신청서가 위조·행사됐다는 형사법정의 판결은, 주민들이 소각장입지선 정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익산시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후략)

(2) 『검은거래의혹 갈수록 태산』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3일자 기획면)

내 용 : (전략) 또 5. 31. 지방선거 이전에 부송동 소각장 유치신청서가 위조·행사되어 원인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게다가 그가 재검토를 약속한 대상은 소각장 권역내 주민이 아니라 33만 익산시민이었다. 더구나 그의 약속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으며, 행정가로서의 판단이 아니었다. 그는 이때 이미 정치가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익산시민들의 관심은 이한수 시장이 이같은 부담을 안고 소각장을 강행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나에 쏠렸다. “소각장을 설치하면 자치단체장이 사업비의 10%(70억 원)를 공식적인 커미션으로 챙기는게 관행화되어 있다”는 검은 거래설이 급속도로 확산됐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이같은 검은 거래설은 소각장업자 최종선정 과정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상황에 의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후략)

(3) 『춘포, 여산주민들 들러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4일자 기획면)

내 용 : (전략) 특히, 여산면 매립장입지선정을 백지화한 익산시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겠다”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의혹을 더 부풀리는 계기가 됐다. 이는, 적정한 시기에 “낭산 폐석산을 압축·포장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

을 강변하기 위해 사전 장치로 춘포와 여산을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초래한 것이다.

이한수 시장의 친동생이 낭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은 이같은 사전 ‘준비론’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여산이나 춘포 보다는, 채석과 복구비 절감 그리고 쓰레기 반입에 따른 부가수익 등 1석 3조의 이익을 취하게 될 폐석산 업자가 정치자금 모금에 훨씬 더 큰 실익을 안겨 줄 게 분명하다는 점, 이한수 시장과 업자간의 결탁 의혹의 진원지이며, 아무런 환경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는 이 시장의 동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따라 붙는 것이다.

(4) 『폐석산 사설폐기물매립장 ‘파열음’』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3일자 하하하면)

내 용 : (전략) 특히, 익산시는 폐석산 폐기물처리업자의 난립과 수백만원에 주민동의서를 매입하는 등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이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라는 비판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후략)

(5) 『무자격자에 45억 용역 쥐 ‘과장’』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0일자 하하하면)

내 용 : 익산시가 45억 원 규모의 전문용역수행자로 무자격업체를 선정해 과장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특히,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고상의 결과발표 기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세 번씩이나 연기해 특정업체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공개입찰에 참여했던 업체에 따르면, 익산시는 이 용역을 공동도급계약방식으로 발주하면서 관련 국가계약법규와 행자부예규 제189호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의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무자격업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 제 목 : 압축포장폐기물 소각불가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뉴스는 지난 4월 20일자 『지금이라도 공론에 붙여라』 제하의 기사에서 “압축포장쓰레기는 현상태에서 소각이 불가능하다. 소각을 할 경우 맹독성 물질이 배출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부송동 소각장의 경우 주민 소환론의 진원지로서 당장 큰 폭의 집값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부송동, 영등동 주민들의 반발정서가 갈수록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압축포장 폐기물은 기계적 해체로 소각이 가능하며, 소각대상 물질은 생활계 폐기물로 맹독성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은 법적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부송동 소각장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 제 목 : 소각장 사업비의 10% 커미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뉴스는 지난 5월 3일자 『검은거래 의혹 갈수록 태산』 제하의 기사에서 “익산시민들의 관심은 이한수 시장이 이같은 부담을 안고 소각장을 강행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나에 쏠렸다. ‘소각장을 설치하면 자치단체장이 사업비의 10%(70억 원)를 공식적인 커미션으로 챙기는게 관행화되어 있다’는 검은 거래설이 급속도로 확산됐던 것은 그 때문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커미션 수수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3)

• 제 목 : 시장과 업자간 결탁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뉴스는 지난 5월 4일자 『춘포, 여산

주민들 들러리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여산면 매립장 입지선정을 백지화한 익산시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겠다고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의혹을 더 부풀리는 계기가 됐다. 이는, 적정한 시기에 “낭산 폐석산을 압축·포장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 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강변하기 위해 사전장치로 춘포와 여산을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초래한 것이다. 이한수 시장의 친동생이 낭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은 이같은 사전 ‘준비론’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아무런 환경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는 이 시장의 동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따라붙는 것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여산면 매립장 입지선정을 백지화한 것은 주민들의 찬반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여도 장기간 소요됨으로 일단 중단한 상태이며, 압축·포장 쓰레기는 향후 소각장이 준공되면 소각장에 장기간에 걸쳐 소각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한수 시장의 친동생은 낭산에 거주하지 않으며, 이번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석과 복구비 절감 그리고 쓰레기 반입에 따른 부가수익 등 1석 3조의 이익을 취하게 될 폐석산 업자가 정치자금 모금에 훨씬 더 큰 이익을 안겨줄 게 분명하다는 점이 이한수 시장과 업자간 결탁의혹의 진원지”라는 내용은 전혀 근거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4)

• 제 목 :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뉴스는 지난 6월 13일자 『폐석산 사설폐기물매립장 파열음』 제하의 기사에서 “익산시는 폐석산 폐기물처리업자의 난립과 수백만 원에 주민동의서를 매입하는 등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라는 비판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는 폐기물매립장뿐만 아니라 처리업 전반에 걸쳐 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법 사업계획서 검토의 적정여부는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5)

- 제 목 : 무자격자에 45억 용역 줘 '과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뉴스는 지난 6월 20일자 하하닷컴 『무자격자에 45억 용역 줘 '과장'』 제하의 기사에서 “익산시는 특히,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고상의 결과발표 기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세 번씩이나 연기해 특정업체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익산시는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수행업체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고상의 결과발표 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와 결탁한 의혹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익산시 청소행정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정정-(1) 지난 6월 21일자 『특별기획-충체적부실에 빠진 익산시』 제목으로 “민선4기 출범 이후 1년 만에 익산시를 빠져나간 인구가 9301명으로(월 평균 770명)으로 민선3기 4년 동안 인구 감소규모의 2.2배에 달한다”고 보도했으나, 사실확인결과, 이는 외국인 숫자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인구 감소 규모는 월 평균 259명으로 민선3기 인

구감소규모의 0.3배인 것으로 밝혀져 정정 합니다.

(2) 소통뉴스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한수 시장은 소각장업체 최종선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 동일한 내용으로 김제시가 2006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승인’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열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소한 기관위임사무는 아니므로 관련조례의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론-익산시는 소통뉴스가 2007년 4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익산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매립장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익산시가 부송동에 설치중인 쓰레기 소각로는 압축포장 폐기물을 기계적으로 해체하므로 소각이 가능하고,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은 법적기준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부송동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이전과 비교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2) 이한수 시장의 친동생은 남산에 거주하지 않으며, 매립장 선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시장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폐석산 업자와 결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익산시는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기술용역’ 업체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특정 업체와 결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소통뉴스 인터넷사이트(www.sotongnews.com) 메인 초기화면에 상단부에 ‘익산시 청소행정에 관한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 글자체로 2007년 7월 23일 09:00부터 24시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

• 익산시청과 이한수 시장은 이 건 조정신청 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 소통뉴스는 향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의 익

산시의 행정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소통뉴스 : 『익산시 청소행정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3일자 메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영문화개선사업이 오히려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김 장 수)
피신청인 : 주간동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주간동아 : 『대한민국 약군』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3일자 24면)

내 용 : (전략)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병영문화 개선사업은 인명 사고 건수에서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5년 전반기의 전국 군부대 사고 건수가 70건이었는데,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전반기엔 8건이 줄어 62건이 됐다. 그러나 4월 총기 사건, 3월 KF-16 전투기 추락사건 등 군 기강 해이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사고는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다.

국방부는 2006년 전반기 병영문화 개선사항을 점검한 뒤 육·해·공·군에서 12개 부대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공군 17전투비행단은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공군의 여러 부대가 이 부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견학을 다녀갔다고 한다. 그래서 기자가 직접 가보았다.

17전투비행단은 기수별, 계급별로 생활관을 사용한다. 같은 단위부대 이등병과 병장이 일과 후엔 마주칠 일이 없는 셈이다. 생활관 분위기는 옛 군대의 내무반과 비교하면 학교 기숙사에 오히려 가깝다. 생활관에서 한방을 쓰는 병사들은 단위부대

가 다르면 계급과 무관하게 서로 ‘아저씨’라고 부른다. 일병과 상병이 서로에게 반말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 부대가 기자에게 건네준 보도자료 일부를 소개한다.

“생활관에 들어오니 동기들이 따뜻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준다.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들을 얘기하니 어느새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다. 샤워를 하고 도서관에 가서 얼마 남지 않은 자격증 시험에 대비해 열심히 공부했다. 얼마 전까지는 저녁 시간에 미술동아리 친구들과 연습을 열심히 하고, 대민 봉사활동도 나갔다. 요즘은 시험이 코앞이라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저녁 점호도 간단히 인원보고만 하는 자율점호여서 저녁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내일은 신나는 토요일이다. 생활관 친구들과 부대 명물인 호숫가에 가서 잠깐 동안 낚시를 했다. 오늘밤에도 월척을 낚는 꿈을 꾸어야지...”

‘군대맞아?’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자식을 군에 보내야 할 부모 처지에선 ‘꿈의 군대’다. 병사들의 생각은 계급에 따라 엇갈렸다. ‘본전생각’ 때문인지 고참 병사들 중에는 “소속감이 없어졌다” “공동체 의식이 없다” “결속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신참 병사들은 하나같이 “편하다” “좋다”면서 웃었다. 한 일병은 “‘꿈의 17전투비행단’이라고 적으면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592호 ‘대한민국 약군’에 대한 국방부 입장
- 내 용 : 본지 592호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주간동아 592호에 게재한 “대한민국 약군” 제하의 보도는 21세기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과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취재기자 개인의 10여 년 전 군생활과 비교하면서 현재의 병영생활 모습을 나약하고 군기없는 군대로만 표현한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군 내에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폐습이 있었고, 이는 장병들간에 불신과 갈등, 나아가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군이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게,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에 맞게 제도와 문화를 바꿈으로써 활기차고 신명나는 군생활을 조성하고, 나아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노력들이 ‘편히 쉬는 군대’로만 묘사될 수 있는지, 그래서 약군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귀사의 취재요청에 최선을 다해 지원했던 군으

로서는 신의 차원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밝힙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온존했던 과거의 군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호존중과 배려를 가치덕목으로 내걸고 대대적으로 병영문화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해 ‘약군’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을 회피하려는 풍조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군대, 젊은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군대문화, 그리하여 화합·단결된 가운데 전투력을 배가시켜 나가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군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군은 21세기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장병들에게 꿈과 목표를 부여하고 인간존중의 병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소유의 도곡동 땅이 매각된 이유가 인척인 이명박 후보 형제의 매입요구 때문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10년 새 차익 247억 ... 이명박 씨, 처남·처형에 판 회사 땅 물랐을까』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5일자 3면)

내 용 :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 씨와 친형 이○○ 씨가 공동

으로 소유했다가 ○○○개발(현 ○○○건설)에 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과 이명박 후보의 연관성이 일부 드러났다. 고리는 △△이다. 김○○·이○○ 씨가 문제의 땅 가운데 일부를 △△건설로부터 사들였으며, 당시 △△건설 사장은 이명박 후보였다.

의문1 : 회사 땅이 처남과 친형에게 팔린 사실을 정말 몰랐나? = 김○○·이○○ 씨가 △△건설로부터 도곡동 땅을 매입한 시점은 1985년 6월이다. 이명박 후보의 △△건설 사장 재임 기간은 77-88년이다. 이 후보가 사장으로 있을 때 처남과 친형에게 회사 땅 일부가 매각된 셈이다.

김○○ 씨는 “당시 △△건설 대리급 정도 되는 사람과 교섭해 내부 결제를 받아 (그 땅을) 사들

였다. 지하철 환기구 옆에 조그맣게 남은 땅(93평) 이어서 이 후보에게는 그때 말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 후보 캠프가 전했다. 이 후보는 땅 매매 전과 매매 이후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다.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강남 노른자위 땅이 친형과 처남에게 팔린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중략)

○○○개발이 문제의 땅을 살 당시 ○○○ 본사가 있는 포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친형인 이○○ 의원이었다. 이명박 후보도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말대로, 만약 이 후보가 땅 매입을 요구했다면 ○○○로선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였던 셈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도곡동 땅 매각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5일자 정치면 『이

명박 씨, 처남·처형에 판 회사땅 몰랐을까』 제하의 기사에서 “김○○ 씨가 △△건설로부터 도곡동 땅을 매입한 시점은 1985년 6월이다. ○○○ 개발은 왜 이땅을 사들였나, ○○○ 개발이 문제의 땅을 살 당시 ○○○본사가 있는 포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친형인 이○○ 의원이었다. 이명박 후보도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말대로 만약 이 후보가 땅 매입을 요구했다면 ○○○로선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였던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인 김○○ 씨가 매형인 이명박 후보에게 도곡동 땅을 ○○○개발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전라남도가 ‘전남 F1 대회’ 사전 타당성에 관한 중간용역 보고서 상의 적자예상 결과를 흑자로 둔갑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라남도 (도지사 박 준 영)
피신청인 : 광주MBC-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광주MBC-TV : (1)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7년 6월 20일 07:30)

내 용 : >앵커 : 그렇다면 이렇게 허점이 많은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됐을까요?

광주 MBC가 그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 2006년 1월 있었던 전남 F1 중간용역 보고회 자리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해 45억 원 적자, 7년 동안 평균 7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인 최종 보고회에서 이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F1 대회 등으로 첫 해 70억 흑자, 7년 평균 158억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중간용역보고서와 최종용역보고서입니다.

중간보고서는 F1 대회의 수익만을 분석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는 F1 대회와 일반경주대회의 수익까지를 모두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C.G)

▷연구원 : 경주장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다라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전남도청에서는 그렇게 돼 버리면 이슈화가 안 되잖아요. 묻혀져 버리니까 그래서 F1이란 쪽으로 갔는데...

▷기자 : 전라남도가 용역결과를 눈속임한 셈입니다.

취재진은 용역작업을 수행한 연구기관들 중 하나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를 찾아가 용역에 이름을 올린 연구진들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기자 : 인터넷에 다 있는 자료들 아닌가요? 전문적인 자료라 할 수 있어요?

▷연구원 : 그런 자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자 : 단순히 자료 취합만 했다는거네요?

▷연구원 : 그렇죠. 지금 촬영하고 인터뷰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돌아가는 게 좋을거예요.

▷기자 :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용역을 맡길 만한 F1 전문가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후략)

(2) 「보도특집」 프로그램 (2007년 6월 30일 07:30)

내 용 : (전략) ▷김○○ : 보셨다시피, 전세계 F1 가운데 가장 흥행성적이 좋은 호주, 독일조차 F1대회로 돈을 벌고 있진 못한 것 같음. 돈버는 것은 오직 FOA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고 F1대회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궁금. 지금 전라남도도 이런 상황을 알면 선뜻 F1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김□□ : 전남도도 최소한 F1으로 돈을 벌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음. 지난 FOA와 F1 계약을 맺기 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였음. 2006년 1월 5일 F1 중간용역보고회 자리임. 용역을 맡았던 체육과학연구원원 개 최 첫해부터 45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의견을 냄. 적자는 이어져 7년 계약기간 동안 흑자는 한번도 없었고 평균 71억 원 적자를 예상함. 경주장 공사비 2000억 원이 빠져 있는데도 이 정도. 한 달 반이 지나서 2006년 2월 21일 최종 용역보고서 발표. 그런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음. 최종보고회 날짜가 원래 2006년 2월 15일이었는데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 확정

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힘. 닷새 만에 갑자기 최종보고회를 가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옴. 첫 대회 45억 원 적자부분이 70억 원 흑자로 뒤집어짐. 이후 흑자로 둔갑해 7년 평균 연간 158억 원의 흑자로 돌아섬. 용역기관이 바뀐 것도 아니고 수익이 바뀔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전라남도가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모두 3곳. 이 중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는 용역에 참여해서는 안될 곳. 한국 자동차 경주협회장 정○○씨가 바로 전남 F1프로모터사인 MBH의 사장이기 때문. MBH가 전라남도과 함께 벌이고 있는 타당성 검토를 MBH사장이 나서서 한 것임.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F1 타당성조사 적자가 흑자로 둔갑」,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27일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및 6월 30일 07:30 「위험한 질주 전남 F1」 특집방송에서 전라남도과 ○○○가 개입하여 적자보고서를 흑자보고서로 둔갑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본 방송이 중간보고의 “F1 대회만 분석한 결과”와 최종보고의 “F1 대회와 기타 국내의 대회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잘못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여, 마치 전라남도과가 개입하여 용역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사는 지난 6월 20일 07:30에 방송한 「뉴스투데이」 및 6월 30일 07:30 「위험한 질주 전남 F1 특집 방송」에서 전라남도과가 ‘전남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사전 타당성에 관한 종전의 중간용역보고서상 적자예상 결과를 흑자로 둔갑시켰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적자보고서가 흑자보고서로 둔갑되었다고 보도하게 된 것은 중간보고서 중 F1 대회 사업수지의 수치와 F1 대회, 기타 일반대

회 및 기타 사업의 수치를 통합 분석한 최종보고서의 수치를 잘못 비교한 결과로 인한 것이고, 이는 최종보고서에 F1 대회만을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F1 대회, 기타 일반대회 및 기타사업은 중간보고서에서도 흑자로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어, 전라남도도 개입해 최종보고서를 흑자로 둔갑시킨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광주MBC-TV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말미에 2007

년 7월 18일까지 방송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주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7년 7월 16일 16:28)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동일 상권내에 같은 업종의 가맹점을 입점시켜 기존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2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프랜차이즈 (대표이사 신 ○ ○)

피신청인 : 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6.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이데일리 : 『동일 본사 다브랜드간 영업권 분쟁』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1일자 종합면)

내 용 : (전략)

섬○○과 취○는 ‘해산물’을 주 재료로 하는 주점으로 본사가 ○○프랜차이즈이다. 섬○○은 대형매장에서 활어회 중심의 해산물 퓨전메뉴를 판매하는 반면, 취○는 소형 매장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선어회와 퓨전메뉴를 판매한다.

둘 다 회를 주요 메뉴로 하는데다 볶음류 등 기타 메뉴도 비슷하다보니 매장 규모와 음식 가격대, 회 종류에서만 차이가 나고 있다. 가격대가 15~20% 가량 저렴하다는 것이 취○의 경쟁력이지만, 활어가 아닌 선어회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섬○○과 경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김 씨는 “브랜드 성격이 비슷하면 동일 상권에 들어올 때 이미 입점해있는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며, “담당 수퍼○○○도 인근에 섬○○이 오픈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비슷한 상황의 점주들과 모여 본사에 항의도 있지만 브랜드 콘셉트와 고객층이 달라 영향이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본사인 ○○프랜차이즈의 이○○ 본부는 “연신내점은 가맹계약 당시 동일 상권에 입점을 허락하는 사전양해각서를 쓴 가맹점이며, 섬○○ 점포와는 실제 360m 정도 떨어져있어 같은 상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동일 본사 다브랜드 간 영업권 분쟁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1일자 『동일 본사 다브랜드간 영업권 분쟁』 제하의 기사에서 “섬○○과 취○를 한 상권에 입점시킬 경우, 규모와 선호도에서 열세인 취○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의 예를 들면서, 연신내점의 매출, 평수, 입점위치, 로열티 납부 현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프랜차이즈는 현행법으로는 같은 회사에서 다른 브랜드가 동일 상권에 입점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상도덕적인 문제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취○” 가맹점의 매출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 섬○○

사업부와 협의하여 섬〇〇가 입점예정인 상권에 취〇가 입점할 경우에는 사전 양해각서를 받아야 입점이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회사 내부적으로 서울지역 1개와 부산지역 1개의 가맹점에서 이런 상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어 서울 본부장과 부산 본부장이 사직을 하는 인사조치까지 내려진 바 있으며, 취〇 가맹업주에게 사전양해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거리를 두고 입점하기로 섬〇〇 사업부와 서로 조

율이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 보도이며, 보도 중 신청인의 입장이 게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30

청 구 명 : 정정보구

신 청 인 : (주)〇〇산업 (대표이사 박 〇 〇)

피신청인 : 여수MBC-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여수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7월 26일 21:30)

내 용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전남동부권 뉴스입니다.

〇〇〇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토사를 납품한 중소기업체 사장이 35억 원을 횡령한데 이어 또다시 같은 현장에서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되는 등 비자금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역 기여도 측면에서도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는 대기업인 만큼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절실히 보입니다. 취〇〇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〇〇〇가 새로 공장을 지을 때마다 한식구인 △△건설이 공사를 맡으면서 이번 같은 비자금 문제가 시작됩니다. 때문에 검찰에 접수된 쌍방고소사건에는 △△건설과 〇〇〇 임직원들의

이름이 수두룩합니다. 검찰은 이미 십여 명을 소환 조사했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해 사건 자체를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말 △△비자금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관성상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와 사법처리가 비자금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는 힘듭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유령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특정 기업을 통하지 않고는 △△건설 현장에 흠을 넣을 수 없다는 말이 나돌아 특혜와 유착 의혹과 함께 비자금 조성은 당연시됐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비자금장부에 경찰과 검찰 관계자 기자들의 이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은 돈의 흐름이 만연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〇〇〇 비자금 10억 조성 사실과 달라
- 내 용 : 여수MBC-TV는 지난 6월 26일 「뉴스데스크」 시간에 〇〇〇기업의 특정하청업체와의 특혜건을 보도하면서 하청업체가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검찰, 경찰, 기자들에게 로비하였고, 비자금 장부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초기수사단계이며, 비자금 10억 원 조성 및 검찰, 경찰, 기자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신청인이 군의회 직원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위원회 직원 격려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결 정 문

보도내용

서울일보 : 『진도 현직 군의원 ‘기부행위’ 논란』 제
하의 기사 (2007년 4월 5일자 사회면)

내 용 : 현직 군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인 군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의장이나 관계자와 사전에 협
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쇠고기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선거법상에 기부행위 논란과 파문
이 예상되고 있다.

진도군의회 A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진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의사와 직원 14명에게 자
신의 친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B식당에서 쇠고기
등심 2근씩(1근당 2만 5천 원) 28근, 70만 원어치
를 배달시켜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의원은 사전에 의회 사무과 담당
과장이나 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쇠고기를 제공한 이후 쇠고기 값은 나중에 식당 명
의로 영수증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진도 현직 군의원 ‘기부행위’ 논란 사실
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5일자 사회면에 『진도
현직 군의원 ‘기부행위’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현직
군의원이 지역구내 공무원 등에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진도군 의회에서 예산특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일보사업단(서울일보)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3-1

대표이사 김 기 수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1주일 이내에(토요일 제외) <별지>보도문을 게재
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소제목 ‘지역구내 공
무원 등에 쇠고기 제공 물의. 의장 사전협의 없
어... 직권남용 도마위’와 같은 활자크기의 고딕체
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
로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
터 1주일 이내에 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
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13.

<별 지>

• 제 목 : 진도군의원 기부행위 논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4월 5일자 사회면 「진도 현직 군

의원 ‘기부행위’ 논란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에서 현직 A모 군의원이 군의회 직원들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진도군 의회에서 예산특별위원회 직원 격려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서울일보 : 『진도 군의원 ‘기부행위’ 논란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0일자 19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내용 참조>



신청인이 군의회 직원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내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9.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내외일보 : 『현직 군의원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5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중재24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중재24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진도군의회 기부행위 논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4월 5일자 호남면 『현직군의원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현직 A모 군의원이 군의회 직원들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진도군 의회에서 예산특별위원회 직원 격려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내외일보> 7월 23일자 호남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소재목 ‘군의회 사무과 직원 14명에게 쇠고기 돌려, 의장 등과 사전협의 없이 제공후 계산 요구’와 같은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을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외일보 : 『현직 군의원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논란’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3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살인사건 피해자의 가족인 신청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강원조정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2인

피신청인 : 춘천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춘천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5월 22일 21:30)

내 용 : ▷앵커 : 오늘 춘천에서는 30대 남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를 맞아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용의자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춘천시 남산면 외딴 곳에 위치한 한 음식점.

현관입구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가게 안에서 식당 주인 35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는 둔기로 머리를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 씨의 생존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어젯밤 11시 50분쯤.

가평에 있는 부인과 통화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던 손님이 숨진 김 씨를 발견하기까지 12시간 사이에 범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는 지난 5월 22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모자이크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하여 유가족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신청인이 군의회 직원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4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시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9.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4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보도내용

시대일보 : 『기부행위 논란 “도마 위”』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5일자 지역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43의 보도내용 참조〉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보도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의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군의회 직원에게 쇠고기를 제공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진도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9.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2007서울조정24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진도뉴스 : 『군의원, 공무원에게 ‘쇠고기 제공’ 선거
법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5일
자 지역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4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는 수용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의 아버지가 뇌졸중 환자인 어머니를 돌보다가 숨진 지 사흘만에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3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MBC-TV : 「930뉴스」 프로그램 (2007년 6월 12일
09:30)

내 용 : ▷앵커 : 한 80대 노인이 자신의 아파트
욕조에서 숨진 뒤 욕조 속에서 그대로 방치됐습니
다.

아파트 안에는 남편의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어제 오전 10시쯤 이곳에 사는 84살 김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는 욕조에 머리가 잠겨 있는 상
태였습니다.

▷기자 : 당시 집안에는 숨진 김 씨의 부인이 방

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욕봉사원이 발견할 때까지 김 씨는 2~3
일 동안이나 숨진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움직일 수조차 없
었던 부인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
다.

▷기자 : 숨진 김 씨는 지난 97년부터 식물인간이
돼버린 부인의 병수발을 줄곧 혼자서 해 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목욕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것
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습
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80대 노인 시신 방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2일 「930뉴스」 시
간에 식물인간인 부인을 10년 동안 줄곧 혼자 병
수발하던 80대 노인이 숨진지 2~3일 동안 방치되
어 있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시신은 하루 지난 뒤에 발
견되었으며, 부인은 식물인간이 아니라 중풍 환자
였을 뿐이며, 부인의 병수발은 노인 외에 유가족도
함께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4,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이 ○ ○

2. 김 ○ ○

3. 김 △ △

4. 김 □ □

신청인 1, 3, 4의 조정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930뉴스」 시간에 별지의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하고, 본문내용은 뉴스 진행자가 낭독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별지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 기사를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원을 2007년 8월 8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5.

〈별 지〉

• 제 목 : “80대 노인 시신 사흘 방치” 관련 유가족 반론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2일 「930뉴스」 시간에 “80대 노인 시신, 부인 옆 사흘 방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부인을 10년 동안 혼자 병수발 하던 80대 노인이 숨진 지 사흘 만에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시신이 하루 지난 뒤에 발견되었고, 부인은 식물인간이 아니라 중풍 환자였을 뿐이며, 부인의 병수발은 노인 외에 유가족도 함께 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MBC-TV : 「930뉴스」 프로그램 (2007년 7월 31일 09:30)

내 용 : 〈결정문의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 학교가 동일 학군내의 타 고교에서 불법적으로 전학생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등학교 (교장 이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성적조작’ ○○고, 이번엔 ‘전학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3일자 사회면)

내 용 : 서울 ○○고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내신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일 학군내 전학’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뒤 2개월여 ‘○○고 전학비리’ 의혹에 관계된 교사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탐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이번 ‘전학비리’ 의혹에 불법적인 방법이 개입됐는지, 뇌물공여·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서울시 교육청이 정한 ‘전·편입학 시행지침’에 ‘동일 학군 내 전학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전학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2005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를 졸업한 A 학생은 같은 지역에 있는 □□고에 배정됐다. 그러나 A 학생은 입학한 지 보름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갔다. 같은 해 3월 18일, A 학생이 옮겨간 학교는 같은 학군의 ○○고다. 불과 16일 만에 이뤄진 전학이다. (중략)

그렇다면 A 학생의 전학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일단 A 군은 비장애인이다. 따라서 근거리 통학대상에는 포함될 수 없다.

2005년 3월 당시, A 학생의 첫 번째 담임을 맡았던 □□고 교사 B 씨는 “A 군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전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한 뒤 입을 닫았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 는 철저히 함구했다.

그러나 □□고의 한 관계자는 “A 군의 전학이 학교장 추천으로 이뤄졌으며, 이미 ○○고에서도 □□고 교장 추천서를 팩스로 보낸 바 있다”고 확인해줬다. 학교장이 어떤 내용으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 ‘전학비리’ 의혹은 미확인 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3일 사회면에 『‘성적조작’ ○○고, 이번엔 ‘전학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2005년 2월경,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입학한지 보름만에 ○○고에 전학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마치 ○○고등

학교 전학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고등학교는 위 학생이 재학중이던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법령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전학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전·편입학 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전학하는 학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편입학은 ○○고등학교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전학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고, ‘전학비리’ 의혹에 대한 반론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3일자 사회면에 ‘성적조작’ ○○고, 이번엔 ‘전학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3월경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입학한 지 보름 만에 ○○고등학교로 전학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관하여 경기도등학교의 전학 비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고등학교 측은 전,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제73조 제5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89조 2항에 의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배정은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전·편입학으로써 학생을 받아들이는 학교는 전혀 그에 관한 권한이나 관련성을 가질 수 없고 교육감이 배정하면 이를 수용하여 학생의 전·편입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학생에 관한 ‘전학비리’ 여부에 관여하는 ○○고등학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 메인화면 톱기사 하단 <잉잉1>란의 다섯 번째 기사로 2007년 7월 19일 09시부터 12시간 동안 게재하되, 기사최종면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내용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위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 기사를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반론문-○○고 ‘전학비리’ 의혹 보도
에 대해』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9
일자 메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안경점이 명품수입안경테를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대한안경사협회 (회장 윤 호 찬)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2007년 5월 11일 22:20)

내 용 : (전략)

▷소비자 : 안경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건
지...

▷수입업자 : (안경점에는) 7만 5천 원에 드립니
다. 장당 백화점은 60만 원인데 (안경점에서는) 45
만 원만 받으셔도 돼요.

‘우리가 만든 안경테를 독일에 수출했다 그런데
한국사람이 그 안경을(다시)수입을 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메이드 인 저머니(독일)라고
적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피디 : 어릴 적부터 안경을 착용했다는 이○○
씨. 얼마 전 안경사가 권유한 고가의 수입안경테를
구입했습니다.

▷이모 씨 : 이○○ : 안경점에서는 구매할 때는
조금 더 많이 깎아줬다고 했는데 30만 원 조금 더
넘었던 것 같아요.

▷피디 : 고민 끝에 구입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격에 대한 의심은 남아 있습니다.

▷이모 씨 : 농산물 같은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
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산지에서 판매를 하면 어느
정도이고 그게 어떤 큰 마트에서는 어느 정도이고

동네 슈퍼에서는 어느 정도이고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유통경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난
다는 것을 아는데, 안경은 저희가(유통마진율) 전
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의구
심이 많죠.

▷피디 : 수입안경테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우
리는 강남의 한 안경점을 찾았습니다. 수입안경테
전문매장인 이곳에서는 주로 고가의 안경테만 판
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직원 : 45만 원, 이걸 45만 원, 이걸 48만 원.

▷피디 : 티타늄 테는 얼마예요.

▷직원 : 티타늄 테는 조금 더 비싸죠. 한 85만 원
정도.

▷피디 : 고가의 수입안경테는 일반 안경점에서
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입안경테는 매출
의 대부분을 차지해 일반안경점에서도 효자제품입
니다. 눈에 띄는 디자인과 화려한 색상으로 진열장
을 점령한 고가의 수입안경테 국산안경테보다
5~6배 비싼 높은 가격에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안경점에서는 수입안경테 없이는 운
영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직원 : 아무래도 브랜드가 차지하는 그런... 금
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매장의 이미지를 또 차지하
는 것이기 때문에 안 팔 수가 없지요. (중략)

▷피디 : 그렇다면 가격만큼 품질도 좋을까, 수입
안경테 2개의 품질검사를 안경전문가에게 의뢰해
보았습니다. 안경전문가는 이러한 제품들이 품질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안경학과 교수 : (A브랜드) 이러한 제품을 국
산으로 판매가 될 경우 약 1/3가격으로 충분히 구
매할 수 있고, (B브랜드) 이 제품의 경우 우리나
라 기술로 이 제품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만약에 국산으로 판매될 경우 이 제품은 10만 원 이하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피디 : 우리는 안경공장이 밀집해 있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국내 안경제조업체의 8~90퍼센트가 모여있는 안경산업단지에서는 대부분의 안경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티타늄안경전문 제조업체인 이 공장 이곳 역시 생산되는 제품 전량이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발견한 닥익은 안경테, 깔끔한 디자인의 이 안경테는 고가의 수입안경점에서 본 제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직원 : 저희도 좀 곤란한데...왜냐하면...저 이거 하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피디 : 직원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상황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안경산업단지 내에서 큰 규모에 속하는 이 공장에서도 안경테를 전량 수출합니다. 이들 안경테 역시 눈에 익은 제품들입니다. 수출한 것 중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직원 : 당연히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체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중략)

▷피디 : 디자인까지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제작의 첫 단계인 디자인 개발에서부터 마지막 포장에 이르기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완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역수입되는 안경테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 할까.

대구에서 봤던 제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안경점 직원 : 이거요? 누가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요즘은 원산지를 밝히지 않으면 굉장히 큰 벌금을 내기 때문에...

▷피디 : 결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수입업체와 안경점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경을 비싸게 주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수입안경테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11일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안경원들이 명품 수입안경테를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수입안경테의 품질이 가격에 비하여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내에서 제조되어 역수입되고 있으며, 안경테는 그 소재나 디자인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는

우리나라는 안경테의 가격에 안경테 자체 가격 외에 검안비 및 조제비를 감안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납품받은 안경테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처럼 도매가와 소매가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도매가와 소매가를 비교하여 방송이 된 사례는 소수로서 평균적인 사례로는 볼 수 없고,

수입안경테의 품질이 가격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평가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안경테는 그 소재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디자인이 규격화되어 있다는 보도는 방송내용과 관련이 없고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보도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기획특집으로 보도한 ‘만화’ 관련 기사가 엉터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8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1),
손배청구 (신청인 2)

신 청 인 : 1. (주)독립신문사 (대표이사 금 창 태)

2. 손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증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0.

처리결과 : 각 합의 (신청인 1의 청구)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 2의 청구)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짜통’ <시사저널>의 엉터리 기사들』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9일 사회면)

내 용 : 나는 데뷔 10년차 만화가다. 이번 주에 나온 <시사저널> 920호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만화에 빠지다’는 오해와 왜곡·무지로 얼룩진 ‘잘못된’ 기사다.

만화가계 사람이면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준과 함량이 모두 미달이다. 특히 주요 꼭지를 담당한 최○○ 프리랜서 기자는 만화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갖추지 않고 기사를 썼음이 분명하다.

다음은 최 기자가 쓴 ‘태권V에 힘내고, 돌리에 웃고’라는 기사의 몇 구절이다.

“부활한 <태권V>는 최단 기간 최다 관객(70만 명)을 동원해 한국 만화의 역사를 다시 썼다. (중략) 1998년대 인기 만화영화 <우뢰매>를 잊지 못하는 성인 마니아들은 <우뢰매>사이트(www.wooroemae.com)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태권V>는 ‘만화영화’이지 ‘만화’가 아니다. 만화는 출판 분야고 만화영화는 영상 분야다. 후반 제작 과정이 판이하게 다르며 유통 과정은 말할 것도 없다. <태권V>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 만화영화 (흥행의) 역사를 다시 썼을 뿐이다. 최 기자는 만화와 만화영화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우뢰매>는 실사에 만화를 합성한 ‘영화’임에도 억지로 만화영화에 구겨 넣어 성인들의 만화 아닌 만화(?)에 대한 추억을 자극한다.

이어지는 최 기자의 ‘시대별로 본 한국 만화 발자취’라는 기사는 무지를 넘어 왜곡까지 일삼고 있다. 만화영화사를 만화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그 만화영화사마저 자의적 기사로 일관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시사저널>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매체는 지난 6월 9일자 문화면 『‘짜통’ <시사저널>의 엉터리 기사들』 제목의 기사에서 <시사저널>과 최○○ 씨, 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자의적 판단과 모욕적 표현을 통해 <시사저널>과 최○○ 씨, 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 1 : 50,000,000원

신청인 2 : 1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시사저널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매체는 지난 6월 9일자 『‘짜통’ <시사저널>의 엉터리 기사들』 제하의 기사에서 제920호 시사저널이 커버스토리로 ‘만화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만화’ 기획 특집을 선보였으나 대부분의 기사가 오해와 무지, 잘못된 정보 투성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은 해당 기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관점이 다른 내용을 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매도한 글이며, 합리적 비판이라기보다 감정적 비난에 가까운 글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매체는 해당 기사의 표현이 일부 절제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시사저널과 프리랜서 기자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8월 2일까지 위 보도문 제목을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의 초기화면 중앙 중단에 1일 동안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

니한다.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 2의 청구에 대한 피신청인 주장

오마이뉴스 : 『시사저널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8일자 메인면)

사실을 근거로 비판한 ‘비평성’ 기사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모 장로회의 총회 재판국에서 이중재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4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13인

피신청인 : 목회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목회자신문 : 『총회재판국 ‘이중재판’ 도마 위에』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2일자 11면)

내 용 :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중복재판이라는 항의가 일고 있어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또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당사자가 뇌졸중으로 입원 중에 있는 목사를 유죄 판결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2월 15일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평온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서○○ 목사(부산 ○○교회)를 시무정지 6개월에 처했다.

소송 당사자인 서 목사는 이보다 앞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상태였다. 총회 헌법 제3장 권징 제4조 1항에서는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있지만 서 목사의 경우에는 자기방어 권리를 갖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당사자가 방어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해당노회인 ○○○노회는 이 소송에 대해서 지난 해 8월

각하 판결을 내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03년에 서 목사를 상대로 이단성 시비 및 교회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고소로 이미 소송이 진행된 바 있었다. 당시 총회 재판국은 서 목사의 이단성은 인정하지 않고 교회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 시무정지 6개월을 판결했다. 이 사건 5년여가 지난 후에 같은 당사자가 사실상 같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총회재판국은 또 다시 시무정지 6개월을 처벌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총회재판국 ‘이중재판’ 아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12일자 11면 『총회재판국 ‘이중재판’ 도마위에』 제하의 기사에서 ○○○○○장로회 총회재판국이 부산노회 서○○ 목사에게 대하여 2003년에 이단성문제로 재판을 하여 시무정지 6개월을 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상 같은 문제로 다시 시무정지 6개월을 처벌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중복재판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서목사는 2003년에 시무정지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사이비이단문제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것이며, 2007년 2월15일 시무정지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성경과 헌법 및 제 규정위반, 부산지방법원 재판에서의 위증죄로 기소되어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시무정지 6개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서○○ 목사가 입원 중에 있음에도 당사자

소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사건은 부산○노회 재판국이 함께 고소해 기소된 김○○ 장로와 김△△ 장로를 소환하여 재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총회재판국은 헌법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로 판결할 수 있으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상고인(원고) 차○○과 부산 ○노회 기소위원장과 재판국장, 그리고 공동피고인 김○○, 김△△을 총회재판에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한 후 판결한 것으로 재판절차에 법적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7년 8월 4일까지 신청인들 중 1인이 쓴 칼럼을 목회자신문에 게재하되, 그 분량과 형식은 양 당사자간 협의에 따르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 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다른 청구를 모두 취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목회자신문 : 『총회재판국 때리기』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8일자 9면)

내 용 : “이단성 문제로 책벌받은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은 것은 이중재판이 아니다.”

지난 7월 18일,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현직 판사인 언론중재위원장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 총회재판국 판결을 이중재판이나 중복재판이니 비판한 언론보도가 잘못된 보도였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패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비난기사로 낸 언론보도는 아직도 횡당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목회자신문은 7월 21일자 사설에서 또 다시 총회재판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논거를 보면 아예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목회자 신문이 재판

을 하는 듯 하다.

이는 언론의 기본 자세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목회자신문은 지난 5월 12일자 보도에 총회재판국이중재판이라는 잘못된 보도를 하고 불과 보름 후에 사건 당사자(패소인)인 K 장로의 칼럼을 한 달 동안에 세 번이나 게재하였다. 이것만으로도 목회자신문은 보도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재판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승자는 ‘당연한 결정이다, 법의 승리다’라고 외치고 패자는 ‘억울하다, 불법재판이다’라고 강변한다.

그래서 헌법은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부여하는 상고심과 재심, 특별재심제도를 두고 있다. 누구든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한 법 절차를 외면하고 집단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이나 소위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재판국을 비난하며 진실을 오도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도 아니고 사실상 또 다른 범죄행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주장을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보도가 아닌 홍보요 광고로 언론의 사명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달 이단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노회를 등에 업고 언론을 이용해서 총회를 비난하다가 결국 노회장이 공개사과(2003년 9월 19일 기독교보, 목회자신문, 장로신문)까지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총회재판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비난의 목적은 총회특별재판국에 청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특별재심청구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속된 말로 ‘총회재판국을 때리면 유리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총대들에게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100% 무오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법을 전공한 법관들도 때로는 오심을 하는데 비전문가인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재판국이 완벽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언론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여론을 오도하려 하고 언론이 이해관계에 얽매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

고 편향된 보도를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신문의 재판 관련사

건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이 ○ ○ 목사(○○○○○장로회 총회재판국원) □

직장상사에게 살해된 신청인들의 딸이 가해자와 내연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외 1인

피신청인 : 일요시사

증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1.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일요시사 : 『‘성희룡이 내연관계로 둔갑하다니...’』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일자 14면)

내 용 : (전략) 당시 공동 변호를 맡았던 최모 변호사는 “회사 상대로 불법 행위 및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 기각된 후 인지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또 당시 수입료를 돌려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유 씨와 실랑이도 있었다는 것. 최 변호사가 “내가 당신 딸 죽였느냐?”라고 묻자 유 씨는 임신한 최 씨에게 “너는 어머니 될 자격도 없다”며 옆자리에 있던 음료수병을 던졌다고 한다. “자기들 끼리 저녁을 먹더라. 나는 늦은 시간까지 밥도 못먹고 기다렸다” 최 씨는 유 씨가 던진 병에 맞았다며 찰과상이 난 발목을 찍어 유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또 어머니 유 씨는 “담당 형사들이 성희롱 부분을 수사하지도 않고 당시 사건 브리핑 자료에 ‘내연관계 살인 사건’으로 공지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 쓴 9개 일간지를 상대로도 정정보도를 청구했다”며 죽은 딸의 오명에 억울해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사 살인사건전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7일자 『○○○○○공사

살인사건 전모』 제하의 기사에서 직장상사로부터 살해된 황 모씨의 어머니 유모 씨가 수입료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임신한 최 변호사에게 음료수병을 던져 최 변호사가 다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모 씨는 최 변호사가 “우리가 황모 씨를 죽였어요?” 라고 소리를 질러 화가 나서 배지밀병을 바닥에 던졌으며, 최 변호사는 다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측 노사협력팀 관계자와 법무팀의 말을 빌려 황모 씨는 직장상사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과 판결문에 따르면 황모 씨와 직장상사는 내연관계가 아니라, 황모 씨가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스토킹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원 조정대상기사(지난 4월 1일자 14면 ‘성희룡이 내연관계로 둔갑하다니...’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유족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 등을 위주로 보도하되, 직장상사에 의해 살해된 황모 씨가 직장상사와 내연관계라는 회사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내연관계가 아닌 성희롱 피해자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8월 9일까지 일요시사 14면 이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중간제목(“가해자 성희롱 경찰 직무유기”)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 측 편집국장은 다음 내용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하도록 한다.

• 내 용 : 일요시사에서는 유가족의 아픔을 대변하고 여론을 환기하고자 쓴 기사로 인해 유족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시사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9일자 23면)

내 용 : 지난 4월 1일자 <일요시사> 14면·15면에 대한송유관공사 관련 ‘성희룡이 내연관계로 둔갑하다니...’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직장 상사에 의해 살해된 황모 씨가 직장 상사와 내연의 관계라는 회사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닌 성희룡 피해자였으므로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일요시사>는 망자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대변하고 사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쓴 기사로 인해 유족들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신청인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시민을 범법자 취급하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11

청 구 명 : 정정보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울산매일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울산매일 : 『마구잡이 범법자 취급 ... 시민 분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6일자 5면)

내 용 :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감지기에 단순 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범법자 취급해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을 일삼아 비난을 사고 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40분께 남구 신정2동파출소 앞에서 울산○○경찰서 소속 경찰과 의경 10여명이 벌이는 음주단속에서 음주감지기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A 씨는 양성반응을

보인 음주감지기를 보면서 순간 당황했지만 이후 단속 의경의 행동에 더욱 분노했다.

단속의경이 A 씨에게 다짜고짜 반말로 “차에서 내려”라고 명령했고 재확인을 요구하자 의경은 “술 먹은 주제에 말이 많아”라며 강제로 자동차 열쇠를 빼앗은 뒤 A 씨를 음주 측정 장소로 임의 동행했다. 10여분간 의경으로부터 반말과 욕설 등 인격적 모욕을 당한 A 씨는 결국 식사 직후 복용한 소화제(드링크)가 음주감지기에서 이상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6일자 사회면 『마구잡이 범법자 취급 ... 시민 분노』 제하의 기사중 단속의경이 다짜고짜 반말로 “술먹은 주제에 말이 많아”라며 강제로 차량열쇠를 빼앗는 등 반말과 욕설로 시민에게 인격적 모독을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추락사고가 난 리프트가 신청인 회사의 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7년 7월 10일 07:05)

내 용 : ▷앵커 : 차량정비업소 리프트에서 차가 기울어져 떨어지면서 정비사가 숨졌습니다.

노○○ 기자입니다.

▷기자 : 차량정비업소 리프트에 매달린 승합차가 한쪽으로 떨어져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인천시 중산동의 한 차량정비업소에서 정비중이던 차량이 추락해 사장 41살 김모 씨가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기자 : 경찰은 승합차가 균형이 맞지 않아 리

프트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리프트는 안전한 리프트입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10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기계제품이 추락사고가 난 기계처럼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인천광역시 소재 △△기계라는 회사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에 ○○기계제품은 안전한 기계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정정보도는 수용가능하나,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협회가 입법청원한 신문법 개정안이 포털사이트의 뉴스유통을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지 민 호)
피신청인 : 인터넷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취 하 (반론)

보도내용

인터넷미디어오늘 : 『‘포털 규제’ 법안들, 과녁 맞힐까』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5일자 메인면)

내 용 :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주축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검색서비스 사업자법 제정안과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의 뉴스유통을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략)

포털이 사이트를 현재처럼 운영하면 첫 페이지 화면의 뉴스 비율이 50% 미만으로 포털은 기타 인터넷간행물이 된다.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털은 뉴스유통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현행과 같은 검색서비스는 할 수 있다.

그런데 포털이 첫 화면 50% 이상을 뉴스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 검색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포털은 김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신문이 되더라도 뉴스서비스도 할 수 있고 검색서비스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신문법은 일간신문이 통신사와 방송사(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를 겸영할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배포한 신문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이 검색사업자를 겸영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포털이 현재처럼 운영하고 싶으면, 첫 화면 50% 이상을 뉴스로 채워 인터넷신문이 되고, 현행처럼 검색서비스를 하면 된다.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언론사를 겸영하거나 겸업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포털은 뉴스를 유통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김 의원실 쪽은 “포털은 형식적으로 유통업체이고 생산만 안 할 뿐이지 언론사를 경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다를 바 없는 것’과 ‘실제 그런 것’과는 다르다. 현재 포털은 언론사와 계약을 통해 뉴스를 유통하는 것이지, 언론사를 경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색사업자법이 통과되더라도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한 뉴스서비스는 할 수 있다.

포털은 기타 인터넷간행물과 검색서비스사업자라는 두 가지 지위로 규정된다. 김 의원은 포털이 기타 인터넷간행물이 돼 뉴스를 유통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나, 앞서 신문법만 통과할 경우처럼 첫 화면의 뉴스를 50% 이상 채워 인터넷신문이 되면 검색서비스를 할 수 있다. 검색사업자법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포털 규제 법안 과녁 맞힐까”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7일자 인터넷 미디어 오늘 메인 두 번째 단 『포털 규제 법안 과녁 맞힐까』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입법청원하고 김영선 의원실에서 발의할 예정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흥행만을 염두한 발의이며, 포털사이트의 뉴스유통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입법청원하였고, 법안에 대한 내용은 변○○ 정책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고 포털 피해자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의 이○○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조언을 하였으며,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김영선 의원실에서 최종 검토하여 발의된 것으로 정치권의 흥행만을 위해 급조된 법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의 신문법 개정안의 내용은 첫 화면 뉴스 비율이 50% 미만인 ‘기타 인터넷간행물’의 경우 안내 및 고지 등 정보전달을 위한 뉴스제공은 가능하고 사회여론을 좌우하는 보도와 논평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모든 뉴스유통을 금지한다는 본 신문의 보도는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검색사업자법이 통과되더라도, 계약에 의한 뉴스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보도했으나,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 규정과 검색사업자법의 인터넷언론 겸업 금지 조항으로 인해, 지금과 같이 뉴스를 편집 및 배치하는 서비스는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검색사업자법 제정안의 내용은 포털사이트는 검색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겸영 및 겸업 금지 조항으로 인해 언론의 기능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신문은 검색사업자법이 통과되더라도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한 뒤, 검색서비스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를 정정합니다. 검색사업자법이 통과되면 포털사들은 설사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더라도, 검색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겸업은 어떤 경우든 금지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피신청인 주장

• 제 목 : “포털 규제 법안 과녁 맞힐까”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평가에 관한 내용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소유의 건물 재건축공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마포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주인은 무기한 대피한 상태이며, 인근 주택의 주민들로 주택이 주저앉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동 ○○○-△△번지 신축 공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4일자 『“○○동 ○○번지 주민들 화났다”』 제하의 기사에서 ○○동 ○○-△△번지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가옥들마다 균열이 심하고 주택이 한쪽으로 기울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대흥동 ○○번지 일대의 구 가옥들의 균열 및 지반 침하는 대부분 원 지반의 토질공학적 특성 및 구 가옥 자체의 설계·시공상의 결함, 사용 년수에 따른 열화현상에 기인한 것이고 신축공사는 신규균열을 발생시킬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기존 손상부에 미소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번지 일대 구 가옥의 균열이나 기울어짐은 ○○○-△△번지 신축공사와 관련이 없고 이미 신축공사 이전에 가옥의 균열이나 기울어짐 현상이 일어났었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인 사실이 없었으며, ○○○-△△번지 가옥은 공사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공가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말을 인용, 마치 건축주가 투기를 위하여 신축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결과, ○○동 ○○○-△△번지 신축공사로 인하

보도내용

마포신문 : 『“○○동 ○○○번지 주민들 화났다”』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4일자 3면)

내 용 : ○○동 ○○○번지 일대 재건축 예정지구 주민들은 서울시가 재건축예정지구로 발표한 지역에 최근 마포구가 신축허가를 내 주었다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또 이 지역에서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가옥들마다 균열이 심하고 주택이 한쪽으로 기울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흥동 ○○○-△△번지를 매입해 지분을 쪼갬 다음 2개의 개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분을 쪼갬 ○○동 ○○○-△△번지에는 민원인의 저항 때문인지 빠르게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9일 바로 공사장 인근에서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마포구청이 건물 신축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 할 곳에 허가를 내 줘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사현장에서 불과 2m정도 떨어진 □□-□□번지 2층짜리 가옥은 넓이 2~3cm 가량의 균열이 곳곳에 발생했으며 주택이 심하게 기울어 집

여 주위 건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축공사 역시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〇〇동 〇〇〇번지 주민들 화났다'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마포신문은 지난 5월 14일자 『'〇〇동 △△△번지 주민들 화났다'』 제하의 기사에서 〇〇-△△번지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의 〇〇〇-△△번지 가옥의 집주인이 대피한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결과, 위 가옥의 집주인은 신축공사

전부터 집을 비우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〇〇〇-△△번지 신축공사 현장 인근 가옥에 발생한 균열 등은 상당부분 공사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주거 및 임대 등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일 뿐, 투기 목적으로 신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마포신문〉 3면에 2007년 8월 13일까지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소제목 〈재건축예정지구... 벽 갈라져 주민 대피〉의 활자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마포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3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북〇〇협동조합 (조합장 장 ○ ○)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〇〇〇〇한우-전북〇〇협동조합 합병』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8면)
내 용 : 정읍〇〇〇〇한우영농조합(대표 김○ ○)과 전북〇〇조합(대표 장○ ○)은 지난 6일 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
〇〇〇〇한우영농조합은 '〇〇〇〇한우'를 전북〇〇조합은 '△△△△한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합병으로 브랜드 광역화를 통한 전북한우의 전국적인 경쟁력이 기대된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한우라는 브랜드명을 먼저 사용하고도 전북〇〇조합에 넘겨진 브랜드명을 찾기 위해 조합의 흡수통합에 노력했다.

특히 한미 FTA 타결과 향후 전개될 각 나라간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 양조합 통합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합의점을 찾아 통합이 최종 결정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10일자 8면 『〇〇〇〇한우-전북〇〇협동조합 합병』 제하의 기사에서 〇〇〇〇한우영농조합이 △△△△를 이끌고 있는 전북〇〇조합을 흡수통합한다라고 보도하였고, 또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한우”라는 브랜

드명을 먼저 사용하고도 전복○○조합에 넘겨진 브랜드명을 되찾기 위해 조합의 흡수통합에 나섰 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전복○○조합과 ○○○○한 우영농조합간에 광역브랜드화하는 의미에서 양 대 표자간에 협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양 조합간에 이 사회를 개최하여 통합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하며, 이후 통합에 따른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총 회를 거쳐 확정되는 사안으로, 상기와 같은 신청인 조합에 대하여 흡수통합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 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한 우”라는 브랜드명을 먼저 사용하고도 전복○○조 합에 넘겨진 브랜드명을 되찾기위해 조합의 흡수 통합에 나섰다는 보도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기 에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새전북신문 : 『흡수통합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6일자 8면)

내 용 : 전복○○협동조합(조합장 장○○)과 정 읍○○○○한우 영농조합(조합장 김○○)이 통폐합된 다는 보도와 관련, 전복○○협동조합 장○○조합장은 13일 “한우브랜드 통합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 파고 를 극복하기 위해 양 조합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언론보도처럼 전복○○협동조합 이 정읍○○○○한우 영농조합법인으로 흡수 통합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며 “정읍으로 본점을 둔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 조합장은 또 “대통합을 통해 전복을 대표하는 우수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양 조합간 의결과 정을 거쳐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대등 한 입장으로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복○○협동조합은 ‘△△△△한우’ 브랜드 로 소시모 선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인증받았으 며, ‘정읍○○○○한우’ 브랜드도 2007년도 우수 축 산물브랜드 인증을 받기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2 차 심사에 대비하고 있어 향후 양 조합이 브랜드 를 통합해 광역브랜드로 나아간다면 실의에 차 있 는 전북 한우농가에 밝은 전망이 기대된다. □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복○○협동조합 (조합장 장 ○ ○)

피신청인 : 전복대중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전복대중일보 : 『정읍○○○○한우·전복○○조합 통 합』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4면)

내 용 : <2007전북조정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전북조정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전복대중일보 : 『○○○○한우 전복○○ 통합 난항』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3일자 9
면)

내 용 : <2007전북조정2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27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전북○○협동조합 (조합장 장 ○ ○)
피신청인 : 전북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각 취하

<2007전북조정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보도내용

전북도민일보 : 『정읍 한우브랜드 통합』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9면)
내 용 : <2007전북조정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 후 보도문

전북도민일보 : 『“전북○○, ○○○○조합 흡수통합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6일자 9면)
내 용 : <2007전북조정2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28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전북○○협동조합 (조합장 장 ○ ○)
피신청인 : 전북매일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각 취하

내 용 : <2007전북조정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전북조정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보도내용

전북매일신문 : 『정읍 한우, 세계적 브랜드 도약 꿈
꾸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
일자 9면)

신청 후 보도문

전북매일신문 : 『전북○○협동조합 · 정읍○○○○조

합 흡수통합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9일자 13면)

내 용 : <2007전북조정2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북○○협동조합 (조합장 장 ○ ○)
피신청인 : 전북연합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각 취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전북조정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보도내용

전북연합신문 : 『○○○○조합, 전북○○조합 흡수 통
합, 정읍한우로 브랜드 광역화』 제하
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10면)
내 용 : <2007전북조정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전북연합신문 : 『“흡수통합은 전혀 사실 무근”』 제하
의 기사 (2007년 7월 16일자 10면)
내 용 : <2007전북조정2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북○○협동조합 (조합장 장 ○ ○)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각 취하

<2007전북조정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보도내용

전북일보 : 『정읍 ○○, ○○○○·충○○○ 뭉쳤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12면)
내 용 : <2007전북조정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전북일보 : 『“○○○○·전북○○조합 흡수통합 아
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1일자
12면)
내 용 : <2007전북조정25의 신청 후 보도문 참
조>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 조합이 모 한우영농조합에 흡수합병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북○○협동조합 (조합장 장 ○ ○)
피신청인 : 전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전주일보 : 『브랜드광역화 판로개척 ‘박차’』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9면)
내 용 : <2007전북조정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전북조정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전주일보 : 『정읍시 ‘한우브랜드 통합 추진’ 과대포
장』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8일자 9
면)

내 용 : 정읍시가 지난 9일 “한우브랜드 통합 추
진”사업에 대해 공식자료를 내고 농축산물 수입
개발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협동조합이
정읍○○○○한우 영농조합법인으로 흡수 통합된단
고 브리핑했는데, 본지가 확인결과 전혀 사실무근
이며 정읍시관계자의 공적에 급급하여 과대 포장
된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양 기관은 대등한 지분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우수브랜드를 육성
발전하기로 했으며 전북○○협동조합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북○○ 협동조합장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타결과 아울러 각 나라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브랜드광역화로 판로를
개척, 전북을 대표하는 우수브랜드로 육성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 축산경영과 이재하 과장은 “직
원의 문서작성에 있어 실수가 있었다.”며 전북○○
협동조합원들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

신청인이 외국인 강사를 모집하면서 인종차별적인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코리아헤럴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코리아헤럴드 : 『Sometimes you really just have to
say ‘18’』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1일자 생활면)

내 용 : Despite the best efforts of The Korea Herald to highlight the problem - and initiatives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tamp out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 it seems that some people just don't get the message.

○○○ Song of B○○○ ○○○ Club is a case in point.

She was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advertisement for teachers: "If you are young and white, you are alright with us." Really, about the only thing you can do is sign, and laugh out loud at how ridiculous this situation really is.

The advertisement went on to say, "Average weight (or thin) people are preferred. Also please, no Australians/New Zealanders/Irish etc. Brits may be considered under special circumstances. Of course, no non-native English speakers or ethnic minorities."

The ○○○ Club hagwon, in a rare example of honesty, warned any potential applicants that the contract they sign with them is probably not worth the paper it is written on.

"One year contract required by law. Please note, however, that cultural differences exist with respect to contracts."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The correct press statement about B○○○ ○○○ Club!

Korea Herald published an article on 11th July, which viewed ○○○ Song, director of B○○○ ○○○ Club, being discriminatory towards minorities.

The article led readers to believe that ○○○ had posted the advertisement herself. As a matter of fact, she has not posted it but someone else took her identity and wrote the advertisement.

We acknowledge our journalist has made a serious mistake and apologize about the article that was not verified.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클럽' 기사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코리아헤럴드는 지난 7월 11일 'Sometimes you really just have to say '18"' 제하의 기사에서 ○○○클럽의 원장 송○○ 씨가 외국인 강사를 모집하면서 인종 차별적, 세대 차별적, 국적 차별적 광고와 계약서 문구를 무시하고 의료보험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게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그러한 광고를 게재한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송○○ 씨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The correct press statement about 'B○○○ ○○○ Club' article〉

The Korea Herald published an article "Sometimes you really just have to say '18," on 11th July, which said ○○○ Song, director of B○○○ ○○○ Club, put an advertisement which is discriminatory toward race, age and ignoring the wording of contract and violating the medical insurance law.

The article led readers to believe that ○○○ had posted the advertisement herself. But she has not posted it but someone else took her identity and wrote the advertisement.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코리아헤럴드〉에 8월 3일까지 게재하되(토요일 제외),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 제목활자의 2/3 크기의 활자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코리아헤럴드〉 홈페이지에서 2007년 8월 3일까지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코리아헤럴드 : 『Correction on 'B○○○ ○○○ Club' article』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3일자 1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연맹이 우수선수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운영비로 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울시○○○연맹 (회장 윤 ○ ○)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각 취하

소속 ○○○ 선수를 그만뒀다. 이 씨는 지난달 서울시 수영연맹사태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당한 일이 본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울시 체육회 상급 단체인 서울시민원을 제기했다. 이 씨는 서울○○○연맹 소속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로 활동했다. (후략)

보도내용

내일신문 : 『서울○○○연맹 ‘우수선수 지원금’ 전용』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종합면)

내 용 : 서울시 ○○○연맹이 선수지원금을 연맹비로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올 1월까지 이 단체 소속 선수로 전 ○○○ 국가대표를 지낸 이○○(27) 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이 연맹 선수로 있던 지난해 8월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우수선수지원금을 연맹에 빼앗겼다고 서울시민원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쯤 연맹으로부터 그 동안의 경기실적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제출 후 이 씨 통장에는 600만 원의 돈이 서울시 체육회 이름으로 들어왔다. 명목은 ‘우수선수지원금’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며칠 후 코치로부터 지원금이 연맹에 지급된 돈이라는 말을 듣고 이 돈을 연맹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올 1월 개인적인 문제로 더 이상 선수로 활동이 어려워진 이 씨는 연맹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울○○○연맹 ‘우수선수 지원금’ 전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0일자 종합면 『서울○○○연맹 “우수선수 지원금” 전용』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연맹이 서울시체육회가 이○○ 선수에게 지급한 6,000,000원 지원금을 전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가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한 임금채불 진정사건에 대해 7월 11일자로 ‘신고자는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의하지 않아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건을 종결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서울○○○연맹이 7월 10일 서울시 감사를 받은 결과, 지원금에 대해 횡령 또는 전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신청인이 남미 출장을 주관해 파문을 일으킨 단체에 소속된 모 연구원의 감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간조선

증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2.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양 당사자 이의신청)

보도내용

주간조선 : 『공기업·공공기관 298곳 중 82곳만 ‘감사OO’ 가입한 배경 뭇가』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8일자 22면)

내 용 :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의 ‘남미 이과수 폭포 출장’을 주관해 파문을 일으킨 감사혁신포럼 소속 82개 기관의 감사 82명 중 절반에 달하는 41명이 친노·열린우리당 출신이며, 또 다른 8명은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 출연기관 OOOO연구원 박OO
- 상임 OOOO사랑방 상임활동가
- 의문사진상규명회 OOO과 과장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관련 ‘OOO, 건자’ 단장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28일자 22면 『공기업·공공기관 298곳 중 82곳만 ‘감사OO’ 가입한 배경 뭇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의 “남미 이과수 폭포 출장”을 주관해 파문을 일으킨 감사혁신포럼에 OOOO연구원 감사도 소속되어 있는데, OOOO연구원 감사가 신청인인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OOOO사랑방 상임활동가 박OO은 OO OOO연구원 감사가 아니며, 감사혁신OO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공공기관의 감사도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5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O O

조정대리인 변호사 이 O O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주간조선)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이 O O

주 문 : 1. 피신청인은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조선>의 다음 발행호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30면 이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감사OO’ 82명 명단 입수…)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2007년 8월 10일까지 주간조선 홈페이지(<http://weekly.chosun.com>)의 초기화면에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을 3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한다. 또한 홈페이지 기사에 기재된 박OO 씨의 주요 경력을 올바르게 정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8월 10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19.

<별 지>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28일자에 「공기업·공공기관 298곳 중 82곳만 ‘감사OO’ 가입한 배경 뭇가」 제하의 기사에서 OOOO사랑방 상임활동가 박OO 씨를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의 남미 이과수 폭포 출장을 주관해 파문을 일으킨 ‘감사혁신OO’에 소속된 OOOO연구원 감사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OOOO사랑방 상임활동가 박OO 씨는 OOOO연구원 감사가 아니며, 감사혁신OO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공공기관의 감사도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덕분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맡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미 화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승자 측은 ‘On-Air’ 패자 측은 ‘Off-Air’』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6일자 A5면)

내 용 : (전략) 2002년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함께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김미화 씨는 이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고, 올해 초 노 대통령과 인터넷매체와의 대화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6일자 A5면 『승자 측은 ‘On-Air’ 패자 측은 ‘Off-Air’』제목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연예인으로

서 “2002 ‘노사모’ 회원들과 함께 촛불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았고, 올해 초 노대통령과 인터넷 매체와의 대화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미화 씨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일도 없고, 노사모 회원들과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나아가 그 결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의 진행을 맡게 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동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7일자 A2면)

내 용 : 정치하는 연예인 ‘폴리테이너’를 다룬 7월 6일자 A5면 기사와 관련해 김미화 씨의 2002년 촛불시위 참여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바로잡습니다. 김 씨는 이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 및 ‘대통령과 인터넷매체와의 대화’ 사회와 연관시킨 데 유감을 표해 왔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유사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완주군○○○연합회
(회장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완주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완주신문 : (1) 『김○○ 의원 유사단체 설립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3일자 1면)

내 용 : (전략) 지난달 말 ○○○○협회 완주군지회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한○○ 씨는 지난 4일 완주경찰서에 낸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완주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연합회라는 유사단체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멋대로 완주군에 반환하고, 직원에게 지시해 (사무실)입간판을 떼어버리는 등 집기를 훼손했으며, 중요 장부와 현금출납부, 공금 또한 인계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후략)

(2) 『“지회 사무실 폐쇄 부당”』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3일자 3면)

내 용 : ○○○○협회 완주군지회 사무실 폐쇄 조치와 관련, 한○○ 지회장 직무대리는 지난 8일 “지난달 25일 담당 계장과 통화했더니, ‘사건인데, 회장을 여러사람이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해야지, 중앙에서 내려와도 되느냐’며 김 의원 편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 지회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3일 도협회로부터 임명받았으며, 김○○ 의원은 지회장직에서 경질되기에 앞서 A면 분회장인 이모 씨를 차기 지회장으로 도협회에 추천한 바 있다. (후략)

(3) 『원만한 해결 기대』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3일자 11면)

내 용 : (전략) 새로 임명된 지회 관계자가 김○○ 의원을 업무방해 및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회 사무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게 도협회의 입장이다.

우선 이 문제는 인간적인 관계와 이권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전 도협회장의 내락을 받고 완주군○○○연합회를 결성했지만, 사전협의 없이 지난해 5월 법인으로 등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지회가 아닌 연합회 명의로 위탁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김○○ 의원 유사단체설립 논란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6월 12일자에 김○○ 의원 유사단체 설립 논란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합회는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행정지원 등과 관련된 단일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장애인 회원 및 단체들 간에 지속적인 논의결과, 2006년 4월 14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같은 해 5월 11일 법적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로 유사단체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협회 완주군지회의 집기훼손 및 횡령 등에 관한 논란에 대해 이는 ○○○○협회 정관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협회 완주군지회 사무실을 주무관청인 완주군에 반납한 것도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로 잔여 재산은 정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될 예정이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씨가 직무대행 지회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인 5월 21일로, 절차나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과 ○○○연합회 임원들은 사건의 전모를 떠나 ○○○○협회가 진정으로 완주군 장애인을 위한다면 한○○ 씨의 임명을 철회하고, 그동안 지역에서 장애인과 함께 활동을 한 장애인 회원 중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임명을 한다면 완주군지회를 되살릴 수도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김○○ 의원과 ○○○연합회는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와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한 의도가 전도되어 혼란스럽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밝혔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완주신문 : 『○○협 중앙회 인사, 임 군수 면담 계획』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5일자 1면)

내 용 : (사)한국○○○○○협회(○○협) 완주군지회 사무실 폐쇄에 대해 관련 단체 간 갈등이 진정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오는 27일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임정엽 군수와 한국○○○○○협회(중앙

회) 관계자가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중략)

이와 관련, 김○○ 의원(완주군○○○연합회장)은
지난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회 사무실 폐

쇄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도협회가
의견수렴 없이 새 인물을 지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상항식 의사결정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
다. □

아파트 부녀회 간부가 수년간 헌 옷과 공병 등의 수령대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32

청 구 명 : 정정보도문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전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남일보 : 『모 아파트 부녀회 회장 - 총무 맞고소』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6일자 6면)

내 용 : 광주지역 한 주공아파트 부녀회 간부가
수년간 헌 옷과 공병 등의 수령 대금을 횡령했다
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51·여) 씨는 지
난달 2일 광주 모 주공아파트 부녀회 회장 B(53·
여)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B 씨가 지난 15년 동안 부
녀회 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공금을 횡령했는데 오
히려 총무인 내가 공금을 가로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부녀회에서는 매달 헌옷과 페트·공
병을 수거해 업자로부터 각각 7만 5000원과 30여
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금전출납부에 이 사실을 누
락, B 씨의 횡령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모 봉사
단체가 해마다 20kg들이 쌀 20가마를 3~4차례나
지원해 주고 있지만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
법이 없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6일자 6면 『모 아파트
부녀회 회장-총무 맞고소』 제하의 기사와 관련, 모
부녀회장은 헌 옷과 공병 수령대금을 횡령한 사실
이 없으며 공병과 쌀은 부녀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6일자 “모 아파트 부
녀회 회장-총무 맞고소” 제하의 기사에서 광주지
역 한 주공아파트 부녀회 간부가 수년간 헌 옷과
공병 등의 수령대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
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부녀회장은 부
녀회가 매달 헌 옷을 수거한 대금 7만 5천원 가
운데 4만 원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나
머지 3만 5천 원은 부녀회 회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페트·공병수거에 관련한 사실은 없으며,
봉사단체에서 쌀을 지원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해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7월 3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남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
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헌옷·공병값...)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6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초고속인터넷 해지 제도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지 업무와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국경제와우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경제와우TV : 「기업뉴스」 프로그램 (2007년 7월 11일 16:00)

내 용 : ▷앵커 :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결과 전화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 권익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 기자입니다.

▷기자 : 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개선 방안, 5월 10일 해지 위약금 청구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후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소비자 통화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전에는 상담원과 전화연결을 위해 수십 분을 대기하거나 연결 자체가 어려웠으나, 현재는 평균 대기시간이 KT가 18초, 하나로텔레콤이 38초, LG 파워콤이 12.2초로 개선됐습니다.

〈상담원의 모습 클로즈업 사진〉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한국경제와우TV는 지난 7월 11일 「기업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해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인터넷 해지와는 전혀 무관한 상담원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8월 11일까지 위로금 49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과 관련된 화면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1회 사용할 때마다 5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자동차 4사 노동조합이 정치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이 상 옥)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자동차 4사 노조 “정치파업 안 한다”』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4일자 A2면)

내 용 :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등 국내 자동차

차 4사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한 채 파업을 결정하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계 노조 지도부는 이날 열린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내세운 정치파업에 노동자를 동원하기도 쉽지 않다”며 파업 결정에 반발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지 않고 25~29일 한미 FTA 저지와 산별임금교섭 쟁취를 목표로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자동차 4사 노조 “정치파업 안 한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4일자 A2면 『자동차 4사 노조 “정치파업 안 한다”』 제목의 기사에서 자동차 4사 노동조합이 정치파업을 안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자동차 완성사 지부 지도부는 6월말 한미 FTA 저지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동차 완성 4사가 금속노조의 중심에서 활동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5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지부장 이 상 옥
조정대리인 장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조정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금속노조 반FTA파업 찬반투표 생략 절차도 문제”)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8.

<별 지>

- 제 목 : 현대차노조 관련 정정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4일자 A2면 「자동차 4사 노조 “정치파업 안 한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을 안 한다’고 결정한 적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동아일보 : 『현대차 노조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5일자 A2면)
내 용 : <결정문의 별지 내용 참조> □

자동차 4사 노동조합이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이 상 옥)
피신청인 : 해럴드경제
종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금속노조 정치파업 NO”』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4일자 3면)

내 용 : 자동차4사의 노조위원장이 지난 11일 긴급회동을 갖고 금속노조의 정치파업 투쟁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금속노조 내 최대 세력인 완성차 노조 지부장들의 이 같은 시각으로 찬반투표 없이 강행하려던 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 계획이 수정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국내 노동계가 상승 파업의 구태를 벗고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4사 노조 지부장(위원장)들은 11일 저녁 충북 옥천군 금강휴게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현재의 정치투쟁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금속노조 정치 파업 NO’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4일자 3면 『“금속노조 정치파업 NO”』 제목의 기사에서 4사 차 노조 위원장들의 금속노조 정치파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자동차 완성 4사 지부장은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을 결정한 당사자들로서, “금속노조 정치파업 NO”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6월

11일, 긴급회동을 갖고 6월 말 금속노조 정치파업을 완성 4사가 중심이 되고, 향후 활동도 완성 4사가 금속노조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자고 회동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현대차노조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4일자 3면 『“금속노조 정치파업 NO”』 제하의 기사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의 정치파업 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8월 3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헤럴드경제>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4개 차노조위원장 회동...투쟁노선 변화 주목”)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헤럴드경제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3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총의 전략에 따라 파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한국경제 : 『현대차 ‘우리가 선봉대냐’ 민노총에 불만』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3일자 3면)

내 용 : (전략) 변화의 기운은 현대차노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대차노조의 장○○ ○○부장은 “여론도 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과거처럼 막무가내식 파업을 벌였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공동투쟁전략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대차 우리가 선봉대냐 민노총에 불만’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3일자 A3면 『현대차 “우리가 선봉대냐” 민노총에 불만』 제목의 기사에서 “여론도 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어 과거처럼 파업을 했다간 큰코다친다. 민주노총의 공동 투쟁 전략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현대차노조 장○○ ○○○부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장○○ ○○부장은 ‘금속노조로 포함된 현대차지부로써, 금속노조의 결정이 곧, 현대차 지부의 결정이어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였고, ‘금속노조가 과도기적인 시기인 만큼, 현대차 지부

는 규약이나 규정이 미비한 부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갈 것이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6월 13일자 A3면에서 <현대차 ‘우리가 선봉대냐’ 민노총에 불만> 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민주노총의 공동투쟁전략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파업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금속노조의 결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한국경제 3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여 2007년 7월 3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30일자 A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노조의 한미 FTA 저지 투쟁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이 상 옥)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국경제 : 『현대차 ‘우리가 선봉대냐’ 민노총에 불만』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3일자 3면)

내 용 : (전략) 가뜩이나 국민 여론이 안 좋은 데 명분 없고 실속 없는 파업은 삼가자는 뜻이다. 한·미FTA처럼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이슈로 길거리 투쟁을 벌여 봐야 노조간부들만의 파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중략)

현대차노조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든 결정적 계기는 올해 초 벌인 어거지성 성과급 투쟁이다. 노조원들이 성과급 투쟁 뒤 곧바로 설(구정)을 맞아 고향을 찾았을 때 만나는 친지들마다 “노조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왜 현대차노조는 파업만 벌이냐”는 등 온갖 질책을 들어야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대차 우리가 선봉대냐 민노총에 불만’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3일자 A3면 『현대차 “우리가 선봉대냐” 민노총에 불만』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보도하였고, 어거지성 성과급 투쟁이 현대차 노조원들을 변화 시켰다는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미국 현지공장에서 자동차의 70%를 생산하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수출 물량은 줄어들고, 내수시장은 수입차 개방으로 급속도로 잠식되면, 98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재연, 한미 FTA 저지투쟁은 이유 있는 파업이고, 성과급 투쟁은 회사 측에서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어거지 투쟁이 아니라 정당한 투쟁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의견 및 평가에 관한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노조의 파업이 노조간부의 출세를 위한 정치파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이 상 옥)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노조 간부 출세용 ‘정치파업’ 현대차 노조가 총알받이냐』 제하의 기사 (2007

년 6월 26일자 A3면)

내 용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대한 비판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파업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26일 현대차 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5~27일 부분파업 철회 결정을 내린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대해서는 “잘 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오는 28~29일로 예정된 전체 파업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반면 현대차 노조에 정치파업을 하도록 지시를 내린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조로 비판의 목

소리를 쏘아 내고 있다. ‘참○○’라는 이름의 조합원은 “결국 현대차 지부만 ‘왕따’였다”며 “오는 28~29일로 예정된 전국 단위의 파업까지 철회해야 금속노조의 ‘총알받이’였다는 오명을 벗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노조 간부 출세용 ‘정치 파업’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6일자 A3면 『“노조 간부 출세용 ‘정치파업’ 현대차 지부가 총알받이냐”』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현대차 지부는 “노

조 간부 출세를 위한 정치파업을 전개한 적이 없으며, 한미 FTA 저지 투쟁은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현대차 지부 조합원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사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파업이라고 밝혔으며, 자유게시판의 글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파업 반대를 위한 여론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기 위한 여론 조작이다”고 밝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의견 및 평가에 관한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아들의 죽음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손배)

숨진 오 군은 강릉 모 대학 ○○○○디자인학과에 입학했으며, 지난 8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치러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숨진 오 군의 소지품에서 우울증 치료제가 발견된 점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미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오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도내용

뉴시스 : 『O·T 새내기, 술 취해 콘도서 추락사』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새내기 학생이 술을 마신 뒤 콘도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새벽 3시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리 모 콘도 6층에서 새내기 대학생 오모 군(18)이 6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오 군은 전날 밤 11시께부터 학과 선배, 동기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으며, 만취한 오 군이 “죽고 싶다”라며 소란을 피우자 선배들이 숙소로 데리고 갔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콘도 추락사 원인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0일자 사회면에 『O·T 새내기, 술 취해 콘도서 추락사』 제하의 기사에서 숨진 신입생이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살한 것으로 ○○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경찰서 수사결과, 객실에서 잠을 자던 중 바람을 쐬기 위해 베란다에 나가 몸을 기대어 있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콘도 추락사 원인 사실과 달라
- 내 용 : 뉴시스는 지난 3월 10일자 사회면에 “O·T 새내기, 술 취해 콘도서 추락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숨진 신입생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경찰서의 수사결과 해당 학생인 강릉 모 대학 ○○○○디자인학과 신입생은 배란다에서 바람을 쐬던 중 추락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8월 3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뉴시스>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시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콘도추락사 원인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신청인 주장

경찰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조합이 시위관련 사진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김 상 구)

피신청인 : 디지털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각 각하

보도내용

디지털조선일보 : 『기아차 노조, 임금·휴가 다 챙기려는 속셈?』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올해도 어김없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17년 연속 파업’이라는 기록을 세운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규 근무시간에만 파업하고 수당이 많은 잔업은 계속하는 ‘잔피 파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교섭타결 목표시점을 여름 휴가 전인 7월 말로 잡고 있어 “챙길 건 다 챙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빈축도 사고 있다. <시위사진>
▲3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공

장에서 기아차노조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8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아차노조 제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기아차노조, 임금, 휴가 다 챙기려는 속셈?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4일자 경제면에 『기아차노조, 임금, 휴가 다 챙기려는 속셈?』 제하의 기사에 삽입된 집회사진을 기아차노조에서 제공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기아차노조에서는 사진을 제공한 적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지부
지부장 김 상 구

피신청인 :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서울 중구 정동 1-16
대표이사 안 보 길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조선일보의 초기화면 경제
상단에 별지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
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
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
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신청인은 피신청인
을 주식회사 조선일보로 표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보도는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
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므로 피신청
인을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로 본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
급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년 7월 4일 『기아차 노조, 임
금·휴가 다 챙기려는 속셈?』 제하의 기사에서 시

위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기아차
제공’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
청인에게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대상 매체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법 소정의 ‘인터넷신문’으로서의 기준을 충족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대상이라 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조정신청은 부적법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5.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의 아버지가 뇌졸중 환자인 어머니를 돌보다가 숨진 지 사흘 만에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3인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각 합의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9,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1,000,000원을 2007년 8월 8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 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6월 12일 21:30)

내 용 : 〈2007서울조정24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4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신청인이 토지매입 대행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대한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취 하

정에서 실제 평당 3만 원에서 매매되는 토지를 3만 원에서 최고 9만 원까지 계약,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계약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으며, 과도한 부지매입비로 회사 측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대한일보 : 『지방지기자 토지매입대금 횡령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6일자 16면)

내 용 : 주간지 지역주재기자가 토지매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목포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 주재기자 박모 씨는 진도○○○○(주)의 미곡종합처리장 신축 부지매입과 관련, 토지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매입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주)의 이사회는 “박 기자가 진도군 의신면 ○○리 ○○○번지 외 11필지를 구입하는 과

• 제 목 : “지방지기자 토지매입 대금 횡령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대한일보는 지난 4월 16일자 16면 기사에서 지방신문의 박모 기자가 토지매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이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보도에 언급된 한국○○(주)의 박모 대표는 신청인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로, 지난 2006년 7월 경 신청인에게 부지매입을 요청했고, 신청인은 부지매입과정에서 회사 측의 돈을 토지가격을 부풀리는 허위계약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또 허위계약이나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주민행사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3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함 의

보도내용

남도일보 : 『“인사 늦게 시킨다” 주먹질』 제하의 기

사 (2007년 5월 2일자 6면)

내 용 : 주민 행사에 참석한 시의원의 남편이 부인의 ‘인사 순서’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해 말썽이 일고 있다.

1일 전남 순천시 ○○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주민행사에서 이 지역 시의원 유모(46·여) 씨의 남편 안모(48) 씨가 주민자치위원장 정모(46)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안 씨는 ‘제1회 ○○동 화합의 장터’ 행사에 참석했다가 시의원인 부인 유 씨를 정 씨가 다른 시의원보다 나중에 소개하자 이를 따지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안 씨는 이를 말리던 공무원들에게도 심한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 전시의원 명예를 실추시킨 점 사과드립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일자 사회면 『“인사 늦게 시킨다” 주먹질』 제하의 기사에서 안○○ 전 시의원이 부인인 유○○ 시의원의 인사를 늦게 시켜 주민자치위원장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구획정리 조합장과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의 다툼으로, 안○○ 전 의원이 부인의 인사를 늦게 시켜 폭행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2일자 “‘인사 늦게 시킨다’ 주먹질” 제하의 기사에서 시의원의 남편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사자인 안모 전 시의원은 당시 주민자치위원장과 서로 먹살을 잡은 바는 있으나, 주먹을 휘둘러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7월 3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남도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순천 시의원...)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남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7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하남시가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확장, 송파구와 성남시의 물량도 처리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4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남시 (시장 김 황 식)

피신청인 : 동부교차로저널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부교차로저널 : 『인센티브 조건, 하남에 입지』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5일자 1면)

내 용 :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건설과 관련, 송파, 성남, 하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쓰레기장의 하남 입지가 당초 송파에서 하남으로 급변경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남으로 광역쓰레기시설 입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공은 하남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하남 출신 윤○○ 도의원의 문제제기로 관계기관은 협의를 거쳐 광역쓰레기장의 하남 입지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3일, 윤○○ 도의원(한나라당, 하남)은 토공 자료를 근거로 당초 광역쓰레기시설이 송파로 되어 있었지만 하남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토공의 ‘환경기초시설 배분검토’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토공과 하남시간의 협의에서 필수 시설인 쓰레기소각시설을 확장 해 송파구와 성남시

물량을 하남시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센티브조건, 하남에 입지”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5일자 1면 『인센티브 조건, 하남에 입지』 제하의 기사에서 송파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인 ‘쓰레기처리장(소각장)’을 ‘광역쓰레기장’으로 표기하였고, “토공의 환경기초시설 배분검토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토공과 하남시 간의 협의에서 필수시설인 쓰레기소각시설을 확장해 송파구와 성남시 물량을 하남시에서 처리하도록 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 중 ‘광역쓰레기장’은 ‘송파신도시내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체 쓰레기 소각장’이 정확한 표현이며, ‘4월 11일 토공과 하남시간의 협의에서 필수시설인 쓰레기소각시설을 확장해 송파구와 성남시 물량을 하남시에서 처리하도록 했다’는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남시에 배치했다’로 잘못 보도했기에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반론은 수용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정정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부천시가 행자부의 재정평가조사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 판정을 받았다는 등 부천시정을 폄하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4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천시 (시장 홍 건 표)

피신청인 : 부천자치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부천자치신문 : 『“홍건표 시장이 이끄는 부천은 너무 힘들다”』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30일자 6면)

내 용 : “홍건표 시장이 이끄는 부천은 너무 힘들다” 홍건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움직임을 알리는 신호탄이 며칠 전 상동신도시 아파트에 뿌려졌다. 그런가 하면 중·상동신도시주민연합회·부천화장장반대 사이버환경운동 등에도 홍건표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일정까지 밝

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홍건표 시장의 주민소환제 실시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한 시민 모임은 “홍건표 시장이 이끄는 부천은 너무 힘들다”라는 유인물을 제작 상동신도시 아파트 일대에 배포했다. 유인물에 홍건표 시장은 민의를 저버린 독선행정으로 부천 정치권은 물론 민·관·민·민 갈등으로 치닫고, 시의회마저 협박하는 등 부천민심을 두동강내 부천역사 이래 집회와 시위가 최고로 많은 불명예 기록을 세운 시장이라고 지적한 뒤 개선의 여지마저 보이지 않아 시민의 힘으로 저지하려 한다는 주민소환의지를 표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7년 6월 30일 6면 『“홍건표 시장이 이끄는 부천은 너무 힘들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 시민모임이 제공한 유인물 내용과 사진을 전재하면서 22가지의 내용을 기사화하였습니다. 본지는 유인물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부천시민과 독자에게 홍건표

부천시장과 부천시정이 왜곡되어 인식되도록 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공익과 정론보도를 사명으로 해야 할 지역언론이 정체불명의 전단지 내용을 신문 한 면 전체를 할애해 전재함으로써 부천시장과 부천시는 물론 부천시민 모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수 시민들에게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시공도 하지 않고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해 입주자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하우징 (대표이사 조 ○ ○)

피신청인 : 퍼스트데일리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퍼스트데일리 : 『공사도 안 했는데 가압류라니』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5일자 사회면)
내 용 : 친환경 마감재 시공을 계약한 오창테크노폴리스 내 한 아파트 10여 세대에 지난 20일쯤 법원에서 가압류 통보가 되면서 업체 측과 입주주민이 마찰을 빚고 있다.

새집증후군을 없애 준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해 시공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기 전에는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입주민과 시공은 정당하다며 공사비에 대해 가압류에 나선 업체가 지난 1년여 이상 끌어온 다툼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여서 시공을 받은 입주민들은 효과를 입증하기 전에는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며 더욱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세대의 경우 공사 중지 요청으로 실제 시공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압류가 통지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이오세라믹업체의 가압류등기는 정당한 채권보전행위로 밝혀져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5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사도 안 했는데 가압류라니』라는 제목으로 오창 ○○○○아파트에 바이오세라믹을 시공한 업체가 시공도 않고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해 입주자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시공을 하지 않은 계약세대는 전혀 없으며, 가압류한 세대도 보도된 10여 세대와 다르게 4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퍼스트데일리 : 『오창 모 아파트 바이오세라믹업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5일자 사회면)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5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사도 안 했는데 가압류라니”라는 제목으로 오창 한 아파트에 바이오세라믹을 시공한 업체가 시공도 않고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해 입주자의 아파트 가압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시공을 하지 않은 계약세대는 전혀 없으며, 가압류한 세대도 보도된 10여 세대와 다르게 4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경품사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7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여행사 (대표이사 방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7년 7월 12일 07:10)

내 용 : ▷나레이터 : 제주무료여행권에 지정된 호텔숙박비용, 2박에 총 29만 8천원.

그뿐이 아니었다. 가이드 측에서 각종 옵션이용까지 먹는 것, 타는 것, 가는 곳 마다 돈이 들어갔다.

2박 3일 동안 불만제로가 쓴 비용은 2인에 총 50여 만원. 무료라고 믿고 온 소비자들 역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게다가 확인결과, 같은 가격이면 무료여행권이 없어도 똑같은 여행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것.

▷가이드 : 비싼 거지. 그게 무슨 무료이용권이야. 상술이라는 거지.

돈은 다 받고 무료로 해 가지고 혹하게 해서 들어오도록 한거야

▷나레이터 : 여행사의 미끼상품이었던 제주 무료여행권.

그 중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첨된 이들도 있었다.

500명 한정이벤트로 제주무료여행을 보내 준다니 업체. 그러나 약속과 달랐다.

문제의 그 업체는 일반 여행사와 그 모습이 상당히 달랐다.

한쪽 방에서는 문자전송 작업이 정신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바로 제주무료여행 당첨 문자였다.

이들에게 수상한 점이 또 있었다.

바로 경품에 대한 세금이라며 6만 6천 원씩의 제세공과금을 일괄적으로 걷고 있었던 것.

대학생 이○○ 씨도 이들에게 돈을 부쳤다. 며칠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제세공과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불만제로가 만난 제보자 외에도 대부분이 전액 환불을 받지 못했다.(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여행사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12일자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여행사가 경품사기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여행사는 국내, 외 여행업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여행사로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000,000원



인천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에 2차단지 분양가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인천○○○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 최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집값 올리기 갈수록 지능화』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8일자 A22면)

내 용 :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다. 직접적인 ‘가격담합’은 단속 대상인 데다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인천에서 순차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분양한 A사는 1차 단지의 분양 계약자들 때문에 애를 먹었다. 계약자들이 2차 단지의 분양가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2차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8개월 전에 공급한 1차분 아파트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8일자 부동산면에 『집값 올리기 갈수록 지능화』 제하의 기사에서 A사의 1차 분양자들이 건설사에게 2차 분양가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A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보도한 기사로서, 순수 분양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준 그릇된 기사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한국경제 : 『알림』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4일자 A23면)

내 용 : 지난 18일자 본지 A22면 ‘집값 올리기 갈수록 지능화’라는 기사 가운데 “인천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한 A사의 1차 단지 계약자들이 2차 단지의 분양가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애를 먹었다”라는 내용에 대해, A사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2차 분양가 문제에 대해 A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2차 단지 계약자들과 함께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살기좋은 주택단지 꾸미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6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술먹은 교장 여학생 폭행, 교육청 자체 조사중』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3일자 교육면)

내 용 : 한 여성이 자신이 목격한 ‘중학교 교장에 의한 여고생 폭행’ 내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저녁 ○○시교육청 홈페이지 신문고란에 ‘꼭 진실이 밝혀지길’이란 제목으로 고발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18일 저녁 7시 40분쯤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멀리서 만취한 남자분이 비틀거리며 오더니 수다를 떨고 있는 여학생 중 한 명의 머리와 뺨을 때리더라”며 “주변 식당 아주머니들이 그 남자가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알아보시더라”고 적었다.

이 고발글은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600여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비난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사자로 지목된 울산 남구 A중학교 교장은 “학교로 들어가 공부하라고 나무라던 중 학생이 달려들기에 뺨을 한 대 때린 것인데 사태가 과장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술먹은 교장 여학생 폭행, 교육청 자체 조사중’ 기사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자 교육면 『술먹은 교장 여학생 폭행, 교육청 자체 조사중』 제목으로 한 여성이 자신이 목격한 중학교 교장에 의

한 여고생 폭행 내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였으며, 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교조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모 교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자율학습을 할 시간에 여고생들이 길 거리에 나와 산만하게 장난을 치고, 거리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하므로 좋은 말로 타이르고, 훈화를 하였는데 4명의 여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욕설을 하고 대들며 달려들기에 한 여학생을 몇 대 때렸던 것이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제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남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임이 판명되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

신청인이 부동산업자들과 짜고 종종 사람들 몰래 백억 원대의 땅을 처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강원조정4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원주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원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4월 24일 21:00)

내 용 : ▷앵커 : 원주출신으로 ○○대비의 아버지였던 △△부원군의 못자리가 최근 두쪽으로 분할돼 매각됐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광풍 속에 조상의 묘까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기자 : 수려한 산세를 바탕으로 등우리속에 알이 담긴듯 묘가 아늑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선조가 ○○대비의 친정에 하사한 능산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입니다.

특히 ○○대비의 아버지였던 △△부원군의 묘와 신도비는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지만 현재 이곳은 이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원군의 묘등을 중심으로 필지를 분할해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역모에 휘말려 부관참시를 당했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수모를 겪게 됐다며 후손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 18만여 평이 종종회원들도 모르게 21필지로 쪼개져 외지인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종중회장은 기획부동산업자들과 짜고 모두 합쳐시가 백억 원대의 종종땅을 이런식으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24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김씨 ○○종중 회장인 김모(신청인) 씨가 투기광풍이 일던 지난해 4월 무렵 18만여 평의 필지를

기획부동산업체와 짜고 외지인들에게 팔아 넘겼고 그 과정에서 중시조인 부원군 김○○의 묘까지 쪼개서 팔았으며, 그로 인하여 위 김모 씨는 100억 원을 챙겼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김모 씨를 기소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종중회장인 김모 씨는 부원군 김○○의 묘를 쪼개서 파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100억 원을 취득한 바도 없고, 오히려 종손인 또 다른 김모 씨가 종중 재산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구잡이로 처분하는 데 대하여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들인 비용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에서 결의를 통하여 2억 원 상당의 일부 종중 재산을 종회장인 신청인 개인 명의로 이전받았을 뿐이며, 그마저도 재판 과정에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으로 인하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검찰과 팽팽히 맞서며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본 건 관련 후속보도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다.

-아 래-

○○종중회장 김모 씨는 백억 원대의 18만여 평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 중 6천만 원대의 3천여 평만 매매하였으며 매매과정에서 기획부동산업자와의 결탁은 없었다. 또한 △△부원군의 묘와 제전은 분할되지 않았으며, △△부원군의 묘와 신도비 토지는 매각하지 않아 현재 ○○종중의 소유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9월 15일까지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기상정보전)에 보도하되, 위 내용이 담긴 신청인의 입장을 전화 인터뷰하며 이 때 배경화면은 통상적인 전화 인터뷰 화면으로 하고 인터뷰 내용 및 신청인의

직위 등은 자막처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방송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에 대한 나머지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9월 11일 21:34)

내 용 : ▷앵커 :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원주지역의 부동산값 상승과 함께 종중땅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비의 ○○김 씨 집안에서는 부원군의 묘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 2월 ○○대비 집안인 ○○김 씨 종손등 종원 50명은 전 종친회장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시가 130억 상당의 종중토지 21필지를 종중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시조인 △△부원군의 묘소를 분할해 매각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 종친회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종친회장 : 백억 원대 18만 평 처분한것이 아니라 이중 6천만 원대 3천 평만 매매, 기획부동산업자와 결탁 없었다.

▷기자 : 또 부원군의 묘와 묘 앞의 석물이 분할되지 않았으며, △△부원군의 묘와 신도비가 있는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또 다른 종중인 ○○종중의 소유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손 측에서는 묘역이 포함됐으니 묘소가 분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전 종친회장 측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형사상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입니다.

□

신청인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1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합 의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4월 24일자 10면 「○○ 교장선생님 탈선 릴레이」 제하의 기사에서 울산 모 중학교 교장이 귀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만취 상태에서 폭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교장은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여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제신문 10면에 2007년 8월 4일까지 게재한다.

보도내용

국제신문 : 『○○ 교장선생님 탈선 릴레이』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4일자 10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6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269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제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1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울산매일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269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7부산조정12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울산매일 : 『교육계 기강해이 '위험수위'』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4일자 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69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울산매일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울산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울산신문 : 『만취 중학교장, 귀갓길 여고생 폭행』 제
하의 기사 (2007년 4월 23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6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269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울산신문 : 『“훈계했는데 대들자 그만 실수” 제하
의 기사 (2007년 4월 24일자 4면)

내 용 : ‘만취 교장 여학생 폭행(본보 4월 23일자
3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모 중학교 A 교장이
단지 ‘대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의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A 교
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18일 오후 7
시 40분경)는 자율학습시간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
와있는 학생을 보고 훈계를 했다”며 “선도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상관말라’며 대들어 그
만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다는 A 교장은 “정년
을 1년 8개월 남긴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
하다. 선처를 부탁한다”며 피해학생과 학부모, 그
리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전교조○○지부(지부장 동○○)는 이날 성
명서를 통해 “‘교육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와 의
무’를 훼손한 학교장에 대해 배제○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어 “최근 A 교장 외에도 사립고등
학교 교장자리를 요구하며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모 초등학교 교장도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일벌
백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청인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1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UBC-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UBC-TV : 「9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4월 23일
21:10)

내 용 : <2007서울조정26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269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31.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1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울산방송(UBC-TV)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21-1
대표이사 김 중 결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울산방송 「U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중 방송하되, 제목은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내용은 방송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3일 “교장이 여고생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현직 중학교 교장이 술에 취해 여고생을 폭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전모 교장은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여학생들에게 말로 타이르려고 했으나 여학생들이 욕설을 하고 대들어 한 여학생을 때리게 되었을 뿐,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UBC-TV :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2007년 8월 10
일자 20:45)

내 용 : 〈결정문의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이 취재기자를 불법으로 감금한 정신병원 원장을 두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북문화신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북문화신보 : (1) 『제보받고 취재중인 기자 감금
병원장·여경찰 공포감 조성』 제하
의 기사 (2007년 7월 5일자 1면)

내 용 : 본지 취재기자가 정신병원에서 취재를 하던중 병원장이 억압적으로 감금해 충격을 주

고 있다.

평소 건강했던 박모(78, 포항시 남구 효자동) 씨가 포항시 북구 죽도 2동 소재 1모 정신병원에 아들이 입원시킨 것에 대해 온갖 의혹이 따른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지난 4일 병원을 찾아 환자 상태와 입원한 날짜 등을 묻는 취재 기자에게 원장이 달려들어 밀친 뒤 출입문을 잠그고 억압적으로 20여 분 동안 감금시켜 공포 분위기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

감금 20여 분 동안 취재 기자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원장이 험악한 얼굴로 힘으로 밀치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원장은 취재기자를 감금한 뒤 느닷없이 포항○○경찰서 소속 지능 1팀 김모 경감이라고 밝히는 여자 경찰관이 동료들과 나타났다.

김 경감은 병원에 나타나 사건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담당 의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편파적 발언을 기자에게 하면서 권위적인 자세로 군림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면서 먼저 사건진위를 묻고 밝혀야 옳았다.

하지만 김 경감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일에 끼어들어 감금된 기자에게 오히려 공갈 협박성 발언으로 몰아 붙여 기자가 너무나 황당했다는 것. (중략)

더욱이 사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제보 받고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영리에 눈이 먼 것 같은 원장의 태도와 자신의 고유 업무와 무관한 사건에 끼어들어 병원을 일반적으로 두둔한 여자 경찰관의 월권적 태도는 알권리를 제공하려는 사회정의의 말살시킨 파렴치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지적이다. (중략)

한편 자신의 고유 업무도 아닌 사건에 끼어든 포항○○경찰서 김모 경감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2)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버지가 어떻게 위임장을 써 줄 수가...』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9일자 15면)

내 용 : (전략) 포항시 북구 죽도 2동 소재 I정신병원에 갑자기 입원된 박모 씨(78·포항시 남구 효자동) 경우 평생 함께 살아 온 효자동 주민들은 최근까지 건강에 별 이상이 없었고, 고령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은 의문이 따른다는 반응이다.

박 씨는 시가 평당(약 3.3) 약 200만 원 이상 가는 부지 약 529(약 160평)을 유강 구획정리지구 내에 가지고 있다.

박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박 씨 아들 박모 씨가 아버지에게 위임장을 받았으며 부지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부지 인수회사 측을 상대로 권리 행세를 하고 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아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된 아버지 박 씨가 그 아들에게 부지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하라고 위임장을 써준 것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고소하라고 위임장을 써주었는지에 대해 집중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버지가 고소하라는 위임장도 의문스럽지만 위임장에 찍힌 도장도 박 씨 인감 도장이 아닌 것 같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만약

고소장에 인감 증명이 첨부됐다면 찍힌 도장 확인과 발급 과정을 조사해 봐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정신병원 환자가 고소하라는 위임장을 한 점 의심 없이 인정한 조사 담당 경찰관과 위장으로 고소한 아들 말만 믿고 구획정리 조합 측과 부지 인수회사, 주민들이 제기한 의문점을 경찰관이 묵살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I정신병원 기자 감금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7년 7월 5일자 1면 『제보 받고 취재중인 기자 감금 병원장·여경찰 공포감 조성』 제하의 기사에서 I정신병원 병원장이 불법으로 취재 기자를 감금하고 사건과 무관한 포항○○경찰서 소속 지능1팀 김모 경감이 느닷없이 현장에 나타나 담당의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기자에게 공갈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7년 7월 9일자 15면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버지가 어떻게 위임장을 써 줄 수가...』라는 제목 아래 「경찰도 진위 확인 않고 고소장 처리 ‘의혹 증폭’」이라는 부제목으로 경찰관이 고소인 아들 말만 믿고 구획정리 조합 측과 부지 인수회사, 주민들이 제기한 의문점을 묵살한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월 5일자 기사에서 현장에 출동한 여경찰은 현재 I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관련된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 사건 수사를 위해 병원장 및 환자를 면담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사건과 무관하게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본지 보도를 정정하며, 당일 본지 취재기자의 무리한 취재 요구로 병원장과 실랑이가 있던 자리에 위 경찰관은 병원장의 요청으로 진출한 것이고, 본지 취재 기자가 무리한 취재활동을 하여 경찰관이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환자 면담 요구 등의 취재활동은 용인 범위를 지나친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공갈 협박성 발언으로 몰아부쳤다고 한 본지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7월 9일자 기사에서 다룬 사건의 수사 경위 확

인결과 담당 수사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중이며, 본지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과 같이 위법한 고소장처리 및 의혹 묵살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사실과 다른 본지의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본지의 잘못된 보도내용으로 말미암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사건 수사경찰관 등 관계자 여러 분께 깊이 사죄를 구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I정신병원 기자 감금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7년 7월 5일자 제1면에 『제보받고 취재중인 기자 감금 병원장·여경찰 공포감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I정신병원 병원장이 불법으로 취재 기자를 감금하고 사건과 무관한 포항○경찰서 소속 지능1팀 김모 경감이 느닷없이 현장에 나타나 담당의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기자에게 공갈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7년 7월 9일자 사회면 제15면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버지가 어떻게 위임장을 써 줄 수가...』라는 제목 밑에 「경찰도 진위 확인 않고 고소장처리 '의혹 증폭」이라는 부제목으로 경찰관이 고소인 아들 말만 믿고 구획정리 조합 측과 부지 인수회사, 주민들이 제기한 의문점을 묵살한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7월 5일자 기사에서 현장에 출동한 여경찰은 현재 I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관련된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 사건 수사를 위해 병원장 및 환자를 면담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건과 무관하게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본지 보도를 정정하며, 당일 본지 취재기자의 무리한 취재 요구로 병원장과 실랑이가 있던 자리에 위 경찰관은 병원장의 요청으로 진출한 것이고, 본지 취재기자가 무리한 취재활동을 하여 경찰관이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환자 면담 요구 등의 취재활동은 용인 범위를 지나친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공갈 협박성 발언으로 몰아붙였다고 한 본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7월 9일자 기사에서 다른 사건의 수사 경위 확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중이며, 본지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과 같이 위법한 고소장처리 및 의혹 묵살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본지의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본지의 잘못된 보도내용으로 말미암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건 수사경찰관 등 관계자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북문화신보 1면 우측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2007년 8월 3일까지 게재하되 제목(정신병원 기자 감금사건 관련 정정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18포인트 고딕활자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북문화신보 : 『I정신병원 기자 감금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3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총장 양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바뀐 사학법 두고 구법 적용 “또 친정부 인사 앉히려 하나”』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3일 A14면)

내 용 : (전략) ○○대는 임시이사 선임 과정과 이사진 성향을 둘러싼 진통도 커지고 있다. 임시이사 후보자는 ○○대 교수와 학생, 동문, 직원이 추천한 6명과 교육부 추천자 8명 등 14명.

○○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교육부를 방문해 임시이사 선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오○ 회장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교수투표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투표로 실시됐고, 직원 학생이 동문이 추천한 후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구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배경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 교수협의회 등은 “2005년 파견된 임시이사

들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됐다” “노동부 장관 출신의 김호진 전 이사장, 함세웅 신부, 손혁재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학교를 파행 운영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 임시이사 관련 기사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13일자 『바뀐 사학법 두고 구법 적용』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교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시행 이전에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준수하여야 함이 절차적으로 합당하나, 현행법을 준수하여 임시이사 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전 이사장 주○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대학교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대학교 임시이사 선임 과정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친정부 인사를 또 앉히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총장 양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교육부 입맛대로 법적용 곤란』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3일자 9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문화일보 : 『“외국 문화 흉내 내는 통속적 국제화 버려야”』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4일자 12면)

내 용 : “글로벌 경쟁력은 한국의 문화를 가꾸고 빛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 양○○ 총장은 “외국문화를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것은 통속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대학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 문화 창조성을 강조했다. 양 총장은 이어 학생들에게 “해외교류를 위한 외국어 구사능력은 기본”이라면서도 “하지만 가장 먼저

공동체 속에서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최근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 “갈등이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고 일부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〇〇대는 내부분규를 딛고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대 캠퍼스에서 양 총장을 만나 대학과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들어봤다. (중략)

-임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론에서 전임 재단과 일부 특정인사 말만 듣고 호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이사 선임이 이뤄질 경우 2학기 새 교수와 직원 채용도 어려워지는 등 학사일정이 심각하게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이사선임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사회 추천 절차 또한 〇〇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로 이뤄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행되기까지 수개월이 더 걸리는 재개정 사학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〇〇대 학내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대입제도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대학마다 수준이나 교육이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일률적인 지침을 내리고 획일화해서 규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신비율 논란도 사실 내신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대학에 똑같이 반영하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대학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교육자에게 사회적 대우를 좀더 높여주고, 그랬을 경우에도 수준이 떨어지면 그때 가차 없이 퇴출시켜야 합니다.” □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2

청 구 명 : 정정보청구

신 청 인 : 〇〇대학교 (총장 양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교육부, 〇〇대 이사 인사 서둘러』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7일자 A10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7월 17일자 A10면 「신사학법 공포 코앞인데 구법파라...교육부, 〇〇대 이사 인사 서둘러」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〇〇대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해 〇〇대 측은,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〇〇대 교수협의회’는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〇〇대 전체 교수를 대표하는 진정한 교수협의회(회장 이〇〇 교수, 회원 126명)는 이번 임시이사 선임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〇〇대 임시이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학교 구성원의 공정한 추천 및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8월 18일까지 (토요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본문활자크기보다 한 급수 큰 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

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6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총장 양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취 하

중앙일보 : 『신·구 사학법 갈등』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9일자 A30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총장 양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취 하

매일경제 : 『전 ○○대 이사장-교육부 임시이사 선임 갈등』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2일자 A39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총장 양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3.
처리결과 : 취 하

자 교육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70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연합뉴스 : 『교육부 “〇〇대 등 임시이사 내주 최종
선임』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2일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명박 캠프의 4인방을 배제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무 성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노컷뉴스 : 『김무성 “이재오 등 4인방은 절대로 받
아들이지 않겠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4일자 정치면)

내 용 :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무성 의
원(조직 총괄단장)이 경쟁자인 이명박 캠프 측
의 핵심인 이재오 의원 등 4인방은 “경선이 끝
난 뒤에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무성 의원이 지목한 4인방 의원은 이재오, 정
두언, 진수희 의원과 전여옥 의원.

이 가운데, 전여옥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핵
심 측근으로 활동했으나 최근 이명박 지지를 선언
했다.

김무성 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지역 보도편집국장
들과 만나 “8월 경선에서 박근혜가 무조건 이긴
다”고 말한 뒤 “박 후보가 이길 경우 이명박 후보
를 지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겠

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명박 후보 캠프의 이
재오, 정두언, 진수희, 전여옥 의원은 받지 않고 배
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오, 정두언, 진수희 의원은 이명박 후보 캠프
의 핵심 인사들로 박근혜 전 대표 측과 공방 과정
에 전면에서 나서고 있는 인물들이다.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캠프 측의 조직을 총괄
하는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박 캠프 측이 경선
이후 이들 4명의 의원을 이른바 ‘살생부’에 올린
셈이다.

김 의원은 또 “내년 총선에 박근혜 후보를 지원
하지 않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어
렵지 않겠느냐”는 말도 해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
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무성, 4인방 배제 사실 아닌 것으로 밝
혀져

• 내 용 : 노컷뉴스는 지난 7월 14일 『김무성 “이
재오 등 4인방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제목으로 김무성 의원이 이명박 캠프의 이재오,
정두언, 진수희, 전여옥 의원은 받지 않고 배제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또 내년 총선에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도 해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무성 의원은 이명박 후보 측 4인을 배제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없으며, “우리는 경선 끝나면 MB 측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럼에도 이재오가 그렇게 하면 안돼”라는 발언을 한 데 잘못 이해하며 4인방을 배제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발언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인 회사가 해당구청의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대형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OOOO기획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4.

처리결과 : 취 하

있지만, 지난 5월 관할 중구청의 허가가 취소된 불법 전광판입니다.

그러나 단전조치나 철거는 커녕 두 달 가까이 여전히 전광판 광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원인 : 전형적인 편법 특혜조. 행정적으로는 단속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막을 보면 봐준 결과조. (후략)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7월 17일 21:00)

내 용 : ▷앵커 : 서울 도심에 대형 불법 전광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최○○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 서울시내 한복판인 중구 명동의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전광판.

현재 각종 상업광고 등이 전광판에서 쏟아지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불법전광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17일자 「뉴스9」에서 명동의 한 건물 옥상의 전광판에서 각종 상업광고 등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난 5월 관할 중구청의 허가가 취소된 불법전광판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서울시 중구 명동의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은 관할 중구청과 행정소송중으로, 적법하게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작고한 화가의 작품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간동아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5.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주간동아 : 『숨진 화가 작품 베껴 KIAF 출품?』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50~53면)

내용 : 한국화가 이모(33) 씨는 5월 9~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열린 '2007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관람하던 중 소스라치게 놀랐다. 국내 116개 화랑을 비롯, 전세계 208개 화랑이 무려 5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이 매머드 전시장 한 귀퉁이에서 한때 자신과 같은 작업실을 썼던 동료 화가의 작품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이 솟구친 것도 잠시, 이내 그 작품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 씨가 지인(知人)의 작품으로 혼동한 까닭은 해당 작품의 재료, 기법, 색감, 크기 등이 지인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이 씨가 당초 작품의 주인으로 여겼던 작가는 지난해 5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대 동양화와 출신의 대구지역 한국화가 고 손○○ 씨.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숨진 화가 작품 베껴 KIAF 출품?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0일자 사회면 『숨진 화가 작품 베껴 KIAF 출품?』 제하의 기사에서 5월 코엑스에 전시된 한지 작품이 고 손○○ 화백의 작품과 흡사해 표절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내보냈던 작품 사진들의 전체 모습은 신지 않고, 두 작품의 비슷한 부분을 찾아내어 기사화한 점,

작품에 기본적으로 표기하여야 할 제목과 사이즈, 제작년도, 작가명, 사진 출처를 기록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작품의 비교를 뒤로한 채, 키아프 현장과 고인의 사진을 메인으로 올린 점,

고 손 작가와 이 작가의 작품이 입체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미지만을 실고 '과도한 형태적

유사성'이라는 기자의 주관적 의견을 적은 반면, '재료/기법/형상/색감'에 대한 양 측의 주장과 비교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

손 작가가 고인이 되기 직전의 최근 작품과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이 작가가 종이를 연습했던 습작을 표절 모작의 시비 대상으로 잘못 오인한 점 등, 기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주간동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송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간동아> 사회면에 <별지>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부제목(5월 코엑스에 전시된 한지 작품...)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본문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기사 조정대상기사와 <별지>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 기사를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15.

<별 지>

• 제 목 : "KIAF 출품작 표절"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 지는 지난 7월 10일자 사회면(50~53쪽) "숨진 화가 작품 베껴 KIAF 출품?"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지난 5월 코엑스에서 열린 KIAF에 L모(25세) 작가가 고 손○○ 화백의 한지 작품과 흡사한 작품을 전시하여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L모 씨는 고 손작가의 한지 작품과 자신의 작품은 이미지나 형태에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재료나 기법, 형상, 색감 등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표절하거나 모작한 것이 아니며, 전시회 형

식참여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품이 KIAF도록에 실리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주간동아 : 『KIAF 출품작 표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8일자 46면)
내 용 : <조정결정문의 별지 내용 참조> □

종교단체 집단변사사건을 다시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유 ○ ○
피신청인 : MBC-TV
종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5.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MBC-TV : 「7속타브」 프로그램 (2007년 5월 3일 07:00)

내 용 : (전략)

▷앵커 : 사건 현장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까?

▷기자 : 예 들어가 봤습니다.

▷앵커 : 어떻습니까?

▷김○○ : 네 평 남짓한 건물 천장. 끔찍했어요. 자그마치 서른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손발이 묶여 목 졸린 채. 현장에선 다량의 알약이 발견되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유서가 널려 있었죠. 이것이 이른바 오○○ 집단 변사사건의 서막. 사건이 일어난 곳은 주식회사 오○○ 공예품 생산업체 였어요. 사장 박○○ 여인은 사회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종말론을 주장하던 오○○교의 교주였지요.

〈뉴스영상 : (오○○ 어린이 노래) 젖과 꿀이 흐르는 이곳은 평화 깃든 땅 바로 오○○〉

▷기자 : 그 날 발견된 시체는 바로 박 여인과 오○○ 신도들.

▷박 여인 육성 : 불쌍한 사람과 남을 위해서 꼭

살다가게 해주십시오.

▷김○○ :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야, 니코는 개 코구나 음... 여기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오○○교는 살아생전 구원을 주장해 왔는데 왜 교주와 신도들이 집단 자살을 했을까.

전 자료를 싹싹 긁어 모아 사건을 재구성해 봤죠. 첫 번째 교주와 핵심 간부들은 격렬하게 반항하다 목이 졸려 숨졌더군요.

두 번째 그룹은 반항의 흔적이 없어요. 의식 없이 당한거죠.

마지막에 목을 땀다는 공장장. 하지만 일부에선 그도 살해된 거라고 의혹을 제기했죠.

정말 제 3의 인물의 서른 두 명을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한 걸까요? 의심할만 했어요.

이들의 죽음과 함께 170억 원이 사라졌으니깐요.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뭐 하나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자살극으로 마무리되었죠.

오○○은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4년 후 재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잠적했던 오○○ 관계자들이 자수를 한 거죠.

또 다른 시체가 발견되었고 5공 실제로 알려진 모 기업인은 한 교파에서 돈을 받은 게 확인돼 구속되었죠. <신청인의 성과 사진 클로즈업>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오○○ 집단변사사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3일자 「7옥타브」 프로그램에서, 오○○ 집단변사사건을 자살사건이 아닌 제3자에 의한 타살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정인의 “성”이 기재된 메모와 사진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오○○ 집단변사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오○○집단 변사사건은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광신종교집단의 집단자살사건으로 밝혀졌고, 특정인은 오○○ 집단변사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무단으로 사진을 방영함으로써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당한 그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79
청 구 명 : 조정청구
신 청 인 : 유 ○ ○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노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7옥타브> 시간에 방영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낭독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1.

<별 지>

•제 목 : “오○○ 집단변사사건” 관련 반론보도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5월 3일자 <7옥타브> 프로그램에서 오○○ 집단변사사건을 다루면서 특정인의 “성”과 사진이 방영되어 특정인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인은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오○○ 집단 변사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중국산 명태를 한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2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세상 (대표 전 ○ ○)
피신청인 : 창원KBS-1TV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27.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창원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6월 25일 21:40)

내 용 : ▷앵커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학교급식 수산물 7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8일부터 각 학교급식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조사한 결과, 모두 7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중국산 명태를 한국산으로 속여 급식한 통영시 ○○면 ‘○○ 세상’과 ○○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5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가 올 들어 적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112건으로 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25일 「뉴스9」 시간에 학교 급식 업체인 (주)○○세상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는 내용을 자료화면과 함께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세상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료화면 또한 (주)○○세상과는 무관한 수입가공 공장이었

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상호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공익을 위한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협회가 ‘외래 본인 부담금 정률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8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대한의사협회 (회장 장 동 익)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0.

처리결과 : 합 의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의협 ‘불법 대리처방’ 숨기기?』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8일자 사회면 『“의협 ‘불법 대리처방’ 숨기기?”』 제하의 기사에서 “서민 진료권 침해가 아니라 불법 대리처방 관행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새 제도 반대한다?”라는 제목하에 “의사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한 ‘시도반 모임 교육자료’에는 정률제 때문에 불법 대리처방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만 있을 뿐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은 찾아 보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는 서민진료권의 침해가 아니라 불법 대리처방 관행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정률제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환자의 대부분이 경증질환인데,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로 환자의 비용부담이 커지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반대하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시도반 모임 교육자료에도 상세히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되었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의협 ‘불법 대리처방’ 숨기기?』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8일자 12면)

내 용 : 서민 진료권 침해가 아니라 불법 대리처방 관행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새 제도를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한 반대 이유로 ‘의사들의 대리처방이 노출될 수 있다’고 내부문건에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새 의료급여제도 가운데 하나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해 서민 진료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의사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한 ‘시·도반 모임 교육자료’에는 정률제 때문에 대리처방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만 있을 뿐,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률제가 되었던 간에 의료법이 허용하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대리처방을 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위 기사가 인용하는 '시도반 모임 교육자료'는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의사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로서, 의료법상 만성질환의 재진이 아니라면 대리처방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 대리처방전을 교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의협 ‘불법 대리처방’ 숨기기?”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18일자에 “의협 ‘불법 대리처방’ 숨기기?”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배포한 ‘시·도반 모임 교육자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대리처방 관행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률제가 도입되면 대리처방 여부가 쉽게 파악되므로 불법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지 말 것을 설명한 내용을 기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정률제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률제를 반대하는 것이며,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은 정액제가 되었던 정률제가 되었던 간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8월 17일까지 경향신문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처방전 노출위험” 속내 담긴 내부문건 논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의협 ‘불법 대리처방’ 숨기기?” 보도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3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토지 매입 당시 불법명의신탁을 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충청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충청매일 : 『부동산 명의신탁·탈세 등 석산 매입과

정 의혹투성이』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9일자 1면)

내 용 : 충북지역에서 석산을 매입, 공장 조성 등 개발행위 허가 뒤 사실상 석재 채취·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업자들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석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 신탁과 탈세 등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 진천군 ○○면 ○○리 공장 조성 부지의 현재 공동 소유자인 Y 씨는 지난 2003년 2월 K 씨(현 충북도 의원)와 함께 2억 원씩을 투자, 4억 원에 이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당시 K 씨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어

서 평소 친분이 있던 D기획 대표 H 씨 부인인 S 씨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Y 씨와 50%씩 공동소유로 등기했다.

그러나 이들이 진천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토지 매입비를 1억 6천 500만 원으로 축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가와 실제 거래가 사이에 2억 3천 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 해당 금액에 부과되는 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신고가를 실제 거래가보다 대폭 낮추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매매가격을 축소·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어 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 역시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후 공장 조성을 위한 진입로 확보가 불가피, 진입로 부지를 H 씨 명의로 추가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투자자들은 토지 매각에 따른

이익 배당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 부지 매입이 공장 신설이 아닌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동산 명의 신탁, 탈세 등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9일 1면에 『부동산 명의신탁, 탈세 등 석산 매입과정 의혹 투성이』라는 제목으로 K 씨(현직 도의원)가 현금 2억을 투자, 다른 사람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세금을 탈루하였고, 부동산 대출 과정에서조차 불법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K 씨(현직 도의원)은 위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이 없으며 세금탈루 및 부동산 대출, 공장조성 등 개발행위에 대한 불법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시립예술단체의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무혐의 판결난 사안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 ○

피신청인 : 충청리뷰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0.

처리결과 : 취 하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손배)

보도내용

충청리뷰 : (1) 『○○시립○○단, 금품시비 또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3일자 34면)

내 용 : ○○시립○○단 지휘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어린이 음악학원장에게 금품을 요구

하고 여대생을 수년간 농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2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키로 해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휘자 H 씨(40)는 “좋은 감정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내가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자 보복심리로 엉뚱한 피해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무근이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 씨는 지난해 10월 ○○시립○○단 상임지휘자로 선임됐다. 실제로 H 씨는 2002년부터 시립○○단 부지휘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지휘자로 한 단계 ‘승진’ 선임된 셈이었다. 당시 H 씨의 지휘자 선임을 놓고 지역 예술계는 뒷말이 무성했다. 2005년 12월 부지휘자 재직시 신입단원 공채시험 금품요구 의혹이 제기돼 재계약이 무산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10개월간의 공백을 거쳐 지휘자로 격상돼 원직복귀한 셈이었다. (후략)

(2) 『상임단원 공채, 금품요구 의혹사건 어떻게 됐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3일자 사회면)

내 용 : 2005년 1월 ○○시립○○단 신입단원 공채를 둘러싸고 응시 희망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해금, 피리, 가야금, 악보계 등 4개 파트에 대한 단원모집 공고를 냈으나 최종적으로 가야금 1명, 해금 1명만을 합격시켰다.

문제는 피리 파트를 희망했던 Q 씨(여) 어머니가 시립○○단 부지휘자였던 H 씨가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해 결국 응시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Q 씨는 시립○○단의 비상임으로 활동하다 그해 대학을 졸업해 상임단원 모집에 당연히 응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Q 씨가 응시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단원들 사이에 금품관련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7년 7월 13일자 34면 『○○시립○○단 금품시비 또 불거져』 제하의 기사에서 ○○시립○○단의 지휘자 금품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지난 2005년 단원 공채 금품의혹사건 전모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의혹사건은 이미 무혐의 판결난 사건이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해당 지자체의 감사결과 후 이를 토대로 정정보도는 가능하나 명백한 입증자료 없이는 손해배상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시립예술단체의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9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변 ○ ○

피신청인 : 충청리뷰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충청리뷰 : 『○○시립○○단, 금품시비 또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3일자 34면)

내 용 : <2007충북조정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충청리뷰는 2007년 7월 13일자에 ○○시립○○단

의 신입단원 공채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단원의 연주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시립○○단 사진 게재에 대한 사과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7월 13일자 34면 『○○시립○○단 금품시비 또 불거져』 제목 하에 시립○○단원들의 연주 장면을 보도한 바 있으나 이 사진의 내용은 기사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사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시립○○단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리뷰 2007년 8월 17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

제목(지휘자 H 씨 심사위원...) 활자크기와 함께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함께 한다.

충청리뷰 : 『○○시립○○단 사진 게재에 대한 사과
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7일자 2
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시립예술단체의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1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충청리뷰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0.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충북조정9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2007충북조정9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충청리뷰 : 『○○시립○○단, 금품시비 또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3일자 34면)

내 용 : <2007충북조정8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시립예술단체의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1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충청리뷰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0.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충북조정9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2007충북조정9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충청리뷰 : 『○○시립○○단, 금품시비 또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3일자 34면)

내 용 : <2007충북조정8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학교가 학생들에게 ‘성적 줄세우기’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8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서울〇〇초등학교 (교장 최 〇 〇)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1.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초등학교 ‘점수형’ 성적표 부활』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10면)

내 용 :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가 일제히 확산된 데 이어, 학생 점수를 매긴 성적표까지 만들어 보내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줄세우기’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당국은 성적 통지 방식은 각 학교가 결정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중략)

교사들은 몇 년 전 없어진 ‘점수형’ 성적통지표가 이렇게 부활함에 따라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〇〇초교 교사는 “점수가 낮게 나온 성적표를 받아든 대다수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초등 5학년 딸을 둔 김〇〇 씨는 “시험을 일주일 이상 남겨두고도 아이가 친구도 안만난 채 공부에만 매달려 안쓰럽다”고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울〇〇초등학교 점수형 성적표 취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10일자 사회면 『초등학교 ‘점수형’ 성적표 부활』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가 일제히 확산된 데 이어, 학생 점수를 매긴 성적표를 만들어 보내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줄세우기’ 경쟁을 부추기

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서울〇〇초등학교의 성적표를 참조그림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초등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결과 서울〇〇초등학교는 개인의 시험점수와 학년 평균점수를 안내해 성적을 줄세우거나 사교육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점수형성적표를 만든 목적은 학생이 스스로 학업성취수준과 지필평가능력을 숙지하고, 자기학습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데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을 실습니다.
- 내 용 : 〈한겨레〉는 지난 7월 10일치 10면 『초등학교 ‘점수형’ 성적표 부활』 기사에서 초등학교의 ‘성적 줄세우기 경쟁’ 및 ‘사교육 부추기기 논란’을 보도하면서 서울 〇〇초등학교의 성적표를 실은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〇〇초교는 “학력평가 결과 자신의 점수와 학년 평균점수를 안내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업성취 결과 통지방법의 다양화’ 방안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을 알게 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학습 관리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8월 17일까지 한겨레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서울지역 대부분… “시험위주 교육 불가피” 반발)의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8월 24일까지 언론사 명의로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공문을 발송하되, 공문 중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7월 10일자 보도로 인해 서울〇〇 초등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

건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신섭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민주노총의 개입으로 이랜드 노사 간 타협이 불가능해지고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8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석 행)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민주노총이 노동자 잡는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3일자 A35면)

내 용 : 민주노총이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해 이랜드 불매운동을 비롯한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1일 전국 이랜드 계열 매장 앞에서 연행 조합원 석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27일까지 ‘이랜드 매출제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뉴코아 강남점을 비롯한 29개 매장이 1~2시간씩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민주노총이 이랜드 노사문제에 끼어드는 바람에 노사간 타협이 불가능해지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을 불러온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민주노총과 이랜드 사태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3일자 A35면 『민주노총이 노동자 잡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노총이 이랜드 노사문제에 끼어드는 바람에 노사간 타협이 불가능해지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을 불러왔으며, 2004년 〇〇〇 파업에서나 2006년 〇〇 건설 노조 파업에서나 민주노총이 나섰다 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사법처리되고 회사도 치명적 피해를 입는 ‘다 같이 망하는’ 사태로 끝나고 말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랜드 노사문제에 끼어드는 바람에 노사간 타협이 불가능해지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을 불러왔다는 것은 사태의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사용자와 정부의 일방적인 책임전가 주장을 수구 언론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같은 맥락에서 2004년 〇〇〇 파업에서나 2006년 〇〇 건설노조 파업에서나 민주노총이 나섰다 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사법처리되고 회사도 치명적 피해를 입는 다 같이 망하는 사태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도 당시 사태의 책임을 노조에겐만 전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균형 잃은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7월 23일자 사설 중 민노총이 이랜드 노사문제에 개입하여 노사간 타협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을 불러왔다는 부분과 관련, 민주노총은 이랜드 사용자 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적으로 민주노총의 개입 때문에 사태가 악화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8월 16일까지 조선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

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0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공사가 민간개발 사업을 가로채려다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백지화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 종 운)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7. 3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1) 『‘수익 0원’ 충북개발공사 앉아서 수십억 원 날린다』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7일자 1면)

내 용 : 충북도가 현물 334억 9817여만 원과 현금 203억 5926만여 원 등 538억 5743만 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충북개발공사가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3월 창사(創社)이후 지금까지 수익은 한 톨도 없이 ‘△△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서 작성용역’ 등 10건의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발주금액만 무려 51억 4900만 원에

이른다.

그나마 충북개발공사가 창사 후 첫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던 청주시, 상당구 ○○동 일대 속칭 ‘△△지구’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지구 택지개발 사전재해영향성 및 환경성 검토 용역’ 등 2건의 용역비 5700만 원은 허공에 날아간 셈이 됐다.

이로써 충북개발공사는 민간개발이 추진되던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중간에서 가로채려다 ‘망신살’을 자초한 데 이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도민의 귀중한 세금만 까먹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충북개발공사가 13억 7400만 원을 들여 발주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환경영향 평가용역도 실제 사업과 연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무분별한 용역납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 of 소리가 높다. (후략)

(2) 『‘어리숙한 충북개발공사’』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일자 1면)

내 용 : 충북개발공사가 추진사업마다 주민 반발 등으로 번번히 발목을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공사는 지난달 30일 청원군 ○○읍사무소에

서 '○○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상이 인상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농성으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

개발공사는 그러나 주민설명회가 법적인 절차가 아닌 만큼,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올 연말까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개발공사는 청주시 상당구 ○○동 일대 미개발 지역인 일명 '△△지구' 개발에 나섰으나, 민간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백지화됐다. 이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및 환경성검토 용역 등 2건의 용역비 5700만 원만 허공에 날린 바 있다.

개발공사는 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산단조성에 따른 수해(水害) 우려, 생존권 보장 등을 앞세운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사업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번번히 역풍을 맞고 있는 상태. (후략)

(3) 『충북개발공사 임원 '물갈이' 여론』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5일자 1면)

내 용 : 잇단 정책 실패로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 임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잔여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 차원에서 이뤄진 '위인설관(爲人設官)'의 폐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일부 임원에 대한 인적쇄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충북개발공사 임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성급하게 공사를 설립해 연간 20억 원 가량의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충북개발공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7일자 1면 『'수익 0원' 충북개발공사 앉아서 수십억 원 날린다』 제하의 기사 등 3건의 기사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역세권 조성 등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민간개발 사업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계획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민간개발이 추진되던 △△지구 사업을 가로채려다 민간업자 등의 반발에 부딪쳐 △△지구 사업추진이 백지화 되었으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설명회가 무산되었으며,

충북개발공사는 2005년 3월 설립 이래 연간 임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연간 20억 원을 지출하여 연간 20억 원의 자본금을 까먹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택지개발사업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의 본래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며 이미 2005년 7월 충북개발공사의 설립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추진 가능사업으로 예시된 부분이므로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추진계획이 흐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지구 내에서 충청북도지사의 지구지정 부지정결정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실은 있으나, 충북개발공사의 사업개시일 전에 민간업자 주도로는 법률상 효력을 가진 지구지정신청이 접수되거나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없었으므로, 충북개발공사가 민간개발을 가로채 △△지구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민간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을 백지화하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설명회가 무산되었다고 보도한 내용도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조차 수립한 적이 없어 사실무근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개발공사 설립일은 2006년 1월이며 설립 이래 충북개발공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제 경비는 2006년 약 12억 5천만 원이며, 2006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은 약 4억 7천만 원으로 확인되어 위 보도내용을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충북개발공사 관련 보도에 대해 바로 잡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7일자 11면 『‘수익 0원’ 충북개발공사 앞에서 수십억 원 날린다』, 6월 2일자 1면 『‘어리숙한 충북개발공사’』, 7월 5일자 1면 『충북개발공사 임원 ‘물갈이’ 여론』이라는 각각의 제목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역세권 조성 등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민간개발사업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사업추진계획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민간개발이 추진되던 호미지구 사업을 가로채려다 민간업자 등의 반발에 부딪쳐 △△지구 사업추진이 백지화되었으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설명회가 무산되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2005년 3월 설립 이래 연간 임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연간 20억 원을 지출하여 연간 20억 원의 자본금을 까먹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택지개발사업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의 본래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며 이미 2005년 7월 충북개발공사의 설립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추진 가능사업으로 예시된 부분이므로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추진계획이 흐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지구 내에서 충청북도지사의 지구지정 부지정결정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실은 있으나, 충북개발공사의 사업개시일 전에 민간업자 주도로는 법률상 효력을 가진 지구지정 신청이 접수되거나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없으므로, 충북개발공사가 민간개발을 가로채 △△지구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민간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을 백지화하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설명회가 무산되었다고 보도한 내용도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조차 수립한 적이 없어 사실무근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개발공사 설립일은 2006년 1월이며 설립 이래 충북개발공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제 경비는 2006년 약 12억 5천만 원이며, 2006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은 약 4억 7천만 원으로 확인되어 위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 2007년 8월 9일자 3면 우측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6월 2일자의 소제목(○○ 제2산단 조성...)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판(www.cctoday.co.kr)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문에서 2007년 5월 7일자 ‘30억 원을 30여 명’으로, 6월 2일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협약식’으로, 7월 5일자 ‘2005년 3월 설립일을 2006년 1월 16일’로, 7월 5일자 ‘연간 20억 원의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데를 연간 20억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수정한다. ▼또한 이 기사 말미에 ‘위 기사에 대한 오기를 수정하고 바로잡습니다’라는 멘트를 표기한다.

• 신청인은 이 건 보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소제기 등 일체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충북개발공사 관련보도에 대해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3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8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시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2TV : 「뉴스타임」 프로그램 (2007년 7월 12일
18:10)

내 용 : ▷앵커 : 며칠 전 재산을 노린 아들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사건이 있었죠.

멀쩡한 사람도 얼마든지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
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경우였는데요.

얼마전 뉴스타임에도 '멀쩡한 사람들이 병원에 갇
혀 있으니 도와 달라'는 애절한 편지가 도착했습
니다.

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일반인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된 정신
병원.

사실확인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나섰습니
다.

편지에서 언급된 64살 시모 씨.

어느 날 퇴근길 영문도 모른채 포승줄에 묶여 오
게됐다는 그는 정신병원생활이 벌써 4년째라고 말
합니다.

▷환자 : 집 앞 골목에 나오니까 129 차가 있더라
고요. 두 사람이 나오더니만 팔을 뒤로 꺾어서 묶
어가지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기자 : 시종일관 자신은 멀쩡하다는 주장에, 동
행한 전문의에게 확인시켜 봤습니다.

▷의사 :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자해나 타해의 위
험성이 없고...그렇기 때문에 입원연장 사유가 안
되는 거죠.

▷기자 :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 병원의 담당
의사도 이런 판단에 동의합니다.

▷의사 : 술이 깨면 완전히 멀쩡해지는 거죠. 완
전히 멀쩡한 상태에서는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시
는 거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이 지난 2007년 7월 12일 「뉴스타임」 “형
기 없는 감옥 정신 병원” 제목의 방송에서 자해,
타해의 위험이 없으니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의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 시모 씨는 알코올중
독자의 특성을 배제한 채 당시 정신상태만으로 판
단하여 마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국민과 알코올중독자의 가족, 일선의료기관
에게 오해와 손상을 준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
다고 반론해왔습니다. □

교육부가 로스쿨 적정 인원을 2,000명 수준으로 보고, 학교별 정원을 150명 이하로 책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8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 ○)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로스쿨 정원 2000명 선 유력』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1면)

내 용 : 교육계와 법조계간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적정 인원을 2000명 수
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
을 준비해온 40여 개 대학중 절반 이상이 선정에
서 탈락할 것으로 보여,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
다.

10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교육부의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따르면 학교별 정원은 150명 이하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교원 수와 학교시설 등을 감안할 때 학교별 최소 정원은 1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000명으로 적정 인원으로 계산할 경우, 로스쿨 설치 인가 대학은 최소 13개교, 최대 20개교에 그칠 전망이어서 수년간 로스쿨을 준비해온 40여 개 대학중 절반 이상은 '십 년 공부가 도로 아미타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로스쿨 정원 2,000명선 유력” 본지 교육부 시행령 단독입수...40여개대 절반 탈락 등 엄청난 후폭풍 예고

• 내 용 : 본지는 7월 10일자 『로스쿨 정원 2,000여명 유력...대학 절반 탈락할 듯』 제하의 기사에서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별 정원은 150명 이하로 책정됐으며, 교원 수와 학교시설 등을 감안할 때 학

교별 최소 정원은 1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2,000명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교육부는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보도 당시 제정안을 검토 중에 있었고, 대학별 최소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 적정 인원수에 대해 국회에 보고한 적도 없기에 정정합니다.

신청 후 보도문

헤럴드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7일자 2면)

내 용 : 본지 7월 10일자 ‘로스쿨 정원 2000여명 유력...대학 절반 탈락할 듯’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 대학별 최소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판단한 적 없으며, 보도 당시 국회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이 2005년 다단계 회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8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진 화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6.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고진화 의원 전 보좌관, 금품수수 혐의 소환』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일자 9면)

내 용 : ○○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1일 한

나라당 고진화 의원의 전 보좌관이 ○○ 쪽으로부터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해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 의원의 이아무개 전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보좌관은 2005년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고 의원이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35%에서 5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때 실무를 맡았다.

이 전 보좌관은 2005년 당시 방문판매법 개정안 입법 청탁과 함께 ○○ 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된 국회 전문 인터넷매체인 <이지폴뉴스> 장아무개(41) 대표를 통해 ○○ 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보좌관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에 유리하게 방문판매법 개정’ 로비 연루 고진화 의원 전 보좌관 금품수수 혐의 소환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일자 사회면 『고진화 의원 전 보좌관, 금품수수 혐의 소환』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2007년 5월 31일 고진화 의원의 전 보좌관 이모 씨가 2005년 법안 발의때 ○○로부터 금품수수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모 씨를 소환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2005년 당시 ○○ 쪽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로비를 벌였던 만큼 전후과정은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직 고진화 의원이 수사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위 일자에 고진화 의원의 전보좌관 이모 씨를 소환한 것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인 신분이었고 따라서 전 보좌관 이모 씨는 ○○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바가 없고, 또 법안 발의시 고진화 의원은 ○○ 쪽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바 없는 등 전혀 로비를 받지 않았고 단지 고진화 의원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위 법안을 발의하였다가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 스스로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일자 9면 「고진화 의원 전 보좌관, 금품수수 혐의 소환」 기사에서 고진화 의원 전 보좌관 이 아무개는 2005년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하여 ○○쪽으로부터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았으나, 검찰조사결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고진화 의원실 쪽”이라는 표현과 관련, 고진화 의원실에서 근무한 이 전 보좌관이 위와 같이 조사받은 사실은 있으나, 고 의원은 이 사안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9월 7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되 굵은 활자로 처리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방문판매법 개정안 발의 당시, 다단계회사로부터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8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6.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고진화 의원 전 보좌관, 금품수수 혐의 소환』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일자 9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8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진화 의원 전 보좌관 금품수수 혐의 소환은 사실과 달라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6월 1일자 사회면 『고진화 의원 전 보좌관, 금품수수 혐의 소환』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2007년 5월 31일 고진화 의원의 전 보좌관 이모 씨가 2005년 법안 발의때 ○○로부터 금품수수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모 씨를 소환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혐

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위 일자에 고진화 의원의 전보좌관 이모 씨를 소환한 것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인 신분이었고 따라서 전 보좌관 이모 씨는 ○○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7서울조정282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모 시행사 간부와 공모해 허위서류를 꾸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4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임 ○ ○ 외 1인
피신청인 : 인천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천신문 : (1) 『토지주 회유했나』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6일자 4면)
내 용 : 인천시 부평구 ○○지구에 대한 공·민영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 간부와 사업시행자가 짜고 부채지주를 경작자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주민들에 따르면 조합 간부로 있는 A 씨와

B 씨는 모 시행사간부 C 씨와 공모해 토지소유자들을 농지원부에 자격농인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들을 회유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A 씨와 B 씨는 이 지역 농지위원 등의 자격을 이용, 토지주들에게 경작사실확인원이나 영농기계 증명을 해주면서 사업체의 토지매입 작업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토지소유자를 자격농으로 둔갑시킨 데는 바뀐 양도소득세를 때문이다.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의 66%로 중과세가 되는 반면, 자격농임을 확인받아 농지원부에 자격농으로 등재되면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이 3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굳이 다른 시행사에서 공시지가 330%로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거절, 이 시행사와 300% 보상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2) 『부동산 전매 혐의도 포착』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3일자 4면) 외 1건

내 용 :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심○○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행예정사인
S사 등 5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조합 간부와 사업시행자가 짜고 부재지주
를 경작자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확인한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전매 혐의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행예정사들이 ○○동 영농회장과 농지
위원인 A 씨와 B 씨의 토지를 다른 토지주들보다
비싼 값에 사 준다는 명목으로 매수해 각각 (가
칭)○○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부조합장
으로 선임한 뒤 그들이 농지원부와 자경농 사실을
확인하는 영농회원 자격으로 있는 점을 악용해 다
른 토지주까지 농지원부에 자경농인 것처럼 허위
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2007년 7월 16일, 23일, 30일 3차례에
걸쳐 인천시 부평구 ○○동 ○○도시개발사업 관
련, 조합간부 A 씨와 B 씨는 모시행사 간부 C 씨
와 공모해 토지소유자들을 농지원부에 자경농인
것으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들을 회
유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보도를 하였으
나 사실확인결과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특히 경찰이 농지원부 조작여부와 타 지주들을 끌
어들이기 위해 S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를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
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을 밝힙니다.

신청 후 보도문

인천신문 : 『부재지주 자경농 인정 논란』 제하의 기
사 (2007년 8월 17일자 4면)

내 용 : 인천시 부평구 ○○지구 개발방식을 놓
고 5개월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제기
된 의혹과 관련해 ‘자경농 등 농지원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부조합장이며 농지
관리위원인 A 씨가 공개한 지난 3년간 ‘경작사실
확인서’ 발부 현황에 따르면 공모의혹이 제기된
특정시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전체의
19.5%에 불과하고 나머지 80.5%가 타 업체와 계약
을 체결하거나 미계약자이다.

농지원부에 부재지주를 자격농으로 등재한다는
논란에 대해 ‘농지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의 기계화에 따라 농기계
소유자에게 일부 농정을 부분 위탁한 경우에는 자
격농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자경’의 범주에 ‘농
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
배하는 경우’와 ‘자기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주요
농작업의 1/3 또는 1년 중 30일 이상 종사할 경우
나머지 농정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자경 여부에 대한 객관적입증방식으로
수확물에 대한 처분권리 유무로 농지법은 증명하
고 있다.

조합 측은 최근 ○○지구의 자경농 등재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의 공영개발계획 발표
와 민간개발 추진이 거론된 2006년부터 자신들의
소유농지의 처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토지
주들이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후략) □

신청인 협회가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8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대한의사협회 (회장 장 동 익)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28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7년 7월 24일
06:30)
내 용 : 〈2007서울조정280의 보도내용 참조〉

피신청인 주장

공익을 위한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
용할 수 없다. ☐

현대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초동 땅이 이명박 후보 개인이 매입한 것이라고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8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우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 『“현대, 서초동 땅 사 준 적 없다”』 제하
의 기사 (2007년 7월 20일자 1면)
내 용 :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회사에서 매입·관리해 줬다는 서초동
땅을 놓고 “회사에서 땅을 사 준 적이 없다. 이 땅
은 이후보가 개인적으로 산 것”이라는 당시 현대
건설 간부의 증언이 나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현대건설 퇴직 사우들의 모임인 ‘현대○○회’ 우
○○ 사무총장(60)은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의 인

터뷰에서 “급여로 땅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냐”라
며 이같이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나라 검증청문회 - “의혹 더하는 서초
동 땅” 보도에 대한 정정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20일자 1면 『현대, 서
초동 땅 사 준 적 없다』 제목의 본지 기사중, 우○
○의 실명을 인용하여 “상기 부지를 본인이 직접
샀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잘못된 보도로 신청인의 뜻과 다르
게 보도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하며 이에 정정보
도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게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의 조부가 일제시대 친일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89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기 속

피신청인 :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월간조선 : 『언론과의 전쟁 전대위로 나선 조기숙 씨 조부의 일제하 행적』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호 520~535면)

내용 : (전략) 이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했던 조선 수석은 금년 2월 들어서부터 정치·언론·역사 바로 세우기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월간조선에는 조병갑의 두 아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의 조부이자, 조병갑의 둘째 아들 강희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조기숙 씨의 조부인 강희는 평생 총독부 기관지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친일 인사다. 조강희 씨의 손녀 조기숙 씨가 친일파를 비판하고 역사와 언론 바로 세우기에 앞장섰다는 건 희대의 코미디다. 조선 말부터 친일파로 호의호식했던 이들의 후손이 조상 덕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조병갑의 큰 아들 찬희 씨는 일제때 면장·군수 생활을 오래 했다. 지금 정권 사람들 기준대로라면 명백한 친일인사다라는 내용이었다.

조기숙 전 수석이 자신의 조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알고 싶어 인터넷뉴스를 검색해 봤다. 조선 수석은 지난해 12월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할아버지는 일제 때 친일파였으나, 해방 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무위도식했다. 저는 조상으로부터 한 톨도 물려받은 자산이 없다. 그래서인지 부채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좌파 인터넷 매체에 실린 조 전 수석 관련 기사에 조 전 수석의 조부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2007년 7월호 『언론과의 전쟁 전위대로 나선 조기숙 씨 조부의 일제하 행적』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다음과 같이 반론해 왔기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 신청인이 요청한 반론보도문 중 보도내용과 무관한 일부 내용은 삭제하였음)

월간조선은 2007년 7월호에서 필자의 증조부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네 번에 걸친 필자에 대해 월간조선이 내보낸 악의적 비방기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한 대선 예비후보가 아닙니다. 게다가 공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으며, 현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을 할 생각이 없다고 2007년 2월 출간한 마법에 걸린 나라에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조선이 필자에 대해 상습적으로 악의적 비방 기사를 쓰는 이유는 필자가 조선일보의 구체적 기사에 대해 비판한 것을 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재벌의 권력을 이용한 보복폭행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냉엄한 사법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권력을 이용한 조선의 필자 인격에 대한 보복 폭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직자가 재임 중 혹은 그 전후에 행한 부도덕한 행위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비판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간조선이 그동안 필자에게 가한 비난은 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월간조선의 4번 특집 중 세 번은 모두 필자의 공직경력과 상관없는 조상에 대한 공격입니다. 근대 국가 이후, 누구나 조상은 있지만 누구에게도 조상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성별, 연령, 인종 등에 의한 차별행위나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공직자의 조상을 문제 삼을만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손이 부당하게 형성된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아 향유한다거나, 조상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을 얻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월간조선은 자신들이 필자의 조상을 뒤지는 이유가 참여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때문이며 2007년 7월호에서는 “조강희 씨의 손녀 조기숙 씨가 친일파를 비판하고 역사 바로세우기에 앞장섰다는 건 희대의 코미디다. 조선말부터 친일파로 호의호식했던 이들의 후손이 조상 덕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근거규정이 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하는 20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조부는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따라서 명단에 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필자가 참여정부의 이 정신에 찬성하기는 하지만 역사바로세우기에 앞장섰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필자의 증조부는 참여정부 이전에도 이미 탐관오리로 낙인이 찍혀 교과서에 올랐으며 자손은 그 죄 값 이상의 고통을 치렀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동학농민군은 반란군에서 애국자로 명예회복이 되었습니다.

월간조선이 2007년 7월호 필자의 조부는 그리 중요한 언론인도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분도 아닙니다. 극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추측성 기사를 써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유감입니다.

필자의 조부에 관한 월간조선의 기사가 악의적 추측성 기사로 일관하지만 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자의 조부가 한국 전 이후 잠깐 언론계에 복귀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방 이후 현장에서 물러나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며 문간방 셋집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필자의 아버지는 고학으로 대학을 다녔고 필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셋방을 전전했습니다. 필자 또한 부모의 도움없이 장학금으로 유학했음을 조금만 취재하면 알 수 있고 관련서류를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부가 스스로 단행한 친일 청산은 어려서 셋방을 전전하던 필자에게도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먹고 살면 언젠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필자는 처음부터 조상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월간조선은 이미 역사청산이 된 남의 조상 친일행적을 파헤쳐 비방할 시간에 자신들의 친일 행각을 밝히고 민족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인 노조가 교회를 뒤흔들려하고 있다는 장로의 설교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노동조합 (위원장 이 ○ ○)

피신청인 : 화곡동교회 홈페이지

증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8

처리결과 : 각 하

보도내용

화곡동교회 홈페이지 : 「예배실황」 코너 (2007년 6월 10일자 동영상)

내 용 : (전략)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분주한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였고 말씀에서 떠나 살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으며 형제들에게 상처준 일들 뿐이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곧고 바르지 못한 채 혼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빈부격차가 커져갑니다. 가진 자들이 권모와 술수로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근심케 합니다. 깨끗하고 성스러워야 할 한국 교회는 자꾸만 분열을 거듭합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겨야 할 신앙인들이 노조라는 세상풍조에 휩싸여 교회를 뒤흔들려 합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화곡동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의 불길로 정화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노조가 교회를 뒤 흔들려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내 용 : 화곡동교회 홈페이지의 2007년 6월 10일 오전 11시경 예배 실황내용과 관련, 방송중 기도순서를 맡은 박○○장로의 기도 중에 “노조가 세상풍

조에 휩쓸려 교회를 뒤 흔들려 합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노조는 교회를 뒤흔들려한 일이 없고, 노조는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하고 정당한 활동인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노동조합

위원장 이 ○ ○

피신청인 : 화곡동교회 홈페이지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6-46

담당목사 김 의 식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동일한 기도자로 하여금 별지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인터넷 방송에서 삭제하고 피신청인 교회소식에 정정보도문을 기재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7. 6. 10. 교회의 예배 장면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상을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그 동영상에는 ‘노조가 세상풍조에 휩쓸려 교회를 뒤흔들려합니다’라고 방송하고 있으나, 사실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회를 흔들려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와 같은 정정보

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정한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법 제2조에 정한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서의 보도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언론중재법 제2조 제8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 중에서 ‘독자적 기사생산을 위해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 하고,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 하는 것만이 이에 해당하는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는 위와 같은 취지 인력이나 기사 게재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인터넷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가 언론중재법에 정한 언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17.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옥외광고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동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협회 (대표 최 ○ ○)

피신청인 : 한국광고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광고신문 : (1) 『“옥외광고법 개정안 철회, 특별법 제장하라”』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6일자 1면)

내 용 : 옥외광고업계 단체들은 20일 옥외광고진흥센터 설립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제6조④를 삭제하고, 이를 특별법 형태로 국회에서 새로 제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협회, 한국△△△△△공업협동조합, 한국□□□□대행사협회, 한국○○○○협회, 한국××××광고협회, 한국○○○○사협회 등은 이날 국회 청원서를 통해 “특별법으로 국가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기금만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만 하고 기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후략)

(2) 『업계, 연대 통한 정면돌파 의지』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6일자 6면)

내 용 : 이번의 청원서는 그동안의 옥외광고대행업계 중심의 독자적인 행보에서 벗어나 옥외광고 전체의 공론을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서 문안은 업계 일부 인사들이 작성, 옥외광고 유관 단체에 회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국○○○○협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6일자 1면 『옥외광고법 개정안 철회, 특별법 제정하라』 제목으로 한국○○○○협회 등 옥외광고업계 6개 단체가 연대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국○○○○협회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청원서를 회람, 동의한 바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6일자 1면, 2면, 6면에서 “옥외광고법 개정안 철회, 특별법 제정하라” 및 “업계, 연대 통한 정면돌파 의지”라는 제목으로 한국○○○○협회 등 옥외광고업계 6개 단체가 연대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한국○○○○협회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청원서를 회람, 동의한 바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광고신문〉 2007년 8월 30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옥외광고진흥센터 건립)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광고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3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골프접대를 받고 해당 골프장에 대한 고발성 기사를 무마하기로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2인

피신청인 : 나우리신문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나우리신문 : (1) 『라운딩 빙자한 보도무마 로비 의혹 지역 방송사 대표 부적절한 처신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7일자 8면)

내 용 : 대중골프장 회원 편법모집과 허위 과

대광고로 골프마니아들을 현혹시킨다는 고발성 보도를 낸 지역 모 방송사 L모 사장이 해당 골프장 Y모 회장과 골프 라운딩을 즐겨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충주MBC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뉴스데스크 충북편을 통해 L모 기자가 Y 씨가 충주시 ○○면 ○○리 54만 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건설중인 퍼블릭골프장 공사와 관련,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데도 편법으로 회원모집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충북 충주시 ○○면에 위치한 ○○베이스 골프&리조트(27홀·사진)가 창립 회원을 모집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나들목에서 5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10월 개장 예정. 월 두 차례 주말예약을 보장하고 가족호텔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특전을 준다. 개인 5,800만 원. 법인 1억 1,600만 원 (2007년 3월 9일자 동아일보기사)”

실제 18홀 규모로 이뤄지면서도 마치 27홀 규모로 골프텔과 함께 건설중인 것으로 잘못된 허위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고 보도해 지역사회 파문을 일으켰다.

더군다나 다른 언론사들이 침묵하는 과정에서 단독 보도하는 수훈감을 발휘해 중앙언론서부터 지역언론에 이르기까지 핫이슈로 부상됐다.

그러나 보도를 담당한 L모 기자는 보도 이후 Y 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져 실종된 기자윤리의 현주소를 가늠케 했다.

특히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도제작국은 골프장 건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담긴 제보를 받아놓고도 데스크의 취재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해 ‘골프장 사주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됐다.

한 수 더 떠 이 회사 사장인 L 씨는 보도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3월 11일 인근 JCC에서 지역의 또 다른 방송사 사장과 골프장을 건설하는 D그룹 Y 씨와 모 인사 등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나 지역 방송사 대표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던다는 비난 가운데 도덕 불감증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후략)

(2) 『양 사 윤리강령 실종』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21일자 8면)

내 용 : (전략) 본보의 최초 단독 보도(5월 7일자

8면)로 인해 양 방송사 대표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뒤늦게 충주 MBC 이재은 사장은 ‘미디어오늘’(5월 16일자 정○○ 기자)과의 인터뷰에서 납득키 어려운 답변을 했다.

이 사장은 15일 “D골프장의 편법분양문제는 내가 취재를 지시했고, 전국뉴스에도 내보내자고 했을 정도”라며 “봐주려고 했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시점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정 기자의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지만 D골프장의 회원모집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약속된 기관장 모임에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라운딩 빙자한 보도무마』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7일자 8면 『라운딩 빙자한 보도무마 로비 의혹, 지역방송사 대표 부적절한 처신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 골프장 편법분양에 대한 충주MBC의 최초 보도 이후, 충주 MBC 사장이 해당 골프장 Y모 회장과 골프라운딩을 즐겨 ... 보도무마 의혹...”, “보도를 담당한 L 기자는 보도이후 Y 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져 실종된 기자윤리의 현주소를 가늠케 했다”, “본사 감사실은 충주MBC 총무부장을 호출해 사장 골프라운딩과 관련된 보고 또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충주MBC 사장과 Y모 회장의 골프회동은 지역 기관장들의 모임으로써 골프비용도 각자가 부담하는 등 보도를 무마해 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충주 MBC L 기자의 Y 씨에 대한 사과와 충주MBC 총무부장의 본사 감사실 호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충주MBC 이재은 사장의 골프장 편법 분양 취재지시는 명백한 사실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5월 7일자 8면에 “라운딩 빙자한 보도무마 로비 의혹, 지역방송사 대표 부적절한 처신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 골프장 편법분양에 대한 충주MBC 최초 보도 이후, 충주MBC 사장이 해당 골프장 Y모 회장과 골프라운딩을 즐겨… 보도무마 의혹… ‘보도를 담당한 L기자는 보도이후 Y 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져 실종된 기자윤리의 현주소를 가늠케 했다’, ‘본사 감사실은 충주MBC 총무부장을 호출해 사장 골프라운딩과 관련된 보도 또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자 8, 9면에 “충주MBC-충주MBC 대표 골프라운딩 물의 양 사 윤리강령 실종” 제하의 기사에서 충주MBC 이재은 사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분명 취재지시를 내렸다고 했으나 확인결과 이 사장이 ‘취재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충주MBC 사장과 Y모 회장의 골프회동은 지역 기관장들의 모임으로서 골프비용도 각자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골프장 편법분양과 관련해서 4월 20일자에 한차례 후속 보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골프장 편법분양과 관련해서 4월 20일자에 한차례 후속 보도를 한 바 있어 보도를 무마해 졌다는 내용은 충주

MBC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충주MBC L 기자의 Y 씨에 대한 사과’ 발언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L모 기자는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충주MBC 총무부장의 본사 감사실 호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충주MBC 이재은 사장의 골프장 편법분양 취재 지시’는 마을주민 들의 충주시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내용을 MBC에 전달한 후인 2월 말경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된 보도 내용의 대부분은 골프장 편법분양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9월 증설에 관한 ‘변경 주민 제안’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위 보도내용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나우리신문 2007년 8월 27일자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5월 7일자 부제목 보도기자 ‘사과’ 발언…)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나우리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7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수입하는 질소분석장비의 견적가격이 신제품에 비해 비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프로세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KBS-1TV :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 (2007년 7월 29일 22:40)

내 용 : ▷기자 : 정수장이나 폐수장의 수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현장 뿐 아니라 웹을 통해 원격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멀리서도 원하는 측정값뿐 아니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해 설치한 업체는 지난 2005년 산자부로부터 서비스품질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NEP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홍천군을 찾아 관련 사업을 할 때 이

보도내용

인증내용을 믿고 20%의 물량을 맡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홍천군은 지난달 입찰을 진행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NEP인증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입찰 진행 중에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 : “(그러면 입찰 결정이 난 뒤에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입찰 진행 중에 들어온 거죠. 어떻게 취소시킬 수가 있는 거냐고요.”

▷기자 : 하지만 NEP 업체 관계자가 홍천군을 찾아가 홍보한 시기는 입찰 공고가 있기 몇 주 전입니다. 홍천군은 또 사업 설명서인 시방서에 질소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에 대해 특정 규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맞는 제품을 써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제한했습니다.

홍천군이 특정지는 이 질소 측정장치의 규격은 한 업체가 독일에서 수입하는 장치와 규격 조건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NEP 업체가 일반 입찰이라도 참여하려고 이 장치를 수입하는 업체에 가격을 문의했더니 NEP 업체가 그동안 별 문제없이 써왔던 장비 가격의 2배나 됐습니다. 결국 공사의 낙찰은 측정장치 수입회

사에 돌아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A사 부당영업행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 지난 7월 29일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의 외면 받는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보도 내용 중 ○○기전의 NEP는 측정장비와는 무관한 Data Logger에 한정된 내용으로 과장되었음을 밝힙니다. NEP와 관련이 없는 질소분석장비와 관련하여 외국제품 수입사 A사의 견적가격이 NEP 업체에서 사용하던 제품가격의 2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A사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로 NEP 업체가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사가 공무원과 입찰자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업체의 일방적인 견해를 알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축협노조가 강경전면파업을 3년여 동안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축협노동조합 ○○지부

(지부장 김 ○ ○)

피신청인 : 금산저널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9.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금산저널 : 『○○축협 노사갈등 끝!』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6일자 1면)

내 용 : ○○축협 노사간 갈등 3년여가 결말을 맞았다.

그동안 축협노조 측에서 부당 해임이다 주장하여

강경전면파업에 돌입하고 노동위원회 제소되었으나 결국 축협 사 측의 손을 들어 갈등이 끝을 맞게 된 것.

축협 노조 측은 노사정위원회에 해임 부당 철회를 위하여 제소했으나 5월 28일자 1차 서류 심사에서 각하되었고 2차심의 위원회에서 7명 중 1명의 계약직을 제외한 6명의 노조원을 해임과 관련 축협 사 측의 결정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지난 7월 9일 노동감독관들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증빙 공문서는 약 1달 뒤 축협 사 측에 발송되어 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식 공문서를 받기까지 행여 이렇다 할 이번이 없는 한, 마지막 단계랄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조 측에서 같은 건으로 다시 제소한다 해도 2차 노동심의위원회 근로감독관들이 축협 사 측의 결정에 옳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이미 해임된 축협

노조원들의 축협이 직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끝난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축협 노사분쟁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6일자 1면 『금산축협 노사 갈등 끝!』제하의 기사에서 ○○축협과 전국축협노조 대전충남본부 ○○축협지부의 갈등이 3년여를 끌어오며 강경전면파업으로 돌입하다, 노사정위원회에 제소돼 2차 심의위원회에서 7명 중 1명의 계약직을 제외한 6명의 노조원 해임과 관련한 사측의 결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지난 7월 9일 노동감독관들에 의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증빙공문서는 약 1달 뒤 축협사 측에 발송되어 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축협 노사 갈등은 3년을 끌지 않았고 축협노조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 해임 부당철회를 제소한 바 없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있으며, 5월 2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계약직이○○의 부당해고는 인정되었고, 박○○ 부지부장

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5명에 대해서는 해고시점에 대하여 1차 해고를 불인정하고 2차 해고를 인정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특히 부당해고 심판건은 지방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5심제라는 기본적인 상식마저 무시하고 해고자들의 복직권리가 끝났다고 보도해 해고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은 물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노조가 강경대응 한다고 보도하였으나 경찰측 확인결과 노동조합은 11월 2일 파업 이후 지금까지 68일 파업을 하며 사 측과 물리적 충돌없이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로 임하였고 파업기간에도 양측농가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대 농민 민원업무를 군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등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보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의 천성산 보호를 위한 단식이 득이 되지 못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단식을 모독하지 말라』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3일자 A34면)

내 용 : 2003년에 '○○'이라는 승려가 '천성산의 도룡뇽이 죽는다'며 경부 고속철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단식을 벌였지만 공사가 한창인 오늘날도 도룡뇽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한다. 죽은 것은 그가 걱정했던 도룡뇽이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과 몇 년간의 귀중한 시간이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장장 118일간의 기록적인 그의 단식은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약간의 소득을 안겨주고 몇몇 시민단체에 일거리를 제공했으며 기자들에게 한동안 기삿거리를 제공한 것 외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못한 사건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3일자 A34면 『단식을 모독하지 말라』 제하의 기사에서 ○○스님이 도롱뇽을 살려달라며 소송과 단식을 하였지만 공사가 한창인 오늘날에도 도롱뇽이 잘 자라고 있으며 공사 중단으로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과 몇 년간의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도롱뇽은 환경지표종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30종의 보호종과 자연환경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겪게 될 생명체를 대변하는 존재”이며,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고속철도 공단에서 밝힌 천성산 공사 중지 기간은 발파중지 6개월간”이며 “시공 사업체에서 밝힌 실제 손실 금액은 백오십억 수준”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처럼 위 기사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4월 3일자 A34면 ‘단식을 모독하

지 말라’ 제목의 칼럼 중 ‘죽은 것은 그(○○스님)가 걱정했던 도롱뇽이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과 몇 년간의 귀중한 시간’이라는 내용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공사 중단 기간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개월이며, 시공업체가 밝힌 직접적인 손실금액은 145억 원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2007년 9월 7일 까지 동아일보 오피니언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통상의 ‘바로잡습니다’ 제목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3일자 A3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여성난자매매실태를 방영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를 음성변조없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8월 7일 21:20)

내 용 : ▷앵커 : 공공연하게 여성 난자를 사고 파는 충격적인 실태를 MBC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학벌 좋고 예쁜 여성의 난자는 1개에 무려 5

~6000만 원이지만 그 후유증은 또 어찌라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난자를 팔겠다는 한 2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생활고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금 1천 2백만 원이면 “난자를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합니다.

▷김모 씨(25살) : “혹시 난자 공여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 애가 내 새끼다 이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진짜 괜찮아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기자 : 난자는 불임 여성이 사들입니다. 난자를 사서 체외 수정을 한 뒤 자궁에 이식하면 내 아이처럼 낳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임 여성을 위한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마치 좋은 상품을 선전하듯 난자를 판다는 광고가 빼곡

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낸 광고입니다. 28살에 혈액형은 B형, 대학 졸업, 하나같이 젊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했다는 걸 내세웁니다.

난자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학벌이나 외모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명문 대학 출신에 얼굴까지 예쁘면 이른바 ‘명품난자’라고 해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중략)

▷기자 : 난자를 사들이는 불임 여성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죽 했으면 이런 방법을 쓰겠냐는 겁니다. 무조건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남편을 생각하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임 여성 : “남편이 원하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남편도 제 상황을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걸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기자 : 난자 매매는 강력히 단속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난히도 핏줄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입양문화가 더욱 돋보이는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오〇〇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8월 7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에서 ‘명품 난자, 수천만 원에 거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신청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다른 사람의 난자를 공여 받아 임신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난자를 사들이는 불법여성의 항변으로 편집해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고, 사전동의없이 신청인의 신분을 노출시켜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신청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되어 커다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9월 7일까지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보도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신청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1인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3.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합의)

보도내용

SBS-TV : 「출발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7년 7월

31일 07:30)

내 용 : (전략)

▷경찰 : 실례합니다. 해운대 ○○경찰서에 근무하는 전경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고등학생이요? 예? 고등학생?

▷리포터 : 예.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술·담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오히려 아이들을 몰아붙입니다.

▷가게주인1 : 이거 주민등록증을 위조했거나 했겠조.

▷가게주인2 : 니,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니.

어 느그 때문에 장사 망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겠
노!

〈신청인의 말이 끝나고 간판 클로즈업〉

▷리포터 : 오로지 상술에 눈먼 가게 주인의 악
다구니는 어쩌면 아이들을 이곳으로 내몬 우리 어
른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청소년 실태보고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31일 보도에서 해운
대 모 가게주인이 청소년에게 아무런 제재없이 술
과 담배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을 탈선으로 이끈다

는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기
에 이를 바로잡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가게주
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중재합의

양 당사자 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진행하
기로 합의함

〈2007서울중재9 참조〉

□

의왕소방서가 화재진압을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의왕소방서 (서장 송 병 일)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터진 소방호스로 화재진압했는데 ...

경찰은 사고원인을 질식사로 축소해”』 제
하의 기사 (2007년 8월 13일자 12면)

내 용 : “터진 소방호스를 가지고 화재 진압을 했
다는데...”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화재로 60대 할머니 노동
자 6명이 참변을 당한 지 4일째인 12일 경기 의
왕·안산시 등 3개 병원에 흩어져 있는 유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
고 있다.

유족 대표를 맡고 있는 변○○ 씨는 “어떻게 숨졌
는지 경찰이 정확한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
나 유족들은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고 원인

이 밝혀지기도 전에 발인을 해야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유족들은 불어나는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13~14일째 모두 발
인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최초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차 호스
가 터져 물이 새는 등 화재 진압이 소홀했으며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확인한 결과 화재
현장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발표된 4명은 불을 끄
려다 불에 탄 뒤 질식사 한 것으로 나왔다며 경찰
이 사고 원인을 ‘질식사’로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또 이 공장의 손○○(35) 공장장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재 신고 5분 뒤 소방차가 출동했
으나 소방호스가 터져 있었다”며 “손으로 새는 물
을 막으려 했으나 물이 거세 막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층에 올라온 소방관들에게 안
에 8명이 있으니 구해달라고 했으나 들어가지 않
았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의왕 화재관련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3일자 사회면에

『터진 소방호스로 화재 진압했다는데...경찰은 사고원인을 질식사로 축소해』 제목으로 ○○소방서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최초 화재진압에 나선 소방차 호스가 터져 물이 새는 등 화재진압이 소홀했다는 것은 소방호스가 진압과정에서 유리파편에 구멍이 생겨 누수된 것으로 화재진압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현장출동 소방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구조대원이 현장도착과 함께 현장 방수요원과 함께 진입하여 불길속에서 쓰러져 있던 안○○(여, 64세)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사망자 5명도 화재현장에서 후송조치하는 등 화재진압활동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군포경찰서에서 신청인의 ○○화재 사건 화재진압 소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대로 후속 보도하되, 원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소방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 및 소방호스가 새어서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수사종결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 화재 참사 원인은 ‘유증기’』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7일자 13면)

내 용 : ‘할머니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시 화장품 용기 제조공장 화재 참사(〈한겨레〉 8월 11일치 9면) 원인은 작업장 안에 가득 차 있던 유증기(기름에서 나오는 증기)때문인 것으로 결론났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불이난 ○산업 작업장에 유증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자연발생 정전기로 불티가 튀거나, 썩 썩 100도인 고온의 건조실에 스파크가 일어나며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산업 대표 송아무개(45) 씨와 공장장 손아무개(35)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경기도방노동청 안양지청은 송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산업은 시너를 세척용으로 사용했는데 화재 당일 비가 오면서 작업장에 시너 유증기가 가득 찼으나, 송 씨 등은 환기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화재 당시 소방호스가 터져 화재 현장 접근이 어려웠고, 공장장이 소방관에게 구조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일부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소방호스의 감식을 의뢰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출동한 소방관들을 상대로 수사했으나 사실과 다른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 ○○시 ○○동 3층짜리 공장건물 3층에 입주한 ○산업에서는 지난달 9일 저녁 8시 35분께 작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60대 여성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

신청인 대학교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선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총장 양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3.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사학 틀어쥐기, 그리고 ‘코드’는 논
공행상』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1일
자 A31면)

(2) 『“친정부 인사 포진...편향 극치”』 제
하의 기사 (2007년 7월 21일자 A2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7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총장 양 ○ ○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신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조정결
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 제외)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상자기사
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교육
부, 5개대 임시이사 확정”)활자크기로, 본문은 조
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용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
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
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9.

<별 지>

• 제 목 : ○○대 임시이사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7월 21일 기사와 사실 관련, ○○대 임
시이사 파견은 교육부의 감사에 따른 조치로 주○
○ 전(前) 이사장의 무죄판결과 임시이사 파견사
유는 무관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는 기사에 인용된 교수협의회가 아닌
회원 126명의 교수협의회(회장 이○○)는 임시이사
선임을 환영하고 있으며, ○○대 임시이사중 학교
구성원 몰래 추천된 인사가 없고, 학교 구성원의
공정한 추천을 거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

신청인이 재개발 공사비를 인상해 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8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조 ○ ○) 외 1인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3.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6월 30일 21:25)

내 용 : ▷앵커 :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실태가 최근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건설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건설이 짓고 있는 서울 ○○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 건설사는 공사비 670억 원 올려 달라며 재개발 조합장에게 3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구역주택재개발조합 및 조합장 조○ ○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2007년 6월 30일 저녁뉴스에서 ○○건설이 짓고 있는 서울 ○○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과 관련, 건설사는 공사비를 670억 원 올려 달라며 재개발 조합장에게 3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공사비 인상은 가계약서에 근거를 두고 실제 공사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조정한 것이고, 현 조합장 조○○은 공사비 인상의 대가로 3억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동 재개발 수사, 현재 조합장 무관 확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6월 30일 「건설업계 영업정지 당할까 '전전긍긍'」 제하의 보도에서 ○○건설이 ○○동 재개발 조합장에게 3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협의사실은 전 조합장과 관련된 것으로, 현 조합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9월 10일까지 (방송예정일시 이틀 전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 KBS-1TV 「뉴스9」 프로그램 (스포츠뉴스 시작전)에 보도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기사의 화면으로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방송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9월 1일 21:4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재개발 공사비를 인상해 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9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조 ○ ○) 외 1인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동 재개발 ‘비리 종합세트’』 제하
의 기사 (2007년 6월 27일자 8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9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9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동 재개발 ‘비리 종합세트’』 제하
의 기사 (2007년 6월 27일자 8면)
내 용 : 본보 6월 27일자 사회면 ‘○○동 재개
발 비리종합세트’ 제하의 기사내용 중 ○○동 재개
발조합 현 조합장이 공사비 인상의 대가로 시공사
로부터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사
실이 아니며, 현 조합장은 조합원 15명에게 재개발
지분을 임의로 배정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
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재개발 공사비를 인상해 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조 ○ ○) 외 1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3.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청계천 재개발 비리 종합세트』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7일자 16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9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9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합의문
- 내 용 : 6월 27일자 A16면 「청계천 재개발 비리
종합세트」 기사 중 사무실 보증금과 관리비 3억
원 대납은 전 조합장과 관련된 것으로 현 조합장
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현 조합장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아일보 2면 좌측 하
단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로 하여 2007년 8월 3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
지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
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
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
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3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재개발 공사비를 인상해 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조 ○ ○) 외 1인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3.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국일보 : 『뇌물·위조·폭력...또 재개발 '비리사
슬'』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7일자
A10면)

내 용 : <2007서울조정29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29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7서울조정30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7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이○○ (대표이사 오 ○ ○) 외 1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7년 7월 31일
23:15)

내 용 : ▷진행자 :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도 빠듯한 아주머니들이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저렇게 강경투쟁에 나서는 게 그 이유를

찬찬히 집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PD :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이○○ 산하 △
△△와 □□□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각각 350명
씩 총 700명 해고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회사가 재
계약을 거부한 것이다.

△△△ 대표이사 오○○ 사장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우 : 지난해 4월 ○○○ 인수를 공식발표한
이○○ 고용보장과 함께 ○○○ 노사의 단체협약
도 승계했다. 인수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현 △△
△대표 오○○ 사장.

▷오○○ : 그런 식으로 이○○라는 기업이 선택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부각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저
희로서 사실 이렇게까지 큰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올만큼 큰 문제는 결국 아니었다고 보는데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겟이 돼서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성우 : ○○○는 왜 18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어긴 것일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31일 「PD수첩」에서 이○○그룹 △△△와 □□□가 각 350여 명씩 대량해고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700여 명 대량해고는 없었으며 △△△와 □□□ 양사에서 단체협약의 계약만료 및 재계약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원

은 70여 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대해 방송내용과 달리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 측이 제시한 교섭안인 “18개월 이상 전체에 대한 고용 보장”이 단체협약과 다를 바 없다는 내용은 오보이며,

또한 △△△ 아웃소싱 철회 10개월 유예기간 동안 직원들은 현재 도급업체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물에 빠져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이틀 후에 숨진 신청인의 딸이 사건 당일 이미 익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길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4.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뉴시스 : 『진안 윤일암 반일암서 8세 여아 익사』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3일자 사회면)
내 용 : 3일 오후 2시 17분께 전북 진안군 윤일암 반일암 현수교 밑 하천에서 가족과 함께 피서를 온 이모 양(8·여)이 물에 빠져 숨졌다.

이 양을 발견한 또 다른 피서객은 이 양이 고무 튜브를 탄 채 머리를 물속에 담그고 움직이지 않아 꺼내보니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양이 떡과자를 먹고 물에 들어가 봉변을 당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과자에 의

해 기도가 막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뉴시스는 지난 8월 3일자 사회면에서 진안 윤일암 반일암에서 가족과 피서를 온 이 모양이 익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병원에 후송된 후 이틀 뒤에 사망했으며 보도시점에서는 중태였음에도 사망하였다고 보도해 가족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 바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길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 서원빌딩 7층

대표이사 배 기 철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1주일 이내에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

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4.

조정결정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지급〉

□

재건축아파트의 석면철거에 대한 환경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환경운동연합
(회장 이 ○ ○) 외 4인
피신청인 : 인터넷환경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4.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인터넷환경일보 : 『석면 ‘법’보다 ‘합의’ 우선』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전략) 하지만 문제는 엉터리 공기질 측정과 그로 인한 비용만 날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와 (감리를 두지 않음에) 항의했던 주민들은 환경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안도할 뿐 정작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 엉터리 측정이 이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현재 진○○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드러내는 재건축 현장에서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감리나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되지 않은데 따른 엉터리 석면철거, 전문가 미비로 환경단체나 업체에서도 비용적인 문제 등 조율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 인근 한 주민에 따르면, 주민대표들이 ○○○○환경운동연합 측에 감리 또는 환경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S○○라는 회사를 소개받고 환경모니터링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문제는 10여 동에 가까운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불과 몇 개의 샘플조사만 이뤄지고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진○○ 아파트 재건축으로 본 석면정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 지난 8월 4일자 초기화면 좌측상단(톱)에 『석면 법보다 합의 우선』 제하의 기사는 석면감리에 대해 아직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감리의 자격, 내용과 범위,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지금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석면철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진○○아파트 석면철거는 노동부의 정식 허가를 받았고 공기질 모니터링, 환경 모니터링으로 ○○○○ 환경운동연합, 주민대표들이 25일간 날마다 참여했으며, 진○○ 아파트 2차, 3차 석면함유자재 조사보고서와 석면함유물질해체 제거 중 인근 주민 거주지역 대기중 석면입자 측정결과보고서가 이미 나왔고, ○○구청 건축과와 서울시 교육청에도 이미 보고된 적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공기 측정비용은 2,800만 원이었고, ○○○○ 환경운동의 석면감시와 주민들의 자발적 감시가 돈으로 무마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8,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환경연합 반론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4일자 “석면 법보다 합의 우선-진○○아파트 재건축으로 본 석면 정책” 제하의 기사에서 진○○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석면철거 작업에 대하여 감리나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되지 않아 엉터리 철거와 비용낭비 우려가 있고 소요되는 비용보다 과다 책정된 돈의 행방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아파트 석면철거 환경감시를 맡은 ○○○○환경운동 연합과 주민대표들은 석면철거에 대한 감리나 법적 규정이 미흡한 현실에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석면철거 작업원이 아닌 1,700

만 원으로써 과다 책정된 비용도 없고, 따라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환경일보〉 메인화면 톱기사란의 다섯 번째 기사로 2007년 8월 23일 09시부터 8월 24일 09시 까지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기사최종면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내용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위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 기사를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 신청인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터넷환경일보 : 『○○○○ 환경연합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3일자
메인화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제주조정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한라일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술자리 파문이 있었던 모기관, 고위 공무원 A 씨가 여직원에게 술을 따른 뒤 마실 것을 강요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지만 해당 기관은 이 일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제주도가 펴낸 ‘성희롱 예방교육’ 책자를 보면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후략)

보도내용

한라일보 : 『성희롱 상담원 ‘있으나 마나’』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9일자 4면)

내 용 : 제주자치도와 유관 기관의 성희롱 관련 상담과 고충처리를 맡는 고충상담원 지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지난 6월말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무원의 대낮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성희롱 상담원 ‘있으나 마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9일자 사회면 『성희롱 상담원 ‘있으나 마나’』 제하의 기사에서 도 고위 공무원이 대낮 술자리에서 성희롱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성희롱이라는 민감한 용어

를 잘못 과장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그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사과드리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의 아들이 학업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종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6.

처리결과 : 취 하

고생 또 투신 자살』 제목으로 서울 D외고 2학년 국내 진학반 전모(17) 군이 학업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전모 군은 자살이 아닌 실족에 의한 사고사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 『외고생 또 투신 자살』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8일자 A10면)

내 용 : 명문대 진학률이 상위권인 D외고 학생 2명이 한 달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6일 오후 6시쯤 서울 D외고 2학년 국내 진학반 전모(17) 군이 서울 도곡동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렸다. 경비원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지만 전 군은 이미 숨져 있었다. 전 군의 한 친척은 "1학년 때부터 유학 준비를 해왔고, 다음달 24일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목숨을 끊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전 군의 친구는 "학교에서는 활발한 친구였는데, 유학을 떠나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조금씩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 군의 가족은 경찰에서 "전 군이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앓아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유학을 떠나는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외고생 자살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8일자 사회면 『외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15층서 떨어져 숨진 외고생 경찰, 자살 아닌 추락사 결론』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2일자 A12면)

내 용 : 지난달 26일 서울 도곡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숨진 서울 D외고 2학년 전모(17) 군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울 수서경찰서가 21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내성적인 성격의 전 군이 외국 유학을 앞두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다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수서경찰서는 '전 군이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가족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한 결과, 전 군이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서 자주 벽에 기대거나 걸터앉기를 잘했고 ▲추락 직전까지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휴대전화 폴더가 열린 상태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군이 아파트 창틀에 걸터앉아 통화를 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또 전 군의 한 친구는 "전 군이 운동을 잘하면 유학생회에 유리할 것이라며 사고 당일 새벽 2시까지 농구 연습을 함께 했기 때문에 유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살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

성형열풍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환자들에게 성형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6월 21일 21:25)

내 용 : ▷앵커 : ‘나도 한번쯤 성형을 해볼까’ 이런 생각 아마 우리나라 여성 중 상당수가 해보셨을 겁니다.

왜 성형이 우리사회에서 유행처럼 자리잡게 됐을까요?

먼저 성형 권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 상담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먼저 고쳐야 할 부분부터 지적합니다.

▷의사 : “우선 보톡스를 맞으셔야 되요. 전체적으로 옆 턱 줄이시고, 앞 턱 줄이시고 그러면 코가 문힐 거예요. 코도 하고...”

▷기자 : 눈 크기와 코 높이, 턱 윤곽과 주름 등 의사가 권유한 성형 부위는 무려 열 가지가 넘습니다.

아예 유명 연예인의 사진까지 보여주며 성형 수술을 부추깁니다.

▷의사 :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전체적으

로 다 컸으면 좋겠어요.”

▷기자 : 병원 측이 정해놓은 미적 기준에 맞춰 거의 얼굴 전체를 수술하라고 권유합니다.

한두 곳의 수술만으론 성형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성형을 부추기는 사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21일 「뉴스9」에서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먼저 고쳐야 할 부분부터 지적하고 병원 측이 정해놓은 미적 기준에 맞춰 거의 얼굴 전체를 수술하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의사의 도의적이고 학술적인 진료 내용은 모두 삭제 편집하고 기자의 구미에 맞는 내용만을 골라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기자는 상담전에 “성형티가 나더라도 무조건 예쁘게 전체적으로 수술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담당 의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고민에 대해 포괄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상담했음에도 일부 상담 내용만을 발췌하여 보도함으로써, 실제 진료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로 보도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신청인이 의처증이 있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가정을 파탄시킨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7.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MBC-TV : 「생방송오늘아침」 프로그램 (2007년 5월 17일 08:35)

내 용 : ▷사회자 : 부부관계에서 의처증 의부증이 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도 부부의 위기에 핵심사항이네요.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전부를 의심하게 된 남편. 견잡을 수 없는 의심과 참기 힘든 폭언,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네요.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들 부부의 불화와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들 부부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최○○ : 기사화 되는 게 좋지 뭐. 가만 안 되나도.

▷아나운서 : 이유 없는 의심으로 시작돼 10년 넘게 계속된 남편의 폭언과 참을 수 없는 폭력!

▷아내 김○○ : 흥기까지 칼까지 들고 돌맹이 같은 것 들고 위협하고 목을 많이 졸랐어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가정 내 부부간의 불화를 겪는 사례로 신청인과 아내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이 의처증을 가지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가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으로 묘사해 명예가 훼손된 바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9월 15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9월 5일까지 MBC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책임자 명의(자필서명 포함)로 된 편지를 신청인에게 보내서 유감을 표시하도록 하되, 편지중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5월 17일자 방송과 관련하여 최○○ 선생님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는 부부간의 화해를 모색해 보고자 본 코너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의 본래 취지와 달리 최○○ 선생님이 원치 아니하는 사생활 부분이 노출되어 고통을 드린 데 대해 본 프로그램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PD 등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다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신청인 회사가 신축중인 콘도를 불법으로 사전분양했으며,
부당한 프리미엄을 취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8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디앤씨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7.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SBS-TV : (1) 「8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7월 30일 20:25)

내 용 : ▷앵커 : 부산 해운대의 노른자위 땅에 콘도미니엄 허가가 났습니다.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 아파트나 다름없습니다.

기동취재 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관광특구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신축중인 휴양식 콘도입니다.

특급호텔이 즐비한 이 곳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해운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콘도는 한 객실에 2인 등기제로만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측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편법 분양하고 있습니다.

▷기자 : 아파트처럼 개별분양이 가능합니까?

▷관계자 : 그렇죠. 부부 명의로 들어오게 되면 365일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이 거의라고 보면 됩니다.

▷기자 : 콘도 계약 현황 자료입니다.

한 객실에 2명씩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소가 똑 같습니다.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부부나 가족, 친인척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의 P콘도는 지난 2005년 5월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정률이 20% 넘어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인된지 한 달 만인 6월중에 이미 160개가 넘는 객실이 분양됐습니다.

명백한 불법 사전분양입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콘도 앞쪽 대형 객실은 시행사와 시공사 관련 연관업체나 무자격 개인들에게 상당수 분양됐습니다.

▷관계자 : 프리미엄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죠. 그 프리미엄 때문에 제도를 바꿨는데.

현재 전망 좋은 콘도 앞쪽은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관계자 : 이쪽은 프리미엄 자체가 워낙 많이 형성돼 있어요. 한 2~3억 원 이상.

▷기자 : 더구나 시행사는 객실 50여 개를 빼들려 인근 부동산업소에 분양대행을 맡기면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아 챙겼습니다. (후략)

(2) 「8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7월 31일 20:25)

내 용 : ▷앵커 : 어제(30일) 부산 해운대 콘도 분양을 둘러싼 비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가 진행될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사업주와 행정기관 사이에 검은 거래, 복마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송○○ 기자입니다.

▷기자 : 문제의 P콘도에 대한 불법분양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5년 6월.

당시 관할 구청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전 분양자 166명 가운데 시행사 측과 가까운 30여 명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경찰관계자 : 저희들과 아주 가까운 분들만 조사를 했고 그분들한테만 서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자 : 경찰과 구청 모두 혐의가 없다며 1주일 만에 내사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인허가 과정의 특혜도 있었습니다.

시행사 측 분양 대행사가 작성한 도로개설 관련 2004년 내부 자료입니다.

사업 허가 최대 걸림돌이었던 도로개설 보증금의 50%인 50억 원을 구청 관계자에게 낮춰달라고 부탁해 20억 원선에서 해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로비를 담당했던 핵심 관계자는 부산시와 부산구청, 경찰 공무원들에게 전방위 로비가 몇 십 차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콘도미니엄 분양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30일 「8시뉴스」 시간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신축 중인 휴양식 콘도에 대하여 2인 등기제와 관련한 편법분양 및 불법 사전분양, 시행사의 부당한 프리미엄 취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7월 31일 뉴스에서는 콘도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의 특혜 및 이와 관련한 부당한 공사업체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콘도의 분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시행사의 부

당한 프리미엄 취득행위도 없었으며, 콘도 건설 공사 인허가 과정 및 공사업체 선정에서 특혜가 이루어진 사실 역시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콘도미니엄 분양관련한 의혹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30일 「8시뉴스」 시간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서 신축 중인 휴양식 콘도에 대하여 2인 등기제와 관련한 편법분양 및 불법 사전분양, 시행사의 부당한 프리미엄 취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7월 31일 뉴스에서는 콘도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의 특혜 및 이와 관련한 부당한 공사업체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는 콘도의 분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시행사의 부당한 프리미엄 취득행위도 없었으며, 콘도 건설 공사 인허가 과정 및 공사업체 선정에서 특혜가 이루어진 사실 역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부산 해운대 콘도 분양 관련 반론

• 내 용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신축 콘도의 편법과 사전분양, 부당 프리미엄 취득, 인허가 과정과 공사업체 선정에서의 특혜 등 의혹에 대한 본 방송의 지난 7월 30일과 31일자 보도에 대해 해당 시행사는 콘도의 분양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고, 시행사의 부당한 프리미엄 취득행위는 없었으며, 콘도 인허가 과정과 공사업체 선정에서의 특혜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9월 12일까지 (토, 일요일 제외) SBS-TV 「8시뉴스」 프로그램(기상정보 전)에 보도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기사의 화면으로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9월 11일 20:4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0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이 명 박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1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1) 『“BBK 등 3곳 100% 이명박 회사”』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7일자 1면)
내 용 : 비비케이(BBK)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는 15일(한국 시각) “(주)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했다는 190억 원은 엠비 리(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돈이며, 비비케이·엘케이이뱅크(LK뱅크), 이(e)뱅크증권중개 등 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다스는 이 후보의 친형인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자동차 협

력업체다.

미국 캘리포니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한겨레21〉의 의뢰를 받은 현지 변호사 데이비드 백과의 대면 인터뷰에서 “엘케이이뱅크 자본금 60억 원과 이뱅크 증권중개 자본금 100억 원, 비비케이 자본금 30억 원 등 세 회사의 자본금 190억 원이 모두 다스 투자자금에서 나왔다. 나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세 회사 모두 100% 엠비 리의 회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후략)

(2) 『‘이명박-김경준 비밀계약서’ 실체 확인때 ‘대선 폭발력’』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7일자 4면)

내 용 : 비비케이(BBK)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15일(한국시각) 〈한겨레21〉의 의뢰를 받은 현지 변호사 데이비드 백과 6시간 30분에 걸친 인터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를 비비케이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했다. 김 씨는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이 후보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씨가 대면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의 핵심은 이 후보의 친형인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명의의 회사인 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금으로 운용해 달라고 맡겼다는 190억 원이 사실은 이 후보의 돈이며, 실제로는 모두 엘케이이뱅크(LKe뱅크)와 비비케이, 이(e)뱅크증권중개 등 3개 회사의 자본금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BBK 등 3곳 100% 이명박 회사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7일자 4면 『“BBK 등 3곳 100% 이명박 회사”, 『‘이명박-김경준 비밀계약서’ 실체확인때 대선 폭발력』 제하의 기사에서, 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했다는 190억 원은 이명박의 돈이며, 비비케이·엘케이 이뱅크, 이뱅크 증권중개 등 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됐고, 엘케이 이뱅크 자본금 60억 원과 이뱅크 증권중개 자본금 100억 원, 비비케이 자본금 30억 원 등 세 회사의 자본금 190억 원이 모두 다스 투자금에서 나왔으며, 본인은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세 회사 모두 100% 이명박의 회사다라는 김경준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비비케이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이명박과 무관하고, 다스의 190억 원은 비비케이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였을 뿐 세 회사의 자본금과 무관하며, 엘케이이뱅크에 납입한 김경준의 자본금 30억 원은 김경준 개인의 돈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다른 화가의 표현기법을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주간동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주간동아 : 『모작 의혹 사실인가』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7일자 38면)

내 용 : (전략) 한편 장 씨는 자기 작품이 정 씨의 제작기법과 다른 한 가지 근거로 라이트 박스의 사용을 예로 든다. 그러나 정 씨는 이미 박 대표와의 만남에서 추후 자신의 작품 제작에 라이트 박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장 씨는 기자에게 “나는 J갤러리의 전속작가”라며 “2006년과 2007년에 퓌른아트페어에도 J갤

러리 추천으로 출품했다”고 밝혀 J갤러리와 인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한지를 재료로 한 정 씨의 타공 기법은 장 씨의 그것보다 시기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 앞선다. 또한 그 연유야 어떻든, 장 씨의 경우 J갤러리와 인연을 맺은 최근 1~2년 사이 기존의 작업 경향과는 크게 다른 ‘급격한 작업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작품에 라이트 박스를 사용한 점이 정 씨의 작품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 씨는 2005년 5월 첫 개인전(공평아트센터)에서 장 씨보다 먼저 일부 작품에 모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화랑협회 관계자는 “어느 작가의 작업 경향이 한순간 확 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KIAF 당시 정 씨가 모작 의혹을 제기하자, J갤러리 박 대표가 이를 일축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 씨가 장 씨에게 “가능하면 비슷한 작업을 하는 것만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진인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 일단락된 상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강남 J갤러리 모작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8월 7일자 『강남 J갤러리 모작 의혹 사실인가』 제목으로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IAF에 장모 작가가

가 또 다른 여성작가 정모 씨 작품과 표현기법이 매우 흡사한 작품을 전시하여 ‘모작’ 의혹이 있으며, 정 씨가 장 씨에게 가능하면 비슷한 작업을 하는 것만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지인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 일단락된 상태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두 작가의 작품 자체에는 유사성이 전혀 없고, 한지에 구멍을 뚫는 표현기법 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기법이며, 장모 작가는 정모 작가와 무관하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작품제작기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모 작가는 정모 작가를 모작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정 씨가 장 씨에게 가능하면 비슷한 작업을 하는 것만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지인을 통해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장 씨는 정 씨의 지인에게 타공기법은 정 씨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농경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구○○ (대표이사 성 ○ ○)
피신청인 : 인터넷환경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인터넷환경일보 : 『폐기물 만여 톤 농경지 불법매립』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30일자 환경면)

내 용 : (전략) 이 업체는 P·C(기성품)를 생산하는 업체로 콘크리트에 강섬유(철사종류)를 혼합해 도로변이나 철도변 옹벽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금이 가거나 일부 파손된 폐콘크리트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적정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대충 파쇄

해(매립규격 50~80cm 정도) 공장에서 30m 떨어진 농경지에 매립했으며 이업체는 폐기물을 매립한 곳에 자갈을 덮은 후 지금까지 주차장 및 폐기물 야적장과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한 것이 본보 취재진에 의해 밝혀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폐기물 만 여튼 농경지 불법매립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30일자 환경면 『폐기물만여튼 농경지 불법매립』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주)구○○은 1997년 12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하여 조립식 웅벽생산시설을 위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시 농지를 임대하여 조립식 웅벽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타설 및 연약지반 침하로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후 사용하던 상황을 폐기물 매립으로 잘못 보도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한 외국계 금융사의 인사에 개입해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1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유)○○마인드 (대표이사 최 ○ ○)
 외 1인
피신청인 : 매일노동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2.
처리결과 : 각 합의 (정정,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매일노동뉴스 : 『컨설팅 업체가 노사관계 파국으로 몰아가』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6일자 14면)

내 용 : 스웨덴계 할부금융업체인 ○○○코리아 노사관계가 외국기업 컨설팅업체 개입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5일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이하 서사노) ○○코리아지부에 따르면 ‘○○마인드’라는 외국기업 컨설팅업체가 인사에 개입하고,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인드는 외국인회사 임직과 직원들의 문화차이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등을 진행하는 컨설팅 업체다.

지부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도와야 할 ○○마인드가 조합원을 대기 발령시키고 ○○ 대표와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최아무개 ○○마인드 대표 주도로 진행된 인사발령에서 박○○ 사무국장 등 조합원 3명이 대기발령 됐다. 징계사유 5개중 2개가 노조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최 대표의 남편인 구아무개가 대표로 있는 IT업체 관계자들은 조합원들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하기도 했다. 또 구 대표는 직원들의 개인 사물함을 뒤지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 대표의 아버지가 회사 대표인 ○○의 문화고문을 맡아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8월 6일자 14면 『컨설팅업체가 노사관계 파국으로 몰아가』 제목으로 ○○마인드가 ○○○코리아의 인사에 개입하고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최 대표의 남편인 구아무개가 대표로 있는 IT업체 관계자들은 조합원들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하고 구 대표는 직원들의 개인사물함을 뒤지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하

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마인드는 ○○○ 코리아에서 번역, 통역 등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인사 및 노조관련 업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구○○은 ○○○ 코리아 주식회사의 전산망 감사업무의 일환으로 서버 컴퓨터를 조사하고 회사 소유의 사물함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8월 6일자 14면 『건설팅업체가 노사관계 파국으로 몰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마인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인 직원들과 외국인 임원들의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문서의 번역 등을 돕는 이문화 교류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 주식회사에서도 보조적 업무와 자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사에 개입하거나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은 “○○○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서버 컴퓨터 및 범죄 혐의가 있는 일부 직원들의 컴퓨터를 조사하였고, 개인 사물함이 아닌 전산 담당 직원이 회사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물함의 열쇠를 ○○○의 대표이사로부터 교부받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것이며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개인 사물함을 뒤진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 코리아 주식회사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8월 6일자 14면 <“건설팅업체가 노사관계 파국으로 몰아”> 제하의 보도와 관련, 유한회사 ○○마인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인 직원들과 외국인 임원들의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문서의 번역을 돕는 이문화 교류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 코리아 주식회사에서도 보조적 업무와 자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사에 개입하거나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아무개 씨는 “○○○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서버 컴퓨터 및 일부 직원들의 컴퓨터를 조사하였고, 전산 담당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문서 보관함의 열쇠를 ○○○ 코리아의 대표이사가 입회한 가운데 전산담당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을 뿐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개인사물함을 뒤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노동뉴스> 14면에 2007년 9월 7일까지(토요일 제외) 위 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노동뉴스 : 『○○○ 코리아 주식회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3일자 1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애인대행 아르바이트인 ‘애완남’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신청인의 동의없이 인터뷰한 내용과 사진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49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Story-On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Story-On : 「컬트뉴스」 프로그램 (2007년 8월 19일 23:00)

내 용 : 〈신청인이 바에서 쭈은 여성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장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Story-On은 지난 8월 19일 컬트뉴스 시간에 애인대행 아르바이트의 일종인 ‘애완남’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본인 동의없이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고 사진을 공개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신청인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별도의 집무실을 차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재 오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종재부

접 수 일 : 2007. 8. 23.

처리결과 : 취 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최고위원이 여의도 당사와 이 후보 캠프로 사용됐던 용산빌딩 등 구체적인 사무실 배치를 당직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이 후보가 지명된 이후 본격적인 당 접수작업이 시작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연합뉴스 : 『이재오 ‘당 접수 착수’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2일자 정치면)

내 용 :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이명박 후보 사무실이 차려질 여의도 당사에 별도의 집무실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당 접수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최고위원이 어제 후보사무실 맞은편인 후보비서실에 자신의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강재섭 대표와 상의한 것도 아니고 실무진에 곧장 지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제 목 : ‘이재오 당 접수 착수 논란’ 기사는 오보임을 밝힙니다.

•내 용 : 본 통신사는 지난 8월 22일자 정치면에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이명박 후보 사무실이 차려질 여의도 당사에 별도의 집무실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당 접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최고위원이 후보사무실 맞은편인 후보비서실에 자신의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강재섭 대표와 상의한 것도 아니고 실무진에 곧장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재오 최고위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별도의 집무실을 차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재 오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종재부

접 수 일 : 2007. 8. 23.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313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서울신문 : 『강대표 “점령군 행세 하나” 반발』 제하
의 기사 (2007년 8월 22일자 3면)

<2007서울조정3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신청인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별도의 집무실을
차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재 오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3.
처리결과 : 취 하

한겨레 : 『이재오 벌써 ‘당 접수’ 팔 건었나』 제하
의 기사 (2007년 8월 22일자 정치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2007서울조정3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신청인이 광명시의 추경예산안이 편법으로 편성되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5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광명지역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7.
처리결과 : 취 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일단 원선의
지시에 의해 예산안을 편성하긴 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관계공무원들은 “형평에 맞지 않아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 관계공무원은 “주민
들의 민원이 많아지자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를 의
식하게 되고 또한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기에 주민숙
원사업으로 항목을 변경해 예산을 서둘러 만들면서
논란이 많았다”며 “향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
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후략)

보도내용

광명지역신문 : 『“예산통과돼 큰일났습니다”』 제하
의 기사 (2007년 6월 22일자 지방자
치면)

내 용 : <전략> 이에 광명시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이 편법으로 편성되면서 차후 감사를 받는 등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예산통과돼 큰일났습니다”에 대한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2일자 지방자치면에 『예산통과돼 큰일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광명시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예산이 통과되어 당황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기사내용중 관계공무원은 제목에서 인용한 말을 한 적이 없음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진의를 왜곡하여 기사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신부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1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8.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매일경제가 지난 7월 4일자 3면에 임신부의 여름철 건강관리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만삭인 본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무단 게재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바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9월 21일까지 금 1,500,000원 및 호텔패키지 상품을 지급한다.
-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 『임신부 여행 · 운동으로 기분전환』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4일자 B3면)

내 용 : <전략> 임신부가 오랫동안 앉아서 이동해야 할 때는 혈전증(피가 응고되어 혈관을 막음)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리를 올려놓거나 수시로 자세를 바꾸고 휴게소 등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좋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 시간에 한 번씩 가볍게 걸어 다니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정좌하고 있는 임신부의 모습>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신청인이 여성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진료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51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뉴스앤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뉴스앤뉴스 : 『젊은 여성, 평택 지역 한의원 출입 ‘조심’』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5일자 2면) 외 1건

내 용 : “젊은 여성 환자에게 반말하고 농담하는 것이 ‘진료행위’로 여기는 한의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지난 달 30일 오후 12시께 최모(25·여) 씨는 어깨결림 등으로 인해 평택시 평택동 소재 ‘J한의원’을 찾은 적이 있다.

이 날 최 씨는 진료를 받던 도중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현재 법적대응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한의원 원장 장모 씨가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위, 아래로 훑어보면서 “눈이 이쁘네...”, “옷 참 편하게 입고 왔네...” 등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 씨는 장 씨가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상의를 올린 후 신체 부위까지 만져 당황했다는 것.

한 의사 장 씨는 여기서 한술 더 떠 진료가 끝나자 간호사에게 “야, 여기 데리고 가!”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거침없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사 장 씨는 “환자가 나이가 어려서 반말을 했다”며 “오히려 반말하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진료행위 이외의 질문에 대해 한 의사 장 씨는 “신체 부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환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최 씨는 현재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한의사협의회 측은 “정황으로 미뤄볼 때 J한의원의 진료행위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자체내 위원회를 열어 사실확인 후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성폭력상담소에 문제의 J한의원 뿐만 아니라 I한의원도 비슷한 문제로 진정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평택 J한의원 성희롱은 사실무근
- 내 용 : 본 신문은 7월 25일자 사회면 “젊은 여성, 평택지역 한의원 출입 ‘조심’”이라는 기사로 한 의사 장 씨의 성희롱 문제를 소개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진료행위로 성희롱이 아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평택시한의사협회와 평택성폭력상담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 8월 8일자 오피니언 “[논쟁거리] 낯 뜨거운 의료행위”에 대한 사실은 환자 최모 씨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본 내용을 여과없이 쓴 것으로 부당한 기사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신청인 회사가 짝퉁 브랜드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아○○○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9.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국경제 : 『짝퉁 프랜차이즈 더는 안 통해』 제하

의 기사 (2007년 8월 22일자 A19면)

내 용 :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병인 ‘짝퉁 브랜드 만들’에 경종을 울리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PC방을 운영하는 ‘퍼스트 ○○○○’에서 일하다 2005년 퇴사, ‘△△△PC방’을 만들어 가맹사업을 벌여온 Y, P, L 씨 등 3명을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자신들이 일하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영업비밀 등을 빼내 별도 회사를 차리고 짝퉁 브랜드를 만드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업종을 가

리지 않고 성행하고 있는 짹툽 브랜드 만들기는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퇴사한 직원들의 범법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PC방은 2002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368개 가맹점이 문을 열고 있는 PC방 선두권 업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PC방 ‘짹툽프랜차이즈’ 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한국경제는 지난 8월 22일자 산업면에 『짹툽 프랜차이즈 더는 안 통해』라는 제목으로 △△△PC방은 짹툽 프랜차이즈라고 의심될 만한 상표권 침해 혹은 유사상표 도용의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신청인 회사의 임직원이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판결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제목에는 ‘△△△PC방’ 단어를 넣지 않는다.
- 상표권 침해 내지 유사상표와 관련된 표현인 ‘짹툽 프랜차이즈’, ‘유사브랜드’, ‘짹툽 브랜드’ 등은 조정대상 기사에서 삭제한다.
- 신청인 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는 △△△PC방의 반박견해를 조정대상 기사의 말미에 포함시킨다.
- 피신청인은 2007년 9월 7일까지 기사를 수정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정정·손배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터넷 기사 수정〉



신청인이 동국대에서 신정아 씨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오총장, 신정아 사표 수리안 한 배경도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7일자 1면)
내 용 : 오영교 동국대 총장이 지난 6월 장운 스

님에 의해 신정아 씨의 허위학력문제가 불거진 뒤 신씨가 제출한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아 신 씨를 비호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동국대 교수회장은 26일 본보 인터뷰에서 “오 총장은 위기 관리능력이 모자라 신 씨 문제를 확대시켰다”며 “6월 초에 의혹이 불거졌고 6월25일 신 씨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오 총장이) 수리하지 않았다. 그때 사표를 수리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오 총장은 관리 능력 부재로 학교의 대외신뢰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 대학 전 구성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재구성해 특별채용과정의 비호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신정아 사표수리에 대한 오영교 총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 지난 8월 27일자 1면 『오 총장, 신정아 사표 수리 안 한 배경도 의혹』 제목의 기사중 “신 씨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오 총장이) 수리하지 않았다. 그때 사표를 수리하였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인용은 동국대학교 교수회장 이○○ 씨가 발언한 내용이 아니며 “오 총장은 관리능력 부재로 학교의 대외신뢰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 대학 전 구성원에게 사과해야 할 것”과 “진상조사를 재구성해 특별채용과정의 비호에 대한 진실을 밝

혀야 한다”라는 인용은 이○○ 교수회장의 발언이 아닌 교수회 대의원 성명을 인용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0일자 2면)

내 용 : 8월 27일자 1면 ‘오 총장, 신정아 사표 수리 안 한 배경도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이○○ 동국대 교수회장의 발언중 ‘사표 반려’ 및 ‘사표 수리’는 말한 바 없고, ‘총장 사과’ ‘진상조사 위 재구성’은 교수회 대의원 성명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동국대에서 신정아 씨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쿠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9.
처리결과 : 취 하

도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7일자 정치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31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쿠키뉴스 : 『오 총장, 신정아 사표 수리 안 한 배경

신청 후 보도문

<2007서울조정318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품질이 낮고 A/S발생이 빈번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국안경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29.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국안경신문 : 『○○인테리어 “공사 품질 낮고 A/S 발생 많아”』 제하의 기사 (2007년 8

월 6일자 15면)

내 용 : 지난 7월 말, 한 안경사가 안경원 인테리어 시공을 맡긴 인테리어업체에 대해 불만을 호소했다.

이 안경사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시공하면 차후 A/S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된다. 연락도 되지 않고, 겨우 약속을 정하면 매번 어기고 연락두절이다”며 “나처럼 마음 고생하지 말고 A/S 잘 되는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길 바란다”고 탄식했다.

그리고 같은 인테리어 업체에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안경사는 “전면 쇼윈도 유리교체를 1년 동안 10차례 미루고 안 해 준다”고 덧붙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테리어 공사품질 낮고 A/S발생 많아 기사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 지난 8월 6일자 기업소식 1면 『○○인테리어 공사품질 낮고 A/S발생 많아』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품질이 낮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인테리어는 특별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늘 새로운 변화와 신선한 이미지를 주는 업체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 내 용 : 지난 8월 6일자 기업소식면의 ○○인테

리어와 관련하여 문제된 안경점과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인테리어에서는 창립 후 6년 동안 안경점 인테리어 전문업체로 새로운 디자인 등이 입소문이 나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안경신문에서는 본보로 인해 해당 업체의 상호가 노출된 데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9월 17일까지 한국안경신문 기업소식면에 위 보도문을 2단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원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등록면허 확인과 공사대금 진척사항에 맞춰 지불해야)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인테리어의 광고를 무료로 1회 게재하되, 그 크기는 5단의 2분의 1로 하고, 내용은 신청인이 제작한 광고필름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게재한 다른 청구를 취하하고,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안경신문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7일자 A1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독선적 행정을 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남시 (시장 김 황 식)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7년 7월 24일 23:00)

내 용 : ▷피디 : 지난 3월 19일 새벽 하남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100여 명의 주민들이 에워쌌다.

주민들은 차에 타고 있는 하남시장의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가 술에 취해 화장장 건설을 반대하던 한 여성을 폭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황식 시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은 이미 인근 병원으로 실려간 상황이었다. (중략)

▷피디 : 경찰은 이 폭행사건을 무혐의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김황식 시장의 소환운동에 기폭제가 되었다.

요즘 하남시 곳곳에는 주민소환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시민들은 지난 7월 11일부터 김시장 소환을 위한 서명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지역 유권자의 15%의 서명을 받으면 자치단체장 소환투표를 할 수 있다.

하남시의 경우 서명을 받으러 다니겠다고 선관위 신청한 시민만 3천 명이 넘었다.

▷주민1 : 시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남시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고.

▷피디 : 주민소환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주민2 : 저요? 100% 찬성이죠.

먼저 이렇게 사전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일단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3 : 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러겠느냐고.

▷주민4 : 시장이 그 오만과 독선, 자질 부족...진짜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디 : 시장과 주민과의 갈등은 광역화장장 건설의 문제에서 시작됐다.

작년 취임 직후부터 화장장 건설을 추진하자 시민들은 크게 반발해왔고 언론은 이점에 주목해 하남시민들이 주민소환제를 악용한다고 설명했다.

▷상임대표 : 님비(지역 이기주의)현상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로 악용이 된다면 어느 자치단체장이 소신 있게 행정을 펼 수 있으며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민대표 : 언론은 무조건 장사시설 반대다. 이 건 님비다. 님비가 어떤 게 님비입니까? 우리가 하남시에서 필요한 1~2기짜리 장사시설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깨끗하면 우리 집 마당에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산에도 지으라는 겁니다.

▷주민 5 : 저희는 화장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장은 어차피 요즘 시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화장장)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과정을 잘못하신 데 대해서 전혀 고치겠다는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물러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7월 24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김황식 하남시장의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은 이 폭행 사건을 무혐의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무혐의(혐의없음)'의 경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무혐의가 아니라'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김황식 하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PD수첩에서는 하남시 주민투표실시권자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바 있으나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 현 시설물의 설치·관리하는 자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역시 광역장사시설 설치·운영권을 하남시에 위임한 것이 밝혀졌음으로 주민투표 실시권자는 하남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경기도는 하남시에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할 경우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으므로 PD수첩이 제기한 경기도 하남시 광역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의혹은 잘못된 보도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2007년 7월 24일 방영한 PD수첩 '시장님도 리콜 되나요?' 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김황식 하남시장의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은 이 폭행 사건을 무혐의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 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결과,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2일 MBC-TV <PD수첩> 정규방송 시작 전 진행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

되, 조정대상 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피디수첩」 프로그램 (2007년 10월 2일 23:5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상표등록한 제품이 모조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스포츠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930뉴스」 프로그램 (2007년 8월 8일 09:40)

내 용 : ▷앵커(여) : 대형할인점은 그 브랜드 이름 때문에도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품질을 믿고 사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보란 듯이 저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남) : 네, 시중에서 모조품 즉 가짜 논란이 일고 있는 등산용품들 재고상품이라면서 대량으로 판매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 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기자 : 직장인 민모 씨는 지난 달 30일, 신문에 난 유사품 주의 전면 광고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대형할인점에서 재고 상품을 처분한다며 싼 값에 믿고 산 유명브랜드의 등산화가 모조품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 : 우리나라 제일 큰 마트에서 파는데 가짜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반값에 저 그 지난 거라서, 세일한다고 뭐니까, 탁 자위에 막 쌓아 놔더라구요

▷박○○ 기자 : 민 씨가 구입한 등산화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모조품 논란에 휩싸인 제품. 하지만 할인점 측은 진품이라고 직접 광고는 하지 않았으며, 모조품임을 몰랐던 소비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대형할인점 관계자 : 고객이 케○○라고(진품이라고) 알고 생각을 하고 산 것이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케○○라고(진품이라고) 판매를 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 기자 : 웰빙바람을 타고 등산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은 모조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대형할인점까지 버젓이 유통되자 관련업체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KO상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8일자 「930뉴스」 프로그램에서 (주)○○○스포츠에서 등록한 상표들의 제품이 모조품, 가짜상품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주)○○○스포츠에서 등록한 상표들은 특허청에 등록된 진정한 등록상표로서 모조품, 가짜상표가 아니며, 2006년 7월 7일 특허법원에서도 △△△코리아 주식회사의 “KO”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코리아의 상표와는 비유사하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는 상표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신청인 부처의 홍보담당자들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23

청 구 명 : 정정보도문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외 4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3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4개 부처 홍보담당자 이의제기』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7일자 A1면)

내 용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다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자 이 방안을 추진해온 국정홍보처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보처가 23일 개최한 국정홍보전략회의에서 일부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과 홍보담당관들이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적잖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22개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과 홍보담당관이 참석했던 이날 회의에서 홍보처는 “정부의 언론지침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홍보처는 “시간을 갖고 좀 더 두고 보자.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경찰청의 참석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당초안대로 시행하는 데는 난관이 없지 않다”며 보완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4개 부처 홍보담당자 이의제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27일자 A1면 『4개 부처 홍보담당자 이의제기』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안대로 취재시스템을 변경할 때 문제 많다고 4개 부처 홍보담당자들이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국정홍보전략회의에 22개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과 홍보담당관이 참석하였으며,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홍보처는 “시간을 갖고 좀 더 두고 보자.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마쳤으며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경찰청의 참석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당초안대로 시행하는 데는 난관이 없지 않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거론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4개 부처 홍보관리관들이 정부안대로 취재시스템 변경할 때 문제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홍보처가 23일 개최한 국정홍보전략회의에는 22개 부처 홍보관리관이 참석하였고,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홍보처가 “시간을 갖고 두고 보자. 다음번에 다시 논의 하자”며 회의를 종료하지 않았고, 발언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취재 자체를 거부하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경찰청에는 발언 내용 확인요청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가 기자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2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3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정부, 5공식 ‘기자등록제’ 부활』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2일자 1면)

내 용 : 정부가 21일 공개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은 국정홍보처장(김창호)이
내·외신 기자들의 등록을 받고 정부청사 출입증
을 내주는 등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 카드’ 제도
도입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레스
카드란 5공 때 정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기자 자격
증으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었
다.

총리 훈령은 홍보처장이 정부를 상대로 취재하는
내·외신 기자의 등록을 받고, 역시 홍보처장이 1
년마다 새로 정기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하고있다.
통합브리핑룸 운영도 홍보처장이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훈령에는 홍보처장의 등록 거부 또는
취소 조항이 없지만, ‘등록과 관련해 이의 있는 기
자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 필요에 따라 등록 거
부 또는 취소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 ○대 신방과 교수는 “각 부처가
아니라 정부가 기자들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을 5
공 때 기자들에게 프레스 카드를 주는 것과 똑같
은 발상”이라며 “정부는 관리 효율성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기자들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자
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그런 식이면
언론이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 등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언론정책으로 돌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정부, 5공식 ‘기자등록제’ 부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22일자 1면 『정부, 5공
식 ‘기자등록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훈령에는
홍보처장의 등록 거부 또는 취소 조항이 없지만,
‘등록과 관련해 이의있는 기자는 이의신청’을 하
도록 해 필요에 따라 등록거부 또는 취소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며, 황○ ○대 교수의 발언
을 인용, “각 부처가 아니라 정부가 기자들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은 5공 때 기자들에게 프레스 카드
를 주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라며 “정부는 관리
효율성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정부가 기자들을 통
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전하고,

훈령은 또 ‘단순사실,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
발표된 자료에 대한 답변은 정책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
는 답변할 수 없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
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기자등록은 취재기자에게
원활한 취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로,
강제 사항이 아니며 국회 청와대 등의 기관에서
도 관련규정을 두고 기자등록을 받고 있으며, 정
기출입증은 합동브리핑센터 및 각 정부기관 브리
핑룸 및 송고실 출입편의를 돕기 위한 일종의 방
문증으로 기자통제의 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훈
령은 공무원의 적극적 취재지원 의무규정을 여러
조항에 담아 취재회피를 방지하고 있으며, 기자의
공무원에 대한 취재는 절차에 따라 이뤄져, 취재
가 제한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가치판단 및 평가에 관한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
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정부가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송고실을 3곳만 남기고 통폐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30.

처리결과 : 합 의

공사가 끝나면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4개동에 상주 기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벌어지는 일이다. 정권의 목적은 정부 취재현장의 기자들을 브리핑룸 세 곳으로 몰아넣어 기자와 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다음 정권에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 날 것 같아 내가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 넘겨주려고 한다”고 했다. (후략)

보도내용

조선일보 : 『인질사태 속에 브리핑룸 망치질하는 정권』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일자 35면)

내 용 : 3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을 지키던 기자 100여 명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된 우리 젊은이 가운데 두 번째 희생자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모두 고개를 떨어뜨렸다. 바로 이 순간 브리핑룸 주위는 망치와 굴착기 소리가 요란했다. 정부가 취재기자들과 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옛 시설을 뜯어내고 새 브리핑룸을 짓는 공사를 벌이는 소리다. 과천청사에서도 115억 원을 들인 멸절한 영상회의실을 부수고 브리핑룸 만드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온 국민이 저 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된 23명의 우리 젊은이의 위태로운 목숨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 탈레반은 지난 25일엔 배형규 목사를, 31일엔 심성민 씨를 무참하게 살해했다. 탈레반은 우리 젊은이만이 아니라 그 아들딸들의 목숨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국민의 가슴과 머리에 총탄을 퍼부은 것이다. 이 정권은 온 국민이 정부의 입 하나만을 쳐다보는 바로 이 상황에서 망치와 굴착기를 손에 들고 브리핑룸 통폐합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부처들에 있는 37개 브리핑룸과 송고실을 세 곳만 남기고 없애는 공사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질사태 속에 브리핑룸 망치질하는 정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1일자 A35면 『인질사태 속에 브리핑룸 망치질하는 정권』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망치와 굴착기를 손에 들고 브리핑룸 통폐합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들에 있는 37개 브리핑룸과 송고실을 세 곳만 남기고 없애는 공사이며, 정부 취재현장의 기자들을 브리핑룸 세 곳으로 몰아넣어 기자와 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현재 정부 부처가 운영 중인 브리핑실은 21개, 송고실은 20개이며,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브리핑실은 17개, 송고실은 9개로 개편되며, 기자들의 취재방식은 이전과 같이 제한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과의 접촉을 차단하려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8월 1일자 A35면 〈인질사태 속에 브리핑룸 망치질하는 정권〉 제하의 사설에서 브

리핑룸 통폐합과 관련, 브리핑룸과 송고실 세 곳만 남기고 없앤다고 보도하였으나 세 곳의 합동브리핑센터와 청와대 등 7개 기관의 브리핑룸 및 송고실은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A2면에 2007년 9월 14일까지(토요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 8월 22일자 1면 <정부, 5공 식 ‘기자등록제’ 부활> 기사의 부제

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4일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모 대학 미화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무단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1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청주기별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청주기별 : 『○○대 청소용역 미화요원 노동자 다시 쫓아내려 한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7일자 교육면)

내 용 : <신청인이 여성미화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과 신청인의 차량 및 차량번호판이 클로즈업 된 모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청주기별은 지난 7월 27일자 보도에서 ○○대 측이 미화요원 여성 노동자들을 다시 쫓아내려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미화업체 아웃소싱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미화노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진을 무단게재하고 차량번호를 공개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대 미화업체 직원 사진게재 관련 사과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이 지난 7월 27일자 “○○대 청소용역 미화요원노동자 다시 쫓아내려 한다”는 제목과 함께 ○○대 미화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미화노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진과 차량번호가 밝혀진 사진 모습을 본인의 동의없이 게재한 점을 본인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청주기별 2007년 9년 10일자 메인화면에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내용이 상자기사로 뜨도록하고 1개월간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기사와 관련하여 차량번호가 밝혀진 사진을 2007년 9월 10일자 14:00부터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번호 교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청주기별 : 『○○대 미화업체 직원 사진게재 관련 사과문』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0일자 메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내비게이션 리콜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2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비즈니스맨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비즈니스맨 : 「예병일의 경제노트」 프로그램 (2007
년 8월 27일 21:30)

내 용 : ▷기자 : 그런데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자사 특정 제품의 전량 리콜 요구를 받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관계자 : 전용 홈페이지가 두 개가 있구요

하나는 판매, 홍보하는 곳이고 하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객의 소리, Q&A 통해서 답변하고요

두 번째 고객 센터,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의 여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콜만 받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바로 되고요

우리 회사는 그렇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것을 강점으로 가지고 갔었구요

차별화를 그 전략으로 갔었구요

다른 데는 제가 대답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비즈니스맨은 지난 8월 27일 「예병일의 경제노트」 프로그램에서 H사의 내비게이션 리콜에 대해 보도하면서 H사에 근무하는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국정홍보처가 엠바고를 위반한 기자에 대한 부처별 징계 운영지침을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8월 28일
20:20)

내 용 : ▷앵커 : 기사실 통폐합 등 정부의 언론

정책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권○○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 23일 정부 각 부처 홍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홍보처 주최로 열린 전략회의 자료입니다.

엠바고, 즉 정부의 보도통제협조를 위반한 기자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징계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눈에 띄니다.

국정홍보처는 당초 이런 내용을 총리 훈령에 포

합시켰다가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일자 뺏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각 부처의 운영지침은 총리 훈령보다는 격이 낮지만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가 현재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리 훈령을 수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총리 훈령과 마찬가지로 운영지침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운영지침은 물론이고 총리 훈령으로 규제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국정홍보처 무리한 편법까지 동원한 정책 밀어붙이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28일 「8시뉴스」에서
-

국정홍보처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하였으며, 8월 23일 개최된 국정홍보전략회의의 자료중 엠바고, 즉, 정부의 보조통제협조를 위반한 기자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징계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눈에 띄며, 국정홍보처는 당초 이런 내용을 총리 훈령에 포함시켰다가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일자 뺏다고 하였고, 이 내용을 담은 각 부처의 운영지침은 총리 훈령보다는 격이 낮지만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국정홍보처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내용은 취재결과 확인되지 않았으며, 8월 23일 개최된 국정홍보전략회의의 자료에는 엠바고를 위반한 기자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징계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엠바고 관련 내용이 훈령에서 삭제된 것은 언론통제라는 비판때문이 아니라 언론단체와의 협의 및 부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각 부처의 운영지침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신청인 대학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이 잔혹하고 충격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회장 강 ○ ○)

피신청인 : 관악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관 약 : 『이곳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일자 122~127면)

내 용 : (전략) 학내에는 10군데의 동물 시설이 있는데, 이곳에선 최근 2년간 매해 약 4만 5천 마리

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2005년에 ○○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이 생기기 전에는 학내 실험동물 수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실험동물의 관리가 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제대로 된 규제도 없어 실험자의 편의대로 실험이 끝난 동물을 죽이기도 했다. 실험한 동물 수와 소각된 동물의 양이 맞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규제의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동안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수의대 본과 1학년 K 씨는 해부학 실험의 충격에 대해 말했다. 현재 수의대 해부학 실습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한 조당 개 한 마리로 실습을 진행한다. 동물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학기 첫 수업에서는 교수가 동물을 애도하는 글을 읽어주기도 하고, 조교가 동물을 희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K 씨는 여전히 “생명을 가볍게 다루는 느낌이 든다. 죽이거나 할 때 전혀 죄

책감을 갖지 않는다. 예전에 개의 안구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실수로 동물을 죽이기도 했고, 심지어 안락사시키는 것도 실험의 일부라 반복적으로 동물을 죽이게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운이 좋은’ 개인만이 동물실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교지 36호 「이곳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

• 내 용 : 교지○○편집위원회는 36호 교지에 『이곳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제목으로 ○○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동물 실험 실태에 대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도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검증 및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첫째, 「수의대 대학원생의 경우엔 한 사람당 개 한 마리로 스무 번 정도의 실험을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는 본과 4학년의 외과 실습의 일부내용과 혼동하여 잘못 전달된 부분으로 본과 4학년의 경우, 대퇴골두(Head of femur) 절제술을 하지만, 재할 훈련을 통해 원활히 걸을 수 있으며, 다리를 자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눈을 적출하여 없는 상태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실습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개의 안구에서 혈액 채취하는 실험」과 관련해 수의대에서는 개의 안구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실험은 행해지지 않으며, 마우스의 안와 정맥동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실습이 일부 행해지고 있지만, 마우스의 경우, 다른 동물에 비해 안와 정맥동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 큰 고통 없이 혈액 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수의대는 해부학 실험을 할 때 죽은 개를 기증 받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개에게 실습을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수의대에서는 실험견을 기증받아, 안락사시킨 후 해부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험견들은 실험동물 자원관리원에서 실험의

타당성과 동물선택의 적정성, 동물수량의 적정성을 항목으로 해부 실험의 정당성을 승인받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관악’의 다음 발행호에 별첨 ‘정정보도문’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한다.

• 목차 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정정보도 ○○대 수의대 동물실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쪽수를 다른 목차 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목차 순서는 서평 앞에 둔다.

• 정정보도문을 서평 앞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크기(“이곳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중에서 ○○대학교)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정정보도문의 분량은 2페이지로 하며, 게재 형식은 해당 발행호의 통상적인 기사를 기준으로 한다.

〈별 첨〉

• 제 목 : 교지 36호 「이곳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교지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 36호에서 동물실험에 관련한 기획을 실은 바 있습니다. 그 중 “이곳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글에서 학내의 동물실험 실태에 대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실관계가 검증 및 확인되지 못한 채로 독자들에게 왜곡 전달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에서는 독자 여러분과 ○○대학교 수의과대학 구성원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원 글(교지 『관악』 36호 p. 123)

「하지만 K 씨는 여전히 “생명을 가볍게 다루는 느낌이 든다. 죽이거나 할 때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예전의 개의 안구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실수로 동물을 죽이기도 했고, (…….)”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

수의대에서는 개의 안구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실험은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우스의 안와 정맥동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실험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안구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안구에서는 혈액 채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마우스의 경우 다른 동물과 달리 안와 정맥동이 발달하여 채혈 부위로 이용됩니다.

원 글(교지 『관악』 36호 p. 124)

「수의대 대학원생의 경우엔 한 사람당 개 한 마리로 스무 번 정도의 실험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하다 보면 동물의 다리를 자르기도, 눈이 없는 상태로 만들기도 한다. 여러 차례의 이런 실험 끝에 동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동물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동물과 관계를 맺어왔던 실험자들도 나름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

기사의 내용과 같이 실험견의 다리를 자르거나 눈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등의 실험 내지 그로 인해 동물이 죽게 되는 일은 수의대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수의대의 외과실습의 경우 수술은 조교의 엄격한 관리 지도하에 실시되며, 정상적으로 수술이 진행되었을 시 동물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주는 수술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수술한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수술 방법에 대한 강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대 학생들은 동물의 재활 훈련 및 후 처치(수술 후 동물을 돌보는 것)를 위해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서 실습 동물을 보살피고 있으며, 실습 동물들은 모두 개인에게 입양하고 있습니다.

원 글(교지 『관악』 36호 p. 124)

「수의대는 해부학 실험을 할 때 죽은 개를 기증받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개에게 실습을 한다. 하지만 죽은 동물에 라텍스라는 물질을 채워 넣으면, 안락사를 시킨 후 어느 정도 보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실험동물을 최소화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런 사실은 유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

수의대에서는 실험견을 기증받아 안락사시킨 후 해부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시킨 실험견은 포르말린으로 고정시켜 사체보관소에 보관한 후 한 학기 동안 사용하며, 실험견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견들은 실험동물자원관리원에서 실험의 타당성과 동물선택의 적절성, 동물수량의 적정성을 항목으로 실험윤리의 정당성을 승인받아 실험을 진행합니다.

덧붙여 라텍스의 경우, 기사에는 보존 물질로 언급되었으나 사실은 사체의 혈관 구조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안락사 후 주입하는 물질입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관 악 : 『교지 36호 「이곳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교지 37호 202~20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정아 씨 학위 조작 파문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인터뷰를 몰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2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2007년 7월 18일 08:30)

내 용 : >PD : 침묵하고 있는 신 씨를 대신해 해명에 나선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신정아 씨 그녀의 가족을 오랫동안 지켜온 주민을 만

날 수 있었는데요.

▷이웃 주민 : 우리가 총동창회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우리는 몰랐지. 말하자면, 이게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신 씨) 엄마는 답이 안 나온다. 진실한 답이 없어요. (후략)

그럼에서 신정아 씨의 학력조작 파문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담당피디와 사담식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몰래 방송에 내보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7,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는 지난 7월 18일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

신청인의 동의하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환경부가 통합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브리핑때 소속 공무원과 연구용역기관 직원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치 범)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4.

처리결과 : 조정결정 (양당사자 이의신청)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환경부 브리핑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28일자 4면 『환경부 브리핑 ‘대국민 사기극’』 제목 하에 2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경부 1층의 새 통합브리핑실에서 처음으로 열린 환경부 이규용 차관의 정례브리핑에는 기자 12명이 참석하고 브리핑실의 나머지 빈 자리는 환경부 공무원과 연구 용역기관 직원들 14명이 대신 메웠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텅 빈 기자실을 메우기 위하여 환경부는 공무원과 연구용역 기관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없으며, 환경부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것은 통상의 브리핑에서와 같이 브리핑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전문적인 질의에 대하여도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경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문화일보 : 『환경부 브리핑 ‘대국민 사기극’』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8일자 4면)

내 용 : 이규용 환경부 차관의 모두 발언 뒤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차례로 앞에 나와 안전별로 설명을 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자리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답변을 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자들은 브리핑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기자들에게 전문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며 “이날 브리핑은 특히 질문도 많이 쏟아졌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기자들의 출석률이 양호했지만, 평소 환경부의 브리핑에는 기자보다 공무원의 수가 2배 이상 많은 적도 종종 있었다. (후략)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장관직무대행 이 규 용

위 조정대리인 송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68번지

대표이사 이 병 규

위 조정대리인 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2007년 9월 2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문화일보 4면 또는 사회면에 <별지>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문화일보의 통상적인 정정·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8.

<별 지>

• 제 목 : ‘환경부 브리핑’ 관련 알림

• 내 용 : 8월 28일자 4면 ‘환경부 브리핑’ 기사에 대해 환경부는 실무부서 직원들이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 정례브리핑에 통상적으로 참석해 왔다면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본보에서는 해당 기사의 제목이 브리핑 현실을 과장·왜곡해 부적절하다는 환경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독자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가 통합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브리핑때 소속 공무원과 연구용역기관 직원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치 범)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공무원들로 브리핑룸 채운 정부』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8일자 A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3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환경부 브리핑’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7년 8월 28일 1면 『공무원들로 브리핑룸 채운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과천 정

부종합청사 제경부 1층에 새로 만들어진 통합브리핑룸에서 기자실을 옮긴 후 환경부의 첫 브리핑에 기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텅 비자, 환경부 공무원과 환경부의 연구 용역기관 직원들 14명이 기자석을 메우고 앉아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텅 빈 기자실을 메우기 위하여 환경부는 공무원과 연구용역 기관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없으며, 환경부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하는 것은 통상의 브리핑에서와 같이 브리핑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전문적인 질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8월 28일 A1면 ‘공무원들로 브리핑룸 채운 정부’ 제하의 사진설명과 관련해 텅 빈 기자실을 메우기 위하여 공무원과 연구용역기관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없으며, 환경부 공무원 등 관

게자들은 브리핑 도중 기자들의 전문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참석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9월 1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조선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8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잘못된 통계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조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4.

처리결과 : 합 의

○택은 이후에도 한동안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 자료, 통계적 방법론에 기반한 데이터임을 확인

• 내 용 : 본보는 지난 8월 23일자 12면에 『○○샵 등 인터넷업체 피해 속출』이라는 제목의 기사중 기사 본문에 언급된 콤플레이어 관련 ○○○○ 통계는 부실통계 또는 ‘아니면 말고식 통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의 해당 자료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과학적인 통계방법론에 의해 산출되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해 온 결과물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23일자 12면 「○○닷컴·○○○○ ‘아니면 말고식’ 통계발표, 디△△ 등 인터넷업체 피해 속출」 제하의 기사에서 웹사이트 분석업체인 ○○○○가 ‘아니면 말고식’ 통계자료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는 해당 통계자료는 과학적 통계방법론에 의해 산출된 것이며 ‘아니면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샵 등 인터넷업체 피해 속출』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3일자 12면)

내 용 : (전략)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또 다른 리서치업체 ○○○○가 ‘콤플레이어’에 대한 통계자료를 근거표본을 밝히지 않은 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가 콤플레이어 개발사 ○○택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는 당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콤플레이어 이용자들이 재생한 미디어파일을 분석한 결과 성인콘텐츠가 가장 많이 재생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택은 콤플레이어 이용자 정보를 불법수집해 ○○○○에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는 이날 저녁 “정보 사용에 동의한 1만 2000여 명의 메트릭스표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라고 해명자료를 냈으나 해당사인 ○

말고식' 자료가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9월 1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머니투데이〉 정보과학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보다 한 급수 큰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머니투데이 : 『○○○○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8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공사가 인허가 절차없이 쓰레기매립지에 골프장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5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장 준 영)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인일보 : (1) 『법 뭉개고 깐 '그린 양탄자'』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30일자 1면)

내 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가 매립지 내에 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인일보 취재결과, 매립지공사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58 제1매립장 부지 중 77만 8천 87㎡ 규모로 '체육 공원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 현재 1단계 공정이 마무리 된 상태다. 매립지공사는 그러나 인천시로부터 이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승인도 받지 않았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123억 원을 들여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물론 매립지공사는 이를 사후관리차원의 공원화 사업 비용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페어웨이와 그린, 해저드, 스프링클러, 카트도로 등

골프장 관련 시설을 대부분 갖춰놓았다. (후략)

(2) 『한시적기구 '생명연장' 처방』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일자 3면) 외 1건

내 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는 왜 필수 코스인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란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골프장 조성 공사에 매달리는 것일까.

수도권매립지 사업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모두 2044년 이후에 존립 자체가 확실치 않은 매립지공사의 영속성을 위한 수익사업 확보 차원에서 골프장을 지으려 한다고 입을 모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30일자 1면 『법 뭉개고 깐 '그린 양탄자'』 제하의 기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쓰레기매립지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승인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페어웨이와 그린, 해저드, 카트도로 등 관련시설을 대부분 갖춰놓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공사에서는 2000년에 사용이 종료된 제1매립장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토사유출 등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잔디면을 조성한 것이며, 페어웨이와 그린, 해저드, 카트도로 등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경제적인 부지활동 계획을 고려하여 위치만 선정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8월 2일자 3면 『한시적 기구 ‘생명연장’ 처방』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2044년경에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의 반입추세 등을 감안할 때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가 한시적 기구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았으며, 아울러 대중골프장이 설치될 경우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연장처방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자 1면 보도내용 중 그린을 조성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사실확인결과, 잔디는 식재되어 있었으나 골프시설인 그린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청인이 동생을 폭행한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2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마산MBC-TV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4.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마산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1월 29일 21:30)

내 용 : ▷앵커 : 창원지검의 한 검사가 조사를 받으러 온 사건 당사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일 초 검찰청 청사 내 모 검사실에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당사자의 형이 상대의 구속을 요구했으나 검사가 구속 사안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갑자기 검사의 목살을 잡고 목을 죄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검찰은 이 남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피해자 가족이 검사 폭행 관련 추후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11월 29일 「뉴스

데스크」 프로그램에서 10월 초 검찰청 청사내 모 검사실에서 쌍방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사건당사자의 형이 상대의 구속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구속 사안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갑자기 검사의 목살을 잡고 목을 죄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는 구속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목살을 잡았다는 사실도 없고, 다만 검사의 목을 뒤틀었다고 하였는데, 검찰이 내세운 증인이 법정에서 목을 뒤튼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하자 검찰은 공판중에 공소장에서 목을 뒤틀었다는 부분을 제외, 공소장 변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2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마산문화방송 주식회사(마산MBC-TV)

경남 마산시 양덕동 525-1

대표이사 박 진 해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저녁 6시 30분 뉴스와 오후 9시 뉴스데스크 경남 뉴스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이 유 : 1.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마산MBC-TV는 2006년 11월 29일 저녁 6시 30분 뉴스와 9시 뉴스데스크 경남 시간에 「폭행 피해자 가족이 검사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려 온 당사자의 형이 상대의 구속을 요구했으나 검사가 구속 사안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자, 갑자기 검사의 목살을 잡고 목을 죄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1심 재판 결과 보도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검사의 목살을 잡고 목을 죄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보도하였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왼손으로 검사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잡고 뒤틀어'를 '양손으로 검사의 얼굴을 붙잡아 폭행을 가하여'로 변경하였고, 1심 재판 결과 '검사의 목살을 잡고 목을 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이에 대한 추후보도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행사하는 권리이다.

먼저, 보도내용과 신청인과의 개별적인 연관성을 살펴보면, 보도내용중 신청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사건 당사자의 가족'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려 온 당사자의 형'으로만 되어 있을 뿐, 신청인의 이름이나 주소·나이·얼굴·목소리 등 신청인에 관한 보도임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표현도 없어 신청인과 보도내용과의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공소내용을 변경했다고는 하나 신청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행사하는 권리'인 추후보도청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언론 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2.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

국방연구원의 안보센터장 교체가 외부의 개입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 총 배)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1) 『임기말 누수 시작됐다』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일자 1면)

내 용 :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이 28일 서○○ 연구위원의 NLL일간지 기고문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심○○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전격 교체한 데는 10월 정상회담에서 NLL문제의 의제화를 용인할 수 없다는 김장수 국방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이 그동안 NLL논의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NLL에 대한 통일부의 전향적 접근론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해 왔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더한다.

이는 청와대가 NLL의 민감성을 감안,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NLL에 관한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정 부분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의미로 해석된다. (후략)

(2) 『청·여론 눈치 살피다 보직해임 희생양』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일자 5면)

내 용 : (전략) 일각에선 참여정부 임기 동안 안보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한 적이 없는 국방부의 산하기관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액션’을 취한 것은 NLL문제에 대한 논의의 주도권을 통일부에 넘겨줘선 안된다는 국방부내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때 참여정부 안보라인의 ‘실세’를 인사 조처하는 것은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서장 보직해임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다.

신속한 문책성 인사로 통일부 등 경쟁부처에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면서, 적전 분열을 차단하는 내부 단속효과도 동시에 얻으려는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국방연 안보센터장 보직사임은 자발적 의사”
- 내 용 : 본지 9월 1일자 정치 1면 및 5면 「국방연, 청 입장에 반한 인사」, 「청·여론 눈치 살피다 보직해임 희생양」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연구원 안보센터장의 교체와 관련해 “김장수 장관의 평소 의지와 무관치 않다”, “NLL문제에 대한 논의의 주도권을 통일부에 넘겨줘선 안 된다는 국방부내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서장 보직해임으로 선회했다”, “통일부 등 경쟁부처에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면서 적전 분열을 차단하려는 내부 단속효과도 동시에 얻으려는 다목적 포석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국방연구원 안보센터장은 소속 연구원의 기고문 게재 당일 소속원의 글을 엄격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시켜 조직에 부담을 주었다며 보직 사임인사를 표명하였으며, 따라서 국방연구원 안보센터장의 교체는 외부의 개입이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며 국방연구원 고유권한에 따른 자체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7년 12월 31일 이내 NLL과 관련하여 신청인 소속 연구위원이 작성하는 칼럼을 게재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보도문 게재 안 함〉 □

진동운동기가 다이어트효과가 없으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메디○○○ (대표이사 손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2007년 7월 27일 22:10)

내 용 : (전략) ▷이영돈PD : 여러분, 이 ‘덜덜이’라는 운동기구 알고 계십니까?

홈쇼핑 대박상품입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몸매관리를 할 수 있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운동기, 원산지인 중국에서는 허위광고로 홈쇼핑에서 광고가 금지돼 현재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영돈PD :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안전불감증에 걸린 홈쇼핑 실태를 IT전자전문 강○○ PD가 진단합니다.

▷내레이션 : 진동운동기로 몸매관리가 된다는 홈쇼핑의 거짓말을 고발한다.

▷쇼호스트 : 이 상품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5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150억 판매돌과 기념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일명 ‘덜덜이’라 불리는 진동운동기는 홈쇼핑 최고인기상품 중 하나입니다.

〈홈쇼핑 방송내용〉

▷쇼호스트 : 2개월 2만 대 판매돌파! 고객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쇼호스트 :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우리 고객 여러분의 몸매관리에...

▷기자 : 덜덜이의 인기는 중국에서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이 홈쇼핑 광고는 허위로 밝혀져 금지되었습니다.

▷조선족 제보자 : 왜 한국에서는, 한국보다 낙후한 중국에서 이미 1년 전에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기계와 비슷한 것을 팔고 있나, 그리고 놀라워요.

▷기자 : 중국에서는 1년째 광고가 금지된 진동운동기.

한국에서는 연일 판매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진동운동기를 보름 전에 구입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팔뚝 살을, 동생은 종아리 부분의 살을 빼기 위해 구입했습니다.

▷이○○ : 저는 팔뚝 때문에 막 지방흡입까지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거하면 진짜 좋겠구나’ 그리고 그 홈쇼...핑 원래 잘 안 사는데, 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그것 보고 나서 ‘아, 저거구나’ 해서... 네.

▷기자 : 그러나 진동운동기를 사용하고 나면 팔다리가 간지럽고 일시적으로 붉은 반점이 나타났습니다.

▷이○○ : 지방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막, 지방분해가 되는 거라고 해서 그냥 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이게 여기만 그러다가 이제 며칠 했더니 여기까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자 : 동생은 이틀만에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부었기 때문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진동운동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27일 방송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진동운동기를 사용하면 피부가 간지럽고 일시적으로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진동운동기는 다이어트효과는 없고 오히려 관절 쪽에 통증을 느낀다라고 진동운동기의 부작용을 경고한 부분은 진동운동기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생리현상으로서, 제품 자체의 부작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제품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으로 정정합니다. 또한 진동운동이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고 단정한 부분도 잘못된 보도이며, (주)메디○○○가 제조, 판매하는 진동운동기는 방송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보도내용중 ‘단시간에 힘들지 않고 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식이요법 없는 다이어트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광고대로만 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과 관련해, 진동운동으로 중년 비만 여성의 체지방이 감소하였다고 보도된 연구결과 및 임상실험과 진동운동을 떠나서 식이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다양한 유산소 운동요법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를 입증한 연구 보고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진동운동기 종류 및 방식 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를 함으로써 (주)메디○○○와 같이 오랜 연구 및 임상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온 한 기업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점과 아울러 시청자들에게 깊은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보도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조사와 함께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정보도를 합니다.

취하 후 보도문

KBS-1TV :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2007년 10월 12일 22:00)

내 용 : 지난 7월 27일 방송된 ‘위험한 살빼기 덜덜이의 진실’ 편에 추가정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진동운동기에는 크게 좌우시소형과 수직운동방식이 있고 시소형은 다시 AC모터를 이용하는 방식과 DC모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근거와 객관성이 부족한 일부 DC모터 제품의 오남용과 사용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을 고발한 것입니다. 진동운동기를 사용하시더라도 제품을 잘 선택하시고 사용자의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자세, 운동시간 등 사용방법을 잘 숙지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병원 원장인 신청인이 환자남편의 의견만 듣고 부인을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5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4.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뉴스후」 프로그램 (2007년 9월 1일 22:50)

내 용 : ▷앵커 :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정신병원 근무하는 의사들이 정신병을 진단하여 입원을 하게 되는 건데 의사들의 이런 진단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 정신 질환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의사마다 진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 입원되었던 환자들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레이터 : 올해 42살의 주부 김○○ 씨.

성격차이로 남편과 불화를 겪던 김 씨는 3년 전 남편과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고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남편은 펄쩍 뛰며 이혼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김 씨에게 이혼 서류를 챙겨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작년

7월 19일 집근처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김씨 앞으로 남자 두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모씨 :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검정색 옷을 아래 위로 입은 사람이 와서는 “애기 다 끝났으면 가시죠...”

▷나레이터 : 반항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몸부림치다가 결국 손발이 묶여서 끌려간 김 씨.

멀리서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김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김모 씨 : 살려달라고 경찰 불러달라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경찰이 왔어요. 전이미 ○○ 구급대 차에 포박당해서 묶여있는 상태고

그런데 경찰이 오더니...

우리나라는 남편 보호자 말이라면 끝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 이 여자 남편인데 정신질환으로 후송중이니깐 가시라고 그런거예요.

갔어요. 경찰은...그길로 끌려가게 된거예요.

▷나레이터 : 그렇게 생전 처음가게 된 정신병원. 강제로 끌려가긴 했지만 의사가 자신을 진찰해 보면 바로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의사는 조울증이라며 입원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모 씨 : 변호사 불러달라고, 경찰 불러 달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탁 치고 돌아서면서 ‘조울

증 맞네요.’

그때부터 조울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를 믿을 수 있겠어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9월 1일자 뉴스후 프로그램에서 경기도 J 의원이 남편 말을 듣고 정상적인 사람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J의원은 남편 뿐 아니라 친정식구들의 동의하에 입원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J 의원이 정상적인 사람을 정신병환자로 오진한 것으로 방송하였으나, J 의원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한 것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임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MBC-TV <뉴스후> 프로그램 초기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1.

<별 지>

•제 목 :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보도와 관련된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일 <뉴스후> 프로그램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제하의 보도에서 경기도 J 의원 원장이 남편의 말만 듣고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자는 당시 조울증 증세가 심각해 친구와 친정 식구들의 사전 상담 및 동의를 통해 입원하였고, J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호전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학교가 관광버스 업체와 불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5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고등학교 (교장 이 ○ ○)

피신청인 : 전국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4.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전국매일 : 『돈독 오른 학교』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2일자 6면)

내 용 : 경기도 평택시 ○○동 A학교 스쿨버스가 유상행위 정지 처분에 따라 운행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엔 아예 전세·임대를 목적으로만 운행하는 관광버스를 1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평택시

남부 및 북부지역 학생들로부터 회수권을 받고 불법 유상운행케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A학교는 당초 학교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학생들을 운송해야 하나 A학교 측은 유상운송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해 시로부터 허가 및 승인도 받지 않고 수년간 학생들을 상대로 회수권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평택시는 이를 즉각 행정처분과 넘버영치를 위해 불법 유상행위를 한 A학교 측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학생들이 월 기말고사 시험기간인 것을 빌미로 삼아 시에 건의해 시간 별기에 급급한 나머지 학생들의 시험이 끝나자 여름방학이 시작돼 잠잠해진 틈을 이용, A학교 측은 이번엔 아예 학교스쿨버스 운영을 폐지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더니 관광버스를 연간 계약해 관광버스로부터 학생들에게 회수권을 받고 유상운송케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A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오후 3~4시 30분에 수업이 끝나면 회초리를 들고 학교 정문 앞에 나와 노선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일반버스 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학교정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돈독 오른 학교”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 지난 8월 22일자 사회면 『돈독 오른 학교』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A학교는 당초 학교 통학로를 개설하고 통학차량이 없을 때부터 스쿨버스를 운행하다가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마을버스와 같이 학생수송을 하였으나 스쿨버스는 유상허가를 받지 않아 방학 전에 중단하였으며, 학교에서는 마을버스 증차 계획이 없음을 알고 많은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과 교통안전에 위해 임대버스를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교의 통학버스는 무상으로만 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학교에서 발행한 1회용 회수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으므로 위법이 아니며, A학교 교장이 회초리를 들고 학생들이 노선 버스를 못 타게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4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8월 22일자 6면 『돈독 오른 학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으나, 평택시 A학교 통학버스 운행은 돈을 바라고서 불법적으로 학생 통학버스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A학교는 당초 학교 통학로를 개설하고 통학차량이 없을 때부터 스쿨버스를 운행하다가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마을버스와 같이 학생수송을 하였으나 스쿨버스는 유상허가를 받지 않아 방학 전에 중단하였으며, 학교에서는 마을버스 증차 계획이 없음을 알고 많은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과 교통안전에 위해 임대버스가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의 통학버스는 무상으로만 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학교에서 발행한 1회용 회수권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으므로 위법이 아니며, “특히 A학교 교장은 회초리를 들고 학생들이 …노선버스를 못 타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광 측 관계자”와 대화는 없었으나 A학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확인하여 본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국매일 2007년 9월 17일 6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허가도 없이 관광버스와 계약 불법 유상운행)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국매일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7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병원장에게 과잉충성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전북중앙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전북중앙신문 : 『○○대학병원장실 비서실의 과잉충성심』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3일자 7면)

내 용 :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차지철 실장의 힘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누구도 차 실장의 눈에 거슬리거나 못 마땅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렀으며 차 실장의 허락 없이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원의 운영방안에 대한 취재와 지역에 떠돌고 있는 유언비어들에 대해 정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 기자는 병원실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장실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라며 비서실장의 통명

한 말투와 함께 출입을 막아 섰다.

○○대학병원장 비서실장은 군사정권 시절 무대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차지철 경호실장의 흉내라도 내는 듯한 분위기였다. 아님, 요즘에 정부에서 ‘언론 선진화’ 라고 떠들썩하는 가운데 뜻도 내용도 모르는 비서실장이 병원장에 대한 과잉 충성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전북중앙신문은 2007년 9월 3일 7면 『○○대학병원장실 비서실의 과잉충성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학교 병원 부속실장을 박정희 정권하의 차지철에 비유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부속실장은 본연의 정상업무 수행중 사소한 의견충돌이 생긴 것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속실장을 차지철에 비유하여 인신모독한 점과 편파보도한 점에 대하여 부속실장 개인과 ○○대학병원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육군이 중대급 마일즈 사업을 중단하면서 군 내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 (단장 김 국 환)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일보 : (1) 『돌연 중단 ‘중대급 마일즈사업’ 군 내부 규정·절차 위반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8일자 1면)

내 용 : 육군이 2003년 시작한 중대급 마일즈(MILES·다중 통합레이저 교전 훈련장비) 사업을 지난달 말 갑자기 중단하면서 각종 군 내부 규정과 절차를 어긴 것으로 밝혀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1987년 육군의 과학화훈련사업단 발족 이후 추진해 온 훈련전술체계의 과학화·

현대화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본보가 27일 입수한 육군의 마일즈 사업 추진 관련 문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업체 자체 시험평가서 검토 결과 문서 등에 따르면 육군은 2005년 11월 제시했던 최초 군 요구도(ROC)항목 중 40개 이상의 항목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무부서인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은 ROC항목 변경 때 교육사령부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의견 조율 절차를 거치도록 한 ‘육군 전력발전 업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또 지난해 12월~올 2월 시제품 시험평가를 계획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업체들의 ‘자체 시험성적서’만 검토한 뒤 7월 말 개발 승인을 취소했다. 특히 육군은 처음에 제시한 ROC항목수(329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62개 항목만 검토 기준으로 삼았고, ROC기술 수준을 당초보다 낮춰 배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략)

(2) 『군내부 “상당수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4일자 10면)

내 용 : 육군 측이 지난달 중대급 마일즈(MILES·다중 통합레이저 교전훈련 장비) 개발업체 2곳의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는 과정에서 각종 군 내부 규정과 절차를 어겼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3일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육군 측의 반박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라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 측은 특히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업체들이 제출한 자체 시험성적서(시험 가동 결과)를 평가해 보니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점을 승인 취소 근거로 들고 있지만, 기품원 측은 “평가 중 일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정확한 승인 취소 사유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돌연 중단 ‘중대급 마일즈사업’ 군 내부 규정·절차 위반 드러나”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및 사과문

• 내 용 : 지난 8월 28일자 본지는 『돌연 중단 ‘중대급 마일즈사업’ 군 내부 규정·절차위반 드

러나』, 9월 4일자 『의혹 키운 군 ‘마일즈 중단’ 해명 내부서도 상당수 사실과 달라』 등 제목으로 마일즈 사업과 관련해 사업 중단 과정의 규정·절차 위반,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개발시험평가’를 의뢰하였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개발업체인 ‘자체시험성적서’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양업체의 시제품 모두 ‘군사요구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험평가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계속적인 사업 추진과 개발업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육군이 제시한 개발시험평가 기준(정량화된 군사 요구도)에 맞추어 시제품을 보완하여 제출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양개발업체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7월 26일 ‘사업관리 심의회’를 거쳐 개발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육군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중대급 마일즈사업 개발승인을 취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기사화하여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합의문

• 내 용 : 본보 8월 28일자 1면 “돌연중단 ‘중대급 마일즈 사업’, 군 내부 규정·절차 위반 드러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단장 김국환)은 “개발업체에 제시한 최초 군사요구도를 변경한 적이 없으며, 군사요구도를 충족하지 못한 개발업체에 시제품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으나, 업체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개발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2007년 9월 19일자 이전까지 2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본보, 개발시험평가서 입수)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내용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news.hankooki.com>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위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언론중재위원회 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기획하여 다녀온 유럽 문화탐방이 준비소홀로 당초 취지와 크게 달라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초등학생 5학년 참가자 통역』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31일자 사회면)

내 용 : 전주의 한 문화탐방업체가 주장한 서유럽문화 탐방을 다녀온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탐방내용이 당초 계획과 크게 차이가 나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탐방에 참가한 학부모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유럽의 문화를 직접 체험시켜 주기 위해 참가한 문화탐방이 주관업체 측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 내용도 크게 다를 뿐더러 고생만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 업체가 여행업에 등록조차 않은 불법업체여서 행사 프로그램이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더구나 업체 측은 지난 29일 문화탐방기간 중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 학부모 측에 전달했지만 학부모들은 정산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31일자 사회면에 『초등학생 5학

년 참가자가 통역』 제목으로 전주의 한 문화탐방업체가 주관한 유럽문화탐방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과 크게 차이가 나고, 소요비용의 정산 내역이 실제와 크게 달랐으며, 숙박과 식사도 부실했고, 가이드도 없었음은 물론 탐방주관 업체가 불법업체였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문화탐방을 기획한 단체인 ○○○○아카데미는 전북관광협회로부터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숙박 등을 예약했을 경우 불법 여행 알선업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정산 내역 역시 영수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에 입각하여 현지에서 받은 영수증대로 정산했고, 10인 1식 숙소에서 잠을 잔 것은 로마가 유일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더 나은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투어를 2시에 예약을 했는데 한 아이가 이탈을 하여 그 아이를 찾는데 시간을 소비해 투어의 촉박한 시간관계상 간단한 점심식사를 제공했을 뿐, 다른 곳에서는 식사를 상의해서 원하는 식당이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일정은 현지상황에 맞게 상의하여 탐방을 했으며, 런던에서는 뮤지컬 관람료를 13명에게 지불하였고, 나머지 아이들은 피곤하여 보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에 따라 한국에서 다른 문화체험을 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영박물관 관람시에는 현지가이드가 동행하여 안내했으며, 참가학생의 통역 관련 내용은 인솔자가 급박하게 현지에 호텔직원과 대화하던 중 전문적인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초등 6년 황모 학생이 어학연수를 받아 영어를 유창하게 하여 대신 통역해 준 것으로 이를 본 다른 학생이 자신에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

신청인 조합의 내분으로 1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 종 구)

피신청인 : 수산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원에 대한 지원폭이 커질 수 있는데도 올해 40억 원만 예산이 책정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번 사태로 수협중앙회 얼마나 손해봤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3일자 3면에 『이번 사태로 수협중앙회 얼마나 손해봤나』라는 제목으로 수협중앙회가 이번 사태로 눈에 보이는 것만도 130여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국가의 예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재정법은 제31조 1항에 각 중앙서관의 장은 예산요구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신문이 언급한 이번 사태는 최초 사유 발생일이 7월 14일이므로 이번 사태는 정부예산과 전혀 무관한 사안으로 수협중앙회가 정부예산을 받지 못해 눈에 보이는 것만 130여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보도내용이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나 기고문 게재는 수용가능하나,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

보도내용

수산신문 : 『이번 사태로 수협중앙회 얼마나 손해봤나』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31일자 3면)

내 용 : 이번 사태로 수협은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 해양수산부 한 관계자는 “줄잡아 몇 백억 원 이상은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종구 회장이 강무현 장관에게 “나도 어민교육에는 관심이 있지만 지금 정부가 기금을 줄이고 있는 마당이니 만큼 예산으로 3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며 만류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며칠 후 이 회장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신뢰가 깨졌고 결국 해양수산부는 11억 원만 책정했다. 어쨌든 20억 원 가량이 이 회장과의 관계 악화로 수협중앙회로 갈 게 준 것이다. 또 MOU 체결과 관련, 정부가 경제사업부문에 지원해 주던 948억 원이 올해 끝남에 따라 지도 쪽에 줄 돈 450억

신청인 기업이 추진중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강원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OOOO페스티벌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인제신문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인제신문 : 『○○테마파크 조성 민자사업 선정 보고 허위와 날조로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4일자 1면)

내 용 : (전략) 이와 관련하여 인제신문사는 취재내용을 중심으로 즉시 관련된 기업 홍보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민은행, 포스코, 롯데 등은(자회사포함)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며 투자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입장을 전해 왔다. 다만 국민은행은 금융투자팀에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테마파크조성 민자사업 선정허가 허위와 날조로 드러난 이상 박○○ ○○군수를 비롯한 한○○ 군의장과 관련 의원들은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후략)

• 제 목 : ○○테마파크 조성 민자사업 선정 보고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4일자 1면에 『○○테마파크 조성 민자사업 선정 보고 허위와 날조로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테마파크 조성 민자사업 선정자가 허위와 날조로 드러났으므로 박○○ ○○군수를 비롯한 한○○ 군의장과 관련의원들은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 조성 민자사업 선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였고, 관련 참여사로부터 투자 및 참여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70,000,000원

□

모 증권사가 비정규직을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투자증권노동조합 (위원장 구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투자증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전환』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8일자 증권면)

내 용 : ○○투자증권이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받는 직원들의 1년 재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투자증권 관계자는 27일 “비정규직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업무전문직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정규직의 80%인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1년 내계약 제도를 폐지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규직과 동일한 승진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는 본인이 기존 계약을 선택할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전체 대상자 380명 가운데 343명이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새로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새로운 제도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차별적인 무기 계약직 제도에 불과하다”며 “이 문제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과 차별 시정 신청을 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〇〇투자증권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정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8일자 증권면에 『〇〇투자증권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〇〇투자증권의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1년 재계약 제도를 폐지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규직과 동일

한 승진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회사 측이 강행한 제도는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이라고는 하나 매년 임금인상률을 정규직 임금인상율과 연동시켜 최하위고과의 경우에는 임금이 5%까지 삭감되는 등 기존 정규직과는 별도의 급여체계를 갖고 있으며, 최소 12년간 근무해야 정규직의 대리급 수준으로 승진되는 별도의 승진시스템이며, 또한 이 직군은 본사관리 업무 및 지점창구, 콜센터업무에만 국한되어 입사 후 동일한 업무만 하게 하는 차별적인 분리직군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말하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거리가 먼 것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휴진 불참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기도의사회 (회장 윤창겸) 외 1인

피신청인 : 데일리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데일리팜 : 『경기지역 의원 휴진 불참...오늘 비상총회』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31일자 메인면)

내 용 :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31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오후 휴진이 한 시도의사회의 거부 움직임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 일부는 전국적으로 전격 돌입키로 했던 오후 휴진을 2시간 가량만 실시하거나 휴진과 비상총회 모두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사회 산하 30개 시군구의사회 중 이번 오후 휴진에 불참을 결정하거나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곳만 5곳.

특히 이들 의사회의 휴진 불참에는 시군구의사회장에 대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실제 휴진 불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측된다.

휴진에 불참키로 한 한 시군구의사회장은 “경기도 의사회에서 휴진에 참여하더라도 4시까지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 지시는 공문이 아닌 윤 회장의 전화연락을 통해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기지역 의원 휴진 불참...오늘 비상총회』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31일에 『경기지역 의원 휴진 불참...오늘 비상총회』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 의료기관의 8월 31일 휴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이 소속 시·군 의사회 회장에게 전화로 휴진에 불참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윤창겸 회장은 경기도 시·군 의사회장에게 휴진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경기도 의사회 관련 알립니다.
- 내 용 : 지난 8월 31일자 본지에서는 경기도 의사회 윤창겸 회장이 경기지역 시군구의사회장에 대해 휴진 불참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창겸 회장이 의사협회 지시를 본인이 어긴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윤창겸 회장은 휴진에 불참하려는 일부 경기도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휴진에 동참하라고 독려전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본보 보도에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데일리팜에서는 정부의 정책 또는 사회적 환경이 사람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사(醫師)에게 상대적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데 대해 의료 전문 매체로서 깊이 우려하면서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발전과 의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철주야하시는 윤창겸 회장님 및 각 지역 의사회 지도부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데일리팜' (www.dreamdrug.com)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아울러 데일리팜이 기사를 제공하는 포털 등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같은 기사를 표출한다.
- 피신청인은 데일리팜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경기지역 의원 휴진불참..."제하의 기사) 본문 하단에 위 항의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을 2007년 9월 20일까지 이행한다.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각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시하도록 한다.
- 내 용 : 데일리팜에서는 정부의 정책 또는 사회적 환경이 사람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사(醫師)에게 상대적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데 대해 의료 전문 매체로서 깊이 우려하면서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발전과 의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철주야하시는 각 지역 의사회 지도부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경기도 의사회와 윤 회장님에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 매체에서 성분명 처방과 같은 의료계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사회의 입장과 대응 등을 취재 보도하는 경우, 윤 회장님의 인터뷰 등을 먼저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신는 등 경기도 의사회와 윤 회장님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데일리팜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윤창겸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담당 기자 등 소속 임직원에게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팜 : 『반론보도문 경기도의사회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20일자 메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국정홍보처가 부처 홍보업무 평가시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만 해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언론에 소송 걸면 '점수 3배' 주는 정부』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5일자 A2면)

내 용 : 정부가 올해부터 행정부처별 홍보업무를 평가하면서 해당 부처에서 언론사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실적이 있다면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 대응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3일 국정홍보처에서 제출받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2007년도 평가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위는 부처들의 언론사 보도에 대한 '대응 적응설'을 평가할 때 '법적 대응(언론중재위 신청·소송)에 의한 정정·반론 보도 건수'에다 곱하기 3을 해 계산하도록 했다. 3배의 가중치를 준 것이다. 작년도 평가 때까지만 해도, 법적 대응에 대해 이런 식의 가중치를 두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5일자 A2면에 『언론에 소송 걸면 '점수 3배' 주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소송을 걸면 행정부처별 홍보업무평가시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 정부가 법적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2007년도 정부 홍보업무평가기준은 언론에 소송을 걸었을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하여 정정·반론보도를 받아 낸 경우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패소한 경우는 오히려 대응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9월 5일자 A2면 「언론에 소송 걸면 '점수 3배' 주는 정부」 제하로 행정부처별 홍보업무를 평가할 때 해당 부처가 언론사에 소송을 걸면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국정홍보처는 '2007년도 정부 홍보업무평가기준'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경우에 가중치를 부여할 뿐이므로 법적 대응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10월 5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본문활자크기보다한 급수 큰 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5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국정홍보처가 부처 홍보업무 평가시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만 해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 연합뉴스

증 재 부 : 서울제4증재부

접 수 일 : 2007. 9.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박찬숙 “정부, 언론에 소송 걸면 가산 점”』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5일자 정치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4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34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

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연합뉴스 : 『홍보처 “대언론 소송제기 이유로 점수 부여 안 해”』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2일자 정치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40의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원장이 다른 사람이 번역한 책에 자신을 번역자로 올려 출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2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연구원 (원장 강 ○ ○) 외 1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7.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운수○○연구원 조모(37) 박사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낮 두꺼운’ 강○○ ○○연구원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7년 8월 8일자 사회면에 『낮 두꺼운 강○○ ○○연구원장』이라는 제목으로, 강○○(50) 한국○○연구원 원장이 지난 6월 다른 사람이 번역한 책에 자신을 번역자로 올려 출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강○○ 원장이 직접 번역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청백봉사상 수상이 유력한 동료직원을 음해해 수상에서 탈락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5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경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증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0.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대전일보 : 『동료직원이 음해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8일자 21면)

내 용 : 제천시의 인사명령을 어기고 근무지 이탈로 물의를 일으킨 전공노 ○○시지부장이 행자부가 선정하는 ‘청백봉사상’의 유력 후보자를 흠집내는 바람에 선정이 번복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30여 년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직자 최고 영예의 상장인 ‘청백봉사상’ 선정이 번복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노조지부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시와 전공노 ○○지부 등에 따르면 ○○시청에 근무하는 A 공무원(기능 7급)은 지난해 11월 초 행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모범적인 공직생활과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0회 청백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나 당시 ○○시직협 조합원이었던 A 씨는 동료인 노조지부장의 이의제기로 ‘1계급 특진’이라는 영예를 한 순간 잃었고, 이 탓에 공무원 전체와 시(市)의 명예도 크게 실추됐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모 노조지부장은 당시 공무원 총파업 참여로 공직 신분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지부장 명의로 이의를 제기해 ‘동료를 음해하려 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청백봉사상 탈락 “동료직원 음해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2007년 6월 18일자 21면에 인사명령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해 물의를 일으킨 전공노 ○○시지부장이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청백봉사상 수상대상자인 동료직원을 음해하여 수상에서 탈락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전공노 ○○시 지부장은 인

사명령을 어긴 적이 없으며, 또한 근무지를 이탈하지도 않았고, 동료직원의 청백봉사상 수상에 대하여 음해를 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청백봉사상 탈락 “동료직원 음해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대전일보는 2007년 6월 18일자 21면에 인사명령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해 물의를 일으킨 전공노 ○○시 지부장이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청백봉사상 수상대상자인 동료직원을 음해하여 수상에서 탈락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전공노 ○○시 지부장은 인사명령을 어긴 적이 없으며 또한 근무지를 이탈하지도 않았고, 동료직원의 청백봉사상 수상에 대하여 음해를 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견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
- 피신청인은 공무원노조 ○○시지부와 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도를 하기로 약속한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일보 2007년 9월 20일자 2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행자부, 탈락이유…)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기사(위 정정보도)를 복사하여 배포하는데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일보 : 『청백봉사상 탈락 “동료직원 음해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담배꽁초를 버려 과태료를 부과받는 모습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대구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구MBC-TV : 「뉴스테크」 프로그램 (2007년 8월
27일 21:45)

내 용 : ▷앵커 :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
에 몸살을 앓고 있는 자치단체가 쓰레기 무단 투
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담배꽁초 같은 작은 쓰레기라도
길에다 버리다가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
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 대구 동성로에서 담배를 피우고는 꽁초
를 바닥에 버린 20대 남성.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청인 : “어처구니없네요.

▷기자 : 어처구니없어요?

▷기자 :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며 생떼를 써봐도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신청인 : “왜 이걸 단속 안 하는데요? 불법 주·
정차는 안 합니까? 적어줄테니까... 단속하는데가
구형입니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대구MBC는 지난 8월 27일 「뉴스테크」 프로그
램에서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과태료 3만
원을 부과받는 본인의 모습과 인터뷰를 무단으로
보도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5,000,000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

신청인 협동조합이 저질안전모를 수입해 불법으로 유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부품소매업협동조합
(조합장 이 ○ ○) 외 1인

피신청인 : 대구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대구MBC-TV : 「뉴스테크」 프로그램 (2007년 8월

28일 21:30)

내 용 : ▷앵커 : 자전거용 중국산 안전모를
수입해 오토바이용으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잡
혔습니다.

▷기자 :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쓰
는 안전모입니다.

자동차부품 소매업을 하는 46살 A모 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중국, 홍콩 등지에서 저질 안전모 만 5
천 개를 사들여 대구 등 전국 9곳에서 팔아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A 씨로부터 이 안전모를 사 운동용이 아닌
오토바이용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14명도 경찰에
잡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국○○자동차협동조합 헬멧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8월 28일자 「8시 뉴스」에서 모 자동차부품소매업협동조합이 저질안전모를 수입해 불법으로 유통하다 경찰에 잡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제품에 대하여 불법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보도된 M××× 안전모는 스포츠용으로 한국생활환경연구원의 정식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그 성능과 품질 면에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제품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근거해 기사화한 것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위압적인 행태로 고소인을 대하고 이유없이 해당 사건의 추가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오만한 경찰’ 지금도 이런데...』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4일자 8면)

내 용 :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곤하니 고소하지 말라.’고 으박지르거나 늑장 출동해 폭행 피의자를 놓치고 이를 따지는 시민에게 ‘근무 교대하느라 늦었다.’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등 경찰의 위압적인 행태가 빈축을 사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경찰이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 언론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도 적지 않다.

회원들의 회비 수익 원을 빼돌린 뒤 도망간 피○○센터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경찰서를 찾았던 김모(37·유학 준비생) 씨는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회원 몰래 운동기구를 빼돌린 뒤 폐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A피○○센터 대표 이모(47)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은 “당신들만 돈을 돌려 받았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 일을 키우느냐.”면서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고소를 해 피곤하게 만드냐.”며 고함까지 쳤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소는 별다른 이유없이 모두 반려됐다.

김 씨는 “폐업 당일까지도 회원을 모집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성 폐업’이 명백한데 단지 ‘피곤하다.’는 이유로 고소하지 말라고 으박지르는 경찰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담당경찰관은 “굳이 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말고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오만한 경찰 지금도 이런데” 기사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24일자 8면에서 김 모 씨 등이 회원들의 회비 수억 원을 빼돌린 뒤 도망간 피○○센터 대표 이모 씨 (47세)에 대한 사기 혐의가 확실한데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이 고함을 지르고, 피곤하니 고소하지 말라는 등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고소장을 반려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피○○센터 회원관련 피해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결과 피○○센터가 사기성 폐업을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수사담당경찰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위압적인 행태를 보인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반려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진행중에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7년 8월 24일자 신청인에 관한 기사 중 고소장 반려와 관련하여 후속보도를 통해 신청인과 고소인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서울신문 사회면에 보

도하되, 2007년 10월 3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화해보다 고소”』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31일자 10면)

내 용 : (전략) 실제 지난 8월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역삼동의 한 헬스클럽이 폐업하자 회원 수백명이 남은 회비를 돌려받기 위해 업체 사장을 개별적으로 고소해 수사에 애를 먹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A 조서관은 “사건의 본질이 회비 변제에 있는 만큼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라.”며 고소인들을 설득하다 되레 청문감사실에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진정을 해 곤혹을 치렀다. 회원들은 지난달 사장에게서 회비를 돌려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 결국 형사조정제도로 해결이 가능했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할 경우 수사와 형사 한 사람이 고소사건 50~60건을 맡을 때도 있다.”면서 “고소인에게 형사조정제도 등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설명해도 아직까지는 ‘그냥 형사고소로 가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2.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양당사자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7년 8월 23일 22:00)

내 용 : (전략)

▷나레이션 : 파마값 5만 원은 그래도 양반. 이번에는 커트비가 5만 원이시란다. 금가위로 자르시길라도 하신건가요?

▷고객 :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무조건 5만 원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뭐 어떻게 경고조치도 못하고, 시정조치는 할 수 있는데...

▷나레이션 : 소비자는 억울하다.

▷주인 : “난 경력이 20년이야,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커트 한번 하면 두 달 정도 가지 않나요? 두 달에 커트비 5만 원이 뭐가 비싸? 난 100만 원에도 잘라 봤는데”

▷나레이션 : “100만 원이요?”

▷주인 : “그럼요”

▷나레이션 : 말 그대로 주인 마음이다. 어디에 또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미용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과마값의 비밀」 방영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23일자 소비자 고발프로 「불만제로」에서 전○○ 헤어랜드가 가격표를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 사기업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전○○ 헤어랜드는 90%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고 가격표를 출입구와 내부에도 커다랗게 상세하게 게시하였으며, 고객의 알권리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MBC-TV <불만제로>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체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5.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8월 23일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경기도 오산시의 한 미용실이 가격표를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한 후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해당 미용실에서는 내부의 쇼파에서 잘 보이는 벽면에 가격표를 큰 글씨로 게시하였는데 고객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요금은 미용기능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지하상가 입구 차량 돌진 사고를 보도하면서 신청인과의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과)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대구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대구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7년 9월 10일 07:30)

내 용 : ▷앵커 : 얼마 전 대구의 한 지하상가 입구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닌데도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자 : 대구 메트로센터 지하상가 입구에 처박혔던 승용차를 견인차가 끌고 나옵니다.

주부 정○○ 씨는 지난 6일 지하상가 입구를 주차장 입구로 착각해 차를 몰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중략)

▷기자 : 상가 관리사무소는 대구시가 차량 진입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보도이기 때문에 시 땅이 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데...하다못해 계단을 하나 만들어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자 : 하지만 대구 중구청은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이 아니라는 표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대구MBC는 지난 9월 10일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지하상가 입구를 주차장 입구로 착각해 차를 몰다 봉변을 당한 한 여성의 사고소식을 전하면서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인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 사과한다.

가. 사과내용 : ‘신청인의 신체 특정부위인 다리만을 촬영하여 내보낸 것’과 ‘신청인의 멘트내용을 음성변조하지 않고 내보낸 것’, 그리고 ‘인터뷰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취재관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느낀 불쾌감에 대해 사과한다.

나. 사과 장소 및 방법 :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사 과〉

□

안과의사들이 영리목적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한 시력교정렌즈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한 태 원)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2.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7년 9월 6일 22:00)

내 용 : (전략)▷나레이션 : 맛있는 라면을 먹을 때도 시야를 가리는 안경의 방해공작. (옷을 입을 때)안경, 이 높은 시도 때도 없이 걸리적거린다.

눈 나빠 고생하는 불쌍한 중생들이여! 보라, 흐릿한 세상, 안 보이는 세상, 답답한 세상을 보게 할 위대한 발명품이 나왔으니 안경따윈 필요없다. 끼고 자기만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 이름 하여 각

막굴절시력교정렌즈, 일명 드림렌즈를 아시는지...

▷안과 관계자 : 드림렌즈 끼는 거 자체가 시력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힘이 강해요. (중략)

▷김○○ : 머리 아프고 찌르는 듯한 작열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끔 자다가 느껴서 벌떡 벌떡 깨요.

▷나레이션 : 100만 원이 넘게 주고 산 렌즈였다. 처음에 상상도 못했던 증상이었다.

이번 제보자는 참을성이 많은 분이다. 무려 6년 동안 드림렌즈를 착용했다.

▷김○○ : 장기적으로 이게 점점 눈이 아프고, 점점 시력이 안 나오고, 점점 두통도 심해지고, 이제 눈에 상처도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안 끼는 게 낫다고 생각은 했죠.

▷나레이션 : 희한하게 이 렌즈를 낀 사람들의 증상은 비슷했다.

▷정○○ : 정말 시력이 맨날 달라져 가지고요, 어떤 날은 체중계 바늘이 보였다가 어떤 날은 발톱도 깎기 힘들다가 그런 식으로 맨날 변해요. (중략)

▷김△△ : 결막염은 수시로 있고, 그런데 가시아메바라고 있어요, 수돗물에. 그게 눈에 들어가면 눈에 각막염이 일으켜 가지고 하얀 점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정○○ : 안구전체가 정말 빨갛게 충혈돼요, 얻어맞은 사람처럼. 그것도 한쪽만 그런 식으로 그러거든요, 번갈아가면서. 어떤 날은 이쪽이, 어떤 날은 이쪽이.

▷나레이션 : 결막염, 각막염 등등 각종 염증이 시달린다.

▷진행자 : 뭐라고요? 꿈의 렌즈라면서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별거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정○○ : 정말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안구건조증이 오히려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소프트렌즈보다는 좋으니까. 그리고 눈에 피로도 없을 거고.” 하드렌즈를 제가 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하드렌즈보다 훨씬 편하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오○○ : 부작용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부작용이라면 하나(애기한 게) 있었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많이 끼 있을 것이다.”

▷나레이션 : 정말 부작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직접 물어보자.

▷A안과 :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끼는 렌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로 끼는 렌즈인데 부작용이 많다면 저희로서는 할 수 없죠, 그거는.

▷B안과 : 부작용은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돼 있어요. (중략)

▷나레이션 : 꿈의 렌즈라고 불리는 일명 드림렌즈, 각막의 중심을 눌러 시력교정 효과를 내는 렌즈인 만큼 렌즈가 각막의 어디를 누르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실제로 한 드림렌즈 착용자는 잘못된 교정으로 한 달 만에 난시도가 5배나 증가하기도 했다. (중략)

▷대전A안과 : 돈도 되고 하니까. 워낙 그런 게 유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 안과 검안의 : 제가 안과에 있으면 드림렌즈를 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시가 내려오니까. 100명 처방 내리는 것보다 이거(드림렌즈) 하나가 나오니까.

▷나레이션 : 시력교정렌즈가 돈 벌게 해 주는 렌즈라는 말, 충격적이었다.

▷제보자 : 이거는 대단한 장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쪽 눈에 공단에서 나오는 수술비가 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드림렌즈는 단 몇 분 만에 렌즈 하나를 팔게 됨으로서 100만 원을 돈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의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과 의사들한테는 여기서 매력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중략)

▷나레이션 : 그렇다면 렌즈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겐 어떤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을까? 해당 병원에 가서 부작용을 얘기했다.

▷A안과 : 렌즈가 중심에 딱 잘 안 맞아요. 교정을 해야 되는데 중심이 렌즈를 정확히 각막을 잘 눌러줘야 하는데 일단, 렌즈착용을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나서 염증치료를 한 다음에...

▷환자 : 치료가 된 다음에 다시 착용해도 되는 거예요?

▷A안과 : 예. 눈이 완전 원상태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피팅을 하면 괜찮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이 지난 2007년 9월 6일 「불만제로」 프로

그램을 통하여 의사 및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방송에서 공개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한편 의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한 보도와 관련해, 렌즈착용을 위한 전문 진료행위에 따른 진료비 및 검사비용 등을 참고하지 않았기에 드림렌즈의 원가와 환자의 구입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드림렌즈를 착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방송했으나 렌즈착용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렌즈를 관리할 경우 부작용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안안과의사회

회장 한 태 원

조정대리인 송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임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MBC-TV <불만제로>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나레이터가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1.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의 지난 9월 6일 <불만제로> 프로그램 『꿈의 렌즈를 아시나요』 제하의 보도와 관련, 대한안과의사회에서는 보도에 언급된 드림렌즈의 부작용은 드림렌즈만의 부작용이 아니라 하드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대부분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드림렌즈의 가격으로 언급한 12만 원에서 20만 원은 한쪽 렌즈의 가격이며, 안과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는 렌즈 가격 외에 진료비와 검사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USB메모리가 악성코드를 전파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유해사이트 차단장치 제품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시○○(주) (대표이사 나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USB의 배신?』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0일자 E15면)

내 용 : 최근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메모리가 악성코드 전파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9월 USB 메모리에 의해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신고가 6월 25건에서 7월엔 33건, 지난달 3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회사에 USB 메모리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게 지난해 12월인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신청인 회사 USB사진>

USB 메모리를 매개로 확산되는 대표적인 악성코드는 'VBS/Solow' 다. 이 악성코드는 PC의 각 드라이브 루트에 'Autorun.inf' 라는 파일을 만든다.

이 파일은 자기 복제기능이 있어 삭제를 시도해도 PC와 이동식 저장장치에 자동으로 복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어렵게 삭제에 성공해도 PC 바탕화면의 ‘내 컴퓨터’ 아이콘을 통해 각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내 컴퓨터’ 아이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USB의 배신?”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9월 10일자 IT면에 『USB의 배신?』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시○○○의 “키○○-USB 유해차단 장치” 제품 사진을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시○○○의 “키○○-USB 유해차단 장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전파할 수 있는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일체

의 악성코드를 전파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님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7일자 2면)

내 용 : 9월 10일자 E15면 ‘USB의 배신’ 이라는 기사에 나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이 사진은 데이터 저장 기능을 하는 USB가 아니라 시○○○가 USB에 청소년의 유해 사이트 접속 방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장해 판매중인 ‘키○○’ 라는 제품입니다. □

신청인 업체가 철거민들을 집단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산업 (대표이사 주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4.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철거용역업체 집단폭력 아직도...』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2일자 12면)

내 용 : “포클레인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한 남자가 뒤통을 벗고 주먹을 날리더군요.”

지난달 24일 아침 경기 광명시 광명6동 ○○정비사업지구에 건장한 체구의 철거용역 직원 30명이 굴착기를 끌고 들이닥쳤다. 잠을 자다 놀라 뛰쳐나온 철거민 10여 명은 영문도 모른 채 이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한 철거민원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부녀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정통으로 가격했

다. 당시 철거용역 직원이 세입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한 주민의 캠코더에 고스란히 담겼다. (중략)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철거용역 업체는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올해 초부터 직원 30여 명을 이곳에 보내 주민들을 퇴거시키려 해왔다.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건설 관계자는 “철거민들이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채 철거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원활한 철거를 진행하려 어쩔 수 없이 철거용역 직원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철거업체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2일자 사회면에 『철거용역업체 집단폭력 아직도』라는 제목으로 철거업체가 집단폭력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집단폭력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벽에 철거를 하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30여 명의 철거용역의 인원투입도 사실무근임을 밝혀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의 9월 12일자 12면 『철거용역업체 집단폭력 아직도』 기사와 관련해 광명 6동 철거를 맡은 ○○산업(대표이사 주○○)은 철거작업은 완전공가에 한해서 시청에 철거 멸실 신고를 한 뒤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007년 9월 21일자 2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광명6동 철거반원...)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내용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www.hani.co.kr>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위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2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재개발지구 철거민 폭행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4.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한겨레 : 『철거용역업체 집단폭력 아직도...』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2일자 12면)

내 용 : <철거용역 업체 직원이 철거민 권모 씨를 폭행하는 장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한겨레신문은 지난 9월 12일자 12면에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광명재개발지구 철거민들을 폭행했다고 보도하면서 폭행 현장에 서있던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마치 폭행범인 것 처럼 오인돼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서 형 수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2007년 10월 12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9.

조정결정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지급>

□

신청인들이 실신한 동료형사를 병원에 이송한 후 동료의 지갑을 뒤져 병원비를 결제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외 5인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도일보 : 『비정한 동료애』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3일자 16면)

내 용 : 최근 경찰의 비정한 동료애에 대한 애기가 ○○경찰서 청내를 휘돌고 있다.

소문의 요지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천안시 성환읍 S노래방 도우미 살인용의자검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사건담당 형사계 직원 5명은 팀장과 함께 당시 유력용의자로 최모(41) 씨를 지목하고, 소재지인 경주로 출장을 갔다. 계속된 수사로 피로가 누적된 모 형사가 잠복근무 3일째 되던 오후 11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경을 헤맸고, 동료의 119 신고로 인근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곧바로 천안 D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시 격무에 지쳐 의식불명이 된 형사에게 들어간 치료비와 후송비는 모두 30여만 원, 팀장과 동료들은 의식을 잃은 형사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아 그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비정한 동료애’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3일자 사회면에 『비정한 동료애』라는 제목으로, ○○경찰서 사건담

당 형사과 직원 5명이 강력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근무중 격무에 피로가 누적되어 모 형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자 인근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천안 D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치료비와 후송비 30여만 원이 나오자 팀장과 동료들은 의식을 잃은 형사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찾아 그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팀장은 아픈 형사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며 상급자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같은 부서 직원들은 모 식당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놓고 견배를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치료비 등은 병원응급 치료 후 의식을 회복한 당사자인 표모 형사가 자신의 지갑 속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동료에게 주며 결제하도록 하여 병원비 132,700원을 계산하였고, 후송비 또한 표모 형사의 처가 직접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불한 병원비 등은 공상 처리되어 전액 되돌려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사요청은 당사자인 표모 형사가 스스로 형사근무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지구대로 가서 편히 근무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팀장이 표 형사의 인사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같은 부서 직원들이 수십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놓고 견배를 했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 및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9월 3일자 사회면에 『비정한 동료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일부 내용에 대해 ○○경찰서 해당 팀은 “치료비는 병원 응급치료 후 의식을 회복한 당사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동료에게 주어 결제하도록 하였고, 후송비는 해당 형

사의 처가 직접 계산한 바, 지불한 병원비 등은 공상처리되어 전액 되돌려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서 강력팀은 지난해와 금년에 해당 형사에게 2백여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인사요청은 팀장이 해당 형사의 인사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부서 직원들이 수십만 원의 음식을 시켜놓고 건배를 했다고 하는 보도내용도 해당 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7년 9월 20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기자수첩)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환경일보’ 제호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승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4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환경일보 (대표이사 이 미 화)

피신청인 : 환경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7.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환경일보 : 『‘제호 소유권 확인’ 본사 승소』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3일자 1면)

내 용 : 대법원의 모신문 ‘상표등록무효’ 상고기각에 이어 법원의 ‘환경일보’ 제호에 대한 소유권 확인이 본사 소유의 유권해석으로 종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따르면, 2007가합 2657호 ‘제호소유권 확인’에 대한 소에서 ‘주식회사 환경건설일보’와 피고 H신문과의 사건에서 법원의 조정전치주의를 적용 후 ‘취하’로 권고, ‘환경일보’ 제호권리 사용을 인정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 행정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제호등록을 이미 피한 만큼 Off-Line의 분명한 소유권은 원고 측에 있음을 고지, 재확인용을 용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쟁의 소지가 있던 ‘상표등록

무효’ 건은 물론 ‘환경일보’ 제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본사의 귀속으로 결정, 일단락됐다. (중략)

한편, 일련의 사태를 두고 관할 검찰은 원점에서 사건을 재검토, 전국지사와 본사의 피해상황 등 민·형사상 그에 상응한 면담내용을 제공받아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의거, 해당 사건을 둘러싼 수사과정은 밝힐 수 없는 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사안이 제보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제호소유권 확인 본사승소’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3일자 1면에 『제호소유권 확인 본사승소』라는 제목으로 제호소유권 확인소송에서 본사가 승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사가 제호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사가 승소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본지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관할 검찰은 원점에서 사건을 재검토, 전국지사와 본사의 피해상황 등 민·형사상 그에 상응하는 면담내용을 제공받아 내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다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의거 해당 사건을 둘러싼 수사과

정은 밝힐 수 없는 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사안이 제보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제호소유권 확인’ 본사 승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3일자 1면에 「‘제호소유권 확인’ 본사 승소」 제하의 기사에서 ‘환경일보’ 제호소유권 확인소송에서 본사가 승소하였으며, 제호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관할 검찰이 본사와 지사의 피해상황 등에 대한 면담내용을 제공받아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사가 제호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것으로 본사가 승소한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12일까지 환경일보 1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법원·문화관광부 제호등록필 고지 서울 서부지법 제50민사부 공식인정”)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법인명에 대해 더 이상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환경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5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협회가 정부가 지원한 ‘에이즈감염인 쉼터’의 운영비를 자체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회장 최 강 원)

피신청인 : 평화방송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평화방송TV : 「가톨릭뉴스」 프로그램 (2007년 9월 12일 10:00)

내 용 : ▷앵커 : 지난 2년 동안 에이즈 감염인 사목에 헌신해 온 가톨릭교회의 한 수녀가 지난 7월, 사기와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기에...최근 들어 잇따라 가톨릭내 에이즈 감염

인 쉼터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지난 7월 9일, 에이즈 감염인 두 명이 원주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쉼터를 운영하는 수녀가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해 정부에 간병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한 수녀의 횡령...

그렇다면 이렇게 횡령된 돈은 어디에 쓰여졌는가?

원주쉼터는 특히 중증 에이즈 감염인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회복이 어려운 감염인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의 운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수녀가 횡령했다는 운영비는 90%이상이 컴퓨터와 호스피스 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경비로 들어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원주 쉼터 정부지원금 3억 중 2억여 원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지회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2일자 오전 10시 「가톨릭 뉴스」에서 ○○협회가 2005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3억 원의 운영비 중 1억여 원만 쉼터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협회의 ○○도 지회 인건비로 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지회 인건비로 쓰인 것으로 보도된 2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쉼터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간병인의 인건비와 수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프로그램은 지난 9월 12일자 「에이즈 쉼터」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질병관리본

부 남○○ 연구관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정부로부터 3억여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그 중 1억여 원만 ○○쉼터에 전달하고 나머지 2억여 원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지회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남○○ 연구관이 밝힌 3억여 원 중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지회 인건비로 사용됐다고 보도된 2억여 원은 쉼터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인건비와 간병인의 수당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12일까지 평화방송TV 〈가톨릭 뉴스〉 프로그램에 위 보도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화면 오른쪽 상단에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보도문 내용을 2줄의 자막으로 표시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평화방송TV : 「가톨릭뉴스」 프로그램 (2007년 10월 12일 10:0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재혼정보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맞선상대의 직업을 속이거나 유부남을 소개하는 등 악덕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행○○○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2007년 9월 15일 11:00)

내 용 : (전략) ▷김모 씨 :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안정되게 경제력도 튼튼하고...그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합치게 된 다음에 자기가 신용불량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D'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름은 비록 남의 이름으로 하지만...(중략)

▷윤모 씨 : 빨리 살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전 부인과 이혼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혼이 안된 유부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

▷진행자 : 그런데 앞서 만난 피해자는 모두 한 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행○○○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5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시간에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행○○○이 맞선상대의 직업을 속이고, 유부남을 소개했으며, 아르바이트 맞선상대를 고용했다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인 것처럼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주)행○○○은 회원의 직업과 호적등본에 대해 확인을 철저히 하고 아르바이트 맞선상대를 고용한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유부남을 소개하고, 신용불량자를 소개한 타사의 사례를 분명한 구분없이 방송하면서 진행자가 ‘앞서 만난 피해자는 모두 한 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입니다’라는 해설을 하고 이어 (주)행○○○ 관계자 인터뷰가 나감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모든 제보의 내용이 (주)행○○○의 사례로 오인토록 하였으나 이는 해당 회사와 관련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개설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현장실습없이 학점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이번엔 ‘가짜 복지사’』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31일자 11면)
내 용 : 31일 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학기 ○○대 ○○캠퍼스 사회학과 K교수가 개설한 인문정보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3학점)’을 신청한 장모(49)씨 등 7명은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현장실습을 했다고 속이고 학점을 받았다. 역시 K 교수의 2003년 2학기 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이모(36)씨 등 4명도 ○○노인복지재단에서 현장실습을 했다고 신고했으나 ○○노인복지재단에 실습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

등 2명의 경우에는 ○○대에도 실습일지 자료가 없거나 신고한 신고기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 “가짜 복지사”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 지난 8월 31일자 사회면 11면의 ‘가짜 복지사’ 기사와 관련, 보도에 언급된 졸업생 11명에 대한 학적을 조사한 결과, 2004년 7월 31일 이전의 입학자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권고하는 120시간의 현장실습 이수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니었고, 현장실습은 담당교수의 책임하에 충실히 이행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당시 사회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1,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문화일보 : 『‘사회복지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9일자 10면)

내 용 : 지난 8월 31일자 11면 ‘가짜 복지사’

기사에 대해 K 교수는 2001년 한○○사회복지법인 및 ○○요양원에 방문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면서 현장실습과목의 강의계획에 따른 수업진행과 학점부여 등이 당시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혀왔습니다. □

외국어 원어민 강사의 학위 위조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근무하는 학원과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19.

처리결과 : 합 의

▷피디 : 취재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는 지난 9월 5일 「추적60분」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학위 위조 실태를 보도하면서 가짜 학위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사례로 신청인의 모습과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원의 모습을 무단으로 방영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KBS-2TV : 「추적60분」 프로그램 (2007년 9월 5일 23:05)

내 용 : (전략) ▷피디 : 지난 7월 이 학원에 근무했던 불법 원어민 강사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가 비자발급 신청 때 제출한 가짜 학위증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위조된 학위증으로 두 차례나 E-2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어학원 측에 출입국 사무소 측에 강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학원 모습 보도>

▷학원 관계자 : 이 학위증이 위조가 된 건지, 정식으로 발급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국내 학위증도 아니고...출입국에서 원래는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10월 5일까지 금 17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신청인이 호화판 잠행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장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장○스님 ‘호화판 잠행’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신정아(35·여)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장○(56·강화도 ○○사 주지) 스님이 4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됐다. 법복을 입고 밀짚모자를 눌러쓴 장○ 스님은 이 호텔 3000호로 들어갔다. 이 객실은 침실과 응접실까지 갖춘 스위트룸으로 하룻밤 숙박료는 12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스님은 언론에 모습이 노출되자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사라졌다. 경호원 역할을 하는 기사가 운전을 한 이 차량은 장○ 스님의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장○ 스님 ‘호화판 잠행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6일자 사회면 『장운 스님 ‘호화판 잠행’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장○ 스님이 특급호텔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일일숙박요금 120만 원인 객실에 투숙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하는 한편, 동 스님이 개인명의로 된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장○ 스님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없으며, 승용차의 소

유자도 장○ 스님이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사의 소유이고 그 밖에 장○ 스님이 호화판 잠행을 하였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9월 6일자 12면 「하룻밤 120만 원짜리 특급호텔서 장○ 스님 ‘호화판 잠행’ 의혹」 기사에서 장○ 스님이 특급호텔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일일숙박요금 120만 원짜리 객실에 투숙하고, 개인 명의로 된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장○ 스님은 해당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없으며, 승용차의 소유자도 장○ 스님이 아니라 대한불교 조계종 ○○사의 소유로 호화판 잠행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10월 19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장○ 스님 “오늘 기자회견”)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장기전세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보증금 4000만 원에 10년 떠돌이 생활 끝냈죠”』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전 재산이 4000만 원인 유○○(42·회사원) 씨는 지난달 30일 강남 8학군인 송파구 장지동의 82㎡(약 25평, 공용면적 포함)짜리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머니와 부인, 세 자녀를 포함해 여섯 명이 함께 산다. 전세이긴 하지만 앞으로 20년 동안 이사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마음이 날아갈 듯 하다.

전세 보증금도 다른 집보다 40% 정도 싸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고향인 광주광역시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유 씨는 10년 만에 장만한 보증자리를 보면 행복감에 젖는다. 비결은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처음 내놓은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SHift)’다. 지난달 입주가 시작됐다.

유 씨가 입주한 아파트는 장지 10단지. 지하철 8호선 장지역까지 걸어서 7분이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바로 집 앞을 지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억 6천만 원 정도지만 유 씨는 1억 원으로 전세를 얻었다. 그나마 6000만 원은 은행에서 연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실입주금은 4000만 원만 들었다. SH공사가 주변 시세의 60~80%로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대출 앞선까지 해준 덕이다. 기존의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월 임대료는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40대 유○○ 씨 송파구 장기전세 입성기 오보 정정기사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9월 11일자 사회면에 40대 유○○ 씨의 송파구 장기전세 아파트 입성기를 보도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첫째, SH공사 장지지역 입주자 선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둘째, SH공사의 대출 앞선 제공이 유○○ 씨만 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비취졌으나 사실이 아니며

셋째, 대출금액의 최고한도가 6,000만 원이지, 실제로 유○○ 씨가 받은 대출금액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9,000,000원



신청인의 이혼 경위를 묻는 인터뷰 기사에 닉네임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무브온21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7.

처리결과 : 각 하

보도내용

무브온21 : 『맞벌이 여성, 내가 이혼한 이유』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4일자 메인면)

내 용 : 맞벌이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자

신의 사연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분이 연락을 주셨다. 메일을 보니 그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보였다. (중략)

▷기자 : 이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스○○ :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 혼자 벌이로는 생활도 어려워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맞벌이에 대한 요구도 있었구요.

▷기자 : 맞벌이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스○○ : 대학 졸업을 못하다 보니 할 만한 일이 없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여자라는 존재가 사

회에서 받는 무언의 차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제 남동생도 카센터다 포장마차다 서빙이다 할 게 많더군요. 동생은 피곤해하고 힘들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도 입학했고 남다른 수완도 있었지만 젊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학벌에 대한 자만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낮춰서 식당이나 잡일도 알아보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구요. 결국 택한 곳은 작은 인쇄 사무실의 경리직이었습니다. 회계에 대해 배운 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기자 : 맞벌이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였죠.

▷스○○ : 아이를 맡길 데도 없어 매일 이리저리 시댁과 친정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나마 시댁과 친정이 가까운 곳이라 복 받았지요. 매일 늦게까지 결산을 마치고 남보다 모자란 회계공부를 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젓먹이 놔두고 어디 그게 쉬운가요. 결국 아이는 아이대로 지쳐가고 저는 저대로 지쳤고, 남편과 시댁은 불만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죠. 맞벌이를 시작한 이후에는 정말 그냥저냥 살고만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걱정도 맘에 들지 않았고, 벌이도 시원찮았으며 아이를 맡기려고 여기저기 사정하고 다녀야 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남편은 운동이다, 친구다, 동호회 활동이다 참 잘 돌아다니더군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무브온21은 지난 9월 14일자 『맞벌이 여성, 내가 이혼한 이유』 제하의 기사에서 본인이 이혼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인터뷰하고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닉네임을 공개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노하우이십일(무브온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214호

대표이사 원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의 이혼 경위 등에 대하여 익명을 전제로 피신청인과 인터뷰를 하였으나, 해당 인터뷰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의 널리 알려진 닉네임을 공개하여 그 기사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손해배상으로 이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정한 손해배상청구는 언론중재법 제2조에 정한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서의 보도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언론중재법 제2조 제8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 중에서 '독자적 기사생산을 위해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 하고,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 하는 것만이 이에 해당하는데, 피신청인 홈페이지는 위와 같은 취재 인력이나 기사 게재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인터넷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가 언론중재법에 정한 언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5.

□

신청인 언론사가 유료로 인터넷 논술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장이 직접 나서서 광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 학 준)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9월 16일 21:15)

내 용 : ▷앵커 : 내로라하는 신문사들이 최근 몇 년새 앞다퉈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언론사가 돈벌이에 급급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 기자입니다. (중략)

▷기자 : 동아일보는 사실 교육 업체들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유료 논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기자까지 참여하고 있다며 언론사 사장이 직접 나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동아일보 유료 논술사이트 운영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6일자 「뉴스9」에서 동아일보는 유료 인터넷 논술 사이트를 운영하

고 있으며, 사장이 직접 나서서 광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동아일보의 논술 사이트는 무료이며, 「이지논술」 사이트에 게재된 사장의 인사말을 광고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동아일보 논술사이트 유료 아닌 무료
- 내 용 : 지난 9월 16일 KBS 〈뉴스광장〉을 통해 동아일보는 유료 논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는 유료가 아닌 무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자사의 자회사를 통해 운영되는 인터넷 논술 사이트인 이지논술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10월 13일 6시에 방송하는 KBS-1TV 〈뉴스광장〉 프로그램 중 6시 20분에서 30분 사이의 단신뉴스 시간 첫 기사로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7년 10월 13일 06:2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대구시의 비호를 받으며 시내버스승강장 광고를 독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서○ (대표이사 서 ○ ○)

피신청인 : 대구시민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대구시민일보 : (1) 『대구시의 비호 아래 독점』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1일자 1면)

내 용 : 대구시의 특정업체 키워주는 계속되고 있다.

대구는 최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 컬러풀대구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지붕이 있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육상선수권 대회 홍보물과 문학작품을 부착, 시가 흐르는 문화도시 대구를 조성한다며 자랑스레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유지관리는 시가 아니라 지역광고대행업체인 S업체가 맡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85년부터 독점으로 지역 버스, 택시승강장의 광고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 이번 유개승강장 탈바꿈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육상선수홍보물 아래에 특정기업의 후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문학작품 아래에 협회홍보를 달아 디자인 제작비 등을 수수해 영리를 챙긴다는 것.

결국 대구시는 직간접적으로 이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략)

S업체는 현재 180개의 시내버스 승강장과 30여 개의 택시 승강장에 광고를 유치 보수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광고도 동시에 수수하고 있다. (중략)

S업체 관계자는 “유개승강장의 경우 광고시장은 좋은 편이라며 중앙업체들이 주로 광고를 주문하는 추세라며 짝짖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했다.

(2) 『승강장광고 왜 특정업체 독점인가』 제하의 사설 (2007년 9월 12일자 19면)

내 용 : (전략) 문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유

지관리를 시가 아닌 지역광고 대행업체인 S업체가 맡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85년부터 독점적으로 지역 버스, 택시 승강장의 광고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무려 22년간이다. 어찌된 연유인지 궁금하다. (중략)

S업체는 현재 180개의 시내버스 승강장과 30여 개의 택시 승강장에 광고를 유치 보수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광고도 동시에 수수하고 있다고 하니 대구 광고시장의 큰 손인 셈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 S업체 대구시의 비호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1일자 1면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 S업체 대구시의 비호 아래 독점』이라는 제목으로 대구시가 직간접적으로 S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S업체는 시내버스·택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지하철 2호선 광고 및 시내버스 버스 외부광고는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법하게 수수하였으며, 대구시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대구시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8일자 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청와대가 11월 임기가 끝나는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후임을 정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문 재 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종 재 부 : 서울제1종재부

접 수 일 : 2007. 9. 27.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조선일보 : 『감사원장·검찰총장 11월 임기 끝나 청와대, 후임없는 대행체제 방침』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5일자 A6면)

내 용 : 청와대는 오는 11월 9일과 23일 각각 임기가 끝나는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과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4일 “그 시점쯤 되면 정치권으로부터 신규 인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라면서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무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들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께서 생각을 물어오면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릴 생각이나 대통령 뜻은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각각 4년과 2년 임기인 감사원장, 검찰총장 후임을 임명할 경우 임기말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한다는 반발에 부닥칠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보는 2007년 9월 5일자 6면 『감사원장·검찰총장 11월 임기 끝나 청와대, 후임이 없는 대행체제 방침』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오는 11월 9일과 23일 각각 임기가 끝나는 전윤철 감사원장과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조기에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때가 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통령비서실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비서실장 문 재 인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 변호사 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최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6면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반론보도문을, 그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2007년 9월 5일자 A6면 『감사원장·검찰총장 11월 임기 끝나. 청와대, 후임이 없는 대행체제 방침』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오는 11월 9일과 23일 각각 임기가 끝나는 전윤철 감사원장과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운영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때가 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주장이란 의견이나 논평이 아닌 사실 보도를 의미하며, 정당한 이익이란 피해자가 원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로 대응할만한 실질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청

와대 관계자가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기자의 추측 또는 예상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서 그것이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사건 보도 이후 피신청인 언론사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에 의하여 후임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선임과 관련한 보도들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보도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대상 기사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0.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 교회가 산내학살 유해 발굴지역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있으며 교회 이주비 등을無理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도일보 : 『산내학살 규명 암초』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7일자 7면)

내 용 : 4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되는 등 활기를 찾고 있는 산내학살 진실 규명 작업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발굴 반대라는 뜻하지 않는 암초에 봉착,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등에 따르면 모두 8구역으로 나뉜 발굴터 중 4곳의 토지 소유주가 ‘토지 매입 후 발굴’ 등을 요구하면서 발굴을 불허하고 있다. (중략)

1구역 역시 현재 부지에 들어선 교회가 이주비는 물론 발굴 후 재건축비, 또 발굴기간 동안 교회의 운영비 등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무허가 건물인 이 교회는 지난 2000년 건립 당시부터 유해가 발굴되는 등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교회 측은 공사를 강행, 현재의 교회를 세웠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이 8월 27일자 사회면 『산내학살 규명 암초』 제하의 기사에서 산내학살터의 1구역에 있는 교회가 무허가이며 발굴 후 재건축비, 발굴 기간 동안의 교회운영비 등을 요구하는 등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1구역에 있는 교회는 관할 구청에 정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유골발굴 문제가 언급되면서 준공을 하지 못해 재산 및 정신적인 피해를 7년간 받고 있는 상태이며, 과거사 위원회에 재건축비와 발굴기간 동안의 운영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음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 8월 27일자 7면 “땅값 때문에… 산 내학살 규명 압초” 제목의 보도와 관련 확인 결과, 1구역에 있는 교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정식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유해 발굴 문제가 언급되면서 준공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요구한 보상내역은 교회 이전비용과 유해발굴 문제로 인해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입은 운영손실비용이 주된 내용으로 발굴 후 재건축비와 발굴기간 동안의 교회 운영비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도일보 2007년 10월 11일자 7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건 보도와 관련 피신청인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의 보도와 관련한 시위는 중지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실추된 명예회복에 필요한 추가 보도를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1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59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세계일보 : 『20대 사회복지사, “아동보육시설 원장이 성폭행” 주장』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전남 여수의 한 아동보육시설 사회복지사가 시설원장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여수시 S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모(21·여) 씨가 원장 B모(31)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지난 5월 12일 접수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소장에서 원장 B 씨가 자신이 일하던 지난 3월부터 원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노래방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하다 지난 4월 28일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는 한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평소 강한 업무스타일을 보인데다 원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성추행을 거절하지 못하다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이에대해 “A 씨가 주장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태는 없었다”며 “A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성폭행 혐의로 시달린 아동보육시설 원장,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해 6월 30일자 사회면에 『아동보육시설 원장, 생활지도사 성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전남 여수의 아동보육시설 원장이 사회복지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

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철저한 수사결과, 해당아동보육시설 원장은 모든 성폭행 혐의에 대해 2006년 9월 28일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거쳐 대검찰청에서도 2007년 7월 4일에 “혐의 없음”으로 또 다시 명백하게 밝혀졌기에 알려드립니다.

취하 후 보도문

세계일보 : 『성폭행 의혹 아동보육시설 원장 “무혐의” 결정, 명예회복돼』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5일자 사회면)

내 용 : 본보 인터넷 신문에 2006년 6월 30일자로 보도된 ‘20대 사회복지사, ‘아동보육시설 원장

이 성폭행’ 주장’ 제하의 기사와 관련, 조사를 받았던 전남의 한 아동복지시설 B 원장에 대한 여사회복지사 A 씨의 재항고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청한 A 씨의 재항고에 대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지난 7월 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 2006년 5월 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B 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순천지청은 2006년 9월 28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다시 광주고검에 항고했으나 광주고검도 순천지청과 마찬가지로 지난 2월 15일 무혐의 취지로 항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이어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으나 대검에서도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B 씨는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60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합 의

합의사항

• 제 목 : 성폭행 의혹 아동복지시설 원장,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7월 5일자 <MBC 모닝쇼 최윤영의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전남의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중이며, 이 사건에 대해 여수성폭력상담 소장이 “사회복지사들이 원장의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해당 원장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2006년 9월 28일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직원의 항고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2007년 2월 15일에 “이유없다”고 기각하였고, 대검찰청에서도 2007년 7월 4일에 무혐의 취지로 재항고

보도내용

MBC-TV : 「최윤영의 오늘아침」 프로그램 (2007년 7월 5일 08:30)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를 기각함에 따라 해당 원장의 무혐의가 확정되어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20일까지 MBC-TV 〈TV속의 TV〉 프로그램에 위 보도문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화면 하단에 위 보도문 제목(“성폭행 의혹 아동복지시설 원장, 무혐의로 밝혀져”)을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계속 표시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TV속의 TV」 프로그램 (2007년 10월 20일 11:5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I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6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보도내용

연합뉴스 : 『여 사회복지사 성폭행 주장 파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30일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연합뉴스 : 『성폭행 의혹 여수 보육시설 원장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IV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62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노컷뉴스 : 『“아동보육시설 원장이 성폭행했다” 사회복지사 주장 파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30일자 사회면)

〈2007서울조정360의 합의사항 참조〉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노컷뉴스 : 『성폭행 의혹 아동보육시설 원장,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7일자 사회면)

합의사항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V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6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브레이크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보도내용

브레이크뉴스 : 『보육원장, 사회복지사 성폭행 의혹』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30일자 사회면)

브레이크뉴스 : 『성폭행 혐의 보육원장 대검서도 ‘혐의없음’』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V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64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성폭행” 주장 파문』 제하의 기사 (2006년 6월 30일

자 사회면)

〈2007서울조정360의 합의사항 참조〉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오마이뉴스 : 『성폭행 의혹 아동보육시설 원장,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3일자 사회면)

합의사항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월정사의 국고지원이 신정아 씨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6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박 동 순)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각 취하

명목으로 국비 12억 원과 지방비 12억 원 등 24억 원, 석조보살좌상 복제품 제조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문화재청으로부터 25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월정사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서별당 복원 등과 관련해 각각 12억 8500만 원과 9억 원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문화재청으로부터 47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 받았다. (후략)

보도내용

조선일보 : 『동국대 이사장이 회주였던 월정사에 신 씨 교수임용때부터 국고 집중지원』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21일자 1면)

내 용 : 신정아 씨가 교수로 임용됐던 동국대의 재단이사장과 이사였던 스님들이 각각 회주(여러 사찰의 어른스님)와 주지로 있는 강원 평창군의 월정사가 신 씨 교수 임용 무렵부터 국고를 집중 지원받았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신 씨 교수 임용과 월정사 예산 지원 과정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L 씨가 개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7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월정사는 올해 팔각구층석탑의 전시관 설계와 부지 조성 등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월정사 국고 지원은 신정아 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무관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21일자 1면 기사에서 문화재청이 월정사에 지원한 문화재 보수 지원비가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연계 때문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가장 예산이 많이 지원된 사찰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문화재청의 월정사에 대한 문화재 보수 지원비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신정아 씨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월정사 국고지원, 신씨와 무관』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일자 1면)

내 용 : 문화재청이 2005~2007년 사이 월정사에 국고 47억 원을 지원(조선일보 9월 21일자 A1면)한 것은 신정아 씨의 동국대 교수임용과는 관련이 없어 사찰의 문화재 보수·정비·복원차원에서 2004년부터 적법 절차를 거쳐 예산에 편성되어 2005년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1일 “월정사 국고 지원 문제를 신정아

씨의 교수임용과 연관지어 보고 있지 않으며, 그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월정사는 국보 2점을 비롯하여 모두 24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사고지(史庫地)인 유서 깊은 사찰”이라면서, 2005~2007년 사이에 문화재청이 월정사에 지원한 47억원은 ▲서별당 보수·복원 ▲홍예교 설계·건설 ▲정보박물관 증축 등을 위한 합당한 예산집행이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문화재청의 월정사에 대한 예산지원은 문제가 없어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Ⅶ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35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광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보도내용

광남일보 : 『여 사회복지사 성폭행 주장』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3일자 19면)

광남일보 : 『‘여복지사 성폭행’ 허위 주장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8일자 19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Ⅷ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36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남도일보 : 『보육시설 원장 성폭행 논란』 제하의 기
사 (2006년 7월 3일자 6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취하 후 보도문

남도일보 : 『성폭행 혐의 보육시설원장 ‘무혐의’』 제
하의 기사 (2007년 10월 10일자 6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IX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37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남해안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보도내용

남해안신문(보도당시 새여수신문) : 『20대 여복지사, “성
폭행 당했다” 주장 C 원장 ‘도덕적 물
의 죄송, 성폭행 아니다’』 제하의 기
사 (2006년 7월 3일자 6면)

남해안신문 : 『성폭행 혐의로 시달린 복지시설원장,
명예회복 대검찰청에서도 “혐의없음”
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07년 10
월 10일자 4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38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무등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무등일보 : 『“여사회복지사 성폭행 당해”』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일자 15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무등일보 : 『성폭행 혐의 보육시설 원장 무혐의 판결』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8일자 6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39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여수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보도내용

여수신문 : 『“사회복지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성폭행”』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3일자 4면)

여수신문 : 『대검찰청, ‘혐의없음’으로 최종 밝혀』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4일자 4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40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전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전남일보 : 『“원장이 성폭행”』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1일자 6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취하 후 보도문

의 기사 (2007년 10월 9일자 6면)

전남일보 : 『“여복지사 성폭행 사실 아니다”』 제하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I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4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순천KBS-1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보도내용

순천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10월 8일 21:40)

순천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6년 6월 30일 자 21:35)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IV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42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여수MBC-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보도내용

여수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0월 8일 21:40)

여수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6월 30일 21:35)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V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4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KBC-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보도내용

KBC-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6월 30일
20:25)

KBC-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10월 9일
20:25)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소매치기범을 잡고도 폭행범으로 몰린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6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합 의

▷기자 : 어젯(21일)밤 자정 무렵, 50살 한○○
씨는 서울 금호동 한 병원 앞에서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행인들과 함께 범인을 쫓아가 붙잡았
습니다.

그러나 뿌듯함도 잠깐, 한 씨는 오늘 아침 경찰
에 의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한모 씨 : 왜 개입해 가지고 말이야 이 난리를
치나면서, 아니 소매치기 잡아 준 것도 죄입니까.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나를 폭행죄로 지금 몰아넣
고.

▷기자 : 경찰은 미성년자인 소매치기범의 부모
가 항의를 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 (소매치기 용의자가) 제압당해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와서 발로 밟았다. 그렇게
주장해요.

▷기자 : 경찰은 목격자들을 찾아 당시 상황을 조
사한 뒤 한 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9월 22일
20:20)

내 용 : ▷앵커 : 소매치기범을 잡은 시민이 오히
려 폭행범으로 몰렸습니다. 도둑을 잡은 건 잘한
일이지만, 범인을 때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연휴 첫날 사건사고 소식, 임○○ 기자가 모았습
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SBS는 지난 9월 22일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소매치기범을 잡고 오히려 폭행범으로 몰린 본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본인의 얼굴과 음성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0원을 2007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직원을 상대로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신청인 노조가 불법·폭력 시위를 자행해 마치 탈레반을 연상케 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6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국○○노동조합 (위원장 백 ○ ○)

피신청인 : 전문건설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문건설신문 : 『강성노조들, 탈레반이 되려는가』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3일자 2면)

내 용 : (전략) 아프가니스탄인질사태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강성노조들의 폭력행위 불법파업행위다. 민주노총 ○○산업연맹산하 ○○노조 타워○○○분과 소속 노조원들은 지난 6월과 7월 내내 전국 1백여 현장의 타워○○○을 점거함으로써 사실상 공사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에 앞서 전국○○노조 경기 서부○○지역 노조원 30여 명은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안산 신길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 난입, 현장을 점거하고 유로폼 등 가설재를 파손하는 한편 현장근로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현장관계자는 ‘노조원들의 공사방해행위는 단순히 시공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 외에도 다른

건설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노조를 탈레반에 비유한 사설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3일자 『강성노조들, 탈레반이 되려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국○○노동조합을 최근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를 일으킨 탈레반에 비유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폭력시위이며,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회피하는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는 외면한 채 쟁의행위 기간 동안 현장에서 발생한 마찰의 책임을 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등 균형을 잃은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노조는 신문이 사례로 제시한 산하 타워○○○분과, 서부○○지부의 올해 파업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했다”면서 “탈레반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시기에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 탈레반과 동일시해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

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노조는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사용자들의 교섭지연과 회피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원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신문이 사실 보도 행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행위를 일삼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편파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을 심각히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노조 반론보도문
- 내 용 : 8월 13일자 본보 사설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노동조합에서 반론을 제기해 이를 알려드립니다. ○○노조는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에 파업의 주 원인이 있다면서 쟁의기간 중 발생한 마찰의 책임을 전적으로 조합원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타워○○분과 및 경기서부○○지부노조의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법에 따

라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폭력시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10월 29일까지 전문건설 2면에 상자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8월 13일자 조정대상기사 오른쪽 기사의 “브리핑”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문건설신문 : 『○○노조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메인뉴스로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6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회 영)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포털의 황포는 개별 대응으로 극복 못할 수준”』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2일자 A10면)

내 용 : (전략) 지난해 9월 1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었던 저작권

법 강화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뉴스화면에서 이를 메인뉴스로 뽑으면서 ‘한미FTA 체결되면 네티즌 줄송 당할 수도’라는 제목으로 뽑아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포털의 자의적인 제목 변경”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9월 12일자 A10면에 『포털의 황포는 개별 대응으로 극복 못할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네이버가 경향신문으로부터 제공받은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난해 9월 12일 네이버 뉴스화

면에서 메인뉴스로 뽑으면서 그 제목으로 ‘한미 FTA 체결되면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라고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NHN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해당 뉴스를 뉴스서비스의 메인화면에 뽑아 제공하지 않았으며 해당 기사의 제목을 수정한 적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9월 12일 A10면 기사 중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한미FTA 관련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메인뉴스로 게재했다는 부분과 관련, 네이버에서 해당 기사를 초기화면 뉴스란에 제공한 사실 또는 해당 기사의 제목을 수정한 사실이 없어 독자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16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조선일보 2면 및 조선닷컴(www.chosun.com)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정정·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양 당사자는 언론중재법 제19조 제8항의 조정비공개 원칙을 존중하여 본 조정대상기사 중 경향신문 기사제목변경 사실, 조정신청 사실, 과정 및 조정에 부수한 사실 등에 있어 다른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 제공 행위, 저작권 협상에 있어서 협상 자료로 제출하는 행위 등 상대방의 명예를 해하거나 자사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1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재정경제부의 직원 대다수가 ‘보여주기식’ 혁신사업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6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재정경제부 (장관 권 오 규)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공무원도 “정부 혁신은 전시용”』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6일자 1면)

내 용 : “혁신의 ‘혁’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재정경제부 A 과장)

“위에서 과제를 일률적으로 내려주고 성과를 보고하라는 게 무슨 혁신이냐.” (B 서기관)

최근 재경부 A 과장은 부처 혁신 사업의 하나로 ‘국장과의 오솔길 대화’라는 행사 프로그램을 짜느라 본업은 잠시 뒷전에 미뤄왔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도 재경부 직원들은 위에서 내려주는 혁신 과제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A 과장은 전했다.

B 서기관 역시 “정기적으로 혁신간담회를 하라며 예산을 내려주는데 부서원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걸로 행사를 끝낸다”며 “회식 시작 전에

잠깐 보고서 첨부용으로 사진을 찍어두면 그뿐”이라고 털어놨다.

직원 1인 1건씩 혁신과제를 발굴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혁신워크숍 때문에 오히려 야근 횟수가 늘어났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혁신 사업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재경부가 최근 주요 부서 직원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원 10명 중 7명꼴로 혁신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재경부 공무원의 혁신피로감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9월 6일자 1면 『공무원도 ‘정부 혁신은 전시용’』 제하의 기사에서 재경부 주요 부서 직원 대상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직원들이 혁신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국 차원에서 혁신사례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실제 설문조사 결과는 혁신 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포괄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취지도 혁신 피로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사는 설문조사 부분 중 일부 부

정적인 응답만을 부각시키고 이를 마치 혁신업무 전반에 관한 찬반조사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혁신사례보고서의 전체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들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다는 내용, 혁신인사기획관실 차원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 면접조사시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했거나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국장과의 오솔길 대화’라는 프로그램은 재경부 차원에서 기획된 사실이 없으며, A 과장은 국장과의 오솔길 대화라는 행사 프로그램을 짜느라 본업을 뒤로 미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한국경제 : 『혁신 관련 재정경제부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6일자 2면)

내 용 : 본지 9월 6일자 A1면 「공무원도 『정부 혁신은 전시용』」 제하의 보도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위 기사가 인용한 금융정책국의 혁신보고서는 그간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혁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피로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혁신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게 작성되었다”고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

신청인 업체가 타사가 취득한 인맥관련서비스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OO넷 (대표이사 신 ○ ○)

피신청인 : 디지털타임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4

처리결과 : 각 합의

디지털타임스 : 『□□넷, ○○넷에 특허침해 경고장』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일자 6면)

내 용 : 문자메시지서비스 전문기업 △△넷 (대표 송○○)은 링크나우 운영사인 ○○넷 (대표 신○○)에 특허 대리인 (특허법률사무소 ○○)을 통해 지난달 27일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경고장에는 특허권 침해행위의 중지, 서비스금지

보도내용

및 폐기, 향후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게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넷 측은 이달 중 특허침해 정도가 심한 업체를 선별해 추가적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이 취득한 특허는 ‘휴대통신기구 및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맥관련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업체로 일컬어지는 인맥관련 서비스업체는 대부분 이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허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엔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넷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2일자 6면 『△△넷, ○○넷에 특허침해 경고장』 제목의 기사에서 △△넷이 주장하는 특허가 인맥관련 서비스에 관한 특허라고 보도했으나 이 특허는 명함정보의 발신자가 특정 수신자를 지정해 명함정보를 전송하고 지정된 수신자가 명함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명함정보 관련 특허이며, 링크○○의 인맥서비스와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는 △△넷이 취득한 휴대통신기구 및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맥관련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도했으나 링크○○를 포함해 국내 인맥관련 서비스가 이 특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것도 역시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일자 6면 「△△넷, ○○넷에 특허침해 경고장」 제하의 기사에서 인맥관련 서비스에 관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넷이 ○○넷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넷의 특허는 명함정보의 발신자가 특정 수신자를 지정해 명함 정보를 전달하고 지정된 수신자가 명함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명함정보 관련 특허입니다. 이에 대해 ○○넷은 ‘링크○○’ 서비스에는 상대방을 지정해 명함정보 발송을 명령하는 구성 자체가 없어 특허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에서 ○○넷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10월 17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디지털타임스>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SNS 관련업체 파장 예고”)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디지털타임스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아울렛이 산업단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마○○ (대표이사 홍 ○ ○)

피신청인 : 내일신문

종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구로디지털단지 ‘마○○ 아울렛’ 불법 영업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7일자 13면)

내 용 : ○○디지털단지내 패션거리에 있는 ‘마○○ 아울렛Ⅱ’의 의류판매를 둘러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와 (주)마○○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산단공은 지난달 ‘마○○ 아울렛Ⅱ’에 대해 불법으로 의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마○○ 측은 ‘입주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양 측의 갈등의 핵심은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단공이 마○○에 대해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아파트형공장인 ‘마○○ 아울렛Ⅱ’내 지원시설에서 대규모 불법 의류판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단공은 “‘마○○ 아울렛Ⅱ’은 아파트형공장으로서 제조업 창업공간에 맞서도록 계획된 지원시설이므로 의류판매시설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은 판매장같은 지원시설을 공장 부지의 20%만 둘 수 있으며, 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만 팔도록 돼 있다.

‘마○○ 아울렛Ⅱ’가 소재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 중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다. 이러한 준공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디지털단지 ‘마○○ 아울렛’ 불법

영업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7년 9월 7일자 13면 『○○디지털단지 ‘마○○ 아울렛’ 불법영업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하여 “산단공이 마○○에 대해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아파트형공장인 마○○ 아울렛Ⅱ내 지원시설에서 대규모 불법 의류판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마○○ 아울렛Ⅱ가 소재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이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각종 지원과 혜택이 부여되고 있고 아파트형공장은 여기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던 바, 이에 대해 (주)마○○는 “마○○ 아울렛Ⅱ의 경우 입주계약 해지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입주계약해지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으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는 마○○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내에서의 판매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소재한 마○○는 특별법인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하며, (주)마○○는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었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내일신문 : 『마○○ 입주계약해지 가처분 행정법원 수용』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7일자 15면)

내 용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주)마○○가 제기한 입주계약해지효력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주계약해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법원은 “입주계약해지등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마○○)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

신청인 아울렛이 산업단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마○○ (대표이사 홍 ○ ○)
피신청인 : 전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5.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3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37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전자신문 : 『산업단지 준립 뿌리 흔들 수도』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2일자 3면)

전자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9일자 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71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아울렛이 산업단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마○○ (대표이사 홍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5.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마 ○ ○
대표이사 홍 ○ ○
조정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1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조정대리인 이 ○ ○

보도내용

KBS-1TV : (1)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7년 9월 26일 06:30)

(2) 「930뉴스」 프로그램 (2007년 9월 26일 09:45)

내 용 : <2007서울조정3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37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전 6시에 방송하는 KBS-1TV <뉴스광장>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프로그램의 방영 화면을 배경으로 하여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원 진행자가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취하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일체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9.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9월 26일자 <뉴스광장> 프

로그램의 ‘벤처기업 육성할 산업단지에 쇼핑몰?’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마OO는 마OO2 쇼핑몰이 적법하게 건축되었고, 한편 관리 법률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 내에서 지원시설로서의 판매장 개장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7년 10월 26일 06:30)

내 용 : <결정문의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재직시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대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XVI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44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설 ○ ○

피신청인 : 광주PBC-R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5.

처리결과 : 취 하

광주PBC-R : 「광주PBC뉴스」 프로그램 (2007년 7월 7일 12:00)

내 용 : <2007서울조정3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7서울조정3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이 소유한 건물이 부도가 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8.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하의 기사 (2007년 9월 28일자 경제면)

내 용 : ○○시네마 전주 평화동점 개점이 무기한 연기됐다.

○○시네마 평화동점은 지난해 초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 웨딩홀과 임대계약을 완료하고 올해 8월 개점 예정이었지만 건물주가 부도처리되면서 개점이 불투명하게 됐다.

계약당시 개점 시기는 올해 4월이었지만 건물주 사정으로 8월로 개점시기를 연장하는 등 5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후략)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시네마 평화동점 언제 문 여나』 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시네마 평화동점 건물주 부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 지난 9월 28일자 경제면 『○○시네마 평화동점 언제 문 여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시네마 건물주 강○○는 부도 낸 사실이 없으며, 채권단이 건물을 일시 점유한 사실은 있으나 9월 22일에 점유가 해지되었고 채권단이 건물을 압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매립지에 지은 아파트의 기초 파일이 부실시공되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5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9.

처리결과 : 각 취하

그러나 당시 ○○아파트 건축을 감독했던 권○○ 씨는 “매립지에 건축된 아파트는 4BL 302·303동 일대”라며 “매립지의 경우, 파일을 40~50여m 깊이까지 박았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평택 ○○동 ○○아파트 기초공사관련 허위보도 정정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3일자 사회면에 『기초 파일도 부실시공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2004년 아파트 건축 당시 감독자가 ‘이 아파트의 경우, 80~90m가량 골재를 채굴한 뒤 매립한 위치에 지어졌음에도 기초파일은 불과 40~50m 깊이로 시공됐다’고 밝혀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아파트 건축을 감독했던 권○○ 씨는 ‘매립지에 건축된 아파트는 4BL 302·303동 일대’라며 ‘매립지의 경우, 파일을 40~50m 깊이까지 박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감독자는 ‘이 아파트의 경우 80~90m가량 골재를 채굴한 뒤 매립한 위치에 지어졌음에도 기초파일은 불과 40~50m로 시공됐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보도내용

경기일보 : 『기초 파일도 부실시공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3일자 7면)

내 용 : 평택시 ○○동 ○○아파트의 크랙(균열) 발생 등 부실시공과 관련, 2004년 아파트건축 당시 감독자가 이 아파트의 경우, 80~90m 가량 골재를 채굴한 뒤 매립한 위치에 지어졌음에도 기초파일은 불과 40~50m 깊이로 시공됐다고 밝혀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시와 ○○에 따르면 시는 지난 70년말께 서정동 산74-1 일대 임야에 대해 채석장을 허가했으며, 허가를 득한 업자는 지난 90년 초까지 지하 80~90m까지 파들어 가면서 산림골재 채취를 한 뒤 방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6년께 40~50여m를 지난 2003년 택지개발을 하면서 추가로 매립하고 2004년부터 아파트를 건축했다.

신청인의 만삭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Bestbaby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Bestbaby : 『연예인처럼 ~만삭사진 예쁘게 찍기』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호 274면)
내 용 : <만삭인 신청인이 앉아있는 모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Bestbaby는 지난 9월 호에 만삭사진 촬영이 일

반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본인의 만삭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하여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500,000원을 2007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위 금액지급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신청인 언론사가 설립취지를 벗어난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니온뉴스 (대표이사 이 명 원)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9.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계약하고 상담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앞으로 이 목사와 계약하고 상담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위반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법에 대해서 이 목사와 상담하는 것은

좋지만 계약을 맺고 금품관계가 오고가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온뉴스는 교회의 약점인 불법건물, 불법주차장 등을 자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협박이거나 공갈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온뉴스는 말 그대로 노조뉴스입니다. 노조의 권익과 보호를 위하여 있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서 교회의 불법 건물, 불법주차장 등을 보도하여 원래의 목적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6일자 『계약하고 상

담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제하의 기사에서 “유니온뉴스는 말그대로 노조뉴스입니다. 노조의 권익과 보호를 위하여 있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서 교회의 불법건물, 불법주차장 등을 보도하여 원래의 목적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유니온뉴스는 노조뉴스가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유니온뉴스가 불법건물, 불법주차장 등을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니온뉴스의 편집권에 속하는 것이며 원래 목적에 이탈한 일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니온뉴스

인천 계양구 서운동 26-2 201호

발행인 이 명 원

2007. 10. 17.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교회법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안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9.

처리결과 : 기 각

내 용 : 〈2007서울조정37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6일자 『계약하고 상담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제하의 기사에서 “앞으로 이 목사와 상담하는 것은 좋지만 계약을 맺고 금품관계가 오고가면 변호사법 위반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교회법 규정에 따른 교회소송은 변호사법 영역이 아니며, 따라서 상담을 하든, 계약을 맺고 금품을 수수하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보도내용

에클레시안뉴스 : 『계약하고 상담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6일자 사회면)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 4동 87-6

진은빌딩 301호

발행인 황 규 학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에클레시아뉴스(<http://www.ecclesian.com>)의 초기화면 상단에 별지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3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

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7.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박사과정을 수료했음에도 학술진흥재단에 학력을 박사로 등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남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0.

처리결과 : 취 하

깁니다.

B 교수가 재단에 올린 자신의 학력입니다.

박사과정이 아닌 박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 교수는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 지난 9월 12일자 「추적60분」 프로그램과 관련 B 교수라 언급된 ○○○○○○학교 남○○ 교수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기재된 ‘박사’에 관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KBS-2TV : 「추적 60분」 프로그램 (2007년 10월 31일 23:05)

내 용 :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 춤추는 가짜박사 방송 중 H예술대학 B 교수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기재된 박사학위는 자신이 직접 학위를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KBS-2TV : 「추적 60분」 프로그램 (2007년 9월 12일 23:05)

내 용 : (전략) ▷앵커 : 이 학교에서는 2명의 교수가 학력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현대무용을 가르치는 B 교수.

공연 안내 책자에서 밝힌 학력을 보면 프랑스에서 박사과정의 일부를 마쳤다고 적고 있습니다. 석박사에게 연구비 지원사업을 펼치는 한국 학술진흥재단.

학위소지자들은 이곳에 직접 자신의 학위를 등재합니다. 이곳에 등재된 내용은 그 만큼 신뢰성을

양주 고읍지구내 한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건설교통부 (장관 이 용 섭)
피신청인 : 파이낸셜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 『‘있으나 마나’ 한 분양가 심의』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4일자 15면)
내 용 : 경기 남양주시 진접지구에 이어 양주시 고읍지구 등에서도 건설업체들이 고분양가 책정을 통한 ‘배짱 분양’에 나서 분양가상한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감증을 강화하고 있는 데도 이를 비웃듯 고분양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종전에 비해 아파트 분양가격이 20~30% 정도 떨어진다고 장담했지만 실상은 떨어지기느커녕 더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성급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관심을 모았던 남양주 진접지구는 당초 중소형 분양가가 3.3㎡당 7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동시분양 업체들은 분양승인권자인 남양주시로부터 3.3㎡당 평균 759만 원에 승인을 받아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켰다.

건설교통부도 이례적으로 남양주시 고분양가 문제를 지적하며 “분양가자문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달부터 지자체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심의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고분양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양주 고읍지구에서 첫 분양에 나선 OO종합건설의 ‘OOOO’가 평균 분양가를 3.3㎡

당 825만 원으로 승인을 받아 또다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14일자 15면 『‘있으나 마나’ 한 분양가 심의』라는 제목으로 양주시 고읍지구 모아파트가 고분양가 책정을 통한 ‘배짱 분양’에 나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감증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웃듯 고분양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도입한 분양가상한제가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못내면서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분양된 모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분양가자문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모 아파트 주택의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의 효과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분양가상한제의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 또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7년 11월까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후속 기사를 작성할 때 이와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파이낸셜뉴스 : 『2억 빠져도 “안 사”...더 내릴 듯』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3일자 4면)

내 용 : (전략) ■분양가상한제 위력 본격 발휘하나

신도시 예정지 주변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김진수 씨(37·가명)는 최근 직장 근처인 파주 교하지구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가려던 계획을 바꿨다. 김 씨는 “얼마 전부터 중개업소에서 급매물이 있다고 연락이 왔지만 3.3㎡당 1,000만 원 안팎에 나올 예정인 파주신도시 내 아파트 가격을 따져보니 기존 아파트가 오히려 가격이 비싸더라”며 “기반시설도 부족한 오래된 아파트를 3.3㎡당 1,100만 원 주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 기존주택 매입 대신 파주신도시에 청약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기존 아파트 매수세가 뜰 끊기자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파주시 교하지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내 부동산은 무더기로 폐업을 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한 달에 매매 중개를 한 건도 성사시키기 힘든데 무슨 수로 버티겠냐”며 “여기 말고도 이 지역에서 앞으로 문단을 중개업소가 수두룩”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도시 주변 집값 추가하락 예상

이처럼 신도시 주변 아파트값이 최근 1년여 만에 최대 25%나 빠졌는데도 매수세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주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문의만 간간이 오지만 거래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건 똑같은 양상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로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신도시 후광효과에 대한 기대로 그동안 집값이 폭등해 아직도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수요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후략) □

참여정부가 세수대책도 없이 대형사업을 추진해 수년 내에 국가재정파탄이 올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7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장 병 완)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내일신문 : 『‘미래지출 산더미’ 재정파탄 우려』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9일자 1면)

내 용 : “올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원주-강릉과 소사-원주의 일반철도 노선을 짓는데 5조 1977억 원의 투자사업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완공후 운영단계부터 예산이 투입돼 당장 부담은 없지만, 몇 년 뒤 재정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내

년에는 줄일 계획이다.”

BTL사업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되리라는 기획예산처 관계자의 발언이다.

참여정부는 2005년부터 BTL제도를 신설해 첫째에 3.8조 원, 2006년에 7.2조 원을 투자유치 했고, 올해는 9.9조 원 한도 내에서 고시할 계획이다. 사실상의 국가채무를 새로 만든 것이다. (중략)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만든 국가 전략보고서 ‘비전 2030’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2010년부터 통일비용 1%를 포함해 국내총생산(GDP) 2.1%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해에 15조 원의 세금을 더 걷든지, 빚을 내야 한다.

향후 세수 전망은 비관적이다. 이해찬 총리 시절 2009년까지 4년간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예산이 7.8조원이 확보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당시 이 총리는 “부처마다 예산의 5%를 줄이라”고 독려하기

까지 했다. 2010년 이후는 잠재성장률이 4.3%, 2020년대는 2.8%로 전망되고 있어 재원확보대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세수대책 없는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다. 임기중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신도시와 같은 각종 대형국책사업을 벌여 토지보상비로만 95조 원을 지출했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홍재형 의원조차 “대한민국 전 국토에서 굴착기 굉음이 끊이지 않는 건설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9일자 『‘미래지출 산더미’ 재정파탄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수년 내에 국가의 재정파탄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전 2030을 위해서는 복지지출비로 1,604조 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수년 내에 국가의 재정파탄이 올 것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비전 2030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소요는 2030년까지 1,100조 원 수준으로 이는 복지분야만이 아닌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 재정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따라서 “비전 2030을 위해서는 복지지출비로 1,604조 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의견 및 평가에 대한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조정불성립결정 후 보도문

내일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1일자 10면)

내 용 : 본지가 지난 9월 19일자 ‘미래지출 산더미 재정파탄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비전 2030’을 위해서는 복지지출비로 1,604조 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비전 2030’을 추진하기 위한 총 추가소요는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등을 포괄해 2030년까지 1,100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 비중이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므로 재정파탄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재단이 학부모를 상대로 모집중인 발전기금이 문제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정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0.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정정)

보도내용

한겨레 : (1) 『○○○학원, 학부모에 ‘황당한 모금’』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7일자 13면)

내 용 :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정○)이 운영하고 있는 ○○○고 등 4개 학교가 체육관과 기숙사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대대적인 발전기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용도를 ○○○고 체육관에 한정하고, 부족 재원은 ○○○고 동창들만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내고서는 건립 대상에 기숙사까지 포함한다 학부모들에게까지 모금을 하고

있어 부산시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학교들은 25일 오후 5시 30분 ○○○학원 대강당에서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관·기숙사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 설명회를 열고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1인 1구좌운동(1구좌 10만 원)'에 학부모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1주일 출석하고 졸업한 이사장 아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3일자 16면)

내 용 : 학교법인 ○○○학원 재단이사장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가 거짓으로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 이사장 아들(19)은 미국에서 고교를 다니다 지난해 6월 30일 ○○○고 3학년에 편입학했다. 교사들은 정 군이 편입학한 뒤 1주일 정도를 빼고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며, 출석부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에는 수업일수가 90일로 돼 있으며, 결석일수와 지각·조퇴는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정 군이 편입학한 뒤 학교에 앓은 사실은 2학기 성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리자들이 출석도 하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은 정 군의 성적을 최저점수로라도 산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3학년 과목 담당 교사들이 따르지 않고 반발하자 학교 쪽은 결국 12월 22일자로 정 군을 자퇴 처리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산○○○학원과 ○○○고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7일자 13면 『○○○학원, 학부모에 '항당한 모금'』 제하의 기사에서 ○○○학원이 체육관·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학부모들에게 발전기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으며, 용도를 ○○○고 체육관에 한정하며, ○○○국제예술중의 교실이 모자라 도서관의 1층을 개조해 교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10월 3일자 16면 『1주일 출석하고 졸업한 이사장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학원 재단이사

장의 아들이 1주일 출석하고 졸업하였으며, 또한 당시 담임선생님의 현재 ○○○국제예술중 교감으로 승진하였고, 이사장의 부인인 윤 이사는 학교에서 상근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체육관·기숙사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은 적법절차를 밟았으며, 발전기금 모집대상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동창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있으며, 체육관은 ○○○고, 여고, 예술고, 국제예술중 모두 함께 사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국제예술중의 교실은 첨단디지털시설을 이용한 학습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사장의 아들은 2006년 12월 22일에 자퇴하여 졸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졸업사진 또한 재학 중인 7월에 촬영한 사진이 그대로 졸업앨범에 실린 것이고, 당시 담임선생님이 교감승진은 새롭게 출발하는 ○○○국제예술중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재단 측이 강력히 요청하여 이루어진 인사발령이었으며, 정 이사장의 부인 윤 이사는 무보수이며 학교에 상근하지 않음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부산○○○과 ○○○고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학원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6월 27일자 ○○○학원 관련 기사에 대해 학교법인 ○○○학원은 체육관·기숙사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히 모금되고 있으며, 신축건물은 재단 산하 네 학교 모두 함께 사용할 용도로 교실 신축과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10월 3일자 <1주일 출석하고 졸업한 이사장 아들> 기사에서 본문에는 현 이사장의 아들이 작년 12월 22일에 자퇴했다고 돼 있으나 제목이 졸업으로 나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10월 24일까지 한겨레 영남판 2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고, 제목은 한겨레의 통상적인 반론

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전과사실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남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0.

처리결과 : 각 합의

A 씨는 “수십 년 전 철없던 시절의 잘못까지 모두 드러나 평생을 살아 온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며 “남편과 아이들도 충격을 받는 등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됐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연합뉴스 : 『검찰, 피진정인 ‘전과기록 유출’ 물의』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검찰이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전과기록이 담긴 자료를 진정인에게 통째로 넘겨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성동구에 사는 A(여) 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이 사는 아파트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해 입주자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반대편에 섰던 B 씨가 개표 현장에서 A 씨의 전과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찰의견서’라는 자료를 복사해 이 자리에 모인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알고 보니 B 씨는 지난 2005년에도 아파트입주 관련 문제로 A 씨와 마찰을 빚어 서울 동부지검에 진정을 냈고, 검찰이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보하면서 피진정인이던 A 씨의 전과기록이 기재된 경찰의견서까지 함께 보냈던 것.

• 제 목 : 아파트 입주자대표 전과사실을 공개한 목적이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통신은 지난 10월 8일자에 『검찰, 피진정인 ‘전과기록 유출’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의 전과기록 유출 사건을 보도하면서 입주자대표선거에서 A와 경선하는 B가 이를 악용하기 위해 A의 전과기록이 담긴 경찰의견서 자료를 주민들에게 마구 뿌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A와 B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가 아니며, B는 A가 아닌 C(다른 피진정인)의 횡령의혹에 대한 진정처분결과서를 받으며, 이에 포함된 수사외견서를 통해 A의 전과기록 및 아파트 잠수입 횡령범죄를 알게 된 것으로, 아파트 부녀회장을 하며 시설광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횡령처벌을 받은 A가 임기가 끝나자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동대표로 출마해 입주자대표로 선출되자, 입주민이었던 B가 관리규약상 동대표 해임요건에 해당하는 A의 금품수수사실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며 동별대표자회의에서 A의

공개허락 하에 해당 수사의견서를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 통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전과기록 유출 경위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이 반영된 후속기사를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함께 나오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입주자대표 후보 전과공개’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9일자 사회면)

내 용 :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김수창 부장검사)는 입주자대표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포함된 자료를 복사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9월 중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 선거 개표현장에서 후보로 나선 A 씨의 전과기록이 담긴 자료를 복사해 자리에 모인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 씨는 지난 2005년 아파트입주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재개발조합장에 대해 횡령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을 냈다가 ‘사건처리결과’를 통보받으면서 A 씨의 전과기록 관련자료도 함께 받아 이를 보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B 씨는 “아파트입주자대표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면 공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자료를 배포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

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전과사실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남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0.

처리결과 : 각 합의

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8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38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보도내용

노컷뉴스 : 『검찰이 전과기록 유출...깨어진 가정주부의 일상』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8

• 제 목 : 피진정인 전과기록 유포 관련 반론
 • 내 용 : 노컷뉴스는 지난 10월 8일자 사회면 「검찰이 전과기록 유출…깨어진 가정주부의 일상」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의 실수로 한 개인의 전과기록이 유출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파트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피진정인 A 씨와 갈등을 빚던 진정인 B 씨가 A 씨의 전과기록을 얻게 되어 인터넷과 전단지를 통해 이를 유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B 씨와 A 씨는 각기 다른 사건의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었고, 다른 진정사건의 처분결과서를 받는 과정에서 A 씨의 전과기록 및 아파트 잠수입횡령범죄를 우연히 알게 됐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아파트 대표자 선거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입주민으로서 권리주장을 했을 뿐이며, A 씨의 전과기록은 A 씨가 아파트 대표자로 선출된 후 대표자격 검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동별 대표자회의석상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20일 낮 12시부터 21일 낮 12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노컷뉴스〉 초기화면의 ‘주요뉴스’ 목록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함께 나오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피진정인 전과기록 유포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중국의 한 골프장을 예약하고 도피성 출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장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서울신문 : 『“이 와중에…”』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9일자 2면)

내 용 : 신청자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 파문이 정치·경제·문화예술계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신 씨의 학력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 ○ 스님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장 ○ 스님발언의 진실과 잇따른 도피 이유가

관심의 초점이다. (중략)

장 ○ 스님의 모순된 발언과 맞물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그의 잇따른 잠행이다. 장 ○ 스님의 중국 웨이하이 출국 시도는 도피성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 ○ 스님은 당시 인천공항에서 골프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하이에 사는 한 한국인은 “현지에서는 장 ○ 스님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A컨트리클럽에 부킹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장 ○ 스님 ‘골프치려 출국시도’ 한 사실 없어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9일자 사회면에 『이 와중에…』 제목으로 “장 ○ 스님의 중국 웨이하이 출국시도는 도피성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 스님은 당시 인천 공항에서 골프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하이에 사는 한 한국인은 현지에서는 장○ 스님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A컨트리클럽에 부킹을 했다고 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장○ 스님이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장○ 스님은 골프를 치기 위하여 사전에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어떤 골프장에도 부킹을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인천공항에 골프백을 지니고 간 사실도 없기에 장○ 스님이 골프를 치려고 출국을 시도하였다는 보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서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9일자 2면)

내 용 : 서울신문 9월 19일자 2면에 ‘이 와중에..., 출국시도 장○ 스님 골프치려’ 기사에서 “장○ 스님의 중국 웨이하이 출국 시도는 도피성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에서 골프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현지에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A컨트리클럽에 부킹을 했다고 한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 스님 측은 중국으로 출국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골프를 치기 위해 사전에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골프장에 예약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와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특수경비원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이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차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매일노동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5.

처리결과 : 합 의

해지 사유는 학력위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9일자 사회면 『‘금융감독원 보복해고’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특수경비원이 노조설립한 지 8개월 만에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위원장 등 노조간부를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적법한 절차와 회사규정에 의거,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금융감독원 ‘보복 해고’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9일자 사회면에 “금융감독원 ‘보복해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보도내용

매일노동뉴스 : 『금융감독원 ‘보복해고’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이 올해 초 노조를 설립한 지 8개월 만에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위원장 등 노조간부를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민간서비스연맹 ○○기업노조(위원장 김○ ○)에 따르면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달 20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회사 측이 밝힌 계약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교육비는 노조원이 직접 부담한 적이 없고, 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금융감독원 당직수당을 포함하여 노조원의 임금은 월 평균 180여만 원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특수경비원의 근무시간은 3교대 근무로 월 평균 240시간이며, 노조간부의 해고는 입사서류 상의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회사규정에 의거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용역회사 측은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매일노동뉴스 4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하

여 2007년 10월 2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노동뉴스 : 『금융감독원 ‘보복해고’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3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관리비 통장의 지급을 정지시켜 아파트의 단전위기를 초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북일보 : 『입주자 대표 자격마찰 아파트 단전 위기』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1일자 7면)

내 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을 둘러싼 마찰이 자칫 360여 세대의 집단 단전으로 이어질 뻔했다. (중략)

집단 단전 위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불신임을 통해 새 대표회의로 꾸려지면서부터 발생했다.

일부 주민들이 지난 5월 전임 입주자대표를 불신임해 새 대표회의를 꾸렸고 이에 전임 대표가 반발,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지급정지시켜 놓은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11일자 7면 『입주자 대표 자격 마찰 아파트 단전 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시 ○○동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 대표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해 아파트 관리비 통장 지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아파트의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단전 위기에 몰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전임 입주자 대표는 “전기료가 체납된 이유는 기존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가 적법절차에 따라 선정된 새로운 위탁 관리업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관리사무소를 점거해 편법으로 관리비를 직접 수금하면서 주민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을 임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아파트 단전위기” 보도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보 2007년 10월 11일자 7면 “입주자 대표 자격 마찰 아파트 단전위기” 제목의 보도와 관련, 정모 씨는 “○○○○ 2차 아파트의 단전 위기는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를 직접 수납(전체 관리비 중 80%정

도)하였음에도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본인이 관리비 통장 지급을 정지시킨 것이 단전위기의 직접적 사유가 아니며 통장으로 입금된 20%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은 조만간 정상 납부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전북일보 2007년 10월 25일자 7면 좌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아파트 단전위기” 보도 관련 반론보도」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

제목 “전 대표 관리비 통장 지급정지...”와 함께,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일보 : 『반론보도-아파트 단전위기 보도관련』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5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관리비 통장의 지급을 정지시켜 아파트의 단전위기를 초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6.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전북조정3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7전북조정36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입주자 대표 자격마찰 아파트 단전 위기』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1일자 7면)
내 용 : <2007전북조정36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새전북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모 장로로부터 교회법 상담료로 하루에 14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6.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Y 장로, 이○○ 목사와 1시간 상담
에 140만 원 날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2005년 3월 15일 이 목사와 계약한
서울Y교회 Y 장로는 교단 브로커 이○○ 목사(○
노조위원장)의 교회법 상담료로 하루에 1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목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40만 원을 더 얻어갔다는 것.

따라서 교회문제로 이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Y
교회 장로들은 하루 상담을 받고 140만 원을 날렸
다. 당시 Y교회는 분쟁중에 있어서 이것을 원만하
게 해결하기 위해 Y 장로는 매달 100만 원씩 세
달 300백만 원을 이 목사에게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나 원래 계약과는 달리 이 목사가 그것은 계
약 금액이고 고소고발장을 쓸 때마다 50만 원씩
더 내야한다고 하고, 교회직원들을 기독교조에 가
입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해, 이들은 부담이 되
었고 원래의 계약 취지와 다르고, 교회직원을 기독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
여 익일 전화로 계약을 취소하고, 3일 후 서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것과 3월 18일 이미 지불된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한번 이 목사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돌아오지 않
는 법. 즉 닫히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 목사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계약한
대로 나머지 200여 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Y 장로
측은 상담도 한 것이 없고, 자신들의 교회상황에
유효적절한 상담이 아니며 계약에 어긋나기 때문
에 200만 원도 줄 수 없고, 상담한 것도 없는 데다
가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시키려는 등 잘못된 상
담을 한데다가 상담계약자체도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상습고소자
이 목사는 하루 상담을 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
다고 하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 목사 상담 Y 장로 140만 원 날
려”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8일자 『이○○ 목사
상담 Y 장로 140만 원 날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확인결과 이 목사는 자문역 상담으로 3개월에
300만 원을 계약했고, Y 장로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에서 40만 원의 조정판결로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서 “그러나 원래 계약과 달리 이
목사가 그것은 계약 금액이고 고소장을 쓸 때 마
다 50만 원씩 더 내야 하고”라고 보도하였으나 사
실확인결과, 교회법 고소건 1건마다 50만 원씩 더
내기로 계약된 것이 사실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상습 고소자 이 목사는 하루 상담을 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판사도 변호사
법 위반이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
실확인결과, 이 목사는 상습 고소자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국민의 소송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며,
판사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이
사실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7-6

진은빌딩 301호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에클레시아뉴스 상단에 3일
간(1일 첫째 줄, 2일 둘째 줄, 3일 셋째 줄)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제목 크기로
하고 부제목은 조정대상부제목의 크기로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
유없음이 명백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7.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선거철마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2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한국시사정보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6.
처리결과 : 취 하

듯한 인상을 주며 남다른 충성심을 나타내는 등
군정 최고책임자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사이이
라는 것을 암시해 주위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빈축
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한국시사정보신문은 지난 9월 20일자 9면 『일어탁수』 제하의 기사에서 군청 공무원인 본인을 아부의 달인으로 보도하고, 자신의 책상에 군정 최고 책임자와 악수하는 사진을 부착하고 있으며 선거철마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가 크게 훼손된 바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한국시사정보신문 : 『일어탁수』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20일자 9면)

내 용 : (전략)

문제의 공무원은 현재 ○○군청 기획감사실 2모계장.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소와 덕목도 갖추지 않은 채, 적당히 윗선의 눈치만 보며 줄서기와 눈도장 찍기에 열중하다 보니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아부의 달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굳이 속속들이 밝히지 않더라도 단적인 예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 ○○군청 각 실과별 근무환경과 풍속도를 살펴 보면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상 위에 가족사진 등을 부착해 근무 중 힘에 겨울 때나 어려울 때 가족사진을 보며 용기를 얻는 모습과는 달리 문제의 공무원은 자신의 책상 위에 군정 최고책임자와 악수하는 사진을 부착, 타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을 상대로 은연중 자신을 과시하는

취하 후 보도문

한국시사정보신문 : 『사과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9일자 1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20일 발행한 제 96호의 편집국장이 쓴 <일어탁수>에서 군청 언론 관련 담당 공무원을 지칭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인 의도로 게재한 사실이 있으며 전주민주공무원 노동조합 ○○군지부의 공식적인 사실확인 노력에 응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물론 ○○군 전체 공직사회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군지부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

로또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무총리복권위원회 (위원장 윤 대 희)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6.

처리결과 : 할 의

보도내용

시사저널 : (1) 『로또 새 사업자, 공굴리기도 전에 “비리 비리”』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9일자 60~62면)

내 용 : 오는 12월 공식 출범할 2기 로또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뼈격거리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감사원에 관련 조사 요청서가 접수되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이 문건에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의혹이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우선 로또 사업자로 선정된 ○○로또(○○컨소시엄)와 나머지 컨소시엄간 입찰 가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중략)

일각에서는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의혹의 중심에서 있는 인물이 바로 ○○안 전 인○○○ 한국 지사장이다. 그는 ○○컨소시엄의 핵심 솔루션을 담당하는 그리스 업체 인○○○의 한국 지사장이다. 그는 입찰을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복권총회(WLA)에 복권위 공무원들과 동행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특정 컨소시엄 인사가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권위 공무원과 만났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시사저널〉은 ○○안에게 여러 차례 복권위와의 관계를 묻는 이메일을 보낸 끝에 그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실제로 WLA 홈페이지에는 현재 ○○안과 복권위 공무원들이 나란히 촬영한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번 2기 로또사업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접촉과정에서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이 문건에는 그동안의 복권위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조사 요청 문건에 첨부된 글렌 안의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을 ‘복권위원회 자문위원(Advisor to the Korea Lottery

Commission)’으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복권 관련 기관이니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그는 “복권위로부터 미국 현지 시장조사를 위한 일정 조정을 위임받았다(They have requested me to arrange a visit to Lotteries in the United States)” “복권위는 나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복권 시스템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they have asked me to find out which lottery as well as instant tickets validation)”라고 말하고 있다. (후략)

(2) 『“복권위에서 왜 거짓말하나”』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9일자 62면)

내 용 : 기 로또 사업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복권위나 ○○컨소시엄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정부 입찰이 있을 때마다 항상 뒷말은 나오게 되어 있다. ○○안도 복권위와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도 “○○이 로또 사업에 뛰어들어 이유는 돈을 벌기보다 관련 노하우를 쌓아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다. 일부 문제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입찰 정보 사전 유출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안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시사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문위원(advisor)’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정부간 접촉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심지어 “복권위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직접 복권위원회 직원들의 해외 출장을 준비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까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소속된 인○○○은 원래 ○○컨소시엄 소속이 아니라 △△컨소시엄 쪽이었다. 당시 △△그룹과 인○○○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복권위 요청으로 해외 시장 시찰 일정 조절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후략)

(3) 『“로또가 외국 기업만 배불린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9일자 65면)

내 용 : 이번 2기 로또 사업자 선정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컨소시엄(○○로또), □□컨소시엄(□□로또), △△컨소시엄(○○와 함께)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이 근소한 차로 선정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외국 기업만 배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업계 불만이 적지 않다. 컨소시엄은 ○○그룹이 이끌고 있지만 로또 사업의 핵심 솔루션이나 단말기는 모두 그리스에서 공수해오기 때문이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국산 단말기를 의무화했던 1기 때와 달리 2기 때는 입찰 조건에서 이 조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업계를 중심으로 외화 유출 시비 등이 이는 것도 이런 사실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 솔루션이나 단말기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향후 입찰 때에도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복권위에서 이같은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온라인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10월 1일자 로또사업관련 특집을 통해서 온라인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과정 중 복권위원회와 사업자간 유착으로 인한 입찰 정보 사전유출 의혹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본지는 사전유출 의혹의 근거로 ○○안 전 인○○○ 한국지사장이 입찰정보 사전유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보도하면서 ○○안이 입찰을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복권협회 총회에 복권위 공무원들과 동행한 것은 특정 컨소시엄 인사가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세계복권협회 총회는 전 세계 복권회사들과 유관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세계복권총회로 약 70개 국가로부터 전세계 복권인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복권위 공무원들은 200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총회때 ○○안을 만났을 뿐, 동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들 공무원은 복권 사업자 선정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안이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을 복

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복권위로 부터 미국 현지 시장조사를 위한 일정 조정을 위임받고, 복권위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복권시스템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으나 ○○안은 복권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아니며, 복권위는 ○○안에게 일정조정을 위임한 바 없으며, 일정협의를 위해 ○○안과 접촉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복권시스템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복권위와 ○○컨소시엄간 ‘밀월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로 ○○컨소시엄에 포함된 ○○로또의 이사 모 씨도 ‘전자복권 로드맵’ 작성을 위한 TF’에 여러차례 참석해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으나 ‘전자복권 로드맵’ 작성을 위한 TF’는 전자복권 수탁 및 채수탁 사업자와 전자복권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TF에 전자복권 채수탁 사업자가 참여하여 전자복권 관련 해외사례를 수집하였을 뿐, 온라인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과는 무관한 업무였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10월 9일자 보도한 <로또 새 사업자, 공굴리기도 전에 ‘비리 비리’> 제하 기사와 관련, ○○안 씨는 인○○○ 한국 지사장 및 복권위원회 자문위원이 아니며, 복권위는 ○○안 씨에게 시장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안 씨가 세계복권총회에 복권위 공무원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총회 행사장에서 만났고, 복권위 고위 인사 ㅎ 씨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복권위는 “전자복권 로드맵 작성을 위한 TF는 온라인 복권 사업자 선정과는 무관하며, 티○○소프트는 복권 솔루션을 공급하는 전략적 업무제휴사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바 형평성 의혹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복권위 전문위원은 연합복권사업단에서 파견근무중인 홍보 전문가로 복권위와 특정 컨소시엄간 불합리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권위는 이번 2기 로또 사업자 선정 과정 의혹

에 대해 “1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는 12월 2일 온라인 복권이 차질 없이 발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제 942호(2007년 11월 6일자) <시사저널> ‘독자한마당’ 면에 박스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통상적인 ‘알립니다’ 글씨의 크기와 같은 활자크기로 한다.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의 글꼴, 또는 더 두드러진 글꼴로 하되 첫 문장 중 ‘<로도 새 사업자...> 제하 기사와 관련’ 부분은 볼드체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대상기사의

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7일간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협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협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6일자 독자한마당면)

내 용 : <협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소유한 목장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귀신이 출몰하는 흉가라고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나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7.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MBC-TV : 「잡지왕」 프로그램 (2007년 7월 22일 15:00)

내 용 : 오픈자막 : 귀신이 나타난다? ○○목장의 진실!!

▷나레이터 : 오감을 급습하는 무시무시한 공포 간담을 서늘하게 할 새로운 공포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나레이터 : 인적없는 산속... 덩그러니 놓인 집 한채. 한 채의 폐가

▷나레이터 : 무엇이 그를 이토록 급하게 떠나게 했을까

10년째 주인조차 발길을 끊은 이곳은 바로 ○○목장

이곳에서 일어나는 괴상한 현상들

▷주민1 : 여자 웃음소리도 나고 우는 소리도 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갔어요.

▷나레이터 : ○○목장에 귀신이 산다?

▷주민2 : 그건 낭설일 거예요!!

▷나레이터 : 사람들이 만들어 낸 루머다?

▷나레이터 : 그러나 ○○목장에서 촬영된 미스터리한 사진들

그리고 제작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울음소리

귀신의 집인가, 황당한 루머인가? ○○목장의 진실을 본다.

이미 오래전부터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던 ○○목장 귀신이 살고 있는 집.

일명 흉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늦은 밤 직접 ○○목장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중략)

▷주민3 : 사람이 살면 거기서 밤에 소리가 나고, 도깨비 나오는 거지 뭐.

▷주민4 : 얼마를 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길래... 팔고 이사가고... 살다 보면 또 그러니까 또 가고... (중략)

▷주민5 : 소름끼치게 여자 울음소리도 나고 웃음소리도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사를 내려왔어요. 그 시간만 되면 여자 울음소리...웃는 소리도 나고 여자들... 남자들 소리는 안 나고... 재잘재잘 대는...

▷나레이터 : ○○목장에 여자귀신이 산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목장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인데... 미스터리 체험단과 다시 한번 ○○목장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과연 ○○목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목장을 향해 어려운 첫발 걸음을 땀 미스터리 체험단. 조심스럽게 ○○목장을 향해 다가가 보는데, 작은 소리에도 혼비백산하는 체험단.

▷체험단 : 봤어? 뭐 움직였잖아...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요...

▷PD : 자꾸 소리나네... 어제는 안 났는데...

▷나레이터 : 어딘가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린다.

▷체험단 :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여기는... 추운데도 계속 땀이 나네...

여기는... 상당히 강해요. 실제로 어떤 존재가 있다고 확신해요.

▷나레이터 : 이곳에 확실히 어떤 존재가 있다? 이들이 경험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목장에서 미스터리한 사진을 찍었다는 한 남자의 결정적인 제보 <신○○(홍가체험 동호회원 아마추어 사진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직접 촬영했다는 제보자의 사진. 일반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형체들이 포착되었는데...

▷신○○ : 이게 흔하게 찍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목장에서는 많이 찍히는 편이죠. 왜냐하면 ○○목장 자체에 이런 귀신들이 많거든요.

▷전○○ : 아래위로 공동묘지가 있고 또 이집 방향이 또 황천대살이라는 대살에 걸려 있고 또 주

변에 나무들한테 전부 집이 간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람이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아니고 나쁜 기운을 사람이 집에서 받게 되죠. (중략)

▷전○○ : 땅 밑에 물기가 없는 곳은 없거든요, 다 있는데... 이 곳처럼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MBC-TV는 지난 7월 22일 「잡지왕」 프로그램 「귀신이 나타난다? ○○목장의 진실!!」코너에서 신청인이 소유한 ○○목장을 동의없이 무단 출입·촬영하고 ○○목장을 귀신이 출몰하는 흉가로 묘사하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신청인 참가인에게 2007년 11월 5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 및 신청인 참가인은 이 사건 보도 및 보도과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신청인 및 신청인 참가인은 피신청인과 소속임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협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신청인이 소유한 목장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귀신이 출몰하는 흉가라고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나 ○ ○

피신청인 : t v 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t v N : 「리얼스토리 묘」 프로그램 (2007년 7월 22일 15:10)

내 용 : <2007서울조정38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tvN은 지난 7월 22일 「리얼스토리 묘」 프로그램 코너에서 신청인 소유한 ○○목장을 동의없이 무단 출입·촬영하고 ○○목장을 귀신이 출몰하는 흉가로 묘사하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

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신청인 참가인에게 2007년 11월 5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 및 신청인 참가인은 이 사건 보도 및 보도과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신청인 및 신청인 참가인은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게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신청인 종단이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노조에 전달해 전 총무원장을 퇴임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주 정 산)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7.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동양일보 : 『구인사측, ○○사 노조 조종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8일자 3면)

내 용 : 천태종 총 본산인 구인사의 현 종단이 지난해 총무원장의 교체 과정에서 부산 ○○사 노조를 배후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 ○○사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

구인사 측에 고용안정 보장과 노동조합인정을 요구하는 노조활동을 벌이고 있을때 노조사무실로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전○○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와 일반 신도들이 노조를 비방하는 문건이 ‘노동조합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서류를 보낸다’는 편지와 함께 배달이 됐다는 것이다.

○○사 노조는 이 자료를 토대로 당시 전○○ 총무원장의 퇴임을 요구하고 결국은 2006년 3월 26년간 장기 집권하던 전○○ 총무원장이 삼광사 사태와 관련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현 주○○ 스님이 총무원장에 부임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문제의 서류는 스님들이 개인 비리와 진정서 등으로 보낸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구인사의 감사나 규정부에 보관돼야 할 극비 문서임에도 어떻게 이 서류가 노조한테 보내져 왔는지가 뻔한 사실아니냐”며 “발신지를 확인해 보니 현 주○○ 총무원장이 주지로 있던 대

구 △△사가 있는 곳에서 발송됐으며 보낸 사람은 중원(이○○)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전○○ 전 총무원장이 물러나고 현 주○○ 총무원장이 부임한 이후 현 종단의 한 스님이 “종단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사 노조들이 그 동안 큰일했다”며 격려까지 했다고 ○○사 노조 측은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구인사측, ○○사 노조 조종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8일자 3면 『구인사 측, ○○사 노조 조종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의 현 종단이 지난해 총무원장 교체과정에서 ○○사 노조에 전 총무원장이던 전○○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보내어 노조를 조종하여 전○○ 총무원장을 퇴임시킨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의 현 종단은 위 문건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고,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의 현 종단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8월 8일자 사회면에 『구인사 측, ○○사 노조 조종 의혹-지난해 천태종 총무원장 교체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의 현 종단이 지난해 총무원장 교체과정에서 ○○사 노조에 전 총무원장이던 전○○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보내어 노조를 조종하여 전○○ 총무원장을 퇴임시킨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천태종 총무원장의 교체는 천태종 조정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사 노조의 탄핵이 작용한 것이 아니며, 전○○ 전 총무원장이

26년간 장기 재직하고 연로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의 현 종단이 ○○사 노조에 전 총무원장이던 전○○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보내어 노조를 조종한 의혹에 대해, 현 종단에서는 노조 측에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구인사의 현 종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보는 해당기사 내용중 사실확인이 미비한 부분에 있어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의 현 종단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양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여 2007년 10월 26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조정대상기사와 천태종 관련 2007년 3월 11일자 및 2007년 3월 19일자 기사를 삭제한다.

• 피신청인 기사는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현 종단에 의전을 갖추어 공식 사과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2007년 11월 11일부터 그 이행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2007가합3923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소송을 취하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조정대상기사 및 2007년 3월 11일자 및 2007년 3월 19일자 기사 포함)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구인사와 관련하여 기사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양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5일자 4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석사논문없이 불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8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7.

처리결과 : 각 함의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조계종 총무원장의 ‘석사논문 미스터 리’』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6일자)

내 용 : 조계종 총무원장인 ○○ 스님이 중·고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학에 편입해 ‘학력위조’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그의 대학원 학력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대의 서울캠퍼스(본교)에는 그의 석사학위 논문이 없으며, ○○대 측이 ○○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내놓은 것도 ‘논문’이 아닌 ‘단행본’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학승’으로 이름이 높은 ○○ 스님이 석사과정을 직접 밟지 않고 학위를 취득했거나 단행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대체한 것 아닌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중략)

〈오마이뉴스〉의 확인 결과, ○○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이 본교(서울캠퍼스)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 중앙도서관에서는 물론, 국내 학위논문 목록이 집대성돼 있는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그의 석사학위 논문은 검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류○○ ○○대 전략홍보실 과장은 “중앙도서관에 확인해 봤는데 없다”며 “하도 오래된 자료라서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류 과장은 “경주캠퍼스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 쪽으로만 자료가 흘러갔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 측은 경주캠퍼스에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 여부를 의뢰한 뒤 “석사학위 논문이 경주캠퍼스에 있는 걸 확인했다”고 〈오마이뉴스〉에 알려졌다. 경주캠퍼스 전자도서관에서도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이 검색되긴 했지만 ‘대출불가’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대 측이 ○○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내놓은 것은 ‘논문’이 아니라 ‘단행본’으로 확인된 것이다. (중략)

〈오마이뉴스〉가 경주캠퍼스에 내려가 직접 확인한 결과, ○○대 측이 ○○스님이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주장한 자료는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라는 제목의 단행본(596쪽)이었다. 현재 ○○대 중앙도서관에는 보연각에서 출간한 1973년판 〈한국불교 소의경전연구〉가 9권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 측이 ○○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주장한 이 단행본에는 ○○스님(○○ 스님의 스승)의 ‘서문’이 실려있는데, 이는 일종의 ‘추천사’에 해당한다. (중략)

그러나 단행본 어디에도 ○○ 스님이 ○○대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다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단행본은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10년의 강사 수행’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를 출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스님이 석사학위를 받기 직전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를 출간한 점도 눈에 띈다.

그의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때는 1969년 8월 29일. 그런데 그의 석사학위 논문과 똑같은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는 논문 통과일보다 앞선 1969년 8월 25일 단행본(비매품)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이 단행본은 1973년 〈재대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보연각, 2500원)〉란 제목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중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논문과 동시에 단행본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논문의 가치가 워낙 뛰

어나 강의자료로 쓰기 위해 단행본 출간을 서둘렀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논문을 내는 것과 동시에 단행본을 엮은 듯 하다”고 말했다.

물론 석사학위 논문을 미리 단행본으로 출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본교나 분교 도서관,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논문 형식을 갖춘 석사학위 논문이 없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대 측이나 총무원 측에서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은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결국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단행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대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조계종 총무원장의 석사논문 미스터리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6일자 『조계종 총무원장의 ‘석사논문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에서 총무원장(○○스님)이 대학원 석사논문 없이 대학원 석사학위를 수여받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총무원장(○○스님)은 1969년 8월 31일 ○○대 대학원에서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받아 정상적으로 위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대 경주캠퍼스에 논문이 보관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조계종 총무원장의 석사논문 미스터리 보

도에 관한 반론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조계종 총무원장 “석사논문 미스터리”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월 6일자 『조계종 총무원장의 석사논문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총무원장이 석사논문도 없이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고, 1969년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라는 논문으로 정식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 논문은 현재 ○○대 경주캠퍼스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 메인화면 톱기사 란의 일곱 번째 기사로 2007년 11월 1일 09시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한다.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내용은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조계종 총무원장 ‘석사논문 미스터리’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31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환경부가 99년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토록 허용한 후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규 용)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문화일보 : 『아파트용 ‘쓰레기 시멘트’ 수은 등 중금속 7종 검출』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1일자 1면)

내 용 : 국민 절반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요 건축자재인 국산 시멘트에서 수은과 크롬 등 유해중금속물질이 다량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대 화학과 이 ○○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산 시멘트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수은과 6가크롬을 비롯해 납, 카드뮴, 비소, 바륨, 안티몬 등 7종의 유해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이기도 한 6가크롬은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양 오염대척기준치보다 6배 이상 높게 나왔다. (중략)

반면 이 기간중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산업폐기물이 가장 많이 사용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2639t, 2883t의 쓰레기가 시멘트 원료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3년 국내 7개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매출액은 4조 3603억 원, 영업이익률은 25%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률(8%)의 3배나 되는 수치다.

이에 앞서 이들 시멘트 업체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거래를 금지한 바젤협약까지 어겨가며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지정폐기물(1.5ppm)보다 높은 석탄재(2.19ppm)를 수입해오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환경부가 미처 시멘트 원료의 폐기물 기준을 만들어놓지 못한 탓에 이들 업체를 처벌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시멘트 원료의 폐기물 기준은 시멘트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폐기물 관리 기준에 대한 입법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환경부 반론 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10월 11일자 1면 『아파트용 ‘쓰레기 시멘트’ 수은 등 중금속 7종 검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쓰레기 원료의 시멘트 제조가 허용된 이후 국내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새집 증후군이 중요한 생활 환경 이슈로 대두됐다는 보도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인 6가크롬의 검출은 1999년 환경부가 자원재활용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연료로 사용토록 허용한 것 때문으로 추정하며, 2001년도 아토피 유발율이 1000명당 5.07명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1000명당 70.03명으로 13배가 늘어났다는 내용을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시멘트속 중금속과 아토피 피부염 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멘트속 중금속이 아토피 피부염 급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은 대기오염, 생활환경오염, 식품, 집먼지 진드기 등이 종합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토피가 증가하려면 크롬이 시멘트로부터 먼지와 함께 공기중으로 나와 사람의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실내에는 대부분 벽지, 타일, 페인트 등 각종 마감재를 시공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주 문화를 볼 때 콘크리트와 인체가 직접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어 시멘트의 크롬이 아토피 피부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체 노출과정은 무시한 채 아토피와 연결지어 결론을 내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장관 이 규 용

조정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68

대표이사 이 병 규

조정대리인 박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1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게재하라.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4.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조합 공금을 횡령하고 신병을 이유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교통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8.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교통신문 : 『경남○○조합 공금 횡령 물의』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27일자 9면)

내 용 : 경남○○○○조합 김○○ 이사장이 조합 재산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조합에 따르면, 신○○ 전 경남○○○ 조합장 이사장(재직년도 2000년 3월)이 조합 재산 3억 1000만 원을 담보로 신용금고로부터 개인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던 중 2000년 10월 사업체 부도로 담보물건 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남조합이 긴급이사회를 개최, 수습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책위원장에 김○○ 현 이사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조합재산 회수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회수금 총액 5억 930만 원 중 2억 873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남조합은 사건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주)○○투어 대표, 부위원장 박○○·○○관광(주) 대표)를 구성, 지난 18일 조합회의실에서 조합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전 이사장 공금횡령 및 횡령금 회수에 관한 진실규명

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 전 이사장의 회수금에 관련된 박○○ 전국연합회 전 회장의 증언과 사건 전개상황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비상대책위는 현 이사장과 집행부에 내용 증명 최고장을 보내 진실규명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라고 요청했으나 현 이사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비대위는 미참석의 경우 조합공금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했다.

김 현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의 공금횡령건으로 회수한 금액을 살펴보면, 2001년 2월 16일 창원지법의 3억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시에 따라 신 전 이사장이 2001년 3월까지 2억 5500만 원을 김 이사장에게 지불했으며, 전임 이사장 사업체에 대한 압류(대구 ○○○관광 차고지)를 통해 경매배당금 2억 5400만 원을 수령해 합계 5억 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현 이사장은 총회보고에서 2억 22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나머지 2억 87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창원지법이 판시한 금액 2억 2000만 원의 일부를 2001년 중에 전세버스 운송사업법 개정을 위한 의원 입법 추진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남○○○○조합 이사장 공금 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27일자 9면 『경남○○

조합 공금 횡령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김○○이 사장의 공금 횡령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정관에도 없는 불법단체이며 비조합원으로 구성되어 본 조합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비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보도된 김△△와 박○○이 김○○ 이사장이 공금횡령을 하였다고 제기한 의혹과 관련, 창원지검 특수부에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혐의 사실도 드러난 것이 없으며, 4회에 걸쳐 제기한 고소, 고발, 진정, 민·형사 재판에 응해 왔고 모두 무혐의를 받았으며, 이번 건도 본조합에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현 이사장을 제거하고자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며, 김○○ 이사장은 이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소송을 응해 오다 김△△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재판에 승소한 직후 2007년 3월 중증질환이 발병하여 현재 투병중이며, 검찰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신병을 이유로 검찰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오보이며 투병 중에도 충실히 검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 전임 이사장이 김○○ 이사장에게 주었다는 돈에 관하여도 어떠한 증거나 돈의 출처에 대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김○○ 이사장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김△△ 등은 공금횡령 사실과 관련하여 전혀 밝혀진 바 없는데도 비대위를 결성하였고, 이로 인해 비대위 감사팀에서 조합업무 집행, 금융거래 통제 및 조합 자금집행 정지 등을 한 것을 보도함으로써 마치 실질적인 합법 단체가 조합에서 발생한 부정(횡령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위와 같이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기에 이를 정

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조정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교통신문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9-6

교통신문사빌딩 6층

대표이사 윤 영 략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2007년 11월 16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31.

조정결정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지급〉

□

신청인 회사가 말레이시아에서 분양중인 주상복합건물이 낡은 빌딩을 리모델링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A○○ & E○○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종 재 부 : 서울제2종재부
접 수 일 : 2007. 10. 18.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뜨는 만큼 사기 조심 현장답사 꼭 하세요』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4일 B8면)

내 용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한인 밀집지구로 알려진 암팡지역. 한 국내 분양업체는 몇 달 전 각종 일간지와 잡지에 광고를 내걸고 이 지역 주상복합 빌딩 분양에 나섰다.

광고에 따르면 (대출을 90% 받으면) 1,000만 원이면 말레이시아 수도 중심부에 근사한 주상복합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가치는 으뜸이라는 것. 하지만 실제 암팡에 한 번 다녀오면 이 광고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눈에 알아챌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 현지 한인들조차 '사기 분양'이라고 걱정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 이 지역은 구도심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 거주자도 저소득층 화교들로 구성돼 있다. 분양한다는 주상복합도 말만 주상복합일 뿐 실제로는 5층짜리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해 5층 위로 아파트를 몇 층 더 올리는 식이다.

따라서 광고를 보면 신규 주상복합 물량을 짓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낡은 빌딩을 리모델링하는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7년 9월 14일자 B8면에 『뜨는 만큼 사기 조심 현장답사 꼭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국내 분양업체는 쿠알라룸푸르 암팡 지역에서 주상복합을 분양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위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기존의 5층짜리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해 5층 위로 아파트를 몇 층 더 올리는 식이어서 낡은 빌딩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지 주상복합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보면 리모델링에 필요한 구조진단을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낡은 빌딩이며, 공실률도 높아서 1~2층 상가가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위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사기분양이라고 걱정할 정도로 투자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쿠알라룸푸르 암팡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주상복합은 처음부터 주상복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있는 주상복합으로, 주상복합 1층부터 7층까지는 상가 및 주차장으로, 8층부터 11층까지는 호텔로, 8층부터 31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주상복합의 상가 부분 중 1~3층은 대부분 분양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9월 14일자 B8면에 “뜨는 만큼 사기 조심 현장답사 꼭 하세요” 제하의 기사에서 한 국내 분양업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암팡지역에서 주상복합을 분양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층짜리 낡은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해 아파트를 몇 층 더 올리는 식이며, 상가 대부분이 비어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위 주상복합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주상복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31층 규모로 신축되고 있는 대규모 건물이며, 상가도 상당부분 입점하여 정상营业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해당 주상복합 시공분양업체는 “위 건물은 암팡지역 중심에 있고 종합상가와 아파트(외관을 복층유리구조로 하고 내부의 모든 가구와 인테리어를 완비)를 겸한 주상복합건물로서, 상가(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연면적 48,231㎡)는 현재 완공상태이고, 상가위에 8층부터 11층의 호텔1동, 8층부터 31층의 2동의 아파트(남쪽 연면적 29,445㎡, 북쪽 39,729㎡)를 건축한다”면서, “현재 남측 타워 10층을 건축중이고, 앞으로 매달 아파트 약 3개 층의 건축이 진행되어 2008년 12월경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11월 9일까지 매일경제 MONEY & RICHES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9월 14일자 B9면 “프랑스에서 매물고르는 요령” 제목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

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9일자 B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입시에서 내신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 대학에 정원 감축 계획을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동아일보 : 『김신일 부총리, KAIST 개혁보며 자성은 앓나』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4일자 35면)
내 용 : (전략) 노무현 정권은 시대역행적 평등이념에 사로잡혀 행정적 재정적 통제를 무기로 대학 발전과 경쟁력의 기본인 자율성을 침해했다. 그 선봉예선 사람이 바로 김 부총리다. 그는 심지어 대학 입시에서 내신을 많이 반영하라고 강요하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10월 4일자 『김신일 부총리, KAIST 개혁 보며 자성은 앓나』 제하의 사설에서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많이 반영하라고 강요하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 정원 감축 계획은 2005년 ○○대와 ○○대 병설 전문대의 통폐합시 승인 조건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한 제재조치로 ‘대입 내신 반영률’과는 관련이 없기에 정정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장관 김 신 일
조정대리인 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권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원 기사가 게재된 지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원 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4일자 「김신일 부총리, KA-IST 개혁 보며 자성은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김부총리가 대학 입시에서 내신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대의 정원 감축 계획은 ○○대와 ○○대 병설 전문대의 통폐합 시 승인 조건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한 제재조치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이란 피해자가 원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로 대응할 만한 실질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 이후,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6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61곳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제재를 확정 발표하였다고 전하면서, “특히 ○○대의 경우 2005년 병설보건전문대와 통폐합하면서 약속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키지 못하자 교육부가 입학정원 160명 감축을 예고한 바 있지만 지난해 교원 20명을 추가로 임용하는 등의 노력이 반영돼 4년간 모집정지로 제재 수준이 낮아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살피건대, 위 후속 보도를 통해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보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및 동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5.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절도 및 절도교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t v N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9.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tvN은 지난 10월 11일 「나는 형사다」 프로그램에서 절도혐의 및 절도교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본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t v N : 「나는 형사다」 프로그램 (2007년 10월 11일 23:10)

내 용 :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모습>

중재합의

양 당사자 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 <2007서울중재10 참조〉 □

절도 및 절도교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t v N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9.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tvN은 지난 10월 11일 「나는 형사다」 프로그램에서 절도혐의 및 절도교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본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보도내용

t v N : 「나는 형사다」 프로그램 (2007년 10월 11일 23:10)
내 용 :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모습>

중재합의

양 당사자 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 <2007서울중재11 참조> ☐

서울 모 백화점 농성자의 대부분이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 외부세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노동조합
(위원장 김 ○ ○)외 1인
피신청인 : 파이낸셜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2.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 『노조원 없는 이○○ 사태』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일자 17면)
내 용 : '이○○ 사태에 이○○ 노조원들은 없다?'
지난달 31일 2차 공권력이 투입된 서울 뉴○○ 강

남점 농성자의 75%는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 외부세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반노조와 뉴○○ 노조원은 25%에 불과했다.

이○○그룹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에 경찰 46개 중대 4,600여 명이 긴급 투입돼 점거 농성을 펼치던 노조원 190여 명을 강제 연행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 사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일자 유통면에 『노조원 없는 이○○ 사태』 제목으로, “지난달 31일 2차 공권력이 투입된 서울 뉴○○ 강남점 농성자의 75%는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 외부세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반노조와 뉴○○ 노조원은 25%에 불과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31일 연행된 196명중 이○

○ 일반 노조의 조합원이 72명, 뉴○○ 노조의 조합원이 74명, 이외 연대한 개인이 50명으로, 결국 연행자 중 75%가 조합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이○○·뉴○○ 노조 알립니다
- 내 용 : 지난 8월 1일 17면 이○○ 사태 기사 중 공권력 투입으로 연행된 190명 중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이 130~140여 명이라는 보도와 관련, 7월 31일 연행된 196명중 이○○ 노조원과 뉴○○ 노조원이 75%를 차지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11월 2일까지 파이낸셜뉴스 2면 또는 유통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파이낸셜뉴스의 통상적인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파이낸셜뉴스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31일자 2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교회에 복직되면 노조를 탈퇴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 ○ ○ 외 1인
피신청인 : 에클레시안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2
처리결과 : 합 의

서 교회로부터 해고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기독교노조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독교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한 명은 노조위원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에클레시안뉴스 :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조는 사라져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5일자 메인면)

내 용 : (전략) 그러나 현재에 와서 기독교조는 와해 일보 직전이다.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3인밖에 없다. 두 명은 ○○동교회 집사들로

- 제 목 : “기독교조 부위원장 탈퇴 보도 관련”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에클레시안뉴스는 지난 10월 15일자 상단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조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두명은 ○○동교회 집사들로서 교회로부터 해고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기독교노조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독교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

나 사실확인결과, 보도에 언급된 집사는 해고당했기 때문에 기독교노조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노조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이며, 기독교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일도 없으며 노조 탈퇴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기독교노조 조합원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에클레시아뉴스는 지난 10월 15일 초기 화면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노조는 사라져야 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동교회 집사 출신인 노조원들이 교회로부터 해고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기독교노조의 힘을 빌고 있으며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기독교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노조원들은 교회로부터 해고당했기 때문에 기독교노조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노조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며, 문제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탈퇴 의사

가 없는 것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1월 12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에클레시아뉴스> 초기화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함께 나오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에클레시아뉴스 : 『기독교노조 조합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5일자 메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소송중인 교회로부터 소취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이○○ 목사, 강남의 S교회로부터 1,000만 원 받아』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5일자 메인면)

내 용 : 이○○ 목사는 ○○교회로부터 노조의 원래 취지와 목적 이외에 500백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강남의 한 대형교회인 S 교회를 상대로 브로커 행각을 벌여 1,000만 원을 받았음이 밝혀졌다. 그는 주로 대형교회를 상대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S교회의 한 당회원은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미 여러 명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 당회원은 당시 교회가 위임으로 인해 축제의 분위기이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교회가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려고 하였지만 축제의 분위기를 흐리고 교회 안정을 파괴할까봐 교육지책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변호사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중략)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S교회 측이 이 목사에게 자신의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간섭한다며 상습적인 소송제기라고 언급하자, 이牧사는 자신은 상습적인 소재기자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은 OO동교회, △△교회, 뉴스파워 김OO기자, 부총회장후보 김OO 목사, □□교회 유OO 목사, 온OO 교회 하OO 목사, 에클레시안 뉴스, 유OO 장로, 안OO 총회장, 김OO 총회장, 자신이 속한 OO노회까지 상습적으로 고소·고발하는 상습적 소재기자이다. 한 성도는 “이단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고소·고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다가 뒤로는 금품을 수수하고 석연찮게 취하한다. S교회사건은 대표적이다. 이 목사님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변호사비를 요청하고 소를 취하한다. 2003년 8월 26일 소장이 접수되고, 2004년 5월 21일 이목사는 S교회의 한 당회원과 타협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취하하였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당회원은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이런 브로커가 교계에 있어서는 안되며 총회차원에서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략)

한 총회 관계자는 이 목사는 교단 브로커로서 금품수수와 관련한 소문이 무성하여 총회차원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 총회차원에서 이 목사님에 대한 징계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이 목사가 진정 교단개혁을 추구한다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조건 상습 고소자처럼 사회법정에 고소고발을 일삼는 것보다, 노회와 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즉 성경대로 사회법정으로 바로가기 보다는 먼저 교단법정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 목사님은 금품을 수수함으로 준비서면에 쓴 글이 진정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교회 개혁자가 아니라 상습적 고발자였으며, 질서를 통한 교단으로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보다, 무질서적인 모습으로 금품을 챙기고 말았다. OO교회 사건은 이를 잘 증명한다. 이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금품 문제가 깨끗하지 않아 위원장으로 인해 노조가 타

격을 입는다고 말할 정도이며, 어떤 노조원은 탈퇴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OO 목사 강남의 S교회로부터 1,000만 원 받아” 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5일자 『이OO 목사 강남의 S교회로부터 1,000만 원 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S교회의 한 당회원이 이 목사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변호사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목사는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일은 있으나 돈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목사가 자신의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간섭한다며 상습적인 소송제기자라는 S교회 측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이 목사를 상습적 고소, 고발자라고 보도했으나 이 목사는 S교회 소송이 처음 맡은 소송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금품을 수수하고 석연찮게 취하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사실확인결과, 쌍방향의 소를 취하한 것이며 금품수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총회관계자는 이 목사가 교단 브로커로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소문이 무성하며 총회차원에서도 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이 목사를 총회차원에서 징계조치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총회 관계자 가운데 이러한 인터뷰를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기독교노조 위원장 이OO 목사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에클레시안 뉴스는 지난 10월 5일자 초기화면에 「이OO 목사 강남의 S교회로부터 1,000만 원 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이OO 목사가 S교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교회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결과, 이 목사는 S교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적은 있으나 해당 교회에 금품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

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자 초기화면에 「평화의 브로커, Y 장로와 계약은 사기계약이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 목사가 Y 장로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변호비용과 변호인 선임비용이 이중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기성 계약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이 목사는 Y 장로와 체결한 계약은 변호와 변호인 선임을 달리 구분한 별도의 계약으로 이중 지급이 아니며, 해당 계약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1월 12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에클레시아뉴스> 초기화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함께 나오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에클레시아뉴스 : 『기독교노조 위원장 이○○ 목사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2일자 메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돈을 받기로 하고 교회법에 대해 상담하고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39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평화의 브로커, Y 장로와 계약은 사기계약이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0일자 메인면)

내 용 : (전략) 교회사건은 대부분이 민형사사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건을 계기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상담을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변호사법 위반이다. 실제로 교회분쟁해결을 직원을 노조로 가입시키라고 권유하고 상담을 해서 이 사건을 국가법으로 끌고 가려고 법률상담을

했던 것이다.

그는 유니온뉴스에서 “필자가 노조에 가입을 권유했다면 자문역으로 권고이며, 의뢰인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고 한 바 있다. 실제로 Y 장로와 1인은 노조 자문 때문에 부담이 되어 계약을 취소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가입은 국가법의 개입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률자문이다. (중략)

여기서 실비는 거액이 아니라 교인으로서 같이 동행하고 수고를 하므로 교통비정도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재판국원들이 재판을 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총회에 와서 업무를 볼 때 하루에 실비로서 교통비조로 3만 원에서 4만 원씩 지급한다.

노회에서도 노회원들이 정기노회에 노회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모일 때는 교통비조로 3만 원씩 지급한다. 총회헌법에서 말하는 실비는 이 정도 수준을 말한다. 수백만 원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뉴스는 노조위원장이 노조의

원래 목적 이외에 상대방후보비방집회를 하기 위하여 노조의 원래 목적 이외에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변호사법 위반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목사는 “유급직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조항을 들어 일반 사회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도 필요할 때는 국법에 호소한다. 이 목사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교회법에 호소해야 한다. 이제 교육자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 조삼모사(아침에는 세계 저녁에는 내게)의 짓은 그만두어야 한다. 조삼모사의 출처는 사람이 원숭이를 속인 데서 온 것이다. (중략)

자신에게 유리하면, 아침에는 국가법, 불리하면 저녁에는 교회법을 적용한다. 아침에는 개인통장, 저녁에는 노조통장, 아침에는 목사, 저녁에는 노조위원장, 1항에는 변호, 3항에는 변호에다 (인)을 추가하여 50만 원을 더 내야한다고 계약한다. 조삼모사식 계약이다.

그러면 우리끼리 논란할 것이 없이 국가심판기관에 맡겨 보자는 것이다. 이 목사가 Y교회 장로가 이 목사와 상담을 하기로 요청하고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한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찰에 맡겨 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목사는 계약은 민법상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였고 교회법에서도 변호인에게 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300만 원에 계약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통장으로 받았어도 노조지출입노트에 들어왔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자가 있는 지 위반이 되는 지는 평화의 브로커 입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의의 법정기관의 입에 달린 것이다. (중략)

그리고 며칠 전 근로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에클레시안뉴스가 사용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지방노동노동위원회로부터 답변서 요청이 왔다. 이 목사는 그런 인간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을 악용한다. 겉으로 국민의 법권리를 주장한다. 모든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용을 하고 있

다.

이 목사는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을 부당노동행위자로 고발하는 사람이다. “살려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목사이기 전에 은혜도 도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브로커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평화의 브로커, Y 장로와 계약은 사기계약이었다”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10일자 『평화의 브로커, Y장로와 계약은 사기계약 이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교회사건은 대부분 민·형사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교회사건을 계기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명백히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에서 이 목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이 목사는 민·형사 사건을 상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목사가 교회분쟁해결을 위해 직원에게 노조가입을 권유하고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을 교회법이 아닌 일반법 소송으로 끌어가려고 했으며 상담자들이 노조 자문 때문에 부담이 되어 계약을 취소한 바 있으며 상담을 할 경우 실비는 거액이 아니라 교통비 명목으로 3~4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총회와 노회의 통상적인 지급 규모이며 이 목사 자신은 변호사 범위반에 대해서는 교회법에 호소하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는 국법에 호소해 사람을 속인다는 취지의 내용에 관련해 노조가입을 권유하거나 자문을 한 사실이 없고, 실비는 의뢰인과 변호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성격일 뿐, 변호인의 실비가 3만 원이라고 정해진 기준이 없어 계약절차상 하자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 목사가 개인통장으로 금품을 받았어도 노조지출입노트에 들어왔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에클레시안뉴스의 직원으로 고용해야 노조위원장 신분이 된다고 하자, 필자는 사업자 등록도 안되고 재정능력도 어려워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목사는 사업자 등록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못해 직권폐업된 것이며 신문법에 인터넷매체는 상시 2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본지는 총회장을 법정에 고소·고발하는 것은 신문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으나 해고통지서를 보낸 일이 없었으며, 이 목사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을 부당노동행위자로 고발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며 이牧사는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한 사용자

에 대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2007서울조정398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모 여대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외국학교 국내분교 설립’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2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국일보 : 『외국학교 불법 분교 ○○여대 “백지화”』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9일자 사회면)

내 용 : ○○여대가 외국학교의 분교 불법 설립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여대는 19일 “부속기관인 평생교육원이 해외 체류 귀국 학생의 국내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캐나다 사립 중·고교인 ○○아카데미와 함께 추진하던 모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박○○ 대외협력처장은 “학교의 전문인력이 부족해 지난해 △△ 에이전시 ‘○○문화원’에 의뢰해 실무를 맡겼다”며 “○○문화원 박○○ 이사가 학교 측과 사전협의 없이 입학 및 수업료 상담을 하는 등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

학교 측은 박 이사가 주장한 학생 100명 모집은 사실과 다르며, MOU 체결도 분교 설립이 아닌 교류협정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여대 해명보도자료 사실과 달라 도덕성에 의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9일자 사회면에 『외국학교 불법분교 ○○여대 백지화』라는 제목으로 ○○여대가 외국학교 불법분교 설립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백지화하기로 하였으며, ○○여대 홍보실의 해명자료와 대외협력처장과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에이전시 “○○문화원 박○○ 이사”가 ○○여대 측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에이전시 박○○ 이사는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여대 측과 협의의 하에 진행해 왔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9일자 사회면 “외국학교 불법분교 ○○여대 백지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문화원 박○○ 이사는 모든 과정을 ○○여대 측과 협의 하에 사업을 진행해 왔고, MOU 체결내용도 캐나다 주정부졸업인증서를 받는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한국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로 하

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여 2007년 11월 9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언론중재 조정 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비상장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굿○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이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이투데이 : 『팜○○, ○○과 M&A 내부 검토 중』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9일자 경제면)
내 용 : 의료의약품 제조업체인 팜○○이 코스닥 상장사인 ○○과의 M&A(인수합병)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체인 팜○○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법인신청서를 지난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팜○○, ○○과 M&A 내부 검토중> 기사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9일자 증권면에 『팜○○, ○○과 M&A 내부 검토중』이라는 제목으로 팜○○이 ○○과 M&A를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과 팜○○은 M&A를 검토하였거나,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인터뷰에 기초한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황토팩에서 중금속 및 설탕가루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참OO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3.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KBS-1TV :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2007년 10월 5일 22:00)

내 용 : ▷이영돈 PD : 지난 주 마지막에 제가 한 예고멘트 기억하십니까?

“다음 주엔 황토팩 중금속 검출에 대한 내용을 방송한다”는 거였는데요. 이 한마디 예고가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엔 황토팩을 하면서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분도 계셨고, 만약을 대비해 환불절차를 알아보겠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홈쇼핑도 예정돼 있던 황토팩 방송을 보류했습니다. 당연히 황토팩 제조회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황토팩 제조업체는 지난 화요일 서부 남부지방법원에 이번 황토팩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방송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소비자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번 아이템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을 방송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비자들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성전문 안OO PD가 황토팩에 들어있는 중금속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안OO PD : TV홈쇼핑 방송에서 황토팩은 단연 인기상품입니다. 출시된 지 몇 년 안 돼 홈쇼핑 시장을 석권한 황토팩, 그 인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현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황토팩 열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황토팩은 천연화장품 혹은 친환경제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는 황토에 대한 이미지가 큰 몫을 했

습니다. (중략)

▷안OO PD : 황토팩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았습니다. 황토팩을 사용하고 나면 없었던 여드름이 생긴다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심한 경우 피부가 벗겨지고 따갑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것은 최근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황토팩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발라보는데요. 입자가 미세해서 그런지 부드럽게 발리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황토팩 제품에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중에 판매되는 황토팩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말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팩 제품 6개를 구입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황토팩 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 달 뒤 중금속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일반화장품 기준보다 납수치가 높습니다. 비소는 기준치 이하입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은 비소와 납이 모두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소와 납 모두 3배 이상 높습니다. 나머지 세 제품도 대부분 비소와 납이 기준치보다 높습니다.

▷최OO 교수 : 비소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발암물질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물질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비소가 되고요. 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농도의 납에 노출되었을 때 아이들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중략)

▷안OO PD : 중금속 검사 결과 중 납수치는 논란에 빠졌습니다. 검사를 의뢰했던 6개의 황토팩 제품 모두에서 납은 일반 화장품 허용기준치인 20ppm을 넘었습니다. 3배나 높게 검출된 제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한 황토팩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의 납수치는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허용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회사 측에서 따르고 있는 납 기준은 50ppm.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는 다릅니다.

자체 기준이 지금 납하고 비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ppm으로는?

▷B 황토팩 관계자 : 저희가 이제 식약청 장원기 기준으로, 화장품 원료기록부라고 그러죠. 장원기 기준상에 보면 표기되어 있는 게 (납) 50ppm이화로 지정되어 있어서 기준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안○○ PD :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기준입니다. 황토를 안료, 즉 색을 내는 용도로 정의해 놓았고 납은 50pp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납의 경우 이 회사는 이 수치를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황토팩 회사는 이처럼 원료기준인 50ppm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토팩의 황토는 색을 내는 용도, 즉 안료가 아니라 그대로 제품이 됩니다. 제품기준과 원료기준의 납 허용수치는 차이가 납니다. 두 개의 기준 중 회사 측에서 따르는 기준은 허용수치가 높은 원료기준인 것입니다. 하지만 식약청이 준용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식약청 관계자 : 황토팩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로 저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금속은 납 비소 수는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몽둥그려서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하는데요. (중략)

▷안○○ PD : 황토팩을 발랐을 때 피부를 통해 중금속이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황토팩을 다 바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습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른 뒤 씻어내기 때문에 잔여물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누를 이용해 꼼꼼히 씻었습니다. 과연 잔여물이 남아있을까? 보기에 는 깨끗하지만 노란황토 잔여물이 남아나옵니다. 모공까지 보인다는 정밀 현미경으로 피부를 살펴봤습니다. 황토를 바르기 전 피부입니다. 팩을 바른 후 세안까지 마쳤지만 모공 주변에는 뭔가 묻어있습니다. 노란 황토분말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분말이 확대해 보니 모공주변에 많이 끼어있습니다. 특히 주름이 패인 곳이나 털이 있는 주변에는 어김 없이 잔여물이 남아있습니다. 피부상태에 따라 황토 잔여물이 남는 양도 달라집니다. 이런 잔여물들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부와 원장 :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모공에 막혀있으면 모공을 자극한다던지 피지분비를 방해한다던지 하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잔여물의 성분에 따라서 그것이 철분이나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PD :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검사결과를 보면 크고 작은 업체에서 생산되는 황토팩은 거의가 납과 비슷한 중금속을 화장품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황토팩은 원료자체가 화장품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채취한 원료에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자들도 인정하다시피 같은 자리에서 황토를 채취한다해도 중금속 함유량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업체들이 채취하는 황토는 우리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저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양질의 황토를 채취해 중금속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비소 납 등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에 발라도 될 정도로 오염이 되지 않은 양질의 황토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식약청은 황토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황토팩을 사용할 때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미세 황토가루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안○○ PD의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내용 중 황토팩이 자석에 덕지덕지 달라붙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금속만큼 해롭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섯가루가 들어있다니 피부에 바르기 찜찜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가루팩들은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황토팩에서 중금속 및 섯가루 검출에 대한 정정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10월 5일자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화장품 허용기준치를 넘는 납, 비소 등이 검출되었으며, 이러한 황토팩 속의 중금속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방송에서 인용한 일반화장

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황토팩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에도 근거없이 임의로 적용하였으며, 설사 이를 적용하더라도 황토팩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화장수, 물 등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황토팩은 일반화장품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방송에서 사용된 중금속시험방법은 화장품법에서 정한 시험방법이 아닌데다 그 시험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기관이어서 실험결과에 신빙성이 문제가 되며, 중금속은 인체의 장벽 역할을 하는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없으며, 특히 황토팩은 약 15분 도포 후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중금속 흡수 가능성이 더욱 없어, 중금속으로 인한 독성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제시하며 피부를 통해 중금속 흡수 위험성을 설명했으나, 사람에 비해 피부흡수율이 현저히 큰 쥐를 실험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동물실험의 기본 전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체내 중금속 증가량 또한 지극히 미미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황토팩에서 중금속 및 설탕가루 검출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10월 5일자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과 관련, (주)참〇〇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기준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일반화장품기준을 자체기준으로 설정하여 품질을 관리하여 왔으며, 정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여 안전한 제품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방송에서 사용된 시험방법은 화장품법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지만, 그 시험방법에 의한 수치에 의하더라도 황토팩의 원래 이용방법에 따라 물·화장수 등과 혼용하여 크림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일반화장품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반론해 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참〇〇

대표이사 박 〇 〇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〇〇

변호사 유 〇 〇, 조 〇 〇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조정대리인 변호사 구 〇 〇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후 10시에 방송하는 KBS-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프로그램의 방영 화면을 매경으로 하여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원 진행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읽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 및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9.

<별 지>

• 제 목 : 황토팩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2007년 10월 5일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고, 쥐를 대상으로 한 중금속 흡수 위험성 실험 결과 황토팩 사용으로 납과 비소가 흡수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황토분쇄 과정에서 설탕가루가 유입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참〇〇은 황토팩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물이나 화장수와 섞어 크림 형태로 사용할 경우, 자사의 황토팩은 일반 화장품 기준인 납 20ppm과 비소 10ppm에 미치지 못하고, 쥐를 대상으로 한 중금속 흡수 위험성에 대한 실험은 쥐가 사람의 피부에 비해 흡수율이

현저히 커 부적합하며, 일반적인 경우 중금속은 사람의 피부를 통하여 직접 흡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토분쇄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된 것이 아니고 천연 황토에 존재하는 산화철광물이 검출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공단의 임원이 평일에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 원 배)

피신청인 : 동아일보

종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법인카드로 평일 골프에 세차까지』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8일자 A14면)

내 용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용한 약 61억 원의 업무추진비에서 평일골프, 단란주점 술값, 극장 티켓 비용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업무 추진비 명세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당기 순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2005년 222억원, 2006년 116억 원) 업무추진비를 이같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 P 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 평일 골프를 즐긴 뒤 회사카드로 117만 9500원을 썼다.

법인카드로 술값을 낸 것은 수십 건. 노사 관련 업무를 다루는 J 씨는 올해 7월 S카페에서 술값으로 70만 원을 결제했다.

일부 임원은 자가운전 보조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도 법인 카드로 주유소를 찾거나 정비소, 세차장 등을 찾았다. 공단 경인본부의 한 간부는 5월 한 세차장에 들러 8만 5,000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후략)

• 제 목 : 근로복지공단 법인카드로 평일골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8일자 사회면에 『법인카드로 평일 골프에 세차까지』라는 제목으로 근로복지공단 임원이 지난해 9월 법인카드로 평일에 골프를 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용인 OO리조트에서 임직원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동아일보 : 『“근로공단 임원 법인카드 골프” 한선교 의원 국감 주장은 오류』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3일자 A8면)

내 용 : 근로복지공단 임원이 지난해 9월 평일에 법인카드로 골프를 쳤다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H리조트 K 부장은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단이 (끊은 영수증이) 골프경기장에서 쓴 것이 아니다. 리조트 안에 콘도와 골프장이 동일사업장으로 돼 있어 콘도에서 사용한 내용도 골프장에서 쓴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7일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공단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 자료에 따르면 카드를 사용한 장소가 ‘골프업종’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보가 10월 18일자 사회면에 보도한 ‘법인카드로 평일 골프에 세차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임원이 평일에 골프를 쳤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산 시멘트에서 유해 중금속인 6가크롬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4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공업협회 (회장 강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1) 『아파트용 ‘쓰레기 시멘트’ 수은 등 중금속 7종 검출』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1일자 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390의 보도내용 참조>

(2) 『아파트에 본격사용 뒤 피부염환자 급증』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1일자 5면)

내 용 : 우리나라 아파트 주민 4명중 1명은 ‘쓰레기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다.

쓰레기 시멘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2001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는 186만 6000가구로 전체 아파트 가구수의 26.7%에 달한다. 이 기간중 19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아토피성 피부염 유병률은 2001년 5.07명에서 2005년 70.08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피부염 환자 수도 1995년 453만 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5년 96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새집증후군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6가크롬을 꼽고 있다. 크롬에 고온이 가해져 생기는 6가크롬은 아토피뿐 아니라 폐암과 위암을 유발하는 맹독성 발암물질로 국산 시멘트에 다량 함유돼 있다. 환경운동가인 최○○ 목사의 의뢰로 ○○대 화학과가 국내 7개사의 시멘트 제품을 분석한 결과 평균 64.6mg/kg의 6가크롬이 검출됐다. (후략)

(3) 『공장 인근 주민들 모발검사서 납 3~4배, 카

드뎀 4~6배 검출』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1일자 5면)

내 용 : (전략) 지난 5월 강원 영월, 충북 단양과 제천 등 시멘트 산지 주민들과 수도권 주민들(비교군)을 대상으로 ○○대 화학과에서 실시한 모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이 수도권 사람들보다 납, 카드뎴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중금속이 최대 20배나 더 검출됐다. 시멘트 산지 주민들은 수도권 지역 주민보다 납은 3.37~4.03배, 카드뎴은 4.2~6.58배, 바륨은 9.4~22배가 더 검출됐다.

시멘트 산지 주민들의 후두암 발생률도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의 ‘영월군 서면 암 발생 및 암 사망 자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 서면 지역의 경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후두암 환자가 같은 기간 전국의 후두암 발생 예상자 수보다 3.48배 더 많았다. (후략)

(4) 『화학시험연서도 확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2일자 1면)

내 용 : 산업폐기물로 만들어진 국내산 시멘트에 맹독성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납, 카드뎴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는 사실(문화일보 10월 11일자 1면 참조)이 산업자원부 유관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실험을 통해 재확인됐다.

12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7개 시멘트 제품과 중국산 시멘트 제품을 비교실험한 결과, 시료로 사용된 중국산 시멘트에서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카드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국내 제품의 경우 7개 모두에서 6가크롬이 검출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시멘트 중금속 인체 유해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11일자 및 12일자, 15일자 등에서 국내산 시멘트에서 6가크롬을 비롯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 화학과 모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산 시멘트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수은과 6가크롬을 비롯해 납, 카드뮴 등의 유해중금속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인 6가크롬은 토양오염대책기준치보다 6배 이상 검출되었고, 시멘트 업체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거래를 금지한 바젤협약을 어기며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지정폐기물보다 높은 석탄재를 수입해오다 검찰에 적발되었으며, 일본은 폐기물 원료의 총 크롬양에 대해 300ppm의 자율기준을 마련, 시멘트 완제품의 6가크롬 농도를 20ppm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업폐기물을 제조원료로 활용하여 생산되는 국내 시멘트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이 암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검증된 연구결과 등이 제시된 바는 없으며,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수치나 용출여부 역시 구체적인 실험대상 및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대 화학과 이○○ 교수팀은 국산 시멘트의 6가크롬 함유여부에 대하여 실험을 한 바 없으며, 시멘트 업체들이 바젤협약을 위반하여 석탄재를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부 시멘트업체가 공장에 석탄재 및 일본에서 수입한 폐타이어를 야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본의 경우 총크롬양을 300ppm 이하로 규율하는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시멘트 중금속 검출 관련 한국○○공업협회 반론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11일자 및 12일자, 15일자 등에서 국내산 시멘트에서 6가크롬을 비롯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공업협회는 첫째, 6가크롬과 아토피성 피부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새집증후군은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원인이기 때문에 무기물질인 시멘트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국산 시멘트가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새집증후군과 관련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둘째, 시멘트 제조원료로 일부의 산업폐기물이 사용된다고 해서 이를 ‘쓰레기 시멘트’로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으로, 시멘트업계는 단순히 쓰레기를 발생된 그대로 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순환자원이므로 결코 ‘쓰레기 시멘트’가 아니며

셋째, 시멘트에도 석회석 등과 같은 천연자원과 마찬가지로 일정량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콘크리트로 경화된 상태에서는 용출되지 않으므로 시멘트의 중금속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넷째, 모 목사가 실시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모발검사 결과는 검사방법, 검사 대상자 및 비교대상군 선정 등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멘트 공장 주변의 주민들이 후두암 발생율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다섯째, 한국화학시험연구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산 및 국산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을 비교하였으나 분석기관과 분석방법이 상이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비교하여 국내산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이 높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여섯째, 석탄재 하역작업시 비산먼지는 조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바다로 분진이 유입되지도 않기 때문에 일부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 돌담에 분진이 굳어있는 것은 현재 가동중인 시멘트 공장과는 무관하며

일곱째, 시멘트 공장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소각시설 기준치보다 높다고 하나 이는 시멘트 제조공정상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일산화탄소 발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중금속 조사결과를 은폐하려한

사실이 없고, 또한 시멘트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했으나 2007년도 상반기 현재 누적손실이 300억 이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반론해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공익적 가치가 있는 보도로 사실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해 사고아동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55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중부일보 : 『초등학생 아파트 엘리베이터 30분 갇혀 ‘공포’』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24일자 6면)

내 용 : 지난 20일 오후 5시께 평택시 비전동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한모(12) 군이 학원에 가기 위해 1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1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30여 분간 안에 갇혀 공포에 떨다 가까스로 구조.

당시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던 한 군은 엘리베이터가 멈춰서자 비상벨을 누르며 구원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다가 한참 후에 “엘리베이터 관리 기사가 곧 올 것이니 기다려라”고 했다고 밝혀.

한 군의 어머니 김모(35) 씨는 “그 날 사고 이후 아이가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무서워한다”며 “30

여 분이 넘도록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도 관리소장이 사과는커녕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초등학생 엘리베이터에 30분 갇혀 공포”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3일자 6면에 『초등학생 엘리베이터에 30분 갇혀 ‘공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과는커녕 책임회피에 급급했으며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 무책임한 말만 늘어났다는 사고 아동의 어머니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고 당시 구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측에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청인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더 이상 어떠한 반론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사위를 산하기관에 취직시켰으며,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강 ○ ○ 외 1인
피신청인 : 대전MBC-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전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0월 17일 21:30)

내 용 : ▷앵커 : 대전시의 한 고위 공무원이 청탁을 통해 자신의 사위를 시 산하기관에 취직시켜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던데 이처럼 은밀한 채용 관행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 4급 공무원 A 씨의 사위 B 씨는 지난 2004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용직으로 특채됐습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평생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위를 찾아가 입사 과정에 대해 묻자,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B 씨 : 장인어른부터 만나 보세요. 찾아 가신다면서요? 그리고 저한테 오세요.

▷기자 : 확인결과 사위 채용에 깊숙이 관여한 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장인인 공무원 A 씨였습니다.

▷A 씨 : 결혼한 사람이 집에서 가만 있고, 놔두느니 임시라도 좋겠다 해서(상수도 사업본부에) 얘기를 해 준거지.

▷기자 : A 씨는 사위를 취직시켜 주기 전에 다른 사람의 취업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략)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0월 18일 21:30)

내 용 : ▷앵커 : 어제 대전시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비리에 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공무원의 부인이 채용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대전시 4급 공무원 A 씨의 부인은 올해 초 30살 김모 씨를 상수도 사업본부 상용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3천 3백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사채까지 얻어 돈을 빌려줬고,

공무원 A 씨에게 이력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김씨 : 아주머니께서 일주일 정도면 최후결과를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출근할지, 안될지도 아니에요. 취업은 100%된거고

▷기자 : 하지만, 김 씨는 아직까지 취직은커녕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 씨는 이력서를 받았지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응답하지는 않았으며 잘못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0월 19일 21:30)

내 용 : ▷앵커 : 대전시 고위 공무원의 채용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위의 특채 취업에다, 공무원 부인의 채용 사기까지, 이것이 가능했던 건 상용직 채용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는 모두 61명의 상용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계량기 교체나 상수도관 수선 등을 하는 직종으로,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가 유지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던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대전시 고위 공무원 부인이 채용 빌미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는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17일, 18일, 19일 「뉴스데스크」 뉴스에서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상용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전시 고위 공무원의 입김으로 2명이 채용되어 이러한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과 채용을 빌미로 공무원 부인이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리는 등 금품까지 오갔으며, 채용 사기까지 가능했던 것 이라고 연속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대전시 공무원은 상용직 1명 채용에만 관여한 바 다른 1명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채용규칙에 따른 노사 협의를 이행치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채용규칙은 없으며 대전광역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노사협의 의무사항도 없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채용을 빌미로 한 금품차용과 채용사기에 대하여는 피해

주장 당사자의 고소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종결한 바 공무원은 혐의가 없어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처리하였고, 그

부인에게는 각각 무혐의로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방문판매업을 위장한 다단계 회사이며, 상조회원과 사업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가맹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상조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시사한국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4.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시사한국 : (1) 『○○상조(주) 작년에도 허위광고 적발, 이번에도 4건의 무더기적발 시정명령, 상습위반』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상조(주)가 기업윤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소비자와 ○○상조 사업자들을 계획적으로 철저히 속이면서 상조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등 42개 대기업과 장례대행서비스 계약체결이 되었다고 허위광고를 하여 상조 회원을 모집하고 사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상조와 지점계약을 맺고 ○○상조 영업을 하다가 작년 타 상조회사로 옮긴 전○○상조 사업자 S 씨에 의하면 2003년 10월부터 ○○상조 홈페이지 첫 메인 화면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장례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명 대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소비자와 예비사업자들을 속여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와 상조사업자들을 끌어 들여 약 1년간 경기 인천을 근거지로 하여 상당한 상조 회원들과 사업자(소호점, 지점, 지사 등)들을 모집하였다.

소호점과 지사를 계약하는데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소멸되는 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사업자들에게 받은 수십억 원의 용처를 ○○상조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물론 각종 단계를 거쳐 보증금을 유치자를 비롯하여 본사임원까지 한 건에 적게는 몇 천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조에 관한 표준 약관과 상조업법이 공정위에 의해 검토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편법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후략)

(2) 『○○상조(주) 본지 취재 결과 사기확인』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상조는 2004년 메인 홈페이지에 올린 아래 도표 자료를 게재 완벽한 행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49개 대기업체와 ○○상조간의 장례대행서비스 및 협력 업체 계약을 했다고 계획적으로 속였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 사원 가족 행사 발생시 또는 회사장으로 장례행사 시 모든 절차와 진행을 ○○상조에서 품격있는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그럴 듯한 내용과 49개 대기업 외에도 협력업체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상조(주)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면 친절히 상담해 드린다는 문구로 철저히 계획적으로 상조 영업자들을 끌어 들여 가맹비를 받아 가로챈 파렴치한 회사다.

(3) 『○○상조(주) 세무조사-노컷뉴스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상조회사의 불법 영업 형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상조회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동울산 세무서는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H상

조회사에 대해 영업원들이 내는 가맹비의 부과세 등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울산 세무서 관계자는 H상조 피해자 대책회의 소속인 손모 씨(인천시 남동구)가 제보한 탈루 제보에 대한 지난달 19일자 회신에서 “국세탈루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과를 회신 하겠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상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7월 6일자, 8월 11일자, 8월 20일자 등 6차례에 걸쳐 (주)○○상조에 관해 보도하면서 ○○상조가 유명대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여 상조회원들과 사업자들을 모집하였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 예비사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수십억 원의 가맹가입비를 챙겼고, 상조영업자들에게 사기행위를 하였으며, 계약한 후 공갈·협박으로 형사고발을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조가 다단계 회사이면서 방문판매업으로 위장한 사기회사이며, ○○상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인 모 씨가 수당 지급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상조는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상조

대표이사 박 ○ ○

조정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시사한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6

대표이사 김 호 승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한국> 종합뉴스 면에 상자기사로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31.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대부분의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강제입원과 가혹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 영 조)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후」 프로그램 (2007년 9월 1일 22:25)

내 용 : ▷진행 :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에 갇힐 수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하여 부모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습니다. 불륜을 숨기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정신병원에 배우자를 감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자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갇히면 혼자 힘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한 건 현행 정신보건법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중략)

▷해설자 : 의사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 있는 지 취재진은 직접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개인병원입니다. 요즘 좀 우울해서 왔다고 하자 간단한 문진 끝에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전까지 내줍니다.

▷S의원 : 축축 처지잖아요. 그 자체가 우울증이지...

▷해설자 : 알콜중독 전문의라는 다른 병원에서는 알콜중독이 의심된다고 치료 받으라고 권합니다.

▷H병원 : 술을 중단하는 길은 어차피 입원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M의원 : 뭐, 해당되는 문제는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해설자 : 한사람을 놓고 제각각으로 나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때는 단 한명의 의사 진단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도 보호자가 데려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로 되는겁니다. (중략)

▷해설자 :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눈이 풀리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침을 흘리고 목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더 큰 부작용은 장기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지발성 운동장애입니다. 얼굴이나 혀, 손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지발성 운동장애는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병입니다.

▷권모 교수 : (지발성운동장애) 그건 한번 나타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치명적이죠.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알면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정신과의사가 소송을 당한다고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약을 왜 사용하느냐고...

▷해설자 : 의학이 발달하면서 90년대 이후 이런 부작용들을 크게 개선한 약들이 많이 나왔지만, 정신병원에서는 여전히 옛날 약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가지.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 전통적인 약물이 30원, 40원 하면 그건 2천 원, 3천 원 하는 그 정도의 차이거나요. 100배 차이가 나는 약이거든요

▷해설자 : 현재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 10명 중 8명은 정부에서 치료비를 대주는 '의료급여환자'입니다. 어떤 약을 쓰든, 어떤 밥을 주든 정부에서는 환자 한 사람당 한 달에 9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으로선 굳이 비싼 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권모 교수 : 개인 병원의 의사들은 비싼 약을 쓰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 환자한테 정말 필요한데도 약을 쓰면 그런 환자들이 많아지면 1인당 사용하는 그 약값이 높아질거 아닙니까

▷해설자 : 하지만 사실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는 병원 운영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협회 관계자 :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한 3억의 60%면 1억 8천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게 되고 또 일부는 약물 치료비, 또 일부 전기세, 관리비, 또 식대 포함하면 거의 정상적인 운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해설자 : 하지만 정신병원 숫자는 최근 2년새 100곳 이상 늘었고, 병상 수도 10,000개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운영하기조차 힘들다는데 정신병원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정신병원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9월 1일자 정신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뉴스후」 프로그램과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일부 정신과 의료기관과 시설등급이송단체의 문제점이 마치 전체 정신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보도되는데 유감을 표하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가짜 환자를 내세워 3개의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한 후 각각 다른 진단결과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진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제공하는 병력 정보가 일관되어야 하나, 이러한 전제 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의사마다 진단이 달랐으며,

서울대 권모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개인병원 정신과에서는 ‘지연성 운동장애’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음에도 값 싼 ‘클로로프로마진’, ‘할로페리돌’이라는 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편집하여 보도한 것과 관련해 권모 교수의 당초 인터뷰 취지는 “비정형항정신병약물은 진료수가가 높다는 이유로

약물치료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개인병원의 입장에서는 진료수가를 낮추기 위한 보건당국의 의학외적인 부당한 제약을 해결해 주어야만 온전히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적절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의로 편집해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으며, 병원운영이 힘든데도 정신병원은 그 수가 최근 2년간 100곳 이상 늘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 2년 사이 증가한 정신보건의료기관은 50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론해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환차익 등을 미끼로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인스티튜트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 『법원서 영장 기각 뒤 날개 단 ‘환차익 사기’』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4일자 12면)

내 용 : (전략)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8월 초 “투자를 하면 외환거래에서 얻는 환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전국 2,000여 명의 투자자들로 부터 613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사설 투자회사 ○사를 적발,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략)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사는 최근까지 서울은

물론 대전, 광주 등지의 지방 대도시에서 잇달아 투자설명회를 열고 불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말 대전에서 연 투자설명회에서 ○사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서류를 보여주며 “우리가 불법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죄가 있다면 영장이 기각됐겠느냐”라며 참석자들을 안심시켰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B 씨는 이에 현혹돼 6,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는 친구에게도 “고수익 보장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투자를 권유해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만들었다.

○사는 환차익 외에도 은행인수, 부동산투자, 선물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투자미끼’를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는 최근 구로동 본사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선물거래를 하는 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8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광주 광역시에 사는 B 씨도 “최근 광주 설명회에 가봤더니 저축은행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투자를 권유하더라”라고 전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 유사수신 관련 보도 정정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10월 4일자 12면 『법원서 영장기각 뒤 날개 단 ‘환차익 사기’』 제하의 기사에서 불법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적발됐던 모 사설투자회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를 ‘면죄부’처럼 활용, 더욱 활발하게 투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

은행인수, 부동산 투자, 선물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투자미끼를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대로 가다간 피해액이 얼마가 될 지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였습

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은 기사 제목처럼 ‘사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의 유사수신 행위를 ‘사기’라고 쓴 부분은 잘못이며, 또 ○사의 저축은행 인수 등의 사업 확대를 ‘투자미끼’라는 용어를 사용해 평가 절하한 것으로, ○사의 저축은행 인수 등은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이 밝혀졌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
다. □

신청인 보건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취소한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양산시 보건소 (소장 조 현 둘)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4.

처리결과 : 합 의

모두 6건이었다. (중략)

전 의원에 따르면 경남을 포함해 전국 62개 보건소에서 ‘가짜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지도해야 할 보건소가 앞장서 효능을 신뢰할 수 없는 ‘가짜약’을 처방, 국민건강을 위협해온 셈이다. (후략)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보건소가 가짜약 처방』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6일자 5면)

내 용 : 경남지역 일부 보건소가 효능실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복제약품(제네릭)을 처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보건소를 비롯해 진주시·거제시 보건소 등 3곳은 지난해 9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에서 약효시험 데이터 조작으로 회수·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의약품 중 일부를 처방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중략)

도내 일부 보건소가 회수·폐기하도록 한 이들 ‘가짜 약’을 처방한 횟수는 양산시 보건소 3건을 비롯해 진주시 보건소 2건, 거제시 보건소 1건 등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16일자 5면 『보건소가 가짜약 처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양산시 보건소를 비롯해 진주시·거제시 보건소 등 3곳은 지난해 9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서 약효시험 데이터 조작으로 회수·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의약품 중 일부를 처방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양산시 보건소는 가짜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이 적법하게 처방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15일자 5면에서 <보건소가 가짜약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양산시 보건소가 지난해 9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서 약효시험 데이터 조작으로 회수·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의약품중 일부를 처방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산시 보건소는 허가 취소된 가짜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이 적법하게 처방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7년 11월 1일자 5면에 상자기

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폐기명령 받은...)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급식업체가 실체없는 유명회사이며 학교 측과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양산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4.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양산신문 : 『급식 식자재 납품 ... 유명업체 ‘활개’』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3일자 1면)

내 용 : 학교급식 식자재의 원거리 납품(본지 9월 19일자 1면 보도)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통업체들이 유명사무실을 두는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해 ○○지역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학교 측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만이라도 제대로 실시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유통업체와 학교 측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들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학교급식 입찰참여 자격이 경남도 내에 소재하는 유통업체로 제한되자 일부 ○○, ○○의 유통업체들이 사업자등록만

해 놓고 실제 납품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 ○○의 유통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8일 본지 취재진이 ○○지역 5개 학교(○○고, ○○중, ○○초, ○○초, ○○초)에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다는 ○○시 △△면 □□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K유통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한 결과 예상대로 유통업체 사무실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유통사무실’이었다. (중략)

사무실 어디를 찾아봐도 해당 유통업체의 상호를 찾아볼 수 없었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는 물론 사업자등록증까지 비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중략)

특히 여러 가지 사무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여직원이 급히 연락을 취했는지 ○○의 W유통관계자가 본지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와 해명을 늘어놓기도 했으며, 그 결과 김해시 K유통과 W유통의 대표가 부부사이로 모든 납품 등의 모든 업무는 ○○의 W유통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W유통이 ○○지역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시에 주소만 등록된 사무실도 없는 유명회사를 만든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3일자 1면 『급식 식자재 납품

유령업체 활개』제하의 기사에서 ○○시 △△면 □□리 소재 K식품이 유령업체이며, 학교 측과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업체는 경남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적법하게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와 학교 측의 유착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3일자 1면에 “급식 식자재 납품 유령업체 활개”란 제목으로 ○○시 △△면 □□리 소재 K식품이 유령업체이며, 학교 측과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업체는 주 사무소를 ○

○에 두고 경남지역 급식입찰을 위해 사업자등록상 영업소를 ○○시 △△면 □□리에 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교 측과의 유착의혹은 밝혀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정정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의 조정결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게재하는 것임을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양산신문 2007년 11월 7일자(제263호)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이전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K유통, ○○지역…)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동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본 건의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양산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7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고양시의 과잉 단속 때문에 노점상 상인이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양시 (시장 강 현 석)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향신문 : 『과잉단속에 목숨끊은 ‘붕어빵 노점상’』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7일자 9면)
내 용 : 10년간 노점에서 붕어빵을 팔며 근근이 살아가던 40대 가장이 거둬드는 노점 단속에 좌절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1일 경기 고양시에서 아내와 함께 노점상을 운영하던 이○○ 씨(48)가 노점상 단속반에 의해

노점 집기가 부숴지고 폭행까지 당한 후 다음날인 12일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숨진 이 씨는 외환위기 때 다니던 회사가 망해 실직한 후 10여 년 전부터 고양시 서구청 앞 주엽역 인근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해왔다. 이 씨는 붕어빵을 팔고 부인은 옆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팔았다. 변변치 않은 수입이었지만 안 먹고 안 쓰며 남편을 대학까지 보냈다. 아내 이○○ 씨(48)가 폐종양으로 투병생활을 했지만 이 씨가 노점, 막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갔다.

그러나 고양시가 지난해말 노점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씨에게 먹구름이 몰려왔다. 4월부터는 노점상 철거가 시작됐고 이 씨 부부는 노점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맞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단속에 쫓기느라 하루 수입은 3만여 원으로 줄어 아내 이 씨는 병원에도 다니지 못했다.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던 11일 오후 2시쯤에도 이

씨 부부는 여느 때처럼 음식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이른바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쳤다. 검은 모자·조끼에 군화까지 착용한 20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몰려들어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집어던졌다. 이때 이 씨 부부와 이곳 노점상들은 밟히고 내동댕이쳐져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용역직원들은 이들 부부의 생명줄과 같은 가판대마저 끌고 가버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양시 노점상 단속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경향신문은 지난 2007년 10월 17일자 9면 『과잉단속에 목숨 끊은 ‘붕어빵 노점상’』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경기 고양시에서 아내와 함께 노점상을 운영하던 이○○ 씨(48)가 노점상 단속반에 의해 노점 집기가 부셔지고 폭행까지 당했으며, 11일 오후 2시쯤에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쳐 이 씨 부부와 노점상들이 밟히고 내동댕이쳐져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용역직원들이 부부의 생명줄과 같은 가판대를 끌고 가버렸다”라고 보도해 마치 노점상 과잉단속으로 인해 이○○ 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자살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고양시에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지역은 주엽역, 마두역, 화정역 등 역세권과 중앙로 등 대로변이며, 이○○ 씨 부인이 노점영업을 하던 장소는 중앙로에서 약 750m 떨어진 문화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전용 도로로서 노점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며,

실제 단속이 이루어졌던 11일에는 이○○ 씨는 단속현장에 있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이○○ 씨 부인의 노점은 한번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씨 부부가 용역반에 의해 폭행을 당해 노점집기가 부서지고, 이에 맞서 부부가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는 내용과 용역원들이 몰려들어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집어던졌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5일자 2면)

내 용 : 경향신문 2007년 10월 17일자 9면 ‘과잉단속에 목숨 끊은 붕어빵 노점상’ 기사중 숨진 이 씨 부부가 노점상 단속이 있던 11일 원래 장사하던 자리에서 단속반원에 의해 폭행당하거나 가판대를 압수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미국 모 대학교 언론대학원 연수 경력을 ‘수료’라고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0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민 병 두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외국 대학과 웃기만 스쳐도 “경력”』 제

하의 기사 (2007년 9월 19일자 5면)

내 용 : (전략) 대통합민주신당 민병두(49·비례대표) 대표의원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언론대학원 수료’로, 국회수첩(2005)에는 ‘경기도, 성균관대, 미 시러큐스대 언론대학원’이라고 적고 있다.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민 의원은 1996년 8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정식입학허가 없이 연수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시러큐스대학을 수료했다고 외부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국회 홈페이지에 ‘수료’라고 표시된 것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국회사무처 입법 정보화 담당관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7년 9월 19일자 『외국 대학과 옷깃만 스쳐도 “경력”』 제하의 기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민병두 의원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민병두 의원은 시러큐스대학 언론대학원에서 2학기 동안 연수를 받았으며, 의정활동 기간, 민병두 의원 개인 홈페이지, 싸이월드 미니홈피, 의정보고서, 17대 국회 개원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이력서, 17대 국회의원 입후보시 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서, 각년도 국회수첩 등 본인 책임으로 관리하는 모든 자료에는 “시러큐스대 연수”로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민병두 의원의 2004년 국회수첩, 2005년 국회수첩을 비롯한 모든 국회수첩에 ‘시러큐스대 언론대학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시러큐스대 언론대학원을 ‘수료’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뺄기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홈페이지에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언론대학원 수료”라고 한동안 표기되어 있던 것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수료’라는 표현이 잘못 들어간 것일 뿐, 국회의원이 제출한 것을 고스란히 옮긴 것이라든가 사무처 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객원연구원으로 단기간 강의를 듣고도 마치 ‘수료’ 또는 ‘객

원 교수’로 표기해 혼동을 주고 있으며 대학 학적부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 객원연구원으로 졸업이나 수료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보도 역시 민병두 의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삼성언론재단과 미국의 국제교육연구소가 시러큐스대학교 언론대학원에 공식적으로 개설한 1년 과정의 ‘전문기자 코스’를 충실히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민병두의원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 학력 검증 기사와 관련해 민병두 민주신당 의원은 96년 미 시러큐스대 언론대학원에 공식 개설된 1년 과정의 ‘전문기자 코스’를 이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11월 14일까지 서울신문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서울신문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협회가 소명절차없이 회원들을 제명조치했으며, 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요청 동의서가 접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한○○○○협회 경기도회

(회장 표 ○ ○)

피신청인 : 수도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수도일보 : (1) 『○○협, ‘신선한 바람’ 예고』 제하

의 기사 (2007년 10월 17일자 1면)

내 용 : 고소, 고발, 진정 등의 내환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협회(이하 ○○협) 경기도회(회장 표○○)에 신선한 바람이 일고 있다. (중략)

○○사모회는 ○○협·경기도회 산하 16개 시·군협의회가 자체 결성한 '경기도 ○○○○을 사랑하는 모임 추진위원회'의 약칭으로 경기도 5,000여 회원사의 권익 신장과 여전히 구태의연한 도회 및 도회장 독단과 이에 따른 파행운영의 견제수단으로 결성된 자생모임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회는 지난달 6일 ○○사모회의 구성 및 설문조사를 이적행위로 판단, 운영위원회결의로 ○○사모회 공동준비위원장인 경기 광주시 협의회장 P모 씨 등 3명을 소명절차없이 제명조치한 상태로, 이 문제는 현재 ○○협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2) 『○○협 경기도회 '신선한 바람'』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7일자 2면)

내 용 : (전략) 이 중 약 5,000여 업체를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는 경기도회는 2007년 세출예산이 34억 3,657만 원에 달하는 중견단체로, 최근 부정선거, 회장의 독단, 무원칙 예산적용 등의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회장불신임 임시총회 요청동의서'가 재적회원 1/3을 초과 접수됨에 따라 초유의 회장불신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등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후략)

(3) 『○○협 회비 '물 쓰듯 펄펄'』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3일자 사회면)

내 용 : <속보>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얼룩진 대한○○○○협회 경기도회(회장 표○○)에 신선한 바람이 일고 있으나 관련, 도회장의 불법예산 전·남용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투명한 협회운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최근 만난 노회 고위관계자 H모 씨는 "건설경기 침체로 입찰을 전혀 받지 못한 회원사가 50%~60%에 달하는 등 약 70%이상의 회원사가 년 1~2억에도 못 미치는 공사수주에 허덕이는 영세사업자라"면서 "누구보다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할 회장이 5천여 회원사들의 피 같은 예산을 물

쓰듯이 펄펄 쓰고 있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협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수도권보는 지난 10월 6일자 사회면에 대한○○○○협회 경기도회 관련 기사에서 운영위원회 결의로 ○○사모회 공동준비위원장인 경기 광주시협의회장 P모 씨 등 3명을 소명절차없이 제명조치한 상태라고 보도하였으나, 대한○○○○협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회원의 징계심의를 요청한 절차만 이행한 것일 뿐 제명조치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최근 부정선거, 회장의 독단, 무원칙 예산전용 등의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회장불신임 임시총회 요청 동의서'가 재적회원 1/3을 초과 접수됨에 따라라고 보도하였으나, 일부회원의 진정에 대하여 대한○○○○협회 중앙회 감사와 조사결과 협회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지어진 사안이었으며, 동의서 또한 일부회원들이 몇몇 회원들에게 직접 징수한 것을, 마치 전체회원의 1/3이 회장불신임에 동의한 것처럼 부풀려 표현하는 등 협회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으로 잘못 보도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표○○ 회장 이하 임직원들의 권한을 중지시키고, 의법조치할 것을 건교부와 ○○협에 진정, 지난 7월 12일부터 수원지검 형사 1부 345(이○○ 검사)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와 관련해 ○○협에 지난 5월 일부회원이 진정한 것은 사실이나 중앙회 조사결과 진정한 내용의 대부분이 협회규정상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지난 6월 진정인들에게 통보하였으며, 건교부에는 동 기사와 달리 진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표○○ 회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건은 지난해 선거기간 중 전임 P 회장과 측근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 또한 지난 10월 11일에 검찰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 받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본지는 최근 본지와 만난 경기도회 고위관계자 H모 씨는 ○○사모회 제명사건과 관련해 도

회간부로서 심히 부끄럽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이 또한 대한○○○○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H모 씨는 전임 임원이었을 뿐, 현 집행부의 임원이 아니며 지난해 회장경선시 현 회장에게 패배한 전임회장의 측근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도회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예산을 전·남용을 일삼는 듯한 내용을 보도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17일자 1면 『○○협 ‘신선한 바람’ 예고』, 10월 23일 『○○협 회비 물 쓰듯 평평』 각각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결과, 경기도회 측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사모회 공동위원장등 3명을 소명절차 없이 제명한 것이 아니라,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회원의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재적회원 1/3의 회장 불신임 및 임시총회 요청 동의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표 회장은 협회 운영과 관련 검찰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명예훼손과 관련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10월 11일 혐의없음으로 처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경기도회가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불법으로 전, 남용했다는 보도와 관련 중앙회 감사와 조사결과 협회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수도일보 2007년 11월 12일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고소·고발에서 도회장 불신임 임시총회까지)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이 건과 관련 어떠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수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환경관리공단의 한강수계사업 관리·감독이 엉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손 주 석)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9월 26일 21:30)

내 용 : >앵커 : 한강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 하수도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재를 쓰지 않는가 하면 관리 감독도 엉망입니다. 오○○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의 한 하천. 한강 상수원인 팔당호에서 가까운 이곳은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이 4년째 하수도 공사를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오수가 새는 걸 막기 위해 관과 관 사이에 이음새를 넣고 유리섬유와 접착제를 바르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콘크리트관과 이음새 사이가 제대로 시공된 곳과 차이가 납니다. 이음새에 접착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업체 관계자 : 유리섬유만(접착제)을 바르면(공간이)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안 뜰 수가 없어요. 카메라로 봤을 때 분명히 보여요.

▷기자 : 또 다른 하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이 하수도관도 사실상 공사가 끝난 상태. 이번엔 직접 들어가 살펴봤습니다. 문제의 하수도 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음새가 떨어져 있어 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음새 사이에는 수지 등의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야 하는데 고무 패킹으로만 때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수도관 공사에서 이음새가 허술하게 마감된 곳은 남양주 일대에서 확인된 곳만 3군데. (중략)

▷기자 : 뒤늦게 발견한 공단 측은 CCTV로 확인해 보수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태연합니다.

▷공단 관계자 : (저희가 발견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CCTV를 집어넣고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감독이 안됐다고 해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발견했겠죠.

▷기자 : 하지만 이런 검사도 조작까지 가능해 눈가리고 아웅격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강수계 사업 부실시공 및 관리감독 엉망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26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하수관 이음새 부분에 오수가 새는 걸 막기 위해 접착제와 유리섬유를 시공하여야 하나 이를 미 실시하였고 접착제 없이 고무패킹만으로 때웠으며, 고무패킹과 관련해, 환경관리공단 책임자가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됐다고 해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발

견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보도된 장소를 포함하여 시공완료 구간 중 관 이음새의 접착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50개소에 대하여 굴착확인결과, 공사설계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접착제와 유리섬유가 시공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환경관리공단 책임자라고 인터뷰한 사람은 환경관리공단 직원이 아닌 시공사 직원이므로 한강수계 사업 부실시공 및 관리 감독이 엉망이라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 대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아 래-

저희 KBS보도본부는 지난 9월 26일 KBS-TV 〈뉴스9〉, 〈뉴스라인〉과 익일 〈뉴스930〉 등을 통해 방송한 오○○ 기자(사회팀)의 「एं터리 한강수계 사업」 제하의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공단 측에 심적, 물질 피해를 드려 유감으로 생각하며 귀 공단의 정책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기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사과〉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목적고의 특성화고 재지정 여부 결정 방안을 당분간 유보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서울신문

증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9.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특목고, 일반고 전환 유보』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5일자 11면)

내 용 :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해 주기적으로 평가한 뒤 재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지금까지 시·도 교육청에서 특목고를 신설할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략)

교육부가 이처럼 방향을 바꾼 것은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청와대에서 교육개발원의 제안을 지지했지만 변양균 전 정책실장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당분간 유보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특목고 개선 대책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특목고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정부 대책에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특목고, 일반고 전환 유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5일자 11면 『특목고, 일반고 전환 유보』 제하의 기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해 주기적으로 평가한 뒤 재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고, 본 방향 설정에는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특목고의 재지정·해제 방안을 유보한 사실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지 2007년 10월 25일자 11면 『특목고 일반고 전환 유보』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는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려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한 후 이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뒤 재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고,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특목고의 재지정·해제 방안을 유보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11월 23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서울신문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2008년부터 12개 광역시·도에 외국어고 신설이 금지되고,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국어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을 해지할 방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외국어고 있는 12개 광역시·도 내년
부터 외고 신설 금지』 제하의 기사 (2007
년 10월 24일자 1면)

내 용 : 내년부터 서울·경기·부산을 포함한 외
국어고(외고)가 있는 12개 광역시·도에는 외고
신설이 금지된다. 외고가 없는 울산·광주·강원·
충남 등 4개 광역시·도에는 설립을 허용할 방침
이다. 다만 외고가 한 개 있지만 2009년 3월 개교
를 목표로 학교 건물 설계까지 마친 인천 지역은
한 번만 예외를 둘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
자치 확대를 위해 2001년 시·도 교육감 자율로
넘겼던 ‘학교 설립 인가권’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외고는 29개다. 경기도가 9개
로 가장 많고, 서울 6개, 부산 3개, 경남·충북 2개,
나머지 지역은 한 개씩이다. (중략)

외고 신설 금지와 함께 기존 학교에 대한 제제
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과
반을 신설하는 외고는 특목고 지정을 해지할 방
침이다.(기존 반은 경고조치). 교육부는 외고 2, 3
학년생 1만 5000여 명 중 6.4%(980여 명) 정도가
이과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외국어고 있는 12개 광역시·도 내년
부터 외고 신설 금지」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2007년 10월 24일자 1면 『외국어
고 있는 12개 광역시·도 내년부터 외고 신설 금
지』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서울·경기·부산
을 포함한 외국어고(외고)가 있는 12개 광역시·
도에는 외고 신설이 금지되며, 다만 외고가 있지만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건물 설계까지 마
친 인천지역은 한 번만 예외를 둘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사실이 아
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과반을 신
설하는 외고는 특목고 지정을 해지할 방침이다라
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며, 다만 교육인적자원부
는 외고 신설 협의 문제나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
영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확정
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외고 폐지 여부 다음 정권에』 제하의 기
사 (2007년 10월 30일자 2면)

내 용 : 서울·경기를 포함한 현재 외국어고(외
고)가 있는 12개 시·도와 곧 신설예정인 충남에
는 외고 신설이 당분간 금지된다. 교육부가 외고가
없는 강원·광주·울산에만 외고 설립을 위한 협
의우선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2년 외
고를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은
유보했다. 이에 따라 외고 폐지 여부는 다음 정권
의 결정에 맡겨진다.

이와 함께 현재 중2가 고교에 들어가는 2009학년
도 입시부터 외고의 입시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전
공하려는 언어와 관계가 없거나 고교 수준의 선행
학습이 필요한 구술·면접 고사는 제한된다. 과학
고도 수학·과학 성적 중심으로 뽑고, 경시대회 성
적을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특목고를
포함한 고교 운영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성○○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정권이 바뀌기 전인)
내년 2월까지 특목고 입시 전형을 손질하겠다”며
“내년 6월까지 외고 신설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 과장은 또 “외대 준비반을 설치하거나
자연계 과정을 운영하는 외고는 특목고 지정을 취
소할 방침”이라며 “내년 2월까지 취소 기준을 만
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할 것인지, 외고로 유지하되 관리·감독을 강
화할지는 내년 6월까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고 존폐 여부는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후략) □

신청인이 사유지를 무단점용했다며 모 대학 측에 거액의 사용료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성대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9.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성대신문 : 『중문 옆 주차장 반으로 나뉜 사연』 제
하의 기사 (2007년 9월 17일자 7면)

내 용 : 부동산 용어 중 일명 ‘알박기’라는 단
어가 있다.

이는 재개발 예정지역의 중요한 지점의 땅을 미
리 조금 사놓고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지칭한다.

현재 우리학교 주변에 ‘알박기’와 유사한 행위가
사행되고 있다.

지난 방학 중문 옆 주차장에 검은색 장막이 설치
됐다. 학교 측 설명에 의하면 “T”자 모양의 그 땅
은 대전 모 대학의 명예퇴직 교수의 사유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최근 알게 된 교수가 자신
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 한다.

시설지원팀의 관계자는 “학교 앞 우체국 뒤 주차
장 중 총 53평이 사유지이며, 그 중 검은색 장막 쳐
진 땅은 약 30평 정도”라고 설명했다. 우리학교는
그 땅을 매입을 시도했으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
로 구입을 포기한 상태이다. 학교는 “시세로 평당
200만 원도 채 안되는 땅을 소유자가 요구한 10억
이상의 금액에 살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학교는 현재 이 문제로 해당 도로 소유자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법인사무국) 사
무국장은 “중문 근처의 학교소유땅(도로)으로는
우체국 건물과 외국인 교수의 주거지 그리고 고시
반 건물이 있다. 해서 해당 소로의 사용을 요구했
다. 결국, 이 문제로 토지 주인과 재판을 벌였지만,

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수는 재판이
직후, 자신이 소유한 땅에 검은색 장막을 쳤다.”며
정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자
주 오가는 도로이니 장막을 철폐해 달라’며 교수와
의 2차 재판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교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땅을 학생들이
무단으로 이용했으니 지금까지의 도로 사용료를 지
불하라”며 또 다른 재판소송을 걸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중문 옆 주차장 반으로 나뉜 사연” 관
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7일자 기획면에 『중
문 옆 주차장 반으로 나뉜 사연』 제하의 기사에서
땅주인이 ‘알박기’ 형태의 땅을 이용, 학교 측에
거액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알박기’는 부동산 용어로
부도덕한 뉘앙스를 지닌 것으로, 사실은 땅주인 박
모 씨는 모 대학 측과 소송을 통해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대학 측이 토지 소유자인
박모 시에게 토지를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한 바
적법하게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개발업자
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파는 ‘알박기’ 땅이 아님
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박모 씨는 모 대학관계자와
만나 학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
으로 12억 원의 사용료를 학교 측에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중문 옆 주차장 토지 관련 정정 및 반론

•내 용 : 본지 9월 17일자 「중문 옆 주차장 반으로 나뉜 사연」 기사에서 중문 옆 주차장 부지 소유자인 대전 모 대학 명예퇴직 교수가 학생들의 무단 이용을 이유로 도로 사용료 지불을 구하는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교수는 정년퇴직한 것이고, 위 소송은 학생들의 도로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이 아니라 학교 측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무단 사용한 데 대한 지료 청구소송임을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는 매매가액으로 12억을 요구한 적이 없고, 해당토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박기’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11월 30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성대신문> 기획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의 제목(“중문옆 주차장 반으로 나뉜 사연”)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성대신문 : 『중문 옆 주차장 토지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9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가 조합을 사칭한 비대위의 주도하에 이뤄진 불법행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경상남도○○○○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 ○ ○)

피신청인 : 교통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30.

처리결과 : 취 하

임시총회 개최건으로 통보된 공문은 본 조합에서 발송한 공문이 아니라 조합을 사칭해 발송된 허위 공문으로, 이를 통해 개최된 임시총회는 불법단체(비조합원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조합을 검거, 저지른 것으로 본 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경남○○○○조합임시총회는 불법행위 보도에 대한 반론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25일자 전국면에 『“경남○○○○조합 임총은 불법”』라는 제목으로 경남○○○○조합의 임시총회가 불법행위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경남○○○○조합의 임시총회는 제적조합원 101명 중 66명이 참석하여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모든 사항이 결의되어 임원진의 등기가 완료되어 정상적인 조합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김○○ 씨가 주장

보도내용

교통신문 : 『“경남○○조합 임총은 불법”』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5일자 전국면)

내 용 : 김○○ 경남○○○○조합 이사장이 지난 16일자로 도내 조합원사 대표들에게 서한문을 발송, 지난 10월 15일 비대위가 개최한 임시총회는 불법단체가 저지른 행위임으로 조합정관에 맞지 않아 총회를 보이콧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이사장의 명의로 된 서한문에 따르면, 2007년

하는 불법단체는 없으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성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업무

집행의 결의를 한 바,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고 밝혀왔습니다. □

불법대출 관련 보도를 하면서 대출신청서에 적힌 대출담당자인 신청인의 실명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Y T N : 「YTN24」 프로그램 (2007년 10월 18일 17:58)
내 용 : ▷앵커 :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직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20억 원의 은행 신용대출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자신들의 다단계 영업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경찰에 붙잡힌 전도 씨 일당이 인터넷 포털에 띄운 대출 알선 광고입니다.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손쉽게 은행 신용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고객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직자들.

전 씨 일당은 이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영수증을 위조해 무직자들을 연봉 5천만 원의 버젓한 직장인으로 둔갑시킨 뒤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해당 기업에는 미리 자신들과 공모한 사람을 파견해 놓고 은행의 전화 확인에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네 다섯배 많은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대출신청서 사진 클로즈업〉

대출 한도금액이 은행 연합회 전산망에 사흘 늦게 뜬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YTN은 지난 10월 30일 「YTN24」뉴스에서 은행의 불법신용대출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대출신청자 정보는 모두 가렸으나 대출신청서 상단에 대출담당직원인 본인의 이름을 공개해 마치 불법대출해준 영업사원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기라는 이유로 납품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지관 (대표이사 홍 ○ ○)
피신청인 : CNB저널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3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CNB저널 : 『포○○ 기준미달 2년째 납품, 업체대표

노 대통령 후원 고교동기』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6일 사회면)

내 용 : 포〇〇가 입찰기준에 미달하고도 우수협력업체 대신 합격해 2년째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다름 아닌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대선까지 선거운동을 했던 부산상고 동기동창 회장을 지낸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CNB NEWS가 시사종합지로 발행하는 CNB저널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대로 포〇〇가 불공정한 입찰과 철강수요업체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당하면서도 2년째 삼〇〇〇을 납품업체로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이 업체 대표는 동문회 간부로 재직하며 노 대통령이 민주당 국민경선에 후보로 나섰을 때 후원금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다음달 초 발매예정인 CNB저널에 따르면 포〇〇〇〇제철소는 지난 2005년 12월 종이슬리브(대롱) 경쟁입찰에서 입찰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해 (주)〇〇을 탈락시키고 삼〇〇〇을 합격시켰다.

종이슬리브는 개당 2만 5000원으로 월평균 1만 5000개씩 3억 7500만 원 정도씩 납품되고 있다. 연간으로 40여억 원어치에 이른다.

삼〇〇〇 대표인 홍〇〇 씨는 노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이다. 홍 씨는 특히 부산상고 〇〇회 졸업생으로 노 대통령과는 동기동창이며 동창회 회장으로 지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포〇〇 기준미달 2년째 납품”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기사는 지난 10월 26일 『포〇〇 기준미달 2년째 납품, 업체대표 노 대통령 후원 고교동기』라는 제목으로 포〇〇는 지난 2005년 12월 종이슬리브(대롱) 경쟁입찰에서 입찰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해 (주)〇〇을 탈락시키고 삼〇〇〇을 합격시켰다고 보도하였고, 삼〇〇〇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기라는 점을 부각하여 포〇〇가 불공정한 입찰과 막대한 특혜를 부여하여 월평균 3억 5000만 원 정도씩 연간 40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삼

〇〇〇은 2005년 12월 포〇〇 냉연강관용 종이슬리브에 대한 전자입찰 및 납품과정, 납품가격 적정성, 제조공정에 대해서 투명하였으며, 2006년 공정관리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도 아무런 의혹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삼〇〇〇이 포〇〇에 납품하는 냉연강관용 종이슬리브는 월 평균 7천만 원이고 연간 8억 5천만 원 정도로 보도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제 목 : 삼〇〇〇, “입찰기준 미달에도 납품특혜” 관련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6일자 “포〇〇 기준미달 2년째 납품, 업체 대표 노 대통령 후원 고교동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〇〇〇이 포〇〇의 입찰기준에 미달되는데도 회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기이기 때문에 2년째 년 40여억 원을 납품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〇〇〇(대표이사 홍〇〇)은 “냉연강관용 종이슬리브에 대한 전자입찰 및 납품과정, 납품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2006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포〇〇에 연간 납품액도 8억 5천만 원 정도이며, 대표가 노 대통령의 고교동기라는 사실과 포〇〇 납품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CNB저널> 2007년 11월 13일자 1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CNB NEWS> 메인화면 톱기사란의 일곱 번째 기사로 2007년 11월 8일 09시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한다. 위 보도문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포〇〇〇 입찰기준)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위 보도문을 링크시켜, 조정대상 기사를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샐러드드레싱이 칼로리가 높다고 보도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7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31.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합의)

• 제 목 : “뉴스와 생활경제” 보도의 초상권 침해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8일자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에 샐러드드레싱이 자장면 한 그릇과 맛먹는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어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보도내용

SBS-TV :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 (2007년 10월 8일 10:40)
내 용 :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담고 있는 모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중재합의

양 당사자간 본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 <2007서울중재12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신청인의 보직임용에 대해 잡음이 일고 있으며 조직관리
역량부족이 우려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31.
처리결과 : 합 의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31일자 14면)
내 용 : “티피엔 전진뿐이다.” “티피엔 후퇴란 없다.”

○○테크노파크(티피)의 직원들이 전○원장의 ‘전횡’을 두고 하는 자조적인 표현이다. ‘산·학·연·관 지역기술혁신의 거점 구축’을 내건 티피가 흔들리고 있다.

티피와 부산시, 업계, 학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보면, 먼저 부산시 출신인 전원장은 중요 현안에 대해 부산시 경제진흥실의 경제정책과, 과학기술과, 공업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

보도내용

한겨레 : 『〇〇TP, 부시장 출신 원장 ‘전횡’ 논란』

고 시장의 결제를 바로 받는 등 시의 감독권이 먹혀들지 않아 공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임기가 끝난 원○○전략산업기획단장을 재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내쫓고 목회활동을 한다며 스스로 그만둔 정○○ 전 기획부장을 새 단장에 임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 씨가 그만두는 바람에 기획부장 자리가 6개월째나 비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부장들보다 후배인 정 씨가 단장 공모에 지원해 다시 임용되자 배경을 두고 말이 많다.

새 단장이 임용되자 선배인 김○○ 평가부장이 사표를 쓰는 등 전문인력들이 잇따라 그만둬 구성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중략)

○○시의회 기획재경위 권○○ 시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티피 업무보고에서 “기획단의 손발이 다 잘리는 등 원장의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신임 단장의 경륜을 볼 때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 임용 잡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31일자 14면 『○○ TP, 부시장 출신 원장 ‘전횡’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테크노파크 전○ 원장이 최근 임기가 끝난 전략산업기획단장을 재임용하지 않고, 사임한 정○○ 전 기획부장을 새단장으로 임용해 논란을 빚고 있으며, 새단장이 임용되자 평가부장이 사표를 쓰는 등 전문인력이 잇따라 그만두어 구성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전○○ 전 기획부장의 새 단장 임용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

루어졌으며, 신임단장은 박사 취득 후 10년 이상 경제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로서 풍부한 연구실적 및 노하우를 보유한 역량있는 재원이요, 전략산업기획단 내 전문인력의 신분변동은 새 단장 임용과는 관계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TP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31일자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 임용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새 단장 임용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전문인력의 신분변동은 새 단장 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자신은 기획단 설립 시부터 선임부장으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박사취득 후 10년 이상 경제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1월 16일까지 한겨레 영남판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기획단장 임용 잡음-자진사퇴 전 기획부장 파격기용”)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아래에 게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4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수학여행 도중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3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2TV : 「뉴스타임」 프로그램 (2007년 10월 23일 20:20)

내 용 : ▷앵커 : 최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희롱을 했다 해도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광주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법원 판결에 발각 뒤집혔습니다.

제자들을 성희롱해 해임됐던 교사가 학교로 되돌아올지도 모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모 교사 :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죠. 교사가 애들 엉덩이 두드리고 성추행해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 판결문에 나타난 이 학교 조모 교사의 성추행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3월 수학여행 도중 학생들의 방에 들어가 학생들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간지럼을 태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에게 춤을 추라고 요구하고 거부한 학생의 다리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혐의에 따라 조 씨는 학교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해임결정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성추행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과오를 뉘우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교사직 복직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 이유였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10월 23일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성희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학생들을 간지럼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엉덩이는 두드리지 않았으며, 수학여행 버스 안에서 노래부르고 춤도 춰 보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거부한 학생의 다리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법원 판결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판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가 사실에 부합하거나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신청인 문화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문화원 (원장 권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문화원=사고문화원’ 지원대상 회원사서 배제』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2일자 17면)

내 용 : 원장의 성추행 등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1년 넘게 장기파행 되고 있는 ○○문화원

이 결국 ‘사고문화원’으로 낙인 찍혔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회장 박○○ ○문화원장)는 지난달 14일 서산시에서 도내 10개 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모임을 갖고, ○○문화원을 사실상 회원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한국문화원연합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이하 한문연)는 지난달 초 열린 이사회에서 원장의 성추행과 직원비리, 시 예산지원 중단 등 문제에 봉착함으로써 사실상 식물운영 상태에 놓인 ○○문화원에 대해 당분간 회원사로서의 각종 지원혜택을 모두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문화원 기사내용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10월 12일자 17면에 게재한 ○○문화원 관련 기사 중 한문연 및 도지회 월례회의시 ○○문화원을 회원사에서 배제한다는 사항을 의결한 적이 없으며, 또한 회원자격을 박탈하였다는 근거 자료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기사내용 자체도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화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반론은 수용가능하나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패널비를 받은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연기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연기신문 : 『박○○의원 ‘한통속 사익 챙기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5일자 1면)

내 용 : ○○군의회 박○○ 의원(비례대표)이 시민단체인 연기시민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료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한통속 사익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주최한 세종시 설치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군민대표로 참석한 박 의원을 포함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에게 수백만 원

의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이에 시민연대 측에서 “강사료 지급에 관하여서는 토론회를 위한 교수들의 연구활동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표성을 띄고 있지 않는 교수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그들의 원천적인 권리자인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자로써 제반 안전을 심의·의결·처리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 등을 근원으로 연봉을 매년 지급받고 있으며 활동비나 연구비 등 역시 군민들의 세금으로 보장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서는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다.(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본지 박○○ 의원에게 관한 10월 15일자 기사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5일자 1면에 『박

○○ 의원 한통속 사익 챙기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박○○ 의원이 ○○시민연대가 주최한 세종시 입법안에 대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패널비를 수령한 것을 개인적인 이익 활동이며, 지방자치법 제 33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지방의원의 토론회 패널참석과 패널비 수령은 정상적인 활동이며,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33조 2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한 것으로 박○○ 의원의 토론회 참석과 패널비 수령과는 무관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사실과 근거가 틀린 기사로 인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박○○ 의원에게 사과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5일자 1면에 「박○○ 의원 한통속 사익 챙기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박○○ 의원이 ○○시민연대가 주최한 세종시 입법안에 대한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 패널비를 수령한 것을 개인적인 이익활동이며 지방자치법 제 33조 ②항 위반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지방의원의 토론회 패널참석과 패널비 수령은 정상적인 활동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3조 ②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내용으로 박○○ 의원의 토론회 참석과 패널비 수령과는 무관하기에, 본 조항으로 지방의원의 사적영리활동 위반하였다는 기사는 근거가 없는 사실이기에 확인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사실과 근거가 틀린 기사로 인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연기신문 2007년 11월 19일자 2면 좌측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시민연대로부터…)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발행시 부수대로 발행하되 만일 그렇지 않을시 오백만원의 금전적 배상을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기신문 인터넷판(www.ygnews.net)에 게재하되 11월 19일 09시부터 30일간 위 정정보도문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기신문 : 『박○○ 의원에게 사과합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신청인 문화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문화원 (원장 권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연합뉴스 : 『‘왕따’ 된 ○○문화원』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2일자 지방면)

내 용 : 〈2007대전조정1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대전조정1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문화원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10월 12일 천안=연합뉴스 면에 보도된 ○○문화원 관련 기사중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문화원을 회원사에서 배제한다는 의결이 이뤄졌다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의결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연합회에서 각종 행사에 필요한 공문서를 자신들에게 보내고 있는 등 현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11월 16일까지 연합뉴스 홈페이지 지역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연합뉴스의 지역면에 게재되는 통상적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문화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6일 지역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구미시의 시정에 사사건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김 ○ ○)

피신청인 : 대구KBS-1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

처리결과 : 취 하

회에 대해 ○○경실련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모방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시가 처음 개최한 '다문화 축전'도 기존의 아시아축제를 모방했다며 성명을 내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올 들어 ○○경실련이 ○○시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발표한 성명은 20여 건에 이릅니다. (후략)

보도내용

대구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10월 27일 21:25)

내 용 : ▷앵커 : 시정과 관련해 ○○경실련이 사사건건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와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기자 : 다음달 열리는 ○○시의 자원봉사박람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실련, ○○시에 사사건건 시비〉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27일자 「뉴스9」 뉴스에서 다음 달 열리는 ○○시의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해 ○○경실련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모방했다는 것이 이유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자원봉사박람회는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시지회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종합자원복지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이를 두고 ○○시 주최 행사라고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또한 ○○경찰력이 민간단체 행사인 자원봉사박람회의 개최를 반대한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해 ○○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모방했다는 내용의 성명 역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경찰서가 타 경찰서 경찰관이 관련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제식구 봐주기식 조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순창경찰서 (서장 이 평 오)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술값 지불 않은 뺑소니 용의자 알고 보니 경찰』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5일자 6면)

내 용 : 순창경찰이 음주 후 술 값을 지불하지 않은채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의혹을 사고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서만 조사한 뒤 답변이 없어 봐 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가해자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므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략)

피해자 나 씨는 “흔적도 크게 남지 않아 이것은 뺑소니라고 볼 수도 없다며 조사경찰이 회유했다”며 “피해자 조서를 받은지 녀달이 다 되어 가도록 답변이 없는 것을 보면 제식구 봐주기식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술값 지불 않은 뺑소니 용의자 알고 보니 경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5일자 사회 6면 『술값 지불 않은 뺑소니 용의자 알고 보니 경찰』 제하의 기사에서 순창경찰이 음주 후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뺑소니 용의자인 경찰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조사경찰관이 “흔적이 크게 남지 않아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제식구 봐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가해용의차량 소유주는 경찰관이지만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은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순창경찰서 사고조사담당 경찰관이 사건 접수 즉시 양쪽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피해차량 확인 및 가해용의차량 확인,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조사한 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부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고 가해용의차량에는 전혀 사고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설명했을 뿐 보도내용처럼 같은 경찰관 봐주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제 식구 감싸기 사고처리 사실 없다”, 순창경찰서 밝혀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새전북신문 2007년 11월 8일자 6면 우측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순창경찰서, “제 식구 감싸기 사고처리 사실 없다”」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순창경찰, 피해자만 조사후 석달간 답

변없어 감싸주기 의혹”과 함께, 본문활자크기는 조
 正大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새전북신문 : 순창경찰, 『제 식구 감싸기 사고처리 사
 실 없다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
 년 11월 9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국정감사 후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인 배 외 1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국감 의원들 피감시기관서 거액 향응
 받아』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6일자
 1면)

내 용 :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
 부 산하 기관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 소
 속 국회의원 6, 7명은 22일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
 지원본부,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
 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기관에 대
 한 국감을 마친 뒤 대전 유성구의 A단란주점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서 수백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룸살롱 방식으로 운영되는 A단란주점에 갔
 던 국회의원 중 2명은 술자리가 끝난 뒤 여종업원
 과 함께 ‘2차’를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단란주점 사장 B 씨는 “의원 6, 7명을 포함해
 일행은 10명 정도였으며 언론을 통해 낮이 익은
 국회의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B 씨는 “폭탄주 등을 마신 국회의원 중 일부가
 2차를 나가는 분위기였다”며 “실제로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로 간 국회의원은 2명이고 나머지 3명은
 가지 않아 남은 2차 비용을 피감기관 측에 돌려줬
 다”고 말했다.

일행 중 두 명이 모텔에 갔다는 데 대해서는 단란
 주점 직원과 사장의 진술이 일치했다. (중략)

이날 국감을 받았던 기관의 한 관계자는 “당시 국
 회의원 보좌관과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각각 단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셨다.”며 “국감에 참여했던 국
 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입법조사관, 피감기
 관 관계자들이 식사와 술값으로 쓴 비용은 모두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술값 등은 여러 기관이 나눠서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들간의 단란주점 향응 접대는 최대한 외
 부에 노출되지 않게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22일 국감을 받았던 한 기관의 관계자는 25일
 “저녁 식사 뒤 갈 룸살롱을 물색하면서 식당과 거
 리가 가깝고, 기자들과 피감기관의 직원이 안 오
 고, 조용하고 후미진 곳에 있는 술집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위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단란주
 점 관계자들은 의원 2명은 ‘2차’를 나갔다고 증언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26일자 1면 『국감 의원들 피감
 기관서 거액 향응 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과학기
 술부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방문한 국회의원
 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한정식과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의원 두
 명은 여종업원과 모텔로 ‘2차’를 갔다고 보도하였

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모텔로 갔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피감기관으로부터 관례에 따른 식대 780여만 원(피감기관 식대 300여 만원)과 단란주점 술값 68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2,5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국회의원 2명은 술자리가 끝난 뒤 여종업원과 '2차'를 갔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와 함께 오보로 인해 큰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된 여러 관계자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진실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벌이고 있는 납골당 건립 반대투쟁이 집값 올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2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납골당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황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MBC-TV : 「뉴스후」 프로그램 (2007년 10월 27일 22:50)

내 용 : (전략) >앵커 : 지난달 9일 태릉성당 앞에서 벌어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시위, 미사에 참석한 주기경의 차에 달걀과 음식물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성당에 납골당을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길으로는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집값하락 때문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 업자의 설명입니다.

>부동산업자 : 지금 이걸(납골당문제) 2년 이상 끌면서 집값이 안 뛰고 있어요.

>앵커 : 이번 일에도 부녀회는 빠지지 않았습니

다.

>지구대 관계자 : 부녀회가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부녀회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앵커 : 왜 그런 걸 하면 여자분들이 나오나요?

>지구대 관계자 : 나 같이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우리 집사람은 집에 있으니까...

당연한 걸 왜 물어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공릉○동 주민들의 ○○성당 납골당 싸움은 집값 올리기라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27일 방송에서 ○○성당 납골당반대에 대한 지역민들의 싸움을, 부녀회가 앞장서서 집값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납골당반대 싸움은 부녀회와는 상관없고, 지역의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학교보건법 위반(6조)을 하면서 납골당을 짓고 있는 ○○성당을 규탄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공릉○동 성당 투쟁 관련 반론
- 내 용 : 지난 10월 27일 「권력이 된 부녀회」 방송 내용 중 집값 올리기를 위한 아파트 부녀회의 폐해를 고발하면서 서울 공릉○동 ○○성당 앞 주민 시위 장면을 방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 납골당반대 투쟁위원회'는 아파트 부녀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집값 올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면서 납골당을 짓고 있는 성당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11월 24일까지 MBC-TV 「뉴스후」 프로그램 말미(클로징 멘트

전)에 보도하되, 검정색 바탕화면에 흰색 활자로 제목과 본문 내용을 모두 표시하고 제목과 본문의 낭독은 성우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정정보도문을 방송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후」 프로그램 (2007년 11월 17일 22:5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탈북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2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KBS스페셜」 프로그램 (2007년 10월 27일 22:50)

내 용 : (전략) ▷앵커 : 20여 년간 중동에서 북한기업을 운영했던 한 탈북자, 그는 해외북한노동자인권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탈북자 : 그러니까 그게 외부시각으로 보는 게 다르고 내부시각으로 보는 게 다르죠. 북한사람들의 경우에 급여라는 게, 월급이라는 게 오래 해 봐야 거의 뭐 1, 2달러 정도밖에 안됩니다. 내부에

서 아무리 해 봐야.

근데 단번에 2천 달러라는 게 2년 동안에 그거 큰 거죠. 북한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서로 나가자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1TV는 지난 2007년 10월 27일자 「KBS스페셜」 프로그램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중동지역에서 북한기업을 운영하다가 탈북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1,0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고액이어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언론사가 나주 선관위에 공동급식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제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나주뉴스 (대표이사 김 경 식)

피신청인 : 나주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나주신문 : 『중단된 공동급식에 해당 지역 아연실색』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2일자 5면)

내 용 : 해당 지역 농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농번기 공동급식이 갑자기 중단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9일 농번기 공동급식 해당지역 농민 70여 명은 공동급식의 선거법 여부를 제기했던 언론사에 항의 방문하는 등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여성농민들의 일손을 덜 수 있다는 장점과 잊혀져 가는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는데도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번기 공동급식제는 나주시가 신청한 지역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마을은 급식도우미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맡기고 그 시간에 농사에 전념할 수 있어서 호평을 받았던 것.

하지만 공동급식 제도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제기에 해당 부서에서 급기야 잠정 중단했고, 이 사실이 지역에 전달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농민들은 지난 19일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언론사에 항의 방문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중단된 공동급식에 해당지역 아연실색’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2일자 5면에 『중단된

공동급식에 해당지역 아연실색』 제하의 기사에서 ‘공동급식의 선거법 여부를 제기했던 언론사’,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 언론사’를 ‘나주뉴스’로 지칭될 수 있게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나주뉴스는 50여 명의 나주여성농민들이 나주뉴스를 불법점거하는 당시까지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동급식의 선거법 위반 여부나 법적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나주뉴스 보도기사나 문서 등을 통해 나주시에 선거법 위반 여부나 법적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2일자 5면 『중단된 공동급식에 해당지역 아연실색』 제하의 기사에서 ‘공동급식의 선거법 여부를 제기했던 언론사’,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언론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나주뉴스는 나주뉴스가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없고, 취재기자가 나주시 담당공무원에게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근거 법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11월 26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나주신문 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나주시, 법적 논란 확인 후...)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나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9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학교가 자격미달인데도 어린이집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디지털대학교 (총장 김 ○ ○)
피신청인 : 안산타임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5.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안산타임스 : (1) 『보육시설 응모학교 재학생 심의
'물의'』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3일
자 사회면)

내 용 : ○○동 시립 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을 위한 심의를 하면서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특정학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 시
비가 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위탁 공모에 참여한 학교 법인 주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해 있어 자격기준이 애매모
호한데도 정확한 진상규명없이 심의를 진행해 자
격기준 미달을 알고도 마구잡이로 진행한 것 아니
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위탁운영자 심
사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들은 특정 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선정 심사자로 참여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략)

시는 이에 앞서 7일 심사를 앞두고 15명 보육정
책위원중 H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김모 교수와 부
위원장이 위탁모집을 신청한 법인과 학교에 모두
관계있다는 이유로 배제시킨 채 나머지 13명중 1
명이 불참한 12명으로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
사를 했다.

그러나 심의에 참여한 12명의 위원 중 2명이 H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
며 나머지 위원들도 H학교를 졸업했거나 관련돼

있는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거수
로서 관계자들을 선별,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허술
한 심사위 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략)

경기도내 주소를 뒀야 한다는 자격기준에 있어서
도 H학교는 재단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가 서
울로돼 있어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한 일부 복지법
인이 자격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확인한 결과 등기부등본상 H재단법인은 7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 강남구 역삼
동으로 명시돼 있다.

H학교는 또 서류심사에서 단체일 경우 가장 최
저 점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류심사
에서 복지법인을 제치고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면접심사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85점을 획
득, 2등과 무려 13점 차가 난 것으로 알려져 특정
학교 밀어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니
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를 단체로 해석했을 경우 심사규정상 5점으
로 점수를 줬 전체 12명의 위원들이 60점의 차이
가 나 평균점수로 했을 경우에도 큰 점수차가 나
는 데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 규정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7점에서 3점까지 자유롭게 점수를 주도
록 해 특정학교에 유리하게 작용됐다. (후략)

(2) 『보육센터 위탁심의 학교 '자격미달'』 제하
의 기사 (2007년 9월 20일자 3면)

내 용 : ○○동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특정학교 비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즉각 감사를 벌인 결과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동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면서 응시한 6개 법인과 단체, 개인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법인 주사무소가 서울로 돼 있
는 H학교와 S복지법인이 최종 심사대상으로 선정
됐으나 일부보육정책위원들의 원칙 없는 심사로

규정에 맞지 않는 점수를 부여해 H학교가 자정 내 정된 것.

그러나 S법인을 비롯해 응시에 참여한 일부 법인과 개인은 특정 단체를 선정해 주기 위한 사전 담합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3) 『보육시설 위탁운영 재심하라』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20일자 18면)

내 용 : (전략) 심사규정상 법인은 7점, 단체는 5점, 개인은 3점을 주도록 명시가 돼 있음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점수를 주도록 한 처사도 특정 응시자에 특혜의혹을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에 속한 시설장과 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의 직원을 전혀 경험이 없는 신설학교에다 모든 것을 맡기려는 처사는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보육시설 응모학생 재학생 심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3일자 사회면 『보육시설 응모학교 재학생 심의 ‘물의’』, 9월 20일자 『보육센터 위탁심의 1위 학교 ‘자격미달’』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동 시립 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심의에서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특정학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학교법인 주사무소 자격기준 논란’, ‘심의위원 중 2명 학교 재학생 확인’, ‘학교를 단체로 해석하는 오류 범해’ 등의 내용을 보도 마치 H대학이 위탁선정을 받기 위해 불법 내지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한 듯 한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H대학은 적법한 방법으로 안산시에 위탁신청을 하였으며, 재단법인의 현재 주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 아닌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확인되었으며, ‘심의위원 중 2명의 재학생 확인’은 1명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며, 1명은 평생교육과 졸업생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교를 단체로 해석한 오류’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9월 20일자 『보육시설 위탁운영 재심하라』의 기사에서 특정대학을 연상시키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H대학은 신설학교인데도, 시설장과 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의 직원을 전혀 경험이 없는 신설학교에다 모든 것을 맡기려는 처사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H대학과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며 적절치 못한 표현과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3일자 사회면 『보육시설 응모학교 재학생 심의 ‘물의’』, 9월 20일 3면 『보육센터 위탁심의 1위 학교 ‘자격미달’』 각각의 제목으로 “○○동 시립 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심의에서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특정학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 주사무소 자격기준 논란”, “심의위원 중 2명 학교 재학생 확인”, “학교를 단체로 해석하는 오류 범해” 등 마치 H디지털대학이 위탁선정을 받기 위해 불법 내지 불공정한 행위를 한 듯한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H디지털대학은 적법한 방법으로 안산시에 위탁신청을 하였으며 ‘심의위원 중 2명 재학생 확인’은 1명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며 1명은 평생교육과 졸업생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격미달’이나 ‘발뺌’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기에 정정보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안산타임스 2007년 11월 22일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2007년 9월 20일자 3면~ 보육센터 특정학교 심의, 시청 자체감사서 밝혀)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안산타임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15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청주OO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중부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5.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부매일 : 『청주OO 발파작업 주민과 갈등』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5일자 3면)

내 용 : 청원군 OO면 OO리 인근에 위치한 청주OO(대표 최OO)의 발파작업으로 OO리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주택균열과 가축유산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청주OO 측과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원군에 따르면 OO면 OO리(이장 노OO) 주민들은 지난달 20일 오전 “청주OO의 발파작업으로 인해 주택균열, 가축유산, 발파소리에 놀라 주민들이 살 수 없다”며 일부 주민들이 공사현장 찾아가 발파를 저지한데 이어 이달중 주민들과 피해보상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오후 (주)청주OO 직원식당에서 청주OO 임원과 OO리 마을 주민 대표, 공무원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발파소리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택 균열과 땅이 허물어지는가 하면 가축이 유산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협의서대로 금년 말까지 나머지 16가구에 대해 인근 토지에 집을 지어 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상을 요

구하는 등 구체적인 이주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회사 측은 “주택균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충분히 보상해 주고 매입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매입을 진행해 왔으나, 회사 측 예산과 주민이 요구하는 가격의 격차가 너무커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청주OO 발파작업 주민과 갈등에 대한 반론

•내 용 : 본지 지난 2007년 10월 15일자 사회면 『청주OO 발파작업 주민들과 갈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 주택균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충분히 보상해 주고 매입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청주OO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정한 심사를 거쳐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사실이 있다면 보상해 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찾아가 발파를 저지한데 이어 이달 중 주민들과 피해보상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2007년 10월 11일~2007년 10월 16일까지 일부 주민의 무단 출입 및 업무방해로 인해 금전적인 막대한 손해와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광산조업현장을 가로막아 직원출입 및 차량통행을 저지하며, 광산의 원석을 전혀 운반하지 못하여 제품 생산과 거래선 납품을 못하게 되었고, 이에 청주OO는 주민과 원활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청주○○ 발파작업 주민과 갈등에 대한
반론

• 내 용 : 중부매일 2007년 10월 15일 사회면의
“주택균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충분히
보상해 주고 매입의사가 충분히 있다.”라는 보도내
용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정한 심사를 거쳐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사실이 있다면 보상해
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며, “일부 주민들이 공사
현장 찾아가 발파를 저지하는데 이어 이달 중 주
민들과 피해보상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은 2007년 10월 11일~2007년 10월 16일 까지
일부 주민의 무단 출입 및 업무방해로 인해 금전
적인 막대한 손해와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고 광산
조업현장을 가로막아 직원 출입 및 차량통행을 저
지하며, 광산의 원석을 전혀 운반하지 못하여 제품
생산과 거래선 납품을 못하게 되어 주민과 원활한

대화를 하기로 했으므로 위 보도내용에 대해 반론
합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주)청주○○

대표이사 최 ○ ○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7년 11월 19일 자 2면 하단에 상자기
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
제목(피해보상 협의 양측 이견…)과 같게하고, 내
용은 본문 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매일 : 『청주○○ 발파작업 주인과 갈등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소유한 목장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귀신이 출몰하는 흉가라고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2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5.

처리결과 : 취 하

일 19:00)

내 용 : <2007서울조정38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2TV는 지난 6월 18일 「무한지대큐」 프로
그램 코너에서 신청인 소유한 ○○목장을 동의없
이 무단 출입·촬영하고 ○○목장을 귀신이 출몰
하는 흉가로 묘사하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
게 훼손하였으므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
구합니다.

□

보도내용

KBS-2TV : 「무한지대큐」 프로그램 (2007년 6월 18

신청인이 측근을 통해 모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끊임없이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성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7.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매일신문 : 『‘설·설...’ 들끓는 영천 정가』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8일자 6면)

내 용 : 역대 영천시장 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줄줄이 도중하차한 가운데 연말 대선(12월 19일) 때 재선거가 예정된 영천이 또다시 시끄럽다.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한 인사의 한나라당 재입당을 놓고 영천정가에 논쟁이 불붙은 것. (중략)

문제는 이 인사의 한나라당 재입당 자격 여부. 이 인사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공천이 여의치 않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 결국 낙마했다. 탈당 전력이 재입당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영천 정가의 주된 논쟁은 이 인사의 경우, 손○○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케 한 배후라는 소문 때문.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인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후 손 전 시장에게 아깝게 패배하자 손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측근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했고, 결국 검찰 수사를 거쳐 손 전 시장을 도중하차케 했다는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7년 10월 18일자 『‘설·설...’ 들끓는 영천 정가』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공천이 여의찮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한 인사가 손○○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케 한 배후라는 소문이 지역정가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인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후 손 전시장에게 아깝게 패배하자 손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측근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했고, 결국 검찰 수사를 거쳐 손 전 시장을 도중하차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 출마예상자의 “이 인사가 손 전 시장을 시장직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은 영천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나라당 출신 시장에 상처를 준 인사를 당이 다시 입당시킨다면 당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는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위 내용은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떠도는 소문을 바탕으로 쓴 것이어서 이해관계인 명예를 훼손하고 해당지역의 분열을 가중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성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신문

대구시 중구 계산동 2가 71번지

대표이사 이 용 길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에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매일신문 2007년 10월 18일자 6면 『‘설·설...’ 들끓는 영천 정가』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정가 소식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손○○ 전 영천시장이 임기도중 하차하게 된 것은 이 지역에서 영천시장 재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한 인사가 측근을 통하여 손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실을 끊임없이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재선거 출마를 준비해 온 이 인사가 손 전 시장 낙마의 배후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손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자신이 이 인사의 측근이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 등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를 입은 자란

그 보도내용에서 언급되거나 개별적인 연관성, 즉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본 건 조정대상 기사에서 신청인이 직접적으로 거명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조정대상 기사와 개별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 중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 사건 신청 중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12.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방위사업청이 GOP경계 과학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비리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방위사업청 (청장 이 선 희)

피신청인 : 시사N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시사N : 『특혜, 부실, 그리고 청와대 GOP 스캔들 터지는가』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8일자 66~69면)

내 용 : 휴전선 250km에 이르는 철조망 주변에 전자 감시·감지 통제장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GOP 경계과학화 사업'이 방위산업 분야의 부정 비리의혹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국가청렴위원회(청렴위)는 지난 6개월여간 이 사업에 대한 다각적 실태조사를 벌여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설치된 장비의 허점, 그리고 이 과정의 로비 의혹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뒤 최근 서울 중앙지검에 이관해 수사를 의뢰했다. (중략)

지난해 6월 중순 시범설치 사업자로 ○○ 컨소시엄을 선정한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국방부 예산

60여억 원(2006년 41억 원, 2007년 20억 원)을 들여 동부전선 5사단 15km 철책 구간에 이스라엘제 광그물망을 설치토록 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이 지역 전방 철책선이 뚫리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육군에서 시급히 필요성을 제기해 이뤄졌다. 그런데 사전에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인데다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서둘러 입찰에 부쳐 ○○ 컨소시엄을 선정한 데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 밀어주기 특혜'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중략)

이처럼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 컨소시엄을 이 사업 시범사업자로 무리하게 선정한 뒤 지난 1년간 5사단 15km에 걸쳐 시험평가를 수행해 왔다. 평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 8월 17일까지 약 1년에 걸쳐 진행됐다. 현재는 육본 시험평가단에서 작전 운용과 성능, 군수지원성 따위 평가를 수행하며 결과를 분석중이라고 한다.

시범설치 후 평가 과정에서 방사청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방사청 담당 부서에서는 'GOP과학화 경계방안 감지센서 재검토'라는 보고문건을 통해 "현재 감시센서는 CCTV로, 감지센서는 광망과 광케이블로 구성해 사업기간을 연장해 시험중이다. 그러나 광을 이용한 센싱은 몇 가지 치명적인 문

제를 가지고 있다. 오경보율이 높았고 결빙에 취약해 체감온도 영하 20~30℃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운용이 부적합하다. 눈보라시 결빙으로 신호가 왜곡되고 균열이 발생한다. 신호가 민감해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해 유지 보수 비용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보 10월 16일자 66~69면 『특혜, 부실 그리고 청와대 GOP 스캔들 터지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GOP경계 과학화 사업은 1,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관련 규명 및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OO 밀어주기 특혜”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방위사업청은 ‘GOP과학화 경계방안 감지센서 재검토’라는 보고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고 따라서 문건에 인용된 것처럼 시범설치 후 평가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GOP경계 과학화사업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GOP경계 과학화 사업’을 철저히 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운용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위사업청이 합참과 육군 등을 통제하기가 제한되므로 국방부에서 총괄 통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

다.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보(시사IN) 10월 16일자 「특혜, 부실 그리고 청와대 GOP 스캔들 터지는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감지센서 시범설치 후 평가과정에서 GOP경계 과학화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GOP과학화 경계방안 감지센서 재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가 작성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시사IN(‘여기는 시사모’면) 및 시사IN 홈페이지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여 시사IN 제13호에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IN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8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의 로비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 수위가 낮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금융감독원 (원장 김 용 덕)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8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국경제 : 『검사 땀 칼날 세우고 제재는 쉬쉬』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0일자 8면)

내 용 : (전략)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평상시 또는 검사시기에는 호랑이처럼 행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즉 제재조치를 내릴 때는 ‘쉬쉬’ 하면서

‘숨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고강도 검사가 숨방망이 처벌로 수위가 낮아지는 데는 각종 인맥과 로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에 포진해 있는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핵심 연결고리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금감원에서 퇴직한 2급 이상의 고위직 141명 가운데 83명이 금융회사에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은행 스스로 금감원 국장 출신을 감사후보 1순위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뛰어난 테다 로비스트 역할도 해주기 때문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의 간부인사 구도에 맞춰 ‘할당제’로 이뤄지는 게 다반사다.

영입하기 싫은 사람도 떠밀려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피검회사 간 제재 형량을 놓고 밀실홍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금융감독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0일자 사회면에 『검사 땀 칼날 세우고 제재는 쉬쉬』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데는 각종 인맥과 로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금융회사에 포진해 있는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그 핵심 연결고리이다.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의 간부인사 구도에 맞춰 ‘할당제’로 이뤄지는 게 다반사다. 영입하기 싫은 사람도 떠밀려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피검회사 간 제재형량을 놓고 밀실홍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의 로비가 작용하거나, 금융감독원 출신 임직원들의 재취업과 결부

된 밀실홍정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 내 용 : 지난 10월 10일자 사회(A8)면 『검사땀 칼날 세우고 제재는 쉬쉬』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데는 각종 인맥과 로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금융회사에 포진해 있는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그 핵심 연결고리이다.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의 간부인사 구도에 맞춰 ‘할당제’로 이뤄지는 게 다반사다. 영입하기 싫은 사람도 떠밀려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피검회사 간 제재형량을 놓고 밀실홍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의 로비가 작용하거나 금융감독원 출신 임직원들의 재취업과 결부된 밀실홍정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한국경제신문 경제면에 박스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하여 2007년 11월 3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한국경제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30일자 6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이회창 후보 지지자와 반대자간의 몸싸움을 보도하면서 싸움을 말리던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2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9.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이회창 후보 지지자와 출마반대자간의
몸싸움 장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조선일보는 지난 11월 8일자 1면 『우파 내전』 제하의 기사로 이회창 대선 후보의 국립현충원 참배를 앞두고 지지자와 출마 반대자간에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이를 말리던 본인의 얼굴을 동의없이 촬영·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6,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 『우파 내전』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8일자 1면)

신청인 경찰서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서장이 회의를 핑계로 기자의 취재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동대문경찰서 (서장 황 광 기)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9.
처리결과 : 취 하

것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동대문경찰서는 이 업소의 주인이 불법성매매를 한 혐의를 잡고서도 ‘업소폐쇄권한이 없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기자가 지난 1일 밤과 3일 새벽 두차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의 안마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현장취재하면서 확인한 것이다. (중략)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경찰서 진모 경사와 장안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에게 각각 970만 원과 380만 원을 준 주인 윤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폐쇄권한이 없다”며 “우리가 임의적으로 업소

보도내용

내일신문 : (1) 『경찰에 뇌물 준 업소 버젓이 영업』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5일자 20면)
내 용 :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가 업주가 구속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불법 성매매업소가 버

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주에서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후략)

(2) 『동대문경찰서의 이상한 행동』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7일자 21면)

내 용 : (전략) 기자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최고 책임자인 동대문경찰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6일 하루종일 8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서장은 첫 통화에서 기자의 질문내용만 듣고 이후 회의를 핑계로 접촉을 일체 거부했다.

동대문경찰서장이 이번 성매매 업소를 둘러싼 뇌물수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관할 경찰서의 단속방기가 경찰관의 부정한 뒷거래 때문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과연 기자만의 상상일까.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동대문경찰서 성매매업소 단속”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5일자 20면 『경찰에 뇌물 준 업소 버젓이 영업』 제하의 기사 및 11월 7일자 21면 『동대문경찰서장의 이상한 행동』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가 업주가 구속된 동대문구 장안동의 불법성매매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관할 동대문경찰서는 이 업소의 불법성매매혐의를 잡고도 업소 폐쇄 권한이 없다고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내용과 이와 관련해 본지의 기자가 동대문경찰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첫 통화에서 기자의 질문내용만 듣고 이후 회의를 핑계로 접촉을 일체 거부해 동대문경찰서장이 이건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성매매업소에 대한 관할경찰서의 단속방기가 경찰관의 부정한 뒷거래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동대문경찰서는 관할지역의 불법성매매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업주의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이를 단속 하였으며 불법성매매업소가 있는 건물주의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기소 전 물수보전 신청을 염두에 둔 수사지휘를 하는 등 강력한 의지로 풍속범죄에 대해 대응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업주 측에서 범죄수익을 줄이려고 부정한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 이를 단서로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여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명의 경찰관을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시 미온한 대처를 한 관할 지구대장 및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동대문경찰서장이 기자와의 통화를 피했다는 것 관련해 당시 서장은 서울본청에서 주최된 '07년도 치안성과분석회' 참석중이었고, 회의 종료 후 경찰서로 돌아와 수사결과 점검 및 지구대 인사이동 작업을 진행하는 등 경황이 없어 통화하지 못했던 것일 뿐 비리가 개입되거나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내일신문 : 『불 꺼진 안마업소 개점휴업 상태』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5일자 20면)

내 용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안마업소가 지난 5일 이후 열흘 가까이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관할 동대문경찰서는 경찰관을 업소정문에 배치해 강력하게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일대 6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안마·마사지업소 가운데 5~6개 업소를 빼고는 모두 불이 꺼진 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서장 황광기)는 지난 1일 불법 안마업소 주인한테 뇌물을 받은 소속 경찰관과 업소주인, 건물주 등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처벌했다.

본지는 지난 5일 이 업소를 비롯해 이 일대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업소가 밤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루며 불법적인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본지 11월 5일자 20면 참고)

하지만 기자가 다시 찾은 지난 9일 밤은 사정이 완전히 달랐다. 평소 같으면 가장 많은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 밤 11시. 대부분의 업소는 불이 꺼진

상태였다. 출입문도 굳게 잠겨있었다. 호객꾼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어렵사리 만난 한 호객꾼은 “월요일부터 경찰의 단속이 강화돼 영업을 거의 할 수 없다”며 “이 일대 60여 개 업소 가운데 문을 연 곳은 5~6곳도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장한평역에서부터 장안동 4거리까지 이어진 500여m의 안마업소 밀집지역을 돌아본 결과 극히 일부업소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업소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나마 문을 연 업소에도 출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연속 다시 이 일대를 찾았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각 업소의 출입문에는 2~3명의 경찰이 배치돼 사람들의 업소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순찰차도 대로변을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 호객꾼은 “들리는 말이 지난 주 내내 경찰관

수십명이 동원돼 10여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안마업소를 찾는 손님이 없어지면서 근처의 술집이 호황이다. 이곳 한 술집 종업원은 “요즘 손님이 부쩍 늘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안마업소를 들어가지 못해 술집으로 왔다는 손님이 많다”고 귀띔해줬다.

길에서 만난 한 취객도 “경찰이 업소 문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며 그냥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소속 경찰관이 업주한테 뇌물을 받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장안동 일대를 관할하는 장안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전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 혹시 있을 수 있는 유착관계와 이에 따른 단속방기를 아예 차단했다. (후략) □

신청인 단체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자 선정과정시 익산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청소년회 (회장 황 ○ ○)

피신청인 : 소통뉴스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소통뉴스 : 『유스호스텔 업자선정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2일자 하하하면)

내 용 : 시의회, 1백억 원대 적자 시설물 건립, 불투명한 업자선정 부당 익산시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자로 사단법인 ○○청소년회(이하 ○○회)가 선정된 가운데, 선정절차의 불투명성에 따른 특혜의혹과 예산문제에 따른 사업의 부적절성이 시의회와 종교단체로부터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타 자치단체들의 기존 청소년유스호스텔이 대부분 적자운영에 허덕이는데다, 익산시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새청사 건립도 유보된 마당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1백억 원 규모의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는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유스호스텔 업자선정 특혜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22일자 하하하면에 『유스호스텔 업자선정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익산시가 유스호스텔 업자선정과정에서 불투명한 절차로 ○○청소년회에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청소년회가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을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정 종교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본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소통뉴스 : 『〇〇청소년회에 대한 오해 유감』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0일자 하하하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2일자 ‘유스호스텔 업체선정 특혜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일부 시의원과 특정인들의 진술을 빌어 익산시가 유스호스텔 업자를 선정하면서 “〇〇청소년회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〇〇청소년회와 〇〇교의 도덕성과는 무관한 기사임을 밝힙니다.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익산시가 유스호스텔 업자 선정을 사회단체나 실수요자들의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기부채납방식이 전제된 공고를 소수

가 방문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등 〇〇청소년회 1곳만 응모하도록 폐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여 특혜의심을 샀다는 것일 뿐, 〇〇청소년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스호스텔 업권을 따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〇〇청소년회가 〇〇교 법인인데다 기부채납한 부지가 〇〇대학교와 연접한 곳으로, 유사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 〇〇교가 부도덕한 종교집단이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지는 공인의 진술을 빌어 유스호스텔 건립주체인 익산시의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를 비판하고 있으나, 본의 아니게 계약당사자인 〇〇청소년회와 〇〇교가 부정한 집단으로 비쳐지게 했다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〇〇 청소년회는 절차상 정당한 행위로 유스호스텔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했기에, 본지의 기사로 인해 세간에 나도는 원불교와 〇〇청소년회에 대한 오해는 불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이같은 유감표명문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

초등학생인 신청인이 학교 동급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영남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영남일보 : 『주먹 쓰는 초등생, 쉬쉬 하는 학교』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9일자 6면)
내 용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폭력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교

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대구시 달서구 모 초등 3학년인 A 군 등 3명이 같은 학교 동급생 B 군을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CCTV 동영상에는 도망가는 B 군을 쫓아온 A 군 등이 5분여간 B 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생생하게 잡혀 있다. A 군 등 3명이 B 군 폭행에 가담했고, 나머지 2명은 이를 지켜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 군과 B 군은 학교의 축구부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4월 B군만 축구부원으로 선발된 이후 자주 시비가 붙었으며, 최근 학교 도서관에서도 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사소한 시비 끝에 A

군이 귀가하는 B 군을 계속 쫓아가면서 괴롭혔고, 이를 피해 주차장으로 도망간 B 군을 친구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 군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어머니 C 씨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C 씨는 학교폭력예방중앙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직후 아이가 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학교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지만, 이들은 폭력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본지 기사내용(“폭력 쓰는 초등생, 쉬쉬하는 학교”)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29일자 사회면 『주먹 쓰는 초등생, 쉬쉬하는 학교』라는 제목으로 학교의 축구부원으로 B 군만 선발된 이후 자주 시비가 붙어 B 군이 A 군 측에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B 군과 A 군이 다니는 학교에는 축구부가 없으며 B 군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가는 것을 A 군이 쫓아가 쌍방이 같이 싸운 것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사제목의 “쉬쉬하는 학교”의 내용과는 달리 학교 측은 사건 이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여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

신청인 회사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강원조정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OO빌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원주투데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4.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원주투데이 : 『입주자 대표에게 선물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5일자 사회면)
내 용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가 동 대표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봉산동 A아파트는 관리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8월 13일 관리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9월 7일 G업체를 관리업체로 선정·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로 선정된 G업체가 선정 공

고 후 동 대표들에게 상품권 등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아파트 관계자 S모 씨는 “8월 15일 오후 3시경 G업체의 이사 이모 씨가 아파트로 찾아와 남자 동 대표에게는 20만 원 상품권과 양주 1병을, 여자 동 대표에게는 20만 원 상품권과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으며 임원진에게는 30만 원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 대표 전체가 금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동 대표로부터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품권 사본과 G업체 대표이사 명의의 편지, 명함 사본,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위탁관리업체선정과정 뇌물수수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5일자 사회면에 『입주자 대표에게 선물제공 의혹』이라는 제목으

로 위탁관리업체선정시 당사가 모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업체선정방식은 8월 23일 견적서를 제출, 8월 24일 업체선정기준마련, 9월 7일 업체선정이라는 원칙대로 진행되었으며, 엄정하게 이루어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11월 5일자 ‘입주자 대표에게 선물제공 의혹’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11월 5일자 본지 6면에 ‘입주자 대표에게 선물제공 의혹’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G업체에서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원주투데이는 11월 5일자 6면에 ‘입주자 대표에게 선물제공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동 모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G업체가 “남자 동 대표에게는 20만 원 상품권과 양주 1병을, 여자 동

대표에게는 20만 원 상품권과 화장품1세트를 전달했으 임원진에게는 30만 원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G업체에서 금품을 전달한 것은 여자 동 대표 단 한명 뿐이며, 전달한 금품도 20만 원 상품권과 화장품이 아니라 1만 원권 상품권 2장과 화장품이었음을 밝힙니다. 그 밖의 다른 동대표들에게는 금품을 제공한 바 없다고 했으며 동대표들 역시 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도 적시되었지만 업체선정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원주투데이〉 2007년 12월 10일자 사회면에 3단 음영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봉산동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본문과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인 및 장 ○○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원주투데이 : 『11월 5일자 ‘입주자 대표에게 선물제공 의혹’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0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변호사 수임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대전일보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탈세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9일자 4면)

내 용 : 국정감사에서 국회청에 신고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건당 평균 93만 원에 불과해 탈세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변호사가 터무니 없는 통계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18일 대전고·지법 및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장판사 경력만 10년에 이르는 대전지역 A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252건을 수임했으나 국세청에 신고

한 수입액은 20억 9000만 원으로 건당 수입료가 93만 원에 불과하다”며 “A 변호사는 이 기간에 대표적인 고액사건인 구속사건 91건과 보석사건 124건을 수입했음에도 수입료가 건당 평균 93만 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탈세의혹 논란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19일자 4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탈세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오○○ 변호사가 2000년부터 5년간 2,252건을 수입했다는 보도는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던 변호사들의 수입사건과 합산한 건수이고, 위 기간 중 오○○ 변호사는 소송사건 691건(수입 약 19억 1,500만 원, 1건당 약 278만 원)과 법률고문 등 사건을 포함한 총 841건을 수입하여서 약 20억 9,100만 원의 총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또한, 오○○ 변호사는 위 기간 도과 직후 수입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39,939,940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대전지법·대전고법 관내의 연간 총 형사사건은 약 1만 7,000건인데 위 기간 중 오○○ 변호사는 구속사건 총 91건과 보석사건 총 154건을 수입하였을 뿐, 고액사건을 수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수입료 탈세 없다.
- 내 용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탈세의혹을 받았

던 A변호사가 실제 수입한 사건은 2,252건이 아닌, 84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국회법사위의 대전고·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이 주장한 ‘대전지역에서 부장판사 경력만 10년에 이르는 A 변호사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252건을 수입했다’고 한 보도내용은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던 변호사들의 수입사건을 합산한 건수라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수입한 사건은 소송사건 691건(수입 약 19억 1,500만 원, 1건당 약 278만 원)과 법률고문 등 모두 841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총수입 신고액은 약 20억 9,100만 원이라며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했다.

A 변호사는 또 위 기간 직후 수입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39,939,940원을 추징당한 세금영수증을 제시했다.

A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 기간 중 구속사건 91건과 보석사건 124건에 대해 3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고액사건을 수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일보 2007년 11월 23일자 4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부장판사 출신…)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합의 후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일보 : 『“공동운영 수입합산 오해…탈세 없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3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변호사 수입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도일보 : 『“전관 변호사 수임료 겨우 93만 원”』 제
하의 기사 (2007년 10월 19일자 3면)
내 용 : <2007대전조정21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2007대전조정21의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대전조정2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평균 수임료 93만 원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3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변호사 수임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4.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대전조정2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7대전조정21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변호사 수임료가 93만 원?』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9일자 3면)
내 용 : <2007대전조정21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평균 수임료 93만 원 아니다”』 제
하의 기사 (2007년 11월 23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기본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이○○○ (대표이사 홍 ○ ○)
피신청인 : 마산MBC-TV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마산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0월
29일 21:40)
내 용 : ▷앵커 :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긴급
이송하는 특수구급차.
마산MBC가 이 특수구급차들을 집중취제한 결

과 기본 장비도 잘 갖추지 않아서 응급처치도 잘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송요금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약과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깡통 구급차들의 실태를 이○○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기자 : 소방서 119구조대의 특수구급차입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쓰는 자동제세동기와 추락 사고 때 필요한 쇼크방지용 하의, 경부, 척추 보호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의 구급차도 기도를 유지해 주는 삽관장치와 상처 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대원 :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다 갖춰야지.

▷기자 : 창원지역 응급환자의 절반을 이송하는 민간업체들의 사정은 어떨까?

▷기자 : 심박수나 혈압을 재는 산소포화농도측정기도 없고, 쇼크 방지용 하의, 경부 보호대 같은 기본 장비도 없습니다. 주사기는 널려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약물은 없고 가장 중요한 제세동기는 작동도 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는 제대로 하는지 다른 구급차를 직접 타 봤습니다.

구급대원은 가슴 통증을 호소한 환자를 휴대용 산소호흡기도 채우질 않은 채 차에 태웁니다.

▷대원 : 보호자 분, 저랑 같이 부축합시다.

▷기자 : 차에 태운 뒤에는 산소 호흡기만 채우고 혈압, 맥박 체크도 하지 않은 채 운전석으로 옮겨 갑니다.

▷기자 : 다른 조치 없나요?

▷대원 : 호흡이 중요해요. 보호자가 환자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의식 잃지 않게

▷기자 : 차량 내부는 일부 기본장비만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이송료는 부르는게 값. 김해 외동에서 부산 백병

원까지 거리는 약 30km. 이 업체의 요금 기준으로 는 7만 원입니다.

▷대원 : 8만 원입니다.

▷보호자 : 카드 돼요?

▷대원 : 안됩니다. 현금만 돼요. 만원만 더(9만원).

▷보호자 : 영수증은 없나요?

▷대원 : 필요하세요?

▷기자 : 심지어 요금을 두 배나 부풀린 경우도 많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29일 「뉴스데스크」 시간을 통해 민간 이송단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특정 업체의 응급환자 이송용 구급차량이 응급환자에 필요한 구조·구급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환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화면상 장비를 갖추지 않은 구급차는 보도를 위해 연출된 것이었으며, (주)이○○○의 응급환자 이송용 구급차는 모두 규정된 구조·구급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부당 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짜깁기한 복제논문을 심사자료로 제출,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5.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7년 11월 10일 06:38)

내 용 : ▷앵커 : 국내 유명 학회가 제출되지도 않은 논문에 대해 엉터리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 기자입니다.

▷기자 : 인천의 한 대학 최모 교수가 지난 7월 재임용 심사자료로 학교 측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한국 국어교육학회 학술지에 게재될 수준급 논문이라며 학회 측이 발행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까지 첨부했습니다.

대학 측은 학회 측의 공신력만 믿고 재임용을 추진했지만 정밀심사 결과 곳곳을 짜깁기한 복제논문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최 교수는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대학 관계자 : 대부분의 대학과 교수들은 학회에서 발행한 논문게재증명서를 100% 믿고, 그대로(검증하지 않는)거죠.

▷기자 : 학회 측의 논문게재 예정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됐는지 문의했습니다.

확인 결과 최 교수의 논문은 학회에 제출된 적도 없고 학술지에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최 교수가 재임용에 꼭 필요하다며 간곡히 요청해 논문도 보지 않고 떼 뒀다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엉터리논문심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0일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인천의 모대학 최모 교수가 학술지에 실리지 않았음에도 재임용에 꼭 필요하다며 학회측에 간곡히 요청해 논문게재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임용심사에 제출하였으나 학교 측의 정밀심사에 의해 곳곳을 짜깁기한 복제 논문 판정을

받았으며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최모 교수의 논문은 짜깁기 또는 표절·중복게재된 것이 아니라 일본 학술재단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된 논문이며 학회에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제출, 정식증명서를 받았으며, 오히려 학교 측의 조작에 의한 부당한 재임용탈락처분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드러나 재임용탈락에 대한 취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엉터리 논문 심사”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방송 11월 10일 〈뉴스투데이〉에서 “엉터리 논문 심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인천의 한 대학 최모 교수의 논문은, 짜깁기 표절 중복 게재한 논문이 아니라 일본 학술재단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 학회에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제출, 정식 증명서를 받았고, 또 학교 측의 부당한 재임용탈락처분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드러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취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C-TV〉 2007년 12월 1일이내 〈뉴스투데이〉 보도시간 내에 방영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내용은 진행자가 낭독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7년 12월 1일 06:24)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유 기 덕)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생방송오늘아침」 프로그램 (2007년 8월 22일 08:30)

내 용 : >아나운서 : 특집기획,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약재 얘기, 오늘은 다루고 있죠?

>리포터 : 예,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의 중금속이 검출이 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중국산 한약재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 지난 2004년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은 생후 7개월에 영○, 그런데 뜻밖에는 영○의 병명은 급성수은중독이었습니다.

>피해자 : 중금속에 희생만 안 됐어도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뺏기게 된 거기 때문에,

>리포터 : 아이가 먹은 건 중국산 한약재로 만든 환약이었는데요, 국내 유통되고 중국산 한약재의 중금속 논란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국산 한약재 긴급 진단했습니다.

>여성 1 : ...그런 게 많으니까,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 몸에 안 좋으면 안 되죠.

>여성 2 : 좀 마음이 안 좋죠. 중국산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걸 먹어야지.

>리포터 : 한약재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 한 시장에 나왔는데요, 과연 중국산 한약재가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 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한 유명 한약재 시장인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런히 진열된 다양한 종류에 중국산 한약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략)

>리포터 :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산 한약재는 시장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상인 : 한의원 가잖아요, 한의원 가면은 80%가 다 중국산이에요, 80%가 아니라 요즘에는 100%라고 그래요.

요새는요, '국산, 국산' 하는 사람이 잘못 된 거예요.

>리포터 :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탕원 : 중국산을 국산으로는 포장해 갖고 둔갑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자루에 넣어두는 것은 저건 다 국산이에요.

>리포터 : 중국산 약재를 국내산으로 포장해서 둔갑을 시킨다는 건데요.

>상인 : 같은 약재를 중국산은 5만 원이라면 국산은 15만 원은 해, 그 차이로도 부담이 되잖아요...

>아나운서 : 세 배나 차이가 나네요.

>리포터 : 유통업자들이 중국산 한약재를 많이 찾은 이유는 낮은 가격 때문이었는데요, 한 한약재 도매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나운서 : 역시 가격이 문제였군요.

>도매상 : ...중국산이 천 원이면 우리 국산은 만 원이고,

>아나운서 : 10배네요?

>리포터 : 아, 10배나 차이 나요?

>도매상 : 예, 10배 차이 나요. 국산으로 약 지으면 값이 많으니까 한의원에서 이렇게 하지요, 쉬어서 넣지요 뭐.

>리포터 : 하지만 소비자들한테는 이 한약재의 원산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메이드인 차이나, 중국산 한약재 중금속 주의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22일자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중국산 한약재에서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아홉 배까지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며, 그러한 오염된 한약재를 복용한 환자들의 피해상황을 인터뷰하고, 또 현재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의 80~100%가 오염된 중국산 한약재라는 한약재 판매상인의 인터뷰내용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위와 같은 중국산 한약재들이라고 표현한 약재는 대개 한약재 판매상에서 거래되는 일반식용 한약재들로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한약규격품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고, 지난 2007년 7월 26일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한의사들과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의 80~100%가 중국산이다’는 한약재 판매상인의 인터뷰내용은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어떠한 청구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은 긴급출동SOS24 프로그램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1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5.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SBS-TV : 「긴급출동SOS24」 프로그램 (2007년 11월 13일 22:00)
내 용 :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SBS는 과거 피해자에 관한 정정보도없이 11월 13일 23시 「긴급출동SOS24」 100회 특집 예고 방송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적, 인권적,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정정보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SBS는 과거 피해자에 관한 정정보도없이 11월 13일 23시 「긴급출동SOS24」 100회 특집 예고 방송을 하는것은 피해자의 신체적, 인권적,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반론보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구체적인 금액 제시하지 않음〉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1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김 수 응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SBS는 〈별지〉 보도문을 보도하라.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2007. 11. 21.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참
조〉 ☐

신청인이 모 단체 사무총장의 정실인사로 채용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부와 직원은 모두 14명이다.

장 총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후 2002년 6
월부터 2년 6개월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2005년 1월 ○○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장 총장의 취임 후 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
장 재직 때 서울○○지역본부장을 지낸 이모 씨가
지난 3월 개방적인 감사실장에, 홍보실장이었던 권
모 씨가 지난해 8월 계약직인 보도주간에 각각 임
명됐다. (후략)

보도내용

연합뉴스 : 『모 단체 사무총장 ‘정실인사’ 의혹 제
기』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대한○○사 고위 간부의 전 직장 출
신 인사들이 ○○의 개방직 간부와 계약직 간부로
채용되는 등 ○○ 인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대한○○사가 국회 보건복지위 전제회 의
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 ○○ 사무총장 취
임 이후 ○○의 개방직인 감사실장과 계약직인 보
도주간 및 재외동포사업팀 직원 등 3명이 국민연
금관리공단 출신으로 채워졌다.

장 총장 취임 후 2년여간 고용된 개방·계약직 간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연합뉴스는 지난 10월 29일자 사회면에 『모 단체
사무총장 ‘정실인사’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에서
모 단체의 사무총장이 전 직장 출신의 사람들을
개방직 간부와 계약직 간부로 채용하는 등 정실인
사를 했다고 보도하면서 감사실장으로 채용된 본
인의 신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사실보도이므로 손
해배상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이명박 후보가 LKe 설립 이전에 BBK와 단기대차 계약을 맺고 돈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 방 호)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1) 『도곡동 땅 판 돈 다스 거쳐 BBK로?』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2일자 4면)

내 용 : (전략) (주)다스는 2000년 12월 28일과 30일 외환은행 경주지점에서 하나은행 삼성센터 지점으로 비비케이 투자금 90억 원을 나누어 송금한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157억여 원이 빠져나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시점이 바로 12월 29일이었다. 검찰이 지난 8월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재정 씨의 매각대금이 (주)다스 출자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이 157억여 원 가운데 상당액은 (주)다스로 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주)다스가 그 전후 시점에 90억 원을 비비케이에 송금하는 등 모두 190억 원을 비비케이에 투자한 사실을 고려하면,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상당액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비비케이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중략)

마프는 비비케이 투자금과 엘케이이뱅크의 자본금이 포함된 800만 달러 이상을 에이엠파파스(A.M. Pappas)에 보낸다. 에이엠파파스는 김경준 씨가 돈세탁을 위해 미국에 설립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에이엠파파스는 2001년 2월 엘케이이뱅크의 지분 60%를 액면가의 3배(100억)에 되산다. 다스의 투자금과 엘케이이뱅크에 투자된 돈들이 마프와 에이엠파파스를 거쳐 다시 엘케이이뱅크로 되돌아오는 순환구조다. 이 후보는 엘케이이뱅크로 되돌아온 100억 원을 온라인 위탁매매 전문증권회사인 이뱅크증권중개(eBK)의 자본금으로 사용했다. 이 후보는 물론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씨도 이 회사 지분을 소유했다.

마프펀드와 에이엠파파스 계좌에 있던 돈들은 해외의 유명회사나 돈세탁 회사의 계좌로 보내졌다가 외국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옵셔널벤처스(옛 광은창투)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쓰인다. (후략)

(2) 『LKe-BBK, 1년새 47차례 120억대 거래 ‘긴밀한 관계’』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2일자 5면)

내 용 : (전략) 엘케이이뱅크 대표이사였던 이 후보는 2000년 2월 16일 비비케이 대표이사였던 김경준 씨와 ‘단기대여금 대차계약’을 맺었다. 엘케이이뱅크가 창립된 게 2월 18일이므로, 이 후보는 회사를 세우기도 전에 비비케이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부터 한 셈이다. 다스의 투자금 30억 원이 엘케이이뱅크에 대여금으로 유입된 근거도 바로 이 계약이었다. (중략)

당시 엘케이이뱅크는 이 후보가 전체 40만주(자본금 20억) 가운데 39만 9997주를 갖고 있던, 사실상의 이 후보 개인회사였다. 더구나 엘케이이뱅크와 비비케이는 사무실도 같은 건물, 같은 층 바로 옆이었다. 이 후보가 비비케이의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 이 후보가 30억 원의 출처나 성격을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경준 씨는 미국 법원에서 비비케이에 투자된 다스의 돈은 투자금으로 맡긴 게 아니라 이 후보가 만든 회사의 자본금으로 쓰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관련 본보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11월 12일자 4, 5면에 『도곡동 판 돈 다스 거쳐 BBK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지난 8월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재정 씨의 매각대금이 (주)다스 출자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이 157억여 원 가운데 상당액은 (주)다스로 갔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또 (주)다스가 그 전후 시점에 90억 원을 비비케이에 송금하는 등 모두 190억 원을 비비케이에 투자한 사실을 고려하면,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상당액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비비케이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이 후보는 엘케이이뱅크로 되돌아온 100억 원을 온라인 위탁매매전문증권회사인 이뱅크증권중개(eBK)의 자본금으로 사용했고 김 씨는 국외도피에 앞서 비비케이 투자

자들에게 횡령액의 대부분을 되돌려 주며, 모두 이 후보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5면 『LKe-BBK, 1년새 47차례 120억대 거래 ‘긴밀한 관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후보는 회사를 세우기도 전에 비비케이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부터 한 셈이며 이 후보가 비비케이의 법인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으나 비비케이로 흘러들어간 것이 전혀 없고, 이명박 후보는 이뱅크증권중개에

35억원의 자본 참여를 하였을 뿐이고, 김경준이 투자금을 돌려 준 사람들은 이명박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명박 후보가 비비케이와 계약을 한 사실과 비비케이의 법인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회사 보안직원인 신청인이 사진을 찍지 말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김변호사 주장에 “전형적 허위주장” 반박』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3일자 4

면)

내 용 : 〈모 기업의 본관에서 한 경비직원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문화일보는 지난 11월 13일자 4면에 모 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내용을 보도하면서 모 기업의 본관에서 경비직원인 본인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1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에클레시아뉴스가 신청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9.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평화의 브로커, Y 장로와 계약은 사기계약이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0일자 메인면)

내 용 : 이○○ 목사가 교회법에 관한 상담을 해준다는 대가로 세 달 계약에 300만 원을 받

고, 그것도 상대방이 취하를 요청하자, 계약상 나머지 200만 원을 내놓으라며, 민사소송을 걸어 40만 원을 받아냈다. 이것이 변호사법위반이 되는 지 안 되는 지 살펴보자. (중략)

에클레시안 뉴스는 노조위원장이 노조의 원래 목적 이외에 상대방후보 비방집회를 하기 위하여 노조의 원래 목적외에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변호사법 위반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 ○노조위원장 변호사법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0일자 『평화의 브로커, Y 장로와 계약은 사기 계약이었다』이라는 제목으로 이○○ ○노조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은 검찰에서 밝힐 것이라며 에클레시안뉴스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에클레시안뉴스는 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일이 없으므로, 검찰에서 밝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안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 4동 87-6번지

진은빌딩 301호

발행인 황 규 학

주 문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에클레시안뉴스(<http://www.ecclesian.com/>)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3일(1일 상단 첫째 줄, 2일 둘째 줄, 3일 셋째 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 10. 1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인 에클레시안뉴스(www.ecclesian.com) 홈페이지에 「평화의 브로커 Y 장로와 계약은 사기 계약이었다」 제하의 칼럼(이하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 바, 신청인이 돈을 받기로 하고 교회법에 대해 상담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칼럼의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부당한 금품수수를 한 일도 없으며 변호사법 위반한 행위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일도 없다면서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에클레시안뉴스는 이○○ ○노조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한 일이 없어, 검찰에서 밝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1월 19일에 정정보도청구 언론조정신청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은 이 건 조정신청 이전인 2007년 10월 22일에 이 건과 동일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칼럼을 상대로 언론조정신청(2007서울조정399, 정정청구)을 위원회에 제기하였으며, 심리 결과 “○○노조 위원장 이○○ 목사 관련 정정 및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이 사건 칼럼에 대한 조정사건이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면서 조정합의서 및 조정화해조서 제4항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에 의하면 조정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2007서울조정399 정정청구 사건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로 종결되었고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여 이행을 완료한 후 신청인이 이 사건 칼럼에 대해 다시 언론조정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기판력(既判力)의 법리에 따라서 배척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 건에서 다투고 있는 사실관

계는 피신청인이 검찰에 신청인을 고발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칼럼의 전체 취지 등을 보면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돈을 받기로 하고 교회법에 대해 상담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며 검찰 고발 부분은 이에 부수하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이므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 2880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언론중재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해양수산부 (장관 강 무 현)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김○○ 씨 관급공사 261건 3,647억
수주』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5일자
1면)

내 용 : 한나라당은 14일 정운재 전 대통령의전
비서관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 씨의 유착 의
혹과 관련해 김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 관급 공사를 수주
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박계동 원장
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노 대통령의 해양부 장관 재임기간 해양
부 발주 관급공사 6건을 수주한 뒤 장관 퇴임 이
후에는 해양부 관급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
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김 씨는 노 대통령 취임 이
후 다시 13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관급공사 수

주 특혜 의혹은) 노 대통령의 영향력과 무관하다
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쟁위는 “김 씨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261건,
3,647억 원어치의 관급공사를 따냈으며 이는 모두
수의계약이었다”고 밝혔다. (후략)

(2) 『“김○○ 씨 관급공사 261건 수의계약 4,332
억원 대출 과정 모두 비정상적”』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5일자 6면)

내 용 : (전략) 투쟁위는 “김○○ 씨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261건, 3,647억 원어치의 관급공사를 따
냈으며 이는 모두 수의계약이었다”며 “김 씨가 금
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4,332억 원에 이른다”
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특히 김 씨가 노 대통령이 해양부 장관
재임 시절 해양부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따낸 점에
주목했다.

김 씨가 노 대통령이 해양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해양부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했으나 2001년 3월 노 대통령의
장관 퇴임 이후에는 해양부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
하지 못했다는 것.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15일자 A1면 및 A6면 ‘정윤재 게이트’ 관련 김모 씨 보도에서 노 대통령에 해양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2000년 8월부터 노 대통령 장관 퇴임 이후에는 해양부관련 관급 공사를 수주한 것은 결국 노대통령의 영향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1998년 이후 발주한 관급공사 중 김○○ 씨가 해양부로부터 직접 수주한 공사는 한 건도 없으며, 노대통령의 장관 재임시 2건의 하도급 수주가 있었으나 이는 장관 취임 이전인 1998년도에 이미 부대입찰 조건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 장관 재임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진 5건의 하도급 수주도 이미 수주받은 공사 시행중 입은 태풍피해 복구공사 등이 추가된 것이며 특히 수해복구공사는 공사보협금으로 이루어진 사적 계약으로 해양수산부 및 노 대통령의 영향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10월 15일자 A1면 A6면 김○○ 씨 해양수산부 공사 19건 수주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해

양부는 김 씨가 하도급 수주한 공사는 7건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장관 재임시 수주한 2건의 공사는 취임 이전에 사실상 계약이 이뤄진 것이며, 대통령 취임 이후 수주한 5건의 공사도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것으로 노대통령 및 해양부 영향력과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12월 4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6면에 보도하되, 제목을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30일자 A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통학버스 승차비와 식당 임대료를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포항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포항MBC-TV : (1) 「뉴스테스크」 프로그램 (2007년

10월 31일 21:35)

내 용 : ▷앵커 : 사학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통학버스 승차비와 식당임대료를 빼돌린 포항 모 고등학교장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기자 : 포항 D고등학교와 Y고등학교 교장인 K모 씨! 재력가로 알려진 K 교장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치졸한 방법으로 돈을 횡령했습니다. 포항 Y고등학교의 식당임대 계약서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80만 원씩 매달 80만 원을 더 받아 3년간 1,88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낸 통학버스 승차비도 3년간 2,900만 원이나 빼돌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올해 초에는 통학버스 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주면서 버스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후략)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1월 1일 21:35)

내 용 : ▷앵커 : 식당 운영비와 통학 버스비를 횡령한 혐의로 교장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된 포항모 고등학교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자 : 경북 교육청은 오늘 직원 2명을 해당 학교로 파견에 경찰수사와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과 함께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략)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1월 9일 21:35)

내 용 : ▷앵커 : 전교조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운영비를 빼돌린 학교장이 교장으로 있는 또 다른 학교에도 수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 : 전교조 등은 포항Y고등학교 이사장 겸 학교장인 김모 씨가 회계 조작을 통해 통학버스비와 학교 식당 임대료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으며, 김모 씨가 교장으로 있는 D중, 고에도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D중, 고에 정보공개를 통해 회의록과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억 천여만 원의 차액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4)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1월 11일 21:35)

내 용 : ▷앵커 : 학교장의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고등학교가 이미지 실추 등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 포항Y고등학교는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인 K모 씨가 학생들의 통학 버스비와 식당 임대료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개인 비리가 학교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K모 씨가 교장으로 있는 D중, 고에서도 같은 수법의 횡령이 있었다고 전교조가 폭로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학교운영비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뉴스데스크」 뉴스에서 D교육재단의 Y고등학교가 회계조작을 통해 통학버스와 학교식당 임대료 수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D교육재단의 D중, 고에서도 1억 1천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수사를 촉구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Y고등학교 수천만 원 횡령은 사실과 다르며, D중, 고의 차액 발생도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에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미 신청인 측의 성명서를 보도해 주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전직 병원장 재직시 발생한 산모 사망사건을 다루면서 신청인 병원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여성병원 (원장 이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SBS-TV : 「생방송 김승현, 정은아의 좋은아침」 프로그램 (2007년 8월 20일 09:30)

내 용 : ▷홍모 씨 : 제가 지금도 한이 되는게 부인한테 들은 마지막 말이 “아파 빨리 와”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걸 듣고...

▷앵커 : 지난 7월 26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계속된 출혈로 인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자 :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홍모 씨 :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혈을 하고 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 자궁을 들어내야 한다. 또 전화가 온 게 이번엔 복부출혈이 멈추지를 않는다...(병원에) 피가 없다. 피가 오고 있다...피가 오는 것보다 산모가 가는 것이 빠르겠다.

▷앵커 : 자궁출혈로 인해 산부인과에서 응급수술을 하던 중 지혈이 되지 않자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최○○ 씨, 하지만 최 씨는 구급차안에서 과다 출혈로 인해 쇼크로 심장마비가 왔는데요.

▷홍모 양 : 언니가 거품을 물었어요. 거품을 물었을 때 남자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대학병원 응급과장이 출혈량이 얼마나고 물었어요. △△병원에서 여의사가 패드 두장을 적시고 옆으로 살짝 호를 정도였다고... 800cc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응급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흘리고 사람이 이 지경이 됐는데 말이 되느냐? (중략)

▷앵커 : 건강했던 최 씨가 출혈에 출혈을 발생했을 당시 유가족들은 당시 산부인과 의료진들의 응급처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 씨가 출산한 아이가 심각한 기형아라는 사실인데요. 이 또한 유족들은 해당 산부인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유가족 : 우선 첫 번째로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기형아가 나왔다는 것! 저희한테 전혀 말도 없었고...

▷앵커 : 꼬리뼈 부근에 직경 7cm의 물혹이 있는 아이는 출산 직후 수술을 했지만 현재 대소변 장애와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꾸준히 진료를 받아왔던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태아의 기형사실을 몰랐는지.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산모 최 씨의 응급처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유가족 : 3명 모두 그만두신 건가요?

▷△△산부인과 관계자 : 네, 저희가 (그분들이) 이 일 때문에 그만두신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그만두실 예정이었어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SBS-TV는 지난 2007년 8월 20일자 「생방송 김승현, 정은아의 좋은아침」 프로그램에서 현재 병원장에게 인수되기 이전에 모 병원에서 발생한 산모의 사망사건을 다루면서 마치 현재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1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의 공익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〇〇대 등 대형병원 공기 속 세균
‘우글우글’』 제하의 기사 (2007년 10
월 14일자 정책행정면)

내 용 : 〇〇대병원, △△대병원, 서울〇〇병
원 등 대형종합병원의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총부
유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산후조리원 역시 예외
가 아니었고, 〇〇산후조리원은 포름알데히드가 검
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1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의료기관, 어린이
집, 대형마트 등의 실내공기질이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고 각종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〇〇산후조리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4일자 정책면에
『〇〇대 등 대형병원 공기 속 세균 우글우글』이라
는 제목의 기사 중 〇〇산후조리원은 포름알데히
드가 검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라는 기사내용으
로 〇〇산후조리원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상태
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〇〇산후조리원은 2006년 4
월 완공 후 검사에서 포름알데히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내용은 사실이나 2006년 12월 재검사에서 아
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07년 8월에 실시된 검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
는 적합판정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4일자 정책행정
면에 “〇〇대 등 대형병원 공기 속 세균 우글우글”
이라는 제목의 기사중 ‘〇〇산후조리원은 포름알
데히드가 검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라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〇〇산후조리원이 실내공기
질측정 검사에서 포름알데히드 불합격 판정을 받
은 것은 2006년 4월 리모델링 공사 직후 결과이며,
그 후 실시된 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1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메디컬
투데이〉 메인화면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
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원 조정대상기사가 연결
되게 하며 기사 상단에 박스기사로 위의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크
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조정
대상 기사와 위 보도문이 함께 나오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메디컬투데이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0일자 메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용역 입찰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5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인〇〇〇〇

(대표이사 오 〇 〇 외 1인)

피신청인 : 우리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우리일보 : 『폐기물처리용역 서류조작 낙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3일자 1면)

내 용 : 폐기물처리 업체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된 국내 굴지의 환경업체인 I업체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 허위서류를 제출,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동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I업체는 지난해 초 서울 강북구가 입찰 공고한 폐합성수지류 등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용역에서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부분 정부지정신기술적용에 부여하는 배점을 받기 위해 조작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

그는 또 I업체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치확인을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신기술 설치확인서를 발부하는 공인기관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11월 13일자 1면에 『폐기물처리 용역 서류조작 낙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폐기물처리업체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된 국내 굴지의 환경업체인 I업체가 반입불가폐기물처리 용역 입찰에 허위 서류를 제출,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결과 I업체는 본 입찰에 조작된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I업체는 배점을 부여받기 위해 조작된 서류를 제출했으며, 아직까지 신기술설치확인서를 발부하는 공인기관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신기술설치확인서를 발급하는 국내의 전문공인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

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13일자 1면 『폐기물처리용역 서류조작 낙찰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된 굴지의 환경업체인 I업체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 허위 서류를 제출,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환경업체인 I업체는 본 입찰에 조작된 허위서류를 제출되지 않았음이 분명 확인되었으며, “배점을 부여받기 위해 조작된 서류를 제출했다”, “아직까지 신기술설치확인서를 발부하는 공인기관은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신기술설치확인서를 발급하는 국내의 전문공인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우리일보 2007년 11월 30일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공인기관 없이 정부지정신기술 적용 받아)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우리일보 홈페이지(<http://www.wooriilbo.com>)에 2007년 11월 30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사건 기사를 2007년 12월 1일자로 내린다.

• 피신청인이 위 합의사항을 이행할 시 신청인은 이 기사와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우리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3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신청인 문화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2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화원 (원장 권 ○ ○)

피신청인 : 충남시사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9.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대전조정1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충남시사신문 : 『○○문화원 제 갈길 찾아야』 제하
의 기사 (2007년 10월 16일자 16면)
내 용 : 〈2007대전조정19의 보도내용 참조〉

충남시사신문 : 『천안문화원관련 기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1
월 27일자 16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20의 합의사항 참
조〉 □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이 미군기지 기공식 현장의 반대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한·미동맹 평택시대를 연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4일자 정치면)
내 용 : 13일 오후 2시 경기도 평택시 평택읍 대
추리. 평택 미군기지 기공식을 축하하는 행사가 한
창인 가운데 축포가 터지면서 하늘로 올라간 두
개의 애드벌룬 사이에 걸린 대형 현수막의 글귀다.
한·미 동맹이 융산시대에서 평택시대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메시지였다.

행사장 분위기는 1년 6개월 전 주한미군기지 이
전을 놓고 반미 시위가 격렬했을 때와 180도 달랐
다. 행사 현장은 과거 대추리 마을과 대추리분교가
있던 곳이다. 이곳에선 지난해 5월 평택기지 건설
에 반대하는 시위대 1만여 명과 경찰 병력이 정면
충돌해 유혈 사태를 빚었다. 문정현 신부 등 범민
족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130명은 이날도 행사
장 바깥 팽성읍 함정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기지 이전을 반대하며 이주를 거부해 온 ○○리 주
민 40여 가구는 시위에 합세하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미동맹 평택시대를 연다'의 기사중
일부 사실과 다름
- 내 용 : 중앙일보는 지난 11월 14일자 정치면에

『한·미동맹 평택시대를 연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여 이주를 거부해 온 ○○리 주민 40여 가구는 시위에 합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리에 살다가 기지 이전을 반대하며 ○○리로 이주해 온 주민 일부가 시위에 합세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송○○ 주민 일부 시위 참여
- 내 용 : 본지 11월 14일자 2면에 보도한 “한·미동맹 평택시대를 연다” 제하의 기사 가운데 “기지 이전을 반대해 이주를 거부해 온 ○○리 주민 40여 가구는 시위에 합세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주민 일부가 시위에 합세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중앙일보 2면 <바로잡>

습니다>란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하여 2007년 12월 28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중앙일보 홈페이지(www.joins.com)에 게재하며, 원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연결하여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오토바이 인도주행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를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2007년 11월 19일 19:10)

내 용 : ▷앵커 : 길을 걸다가 인도위에 질주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불편하거나 놀라신 적이 있으시죠! 한 자치단체가 보행자를 위협하는 오토바이 단속에 직접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 기자입니다.

▷기자 : 서울 도심에 한 인도 갖가지 오토바이들이 막힌 도로를 피해 인도위를 내달립니다. 질주

하는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사이로 곡예운전을 합니다.

▷시민 : 이어폰을 꽂고 다녀서 밖에 소리가 잘 안들리는데 가끔 뒤에서 오토바이가 썩썩 지나갈 때 짹짹 짹짹 놀라고...

▷기자 : 상황이 이렇자 관할 구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도 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동 식별해 촬영하는 장비를 장착한 단속차량을 구내 주요 도로에 배치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단속에 하루 평균 3~40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 오토바이가 보도에 다니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을 조금 해소해 보려고,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 그러나 구청에 갑작스런 단속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답답지만은 않습니다.

▷오토바이 기사 : 오토바이 이 정도만 되도 사람을 안 다치면 되지 않을까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11월 19일자 「뉴스네트 워크」 프로그램 시간에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에 관해 보도한 내용중 인터뷰에 응한 오토바이 기사는 거래처에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인도에 잠시 정차한 사이 인터뷰에 응한 것

일뿐, 인도주행을 해 범칙금을 부과당한 사실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대학가에 ‘국제커플’ 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커플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1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2.
 처리결과 : 합 의

사를 보도하면서 본인과 외국인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3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년 12월 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다만 피신청인이 위 금액 중 10,000,000원을 2007년 12월 7일까지 임의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대학가 ‘국제커플’ 싹속속도』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4일자 1면)
 내 용 : <대학가의 ‘국제커플’ 싹속속도를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외국인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모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헤럴드경제는 지난 8월 24일자 1면에 대학가의 싹속속도로 국제 커플이 급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출연자들의 가정문제를 상담하면서 신청인이 불륜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3.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KBS-1TV : 「아침마당」 프로그램 (2007년 8월 20일 09:30)

내 용 : (전략) >사회자 : 아까 조금 잠깐 못 들은 거 다시 한번 여쭙보면, 그러면은 형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이혼 상태가 아니었지요?

>구○○ : 그렇죠. 그때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여자가 저쪽 전라도 지방에서 광주에서 정수기 사업을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살림이 좀 조달렸었나봐요. 많이 안 좋았었는데.

>사회자 : 아, 그러다가 이제 형부를 만나면서 이혼을 하고,

>구○○ : 그러면서 형부를 만나면서 돈이 좀 있더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둘이 처음에는 그냥 만났겠죠. 만나다 보니까 왜 아무리 유부남 유부녀라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니까, 그때 이혼을 하고 애들까지 데리고 나온 거죠.

>사회자 : 아, 그런데 하필 나온 집이 바로 앞집이었던 거고. 그럼 말이죠. 직접 형부하고 언니와 함께 이렇게 따진다든가 얘기를 많이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구○○ : 해 봤어요.

>사회자 : 뭐라고 그런가요? 미안한 마음도 없나요?

>구○○ :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저희 형부께서 사업상 파트너다. 사업상 파트너인데 이렇게 막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회자 : 아, 별거 아니다, 이 사람 파트너일 뿐이다?

>구○○ : 그렇죠, 그래서 니들 파트너가 어떻게 앞집에 사느냐, 그리고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문자가 올 수 있느냐, 무슨 '자기야 사랑해'를 사업장 파트너끼리 하고 있느냐.

>사회자 : 그건 말이 안 되죠.

>구○○ :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는, 제가 내연이다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는 뭐, 자기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지 불륜은 아니다.

>사회자 : 아니 그게 불륜이지 뭐가 불륜이 아니고.

>구○○ :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1TV는 지난 2007년 6월 5일자 「아침마당」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가정문제를 상담하면서 사실확인없이 본인이 불륜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도하고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무단으로 다룬받아 게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조정대리인 고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8.

□

출연자들의 가정문제를 상담하면서 신청인이 불륜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3.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KBS-1TV : 「아침마당」 프로그램 (2007년 8월 20일
09:30)

내 용 : <2007서울조정442의 보도내용 참조>

KBS-1TV는 지난 2007년 6월 5일자 「아침마당」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가정문제를 상담하면서 사실확인없이 본인이 불륜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도하고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게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결 정 문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7서울조정442의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모 재단에서 추진중인 납골당 관련 서류와 금품을 절도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46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신안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6.
처리결과 : 취 하

인 K모(52) 씨가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투자자이며 설립자인 K 씨가 선임한 재단법인 대표이사로서 이사장인 P모(48) 씨가 본 사업의 재산권과 운영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K모 상임이사와 공모해 불법으로 이사를 해임하고 자신의 조카를 불법으로 등재해 한테다 설립자 K모 씨를 배제할 목적으로 위임계약해지통보서까지 발송하기도 했다는 것. (후략)

보도내용

신안신문 : (1) 『수천억 원대 납골당 사업 분쟁 ‘빼적’』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민간이 영암군에 투자해 착수했던 수천억원대의 ○○강 베틀공원사업(납골당사업)이 경찰간부 연루설에 이어 재단법인 이사들과 실질적인 소유자간 민·형사 분쟁 발생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단법인 설립자와 이사진이 재단법인 일부 이사진에 대해 특수절도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에 이어 피고소인 조사 등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재단법인설립자

(2) 『○○강 베틀공원사업 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8일자 사회면)

내 용 : 영암군 금정면 일대 22만여 평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던 ○○강 베틀공원사업(납골당)이 이사진간 민·형사분쟁에 이은 고소사태로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목포경찰은 지난 9일부터 3일간 고소인인 설립자 김모 씨를 조사한데 이어 이사 조모 씨 등을 조사했는데 피고소인인 재단 이사장 박모 씨와 상임이사 B모 씨, 건설업자 C모 씨, 모 언론사 회장 D모 씨 등은 이달 중순 이후 조사가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립자 김모 씨가 재단 이사장 박모 씨와 상임이사 B모 씨, 건설업자 C모 씨, 모 언론사 회장 D모 씨 등을 상대로 재단을 사유화해 납골당사

업을 탈취할 목적으로 공모했다며 A모 씨와 상임이사 B모 씨를 특수절도 및 명예훼손,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로 고소하고 건설업자 C모 씨, 모 언론사 회장 D모 씨 등 5명을 사기 및 알선수재와 교사, 정범공범죄로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제 목 : ○○강 베들공원 사업재단 이사장 등 무혐의로 밝혀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8일자 사회면에 『○○강 베들공원사업 경찰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김모 씨가 ○○강 베들공원 사업 재단 관계자들을 특수절도 및 명예훼손,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수사결과, 이 사건에 대한 재단 관계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재단 이사장이 재단에 관련된 서류를 가져간 것은 절도로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업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신반영률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이유로 모 대학에 정원모집 중단조치를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법원 “판결 때까지 집행 정지”』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9일자 A10면)

내 용 : 모 대가 모집 정원에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제재에 불복, 법원에 ‘교육부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모 대는 2008학년 입시에서 기존의 모집 인원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달 초 모 대에 향후 4년간 매년 160명 규모의 정원모집을 중단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당시 모대가 정부의 내신 반영률 가이드라인(30%)을 어기고 18%의 반영률을 책정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내 용 : 본지는 11월 9일자 『법원 “판결 때까지 집행 정지”』 제하의 기사에서 모 대학의 모집정원 동결 조치는 당시 모 대학이 정부의 내신 반영률 가이드라인(30%)을 어기고 18%의 반영률을 책정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모대학 정원 감축 계획은 2005년 모 대학과 모 대학 병설 전문대의 통폐합시 승인조건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한 제재 조치로 대입 내신 반영률과는 관련이 없기에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가 11월 9일자 A10면 「법원 “판결 때까지 집행 정지”」 제하의 기사에서 교육부가 ○○대에 정원모집 중단조치를 내린 것은 당시 ○○대가 정부의 내신반영률 가이드라인을 어긴 데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고 보도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2005년 ○○대와 ○○대 병설 전문대의 통폐합시 승인조건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한 조치로 대입 내신반영률과는 관련이 없

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2007년 12월 14일까지 조선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대 측 신청 받아 들여…내년 기존인원 선발가능)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4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땅투기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9.

처리결과 : 취 하

명조치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대전공무원 땅투기 적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3일자 11면 『대전공무원 땅투기 26명 적발』 제하의 기사와 관련,

대전시 공무원인 조모 씨는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즉 ‘토지이용의무해태’의 문제이지 투기가 아니며, 부인 본인이 매입한 것은 ‘부인 이름으로’ 라고 보도하여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농가주택 2채가 아니라 구옥 1채가 있는 토지를 구입, 수리하여 거주하고 있어,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기사 (2007년 12월 6일자 2면)

내 용 : 경향신문 11월23일자 11면 ‘대전 공무원 땅투기 26명 적발’ 기사에 대해 공무원 조모 씨는 자신은 투기사실이 없으며 행자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농가주택 2채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옥1채가 있는 토지를 구입, 수리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 『대전공무원 땅투기 26명 적발』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3일자 11면)

내 용 : 대전시 공무원 26명이 땅투기를 해오다 적발됐다. 일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행정자치부 합동감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대덕특구와 유성구 성북동·학하동 등 개발예정지 일대 토지를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매입한 공무원 26명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청 조모 서기관은 2005년 6월 대전지역 구청에 근무하는 부인 이름으로 골프장 등 종합레저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유성구 성북동 일대 농가주택 2채(3필지, 1548㎡)를 2억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이후 값이 2배 이상 올랐다.

대전시는 조 씨가 농가주택을 사들인 뒤 이사를 안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사실이 확인돼 대기발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땅투기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9.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44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445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서울신문 : 『대전 부동산투기 26명 적발』 제하의 기
사 (2007년 11월 23일자 11면)

서울신문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8
일자 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45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땅투기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9.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44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445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세계일보 : 『‘땅투기’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3일자 10면)

세계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6
일자 1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45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땅투기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9.
처리결과 : 취 하

〈2007서울조정445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조선일보 : 『‘투기 공무원’ 무더기 적발』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3일자 A14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4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2
월 6일자 16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45의 취하 후 보도문 참
조〉 ☐

2005년 발생한 전방GP 총기난사 사건 당시의 일지가 위조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육군수사단 (단장 윤 종 성)
피신청인 : 군사세계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군사세계 : 『530GP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다 ‘일지
위조’의 단서』 제하의 기사 (2007년 11
월호 70~81면)

내 용 : (전략) 사실 유가족들은 초기부터 군이
문서를 위조하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유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확인하기 이
전에 520GP와 531GP의 일지가 임의로 조작되었다
는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다. 물론 총기사고가 이어
졌던 530GP의 사고 당시 부대일지는 아예 없어졌
고 ‘530GP 상황보고’라는 문서가 상황일지를 대
신하고 있는 모양이다.

첫째, 520GP의 19일 사고 당시 일지는 18일 해당
시간대 일지 위에 따로 덧붙여져 있다.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덧붙이고 복사를 했다가 보
다는 복사기 위에 새로 고쳐 쓴 일지를 덧대고 복

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지의 칸의 줄이 서로 어
긋나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실제 520GP의 19
일 해당 시간대 일지의 모양을 보고 “그날의 일지
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군 수사발표와
말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일지를 은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댄 일지 밑으로 보이는 내용은 18일 같은 시간
대 일지의 내용과 한자도 틀리지 않고 덧댄 일지
에 의해 잘린 글자와 숫자의 모양도 똑같다. 어떻
게 18일 일지와 19일 일지가 똑같을 수가 있을까?
한 예로 일지 3쪽(싸인펜으로 굵게 덧대어 쓴 쪽
수 번호) 18일 520GP에서 23:00에 ‘5사단 귀순자
관련 군단 실태점검 조치 사항’이라고 쓰여 있는
데 이것이 4쪽 19일 520GP 일지 23:00에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왕 은폐하려면 감쪽같이 하든
가. 너무나 엉성하고 서체도 판이하게 다른 상황을
보면서 은폐하려고 작정했다기보다 은폐했다는 것
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렇게 엉
성하게 은폐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
도다. (중략)

연천군 총기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개최시 “당시 야외에서 차단 작전을 수행하다 북
한군의 미상화기 9발의 공격을 받아 8명이 군인이
사망한 사건을 국방부가 가짜 범인을 내세워 은폐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520GP와 531GP의 문서

조작 상황만을 본다면 정밀한 은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은 상부의 치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일선 부대에서 임의적으로 은폐조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530GP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지위조’의 단서”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및 사과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31일 발행된 11월호 『530GP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지위조’의 단서』 제목의 기사에서 530GP의 사고당시 상황 은폐, 상황일지 문서위조 등을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당시 본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기 위하여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전문 감식팀에 의한 현장 감식 및 사체 검안을 실시하고, 증거물 수집과 감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과학적이고 완벽한 수사활동으로 범인 김○○의 범행을 입증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군 검찰에서도 수사본부를 편성하여 헌병 수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한 뒤 기소하여 범인 김○○이 1, 2심에서 명백한 증거자료에 의해 유죄를 인정받아 사형선고를 받음에 따라 현재 본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계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완전 공개수사 원칙하에 사건발생 초기부터 국회 및 언론, 유족,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현장을 공개하였고, 현장검증 시에는 유족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유족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장 및 소속 부대 등지에서 수사관 참여 없이 생존 장병들과 면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수사결과 발표시에는 생존 장병 전원을 참여시켜 유족들과 기자들이 사건발생 당시 상황 및 의문 사항 등을 직접 질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의혹을 완전히 해소시켰으며, 또한 ‘국가진상조사소위원회’에 수사요원과 범인 김○○을 비롯한 생존장병 전원이 참석하여 수사결과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검증 받는 등 한 점 의혹 없는 완벽한 수사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530GP에서 차단작전이 실시되

었다는 것’과 ‘북한군 총격에 의한 사망’, ‘사고 당일 520GP와 531GP의 일지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2005년 ‘530GP 총기난사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호 『530GP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지위조’의 단서』 제하의 기사에서 2005년에 발생한 530GP의 총기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 당시 530GP의 인근 초소인 520GP의 6월 18일과 19일 사건일지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고, 531GP 일지는 싸인펜으로 덧대어 쓴 흔적이 있는 등 조작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결과 보도에 첨부된 520GP와 531GP상황일지는 모두 복사본으로서 원본과는 다르며, 복사과정의 실수로 동일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복사본 상태가 좋지 않아 싸인펜으로 덧대어 쓴 것을 잘못 해석하여 보도한 것으로, 당시 상황일지가 조작되었다거나 은폐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육군은 사건발생 당일 520GP와 531GP에서 차단작전이 실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평상시 훈련의 일환이었고, 인접GP에서 차단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530GP에서도 차단작전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특히 사건발생 당일 530GP의 차단작전은 분명히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육군은 아울러, ‘사건 당시 소속 부대원 중 일부의 전투복을 불태우고 소총과 방독면이 폐기처분되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의혹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건당시 전투복과 방독면 등은 수사절차가 종료되고 현장보존기간이 끝난 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한 것이며, 사건발생 초기부터 국회 및 언론, 유족,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현장을 공개하였고, 현장검증 시 유족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참여시키는 등 모든 과정에서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정확하며, 한 점의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 군사세계>2008년 2월호 70면 이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소대원의 모

든 전투복을 불태운 것은 아니다”)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권을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군사세계 : 『2005년 ‘530GP 총기난사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호 6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네거티브 전술로 부노회장에 당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한국기독교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29.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한국기독교신문 : 『괴문서로 당선된 장로부노회장 선거 유감』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3일자 11면)와 3건

내 용 : 최근 165회 정기노회를 연 B 노회는 100년이 넘는 부산과 경남에 노회가 위치해 있는 만큼 무게가 있는 역사 깊은 성노회다.

하지만 그 전통과 역사에 걸맞지 않게 세속적인 명예욕과 감투욕에 빠져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추태인 괴문서 사건이 발생하여 노회에서 장로부노회장에 이변이 생겨났다. 노회안에서 목사, 장로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역해 가는 임원 가운데 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제도가 있다. 이번 추태는 장로부노회장 자리를 놓고 노회 개최 한달 전부터 B 노회 장로회가 추천한 후보를 향한 음해성 괴문서가 장로, 목사들에게 무차별 살포된 것이다. 그것도 발신인이 없는 ‘목사회원 일동’이라는 글자만 표시한 채 익명의 ‘괴문서’가 총대들에게 발송되어 이번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장로회가 해마다 장로회 몫으로 간주하여 추천해 온 장로회 후보가 떨어지고, 장로회를 무시하여 해당회가 추천한 부산○○교회안 모 장로가 장로부노회장에 노회 총대 과반수 선에 겨우 붙어 당선되었다.

장로회에 해당 행위는 물론 당선된 분은 장로회 서기직에 몸담고 있었던 분으로 자신이 회칙과 규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괴문서의 힘과 일부 추종한 세력에 의해 후보로 나서서 당선이 되긴 해도 부산노회 장로회는 그 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노회장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장로회 전체 이름으로 B 노회 임원회와 해당 당회에 항의공문을 발송할 것도 의견이 일치했다. 일반 세상에도 ‘괴문서’를 유권자한테 무차별 살포하면 선거관리위가 나서서 이를 색출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상식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산노회 장로부노회장 당선은 괴문서와 무관

• 내 용 : 본보가 지난 10월 27일자 10면에 『괴문서로 당선된 장로 부노회장』이라는 제목으로 장로 부노회장으로 당선된 안 장로가 괴문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장로는 적법한 선거과정과 투표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10월 27일자 10면 『괴문서로 당선된 장로 부노회장』 제하 등의 기사와 관련, 안○○ 장로는 자신의 당선이 괴문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노회장의 선출은 적법한 선거 과정과 투표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기독교신문 2007년 12월 22일자 10면에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 모양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중 2007년 12월 27일자 10면 “네거티브 전술로 당선된 장로부노회장 떴뻔할까?”에 준하도록 하며, 내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들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기독교신문 : 『부산노회 장로부노회장 당선은 괴문서와 무관』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5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마○○○○ (대표 최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집 수 일 : 2007. 11. 30.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한겨레 : 『청소년상대 인터넷쇼핑몰 조심!』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6일자 21면)

내 용 : 의류나 신발, ‘짜퉁’ 상품 등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제품을 판매한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인터넷 쇼핑몰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들어 접수된 청소년 대상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는 모두 501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주요 업체는 간○, 마○○○○○, 와○○, 엽○, 엔○○○○, 리○○○○, 나○○

○○○, 갸○ 등 8개 업체로, 이 가운데 와○○과 엽○, 엔○○○○는 동일한 사람이 운영하는 쇼핑몰로 나타났다.

이들 쇼핑몰들은 대부분 물품을 주문한 뒤 날짜가 많이 지나도 제품을 보내주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안 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데다, 사이트에 고의로 잘못된 주소나 연락처를 기재해 소비자들의 환불, 제품 교환 등의 요구를 회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인터넷 쇼핑몰 피해 급증 관련 마○○○○ 반론

• 내 용 : 연합뉴스는 지난 10월 19일에 『청소년 대상 인터넷 쇼핑몰 조심!』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넷쇼핑몰 ‘마○○○○’가 통신판매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지난 해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다 시간이 경과해도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업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는 올해 5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고, 구매안전서비스인 '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주문 상품인 경우에만 일부 지연됐을 뿐 국내 주문 상품은 정상적으로 배송이 이뤄지고 있고, 게시판, 메일, 전화응대의 3가지 수단을 통해 고객응대를 하고 있으며, 해당용품 시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런칭하여 7년간 영업해오며 검증을 통해 대형쇼핑몰에 이미 납품을 해오고 있는 만큼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마○○○○

대표 최 ○ ○

조정대리인 조 ○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겨레신문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서 형 수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조정결정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간○’, ‘와○’, ‘깎○’ 등 사기 잇따라...미성년자가 운영도”) 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2. 또한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조정결정이 확정된 익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의 경제섹션 '쇼핑·소비자'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

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인터넷 한겨레>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에서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도 같은 페이지에 나오도록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4. 피신청인이 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4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4.

<별 지>

• 제 목 : 인터넷 쇼핑몰 피해 관련 반론

• 내 용 : 본지 10월 26일자 21면 「청소년 대상 인터넷 쇼핑몰 조심!」 제하의 기사에서 '짜퉁' 판매 등을 이유로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중 대부분이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안 되어 있으며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된 업체 가운데 '마○○○○'는 '짜퉁'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으며 구매안전서비스인 '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한겨레 : 『반론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8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의 별지 내용 참조>



신청인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마○○○○ (대표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청소년 대상 인터넷 쇼핑몰 피해 급증”』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9일자 사회
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45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인터넷 쇼핑몰 피해 관련 반론
- 내 용 : 지난 10월 19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 쇼핑몰 피해 급증”』 제하의 기사에서 ‘짜퉁’ 판매 등을 이유로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중 대부분이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안 되어 있으며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된 업체 가운데 ‘마○○○○’는 ‘짜퉁’ 상품을 취급하

지 않고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 있으며 구매안전서비스인 ‘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12월 29일 오전 9시부터 2007년 12월 29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의 경제섹션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같은 페이지에 나오도록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인터넷 쇼핑몰 피해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9일자 경제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모 청소년수련관을 기존 수탁기관에 계속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1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시민연합 (대표 김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신문 : 『청소년 없는 청소년수련관』 제하의 기
사 (2007년 10월 31일자 8면)

내 용 : (전략) 지난달 대구시의 청소년수련관
실태조사 결과, 대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4곳의
청소년 이용률은 전체의 47.8%였다. 수성구청소
수련관만 77.3%의 이용률을 보였을 뿐 나머지 3
곳 (서구, 북구, 달서구) 모두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적
정기준인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가 기존 수탁운영기관의 지속

적인 위탁을 주장하고 있는 ○○구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전체 이용자 22만 7천여 명 중 청소년은 7만 3천여 명으로, 32.5%의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적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데다 일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다 보니 수익창출을 위해 일반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10월 31일자 사회면에 『청소년 없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제목하에 “특히 최근 시민단체가 기존 수탁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위탁을 주장하고 있는 ○○구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라고 보도하면서 ○○○○시민연합이 기존 수탁법인의 재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하였습니다.
-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현재 ‘○○○○시민연합’ 뿐이며, 누가 봐도 ○○○시민연합임을 알 수 있음을 감안, 사실확인결과, ○○○○시민 연합은 무원칙적인 ○○구청의 민간위탁을 비판하는 내용의 두 차례 성명서 어느 곳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10월 31일자 본지 8면 『청소년 없는 청소년수련관』 제목의 기사중 “최근 시민단체가 기존 수탁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위탁을 주장하고 있는 ○○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시민연합은 “청소년수련관을 기존 수탁기관에 계속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 8면에 상자기사로 2007년 12월 14일까지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16포인트 고딕활자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매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2일자 8면)
- 내 용 : 10월 31일자 본지 8면 ‘청소년 없는 청소년수련관’ 제목의 기사중 ‘최근 시민단체가 기존수탁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위탁을 주장하고 있는 ○○○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시민연합은 ‘청소년수련관을 기존 수탁기관에 계속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 본지는 12월 11일 대구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이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

신청인 회사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특혜를 받아 국책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해운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 내일신문 : (1) 『○○해운 2011년까지 6,000억 특혜 보장』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일자 20면)
- 내 용 : 동북아 물류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산신항만 사업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신항만 건설에 사용되는 모래 공급을 특정 업체가 독점, 이미 2500억 원대 사업 특혜를 얻었으며 향후 4년간 6000억 원대에 달하는 독점 사업이 보장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특정 업체를 편법·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산신항만 건설 사업의 규모는 1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며 이 가운데 모래 8500억 원을 포함해 골재가 1조 원 가량 차지한다. (중략)

하지만 해수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민과 지자체는 수공뿐 아니라 ○○해운의 골재채취 역시 반대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어민 반발을 무마키 위해 당근책을 제시했다. 통영시에 1500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 8월 13일 ‘골재채취 관련 동향 보고에 대한 회신’이란 공문을 보내 △증화항 지정 개발·강수산 천수시설 △통영항 유지준설 △육지항 정비사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즉 ○○해운의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통영시와 어민들의 반발을 거액의 현안 사업 지원으로 막은 것이다.

그 결과 ○○해운은 2012년까지 5년간 독점을 보장받았다. 통영시와 어민들은 향후 5년간 ○○해운의 골재채취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거액의 예산이 골재공영제를 위해 쓰인 게 아니라 특정기업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사용된 셈이다. (중략)

해수부의 이같은 특혜 조치는 올해뿐 아니다. ○○해운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신항만사업 바다골재를 독점납품했다. 특혜적 독점 납품에 따라 업체가 올린 매출은 자그마치 2500억 원대가 넘는다.

해운의 모래 납품 단가는 9400원/㎥ 가량으로 지난 2003년 이후 독점 허가받은 2700만㎥을 고려하면 2500억 원대의 사업특혜를 받은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운의 적정가격이 6000원/㎥이라는 지적을 적용한다면 무려 900억 원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산된다. (후략)

(2) 『○○해운 접안시설·채취선박 없이 허가받아』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일자 22면)

내 용 : ○○해운이 8000억원대 부산신항만 건설용 모래를 독점 공급하게 되는데는 해수부의 특혜와 함께 건설교통부의 불법 묵인과 비호가 있었다는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남해 EEZ 모래채취 허가를 받은 ○○해운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불법행위와 결격사유가 드러났지만 건교부로부터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독점 허가를 얻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채취선이다.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겠다는 ○○해운은 채취선 한 척 없었지만 건교부로부터 버젓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건교부가 ‘배를 빌려 해도 된다’며 ○○해운에 허가를 내준 덕분이다.

그러나 건교부의 당초 입장은 달랐다. 지난 2004년 4월7일 배를 빌려 모래를 캐겠다는 ○○해운의 신청을 반려했다. 건교부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까지 거친 후 “용선을 허용할 경우 명의대여의 효과를 가져와 골재채취업자가 아니더라도 모래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공문(건설지원담당관-789)을 ○○해운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해운은 4차례 연이어 모래 채취 허가를 독점했다. ○○해운은 올해 들어서야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채취선 한 척을 갖췄다.

이에 대해 건교부 손○○ ○○지원팀장은 “허가권을 팔아 넘기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지, 일할 배가 모자라 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업체를 두둔했다. ○○해운 최 모 상무는 “건교부가 애초 입장을 바꿔 관철했다고 허가한 것인데 무슨 불법이냐”며 “업체의 오래된 관행을 건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교부의 입장 변화는 ○○해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일 열린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 “○○해운은 골재채취 선박도 없었고, 올해 구입한 한 척의 배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 허가사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특혜성 시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략)

(3) 『해수부, 고무줄 잣대로 업체 ‘취락퍼락’』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6일자 20면)

내 용 :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 ○○해운에 최소

8000억 원대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타 업체에 대해서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해운 외 타 업체가 신청한 지역에 대해 선박작업이 많고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부동의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대해 지난해부터 준설토 투기장 허가를 내줘 앞뒤가 맞지 않는 무원칙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해운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해수부는 타 업체에 대해 이유없는 ‘부동의’로 폐업으로 몰았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모래채취회사인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부산신항 조성공사에 참여한 ○○건설의 모래 납품 업체로 낙찰돼 해수부에 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남해안 거제도 동 측 EEZ에서 225만㎡의 모래를 채취하겠다는 신청이다.

○○은 부존량 자원조사와 해역이용 협의서를 용역 의뢰했다. 한국해양연구원과 부경대의 용역서는 ‘○○의 신청 구역은 해양생태 교란과는 거리가 멀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수부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모래 채취시 인근 해역에 미치는 해양생태계 훼손 및 어족자원 감소가 예상되고 인근 해역은 부산지역 어촌계의 어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은 해수부의 보완지시를 받아들여 2005년 재신청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역시 부동의 처분을 받았다. 두 차례 용역의뢰와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한 ○○은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중략)

이런 가운데 ○○해운의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해운은 지난 2005년 3월 16일 부산신항만 모래 채취허가를 받았다.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쓰이는 모래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부처장인 해수부가 업체 선정과 물량 지정을 협의한 뒤 건교부에 허가를 요청했다. 대신 업체는 민간에 모래를 팔 수 없고 지정된 용도로만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해운은 광양항 동측배후 단지 조성공사에 쓰겠다고 한 뒤 일부분을 민간에게 팔아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후략)

(4) 『부산신항 ‘모래독점’ 배경 밝혀지나』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2일자 22면)

내 용 : (전략) ○○해운은 2005년부터 남해EEZ에서 모래를 채취 부산신항만 공사에 공급해 왔다. ○○해운이 지금까지 공급한 모래는 2500억 원에 달한다. 향후 4년간 6000억 원대에 달하는 채취사업도 사실상 보장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5년 5월 “정부가 직접 신항만건설 모래를 공급하는 골재공영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지난 2005년 모래채취를 신청한 A업체는 검찰에 정관계 로비사실을 진정했다. 내용은 모래채취 허가를 받으려 정치권에 5억여 원의 뇌물 로비를 펼쳤다는 것이다. A업체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에게 자금을 건넸지만 경쟁업체인 ○○해운의 로비력이 더 강력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로비대상 국회의원과 해수부 고위공무원의 실명과 뇌물을 건네게 된 경위 등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검찰의 수사가 모래채취 인허가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까지 확대돼 사실 여부를 규명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해운이 모래채취 허가를 받는 과정에 부당한 점이 보인다”며 “특혜의혹이 밝혀지면 업주와 관련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7년 11월 1일자 기획면 『○○해운 2011년까지 6,000억 특혜보장』 제하의 기사에서 ○○해운이 마치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로부터 편법, 불법 지원을 받아 신항만공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900억 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 부산신항만 건설용 모래의 약 20%밖에 공급하지 않아 독점공급도 아니며 매출액과 적정가격이 턱없이 과장되어 보도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11월 2일자 22면에서 ○○해운이 골재채취업등록 자격도 없는 업체인데 건교부의 특혜를 받아 채취허가를 받았으며 ○○인터내셔널 등과

불법담합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건교부 목인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취허가를 얻었으며 협약서는 날인된 사실이 없고, ○○인터내셔널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자 20면에서 ○○인터내셔널의 허가신청과 관련해 해수부가 고무줄 잣대를 썼으며 담당과장이 허위보고를 하였고, ○○해운에서 지정된 용도로만 판매해야 하는 모래를 민간에게 팔아 이익을 남겼다고 보도했으나 사실확인결과, ○○인터내셔널 관계자의 인터뷰는 거짓이며 ○○해운은 당시 일반건설용 공고에 의해 허가받은 사항을 지켜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2일자 22면에서는 ○○해

운이 8,500억 원대의 이권사업에 대한 독점을 사실상 보장받았으며 모 업체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해운과 연계시켜 보도했으나 ○○해운의 허가 절차와 인허가과정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으며 정관계 로비와는 전혀 무관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전국아파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전국아파트신문 : 『관리소장이 입대의회장 욕설과 폭행』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9일자 사회면)

내 용 : 아파트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을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구 풍암동 J아파트(420세대) O모 관리소장(남·42세)이 입주자대표회의 K대표회장(여·48세)을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서부경찰서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관리소장이 입대의회장 욕설과 폭행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함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9일자 전아연 소식에 『관리소장이 입대의회장 욕설과 폭행』 제목의 기사에서 아파트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교회의 차량주임직을 사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성도교회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4.
처리결과 : 취 하

일자 교회소식면)

내 용 : (전략) 사임 윤○○ 차량주임(11월
30일부)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성도교회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

지난 12월 2일자 교회 주보 『알림』란에서 윤○○
차량주임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드렸으나, 윤○○
차량주임은 사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해임통보
를 받은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문화제제전위원회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전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4.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전주일보 : (1) 『불법 기부금품 수천만 원 의혹』 제
하의 기사 (2007년 10월 30일자 1면)
내 용 : '2007 ○○○단풍 부부사랑축제'를 주관
하는 (사)○○○문화제 제전위원회(이사장 이○○)
가 사업비 외에 기부금품을 등록관청에 등록도 하
지 않은 채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중략)
하지만 제전위원회 측에서는 사업비 이외에 행사
후원금 목적으로 정읍시 관내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로부터 협조공문을 보낸 뒤 이사장과 사무국장

이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불법 모금
했으며, 자발적 모금이 아닌 반 강제적으로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 작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는 기부금
을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을 모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그러나 제전위원회 측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
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제정
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
로 위배해 이번 행사외에 지난해에도 같은 방법으
로 기부금품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사용처를 밝히
지 않은 채 모금액의 행방이 묘연해 부부사랑축제
를 빌미로 제전위원회의 배만 불러준 꼴이 돼 이
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촉구되고 있다. (후략)

(2) 『○○○제전위 파행 여전』 제하의 기사 (2007
년 11월 6일자 5면)

내 용 : (전략) 지난 4일, 막을 내린 부부사랑축제
주행사장 (제5주차장)옆 공원에서 '소원등 달기'
란 명목으로 등 한 개당 1만 원 이상을 접수받아
4일까지 천2백5십여 개의 소원등이 걸려 있는 것

이 확인돼 최소 천이백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추가 모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략)

실제로 관련 부서인 사계절관광과 담당 계장이 사업비에 애드벌론 홍보비가 책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업체를 찾아가 애드벌론 게시에 협조를 해달라며 기부금품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애드벌론을 게시하고 비용으로 40만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는 것.

지난해 사업비 정산서를 보면 애드벌론 홍보비용으로 6백 6십만 원이 지출됐으며, 올해 또한 예산 편성 계획에도 애드벌론 홍보비용으로 개당 35만 원씩 21개 총 7백 35만 원이 책정돼 있지만 애드벌론 대부분이 기관이나 단체에게 후원받아 게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중 지출로 조작하여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략)

(3) 『지역축제 불법모금행위 근절해야』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7일자 15면)

내 용 : (전략) 그도 그럴 것이 정읍시 담당 공무원은 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기부금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나타나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중략)

합법을 빙자한 불법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소원등 달기’라는 행사를 빌어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이미 예산에 잡혀 있는 애드벌론 홍보비용을 기업들에게 손을 벌리는 행위는 이미 지난 간 오래전 관행인 줄 알았다. (후략)

(4) 『○○○문화제전위 부실운영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8일자 1면)

내 용 : ‘2007 ○○○단풍 부부사랑 축제’와 관련, ○○○ 문화제 제전위원회(이사장·이○○)가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데(본보 10월 30일·11월 6일-1면·5면보도)이어 이번엔 부실운영으로 축제 자체를 재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략)

(5) 『누구를 위한 지역축제인가?』 제하의 사실 (2007년 11월 9일자 15면)

내 용 : (전략) 더욱 심각한 것은 예산의 투명성 문제다. 지난 1일부터 4일 동안 열린 ‘2007 ○○○ 단풍 부부사랑축제’와 관련, 행사를 주관한 ○○○ 문화제제전위원회가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데 이어 행사의 부실운영으로 인해 축제 자체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읍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해 2억 55만 원의 사업비를 대폭 늘려 올해엔 4억 9천 5백만 원을 책정하고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행사기획 및 운영과 시설설치, 프로그램 편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행사비 대부분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연 이번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였고, 행사보조금은 누구 돈인가? 시민을 위한 축제이고, 그 돈은 바로 시민의 혈세다. 제전위원회 측은 이에 대한 의혹들을 해명해야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30일자 1면 『불법 기부금품 수천만 원 의혹』, 11월 6일자 5면 『○○○제전위 파행 여전』, 11월 7일자 15면 『지역축제 불법 모금 행위 근절해야』, 11월 8일자 1면 『○○○문화제제전위 부실운영 도마 위』 및 11월 9일자 15면 『누구를 위한 지역축제인가?』 제하의 기사 및 사실에서 “○○○문화제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11월 정읍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단풍 부부사랑 축제’와 관련, 제전위가 불법으로 정읍시 관내 유관기관 및 각급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모금한 금품의 대가로 아취·선전탑·애드벌론 등에 협찬사의 상호를 게재해 줄 것을 먼저 약속한 뒤 금품을 받았다면 이 금품이 과연 기부금인지’에 대해 제전위원회 측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제전위원회가 해당 단체로부터 각종 선전물에 당해 단체를 표시하여 광고해 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기부 받고 광고해 주었다면 이는 광고에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어 기부금품이 아닌 협찬금’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소원등 1개 당 1만 원씩 받아 실시한 사랑의 소원등 달기 행사를 통해 등 값의 일부를 경품 구입 비용으로 활용해 구입한 경품을 행사 기간 중 추첨을 통해 나누어 주었다면 이 비용이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는 ‘소원등을 달아 주고 등 값을 받았다면 이 역시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

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단풍 부부사랑축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7년 10월 30일자 1면 『2007 ○○○단풍 부부사랑축제 제전위원회 불법 기부금품 수천만 원 의혹』 제하의 기사 등 11월 9일까지 5회에 걸쳐 “○○○문화제제전위(이사장 이○○, 이하 ‘제전위원회’)가 ‘○○○단풍 부부사랑 축제’를 개최하면서 불법으로 정읍시 관내 유관기관 및 각급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제전위원회의 ‘아취·선전탑·애드벌룬 등에 협찬사의 상호를 게재해 주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이 금품이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제전위원회가 각종 선전물을 당해 단체를 표시하여 광고해 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광고에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어 기부금품이 아닌 협찬금이며, 소원등

달기 행사와 관련해서도 ‘소원등을 달아주고 등값을 받았다면 이 역시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제전위원회는 협찬사로부터 받은 금품 일체를 아취, 애드벌룬 등의 행사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소원등 값 역시 경품 등의 비용으로 전액 집행했으며, 행사 관련 예산을 이중지출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전주일보 2007년 12월 27일자 2면 우측 상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단풍 부부사랑축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중 2007년 11월 6일자 부제목(불법기부금품 지적...)의 활자크기와 같게,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문화제제전위원회는 이 건 조정신청 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전주일보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일보 : 『‘○○○단풍 부부사랑축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땅투기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2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도일보 : 『공무원의 농지, 대전시공무원들의 수상

한 구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9일자 20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4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서울조정445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공무원의 농지, 대전시 공무원들의 수
상한 구매’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중도일보는 지난 2007년 11월 29일자 20
면 『신목민학』란 “공무원의 농지”라는 제목의 기
사에서 대전시 공무원의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되었
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언급된 시 간부 공무원은
발 팔린 구옥을 한 채 구입했을 뿐이며, 부인이 본
인 명의로 구입한 것 이상의 어떠한 의도가 없고,
땅값이 오른 것은 관광레저 단지 계획과는 관계없
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며, 그 후 해당 토지가 관
광단지로 확정된 바도 없고, 또한 결코 개발정보를
이용했거나 투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직무 중 도
시계획 정보를 얻을 만한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그
러한 지위에 있는 적이 없는데 정보를 이용, 땅 투
기를 한 것처럼 보도한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지난 4월부터 구옥을 수리하여 6월에 이사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 26명이 토
지이용 목적을 위반해서 지적된 내용과는 무관하
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
는 중도일보 2007년 12월 14일자 이전까지 2면 하
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
상기사의 제목(공무원의 농지…)과 같게 하고, 내
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공무원의 농지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
사 (2007년 12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2002년 대선자금 규모가 밝혀진 액수보다 많고, 두 아들의 재산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회 창

피신청인 : 시사H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시사HN : (1) 『이회창 대선 잔금은 판도라의 상자인
가』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1일자
32면)

내 용 : (전략) 당시 이회창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 자금 규모(채권)가 밝혀진 액수보다 크
다는 것과, 대선 잔금을 서OO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삼성 측에 되돌려 준 것이 아니라 이회창
씨가 직접 가지고 있다가 한나라당 한 의원을 통
해 되돌려주었다는 것, 그리고 삼성이 채권뿐만 아
니라 현금도 제공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
었다. (후략)

(2)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1일자 33면)

내 용 :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이 아파트를 넓혀가
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인다. 특히 차남
수연 씨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구입비
약 1억7000만 원의 출처가 모호하다. (중략)

이 후보 캠프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와 별개로 장
남 정연 씨와 차남 수연 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 흥미를 끄는 대목이 있다. 대선이 끝날 때
면 이들이 새집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997년 대선
이 끝나고 1998년 7월에 정연 씨가 서빙고동 신동
아아파트(55평형·당시 실거래가 4억 원)을 매입
했고, 2002년 대선이 끝나고 2005년에 수연 씨가
역시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46평형·현재 실거래
가 15억원)을 구입했다.

지난 2002년 참여연대가 대선 후보 자녀들의 재
산 내역을 파악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12월에 정연 씨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실거래
가 2억 7000만 원)와 예금을 포함해 2억 95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공개했다. 아파트 구입
금액인 4억 원에 1억여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

데 이 돈의 출처가 애매하다. 참여연대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기간중 정연 씨는 1997년 9월까지 대외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한 것 외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2002년 대선 이후 정연 씨는 성북동의 대지 663제곱미터, 건물 334제곱미터인 주택(기준시가 7억 2천만 원)으로 이사했다(2인 공동소유).

수연 씨가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은 더욱 석연치 않다. 2002년도 재산 공개 당시 그의 보유 재산은 1억 4000만 원뿐이었다. 그런데 2005년에 9억 500만 원(이수연 씨 주장 구입가)짜리 고가 아파트를 사게 된다. 매입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보면 전세보증금이 3억 9000만 원이고 은행 대출이 2억 원이다. 이를 1억 4000만 원과 합쳐도 7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 1억 7500만 원이 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2월 11일자 제12호 32면 『이회창 대선자금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제하의 기사 및 동호 33면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 제하의 기사에서 당시 제17대 대통령선거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과거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자금 규모가 밝혀진 액수보다 크고, 대선잔금을 서정우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삼성 측에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직접 가지고 있다가 한나라당의 한 의원을 통해 되돌려주었고 삼성이 채권 뿐만 아니라 현금도 제공하였다고 보도하는 한편, 이 후보의 두 아들이 아파트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이고, 특히 차남 수연 씨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구입비 약 1억 7,000만 원의 출처가 모호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2002년 대선자금 문제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엄중한 조사와 법원의 치밀한 재판 과정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이 낱알이 공개되었으며 대선잔금 문제에 관한 실체적 진실 역시 대검 중수부의 최종 수사결과에서 소상하게 밝혀진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후보의 두 아들은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한 직장인으로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의 70% 수준이었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 가격과 종전 신고한 아파트의 신고된 가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참여정부 들어 급등한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의 영향도 있었고, 모두 결혼을 한 직후에 축의금을 보태어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대선 이후 두 아들의 재산이 갑자기 증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시사HN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5일자 11면)

내 용 : 본보 제12호(2007년 12월 11일자) 제32면 『이회창 대선 잔금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 자금 규모가 밝혀진 것보다 크고, 그 잔금을 서○○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 삼성 측에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직접 가지고 있다가 삼성에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 측은 이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그 진실은 분명하게 밝혀졌음은 물론, 온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언론을 통하여 국민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로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왔다.

또한, 동호 제33면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 제하의 기사에서 ‘이 후보의 두 아들이 아파트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이고, 특히 차남 수연 씨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구입비 약 1억 7천만 원에 대한 출처가 모호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두 아들이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한 직장인으로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있었고, 참여정부 시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됨으로써 종전에 신고한 아파트 가격과 새로

구입한 아파트 가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두 아들 모두 결혼 직후 아파트를 새로 사거나 교체하면서 결혼 축의금 및 퇴직

금, 전세자금 대부분을 주택구입비에 보탬던 것인 만큼 두 아들의 재산이 대선과 연관되어 급증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

통일교가 여수엑스포 유치에 이용해 여수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처럼 묘사한 만평은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회장 황 선 조)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6.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통일교 ‘대박’』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8일자 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문선명 총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11월 28일자 『통일교 대박』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통해, 마치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여수에서 여수해양엑스포 유치

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한 것처럼 묘사하였고, 이를 희화화시켜 그린 삽화를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통일교 문선명 총재는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이를 지지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여수해양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 신문은 위 만평이 사실의 보도가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음과 아울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기사화하여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림
• 내 용 : 본지 지난 11월 28일자 2면 “통일교 대박” 제목의 서울만평과 관련하여 통일교 측은 해양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개발의 과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2008년 1월 9일자 2면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통상의 1단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직원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알림』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도용하고, 쇼핑몰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똑같은 옷인데 왜 가격이 다르지?』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7일자 사는 이야기면)

내 용 : (전략) 그 내용은 현재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옷들 중에서 다른 쇼핑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터무니없이 비싼 옷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당시 쇼핑몰 이용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똑같은 옷인데 적게는 1000~2000원에서 많게는 1~2만 원 넘게 가격 차이가 났다. 게다가 이런 일은 당시 글이 올라왔던 쇼핑몰 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유명 쇼핑몰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사실 두 쇼핑몰의 옷과 가격을 비교한 사진들을 보면, 옷만 놓고 보았을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피팅 모델이 옷을 입은 사진을 보면 전혀 다른 옷처럼 보였다. (중략)

대부분 쇼핑몰 이용자들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모델과 코디 컷에 물건을 사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만약에 좀더 저렴한 사이트에 있는 동일한 제품을 먼저 봤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 같다는 거다.

이에 대해 대학생 황○○ 씨는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한 쇼핑몰이 다른 쇼핑몰에 비해 그 제품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면 그 쇼핑몰이 마케팅을 잘 한 것이니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2만 원이 넘게 비싸게 판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중략)

만약에 똑같은 제품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 원까지 싸게 팔린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코디 컷이 예쁘게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명 쇼핑몰의 제품을 구입했을까.

브랜드 제품의 경우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명만 입력하면 각 쇼핑몰(○○ 쇼핑, ○○몰, ○○이숍과 같은 종합 쇼핑몰)에서 동일한 제품이 각각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보세제품의 경우 ‘정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지 않는 이상 가격비교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터넷 쇼핑몰 가격차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27일자 사는 이야기에 『똑같은 옷인데 왜 가격이 다르지?』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운영 중인 쇼핑몰의 판매용 사진을 게재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류 도·소매업의 세금과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비를 산정하지 않고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하는 오픈마켓과 영세한 개인쇼핑몰과 가격을 단순 비교한 점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경찰서의 허술한 초동수사로 모 외국어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도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양천경찰서 (서장 박 청 규)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잠적 직전 경찰 방문조사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8일자 14면)

내 용 : ○○외고 입시 문제를 학원장과 학부모한테 유출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학교 입학홍보부장 이아무개(51) 교사가 잠적 직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외고를 지난 7일 오후에 방문해 교장과 교감, 이 교사 등을 상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다”며 “이 교사는 시험 전날 입시 문제가 저장된 유에스비(이동형 저장장치)를 전달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몸을 떨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진술도 두서가 없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물증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허술한 초동수사로 유력한 용의자에게 도피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외고 입시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지난 2일 언론에 보도됐고 3일 내사에 착수해 인터넷 카페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올린 당사자들을 우선 조사했지만 대부분 ‘주변에서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이날 방문 조사는 시험문제의 보관에서 인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외고 문제유출 교사 잠적에 따른 정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28일자 사회면에 『잠적 직전 경찰 방문조사 받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이 입학홍보부장 이아무개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조사과정에서 몸을 떨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진술도 두서가 없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물증이 없었다고 밝혔다면, 경찰이 허술한 초동수사로 유력한 용의자에게 도피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당시 ○○외고를 방문할 당시 경찰의 수사진행 정도는 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사실 확인단계로 피의자를 특정할 단계가 아니었음에도, 신문기사와 같이 마치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하였는데도 경찰이 초동수사를 잘못하여 도피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아니고 기자의 주관적인 견해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을 신습니다.

• 내 용 : 11월 28일치 14면 『잠적 직전 경찰 방문조사 받았다』 기사 = ○○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양천경찰서가 초동수사를 허술하게 하여 유력한 용의자인 문제유출 교사에게 도피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양천경찰서는 “당시는 기초사실 확인 단계로 피의자를 특정할 단계가 아니었으며, 초동수사를 성실히 이행하던 중 피의자 특정 전에 사건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인계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2월 28일까지 한겨레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경찰 “물증없어 진술만 들어”)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한겨레 : 『반론신섭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5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시립예술단체의 단장이 단원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4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광주매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7.

처리결과 : 합 의

C 씨는 “최근 구축된 ‘국세청장의 6천만 원 상납’은 이번 일에 비하면 ‘감도 안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A 단장은 4년간 시립○○관현악단에 재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모두 19명의 단원이 신규채용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광주매일 : 『광주시립○○단 채용 비리 의혹 확산』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8일자 8면)

내 용 : 광주시립○○관현악단 단원 채용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복수의 지역 국악계 관계자가 “이같은 사실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해 경찰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광주지역 국악계 인사들에 따르면 “사립○○관현악단 현 A 단장의 취임 후 그런 일들이(채용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있었다”며 “(알고 있었지만)누가 다칠지 몰라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시립○○관현악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악인 B 씨는 “시립○○관현악단과 A 단장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소위 말하는 ‘선수를 치는 것’으로 짐작된다”며 “채용과정에서의 잡음은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소문이 났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B 씨는 “이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국악계에 미칠 파문이 상상 이상일 것인데 괜찮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일을 단지 추측으로 밝힐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광주시나 경찰의 간단한 조사(계좌추적 등)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어 지역 중견 국악인

•제 목 : “광주시립○○관현악단 현 A 단장의 금품 수수사실 확인된 바 없어”

•내 용 : 본 신문은 2007년 11월 28일자 『광주시립○○단 채용 비리 의혹 파문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국악계 인사와 국악인 B 씨의 말을 인용하여 광주시립○○관현악단 현 A 단장이 단원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인 양 오해되도록 편향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국악계 인사와 국악인 B 씨의 말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일 뿐, 사실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었고, 광주시립○○관현악단 현 A 단장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피신청인 언론사는 검찰수사 종결 후 신청인 범죄 관련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정정보도문을 광주매일신문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통상의 기사게재방식과 동일한 방법(제목크기는 원보도 부제목기사크기와 동일한 크기)으로 즉시 게재한다.

•신청인은 검찰수사 종결 후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에 대한 정정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 □

신청인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대선후보의 거리 유세를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4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장성군민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장성군민신문 : 『새마을운동 ○○군지회장님 혹시
선거운동중이신가요?』 제하의 기
사 (2007년 12월 3일자 5면)

내 용 : 공직선거법 6.선거운동 중 '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는 사람(법 제60조)에 “새마을운동협회·바르게살
기운동협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
함)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난 29일 ○○시장,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거리유세에 지원 나온 김○○ 새마을운동○군지회
장. 군의장은 선거법 위반해도 면죄 되나요?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군의회 김○○의장 선거법 위반과

무관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3일자 재선평별기
획 설문조사면하단에 『새마을운동 ○○군지회장님
혹시 선거운동중 이신가요?』라는 제목으로 김○○
의장이 새마을 지회장직을 유지하며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거리 유세에 지원 나온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 의장은 선거운동기
간 전인 지난 11월 23일에 새마을지회장직을 사임하
고 적법한 신분으로 대통합 민주신당 군수후보 거리
유세에 지원 나온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장성군민신문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2
월 10일자 2면)

내 용 : 본지 제212호(12월 3일자) 5면 하단
에 기재됐던 “새마을운동 ○○군지회장님 혹시 선
거운동중 이신가요?” 제하의 기사에서 김○○ 지회
장은 11월 23일 새마을운동지회장직을 이미 사직
한 상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밝히며 바
로잡습니다. □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신청인이 성급한 투자로 불안해 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뷰 내용을 왜곡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0.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7년 10월 23일
23:05)

내 용 : (전략) >나레이션 : 김○○ 씨는 곧 아이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큰 짐은 모두 부쳤고 마지막 남은 짐. 김 씨는 올해 국내에서 분양한 말레이시아의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러나 떠나는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다.

>김○○(가명) : (아이가 중2인데) 여기서는 너무 친구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냥 뭐 허황된 꿈에 쫓아서 거기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나레이션 : 아이 교육을 위해 택했다는 말레이시아. 그러나 당시 현장을 가지 않고 계약한 김 씨는 지난 달에야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고 한다.

>김○○ : (현장 답사 다녀온 후) 올라가서 싸웠잖아요. 개거품 물었잖아요. 현장 관계자들 하고. 거기 (홈페이지)서 볼 때는 뭔가 진척 상황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현지에 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략)

>김○○ :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투자할 때는 그렇게 봐야 나한테도 이익이 생기는 거고 진짜 나무만 볼 것 같으면 그거 투자 못하는 거죠. 현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나레이션 : 김 씨는 지난 18일 아이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발했다. 결국 선택은 자신의 몫인 것이다.

>책임PD : 허○○ 피디, 마지막에 나온 아주머니, 이미 계약금 3,0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랬죠.

>허○○ PD : 네.

>책임PD : 불안하기는 하지만 현지에 가서 부딪쳐 보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허○○ PD : 네, 그렇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10월 23일자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일산에 사는 김○○(가명) 씨가 현장 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 답사를 다녀온 후 ○○○타워의 관계자들과 격렬하게 싸웠으며 이미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현지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는 시점에서도

떠나는 마음이 개운치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디수첩 제작진과 김○○ 씨 사이의 인터뷰 취지는 김○○ 씨가 ○○○타워의 투자 조건과 말레이시아 현지의 투자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 전망이 밝다는 판단으로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5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윤 ○ ○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황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조정대리인 송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긴급진단 해외 부동산 투자의 함정'이라는 부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0.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현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으로 신청인 회사가 6년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솔○ (대표이사 홍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 소액주주모임과 경영투명성 논쟁 휘말릴듯』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8일자 경제면)

내 용 : ○○(4,445원 0.00%)이 소액주주들과 경영투명성 논쟁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 소액주주모임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 등·사본허용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씨 외 11명의 소액주주들은 솔○의 최대주주인 홍○○ 대표가 취임한 이후 인위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려는 의혹이 있는데다 ‘홍○○ 개인 회사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경영상태를 조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모임 관계자는 “홍○○ 대표가 취임한 이후 ○○은 단 한차례도 흑자를 기록한 일이 없다”며 “홍 대표의 경영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은 홍 대표가 취임하기 전에는 내부유보금이 2500억 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1700억 원대로 줄었다”며 “특히 신규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하에 회사 자금을 방탕하게 운용함으로써 2002년말 870억 원에 이르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9월 말 현재 54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소액주주투자자문의 박○○ 펀드매니저는 “○○의 연속된 적자는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과 근무태만의 결과”라며 “회계장부열람권 행사를 통해 경영

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12월 말 현재 ○○은 18개의 관계회사와 그보다 더 많은 투자회사들을 두는 등 투자목적의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최소한의 신뢰할 수 있는 재무재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놀러지와 ○○벤처투자 등 6곳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액주주모임 측의 주장이다.

박 펀드매니저는 “○○이 투자한 회사들의 회계장부를 열람해야만 이후 투자자산의 효율성 개선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솔○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소액주주모임과의 논쟁 보도에 대한 정정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28일자에 『○○, 소액주주모임과 경영투명성 논쟁 휘말릴 듯』이라는 제목으로, ○○의 소액주주모임 관계자와 박○○ 펀드매니저의 말을 인용하여, 이들이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 등·사본허용가처분’을 제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 소액주주모임 관계자 및 박○○ 펀드매니저는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고, ○○의 주주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의 ‘○○의 현 경영진이 인위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려는 의혹이 있다’라거나 ‘경영능력이 의심스럽다’라거나 ‘회사자금을 방탕하게 운용한다’는 주장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어 있어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통일교가 여수엑스포 유치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묘사한 만평으로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1.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서울신문 : 『통일교 ‘대박’』 제하의 만평 (2007년 11월 28일자 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45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대표이사 노 진 환
주 문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지난 2007년 11월 28일자 서울신문 백무현 화백의 ‘통일교 대박’ 만평기사에서 일방적인 통일교 왜곡보도로 통일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1)백무현 화백과 편집책임자 처벌 2)사과

보도문 게재 3)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금으로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년 11월 28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 2면에 ‘통일교 대박’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백무현화백의 서울만평(이하 ‘이 사건 만평’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 바, 통일교의 문선명 총재가 여수 엑스포 유치 성공 소식을 듣고 “이럴 줄 알고 여수 땅 싸쓸이 했지”라고 말하는 모습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교주님이십니다”라고 고개숙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만평의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통일교 신도로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2월 11일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언론조정신청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를 입은 자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을 정정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만평에서 직접 거명된 사실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만평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통일교 신도들의 모습은 만평의 풍자적,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통일교 신도 전체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전체 통일교 신도의 수를 고려하면 통일교 신도들이라는 집단적 표시를 사용함으로 인해 신청인을 포함한 통일교 신도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이 조정대상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

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음
이 명백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7.

□

총기탈취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신청인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1.

처리결과 : 각 합의

보도내용

MBC-TV : 「5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12월 10일
17:00)

내 용 : ▷앵커 :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유력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39살 박모 씨로 특수부
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
○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인천 강화 총기 탈취사
건 유력 용의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군경이 파
악한 유력 용의자는 39살 박모 씨로, 군 정보관련
특수부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경은 그 동안 용의자의 이동경로 주변 15개 기
지국에 대한 통화내역 8만 여건을 확보해 이 중
중복되는 번호 6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박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현재 서울 신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돼, 군경 수사기관들이 박 씨 검거를 위
해 긴급출동했습니다. 박 씨는 또 특수강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박 씨가
범행이후 집에 머물지 않고 수사망을 피해 지방을
돌아다닐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박 씨의 사진을 전
국에 긴급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박 씨가 탈취한 무기를 사용하기 전
에 무기를 회수하는 것이 우선 급하다고 보고, 박
씨를 설득해 자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강화 해병부
대 총기탈취 사건 유력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었
습니다.

군경이 파악한 유력 용의자는 39살 박모 씨로, 군
정보관련 특수부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경은 현재 박 씨 집으로 긴급 출동해 박 씨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군경합동수사본부에
서 MBC뉴스 강○○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총기탈취범 관련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10일 「5시뉴스」 프
로그램에서 신림동에 사는 특수부대 출신의 39살
박모 씨가 인천 총기 탈취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박모 씨는 총기 탈취 사건
과는 무관하며 혐의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1월 25일까지 금
7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
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총기탈취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신청인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1.
처리결과 : 합 의

부대 출신인 점, 전과사실을 공개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바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1월 25일까지 금 4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tn.co.kr)에서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보도내용

Y T N : 「YTN24」 프로그램 (2007년 12월 10일 18:05)

내 용 : 〈2007서울조정46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YTN은 지난 2007년 12월 10일자 「YTN 뉴스」 프로그램에서 본인을 총기탈취사건의 유력용의자라고 잘못 보도하면서 성과 나이, 주거지, 특수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신청인 회사의 사유림과 춘천시의 사유림 맞교환 추진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7강원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강원일보사 (대표이사 이 희 중)
피신청인 : 강원도민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강원도민일보 : (1) 『춘천시, 사유림-사유림 맞교환 재추진』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3일자 1면)

내 용 : 춘천시가 '특혜'라는 비난에 부딪혀 3년 전 자체 폐기했던 '사유림-사유림 맞교환'을

재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의 재현은 물론 그 배경에 의혹을 사고 있다.

2일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시유림 집단화를 명분으로 1㎡ 기준 공시지가가 4만 2,200원인 동면 만천리 산 115의 2 소재 시유지 3613㎡와 공시지가가 800원에 불과한 신동면 혈동리 산 15 소재 사유지(K일보 소유) 15만 5372㎡를 맞바꾸는 내용의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23일 춘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동면 만천리 소재 사유지의 경우 도심에 인접한 금싸라기 땅으로 실거래가격이 1㎡ 기준 18만~30만 원에 이르는 등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부동산 가치가 높은 반면, 혈동리 사유지는 투자 가치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땅으로 맞교환 시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지난 2004년 당시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도 높은 특혜의혹이 제기돼 자체 폐기한 사안을 재추진해 의혹을 사고 있으며, 특히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언론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는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로부터 접수받은 후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토지교환이 2004년 집행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자체 폐기한 안전이라는 점과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전 처리를 보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위원회 전체 의원들은 4일 오후 동면 만천리 시유림과 신동면 혈동리 사유림을 직접 둘러보고 토지교환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후략)

(2) 『춘천시 ‘노른자’ 시유림, 사유림과 맞교환 3대 문제점』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3일자 사회면) 외 8건

내 용 : (전략) 현재 교환취득 대상 산 15번지 인근 시유림 규모는 사유림의 39.8% 수준이다. 토지 맞교환을 통해 산 15번지를 취득한다 해도 59.3%(20만3272㎡)에 그쳐 절반에 가까운 사유림을 추가로 매입해야 사유림 집단화가 완성된다.

시는 그러나 산 15번지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림에 대해서는 당장 매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시가 내세운 시유림 집단화는 특혜제공을 위한 명분없는 명분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2004년 9월 K일보의 요청에 따라 시유림인 만천리 소재 2필지 (4,907㎡)를 사유림인 혈동리 1필지(15만 5372㎡)와 맞바꾸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161회 임시회에 제출해,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당시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강하게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변경안을 자체 폐기했다. 3년 2개월 만에 슬그머니 다시 이를 추진하고 있다. 3년 전과 비교할 때 바뀐 점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교환처분 대상 사유림 면적이 1필지 (1,294㎡) 줄고, 춘천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로 교체됐다는 점이다.

만천리 사유림은 2004년 교환 추진 당시 2필지의 면적을 적용할 경우 200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모두 2억 254만 6,400원이고, 혈동리 사유림은 1억 2,429만 8,000원이다. 결국 교환처분 대상 필지를 2개에서 1개로 줄인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교환)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춘천시, 시유림-사유림 맞교환 재추진 특혜논란 정정 보도

• 내 용 :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12월 3일자 1면 머릿기사 등에서 춘천시가 '특혜'라는 비난에 부딪혀 3년 전 자체 폐기했던 '시유림-사유림 맞교환'을 재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의 재현은 물론 그 배경에 의혹을 사고 있으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변경안을 자체 폐기했다고 보도하는 등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10개의 기사 및 사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강원일보사와 춘천시 토지교환은 지난 2004년 처음 추진한 이후 그 해 9월 춘천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됐고, 시유지 인근에 도로개설

이 추진돼 재산가격과 교환면적 등이 변동하면서 약 3년간 지연됐을 뿐이고 토지 교환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도 없어 ‘특혜 논란으로 3년 전 폐기된 안건’이라는 기사의 내용이 사시로가 달라 정보도합니다.

또 12월 3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보도했으나 시유지와 사유지와의 교환은 시유지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정행위로 이 역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바로잡습니다. 또한 12월 3일자 사회면 머릿기사에서 춘천시가 토지교환의 명분으로 제시한 시유림 밀집지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유림과 맞교환할 예정인 신동면 혈동리 산15번지 인근 임야 가운데 시유림은 산12번지 산17번지 등 2필지에 불과하다고 보도하는 등 시유림 집단화가 명분이 없다거나 허위라는 내용을 4일 동안 10차례 보도했으나 실제로 강원일보사 소유 혈동리 사유림에는 시유림 8필지 103만 6462㎡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왜곡된 보도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와함께 12월 3일자 1면 머릿기사 등 10차례에 걸쳐 동면 만천리 소재 시유지의 경우 도심에 인접한 금싸라기 땅이며 혈동리 사유지는 투자 가치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땅이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며 “시유지 헐값처분” 등의 표현까지 유추해 사용했으나, 혈동리 임야 인근지역은 최근 고속도로 IC로 예정돼 소유자들에게 매각의사가 타진되는 등의 사실이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6일자 1면 상자기사에서 시민단체들이 심의 보류 결정 직후 환영 성명을 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날 어떠한 시민단체들도 토지교환 건에 대한 춘천시의회 심의 보류 결정과 관련한 환영 성명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체 반박이 가능한 언론사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의 사유림과 춘천시의 시유림 맞교환 추진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7강원조정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강원일보사 (대표이사 이 희 중)

피신청인 : 강원도민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2007강원조정7의 보도내용과 동일〉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춘천시, 시유림-사유림 맞교환 재추진 특혜논란 반론보도

•내 용 : 강원일보사는 도심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노후된 건물의 안정성 등의 문제로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춘천시와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민일보는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동안 마치 강원일보사가 춘천시와 의회로부터 부당하게 특혜를 받으려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를 게재, 오해가 확산되고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힙니다.

강원일보사는 춘천시 중앙로 1가 도심에 위치해 신문용지 하차 작업시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후한 사옥으로 양질의 신문제작을 위한 윤전기 교체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일보사는 사옥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춘천시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법령

에 따라 토지 교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환예정 부지는 춘천시 소유 동면 만천리 임야 3,613㎡ (1,093평)와 강원일보사 소유 신동면 혈동리 임야 15만 5,372㎡(4만 7,000평)입니다.

춘천시는 정부의 시유림 집단화 방침(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 및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시유림 8필지 103만 6,462㎡(31만 3,529평)와 맞닿아 있는 강원일보 소유 혈동리 임야를, 강원 일보사는 만천리 시유림을 교환 적지로 판단해 사옥이전 종합계획과 조감도 등을 춘천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강원일보사는 2004년부터 사옥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해 9월 춘천시의회에서 토지교환 건이 의결됐습니다.

이후 토지 교환이 지연되면서 도로 개설 추진 등으로 교환 대상 토지의 면적과 재산가격이 변동돼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됐

습니다.

시유림과 사유림의 교환은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되는 행정행위로 정밀 감정 평가를 거쳐 발생하는 차액은 투명하게 정산하도록 돼 있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번 토지 교환은 사옥을 이전하려는 강원일보사와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춘천시의 정책이 합리적으로 접근돼 추진되는 것일 뿐 특혜나 불법행위 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강원일보사는 앞으로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민 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어떠한 결정도 존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2007강원조정7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신청인 회사의 사유림과 춘천시의 시유림 맞교환 추진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강원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강원일보사 (대표이사 이 희 중)

피신청인 : GTB-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GTB-TV : 「뉴스820」 프로그램 (2007년 12월 3일 20:25) 외 5건

내 용 : 〈2007강원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강원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시유림-사유림 맞교환' 관련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춘천시가 '시유림-사유림 맞교환'을 채추진하고 있어 특정 신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는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자사의 사옥이전 계획과 정부의 시유림 집단화 방침에 따라 시유림-사유림 교환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사유지 인근에 도로개설이 추진돼 재산가격과 교환면적 등이 변동하여 3년간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시유림과 사유림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되는 행정행위로 특혜나 불법행위 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월 14일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GTB 〈뉴스820〉 프로그램에 위 보도문 내용

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
되, 기존 보도내용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화면 하
단에 위 보도문 제목(‘시유림-사유림 맞교환’ 관
련 반론)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
기로 계속 표시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
건으로 나머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를

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GTB-TV : 『뉴스820』 프로그램 (2008년 1월 11일
20:2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의 사유림과 춘천시의 사유림 맞교환 추진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강원조정1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강원일보사 (대표이사 이 희 중)

피신청인 : GTB-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2

처리결과 : 합 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7강원조정8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7강원조정9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GTB-TV : 「뉴스820」 프로그램 (2007년 12월 3일
20:25) 외 5건

내 용 : <2007강원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의 반발로 구미시가 추진하는 도시화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4인

피신청인 : 경상매일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2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2007년 12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구미○○○○개발조합이 한창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정비사업이 인근 문화○○아파트 주민
자치회장단 및 일부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조속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
행사인 ○○1지구 택지 개발조합과의 쌍방 간 의
사교환 없이 시공사인 대상 종합개발을 상대로 ○
○아파트 자치회 회장단이 아파트 외벽도장 공사

보도내용

경상매일 : 『지역사회발전 ‘걸림돌’』 제하의 기사

경비충당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5천만 원을 요청한데서 문제가 발생됐다』며 『이런 현상은 자치회장단과 299세대 가운데 일부주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향후 ○○ 아파트주민에게 원치 않는 피해가 올 시에는 아파트노인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좌시하고 있지 않겠다』며 회장단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중략)

특히 ○○아파트 도장 공사를 주민 공청회 한번없이 회장단들의 사전담합에 의해 K도장업체와 계약선정하는 등 주민들의 반대 공청회 후에도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당한 공고를 부착하는 등 사전 계약의 성사를 위해 노인회 N모 씨에게 뇌물공세를 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했으며 끝내는 아파트 승강기 8곳에 이에 대한 양값음으로 붉은 페인트를 마구 칠해 아파트 청소년들과 입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며 회장단 측의 투명한 해명을 촉구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4일자 사회면 『지역사회발전 '걸림돌'』 제하의 기사에서 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 측이 아파트 외벽도장 공사 경비충당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5천만 원을 요구했으며 아파트 도장 공사를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회장단의 사전담합에 의해 모 업체와 계약하는 등 주민들의 반대 공청회 후에도 주

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당한 공고를 부착하였으며 사전계약 성사를 위해 노인회 N모 씨에게 뇌물공세를 했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협조를 위해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한 것은 어린이들의 위해환경 예방을 위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시공사 측에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5천억 원을 요구했을 뿐, 1억 5천만 원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도장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7월 4일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되던 중 N모 씨에게 도장공사 업체 측에서 도장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한다며 뇌물공여를 하려했다고 N모 씨가 각서를 작성해 대표회의에 제출, 대표회의 측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대표회의를 거쳐 계약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따라서 사전담합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취재원을 밝혀 보도했으므로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고 반론보도는 수용가능하다. □

신청인 회사가 자회사에 수출운임을 과다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전자 (대표이사 윤 ○ ○)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프레시안 : 『○○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6일자 경제면)

내 용 : ○○전자가 자회사인 ○○전자로지텍에 지불하는 운임이 통상가보다 훨씬 높게 지불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시한다. 과거 ○○자동차가 물류 계열사인 글○○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와 닮았다는 것.

〈프레시안〉은 ○○전자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6개월간 수출한 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한 기록과 통관에 쓰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최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자가 항공편을 통해 수출한 건수는 약 13만 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운임을 kg당 10달러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가 5만 건이 넘는다. 같은 기간, 수출내역 가운데 인도조건이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FR(운임 포함 인도조건), CPT(운송비지급 인도조건), CIP(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추려낸 결과다. (중략)

물론 'kg당 10달러'라는 기준도 높은 편이다. 한 건설회사가 지난 1일 미국의 세계적 물류회사인 UPS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항공 수출할 경우 운임은 kg당 4달러(3,749원)로 나타났다. 전자업체 관계자들도 "수출 운임이 kg당 10달러를 넘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 국내 회사를 이용할 경우, 최근에는 kg당 2달러 정도로 거래했다"고 전한다.

○○전자가 적정 운임보다 과다 지급한 금액이 14억 132만 달러(약 1조 3082억 원)보다 높을 수 있다는 뜻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출운임 과다지급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7년 11월 26일자 『○○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기본 자료가 되었던 수출신고필증상의 운임과 중량 단가 등은 요율에 의한 단순 계산값일 뿐 실제 운임과 차이가 있으나,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전자가 실제 지불한 운임인 것처럼 보도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번 보도로 인하여 ○○전자가 부당내부거래, 탈세, 비자금 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병원이 암 치료기의 효과를 과대광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병원 (원장 김 ○ ○)

피신청인 : JBS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2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JBS : (1) 『알고싶다 '로봇 사이버나이프'』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동북아시아 및 국내 최초로 최첨단 암 치료

기인 '로봇사이버나이프'가 ○○대병원에 도입돼 지난 4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병원에서는 4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뇌종양, 두경부암, 유방암, 췌장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등 161명의 암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일부로부터 '로봇사이버나이프'가 암환자에게 만능의 치료기 인양 선전되는 것은 "과대광고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본보에서 기획취재에 나섰다. 독자들의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암 치료기인 로봇사이버나이프가 암환자에게 만능의 치료기 인양, 선전되는 것은 암환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략)

"암 치료기인 '로봇사이버나이프'가 암환자에게

만능의 치료기인 양 보도 선전되는 것은 암 환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바로 L씨 등이 한 말이다.

(2) 『만능 아닌 ‘로봇사이버나이프’(2)』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L 씨는 의사가 아니다. 간암 발병으로 3년을 못 넘긴다는 생명을 5년 이상 이어 가며 현재 걸어 다니며 생활하는 기적(?)을 보이고 있는 5년 이상 간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다. 아직도 그의 몸에는 암세포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암에 관한한 실질적으로 경험한 박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로봇사이버나이프(Robot Cyberknife)가 암환자에게 만능의 치료기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이다”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비싼 치료비들이지 않을 게 아니냐?”고 자신이 암환자로 OO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보고 느낀 바를 전했다.

L 씨는 “채장암말기환자에게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항생제만 투여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몰핀만 주사할 뿐이다. 즉 통증만 완화시킬 뿐 치료하면 할수록 생명은 단축된다.”며 “기존 방사선치료기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 주위의 건강한 세포까지 죽여 새까맣게 변할 정도로 치료과정에서 고통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로봇사이버나이프의 도입으로 막바지에 희망을 갖고 암 치료를 위해 전국에서 많은 환자가 OO대병원에 몰려 5~7월에는 수술이 밀릴 정도였으나 8~9월에는 많은 암 환자가 죽었다”며 “기존 방사선치료기를 사용 20회 이상 암세포를 최소화한 후 로봇사이버나이프를 사용하게 되는 데 일반 방사선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방사선(위를 뚫을 정도이기 때문에 위암환자에게는 사용 못함)을 사용, 암세포 주위의 0.3mm만 손상되고 수술시 통증이 없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수술 후 환자의 기력이 전부 빠진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로봇사이버나이프는 육안으로 보이는 암세포만 수술이 가능 즉 세포나 혈관에 있는 암세포는 치료가 불가능해 전이를 못 막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이 씨는 “로봇사이버나이프가 ‘어떤 환자에게 어떤 좋은 치료결과를 얻었기에 어떤 환자의

치료가 좋다’는 식의 보도와 선전이 돼야 한다”며 “암환자에게 만능의 치료기인 양 보도 선전되는 것은 암 환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후략)

(3) 『‘로봇사이버나이프’ 시술 후 운명(3)』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로봇사이버나이프에 의한 4회 시술치료까지는 멀쩡했는데 5회 시술 후 힘들어하시더니 2주여 후에 운명하고 말았다”는 환자 가족의 증언이 나왔다. 이미 본보에서 집중취재 보도한 바 있는 “로봇사이버나이프에 의한 수술 후 환자의 기력이 전부 빠진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는 지적이 옳았음이 밝혀진 것.

포털사이트인 OO의 ‘OO환우협의회’란 카페에 ‘이O’이란 회원의 ‘뇌수막종방사선(로봇사이버나이프)치료 후 운명’이란 제하의 글이 올라 있다. 그는 글에서 “(79세 된 자신의 선친이) 뇌수막종을 앓았는데 방사선과 교수의 권유에 의해 로봇사이버나이프 치료를 받았다”며 “4회 치료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5회 치료 후 2주여 있다가 운명하셨다”고 하며 “후유증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로봇사이버나이프 치료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적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OO대학교 병원은 로봇사이버나이프에 대하여 과대광고 한 적 없어

• 내 용 : JBS의 2007년 10월 29일자 『알고 싶다 「로봇사이버나이프」 (1)-만능의료기인 양 선전은 과대광고에 해당돼』, 12월 2일자 『만능 아닌 「로봇사이버나이프」 (2)-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비싼 치료비 안 없애』, 11월 29일자 『「로봇사이버나이프」 시술 후 운명 (3)-4회 방사선 시술까지는 멀쩡하다가 5회 시술 후 운명』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한다.

2007년 10월 29일자 인터넷신문보도에서 의학적,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간암환자인 L모 씨의 말을 인용하여 「암 치료기인 로봇사이버나이프가 암환자에게 만능의 치료기인 양 선전되는 것은 암환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대학교 병원은 로봇사이버나이프와 관련하여 과대광고를 한 일이 없으며, 2007년 12월 12일 현재까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과대광고라는 지적을 받은 바 없다.

○○대학교 병원에 동북아시아 최초로 도입하여 시술하고 있는 로봇사이버나이프는 미국 스탠포드대학 신경외과의사인 존 애들러 박사가 개발하여 의료회사인 Accuray사에서 제작한 최신의 의료기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고 전 세계에 약 30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 방사선 암 치료기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여러 의학자들에 의해 그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로 치료 가능한 적응증이 다양하나 과장되거나 만능인양 광고한 일은 없다. 더구나 「암 환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암 환자들에게 위해를 끼친 일이 없다.

또한 JBS는 11월 2일자 인터넷신문 보도에서 또 다시 간암환자인 L모 씨의 말을 인용하여 ▲췌장암말기 환자에게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항생제만 투여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모르핀만 주사할 뿐이다. 즉 통증만 완화시킬 뿐 치료하면 할수록 생명은 단축된다. ▲기존 방사선치료기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 주위의 건강한 세포까지 죽여 새카맣게 변할 정도로 치료과정에서 고통이 엄청나다. ▲로봇사이버나이프의 도입으로 막바지에 희망을 갖고 암 치료를 위해 전국에서 많은 환자가 ○○대병원에 몰려 5~7월에는 수술이 밀릴 정도였으나 8~9월에는 많은 암환자가 죽었다. ▲기존방사선치료기를 사용 20회 이상 암세포를 최소화한 후 로봇사이버나이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방사선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방사선(위를 뚫을 정도이기 때문에 위암환자에게는 사용 못함)을 사용, 암세포주위의 0.3mm만 손상되고 수술시 통증이 없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수술 후 환자의 기력이 전부 빠진다는 점이 단점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췌장암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췌장암도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여러 항암제가 사용되고 있다. 기존 방사선치료는 매우 약한 방사선을 약 20회에 걸쳐 나누어 치료하고, 암이 있는 넓은 부위에 방사선을 쪼이기 때

문에 건강한 세포까지 죽여 새카맣게 변할 정도로 고통이 엄청나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대학교 병원에 로봇사이버나이프가 도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온 것은 사실이나 치료대기시간을 못 견디고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로봇사이버나이프는 일반 방사선치료에 비해 매우 국소적으로 방사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방사선 치료는 최소 6~7주가 걸리지만 로봇사이버나이프는 3~4회 치료로 기간은 1주 이내이다.

그리고 2007년 11월 29일자 인터넷신문 보도에서도 “로봇사이버나이프에 의한 4회 시술치료까지는 멀쩡했는데 5회 시술 후 힘들어하시더니 2주여 후에 운명하고 말았다”는 환자가족의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과 함께 이미 본보에서 집중취재 보도한 바 있는 “로봇사이버나이프에 의한 수술 후 환자의 기력이 전부 빠진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는 지적이 옳았음이 밝혀진 것이라는 단정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환자는 왼쪽 눈의 시신경 수막종으로 거의 시력을 상실하는 등 위독한 상태에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고 병원에 내원할 때부터 매우 위독한 상태였으며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로봇사이버나이프 시술요청을 받고 시술 후 회복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후 보호자의 동의 하에 4회에 걸쳐 로봇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하였고, 시술을 마친 후에는 곧 퇴원하였다. 자택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원인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나 환자의 연령, 병력, 내원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로봇사이버나이프의 시술로 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0%이다.

JBS의 기자가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에게 확인을 요구한 바 주치의는 서면으로 이 환자가 로봇사이버나이프시술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바 있다.

합의사항

- 제 목 : ○○대 로봇사이버나이프 관련 일부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제이비에스(www.jbs.co.kr) 메인화면에 2007년 12월 18일자 15:00부터 2008년 1월 18일 15:00 까지 게재하되, 정정문구는 적색으로 구분되게 하고 편집자 주를 달며,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알고싶다 '로봇사이버나이프'...)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과 관련한 사이트에 위 보도문이 최대한

한 게재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JBS : 『○○대 로봇사이버나이프 관련 일부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8일자 메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자료를 조작하고 관련기관과 유착하여 골프장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가 ○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7년 11월 13일 20:25)

내 용 : ▷앵커 :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가리켜 백두대간이라고 부릅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 뻗어 내리다가 태백산에서 방향을 틀어서 지리산에 또아리를 틀고 앉습니다.

이런 백두대간은 다시 큰 산줄기 열 셋으로 가지를 치는데 이걸 가리켜 13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한북정맥은 한강 이북을 달리면서 북 한강과 임진강의 물줄기를 이뤄 냅니다.

또 지리산에서 갈려 나와 한반도 남단을 가로지르는 산줄기는 낙동강 남쪽의 주된 산맥이라서 낙남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이런 중요한 국토환경을 지키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법까지 제정을 했는데요.

한 골프장 개발업체가 없는 산을 마치 있는 것처럼 산맥지도를 조작해서까지 골프장 허가를 받으려 한 사실이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 환경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 공룡 유적지로 이름난 경남 고성군, 고개를 사이에 둔 백두산과 성지산도 낙남정맥의 일부입니다.

등산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산줄기입니다.

낙남정맥은 이 등산로를 지나서 저 아래 장발재라는 고갯마루를 거쳐서 뒤의 성지산으로 이어집니다.

고성군은 개발업체와 손잡고 이 낙남정맥 가운데로 골프장을 만들려고 4년째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낙남정맥 주능선이 지나가는 곳에서 골프장 사업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산맥의 주능선을 지도에 그리고 골프장 사업지와 얼마나 떨어졌나' 거리를 표시해 오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업체가 꾸며 온 사전환경성 검토서 보완자료입니다.

낙남정맥 주능선이 골프장 예정지를 빙 돌아서 지나가는 걸로 그렸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 능선이라면 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게 맞는데요, 사업자는 그것보다 상당히 낮은 이곳에다가 이게 능선인 것처럼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낮은 곳에 능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자 : 개발업체와 고성군은 비틀어진 산줄기선이 맞다고 강변합니다.

▷고성군 관계자 : 등고선을 확인, 판단해보면, 이 능선축이 맞다고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기자 : 정밀한 등고선 지도와 항공사진으로 비교해서 판독해 봤습니다.

업체와 고성군 측 주장은 거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지리원 관계자 : 정상적인 능선이라면 지금 고갯마루를 타고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많이 지금 골짜기, 계곡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중략)

▷앵커 : 이렇게 개발관련자료가 조작됐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감독 책임 있는 기관 어느 곳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김○○ 기자입니다.

▷기자 : 낙남정맥 주변 환경보전업무를 맡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문제의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 관계자 : 현장 가 보셨으면 잘 아실 것 아녜요, 이게 능선 아닙니까, 이게!(그래, 그걸 능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기자 : 개발업체가 주장하는 낙남정맥 능선의 위치가 맞다면 이 자리에서는 비탈은 제 뒤, 북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공도 제 뒤쪽으로 굴러야 맞습니다.

공이 굴러가는 언덕 내리막에 업체와 고성군은 멋대로 선을 긋고 능선이라고 우겼습니다.

거짓 능선은, 백운산 기슭 골프장 예정지를 비껴돌아서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비스듬히 성지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모 박사 : 능선은 물길을 넘지 않습니다.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제시한 능선축은 저희 판단기준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자 : 업체가 그려온 낙남정맥선도 자세히 보면 고개 아래를 지나 골짜기와 물길을 지나갑니다.

SBS가 확인취제에 나서자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담당하는 정부 연구기관 측은 실수라고 시인했습니다.

▷책임연구원 : 이렇게 돌아가는 지도같은 경우

에는, 예, 이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이 도면에서는 미처 물길을 확인 못했습니다.

▷기자 : 사전환경성검토서도 전문 조사용역업체가 만든 것으로 돼 있지만 개발업체가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영향조사업체 관계자 : 제가 계약담당자인데, 계약한 것이 없거든요. 이걸 제 부모님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경남 고성군 ○○면에 골프장업체에 사전환경성검토서 조작은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3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에서 5분 이상 분량으로 (주)가○이 백두대간의 산줄기인 낙남정맥이 관통하는 지역에 관계기관과 유착하여 허가가 되지 않는 곳에 골프장 허가를 얻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골프장 개발업체인 (주)가○은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로 인허가 사항을 진행해 왔으나, ○○○○환경운동연합의 허위 제보로 (주)가○이 도면 위조 등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위조하여 고성군과 관계기관을 속이거나 유착한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교회관리인에서 해고되었음에도 스스로 사임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7경기조정5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신광교회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3.
처리결과 : 합 의 (합의간주)

보도내용

신광교회주보 : 『교우소식』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일자 4면)
내 용 : ②이○○집사(교회관리인) : 11월 말부터 사임케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지난 12월 2일자 교회주보 4면 『교우소식』 제하의 소식에서 제2항에 이○○집사(교회관리인)가 11월 말부로 사임케 되었습니다라고 게시되었으나, 사임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2일자 4면 『교회소식』란의 교우소식 제2항에 “이○○ 집사(교회관리인) 11월 말부로 사임케 되었습니다”라고 게시하였으나, 사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이 조정조서정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교회주보 4면에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위치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교우소식)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해결과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보도하지 않기로 함〉 ☐

로스쿨 입학시험인 LEET시험의 응시 횟수가 3회로 제한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경제 : 『로스쿨 응시 3회로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30일자 A14면)
내 용 :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횟수를 3번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LEET

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했고, 평가원은 LEET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조만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처럼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응시 횟수 제한은 ‘몇 년 동안’이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이 평생 3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LEET 응시 기회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로스쿨 입학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시폐인’과 같은 ‘로스쿨낭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 3회 제한 추진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30일자 『로스쿨 입학

시험 응시 3회로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횟수를 3번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LEET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했고, 평가원은 LEET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조만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이는 의·치학전문대학원처럼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으로 응시 횟수 제한은 '몇 년 동안'이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이 평생 3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법학적성시험 응시 횟수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기에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14일자 A14면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 3회로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횟수 제한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없고, 로스쿨 입학시험의 응시 횟수 제한 방안을 연구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경제> A14면에 2008년 1월 11일까지(토요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소제목("과열현상 막겠다"...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 내달 설명회)와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경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포털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한국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1일자 A14면)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일부 학교에 특정업체의 두부납품을 종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17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각 취하 (반론·손배)

보도내용

부산일보 : (1) 『두부납품 종용 김해시 의원 선관위 조사』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일

자 10면)

내 용 : 현직 김해시의원이 부산과 김해, 양산 등 일부학교에 특정업체의 두부 납품을 종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A 의원이 김해지역 학교장의 집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J식품 두부한 상자씩을 보낸 것이 알려져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두부 배달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선관위는 1차 조사 결과 김해지역 내 11개 학교장 집에 A 의원의 명함이 들어 있는 두부가 배달된 사실이 밝혀져 명함을 동봉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선관위는 두부가 배달된 교장의 집들이 A 의원의 선거구 내에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선거와의 연관성 여부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후략)

(2) 『김해시민단체 ‘두부납품 종용의원’ 규탄』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6일자 10면)

내 용 : (전략)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해시의원이 일선 학교에 특정업체의 급식재료 납품을 종용하고 다닌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난 9월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던 중 2시간이나 자리를 비우고 급식납품을 위해 학교 관계자를 만나고 다닌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로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근 의정비 인상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시의원의 처신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두부납품 종용 김해시의원 선관위 조사에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 지난 2007년 11월 1일자 10면 기사 중 김해시선관위는 1차 조사결과 김해지역 내 11개 학교장 집에 A 의원의 명함이 들어있는 두부가 배달된 사실이 밝혀져 명함을 동봉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김해시 선관위 1차 조사결과와는 없었으며, 김해지역 내 11개 학교장 집에 A 의원의 명함이 들어있는 두부가 배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11월 6일자 10면에 지난 9월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던 중 2시간이나 자리를 비우고 급식납품을 위해 학교 관계자를 만나고 다닌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로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최근 의정비 인상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의원의 처신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고 적시하였으나,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지난 9월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던 중 2시간이나 자리를 비운 적이 없고, 급식납품을 위해 학교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특정

업체를 위한 로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두부납품 종용 김해시의원 선관위 조사에 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1일자 10면에 『두부납품 종용 김해시의원 선관위 조사』라는 제목으로, 김해시 선관위는 1차 조사결과 김해지역 내 11개 학교장집에 A 의원의 명함이 들어있는 두부가 배달된 사실이 밝혀져 명함을 동봉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11월 6일자 10면에 지난 9월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던 중 2시간이나 자리를 비우고 급식납품을 위해 학교 관계자를 만나고 다닌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로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최근 의정비 인상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의원의 처신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김모 의원은 김해지역 학교장의 집에 명함이 든 두부를 배달한 사실이 없으며,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던 중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적도, 급식납품을 위해 학교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특정업체를 위한 로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중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보도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조정불성립결정 후 보도문

부산일보 : 『정정과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5일자 31면)

내 용 : 본보 2007년 11월 1일자 10면 “두부납품

중용 김해시의원 선관위 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김해시선관위의 1차 조사결과 김해지역 내 11개 학교장 집에 김해시 A 의원의 명함이 든 두부가 배달되었다는 보도와 관련, 당당시 “김해시 선관위 1차 조사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보 2007년 11월 6일자 10면 “김해시민단체

‘두부납품 중용 의원’ 규탄” 제하의 기사에서 김해시 A 의원이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린던 중 자리를 비우고 급식납품을 위해 학교관계자를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의원은 자리를 비우고 급식납품을 위해 학교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

신청인이 미국에 유명 벤처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문 ○ ○
피신청인 : 시사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시사N : 『바이오 벤처 검은손 문○○ 황우석 뺏치게 세상 농락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0일자 40~53면)

내 용 : ‘노벨 의학상에 가장 근접한 한국인’ ‘동양인 최연소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종신교수’ ‘세계 최초로 암 조기 진단 기술 개발’.

지난 7년여 동안 문○○ 박사에게 쏟아진 찬사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문 박사는 이같은 명성을 이용해 10원짜리 주식을 수천 배로 부풀려 팔았고, 진승현 게이트의 주역 진승현과 함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평택시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 박사의 ‘비리 행각’을 추적했다. (중략)

그는 이런 명성을 토대로 그동안 국내 바이오 벤처분야에 진출해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였다. 그가 내세운 상품은 오줌 한 방울만 가지고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방광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이른바 MS(마이클 세털라이트) 기술. 문 박사는 자신이 확보한 이 기술을 상용화해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며 일찌감치 국내에서 자금

모집에 나섰다. 미국에 캔○○이라는 바이오 회사를 설립한 뒤 2001년부터 현지에서 750만 주를 주당 10원에 발행해 국내로 들여와서 재벌가·은행권·제약회사 등 기관은 물론 대박을 쫓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적게는 주당 3달러에서 많게는 13달러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 배를 받고 팔았다.

이렇게 팔린 비상장 주식 대금은 홍콩·바하마 등지를 거쳐 캔젠과 문○○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나도는 이른바 ‘캔젠 주식’은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캔젠 주주 명부에는 올라 있지도 않은, 그래서 주권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대표의 사인이 빠진 ‘유령주식’도 나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이오 벤처 검은손 문○○ 사실과 탈락
• 내 용 : 본 잡지는 지난 11월 20일자 특집으로 『바이오 벤처 검은손 문○○, 황우석 뺏치네』라는 제목으로 문○○ 박사의 ‘비리행각’을 추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문○○ 박사는 사실과 달리 정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고흥군 소속 공무원이 노인복지타운, 가로등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광주조정4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흥군 (군수 박 병 중)

피신청인 : 고흥타임즈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고흥타임즈 : (1) 『박병중 군수 검찰 조사받아』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20일자 1면)

내 용 : 박병중 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9월 4일 오후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지난 해 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A 씨로부터 집무실과 식당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관공공사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 군수에게 돈을 건넬 때 녹취까지 했고, 녹취록을 순천지청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2) 『박병중 군수 또 검찰수사』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0일자 1면)

내 용 : 지난 9월 여러 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박병중 군수가 10월 9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지역민심이 더욱 술렁이고 있다.

박 군수는 이번에는 공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뿐 아니라 군청 인사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으며, 군청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뚜렷이 알려진 것은 아직 없으나 공사 관련 뇌물수수, 인사 관련 비리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박병중 군수는 지난 2005년 사업비 각각 86억 원과 67억 원의 풍양면하수종말처리장과 포두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의 12억 원 상당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 납품업체 관계자 장 모씨(39, ○○군장애인협회)가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진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친구이자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던 S모(55세) 씨를 거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3) 『태풍피해 보상기준 문제 많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0일자 9면)

내 용 : (전략) 군에서는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침수가옥에 한해서 1차로 100여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었고, 2차로 약 50만 원, 3차로 20만원 그래서 총 170여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한 것으로 들었다. 들은 바로는 일반가옥이든 상가든 침수가 많이 되어 많은 피해를 당한 가정이나, 마당에 물이 살짝 찼다가 지나가 거의 피해라고 볼 수 없는 가정이나 일률적으로 비슷한 피해보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농촌지역 피해보상이다. 가옥 침수나 파손 피해는,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극히 소수에 해당되었고 주로 농작물 피해와 전답의 제방붕괴, 그리고 전답의 매몰, 벼의 침수 등이다.

내 경우 전체 논의 70%가 완전 도복이 되어 신청을 했으나 피해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다. 벼의 경우 출수 30일경에 완전 도복이 되었을 때에도 15% 피해로만 간주하므로 피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제방붕괴의 경우 논둑이 높이 3m, 길이 60m로 붕괴신청을 했는데 논둑 발둑 방천은 피해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밭작물의 경우 800평 면적에서 콩 한 톨도 수확 못했는데 수확기가 넘도록 수확을 안하고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대상이 안 된다고 하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박 군수 무혐의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고흥타임즈는 2회에 걸쳐(9. 20일, 10. 20일) 박병중 군수의 검찰 조사와 관련하여 박군수가 관급공사를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3, 4명 이상의 고흥군 공무원들이 인사비리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와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노인복지타운, 가로등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일부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수사결과, 신○○는 박병중 군수를 협박하여 오다가 읍아멜 수단을 마련코자 총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박 군수는 이 돈을 받은 즉시 장학회에 기탁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아 불입건 되었으며, 이밖에 인사비리, 노인복지타운 가로등 정비사업 등과 관련하여 고흥군 관계 공무원이 검찰의 수사, 조사받은 사실이 없음을 바로잡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20일자 9면에 『태풍피해 보상기준 문제 많다』의 기고문에서 태풍피해 조사 및 보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사실확인결과, 일부 내용이 허위, 왜곡되게 표현되었으며 고흥군에서는 자연 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사 및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20일자 『박병중 군수 검찰 조사받아』 및 10월 20일자 『박병중 군수 또 검찰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박병중 군수 취임 이래시행된 노인복지타운, 가로등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 일부 직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흥군은 인사비리, 노인복지타운, 가로등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고흥군청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월 2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고흥타임즈 제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10월 20일자 고흥군청 일부 부서 압수수색도)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2007년 11월 20일자 『태풍피해 보상기준 문제 많다』 제하의 기고문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 반박 기고문을 게재해 주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고흥타임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6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향신문 : 『16개 언론사 “기자실 폐쇄 전면철회” 성명』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7일자 사회면)

내 용 : 1주일째 경찰청 기자실에서 철야 촛불 농성을 벌이는 16개 언론사 기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기자실 폐쇄와 취재제한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찰 기자들은 “촛불로 일어섰던 현 정권이 기자실의 촛불을 꺼버리려 하고 있다”며 “촛불을 켜고

기자실을 지키려는 것은 언론의 감시를 차단하려는 권력에 맞선 언론자유수호 노력”이라고 밝혔다.

기자단은 “기자실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한 정부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서 빚어지고 있는 엄격한 취재접근 제한을 볼 때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명백한 취재제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자단은 “촛불을 켜고 기자실을 지키려는 것은 언론의 감시를 차단하려는 권력에 맞선 언론의 자유수호 노력”이라며 “우리가 지키려는 건 기자실이란 특정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2007년 12월 7일자 사회1면 『16개 언론사 기자실 폐쇄 전면 철회 성명』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 기자단이 촛불을 켜고 기자실을 지키려는 것은 언론의 감시를 차단하려는 권력에 맞서는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경찰청에서는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 아니라 그간 17개 언론사가

독점적·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기자실 대신에 모든 언론매체가 공평하게 출입 사용할 수 있도록 취재지원을 확대·개방하려는 취지로 경찰청 내에 더 넓고 편리한 송고실과 브리핑룸을 마련하여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밝혀왔으며, 전국 경찰관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정정보도합니다.

신청 후 보도문

경향신문 : 『경찰청 “언론이 사실 왜곡”』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9일자 12면)

내 용 : 경찰청은 경찰청 기자실 폐쇄 보도와 관련해 18일 경향신문 등 14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경찰은 정정보도 신청서에서 “북관 1층에 개방형 기사송고실을 마련해 모든 언론매체에 공평하고 신속한 취재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언론은 경찰청이 취재를 봉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왜곡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경찰청 홍보과장은 “이택순 경찰청장의 지시로 정정보도신청을 하게 됐다”며 “언론의 왜곡보도 때문에 전국 경찰관의 명예와 신뢰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국방부, 기자 출입금지 해제』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9일자 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국민일보 : 『경찰청 기자단 “취재제한 철회하라” 성명』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7일자 사회면)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7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경찰청·서울시경 기자실 완전 폐쇄』 제
하의 기사 (2007년 12월 3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내일신문 : 『선거 다음날 받은 ‘출석요구서’』 제하
의 기사 (2007년 12월 20일자 20면)
내 용 : 국민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린 사실을 확인한 다음날 언론중재위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참여정부의 대표적 독선 정책인 ‘기자실 폐쇄방

안’을 충실히 수행한 경찰청이 신청한 언론중재위
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느낌은 참담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본지 13일자 20면에 실린
‘경찰청·서울시경 기자실 완전 폐쇄’ 제하의 기
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
다.

경찰청은 ‘국민이 오인할 수 있도록 사실을 왜곡
편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모든 언론
사가 차별없이 출입·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송
고실과 브리핑룸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경찰이 참여정부의 지시사항을 핑계 삼
아 언론의 감시망을 피하겠다는 속내를 숨길 수는
없다.

언론의 감시가 없었다면 스스로 재벌의 눈치를 보
며 꼬리를 내린 한화사건이 제대로 공개됐을까.

일선 경찰에 대한 취재가 봉쇄되는 등 견제기능
이 약화되면서 경찰이 강도 강간을 일삼다 적발되
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었다. 국민과 담
을 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반발을 사고 역효과
를 낸 사례가 부지기수다. 어제 선거 결과는 참여
정부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신랄한 심판이다.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하느니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
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신문 없는 정부를 만든 일등공신’이라는
훗날의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7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동아일보 : 『경찰청도 기자실 ‘대못질’』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3일자 사회면)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7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문화일보 : 『경찰청 기자실 기습폐쇄 뒤 ‘자물쇠’』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3일자 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

보도내용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7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서울신문 : 『경찰청, 기자실 전기까지 끊어』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4일자 6면)

신청 후 보도문

서울신문 : 『경찰청, 14개 언론사 정정보도 신청』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9일자 1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 후 보도문 참
조> ☐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7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3일자 8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세계일보 : 『경찰청, 기자실 폐쇄 강행 전화·인터넷
일방적 차단』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7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경찰청 기자실 폐쇄 강행 ... 기자들 철
야농성』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3일
자 사회면)

조선일보 : 『경찰청, 언론중재위에 제소』 제하의 기
사 (2007년 12월 19일자 A10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 후 보도문 참
조> ☐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Ⅸ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7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년 12월 3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경찰청 기자실 폐쇄』 제하의 기사 (2007

중앙일보 : 『기자실 폐쇄 대응...김장수와 이택순』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9일자 A2면)

내 용 : 이택수 경찰청장은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앙일보를 비롯한 14개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정○○(충경) 홍보담당관은 “언론사들이 ‘기자실 이전’을 ‘기자실 폐쇄’로 잘못 보도해 국민을 호도했고 경찰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의 정문·청사·기자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김○○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장관을 대신해 “출입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과 이 청장은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의 대통령의 이른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방침을 거스르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리더십은 달랐다.

김 장관은 기자실 문제를 실무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해결했다. 그는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의견을 듣고 기자실 폐쇄를 유보했다. 군 병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하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깨끗하게 선 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던 장면을 연상시키는 결단이었다.

이에 비해 이 청장은 대조적이다. 경찰청 기자실을 폐쇄한 다음날인 13일 이 청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마주쳤다. 폐쇄 이유를 묻자 이 청장은 “정부방침”이라고 짧게 말한 뒤 별관 1층으로 급히 피했다. 이어 직원 20여 명과 전·의경 40여 명을 동원해 기다리던 기자들을 밀어낸 뒤 청장실로 이동했다. 전·의경 20여 명으로 청장실 일대를 막은 뒤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접근도 원천 봉쇄했다. 항의 서한조차 받기를 거부했다.

이 청장은 17일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우연히 마주쳤다. 기자실에서 쫓겨난 이후 첫 대면이었다. 이 청장은 “나는 정부 방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개인 방침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기자실 폐쇄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자들은 현재 1층 로비에서 기사 작성을 하고 있다.

이 청장은 김승현 한화 회장 보복 폭행사건이 터졌을 때도 사건 무마 의혹의 책임을 떠넘겼다. 한화 고문과 골프를 치고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관련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홍영기 서울경찰청장과 김학배 서울청 수사부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7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 택 순)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한국일보 : 『국방부, 기자들 청사출금 해제』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9일자 A2면)

내 용 : 국방부는 18일 기자들의 국방부 영내와 청사 출입금지 등 전날 강행했던 취재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대한 출입 제한조치는 새 통합브리핑실로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로 인해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17일 기자들의 영내 출입을 통제

보도내용

한국일보 : 『경찰청도 ‘대못질 충성’』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한 채 새로 만든 통합브리핑실로 가는 기자에 한해서만 안내를 받아 영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출입도 일과 시간(오전 9~오후 6시)에만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언론의 취재를 전면 봉쇄했다. 또 정부의 이른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침과도 무관하게 직접 대면 취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기존 기자실은 폐쇄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새 송고실 이전을 요구하며 5일 기자실 인터넷을 차단하고 15일에는 전기를 끊었다. 출입기자 다수는 이에 반대해 4일째 기자실을 지키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기자실을 폐쇄하고 취재를 봉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한 보도를 했다”며 한국일보 등 14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7년 12월 13일 06:20)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7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2월 4일 21:43)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II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8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23:28)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Y T N : 「YTN24」 프로그램 (2007년 12월 6일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경찰청이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V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8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이택순)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7.
처리결과 : 취 하

연합뉴스 : 『경찰 기자단, 정부 취재제한 전면 철회
요구』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6일자
정치면)
내 용 : <2007서울조정468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46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중간광고 확대방안 공청회에서 외부와 논의가 없었던 점을 반성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8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18.
처리결과 : 각 합의

와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이 “중간광고 도입을 기
정 사실화한 공청회 진행에 문제가 많다”며 토론
을 거부하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방송위는 지난 2일 중간광고 허용 방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이어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세부안
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간광고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
에 앞서 “외부와 논의가 없었던 점은 반성한다”면
서도 “나도 시청자 입장에서 광고가 없기를 바라
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보려면 수신료를 더 내든지,
아니면 광고를 더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략)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중간광고 멋대로 결정해 놓고 웬 공
청회”』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5일자
2면)
내 용 : 14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확대방안’ 관련 공청회는 시민단체

(2) 『열 받은 최○○ 부위원장』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5일자 16면)

내 용 : 14일 열린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확대방

안’ 공청회에서 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간광고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와 논의가 없었던 점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이 그의 진심인지는 의문이다.

공청회에서 “반성한다”는 인사말을 한 뒤 최 부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답변석에 앉은 최 부위원장의 수첩이 카메라에 잡혔다. 수첩에는 “앞으로 나도 ‘성질을 부리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적혀 있었다. ‘11월 13일 국회 문광위에서 엄청 당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최 부위원장은 전날 국회 문광위에서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관련자료도 안 내놓고 국감 때는 입다물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중간광고 허용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최 부위원장을 질타했다. (중략)

최 부위원장은 수첩에서 특히 조배숙 국회 문광위원장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나는 두 번에 걸쳐 조배숙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 (중간 광고 문제를) 의논했다”고 적었다. 이어서 “(조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관심도 없었다”고 썼다. 최 부위원장은 “그래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삼자 ‘오리발’이다. 왕실망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 2일 방송위 회의에서 “(문광위의) 조배숙 위원장, 정청래 의원과는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며 표결처리 강행을 요구했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중간광고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15일자 사회면에 『중간광고 멋대로 결정해 놓고 웬 공청회』라는 제목으로 방송위원회 최○○ 부위원장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확대방안 공청회에서 “외부와 논의가 없었던 점은 반성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하는 한편, 『열받은 최○○ 부위원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에서 반성한다는 인사말을 한 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관련 국회 비판 받자 앞으로 나도 성질 부리겠다 수첩에 적어”, “수첩에는 앞으로 나도 성질을 부리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적혀 있었다”, “지상파TV의 중간광고 도입을 주도했다가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자 나도 성질을 부리겠다는 심경을

적었다”, “국가 방송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인사가 이런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기는커녕 속으로는 감정적인 대응을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공청회 인사말에서 방송위원회 최○○ 부위원장은 “우리 내부에서 공유한 것을 외부와 공유하는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라고 말했다를 뿐이며, 문제제기한 수첩의 내용은 중간광고 논의와는 무관한 지극히 사적인 메모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11월 15일자 A2면 『중간광고 멋대로 결정해놓고 웬 공청회』 및 동일자 A16면 「열받은 최○○ 부위원장」 제하의 기사와 관련, 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청회에서의 실제 발언 내용이 “외부와 공유하는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앞으로 나도 성질을 부리겠다”는 취지의 메모는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와는 무관한 메모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2008년 1월 11일까지(토요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재목(지상파와 중간광고 도입 관련 국회 비판받자 “앞으로 나도 성질 부리겠다” 수첩에 적어)과 같은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0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서초구청장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83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서초구 (구청장 박 성 중)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21.

처리결과 : 각 취하

에 애초 여행자 명단에 없던 박 구청장의 부인 김 아무개 씨도 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씨는 9월 19일 엘에이에 도착해 일행과 합류했다. 박 구청장은 “실무자들의 실수로 일정이 잘못 나갔다”며 “공식 일정으로 이미 잡혀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내용

한겨레 : 『서초구청장도 외유성 출장 물의』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6일자 25면)

내 용 : 박성중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난 9월 미국 출장기간 동안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니언 등 외유를 다녀오기도 이를 감추다가 들통나 뒷말이 많다.

박 구청장은 9월13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등을 방문했다. 뉴욕 맨해튼 자치구, 어바인시와의 자매결연 등이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 구청장을 포함해 우○○ 문화행정과장 등 공무원 5명과 서초구 경제인 등 민간 방문단이 21~22일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니언을 찾았다. 박 구청장은 “서초구 야간조명 시설 설치를 위해 라스베이거스 야간 조명을 둘러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행을 계획한 박○○ 문화행정과 주임은 “우면산 등 녹지가 많은 서초구가 자연 그대로 보존한 그랜드캐니언을 따라 배우려고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일정이었다면서도 방문 일정이 짧은 데다 현지 관계자들은 아무도 못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어바인에서 6시간 걸려 도착한 라스베이거스의 야간조명 시찰은 저녁 6~7시 한시간 만에 끝났다. 또 다음날 그랜드캐니언 방문은 경비행기를 이용해 오전 9~12시 세 시간 동안 진행됐을 뿐이다. (중략)

박 구청장 일행은 9월20일 일정을 끝마치고 다음날 귀국한다고 현지 언론에도 일정을 속였다. 여기

• 제 목 : ‘서초구청장도 외유성 출장’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2007년 10월 6일자 사회면에 『서초구청장 외유성 출장 물의』라는 제목으로 박성중 서초구청장이 지난 9월 미국 출장기간 동안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니언 등 외유를 다녀오기도 이를 감추다가 들통나 뒷말이 많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박성중 서초구청장의 미국 출장은 뉴욕 맨하탄 브로우와의 우호교류협력 강화와 캘리포니아 어바인시와의 우호도시협력체결을 비롯, 서초구 거주 경제인 등이 후원하는 KBS 전국노래자랑(뉴욕편) 참여 등 당초 계획대로 빠빠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많은 인사들과의 만남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방문으로 밝혀졌으며,

미국방문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귀국 즉시 상세하게 설명해 준 사실이 있으며, 귀국일정을 현지 언론에 속였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며, 방문단과 자리를 함께했던 구청장 부인은 공식방문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여 별도 여행중 현지에서 동행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한편, 공식방문 마지막 일정인 2007년 9월 22일 (토) 귀국 당일 항공편이 심야시간대에 있는 관계로 오전에 잠시 시간을 할애하여 선진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니언의 공원시설을 견학하였을 뿐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 밝혀졌기에 반론 보도를 게재합니다. □

신청인 어린이집이 부실 급식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이사 강 ○)
피신청인 : CJB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2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CJB : 「CJB종합뉴스」 프로그램 (2007년 12월 17일 20:30)

내 용 : ▷앵커 : ○○의 한 장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오늘이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의 한 장애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입니다.

밥과 된장국 여기에 아몬드 조림 약간과 햄과 깍두기 2조각이 한 끼 식사 전부입니다.

2천원짜리 급식이라곤 하지만 부실해 보이긴 마찬가지.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선생님은 부실한 이 식단도 그나마 평소 때보단 나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직 교사 : 손님오면 없던 간식도 나오고...

▷기자 : 더 큰 문제는 이 어린이집에서 제공했다는 간식거리.

전 보육교사는 심지어 유통기한이 넘은 간식거리가 냉동실에 보관됐다 데워져 아이들에게 제공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전직 교사 : 유통기한 지난 걸 냉동실에 넣었다가 데워져 나오고...

▷기자 : 어린이집 원장의 요청에 음식물을 제공해 왔다는 푸드○○ 관계자의 말 역시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푸드○○ 직원 : 선생님이 요청해와 줬지만 어린이집이란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공급 안 했다

▷기자 :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에선 감독관청이 지시한 식단표대로 하다보니 식단이 부실해진 것일 뿐 버려야 할 음식을 아이들에게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 장애전담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17일자 「저녁 뉴스」에서 ○○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임된 교사의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민원일 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해 12월 17일 「CJB종합뉴스」 프로그램 ‘부실급식 파문’ 제하의 보도에서 ○○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이 부실하다고 방송되었으나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식단대로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왔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월 3일 20시 25분에 방송하는 CJB ‘CJB종합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아나운서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 및 보도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CJB>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정대상기사 동영상 및 스크립트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CJB : 「CJB종합뉴스」 프로그램 (2008년 1월 3일 20:2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중간광고 허용 안건처리 하루 전에 외부인사의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8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방송위원회 (위원장 조 창 현)

피신청인 : 주간동아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주간동아 : 『“야밤 집 찾아와 중간광고 허용 압력”』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7일자 14면)

내 용 : 3기 방송위원회 조창현 위원장이 11월 2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안건 강행처리를 하루 앞두고 외부 인사에게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주간동아’가 최근 입수한 ‘제 45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비공개속기록’에 따르면, 회의 사회를 보던 조 위원장은 중간광고 허용안건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위원들의 압력이 거세지자 이례적으로 발언 기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방송위원회가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 압력을 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대통령한테도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다.”

조 위원장 발언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압력을 행사한 ‘어떤 분’은 중간광고 허용을 강력히 추진해온 지상파 방송업자(MBC KBS SBS) 가운데 한 회사 고위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조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방송사업자

들이 방송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고, 중간광고 허용안건이 표결로 강행 처리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안건 처리에 가장 앞섰던 최○○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 위원들에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조배숙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왜곡’ 전달해 반대 의견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중간광고 허용 압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주간지는 지난 11월 27일자 정치면 『“야밤 집 찾아와 중간광고 허용 압력”』 제하의 기사에서 방송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위원들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안건 처리를 앞두고 관련 방송사업자로부터 로비와 압력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중간광고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그 어떤 외부 인사로부터 허용압력을 받은 바 없고, 또한 중간광고와 관련한 외부인사의 방문도 없었으며, 다른 방송위원들 역시 중간광고 안건과 관련해 로비와 허용 압력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주간동아 : 『‘중간광고 허용 압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9일자 16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 노조의 위원장이 담임 목사직을 사직하지 않아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노동조합 (위원장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이○○ 목사, 노조위원장 자격없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3일자 메인면)

내 용 : (전략) 그러면 이○○ 목사는 어떻게 노조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엄격히 말하면 이○○ 목사는 ○○교회 소속으로 현재 무임목사가 아니라 ○○교회 담임목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으며 노조위원장직도 수행할 수 없다.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려면 담임목사를 그만두어야 하며, 목사직을 사표내야 한다. (중략)

결국 타협으로 취하되었지만 필자는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 노조위원장직을 할 수 있도록 의리상 직원으로서 채용을 했던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120만 원을 후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120만 원을 사례로 주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품이 서로 오고간 적이 한번도 없다. 이 목사가 모든 서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필자는 주로 서명만 하는 꼴이었다. 모든 것을 문서로 하기 때문에 경인지방 노동청 인천북구지청장도 교회나 노회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목사의 문서를 보고 적절한 형식요건만 갖추니 노동조합변경신고허락을 해 준 것이다. 원래는 강○○이 노조위원장이었는데 이 목사로 바뀐 것이다. (중략)

따라서 부천노회는 이 목사가 건물을 가진 교회의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사를 기관목사로 허락하지 않았고, 겸직도 허락한 바가 없다. 혼자 겸

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서류를 인천노동위에 제출하여 노조위원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그 서류는 불법이었다.

따라서 이 목사는 현재 사용자 신분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직은 불법이며, 노조위원장직을 유지하려면 목사직을 사표내야 한다. 부목사 자체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목회활동 자체를 그만두어야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노조위원장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2월 23일자 초기화면 상단에 『이○○ 목사, 노조위원장 자격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위원장은 담임목사직을 사표내야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노조 이○○ 위원장은 부천노회는 물론, ○○교회에도 사표를 낸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원래는 강○○이 노조위원장이었는데 이 목사로 바뀐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당시 강○○은 노조위원장이 아니었으며, 위원장 역임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서류(겸직청원서)를 인천노동위에 제출하여 노조위원장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서류(겸직청원서)를 인천노동위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노조 위원장 자격” 관련 정정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23일자 “이○○ 목사 노조위원장 자격없다” 제하의 보도에서 이○○ 위원장은 담임 목사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교회노동조합 이○○ 위원장은 ○○노회는 물론, ○○교회에도 사표

를 제출하였으나 ○○노회로부터는 사표가 보류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당시 강○○은 노조위원장이 아니었고 위원장으로 역임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한편, 기독교노조 위원장은 겸직청원서를 인천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월 4일부터 3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에클레시아뉴스> 초기화면 상단(첫째 날은 첫 번째 위치, 둘째 날은 두 번째 위치, 셋째 날은 세 번째 위치)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 전문이 표시되게 하며,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보

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에클레시아뉴스 : 『“○○노조 위원장 자격”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4일자 메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선거보도의 형평성을 위반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8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 연 주)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12.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방송사 낯뜨거운 변신』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2일자 A4면)

내 용 : “우리가 보기에도 좀 낯 뜨겁다.” 대선 직전까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관련 의혹 등을 집중보도했던 일부 지상파 방송사가 대선 직후 이 당선자에 대한 보도 태도를 대폭 수정하자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오는 뒷말이다. (중략)

KBS는 ‘시사 기획 씬’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대선 후보 검증을 하며 이명박 당선자에게 상대적으로 시간을 더 할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한나라당은 이 프로그램을 방송위원회에 제소해 결국 ‘주의 징계’를 받아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방송사 낯뜨거운 변신”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해 12월 22일자 A4면에 『방송사 낯뜨거운 ‘변신’』이라는 제목이란 기사에서 “KBS는 ‘시사기획 씬’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대선 후보 검증을 하며 이명박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논란이 불거졌고, 한나라당은 이 프로그램을 방송위원회에 제소해 결국 ‘주의 징계’를 받아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KBS ‘시사기획 씬’ 「대선후보를 말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편은 이명박 후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도 방송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방송사 낯뜨거운 변신”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작년 12월 22일 A4면 “방송사 낯뜨거운 변신” 제하의 기사에서 KBS ‘시사기획

썸' 프로그램이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월 17일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A4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동아닷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방송사 낮뜨거운 변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6일자 A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언론중재신청사례

이혼위기를 넘긴 노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내보내 과거 불륜관계 당사자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우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 16.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KBS-1TV : 「아침마당」 프로그램 (2006년 12월 26일
08:30)

내 용 : <2007서울조정2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우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1TV)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사장 정 연 주

주 문 : 1. 피신청인 한국공사는 신청인 우○○에게 2007년 2월 25일까지 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는 2006. 12. 26. 08:4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KBS-1TV의 「아침마당」 프로그램 내 “〈부부탐구〉 위기 끝에 되찾은 사랑”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2001. 7. 10.에 동일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부간 불륜 등의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는 이○○, 김○○을 다시 출연시켜 2001년도 방송분에 들어있는 신청인의 40여년 전 초상사진을 10여 초 정도 다시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김○○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신청인의 동의없이 방송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을 과거 마치 이○○와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인 것처럼 묘사하여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7. 1. 16.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반론보도와 아울러 손해배상액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7서울조정23)을 하였고, 조정 계류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등 참조).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은 ‘부부탐구’ 코너의 마지막회로서 그동안 출연했던 출연자 중 특별히 인상적이었거나 문제가 많았던 출연자들 중 4쌍을 재출연시켜, 방송출연 후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코너종결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면서 이 사건 방송이 이미 방송된 내용을 재방송한 점, 70대 노부부의 사랑싸움이 주 내용이라는 점 및 생방송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초상권 부분에 대해 판단컨대 피신청인이 비록 신청인의 과거 40여년 전 초상이기는 하나 신청인의 동의없이 전신 사진을 10여 초 가량 클로즈업하여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고, 다음으로 명예훼손 부분을 살펴건대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불륜 내지 간통을 저질렀

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으나 사진 내 인물들의 포즈 및 구성(선글라스를 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양장과 한복을 잘 차려입은 두 여자가 서있는 모습), 초상 사진을 보고 난 후 이○○, 김○○의 설명(“3년간 사귀었던 여자”, “내가 여행 가버리면 와서 자고 일해주고 다 해요”, “이걸(사진을 지칭) 두고 내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날...”) 및 진행자들의 멘트(“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지만 참 다시 봐도 저희는 (얼굴이) 화끈한데”, “사진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등을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과거 문제된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마치 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성이 있었고 또한 신청인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신청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이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명예 및 초상권 등 인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방송에 관하여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 비록 생방송이긴 하나 방송을 하기 전에 미리 사진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진을 모자이크처리를 하는 등 신청인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을 전국에 방영한 행위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및 ‘부부탐구’ 코너의 기획의도,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경위, 2001년도 방송분을 재방송한 점, 신청인의 나이, 직업, 방송된 신청인의 초상과 현재 시점간

의 시간적 간격, 그 특정의 정도 및 신청인의 초상의 노출 시간, 인터넷 다시보기 방송 중단 조치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30.



가출 청소년과 부모가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봉하는 장면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8.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KBS-2TV :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 (2006년 1월 19일 20:55)

내 용 : <2007서울조정8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김 ○ ○

2. 조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2TV)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사장 정 연 주

주 문 : 1.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는 신청인 김○○, 조○○에게 2007년 4월 15일까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

들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는 2007. 1. 19. 21:3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KBS-2TV의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 내 “행복한 가족 프로젝트-집으로”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가출청소년문제를 다루면서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딸인 조○○를 찾으러 온 신청인 김○○이 상담센터 팀장과 얘기하는 장면 및 조○○와 얘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동의없이 대화 장면 등을 촬영·방송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상 음성 변조가 불완전하고 옷차림 등이 노출됨으로써 주위에서 알아보게 되는 등 가족 내부의 사생활이 여과없이 공표되어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7. 3. 8.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7서울조정88)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16280 판결 등 참조).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문제된 프로그램은 기본이 바로 선 사회,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방법을 다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작·방송되고 있는 공익적 프로그램이며, “행복한 가족 프로젝트-집으로” 코너는 부모와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이 거리를 방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최근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가출 청소년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정을 복원하고,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로 기획·제작되었다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촬영 및 방송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촬영하였지만 신청인들의 사생활이 일부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그 취재·촬영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필요 최소한 정도여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초상권 및 음성권 부분에 대해 판단컨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얼굴과 상반신 일부를 모자이크로 가린 점은 인정되나 음성변조의 정도가 미약하여 신청인들 중 특히 김○○을 아는 주위의 사

람이라면 일반인의 주의 정도로 신청인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해 보건대 가족 중 미성년의 자녀가 가출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것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사건 방송에서 나온 내용, 즉 가출한 자녀 및 모친이 상담지원센터에서 서로 얘기하는 장면 등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사실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사건 방송이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이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 인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방송에 관하여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 방송을 하기 전에 미리 촬영에 대하여 명백하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방송시 전신 모자이크처리 및 음성변조를 충분히 하는 등 신청인들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일부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을 전국에 방영한 행위는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및 해당 코너의 기획의도,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경위, 신청인들의 연령, 신청인들의 얼굴 및 상반신 일부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한 점 등 신원 비공개 처리 정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의 인터넷 다시 보기를 중단한 점과 이 사건 방송테이프 판매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방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0.

□

결혼정보회사의 단체미팅행사에 참가해 산을 오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1.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금강산 미팅 ... 내 짝은 어디에』 제하의 기
사 (2007년 2월 26일자 2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3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25번지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 호 순

주 문 : 1. 피신청인 한겨레신문주식회사는 신청
인 김○○에게 2007년 4월 20일까지 금 1,000,000원
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0,000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한겨레신문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발
간하는 2007. 2. 26.자 한겨레 2면 “금강산 미팅...
내 짝은 어디에”제하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에서 모 결혼정보회사가 금강산에서 주
최한 단체미팅행사(“아이 러브 금강산”,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가하여 여성파트너와 함
께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을
신청인의 동의없이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면
서 2007. 3. 21.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
해배상금 금 2,3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
(2007서울조정100)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보도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합
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
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
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
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
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96다42789 판결 참조). 그
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
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

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서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진보도는 행사주체인 결혼정보업체에서 피신청인 소속 기사를 초청하여 이뤄졌고, 해당 업체에서 초상권 등을 포함한 모든 취재편의를 약속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재가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인 행사에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신청인이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면서 본인의 초상이 노출되는 것을 삼가 줄 것을 행사 업체에 요청하였고 사진 촬영시 참가 회원 전체 사진의 촬영·게재는 동의했으나 동영상 촬영은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 초상을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

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진과 같이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관하여 신문을 발간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 이 사건 사진을 보도함에 있어서 해당 업체뿐 아니라 신청인을 상대로 그의 사진을 사용하는데 관하여 촬영 전 또는 후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은 것인지, 동의를 얻었다면 그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사진을 게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한 신문을 전국에 배포한 행위는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일반인인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행사의 취지 및 행사의 성격, 촬영 경위, 법익침해의 고의성 정도, 신문의 배포 부수, 신청인의 나이, 직업, 신청인의 초상의 특정 정도 및 행사주체업체가 신청인에게 미리 안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

□

결혼정보회사의 단체미팅행사에 참가해 산을 오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4

청 구 명 : 손해배상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7. 3. 21.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 『금강산에서 미팅을!』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5일자 사회면)
내용 : <2007서울조정10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300,000원

결정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4
청구명 : 손해배상
신청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1번지
대표이사 김 기 서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신청인 김○○에게 2007년 4월 20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2007. 2. 25.자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금강산에서 미팅을!” 제하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에서 모 결혼정보회사가 금강산에서 주최한 단체미팅행사(“아이 러브 금강산”,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가하여 여성파트너와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을 신청인의 동의없이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면

서 2007. 3. 21.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금 2,3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7서울조정102)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당사자는 이 사건 보도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진보도는 행사주체인 결혼정보업체에서 피신청인 소속 기자를 초청하여 이뤄졌고, 해당 업체에서 초상권 등을 포함한 모든 취재편의를 약속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재가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인 행사에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신청인이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면서 본인의 초상이 노출되는 것을 삼가 줄 것을 행사업체에 요청하였고 사진 촬영시 참가 회원 전체 사진의 촬영·게재는 동의했으나 동영상 촬영은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 초상을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보도와 같이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관하여 뉴스통신사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으로서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업체 뿐 아니라 신청인을 상대로 그의 사진을 사용하는데 관하여 촬영 전 또는 후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은 것인지, 동의를 얻었다면 그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한 후 사진을 게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를 게재한 뉴스통신을 배포한 행위는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일반인인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행사의 취지 및 행사의 성격, 촬영 경위, 법익침해의 고의성 정도, 신청인의 나이, 직업, 신청인의 초상의 특정 정도 및 행사주체업체가 신청인에게 미리 안내하지 못한 점 및 게재 후 피신청인에게 미리 안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점 및 게재 후 피신청인이 취한 조치 등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

□

신청인이 과거 성인영화배우였다는 사실을 방송중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Mnet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8.

처리결과 : 중재결정

(2007년 3월 22일 18:00)

내 용 : <2007서울조정1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5

청 구 명 : 손해청구

보도내용

Mnet :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시즌2」 프로그램

신청인 : 이 ○ ○

피신청인 : 씨제이뮤직주식회사(M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2-4

삼이빌딩

대표이사 김 중 진

주 문 : 1. 피신청인 씨제이뮤직주식회사(Mnet)는 신청인 이○○에게 2007년 5월 25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씨제이뮤직주식회사(Mnet)는 2007. 3. 22. 18:0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케이블TV Mnet의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시즌2」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데이트성공을 위한 일반인 출연자로 나온 신청인이 방송 도중 성인영화배우 경력이 밝혀져서 주인공인 남성출연자에의해 탈락하게 되는 내용을 5분여 정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거 사생활(과거 성인영화 배우활동)을 일방적으로 폭로하여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7. 4. 11.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7서울조정126)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보도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8.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 배우활동을 한 사실을 모르고 출연시켰으며 촬영 중간에 우연히 알려지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방송이 녹화촬영 후 신청인과의 충분한 협의 후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방송되었으나 다만 본 사태로 인해 신청인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과거 사생활을 흥미거리로 노출시키고자 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신청인이 가사 과거 성인영화배우 경력이 있다고 하고 이 사실이 방송중에 우연히 발견되어 신청인이 탈락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의 녹화촬영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등 신청인의 인격권을 보호할 조치를 취하던지 또는 방송 중 인터넷 검색 결과 나오는 신청인의 과거 활동 당시 초상 등을 명확하게 모자이크 및 묵음 처리하던지 했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거 초상을 그대로 방송하고 경력을 공개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을 전국에 방송한 행위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방송의 성격, 신청인의 출연 및 촬영경위, 3월 15일 예고방송 이후 3월 22일 본 사건 방송의 방송경위, 시청률, 신청인의 나이, 직업 및 피신청인

의 사후 조치 및 사과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3,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4.



추위로 움크리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재2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10.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 『강풍에 체감기온 뚝 떨어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서울조정12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김 기 서

중재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2007년 5월 17일까지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이 위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이유 및 인정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7년 1월 30일 13시 45분에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한 『강풍에 체감기온 뚝 떨어져』 제목의 기사에 나오는 신청인의 전신 사진과 상반신 사진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촬영되어 게재되었으며, 이 같은 사진이 일부 무가신문지 및 여러 포털사이트에까지 배포됨으로써, 신청인으로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정도의 얼굴 표정 및 전신이 공개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강풍과 추위에 떨며 횡단 보도에 서 있는 신청인 주장의 위 각 사진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촬영되고 게재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사진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반응한 시민들의 표정을 실는 기사에 나오는 사진으로서 그 정도 사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양해가 있을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강풍과 추위에 떨며 횡단보도에 서 있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없이 촬영 게재하였음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얼마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사진 촬영 경위, 법익침해의 악의 유무, 신청인의 나이, 성별, 피신청인이 취한 조치 등 기

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19.

□

전자상가에서 외국산 홈시어터가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컴퓨터타임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7. 5. 31.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전자신문(컴퓨터타임즈)

서울 용산구 효창동 5-166

대표이사 문 병 구

중재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컴퓨터 타임즈> 2007년 6월 15일자 이전 1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집단 전자상가...)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게재할 때, 조정대상 기사 사진을 5분의 1크기로 함께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6월 30일까지 금 1,2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그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중재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컴퓨터타임즈> 1면에 별지기자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이유 및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컴퓨터타임즈> 2007년 4월

보도내용

컴퓨터타임즈 : 『외산 홈시어터 가격 부풀리기 ‘난무’』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30일자 1면)

내 용 : <2007서울조정7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7서울조정7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7

30일자 1면 “외산홈시어터 가격 부풀리기 ‘난무’” 제하의 기사에서 가전 매장들이 높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생산지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홈시어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 게재, 배포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비싼 가격으로 외국산 홈시어터를 판매한 것처럼 오인되게 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신청인이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며, 또한 이 사건 사진은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신청인 동료가 허락하여 신청인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지면의 구성,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를 보면, 가전 매장들이 높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생산지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홈시어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이 담긴 ‘전자상가의 TV매장들 중 일부가 외국산 홈시어터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고 있다’는 캡션을 달아, 일반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실이 적시되었고 그에 따라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의 진실여부는 당사자 모두 다투지 않고 있고, 피신청인 또한 이 사건 기사의 특정내용과 신청인이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는 범위내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의 특정내용과 신청인이 관계가 없음은 피신청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설명이 없는 상태로 신청인의 모습이 담긴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되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의 뒤늦게나마 정정보도 형식으로 이러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얼마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사진 촬영 경위, 법익침해의 악의 유무, 신청인의 나이, 성별, 피신청인이 취한 조치 등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1,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4월 30일자 1면에 『외산 홈

시어터 가져 부풀리기 난무』 제목의 기사 보도사진과 관련하여 사진에 나온 사람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컴퓨터 타임즈>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중재결정에 의한 보도문

컴퓨터타임즈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11일자 1면)

내 용 : <결정문 중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이 프로포즈 받으면서 우는 장면을 동의없이 방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6. 20.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SBS-TV : 「김미화의 U」 프로그램 (2007년 5월 15일 13:20)

내 용 : <2007서울조정1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TV)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대표이사 김 수 웅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TV)는 신청인 정○○에게 2007년 7월 31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TV)는 2007. 5. 15. 13:2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의 「김미화의 U」 프로그램 내 “날마다 프로포즈하는 남자들”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기억에 남는 감동 프로포즈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청인이 2006년도 봄경 당시 남자친구(현 남편)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있는 장면을 진행자 및 출연자의 멘트와 함께 50여 초 정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연한 동영상상 신청인의 동의없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7. 5. 30.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7서울조정191)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6. 20.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은 낮 시간대에 주 시청자인 주부를 대상으로 봄을 맞아 프로포즈 이벤트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감동 스토리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자 기획되었다면서 본 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놀라는 장면, 남자친구와 마주 앉아 있는 장면, 남자친구의 편지읽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장면 등을 50여 초 가량 진행자의 멘트와 함께 방송하여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고 출연자의 멘트 또한 일부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이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방송에 관하여 방송사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으로서 는 방송을 하기 전에 미리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진을 모자이크로 처리하거나 신청인에게 프로포즈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등 신청인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을 전국에 방영한 행위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기획의도,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경위, 신청인의 나이, 직업, 방송 시간 및 신청인의 초상의 노출 시간, 방송 내용 및 다른 프로포즈 커플이나 가족이 출연한 방송과의 내용상 비교, 인터넷 다시보기 방송 중단 조치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7.



신청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9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1인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8. 31.

처리결과 : 중재결정

내 용 : <2007서울조정2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9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이 ○ ○

2. 이 △ △

보도내용

SBS-TV : 「출발보닝와이드」 프로그램 (2007년 7월 31일 07:30)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TV)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대표이사 김 수 응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TV)는 신청인들에게 2007년 9월 20일까지 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TV)는 2007. 7. 31. 07:3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의 「출발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내 “현장리포트 : 도를 넘었다! 2007 해운대 청소년 보고서!(긴급취재! 피서지 무질서)”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대표적인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청소년의 탈선과 방종의 현상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면서 신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퍼마켓을 비추면서 모자이크처리와 음성변조처리를 한 가운데 신청인들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청소년을 나무라는 장면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항변하는 장면을 진행자의 멘트와 함께 20여초 정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방송을 내보내서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7. 8. 13.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7서울조정295)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에 의해 중구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8. 20.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수퍼마켓을 운영한 3년 동안 청소년에게 일절 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과거에 경찰 등 사법당국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도 없고 그동안 신청인들의 소유의 소위 ‘말하는 개’로 인해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였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게라면서 방송 당시 촬영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여러 번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송사에서 촬영 후 방송하면서 본인들을 청소년을 탈선으로 이끈 어른들로 묘사했다면서 본인들의 초상권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의 탈선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국민들이 함께 책임을 느끼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면서 문제된 수퍼마켓이 ‘말하는 개’로 유명한 곳으로 여러 방송프로그램에 나온 곳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본 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비록 신청인들 가게 전경 및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모자이크처리 및 음성변조처리가 되었다고 하나, 간판의 선글라스를 쓴 개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없이 노출되면서 ‘미성년자 술/담배 NO’라는 글자가 같이 나왔고 사회 통념상 가게 간판에 개 사진과 ‘미성년자 술/담배 NO’이 나온 예는 드물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들 또는 신청인들 가게를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방송을 보고 비록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가 되었지만 신청인 가게와 신청인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이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초상권과 명예 등 인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방송에 관하여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의 방송을 하기 전에 미리 촬영에 대하여 명백하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방송시 업소 전경, 간판 전체 그리고 전신에 대해 모자

이크처리 및 음성변조를 충분히 하는 등 신청인들의 법익침해를 미리 방지 할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방송의 경우에 신청인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술과 담배를 신청인 가게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청소년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인들을 촬영·취재하는 때에 형사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신청인들의 진지한 항변을 상당 부분 취재하여 다루거나 청소년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등 보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일부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을 전국에 방영한 행위는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기획 의도,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경위, 신청인들의 나이, 직업, 신청인들의 가게 전경, 간판, 전신, 음성의 노출 시간 및 각각의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정도, 방송 내용, 진행자의 멘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송에 따른 고통에 대해 사과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30.



절도 및 절도교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10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t v N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9.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t v N : 「나는 형사다」 프로그램 (2007년 10월 11일 23:10)

내 용 : 〈2007서울조정39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10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씨제이티브이엔주식회사(tvN)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C-3지역

DMS 6~9층

대표이사 송 창 의, 윤 석 암

주 문 : 1. 피신청인 씨제이티브이엔주식회사(tvN)는 신청인 이○○에게 2007년 11월 21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인 씨제이티브이엔주식회사(tvN)는 2007년 10월 11일 23:0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케이블 TV tvN의 <100% 리얼리티 - 나는 형사다>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신청인이 절도혐의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받고 있는 내용을 15분여 정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 직장을 노출하는 등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하였고 신청인의 촬영거부에도 불구하고 조사장면 등을 촬영 후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7년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7서울조정 394)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인간의 존엄권은 부인되지 않으며, 그 유죄 판결로 선언된 자유박탈 이외의 법정되지 않은 처벌을 가할 수 없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언론보도는 억제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범죄보도에 있어서 객관적 사안의 보도와 그에 관계된 인물의 제시를 엄밀히 구분하여 그 관계 인물의 신원은 밝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계한 인물의 신원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어 그 범죄

와 그 수사에 관하여 알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범죄보도에 관한 언론의 과업은 객관적인 범죄의 현상과 그에 대한 처벌 및 범죄에 대한 대책의 보도에 국한될 뿐이지 범죄를 탄핵하고 관계인에게 응징을 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에 범죄혐의자를 명시하는 것은 그의 효과에 비추어 추후에 법원에 의해 부과된 형벌보다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중략)

범죄보도에 있어서 범인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은 공적인 정보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국한되며, 범인의 인격의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관한 언급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범인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비난을 가져오는 과장이나 왜곡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 방송사는 프로그램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사건 방송 프로그램이 강력반 형사들의 24시간을 밀착 취재함으로써 범죄수사 과정의 극적인 긴박감과 형사들의 애환을 최대한 살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면서 피의자들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숙지하여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가명 등을 통해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가 공익성을 담보로한 것이니 만큼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신분을 노출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기술상의 미숙으로 인해 신청인의 신상을 일부 노출시킨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더불어 신청인이 일하던 옷가게 주변 거리와 옷가게 내부의 판매 브랜드 상표를 노출하여 이를 본 주위 사람이라면 보통의 주의만으로도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공익성에 대해 판단컨대 이 사건 방송은 형사들의 애환을 그린다는 방송취지와 달리 주로 일반인의 범죄혐의자 내지 범인들이 주된 방송

대상이 되어 그들의 검거, 현장조사, 대신질문 등으로 주된 방송 내용을 구성한 바, 신청인이 조사를 받는 중에 남편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과 남편으로부터 약을 받는 장면 등에서 피의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공개하였고, 피의자들이 서로 진술이 다른 부분을 성우가 자막으로 설명하는 과정과 형사가 독백하는 장면 등에서는 신청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부각하여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 신청인이 촬영 당시 범법했다고 여겨지는 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수준에 비해 필요이상으로 방송에서 신청인의 인격상을 저하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정도 또는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책 등에 대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다뤄졌다고 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내부 치정관계를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방송에 상당한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 내용 중에 신청인의 신원이 노출되었고 신청인이 방송촬영을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신청인이 이미 법정된 처벌을 받아서 가정에 복귀하여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방송으로 인해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신청인이 침해받은 인격권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을 전국에 방송한 행위는 신

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및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방송사의 성격, 방송 시간대 및 재방송 횟수, 시청률, 방송 촬영 및 방송 경위, 신청인의 연령 및 직업, 신청인에 대한 모자이크처리 및 음성변조 등 전반적인 신원 비공개 처리 정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의 인터넷 다시보기를 중단한 점과 인터넷상의 해당 동영상 모두 삭제하기로 약속한 점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1.



절도 및 절도교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1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t v N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9.

처리결과 : 중재결정

23:10)

내 용 : <2007서울조정3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1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홍 ○ ○

보도내용

t v N : 「나는 형사다」 프로그램 (2007년 10월 11일

피신청인 : 씨제이티브이엔주식회사(tvN)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C-3지역
DMS 6~9층

대표이사 송 창 의, 윤 석 압

주 문 : 1. 피신청인 씨제이티브이엔주식회사(tvN)는 신청인 홍○○에게 2007년 11월 21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인 씨제이티브이엔주식회사(tvN)는 2007. 10. 11. 23:0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케이블TV tvN의 <100% 리얼리티 - 나는 형사다>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신청인이 경찰에 의해 조사받고 있는 내용을 5분여 정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촬영거부에도 불구하고 조사장면 등을 촬영하였으며, 초상이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상태로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7. 10. 19.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7서울조정395)을 하였고, 조정 서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

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인간의 존엄권은 부인되지 않으며, 그 유죄 판결로 선언된 자유박탈 이외의 법정되지 않은 처벌을 가할 수 없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언론보도는 억제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범죄보도에 있어서 객관적 사안의 보도와 그에 관계된 인물의 제시를 엄밀히 구분하여 그 관계 인물의 신원은 밝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계한 인물의 신원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어 그 범죄와 그 수사에 관하여 알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범죄보도에 관한 언론의 과업은 객관적인 범죄의 현상과 그에 대한 처벌 및 범죄에 대한 대책의 보도에 국한될 뿐이지 범죄를 탄핵하고 관계인에게 응징을 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에 범죄혐의자를 명시하는 것은 그의 효과에 비추어 추후에 법원에 의해 부과된 형벌보다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중략)

범죄보도에 있어서 범인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은 공적인 정보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국한되며, 범인의 인격의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관한 언급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범인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비난을 가져오는 과장이나 왜곡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 방송사는 프로그램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사건 방송 프로그램이 강력반 형사들의 24시간을 밀착 취재함으로써 범죄수사 과정의 극적인 긴박감과 형사들의 애환을 최대한 살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면서 피의자들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숙지하여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가명 등을 통해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가 공익성을 담보로 한 것이니 만큼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신분을 노출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기술상의 미숙으로 인해 신청인의 신상을 일부 노출시킨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모니터 뒤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등을 10여 초 가량 모자이크처리 없이 노출하여 이를 본 주위 사람이라면 보통의 주의만으로도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공익성에 대해 판단컨대 이 사건 방송은 형사들의 애환을 그린다는 방송취지와 달리 주로 일반인의 범죄혐의자 내지 범인들이 주된 방송대상이 되어 그들의 검거, 현장조사, 대신질문 등으로 주된 방송 내용을 구성한 바, 주된 혐의자인 이모 씨와 함께 신청인이 조사를 받는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고민하는 장면, 상대방과 서로 진술이 다는 부분을 성우가 자막으로 설명하는 장면, 형사가 신청인에게 진술이 맞지 않음을 들어 나무라는 장면 등을 보면 신청인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 신청인이 촬영 당시했다고 여겨지는 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수준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방송에서 신청인의 인격상을 저하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정도 또는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책 등에 대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다뤄졌다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내부 치정관계를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방송에 상당한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 내용 중에 신청인의 신원이 노출되었고 신청인이 방송촬영을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

정되는 데다 신청인이 이미 법정된 처벌을 받아서 가정에 복귀하여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방송으로 인해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신청인이 침해 받은 인격권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을 전국에 방송한 행위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및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방송사의 성격, 방송 시간대 및 재방송 횟수, 시청률, 방송 촬영 및 방송 경위, 신청인의 연령 및 직업, 신청인에 대한 모자이크처리 및 음성 변조 등 전반적인 신원 비공개 처리 정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의 인터넷 다시보기를 중단한 점과 인터넷상의 해당 동영상상을 모두 삭제하기로 약속한 점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1.

□

샐러드드레싱이 칼로리가 높다고 보도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1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31.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SBS-TV :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 (2007년 10월 8일 10:40)
내 용 : <2007서울조정4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7서울중재1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중재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1동 920

대표이사 김 수 웅

중재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2007년 11월 23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

는다.

중재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영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7.

〈별 지〉

- 제 목 : “뉴스와 생활경제” 보도의 초상권 침해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8일자 「뉴스와 생활경제」에 “샐러드드레싱 자장면 한 그릇 맛먹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도중 방영된 자료화면에 초상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어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

시 정 권 고 사 례

시정권고사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언론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아울러 제3자에 의한 신청도 심의하여 그 시정을 해당 언론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결된 사례를 자체심의 및 신청심의로 구분하고,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의 보도내용만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특정되는 주문 부분은 생략하고, 실명 및 주소 등이 보도되어 문제가 된 부분은 당사자의 명예를 위하여 ○○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편집자주

자체심의 시정권고

〈안전번호 2007자심1~2007자심4〉

보도내용

「KT&G의 담배 판촉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판촉비 등 명목으로 16억 원 가량을 유홍업소들에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회사 ○○○장 강모(52) 씨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중략 ...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강남 일대 술집과 음식점 등 20여 곳에 40만 원에서 6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판촉비로 건네며 담배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등은 또 2004년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D나이트클럽에서 이 업소 대표이사 김모(47) 씨에게 담배 판매와 홍보 시설 설치를 대가로 5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중략... 경찰은 이 돈을 KT&G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장 강모(40) 씨가 영수증을 위조해 600만 원을 따로 챙긴 혐의는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

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 15.

〈안전번호 2007자심5〉

보도내용

「평택경찰서는 7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민주노총 소속 덤프런대 ○○지회 ○장 배모 씨(33)와 회원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전 7시 50분께 평택시 포승면 소재 평택항 동부두 6·7·8번 선석 공사현장에 들어가 이곳에서 일하던 15t 덤프트럭의 유리창과 후사경 등을 부순 뒤 운전자 박모 씨(50) 등 2명을 흉기로 폭행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노동조합의 명칭과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 15.

〈안전번호 2007자심6〉

보도내용

「같은 학교에 재직중인 현직 동갑내기 여교사와 남교사의 사소한 시비가 맞고소 사태로 확대되면서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있다. 강화군 OO면 O중학교에 재직중인 조모(47·여) 씨는 지난 5일 16시 30분경 교내에서 ‘자신을 이 혼녀라고 소문을 내며 다닌다’는 이유로 교내 복도에서 동료교사 구모(47·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는 것.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이없는 폭행을 당한 구 씨는 심한 모욕감으로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오히려 조씨가 자신을 사법기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최근, 조 씨를 진단서를 첨부해 폭행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재직중인 학교의 영문이니셜과 함께 소재지를 면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 15.

〈안전번호 2007자심7~2007자심9〉

보도내용

「현직 경찰관이 호프집에 불을 질러 업주 등 4

명이 화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 중략 ... 21일 오후 10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S호프집에서 전주 OO경찰서 수사와 강력2팀 소속 유모(43) 경사가 페트병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1.8 l를 가스난로 주변에 뿌려 불이 났다. ... 중략 ... 유 경사는 화재 직후 현장에서 도망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동료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유 경사가 내연의 관계인 업주 김 씨가 남자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 15.

〈안전번호 2007자심10〉

보도내용

「...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상철·주임검사 이창온)는 26일 가짜 연구용 시약 생산업체를 설립한 뒤 OO전자 부설연구소인 O기술원에 가짜 시약을 납품해 수십억 원의 시약대금을 챙긴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O전자 부설 O기술원 전 개발팀장 이모(42) 씨와 전직 기술원 직원 신모(4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01년 8월 9일쯤 강모 씨 명의로 'E테크'라는 연구용 시약 생산업체를 설립한 뒤 O기술원 구매대행업체인 I사를 통해 자신들이 생산한 가짜 연구용 시약을 2001년 8

월 20일쯤부터 지난 9월 22일까지 5년여 동안 1천 500여 차례에 걸쳐 ○기술원에 납품해 28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 근무처의 영문이니셜·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 15.

〈안전번호 2007자심11〉

보도내용

「… 이 밖에도 금년 10월 10일 오후 7시 40분경 천안시 광덕면 ○○리 소재 ○○모텔 203호 내에서 모텔 업주 이모 씨(여·53)로부터 손님을 가장, 통장 2개와 휴대전화 1개, 현금 23만 원을 강취한 사건 …」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영중인 모텔의 소재지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 15.

〈안전번호 2007자심12~2007자심13〉

보도내용

「인천연수경찰서는 불상의자로부터 매입한 히로뽕 ○○미리그램을 ○○에 희석해 ○○○를 이용 투약한 피의자 이모 씨(39세·남·인천 부평구 십정동)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무직이며, 마약류등 동종전과 3범인자로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 씨의 주거지 내에서 그전 불상의자로부터 일금 ○원을 주고 매입한 히로뽕을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왼쪽 팔뚝에 찔러 넣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 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 15.

〈안전번호 2007자심14〉

보도내용

「3일 오후 4시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모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구청 공무원 정모(47)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처남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 씨가 유서를 남긴데다 말기 직장암을 앓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에 따라 신병을 비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숨진 정 씨는 건축과 7급 공무원으로 직장암 투병을 위한 1년간의 휴직을 마치고 오는 14일 복직할 예정이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

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 15.

〈안전번호 2007자심15〉

보도내용

「... 또 경찰은 이날 대기업으로 납품됐던 회사 제품이 불량관정을 받고 반포되자 양심을 품고 납품 운전기사를 흥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선반가공업체 대표 김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0시께 경북 경주시 ○○리에 소재한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납품기사 김모(33) 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방용 식기로 김 씨를 한차례 찌르고, 흥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영중인 업체의 소재지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16~2007자심17〉

보도내용

「농장을 운영하는 40대 여인이 흥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오후 4시께 마산시 진북면 ○○리 한 농장에서 주인 오모(여·48) 씨가 집 거실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조카 정모(33)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중략 ... 경찰은 이날 갑자기 사라진 농장 일꾼 박모(30)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평소 오씨와 인건비를 두고 감정 대립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하던 농장의 소재지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18〉

보도내용

「... Around noon on Oct. 19, two plain-clothes police officers walked into Boston College English-language kindergarten near Unpyong Station in Seoul. One of the teachers, ○○○, was pulled out of class in the middle of a lesson. He was accused of molesting a 7-year-old girl. Choi is now on trial.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성명 및 근무처의 명칭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19~2007자심25〉

보도내용

「... 또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영암군 신북면 ○○리 박모(71) 씨의 집에서 박 씨의 처남 조모(69)씨가 매형 박 씨의 얼굴에 구경 4.5mm 공기총(M46)을 발사하고, 누나(72)의 머리를 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조 씨는 총을 쏜 뒤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매형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26~2007자심28〉

보도내용

「... 지난 7일 밤 11시 40분께 신안군 비금면 ○○리 김모(여·55) 씨의 집에서 김 씨가 흥기에 젖어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이모(여·51)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김 씨가 ‘강도야’라고 소리친 뒤, 전화로 도와 달라고 해 가보니 방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시신 옆에는 피 묻은 흥기가 놓여 있었고, 이불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화순군 능주면 ○○리 벽돌공장 내 방에 사는 김모(83)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6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양손과 발이 나일론 끈으로 묶여 있었으며 누군가 목을 조를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복 상의가 목에 감겨 있었다. 경찰은 김 씨의 방 안을 뒤진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금품을 훔치러 온 강도가 저항하는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29〉

보도내용

「평택에서 공기총을 든 강도가 편의점에 침입해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3시 45분께 평택시 신장2동 ○○○에 공기총을 든 30~40대 남자가 침입해 주인 엄모(52) 씨를 위협한 뒤 50만 원을 털어 달아났다. 주인 엄 씨는 “30~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뛰어들어와 공기총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아라’고 위협, 50만 원을 빼앗은 뒤 손님(30·일본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머리와 목 부위를 공기총으로 가격한 뒤 급히 밖으로 나가 대기하고 있던 검정색 승용차량을 타고 송신초교 방면으로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영중인 점포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

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30~2007자심31〉

보도내용

「... 17일 새벽 1시 40분경 충남 부여군 장안면 ○○리 김모(59) 씨 집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이들을 권총으로 위협, 폭행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32~2007자심33〉

보도내용

「... 4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중구 부평동 모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박모(36·여·회사원) 씨를 홍기로 위협,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손모(46) 씨가 근처를 지나던 배○○(17·부산○○고 3년) 군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강도미수사건 검거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

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34〉

보도내용

「○○군청 5급 사무관이 바람을 피우고 부부싸움 끝에 홍기를 휘두른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청주지검 조재빈 검사는 22일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군청 공무원 이모 씨(53)를 홍기휴대 존속협박 및 간통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내연녀 김모 씨(40)를 간통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의 혐의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7시께 부부싸움 도중 부인 오모 씨(46)를 홍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또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5분께는 허락없이 청원군 남이면 자신의 논에서 벼를 베고 있는 부인 오 씨와 가족들에게 홍기를 휘두르며 멈출 것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내연녀 김 씨와 사귀며 원룸과 음성 만남의 광장, 라마다호텔,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직급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과 내연 관계에 있음을 밝혀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35〉

보도내용

「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사회친구에게 구한 히로뽕을 투약한 임모(35세)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경 부평구 십정동 모 여관방에서 마약법 위반으로 구속중인 김모(35세) 씨에게 현금 ○원을 주고 히로뽕 ○○mg을 구입해 ○○에 희석 후 ○○○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임 씨의 소변검사와 음모채취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해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36〉

보도내용

「○○군청 공무원 이모 씨(여·38·7급)가 6일 오후 2시 35분께 전주시 인후동 아중리 A아파트 13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1층 화단 공터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숨진 이 씨가 7년 전 이혼한 후 우울증을 앓아온 데다 2차례나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점과 현관 출입문이 안에서 잠겨 있던 것으로 미뤄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근무처 및 직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37〉

보도내용

「6일 오후 4시 18분쯤 문경시 산북면 ○○리 모 사찰 주지인 김모 씨(47)가 농약을 마시고 신음 중인 것을 신도 정모 씨(31)가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숨진 김 씨가 출가 전 다친 허리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고, 허리 통증으로 최근 보름간 불면증에 시달리다 우울증세까지 보였다는 유족의 말에 따라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주지로 있던 사찰의 소재지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38〉

보도내용

「15일 오후 7시 15분께 대구 동구 동호동 모 아파트에서 ○○○ 공무원(8급) 김모(35)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내 안모(34) 씨가 발견, 경찰

에 신고했다. 안 씨는 “김 씨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고, 퇴근 후 집에 와보니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〇〇〇병무청으로 옮긴 뒤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는 유족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근무처·직급·인사발령내역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39〉

보도내용

「〇〇시청 환경정비과에 근무하는 정모 씨(50·6급)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려 숨져있는 것을 17일 오후 2시쯤 아파트 주민 김모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 씨가 가족들에게 “내가 없어도 잘 살아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평소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진 정 씨는 15일부터 병가를 낸 상태였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근무처·소속 부서·직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

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40〉

보도내용

「〇〇시청에 근무하던 20대 공무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29일 오전 8시 10분쯤 청주시 용암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〇〇시청 〇〇직 9급 공무원 김모(26) 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14층과 15층 사이 통로에서 김 씨가 뛰어내린 흔적을 확인하고, 2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김 씨가 평소 처지를 비관해 왔다는 유족의 말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근무처·직군·직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41〉

보도내용

「80대 치매 노인이 자식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북내면 〇〇리 양모(여·86세) 씨가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자식들이 집을 비운 사이 자택내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양 노인은 앞서 같은 날 새벽 4시경에도

같은 자리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머느리의 제지로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42〉

보도내용

「신변을 비관해 오던 80대 독거노인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오후 4시께 안동시 풍천면 ○○리 강모(88) 씨의 집 안방에서 강 씨가 농약을 마신 채 숨져 있는 것을 조카(5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 부인과 사별한 강 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왔다는 것. 경찰은 숨진 강 씨가 부인과 사별한 뒤 신변을 비관해 오다가 이날 음독자살한 것으로 보고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43〉

보도내용

「5일 낮 12시 50분께 ○○부 ○○○본부 ○○팀 소속 공무원 김모(29·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씨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안양시 달안동 A건설타워빌딩 7층 사무실에서 투신자살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119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한림대병원으로 김 씨를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투신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하다, 회사에도 미안하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적었을 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근무처 및 소속 부서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44〉

보도내용

「“... 3평 남짓한 밀실에 들어가보니 컴퓨터와 간이침대가 있고, 간이침대 위에는 (삭제). 실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촉감을 주기 위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인형의 길이는 120~130cm 정도, 상체가 꽤 무거운 반면 하체는 보통 남성이라면 충분히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무게였다. ... 중략 ... 조악한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삭제) ... 중략 ... 컴퓨터로는 음란물을 볼 수 있었다. 동영상은 업주가 가입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간이침대와 컴퓨터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자위행위 중에도 손님이 팔을 뻗으면 얼마든지 마우스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 ... 중략 ... 이렇게 인형을 통한 자위행위를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은 2만 5천 원. 업주에 따르면 12월 20일 문을 열어 1월 8일 현재까지 30여 명의 손님이 이곳을

다녀갔다. 이날 압수된 물품으로는 리얼돌 5개, 탈 부착 유사성기 67개, 콘돔·젤 등이었다.”는 기사와 관련 사진」

이 유

위 기사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8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2. 26.

〈안전번호 2007자심45~2007자심54〉

보도내용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미8군 2사단 소속 ○○○ 이병(23)은 16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술이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모두 사과하고 피해도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3. 19.

〈안전번호 2007자심55~2007자심57〉

보도내용

「… 15일 오전 6시 55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폭력조직 역전과 조직원 박모(22) 씨의 반 지하방에 하모(22) 씨 등 남문과 행동대원 10명이 들이닥쳐 박 씨와 함께 있던 정모(22) 씨 등 역전과 4명에게 10여 분간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습격을 받은 역전과 박 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정 씨 등 3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 중략 … 경찰은 ○○이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 집단 유혈극을 확인했다. … 중략 … 경찰은 도주한 남문과 행동대원들의 신원을 파악, 검거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휴대전화를 끊은 채 잠적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폭력단체 범죄와 관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신고자가 특정인과 주택임대차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3. 19.

〈안전번호 2007자심58~2007자심60〉

보도내용

「… 11일 새벽 6시 5분께 임실군 임실읍 박모 경장(36)의 집 앞 차량에서 박 씨가 농약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어머니 정모 씨(70)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간 여만에 숨졌다. … 중략 …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박 씨는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간병을 이유로 전주지역으로 근무지 변경을 희망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경찰서 교통 사고조사계로 전보돼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인사이동 내역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3. 19.

〈안전번호 2007자심61〉

보도내용

「... 지난 18일 오후 5시 38분께 고성군 고성읍 ○○리 ○○마을 주택에서 이곳에 사는 제모(여·94)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제모 씨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밝히면서 거주하던 마을의 명칭을 함께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3. 19.

〈안전번호 2007자심62〉

보도내용

「... 25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 ○○경찰서 ○○대 소속 이모(22) 이경이 4층 대강당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유서 등을 근거로 이 이경이 군 생활에 적응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및 고참의 가

혹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중략 ... 이 이경은 지난해 11월 27일에 입대, 지난달 19일 ○○경찰서에 전입했다. ... 중략 ... 또 지난해 4월에는 전입 열흘도 안 된 대구경찰청 ○○대 소속 박모(21) 이경이 외출중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인권위의 감찰 조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소속 부대·계급·입대 및 전입 일자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3. 19.

〈안전번호 2007자심63〉

보도내용

「지난 20일 오후 부안읍 동중리 S아파트 7층에서 ○○리 ○○마을에 사는 김모(25·남) 씨가 추락, 성모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했으나 숨졌다. ... 중략 ... 한편 경찰은 김 군이 A 양의 변심에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고 A 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밝히면서 거주하던 마을의 명칭을 함께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3. 19.

〈안전번호 2007자심64~2007자심65〉

보도내용

「2일 오후 9시 10분께 충남 당진군 고대면 ○○리 이모 씨(34)의 집에서 자살을 기도하던 이 씨가 담뱃불을 붙이려다 LP 가스통이 폭발, 중상을 입었다. 소방 관계자는 “이 씨가 가스통으로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출동했으며, 이 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ライター로 불을 붙이려는 순간 LP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중략 … 경찰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살 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4. 17.

〈안전번호 2007자심66〉

보도내용

「16일 오전 3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 경비실에서 이 회사 직원 조모(64) 씨와 한 모(50)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 씨가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질타하는 한 모씨를 흥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한 씨를 죽였다고 말을 한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이자 자살자인 특정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근무처를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4. 17.

〈안전번호 2007자심67〉

보도내용

「… 화성경찰서는 ○○○ 소속 양모(19·여) 선수가 지난 25일 화성시 반월동 숙소 자신의 방에서 창문 밖으로 목을 매 숨진 것을 이날 오후 4시께 동료선수가 발견, 경찰에 신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 중략 … 경찰은 몸에서 타살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과 “최근 남자문제로 고민이 많아 운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로 미뤄 양 선수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오는 4월에 치러질 전주 마라톤대회 등이 끝나는 대로 동료선수들을 소환해 정확한 자살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 중략 … 한편 양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이던 지난 2005년 전국 체육대회 5천m에서 1위, 이듬해인 2006년 전국종목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5천m에서 1위를 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보여 올해 실업팀 ○○○에 입단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소속팀 및 수상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4. 17.

〈안전번호 2007자심68〉

보도내용

「... 29일 오전 11시쯤 경북 성주군 벽진면 ○○리 석모(54) 씨가 농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가족들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석 씨는 이번 강풍으로 가옥 일부가 부서지고 참외 비닐하우스 5동이 피해를 입자 이날 오전 참외 논에 갔다 온 뒤 농약을 마셨다는 것。」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4. 17.

〈안전번호 2007자심69~2007자심70〉

보도내용

「...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15분께 충주시 ○○○에 근무하던 공무원 김모 씨(38, 토목 7급)가 동량면 화암리 꽃바위 낚시터 부근 충주호에서 수색중이던 민간 구조대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충주호 인근에서 김 씨의 승용차와 슬리퍼, 안경 등이 발견됐고,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김 씨가 충주호로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근무처 및 직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4. 17.

〈안전번호 2007자심71〉

보도내용

「15일 밤 11시 44분께 제주도청 로비에 떨어져 숨진 제주도 ○○과 ○○○ 사무관(51)의 책상에서 유서같은 메모장이 발견돼 경찰이 이를 단서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 메모장에 쓰인 글 내용으로 볼 때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의 시군에서 관리하던 재산관리업무가 자치도로 통합돼 업무량이 늘어난 데다 3, 4월중에 있는 정기 사무감사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중략 ... 한편 김 계장은 지난 85년 6월 지방 고용직으로 임용된 뒤 지난해 7월 지방별정 5급으로 승진임용 됐으며, 올해 1월 8일부터 ○○○으로 근무해왔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4. 17.

〈안전번호 2007자심72~2007자심76, 2007자심99〉

보도내용

『“망국협상 취소” 시민 분신자살 시도』 제하의 기사 사진

이 유

위 보도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참혹한 모습은 비록 그 대상이 공적 관심사와 관계된 분신자(焚身者)라 할지라도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유사 보도 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4. 17.

〈안전번호 2007자심77〉

보도내용

「... 김○○(55세, ○○○ 대표, 성남시 수진동 거주) 씨는 2004년 6월 18일 새벽 12시 30분경 직장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외딴 고갯길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채 폭행을 당하는 한 여성(김○○, 26세)을 목격했다. 김○○ 씨는 자영업을 마치고 수진동 고개 위 골목길을 접어들어 집에 다다르자 갑자기 나타난 치한(박○훈, 43세)이 김 씨의 입을 막고 가로등이 없는 어둡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쓰러뜨린 후 성폭행을 시도하자, 김 씨는 이를 뿌리치고 고개 위 골목길 입구로 도망쳐와 쓰러지면서 112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치한이 오히려 큰 소리로 내 여자니깐 간섭하지 말라 함에 따라 지나가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성명과 나이를 밝히면서 일반인이 쉽게 추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5. 21.

〈안전번호 2007자심78~2007자심81〉

보도내용

「25일 오후 7시 20분께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마을 김모 씨(51)의 집에서 만취한 김 씨가 쓴 공기총에 후배 안모 씨(36)가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중략 ... 총을 맞은 안 씨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으며 경찰은 달아난 김 씨를 수배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거주하는 마을의 명칭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5. 21.

〈안전번호 2007자심82~2007자심83〉

보도내용

「... 지난 27일 오전 10시 20분께 아산시 음봉면 음봉삼거리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 내에서 업주 이모(66) 씨가 쓴 업총에 모래채취회사 업주 임모(41) 씨와 직원 김모(37) 씨 등 2명이 복부와 목 등을 맞아 이 중 김씨는 숨졌으며 임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업총을 쓴 업주 이씨도 자신의 심장 부위에 업총을 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중략 ... 한편,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씨가 모래회사에서 날리는 비산먼지로 회사 관계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운영하던 업체의 소재지 및 영문 이니셜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5. 21.

〈안전번호 2007자심84~2007자심87〉

보도내용

「해남 경찰은 25일 해남 모 고교 1학년 이모(16)군 등 고교생 3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군 등은 지난 24일 새벽 3시 35분께 해남군 송지면 ○○ 앞 도로에서 카센터 주인 박모(63)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출 후 용돈이 떨어지자 박 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완강히 저항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살인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운영하던 업체의 영문 이니셜 및 소재지를 면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5. 21.

〈안전번호 2007자심88~2007자심89〉

보도내용

「… 몰카에는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이 흰색 통

에 든 백색가루를 스푼으로 떠서 양쪽 콧구멍에 대고 힘껏 들이마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 중략 …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이 흡입한 백색가루는 신종 마약인 ○○○으로 밝혀졌다. 동물마취제인 ○○○은 엑스터시보다도 강한 환각제로 지난해 2월부터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류의 명칭·사용방법·환각적 효능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5. 21.

〈안전번호 2007자심90~2007자심91〉

보도내용

「충남 홍성경찰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히로뽕을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혈관에 투약한 김모 씨(35세·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노동 일에 종사하면서 지난 1월 중순경 안산시에서 4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g을 ○원에 구입, 다음날 오전 9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의 오락실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왼쪽팔에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5. 21.

〈안전번호 2007자심92〉

보도내용

「“4일 오후 6시경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수협 활어위판장 앞 해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호(장어통발어선) 선주 부인과 말싸움 끝에 신병을 비판하여 바다에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선원 김모 씨가 해경에 구조됐다. 장어통발어선 선원인 김씨는 이날 미조항에 입항하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선주 부인과 인건비 관계로 말다툼 끝에 신병을 비판하여 바다에 뛰어내려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다행히 인근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주민이 목격하고 통영해경 남해파출소에 신고했다. ….”는 기사와 관련 사진」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인 선원의 성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선박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구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5. 21.

〈안전번호 2007자심93〉

보도내용

「... 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68.5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태안선적 ○○호(20톤·승선원 5명) 선원 김모(45·인천 서구 석남동) 씨가 선실에서 목을 매고 자살을 기도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선장 홍모(60) 씨의 신고를 받고 헬기를 현장에 출동시켜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인천 인하대 병원 전용헬기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인 선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선박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5. 21.

〈안전번호 2007자심94~2007자심97〉

보도내용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송천동 35사단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 중대장 최모 대위(27)가 목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김모 대위가 발견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군부대·보직·계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5. 21.

〈안전번호 2007자심98〉

보도내용

「대만 동물원, 악어가 사람 팔 물어뜯는 사고」 제하의 보도 사진

이 유

위 기사는 지나치게 충격적인 내용의 보도 사진

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독자로 하여금 심각한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5. 21.

〈안전번호 2007자심100〉

보도내용

「...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달서구청 ○○과 정모 씨(55·기능 7급)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 정 씨는 지난해 9월 ○○ 공익근무요원인 이모 씨(26)등 3명으로부터 ○○ 근무를 빼준 뒤 한 달간 휴가를 보내주는 대가로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중략 ... 정 씨는 경찰에서 “공익요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네줘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소속 부서·직종·직급·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6. 18.

〈안전번호 2007자심101〉

보도내용

「... 서울 용산경찰서는 압수된 성인오락기에서 빼낸 컴퓨터용 램 24개 42만 원어치를 컴퓨터 상가에 팔아넘긴 혐의로 서울 ○○경찰서 소속 최모 상경(21) 등 2명을 절도 및 절도방조혐의로 불구

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부대 및 계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6. 18.

〈안전번호 2007자심102〉

보도내용

「대구 달서경찰서는 29일 직장 내에 있던 방송용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로 J 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동 ○○ 방송팀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6mm카메라 2대를 훔쳐 전당포에 맡긴 뒤 돈을 빌리고, 함께 일하던 직원 5명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성의 영문 이니셜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소속 부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6. 18.

〈안전번호 2007자심103〉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아무개 씨(33·부산시 수영구 망미동)는 부산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으로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약 한 달 전에 출소한 자로 지난 해 5월 초순 오후 7시경 부산시 연제구 소재 ○○오락실 앞에서 신원미 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회 투약분인 ○○그램을 건네받아 이미 구속된 이아무개(48) 씨에게 ○원에 매매하고, 2007년 5월 1일 오후 7시경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필로폰 ○○그램을 ○○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다. ...」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6. 18.

〈안전번호 2007자심104〉

보도내용

「공주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각각 투약한 이모(51) 씨와 김모(45·여)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피의자들은 지난 11일쯤 공주시 모처에서 필로폰 ○○그램을 ○원에 구입, 지난 13일 오후 4시쯤 공주시의 한 모텔에서 각각 필로폰 ○○그램을 이 씨는 ○○에 넣어 팔에 주입하고 김 씨는 ○○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로 하

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6. 18.

〈안전번호 2007자심105~2007자심106〉

보도내용

「... 지난 17일 밤 10시 17분께 광주시 광산구 A아파트에 사는 ○○○ 9급 공무원 김모(여·27·임업직) 씨가 15층에서 투신 자살했다. ... 중략 ... 가족들은 “지난해 8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두 달 전에도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직급·직종·임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6. 18.

〈안전번호 2007자심107〉

보도내용

「○○시청 세정과 직원 류모(39·7급) 씨가 23일 오전 8시 50분 ○○시청 내 주택가격 전산실에서 숨겨 있는 것을 동료직원 강모(36)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중략 ... ○○에서 태어나 1990년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류 씨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경북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 작업을 위해 1주일 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류 씨의 부인 권모(40) 씨가 “최근 들어 남편이 업무가 너무 많아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해 왔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숨진 류 씨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소속 부서·직급·출생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6. 18.

〈안전번호 2007자심108~2007자심109〉

보도내용

「5일 오전 5시께 김포소방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소방관 한모 씨(31·인천시 서구)가 소방파출소 옥상에서 소방용 밧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소방관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한 씨가 새 소방법 적용을 앞두고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다는 동료들의 말에 따라 신병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동료와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6. 18.

〈안전번호 2007자심110〉

보도내용

「6일 오전 9시 47분쯤 단양군 매포읍 도담삼봉 음악분수대 앞 남한강변에서 단양군 ○○사무소 공무원 우모 씨(34·행정 7급)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도담삼봉 상가 상인 이모 씨(47)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중략 ... 경찰은 신체장애가 있는 우 씨가 최근 처지를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친구 등에게 보냈고, 지난 4일 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직종·직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6. 18.

〈안전번호 2007자심111〉

보도내용

「...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새벽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종업원 등에게 심하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경기도청 ○○○ 직원 P(31)·S 씨(3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영문 이니셜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소속 부서·직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

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7. 16.

〈안전번호 2007자심112〉

보도내용

「4일 오전 10시경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 씨(46세)는 피해자 김모 씨(83세)의 둘째 며느리로 4일 오전 10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마당에서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와 할 말이 있다며 방에 들어간 후 시어머니와 대화 도중 미리 준비해둔 식칼 2자루 중 하나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내리쳐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의 아들이 119구조대에 신고, 출동한 구조대가 와룡지구대에 사건을 신고했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 조래성, 경사 최재진)이 현장에 출동해 인근 주민을 상대로 탐문한 바 며느리를 용의자로 지목, 약 3킬로미터 떨어진 ○○에 거주중임을 확인한 후 주거지 안방에 숨어 있는 것을 검거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7. 16.

〈안전번호 2007자심113~2007자심123〉

보도내용

「지난 20일 밤 8시쯤 보령시 남포면 ○○리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같은 마을에 사는 32살 이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격에 나서 21일 오후 2시 50분쯤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친척집에 숨어 있는 용의자를 검거하고 범행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7. 16.

〈안전번호 2007자심124~2007자심130〉

보도내용

「‘미녀들의 수다(미수다)’에 출연 중인 일본 여성 사가와 준코(23)가 “교수에게 성상납을 요구받았다”고 방송에서 밝힌 것과 관련, 해당 학교인 한국외국어대 측의 대응은 신속했다. 하루 만에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곧바로 위원회가 열렸고 당사자인 사가와와 한국외대 부설 ○○○ 강사 진모 씨(48)를 불러 진상조사를 했다. 진 씨는 사표를 냈지만 한국외대는 사표와 관계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진 씨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여성 외국인의 ‘성추행 공개 발언’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녀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특정인의 성과 나이, 근무했던 직장 및 직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7. 16.

〈안전번호 2007자심131~2007자심138〉

보도내용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31일 체육특기자로 편·입학 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 ○○교사이자 ○○인 조모 씨(4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고교생 4명의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를 체고 사격부에 입학 내지 편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6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재직중인 학교의 명칭과 직무를 함께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8. 20.

〈안전번호 2007자심139〉

보도내용

「… 전남 목포경찰서는 18일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해 지갑을 빼앗은 서해지방경찰청 ○○ 소속 송모 순경(26)을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계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8. 20.

〈안전번호 2007자심140〉

보도내용

「… 부유층 대학생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종마약 '○○○(일명 ○○)'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무색·무취의 ○○○는 음료에 타서 복용하기 때문에 '물 같은 필로폰'이라는 뜻에서 '○○'이라고도 불린다. ○○의 약물효과는 소다수 등에 탈 경우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 나른한 느낌이 드는 정도다. 그러나 단순 음료가 아닌 알코올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급속히 배가돼 성적 흥분상태에 도달하거나 의식불명까지 이르러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

이 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의 명칭 및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8. 20.

〈안전번호 2007자심141〉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지난 23일 중국 심양에서 구입한 히로뽕 〇〇g(시가 〇〇원 상당 약 1200명 투약분)을 〇〇〇 내부에 숨긴 뒤 국제항공 〇〇〇 통해 한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또 이들은 서울 및 부산에서 유흥가 술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과 〇〇〇를 희석해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구입가격·용량·용법과 함께 해외로부터 밀반입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8. 20.

〈안전번호 2007자심142〉

보도내용

「〇〇군청에서 근무하는 강모(34·전산 7급) 씨가 지난 13일 오전 4시 50분 경에 마산시 내서읍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2층에서 투신자살했다. 강씨는 지난 7월 1일 〇〇군 정기인사 때 기획감사실(예산업무)에서 재무과(세무조사)로 전보 발령됐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직급·인사 발령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8. 20.

〈안전번호 2007자심143〉

보도내용

「... 23일 오전 7시 35분쯤 제주시 이도동 소재 제주경찰 〇〇〇인 강모 경사(41)의 자택에서 강 경사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 중략 ... 경찰은 강 경사가 지난 2005년 10월 훈련 중 무릎을 다쳐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6월에도 팔 골절상을 입으면서 동료들과 훈련을 같이 못해 괴로워했다는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진술로 미뤄 처지를 비관한 강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계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8. 20.

〈안전번호 2007자심144〉

보도내용

「“... 29일 경찰과 불륜을 저지른 부인의 남편 B모(동두천·44) 씨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 〇〇에 근무하는 A(36) 씨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는 내용의 기사와 A 씨의 신원이 적시된 각서의 사본」

이 유

위 기사는 불륜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친필 각서를 공개하면서 그의 성·생년월일·근무처와 함께 주소 및 연락처의 일부를 그대로 밝혀 본인

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8. 20.

〈안전번호 2007자심145~2007자심147〉

보도내용

「충남 서산경찰서는 2일 자신이 근무하던 ○○○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 씨(22)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 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군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 5월 29일 낮 12시께 자신들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모 씨(39)의 지갑에서 현금 10여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이들의 군 복무처, 복무 개시 연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9. 17.

〈안전번호 2007자심148~2007자심149〉

보도내용

「... 광주경찰서는 7일 안○○(29세 · 몽골인 · 광주시 ○○읍 ○○기숙사) 등 3명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는 산업 연수생

으로 지난 2005년 11월 입국했으며 나○○○(40세)는 관광비자로 올 1월 20일 입국. 강○○(47세)는 2000년 관광비자로 입국 지난해 6월경부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소재 산업에서 공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들로 사망한 바둑푹(44세) 씨 등 4명이 함께 기숙사 식당 내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바둑푹씨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식당 문을 닫지 않고 들어오자 안○○가 문을 닫고 들어오라고 했으나 문을 닫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돼 폭행, 넘어지면서 의자에 뒷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국적 · 성 · 나이와 함께 입국일자 · 근무처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9. 17.

〈안전번호 2007자심150〉

보도내용

「영덕경찰서는 14일 쓰레기통을 훔친 후 이를 되팔 이모 씨(54 · 영덕군 지품면 ○○리)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9. 17.

〈안전번호 2007자심151〉

보도내용

「... 광명경찰서는 5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흥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임모(6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중략 ... 임씨는 지난 2001년 서울 ○○경찰서에서 경사로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 직장·퇴직년도·퇴직 시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9. 17.

〈안전번호 2007자심152〉

보도내용

「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성폭행 피의자를 붙잡은 고교생 이○○(18·○○고등학교) 군과 임○○(17·대구○○고등학교) 군에 대해 각각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 중략 ... 이 군과 임 군은 처음에는 이들이 연인끼리 다툼으로 알았으나, 잠시 후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도망치려는 피의자를 붙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한 고교생들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

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9. 17.

〈안전번호 2007자심153〉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마산시 합성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지인을 만나 항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g을 ○○원에 구입한 뒤 지난 4일 오전 3시께 창원시 명서동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한 뒤 양 씨는 ○○로 투약하고 김 씨는 ○○에 타서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구입가격 및 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9. 17.

〈안전번호 2007자심154〉

보도내용

「... 30일 오전 4시께 담양군 대덕면 ○○리 마을 자신의 소 축사 앞에서 농부 전모 씨(59·여)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전 씨의 아들(29)이 발견했다. ... 중략 ... 한편 광주북부경찰은 전 씨가 최근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감안, 전 씨가 처지를 비관해 음독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9. 17.

〈안전번호 2007자심155~2007자심158, 2007자심164〉

보도내용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제하의 누드사진 2컷」

이 유

학력위조를 통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특정인의 초상이 담긴 위 누드사진은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재된 것으로써 공적 관심사가 그의 사생활에 우선한다 해도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진을 보도한 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본 독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8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9. 17.

〈안전번호 2007자심159~2007자심162〉

보도내용

「... 서울 ○○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이 경찰서 ○○지구대 소속 장모(37)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0. 29.

〈안전번호 2007자심163〉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30분께 미20지원단 소속 ○○○(23) 병사가 술에 취해 주차돼 있던 오모(60) 씨의 오토바이를 만지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오 씨를 주먹과 발로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나이와 함께 소속 군부대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0. 29.

〈안전번호 2007자심165~2007자심176〉

보도내용

「신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OO(GHB = gamma-hydroxybutyrate · 물 같은 히로뽕)'을 제조, 국내에 유통시킨 제조책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 중략 ... 또 이들이 보관중이던 OO O O I (1633명 투약분 · 시가 OO원)를 범죄증거물로 압수했다. ... 중략 ... 판매 단가는 1회 투약량인 OO당 O원 정도. 매수자 석모 씨(37) 등 4명은 ... (삭제) ... , 택배로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중략 ... 한편 OO으로도 불리는 OO은 2001년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한 무색무취의 약물로, ... (삭제) ...

이 유

위 기사는 신중 마약류인 GHB(gamma-hydroxybutyrate)의 용량 · 용법 · 환각적 효능 및 판매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0. 29.

〈안전번호 2007자심177〉

보도내용

「... 진 모(남, 20세) 피의자는 2006. 9. 4.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여 OO과학대학 OO과 2학년에 재학중이며, 구미시 사곡동 소재 OO전자에서 야간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했던 자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쪽에서 왜관 쪽으로 진행다가 도로상에 있던 문 모(남, 23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 후, 피해자를 차량 하부에 깔고 약 1킬로미터 더 진행하여 피해자를 현장 사망케 하고, 하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한 후 떨어진 앞범퍼를 차에 싣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 중략 ... 구미와 칠곡지역 약 1000여 대에 달하는 프린스 승용차 중, 해당 조

건으로 경북 구미시에 등재된 프린스 승용차 171대, 칠곡군에 등재된 32대를 조회, 수사를 진행, 경북41노82XX호 차량을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소유자 진 모가 OO과학대학 OO과에 재학중인 것을 확인, 동대학 금구관 3층에서 피의자를 발견, 임의동행하여 피의자를 추궁하여 피의자가 검거 장소 야산에 번호판 및 앞범퍼(fascia)를 떼어내 불상지에 버리고, 방치 차량을 위장하여 버려 놓은 가해 차량을 발견하였고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재학 중인 대학 및 학과, 학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1. 26.

〈안전번호 2007자심178~2007자심179〉

보도내용

「동료 선원과 다투던 중 동료를 넘어트려 숨지게 한 OO호(9,77t · 임자선적 · 연안자망 · 승선원 5명)의 박모 씨(38 · 목포시 상동)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선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1. 26.

〈안전번호 2007자심180〉

보도내용

「... 김포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쯤 김포시 통진읍 ○○리 피해자 박모 씨(49·여)가 운영하는 ○○에서 지난 2003년 9월부터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해 온, 피의자 홍모 씨(41·남·서울 성북구 돈암동)를 상습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명칭 및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1. 26.

〈안전번호 2007자심181~2007자심182〉

보도내용

「... 대전 ○○대 총학생회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전 동부경찰서는 31일 해외로 유학을 떠났던 이대학 전 총학생회장 유모(27) 씨와 이모(31) 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총학생회 사무국장 박모(23)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중략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눈 피해지역 복구활동 등 5개 행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행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수법으로 학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내 이 중 7000만 원을 유 씨와 박 씨, 이 씨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이들이 특정 대학 총학생회장 및 사무국장이었음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1. 26.

〈안전번호 2007자심183~2007자심188〉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필립 등 8명은 지난 7월 초부터 지난달 중순 사이 2개월 동안 태국에서 제조한 신종 마약 ○○를 여행용 가방과 보따리, 옷 속에 넣어 위장한 뒤 밀반입해 평택·화성 등 태국인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들에게 ○○ 1정당 ○○원씩 받고 100정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쌀라(29)씨 등 34명은 구입한 ○○를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서 ... (삭제) ...혐의다. ... 중략 ... ○○는 동남아시아 최대 마약조직인 쿤사가 개발한 최신 마약으로 헤로인이나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뛰어나고 이를 복용했을 때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환각성과 중독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류인 ○○의 1정 당 구입가격·용법·환각적 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1. 26.

〈안전번호 2007자심189〉

보도내용

「... 6일 오후 1시쯤 ○○경찰서 교통지도계 외근 의경으로 배치 된 호모(19) 이경이 군포시 금정동 모 아파트 15층 옥상서 투신자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부대 및 계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1. 26.

〈안건번호 2007자심190〉

보도내용

「29일 오전 7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리 소재 한 가구공장 자재창고에서 이 공장 대표 홍모(48)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공장 직원 윤모(59)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 시 운영하던 업체의 소재지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1. 26.

〈안건번호 2007자심191〉

보도내용

「...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공해상에 설치해 둔

타인의 어구를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배의 것인 양 위장해 물고기를 잡은 혐의(절도)로 윤모(50·영덕군 강구면 ○○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게 통발어선 제○○호(통영선적)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지난달 11일 포항 강구항에서 조업차 출항해 포항 동방 약 100마일에 위치한 공해 91-5 해구에서 제2002호(부산선적·고동 통발)가 투망해둔 통발 어구 3천 개를 건져 자신의 것과 연결하는 수법으로 3천 800여만 원의 어구 및 600여만 원의 로프를 훔친 혐의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선장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소지를 리 단위까지 명시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함께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2. 10.

〈안건번호 2007자심192~2007자심193〉

보도내용

「안동경찰서는 14일 직장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직장을 찾아가 흥기를 휘두른 김모(37·강릉시 포남동) 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3일 0시 10분께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이모(47) 씨의 얼굴을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6월 중순께 ○○○ 식당 조리장으로 취업한 뒤 업주로부터 홍보명목으로 400여만 원을 받고도 이를 홍보에 사용치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옛 직장 숙소에 침입, 잠을 자고 있는 이 씨를 업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전 근무처 및 소재지, 직책 등을 함께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2. 10.

〈안전번호 2007자심194〉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서(서장·강평길)는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목포선적 64톤급 근해유자망 어선 ○○호 선장 한모(59세·남) 씨를 해상교통 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입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선장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함께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2. 10.

〈안전번호 2007자심195~2007자심196〉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제주해안경비단 ○○○대 소속

김모 일경(20)은 15일 오전 7시께 제주도 사라봉 인근 초소에서 경계근무 도중 7m 인근 낭떠러지로 투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숨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속 부대 및 계급 등을 함께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2. 10.

〈안전번호 2007자심197~2007자심200〉

보도내용

「지난 18일 오후 3시 35분께 거제시 공무원 정모(28) 씨가 신현읍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정 씨의 아버지(5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2004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된 정 씨는 지난 6월 ○○ 승진과 함께 면에서 ○○관련 부서로 발령났으나 최근 “일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소속 부서와 공무원 임용시기 및 인사 승진 시기 등을 함께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7. 12. 10.



신청심의 시정권고

〈사건번호 2007신심10〉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 2007년 6월 호 『척 보면 모릅니다』 제하의 글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던 독자의 반사회적인 성무용담을 적나라하게 보도한 것에 대한 시정권고를 신청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 2007년 6월 호 『척 보면 모릅니다』 제하의 보도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자와의 잠자리를 가졌던 성적 무용담을 기고한 독자 김○○(26세, 프로그래머)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글은 주인공(김○○)이 여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한 내용으로 주인공의 행위는 엄연히 준강간죄에 해당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재미있는 성무용담으로 선정해 독려까지 해줬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글을 잡지기사 중 베스트로 선정하여 온라인판의 첫 페이지에 신기까지 하는 등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바, 해당 글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32조에 의한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는 성인남성을 주대상으로 하는 월간잡지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Personal best〉의 ‘Sex’ 코너를 통해 성과 관련된 내용을 싣고 있는바, 해당 글은 독자들이 보내온 성경험담 중 재미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피신청인 편집진이 선정하여 게재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해당 글의 내용 중 의식불명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반사회적 일탈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글을 베스트 글로 선정하여 버젓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표현 또한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보도는 건전한 사회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07. 6. 18.

〈사건번호 2007신심39〉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 2007년 9월 14일자 제1면 『‘한국게임아트전’ 원화』 및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낙서의 힘”』 제하의 각 기사를 통해 여성의 가슴을 부각한 그림을 게재하고 남성의 성기를 그린 사진을 보도한 것에 대해 그 시정권고를 신청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 2007년 9월 14일자 제1면 『‘한국게임아트전’ 원화』 제하의 기사에서는 “‘CON 2007’에서는 ‘한국게임아트전’을 열어 한국게임 디자이너들의 콘셉트 아트, 캐릭터, 배경 소품 등 4개 분야의 게임 원화를 모집해 전시했다”는 내용과 함께 출품된 게임 원화들을 게재하였고, 같은 면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낙서의 힘”』 제하의 기사에서는 ‘일본의 대표적 캐릭터 디자이너 데라다가쓰라는 낙서를 통해 오늘의 위치에 서게 됐다’

는 기사내용과 함께 데라다 가쓰라가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에 그렸던 낙서를 함께 게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매체는 어린이를 주 독자층으로 삼고 있는 어린이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슴이 두드러지게 그린 그림과 남성의 성기를 그려 넣은 사진 등을 게재하여 해당 그림 등을 접한 이들의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32조에 의한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해당 매체가 어린이를 주 독자층으로 삼고 있는 어린이 신문으로 일반 매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낙서의 힘”』 제하로 캐릭터 디자이너로 유명한 데라다 가쓰라가 어린 시절부터 낙서광이었다는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면서, 남성의 성기 등

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림이 담긴 사진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이를 접한 어린이의 정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게임아트전’ 원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기사는 ‘한국게임아트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게임원화를 관련 자료로 게재한 것에 대해 신청인은 게임원화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들의 가슴이 지나치게 두드러져 이를 본 독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시정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그림이 어느 정도 여성성을 과장하여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게임 캐릭터에서 여성의 성징을 나타내는 일반적 표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 내용 또한 특별히 선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시정권고 신청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보도 중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낙서의 힘”』 제하의 기사와 함께 게재된 데라다 가쓰라의 낙서사진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정권고심의기준 제8조(성관련보도)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07. 10. 29.



2007년도 중재위원 명단/ 색 인

2007년도 중재위원 명단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재임시)	재 임 기 간
위원장	조 준 희	변 호 사	2005. 3. 31. ~
부위원장	노 향 기	전 월간말 발행인	2003. 9. 17. ~
	이 도 영	전 충북YMCA 명예사무총장	2003. 9. 1. ~
서울제1중재부	황 정 규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현)	2006. 9. 1. ~
	안 병 준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2005. 3. 31. ~
	박 영 규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2006. 9. 1. ~
	오 욱 환	변 호 사	2006. 9. 1. ~
서울제2중재부	임 시 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6. 3. 13. ~ 2007. 2. 12.
	최 영 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7. 3. 19. ~
	김 태 진	다섯수레 대표	2005. 11. 25. ~
	변 화 석	변 호 사	2006. 9. 1. ~
	한 국 연	전 기독교방송 상무이사	2006. 9. 1. ~
	김 정 기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6. 10. 30. ~
서울제3중재부	한 범 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6. 9. 1. ~ 2007. 2. 20.
	정 원 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7. 3. 19. ~
	이 수 언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2005. 3. 31. ~
	김 서 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5. 3. 31. ~
	이 백 수	변호사	2006. 9. 1. ~
서울제4중재부	김 동 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2006. 9. 1. ~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재임시)	재 임 기 간
서울제4중재부	전 세 봉	변 호 사	2006. 9. 1. ~
	김 지 영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2006. 12. 22. ~
	김 영 석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6. 3. 2. ~
	제 정 임	세계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07. 9. 18. ~
	권 정 숙	전 한겨레 방송팀장	2006. 9. 1. ~ 2007. 8. 23.
서울제5중재부	조 인 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5. 3. 31. ~ 2007. 2. 12.
	정 대 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7. 3. 19. ~
	장 윤 환	전 한겨레 이사	2006. 9. 1. ~
	유 효 봉	변 호 사	2005. 9. 2. ~
	이 기 중	전 전자신문 상무이사	2005. 9. 2. ~
	방 민 준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2007. 5. 17. ~
	임 연 택	전 KBS 광주방송총국장	2002. 9. 2. ~ 2007. 4. 20.
서울제6중재부	박 정 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5. 9. 2. ~
	최 충 응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5. 9. 2. ~
	김 동 호	전 중앙일보 공익사업이사보	2005. 9. 2. ~
	한 부 환	변 호 사	2005. 9. 2. ~
	조 수 정	변 호 사	2005. 9. 2. ~
부산중재부	홍 광 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 9. 1. ~ 2007. 2. 21.
	고 종 주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3. 19. ~
	정 영 현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2006. 9. 1. ~
	유 숙 명	부산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2006. 9. 1. ~
	김 민 남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2005. 3. 31. ~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재임시)	재 임 기 간
부산중재부	유 상 순	변 호 사	2006. 9. 1. ~
대구중재부	김 세 진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6. 2. 28. ~ 2007. 2. 21.
	김 태 천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7. 3. 19. ~
	여 원 연	전 영남일보 논설위원	2005. 3. 31. ~
	박 정 순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5. 10. 20. ~
	박 충 선	대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6. 9. 1. ~
	김 중 수	변호사	2006. 9. 1. ~
광주중재부	장 병 우	광주지법 부장판사	2005. 8. 31. ~ 2007. 2. 12.
	김 규 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2007. 3. 19. ~
	이 훈	전 무등일보 주필	2006. 9. 1. ~
	이 수 애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5. 3. 31. ~
	김 성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	2005. 3. 31. ~
	안 재 극	변호사	2006. 9. 1. ~
대전중재부	윤 병 구	대전지법 부장판사	2006. 3. 13. ~ 2007. 2. 20.
	손 차 준	대전지법 부장판사	2007. 3. 19. ~
	김 강 덕	전 국도일보 대표이사	2005. 3. 31. ~
	송 인 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2006. 9. 1. ~
	이 용 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5. 3. 31. ~
	이 규 호	변호사	2006. 9. 1. ~
경기중재부	석 회 태	경기대 법학과 교수	2005. 3. 31. ~ 2007. 1. 30.
	윤 우 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6. 9. 1. ~
	박 석 태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2006. 11. 6. ~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재임시)	재 임 기 간
경기중재부	정 홍 화	변호사	2006. 9. 1. ~
	안 중 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2007. 2. 22. ~
	김 정 현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05. 3. 31. ~
강원중재부	이 원 형	춘천지법 부장판사	2006. 3. 13. ~ 2007. 2. 20.
	이 성 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2007. 3. 19. ~
	유 영 식	전 강원일보 편집위원	2006. 9. 1. ~
	한 진 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7. 3. 29. ~
	박 형 일	변호사	2006. 9. 1. ~
	유 현 옥	강원도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2005. 3. 31. ~
	정 연 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3. 9. 1. ~ 2007. 2. 28.
충북중재부	어 수 용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06. 9. 1. ~
	박 종 호	청주대 사회과학대 명예학장	2005. 3. 31. ~
	김 태 영	변호사	2006. 9. 1. ~
	허 석 열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2005. 3. 31. ~
전북중재부	유 길 중	전주지법 부장판사	2006. 3. 13. ~ 2007. 9. 29.
	서 경 환	전주지법 부장판사	2007. 10. 16. ~
	하 명 희	전북언론문화연구원장	2005. 3. 31. ~
	심 병 연	변 호 사	2006. 9. 1. ~
	권 혁 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6. 9. 1. ~
	김 은 미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2006. 9. 1. ~
경남중재부	황 용 경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5. 3. 31. ~ 2007. 2. 20.
	김 종 기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3. 19. ~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재임시)	재 임 기 간
경남중재부	김 창 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2006. 9. 1. ~
	김 남 석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2006. 9. 1. ~
	백 경 석	변 호 사	2006. 12. 27. ~
	김 인 숙	창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06. 9. 1. ~
제주중재부	고 충 정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06. 3. 13. ~ 2007. 2. 21.
	김 상 환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07. 3. 19. ~
	고 창 실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2005. 3. 31. ~
	서 송 목	전 연합뉴스 제주지사장	2006. 9. 1. ~
	허 영 선	전 제민일보 편집부국장	2007. 6. 19. ~
	권 범	변 호 사	2007. 11. 15. ~
	김 종 배	전 CBS 제주방송 보도제작국장	2005. 3. 31. ~ 2007. 5. 20.
	이 연 봉	변 호 사	2006. 9. 1. ~ 2007. 10. 23.

언론조정신청사례 색인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ㄱ)						
(주) 가 ○	S B S - T V	2007서울조정465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852
○○상조중합이벤트 주식회사	경 남 매 일	2007경남조정 11	반 론	합 의		143
○○상조중합이벤트 주식회사	경 남 일 보	2007경남조정 12	반론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158
(주) ○ ○ 정 보 개 발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 44	정 정	취 하		172
(주) ○ ○ 정 보 개 발	M B C - T V	2007서울조정119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75
○○자동차매매단지운영위원회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111	정 정	취 하		262
○○○○환경운동연합 외 4인	인터넷환경일보	2007서울조정304	정 정 · 손배	각 합 의		617
강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130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293
강 ○ ○	한 라 일 보	2007제주조정 9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618
(주) 강 원 일 보 사	강원도민일보	2007강원조정 7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843
(주) 강 원 일 보 사	강원도민일보	2007강원조정 8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845
(주) 강 원 일 보 사	G T B - T V	2007강원조정 9	정 정	합 의		846
(주) 강 원 일 보 사	G T B - T V	2007강원조정 10	반 론	합 의		847
강 ○ ○	새 전 북 신 문	2007전북조정 35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705
강 ○ ○	K N N - T V	2007부산조정 2	정 정 · 손배	각 합 의		238
강 ○ ○ 외 1인	대전MBC-TV	2007대전조정 18	정 정	취 하		750
건 설 교 통 부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 78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12
건 설 교 통 부	파이낸셜뉴스	2007서울조정378	정 정	합 의		710
○○대 학교 병 원	J B S	2007대전조정 26	정 정	합 의		849
경 ○ ○	대 전 일 보	2007대전조정 15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664
○○고 등 학 교	오 마 이 뉴 스	2007서울조정246	정 정	합 의		532
경기도의사회 외 1인	테 일 리 팜	2007서울조정339	정 정	합 의		661
(제) 경 기 문 화 재 단	경 인 매 일	2007경기조정 25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321
(주) ○ ○ 디 지 털 넷	함안아라신문	2007경남조정 19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66
경상남도○○○○운송사업조합	교 통 신 문	2007서울조정414	반 론	취 하		767
경 찰 청	경 향 신 문	2007서울조정468	정 정	취 하		859
경 찰 청	국 민 일 보	2007서울조정469	정 정	취 하		860
경 찰 청	내 일 신 문	2007서울조정470	정 정	취 하		861
경 찰 청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471	정 정	취 하		861
경 찰 청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472	정 정	취 하		862
경 찰 청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473	정 정	취 하		862
경 찰 청	세 계 일 보	2007서울조정474	정 정	취 하		862
경 찰 청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475	정 정	취 하		863
경 찰 청	중 앙 일 보	2007서울조정476	정 정	취 하		863
경 찰 청	한 국 일 보	2007서울조정477	정 정	취 하		864
경 찰 청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478	정 정	취 하		865

신 청 인	피신청인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정찰청	M B C - T V	2007서울조정479	정정	취하		865
정찰청	Y T N	2007서울조정480	정정	취하		865
정찰청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481	정정	취하		866
고경화	데일리서프라이즈	2007서울조정154	정정·손배	각 합 의		337
○○장례식장(주)○○	고 성 신 문	2007경남조정 16	정정·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284
고양시	경 향 신 문	2007서울조정408	정정	취하	중재합의	758
고○	컴 퓨 터 타임즈	2007서울조정178	정정·손배	각 취 하		385
고진화	한 겨 레	2007서울조정285	정정·손배	각 합 의		595
고○	제 주 투 데 이	2007제주조정 1	정정·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117
고홍	고 홍 타 임 즈	2007광주조정 49	정정	합 의		858
(주)○○산업	여수MBC-TV	2007광주조정 30	정정	취하		527
과학기술부	한국경제와우TV	2007서울조정204	정정	합 의		448
광명시	수 도 일 보	2007경기조정 36	정정	취하		359
○○생명주식회사	e 조 은 뉴 스	2007부산조정 1	정정·반론	각 합 의		161
교육인적자원부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 33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153
교육인적자원부	매 일 경 제	2007서울조정112	반론	취하		262
교육인적자원부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113	반론	취하		263
교육인적자원부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114	반론	합 의		264
교육인적자원부	중 앙 일 보	2007서울조정115	반론	합 의		264
교육인적자원부	경 향 신 문	2007서울조정147	정정	취하		316
교육인적자원부	M B C - T V	2007서울조정156	반론	합 의		339
교육인적자원부	국 민 일 보	2007서울조정234	정정	취하		505
교육인적자원부	헤럴드경제	2007서울조정284	정정	취하		594
교육인적자원부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393	정정	기 각		734
교육인적자원부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411	정정	합 의		763
교육인적자원부	중 앙 일 보	2007서울조정412	정정	취하		764
교육인적자원부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444	정정	합 의		816
교육인적자원부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466	정정	합 의		854
(주)구○○	인터넷환경일보	2007서울조정311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625
○○중학교	경 인 일 보	2007경기조정 31	정정·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44
○○경제의실천시민연합	대구KBS-1TV	2007대구조정 15	정정	취하		775
구○○	J - T V	2007전북조정 14	정정·손배	각 취 하		296
○○○○○○포럼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105	정정	취하		254
국가청렴위원회	한 국 일 보	2007서울조정217	정정	합 의		469
국무조정실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 30	정정	취하		146
국무총리복권위원회	시 사 저 널	2007서울조정386	정정	합 의		721
국방부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 86	정정	합 의		223
국방부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195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427
국방부	주 간 동 아	2007서울조정240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522
국방부주한미군기지사임단	M B C - T V	2007서울조정 19	정정	취하		132
국방부주한미군기지사임단	한 겨 레	2007서울조정175	정정	조 정 결 정		380
국정홍보처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190	정정	취하		420
국정홍보처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213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464
국정홍보처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324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638
국정홍보처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325	정정	합 의		639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국 정 홍 보 처	S B S - T V	2007서울조정327	정 정	취 하		641
국 정 홍 보 처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340	반 론	합 의		662
국 정 홍 보 처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341	반 론	취 하		663
국 정 홍 보 처 외 4인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323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637
(주) 국 ○	이 투 데 이	2007서울조정401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743
권 ○ ○	경 기 일 보	2007경기조정 54	정 정 · 손배	각 취 하		706
○ ○ ○ ○ 레 저 (주)	중 앙 일 보	2007서울조정 15	반 론	합 의		125
○ ○ ○ 레 저 (주)	M B C - T V	2007서울조정196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28
(주) ○ ○	원 주 투 데 이	2007강원조정 6	정 정 · 손배	각 합 의		793
근 로 복 지 공 단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403	정 정	취 하		747
금 융 감 독 원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426	정 정 · 손배	각 합 의		787
기 ○ ○	청주MBC-TV	2007충북조정 1	손 배	취 하		120
기 획 예 산 처	경 향 신 문	2007서울조정107	정 정	합 의		256
기 획 예 산 처	내 일 신 문	2007서울조정379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711
길 ○ ○	전 남 일 보	2007광주조정 4	정 정	취 하		206
길 ○ ○	뉴 시 스	2007서울조정303	손 배	조 정 결 정		616
김 ○ ○ 외 1인	위 드 뉴 스	2007서울조정155	손 배	합 의		338
김 ○ ○ 외 1인	M B C - T V	2007서울조정 46	손 배	조 정 결 정	피신청인의신청 중재합의	175
김 ○ ○ 외 1인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 88	손 배	취 하		225
김 ○ ○	대구MBC-TV	2007대구조정 13	손 배	합 의		669
김 ○ ○	양 산 신 문	2007경남조정 26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757
김 ○ ○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229	정 정	기 각		492
김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 95	손 배	합 의		232
김 ○ ○	한국경제와우TV	2007서울조정258	손 배	합 의		555
김 ○ ○	매 일 경 제	2007서울조정316	손 배	합 의		630
김 무 성	노 컷 뉴 스	2007서울조정276	정 정 · 손배	각 취 하		579
김 ○ ○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183	정정 · 반론 · 손배	합의(반론), 각 취하(정정 · 손배)		404
김 미 화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257	정 정 · 손배	각 취 하		552
김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294	손 배	합 의		608
김 ○ ○	충 청 매 일	2007충북조정 7	정 정	취 하		585
김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106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255
김 ○ ○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 39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164
김 ○ ○	Y T N	2007서울조정 40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166
김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442	손 배	기 각		813
김 ○ ○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 10	정 정	취 하		122
김 ○ ○	신 동 아	2007서울조정 11	정 정	합 의		122
김 ○ ○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 12	정 정	취 하		123
김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 25	정 정	취 하		142
김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 26	정 정	취 하		142
김 ○ ○	교 통 신 문	2007서울조정391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731
김 ○ ○	장성군민신문	2007광주조정 48	정 정 · 손배	각 취 하		838
김 ○ ○	경 북 일 보	2007대구조정 2	반론 · 손배	각 합 의		241
김 ○ ○	전 북 도 민 일 보	2007전북조정 15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18
김 ○ ○	전 라 일 보	2007전북조정 16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19
김 ○ ○	청 주 기 별	2007충북조정 13	손 배	합 의		640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김 ○ ○ ○ 외 2인	중 부 일 보	2007경기조정 55	반 론 · 손 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중재합의	750		
김 ○ ○ ○ 외 2인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236	정 정 · 손 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508		
김 ○ ○ ○ 외 2인	S B S - T V	2007서울조정417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770		
김 ○ ○ ○ 외 2인	M B C - T V	2007서울조정329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644		
김 ○ ○ ○ 외 2인	삼척MBC-TV	2007강원조정 1	정 정	합 의	중재합의 중재합의	147		
김 ○ ○ ○ 외 2인	한 겨 레	2007서울조정100	손 배	취 하		242		
김 ○ ○ ○ 외 2인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102	손 배	취 하		246		
김 ○ ○ ○ 외 2인	채 널 블 루	2007서울조정 16	손 배	합 의		128		
김 ○ ○ ○ 외 3인	M B C - T V	2007서울조정245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결 정	중재합의	531		
김 ○ ○ ○ 외 3인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266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562		
김 ○ ○ ○ 외 3인	T B C - T V	2007대구조정 1	손 배	취 하		157		
김 ○ ○ ○ 외 3인	투 데 이 코 리 아	2007서울조정 85	정 정	합 의		222		
김 ○ ○ ○ 외 3인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461	정 정 · 손 배	각 기 각	중재합의	841		
김 ○ ○ ○ 외 3인	광 주 투 데 이	2007경기조정 6	정 정	합 의		150		
김 ○ ○ ○ 외 3인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87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224		
김 ○ ○ ○ 외 3인	부 산 일 보	2007부산조정 17	정정·반론·손배	각 취하(반론·손배, 조정불성립결정(합의))		855		
김 ○ ○ ○ 외 3인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352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피신청인이의신청 피신청인이의신청	679		
김 ○ ○ ○ 외 3인	M B C - T V	2007서울조정150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결 정		323		
김 ○ ○ ○ 외 3인	M B C - T V	2007서울조정166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결 정		371		
김 ○ ○ ○ 외 3인	한 겨 레	2007서울조정241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523		
김 ○ ○ ○ 외 3인	원주MBC-TV	2007강원조정 4	정정·반론·손배	각 합 의	피신청인이의신청	569		
김 ○ ○ ○ 외 3인	청주MBC-TV	2007충북조정 2	손 배	취 하		121		
김 ○ ○ ○ 외 3인	파 이 넷 설 뉴 스	2007서울조정 99	정정·반론·손배	각 취 하		238		
김 ○ ○ ○ 외 3인	뉴 시 스	2007서울조정198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430		
김 ○ ○ ○ 외 2인	S B S - T V	2007서울조정120	정 정	각 하	피신청인이의신청	276		
김 ○ ○ ○ 외 2인	춘천MBC-TV	2007강원조정 3	손 배	취 하		529		
김 ○ ○ ○ 외 2인	김 해 신 문	2007경남조정 13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166		
김 ○ ○ ○ 외 2인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194	정 정 · 손 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424		
김 ○ ○ ○ 외 2인	S B S - T V	2007서울조정185	추 후 · 손 배	각 합 의	피신청인이의신청	409		
김 ○ ○ ○ 외 2인	제 민 일 보	2007제주조정 3	손 배	취 하		415		
김 ○ ○ ○ 외 2인	제 주 일 보	2007제주조정 4	손 배	취 하		415		
김 ○ ○ ○ 외 2인	한 라 일 보	2007제주조정 5	손 배	취 하		416		
김 ○ ○ ○ 외 2인	J I B S - T V	2007제주조정 6	추 후 · 손 배	각 취 하	피신청인이의신청	416		
김 ○ ○ ○ 외 2인	제주KBS-TV	2007제주조정 7	추 후 · 손 배	합의(추후), 취하(손배)		416		
김 ○ ○ ○ 외 2인	제주MBC-TV	2007제주조정 8	추 후 · 손 배	합의(추후), 취하(손배)		417		
김 ○ ○ ○ 외 2인	포항MBC-TV	2007대구조정 18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806		
김 ○ ○ ○ 외 2인	충 청 리 뷰	2007충북조정 11	손 배	합 의	피신청인이의신청	588		
김 ○ ○ ○ 외 2인	경 북 문 화 신 보	2007대구조정 10	정 정 · 손 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573		
김 ○ ○ ○ 외 2인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 35	정 정	취 하		155		
(L)								
나 ○ ○ ○ 외 2인	M B C - T V	2007서울조정387	손 배	합 의	피신청인이의신청	724		
나 ○ ○ ○ 외 2인	t v N	2007서울조정388	손 배	합 의		725		
(주) 나 주 뉴 스	나 주 신 문	2007광주조정 45	정 정	합 의		780		
나 주 뉴 시	나 주 뉴 스	2007광주조정 16	반 론	합 의		401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나 주 시	나 주 뉴 스	2007광주조정 23	정 정	조 정 결 정	피신청인이의신청	452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S B S - T V	2007서울조정174	정 정	합 의		378
○○○농 업 협 동 조 합	충 청 신 문	2007대전조정 1	정 정	합 의		215
남 ○ ○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381	정 정 · 손배	각 합 의		714
남 ○ ○	노 컷 뉴 스	2007서울조정382	정 정 · 손배	각 합 의		715
남 ○ ○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377	정 정	취 취 하		709
(㉠) ○ ○ ○ 하 우	퍼스트데일리	2007충북조정 6	정 정	취 취 하		566
노 동 부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64	정 정	합 의		195
농 립 부	한 겨 레	2007서울조정 79	반 론	취 취 하		213
농 립 부	한 겨 레	2007서울조정101	반 론	합 의		243
농 립 부	매 일 경 제	2007서울조정122	반 론	취 취 하		279
농 립 부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151	반 론	합 의		325
(ㄷ)						
담 양 군	담양주간신문	2007광주조정 1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이의신청	148
○○○○프로 축구단	플 라 마	2007서울조정 43	정 정 · 손배	각 취 하		171
(㉠) ○ ○ 해 운	내 일 신 문	2007서울조정452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825
(㉠) ○ ○ 디 엔 씨	S B S - T V	2007서울조정308	정 정 · 반론	각 합 의		621
대 전 동 부 경 찰 서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125	정 정	취 취 하		286
대 통 령 비 서 실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128	정 정	취 취 하		289
대 통 령 비 서 실	헤럴드경제	2007서울조정232	정 정	합 의		502
대 통 령 비 서 실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358	반 론	기 각		685
대 한 불 교 천 태 종	동 양 일 보	2007충북조정 14	정 정 · 손배	각 합 의		726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M B C - T V	2007서울조정 77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21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M B C - T V	2007서울조정406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이의신청	753
(사) 대 한 안 경 사 협 회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247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534
대 한 안 과 의 사 회	M B C - T V	2007서울조정199	정 정	합 의		433
대 한 안 과 의 사 회	M B C - T V	2007서울조정345	정 정	조 정 결 정		670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평 화 방 송 T V	2007서울조정350	정 정	합 의		677
○○응급환자이송단 ○○○지부	K N N - T V	2007부산조정 5	반 론	취 하		328
(사) 대 한 의 사 협 회	경 향 신 문	2007서울조정280	반 론	합 의		584
(사) 대 한 의 사 협 회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287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598
대한○○○○협회 경기도회	수 도 일 보	2007경기조정 56	정 정	합 의		760
(사) 대 한 한 의 사 협 회	M B C - T V	2007서울조정430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799
(㉠) ○ ○ ○ ○ 기 획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277	정 정	취 취 하	부분조정불성립결정	580
(㉠)독립신문사 외 1인	오 마 이 뉴 스	2007서울조정248	반론 · 손배	각 합 의		535
○○○○○○집행위원회	코 카 뉴 스	2007서울조정 47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179
동 대 문 경 찰 서	내 일 신 문	2007서울조정428	정 정	취 취 하		789
(㉠) 동 아 일 보 사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357	정 정	합 의		684
○○엔터테인먼트(㉠)	M B C - T V	2007서울조정230	정 정	취 취 하		501
(ㄹ)						
(㉠) ○ ○ ○ ○ ○ 순 천	전 남 도 민 일 보	2007광주조정 6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피신청인이의신청	281
렉 ○ ○ 주 식 회 사	전주MBC-TV	2007전북조정 10	정 정 · 손배	각 취 하		207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면
(㉠)						
(주) 마 ○ ○	내 일 신 문	2007서울조정371	반 론	취 하		702
(주) 마 ○ ○	전 자 신 문	2007서울조정372	반 론	취 하		704
(주) 마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373	정 정	조 정 결 정		704
마 ○ ○ ○ ○	한 겨 레	2007서울조정450	반 론	조 정 결 정		822
마 ○ ○ ○ ○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451	반 론	합 의		823
(주) 메 디 ○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334	정 정	취 하		651
(주)○○○○코퍼레이션	머 니 투 데 이	2007서울조정332	정 정	합 의		647
목 포 경 찰 서	목 포 투 데 이	2007광주조정 14	정 정	합 의		365
문 ○ ○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 28	손 배	취 하		145
문 병 호	부 평 신 문	2007경기조정 2	정 정	합 의		107
문 ○ ○ ○ ○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139	정정·반론·손배	각 취 하		308
문 ○ ○ ○ ○	시 사 I N	2007서울조정467	정정·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857
(주) 문 화 방 송	월 간 조 선	2007서울조정228	정 정	합 의		489
(주)○○감정평가법인	K N N - T V	2007부산조정 8	정 정	합 의		406
○○○○여행사	여 행 미 디 어	2007서울조정 61	반론·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191
민 병 두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409	정 정	합 의		759
민주노총 ○○지역본부	매 일 경 제	2007서울조정140	정 정	합 의		309
(㉡)						
○○ 장 로 교 회	중 도 일 보	2007대전조정 17	정 정·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687
박 ○ ○ ○ ○	엔에스아이뉴스	2007대전조정 10	정 정·손배	각 취 하		442
박 ○ ○ 외 4인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 31	정 정·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151
박 ○ ○ ○ ○	Y T N	2007서울조정 32	정 정	합 의		152
박 ○ ○ ○ ○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123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284
박 ○ ○ ○ ○	한 겨 레	2007서울조정144	정 정	합 의		313
박 ○ ○ ○ ○	전 자 신 문	2007서울조정158	정 정	기 각		343
박 ○ ○ ○ ○	S B S - T V	2007서울조정431	정정·반론·손배	각 기 각		800
박 ○ ○ ○ ○	주 간 조 선	2007서울조정256	정정·손배	각 조 정 결 정	양당사자의신청	550
박 ○ ○ ○ ○	비 지 니 스 앤	2007서울조정326	손 배	취 하		641
박 ○ ○ ○ ○	중 부 일 보	2007경기조정 40	정정·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467
박 ○ ○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462	정정·손배	합 의		842
박 ○ ○ ○ ○	Y T N	2007서울조정463	손 배	합 의		843
박 ○ ○ ○ ○	한 국 일 보	2007서울조정400	정정·손배	합 의		742
박 ○ ○ ○ ○	대 한 일 보	2007광주조정 21	정정·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437
박 ○ ○ ○ ○	호 남 일 보	2007광주조정 22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정정)	피신청인의신청	439
박 ○ ○ ○ ○	동 작 신 문	2007서울조정186	정정·손배	각 조 정 결 정		410
박 ○ ○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 21	손 배	조 정 결 정	피신청인의신청	135
박 ○ ○ ○ ○	헤 럴 드 경 제	2007서울조정441	손 배	합 의		813
박 ○ ○ ○ ○	메 트 로	2007서울조정171	손 배	합 의		377
박 ○ ○ ○ ○	A M 7	2007서울조정172	손 배	합 의		377
박 ○ ○ ○ ○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173	손 배	합 의		378
박 ○ ○ ○ ○	연 기 신 문	2007대전조정 20	정정·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773
박 ○ ○ 외 2인	경 인 일 보	2007경기조정 30	정정·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42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박 ○ ○	무 브 온 2 1	2007서울조정356	손 배	각 하		682
박 ○ ○	한 성 대 신 문	2007서울조정413	정 정 · 손배	각 합 의		766
박 ○ ○	전 북 중 앙 신 문	2007전북조정 33	정 정 · 손배	각 취 하		656
박 ○ ○	경 남 도 민 일 보	2007경남조정 5	정 정	취 하		127
박 ○ ○	한 국 안 경 신 문	2007서울조정320	정 정 · 손배	각 합 의		633
박 ○ ○	대 한 일 보	2007광주조정 33	정 정	취 하		563
박 ○ ○	신 안 신 문	2007광주조정 46	추 후	취 하		815
박 ○ ○ 외 5인	중 도 일 보	2007대전조정 16	정 정	합 의		675
박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110	정 정 · 반론	각 취 하		260
박 형 준	부산KBS-1TV	2007부산조정 7	정 정 · 반론 · 손배	합의(반론), 취하(정정 · 손배)		391
방 송 위 원 회	P D 저 널	2007서울조정 67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198
방 송 위 원 회	주 간 동 아	2007서울조정484	반 론	취 하		870
방 위 사 업 청	시 사 I N	2007서울조정425	정 정	합 의		786
배 ○ ○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 22	반 론	취 하	취하건주	137
백 ○ ○	뉴 시 스	2007서울조정 5	정 정 · 손배	합의(손배), 취하(정정)		109
○○○원예영농조합법인	새 충 청 일 보	2007충북조정 4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02
백 ○ ○	광주전남대일리안뉴스	2007광주조정 15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조정불성립결정(손배)		397
백 ○ ○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50	정 정	취 하		186
백 ○ ○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 51	정 정	취 하		187
백 ○ ○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 52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187
백 ○ ○	중 앙 일 보	2007서울조정 53	정 정	취 하		188
백 ○ ○	매 일 경 제	2007서울조정 54	정 정	취 하		188
백 ○ ○	서 울 경 제	2007서울조정 55	정 정	취 하		188
백 ○ ○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 56	정 정	취 하		189
백 ○ ○	해 털 드 경 제	2007서울조정 57	정 정	취 하		189
백 ○ ○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 58	정 정	취 하		189
백 ○ ○	YTN STAR	2007서울조정 59	정 정	취 하		190
변 ○ ○	충 청 리 뷰	2007충북조정 9	손 배	합 의		587
변 ○ ○	제 주 투 데 이	2007제주조정 2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127
○○기업 주식회사	매 일 노 동 뉴 스	2007서울조정384	정 정	합 의		717
보 건 복 지 부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34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154
보 건 복 지 부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 76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10
보 건 복 지 부	국 민 일 보	2007서울조정 81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217
보 건 복 지 부	한 겨 레	2007서울조정177	반 론	취 하		383
(주) ○ ○ 코 리 아	M B C - T V	2007서울조정208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455
부 산 시 ○ ○ ○ 협 회	부산KBS-1TV	2007부산조정 6	반 론	취 하		360
○○시수산업협동조합	M B C - T V	2007서울조정 1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101
○○○○자동차공업(주) 외 1인	전 광 일 보	2007광주조정 27	정 정 · 손배	각 합 의		498
○○○○자동차공업(주) 외 1인	큰 여 수 신 문	2007광주조정 28	정 정 · 손배	각 취 하		500
부 천 시	부 천 자 치 신 문	2007경기조정 47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565
○○프로세스 주식회사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292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605
(ㄱ)						
산 업 자 원 부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103	정 정	합 의		246
산 업 자 원 부	대 구 MBC-TV	2007대구조정 3	정 정	합 의		271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면
산업자원부	안동MBC-TV	2007대구조정 4	정정	합의	피신청인의신청	273
산업자원부	포항MBC-TV	2007대구조정 5	정정	합의		274
○○물산주식회사	KBS-1TV	2007서울조정 82	정정	조정결정		218
○○물산주식회사	KBS-1TV	2007서울조정109	정정·반론	각조정불성립결정		259
(사)○○청소년회	소통뉴스	2007전북조정 39	정정·손배	취하		791
(주)○○전자	프레시안	2007서울조정464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848
(주)○○지관	CNB저널	2007서울조정416	정정	합의		768
(사)○○회○○지회	김해신문	2007경남조정 9	정정	합의		133
서○○○	노컷뉴스	2007서울조정203	반론·손배	합의(반론), 취하(손배)		446
○○동○○구의주택제개발정비사업조합 주최위원회	시대일보	2007경기조정 3	정정·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118
(주)서○○	대구시민일보	2007대구조정 14	정정·손배	취하		684
○○대학교수의과대학학생회	관악	2007서울조정328	정정	합의		642
○○대학교병원	메디게이트뉴스	2007서울조정224	정정	취하		486
서울○○초등학교	한겨레	2007서울조정281	정정·반론	합의		589
서울시○○○연맹	내일신문	2007서울조정255	정정·손배	취하		550
양천경찰서	한겨레	2007서울조정458	정정	합의		836
서○○○	메디컬투데이	2007서울조정438	정정	합의		808
서초구	한겨레	2007서울조정483	정정·반론	취하		868
서○○○외 39인	MBN	2007서울조정133	정정·손배	각조정불성립결정		298
선○○○	시사저널	2007서울조정167	정정·손배	합의		372
설○○○	세계일보	2007서울조정359	추후	취하		688
설○○○	MBC-TV	2007서울조정360	추후	합의		689
설○○○	연합뉴스	2007서울조정361	추후	취하		690
설○○○	노컷뉴스	2007서울조정362	추후	합의		690
설○○○	브레이크뉴스	2007서울조정363	추후	취하		691
설○○○	오마이뉴스	2007서울조정364	추후	합의		691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조선일보	2007서울조정365	정정·손배	취하		692
설○○○	광남일보	2007광주조정 35	추후	취하		693
설○○○	남도일보	2007광주조정 36	추후	취하		693
설○○○	남해안신문	2007광주조정 37	추후	취하		694
설○○○	무등일보	2007광주조정 38	추후	취하		694
설○○○	여수신문	2007광주조정 39	추후	취하		695
설○○○	전남일보	2007광주조정 40	추후	취하		695
설○○○	순천KBS-1TV	2007광주조정 41	추후	취하		696
설○○○	여수MBC-TV	2007광주조정 42	추후	취하		696
설○○○	KBC-TV	2007광주조정 43	추후	취하		697
설○○○	광주PBC-R	2007광주조정 44	추후	취하		705
성○○○외 3인	울산e-조은뉴스	2007부산조정 10	손배	취하		469
성○○○	매일신문	2007대구조정 16	정정·손배	각기		784
성○○○	중앙일보	2007서울조정 3	정정·손배	취하		10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서울신문	2007서울조정456	정정·손배	합의		834
○○○대학교	동아일보	2007서울조정270	정정	취하		575
○○○대학교	문화일보	2007서울조정271	정정	취하		576
○○○대학교	조선일보	2007서울조정272	정정	합의		577
○○○대학교	중앙일보	2007서울조정273	정정	취하		578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 ○ 대 학 교	매 일 경 제	2007서울조정274	정 정	취 하	신청인의신청	578
○ ○ 대 학 교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275	정 정	취 하		578
○ ○ 대 학 교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297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611
소 방 방 재 청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 24	정 정	합 의		140
손 ○ ○	S B S - T V	2007서울조정210	손 배	합 의		460
(주) 술 ○ ○	머 니 투 데 이	2007서울조정460	정 정 · 손배	각 조 정불성립결정		840
송 ○ ○	오 마 이 뉴 스	2007서울조정231	정 정 · 손배	각 조 정불성립결정		502
송 ○ ○	일 간 스포 츠	2007서울조정118	손 배	합 의		271
송 ○ ○	코 리 아 헤 럴 드	2007서울조정254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54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 천 신 문	2007경기조정 20	정 정	취 하		25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 인 일 보	2007경기조정 52	정 정	취 하		64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 산 신 문	2007서울조정337	정 정	조 정불성립결정		659
수 원 시	중 부 일 보	2007경기조정 38	정 정	조 정불성립결정		419
순 창 경 찰 서	새 전 북 신 문	2007전북조정 38	정 정	합 의		776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북공동구매추진협의회	광 남 일 보	2007광주조정 7	정 정	합 의		353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북공동구매추진협의회	광 주 일 보	2007광주조정 8	정 정	합 의		354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북공동구매추진협의회	남 도 일 보	2007광주조정 9	정 정	취 하		354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북공동구매추진협의회	호 남 일 보	2007광주조정 10	정 정	합 의		355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북공동구매추진협의회	호 남 매 일	2007광주조정 11	정 정	합 의		355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북공동구매추진협의회	순 천 신 문	2007광주조정 12	정 정	합 의		356
○○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북공동구매추진협의회	광주전남테일리안뉴스	2007광주조정 13	정 정	조 정불성립결정		356
순 천 시	순천시민의신문	2007광주조정 17	정 정	조 정불성립결정		425
순 천 시	순천시민의신문	2007광주조정 18	반 론	조 정불성립결정		426
(주) 스 피 드 ○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 29	손 배	취 하		146
(주) 스 피 드 ○ ○ ○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 45	손 배	기 각		174
○○○○금속분회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 9	반 론	조 정불성립결정		120
(주) 시 민 신 문	시 민 일 보	2007서울조정152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29
(주) 시 민 신 문	경 기도 민 일 보	2007경기조정 26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31
(주) 시 민 신 문	일 간 경 기	2007경기조정 27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32
(주) 시 민 신 문	전 국 매 일	2007경기조정 28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33
(주) 시 민 신 문	평 화 일 보	2007경기조정 29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34
시 ○ ○ ○ (주)	중 앙 일 보	2007서울조정346	정 정 · 손배	각 취 하		672
시 ○ ○ ○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283	반 론	취 하		593
○○○ 이 기 는 사 람 들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216	정 정	합 의		466
신 ○ ○	울 산 매 일	2007부산조정 11	정 정	취 하		540
심 ○ ○	전 북 대 중 일 보	2007전북조정 17	정 정 · 손배	각 조 정불성립결정		320
(○)						
(주) 아 ○ ○ ○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317	정 정 · 손배	각 합 의		631
(주)아이템○○외 1인	전 자 신 문	2007서울조정 94	정 정 · 손배	각 취 하		231
(주) A ○ ○ & E ○ ○	매 일 경 제	2007서울조정392	정 정 · 손배	각 합 의		732
안 ○ ○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200	반 론	합 의		443
안 명 옥	S B S - T V	2007서울조정149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20
안 ○ ○	한 국 기 독 신 문	2007부산조정 16	정 정 · 손배	각 합 의		821
안 ○ ○	남 도 일 보	2007광주조정 34	정 정	합 의		563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천자치신문	2007경기조정 32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345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천자치신문	2007경기조정 33	정 정	조 정 결 정		346
양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214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465
양 산 시 보 건 소	경남도민일보	2007경남조정 25	정 정	합 의		756
양 ○ ○	Y T N	2007서울조정415	손 배	취 하		768
양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306	정 정 · 손배	각 취 하		620
업 ○ ○	목 포 일 보	2007광주조정 26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493
(주) ○ ○ ○ ○ 피 시	J - T V	2007전북조정 12	정 정	취 하		252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전 북 일 보	2007전북조정 5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176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전 라 일 보	2007전북조정 6	정 정 · 손배	각 취 하		177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새 전 북 신 문	2007전북조정 7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178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전 북 매 일	2007전북조정 8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178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전북연합신문	2007전북조정 9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179
(주) ○ ○ 인 스 티 튜 트	경 향 신 문	2007서울조정407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755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368	정 정	합 의		699
(주) 엠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188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414
○○○여성병원	S B S - T V	2007서울조정437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807
(주) ○ 미술 외 1인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222	정 정	조 정 결 정		477
연 ○ ○	충 청 리 뷰	2007충북조정 5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472
영 상 홍 보 원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197	반 론	합 의		429
영 상 홍 보 원	서 울 경 제	2007서울조정207	정 정	조 정 결 정	피신청인의신청	454
학 교 법 인 ○ ○ 학 원	경 인 일 보	2007경기조정 37	정 정	기 각		363
오 ○ ○	전 남 일 보	2007광주조정 32	정 정	합 의		554
오 ○ ○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215	손 배	조 정 결 정		465
오 ○ ○	뉴 시 스	2007서울조정264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조정불성립결정(손배)		560
오 ○ ○	대 전 일 보	2007대전조정 21	정 정	합 의		794
오 ○ ○	중 도 일 보	2007대전조정 22	정 정	합 의		795
오 ○ ○	충 청 투 데 이	2007대전조정 23	정 정	합 의		796
오 ○ ○	전국야파트신문	2007서울조정453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828
완 주 군	완 주 신 문	2007전북조정 4	반 론	합 의		116
(사)완주군○○○연합회 외 1인	완 주 신 문	2007전북조정 32	반 론	취 하		552
○○터미널전자상가 동우회 외 6인	K B S - T V	2007서울조정205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451
용 인 시	인 천 일 보	2007경기조정 44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507
우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129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피신청인의신청	292
○○○○시 민 연 합	매 일 신 문	2007대구조정 19	정정 → 반론	합 의		824
○○투자증권노동조합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338	정 정	취 하		660
우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 23	반론 · 손배	각 취 하	중재합의	139
우 ○ ○	경 향 신 문	2007서울조정288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599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울산e-조은뉴스	2007부산조정 9	정 정	취 하		468
○○○○종합사회복지관	울 산 여 성 신 문	2007부산조정 4	정 정	취 하		327
○ ○ 발 전 협 의 회	T J B - T V	2007대전조정 3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266
(주) ○ ○ 넷	디 지 털 타 임 스	2007서울조정370	정 정 · 손배	각 합 의		701
유 기 준	오 마 이 뉴 스	2007서울조정202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445
유 니 온 뉴 스	에클레시아뉴스	2007서울조정375	정 정 · 손배	각 기 각		707
유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279	정 정	조 정 결 정		582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유 성 구	중 앙 매 일	2007대전조정 4	정 정 · 손배	각 취 하		274
00구 공무원노동조합 외 2인	충 청 투 데 이	2007대전조정 2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244
유 ○ ○	중 앙 일 보	2007서울조정355	정 정 · 손배	각 취 하		681
유 ○ ○ 외 1인	에클레시아뉴스	2007서울조정397	정 정	합 의		737
00동 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대 전 투 데 이	2007대전조정 5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282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	한 국 일 보	2007서울조정336	정 정	합 의		656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 외 1인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63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193
육 군 수 사 단	군 사 세 계	2007서울조정449	정 정	합 의		819
윤 ○ ○	성 도 교 회 주 보	2007서울조정454	정 정	취 하		829
윤 ○ ○	경 남 도 민 일 보	2007경남조정 2	정 정	합 의		112
윤 ○ ○	경 남 일 보	2007경남조정 3	정 정	합 의		113
윤 ○ ○	서 경 방 송	2007경남조정 4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114
윤 ○ ○	경 남 도 민 일 보	2007경남조정 6	손 배	취 하		129
윤 ○ ○	경 남 일 보	2007경남조정 7	손 배	취 하		129
윤 ○ ○	서 경 방 송	2007경남조정 8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130
윤 ○ ○	오 마 이 뉴 스	2007서울조정 37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조정불성립결정(손배)		158
윤 ○ ○	경 남 신 문	2007경남조정 10	손 배	합 의		136
윤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225	정 정	취 하		487
윤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459	정 정 · 손배	각 기 각		838
○ ○ 고 등 학 교	전 국 매 일	2007경기조정 53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654
의 왕 소 방 서	한 겨 레	2007서울조정296	정 정	합 의		610
이 ○ ○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432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801
이 ○ ○	오 마 이 뉴 스	2007서울조정457	정 정	취 하		835
이 ○ ○	디 지 털 타 임 스	2007서울조정148	손 배	취 하		317
이 ○ ○	주 간 동 아	2007서울조정278	정 정	조 정 결 정		580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7서울조정376	정 정	기 각		708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7서울조정385	정 정	기 각		719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7서울조정398	정 정	합 의		738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7서울조정399	정 정	합 의		740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7서울조정435	정 정	기 각		803
이 ○ ○	서 울 일 보	2007서울조정243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피신청인의신청	528
이 ○ ○	내 외 일 보	2007서울조정244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529
이 ○ ○	시 대 일 보	2007경기조정 45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530
이 ○ ○	진 도 뉴 스	2007광주조정 31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530
이 ○ ○	전주KBS-1TV	2007전북조정 1	손 배	합 의		104
이 ○ ○	전주MBC-TV	2007전북조정 2	손 배	합 의		105
이 ○ ○	J - T V	2007전북조정 3	손 배	합 의		106
이 ○ ○	광주KBS-1TV	2007광주조정 5	정 정 · 손배	각 취 하		248
이 ○ ○	광 주 매 일	2007광주조정 24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482
이 ○ ○	전 남 도 민 일 보	2007광주조정 25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483
이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 74	정 정 · 손배	각 취 하		208
이 ○ ○	목 재 신 문	2007경기조정 41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480
이○○노동조합 외 1인	파 이 낸 설 뉴 스	2007서울조정396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736
(주) 이 ○ ○ 외 1인	M B C - T V	2007서울조정302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615
이 ○ ○	M n e t	2007서울조정126	손 배	취 하	중재합의	287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이 명 박	한 겨 레	2007서울조정309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623
이 ○ ○	매 일 경 제	2007서울조정141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310
이 ○ ○ 외 1인	경 남 도 민 일 보	2007경남조정 20	정 정 · 손 배	합 의 (정 정), 취 하 (손 배)		474
(주) 이 비 뉴 스	CNB NEWS	2007서울조정 92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228
이 ○ ○ 외 1인	S B S - T V	2007서울조정295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중재합의	609
이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443	손 배	기 각		814
(주) 이 ○ ○	마 산 M B C - T V	2007경남조정 27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796
이 ○ ○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427	손 배	취 하		789
이 ○ ○	t v N	2007서울조정394	손 배	취 하	중재합의	735
이 ○ ○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161	손 배	기 각		350
이 ○ ○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162	손 배	기 각		351
이 ○ ○	스 포 츠 서 울	2007서울조정163	손 배	기 각		351
이 ○ ○	경 기 일 보	2007경기조정 34	손 배	취 하		352
이 ○ ○	경 인 일 보	2007경기조정 35	손 배	기 각		352
이 ○ ○	새 전 북 신 문	2007전북조정 34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658
이 ○ ○ 외 4인	경 상 매 일	2007대구조정 20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847
이 ○ ○	신 광 고 회 주 보	2007경기조정 59	정 정	합 의	합의간주	853
이 재 오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313	정 정	취 하		628
이 재 오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314	정 정	취 하		628
이 재 오	한 겨 레	2007서울조정315	정 정	취 하		629
이 ○ ○ 외 2인	나 우 리 신 문	2007충북조정 12	정 정	합 의		603
이 ○ ○ 외 13인	목 회 자 신 문	2007서울조정249	정 정	합 의		537
이 ○ ○	광 양 만 권 뉴 스	2007광주조정 3	정 정	취 하		196
이 ○ ○	국 민 일 보	2007서울조정318	정 정	취 하		632
이 ○ ○	쿠 키 뉴 스	2007서울조정319	정 정	취 하		633
이 ○ ○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226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488
이 ○ ○	테 일 리 안	2007서울조정227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489
이 ○ ○	한 겨 레	2007서울조정286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596
이 ○ ○	전 주 M B C - T V	2007전북조정 23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458
이 ○ ○	오 마 이 뉴 스	2007서울조정389	정 정 · 반 론	각 합 의		728
이 ○ ○	강 릉 M B C - T V	2007강원조정 2	손 배	취 하		507
이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153	정 정 · 손 배	합 의 (정 정), 취 하 (손 배)		330
이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117	추 후 · 손 배	각 취 하		270
이 ○ ○	광 주 매 일	2007광주조정 47	정 정	합 의		837
이 ○ ○	오 토 테 일 리	2007경기조정 7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160
이 한 구	영 남 일 보	2007대구조정 6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336
이 ○ ○	광 명 지 역 신 문	2007경기조정 50	정 정	취 하		629
이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251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541
이 ○ ○ 외 4인	대 자 보	2007서울조정134	손 배	합 의		299
이 회 창	시 사 I N	2007서울조정455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832
이 효 선	경 기 신 문	2007경기조정 19	정 정	취 하		256
익 산 경 찰 서	전 북 일 보	2007전북조정 11	정 정	합 의		251
익 산 시	소 통 뉴 스	2007전북조정 19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396
익 산 시	소 통 뉴 스	2007전북조정 24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518
(주) 인 ○ ○ ○ ○	우 리 일 보	2007경기조정 58	정 정 · 손 배	합 의 (정 정), 취 하 (손 배)		809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인천000 입주예정자 협의회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268	정 정	취 하		567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 남 매 일 신 문	2007경남조정 21	반 론 · 손 배	합의(반론), 취하(손배)		475
○ ○ 농 산 (주)	C N B 저 널	2007서울조정189	정 정 · 반 론	각 합 의		418
○ ○ 농 산 (주)	CNB NEWS	2007서울조정193	정 정 · 반 론	각 합 의		423
임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 66	손 배	취 하		197
임 ○ ○ 외 1인	인 천 신 문	2007경기조정 48	정 정	취 하		597
사회복지법인 0000어린이집	C J B	2007충북조정 16	정 정 · 손 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869
임 ○ ○	양 산 시 민 신 문	2007경남조정 14	손 배	취 하		230
임 ○ ○	양 산 뉴 스	2007경남조정 15	손 배	취 하		231
임 인 배 외 1인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421	정 정 · 손 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777
(ㄴ)						
장 ○ ○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261	정 정 · 손 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557
장 ○ ○ 외 21인	개 봉 교 회 주 보	2007경기조정 10	반 론	취 하		203
장 ○ ○	중 앙 일 보	2007서울조정439	정 정	합 의		811
장 ○ ○	주 간 동 아	2007서울조정310	정 정 · 손 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624
장 ○ ○	중 앙 일 보	2007서울조정354	정 정	합 의		680
장 ○ ○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383	정 정	취 하		716
장 ○ ○	Best baby	2007서울조정374	손 배	합 의		707
장 ○ ○	테 일 리 안	2007서울조정206	손 배	취 하		453
장 ○ ○	뉴 스 앤 뉴 스	2007경기조정 51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630
장 ○ ○ 외 4인	경 기 신 문	2007경기조정 8	반 론	취 하		165
장 ○ ○ 외 4인	서 울 일 보	2007서울조정 38	반 론	합 의		159
재 정 경 제 부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369	정 정 · 반 론	각 취 하		700
(주) ○ ○ 산 업	한 겨 레	2007서울조정347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673
전국개인00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개 인 텍 시 신 문	2007서울조정136	정 정 · 손 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01
전 국 ○ ○ 노 동 조 합	전 문 건 설 신 문	2007서울조정367	반 론	합 의		698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223	정 정	합 의		484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	디 지 털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265	정 정 · 손 배	각 각 하		561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218	정 정	정 기 각		470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219	정 정	정 기 각		471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중 앙 일 보	2007서울조정220	정 정	정 기 각		47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221	정 정	정 기 각		47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259	정 정	정 조 정 결 정		55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헤 럴 드 경 제	2007서울조정260	정 정	합 의		55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262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558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263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559
전 국 ○ ○ ○ ○ 노 동 조 합	화 국 동 교 회 홈 페이지	2007서울조정290	정 정	각 하		601
전 국 ○ ○ ○ ○ 노 동 조 합	에 클 레 시 안 뉴 스	2007서울조정485	정 정	합 의		87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 27	정 정 · 손 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1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282	반 론	합 의		590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00대학교 00병원지부	중 부 매 일	2007충북조정 3	정 정 · 손 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250
전 국 ○ ○ 노 동 조 합	K T X 매 거 진	2007대전조정 9	반 론 · 손 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407
전국축협노동조합 00지부	금 산 저 널	2007대전조정 14	정 정 · 손 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606
전 ○ ○	한 국 시 사 정 보 신 문	2007경남조정 24	손 배	취 하		721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전 라 남 도	광주MBC-TV	2007광주조정 29	정 정	합 의		524
전 ○ ○	오 마 이 뉴 스	2007서울조정269	반 론	취 하		568
전 ○ ○	국 제 신 문	2007부산조정 12	반 론	합 의		571
전 ○ ○	울 산 매 일	2007부산조정 13	반 론	합 의		571
전 ○ ○	울 산 신 문	2007부산조정 14	반 론	취 하		572
전 ○ ○	U B C - T V	2007부산조정 15	반 론	조 정 결 정		572
전 북 ○ ○ 협 동 조 합	새 전 북 신 문	2007전북조정 25	정 정 · 손배	각 취 하		544
전 북 ○ ○ 협 동 조 합	전북대 중 일 보	2007전북조정 26	정 정 · 손배	각 취 하		545
전 북 ○ ○ 협 동 조 합	전북도 민 일 보	2007전북조정 27	정 정 · 손배	각 취 하		546
전 북 ○ ○ 협 동 조 합	전북매 일 신 문	2007전북조정 28	정 정 · 손배	각 취 하		546
전 북 ○ ○ 협 동 조 합	전북연 합 신 문	2007전북조정 29	정 정 · 손배	각 취 하		547
전 북 ○ ○ 협 동 조 합	전 북 일 보	2007전북조정 30	정 정 · 손배	각 취 하		547
전 북 ○ ○ 협 동 조 합	전 주 일 보	2007전북조정 31	정 정 · 손배	각 취 하		548
전 ○ ○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305	정 정	취 하		619
학교법인 전주○○학원 외 1인	새 전 북 신 문	2007전북조정 22	정 정	취 하		440
전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344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양당사자이의신청	668
정 ○ ○	아 산 투 데 이	2007대전조정 7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385
정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137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304
정 ○ ○	e 조 은 뉴 스	2007서울조정 98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236
정 ○ ○	e 조 은 뉴 스	2007부산조정 3	정 정 · 손배	기 각		240
정 동 채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96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234
정 동 채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 97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235
정 ○ ○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201	반 론	합 의		444
정 ○ ○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343	정 정	합 의		667
정 ○ ○	S B S - T V	2007서울조정191	손 배	취 하	중재합의	422
정 병 국	평 화 일 보	2007경기조정 23	정 정 · 손배	배취(정정), 조정불성립결정(손배)		295
정 ○ ○	마산MBC-TV	2007경남조정 1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102
정 ○ ○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 2	반 론	기 각		103
정 ○ ○	마산MBC-TV	2007경남조정 23	추 후	기 각		649
정 ○ ○	경 북 문 화 신 보	2007대구조정 9	정 정 · 반론	합의(반론), 취하(정정)		514
정 ○ ○	한 겨 레	2007서울조정418	정 정	합 의		770
정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440	정 정 · 손배	각 취 하		812
정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335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피신청인의이신청	653
정 ○ ○	한 겨 레	2007서울조정145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313
정 ○ ○	매 일 신 문	2007대구조정 8	정정 · 반론 · 손배	각 합 의		512
정 읍 경 찰 서	전북연 합 신 문	2007전북조정 18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68
(사)○○○문화계 제 전 위원회	전 주 일 보	2007전북조정 40	정 정 · 손배	각 합 의		829
정 ○ ○	노 컷 뉴 스	2007서울조정121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278
정 ○ ○	S t o r y - O n	2007경기조정 49	손 배	취 하		627
정 ○ ○	전 북 일 보	2007전북조정 36	반 론	합 의		718
정 ○ ○	새 전 북 신 문	2007전북조정 37	반 론	합 의		719
정 ○ ○	대 구 MBC-TV	2007대구조정 11	손 배	취 하		666
정 ○ ○	마 포 신 문	2007서울조정253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543
제 5 1 보 병 사 단	경 기 신 문	2007경기조정 18	정 정	합 의		249
조 ○ ○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293	반 론	합 의		607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조	○	○	경 향 신 문	2007서울조정445	반	론	취	하	피신청인의신청	817		
조	○	○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446	반	론	취	하		818		
조	○	○	세 계 일 보	2007서울조정447	반	론	취	하		818		
조	○	○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448	반	론	취	하		818		
조	○	○	중 도 일 보	2007대전조정 25	반	론	합	의		831		
조	○	○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419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771	
조	기	숙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41	정	정 · 손 배	조			정 결 정 (정 정), 취 하 (손 배)	168	
조	기	숙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104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253	
조	기	숙	월 간 조 선	2007서울조정289	반	론 · 손 배	각	취		하	599	
조	기	숙 외 3인	신 동 아	2007서울조정233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결 정	503	
조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 13	추	후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24	
조	○	○	S B S - T V	2007서울조정 6	추	후	기	각			111	
조	○	○	Y T N	2007서울조정 8	추	후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19	
조	○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7서울조정235	정	정	취	하			505	
조	○	○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434	손	배	취	하			803	
조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146	반	론	합	의		314		
조	○	○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180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398		
조	○	○	Y T N	2007서울조정181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399		
(주)	○	○	세 상	창원KBS-1TV	2007경남조정 22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583	
(주)	스	피 드	○ ○ ○	이 코 노 미 2 1	2007서울조정138	손	배	취	하	307		
(주)	환	경 일 보		환 경 일 보	2007서울조정349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676	
(주)	중	○		목 재 신 문	2007경기조정 42	정	정	합	의	494		
중	앙	인 사 위 원 회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157	반	론	합	의	341		
중	앙	인 사위 원 회		국 민 일 보	2007서울조정159	반	론	취	하	347		
중	앙	인 사위 원 회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176	반	론	조	정 불 성 립 결 정	381		
(주)	중	앙 일 보 사		한 겨 레	2007서울조정 60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90		
○○○○○○	서	비 스 코 리 아 (주)		매 일 경 제	2007서울조정 4	정	정	취	하	108		
○○○○○○	서	비 스 코 리 아 (주)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 91	정	정	취	하	228		
(주)	비	○ ○ ○ ○ 외 1인		이 데 일 리	2007서울조정179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394	
진	도	○ ○ 법 인		대 한 일 보	2007광주조정 19	정	정 · 손 배	합 의 (정 정), 취 하 (손 배)		435		
진	도	○ ○ 법 인		호 남 일 보	2007광주조정 20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437	
진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 17	정	정 · 손 배	조		정 결 정 (손 배), 취 하 (정 정)	130		
(天)												
(주)	○	○	여 행 사	M B C - T V	2007서울조정267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567	
(주)	참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402	정	정 · 반	론	각	조	정 결 정	744
○	○	문 화 원		충 청 투 데 이	2007대전조정 19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772	
○	○	문 화 원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420	정	정 · 손 배	합 의 (정 정), 취 하 (손 배)		774		
○	○	문 화 원		충 남 시 사 신 문	2007대전조정 24	정	정	취	하	811		
(주)	청	주	○	중 부 매 일	2007충북조정 15	반	론 · 손 배	합 의 (반론), 취 하 (손 배)		783		
최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238	추	후	합	의	516		
최	○	○		일 요 신 문	2007서울조정239	추	후	취	하	517		
최	○	○		뉴 시 스	2007서울조정 70	손	배	합	의	202		
최	○	○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 71	손	배	합	의	202		
최	○	○		한 겨 레	2007서울조정348	손	배	조	정 결 정	674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최 ○ ○	○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482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폐신청인의신청	866	
최 ○ ○	○	순천KBS-1TV	2007광주조정 2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169	
최 ○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135	손 배	조 정 결 정		300	
최 영 근	○	경 인 매 일	2007경기조정 14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233	
최 영 근	○	수 도 일 보	2007경기조정 15	정 정 · 손 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234	
최 ○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429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797	
최 ○ ○	○	A M 7	2007서울조정 65	손 배	취 하		197	
최 ○ ○	○	CNB NEWS	2007서울조정116	정 정 · 손 배	각 합 의		269	
최 재 천	○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131	정 정	합 의		294	
최 재 천	○	한 국 경 제	2007서울조정132	정 정	취 하		295	
최 ○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423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779	
최 ○ ○	○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124	손 배	취 하		285	
최 ○ ○	○	경 기도 민 일 보	2007경기조정 24	정 정 · 손 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02	
최 ○ ○	○	M B C - T V	2007서울조정307	손 배	합 의		620	
충 북 개 발 공 사	○	충 청 투 데 이	2007대전조정 13	정 정 · 손 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591	
(㉞)								
(주) ○ ○ 코 리 아	가 스 산 업 신 문	2007서울조정187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결 정	양당사자의신청	411		
(유) ○○마인드 외 1인	매 일 노 동 뉴 스	2007서울조정312	정 정 · 반 론 · 손 배	각 합의(정정, 반론), 취하(손배)		626		
(주) ○ ○ ○ 스 포 츠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322	정 정	취 하		636		
(주) ○ ○ ○ ○ 페 스티 벨	인 제 신 문	2007강원조정 5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659		
(주) ○ ○ 웨 딩 스 쿨	M B C - T V	2007서울조정211	정 정 · 반 론	각 합 의		461		
(주) ○ ○ ○ ○ ○ 매 니 지 먼 트	경 향 신 문	2007서울조정127	정 정	취 하		288		
(㉟)								
태 안 군	서 해 안 신 문	2007대전조정 6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361		
태 안 군 외 1인	서 해 안 신 문	2007대전조정 8	정 정	합 의		387		
통 영 시 외 1인	미 륙 산	2007경남조정 18	정 정 · 손 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357		
통 일 부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184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408		
(㊱)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민신문	2007경기조정 9	정 정	합 의		185		
(주) ○ ○ 프 렌 차 이 즈	이 데 일 리	2007서울조정242	반 론 · 손 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526		
포 향 시	경 북 문 화 신 보	2007대구조정 7	정 정 · 반 론	합의(반론), 취하(정정)		457		
표 ○ ○	t v N	2007서울조정 68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199		
(주) ○ ○ 건 설	인 천 일 보	2007경기조정 43	정 정 · 반 론	각 합 의		496		
(㊲)								
하 남 시	경 인 매 일	2007경기조정 5	정 정	취 하		141		
하 남 시	경 인 매 일	2007경기조정 11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03		
하 남 시	경 인 매 일	2007경기조정 12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04		
하 남 시	경 기 신 문	2007경기조정 13	정 정	취 하		214		
하 남 시	경 인 매 일	2007경기조정 16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36		
하 남 시	경 인 매 일	2007경기조정 17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37		
하 남 시	동 부 교 차 로 저 널	2007경기조정 46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564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하 남 시	M B C - T V	2007서울조정321	정 정	합 의		634
○○○○○○○○ 학부모모임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73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07
○○○○○○○○ 학부모모임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80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16
○○○○○○○○ 학부모모임	한 겨 레	2007서울조정 83	정 정	조 정 결 정		220
○○○○○○○○ 학부모모임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84	정 정	기 각		221
○○○○○○○○ 학부모모임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90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27
학 교 법 인 ○○학 원	경 기 신 문	2007경기조정 21	정 정	취 하		268
학 교 법 인○○○학 원	한 겨 레	2007서울조정380	정 정 · 반론	합의(반론), 취하(정정)		712
○○○남골당반대투쟁위원회	M B C - T V	2007서울조정422	정 정 · 손배	각 합 의		778
(사) 한국 경영 자총 협 회	한 국 일 보	2007서울조정 93	정 정	취 하		229
한국교육개발원 외 1인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142	정 정	합 의		311
한국교육개발원 외 1인	한 국 교 육 신 문	2007서울조정143	정 정	합 의		312
한국교통연구원 외 1인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342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664
한 국 국 방 연 구 원	서 울 신 문	2007서울조정333	정 정	합 의		650
(주) 한 국 ○○의 료 기	M B C - T V	2007서울조정182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400
한 국 ○○○연 합 회	전 북 일 보	2007전북조정 20	정 정	취 하		431
한 국 ○○○연 합 회	전 주 일 보	2007전북조정 21	정 정	취 하		432
한 국 방 송 공 사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486	정 정	합 의		872
한국방송공사 외 1인	내 일 신 문	2007서울조정168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73
한국방송공사 외 1인	미 디 어 오 늘	2007서울조정169	정 정 · 손배	각 취 하		374
한국방송공사 외 1인	브 레 이 크 뉴 스	2007서울조정170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375
(제)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외 1인	서 울 경 제	2007서울조정 72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205
○○○○○○○○대 학 교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 49	정 정 · 반론	각 합 의		183
한국○○공업협동조합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 89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226
한 국 ○○○○협 회	한 국 광 고 신 문	2007서울조정291	정 정	합 의		602
한 국 ○○○공 업 협 회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404	정 정 · 반론	각 조정불성립결정		748
한 국 의 사 회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 18	정 정	기 각		131
한국○○부품소재업협동조합 외 1인	대구MBC-TV	2007대구조정 12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666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인터넷미디어오늘	2007서울조정252	정 정 · 반론	취하(반론), 조정불성립결정(정정)		541
한 국 전 력 공 사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164	정 정	합 의		369
한 국 전 력 공 사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165	정 정	합 의		370
한 국 ○○○○(주)	아 이 뉴 스 2 4	2007서울조정160	정 정 · 손배	각 취 하		348
한 나 라 당	한 겨 레	2007서울조정433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801
(주) ○ ○ 상 조	시 사 한 국	2007서울조정405	정 정	기 각		752
(주) 한 ○ ○ ○ ○	국 방 일 보	2007서울조정 69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00
한 ○ ○ ○	디지털조선일보	2007서울조정 75	반 론	각 하		209
(유) 한 ○ ○ ○ 가 스	보령시민신문	2007대전조정 12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509
한 ○ ○ ○	충 청 리 뷰	2007충북조정 8	정 정 · 손배	취하(정정), 조정불성립결정(손배)		586
○○디 지 털 대 학 교	안 산 타 임 스	2007경기조정 57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781
○○영 농 조 합 법 인	경 인 매 일	2007경기조정 4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138
○ ○ 건 설 (주)	보령시민신문	2007대전조정 11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85
한 ○ ○ ○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353	손 배	합 의		680
한 ○ ○ ○	건설교통신문	2007서울조정192	정 정	합 의		422
한 ○ ○ ○	S B S - T V	2007서울조정366	손 배	합 의		697
한 ○ ○ ○	광 주 투 데 이	2007경기조정 22	정 정	취 하		290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함 안 군	함안아라신문	2007경남조정 17	정 정	합 의		334
○○○총본부 ○○관	무 토 뉴 스	2007경기조정 1	정 정	취 하		106
해 양 수 산 부	세 계 일 보	2007서울조정 48	반 론	합 의		181
해 양 수 산 부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436	반 론	합 의		805
(주) ○ ○ 의 료 기	메 디컬 투 데이	2007서울조정212	정 정	합 의		463
(주) 행 ○ ○ ○	S B S - T V	2007서울조정351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678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중 앙 일 보	2007서울조정 62	정 정	기 각		192
○○건설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	2007전북조정 13	정 정	취 하		265
홍 ○ ○	영 남 일 보	2007대구조정 17	정 정 · 손배	각 취 하		792
홍 ○ ○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209	정 정	합 의		459
홍 ○ ○	t v N	2007서울조정395	손 배	취 하	중재합의	736
환경관리공단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410	정 정	합 의		762
환경경부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7	정 정	합 의		114
환경경부	오 마 이 뉴 스	2007서울조정 36	정 정	합 의		156
환경경부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 42	정 정	합 의	합의간주	171
환경경부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330	정 정	조 정 결 정	양당사자이의신청	645
환경경부	조 선 일 보	2007서울조정331	반 론	합 의		646
환경경부	문 화 일 보	2007서울조정390	반 론	기 각		729
황 ○ ○	S B S - T V	2007서울조정108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257
황 ○ ○	노 컷 뉴 스	2007서울조정 20	정 정 · 손배	합의(정정), 취하(손배)		134
황 ○ ○	경 기 신 문	2007경기조정 39	정 정 · 손배	각 기 각		449
황 ○ ○	K B S - 2 T V	2007서울조정424	손 배	취 하		784
황 ○ ○	매 일 경 제	2007서울조정237	정 정 · 손배	각 합 의		515
황 ○ ○	연 합 뉴 스	2007서울조정 14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125
황 ○ ○	충 청 리 뷰	2007충북조정 10	손 배	합 의		588
황 ○ ○ 외 1인	일 요 시 사	2007서울조정250	정 정 · 손배	각 합 의		539
○○구역주택개발조합 외 1인	K B S - 1 T V	2007서울조정298	정 정 · 손배	각 합 의		612
○○구역주택개발조합 외 1인	국 민 일 보	2007서울조정299	정 정 · 손배	각 취 하		613
○○구역주택개발조합 외 1인	동 아 일 보	2007서울조정300	정 정 · 손배	각 합 의		614
○○구역주택개발조합 외 1인	한 국 일 보	2007서울조정301	정 정 · 손배	각 합 의		615

언론중재신청사례 색인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ㄱ)						
고 ○ ○ 외 1인	컴퓨터타임즈	2007서울중재 7	정정·손배	각 중재 결정		887
김 ○ ○ 외 1인	K B S - 2 T V	2007서울중재 2	손 배	중 재 결 정		879
김 ○ ○ 외 1인	S B S - T V	2007서울중재12	정정·손배	각 중재 결정		896
김 ○ ○ 외 1인	한 겨 레	2007서울중재 3	손 배	중 재 결 정		881
김 ○ ○ 외 1인	연 합 뉴 스	2007서울중재 4	손 배	중 재 결 정		882
(ㅇ)						
우 ○ ○ 외 1인	K B S - 1 T V	2006서울중재 1	손 배	중 재 결 정		877
이 ○ ○ 외 1인	M n e t	2006서울중재 5	손 배	중 재 결 정		884
이 ○ ○ 외 1인	S B S - T V	2006서울중재 9	손 배	중 재 결 정		890
이 ○ ○ 외 1인	t v N	2006서울중재10	손 배	중 재 결 정		892
(ㄴ)						
정 ○ ○ 외 1인	S B S - T V	2006서울중재 8	손 배	중 재 결 정		889
(ㄷ)						
최 ○ ○ 외 1인	연 합 뉴 스	2006서울중재 6	손 배	중 재 결 정		886
(ㄹ)						
홍 ○ ○ 외 1인	t v N	2006서울중재11	손 배	중 재 결 정		89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1.

시 행 : 2005. 7.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

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

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

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 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

2007년도 연차보고서 (언론중재 통권 106호 부록)

2008년 3월 20일 인쇄
 2008년 3월 30일 발행

편저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제 도 연 구 팀
 발행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 화 : •대 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 담 센 터 02)397-3089
<http://www.pac.or.kr>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